

한국의학사료총서 6

조선의 의료 제도

朝鮮 醫療制度
조선의 의료 제도

박훈평
구자훈
변구일
남성우
이정현

일러두기

- 책은 총 3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수록한 자료 전체의 해제이고, 2부는 《경국대전》 등의 법전과 수교(受敎)에서 의료 관련 기사를 추출한 법령 자료이며, 3부는 《내의원식례》 등 의료관청의 자료이다.
- 2부 법령 자료는 이 · 호 · 예 · 병 · 형 · 공의 육전(六典) 체계로 구성하였다.
- 육전 아래 소제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법령자료>의 분류체계를 따랐다.
- 소제목 아래에서는 시대순으로 서적을 배치한 후 의료 관련 기록의 원문 · 번역문 · 출처를 수록하였다.
- 지면 관계상 내용의 상당 부분을 생략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려면 원자료와 함께 보기를 권한다.
- 일부 용어는 알기 쉽도록 짧은 해설을 붙였으나, 엄밀한 의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3부 의료관청 자료에서는 7종의 서적을 시대순으로 배치하였다. 3부의 서적은 <한의학고전DB>에서도 열람 · 검색할 수 있다.
- 색인은 3부 중 인물과 처방에 대해서만 작성하였다.
- 이두(吏讀)는 회색으로 표시하였고, 별도의 설명을 달지 않았다.

- 일러두기

1부 해제

조선의 의료 법령과 규정 박훈평 · 21

1. 머리말	21
2. 법령 자료	23
2.1. 국전	23
2.2. 수교	25
2.3. 조례 · 사례 · 관서지	26
2.4. 형률서 및 판례집	27
2.5. 전례서	27
2.6. 사찬법전	28
2.7. 기타	28
3. 의료관청 자료	29
3.1. 개괄	29
3.2. 자료별 해제	30
4. 맷음말	39

2부 법령 자료 (총론)

0|전(吏典) 박훈평 · 이정현 번역 (이하 같음) · 43

1. 내명부(內命婦)	43
2. 경관직(京官職)	45
3. 내시부(內侍府)	67
4. 잡직(雜職)	69
5. 외관직(外官職)	71
6. 경아전(京衙前)	78
7. 취재(取才)	80
8. 천거(薦擧)	82
9. 제과(諸科)	83
10. 제수(除授)	86
11. 한품서용(限品敍用)	88
12. 포폄(褒貶)	92
13. 고과(考課)	93
14. 추증(追贈)	96
15. 잡령(雜令)	97

호전(戶典) · 101

1. 호조속아문(戶曹屬衙門)	101
2. 호적(戶籍)	102
3. 녹과(祿科)	107
4. 제전(諸田)	110

5. 지공(支供)	112
6. 세공(稅貢)	116
7. 잡세(雜稅)	130
8. 비황(備荒)	131
9. 징채(徵債)	132
10. 요부(徭賦)	135
11. 잡령(雜令)	138

예전(禮典) · 175

1. 예조속아문(禮曹屬衙門)	175
2. 제과(諸科)	178
3. 의장(儀章)	188
4. 생도(生徒)	196
5. 사대(事大)	200
6. 제례(祭禮)	205
7. 봉심(奉審)	218
8. 치제(致祭)	218
9. 혼가(婚嫁)	219
10. 상장(喪葬)	220
11. 취재(取才)	224
12. 장권(獎勸)	233
13. 반빙(頒冰)	254
14. 혜휼(惠恤)	257
15. 선상(選上)	271

16. 잡령(雜令)	273
17. 용문자식(用文字式)	285

병전(兵典) · 287

1. 경관직(京官職)	287
2. 역마(驛馬)	294
3. 시취(試取)	295
4. 번차도목(番次都目)	296
5. 입직(入直)	301
6. 부신(符信)	305
7. 급보(給保)	306
8. 복호(復戶)	310
9. 구휼(救恤)	311
10. 구목(廄牧)	314
11. 잡류(雜類)	319
12. 잡령(雜令)	322

형전(刑典) · 325

1. 용률(用律)	325
2. 수금(囚禁)	338
3. 추단(推斷)	339
4. 헐수(恤囚)	342

5. 포도(捕盜)	357
6. 장도(贓盜)	357
7. 금제(禁制)	367
8. 천치첩자녀(賤妻妾子女)	381
9. 공천(公賤)	386
10. 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	390
11. 제사차비노(諸司差備奴)	391
12. 살옥(殺獄)	395
13. 검험(檢驗)	406
14. 사령(赦令)	408
15. 속량(贖良)	409
16. 잡령(雜令)	409

공전(工典) · 415

1. 영선(營繕)	415
2. 재식(栽植)	418
3. 경공장(京工匠)	420
4. 잡령(雜令)	421

3부 의료관청 자료 (각론)

내의원정례(內醫院定例) 박훈평 번역 · 변구일 교열 · 427

1. 달마다 늘 정해진 규례[每朔恒式]	427
2. 날마다의 진배[逐日進排]	430
3. 사흘마다의 진배[每三日進排]	432
4. 내의원일기를 장황할 때 들어가는 물품[日記粧纊所入]	432
5. 진어약치부책에 쓰이[進御藥置簿冊]는 물품[所用]	433
6. 각도약공안책 한 건에 들어가는 물품[各道藥貢案冊一件所入]	433
7. 보통의 거동 때[凡舉動時]	434
8. 간병 때[看病時]	435
9. 부연하여 간병할 때[赴燕看病時]	437
10. 우황청심원에 들어가는 물품[牛黃清心元所入]	439
11. 안신환에 들어가는 물품[安神丸所入]	441
12. 우황고에 들어가는 물품[牛黃膏所入]	441
13. 팔미원에 들어가는 물품[八味元所入]	442
14. 구미청심원에 들어가는 물품[九味清心元所入]	443
15. 경옥고에 들어가는 물품[瓊玉膏所入]	443
16. 수유 제조에 들어가는 물품[酥油劑造所入]	446
17. 율무 도말에 들어가는 물품[薏苡搗末所入]	447
18. 태을고 · 만병무우고 · 운모고에 들어가는 물품 [太乙膏 · 萬病無憂膏 · 雲母膏所入]	448
19. 진상하는 부용향에 들어가는 물품[進上芙蓉香所入]	449
20. 가제(加劑) 부용향에 들어가는 물품[加劑芙蓉香所入]	451
21. 연례로 제조하는 아교에 들어가는 물품[年例阿膠所入]	452
22. 별도로 만드는 아교에 들어가는 물품[別阿膠所入]	453

23. 빙매환에 들어가는 물품[冰梅丸所入]	454
24. 반하를 볍제할 때 들어가는 물품[法製半夏所入]	455
25. 마통차를 진상할 때 들어가는 물품 [進上馬通茶所入]	456
26. 여러 사람을 구료할 때의 마통차에 들어가는 물품 [多人求療馬通茶所入]	457
27. 타락죽에 들어가는 물품[駝酪粥所入]	458
28. 향유산에 들어가는 물품[香薷散所入]	460
29. 약해해에 들어가는 물품[藥蟹醢所入]	461
30. 소독보영단에 들어가는 물품[消毒保嬰丹所入]	463
31. 한식면에 들어가는 물품[寒食麵所入]	465
32. 익원산에 들어가는 물품[益元散所入]	466
33. 형화환 · 신명산에 들어가는 물품[螢火丸神明散所入]	466
34. 제호탕 · 계령원에 들어가는 물품[醍醐湯桂苓元所入]	468
35. 진상하는 의향의 곁과 속 봉과[進上衣香內外封裹]	469
36. 일곱 방에 진상하는 의향의 봉과[七房衣香封裹]	470
37. 신국 · 두시 · 반하국에 들어가는 물품[神麵 · 豆豉 · 半夏麵所入]	471
38. 백하염에 들어가는 물품[白荷鹽所入]	472
39. 자구합 가루에 들어가는 물품[紫口蛤粉所入]	472
40. 육향고에 들어가는 물품[六香膏所入]	473
41. 전약에 들어가는 물품[煎藥所入]	474
42. 납약에 들어가는 물품[臘藥所入]	477
43. 모과 건정에 쓰이는 물품[木瓜乾正所用]	483
44. 토흥환에 들어가는 물품[兔紅丸所入]	483
45. 산사전에 들어가는 물품[山查煎所入]	484
46. 모과전에 들어가는 물품[木瓜煎所入]	485
47. 사분산에 들어가는 물품[四糞散所入]	487

48. 동자 2명의 양찬으로, 1명당 매일 들어가는 수효 [童子二名糧餌, 每名每日]	488
49. 사분산 제조 때에 들어가는 물품[四叢散劑造時所入]	489
50. 괴실을 채취할 때에 쓰는 물품[槐實摘取時所用]	490
51. 남청대를 만들 때에 쓰이는 물품[藍青黛打造時所用]	490
52. 종약전 약재 건정 때에 쓰는 물품[種藥田藥材乾正時所用]	491
53. 주사환에 들어가는 물품[朱砂丸所入]	492
54. 자금단에 들어가는 물품[紫金丹所入]	493
55. 장원향에 들어가는 물품[長圓香所入]	495
56. 옥추단과 비한단에 들어가는 물품[玉樞丹·脾寒丹所入]	496
57. 옥추단제에 들어가는 물품[玉樞丹祭所入]	498
58. 침도감의 진배[鍼都監進排]	500
59. 인년 삼인침자[寅年三寅鍼子]	501
60. 도하하는 물품에 대한 질[都下秩]	501
61. 여러 가지 그릇붙이 훠손에 따른 수보 질 [各樣器皿隨毀修補秩]	504
62. 포진에 대한 질[鋪陳秩]	510
63. 도배에 대한 질[塗褙秩]	512
64. 겨울을 나는 데 들어가는 물품[過冬所入]	513

혜국지(惠局志) 박훈평 번역 · 벤구일 교열 • 515

혜국지 서문(惠局志序)	515
강해수 서문(康海秀序)	519
중수혜국지 서문(重修惠局志序)	521
혜국지 목록(惠局志目錄)	522

1. 연혁(沿革)	523
2. 솔속(率屬)	539
3. 고과(考課)	542
4. 식례(式例)	563
5. 지공(支供)	587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 박훈평 번역 · 벤구일 교열 · 601

총목(總目)	601
1. 관사(官舍)	604
2. 관제(官制)	606
3. 계사문안(啓辭問安)	613
4. 구전문안(口傳問安)	616
5. 분제조문안(分提調問安)	616
6. 의관단자문안(醫官單子問安)	617
7. 의녀문안(醫女問安)	617
8. 입시(入侍)	617
9. 설청(設廳)	620
10. 연례진상(年例進上)	626
11. 연례복정(年例卜定)	630
12. 연례제조(年例劑造)	631
13.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	633
14. 응하(應下)	640
15. 약열(藥劣)	641
16. 감제(監劑)	642
17. 옥추단제(玉樞丹祭)	644

18. 입번(入番)	645
19. 거동진참(舉動進參)	646
20. 좌기(坐起)	646
21. 봉사(奉使)	647
22. 급마(給馬)	650
23. 공궤(供饋)	651
24. 입계문서(入啓文書)	651
25. 문부(文簿)	652
26. 솔속(率屬)	654
27. 요포(料布)	656
28. 집물(什物)	658
29. 약전(藥田)	659
30. 잡례(雜例)	661

의정부약방식례(議政府藥房式例) 이정현 번역 · 박훈평 교열 • 663

1. 절목(節目)	663
2. 새로 추가된 절목(新節目)	701
3. 새로 추가된 정식(新定式)	703

약방등록(藥房謄錄) 박훈평 번역 · 벤구일 교열 • 709

1. 약방 세입에 대한 질(藥房稅入秩)	709
2. 봉약에 대한 질(封藥秩)	712
3. 전약 봉진에 대한 질(煎藥封秩)	713
4. 납약 봉진에 대한 질(臘藥封秩)	713

5. 기타(其他)	716
-----------------	-----

심약사례(審藥事例單) 박훈평 번역 · 벤구일 교열 · 719

완의(完議)	719
1. 경상감영(慶尙監營)	721
2. 충청감영(忠淸監營)	783
3. 전라감영(全羅監營)	794
4. 함경감영(咸鏡監營)	801
5. 황해감영(黃海監營)	812
6. 평안감영(平安監營)	820
7. 평안병영(平安兵營)	834
8. 강원감영(江原監營)	844
9. 남병영(南兵營)	851
10. 북병영(北兵營)	857
11. 종친부약방(宗親府藥房)	878
12. 통영 요포(統營料布)	878
13. 강화(江華)	882
14. 진주병영(晉州兵營)	883
15. 울산병영(蔚山兵營)	884
16. 청주병영(淸州兵營)	886
17. 전라병영(全羅兵營)	888
18. 황주병영(黃州兵營)	889
19. 의정부약방(議政府藥房)	891
20. 예조약방(禮曹藥房)	893
21. 충훈부약방(忠勳府藥房)	896
22. 내국월령 두 자리(內局月令二窠)	898

23. 형조월령 한 자리(刑曹月令一窠)	898
24. 사헌부월령 한 자리(司憲府月令一窠)	899
25. 제주(濟州)	899

산실청총규(產室廳總規) 구자훈 번역 · 남성우 교열 · 905

산실청법례(產室廳凡例)	905
산실청총규(產室廳總規)	909
태후(胎候)에 대한 전교가 내려진 뒤(胎候傳教後)	909
산실청을 설치할 날짜를 택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設廳擇日命下後) ..	910
진후하는 날짜(診候日字)	911
산실청을 설치하는 장소(產室排設處所)	914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排設日)	914
산실청을 설치한 후에 거행하는 일(設廳後舉行)	918
내의의 별입직(內醫別入直)	918
매달 초하루(逐月初一日)	919
산달 하루 전날(當朔前一日)	920
산달 초(當朔初)	921
대령하는 약물(待令藥物)	923
분만이] 시작될 때(產漸時)	925
분만한 뒤(解娩後)	926
세 제조(三提調)	928
목욕(洗浴)	929
태를 씻음(洗胎)	931
운모고(雲母膏)	932
권초제(捲草祭)	932

별단(別單)	935
산도, 죄생부, 차지법(產圖及催生符借地法)	937
소용 물품 및 서식(所用 · 書式)	942
처방(處方)	978
- 3부 색인	980
- 후기	982

1부 해제

조선의 의료 법령과 규정

조선의 의료 법령과 규정

박 훈 평

1. 머리말

한국의학사는 미키 사카에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이래, 1980년대 만 하더라도 김두종·손홍렬 등 소수의 연구자만 관심을 가지는 분야였다. 1990년대 들어 의학사 관련 학회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의학사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으며,¹ 2010년 들어 통신사를 비롯한 연구 분야의 확장과 미시사적인 접근 등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²

의학사의 전통적인 연구 주제는 먼저 의서(醫書)와 그 속에 담긴 저자의 의학 치료술 및 사상에 대한 것이고, 둘째로 의료 환경 연구 즉 의료제도와 의료인에 대한 것이다.³ 그런데 근래의 의료 제도사 연구는 1980년대 이전 시기에 비교하여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의학 통사(通史)에서 일부 다루어지거나 선행

1 신동원의 논문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1-43쪽을 참조하였다.

2 김성수의 논문 「한국 전근대의료사의 연구동향과 전망(2010-2019)」 383-389쪽을 참조하였다.

3 김성수의 앞 논문 379-380쪽을 참조하였다.

4 초기 제도사 관련 연구서는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 김두종의 『한국의학사』, 손홍렬의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가 대표적이다. 특히 손의 연구서는 제도사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었다. 1990년대 이후의 제도사 연구는 이들 3인의 연구성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연구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의 소논문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⁵ 필자는 평소 의료 제도사와 관련된 소논문을 써오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 글은 이번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국의학사료총서’ 중 하나로 조선의 의료 법령과 규정이 담긴 책을 발간하면서, 수록 자료의 개괄과 해제를 목적으로 쓰였다.

이 책에서는 의료 제도사와 관련된 내용을 크게 법령 자료와 의료관청 자료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법령 자료는 국전(國典), 수교(受教), 조례·사례·관서지, 형률서 및 판례집, 전례서(典禮書), 사찬(私撰) 법전, 기타의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분량이 워낙 방대하여 의료 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국전과 수교는 국가의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사례·관서지에서는 의약관청 이외의 관청 자료 중에서 의약 관련 규정들을 발췌했고, 형률서 및 판례집에서는 법의학 등 의약 관련 내용 등을 뽑았다. 전례서와 사찬 법전 등에는 의약 관련 법령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기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자료는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어서 연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이 책의 간행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하리라 기대한다.

의료관청 자료는 의료관청이나 의관(醫官)이 작성한 자료이며, 그중에 현존하는 주요 자료 7종을 골라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다. 의료관청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의료관청 자체의 기록으로, ‘삼의사(三醫司, 내의원·전의감·혜민서)’라는 제목으로 뮤을 수 있다. 《내의원정례》, 《혜국지》, 《내의원식례》의 3종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의료관청은 아니지만 파견되었던 의관에 대한 기록으로, ‘외임(外任, 지방 관원) 및 분차(分差, 파견)’라는 제목으로 뮤을 수 있다. 《의정부약방식례》, 《약방등록》, 《심약사례》, 《산실청총규》의 4종이 이에 해당한다.

⁵ 통사가 아닌 최근의 연구서로 이경록의 『조선전기의 의료제도와 의술』이 있다. 이는 의서습독 관 제도와 조선 전기 의료기구 등에 대한 논문을 모아 펴낸 것이다.

2. 법령 자료

2.1 국전(國典)

1392년 조선 개국 당시 조선에는 독자적인 법전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최신의 중국 법전인 《대명률大明律》(1389년)을 조선의 법전으로 삼은 후 그에 대한 번역 작업이 뒤따랐으니 1395년(태조 4)의 《대명률직해》가 최초였다. 그 이후에 간행된 《대명률강해》나 《대명률부례》도 《대명률》에 대한 주해서이다.⁶ 조선의 독자적인 법전은 성종 조 《경국대전(을사대전)》(1485년)의 간행으로 완성되었다. 《을사대전乙巳大典》 이전에도 정도전의 《조선경국전》(1394년) 등 여러 법전이 만들어졌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법전인 《을사대전》으로 흡수되었고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경국전》만 저자 정도전(鄭道傳)의 문집 《삼봉집》에 내용 일부가 전한다. 중종 조에는 《을사대전》의 해설서인 《경국대전주해》가 만들어졌다. 《경국대전》 이후 국전(國典)을 수정·증보하는 작업은 영조 조의 《속대전》, 정조 조의 《대전통편》, 고종 조의 《대전회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법전에 수록된 의약 관련 기록은 의료관청 제도와 소속 관원, 의과와 의학 취재 등 조선시대 의료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자료이다. 《경국대전》 및 《속대전》 등 조선의 국전은 초기 의학사 연구자들에 의해 일찍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경국대전주해》와 《대명률》 및 주해서들은 조선 전기 의료 법령의 기본적인 법전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사 연구자들에 의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서에 수록된 법전류는 10종으로 다음과 같다(표 1).

6 《대명률》 주해서의 서지 사항은 문소라의 논문 「조선시대 간행의 대명률 주석서 판본 분석」 9-15, 22, 46, 71쪽을 참조하였다.

표 1. 법전 서지 사항

	책 제목	권책	간행 시기	저자 · 편자	소장 기관
1	朝鮮經國典	2권	1394년	정도전	(삼봉집) 규장각 등
2	大明律直解	30권 4책	1395년	김지, 고사경	고려대학교 등
3	大明律講解	30권 4책	세종 연간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등
4	經國大典(乙巳大典)	6권 3책	1485년	최항 등	규장각 등
5	經國大典註解(前集)	1권 1책	1555년	안위, 민전	규장각
6	經國大典註解(後集)	2권 1책	1555년	안위	미상
7	大明律附例	30권 6책	1585년	미상	규장각 등
8	續大典	6권 4책	1746년	서종옥 등	규장각 등
9	大典通編	6권 5책	1785년	김치인 등	규장각 등
10	大典會通	6권 5책	1865년	조두순 등	규장각 등

《경국대전(을사대전)》은 주례(周禮)의 육전(六典) 체제를 따랐으며 이전 · 호전 · 예전 · 병전 · 형전 · 공전으로 구성되었다. 육전에 수록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전(吏典)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 관원의 품계 · 소속 · 임면 등을 수록하였고, 호전(戶典)은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예전(禮典)은 교육과 과거, 국가 의례, 외교 등을 수록하였고, 병전(兵典)은 군사와 관계된 군제, 군역 등을 수록하였다. 형전(刑典)은 형률 · 노비 · 상속 등을 수록하였고, 공전(工典)은 건설 · 유지 · 관리 등을 수록하였다.⁷ 이러한 《경국대전》의 육전 체제 형식은 조선의 마지막 국전인 《대전회통》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 전기의 국법(國法) 체계는 《경국대전》을 중심축으로 하되, 전례(典禮)는

⁷ 《경국대전》 체제는 정성식의 논문 「경국대전의 성립 배경과 체제」 57-58쪽을 요약하였다.

《국조오례의》를 준용하고, 형률은 《대명률》로 보완하는 형식이었다. 영조 조 《속대전》의 편찬은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일로 평가받는다. 국전은 《속대전》으로 전례는 《속오례의》로 각각 계승되었으나, 형률은 독립적인 서적이 아니라 《속대전》의 형전(刑典)으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인다.⁸ 정조 조의 《대전통편》은 이전의 국전과는 다르게 기존의 법령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왕인 정조의 수교(受教)를 담아낸 결과물이었다. 새롭게 실린 내용은 ‘增’이라고 표기되었으며, 정조의 수교가 새로 반영된 부분[大字]과 이전의 법령을 일부 조정한 부분[細註]으로 나누어진다. 즉 《대전통편》은 ‘기존 국전에서 윤곽이 잡힌 체제를 산식하여 조율하는 역할’이라 평가할 수 있다.⁹ 고종 조의 《대전회통》 또한 성격이 《대전통편》과 유사하다. 이전 국전의 규정을 ‘原(경국대전)', '續(속대전)', '增(대전통편)'으로 표기하고, 새로 추가한 내용을 ‘補’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증보된 내용은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비하여 별로 없다. 그러나 종친부(宗親府)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복구·확대하는 등 왕권 강화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¹⁰

2.2 수교(受教)

수교란 ‘국왕이 어떤 현안에 대하여 신료 개인이나 각 관서에서 상소 등으로 발의하면, 이를 고위 신료들이 논의를 거쳐 정리하고, 그 결과를 교지(教旨) 등으로 해당 관서에 내릴 때, 왕명을 받아 시행하는 관서에서 그 왕명을 부르는 용어’이다.¹¹ 즉 수교는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

8 《속대전》의 의의는 김백철의 논문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 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207-209쪽을 인용하였다.

9 《대전통편》의 의의는 김백철의 논문 「조선후기 정조대 법제 정비와 대전통편 체제의 구현」 344-348쪽을 인용하였다.

10 정호훈의 논문 「대원군 집정기 대전회통의 편찬」 14-17쪽을 참조하였다.

11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의 번역서 『역주 각사수교』 8쪽을 참조하였다.

여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문건이다. 이들 문헌은 다른 사료를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개별 수교들은 수교집(受教集)의 형태로 집적되어 간행되었고, 그 내용은 관서별로 정리되었다. 본서에 수록된 수교는 10종으로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수교 서지 사항

	책 제목	권책	간행 시기	소장 기관
1	大典續錄	6권 1책	1492년	규장각 등
2	大典後續錄	6권 1책	1543년	규장각 등
3	各司受教	1책	1546-1576년	규장각 등
4	受教輯錄	2권 2책	1698년	규장각 등
5	典錄通考	14권 7책	1707년	규장각 등
6	新補受教輯錄	2권 2책	1743년	규장각
7	增補典錄通考	6권 6책	영조 연간	규장각 등
8	特教定式	1책	1794년	규장각
9	受教贍錄	2책	1802-1885년	규장각 등
10	受教定例	1책	순조 연간	규장각 등

2.3 조례 · 사례 · 관서지

조례(條例)란 상위 법령인 법전과 수교를 근거로 각 관청에서 실무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업무 규정들을 말하며, 사례(事例)는 각 관청의 업무 규정 및 재정(財政) 등을 담은 문헌이다. 일반적으로 사례가 조례보다 다루는 영역이 더 넓다. 관서지(官署誌)는 해당 관청의 연혁 · 관원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수록한 문헌이다. 의약관청의 조례 · 사례 · 관서지는 3부(의료관청 자료)에 따로 모으고, 2부(법령 자료)에서는 의료관청 이외의 자료 중에서 의약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조례·사례·관서지는 12종으로 다음과 같다(표 3). 이러한 문헌들은 주로 숙종 이후에 해당 관청에서 만들어졌다.

표 3. 조례·사례·관서지 서지 사항

	책 제목	관련 관청	간행 시기		책 제목	관련 관청	간행 시기
1	通文館志	사역원	1720년	7	政院故事	승정원	정조 연간
2	春官志(2종)	예조	1744, 81년	8	宣惠廳事例	선헤청	1800년
3	貢弊	비변사	1753년	9	萬機要覽(2종)	호조, 병조	1808, 38년
4	市弊	비변사	1753년	10	書雲觀志	관상감	1818년
5	秋官志	형조	1781, 91년	11	度支五禮考	호조	1840-41년
6	春官通考	예조	1788년	12	六典條例	육조	1867년

2.4 형률서 및 판례집

형률(刑律)이란 형법에 관련된 법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약 관련 기록은 법의학 관련 규정이 주 내용이다. 본서에서는 당나라 고종의 명으로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쓴 《당률소의唐律疏議》, 1905년에 초간되고 1906년과 1908년에 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수록하였다.

2.5 전례서

전례서(典禮書)는 오례(五禮), 즉 가례(嘉禮)·길례(吉禮)·홍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를 담은 책으로, 유교적 통치이념을 내세운 조선에 있어서는 중시되었던 영역이다. 본서에 수록된 전례서는 7종으로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전례서

	책 제목	권책	간행 시기	저자	소장 기관 청구 기호
1	國朝五禮序例	5권 2책	1474년	신숙주, 강희맹	규장각 등
2	國朝五禮儀	8권 6책	1475년	신숙주, 정철	규장각 등
3	國朝續五禮儀	5권 4책	1744년	이종성	규장각 등
4	國朝續五禮儀補	2권 1책	1751년	신만	규장각 등
5	國朝喪禮補編	6권 6책	1758년	홍계희	규장각 등
6	國朝五禮通編	1책, 3책	1810년	이지영	규장각 등
7	大韓禮典	10권 10책	1898년	대한제국 사례소	장서각

2.6 사찬법전

구윤명(具允明)이 1761년에 처음 편찬하고 1787년에 증보한 사찬(私撰) 법전 《전율통보典律通補》는 《경국대전》 등 당시에 존재하는 법전을 하나로 종합한 책이다. 정조 시기의 현행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전이다.

2.7 기타

이병하(李炳夏)가 저술한 《해혹변의解惑辨疑》는 의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어휘집 자료이나, 저자가 전의감 관원을 지내면서 전의감 관원의 직제와 급료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¹²

12 박훈평의 논문 「李炳夏의 『解惑辨疑』 연구」 1-25쪽을 참조하였다.

3. 의료관청 자료

3.1 개괄

조선의 의료관청은 세종 대에 완성된 내의원·전의감·혜민서의 삼의사(三醫司) 체제가 갑오개혁 직전까지 지속된다. 삼의사 이외에도 제생원·활인서 등 의약과 관련된 관청들이 존재했으며, 의료관청이 아닌 곳에서 약방(藥房) 등 다수의 외임직 의학 관원들이 종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관청에서 만들어진 문헌들은 상당수가 현존하지 않는다. 대개 필사본으로 유일본이 었기 때문이다. 본서에 수록된 의료관청 자료도 7종뿐이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현존 자료 중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조선의 의료관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1차 자료들이다. 본서에 수록된 의료관청 자료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5).

표 5. 의학관청 자료의 서지 사항¹³

	책 제목	판사항	저술 시기	저자 · 편자	소장 기관	분량
1	內醫院定例	동활자본 (무신자)	1751년	朴文秀 등	규장각 등	35장
2	惠局志	필사본	1719년(편찬)	姜渭聘	규장각	31장
			1778년(종수)	卞泰恒		
3	內醫院式例	필사본	1810년경	내의원	규장각	15장
4	議政府藥房式例	필사본	1812년	의정부	규장각	21장
5	藥房贍錄	필사본	1820년 이후	종친부	규장각	8장
6	審藥事例	필사본	1873년	전의감	국립중앙도서관	76장
7	產室廳總規	필사본	1875년	미상	일본 杏雨書屋	32장

13 《혜국지》는 소장처의 해제에서 분량이 30장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1장이다.

3.2 자료별 해제

3.2.1 삼의사(三醫司) 문헌

① 내의원정례(內醫院定例)

《내의원정례》는 23책으로 구성된 《탁지정례度支定例》의 제6책에 실린 내의원에 관한 정례로서 여러 관청의 정례를 모은 《각사정례各司定例》의 일부분이다. 영조의 명으로 박문수 등이 편찬하였다. 《탁지정례》 중 《공상정례》와 《국호정례》만 1749년에 간행되었고, 《각사정례》의 다른 책들은 1750년에 초고가 완성되었고, 이후 수정을 거쳐 1751년까지 순차적으로 간행되었다.¹⁴ ‘內醫院定例’란 책 이름은 필자가 편의상 다른 문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붙였다.

본문은 63개 조로 ‘每朔恒式, 逐日進排, 每三日進排, 日記粧所入, 進御藥置簿冊所用, 各道藥貢案冊一件所入, 凡舉動時, 看病時, 赴燕看病時, 牛黃清心元所入, 安神丸所入, 牛黃膏所入, 八味元所入, 九味清心元所入, 瓊玉膏所入, 酥油劑造所入, 薏苡搗末所入, 太乙膏萬病無優膏雲母膏所入, 進上芙蓉香所入’ 등이다. 《내의원정례》는 별도로 간행된 적이 없어서 그동안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책의 존재 조차 의학사 연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 내용이 수록된 《탁지정례》조차 역사학계 내에서 일부 경제사학자들이나 활용하는 문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내의원에서 사용되던 물품 내역을 상세하게 담고 있어서 당시 내의원 연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또한 《내의원식례》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비교 자료로서도 유용하다.

¹⁴ 김덕진의 논문 「영조 대 정례서 편찬의 재정사적 의의」 23-24쪽을 참조하였다. 《내의원정례》는 《각사정례》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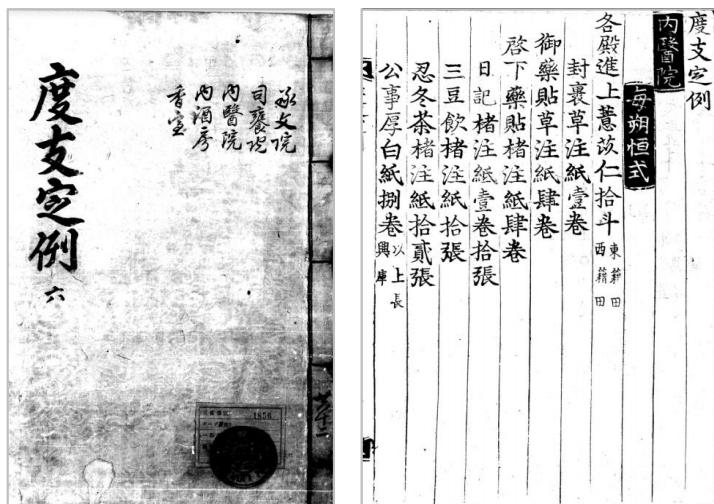


사진 1. 《탁지정례》 6책 표지 및 내의원 본문 첫 면 (규장각 소장)

② 혜국지(惠局志)

『혜국지』는 혜민서의 관청지로서 혜민서 구임이었던 강위빙(姜渭聘)이 1711년 처음 저술하였고, 1747년에 혜민서 교수였던 변석화(卞碩和)에 의해 증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의 아들인 혜민서 구임 변태항(卞泰恒)과 그 동료 2-3명에 의해 1778년(정조 2) 8월에 완결되었다. 현전본은 1874년(고종 10)에 강위빙의 6대손인 전의감 직장 강해수(姜海秀)가 필사한 책이다. 『혜국지』의 내용은 크게 서문, 목록, 본문으로 나뉜다. 서문은 저자인 강위빙, 필사자인 강해수, 중수(重修)한 변태항의 순으로 3편이 실려 있다.

본문은 ‘惠局志’로 시작하고 말미에 ‘惠局志 終’으로 끝맺는다. 본문 내용은 연혁(沿革), 솔속(率屬), 고과(考課), 식례(式例), 지공(支供)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29조로 세분하여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본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연혁 5조 : 官制, 衛職, 外任, 原籍, 官舍

솔속 3조 : 員役, 醫女, 奴婢

고과 8조 : 入屬, 褒貶, 祿試, 愛敏, 勸獎, 生徒考講, 醫女考講, 遷轉

식례 8조 : 入直, 分差, 供仕, 擬望, 購助, 該用文狀, 書籍, 什物

지공 5조 : 藥田, 貢物, 進排, 應役, 經費

《혜국지》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혜민서의 실제 운영과 규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1차 자료이다. 주부(主簿), 직장(直長) 등 녹관(祿官)의 담당업무, 혜민서 관아 건물들, 포폄(褒貶) 과정, 취재(取才) 과정, 약전(藥田)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이 책에서만 상세히 볼 수 있다.

둘째, 《혜국지》와 조선시대 다른 법전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혜민서뿐 아니라 전의감 관련 제도의 변천 추이를 살펴보는 데 유익하다. 1746년 간행된 《속대전》과 1785년 간행된 《대전통편》의 편찬 시기는 《혜국지》의 저술연대와 동시 대이므로 두 법전에 수록된 혜민서 규정을 더욱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혜민서는 전의감과 공통되는 업무가 많아서, 당시 전의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셋째, 18세기 조선에서 이루어지던 의료 제도 변화의 과도기적인 여러 면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조선 중기까지 교과서로 사용되지 않던 《의학입문》이 점차 널리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778년에 《혜국지》가 저술된 당시만 해도 혜민서 서고(書庫)에는 《의학입문》이 없었고, 취재와 생도의 고강(考講)에서도 활용되지 못했으며, 단지 권장청(勸獎廳)에서만 쓰였다. 이후 순조 때에 이르러 전라감영 등에서 간행되었고, 1834년에는 의과 초시에 정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한편 당약(唐藥)을 맡은 참봉직(參奉職)이 산료(散料, 월급)를 받는 자리로 변화되는 점은 혜민서에서 취급하는 약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짐작하게 한다. 그 밖에도 혜민서 교수의 문관 겸직 폐지를 통해 의관 종사자의 의서 해독에 대한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정황도 살필 수 있다.

넷째, 《혜국지》는 서지학 연구에 활용될 만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서적書籍〉조의 혜민서 소장 서책과, 본문에서 출전으로 기록된 문헌들은 향후 양의사

(兩醫司) 간행 문헌이 발굴될 때 서지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집물什物>조의 《동인경》과 《찬도맥》의 책판(冊版) 관련 내용은 《누판고》의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면이 있다. 특히 《찬도맥》은 훈련도감본의 복각본일 가능성에 있어 현존하는 《찬도맥》 목판본들과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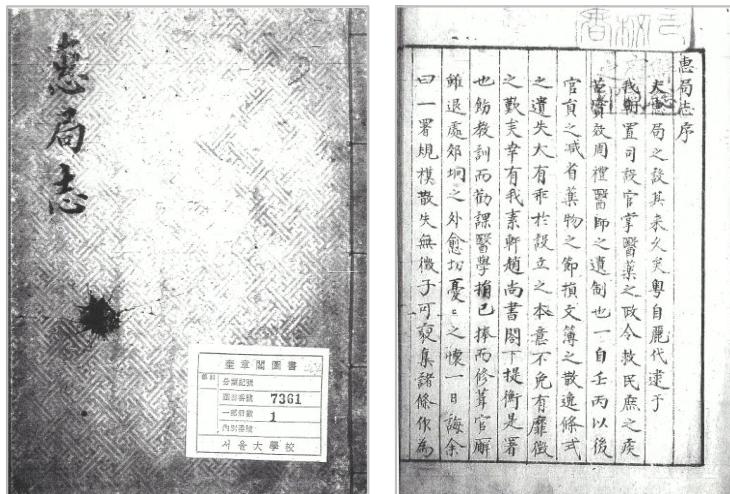


사진 2. 《해국지》 표지 및 서문 (규장각 소장)

③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

《내의원식례》는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 없이 목록과 본문만으로 이루어진 문헌이다. 본문은 순서대로 ‘官舍, 官制, 啓辭問安, 口傳問安, 分提調問安, 醫官單子問安, 醫女問安, 入侍, 設廳, 年例進上, 年例卜定, 年例劑造, 京外貢藥材, 應下, 藥劣, 監劑, 玉樞丹祭, 入番, 舉動進參, 坐起, 奉使, 紿馬, 供饋, 入啓文書, 文簿, 率屬, 料布, 什物, 藥田, 雜例’의 3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조문의

15 《해국지》의 해제는 박훈평·안상우의 논문 「해민서 관청지 해국지 편제와 내용 연구」 119-133쪽을 요약하였다.

분량은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크다. 내용으로 구분하여 임의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연혁 2조문 : 관사, 관제

문안과 입시 7조문 : 계사문안, 구전문안, 분제조문안, 의관단자문안, 의녀 문안, 입시, 설정

약재 지공 6조문 : 연례진상, 연례복정, 연례제조, 경외공약재, 응하, 약열

식례 9조문 : 감제, 옥추단제, 입번, 거동진참, 좌기, 봉사, 급마, 입계문서,

문부

약재 외의 지공 3조문 : 공궤, 솔속, 요포

기타 3조문 : 집물, 약전, 잡례

소장처인 규장각에서는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라고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나 표제 · 목록 · 본문에서는 단지 ‘내의원(內醫院)’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할 뿐이고, ‘식례(式例, 기준 전례)’란 제목으로 뚫일 수 없는 내용도 적지 않아서 그 명칭에 필자는 이의를 제기한다. 이 문헌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관청지를 지칭하는 ‘내의원지(內醫院志)’ 또는 ‘내국지(內局志)’라는 명칭이 더 적절해 보인다. 《내의원식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1807년 4월 이후 1814년 이전에 완성되었으니, 문헌의 저술시기는 대략 순조 10년(1810) 전후로 추정된다.

《내의원식례》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초반 내의원의 실제 운영과 규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1차 자료이다. 내의원 관아 건물들과 직방의 위치, 입진(入診)과 지탕제(持湯劑)의 절차, 약전의 규모 등은 본 문헌을 통해서만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에 사용된 의약 관련 용어와 단어의 개념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약열(藥劣)의 개념과 지탕제(持湯劑)의 뜻 등은 이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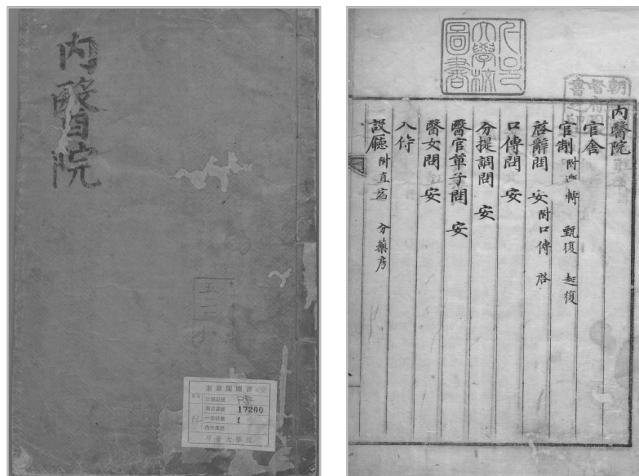


사진 3. 《내의원식례》 표지와 목록 (규장각 소장)

3.2.2. 외임(外任) 및 분차(分差) 문헌

① 의정부약방식례(議政府藥房式例)

《의정부약방식례》는 의정부에 소속된 의관인 약방(종8품)과 관련된 문헌이다. 본 문헌에는 별도의 서·발문이나 목록은 없고, 본문은 각각 다른 시기에 작성된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절목節目>은 첫 부분으로 1812년에 작성되었으며, 전체 원문의 22장 중 17장 분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먼저 전문(前文)과 14조로 된 <절목>, 6항목으로 된 <약채봉상藥債捧上>, <약방연례봉상상하도수藥房年例捧上上下都數>의 3부분으로 나뉜다. 다음의 <신절목新節目>은 둘째 부분으로 1장 분량이며 1832년에 작성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전문과 4항목으로 된 <불우비조응봉상질不虞備條應捧上秩>이다. 마지막 <신정식新定式>은 셋째 부분으로 4장 분량이며 1840년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전문과 5항목이 실려 있다.

16 《내의원식례》 해제는 박훈평의 논문 「내의원 편 내의원 식례의 저술 시기와 내용 연구」 39-51쪽을 요약하였다.

《의정부약방식례》는 19세기 의정부 약방의 실제 업무가 기록된 희귀한 자료이다. 약방은 의약 관련된 업무 외에 소속 관청의 행정 업무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의정부 약방은 외임관이 의정부에 바치는 물품의 관리를 하였고, 의정부 소속 관원들에게 숯과 땔감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였다.¹⁷

② 약방등록(藥房謄錄)

《약방등록》은 종친부에서 유사당상(有司堂上), 공주(公主) 등에게 인삼·전약(煎藥)·납약(臘藥)을 나누어주는 내역을 종친부 약방(종8품 1원, 종9품 1원)이 작성한 8장 분량의 문헌이다. 이 문헌의 경우 저술 시기를 특정할 만한 기록은 없다. 다만 내용상의 단서로 유추해보면 1820년(순조 20)에서 1864년(고종 원년) 사이로 볼 수 있다. 《의정부약방식례》처럼 분차(分差, 파견) 약방이 해당 관청에서 수행하던 실제 업무 사례를 살필 수 있다.

③ 심약사례(審藥事例)

《심약사례》는 경상감영 심약(審藥)을 비롯한 25종의 각 도 심약과 약방(藥房)에 대한 사례집이다. 책의 최종 완성 연도는 1873년 12월 24일 이후지만, 본문 중간에 19세기에 작성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다. 책의 작성 주체는 전의감 소속 관원으로 추정된다. 심약을 분차(分差, 파견)하는 기관은 전의감과 혜민서이나, 내용 중에 전의감 위주로 기록된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책에는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이 없고, 서문 역할을 하는 완의(完議)와 각 심약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경상감영의 내용이 특히 상세하여 전체의 1/3 분량을 차지하며, 경상감영·충청감영·전라감영·황해감영의 조목에만 다시 세목이 존재한다.

이 책을 통하여 심약은 중앙 의료에 필요한 물품 조달이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고위직 관료(감사 등)의 치료 및 군의관으로서

17 《의정부약방식례》 해제는 박훈평의 논문 「의정부약방식례 연구」 21-30쪽을 요약하였다.

의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약재와 물품을 진상하는 규례와 이것을 지급하는 규례이다. 만약 심약의 임무 가운데 의생 교육 등이 중요했다면 이와 관련된 규례 등이 존재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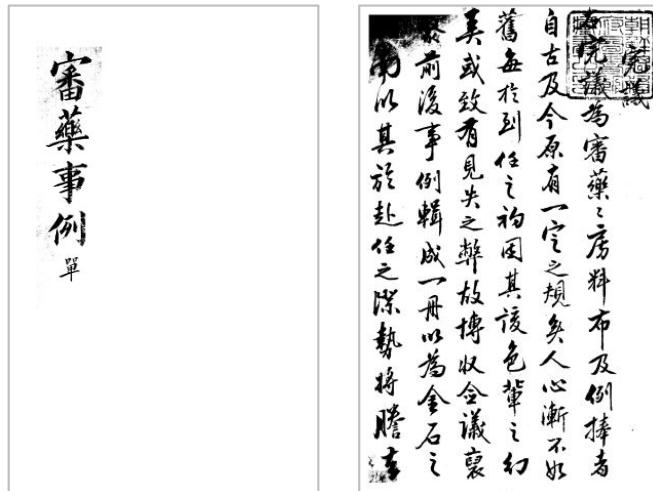


사진 4. 《심약사례》 표지와 완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④ 산실청총규(產室廳總規)

《산실청총규》는 조선시대 산실청에 대한 일종의 업무 규정집이다. 산실청이란 빈궁(嬪宮, 중전과 세자빈)이 분만할 때, 산달 3달 전에 설치하는 임시 기구였다. 이 책은 순종의 탄생 이후(1874년 2월 14일) 처음 저술되었고, 1875년 4월 11일 이후에 일부 바뀐 사례를 토대로 추가 수정이 이루어졌다. 서문·목차·발문이 없으며, 내용상에도 조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2장 분량의 산실청법례와 28장 분량의 산실청총규는 제목을 두어 구분하였다.

고종 초기에 법전을 개정하면서 여러 제도를 보완·정비하였고, 각 관청에서 도 기존 규정집을 개정하게 되었다. 정조 때 간행되었던 《대전통편》이 1865년 12월 《대전회통》으로 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조와 병조의 규정집인 《양전 편고兩典便考》가 간행되었으며, 1866년 12월에는 육조 관련 법전인 《육전조례

六典條例》가 완성되었다. 승정원의 《은대조례銀臺條例》(1870년)와 종친부의 《종친부조례宗親府條例》(1870년) 등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원군의 집권기(1864-1873년)와 거의 일치한다. 장유승은 고종 조 법전 개정과 각 관청 규정집의 간행이 대원군의 집권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원군은 이들 문헌을 통해 종친부의 위상 강화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고, 자신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했다.¹⁸

《산실청총규》는 1874년 시작하여 1875년에 정리를 마쳤으므로 다른 규정집들의 편찬 시기보다 조금 늦으며, 대원군 집권기가 끝난 이후이다. 《산실청총규》에 운현궁이 한 차례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약물 수급에 관한 보충 기록이다. 또한 종실 중에 임명할 수 있었던 권초관(捲草官)을 정관(政官,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대원군 집권 이전 시기의 규정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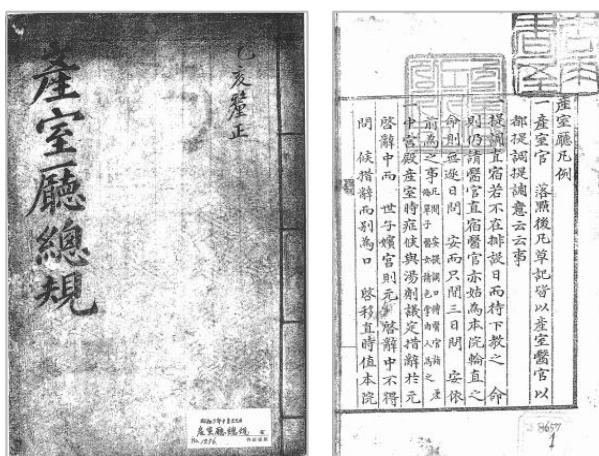


사진 5. 《산실청총규》 표지와 범례 (일본 杏雨書屋 소장)

18 이강욱의 번역서 『국역 은대조례』 17-18쪽 장유승의 해제를 참조하였다.

19 《산실청총규》 해제는 구자훈의 번역서 『국역 산실청총규』 130-137쪽에 실린 필자의 해제를 요약하였다.

4. 맷음말

지금까지 이 책에 수록된 법령 자료와 의료관청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의료관청 자료는 의료 제도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책의 서지 · 내용 · 의의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수록하고자 하였다. 현재 알려진 의료 제도사 관련 주요 자료들을 하나의 책에 모아 놓았으니 향후 의학사 연구자들에게 1차 사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 조선시대 의료 제도를 재구성하기에는 아직 성진 체처럼 여백이 많다. 더 많은 양질의 자료가 발굴되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內醫院式例》

《度支定例(內醫院定例)》

《產室廳總規》

《審藥事例》

《藥房贍錄》

《議政府藥房式例》

《惠局志》

구자훈 역. 『국역 산실청총규』. 대전 : 한국한의학연구원. 2016.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 탐구당. 1981.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 : 수서원. 1988.

이강욱 역. 『국역 은대조례』. 서울 : 한국고전번역원. 2012.

이경록. 『조선전기의 의료제도와 의술』. 서울 : 역사공간. 2020.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역주. 『역주 각사수교』. 서울 : 청년사. 200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 思文閣. 1991.

김덕진. 영조대 정례서 편찬의 재정사적 의의. 장서각 27집. 2012.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 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 현실 68권. 2008.

_____. 조선후기 정조대 법제 정비와 대전통편 체계의 구현. 대동문화연구 64권. 2008.

김성수. 한국 전근대의료사의 연구동향과 전망(2010-2019). 의사학 29-2호. 2020.

문소라. 조선시대 간행의 대명률 주석서 판본 분석.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3.

박훈평, 안상우. 혜민서 관청지 혜국지 편제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7-1호. 2014.

박훈평. 내의원 편 내의원식례의 저술 시기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8-1호. 2015.

_____. 심약사례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32-2호. 2019.

_____. 의정부약방식례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33-1호. 2020.

_____. 李炳夏의 『解惑辨疑』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4-1호. 2021.

신동원.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의사학 19-1호. 2010.

정성식. 경국대전의 성립 배경과 제제. 동양문화연구 13호. 2013.

정호훈. 대원군 집정기 대전회통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35호. 2005.

2부 법령 자료 (총론)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이전(吏典)

1. 내명부(內命婦)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内命婦] … 正八品 典贊·典飾·典藥 …

[世子宮] 從九品 掌藏·掌食·掌醫.

[내명부] … 정8품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 …

[세자궁] 종9품 장장(掌藏)·장식(掌食)·장의(掌醫).

▶ 吏典 > 内命婦 > [内命婦世子宮]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内命婦] … 典贊·典飾·典藥 正八品 …

[내명부] …,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 정8품 …

▶ 吏典 上 > 内命婦 > [大典] > [嬪 以下]

世子宮 …, 掌藏·掌食·掌醫 從九品.

세자궁 …, 장장(掌藏)·장식(掌食)·장의(掌醫) 종9품 .

▶ 吏典 上 > 内命婦 > [大典] > [世子宮]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內命婦 … 典贊 · 典飾 · 典藥 正八品 … . 世子宮 … 掌藏 · 掌食 · 掌醫 從九品.

내명부 … 전찬(典贊) · 전식(典飾) · 전약(典藥) 정8품 … . 세자궁 … 장장(掌藏) · 장식(掌食) · 장의(掌醫) 종9품 .

▶ 吏典 > 内命婦 > [大典]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內命婦 [經] ○尙宮 · 守閨以下, 宮人職. [增] … . 從九品 … ○世子宮 掌藏 · 掌食 · 掌醫.

[經]

내명부 [경국대전] ○상궁 · 수규(守閨) 이하는 궁인직이다. [대전통편] … . 종9품 … ○

세자궁(世子宮)의 장장(掌藏) · 장식(掌食) · 장의(掌醫)이다. [경국대전]

▶ 吏典 > 官階 > [內外命婦]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尙宮. 以下係宮人職 … 典贊 · 典飾 · 典藥 正八品 …

○상궁. 이하는 궁인직이다 … 전찬(典贊) · 전식(典飾) · 전약(典藥) 정8품 …

▶ 吏典 > 内命婦 > [内命婦 宮人職]

○守閨. 以下係宮人職 … , 掌藏 · 掌食 · 掌醫 從九品.

○수규. 이하는 궁인직이다 … , 장장(掌藏) · 장식(掌食) · 장의(掌醫) 종9품 .

▶ 吏典 > 内命婦 > [世子宮 宮人職]

2. 경관직(京官職)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正二品衙門〕 〔六曹〕 吏曹掌文選·勳封·考課之政. … 禮曹稽制司掌儀式·制度·朝會·經筵·史官·學校·科舉·印信·表箋·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等事. 典享司掌宴享·祭祀·牲豆·飲膳·醫藥等事. …

〔정2품아문〕 〔육조〕 이조는 문관의 선발·공훈과 봉작·고과(考課)와 관련된 정사를 맡는다. … 예조의 계제사(稽制司)는 의식·제도·조회(朝會)·경연(經筵)·사관(史官)·학교·과거·인장·표문과 상정문·책봉문·천문(天文)·물시계·나라의 제삿날·임금의 사당 이름·나라의 상례와 장례 등의 일을 맡는다. 예조의 전향사(典享司)는 연회·제례·제수와 제기·음식·의약 등의 일을 맡는다. …

▶ 吏典 > 京官職 > 正二品衙門 > 六曹

〔內醫院〕 掌和御藥. 都提調·提調各一員, 副提調一員. 承旨 ○遞兒兩都目.

正三品 正一員

從四品 前正一員

從五品 判官一員

從六品 主簿一員

從七品 直長三員

從八品 奉事二員

正九品 副奉事二員

從九品 參奉一員

〔내의원〕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를 맡는다. 도제조와 제조가 각각 1원, 부제조가 1원이다. 승지가 겸직한다 ○다음의 관원을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정3품 정(正) 1원

종4품 침정 1원

종5품 판관 1원
종6품 주부 1원
종7품 직장 3월
종8품 봉사 2원
정9품 부봉사 2월
종9품 참봉 1원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內醫院 · 尚衣院

〔典醫監〕掌醫藥供內用及賜與。提調二員。○取才分數多者，判官以上一員久任。久任及教授·訓導外，遞兒兩都目。取才居次者，差外任。○主簿以上，竝以出身者除授。○習讀官三十員。

正三品 正一員
從三品 副正一員
從四品 簾正一員
從五品 判官一員
從六品 主簿一員，醫學教授二員
從七品 直長二員
從八品 奉事二員
正九品 副奉事四員，醫學訓導一員
從九品 參奉五員

〔전의감〕 궐내에서 쓸 의약과 특전으로 줄 의약을 맡는다. 제조가 2원이다.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판관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관원 한 사람을 구임관(久任官)으로 둔다. 구임관·교수·훈도 이외의 관직은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주부 이상의 자리에는 모두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습독관은 30원이다.

정3품 정(正) 1원
종3품 부정 1원

종4품 첨정 1원
종5품 판관 1원
종6품 주부 1원, 의학교수 2원
종7품 직장 2원
종8품 봉사 2원
정9품 부봉사 4원, 의학훈도 1원
종9품 참봉 5원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典醫監 · 司譯院

[惠民署] 掌醫藥救活民庶. 提調二員. ○取才分數多者. 直長以上一員久任. 久任外, 遞兒兩都目. 取才居次者, 差外任.

從六品 主簿一員, 醫學教授二員 一, 文官兼.
從七品 直長一員
從八品 奉事一員
正九品 醫學訓導一員
從九品 參奉四員

[혜민서] 일반 백성들을 의약으로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제조가 2원이다.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직장 이상 한 사람을 구임관으로 둔다. 구임관 이외에는 모두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종6품 주부 1원, 의학교수 2원 1원은 문관이 겸임한다.
종7품 직장 1원
종8품 봉사 1원
정9품 의학훈도 1원
종9품 참봉 4원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惠民署 · 圖畫署 · 典獄署

[活人署] 掌救活都城病人. 提調一員. 參奉醫員, 遞兒兩都目.

從六品 別提四員

從九品 參奉二員

[활인서] 도성 안의 급한 환자들에 대한 구제를 맡는다. 제조가 1월이다. 참봉은 의원으로 체아직이며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종6품 별제 4월

종9품 참봉 2원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活人署 · 瓦署 · 歸厚署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典醫監 · 觀象監 · 惠民署久任官, 並令取才, 隨其分數多少, 典醫監 · 觀象監則判官以上, 惠民署則直長以上職, 陞降除授. 取才未入格者, 授參奉.

○전의감 · 관상감 · 혜민서의 구임관은 모두 취재시험을 시행한 후 성적의 순위에 따르고, 전의감 · 관상감의 판관 이상과 혜민서 직장 이상의 관원도 품계를 높이거나 낮추어 임명한다. 취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참봉으로 임명한다.

▶ 吏典 > 久任 > [典醫監 · 觀象監…]

경국대전주해 전집(經國大典註解 前集) 1555년

六曹註, 教授 · 別提 · 訓導, 擇本業人差之, 餘教授 · 訓導同.

本業人, 專指本學人而言. 但以禮典獎勸條, ‘醫書教授內, 生員進士, 以其仕日, 准圓點’之語觀之, 習讀, 可通稱本業. 而舊大典禮典, 不錄此語, 必是後來, 以習讀爲教授而仍錄之也. 然則在今, 不得不通稱也.

육조의 주(註)에서 말한 ‘교수 · 별제 · 훈도는 그 분야의 본업인(本業人, 전문가)을 골라 임명한다. 다른 교수와 훈도도 같다.’라는 구절.¹

본업인이란 오로지 해당 학문을 익힌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만, <예전 · 장권>에서 ‘의학교수 중 생원 · 진사 입격자는 그 근무 일수를 성균관에서 공부한

¹ 《경국대전》 이전-경관직-정2품아문-육조 부분을 가리킨다.

날에 준한다.’라는 구절의 의도로 미루어 보면 습독관도 본업인으로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경국대전·예전》에서 이 말을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부터 분명 습독관을 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고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습독관도 본업인으로 통칭해야 한다.

▶ 吏典 > 京官職 [教授別提訓導…]

경국대전주해 후집(經國大典註解 後集) 1555년

醫藥.

醫, 治病工也. 藥, 治病草也.²

‘의약(醫藥)’이라는 말.

의(醫)란 병을 고치는 기술이며, 약(藥)이란 병을 고치는 풀이다.

▶ 吏典 > 六曹 > 醫藥

內醫院條

和御藥

和, 去聲, 調也. 前漢志, 百藥齊和.³

내의원 조목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

화(和)란 거성이니 조제한다는 뜻이다. 《전한서·예문지》에 ‘온갖 약을 조제한다.’라는 구절이 있다.⁴

▶ 吏典 > 內醫院條 > 和御藥

2 《경국대전》 이전-경관직-정2품아문-육조 부분의 ‘典享司掌宴享·祭祀·牲豆·飲膳·醫藥等事’에 대한 주해이다.

3 《경국대전》 이전-경관직-정3품아문-내의원·상의원 부분의 ‘內醫院, 掌和御藥’에 대한 주해이다.

4 《한서·예문지》의 ‘醫經者 … 調百藥齊和之所宜’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三醫司已經本衙門六品職者，東西班牙職除授時，皆從初入仕例，而從品數去官者，依舊例施行。康熙丙寅承傳⁵

○삼의사(三醫司) 관원 중 이미 본 아문(衙門)에서 6품의 관직을 거친 사람에게 동·서반 실직(實職)을 제수할 때에는 모두 처음 관직을 시작하는 사람의 예를 따르되, 품계에 따라 거관(去官)⁶하는 일은 전례에 따라 시행한다. 강희 병인년(1686년, 숙종 12년)의 전교

▶ 吏典 > 官職 > 41. [三醫司已經本衙門 …]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三醫司已經本衙門六品職者，東西班牙職除授時，皆從初入仕例，而從品數去官者，依舊例施行。康熙丙寅承傳⁷

○삼의사(三醫司) 관원 중 이미 본 아문(衙門)에서 6품의 관직을 거친 사람에게 동·서반 실직(實職)을 제수할 때는 모두 처음 관직을 시작하는 사람의 예를 따르되, 품계에 따라 거관(去官)하는 일은 전례에 따라 시행한다. 강희 병인년(1686년, 숙종 12년)의 전교

▶ 吏典 上 > 京官職 > 受敎輯錄 > [三醫司已經本衙門…]

禮曹掌禮樂·祭祀·宴享·朝聘·學校·科舉之政。… 稽制司掌儀式·制度·朝會·經筵·史官·學校·科舉·印信·表箋·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等事。典享司掌宴享·祭祀·牲豆·飲膳·醫藥等事。…

예조는 예악(禮樂)·제사·연회·조빙(朝聘)·학교·과거에 대한 정사를 맡는다。… 계제사(稽制司)는 의식·제도·조회(朝會)·경연(經筵)·사관(史官)·학

5 《숙종실록》 숙종 12년 2월 29일.

6 거관(去官) : 관직에 복무하다가 연한이 차서 그 직을 떠나는 것이다. 거관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기기도 하고, 관직에서 아주 떠나기도 한다.

7 《숙종실록》 숙종 12년 2월 29일.

교·과거·인장·표문과 상정문·책봉문·천문(天文)·물시계·나라의 제삿날·임금의 사당이름·나라의 상례와 장례 등의 일을 맡는다. 예조의 전향사(典享司)는 연회·제례·제수와 제기·음식·의약 등의 일을 맡는다. ...

▶吏典 上 > 正二品衙門 > [大典] > 禮曹

內醫院掌和御藥. 都提調·提調各一員, 副提調一員 承旨. ○遞兒兩都目. 正一員
正三品, 僉正一員 從四品, 判官一員 從五品, 主簿一員 從六品, 直長三員 從七品, 奉
事二員 從八品, 副奉事二員 正九品, 參奉一員 從九品.

내의원은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를 맡는다. 도제조·제조 각 1원, 부제조
1원. 승지가 겸직한다. ○다음의 관원을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
를 한다. 정(正) 1원 정3품, 첨정 1원 종4품, 판관 1원 종5품, 주부 1원 종6품, 직장
3원 종7품, 봉사 2원 종8품, 부봉사 2원 정9품, 참봉 1원 종9품이다.

▶吏典 上 > 正三品衙門 > [大典] > 內醫院

典醫監掌醫藥供內用及賜與. 提調二員. ○取才分數多者, 判官以上一員久任.
久任及教授·訓導外, 遷兒兩都目. 取才居次者, 差外任. ○主簿以上, 並以出身
者, 除授. ○習讀官三十員. 正一員 正三品, 副正一員 從三品, 僉正一員 從四品, 判
官一員 從五品, 主簿一員 · 醫學教授二員 從六品, 直長二員 從七品, 奉事二員 從八
品, 副奉事四員 · 醫學訓導一員 正九品, 參奉五員 從九品.

전의감은 궐내에서 쓸 의약과 특전으로 줄 의약을 맡는다. 제조 2원.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판관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을 구임관(久任官)으로 둔다. 구임관·교수·훈도 이외의 관직은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주부 이상의 자리에는 모두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습독관은 30원이다. 정(正) 1원 정3품, 부정 종3품, 첨정 1원
종4품, 판관 1원 종5품, 주부 1원 · 의학교수 1원 종6품, 직장 2원 종7품, 봉사
2원 종8품, 부봉사 4원 · 의학훈도 1원 정9품, 참봉 5원 종9품.

▶吏典 上 > 正三品衙門 > [大典] > 典醫監

惠民署掌醫藥·救活民庶. 提調二員. ○分數多者, 直長以上一員久任, 久任外, 遞兒兩都目. 取才居次者, 差外任. 主簿一員·醫學教授二員 從六品. 一, 文官兼, 直長一員 從七品, 奉事一員 從八品, 醫學訓導一員 正九品, 參奉四員 從九品.

혜민서는 일반 백성들을 의약으로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제조 2월.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직장 이상 한 사람을 구임관으로 둔다. 구임관 이외에는 모두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주부 1원·의학교수 2원 종6품. 1원은 문관이 겸한다. 직장 1원 종7품, 봉사 1원 종8품, 의학훈도 1원 정9품, 참봉 4원 종9품.

▶ 吏典 上 > 從六品衙門 > [大典] > 惠民署

活人署掌救活都城病人. 提調一員. 參奉·醫員遞兒, 兩都目. 別提四員 從六品, 參奉二員 從九品.

활인서는 도성 안의 급한 환자들에 대한 구제를 맡는다. 제조가 1월이다. 참봉은 의원으로 체아직이며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별제 4원 종6품, 참봉 2원 종9품이다.

▶ 吏典 上 > 從六品衙門 > [大典] > 活人署

○典醫監·觀象監·惠民署久任官, 竝令取才, 隨其分數多少, 典醫監·觀象監, 則判官以上, 惠民署, 則直長以上職, 陞降除授. 取才未入格者, 授參奉.

전의감·관상감·혜민서의 구임관은 모두 취재시험을 시행한 후 성적의 순위에 따르고, 전의감·관상감의 판관 이상과 혜민서 직장 이상의 관원도 품계를 높이거나 낮추어 임명한다. 취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참봉으로 임명한다.

▶ 吏典 下 > 久任 > 繢錄 > [典醫監·觀象監·惠民署]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觀象監教授·吏文學官, 以四十五朔遷轉, 治腫教授, 亦依此例. 雍正甲辰承傳⁸

○관상감교수·이문학관은 45개월마다 자리를 옮기고, 치종교수(治腫教授)도

이) 방식을 따른다. 응정 갑진년(1724년, 경종 4)에 받은 전교

▶ 吏典 > 京官職 > 19. [觀象監教授…]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久任〔續錄〕久任人員，各其司提調·該曹堂上，一同磨鍊，移文本曹，啓聞，置簿。○典醫監·觀象監·惠民署久任官，竝令取才，隨其分數多少，典醫監·觀象監，則判官以上，惠民署，則直長以上職，陞降除授。取才未入格者，授參奉。
…

구임관(久任官). [대전속록] 구임관은 각 관청의 제조와 해당 육조의 당상관이 합의하여 결정한 후 본 이조에 이문(移文)하여 계문(啓聞)하고 책에 기록해 둔다. ○전의감·관상감·혜민서의 구임관은 모두 취재시험을 시행한 후 그 성적 순위에 따르고, 전의감·관상감의 판관 이상과 혜민서의 직장 이상의 관원도 품계를 높이거나 낮추어 임명한다. 취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참봉으로 임명한다. …

▶ 吏典 > 久任 > 《續錄》

[受教輯錄] 各司久任官，依大典遷轉安徐。… 三醫司三品官之子孫，勿許承蔭。萬曆戊寅承傳 … ○未准職，則雖資窮，勿許陞堂上。天啓甲子承傳 … ○堂上賞加，資窮·准職者外，不得濫授。順治丁亥承傳 ○重試參下官，依參上官加資·准職例，陞出六品。順治丁酉承傳 … ○登科者年滿五十，則雖有資，亦出六品康熙戊午承傳 … ○六品以上陞敍，則越品後，不得通用，參下官陞敍，限六品通用。康熙乙丑承傳 … ○京各司堂下官仕滿者，依守令瓜滿例，遞改，其中有功勞者調用。康熙丙寅承傳 ○三醫司已經本衙門六品職者，東西班牙實職除授時，皆從初入仕例，而從品數去官者，依舊例施行。康熙丙寅承傳 …

[수교집록] 각 관청의 구임관은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천전(遷轉, 관직을 옮김)을 금지한다. …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은 음직을 허용하지 말라.

8 참조 : 《승정원일기》 경종 4년 5월 5일.

만력 무인년(1578년, 선조 11)에 받은 전교 … ○아직 준직(准職, 정3품 당하관직)을 거치지 못했으면 비록 자궁(資窮, 당상관 직전의 품계)이 되었더라도 당상관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천계 갑자년(1624년, 인조 2)에 받은 전교 … ○당상의 품계를 상으로 더해줄 때 자궁이면서 준직에 있는 사람 외에는 함부로 줄 수 없다. 순치 정해년(1647년, 인조 25)에 받은 전교. ○중시(重試)에 합격한 침하관(參下官)은 ‘침상관(參上官)이 자급이 더해져 준직이 된 전례’에 따라 6품의 관직으로 올려 임명한다. 순치 정유년(1657년, 효종 8)에 받은 전교 … ○과거에 급제한 자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직 6품까지 품계가 남아있더라도 6품의 관직으로 올려 임명한다. 강희 무오년(1678, 숙종 4)에 받은 전교 … ○6품 이상의 관원에게 품계보다 올려서 벼슬을 제수했다면 품계를 월반하여 올린 후에는 바로 임명할 수 없고, 침하관에게 품계보다 올려서 벼슬을 제수하더라도 6품의 관직으로 제한하여 임명한다. 강희 을축년(1685년, 숙종 11)에 받은 전교 … ○한양 각 관청의 당하관으로 근무 일수가 찬 사람은 ‘수령의 임기가 찬 예’에 따라 체직(遞職, 벼슬을 교체함)하되, 그 가운데 공로가 있는 자를 골라 임명한다. 강희 병인년(1686년, 숙종 12)에 받은 전교 ○삼의사 관원 중 이미 본 아문(衙門)의 6품 관직을 거친 사람에게 동·서반 실직을 제수할 때에는 모두 ‘처음 벼슬을 시작하는 사람의 사례’에 따르되, 품계에 따라 거관(去官)하는 것은 전례에 따라 시행한다. 강희 병인년(1686년, 숙종 12)에 받은 전교 …

▶ 吏典 > 京官職 > 《受敎輯錄》

[新補受敎] … ○雜歧, 如能麼兒 · 學官 · 教授之類, 勿論生進幼學, 并以年三十爲限, 許差, 蘆唱引儀, 則年二十爲限, 擬差. … ○醫 · 譯 · 中 · 庶贈職, 不許參判 · 摠管, 加設同知贈職, 不當以左 · 右尹爲之. 康熙癸巳承傳 … ○各廳久勤之人, 其廳之人, 方在實職, 則毋得疊授. 康熙戊戌承傳 … ○直長, 仕日未滿十日以上者, 陞六品. 正卿, 無口傳差出之規. 雍正癸卯承傳 ○觀象監教授 · 吏文學官, 以四十五朔遷轉, 治腫教授, 亦依此例. … 雍正甲辰承傳 …

[신보수교집록] … ○잡기(雜歧)를 통해 관직에 나간 자 중에서 능마아(能麼兒) · 학관(學官) · 교수(教授)와 같은 부류는 생원 · 진사 · 유학을 논하지 말고

모두 30세를 한도로 임명할 수 있고, 여창(臚唱, 식의 절차를 소리 높여 읊는 일)하는 인의(引儀)는 20세를 한도로 의망(擬望, 추천)하여 임명한다. … ○의관·역관·중인·서인의 증직(贈職)은 참판(參判)과 총관(總管)을 허락하지 않으며, 가설(加設)한 동지(同知)의 증직은 좌윤(左尹)·우윤(右尹)을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강희 계사년(1713년, 숙종39)에 받은 전교 … ○각 관청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관청의 사람이 실직에 있거든 오래 근무한 사람을 실직에 거듭 제수치 말라. 강희 무술년(1718년, 숙종 44)에 받은 전교 … ○도목정사 때 근무한 날을 채우지 못한 것이 10일 이내인 직장(直長)은 6품으로 올려준다. 정경(正卿)을 구두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옹정 계묘년(1723년, 경종 3)에 받은 전교 ○관상감교수·이문학관은 45개월마다 자리를 옮기고, 치종교수도 이 방식을 따른다. 옹정 갑진년(1724년, 경종 4)에 받은 전교 …

▶ 吏典 > 京官職 > 《新補受敎》

禮曹掌禮樂·祭祀·宴享·朝聘·學校·科舉之政. … 典享司, 掌宴享·祭祀·牲豆·飲膳·醫藥等事. …

예조는 예악(禮樂)·제사·연회·사대 및 교린·학교·과거에 대한 정사를 맡는다. … 예조의 전향사는 연회·제례·제수와 제기·음식·의약 등의 일을 맡는다. …

▶ 吏典 > 正二品衙門 > [大典] > 禮曹

內醫院 掌和御藥. 都提調·提調各一員, 副提調一員 承旨. 遞兒兩都目. 正一員 正三品, 僉正一員 從四品, 判官一員 從五品, 主簿一員 從六品, 直長三員 從七品, 奉事二員 從八品, 副奉事二員 正九品, 參奉一員 從九品.

내의원은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를 맡는다. 도제조·제조 각 1원, 부제조 1원 승지가 겸직한다. ○다음의 관원을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정(正) 1원 정3품, 침정 1원 종4품, 판관 1원 종5품, 주부 1원 종6품, 직장 3원 종7품, 봉사 2원 종8품, 부봉사 2원 정9품, 참봉 1원 종9품.

▶ 吏典 > 正三品衙門 > [大典] > 內醫院

典醫監掌醫藥·供內用及賜與。提調二員。○取才，分數多者。判官以上一員久任及教授訓導外，遞兒，兩都目。取才居次者，差外任。○主簿以上，竝以出身者，除授。○習讀官三十員。正一員 正三品，副正一員 從三品，僉正一員 從四品，判官一員 從五品，主簿一員。○醫學教授二員 從六品，直長二員 從七品，奉事二員 從八品，副奉事四員。○醫學訓導一員 正九品，參奉五員 從九品。

전의감(典醫監)은 궐내에서 쓸 의약과 특전으로 줄 의약을 맡는다. 제조 2원.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판관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을 구임관(久任官)으로 둔다. 구임관·교수·훈도 이외의 관직은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주부 이상의 자리에는 모두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습독관은 30원이다. 정(正) 1원 정3품, 부정 종3품, 첨정 1원 종4품, 판관 1원 종5품, 주부 1원·의학교수 1원 종6품, 직장 2원 종7품, 봉사 2원 종8품, 부봉사 4원·의학훈도 1원 정9품, 참봉 5원 종9품.

▶ 吏典 > 正三品衙門 > [大典] > 典醫監

惠民署掌醫藥·救活民庶。提調二員。取才分數多者。直長以上，一員久任。久任外遞兒，兩都目。取才居次者，差外任。主簿一員，醫學教授二員 從六品。一文官兼，直長一員 從七品，奉事一員 從八品，醫學訓導一員 正九品，參奉四員 從九品。

혜민서는 일반 백성들을 의약으로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제조 2원.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직장 이상 한 사람을 구임관으로 둔다. 구임관 이외에는 모두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주부 1원·의학교수 2원 종6품, 1원은 문관이 겸한다. 직장 1원 종7품, 봉사 1원 종8품, 의학훈도 1원 정9품, 참봉 4원 종9품.

▶ 吏典 > 從六品衙門 > [大典] > 惠民署

活人署掌救活都城病人。提調一員。參奉·醫員遞兒，兩都目。別提四員 從六品。二員今減，參奉二員 從九品。

활인서는 도성 안의 급한 환자들에 대한 구제를 맡는다. 제조가 1원이다. 참봉은 의원으로 체아직이며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별제 4원 종6품. 현재 2원을 줄였다. 참봉 2원 종9품.

▶ 吏典 > 從六品衙門 > [大典] > 活人署

속대전(續大典) 1746년

○宦侍及醫譯, 母得授輔國資.

○환관·의관·역관에게는 보국(輔國, 정1품)의 자급을 줄 수 없다.

▶ 吏典 > 京官職 > [宦侍及醫譯]

[內醫院]

從七品 直長, 減二員.

[내의원]

종7품 직장(直長) 2원을 줄였다.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內醫院

[典醫監]

從三品 副正減.

從六品 醫學教授, 減一員.

從八品 奉事, 減一員.

正九品 副奉事, 減二員.

從九品 參奉, 減三員.

[전의감]

종3품 부정(副正)을 줄였다.

종7품 의학교수 1원을 줄였다.

종8품 봉사 1원을 줄였다.

정9품 부봉사 2원을 줄였다.

종9품 참봉 3원을 줄였다.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典醫監

[惠民署] 提調減一員.

從六品 醫學教授, 減一員.

[혜민서] 제조 1원을 줄였다.

종6품 의학교수 1원을 줄였다.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惠民署

[活人署]

從六品 別提, 減二員.

[활인서]

종6품 별제 2원을 줄였다.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活人署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耆老所. 文正二實職, 年七十以上, 許入. [續] … ○醫員一. [續] …

기로소. 문관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역임한 관원 중 70세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다. [속대전]
… ○의원 1원이다. [속대전] …

▶ 吏典 > 京官職 > 耆老所

官階. 東班, 自正一, 至從四, 稱大夫, 自正五, 至從九, 稱郎, 雜職·土官職, 同. … ○文武官·宗親妻, 堂上以上, 稱夫人, 堂下三品以下, 稱人. ○雜職, 正六, 供職·勵職, 從六, 謹任·效任, 正七, 奉務, 從七, 承務, 正八, 勉功, 從八, 赴功, 正九, 服勤, 從九, 展勤([經]) ○校書館, 毅庭署, 馬醫, 盡員, 階同正職. [經] [補]) 土官職, 正五, 通議, 從五, 奉議, 正六, 宣職, 從六, 奉職, 正七, 熙功, 從七, 注功, 正八, 供務, 從八, 直務, 正九, 啓仕, 從九, 試仕. [經]

관계(官階). 동반(東班)은 정1품부터 종4품까지는 。 대부(大夫)라 부르고, 정5품부터 종9품까지는 。 랑(郎)이라 부른다. 잡직(雜職)·토관직(土官職)도 동일하다. … ○문관·무관·종친부의 당상관 이상은 。 부인(夫人)이라 부르며, 당하관 3품 이하는 。 인(人)이라 부른다. ○잡직. 정6품은 공직랑·여직랑, 종6품은 근임랑·효임랑, 정7품은 봉무랑, 종7품은 승무랑, 정8품은 면공랑, 종8품은 부공랑, 정9품은 복근랑, 종9품은 전근랑이다([경국대전]) ○교

서관·액정서·마의·화원의 관계는 정직(正職)과 동일하다. [경국대전] [보충] 토관직 정5품은 통의랑, 종5품은 봉의랑, 정6품은 선직랑, 종6품은 봉직랑, 정7품은 희공랑, 종7품은 주공랑, 정8품은 공무랑, 종8품은 직무랑, 정9품 계사랑, 종9품은 시사랑이다. [경국대전]

▶吏典 > 官階 > [官階]

宗親府. 宗室諸君之府. … [經] … ○醫員一. [經] [補]

종친부. 종실의 각 군(君)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 [경국대전] … ○의원 1원이다. [경국대전] [보충]

▶吏典 > 京官職 > 正一品衙門 > 宗親府

議政府. 總百官, 平庶政, 理陰陽, 經邦國. … [經] … ○醫員二. [經] [補]

의정부. 모든 관리를 통솔하고 각종 정사를 처리하며 음양을 고르게 하고 나라를 운영해 간다. … [경국대전] … ○의원 2원이다. [경국대전] [보충]

▶吏典 > 京官職 > 正一品衙門 > 議政府

忠勳府. 諸功臣之府. … [經] … ○醫員一. [經] [補]

충훈부. 각종 공신을 담당하는 관청이다. … [경국대전] … ○의원 1원이다. [경국대전] [보충]

▶吏典 > 京官職 > 正一品衙門 > 忠勳府

六曹. [經] … 禮曹, 醫員一. [經] [補]

육조. [경국대전] … 예조. 의원 1원이다. [경국대전] [보충]

▶吏典 > 京官職 > 正二品衙門 > 六曹

內醫院. 掌和御藥. [經] ○正以下, 用本廳醫. [補] ○都提調·提調, 各一, 副提調一, 承旨. 正堂下正三, 僉正從四, 判官從五, 主簿從六 [經] 直長從七 [經] [續], 奉事二, 從八, 副奉事二, 正九, 參奉從九 [續] ○本廳用醫科人, 堂上以上, 稱御醫, 無定數, 堂下, 稱內醫, 十二, 其中抄御醫, 議藥廳議藥同參十二, 鍼醫廳鍼醫十二, 竝母論堂上·堂下, 稱御醫. [補]

내의원.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를 맡는다. [경국대전] ○정(正) 이하의 관원은 본청의 의원을 쓴다. [보충] 도제조·제조 각 1원. 부제조 1원은 승지가 겸직한다. ○정(正) 당하관으로 정3품, 첨정 종4품, 판관 종5품, 주부 종6품 [경국대전], 직장 종7품 [경국대전] [속대전], 봉사 2원으로 종8품, 부봉사 2원으로 정9품, 침봉 종9품이다. [속대전] ○본청 (내의청)은 의과에 급제한 이를 쓴다. 당상관 이상은 어의(御醫)라 부르며 정해진 수가 없다. 당하관은 내의(內醫)라 부르며 12원인데, 그 가운데 어의를 뽑는다. 의약청(議藥廳)의 의약동 참(議藥同參) 12원과 침의청(鍼醫廳)의 침의(鍼醫) 12원은 당상관이든 당하관이든지 모두 어의라 부른다. [보충]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內醫院

司僕寺. 掌輿馬·廄牧. [經] … ○雜職, 理馬四, 六八九品, 馬醫三, 正七. [經] [續] [增]

사복시. 수레와 말·목장을 담당한다. [경국대전] … ○잡직 중 이마(理馬)는 4원으로 6·8·9품이고, 마의(馬醫)는 3원으로 정7품이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司僕寺

典醫監. 掌醫藥·供內用及賜與. [經] ○正以下, 用本學, 而教授以上, 出身. [經] [補] ○提調二. 正堂下正三, 創正 從四, 判官 從五, 主簿 從六[經] 醫學教授 從六 [經] [續]. ○治腫廳, 教授一 從六. 本監內鍼醫, 惠民署, 輪差 [補], 直長 二, 從七 [經], 奉事 從八, 副奉事 二, 正九 [經] [續], 醫學訓導 正九[經], 參奉 二, 從九 [經] [續]

전의감. 궐내에서 쓸 의약과 특전으로 줄 의약을 맡는다. [경국대전] ○정(正) 이하의 관리는 의학 출신을 쓰되, 의학교수 이상은 의과 출신을 쓴다. [경국대전] [보충] ○제조 2원이다. 정(正) 당하관으로 정3품, 첨정 종4품, 판관 종5품, 주부 종6품 [경국대전], 의학교수 종6품 [경국대전] [속대전], ○치종청(治腫廳). 교수 1원 종6품, 본 전의감 소속의 침의(鍼醫)와 혜민서에서 교대로 임명한다. [보충], 직장 2원. 종7품, 봉사 종8품, 부봉사 2원. 정9품[경국대전] [속대전], 의학훈도 정9품[경국대전], 침봉 2원. 종9품[경국대전] [속대전].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典醫監

惠民署. 掌醫藥·救活民庶. [經] ○主簿以下, 用本署前銜. [補] ○提調二. **主簿** 從六 [經], **醫學教授** 從六 [經] [續], 直長 從七, 奉事 從八, , **醫學訓導** 正九, 參奉 四, 從九 [經]. **혜민서.** 일반 백성들을 의약으로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경국대전] ○주부 이하의 관리는 본 혜민서의 전함관을 쓴다. [보충] ○제조 2원이다. 주부 종6품[경국대전], 의학교수 종6품[경국대전] [속대전], 직장 종7품, 봉사 종8품, 의학훈도 정9품, 참봉 4원. 종9품 [경국대전].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惠民署

活人署. 掌救活都城病人. ○提調一. [經] 別提 二, 從六[經] [續], 參奉 二, 從九[經] 惠民 參奉兼. [補]

활인서. 도성 안의 급한 환자들에 대한 구제를 맡는다. ○제조 1원이다. [경국대전]. 별제 2원. 종6품, 참봉 2원. 종9품[경국대전] 혜민서 참봉이 겸직한다. [보충].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活人署

○代加者, 以通德爲限. [續] ○頒赦時, 百官加資, 下批, 資窮者, 子·婿·弟·姪中, 代加. [補] ○將仕以上十四階, 次次加, 毋得越階. [增] ○三醫司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대신** 가자(加資, 품계를 올림)하는 것은 통덕랑을 한도로 한다. [속대전] ○반사(頒赦)⁹ 때 모든 관리에게 가자하라는 비답을 내리면 품계가 더 오를 수 없는 이는 아들·사위·동생·조카에게 대신 가자할 수 있다. [보충] ○장사랑부터 통덕랑까지 14품계를 순서대로 가자하되 2등급 이상을 뛰어넘지 말아야 한다. [대전통편]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吏典 > 京官格式 > [代加者]

○參議獨政, 只出緊任. 禮曹堂上, 工判, 內局提調, ⋯⋯.

○참의 가운데 한 사람이 대신 일을 처리하는데, 다만 긴급한 직임만을 낸다. 예조 당상, 공조 판서, 내의원 제조, ⋯⋯.

▶ 吏典 > 京官格式 > [參議獨政]

9 반사(頒赦) : 죄인들을 사면하라는 교지를 내리는 것이다.

- 承旨兵曹堂上, 不得兼摠管, 承旨帶藥院者, 亦不得兼金吾. [補]
- 승지와 병조 당상관은 총관을 겸직할 수 없고, 내의원 부제조를 겸하는 승지는 의금부 관직을 겸할 수 없다. [보증]

▶ 吏典 > 京官格式 > [承旨 · 兵曹堂上]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 宦侍及醫譯, 毋得授輔國資.
- 환관, 의관, 역관들에게는 보국(輔國, 정1품)의 품계를 줄 수 없다.

▶ 吏典 > 京官職 > [宦侍及醫譯]

[內醫院] [原] 掌和御藥. 都提調 · 提調各一員. 副提調一員, 承旨. ○遞兒兩都目.
正一員 正三品, 僉正一員 從四品, 判官一員 從五品, 主簿一員 從六品, 直長一員 從七品 [原] 三員. [續] 減二員, 奉事二員 從八品, 副奉事二員 正九品, 參奉一員 從九品.

[내의원] [경국대전]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를 맡는다. 도제조와 제조 각 1원을 둔다. 부제조 1원은 승지가 겸직한다. ○다음의 관원을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정(正) 1원 정3품, 침정 1원 종4품, 판관 1원 종5품, 주부 1원 종6품, 직장 1원 종7품[경국대전] 3원. [속대전] 2원을 감한다. 봉사 2원 종8품, 부봉사 2원 정9품, 참봉 1원 종9품.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内醫院

[典醫監] [原] 掌醫藥供內用及賜與. 提調二員. ○取才分數多者, 判官以上一員久任. 久任及教授 · 訓導外, 遷兒兩都目. 取才居次者, 差外任. ○主簿以上, 並以出身者除授. ○習讀官三十員.

正一員 正三品, 副正 從三品 [原] 一員. [續] 減, 僉正一員 從四品, 判官一員 從五品, 主簿一員 從六品, 醫學教授一員 從六品 [原] 二員. [續] 減一員, 直長二員 從七品, 奉事一員 從八品 [原] 二員. [續] 減一員, 副奉事二員 正九品 [原] 四員. [續] 減二員, 醫學訓導一員 正九品, 參奉二員 從九品 [原] 五員. [續] 減三員.

[전의감] [경국대전] 궐내에서 쓸 의약과 특전으로 줄 의약을 맡는다. 제조 2원을 둔다.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판관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관원 한 사람을 구임관으로 둔다. 구임관 · 교수 · 훈도 이외의 관직은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주부 이상의 자리에는 모두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습독관은 30원이다.

정(正) 1원 정3품, 부정 종3품[경국대전] 1원. [속대전] 감한다. 첨정 1원 종4품, 판관 1원 종5품, 주부 1원 종6품, 의학교수 1원 종6품[경국대전] 2원. [속대전] 1원을 감한다. 직장 2원 종7품, 봉사 2원 종8품[경국대전] 2원. [속대전] 1원을 감한다. 부봉사 2원 정9품[경국대전] 4원. [속대전] 2원을 감한다. 의학훈도 1원 정9품, 참봉 2원 종9품[경국대전] 5원. [속대전] 3원을 감한다.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典醫監

[惠民署] [原] 掌醫藥救活民庶. 提調二員. ○取才分數多者. 直長以上一員久任. 久任外, 遷兒兩都目. 取才居次者, 差外任. [續] 提調減一員. [增] 復舊.

主簿一員 從六品, 醫學教授一員 從六品 [原] 二員. 一, 文官兼. [續] 減, 直長一員 從七品, 奉事一員 從八品, 醫學訓導一員 正九品, 參奉四員 從九品.

[혜민서] [경국대전] 일반 백성들을 의약으로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제조 2원을 둔다.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직장 이상 한 사람을 구임관으로 둔다. 구임관 이외에는 모두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속대전] 제조 1원을 감한다. [대전통편] 제조 1원을 복구한다.

주부 1원 종6품, 의학교수 1원 종6품[경국대전] 2원. 1원은 문관이 겸임한다. [속대전] 1원을 감한다, 직장 1원 종7품, 봉사 1원 종8품, 의학훈도 1원 정9품, 참봉 4원 종9품.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惠民署

[活人署] [原] 掌救活都城病人. 提調一員. 參奉, 醫員遷兒, 兩都目.

別提二員 從六品 [原] 四員. [續] 減二員, 參奉二員 從九品.

[활인서] [경국대전] 도성 안의 급한 환자들에 대한 구제를 맡는다. 제조 1원을

둔다. 참봉과 의원은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별제 2원 종6품 [경국대전] 4원. [속대전] 2원을 감한다. 참봉 2원 종9품.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活人署

추관지(秋官志) 1781년

九房. 謹按, 四司各有二房, 幷刑房, 爲九房. … 詳二房 掌京詳覆, 佐郎一員. 句管宗親府·都摠府·藝文館·宗簿寺·典醫監·惠民署……京畿道. 考一房 掌律令. 正郎一員. 句管 戶曹·忠勳府·敦寧府·耆老所·內醫院·宣惠廳……江原道. … 禁一房 掌刑獄禁令. 正郎一員 句管 工曹·儀賓府·司憲府·摠戎廳·尙衣院·典設司·內資寺·活人署·掌苑署 … 慶尙道. …

구방(九房). 설명. 사사(四司)¹⁰에 각각 2방이 있고 형방(刑房)까지 합하여 구방이라고 한다. … 상이방(詳二房)은 도성의 상복(詳覆)을 담당하며, 좌랑 1원을 둔다. 종친부·도총부·예문관·종부시·전의감·혜민서……경기도를 관장한다. 고일방(考一房)은 율령을 담당한다. 정랑 1원을 둔다. 호조·충훈부·돈녕부·기로소·내의원·선혜청……강원도를 관장한다. … 금일방(禁一房)은 형옥과 금령을 담당한다. 정랑 1원을 둔다. 공조……활인서·장원서……경상도를 관장한다. …

▶ 卷之－ > 職掌 > 九房

掌務所. 掌曹中錢布. 郎官一員, 輪行兼察. …月令一員. 品自兩醫司差送. 掌救療獄囚·看審傷處·呈手本.

장무소. 형조의 예산을 담당한다. 낭관 1원이 돌아가면서 겸찰(兼察)한다 … 월령(月令)의 원 1원. 양의사(兩醫司)에서 균등하게 파견한다. 죄수의 치료, 상처를 보살피는 일, 수본(手本, 자필 보고서) 올리는 일을 담당한다.

▶ 卷之－ > 職掌 > 掌務

10 사사(四司) : 조선시대 형조에 소속된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례사(掌隸司)의 네 관아를 말한다.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宦侍及醫·譯, 毋得授輔國資.

○환관, 의관, 역관들에게는 보국(輔國, 정1품)의 자급을 줄 수 없다.

▶ 吏典 > 京官職 > [宦侍及醫譯]

[禮曹] [原] 掌禮樂·祭祀·宴享·朝聘·學校·科舉之政. … ○[稽制司] 掌儀式·制度·朝會·經筵·史官·學校·科舉·印信·表箋·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等事. [典享司] 掌宴享·祭祀·牲豆·飲膳·醫藥等事.
…

[예조] [경국대전] 예악·제사·연회·사대 및 교린·학교·과거에 대한 정무를 맡는다. … ○[계제사] 의식·제도·조회·경연·사관(史官)·학교·과거·인장·표전(表箋)·책명(冊命)·천문·물시계·국기(國忌)·묘호·국가의 상례와 장례 등의 일을 맡는다. [전향사] 연회·제사·제수와 제기·음식·의약 등의 일을 맡는다. …

▶ 吏典 > 京官職 > 正二品衙門 > 稽曹 > [總論]

[內醫院] [原] 掌和御藥. 都提調·提調各一員. 副提調一員. 承旨. ○遞兒兩都目.

[내의원] [경국대전]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를 맡는다. 도제조·제조 각 1원이다. 부제조 1원은 승지가 겸직한다. ○이하 관원은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內醫院 > [總論]

[司僕寺] [原] 掌輿馬·廄牧. 提調二員. 判官以上二員久任. [續] 提調二員, 一員議政兼. ○理馬四, 正六品. 馬醫三, 正七品. [增] 理馬四, 遷兒, 六品一, 八品二, 九品一. [補] 創正·判官·主簿一, 自辟.

[사복시] [경국대전] 수레와 말·목장의 일을 맡는다. 제조 2원이다. 판관 이상의 2원은 구임관으로 둔다. [속대전] 제조는 2원으로 1원은 정승이 겸한다. ○이마(理馬)는 4원으로 정6품이다. 마의(馬醫)는 3원으로 정7품이다. [대전통편] 이마 4원은 체아직으로 6품

1원, 8품 2원, 9품 1원이다. [보총] 첨정 · 판관 · 주부는 각 1원으로, 해당 관아에서 자체 추천한다.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司僕寺 > [總論]

[典醫監] [原] 掌醫藥供內用及賜與. 提調二員. ○取才分數多者, 判官以上一員久任. 久任及教授 · 訓導外, 遞兒兩都目. 取才居次者, 差外任. ○主簿以上, 並以出身者除授. ○習讀官三十員.

[전의감] [경국대전] 궐내에서 쓸 의약과 특전으로 줄 의약을 맡는다. 제조 2원이다.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판관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을 구임관(久任官)으로 둔다. 구임관 · 교수 · 훈도 이외의 관직은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록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주부 이상의 자리에는 모두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습독관은 30원이다.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典醫監 > [總論]

正一員 正三品, 副正 從三品 [原] 一員. [續] 減, 僉正一員 從四品, 判官一員 從五品, 主簿一員 從六品, 醫學教授一員 從六品 [原] 二員. [續] 減一員, 直長二員 從七品, 奉事一員 從八品 [原] 二員. [續] 減一員, 副奉事二員 正九品 [原] 四員. [續] 減二員, 醫學訓導一員 正九品, 參奉二員 從九品 [原] 五員. [續] 減三員.

정(正) 1원 정3품, 부정 종3품 [경국대전] 1원. [속대전] 줄였다. 첨정 1원 종4품, 판관 1원 종5품, 주부 1원 종6품, 의학교수 1원 종6품 [경국대전] 2원. [속대전] 1원을 줄였다. 직장 2원 종7품, 봉사 1원 종8품 [경국대전] 2원. [속대전] 1원을 줄였다. 부봉사 2원 정9품 [경국대전] 4원이다. [속대전] 2원을 줄였다. 의학훈도 1원 정9품, 참봉 2원 종9품 [경국대전] 5원. [속대전] 3원을 줄였다.

▶ 吏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典醫監 > [官員 > 定額]

[惠民署] [原] 掌醫藥救活民庶. 提調二員. ○取才分數多者. 直長以上一員久任. 久任外, 遞兒兩都目. 取才居次者, 差外任. [續] 提調減一員. [增] 復舊.

[혜민서] [경국대전] 일반 백성들을 의약으로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제조 2원이다.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직장 이상 한 사람을 구임관으로 둔다. 구임관

이외에는 모두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취재시험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사람은 지방에 임명한다. [속대전] 제조 1원을 줄였다. [대전통편] 다시 복구하였다.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惠民署 > [總論]

主簿一員 從六品, 醫學教授一員 從六品 [原] 二員. 一, 文官兼. [續] 減, 直長一員 從七品, 奉事一員 從八品, 醫學訓導一員 正九品, 參奉四員 從九品.

주부 1원 종6품, 의학교수 1원 종6품. [경국대전] 2원으로 1원은 문관이 겹친다. [속대전] 줄였다. 직장 1원 종7품, 봉사 1원 종8품, 의학훈도 1원 정9품, 참봉 4원 종9품.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惠民署 > [官員 > 定額]

[活人署] [原] 掌救活都城病人. 提調一員. 參奉醫員, 遜兒兩都目.

[활인서] [경국대전] 도성 안의 급한 환자들에 대한 구제를 맡는다. 제조 1원. 참봉과 의원은 체아직으로 두고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 吏典 > 京官職 > 從六品衙門 > 活人署 > [總論]

3. 내시부(內侍府)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내시부] 掌大內監膳·傳命·守門·掃除之任. 共一百四十員, 四都目. … 尙茶一員從三品, 尚藥二員正四品, …

[내시부] 대전의 음식 감독·명령 전달·궁문 수직 및 청소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모두 140명이며 1년에 네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 상다(尚茶)는 1원으로 종3품, 상약(尚藥)은 2원으로 정4품, …

▶ 吏典 > 内侍府 > [掌大內監膳傳命]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內侍府掌大內監膳·傳命·守門·掃除之任. 共一百四十員, 四都目. … 尚茶一員 正三品, 尚藥二員 從三品, …

내시부는 대전의 음식 감독·명령 전달·궁문 수직 및 청소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모두 140명이며 1년에 네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 상다 1원 정3품, 상약 2원 종3품, …

▶ 吏典 上 > 内侍府 > [大典] > [内侍府]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內侍府掌大內監膳·傳命·守門·掃除之任. 共一百四十員, 兩都目. … 尚茶一員 正三品, 尚藥二員 從三品, …

내시부는 대전의 음식 감독·명령 전달·궁문 수직 및 청소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모두 140명이며 1년에 네 차례 도목정사를 한다. … 상다 1원 정3품, 상약 2원 종3품, …

▶ 吏典 > 内侍府 > [大典]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內侍府. 掌大內監膳·傳命·守門·掃除. … 尚茶 正三, 尚藥二 從三, …[經] …

내시부. 대전의 음식 감독·명령 전달·궁문 수직 및 청소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 상다는 정3품, 상약 2원은 종3품, …[경국대전] …

▶ 吏典 > 京官職 > 内侍府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 尚茶一員, 正三品. 尚藥二員, 從三品. …

… 상다 1원, 정3품이다. 상약 2원, 종3품이다. …

▶ 吏典 > 内侍府 > [定額]

4. 잡직(雜職)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雜職〕 皆四都目. 馬醫 · 道流 · 畫員, 則階同正職. ○授正職時, 降一階. 正六品 供職郎 · 勵職郎, 從六品 謹任郎 · 效任郎, 正七品 奉務郎, 從七品 承務郎, 正八品 勉功郎, 從八品 赴功郎, 正九品 服勤郎, 從九品 展勤郎.

〔잡직〕 모두 1년에 네 번 도목정사를 한다. 마의(馬醫) · 도류 · 화원의 품계는 모두 정직(正職)과 동일하다. ○정직을 줄 때는 1품계를 내린다. 정6품 공직랑 · 여직랑, 종6품 근임랑 · 효임랑, 정7품 봉무랑, 종7품 승무랑, 정8품 면공랑, 종8품 부공랑, 정9품 부근랑, 종9품 전근랑.

▶ 吏典 > 雜職 > [雜職階]

〔司僕寺〕 馬醫十員.

〔사복시〕 마의(馬醫) 10원을 둔다.

▶ 吏典 > 雜職 > [司僕寺 · 軍器寺 · 繕工監]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雜職〕 皆四都目. 馬醫 · 道流 · 畫員, 則階同正職. ○授正職時, 降一階.

〔잡직〕 모두 1년에 네 번 도목정사를 한다. 마의(馬醫) · 도류 · 화원의 품계는 모두 정직(正職)과 동일하다. ○정직을 줄 때는 1품계를 내린다.

▶ 吏典 上 > 雜職 > [大典] > [都目]

司僕寺. 馬醫十員, 安驥一員 從六品, 調驥一員 從七品, 理驥一員 從八品, 保驥一員 從九品.

사복시. 마의 10원, 안기 1원 종6품, 조기 1원 종7품, 이기 1원 종8품, 보기 1원 종9품.

▶ 吏典 上 > 雜職 > [大典] > 司僕寺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雜職. 皆四都目. 馬醫 · 道流 · 畫員, 則階同正職. ○授正職時, 一降階.

잡직. 모두 1년에 네 번 도목정사를 한다. 마의 · 도류 · 화원의 품계는 모두 정직(正職)과 동일하다. ○정직을 줄 때는 1품계를 내린다.

▶ 吏典 > 雜職 > [大典] > [都目]

司僕寺. 馬醫十員, 安驥一員 從六品, 調驥一員 從七品, 理驥一員 從八品, 保驥一員 從九品.

사복시. 마의 10원, 안기 1원 종6품, 조기 1원 종7품, 이기 1원 종8품, 보기 1원 종9품.

▶ 吏典 > 雜職 > [大典] > 司僕寺

속대전(續大典) 1746년

[司僕寺]

正六品 理馬四 遞兒.

正七品 馬醫三 遞兒.

從七品 牽馬陪十一 遞兒.

[사복시]

정6품 이마 4원 체아직.

정7품 마의 3원 체아직.

종7품 견마배 11원 체아직.

▶ 吏典 > 雜職 > 司僕寺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雜職〕〔原〕 皆四都目. 馬醫 · 道流 · 畫員, 則階同正職. ○授正職時, 降一階. 〔增〕原典雜職, 太半今廢, 故移置掖庭署於諸職之首, 而仍舊載錄. 校書館 · 司僕寺 · 掌樂院 · 圖畫署之時存員數, 亦移錄於本衙門之下. 其餘分番 · 計仕 · 去官 · 仍仕等法, 及各色遞兒, 幷皆刪節, 只仍錄員數 · 品

數，以爲省繁存舊之地。

[잡직] [경국대전] 모두 1년에 네 번 도목정사를 한다. 마의(馬醫) · 도류 · 화원의 품계는 모두 정직(正職)과 동일하다. ○정직을 줄 때는 1품계를 내린다. [대전통편] 경국대전의 잡직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기에 액정서 각 직임의 첫머리로 옮겨 두었다. 이에 옛 기록을 기재한다. 교서관 · 사복시 · 장약원 · 도화서의 지금 있는 인원수 또한 본 아문(衙門)의 아래에 옮겨 적는다. 그 외에 분번 · 계사 · 거관 · 잉사 등의 규정 및 각색(各色)의 체아직도 모두 없애거나 줄였다. 인원수 · 품수(品數)라도 적어 놓아 번잡함을 줄이고 예전의 모습을 남긴다.

▶ 吏典 > 雜職 > [總論]

[司僕寺] 馬醫十員. ○安驥一員, 從六品. 調驥一員, 從七品. 理驥一員, 從八品. 保驥一員, 從九品. [續] 牽馬陪十一, 從七品. [增] 牽馬陪, 今加十. 安驥以下, 今並降作散料.

[사복시] 마의 10원. ○안기 1원, 종6품. 조기 1원, 종7품. 이기 1원, 종8품. 보기 1원, 종9품. [속대전] 견마배 11원, 종7품. [대전통편] 견마배는 지금은 10원을 더했다. 안기 이하의 관원은 요새 모두 강작(降作, 역의 대가로 돈을 냄)으로 달마다 급료를 받는다.

▶ 吏典 > 雜職 > [司僕寺 > 定額]

5. 외관직(外官職)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京畿] … 從九品 審藥一員 …

[忠清道] … 從九品 審藥二員 一節度使道. …

[慶尙道] … 從九品 審藥三員 一左道節度使道, 一右道節度使道. …

[경기] … 종9품 심약 1원 …

[충청도] … 종9품 심약 2원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

[경상도] … 종9품 심약 3원 1원은 좌도절도사도, 1원은 우도절도사도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京畿 · 忠淸道 · 慶尙道]

[全羅道] … 從九品 審藥三員. …

[黃海道] … 從九品 審藥一員. …

[江原道] … 從九品 審藥一員. …

[전라도] … 종9품 심약 3원. …

[황해도] … 종9품 심약 1원. …

[강원도] … 종9품 심약 1원. …

▶ 吏典 > 外官職 > [全羅道 · 黃海道 · 江原道]

[永安道] … 從九品 審藥三員 一南道節度使道, 一北道節度使道. …

[平安道] … 從九品 審藥二員 一節度使道. …

[영안도] … 종9품 심약 3원 1원은 남도절도사도¹¹에 두고 1원은 북도절도사도에 둔다.

…

[평안도] … 종9품 심약 2원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永安道 · 平安道]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京畿] … 審藥一員. … 檢律一員. …

[경기] … 심약 1원. … 검율 1원. …

▶ 吏典 下 > 外官職 > [大典] > 京畿

[忠淸道] … 審藥二員 一節度使道. … 檢律一員. …

[충청도] … 심약 2원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 검율(檢律) 1원. …

▶ 吏典 下 > 外官職 > [大典] > 忠淸道

11 남도절도사도 : 조선에서는 함경도의 경우에만 절도사영에 북 · 남이 있으므로 문헌에서 별도로 지역명을 넣지 않는다.

[慶尙道] … 審藥三員 一左道節度使道, 一右道節度使道. … 檢律一員. …

[경상도] … 심약 3원 1원은 좌도절도사도, 1원은 우도절도사도에 둔다. … 검율 1원.

…

▶ 吏典 下 > 外官職 > [大典] > 慶尙道

[全羅道] … 審藥三員 一節度使道, 一濟州. … 檢律二員 一濟州. …

[전라도] … 심약 3원 1원은 절도사도에, 1원은 제주에 둔다. … 검율 2원 1원은 제주에 둔다. …

▶ 吏典 下 > 外官職 > [大典] > 全羅道

[黃海道] … 審藥一員. … 檢律一員. …

[황해도] … 심약 1원. … 검율 1원. …

▶ 吏典 下 > 外官職 > [大典] > 黃海道

[江原道] … 審藥一員. … 檢律一員. …

[강원도] … 심약 1원. … 검율 1원. …

▶ 吏典 下 > 外官職 > [大典] > 江原道

[永安道] 後改咸鏡道. 咸興爲府尹, 永興爲大都護, 安邊爲都護. [補] … 審藥三員 一南道
節度使道, 一北道節度使道. 檢律一員. …

[영안도] 나중에 함경도로 고쳤다. 함흥은 부윤이고, 영흥은 대도호부이며, 안변은 도호부
이다. [보충] … 심약 3원 1원은 남도절도사도, 1원은 북도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

▶ 吏典 下 > 外官職 > [大典] > 永安道

[平安道] … 審藥二員 一節度使道. 檢律一員. …

[평안도] … 심약 2원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

▶ 吏典 下 > 外官職 > [大典] > 平安道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京畿 … 審藥一員. 檢律一員. …

경기 … 심약 1원. 검율 1원. …

▶ 吏典 > 外官職 > [大典] > 京畿

忠淸道 … 審藥二員 一節度使道. 檢律一員. …

충청도 … 심약 2원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

▶ 吏典 > 外官職 > [大典] > 忠淸道

慶尙道 … 審藥三員 一左道節度使道, 一右道節度使道. 檢律一員. …

경상도 … 심약 3원 1원은 좌도절도사도에, 1원은 우도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

▶ 吏典 > 外官職 > [大典] > 慶尙道

全羅道 … 審藥三員 一節度使道, 一濟州. 檢律二員 一濟州. …

전라도 … 심약 3원 1원은 절도사도에, 1원은 제주에 둔다. 검율 2원 1원은 제주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大典] > 全羅道

黃海道 … 審藥一員. 檢律一員. …

황해도 … 심약 1원. 검율 1원. …

▶ 吏典 > 外官職 > [大典] > 黃海道

江原道 … 審藥一員. 檢律一員. …

강원도 … 심약 1원. 검율 1원. …

▶ 吏典 > 外官職 > [大典] > 江原道

永安道. 後改咸鏡道, 咸興爲府尹, 永興爲大都護, 安邊爲都護[補] … 審藥三員 一南道節度使道, 一北道節度使道. 檢律一員. …

영안도. 나중에 함경도로 고쳤다. 함흥은 부윤이고, 영흥은 대도호부이며, 안변은 도호부이다. [보충] … 심약 3원 1원은 남도절도사도에, 1원은 북도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

▶ 吏典 > 外官職 > [大典] > 永安道

平安道 … 審藥二員 一節度使道. 檢律一員. …

평안도 … 심약 2원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

▶ 吏典 > 外官職 > [大典] > 平安道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審藥, 從九, 忠二, 全·慶各三, 江一, 黃·平各二, 咸三. [經] [增] ○檢律, 從九, 畿·忠各一, 全二, 慶·江·黃·平·咸各一. [經]

… ○심약은 종9품으로 충청도 2원, 전라·경상 각 3원, 강원도 1원, 황해도·평안도 각 2원, 함경도 3원이다. [경국대전] [보충] ○검율은 종9품으로 경기·충청도 각 1원, 전라도 2원, 경상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각 1원이다. [경국대전]

▶ 吏典 > 外官職 > 縣監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京畿] … 審藥 從九品. [原] 一員. [增] 減 …

[경기] … 심약 종9품. [경국대전] 1원. [대전통편] 감한다 …

▶ 吏典 > 外官職 > 京畿 > [職制]

[忠清道] … 審藥二員 從九品. 一節度使道 …

[충청도] … 심약 2원 종9품.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忠清道 > [職制]

[慶尙道] … 審藥三員 從九品. 一左道節度使道, 一右道節度使道 …

[경상도] … 심약 3원 종9품. 1원은 좌도절도사도에, 1원은 우도절도사도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慶尙道 > [職制]

[全羅道] … 審藥三員 從九品. 一節度使道, 一濟州 …

[전라도] … 심약 3원 종9품. 1원은 절도사도에, 1원은 제주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全羅道 > [職制]

[黃海道] … 審藥二員 從九品. [原] 一員. [增] 加一員, 節度使道 …

[황해도] … 심약 2원 종9품. [경국대전] 1원. [대전통편] 1원을 추가하여 절도사도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黃海道 > [職制]

[江原道] … 審藥一員 從九品 …

[강원도] … 심약 1원 종9품 …

▶ 吏典 > 外官職 > 江原道 > [職制]

[咸鏡道] [原] 永安道 … 審藥三員 從九品. 一南道節度使道, 一北道節度使道 …

[함경도] [경국대전] 영안도 … 심약 3원 종9품. 1원은 남도절도사도에, 1원은 북도절도사도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咸鏡道 > [職制]

[平安道] … 審藥二員 從九品. 一節度使道 …

[평안도] … 심약 2원 종9품.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平安道 > [職制]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京畿] … 審藥 從九品 [原] 一員. [增] 減, 檢律一員 從九品, …

[경기] … 심약 종9품 [경국대전] 1원. [대전통편] 줄였다. 검율 1원 종9품, …

▶ 吏典 > 外官職 > 京畿 > [職制]

[忠淸道] … 審藥二員 從九品. 一節度使道, 檢律一員 從九品 …

[충淸도] … 심약 2원 종9품.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종9품 …

▶ 吏典 > 外官職 > 忠淸道 > [職制]

[慶尙道] … 審藥三員 從九品. 一左道節度使道, 一右道節度使道, 檢律一員 從九品 …

[경상도] … 심약 3원 종9품. 1원은 좌도절도사도에, 1원은 우도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종9품 …

▶ 吏典 > 外官職 > 慶尙道 > [職制]

[全羅道] … 審藥三員 從九品. 一節度使道, 一濟州, 檢律二員 從九品. 一濟州 …

[전라도] … 심약 3원 종9품. 1원은 절도사도에, 1원은 제주에 둔다. 검율 2원 종9품. 1원은 제주에 둔다 …

▶ 吏典 > 外官職 > 全羅道 > [職制]

[黃海道] … 審藥二員 從九品 [原] 一員. [增] 加一員, 節度使道, 檢律一員 從九品 …

[황해도] … 심약 2원 종9품 [경국대전] 1원, [속대전] 1원을 추가하여 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종9품 …

▶ 吏典 > 外官職 > 黃海道 > [職制]

[江原道] … 審藥一員 從九品, 檢律一員 從九品 …

[강원도] … 심약 1원 종9품, 검율 1원 종9품 …

▶ 吏典 > 外官職 > 江原道 > [職制]

[咸鏡道] [原] 永安道 … 審藥三員 從九品. 一南道節度使道, 一北道節度使道, 檢律一員 從九品.

[함경도] [경국대전] 영안도 … 심약 3원 종9품. 1원은 남도절도사도에, 1원은 북도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종9품.

▶ 吏典 > 外官職 > 咸鏡道 > [職制]

[平安道] … 審藥二員 從九品. 一, 節度使道, 檢律一員 從九品.

[평안도] … 심약 2원 종9품. 1원은 절도사도에 둔다. 검율 1원 종9품.

▶ 吏典 > 外官職 > 平安道 > [職制]

6. 경아전(京衙前)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內醫院] … 書吏 四 …

[내의원] … 서리 4인 …

▶ 吏典 > 京衙前 > 書吏 > [宗簿寺 · 校書館 · 司饔院 · 內醫院]

[典醫監] … 書吏 六 …

[전의감] … 서리 6인 …

▶ 吏典 > 京衙前 > 書吏 > [掌樂院 · 觀象監 · 典醫監 · 司譯院]

[惠民署] … 書吏 二 …

[活人署] … 書吏 四.

[혜민서] … 서리 2인 …

[활인서] … 서리 4인.

▶ 吏典 > 京衙前 > 書吏 > [惠民署 · 活人署]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 內醫院 四. … 觀象監 六. 典醫監 六. … 惠民署 二. 活人署 四.

… 내의원 4인. … 관상감 6인. 전의감 6인. … 혜민서 2인. 활인서 4인.

▶ 吏典 下 > 京衙前 > [大典] > 書吏 > [分屬]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書吏 仕滿三千六百, 堂上衙門, 從七品, 三品以下衙門, 從八品, 去官後, 驛·渡
丞取才入格者, 級用. 未敍前, 仍仕其司, 勤仕者, 先授職, 加階. 及屬他司, 通計
其仕. ○一年兩都目, 仕滿者一百人, 去官. … 內醫院四. … 觀象監六. 典醫監
六. … 惠民署二. 活人署四.

서리의 출근 일수가 2,600일이 차면 당상 아문에서는 종7품일 때, 3품 이하
아문에서는 종8품일 때 거관(去官)한 후 역(驛) · 도승(渡丞) 취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임용한다. 임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관청에서 그대로 근무한다. 성실
히 근무한 사람은 먼저 관직에 임명하고 품계를 더한다. 다른 관청으로 파견
간 경우에도 그 이전의 출근 일수까지 다 계산한다. ○1년에 두 차례 있는
도목정사 결과, 출근 일수가 찬 서리 100인은 거관한다. … 내의원 4인. …
관상감 6인. 전의감 6인. … 혜민서 2인. 활인서 4인.

▶ 吏典 > 京衙前 > [大典] > 書吏

속대전(續大典) 1746년

…[內醫院] 書員二十 …[典醫監] 書員一 …[惠民署] 書員一, [東西活人署] 書員
各一 …[宣惠廳] 書吏二十四 …

…[내의원] 서원 20인 …[전의감] 서원 1인 …[혜민서] 서원 1인, [동 · 서활인
서] 서원 각 1인 …[선헤청] 서리 24인 …

▶ 吏典 > 京衙前 > [正三品衙門 > 以下 > 分屬 > 改定]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내의원] 四 [續] 降書員二十 …[典醫監] 六 [續] 降書員一 …[惠民署] 二 [續]
降書員一. [活人署] 四 [續] 降書員, 東西各一. …

…[내의원] 서리 4인 [속대전] 서원으로 강등시키고 20인을 둔다 …[전의감] 서리 6인
[속대전] 서원으로 강등시키고 1인을 둔다 …[혜민서] 서리 2인 [속대전] 서원으로 강등
시키고 1인을 둔다. [활인서] 서리 4인 [속대전] 서원으로 강등시키고 동 · 서활인서에

각 1인씩 둔다. …

▶ 吏典 > 京衙前 > 書吏 > [分屬]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 [內醫院] 四〔續〕降書員二十. [補] 二十三. … [典醫監] 六〔續〕降書員一. …
〔惠民署〕 二〔續〕降書員一. 〔活人署〕 四〔續〕降書員, 東西各一. …

… [내의원] 서리 4인 [속대전] 서원으로 강등시키고 20인을 둔다. [보충] 23인 …[전의감]
서리 6인 [속대전] 서원으로 강등시키고 1인을 둔다. …[혜민서] 서리 2인 [속대전]
서원으로 강등시키고 1인을 둔다. [활인서] 서리 4인 [속대전] 서원으로 강등시키고 동·
서활인서에 각 1인씩 둔다. …

▶ 吏典 > 京衙前 > 書吏 > [分屬]

7. 취재(取才)

경국대전주해 후집(經國大典註解 後集) 1555년

取才條

纂圖脈, 西晉王叔和撰.

銅人經, 宋王惟一撰.

瘡疹集, 胎產集要, 本國任元濬撰.

直指方, 直指脈, 宋楊士瀛撰.

救急方, 本國人撰.

婦人大全, 外科精要, 宋陳自明撰.

得效方, 元危亦林撰.

和劑方, 宋大觀中, 詔通鑑, 刊正藥局方書, 閱歲書成. 庫部郎中陳師文等校正.

本草, 宋唐慎微撰.

資生經, 宋王執中撰.

十四經發揮, 元滑壽撰.

和劑指南, 宋寧宗時, 許洪校正和劑局方, 又著和劑指南.

針經指南, 子午流注, 金竇傑字漢卿, 著針經指南, 又著子午流注.

醫學. 篆圖脈·銅人經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 瘡疹集·直指方·救急方·婦人大全·得效方·胎產集要·和劑方·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已上臨文. 針灸醫, 篆圖脈·和劑指南·銅人經已上誦, 直指脈·針經指南·子午流注·玉龍歌·資生經·外科精要·十四經發揮·針經摘英集已上臨文.

취재(取才)¹² 조

《찬도맥》. 서진(西晉)의 왕숙화(王叔和)가 지었다.

《동인경》. 송나라 사람 왕유일(王惟一)이 지었다.

《창진집》, 《태산집요》. 우리나라 사람 임원준(元濬撰)이 지었다.

《직지방》, 《직지맥》. 송나라 사람 양사영(楊士瀛)이 지었다.

《구급방》.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다.

《부인대전》과 《외과정요》. 송나라 사람 진자명(陳自明)이 지었다.

《득효방》. 원나라 사람 위역림(危亦林)이 지었다.

《화제방》. 송나라 대관 연간(1107-1110)에 황제가 뛰어난 의원들에게 명하여 약국의 처방서를 교정하도록 하여 1년이 지나서 책이 완성되었다. 고부 낭중(庫部郎中) 진사문(陳師文) 등이 교정하였다.

《본초》. 송나라 사람 당신미(唐慎微)가 지었다.

《자생경》. 송나라 사람 왕집중(王執中)이 지었다.

《십사경발휘》. 원나라 사람 활수(滑壽)가 지었다.

《화제지남》. 송나라 영종(寧宗, 1064~1067) 때 허홍(許洪)이 《화제국방》을 교정하고, 또한 《화제지남》을 저술했다.

12 취재(取才) : 기술직 등 특수한 직임에 대해 실기 중심의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침경지남》, 《자오유주》. 금나라의 두결(竇傑) 자는 한경(漢卿)이다 이 《침경지남》을 저술하고 또한 《자오유주》를 저술했다.

의학. 《찬도맥》·《동인경》. 이상은 암송하되, 50세 이상인 자는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무릇 의학에 있어 암송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창진집》·《직지방》·《구급방》·《부인대전》·《득효방》·《태산집요》·《화제방》·《본초》·《자생경》·《십사경발휘》.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침구의(針灸醫). 《찬도맥》·《화제지남》·《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직지맥》·《침경지남》·《자오유주》·《옥룡가》·《자생경》·《외과정요》·《십사경발휘》·《침구적영집》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 吏典 > 春官宗伯 > 取才條 > 纂圖脈

8. 천거(薦擧)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394년

… 殿下卽位之初. 申命有司曰. 其有經明行修. 道德兼備. 可爲師範者. 識通時務. 才合經濟. 可施事功者. 習於文辭. 工於筆札. 可當文翰之任者. 精於律筐. 達於吏治. 可當臨民之事者. 謀深韜略. 勇冠三軍. 可爲將帥者. 習於射御. 工於捧石. 可當軍務者. 天文地理卜筮醫藥或攻一藝者. 備細訪問. 敦遣于朝. 可見殿下側席求賢之美意矣.

… 전하께서는 즉위 초에 유사(有司)에게 거듭 밝히기를,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올바르며 도덕을 겸비하여 가히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시무(時務)에 능통하고 재주가 경국제세(經國濟世)에 알맞아서 공적을 세울 만한 사람, 문장에 익숙하고 글씨에 솜씨가 있어서 문한(文翰)의 임무를 맡을 만한 사람,

율학과 산학에 정통하고 아전 통솔에 달통하여 백성 다루는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지략이 깊고 용기가 삼군(三軍)에 으뜸이어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일에 솜씨가 있어서 군대의 업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 그리고 천문·지리·복서·의약 중에서 한 가지 특기를 가진 사람들을 세밀히 찾아내서 조정에 보내라.” 하였으니, 이것으로써 좌불안석으로 어진 이를 구하는 전하의 아름다운 뜻을 볼 수 있다.

▶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禮典 > [擧遺逸]

9. 제과(諸科)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394년

…譯以奉使命通中國，醫以治疾病濟夭札，陰陽卜筮，所以決嫌疑定猶豫，於是，置譯學醫學陰陽卜筮之學，而各有其科焉，養之可謂至，而擇之可謂精矣。…

…역(譯)은 사명을 받들어 중국과 통하기 위한 것이요, 의(醫)는 질병을 치료하여 요절을 막기 위한 것이요, 음양복서(陰陽卜筮)는 혐의를 해결하고 주저되는 일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역학(譯學)·의학(醫學)·음양복서학(陰陽卜筮學)을 설치하고 각각 인재를 선발하는 과(科)를 두었으니, 인재를 양성함이 지극하고, 인재를 선발함이 정밀하다고 하겠다. …

▶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治典 > 入官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譯科一等，授從七品於本衙門敍用。下同，二等，從八品階，三等，從九品階。陰陽科·醫科·律科一等，竝從八品，二等，正九品階，三等，從九品階。元有階者，竝加一階。所加與應授階相等者·不及者，於應授階，又加一階。授階者，並差本衙門權知。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의과·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 견습 관원)로 임명한다.

▶ 吏典 > 諸科 > [雜科入格者]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譯科一等, 授從七品, 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 從八品階, 三等, 從九品階. 陰陽科·醫科·律科一等, 竝從八品, 二等, 正九品階, 三等, 從九品階. 元有階者, 竝加一階. 所加與應授階相等者·不及者, 於應授階, 又加一階. 授階者, 竝差本衙門權知.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의과·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 견습 관원)로 임명한다.

▶ 吏典 下 > 諸科 > [大典] > [雜科入格者]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譯科一等, 授從七品. 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從八品階, 三等從九品階. 陰陽科·醫科·律科一等, 竝從八品, 二等正九品階, 三等從九品階. 元有階者, 竝加一階. 所加與應授階, 相等者·不及者, 於應授階, 又加一階. 授階者, 竝差本衙門權知.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

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의과·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로 임명한다.

▶ 吏典 > 諸科 > [大典] > [雜科入格者]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譯科一等, 授從七品 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 從八品階, 三等, 從九品階. 陰陽科·醫科·律科一等, 竝從八品, 二等, 正九品階, 三等, 從九品階. 元有階者, 竝加一階. 所加與應授階相等者·不及者, 於應授階, 又加一階. 授階者, 竝差本衙門權知.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의과·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로 임명한다.

▶ 吏典 > 諸科 > [雜科入格者]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譯科一等, 授從七品 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 從八品階, 三等, 從九品階. 陰陽科·醫科·律科一等, 竝從八品, 二等, 正九品階, 三等, 從九品階. 元有階者, 竝加一階. 所加與應授階相等者·不及者, 於應授階, 又加一階. 授階者, 竝差本衙門權知.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의과·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로 임명한다.

▶ 吏典 > 諸科 > [雜科入格者]

10. 제수(除授)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觀象監習讀官內, 年久算學精通人, 東班敍用, 兼差本司, 勿叙外職. 醫書習讀官, 及漢學習讀官, 亦同.

○관상감의 습독관 가운데 오래 근무하여 산학(算學)에 정통한 이는 동반(東班)으로 임용한 후 관상감을 겸임하게 하고, 지방에 임용하지 않는다. 의서습독관 및 한학습독관도 동일하다.

▶ 吏典 > 除授 > [觀象監習讀官…]

○內醫院習讀官內, 遞兒職未受者, 各於本司, 取才時更試, 隨分數除授.

○내의원의 습독관 가운데 체아직을 받지 못한 이는 각자 해당 관청의 취재시험을 다시 보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직임을 제수한다.

▶ 吏典 > 除授 > [內醫院習讀官…]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三醫司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萬曆戊寅承傳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력 무인년 (1578년, 선조11)에 받은 전교

▶ 吏典 > 官職 > 40. [三醫司三品官…]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三醫司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萬曆戊寅承傳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력 무인년 (1578년, 선조11)에 받은 전교

▶ 吏典 上 > 京官職 > [三醫司三品官…]

○觀象監習讀官內, 年久算學精通人, 東班敍用, 兼差本司, 勿敍外職. 醫書習讀官及漢學習讀官, 亦同.

○관상감의 습독관 가운데 오래 근무하여 산학(算學)에 정통한 이는 동반(東班)으로 임용한 후 관상감을 겸임하게 하고, 지방에 임용하지 않는다. 의서습독관 및 한학습독관도 동일하다.

▶ 吏典 下 > 除授 > 繢錄 > [習讀官東班敍用]

○內醫院習讀官內, 遞兒職未受者, 各於本司取才時, 更試, 隨分數除授.

○내의원의 습독관 가운데 체아직을 받지 못한 이는 각자 해당 관청의 취재시험을 다시 보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직임을 제수한다.

▶ 吏典 下 > 除授 > 繢錄 > [內醫院習讀官遞兒職未受]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續錄] ○觀象監習讀官內, 年久算學精通人, 東班敍用, 兼差本司, 勿敍外職. 醫書習讀官及漢學習讀官, 亦同. ○內醫院習讀官內遞兒職未受者, 各於本司取才時, 更試, 隨分數除授. …

[대전속록] ○관상감의 습독관 가운데 오래 근무하여 산학(算學)에 정통한 이는 동반(東班)으로 임용한 후 관상감을 겸임하게 하고, 지방에 임용하지 않는다. 의서습독관 및 한학습독관도 동일하다. ○내의원의 습독관 가운데 체아직을 받지 못한 이는 각자 해당 관청의 취재시험을 다시 보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직임을 제수한다.

▶ 吏典 > 除授 > 《續錄》

속대전(續大典) 1746년

○三醫司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吏典 > 除授 > [勿許承蔭]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三醫司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吏典 > 除授 > [勿許承蔭]

11. 한품서용(限品敍用)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限品敍用] 文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 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 二品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觀象監·典醫監·內需司·惠民署·圖畫署·算學·律學, 隨才敍用.

[한품서용] 2품 이상 문관·무관 중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첩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첨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첨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2품 이상 관리가 첨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관상감·전의감·내수사·혜민서·도화서·산학·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 吏典 > 限品敍用 > [限品]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限品敍用] ○文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 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一品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觀象監·典醫監·內需司·惠民署·圖畫署·算學·律學, 隨才敍用.

[한품서용] ○2품 이상 문관·무관 중 양인 출신 첨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첨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첨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첨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첨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첨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첨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첨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1품 이상 관리가 첨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관상감·전의감·내수사·혜민서·도화서·산학·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 吏典 下 > 限品敍用 > [大典] > [限品]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限品敍用 ○文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 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一品以上, 妻子孫, 許於司譯院·觀象監·典醫監·內需司·惠民署·圖畫署·算學·律學, 隨才敍用.

[한품서용] ○2품 이상 문관·무관 중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첩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첩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첩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1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관상감·전의감·내수사·혜민서·도화서·산학·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 吏典 > 限品敍用 > [大典]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良賤妻子孫, 限品敍用. … ○大典, 二品以上妻子孫, 許於司譯院, 觀象·典醫監, 內需司, 惠民·圖畫署, 算學, 律學, 隨才敍用, 自開登科筮仕之路, 譯院以下敍用之法, 廢, 惟觀象監, 尚有士族庶裔. [增]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제한하여 서용(敍用, 등용)한다. … ○《경국대전》에 “2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관상감·전의감·내수사·혜민서·도화서·산학·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부터 사역원 이하의 각 관청에 서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관상감에만 아직 사족의 첩자손이 있다. [보충]

▶ 吏典 > 京官格式 > [良賤妻子孫]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限品敍用] [原] 文武官二品以上, 良妻子孫限正三品, 賤妻子孫限正五品. 六品

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二品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觀象監·典醫監·內需司·惠民署·圖畫署·籌學·律學隨才敍用. [增] 自開登科筮仕之路, 司譯院以下諸司敍用之法, 異廢, 惟觀象監尙有士族庶裔.

[한품서용] [경국대전] 2품 이상 문관·무관 중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첩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첩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첩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2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관상감·전의감·내수사·혜민서·도화서·산학·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대전통편]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부터 사역원 이하의 각 관청에 서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관상감에만 아직 사족의 첩자손이 있다.

▶ 吏典 > 限品敍用 > [良妾子孫限品]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限品敍用] [原] 文·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二品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觀象監·典醫監·內需司·惠民署·圖畫署·籌學·律學隨才敍用. [增] 自開登科筮仕之路, 司譯院以下諸司敍用之法, 異廢, 惟觀象監尙有士族庶裔.

[한품서용] [경국대전] 2품 이상 문관·무관 중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첩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첩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첨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2품 이상 관리가 첨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 · 관상감 ·
전의감 · 내수사 · 혜민서 · 도화서 · 산학 · 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대전통편]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부터 사역원 이하의 각 관청에 서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관상감에만 아직 사족의 첨자손이 있다.

▶ 吏典 > 限品敍用 > [良妾子孫限品]

12. 포폄(褒貶)

경국대전주해 전집(經國大典註解 前集) 1555년

有遞兒衙門，前衙官中者，後等褒貶前勿敍。

有遞兒衙門，即指內醫院·觀象監·典醫監·司譯院·惠民署，一年兩都目者而言。

체아직을 둔 아문의 전함관이 도목정사에서 ‘중(中)’을 받으면 다음 시기의
포폄 전에는 서용하지 못한다.

체아직을 둔 아문이란 내의원 · 관상감 · 전의감 · 사역원 · 혜민서를 가리키며,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하는 곳을 말한 것이다.

▶ 吏典 > 褒貶 > [有遞兒衙門…]

13. 고과(考課)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考課] 諸司官員, 卯仕酉罷. 日短時, 辰仕申罷. 事緊司, 則仕罷後, 一員留待直宿員. 宗廟署·文昭殿·活人署官員, 及社稷署·有錢穀諸司, 一員勿與會. 凡諸司直宿官員, 本曹直宿堂下官, 初昏署名封進. 又受通行標信于承政院, 巡檢, 闕直宿者罷黜, 翌日朝還納.

[고과] 각 관청의 관원들은 묘시에 출근하고 유시에 퇴근한다. 해가 짧을 때는 진시에 출근하고 신시에 퇴근한다. 일이 바쁜 관청은 퇴근 후 한 사람이 남아서 당직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종묘서·문소전·활인서·사직서 및 돈과 양곡을 다루는 관청의 관원은 회동이 있더라도 당직자 한 사람을 남겨둔다. 이조의 당직 담당 당하관(堂下官)은 초저녁에 각 관청 당직자의 명단을 적은 다음에 밀봉하여 올린다. 각 당직자는 승정원에서 통행증을 받은 후 순찰해야 하며(당직을 빠진 자는 파직함) 당직 후 이튿날 아침에 통행증을 반납한다.

▶吏典 > 考課 > [仕罷]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考課] ○諸司官員, 卯仕酉罷. 日短時, 辰仕申罷. 事緊司, 則仕罷後, 一員留待直宿員. 宗廟署·文昭殿·活人署官員及社稷署·有錢穀諸司一員, 勿與會. 凡諸司直宿官員, 本曹直宿堂下官, 初昏署名封進, 又受通行標信于承政院, 巡檢, 闕直宿者, 罷黜 翌日朝還納.

[고과] ○각 관청의 관원들은 묘시에 출근하고 유시에 퇴근한다. 해가 짧을 때는 진시에 출근하고 신시에 퇴근한다. 일이 바쁜 관청은 퇴근 후 한 사람이 남아서 당직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종묘서·문소전·활인서·사직서 및 돈과 양곡을 다루는 관청의 관원은 회동이 있더라도 당직자 한 사람을 남겨둔다. 이조의 당직 담당 당하관(堂下官)은 초저녁에 각 관청 당직자의 명단을 적은 다음에 밀봉하여 올린다. 각 당직자는 승정원에서 통행증을 받은 후 순찰해야 하며

당직을 빠진 자는 파직한다 당직 후 이튿날 아침에 통행증을 반납한다.

▶ 吏典 下 > 考課 > [大典] > [仕罷]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考課 ○諸司官員, 卯仕酉罷. 日短時, 辰仕申罷. 事緊司, 則仕罷後, 一員留待直宿員. 宗廟署·文昭殿·活人署官員及社稷署·有錢穀諸司一員, 勿與會. 凡諸司直宿官員, 本曹直宿堂下官, 初昏署名封進, 又受通行標信于承政院, 巡檢, 闕直宿者, 罷黜 翌日朝還納.

고과 ○각 관청의 관원들은 묘시에 출근하고 유시에 퇴근한다. 해가 짧을 때는 진시에 출근하고 신시에 퇴근한다. 일이 바쁜 관청은 퇴근 후 한 사람이 남아서 당직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종묘서·문소전·활인서·사직서 및 돈과 양곡을 다루는 관청의 관원은 회동이 있더라도 당직자 한 사람을 남겨둔다. 이조의 당직 담당 당하관(堂下官)은 초저녁에 각 관청 당직자의 명단을 적은 다음에 밀봉하여 올린다. 각 당직자는 승정원에서 통행증을 받은 후 순찰해야 하며 당직을 빠진 자는 파직한다 당직 후 이튿날 아침에 통행증을 반납한다.

▶ 吏典 > 考課 > [大典]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各歧. …, 典醫監治腫教授, … 一千三百五十, 東班職遷轉. [續] [增] [補] …

○각기(各歧)¹³. …, 전의감의 치종교수, … 1,350일을 근무하면 문관으로 천전(遷轉, 영전榮轉)한다. [속대전] [추가] [보충] …

▶ 吏典 > 考課 > [各歧遷轉]

○觀察使, 二周年. [續] [增] … 審藥·檢律, 十五朔遞, 竝到任日計.

○관찰사의 임기는 만 2년이다. [속대전] [추가] … 심약·검율은 15개월마다 체직

13 각기(各歧) : 문관·무관·음관 이외에 각 기예의 담당관을 뜻한다.

하되 모두 부임일부터 계산한다.

▶ 吏典 > 考課 > [外官瓜滿]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考課] [原] 諸司官員, 卯仕酉罷 日短時, 辰仕申罷. 事緊司, 則仕罷後, 一員留待直宿員. 宗廟署 · 文昭殿 · 活人署官員及社稷署 · 有錢穀諸司一員勿與會. 凡諸司直宿官員, 本曹直宿堂下官, 初昏署名封進. 又受通行標信于承政院, 巡檢(闕直宿者罷黜), 翌日朝還納.

[고과] [경국대전] 각 관청의 관원들은 묘시에 출근하고 유시에 퇴근한다. 해가 짧을 때는 진시에 출근하고 신시에 퇴근한다. 일이 바쁜 관청은 퇴근 후 한 사람이 남아서 당직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종묘서 · 문소전 · 활인서 · 사직서 및 돈과 양곡을 다루는 관청의 관원은 회동이 있더라도 당직자 한 사람을 남겨둔다. 이조의 당직 담당 당하관(堂下官)은 초저녁에 각 관청 당직자의 명단을 적은 다음에 밀봉하여 올린다. 각 당직자는 승정원에서 통행증을 받은 후 순찰해야 하며(당직을 빠진 자는 파직한다) 당직 후 이튿날 아침에 통행증을 반납한다.

▶ 吏典 > 考課 > [仕罷]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考課] [原] 諸司官員, 卯仕酉罷 日短時, 辰仕申罷. 事緊司, 則仕罷後, 一員留待直宿員. 宗廟署 · 文昭殿 · 活人署官員及社稷署 · 有錢穀諸司一員勿與會. 凡諸司直宿官員, 本曹直宿堂下官, 初昏署名封進. 又受通行標信于承政院, 巡檢(闕直宿者罷黜), 翌日朝還納.

[고과] [경국대전] 각 관청의 관원들은 묘시에 출근하고 유시에 퇴근한다. 해가 짧을 때는 진시에 출근하고 신시에 퇴근한다. 일이 바쁜 관청은 퇴근 후 한 사람이 남아서 당직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종묘서 · 문소전 · 활인서 · 사직서 및 돈과 양곡을 다루는 관청의 관원은 회동이 있더라도 당직자 한 사람을 남겨둔다. 이조의 당직 담당 당하관(堂下官)은 초저녁에 각 관청 당직자의 명단을 적은 다음에 밀봉하여 올린다. 각 당직자는 승정원에서 통행증을 받은 후 순찰해야 하며(당직을 빠진 자는 파직한다) 당직 후 이튿날 아침에 통행증을 반납한다.

자는 파직한다) 당직 후 이튿날 아침에 통행증을 반납한다.

▶ 吏典 > 考課 > [仕罷]

○雜歧輪回出六, 而皆於輪回當次後, 始計仕, 仕滿四十五朔, 許遷轉. … 命課學·治腫教授輪回, 律員·算員輪回, 天文學·錄事各計仕出六.

○잡기(雜歧, 잡직)은 돌아가며 참상관에 임명한다. 모두 자기 차례가 돌아온 후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하고, 만 45개월이 되면 천전(遷轉, 영전榮轉)할 수 있다. … 명과학(命課學)과 치종교수를 돌아가며 임명하고, 율원과 산원을 돌아가며 임명하며, 천문학과 녹사는 각 근무일을 계산하여 참상관에 임명한다.

▶ 吏典 > 考課 > [雜歧]

14. 추증(追贈)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醫·譯·中·庶贈職, 不許參判·摠管, 加設同知贈職, 不當以左右尹爲之. 康熙癸巳承傳

○의관·역관·중인·서인에게는 참판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가설(加設)한 동지(同知)에게는 좌윤(左尹)·우윤(右尹)을 증직으로 줄 수 없다. 강희 계사년(1713년, 숙종39)에 받은 전교

▶ 吏典 > 京官職 > 51. [醫譯中庶…]

속대전(續大典) 1746년

○醫譯·中庶贈職者, 勿許參判·摠管, 加設同知贈職者, 勿許左右尹.

○의관·역관·중인·서인에게는 참판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가설

(加設)한 동지(同知)에게는 좌윤(左尹) · 우윤(右尹)을 증직으로 줄 수 없다.

▶ 吏典 > 追贈 > [醫譯中庶贈職者]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醫譯中庶贈職, 勿許參判 · 捩管, 加設同知贈職, 勿許左右尹. [續]

○의관 · 역관 · 중인 · 서인에게는 참판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가설
(加設)한 동지(同知)에게는 좌윤(左尹) · 우윤(右尹)을 증직으로 줄 수 없다. [속
대전]

▶ 吏典 > 追贈 > 贈謚附 > [醫譯中庶贈職]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醫譯 · 中庶贈職者, 勿許參判 · 捩管, 加設同知贈職者, 勿許左右尹.

○의관 · 역관 · 중인 · 서인에게는 참판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가설
(加設)한 동지(同知)에게는 좌윤(左尹) · 우윤(右尹)을 증직으로 줄 수 없다.

▶ 吏典 > 追贈 > [醫譯中庶贈職者]

15. 잡령(雜令)

정원고사(政院故事) 정조 연간 1777-1800년

藥房雖直宿之時, 非移直之時, 則各司依例閑坐事, 傳教. 丙申九月十六日

“약방이 숙직하는 때라도 장소를 옮겨 숙직하는 때가 아니면 각 관사는 규례대로 좌기(坐起, 관청의 최고 회의)를 열라.”라고 전교하였다. 병신년(1776, 정조 즉위
년) 9월 16일

▶ 吏攷 > 12-02

承旨兼帶副提調，而亦爲推考房，則日次問安時，預爲微稟事，下教。乙卯十月初五日
“승지가 내의원의 부제조를 겸임할 때 추고방(推考房)까지 담당하게 되면 일차
문안(日次問安) 때 미리 넌지시 여쭈어라.”라고 하교하였다. 을묘년(1795, 정조
19) 10월 5일

▶ 吏攷 > 12-27

특교정식(特敎定式) 1794년

同年，陽澤爲刑曹判書時曰，“吏曹審藥事有所陳，而檢律亦有汰送之弊，宜一體
定式，禁飭矣。”領議政洪曰，“落點與啓下官員，道臣任自進退，事體寒心。監營中
軍，若不合則必爲狀請改差，毋得私尼罪之意，近已定式。而如審藥·檢律者，雖
曰卑微，亦一考績之官，如其不似，則亦爲狀論，至於自監營任自取捨之弊，各別
嚴禁。如是申飭之後，違越之道臣，不爲爭執之京司堂上，隨現論責事。一體定
式，斷不可已矣。”上曰，“嚴禁，使不得汰去，如有犯者，嚴處可也。”

같은 해, 김양택(金陽澤)이 형조 판서로 있을 때 밀하기를, “이조에서는 심약의
일을 진술했으나 검율 또한 임의로 파면하여 내보내는 폐단이 있으니 한결같은
규정으로 하지 못하게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영의정 흥(洪)이 밀하기
를, “낙점을 받아 임금의 재가까지 받은 관원을 관찰사가 자기 마음대로 진퇴
(進退) 시키다니 한심한 일입니다. 감영의 사람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반드시
서 문서로 요청하여 바꾸어야 하고, 사사로이 벌을 주지 말라고 근래에 이미
규정이 있었습니다. 심약과 검율은 비록 낮은 직책이지만 또한 고과를 따지는
관직 중 하나입니다.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문서로 논해야 하는데 감영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폐단까지 생겼으니 특히 엄중하게 금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고한 이후에도 어기는 관찰사가 생긴다면 도성의 당상관들끼리 옥신
각신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드러나는 대로 문책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규정을 내려도 단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상께서 이르기를, “엄중히
금하여 함부로 파직시키지 못하게 하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을 범하거든 엄중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¹⁴

▶ 本曹稟定 > 4.20. 律官啓治

수교정례(受敎定例) 순조 연간 1801-1834년

英宗三十九年癸未. 次對入侍時, 行吏曹判書洪所啓, “審藥之任, 雖至微, 而旣啓下官員, 又必下直而去, 與吏胥有異. 若有過則狀罷, 可也, 直爲棍汰, 則非矣. 聞刑判之言, 則檢律亦爲棍汰云, 此後, 則並嚴飭外方, 債不得棍汰, 何如?” 行刑曹判書金曰, “吏判, 審藥事, 有所陳達, 而檢律亦有汰送之弊, 宜一體定式禁飭矣.” 領議政洪曰, “落點與啓下官員, 任自進退, 事體寒心, 監營中軍, 若不合, 則必爲狀請改差, 毋得私罪之意, 近已定式. 而如審藥·檢律者, 雖曰卑微, 亦一考績之官, 如其不似, 則亦爲狀論, 至於自監營任自取捨之弊, 各別嚴禁. 如是申飭之後, 違越之道臣, 不爲爭執之京司堂上, 隨現論責事, 一體定式, 斷不可已矣.” 上曰, “嚴禁, 使不得汰去, 如有犯者, 嚴處, 可也.”

영조 39년 계미일. 차대(次對)¹⁵에 입시했을 때 행 이조 판서 흥(洪)이 아뢰었다. “심약은 매우 낮은 직임이긴 하지만 주상의 재가를 받은 관원입니다. 또한 반드시 주상께 하직 인사한 뒤에야 부임지로 떠나니 다른 서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문서를 올려 파직해야지 직접 곤장으로 치고 관직에서 쫓아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조 판서의 말을 들으니 검율 또한 곤장으로 치고 쫓아내라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각 지방에 엄중하게 경고하여 함부로 관직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 형조 판서 김(金)이 말하였다. “이조 판서가 심약의 일을 아뢴 바와 같이 검율 또한 벼슬에서 쫓겨나는 폐단이 있으니 한결같은 규정으로 엄금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영의정 흥(洪)이 말하였다. “낙점을 받아 주상의 재가까지 받은 관원을 관찰사가 자기 마음대로 진퇴(進退)시키다니 한심한 일입니다. 감영의 사람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반드시 문서로 요청하여 바꾸어야 하고, 사사로이 별을 주지 말라고 근래에 이미 규정이 있었습니다. 심약과 검율은 비록 낮은 직책이지만 또한 고과를 따지는 관직 중 하나입니다.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문서로 논해

14 참조 :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12월 28일 / 《수교정례》 26. 審檢不得汰去.

15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당상관과 대간 등이 입시하여 정무를 상주하던 자리이다.

야 하는데 감영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폐단까지 생겼으니 특히 엄중하게 금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고한 이후에도 어기는 관찰사가 생긴다면 도성의 당상관들끼리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드러나는 대로 문책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규정을 내려도 단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상께서 이르기를, “엄중히 금하여 함부로 파직시키지 못하게 하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을 범하거든 엄중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¹⁶

▶ 受敎定例 > 26. 審檢不得汰去

16 참조 :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12월 28일.

호전(戶典)

1. 호조속아문(戶曹屬衙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394년

… 曰州郡 · 曰版籍, 賦之出也. 曰經理, 賦之制也. 曰農桑, 賦之本也. 曰賦稅, 賦之貢也. 曰漕運, 賦之輸也. 曰鹽鐵, 山場水梁. 曰工商船稅, 賦之助也. 曰上供 · 曰國用 · 曰祿俸 · 曰軍資 · 曰義倉 · 曰惠民典藥局, 賦之用也. 曰蠲免, 賦之寬也. …

… 주군(州郡) · 판적(版籍, 호적)이란 세금의 출처요, 경리(經理)란 세금의 통제이며, 농상(農桑)이란 세금의 근본이요, 부세(賦稅)란 세금의 현납이요, 조운(漕運)이란 세금의 수송이요, 염(鹽) · 철(鐵) · 산장(山場) · 수량(水梁) · 공장세(工匠稅) · 상세(商稅) · 선세(船稅)는 세금의 보조이며, 상공(上供) · 국용(國用) · 녹봉(祿俸) · 군자(軍資) · 의창(義倉) ·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이란 세금의 사용처요, 견면(蠲免)이란 세금의 완화인 것이다. …

▶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賦典 > 總序

2. 호적(戶籍)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

人戶以籍爲定

凡軍·民·驛·竈·醫·卜·工·樂諸色人戶，並以籍爲定。若詐冒脫免，避重就輕者，杖八十。其官司妄准脫免，及變亂版籍者，罪同。…

[直解] 凡軍·民·驛子·鹽干·醫藥·占卜·工匠·樂工等諸色人戶乙良，並只，戶籍以定體爲乎矣。冒弄免役爲要，避重役就輕役者乙良，杖八十齊。其主掌官弋只，知非免役令是弥，戶籍乙，變亂爲在乙良，罪同齊。…

인호(人戶)는 호적으로 결정한다

군호·민호·역호·조호·의호·복호·공호·악호 등 각종 인호는 모두 호적으로 결정한다. 속이거나 빠져나가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받은 자는 장형 80대에 처한다. 본래의 역에서 빠져나오도록 함부로 인준하거나 호적을 변조하여 어지럽힌 담당 관원은 같은 죄로 처분한다. …

[직해] 군(軍)·민(民)·역자(驛子)·염간(鹽干)·의약(醫藥)·점복(占卜)·공장(工匠)·악공(樂工) 등 각종 인호(人戶)는 모두 호적으로 실체를 정한다. 농간을 부려 역을 면하려고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지려 한 자는 장형 80대에 처한다. 담당 관원이 잘못인 줄 알고서도 역을 면하게 하거나 호적을 고쳐 어지럽히면 죄가 같다. …

▶ 卷4 > 戶律 > 戸役 > 第82條 > 人戶以籍爲定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세종 연간 1419-1450년

人戶以籍爲定

凡軍·民·驛·竈·醫·卜·工·樂諸色人戶，並以籍爲定。若詐冒脫免避重就輕者，杖八十。其官司妄准脫免及變亂版籍者 罪同。

인호(人戶)는 호적으로 결정한다

군호·민호·역호·조호·의호·복호·공호·악호 등 각종 인호는 모두 호적

으로 결정한다. 속이거나 빠져나가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받은 자는 장령 80대에 처한다. 본래의 역에서 빠져나오도록 함부로 인준하거나 호적을 변조하여 어지럽힌 담당 관원은 같은 죄로 처분한다.¹

▶ 卷4 > 戶律 > 戶役 > 第82條 > 人戶以籍爲定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1585년

○人戶以籍爲定

凡軍·民·驛·竈·醫·卜·工·樂諸色人戶，並以籍爲定。若詐冒脫山避重就輕者，杖八十。其官司妄准脫免及變亂版籍者，罪同。… 令凡軍·民·醫·匠·陰陽諸色人口，許各以原報抄籍。…

인호(人戶)는 호적으로 결정한다

군호·민호·역호·조호·의호·복호·공호·악호 등 각종 인호는 모두 호적으로 결정한다. 속이거나 빠져나가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받은 자는 장령 80대에 처한다. 본래의 역에서 빠져나오도록 함부로 인준하거나 호적을 변조하여 어지럽힌 담당 관원은 같은 죄로 처분한다. … 군·민·의약·장인·음양(陰陽) 등을 맡은 사람에게는 각각 원래의 보고대로 벼껴서 호적을 만들게 할 수 있다.

…

▶ 卷之四 > 戶役 > 第82條 > 人戶以籍爲定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二品以上，及內官醫譯嘉善以上，用牙牌。三品以下，及三醫司本業登科，並許佩角牌。… 吏文學官·三醫司未科者，算員·寫字官·畫員·錄事未經流品實職者，內官·生徒·司謁·司鑰·典樂·加設·雜職·影職人員，用小木方牌，而牌面，書役·姓名·某年生·某年入屬。… 加設職及三醫司雜職，直書業名。小木牌，烙印之下，先書邑名，次書丁巳，並用帶條兒。黃楊方牌，長二寸廣一寸，

1 참조 :《당률소의》 권25 〈사위詐僞〉 376. 詐除去死免官戶奴婢, 380. 詐自復除.

木方牌, 長二寸五分廣一寸五分. 康熙丁巳號牌事目

○2품 이상의 관원이나 내관·의관·역관 중 가선대부(종2품) 이상인 사람은 아패(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한 사람은 모두 각패(角牌)를 찰 수 있다. … 이문학관(吏文學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하지 못한 관원, 산원·사자관·화원·녹사 중 유품(流品)의 실직을 거치지 못한 관원, 내관·생도·사알·사약·전악·임시직·잡직·영직(影職, 명예직)인 관원은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차고 호패의 걸면에 역(役)·성명·생년·입속 연도를 기록한다. … 임시직과 삼의사의 잡직은 직업명을 그대로 쓴다. 소목방패는 발행 관서의 낙인 아래에 먼저 거주지를 쓰고, 다음에 정사(丁巳)같이 발급 연도를 쓴다. 호패는 모두 허리띠에 끈으로 묶는다. 황양방패(黃楊方牌)는 길이가 2촌이고 너비가 1촌이다. 목방패(木方牌)는 길이가 2촌 5푼이고 너비가 1촌 5푼이다. 강희 정사년(1677, 숙종 3)의 호패 사목²

▶ 戶典 > 戶籍 > 186. [丁巳號牌事目]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 ○二品以上及內官·醫·譯嘉善以上, 用牙牌. 三品以下及三醫司本業登科, 幷許佩角牌. … 吏文學官·三醫司未科者, 算員·寫字官·畫員·錄事未經流品實職者, 內官·生徒·司謁·司鑰·典樂·加設雜職·影職人員, 用小木方牌, 而牌面書役·姓名·某年生·某年入屬. … 加設職及三醫司雜職, 直書業名. 小木牌烙印之下, 先書邑名, 次書丁巳. 幷用帶條兒. 黃楊方牌, 長二寸廣一寸. 木方牌, 長二寸五分廣一寸五分. 康熙丁巳號牌事目

… ○2품 이상의 관원이나 내관·의관·역관 중 가선대부(종2품) 이상인 사람은 아패(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한 사람은 모두 각패(角牌)를 찰 수 있다. … 이문학관(吏文學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하지 못한 관원, 산원·사자관·화원·녹사 중 유품(流品)의

2 참조 : 《비변사등록》 숙종 3년 1월 8일.

실직을 거치지 못한 관원, 내관·생도·사yal·사약·전악·임시직·잡직·영직(影職, 명예직)인 관원은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차고 호패의 곁면에 역(役)·성명·생년·입속 연도를 기록한다. … 임시직과 삼의사의 잡직은 직업명을 그대로 쓴다. 소목방패는 발행 관서의 낙인 아래에 먼저 거주지를 쓰고, 다음에 정사(丁巳)같이 발급 연도를 쓴다. 호패는 모두 허리띠에 끈으로 묶는다. 황양방패(黃楊方牌)는 길이가 2촌이고 너비가 1촌이다. 목방패(木方牌)는 길이가 2촌 5푼이고 너비가 1촌 5푼이다. 강희 정사년(1677, 숙종 3)의 호패 사목

▶ 戶典 上 > 戶籍 > 受敎輯錄 > [康熙丁巳號牌事目]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受敎輯錄] ○二品以上及內官·醫譯·嘉善以上, 用牙牌, 三品以下及三醫司本業登科, 幷許佩角牌. … 吏文學官·三醫司未科者·算員·寫字官·畫員·錄事未經流品實職者, 內官·生徒司·謁司·鑰典樂·加設雜職·影職人員, 用小木方牌. 而牌面書役姓名某年生某年入屬. … 加設職及三醫司雜職, 直書業名, 小木牌烙印之下, 先書邑名, 次書丁巳, 幷用帶條兒. 黃楊方牌, 長二寸·廣一寸. 木方牌, 長二寸五分·廣一寸五分 康熙丁巳號牌事目

[수교집록] ○2품 이상의 관원이나 내관·의관·역관 중 가선대부(종2품) 이상인 사람은 아파(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한 사람은 모두 각패(角牌)를 찰 수 있다. … 이문학관(吏文學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하지 못한 관원, 산원·사자관·화원·녹사 중 유품(流品)의 실직을 거치지 못한 관원, 내관·생도·사yal·사약·전악·임시직·잡직·영직(影職, 명예직)인 관원은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차고 호패의 곁면에 역(役)·성명·생년·입속 연도를 기록한다. … 임시직과 삼의사의 잡직은 직업명을 그대로 쓴다. 소목방패는 발행 관서의 낙인 아래에 먼저 거주지를 쓰고, 다음에 정사(丁巳)같이 발급 연도를 쓴다. 호패는 모두 허리띠에 끈으로 묶는다. 황양방패(黃楊方牌)는 길이가 2촌이고 너비가 1촌이다. 목방패(木方牌)는 길이가 2촌 5푼이고 너비가 1촌 5푼이다. 강희 정사년(1677, 숙종 3)의 호패 사목

▶ 戶典 > 戶籍 > 《受敎輯錄》

속대전(續大典) 1746년

○男丁十六歲以上, 佩號牌. 東西班及內官二品以上, 用牙牌, 三品以下, 及三醫司登雜科者, 角牌, 生進, 黃楊木牌, 流品·雜職·土庶人·書吏·鄉吏, 小木方牌, 公私賤·假吏, 大木方牌.

...

○16세 이상의 남자 장정은 호패를 착용해야 한다. 문무관이나 내관 중에 2품 이상인 자는 아폐(牙牌)를 쓴다. 3품 이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잡과에 급제한 자는 각폐(角牌)를 쓴다. 생원과 진사는 황양목폐(黃楊木牌)를 쓴다. 유품관(流品官)·잡직·사서인(士庶人)·서리·향리는 소목방폐(小木方牌)를 쓴다. 공노비·사노비·임시 향리는 대목방폐(大木方牌)를 쓴다. ...

▶ 戶典 > 戶籍 > [號牌]

추관지(秋官志) 1781년

號牌事目. 肅宗十一年, 備邊司啓目內, … 忠義衛·內禁衛·兼司僕·羽林衛, 吏文學官, 及三醫司未科者, 計士·寫字·畫員·錄事未經流品實職者, 內侍·生徒·司謁·司鑰·典樂·加設·雜職·影職人員, 並用小木牌. ...

호폐 사목(事目). 수종 11년(1685)에 비변사에서 아뢴 계목에 … 충의위·내금위·겸사복·우림위·이문학관이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계사·사자관·화원·녹사 중 유품의 실직을 거치지 못한 사람, 내관·생도·사yal·사약·전악·임시직·잡직·영직(影職, 명예직)인 사람은 모두 소목방폐(小木方牌)를 사용한다. ...

▶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號牌事目 > 號牌事目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男丁十六歲以上, 佩號牌. 東西班及內官二品以上, 牙牌, 三品以下, 及三醫司雜科, 角牌, 生進, 黃楊木牌, 流品雜職, 土庶人, 書吏·鄉吏, 小木方牌, 公私賤·假吏, 大木方牌. … [續]

...

○16세 이상의 남자 장정은 호폐를 착용해야 한다. 문관·무관·내관 중 2품 이상은

아패(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급제한 사람은 각패(角牌)를 찬다.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찬다. 유품관(流品官), 잡직, 사서인(士庶人), 서리·향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찬다. 공노비, 사노비, 임시 아전은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찬다. ...
[속대전] ...

▶ 戶典 > 戶籍 > 號牌附 > [佩號牌]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男丁十六歲以上, 佩號牌. 東西班及內官二品以上, 用牙牌, 三品以下及三醫司登雜科者, 角牌, 生進, 黃楊木牌, 流品雜職·士庶人·書吏·鄉吏, 小木方牌, 公私賤·假吏, 大木方牌. ...
○16세 이상의 남자 장정은 호패를 착용해야 한다. 문관·무관·내관 중 2품 이상은
아패(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급제한 사람은 각패(角牌)를 찬다.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찬다. 유품관(流品官), 잡직, 사서인(士庶人), 서리·향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찬다. 공노비, 사노비, 임시 아전은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찬다. ...

▶ 戶典 > 戶籍 > [號牌]

3. 녹과(祿科)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 1939년

… 三醫司·觀象監·司譯院·畫員·寫字·律官·樂工·樂生, 各有取才祿遞
兒窠, 內醫院 十二窠, 典醫監 十一窠, 惠民署 九窠, 觀象監 十五窠, 司譯院 二十五窠, 畫員
十三窠, 寫字 九窠, 律官 五窠, 樂工·樂生 四十六窠. 諸司分等試才取入格以報, 受祿.
… ○內醫院, 有別軍職罷散例料四窠, 三窠, 則三廳首醫 本廳·鍼醫廳·醫藥廳 例
付, 一窠, 則稟旨永付. ...
… ○삼의사(三醫司)·관상감·사역원·화원·사자관·율관·약공·악생은

각각 취재시험에 따라 녹을 주는 체아직 자리가 있으니 내의원 12자리, 전의감 11자리, 혜민서 9자리, 관상감 15자리, 사역원 25자리, 화원 13자리, 사자관 9자리, 율관 5자리, 악공·악생 46자리. 각 관청에서는 등급을 나누어 재주를 시험하여 합격한 사람을 보고하고 그에 따라 녹을 받는다. … ○내의원에는 관직을 그만둔 사람에게 전례에 따라 요(料, 수당)를 줄 수 있는 별군직(別軍職) 4자리가 있다. 3자는 3청 본정·침의정·의약동참정의 수의(首醫)에게 전례에 따라 주고, 1자는 주상께 여쭈어 종신토록 준다. …

▶ 財用篇 > 料祿 > 祿制 雜規

해혹변의(解惑辨疑) 1827년

典醫監

正 米一石五斗, 太五斗 資.

僉正 米一石二斗, 太十三斗 廣.

判官 米一石一斗, 太十斗 廣.

主簿 米一石一斗, 太十斗 廣.

教授 米一石一斗, 太十斗 廣.

直長 米十三斗, 太六斗 廣.

副直長 米十一斗, 太三斗 資.

奉事 米十二斗, 太五斗 廣.

副奉事 米十斗, 太五斗 廣.

副奉事 米九斗, 太三斗 資.

訓導 米十斗, 文二兩 資.

參奉 米十斗, 太五斗 廣.

參奉 米十斗, 太五斗 廣.

治腫廳 鍼醫司正, 祿三朔式輪回.

教授 米一石一斗, 太十斗 廣.

鍼醫 米十三斗, 太六斗 廣.

鍼醫 米五斗, 粟四斗五升 資.

鍼醫 米五斗, 粟四斗五升 資.

聰敏廳

司果三朔 米二石十斗, 太二石十³ 廣.

전의감

정(正) 쌀 1섬 5말, 콩 5말 군자감.

첨정 쌀 1섬 2말, 콩 13말 광흥창.

판관 쌀 1섬 1말, 콩 10말 광흥창.

주부 쌀 1섬 1말, 콩 10말 광흥창.

교수 쌀 1섬 1말, 콩 10말 광흥창.

직장 쌀 13말, 콩 6말 광흥창.

부직장 쌀 11말, 콩 3말 군자감.

봉사 쌀 12말, 콩 5말 광흥창.

부봉사 쌀 10말, 콩 5말 광흥창.

부봉사 쌀 9말, 콩 3말 군자감.

훈도 쌀 10말, 전문 2냥 군자감.

참봉 쌀 10말, 콩 5말 광흥창.

참봉 쌀 10말, 콩 5말 광흥창.

치종청 침의와 사정의 녹봉은 3달씩 돌아가며 받는다.

교수 쌀 1섬 1말, 콩 10말 광흥창.

침의 쌀 13말, 콩 6말 광흥창.

침의 쌀 5말, 조 4말 5되 군자감

3 문액상 斗가 생략된 듯하다.

침의 쌀 5말, 조 4말 5되 군자감.

총민청

사과 3달에 쌀 2섬 10말, 콩 2섬 10말 광홍창.

▶ 解惑辨疑

4. 제전(諸田)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諸田〕 官屯田·馬田·院田·津夫田·冰夫田·守陵軍田, 則自耕無稅, 國行水陸田·祭享供上諸司菜田·內需司田·惠民署種藥田, 索無稅. …

〔제전〕 관둔전·마전·원전·진부전·빙부전·수릉군전은 자체로 경작하고 조세는 없다. 나라에서 지내는 수륙재 둑의 토지·나라의 각종 제향에 공급하는 각 관청의 채소밭·내수사전·혜민서의 종약전(種藥田)은 모두 조세가 없다. …

▶ 戶典 > 諸田 > [諸田官屯田馬田 …]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諸田〕 官屯田·馬田·院田·津夫田·冰夫田·守陵軍田, 則自耕無稅. 國行水陸田·祭享供上諸司菜田·內需司田·惠民署種藥田, 索無稅. …

〔제전〕 관둔전·마전·원전·진부전·빙부전·수릉군전은 자체로 경작하고 조세는 없다. 나라에서 지내는 수륙재 둑의 토지·나라의 각종 제향에 공급하는 각 관청의 채소밭·내수사전·혜민서의 종약전(種藥田)은 모두 조세가 없다. …

▶ 戶典 上 > 諸田 > [大典] > [總論]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諸田. 官屯田 · 馬 · 院田 · 津夫田 · 氷夫田 · 守陵軍田, 則自耕無稅. 國行水陸祭享供上諸司菜田 · 內需司田, 惠民署種藥田, 索無稅. …

제전. 관둔전 · 마전 · 원전 · 진부전 · 빙부전 · 수릉군전은 자체로 경작하고 조세는 없다. 나라에서 지내는 수륙재 물의 토지 · 나라의 각종 제향에 공급하는 각 관청의 채소밭 · 내수사전 · 혜민서의 종약전(種藥田)은 모두 조세가 없다.

…

▶ 戶典 > 諸田 > [大典]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諸田. … ○祭享供上諸司菜田, 內醫院 · 惠民署種藥田, 索免稅賦. [經] [補]

…

제전. … ○나라의 각종 제향에 공급하는 각 관청의 채소밭 · 내수사전 · 혜민서의 종약전(種藥田)은 모두 조세가 없다. [경국대전] [보충] …

▶ 戶典 > 諸田 > [免稅 · 免賦者]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諸田] [原] 官屯田 · 馬田 · 院田 · 津夫田 · 氷夫田 · 守陵軍田, 則自耕無稅, 國行水陸田 · 祭享供上諸司菜田 · 內需司田 · 惠民署種藥田, 索無稅, …

[제전] [경국대전] 관둔전 · 마전 · 원전 · 진부전 · 빙부전 · 수릉군전은 자체로 경작하고 조세는 없다. 나라에서 지내는 수륙재 물의 토지 · 나라의 각종 제향에 공급하는 각 관청의 채소밭 · 내수사전 · 혜민서의 종약전(種藥田)은 모두 조세가 없다. …

▶ 戶典 > 諸田 > [收稅原則-經國大典]

5. 지공(支供)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支供] 凡物，本曹關外，諸司驗承政院承傳帖印支供，監察出納。校書館·尙衣院·內醫院·掌苑署，提調出納。軍器寺甲冑·弓矢·槍劍·焰硝·火炮等物，提調出納。典醫監·惠民署，監察納而提調出。

[지공]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상의원·내의원·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궁시·창검·염초·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혜민서에서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戶典 > 支供 > [諸司驗承政院]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各道神堂退物，歸厚署·活人署，仍舊收納。

○각 도에 있는 신당(神堂)에서 제사 후 남은 물품은 귀후서와 활인서에서 전례에 따라 거두어들인다.

▶ 戶典 > 支供 > [各道神堂退物…]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년

○各道藥材，都會官監封上送，監察考封上送，監察考封署擇納。庫子盜出轉賣者，依代納貢物例，論斷。

○각 도에서 나는 약재는 도회관(都會官, 중심지)에서 감봉(監封, 포장하고 봉인함)하여 진상하되, 감찰이 약재의 봉인을 살핀 후 진상한다. 감찰은 혜민서에서 가려서 받는 약재의 봉인도 살펴본다. 고지기가 약재를 훔쳐내 판매한 경우는 공물을 대신 납부하는 사례를 따라서 죄를 논한다.

▶ 禮典 > 雜令 > [各道藥材…]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支供] ○凡物, 本曹關外, 諸司驗承政院承傳帖印支供, 監察出納. 校書館·尙衣院·內醫院·掌苑署, 提調出納. 軍器寺甲冑·弓矢·槍劍·焰硝·火砲等物, 提調出納. 典醫監·惠民署, 監察納而提調出.

[지공]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상의원·내의원·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궁시·창검·염초·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혜민서에서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戶典 上 > 支供 > [大典] > [凡物支供]

○各道神堂退物, 歸厚署·活人署仍舊收納.

○각 도에 있는 신당(神堂)에서 제사 후 남은 물품은 귀후서와 활인서에서 전례에 따라 거두어들인다.

▶ 戶典 上 > 支供 > 繢錄 > [各道神堂退物]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支供 ○凡物, 本曹關外諸司, 驗承政院承傳帖印, 支供, 監察出納. 校書館·尙衣院·內醫院·掌苑署, 提調出納. 軍器寺甲冑·弓矢·槍劍·焰硝·火砲等物, 提調出納. 典醫監·惠民署, 監察納而提調出.

지공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상의원·내의원·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궁시·창검·염초·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혜민서에서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戶典 > 支供 > [大典]

[續錄] … ○各道神堂退物, 歸厚署·活人署, 仍舊收納. …

[대전속록] … ○각 도에 있는 신당(神堂)에서 제사 후 남은 물품은 귀후서와 활인서에서 전례에 따라 거두어들인다. …

▶ 戶典 > 支供 > 《續錄》

속대전(續大典) 1746년

○軍資監米穀進排內司 · 內局時, 切勿添下. 諸宮家 · 都監以下, 及掖庭 · 軍門頒給時, 侵責本監所屬者, 入啓治罪. 凡各項料米, 皆自受.

○군자감에서 내수사나 내의원에 곡식을 드릴 때는 절대로 더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각 궁방이나 도감 이하 및 액정서나 군문에 배급할 때 본 군자감 소속인에게 트집을 잡는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죄를 다스린다. 각 자리에 급료로 주는 쌀은 모두 직접 받는다.

▶ 戶典 > 支供 > [軍資監米穀進排]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軍資監米穀, 進排內司 · 內局時, 切勿添下. [續] ○內司, 自來受去. [增]

○군자감에서 내수사나 내의원에 곡식을 드릴 때는 절대로 더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속대전] ○내수사는 직접 와서 받아 간다. [추가]

▶ 戶典 > 倉庫 > 支供 > [軍資監米穀進排]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支供] [原] 凡物, 本曹關外, 諸司驗承政院承傳帖印支供, 監察出納. 校書館 · 尚衣院 · 內醫院 · 掌苑署, 提調出納. 軍器寺甲冑 · 弓矢 · 槍劍 · 焰硝 · 火炮等物, 提調出納. 典醫監 · 惠民署, 監察納而提調出.

[지공] [경국대전]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 · 상의원 · 내의원 · 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 · 궁시 · 창검 · 염초 · 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 · 해민서에서

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戶典 > 支供 > [凡物監察出納]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 1939년

宣惠廳六道五十七貢, 作爲魚鱗排等上下. … ○內醫院 ○典醫監 ○惠民署 …
선혜청에서는 6도에서 바친 57가지 공물을 차례대로 등급을 작성하여 지급한다. …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

▶ 財用篇 > 各貢 > 作貢

… ○英宗戊寅, 議政府朔下不足米十石, 藥材價米十五石, 定式上下. ○本廳都提調 · 提調 · 郎廳 · 員役驅價朔下 · 公廨修補等, 各樣公用, 自各該廳舉行矣. …
○別使行, 紿京盤纏時, 譯官 · 醫官 · 軍官, 及寫字 · 畫員 · 內局書員等盤纏, 有備局知委後分給. 堂上, 錢三百兩或二百五十兩, 堂下, 二百五十兩或二百兩, 額數亦依備局知委磨鍊. … ○內局瓊玉膏監劑時, 提調及醫官役員等盤纏, 隨所報上下. 每日, 提調二兩, 醫官七錢, 書員五錢, 水工 · 軍士各三錢. 日字額數, 依內局所報上下.

… ○영조 무인년(1758)에 달마다 의정부에 지급하는 쌀의 부족분 10석과 약재 값으로 쓰는 쌀 15석을 규정으로 만들어 지급하게 하였다. ○본 진휼청의 도제조 · 제조 · 낭청 · 원역에게 달마다 지급하던 구가(驅價)⁴와 건물 수리 등 각종 공무 비용은 각각 해당 관청에서 거행한다. … ○별사행(別使行)에게 경반전(京盤纏, 사행 비용)을 내어줄 때 역관 · 의관 · 군관 · 사자관 · 화원 · 내의원의 서원들에게 주는 반전(盤纏, 비용)은 비변사의 지위(知委, 통지) 후에 나눠준다. 당상관은 300냥이나 250냥, 당하관은 250냥이나 200냥. 인원도 비변사의 통지에 따라 마련한다. … ○내의원에서 경옥고 조제를 감독할 때 제조와 의관 · 담당자들에게 주는 반전(盤纏, 비용)은 보고에 따라서 지급한다. 매일 제조는 2냥, 의관은 7전, 서원은 5전, 수공과 군사는 각각 3전이다. 날짜와 인원은 내의원의 보고에 의하여 지급한다.

▶ 財用篇 > 賑恤廳 事例 > 總例

4 구가(驅價) : 관원이 부리는 하인의 급료 뷔으로 받던 비용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支供] [原] 凡物，本曹關外，諸司驗承政院承傳帖印支供，監察出納。校書館·尙衣院·內醫院·掌苑署，提調出納。軍器寺甲冑·弓矢·槍劍·焰硝·火炮等物，提調出納。典醫監·惠民署，監察納而提調出。

[지공] [경국대전]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상의원·내의원·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궁시·창검·염초·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혜민서에서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戶典 > 支供 > [凡物監察出納]

○軍資監米穀進排內司·內局時，切勿添下。[增] 內司，自來受去。諸宮家·都監以下及掖庭·軍門頒給時，侵責本監所屬者，入啓治罪。凡各項料米，皆自受。

○군자감에서 내수사나 내의원에 곡식을 드릴 때는 절대로 더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대전통편] ○내수사는 직접 와서 받아 간다. 각 궁방이나 도감 이하 및 액정서나 군문에 배급할 때 본 군자감 소속인에게 트집을 잡는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죄를 다스린다. 각 자리에 급료로 주는 쌀은 모두 직접 받는다.

▶ 戶典 > 支供 > [軍資監米穀進排]

6. 세공(稅貢)

각사수교(各司受教) 1546-1576년

○癸丑正月初四日承傳。“近來紀綱不立，頑慢成習。凡常貢之物，視為尋常，全不用意，已為無狀。至於藥材之貢段，性命所關，不容可忽叱分不喻，近來風氣不

順，民多疾病，不得服藥，多致夭札，皆由於外貢不納，極爲寒心。其罪不可不治是在果，公罪乙仍于，守令等尤不用心是如爲昆，累年不納尤甚者一二人乙罷職，以懲其餘，庶使民生不至夭札事。”

○계축년(1553, 명종 8) 정월 4일에 받은 전교이다. “근래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여 완악하고 거만한 풍습이 생겼다. 상례로 바치는 공물을 평범하게 여기고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니 무례한 짓이다. 공물로 바치는 약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으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근래에 기후가 좋지 못해 병에 걸린 백성들이 많은데도 약을 복용할 수 없어 요절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는 모두 지방에서 공물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기는 하나 업무로 인한 죄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니 여러 해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것이 특히 심한 자 한두 명을 파직하여 다른 수령들에게 본보기로 징계함으로써 부디 백성들이 요절하지 않도록 하라.”

▶ 禮曹受敎 > 43. 癸丑正月初四日承傳

○內醫院都提調單子內，前矣受敎節該，守令等亦，不小進上藥材，置之度外，用意栽養不冬，頑慢爲白昆，今後甘草用意栽養不冬，以致多數枯損，及生長數少，尤甚各官守令乙良，推考罷黜，之次各官守令乙良，降資，色吏乙良置，從重科斷，以懲其慢，何如？嘉靖二十二年正月十二日，啓，依單子施行。

○내의원 도제조의 단자 내용이다. “지난 수교를 요약하면 ‘수령들이 진상할 약재를 진상하지 않거나 적게 진상하면서 공물을 도외시하고 방치하고 있고, 신경 써서 재배하지도 않으므로 풍습이 완악하고 거만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후에 감초를 신경 써서 재배하지 않아서 대부분 말라죽거나 수확량이 적게 된다면 특히 심한 고을의 수령은 문책하여 파직하고, 그다음 심한 고을의 수령은 자급을 강등하며, 담당 아전도 무거운 형법을 적용하여 거만함을 징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단자를 가정 32년(1553, 명종 8) 정월 12일에 주상께 아뢰니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 禮曹受敎 > 44. 内醫院都提調單子內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 1939년

內醫院 ○米三千三百三十六石九斗九升九合 氷米十一石六斗六升六合, 米一千六百八十一石十二斗二升三合, 田米二十九石八斗, 代木四十二同三疋七尺, 代布六疋, 代錢五千四百六十四兩八錢四分. 嶺南四等 米三百六十六石十三斗七升二合五夕, 代木七同十六疋二十一尺, 代錢七百三十二兩八錢, 湖南三等 米三百八十一石七斗八升四合, 代木九同四十四疋七尺, 代錢九百八十四兩八錢. 湖西三等. 米四百五十八石二斗三升九合五夕, 代木十一同三十九疋, 代錢一千一百七十二兩, 京畿三等 米二百四石三斗一升一合五夕, 代木五同三十六疋十四尺, 代錢五百七十二兩八錢. 江原三等. 米七十一石九斗七合, 田米一石十四斗, 代木二同五疋, 代布六疋, 代錢九十兩. 海西三等. 米一百九十九石六斗八合五夕, 田米二十七石九斗, 代木五同十二疋, 代錢一千九百十二兩四錢四分.

蒼朮 每斤六斗, 京圻, 白朮 每斤十斗, 京圻, 升麻 每斤六斗, 京圻, 沙蓼 每斤四斗, 京圻, 柴胡 每斤十三斗五升, 京圻, 當歸 每斤八斗五升, 京圻, 白芷 每斤八斗, 京圻, 山藥 每斤十一斗, 京圻, 繢斷 每斤七斗, 京圻, 桑白皮 每斤三斗, 京圻, 苦蕷 每斤三斗, 京圻, 防風 每斤九斗, 京圻, 藍漆 每斤三斗, 京圻, 地榆 每斤五斗, 京圻, 天南星 每斤七斗, 京圻, 地骨皮 每斤七斗, 京圻, 虎杖根 每斤三斗, 京圻, 菀青 每錢十斗, 京圻, 五加皮 每斤八斗, 京圻, 赤箭 每斤十一斗, 京圻, 天麻 每斤十三斗, 京圻, 杏仁 每斤六斗, 京圻, 蜈蚣 每條三斗, 京圻, 陳艾 每同五斗, 京圻, 半夏 每斤十二斗五升, 京圻, 澤瀉 每斤十斗, 京圻, 覆盆子 每斤一石五斗, 京圻, 秋隼 每斗一斗, 京圻, 郁李仁 每斤四斗, 京圻, 桃仁 每斤四斗, 京圻, 芸蔥 每斤十斗, 京圻, 露蜂房 每兩三斗, 京圻, 川椒 每斤三斗, 京圻, 山楂 每斤一石, 京圻, 木瓜 每箇五升, 京圻, 鯉魚 每尾十斗, 京圻, 枸杞子 每斤八斗, 京圻, 臘狸 每口一石, 京圻, 鱉甲 每箇二斗, 京圻, 金銀花 每斤八斗或五斗, 京圻, 紫草茸 每斤二斗, 京圻, 榆白皮 每斤二斗, 京圻, 乾葛 每斤五斗, 京圻, 三棱 每斤十斗, 京圻, 秦艽 每斤六斗, 京圻, 瓜蔞仁 每斤六斗, 京圻, 龜板 每斤二斗, 京圻, 漏蘆 每斤五斗, 京圻, 蟬退 每兩十斗, 京圻, 連翹 每斤二石, 京圻, 赤茯苓 每斤二石, 湖南, 白茯苓 每斤三石, 湖南, 生蓼 每兩三石十二斗, 嶺南·海西, 牛黃 每部十五石, 三南·京江·海西, 麝香 每部二石, 三南·海西, 鹿茸 每對三石, 三南·江原·海西, 熊膽 每部三石, 三南·海西, 封裹雜物 京圻.

내의원 ○쌀 3,336석 9두 9흡 빙미(冰米) 11석 6두 6승 6흡, 쌀 1,681석 12두 2승 3흡, 전미(田米) 29석 8두, 대목(代木) 42동 3필 7척, 대포(代布) 6필, 대전(代錢) 5,464냥

8전 4푼. 영남 4분기 쌀 366석 13두 7승 3홉 5작, 대목 7동 16필 21척, 대전 732냥 8전, 호남 3분기 쌀 381석 7두 8승 4홉, 대목 9동 44필 7척, 대전 984냥 8전, 호서 3분기 쌀 458석 2두 3승 9홉 5작, 대목 11동 39필, 대전 1,172냥, 경기 3분기 쌀 204석 3두 1승 1홉 5작, 대목 5동 36필 14척, 대전 572냥 8전, 강원 3분기 쌀 71석 9두 7홉, 전미 1석 14두, 대목 2동 5필, 대포 6필, 대전 90냥, 해서 3분기 쌀 199석 6두 8홉 5작, 전미 27석 9두, 대목 5동 12필, 대전 1,912냥 4전 4푼.

창출 근(斤)당 6두, 경기, 백출 근당 6두, 경기, 승마 근당 6두, 경기, 사삼 근당 4두, 경기, 시호 근당 13두 5승, 경기, 당귀 근당 8두 5승, 경기, 백지 근당 8두, 경기, 산약 근당 11두, 경기, 속단 근당 7두, 경기, 상백피 근당 3두, 경기, 길경 근당 11두, 경기, 방풍 근당 9두, 경기, 남칠 근당 3두, 경기, 지유 근당 5두, 경기, 천남성 근당 7두, 경기, 지골피 근당 7두, 경기, 호장근 근당 3두, 경기, 원청 돈당 10두, 경기, 오가피 근당 8두, 경기, 적전 근당 11두, 경기, 천마 근당 13두, 경기, 행인 근당 6두, 경기, 석척 조(條)당 3두, 경기, 진애 동(同)당 5두, 경기, 반하 근당 12두 5승, 경기, 택사 근당 10두, 경기, 복분자 근당 1석 5두, 경기, 추모 근당 1두, 경기, 육리인 근당 4두, 경기, 도인 근당 4두, 경기, 궁궁 근당 10두, 경기, 노봉방 냥당 3두, 경기, 천초 근당 3두, 경기, 산사 근당 1석, 경기, 목과 개(箇)당 5승, 경기, 이어 마리당 10두, 경기, 구기자 근당 8두, 경기, 납리 마리당 1석, 경기, 별갑 매개에 2두, 경기, 금은화 근당 8두 혹은 5두, 경기, 자초용 근당 2두, 경기, 유백피 근당 2두, 경기, 건갈 근당 5두, 경기, 삼릉 근당 10두, 경기, 진교 근당 6두, 경기, 과루인 근당 6두, 경기, 구판 근당 2두, 경기, 누로 근당 5두, 경기, 선퇴 냥당 10두, 경기, 연교 근당 2석, 경기, 적복령 근당 2석, 호남, 백복령 근당 3석, 호남, 생삼 냥당 3석 12두, 영남 · 해서, 우황 부(部)당 15석, 삼남 · 경강 · 해서, 사향 매부에 2석, 삼남 · 해서, 녹용 대(對)당 3석, 삼남 · 강원 · 해서, 응담 부당 3석, 삼남 · 해서, 포장에 쓸 물품들 경기.

▶ 財用篇 > 各貢 > 作貢 > 內醫院

典醫監 ○米二千七百三十七石三斗二升二合四夕 氷米十石二升六合, 米八百八十七石九合四夕, 田米二十四石, 代木十二同三十三疋三尺五寸, 代布一同四十九疋, 代錢九千四百三十二兩九錢四分. 嶺南六等 米二百八十六石一斗七升七合五夕, 代木七同三十七疋二十四尺五寸, 代錢八千九百四十四兩九錢四分. 湖南三等 米一百三十八石十三斗一升三合五夕, 代木二同三十

二疋十四尺，代錢二百六十二兩。湖西二等 米二百九十八石十二斗一升七合九夕，代木二同十三疋，代錢二百二十六兩。京畿二等 米九十七石六斗八升九合五夕，田米二十四石。江原單等 米六十五石十一斗一升一合，代布一同四十九疋。

草人蓼 每兩二石十斗，嶺南，山茱萸 每斤十斗，嶺南，石茱萸 每兩二斗，嶺南，當歸 每斤八斗五升，嶺南·江原，赤茯苓 每斤二石十斗，兩南，枸杞子 每斤八斗，嶺南，柴胡 每斤十三斗五升，三南，天門冬 每斤一石，嶺南，竹茹 每兩一斗五升，嶺南，乾木瓜 每斤五斗，嶺南，地骨皮 每斤十斗，嶺南，車前子 每斤三斗，兩南，燈心 每兩二斗，嶺南，大棗 每斗五斗，嶺南，蜈蚣 每條六斗，嶺南，蕪荑 每斤一石五斗，嶺南，前胡 每斤十三斗，嶺南，漏蘆根 每斤五斗，嶺南，細辛 每斤十斗，嶺南，葛花 每兩一斗，嶺南，石膏 每斤八斗，嶺南，阿膠 每斤十斗，嶺南，桑白皮 每斤三斗，嶺南，自然銅 每兩六升二合五夕，嶺南，枳實 每斤八斗，嶺南，青木香 每斤三石三斗，嶺南，覆盆子 每斤十斗，嶺南，葶藶子 每斤一石，嶺南，鵝頭實 每斤一石一斗，嶺南，柿蒂 每兩六升二合五夕，嶺南，烏賊魚骨 每兩五升，嶺南，乾地黃 每斤一石，嶺南·湖西，蔓荊子 每斤一石五斗，湖南，胡桃 每斤四斗，湖南，生薑 每斤二斗五升，湖南，藁本 每斤一石，湖南，薑皮 每兩三升一合二夕五里，湖南，白扁豆 每斤湖南七斗五升，京圻六斗，乾薑 每斤一石五斗，湖南，甘菊 每斤五石五斗，湖南，牡丹皮 每斤二石，湖南，蓮子 每斤四斗，湖南，白牽牛子 每斤十斗，湖南，蘭香葉 每兩三升一合二夕五里，湖南，半夏 每斤十二斗五升，兩湖·江原，續隨子 每斤十斗，湖南，瓜萎仁 每斤五斗，湖南，天麻 每斤一石，湖南，皂莢 每斤八斗，湖南，薄荷 每斤十斗，湖南，紫莞 每斤五斗，湖南，榧子 每兩九升三合七夕，湖南，貫眾 每斤五斗，湖南，梔子 每斤二石五斗，湖南，黑荳子 每升一斗二升五合，湖南，豬膽 每部五斗，湖南，苦蓼 每斤四斗，湖南，虎杖根 每斤四斗，湖南，草薢 每斤二斗五升，湖南，烏梅 每斤十斗，湖南，青大竹 每箇十斗，湖南，威靈仙 每斤十斗，湖南，蛇箱子 每斤十斗，湖南，茴香 每斤五石，湖南，蟬殼 每兩十斗，湖西·江原，免絲子 每斤五斗，湖西，赤芍藥 每斤十斗，湖西，白朮 每斤十一斗，湖西，蛇脫皮 每兩五斗，湖西，赤箭 每斤一石五斗，湖西，天南星 每斤湖西十斗，江原七斗，麥門冬 每斤一石五斗，湖西，獨活 每兩八升三合一夕，湖西，商陸 每斤十斗，湖西，虎骨 每斤十斗，湖西，白膠香 每兩二斗五升，湖西，蒼朮 每斤湖西七斗，京圻六斗，蘇子 每斤十斗，湖西，五加皮 每斤六斗，湖西，熟地黃 每斤一石五斗，湖西，遠志 每斤一石，三南，澤瀉 每斤十二斗，嶺南·湖西，三棱 每斤十斗，湖西，虎頭 每部十斗，湖西，黑牽牛子 每斤五斗，湖西，滑石 每斤十二斗五升，湖西，射干 每部十斗，

湖西, 白芍藥 每斤一石, 湖西, 防風 每斤十斗五升, 湖西, 菩蕷 每斤三斗五升, 湖西, 大黃 每斤一石, 湖西, 白附子 每斤一石, 湖西, 臘狐肝 每部一石十斗, 湖西, 五倍子 每斤十斗, 湖西, 常山 每兩一升五合七夕, 湖西, 大戟 每斤十斗, 湖西, 竹葉 每斤二斗五升, 湖西, 升麻 每斤八斗, 湖西, 香薷 每斤湖西五斗, 京圻六斗, 山藥 每斤十一斗, 京圻, 杏仁 每斤六斗, 京圻, 葛根 每斤五斗, 京圻, 痰藜子 每斤九斗, 京圻, 茵陳 每斤三斗, 京圻, 藍漆 每斤三斗, 京圻, 生地黃 每斤一石, 京圻, 陳艾 每同五斗, 京圻, 莞青 每錢十斗, 京圻, 川椒 每斤三斗, 京圻, 牡蠣 每斤三斗, 京圻, 石菖蒲 每斤七斗, 京圻, 酸醬 每兩三升一合, 京圻, 地榆 每斤五斗, 江原, 白芷 每斤八斗, 江原, 榆白皮 每斤四斗, 江原, 秦艽 每斤八斗, 江原, 五味子 每斤五斗六升, 江原, 木通 每斤二斗, 江原, 石決明 每兩二升五合, 江原, 海藻 每兩一升五合, 江原, 板藍根 每兩一升二合五夕, 江原, 黃蜜 每斤八斗, 江原, 白茯苓 每斤三石, 江原, 繢斷 每斤七斗, 江原, 白葵花 每兩二斗, 江原, 紫石 每兩四斗, 江原, 桔皮 每斤二斗, 江原, 石榴 根皮 每斤二石十斗, 嶺南, 燒木 每斤湖西江原二斗五升, 京圻三斗, 白芨 每斤一石十斗, 湖西, 役價 兩湖.

전의감 ○쌀 2,737석 3두 2승 2홉 4작. 빙미(冰米) 10석 2승 6홉, 쌀은 887석 9홉 4작, 전미(田米) 24석, 대목(代木) 12동 33필 3척 5촌, 대포(代布) 1동 49필, 대전(代錢) 9,432냥 9전 4푼 영남 6분기 쌀 286석 1두 7승 7홉 5작, 대목 7동 37필 24척 5촌, 대전 8,944냥 9전 4푼, 호남 3분기 쌀 183석 13두 1승 3홉 5작, 대목 2동 32필 14척, 대전 262냥, 호서 2분기 쌀 298석 12두 1승 7홉 9작, 대목 2동 13필, 대전 226냥, 경기 2분기 쌀 97석 6두 8승 9홉 5작, 전미 24석, 강원 단년 쌀 65석 11두 1승 1홉, 대포 1동 49필.

초인삼 낭당 2석 10두, 영남, 산수유 근당 10두, 영남, 석수유 낭당 2두, 영남, 당귀 근당 8두 5승, 영남·강원, 적복령 근당 2석 10두, 양남, 구기자 근당 8두, 영남, 시호 근당 13두 5승, 삼남, 천문동 근당 1석, 영남, 죽여 낭당 1두 5승, 영남, 건목과 근당 5두, 영남, 지골피 근당 10두, 영남, 차전자 근당 10두, 양남, 등심 낭당 2두, 영남, 대조 두당 5두, 영남, 오공 마리당 6두, 영남, 무이 근당 1석5두, 영남, 전호 근당 13두, 영남, 누로근 근당 5두, 영남, 세신 근당 10두, 영남, 길화 낭당 1두, 영남, 석고 근당 8두, 영남, 아교 근당 10두, 영남, 상백피 근당 3두, 영남, 자연동 낭당 6승 2홉 5작, 영남, 지실 근당 8두, 영남, 청목향 근당 3석 3두, 영남, 복분자 근당 10두, 영남, 정력자 근당

1석, 영남, 계두실 근당 1석 1두, 영남, 시체 냥당 6승 2흡 5작, 영남, 오적어골 냥당 5승, 영남, 건지황 근당 1석, 영남·호서, 만형자 근당 1석 5두, 호남, 호도 근당 4두, 호남, 생강 근당 2두 5승, 호남, 고본 근당 1석, 호남, 강피 냥당 3승 1흡 2작 5리, 호남, 백편두 근당 2두 5승, 경기 6두, 건강 근당 1석 5두, 호남, 감국 근당 5석 5두, 호남, 목단피 근당 2석, 호남, 연자 근당 4두, 호남, 백견우자 근당 10두, 호남, 난향엽 냥당 3승 1흡 2작 5리, 호남, 반하 근당 12두 5승, 양호(兩湖)·강원, 속수자 근당 10두, 호남, 과루인 근당 5두, 호남, 천마 근당 1석, 호남, 조협 근당 8두, 호남, 박하 근당 10두, 호남, 자완 근당 5두, 호남, 비자 냥당 9승 3흡 7작, 호남, 관중 근당 5두, 호남, 치자 근당 2석 5두, 호남, 흑임자 승당 1두 2승 5흡, 호남, 저담 부당 5두, 호남, 고삼 근당 4두, 호남, 호장근 근당 10두, 호남, 비해 근당 2두 5승, 호남, 오매 근당 10두, 호남, 청대죽 개당 10두, 호남, 위령선 근당 10두, 호남, 사상자 근당 10두, 호남, 회향 근당 5석, 호남, 선각 냥당 10두, 호서·강원, 토사자 근당 5두, 호서, 적작약 근당 10두, 호서, 백출 근당 11두, 호서, 사탈피 냥당 5두, 호서, 적전 근당 1석 5두, 호서, 천남성 근당 호서는 10두, 강원은 7두, 맥문동 근당 10두, 호서, 호골 근당 10두, 호서, 백교향 냥당 2두 5승, 호서, 창출 근당 호서 7두, 경기 6두, 소자 근당 10두, 호서, 오가피 근당 6두, 호서, 숙지황 근당 1석 5두, 호서, 원지 근당 1석, 삼남, 택사 근당 12두, 영남·호서, 삼릉 근당 10두, 호서, 호두 부당 10두, 호서, 흑견우자 근당 5두, 호서, 활석 근당 12두 5승, 호서, 사간 부당 10두, 호서, 백작약 근당 1석, 호서, 방풍 근당 10두 5승, 호서, 길경 근당 3두 5승, 호서, 대황 근당 1석, 호서, 백부자 근당 1석, 호서, 납호간 부당 1석 10두, 호서, 오배자 근당 10두, 호서, 상산 냥당 1승 5흡 7작, 호서, 대극 근당 10두, 호서, 죽엽 근당 2두 5승, 호서, 승마 근당 8두, 호서, 향유 근당 호서 5두, 경기 6두, 산야 근당 11두, 경기, 행인 근당 6두, 경기, 갈근 근당 5두, 경기, 질려자 근당 9두, 경기, 인진 근당 3두, 경기, 남칠 근당 3두, 경기, 생지황 근당 1석, 경기, 진애 동당 5두, 경기, 원청 돈당 10두, 경기, 천초 근당 3두, 경기, 모려 근당 3두, 경기, 석창포 근당 7두, 경기, 산장 냥당 3승 1흡, 경기, 지유 근당 5두, 강원1, 백지 근당 8두, 강원, 유백피 근당 4두, 강원, 진교 근당 8두, 강원, 오미자 근당 5두 6승, 강원, 목통 근당 2두, 강원, 석결명 냥당 2승 5흡, 강원, 해조 냥당 1승 5흡, 강원, 판람근 냥당 1승 2흡 5작, 강원, 황밀 근당 8두, 강원, 백복령 근당 3석, 강원, 속단 근당 7두, 강원, 백규화

냥당 2두, 강원, 자석 냥당 4두, 강원, 벽피 근당 2두, 강원, 석류근피 근당 2석 10두, 영남, 소목 근당 호서와 강원은 2두 5승, 경기는 3두, 백급 근당 1석 10두, 호서, 품삯 양호.

▶ 財用篇 > 各貢 > 作貢 > 典醫監

惠民署 ○米三千六百八十七石三斗二升四合一夕 水米十三石七斗三升四合五夕, 米一千五百二十八石十四斗六夕, 田米一百十六石, 代木二十同三十六疋三十一尺五寸, 代布二同二十疋, 代錢九千八百五十八兩九錢三分. 嶺南五等 米二百八十七石一斗九升三合六夕, 代木七同三十八疋二十四尺五寸, 代錢四千五百七十九兩六錢, 湖南四等 米六百八十一石五斗五升八合, 代木十同四十疋七尺, 代錢一千七十八兩, 湖西四等 米二百八十九石六斗一升, 代木二同八疋, 代錢四千二百一兩三錢三分. 京畿二等. 米一百五十石十四斗七升一合五夕, 田米三十六石, 江原二等 米一百二十石六升七合五夕, 田米八十石, 代布二同二十疋.

草人蔘 每兩二石十斗, 嶺南·湖西, 枸杞子 每斤八斗, 嶺南, 阿膠 每斤十斗, 嶺南, 蛭蛇 每條六斗, 嶺南, 枇實 每斤八斗, 嶺南, 蘇子 每斤八斗, 嶺南, 柴胡 每斤十三斗五升, 兩南, 遠志 每斤一石, 三南, 檉子 每斤二石五斗, 嶺南, 細辛 每斤十斗, 兩南, 車前子 每斤三斗, 兩南, 檵子 每兩九升三合七夕, 嶺南, 燈心 每斤二石二斗, 嶺南, 竹茹 每兩一斗五升, 嶺南, 繢隨子 每兩六升六合六夕, 嶺南, 葛花 每兩一斗, 嶺南, 青木香 每斤三石三斗, 嶺南, 漏蘆 每斤五斗, 嶺南, 栲蒂 每斤十斗, 嶺南, 烏賊魚骨 每斤八斗, 嶺南, 石茱萸 每兩二斗, 嶺南, 澤瀉 每斤十二斗, 三南, 山茱萸 每斤十斗, 嶺南, 薑皮 每斤五斗, 湖南, 胡桃 每斤四斗, 湖南, 乾薑 每斤一石五斗, 湖南, 山藥 每斤一石, 兩湖, 赤箭 每斤一石五斗, 湖南, 大黃 每斤一石, 湖南, 皂莢 每斤八斗, 湖南, 兔絲子 每斤五斗, 湖南, 安息香 每斤一石, 湖南, 玄蔘 每斤一石五斗, 湖南, 猪膽 每部湖南五斗, 江原八斗, 藁本 每斤一石, 湖南, 牡丹皮 每斤二石, 湖南, 苦蔘 每斤四斗, 湖南, 茴香 每斤五石, 湖南, 天南星 每斤十斗, 湖南, 茵陳 每斤二斗五升, 兩湖, 山棗仁 每斤一石, 湖南, 地榆 每斤七斗, 兩湖, 甘菊 每斤五石五斗, 兩湖, 蓮花藥 每兩二斗五升, 湖南, 三稜 每斤十斗, 湖南, 石榴根皮 每斤二石十斗, 湖南, 白牽牛子 每斤十斗, 兩湖, 乾木瓜 每斤五斗, 湖南, 生薑 每斤二斗五升, 湖南, 蓮子 每斤四斗, 湖南, 烏梅 每斤十斗, 湖南, 天門冬 每斤一石, 湖南, 當歸 每斤八斗五升, 兩湖·京圻, 菩蕷 每斤三斗五升, 湖南, 石斛 每斤一石, 湖南, 半夏 每斤十二斗五升, 湖南, 麥門冬 每斤一石五斗, 湖南, 白芍藥 每斤湖南一石, 江原十四斗, 熟地黃 每斤一石五斗, 湖南, 防風 每斤十斗五升, 湖南, 白茯苓

每斤三石五斗, 兩湖, 蒼朮 每斤湖南七斗, 江原六斗, 皂角刺 每兩一斗二升五合, 湖南, 地骨皮 每斤十斗, 湖南, 白朮 每斤湖南十一斗, 京江十斗, 蟬殼 每斤十石十斗, 湖南, 乾地黃 每斤一石, 兩湖, 白扁豆 每斤七斗五升, 兩湖, 白芷 每斤十斗, 湖南, 蘭香葉 每斤五斗, 湖南, 玄胡索 每斤一石十斗, 湖南, 自然銅 每斤十斗, 湖南, 露蜂房 每斤十斗, 湖西, 竹葉 每斤二斗五升, 湖西, 葛根 每斤五斗, 湖西, 紫莞 每斤五斗, 湖西, 蒲黃 每斤一石, 湖西, 滑石 每斤十二斗五升, 湖西, 熊膽 每部二石十斗, 湖西江原, 獨活 每兩八升三合一夕二里, 湖西, 鴛粟殼 每斤一石, 湖西, 茯神 每斤二石十斗, 湖西, 天麻 每斤湖西一石, 江原十三斗, 茅香 每斤五斗, 湖西, 杏仁 每斤五斗, 湖西, 蔓荊子 每斤一石五斗, 湖西, 燒木 每斤湖西二斗五升, 京折三斗, 蜈蚣 每箇四斗, 湖西, 商陸 每箇十斗, 湖西, 牛膝 每斤五斗, 湖西, 覆盆子 每斤十斗, 湖西, 黑荳子 每升一斗二升五合, 湖西, 虎杖根 每斤四斗, 湖西, 常山 每斤二斗五升, 湖西, 草薢 每斤二斗五升, 湖西, 大棗 每斗五斗, 湖西, 白蛤 每斤一石, 湖西, 薜皮 每斤二斗五升, 湖西, 麻子 每斤三斗五升, 湖西, 藍葉 每斤三斗, 湖西, 麻花 每兩四斗, 湖西, 五加皮 每斤六斗, 湖西, 薄荷 每斤十斗, 湖西, 射干 每斤十斗, 湖西, 黃芩 每斤一石, 湖西, 惡實 每斤五斗, 京折, 香薷 每斤六斗, 京折, 草烏頭 每斤三斗, 京折, 蒺藜子 每斤九斗, 京折, 陳艾 每同五斗, 京折, 莞青 每兩六石十斗, 京折, 繢斷 每斤七斗, 京折, 川椒 每斤三斗, 京折, 牡蠣 每斤三斗, 京折, 石菖蒲 每斤七斗, 京折, 瓜蔞仁 每斤五斗, 江原, 赤茯苓 每斤二石五斗, 江原, 生地黃 每斤十斗, 江原, 石決明 每兩二升五合, 江原, 黃芪 每斤十二斗, 江原, 木通 每斤二斗, 江原, 猪脂 每升四斗, 江原, 大戟 每斤八斗, 江原, 前胡 每斤十二斗, 江原, 赤芍藥 每斤八斗, 江原, 石膏 每斤八斗, 江原, 虎骨 每部八斗, 江原, 五倍子 每斤八斗, 江原, 秦艽 每斤八斗, 江原, 桑白皮 每斤三斗, 江原, 藍漆 每斤二斗五升, 江原, 威靈仙 每斤八斗, 江原, 虎頭 每部八斗, 江原, 白芨 每斤一石五斗, 江原, 黑牽牛子 每斤四斗, 江原, 防己 每兩一斗, 江原, 木賊 每斤四斗, 江原, 郁李仁 每斤五斗, 江原, 鹿茸 每對二石, 江原, 役價 兩湖.

혜민서 ○쌀 3,687석 3두 2승 4흡 1작 빙미(冰米) 13석 7두 3승 4흡 5작, 쌀 1,528석 14두 6작, 전미 116석, 대목 20동 36필 31척 5촌, 대포 2동 20필, 대전 9,858냥 9전 3푼. 영남 5분기 쌀 287석 1두 9승 3흡 6작, 대목 7동 38필 24척 5촌, 대전 4,579냥 6전, 호남 4분기 쌀 681석 5두 5승 8흡, 대목 10동 40필 7척, 대전 1,078냥, 호서 4분기 쌀 289석 6두 1승, 대목 2동 8필, 대전 4,201냥 3전 3푼, 경기 2분기 쌀 150석 14두 7승 1흡 5작, 전미 36석, 강원 2분기 쌀 120석 6승 7흡 5작, 전미 80석, 대포 2동 20필

초인삼 냉당 2석 10두, 영남·호서, 구기자 근당 8두, 영남, 아교 근당 10두, 영남, 오공
마리당 6두, 영남, 지실 근당 8두, 영남, 소자 근당 8두, 영남, 시호 근당 13두 5승, 양남,
원지 근당 1석, 삼남, 치자 근당 2석 5두, 영남, 세신 근당 10두, 양남, 차전자 근당 3두,
양남, 비자 냉당 9승 3흡 7작, 영남, 등심 두당 2석 2두, 영남, 죽여 냉당 1두 5승, 영남,
속수자 냉당 6승 6흡 6작, 영남, 갈화 냉당 1두, 영남, 청목향 근당 3석 3두, 영남, 누로
근당 5두, 영남, 시체 근당 10두, 영남, 오적어골 근당 8두, 영남, 석수유 냉당 2두,
영남, 택사 근당 12두, 삼남, 산수유 근당 10두, 영남, 강피 근당 5두, 호남, 호도 근당
4두, 호남, 건강 근당 1석 5두, 호남, 산약 근당 1석, 양호, 적전 근당 1석 5두, 호남,
대황 근당 1석, 호남, 조협 근당 8두, 호남, 토사자 근당 5두, 호남, 안식향 근당 1석,
호남, 현삼 근당 1석 5두, 호남, 저담 부당 호남 5두, 강원 8두, 고본 근당 1석, 호남,
목단피 근당 2석, 호남, 고삼 근당 4두, 호남, 회향 근당 5석, 호남, 천남성 근당 10두,
호남, 인진 근당 2두 5승, 양호, 산조인 근당 1석, 호남, 지유 근당 7두, 양호, 감국 근당
5석 5두, 양호, 연화예 냉당 2두 5승, 호남, 삼릉 근당 10두, 호남, 석류근피 근당 2석
10두, 호남, 백견우자 근당 10두, 양호, 건목과 근당 5두, 호남, 생강 근당 2두 5승,
호남, 연자 근당 4두, 호남, 오매 근당 10두, 호남, 천문동 근당 1석, 호남, 당귀 근당
8두 5승, 양호·경기, 길경 근당 3두 5승, 호남, 석곡 근당 1석, 호남, 반하 근당 12두
5승, 호남, 맥문동 근당 1석 5두, 호남, 백자약 근당 호남 1석, 강원 14두, 숙지황 근당
1석 5두, 호남, 방풍 근당 10두 5승, 호남, 백복령 근당 3석 5두, 양호, 창출 근당 호남
7두, 강원 6두, 조각자 냉당 1두 2승 5흡, 호남, 지골피 근당 10두, 호남, 백출 근당
호남 11두, 경강(京江) 10두, 선각 근당 10석 10두, 호남, 건지황 근당 1석, 양호, 백편두
근당 7두 5승, 양호, 백지 근당 10두, 호남, 난향엽 근당 5두, 호남, 현호색 근당 1석
10두, 호남, 자연동 근당 10두, 호남, 노봉방 근당 10두, 호서, 죽엽 근당 2두 5승, 호서,
갈근 근당 5두, 호서, 자완 근당 5두, 호서, 포황 근당 1석, 호서, 활석 근당 12두 5승,
호서, 응담 부당 2석 10두, 호서·강원, 독활 냉당 8승 3흡 1작 2리, 호서, 앵속각 근당
1석, 호서, 복신 근당 2석 10두, 호서, 천마 근당 호서 1석, 강원 13두, 모향 근당 5두,
호서, 행인 근당 5두, 호서, 만형자 근당 1석 5두, 호서, 소목 근당 호서 2두 5승, 경기
3두, 석척 개당 4두, 호서, 상륙 개당 10두, 호서, 우슬 근당 5두, 호서, 복분자 근당
10두, 호서, 흑임자 승당 1두 2승 5흡, 호서, 호장근 근당 4두, 호서, 상산 근당 2두

5승, 호서, 비해 근당 2두 5승, 호서, 대조 매두에 5두, 호서, 백합 근당 1석, 호서, 벽피
근당 2두 5승, 호서, 마자 근당 3두 5승, 호서, 남엽 근당 3두, 호서, 마화 냥당 4두,
호서, 오가피 근당 6두, 호서, 박하 근당 10두, 호서, 사간 근당 10두, 호서, 황금 근당
1석, 호서, 악실 근당 5두, 경기, 향유 근당 6두, 경기, 초오두 근당 3두, 경기, 질려자
근당 9두, 경기, 진애 동당 5두, 경기, 원청 냥당 6석 10두, 경기, 속단 근당 7두, 경기,
천초 근당 3두, 경기, 모려 근당 3두, 경기, 석창포 근당 7두, 경기, 과루인 근당 5두,
강원, 적복령 근당 2석 5두, 강원, 생지황 근당 10두, 강원, 석결명 냥당 2승 5흡, 강원,
황기 근당 12두, 강원, 목통 근당 2두, 강원, 저지 승당 4두, 강원, 대극 근당 8두, 강원,
전호 근당 12두, 강원, 적작약 근당 8두, 강원, 석고 근당 8두, 강원, 호골 부당 8두,
강원, 오배자 근당 8두, 강원, 진교 근당 8두, 강원, 상백피 근당 3두, 강원, 남칠 근당
2두 5승, 강원, 위령선 근당 8두, 강원, 호두 부당 8두, 강원, 백급 근당 1석 5두, 강원,
흑견우자 근당 4두, 강원, 방기 냥당 1두, 강원, 목적 근당 4두, 강원, 육리인 근당 5두,
강원, 녹용 대당 2석, 강원, 품삯 양호.

▶ 財用篇 > 各貢 > 作貢 > 惠民署

關東蓼契 ○錢一萬四千三十二兩. 江原二等.

生蓼, 每斤錢一千二百八十兩. 補縮蓼, 每斤錢一千二百三十二兩.

관동삼계 ○돈 14,032냥, 강원 2분기.

생삼은 근당 돈 1,280냥. 보축삼(補縮蓼)⁵은 근당 돈 1,232냥.

▶ 財用篇 > 各貢 > 作貢 > 關東蓼契

… 唐藥材契. 龍腦 · 小腦 · 甘松 · 雾陵 · 沈東 · 莓草 · 八角 · 丁香 · 三乃子 · 白檀 · 沈香等
價, 折錢二千九十一兩 … 牛黃契. 牛黃價, 折錢三千兩 … 芎芎未契. 芎芎未價, 折錢一百十
六兩. …

… 당약재계. 용뇌 · 소뇌 · 감송 · 영릉 · 침속 · 비초 · 팔각 · 정향 · 삼내자 · 백단 · 침향 등
의 값 절전(折錢, 환산한 돈)이 2,091냥 … 우황계. 우황값 절전이 3,000냥 … 궁궁말계.

⁵ 보축삼(補縮蓼) : 축난 인삼을 보충하는 것이다.

慶尙道羅蔴, 春等二斤, 秋等二斤. 江原道江蔴, 春等三十斤, 秋等二十斤, 臘等十斤. 肅宗戊子, 因御史沈壽賢書啓, 春等十斤·秋等五斤特減. 景宗庚子, 臘等三斤特減. 英宗己卯, 春等二十斤, 作京貢. 正宗丙申, 京貢蔴十斤, 特爲權減, 丁未, 秋等六兩·臘等四兩特減. 壬子, 因杆城慰諭御史洪大協書啓, 秋等六兩·臘等四兩特減, 而丁未·壬子兩年, 鐵減二十兩, 原價錢一千四百兩, 納于惠廳, 自該廳每年移送內局, 以作醫官等劣蔴之需矣. 丁巳, 惠堂鄭民始, 以劣蔴本自京貢中上下, 此錢留置本廳, 待京貢不足之時, 隨所用移送事筵奏, 定式. 當寧丁卯, 江陵府使李儒慶上疏, 請作京貢, 特命減秋等十四兩三錢·臘等四兩, 而原價納于惠廳儲留. 合減三十斤六兩三錢.

경상도 나삼(羅蔴)은 춘등 2근·추등 2근이다. 강원도 강삼(江蔴)은 춘등 30근·추등 20근·납등 10근이다. 숙종 무자년(1708, 숙종 38)에 어사 심수현(沈壽賢)의 서계에 의하여 춘등 10근·추등 5근을 특별히 감했고, 경종 경자년(1720, 경종 즉위)에 납등 3근을 특별히 감했고, 영종 기묘년(1759, 영조 35)에 춘등 20근을 경공(京貢)으로 만들었고, 정조 병신년(1776, 정조 즉위)에 경공삼 10근을 임시로 특별히 감했다. 정미년(1787, 정조 11)에 추등 6냥·납등 4냥을 특별히 감하게 하고, 임자년(1792, 정조 16)에 간성위유어사(杆城慰諭御史) 흥대협(洪大協)의 서계에 의하여 추등 6냥·납등 4냥을 특별히 감했다. 정미·임자년에 줄인 총 20냥의 원가 전문 1,400냥은 선혜청에 납부하게 하여 담당 관청으로부터 해마다 내의원에 보냄으로써 의관들이 열삼(劣蔴, 품질이 낮은 인삼)에 대한 보충분으로 쓰게 하였다. 정사년(1797, 정조 21)에 선혜청 제조 정민시(鄭民始)가 열삼에 대한 보충분은 본래 경공 중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이 돈은 선혜청에 보관했다가 경공이 부족할 때 필요에 따라 보내야 한다고 건의하여 규정으로 되었다. 당시 정묘년(1807, 순조 7)에 강릉부사 이유경(李儒慶)이 상소하여 경공으로 만들기를 청하여, 특명으로 추등 14냥 3돈, 납등 4냥을 감했고, 원래의 값을 선혜청에 납부하여 보관하게 했다. 총합 30근 6냥 3돈을 감했다.

大同. 春秋等, 嶺南蓼九斤十四兩 每兩價十二兩五錢, 海西三斤 每兩價十六兩, 合代錢二千七百四十三兩, 以爲內局官用矣. 正宗辛丑, 作蓼一斤四兩, 入于月計, 而計除於劣蓼中.

대동삼. 춘·추등에 영남은 대동삼 9근 14냥 낭당 12냥 5전, 해서는 대동삼 3근 낭당 16냥을 합한 대전(代錢) 2,743냥을 내의원의 예산으로 책정하였다. 정조 신축년(1781, 정조 5)에 대동삼 중 1근 4냥씩 매달 계산에 반영하여 열삼(劣蓼) 봇으로 빼고 계산하였다.

▶ 財用篇 > 内局御供蓼 > 大同蓼

江界戶蓼九斤. 英宗戊子, 減三斤, 壬辰, 減一斤, 正宗庚子, 減二斤, 合減六斤. 강계는 호삼(戶蓼) 9근이다. 영조 무자년(1768, 영조 44)에 3근을 감했고, 임진년(1772, 영조 48)에 1근을 감했고, 정조 경자년(1780, 정조 4)에 2근을 감했으니 총합 6근을 감했다.

▶ 財用篇 > 内局御供蓼 > 江界戶蓼

慶尙道羅蓼四斤. ○江原道江蓼十九斤九兩七錢. ○京貢蓼十斤. ○嶺南·海西大同蓼一斤四兩. ○江界戶蓼三斤. ○合三十七斤十三兩七錢.

경상도 나삼(羅蓼) 4근. ○강원도 강삼(江蓼) 19근 9냥 7돈. ○경공삼(京貢蓼) 10근. ○영남·해서 대동삼(大同蓼) 1근 4냥. ○강계 호삼(戶蓼) 3근. ○총합 37근 13냥 7돈.

▶ 財用篇 > 内局御供蓼 > 一年應捧數

古有貢蓼, 自江界府直納京司矣. 肅宗丁亥, 定稅三十斤, 名曰常平蓼, 以傍近邑奴婢貢木, 劃給本府每斤價 貢木一同, 換貨上送, 因江界府使權愷疏請, 使計士領納事, 定式. 景宗辛丑, 十斤特減 每斤價, 貢木一同二十五疋, 改定, 英宗戊子, 因平安監司鄭實疏請, 六斤特減. 同年, 因議政府論移, 一斤自江界直納事, 定式. 壬辰, 因江界府使鄭彥忠疏請, 二斤特減. 正宗庚子, 因平安監司鄭尙淳狀請, 五斤特減, 實餘六斤內, 三斤領來計士直納內局, 一斤輸送政府, 一斤以待令條納于內局, 一斤留置本曹.

堂上中除拜使臣赴燕，則別路費官麥八兩上下，或先差使臣後拜堂上，則減半。戶曹稅麥七斤，及宗親府直納貿麥二斤四兩，議政府直納貿麥二斤，中樞府直納貿麥一斤四兩，合十二斤八兩價木十八同三十七疋二十尺，以關西寺奴貢木，劃給江界府，而宗親府貿麥價木三同十八疋三十尺，議政府貿麥價木三同，中樞府貿麥價木一同四十三疋三十尺，各該府，每年移送戶曹矣。宗親府木，則正宗壬寅，因特教，勿送戶曹，仍留本府，以爲宗班接濟事，定式。當寧辛酉，奴婢革罷後，麥價木代錢一千八百七十五兩，以關西耗作錢中，劃送江界府。

옛날에는 공삼(貢麥)이 있어서 강계에서 중앙 관청으로 직접 납부하다가, 숙종 정해년(1707, 숙종 33)에 30근을 세금으로 정하고 이를 상평삼(常平麥)이라 하였다. 가까운 읍에 소속된 노비의 공목(貢木) 중 일부를 강계에 떼어주고 균당 공목 1동 이를 인삼으로 교환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게 하였고, 강계부사 권성(權愼)의 요청으로 계사(計士)에게 납부하게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했다. 경종 신축년(1721, 경종 1)에 10근을 특별히 감했다 균당 공목 1동 25필로 개정하였다. 영조 무자년(1768, 영조 44)에 평안감사 정실(鄭實)의 요청으로 6근을 특별히 감했고, 같은 해에 의정부의 공문으로 1근은 강계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했다. 임진년(1772, 영조 48)에 강계부사 정언충(鄭彦忠)의 요청으로 2근을 특별히 감했다. 정조 경자년(1780, 정조 4)에 평안감사 정상순(鄭尙淳)의 요청으로 5근을 특별히 감했다. 결국 실제 남은 6근 중 3근은 수송하는 계사가 내의원에 직접 납부하고, 1근은 의정부로 보내며, 1근은 명령이 있을 때 내의원에 납부하고, 1근은 본 호조에 비치하게 하였다.

당상관이 사신으로 임명되어 연경에 가게 되면 별도의 여비로 관삼(官麥) 8냥을 지급하되, 간혹 사신으로 먼저 임명되고 그 뒤에 당상관으로 제수되었으면 절반을 감한다. 호조에 세금으로 내는 인삼 7근, 종친부에 직접 납부하는 무삼(貿麥) 2근 4냥, 의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무삼 2근, 종추부에 직접 납부하는 무삼 1근 4냥, 총합하여 12근 8냥의 값 무명 18동 37필 20척은 평안도 사노(寺奴)의 공목으로써 강계에 떼어준다. 종친부 무삼의 값 무명 3동 18필 30척, 의정부 무삼의 값 무명 3동, 종추부 무삼의 값 무명 1동 43필 30척은 각 부(府)에서 해마다 호조로 보내게 하였다. 종친부의 무명은 정조 임인년(1782, 정조

6)에 특교에 의하여 호조로 보내지 말고 종친부에 그대로 보관하여 종친들을 지원하도록 규정으로 정하였다. 당시 신유년(1801, 순조 1)에 노비제를 혁파한 뒤에는 인삼값 무명의 대전(代錢) 1,875냥에 대하여 평안도의 모작전(耗作錢, 부족한 곡식 끓으로 대신 받는 돈) 중 일부를 강계로 떼어주게 하였다.

▶ 財用篇 > 江界稅麥

7. 잡세(雜稅)

속대전(續大典) 1746년

○外方巫女, 錄案收稅. 每名稅木一匹, 依大同木例, 五升三十五尺爲準. 作役價, 亦同. ○咸鏡道明川以南, 則收正布, 亦五升. 以錢代捧, 則一匹代二兩五錢. ○兩西巫女稅, 全數管餉會錄.
○京巫女, 屬活人署.

○지방의 무녀(巫女)는 대장에 기록하고 세금을 거둔다. 사람마다 세금이 무명 1필이며 대동목(大同木)에 준하면 5승 35척이 기준이다. 품삯을 정할 때도 같다. ○함경도 명천(明川) 이남 지역은 정포(正布)로 거두며 역시 5승이 기준이다.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 1필을 2냥 5전으로 친다.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무녀에게 거둔 세금은 전부 관항(管餉, 평안도 예산)에 수록한다. ○한양의 무녀는 활인서에 배속한다.

▶ 戶典 > 雜稅 > [外方巫女錄案收稅]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外方巫女, 錄案收稅. 每名稅木一匹, 依大同木例, 五升三十五尺爲準. 作役價, 亦同. ○咸鏡道明川以南, 則收正布, 亦五升. 以錢代捧, 則一匹代二兩五錢. ○兩西巫女稅, 全數管餉會錄.
○京巫女, 屬活人署. [增] 京城巫女, 逐出江外, 收布, 今廢.

○지방의 무녀(巫女)는 대장에 기록하고 세금을 거둔다. 사람마다 세금이 무명 1필

이며 대동목(大同木)에 준하면 5승 35척이 기준이다. 품삯을 정할 때도 같다. ○함경도 명천(明川) 이남 지역은 정포(正布)로 거두며 역시 5승이 기준이다.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 1필을 2냥 5전으로 친다.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무녀에게 거둔 세금은 전부 관향(管餉, 평안도 예산)에 수록한다. ○한양의 무녀는 활인서에 배속한다. [대전통편] 한양의 무녀는 한강 밖으로 쫓아내었으므로 현재 이 세금은 없다.

▶ 戶典 > 雜稅 > [外方巫女錄案收稅]

8. 비황(備荒)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 1743년

○飢疫死亡, 虛作名目, 還上蕩減守令, 自首免罪, 已遞之官, 減死. 康熙壬午承傳

굶거나 역병으로 죽었다고 거짓으로 명목을 만들어 환자곡(還上穀)⁶을 탕감해 준 수령이 자수하면 죄를 면해 주고, 이미 체직된 관원이라면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준다. 강희 임오년(1702년, 숙종 28)에 받은 전교

▶ 戶典 > 還上 > 444. [飢疫死亡…]

6 환자곡(還上穀) : 곡식이 귀할 때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가 수확 후에 받아들이는 관청의 곡식으로, 10분의 1의 이자를 붙여 받는 것이 상례였다. 조적곡(耀糴穀)이라고도 한다.

9. 징채(徵債)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徵債] 虧欠遺失之物. … 內醫院 · 觀象監 · 典醫監 … 惠民署 … 活人署 … 等各司, 細碎雜物外, 漢城府徵給.

[징채] 물품이 부족하거나 망실된 경우. … 내의원 · 관상감 · 전의감 … 혜민서 … 활인서 … 등의 각 관청은 자질구레한 물품을 제외하고 한성부에서 징수하여 물품을 준다.

▶ 戶典 > 徵債 > [虧欠遺失之物…]

○凡身死人內, 米麪 · 布貨 · 雜物虧欠者, 免徵. … 通事醫員, 唐物貿易未準納者, … 毋得免徵.

○죽은 사람이 생전에 축낸 쌀 · 밀가루 · 포목 · 물품은 징수를 면제한다. … 중국에 간 역관이나 의원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 … 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를 면제할 수 없다.

▶ 戶典 > 徵債 > [凡身死人米麪…]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續錄] 虧欠遺失之物. … 內醫院 · 觀象監 · 典醫監 … 惠民署 … 活人署 … 等各司, 細碎雜物外, 漢城府徵給.

[대전속록] 물품이 부족하거나 망실된 경우. … 내의원 · 관상감 · 전의감 … 혜민서 … 활인서 … 등의 각 관청은 자질구레한 물품을 제외하고 한성부에서 징수하여 물품을 준다.

▶ 戶典 下 > 徵債 > 繢錄 > [虧欠遺失之物]

○凡身死人內米麪 · 布貨 · 雜物虧欠者, … 通事 · 醫員, 唐物貿易, 未准納者, … 毋得免徵.

○죽은 사람이 생전에 축낸 쌀·밀가루·포목·물품은 징수를 면제한다. …중국에 간 역관이나 의원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 … 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를 면제할 수 없다.

▶ 戶典 下 > 徵債 > 繢錄 > [凡身死人毋得免徵]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續錄] 虧欠遺失之物. … 內醫院 · 觀象監 · 典醫監 … 惠民署 … 活人署 … 等各司, 細碎雜物外, 漢城府徵給.

[대전속록] 물품이 부족하거나 망실된 경우. … 내의원 · 관상감 · 전의감 … 혜민서 … 활인서 … 등의 각 관청은 자질구레한 물품을 제외하고 한성부에서 징수하여 물품을 준다.

▶ 戶典 > 徵債 > 《續錄》

○凡身死人內米麪 · 布貨 · 雜物虧欠者, … 通事 · 醫員, 唐物貿易, 未准納者, … 毋得免徵.

○죽은 사람이 생전에 축낸 쌀·밀가루·포목·물품은 징수를 면제한다. …중국에 간 역관이나 의원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 … 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를 면제할 수 없다.

▶ 戶典 > 徵債 > 《續錄》

속대전(續大典) 1746년

[續] … ○赴京醫員 · 通事等, 貨納唐物, 不準數者, 啓聞科罪, 追徵.

[속대전] … ○중국에 간 의원이나 역관 등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는 주상께 아뢰어 죄를 다스리고 물품을 추징한다.

▶ 戶典 > 徵債 > [國庫虧欠盜用]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 赴京通事 · 醫員唐物貿易未納者, …[經] [續] ○通事 · 醫員, 啓聞科罪,

追徵. [續] …

○ … 중국에 간 역관이나 의원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 … [경국대전] [속대전] ○역관이나 의원의 경우, 주상께 아뢰어 죄를 다스리고 물품을 추징한다. [속대전] …

▶ 刑典 > 徵債 > [負債者身死]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徵債] … ○赴京醫員·通事等, 貿納唐物, 不準數者, 啓聞科罪, 追徵.

[징채] … ○중국에 간 의원이나 역관 등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는 주상께 아뢰어 죄를 다스리고 물품을 추징한다.

▶ 戶典 > 徵債 > [國庫虧欠盜用]

○凡身死人米麪·布貨·雜物虧欠者, 免徵. … 通事醫員, 唐物貿易, 未準納者, … 竝毋得免徵.

○죽은 사람이 생전에 축낸 쌀·밀가루·포목·물품은 징수를 면제한다. … 중국에 간 역관이나 의원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 … 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를 면제할 수 없다.

▶ 戶典 > 徵債 > [凡身死人米麪布貨]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凡身死人, 米麪·布貨·雜物虧欠者, 免徵. … 通事醫員, 唐物貿易, 未準納者… 竝毋得免徵.

○죽은 사람이 생전에 축낸 쌀·밀가루·포목·물품은 징수를 면제한다. … 중국에 간 역관이나 의원이 구입한 중국 물품을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 … 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를 면제할 수 없다.

▶ 戶典 > 徵債 > [凡身死人虧欠]

10. 요부(徭賦)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三南·京畿·嶺南, 設行大同. 湖西辛卯年, 京畿癸卯年, 湖南壬辰年, 嶺南己未年 …

○王后考妣 · … 内官 · 醫女 · … 捉虎人等, 紿復, 而定數多寡, 道各不同. 三南大同事目

○삼남(三南)⁷ · 경기 · 영남에서 대동법을 시행한다. 호서는 신묘년(1651, 효종 2), 경기는 계묘년(1603, 선조 36), 호남은 임진년(1652, 효종 3), 영남은 기미년(1679, 숙종 5)에 시행하였다 … ○왕후의 돌아가신 부모 · … · 내관 · 의녀 · … · 호랑이 잡는 사람 등은 급복(給復,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되, 정한 숫자는 각 도마다 다르다. 삼남 각각의 《대동사목大同事目》

▶ 戸典 > 畏賦 > 139~152. [三南大同事目]

○三醫司曾經正人, 及譯官堂上與雜科出身, 雖有率丁, 勿爲差役. 算員及圖, 得丞帖之徒, 有率丁一名, 坊內修掃 · 坐更舉行, 二名以上, 雜役並皆舉行. 順治乙未承傳

○삼의사(三醫司)의 정(正)을 역임한 사람이나 당상관인 역관이나 잡과 출신은 솔정(率丁,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솔정을 역에 배정하지 않는다. 산원 · 화원 · 승(丞)의 첨지를 받은 사람⁸의 경우 솔정이 1명이면 각 방(坊)에 속한 구역의 수리 및 청소나 불침번을 하게 하고, 2명 이상이면 각종 역을 모두 적용한다. 순치 을미년(1655, 효종 6)에 받은 전교

▶ 戸典 > 畏賦 > 153. [三醫司曾經正人…]

7 삼남(三南) : 삼남은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를 가리킨다. 뒤의 '영남'은 연문인 듯하다.

8 승(丞)의 첨지를 받은 사람 : 역승(驛丞), 도승(渡丞) 등 종9품의 잡직을 뜻한다.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王后考妣 · … · 內官 · 醫女 · … · 捉虎人等，給復，而定數多寡，道各不同。

三南大同事目

○왕후의 돌아가신 부모 · … · 내관 · 의녀 · … · 호랑이 잡는 사람 등은 급복(給復,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되, 정한 숫자는 각 도마다 다르다. 삼남 각각의 《대동사 목大同事目》

► 戶典 下 > 徵賦 > 受教輯錄 > 「三南大同事目」

○三醫司曾經正人及譯官掌上與雜科出身，雖有率丁，勿爲差役。…順治乙未承傳

○ 삼의사(三醫司)의 정(正)을 역임한 사람이나 당상관인 역관이나 잡과 출신은 솔정(率丁,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솔정을 역에 배정하지 않는다.
… 순치 을미년(1655, 효종 6)에 밟은 전교

► 戶典 下 > 稽賦 > 受教輯錄 > [雜役舉行]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寫字官·算員·畫員·錄事等，皆是衣冠之人，與三醫司，宜無異同，坊役一體勿侵。雍正癸丑承傳

○ 사자관·산원·화원·녹사들도 모두 벼슬아치로 삼의사(三醫司)의 의관과
다름이 없으니, 각종 방역(坊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응정 계축년(1733, 영조 9)에
받은 전교

► 戶典 > 稽賦 > 417. [寫字官 · 算員…]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受教輯錄] … ○王后考妣 · … 內官 · 醫女 · … 捉虎人等，給復，而定數多寡，道各不同。三南大同事目 ○三醫司，曾經正人及譯官堂上，與雜科出身，雖有率丁，勿爲差役，算員及圖得承帖之徒，有率丁一名，坊內修繕，坐更舉行，二名以

上雜役，竝皆舉行 順治乙未承傳.

[수교집록] … ○왕후의 돌아가신 부모 · … · 내관 · 의녀 · … · 호랑이 잡는 사람 등은 급복(給復,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되, 정한 숫자는 각 도마다 다르다. 삼남 각각의 『대동사목大同事目』 ○삼의사(三醫司)의 정(正)을 역임한 사람이나 당상관인 역관이나 잡과 출신은 솔정(率丁,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솔정을 역에 배정하지 않는다. · 화원 · 승(丞)의 첨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솔정이 1명이면 각 방(坊)에 속한 구역의 수리 및 청소나 불침번을 하게 하고, 2명 이상이면 각종 역을 모두 적용한다. 순치 을미년(1655, 효종 6)에 받은 전교

▶ 戶典 > 畏賦 > 《受教輯錄》

[新補受教] … ○寫字官 · 算員 · 畵員 · 錄事等, 皆是衣冠之人, 與三醫司, 宜無異同, 坊役一體勿侵 雍正癸丑承傳.

[신보수교집록] … ○사자관 · 산원 · 화원 · 녹사들도 모두 벼슬아치로 삼의사(三醫司)의 의관과 다름이 없으니, 각종 방역(坊役)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응정 계축년(1733, 영조 9)에 받은 전교

▶ 戶典 > 畏賦 > 《新補受教》

속대전(續大典) 1746년

○凡給復, 非關由本曹 · 宣惠廳, 則勿施. … ○內官 · 醫女 · … · 三聖祠直, 紿復. …

○모든 급복(給復, 조세와 부역을 면제)은 본 호조 또는 선혜청의 공문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내관 · 의녀 · … · 삼성사(三聖祠, 단군 · 환인 · 환옹을 모신 사당)지기는 급복한다. …

▶ 戶典 > 畏賦 > [凡給復非關由]

9 방역(坊役) : 조선시대 한양의 오부 방민에게 부과된 요역이다.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給復, 非關由本曹 · 惠廳, 則勿施. … ○內官 · 醫女 … 三聖祠直, 紿復. …
○급복(給復)은 본 호조 또는 선혜청의 공문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내관 · 의녀 · … · 삼성사(三聖祠)지기는 급복한다. …

▶ 戶典 > 稕役 > 復戶附 > [給復]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 凡給復, 非關由本曹 · 宣惠廳, 則勿施. … ○內官 · 醫女 · … · 三聖祠直, 紿復. …
○모든 급복(給復)은 본 호조 또는 선혜청의 공문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내관 · 의녀 · … · 삼성사(三聖祠)지기는 급복한다. …

▶ 戶典 > 稕賦 > [凡給復非關由]

11. 잡령(雜令)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394년

國家以爲藥材非本土之所產, 如有疾病, 其孝子慈孫, 傍求奔走, 藥未之得而病已深, 有不及救治之患. 於是置惠民典藥局, 官給藥價五升布六千疋, 修備藥物, 凡有疾病者, 持斗米疋布至, 則隨所求而得之, 又營子利, 十取其一, 期至無窮, 傧貧民免疾痛之苦, 而濟夭札之厄, 其好生之德大矣. 不幸有官府之責取, 權勢之抑買, 而藥價耗損, 貧民無以自活, 豈非不仁之甚者也. 典是局者, 思盡其責, 傧國家好生之德, 克永厥終可也.

주상께서는, 약재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효성스러운 자손들이 약재를 구하느라 동분서주하다가 약재를 구하지도 못한 채 병이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이에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을 설치하고, 중앙 관청에서 약값으로 오승포(五升布, 5세의 베) 6천 필을 지급하여 이것으로써 약재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하여 질병이 생긴 자는 몇 말의 곡식이나 몇 필의 베를 가지고 혜민전약국에 가서 필요한 약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 자금을 활용하여 10분의 1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도모하였다. 빈민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고 요절하는 액운에서 구제했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행이 참으로 크도다. 그러나 불행히도 각 관청에서 지나치게 약재를 요구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약재를 헐값으로 사들였기에 약재 구입 자금이 바닥나고 빈민이 살길이 없어졌다. 어찌면 이렇게도 자애롭지 못한가. 혜민전약국을 관장하는 책임자는 자기의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주상의 덕행이 영원히 빛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賦典 > 惠民典藥局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唐物貿易〕 唐藥材貿易，價布准時，勿論豐歉，綿布每一匹，准米七斗。

〔당물무역〕 중국산 약재의 구매는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하고 시장 가격으로 하지 않는다. 면포 1필당 쌀 7되가 기준이다.

▶ 戶典 > 唐物貿易 > [唐藥材貿易…]

○赴京醫員通事等，所買唐藥材，不准數者，及題名外他藥材買來者，啓聞科罪，並以本色追徵。

○중국에 간 의원이나 역관 등이 구입한 중국 약재를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 적힌 품목 외에 다른 약재를 구매해 돌아온 자는 주상께 아뢰어 죄를 다스리고 모두 본래 물품을 추징한다.

▶ 戶典 > 唐物貿易 > [赴京醫員通事…]

시폐(市弊) 1753년

一. 五上司藥房, 每年三四次藥箒雉羽進排, 乃是無價之役, 而又有情債, 此亦難支之弊, 各別禁斷事.

五上司藥房藥箒, 自軍器寺定年限進排, 昭載定例, 而科外無價加徵, 極爲痛駭, 各別禁斷, 而此後若有復踵前習者, 則當該官員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시전의 상언(上言, 견의) : 다섯 상사(上司)와 내의원에 해마다 서너 차례 약추(藥箒, 약재 다를 때 쓰는 빗자루)로 쓸 꿩 깃을 진상하는 것은 대가가 없는 요역인데다가 정채(情債)까지 내야 하니, 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폐단입니다. 각별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다섯 상사와 내의원의 약추는 군기시에서 연한을 정하여 진배한다고 분명히 규정에 실려 있는데도 그 외로 대가 없이 더 거두어 들인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고 놀랍다. 각별히 금단하고, 지금 이후부터 예전 악습을 다시 따르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원은 경증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 生雉塵

一. 矣塵生雉進排段, 進宴吉禮時所入, 及內局凡胖熟鯈魚蒸鮒魚粥等所入, 勅使時饌物所入是白遣, 雉尾羽進排段, 宗廟社稷諸山川風物所入, 及各陵各殿修補時羽箒所入, 而矣塵以至殘之塵, 國役浩煩, 亂塵熾盛, 各軍門軍士, 及宮家勢奴等, 亂塵無忌, 以此利小役煩, 不能支保, 各別禁斷事.

他塵已爲禁斷, 一體施行.

시전의 상언(上言) : 저희 시전에서 꿩을 진상하는 경우는 연회나 길례 때, 내의원에서 양숙(胖熟) · 봉어찜 · 봉어죽을 만들 때, 칙사가 도착하여 음식을 만들 때입니다. 꿩 꽁지깃을 진상하는 경우는 종묘 · 사직 · 각 산천에 제사 지내거나 풍물에 필요할 때, 능묘나 전각 수리에 쓰는 우추(羽箒, 깃털로 만든 빗자루)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 전은 매우 쇠락한 데 비하여 해야 할 요역이 너무 많고, 난전(亂塵, 노점상)이 치성하다 못해 각 군대의 군사나 종실의 힘 있는 노비들까지 거리낌 없이 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적고 요역은 번다하니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금단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 다른 전의 상언으로 이미 금단하였으니, 마찬가지로 시행하라.

▶ 生雉塵

一. 女矣等塵見設以後, 漢城府應辦官所入果實, 自官給價用之矣, 今則使女矣塵, 進排其各種果實, 而不給半價是白乎旂, 每年各軍門犒饋時, 曾無隅板進排之事矣, 近來責納於女矣塵, 雖曰還下, 太半闕失, 此是繕工貢人進排之物, 而如是橫當是乎旂, 臘藥時, 冬瓜仁·山楂·木瓜等物, 進排內局後, 自戶曹所給之價, 不及折半是白乎旂, 宗親府·議政府·中樞府·忠勤府·耆老所臘藥時冬瓜仁, 及煎藥大棗, 藥所入柿雪, 亦有進排, 而全不給價是白乎所, 女矣塵則只業果實, 而犒饋時扭籠進排, 尤涉冤痛, 而見今扭籠設塵已久事, 當責納於該塵是白乎旂, 推鞫時所用果實, 隨入進排, 而全不給價, 實爲難保是白乎旂, 巷衛廳與各軍門軍卒, 勢家奴輩, 不顧禁令, 狼藉亂賣, 而疲殘女矣等, 莫敢誰何, 坐市失業, 亦極痛迫是白乎旂, 每年各色實果七次進排於耆老所, 而受價不一, 落本甚多, 此亦難堪, 而陵幸時, 及進宴·吉禮時·勅使時, 隅板扭籠等物進排後, 居半見失是白置, 右陳諸弊, 一併挾革, 倘得保存事.

漢城府應辦時, 所用實果, 只給半價而取用, 京兆乃是治民之衙門, 抑價而買, 決非順物平價之道, 此後則從市直買賣事嚴飭, 定式施行. 軍門犒饋時, 進排隅板事, 無所據, 軍門·平市, 元不干涉, 則橫侵女塵, 大是法外, 此後則隅板進排, 一款革罷事嚴飭, 定式施行. 臘藥時冬瓜仁, 自戶曹分定於各塵, 乃是舊例, 置之. 宗親府·議政府·中樞府·忠勤府·耆老所臘藥時冬瓜仁, 煎藥時大棗, 藥所入柿雪, 無價進排事, 面極爲未安, 革罷事嚴飭, 定式施行. 本塵只業實果, 而犒饋時扭籠進排, 千萬不當, 革罷事嚴飭, 定式施行. 推鞫時進排果實, 全不給價者, 非戶曹不給價, 必是禮賓員役輩, 中間偷食, 此後則官員捧果時, 踏印帖文, 卽給塵人, 使之直受價於戶曹事嚴飭, 定式施行. 陵幸·進宴·吉禮·勅使時, 進排隅板, 乃是前例, 今不可猝罷置之, 而上項各樣禁斷者, 若有犯者, 當該官員, 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亂塵事, 依他塵一體嚴禁.

시전의 상언(上言) : 여자인 저희들의 시전이 설치된 이후 한성부에서는 응판(應辦, 과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함)하는 관리에게 필요한 과일을 관청에서 값을 치르고 쓰게 하셨는데, 지금은 여자인 저희 전에서 각종 과일을 진상하게 하고 반값도 주지 않으십니다. 또 해마다 각 군문에서 호궤(搞饋, 군사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하실 때 예전에는 우판(隅板, 널빤지)을 진상한 적이 없었는데 근래 여자인 저희 전에 납부를 요구합니다. 돌려준다고 말은 하지만 태반은 잃어버립니다. 우판은 선공감 공인이 진상해야 하는 물품이거늘 이처럼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약 만들 때 쓰는 동과인 · 산사 · 목과 같은 물품을 내의원에 진상한 후, 호조에서 주는 값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종친부 · 의정부 · 중추부 · 충훈부 · 기로소에서 납약을 만들 때 쓰는 동과인, 탕약을 달릴 때 쓰는 대추, 약을 만들 때 쓰는 시설(柿雪)도 진상하였으나 전혀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무릇 여자인 저희 전은 과일만 취급하는데도 호궤하실 때 쓴다며 유룡(杻籠, 싸리바구니)을 진상하게 하는 일은 더욱 원통합니다. 유룡전을 설치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해당 전에 납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추국(推鞠)하실 때 쓰는 과일도 필요에 따라 진상하고 있으나 값을 전혀 치르지 않고 계시니 실로 우리 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호위청과 각 군문의 군졸이나 권문세가의 하인배가 금지령을 무시하고 난전(亂廳)을 벌여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인 저희는 감히 무엇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시장에 앉은 채 생업을 뺏기고 있으니 또한 극히 마음이 절박합니다. 해마다 온갖 과일을 일곱 차례 기로소에 진상하고도 한 번도 값을 받지 못하여 비는 돈이 너무 많으니 이 또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능행(陵幸, 능묘에 행차)하시거나 진연이나 길례가 있거나 칙사가 왔을 때 우판과 유룡들을 진상했으나 그 후에 거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폐단을 모두 개혁해 주셔서 우리 전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 한성부에서 응판할 때 필요한 과일을 단지 반값만 주고 가져다 썼다고 하였다. 한성부는 백성을 다스리는 아문이면서도 가격을 낮추어 사들인 문제는 결코 물품에 따라 값을 치르는 방법이 아니다. 이후에는 시가에 따라 구매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군문에서 호궤할

때 우판을 진상하는 일은 근거가 없으며, 군문과 평시서는 원래 간섭할 거리가 없는데도 여자의 전을 침범한 일은 법에 크게 어긋난 일이다. 이후에는 우판의 진상하는 일 한 가지는 혁파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납약을 만들 때 쓰는 동과인은 호조에서 각 시전에 배분하는 것이 옛 규례이니 그대로 두라. 종친부·의정부·중추부·충훈부·기로소에서 납약을 만들 때 쓰는 동과인, 텅약을 다릴 때 쓰는 대추, 약을 만들 때 쓰는 시설을 대가 없이 진상한 일은 매우 면목이 없다. 혁파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이 전은 오직 과일만 취급하는데 호궤할 때 유롱을 진상하게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혁파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추국할 때 과일을 진상하게 하고 전혀 값을 치르지 않은 일은 호조에서 값을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시 예빈시의 담당자가 중간에서 빼먹은 것이니, 이후에는 관원이 과일을 받을 때 인장이 찍힌 체문(帖文, 증명서)을 상인에게 즉시 발급하고 상인이 호조에서 직접 값을 받게 하도록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능행·진연·길례, 칙사 내방 시 우판을 진상하는 일은 전례이므로 지금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으니 그대로 둔다. 또한 위 항목에서 금지한 각종 사항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원은 경종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法司, 형법 집행 기관)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난전(亂廳)은 다른 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엄금하라.

► 六隅廳女人

[한경지략] 賣藥之局，皆在銅峴，列於左右，其散在各處者，門傍必書付神農遺業萬病回春之號，窓臨街路，必垂蘆箔 … 朴貞菴城市全圖詩，有葦篇中人頗似閑坐稱川芎與白芷 … 之句，是也。

[동국여지비고] 藥局在銅峴，左右街上，又散在各洞，又有訓禁御三營藥房，賣唐常藥材及貼藥。

[한경지략] 약국은 구리개[銅峴]에 모여 있는데 길 좌우로 늘어서 있다. 각처에 흘어져 있는 약국은 문 옆에 꼭 신농유업(神農遺業)이나 만병회춘(萬病回春)이라는 글귀를 써 붙이고, 길거리 쪽의 창문에는 꼭 갈대발을 드리워 놓았다.

… 정유(貞蕤) 박제가의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에 나오는 “갈대밭에 가려진 사람은 한가해 보이니 앉아서 천궁이니 백지니 하네 …”라는 글귀가 이것이다.¹⁰

[동국여지비]고 약국은 구리개의 길가 좌우에 있으며, 각 동네에 흩어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삼군영에도 약방이 있다. 중국산 및 국산 약재와 첨약을 판다.

▶ 附錄 > 舳舍

공폐(工弊) 1753년

一. 三堂上家劑藥時, 研末軍, 例自藥房擔當, 故矣等每年貢價十五石, 零割給於藥房與庫直, 以爲雇軍舉行之地矣. 中間研末軍, 公然責立於矣等, 而藥房庫直割給米自如, 其爲冤枉爲如何哉? 同研末軍, 使藥房依前責立事.

每年貢米十五石, 割給藥房庫直, 劑藥時, 研末等軍使之擔當, 此是曹例, 中間又責出研末軍於貢人, 庫直所爲, 極爲無據, 各別禁斷事, 分付禮曹.

공인의 상언(上言, 건의) : 세 당상관 댁에서 약을 조제할 때 연말꾼 역할을 으레 약방에서 담당하므로 저희가 해마다 공가(貢價, 공물의 대가) 중 15섬을 약방의 고지기에게 떼어주어 연말꾼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말꾼 역할을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담당하게 하셨지만, 약방의 고지기에게 떼어주는 쌀은 여전하니, 그 억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연말꾼 역할을 전례대로 약방에서 담당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해마다 공물의 대가로 15섬을 약방의 고지기에게 떼어주고 나서, 약을 조제할 때 연말꾼을 고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예조의 관례이다. 중간에 연말꾼 역할을 공인에게 요구하였다니, 약방 고지기의 소행은 전혀 근거가 없다. 각별히 금지하도록 예조에 분부하라.

▶ 禮曹工人

10 <한양가>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一. 諸上司劑藥所用雉羽, 貢人等進排, 而頃年戶曹定其箇數, 載錄定例, 禁其濫用矣, 諸上司不有定例, 直捧甘結, 無數取用, 貢人等托以定例, 不欲加數進排, 則出牌囚禁之患, 比比有之, 更加申飭事.

諸上司藥用雉羽, 既有戶曹定例, 則定例外, 直捧甘, 無數取用, 已極痛駭. 貢人欲守定例, 不欲進排, 則發牌囚禁, 尤極無狀. 自今各別禁斷, 而或有復犯者, 則當該郎廳, 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상언(上言, 건의) : 각 상사(上司)에서 약을 조제할 때 쓰는 꿩 깃은 공인들이 진상하며, 몇 년 전부터는 호조에서 개수를 정하여 규정에 수록하고 남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상사에서 규정에 있지 않은데도 직접 감결(甘結, 공문)을 보내어 해아릴 수 없이 가져다 씁니다. 공인들이 규정을 말하면서 추가 분을 진상하지 않으면 소환하여 잡아 가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한 번 더 신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각 상사에서 약을 조제할 때 쓰는 꿩 깃은 이미 호조의 규정에 있거늘 규정 외에 직접 감결을 보내어 해아릴 수 없이 가져다 쓴다니 몹시 안타깝고 놀랍다. 공인이 규정을 고수하고 진상하지 않으면, 소환하여 잡아 가둔다니 더욱 터무니없다. 지금부터 각별히 금지하게 하고, 혹시 다시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원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매는 법사(法司, 형법 집행 기관)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 軍器寺工人

一. 舍人司藥材入盛櫃二部 · 文書櫃一部具鎖鑰 · 鐵挾刀 · 灸金 · 火箸 · 刀子等物, 每年歲首循例, 捧甘責納, 而耆老所及宗親府中樞府諸上司, 則藥房所用物種, 自戶曹一番上下, 醒醐湯 · 煎藥 · 臘藥劑造時, 而定年限隨毀添鐵事, 見定例, 而舍人司則年年捧甘督捧, 實爲悶迫切. 勿疊徵之意, 一體更加申飭事. 議政府 · 耆老所 · 中樞府 · 宗親府藥房所用各樣物種, 一番進排後, 定年限隨毀隨補, 載於定例, 獨議政府藥房, 每年直捧甘責納, 極爲可駭. 此後則依前傳教奉行事, 嚴飭, 若或復踵前習, 則藥房庫直, 依定例論斷事, 定式施行.

상언(上言, 건의) : 의정부의 사인사(舍人司)에서는 약재 담는 궤짝 2부와 문서

궤작 1부(자물쇠 포함) · 철협도 · 석쇠 · 부젓가락 · 칼 같은 물품을 해마다 연초에 전례를 따른다면 공문을 보내어 납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로소 · 종친부 · 중추부 등 상사(上司)의 각 약방에서 쓰는 물품은 호조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제호탕 · 전약 · 납약을 조제할 때 사용하는 물품도 정해진 연한에 따라 훼손된 것을 보충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사에서는 해마다 공문을 보내어 납품을 독촉하니 실로 답답하고 절박합니다. 중복하여 납품을 요청하지 말라는 뜻을 전부 한 번 더 신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의정부 · 기로소 · 중추부 · 종친부의 약방에서 쓰는 각종 물품은 한 번 진상한 다음에 정해진 연한에 따라 훼손되는 것만 수리나 보충하도록 규정에 실려 있는데, 유독 의정부 약방은 해마다 직접 공문을 보내어 납품을 요구한다니 매우 놀랍다. 이후부터는 주상께서 전교하셨던 바에 따라 거행하도록 엄중히 명령한다. 만약 다시 예전의 벼룩을 따른다면 약방의 고지기를 규정에 따라 판결하고, 이를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 繕工監員役

一. 內局所納真油, 定例外, 隨其捧甘, 或因分付, 急時進排, 而自本院帖文成給之規, 中間廢閣, 無憑可考, 白地空失, 實爲寃悶. 此後則所納物種, 隨所納帖文, 依前成給, 以爲憑考會減事.

內局進排真油, 定例外捧甘者, 則貢人受內局踏印帖文, 呈于戶曹, 受價者, 乃是前例, 而中間廢閣, 故貢人以此稱冤, 依前受帖, 直受價於戶曹事, 定式施行.

...

一. 臘藥時, 耆老所 · 宗親府, 清酒各三瓶式醋三瓶式進排事, 捧甘, 而定例所無, 故不爲進排, 則每未免出牌囚禁, 故不得已進排. 此一款, 各別變通事.

耆老所 · 宗親府下屬, 不由戶曹, 直捧甘於貢人, 勒捧酒醋, 科外橫侵憑藉作弊, 極爲痛駭. 貢人不欲進排, 則出牌囚禁, 無所顧忌. 此後則各別禁斷, 而若復踵前習, 則藥房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상언(上言, 전의) : 내의원에 바치는 참기름은 정례 외에도 공문에 따라 바치거나 분부가 있으면 급히 진상합니다. 그런데 내의원에서 체문(帖文, 증명서)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절차를 중간에 폐지한 후 돈 받을 근거가 없어서 재산을 헛되이 잃고 있으니, 정말로 원통하고 답답합니다. 이제부터 바치는 물품은 예전과 같이 체문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회감(會減,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내의원에 진상하는 참기름을 정례 외에 공문에 따라 바치게 할 때는 공인이 내의원에서 인장이 찍힌 체문을 받은 후 호조에 올려 돈을 받는 것이 전례이다. 그러나 중간에 그 절차가 폐지되어 공인이 원통하다고 하니, 이전대로 체문을 받은 후 공인이 직접 호조에서 돈을 받도록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라.

...

상연 : 납약을 조제할 때 기로소·종친부에 각각 청주 3병과 식초 3병을 진상하도록 공문으로 요구하십니다. 정례에 없으니 진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번 호출되어 옥에 갇히는 일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진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 건을 각별히 변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 기로소·종친부의 하인배가 호조를 경유하지 않고 공인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어 청주와 식초를 강제로 받으면서 과외로 요구하고 빙자하여 폐단을 만든다니 매우 안타깝고 놀랍다. 공인이 진상하지 않으면 호출하여 잡아 가두 기까지 한다니 아무것도 꺼리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별히 금지해 되, 만약 다시 예전의 벼룩을 따른다면 해당 약방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法司, 형법 집행 기관)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 內贍寺貢人

一. 議政府·耆老所·中樞府·內醫院, 年例煎藥所用木把槽各一部式, 定例中載錄, 而宗親府·訓鍊都監兩處段, 見漏於定例中, 故不爲進排, 則每有出牌囚禁, 其間浮費甚多. 自今以後, 上項宗親府·訓鍊都監, 煎藥所用木把槽, 定例中載錄, 倘無如前侵責之弊事.

木把槽, 每年都下七部, 自前進排處, 使之輪回用還, 而定例中, 誤以三部則內局, 一部則酒房, 一部則政府, 一部則樞府, 一部則耆所分排印出, 而如宗親府·訓鍊都監落漏矣. 定例中, 各衙門下, 更以輪回進排洗補, 甚當, 以此分付戶曹.

상언(上言, 건의) : 의정부 · 기로소 · 중추부 · 내의원에서 매년 전약을 조제할 때 쓰는 목파조(木把槽, 손잡이가 있는 나무 물통) 각 1부씩은 규정에 실려 있습니다. 종친부 · 훈련도감 2곳은 규정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진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번 호출하여 잡아 가두니 간혀 있는 사이에 부비(浮費, 낭비되는 비용)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위 규정에 ‘종친부 · 훈련도감에서 전약을 조제할 때 쓰는 목파조’를 수록하여 전과 같이 강제로 요구하는 폐단이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목파조는 호조에서 매년 한꺼번에 7부를 지급하되, 이전에 진상 받은 관청에서 돌아가며 쓰고 돌려주도록 하였다. 3부는 내의원, 1부는 주방, 1부는 의정부, 1부는 중추부, 1부는 기로소에 분배하도록 규정이 잘못 작성되어, 종친부나 훈련도감은 누락되었다. 규정의 각 아문 밑에 ‘돌아가며 진상하게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니, 이렇게 호조에 분부하라.

► 内瞻寺木把槽貢人

一. 本監溯用蓼六兩，比惠民署倍多，殊無義意，雖云每兩折價十六兩，以此貿蓼，僅爲數兩許，而以價計之，則幾滿百兩，逐朔捧此，用下於藥物酬應，便是無節之冗費，況當此貢人倒懸，蓼價絕貴之時，尤宜有顧恤減省之政。溯用中三兩，減給於貢人，所餘三兩，亦似過多，不可不別般區處，而官生勸獎，實是一監之急務，有罰無賞，難望其聳動長進，一兩除出，儲留本監，以爲四等考講賞格之資，溯用，則依惠民署例，以蓼二兩價定納，鄉材一溯所用，亦當從略撙節，以除貢人之弊事。

本監提調所定，十分得當，依此定式事，分付本監，成節目舉行。

○一. 使行時及不時賜與進排人蓼每一兩價，自惠廳給錢十六兩，而市直則多至六十兩，每兩落本，至於四十餘兩，哀我殘貢，何以支保。伏乞從長變通，俾得保存事。

惠廳蓼價，每兩價錢爲十六兩，使行時行中救療蓼價，亦然，而使行以蓼責納，從以極擇，價至四五十兩，而貢人受價十六兩外，添以三十兩，貿納好蓼，故貢人白地添價，呼冤極矣。從今以後，依政院及五上司溯蓼例，所受惠廳本價，直下使行

救療官處事，定式施行。

○一. 文武科設場時，本監貢人與救療官，持藥物，晝夜待令者，專爲舉子中有病救療之役，而近來兩司所屬，每以清心元等價重丸藥，受帖於臺監，徵索無節，少不如意，則生梗立至，莫可支保，嚴飭此弊事。

文武科場時，清心元待令，而臺監一從下屬之言，帖給無節，大爲弊端。此後則各別嚴飭，若復有所犯，則當該官員，從輕重論罪，下屬移法司科治。

○一. 郊外舉動時，禁軍救療，清心·蘇合元等藥，亦令本監擔當者，刲出於近來，特爲嚴禁其無前之弊事。

郊外舉動時，救療禁軍，清心蘇合元等藥，使典醫監官員，齎而隨行，創出於近年，而浮費日加爲弊不貲。此後則依訓局例，清蘇等藥，進排於禁軍廳，勿爲隨行事，分付典醫監，定式施行。

전의감 제조의 상언(上言, 건의) : 전의감에서 달마다 쓰는 인삼 6냥은 혜민서에 비하면 몇 배나 많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삼 1냥당 절가(折價, 책정 가격)가 16냥이니 이 기준으로 인삼을 구입하면 겨우 몇 냥밖에 사지 못하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00냥에 이릅니다. 달마다 이 돈을 받아 약재를 사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무절제한 비용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인들이 살기 어렵고 인삼값이 치솟은 때일수록, 마땅히 불쌍히 여겨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달마다 쓰는 인삼 6냥을 3냥으로 줄여 공인들에게 공급하게 하고, 나머지 3냥도 많긴 하나 별달리 처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원들에 대한 포상은 감독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니, 별만 있고 상이 없으면 격려와 노력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인삼 1냥을 떼어 전의감에 저축했다가 1년에 4번 시행하는 취재시험 때 포상금으로 삼고, 달마다 쓰는 인삼은 혜민서와 같이 인삼 2냥 값으로 정하여 납부하게 하고, 국산 약재를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분량만큼 절약하여 공인의 폐단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전의감 제조가 정한 기준은 매우 마땅하니, 이에 따라 정식하도록 전의감에 분부하고 절목을 만들어 거행하라.

○상언 : 사행이나 불시에 특전을 줄 일이 있을 때 진상하게 하는 인삼값으로

선혜청에서 공인에게 인삼 1냥당 돈 16냥을 지급하지만, 시장가가 많게는 60냥에 이르니 인삼 1냥당 낙본(落本, 손해)이 40여 냥에 이릅니다. 가엾은 우리 공인이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옆드려 비오니 유리한 쪽으로 변통하셔서 그들이 생업을 유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 선혜청의 인삼값은 인삼 1냥당 16냥이고, 사행 때 수행하는 의관에게 지급하는 인삼값도 동일하지만, 사행으로 인삼의 납품을 요구할 때는 매우 좋은 인삼을 받으려 하므로 값이 40-50냥에 이른다. 그래서 공인은 인삼값으로 받는 16냥 외에 30냥을 더 보태어 좋은 인삼을 구입한 후 납품해야 하므로 공인에게 근거 없는 추가금이 발생하니 원통하다고 부르짖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부터는 승정원 및 다섯 상사(上司)에서 달마다 인삼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선혜청에서 받은 본래의 인삼값을 사행 때 수행하는 의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상언 : 문·무과의 시험장을 설치할 때 전의감의 공인과 의관이 약을 가지고 밤낮으로 대령하는 이유는 오로지 응시자 가운데 병이 있으면 치료하기 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 두 관청의 소속원이 번번이 청심원 등 값이 비싼 환약을 대감(臺監, 사헌부 감찰)에게 체문(帖文)을 받아 무절제하게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맘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쁜 얼굴을 드러내니 업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엄중히 신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 문·무과의 시험장을 운영할 때 청심원을 대령하는데, 대감이 한결같이 하인배의 말을 따라 무절제하게 체문을 발급하고 있으니 폐단이 심하다. 지금부터는 각별히 엄중하게 신칙한다. 만약 다시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원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상언 : 주상께서 교외에 거동하실 때 금군(禁軍, 호위군)을 치료하기 위해 청심원·소합원 등의 약을 역시 전의감에서 담당하게 한 것은 근래에 생긴 것이니 전에 없던 폐단을 특히 엄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 주상께서 교외에 거동하실 때 금군을 치료하기 위해 청심원·소합원 등의 약을 전의감 관원에게 지침하게 하여 수행하게 한 것은 근래에 생겼으나 부비(浮費, 낭비되는 비용)가 날로 더해져 폐단이 대단히 심하다. 지금부터는 훈

련도감의 관례에 따라 청심원·소합원 등의 약을 금군청(禁軍廳)에 드리되 수 행은 하지 말도록 전의감에 분부하고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 典醫監貢人

一. 五上司下人輩, 稱以待令, 或以白文下帖, 或以口傳, 徵取草材者, 每司每朔, 加納之數, 少不下十餘斤, 通一年都數, 將近千斤之多, 各別禁斷事.

五上司藥房及所屬, 中間弄奸, 多用藥材, 實爲貢人難支之弊. 此後則, 非堂上着押帖則勿施, 雖堂上帖, 過於應用之數, 則亦勿施事, 嚴飭施行. 若復有犯者則藥房及下屬, 移法司科治.

○一. 生薑·五味子·黃柏·川椒·烏梅等藥材, 貢案中, 以斤兩磨鍊, 而生薑則, 或稱劑藥時取汁, 或稱薑所用, 或稱童便所入, 以角取用, 黃柏則藥用外, 或稱染色, 以片取用, 五味子川椒則, 以升合取用, 烏梅則, 以箇取用, 各其應納之數, 無算, 大違定式斤兩, 實爲冤枉. 今後定式斤兩外切勿加用事, 特爲變通, 使貧殘貢人支保事.

生薑等五種藥材, 既有貢案所載之斤數, 以此分排五上司, 滿其斤數用下後, 切勿加數取用, 而復有如前之弊, 則當該藥房及下屬, 移法司科治.

상언(上言, 건의) : 다섯 상사(上司)의 하인들이 대령해야 한다면서, 혹은 날인 없는 체문을 가져오거나 구두로만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약재를 징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각 관청마다 매달 추가로 상납하는 수량이 적어도 10여 근이 넘으니 한 해를 통틀면 1,000근에 가까울 정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각별히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다섯 상사의 약방이나 하인이 중간에서 놓간하여 약재를 많이 사용한다니 실로 공인이 벼티기 어려운 폐단이다. 이후에는 당상관이 착압(着押, 서명)한 체문이 아니면 시행하지 말고, 당상관의 착압이 있는 체문이라도 응당 사용해야 하는 수량보다 과하면 역시 시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신칙하고 시행하라. 만약 다시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약방이나 하인을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상언 : 생강·오미자·황백·천초·오매 등의 약재는 공안(貢案, 공물 규정 문

서)의 물품 가운데 근량(斤兩, 무게)으로 마련합니다. 생강은 약을 조제할 때 생강즙을 낸다고 하거나, 혹은 생강 자체를 쓴다고 하거나, 혹은 동변(童便)과 함께 써야 한다고 하면서 각(角, 뭉치)으로 가져다 씁니다. 황백은 약용 외에도 염색할 때 쓴다고 하면서, 편(片, 뭉치)으로 가져다 씁니다. 오미자와 천초는 되흡(升合, 부피)으로 가져다 씁니다. 오매는 개(箇, 갯수)로 가져다 씁니다. 각각 응당 납부하는 수가 셀 수 없이 많아 규정에 있는 근량(斤兩, 무게)를 크게 벗어나니 실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지금 이후로 규정에 있는 근량 외에는 절대로 더 쓰지 말도록 특별히 변통하셔서 어렵게 사는 공인이 생업을 유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생강 등 다섯 가지의 약재는 이미 공안에 무게로 적혀 있고, 그대로 다섯 상사에 분배해야 한다. 정해진 근수를 채워서 용하(用下, 지급)받은 다음에는 절대로 더 가져다 쓰지 말라. 예전과 같은 폐단이 다시 생기면 해당 약방과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 惠民署責人

一. 矣身以惠民署庫直，本無料布，只有官衿貢物責應。本署提調所用藥料，以一年所受貢價支計，一年所入藥料，或有若干零餘之時，或有大段不足之時，折長補短，餘者無幾，而元貢外五上司所進排者，近七十種，藥料之價，本無出處，只以藥田所收十七兩稅錢，出給矣身，勒令擔當，以此零些之價，酬應諸處，實無其勢，而身係官家，逃遁不得，東西稱貸，左右彌縫，負債如山，渙散迫頭矣。逮至昨年疹患，挽古所無，蘇葉·金銀花之取用，萬倍於前，蘇葉一斤價，多至八九錢，金銀花一斤價，亦至於一兩六錢，而五上司之責納，全無限節，少違時刻，則責罰踵至，不敢抗拒，隨求隨納，通計上年進排之價，多至二百餘兩，因此蕩產，尤難支保，其爲痛迫，爲如何哉。當此百弊矯捄之時，矣身獨抱戴盆之冤伏乞，從長變通是白乎你，大抵究厥所由，別有變通者，五上司各有藥房，至於常材，自其司貿用，則行用節損，所費甚少，而自矣身進排者，則責納如水，以十七兩稅錢，七十種藥材，將何以貿納乎。伏乞諒此難支之狀，稅錢十七兩，分給於五上司，貿用常材事，嚴明定式，俾矣身得無白地徵納之弊事。

所謂藥田在於惠化門外，而蓋是沙石瘠薄之地。在前則以其所種草材，使庫直責

應諸上司，而諸上司所用，只是當病所須，故每年進排，不滿三四十斤，中年以來，不得種藥，以錢收稅，貿藥責應，而責應無多不至無面，近來則，諸上司所納，逐歲增加，貿納之價，多至二百餘兩，此蓋上司下屬，從中憑藉，無帖濫徵之致，貧殘一庫直，萬無支堪之勢，故發遣待令算員及本署任官，眼同量田，仍查其收稅多少，則田不過數十斗落，只稅董爲十七兩，以此十七兩，貿二百兩價，直之藥材而進排者，萬萬可駭。庫直雖有官貢聊賴之資，至今支撑不逃，實是意外。當此諸瘼釐正之時，如此巨弊，不可不急先變通。此後則，金銀花·蘇葉·荊芥，一年一司各三斤，六司三種，都數五十四斤，益母草·穀精草·夏枯草·旋覆花·地膚子·拳柏，一年一司各一斤，六司六種，都數三十六斤。六上司九種，都合通計九十斤，酌定磨鍊，使之以其錢貿易進排，而必待堂上手決後，始爲舉行，無手決下帖，切勿施行。此九種藥外，從前捧用之諸種，一竝革罷。如是定式後，如有濫徵侵虐之弊，當該藥房及下屬，移法司科治。

상연(上言, 전의) : 저는 혜민서 고지기로서 본래 요포(料布, 수당) 없이 단지 관깃 공물(관청에서 사용할 공물)을 책응(責應, 책임지고 마련함)하고 있습니다. 혜민서 제조들께서 쓰실 약재는 1년 동안 받는 공물값으로 셈하는데, 1년에 쓰는 약재는 간혹 약간 남을 때가 있지만 대단히 부족할 때도 있으므로 남는 것을 떼어 내어 모자란 것을 보충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정해진 공물 외에 다섯 상사(上司)¹¹에 진상하는 것이 거의 70종이나 됩니다. 약재의 값은 본래 비용의 출처가 없었고, 단지 약전(藥田)에서 거두는 세금 17냥의 돈을 저에게 내어주고 억지로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각 관청의 요청에 대응하다 보니 실로 그럴만한 형편이 아니었으나, 제가 관가에 매여있어 도망가거나 숨을 수 없어서 동서로 돈을 빌리고 좌우로 융통하다 보면 빚이 산처럼 쌓이다가 정신없이 기한이 임박하곤 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마진(麻疹)은 지금까지 없던 질병이라 소엽과 금은화를 구하려면 예전

11 상사(上司) : 상사는 2가지 뜻으로 사용한다. '다섯 상사'처럼 정1품 아문(衙門) 중 으뜸이 되는 다섯 아문인 의정부·돈녕부·의빈부·충훈부·종친부(혹은 종추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폭넓게 '상급 관청'을 의미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보다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소엽 1근 값이 많게는 전문 8-9전에 이르고, 금은화 1근 값 또한 전문 1냥 6전에 이르는데도 다섯 상사의 요구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정한 시각을 어기면 징벌이 따르니 감히 항거하지 못했고 요구하는 대로 납부했습니다. 작년에 진상한 값을 통틀어 계산하면 많게는 전문 200여 냥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우니 제 역할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온갖 폐단을 바로잡는 때를 맞이하여 저 혼자 감당하고 있던 원통함을 엎드려 비오니 좋은 쪽으로 변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원인을 생각해보니 따로 변통할 것 있습니다. 다섯 상사에 각각 약방이 있는데, 상용 약재를 해당 약방에서 알아서 구매하여 쓰게 한다면 사용량도 절약되고 비용도 매우 적게 들 것입니다. 저에게 약재를 진상하게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니 전문 17냥의 약전 세금으로 70종의 약재를 어떻게 구매해 드리겠습니까? 엎드려 빌건대, 이처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셔서 약전 세금 17냥을 다섯 상사에 지급하여 상용 약재를 구매하도록 엄격하고 명백하게 규정으로 삼으시고, 제가 까닭 없이 납부를 강요당하는 폐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약전은 혜화문 밖에 있으며, 그곳은 모래와 돌로 된 척박한 땅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약재를 심어 헤민서 고지기에게 각 상사에 책응(責應, 책임지게 함)하도록 하되, 각 상사에서 쓰는 것은 병이 났을 때만 가능했기 때문에 매년 진상하는 것이 30-40근 미만이었다. 중간부터 약재를 심을 수 없어서 돈으로 세금을 거둔 후 약재를 구매하여 책응하게 했으나 대부분 무면(無面, 돈이 축남)에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근래에는 각 상사에 바치는 것이 매년 늘어나 사서 바치는 값이 많게는 200여 냥에 이른다. 이는 아마도 상사의 하인배가 중간에 껴서 빙자하여 체문(帖文, 증명서) 없이 함부로 징수한 결과일 테니, 가난한 일개 고지기로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대령한 산원(算員)과 헤민서 관원을 발견(發遣, 파견)하여 함께 양전(量田, 토지 측량)하게 한 후 수세의 많고 적음을 조사하게 했더니, 약전은 수십 마지기에 불과하고 세금도 겨우 17냥이 된다고 하였다. 이 17냥으로 200냥 값의 약재를 샀으니 고지기가 약재를 진상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고지기가

관청의 공물에서 생활비를 얻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벼티고 도망가지 않은 것은 실로 뜻밖이다. 이렇게 여러 폐단을 정리하는 때를 맞이하여 이처럼 큰 폐단은 굽히 먼저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금은화·소엽·형개는 한 해에 한 상사당 3근, 여섯 상사에 3종씩, 도합 54근으로 한다. 익모초·곡정초·하고초·선복화·지부자·권백은 한 해에 한 상사당 1근, 여섯 상사에 6종씩, 도합 36근으로 하라. 여섯 상사에 약재 9종, 도합 총 90근을 잘 헤아려 결정하고 마련하되, 약전의 세금을 배분한 돈으로 구매하여 진상하게 하라. 반드시 당상관의 수결을 받은 뒤에 비로소 거행하고, 수결 없는 체문으로는 절대 시행하지 말라. 이 9종의 약재 외에 종전처럼 받아 쓰는 각종 약재는 한결같이 모두 혁파하라. 이와 같이 규정을 삼은 뒤에 만약 함부로 징수하여 공인을 괴롭히는 폐단이 생기면 해당 약방과 하인배를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 惠民署庫直

一. 本署所供生薑，乃各殿各宮逐日供上，內醫院逐日御藥，及各殿進御別藥所用，大臣病患，御醫藥物之需，其所關係，至嚴且重，而親鞫推鞫三省罪人，刑曹犯越罪人救療時，兩醫司救療官，凡藥入生薑，手本捧甘於本署，進排，而各司供上衙門中，司宰監魚醢用之於罪人供饋者，年前本監提調，陳達筵中，移貿取用於廩人，而本署生薑則，迄未變通，同是供上衙門，而何者變通，何者未蒙一視之澤，極爲冤枉。生薑亦是廩人買賣之物，從今以後，罪人救療生薑段，隅廩人處，給價取用事，一依司宰監例定奪事。

生薑雖雜用之處，本貢人進排，乃是流來舊例，則貢人今始推諉於廩人，而貢人廩人，均是都民，豈可欲除貢人之弊，而反生廩人之弊乎。使之依前進排，進排時，禁府操縱橫侵之弊，各別禁斷，若有犯者，當該都事，從輕重論罪，下屬移法司科治。

상언(上言, 건의) : 사포서에 바치는 생강은 각 전·궁에 매일 진상하는 것이며, 내의원에서 날마다 사용하는 어약이나 각 전에 진상하는 별도의 약에 씁니다. 대신의 병환에 어의와 어약을 쓰는 것은 그와 관계된 바가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죄인(三省罪人)¹²을 국문할 때나 형조에서

범월죄인(犯越罪人, 국경을 넘은 죄인)을 치료할 때도 양의사(兩醫司)의 의관이 각종 약에 들어가는 생강을 수본(手本, 문서)에 적어 사포서에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진배하고 있습니다. 각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아문 중 사재감에서 생선젓을 죄인에게 공급하는 일은 몇 해 전 사재감의 제조가 경연에서 아뢰어 시전 상인에게 이관하여 공급받게 했으나, 본 사포서의 생강 공급 문제는 아직 변통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물품을 공급하는 아문이면서 누구는 변통되고 누구는 한결같은 은택을 입지 못하니 몹시 억울합니다. 생강 역시 시전 상인이 취급하는 물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죄인을 치료할 때 쓰는 생강은 우전(隅塵, 과일 담당 시전) 상인에게 값을 주고 가져다 쓰게 하셔서 사재감의 전례를 똑같이 따르도록 정탈(定奪,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생강이 비록 다양한 곳에 쓰이긴 하더라도 본래부터 공인이 진상하게 하는 것이 오래된 전례이거늘 공인은 지금 시전 상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인과 시전 상인은 모두 도성의 백성이니, 어찌 공인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도리어 시전 상인의 폐단을 만들 수 있겠는가? 예전과 같이 진상하게끔 하되, 진상할 때 의금부에서 조종하려고 하거나 침해하는 폐단이 없도록 각별히 금지하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도사(都事)는 경증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 司圃署生薑貢人

各貢人各隅塵，內醫院進排冬瓜仁之弊，難堪事。

六香膏所人冬瓜仁，進排多歧，有自戶曹給價於塵人而進排者，有各司位田所出進排者，有平市署不給價，收捧各塵進排者，有各司貢物無價進排者，而其中貢市人進排者，其弊尤甚，甚至於以錢代納，漸至倍蓰之境，事極痛駭。通議內局後，元數六十一斤零內，二十一斤零，酌量剋減，四十斤，以戶曹·奉常寺·司圃署·養賢庫·內資寺·訓鍊院，依前分定，至於貢物，各司及平市署之無價進排

12 삼성죄인(三省罪人) : 삼성(三省, 의정부·의금부·사헌부)이 합동하여 추국하는 죄인으로,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한다.

者，一併革罷事，定式，而此後，若有復踵前習，則當該醫官，從輕重論罪，下屬移法司科治事，各司及內局，一體嚴飭施行。

상언(上言, 견의) : 각종 공인과 우전(隅塵)에서 내의원에 진상하는 동과인의 폐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육향고(六香膏)에 들어가는 동과인의 진상은 여러 경로로 이루어진다. 호조에서 시전 상인에게 값을 주어 진상하는 것이 있고, 각 관청의 위전(位田)¹³에서 수획하여 진상하는 것이 있고, 평시서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서 각 시전에서 거두어들여 진상하는 것이 있으며, 각 관청에서 공물로 대가 없이 진상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공인과 시전에서 진상하는 것은 폐단이 더욱 심한데, 심지어 돈으로 대납하는 경우가 점점 몇 배로 늘어나고 있다니 사태가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다. 내의원과 함께 논의한 다음 원래의 수 61근 중에서 21근은 참작하여 깎고, 40근은 호조·봉상시·사포서·양현고·내자시·훈련도감에 전례대로 분정(分定, 돌려가며 바침)하라. 공물로 받던 동과인의 경우, 각 관청과 평시서에서 대가 없이 진상 받던 것은 모두 혁파할 것을 규정으로 삼으라. 이후로 다시 예전의 악습을 답습하는 경우, 해당 의관은 경증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릴 것을 각 관청과 내의원에 모두 엄중히 신칙하고 시행하라.

► 各貢人各隅塵，內醫院進排，冬瓜仁之弊，難堪事

一. 今番島主告慶差倭接慰官齎去蓼論之，則體蓼自戶曹別送算員於江界，而貿來作餚，尾蓼則使矣等貿納，而至於移刑曹，囚禁正妻之境，故矣等不敢違拒，雖未受價，而當其背節之時，東西欠貸，兩兩錢錢，鳩聚備納，則只捧其大尾，退其細尾，故所納實數三十餘兩之價，爲四百餘兩錢，而今伏見戶曹磨鍊，則僅爲五分之一，殘敗矣等何以支保乎。此是矣等負債，如山之日也，特爲變通事。

體蓼之價，亦隨其品之優劣而定價，則尾蓼，亦豈無大小精麤之分耶。其所爲言不無所據，而貢人稱冤如此，更加查實，從便量給事，分付戶曹。

13 위전(位田) : 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상언(上言, 전의) : 이번에 대마도 영주가 보낸 고경차왜(告慶差倭)¹⁴를 접대할 접위관(接慰官)이 가지고 갈 인삼으로 말하자면, 체삼(體蔘, 사람 형태 인삼)은 호조에서 강계에 산원(算員)을 따로 보내 구입한 후 소(餚)를 만든 것이고,¹⁵ 미삼(尾蔘, 잔뿌리 인삼)은 저희들이 구입하여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형조에 넘기고 아내까지 잡아 가두는 지경이므로, 저희들이 감히 여기지 못합니다. 비록 아직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제철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부족한 비용을 빌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질구레한 미삼까지 한데 모아 무게를 맞춰 바치면, 큰 미삼만 받고 가느다란 미삼은 퇴짜를 놓기 때문에, 납부한 실제 숫자인 미삼 30여 냥의 값이 전문 400여 냥이 됩니다. 지금 엎드려 보건대 호조에서 마련하는 체삼의 비용은 겨우 5분의 1이니, 가난한 저희가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저희가 진 빚이 태산 같습니다. 특별히 변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 체삼의 값 역시 그 품질의 우열에 따라서 정하거늘, 미삼 또한 어찌 크거나 상태 구분이 없겠는가? 그 말에 근거가 없지 않고, 공인의 억울함이 이와 같으니 실태를 한 번 더 조사하여 유리한 쪽으로 헤아려 지급하도록 호조에 분부하라.

► 獄蔘契人

선혜청사례(宣惠廳事例) 1800년

元貢. 奉常寺 · · · · 內醫院 · · · · 惠民署 · 典醫監 · · · · 關東蔘契 · · 等價, 自京廳分等上下.

원공(元貢, 원래 정해진 공물). 봉상시 · · · 내의원 · · · 해민서 · 전의감 · · · 관동삼계 · · 등의 값은 중앙 관청이 등급을 나누어 지급한다.

► 各廳倅設 > 各廳恒式

14 고경차왜(告慶差倭) : 일본에서 쇼군이 새롭게 즉위할 때 대마도주가 조선 조정에 그 소식을 알리는 사절이다.

15 소(餚)를 만든 것이고 :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

內醫院鹿茸契, 內弓房正筋契, 屬之本廳, 貢價磨鍊上下.

내의원의 녹용계(鹿茸契)와 내궁방의 정근계(正筋契)는 본청(本廳)에 소속시키고 공물 값을 마련하여 지급한다.

▶ 常平冊設

設賑時, 瘟氣熾盛, 分付兩醫司·東西活人署, 諸處病幕, 分送救療官, 持藥物救療病幕, 與戶曹分東西造給. 當苧甲辰, 因特教設幕, 三軍門專當物力三分一, 自本廳助給
… 染病無依者不入, 於設賑, 故乾糧醬藿, 自本廳別爲分給.

진휼을 베풀 때 역병이 치성하면 양의사(兩醫司)와 동·서활인서에 분부하여 각처의 병막(病幕)에 구료관(救療官)을 나누어 보내고 약재를 가지고 가서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선혜청과 호조가 동·서부에 병막을 나누어 만들고 지급한다. 당시 갑진년(1784, 정조 8)에 특교(特教)로 병막을 만들고 삼군문(三軍門, 삼군영)에서 물자의 1/3은 담당하게 하였고 나머지는 본 선혜청에서 도와 지급하게 하였다 … 역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병막에 받지 않고, 진휼을 베풀 때 마른 식량과 장과 미역을 본 선혜청에서 별도로 나누어 지급한다.

▶ 賑廳合設

一年上下數 無時別下, 不在此限

… 議政府差備書吏. 減罷, 代錢一百五十兩. 藥材價, 米十五石. 薦下不足, 米十石.

… 司憲府月令. 錢六百六十兩. …

1년의 지급 수량 예상치 못한 지출은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의정부 차비서리. 인원을 줄여서 없앴다. 대신하는 돈은 150냥이다. 약재값은 쌀 15섬이다. 달마다 지급하는 돈의 부족분은 쌀 10섬이다.

… 사헌부 월령의원. 돈 660냥이다. …

▶ 賑廳合設 > 一年上下數

給代衙門官房. 議政府·中樞府·…·內醫院·惠民署·…·活人署·…

급대(給代, 다른 물건으로 내줌)하는 아문과 관청, 의정부·중추부·…·내의원·혜민서·…·활인서·…

▶ 均役冊設 > 應稅外所捧

탁지오례고(度支五禮考) 1840-1841년

惠慶宮患候平復時 正宗二十三年, 己未三月

內局. 醫官康命吉, 銀子十兩, 因傳教題給. ○藥色書員四, 掌務書員四, 湯藥書員七, 各木一疋, 米三斗. 參考. 種藥書員二, 湯藥書員七, 使令十九, 並三等. 軍士十五, 各布一疋, 以上判下. 差備待令水工二, 膏飲待令下人十二, 各木一疋, 米四斗. 從厚. 軍士二, 並三等. 判下. 本宮. 尚宮四, 各紬一疋, 白木一疋, 木一疋, 又四, 各白木一疋, 木一疋. 侍女十一, 各紬一疋, 木二疋, 又二, 各木二疋, 又五, 各白木一疋, 布一疋. 女伶六, 各白木一疋, 布一疋, 又二十三, 各木一疋, 水賜七, 各木一疋, 布一疋. 內人十, 各木二疋. 水母二十, 各白木一疋, 又十九, 各木一疋. ○別監十六, 各木二疋, 米三斗. 水賜別監二, 把門武監十一, 並三等. 飯監二, 並二等. 庫城上四, 燈燭色二, 並三等. 照羅赤二, 各布一疋, 軍士十四, 長番房直四, 軍士二, 各米三斗. ○以上 判下.

○庚申. 二月. 内局. 藥色書員二, 掌務書員二, 藥物擧行書員八, 待令醫女二, 各木一疋, 米三斗. 問安醫女二, 各木一疋, 水工十一, 各米三斗. 軍士十六, 各米二斗. 以上參考.

○純宗七年丁卯. 二月. 内局. 藥色書員·掌務書員·種藥書員各二, 差備待令書員·湯藥書員各四, 使喚書員九, 待令醫女二, 使喚醫女六, 各木二疋, 米五斗. 待令使令七, 研末使令五, 使喚使令十五, 軍士二十一, 女水工二, 各木一疋, 米三斗. 政院. 書吏二十五, 正書奇別書吏三, 各木二疋, 米三斗. 使令三十五, 加出使令十二, 引陪六, 各木一疋, 布一疋, 米二斗. 水工三, 驅從八, 軍士五, 各木一疋, 米一斗. ○以上從厚 摭庭署. 差備待令中官六, 燈燭色內官四, 並二等. ○司闈十二, 各木二疋, 布二疋, 別監十六, 並三等. ○以上判下.

○戊辰. 二月. 藥乳進上時. 乳女人處, 木一疋, 布一疋, 米五斗, 因傳教題給. ○同年閏五月, 因傳教, 亦依此題給

○辛未. 正月 内局. 員役, 依丁卯例, 而水工今無. 政院. 書吏二十五, 並三等. 使令三十五, 加出使令十二, 引陪六, 各米三斗, 驅從八, 水工三, 軍士五, 各米一斗. 參考. 本宮. 尚宮十七, 各紬一疋, 白木二疋. 侍女十八, 各紬一疋, 木二疋. 內人二十八, 各木一疋, 布二疋. 水賜二十, 水母三十五, 並二等. 參考. 摭庭署. 本宮別監十六, 飯監·庫城上·榮色·水賜別監·燈燭色, 各二, 各

米三斗。照羅赤二，各米二斗。內官房房直·水工·軍士，各二，司鑰房軍士二，別監房留直二，水刺間軍士五，燈燭房軍士三，各米一斗。判下。○王大妃殿別監，以下水刺間員役·軍士等，並與本宮所屬同，而別司饔二，各米三斗，添入磨鍊。○嘉順宮所屬別監·員役·軍士等一，依本宮所屬例，磨鍊。○慶壽宮照羅赤二，各米二斗，房直二，水工二，軍士三，各米一斗。以上考例。○大殿長番內官四十一，出入番內官一百三十二，都廳內官九十，各上弦弓代米七斗。司謁二，司鑰十一，統長二，副統長六，各木一疋。別監三十六，唐別監六，中禁六，唐中禁四，武監二百二，門旗手四十，內苑別監二，直只四，飯監二十，水賜別監四，燈燭色四，廂庫庫直二，標信直二，內侍書員二，各米三斗。排設房庫直二，書房色庫直一，燈燭房照羅赤二，內侍使令一，承傳色使令一，各米二斗。廂庫軍士二，出入番房直二，軍士四，水工二，內班院房直六，水工四，軍士三，傳命廳軍士二，排設房軍士八，書房色軍士二，弓房司鑰軍士二，別監房留直二，中禁房留直二，內苑別監房軍士二，水刺間軍士五，留直一，燈燭房軍士三，留直一，武藝廳軍士十五，門旗手廳軍士二，各米一斗。判下。○中宮殿別監二十，飯監八，燈燭色二，各米三斗。照羅赤二，各米二斗。內官房房直·水工·軍士，各二，司鑰房軍士二，別監房留直二，水刺間軍士四，留直一，燈燭房軍士三，水工一，各米一斗。考例。○內弓房弓人十二，矢人十二，庫直二，各米三斗。軍士五，留直一，各米一斗。○內農圃書員六，庫直二，各米三斗。使令一，米二斗，軍士一，米一斗。○以上判下

○壬申十月內局。員役，依丁卯例，而種藥書員，女水工，今無。掖庭署。本宮別監，及水刺間員役，以下軍士等，並依辛未例，而司鑰二，各木一疋，今增。

嘉順宮患候平復時。純宗二十二年壬午十月

內局。藥色書員·湯藥書員·待令書員·掌務書員·種藥書員，各二，使喚書員十二，待令醫女二，使喚醫女三，各木二疋，米五斗。待令水工二，研末水工四，使喚水工十五，軍士二十，各木一疋，米三斗。政院。書吏八，並三等。○以上參考

上候平復時。元年辛酉十二月，水痘平復

內局。待令書員二，各木二疋，米五斗。使喚書員九，種藥書員一，各木二疋，米三斗。研末使令二，使喚使令九，軍士九，各木一疋，米二斗。從厚。○藥色書員二，並書題除授。掌務書員二，並從願免賤。

○壬戌十二月，大殿中宮殿疹候平復。內局。使喚醫女三，各木三疋，米五斗。待令使令三，研末使令三，使喚使令十，各木二疋，米三斗。軍士十五，各木一疋，米二斗。從厚。○藥色書員，書題除授。差備待令書員·醫女，及掌務·湯藥·使喚書員，並免賤。侍藥廳。別監九，各木二疋，米五

斗. 政院. 書吏十七, 直宿待令戶房禮房書吏, 各四, 正書朝報書吏三, 諺書朝報書吏四, 各木二疋. 使令二十四, 直宿待令使令十二, 引陪五, 並二等. 水工三, 軍士五, 驅從八, 並三等. ○以上參考.

○乙丑 三月, 痘候平復 內局. 侍藥廳待令使令五, 研末使令五, 使喚使令十七, 女水工二, 軍士十九, 熟手三, 各木一疋, 米三斗. 從厚. ○藥色·湯藥色·掌務·待令書員, 並依壬戌例. 政院. 書吏二十一, 禮房書吏四, 使令四十七, 引陪六, 水工三, 軍士五, 驅從八, 以上並依壬戌年例.

○丁卯 十二月 內局. 醫官五, 並一等. 書員五, 軍士四, 水工六, 熟手四, 各米五斗. 從厚

○壬申 三月 內局. 使喚書員十六, 種藥書員二, 各木二疋, 米五斗. 研末使令五, 使喚使令十八, 女水工二, 軍士二十一, 童便軍三, 熟手五, 各木一疋, 米三斗. 參考. 政院. 書吏二十一, 禮房書吏四, 並三等. 使令四十七, 引陪六, 各布一疋, 水工三, 軍士五, 驅從八, 各米三斗. 並依下教數.

○乙亥 正月 內局. 研末使令三, 待令使令五, 使喚使令十八, 女水工二, 軍士二十二, 童便軍三, 熟手四, 各木一疋, 米三斗. 政院. 書吏四, 各木二疋. 使令五, 並二等. ○以上依乙丑例.

世子宮紅疹平復時. 純宗二十二年壬午十二月

內局. 種藥書員二, 使喚書員十一, 並一等. 待令水工二, 並二等. 研末水工四, 使喚水工十五, 並三等. 軍士二十, 各米三斗. 政院. 禮房書吏四, 直宿待令書吏四, 並一等. 本宮. 別監二十, 水賜別監二, 並一等. 飯監二, 庫城上二, 茶色二, 燈燭色二, 照羅二, 各木二疋. 長番房直·水工長·房直·水工, 各二並三等. ○以上考例

世子嬪宮紅疹平復時. 純宗二十二年壬午十一月

內局. 湯藥書員二, 掌務書員二, 待令書員二, 各木二疋, 米五斗. 種藥書員二, 使喚書員十一, 各各木一疋, 米五斗. 參考. 待令醫女二, 使喚醫女二, 各木六疋, 米一石. 從厚. 待令水工二, 並二等. 研末水工四, 使喚水工十五, 並三等. 考例. 政院. 禮房書吏四, 直宿待令書吏四, 使令二, 並二等. 本宮. 別監十二, 並一等. 水賜別監二, 並二等. 飯監二, 庫城上二, 茶色二, 燈燭色二, 照羅赤二, 承言色房直二, 水工二, 並三等. ○以上考例.

淑善翁主痘患平順時. 正宗二十年丙辰十月, 昌德宮移次時

內局. 移次待令藥色書員一, 掌務書員一, 並三等. 入番書員一, 米五斗, 又一, 米四斗, 又五, 各米三斗, 又四, 各米二斗, 又二, 各布一疋. 大廳直一, 童便軍三, 並三等. 軍士十九, 各米一斗, 水工十二, 各米二斗, 女水工一, 木二疋, 米五斗. 又一木一疋, 米三斗. 以上判下.

○純宗二年壬戌十一月, 痘患平順時 內局. 書員四, 各木二疋, 米三斗, 研末使令二, 使喚水工七, 軍士四, 各木一疋. 待令醫女二, 各木一疋, 米三斗. 判下.

혜경궁의 환후가 회복되셨을 때 정조 23년(1799) 기미년 3월

내의원. 의관 강명길(康命吉)에게 은자 10냥을 전교에 의하여 제급(題給, 문서와 함께 줌)한다. ○약색서원 4인, 장무서원 4인, 탕약서원 7인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참고参考) 종약서원 2인, 탕약서원 7인과 사령 19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15명은 삼베 1필씩이다(이상 판하判下) 차비대령수공 2명, 고음대령하인 12명은 무명 1필과 쌀 4말씩이다(종후從厚) 군사 2명은 모두 3등이다(판하判下) 해당 궁. 상공 4원은 비단 1필, 흰 무명 1필, 무명 1필씩이고, 다른 4원은 흰 무명 1필, 무명 1필씩이다. 시녀 11인은 비단 1필, 무명 2필씩이고, 다른 2인은 무명 2필씩이고, 다른 5인은 흰 무명 1필과 삼베 1필씩이다. 여령 6명은 흰 무명 1필과 삼베 1필씩이고, 다른 23명은 무명 1필씩이다. 수사 7명은 무명 1필과 삼베 1필씩이다. 나인 10인은 무명 2필씩이다. 수모 20명은 흰 무명 1필씩이고, 다른 19명은 무명 1필씩이다. ○별감 16명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수사별감 2명과 파문무감 11명은 모두 3등이다. 반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고정자 4명과 등촉색 2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2명은 삼베 1필씩이고, 군사 14명과 장변방지기 4명과 군사 2명은 쌀 3말씩이다(이상 판하判下) ○경신년(1800, 정조 24) 2월 내의원. 약색서원 2인, 장무서원 2인, 약물거행서원 8인, 대령의녀 2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 문안의녀 2명은 무명 1필씩이다. 수공 11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16명은 쌀 2말씩이다(이상 참고参考)

○순조 7년 정묘년(1807) 2월 내의원. 약색서원 · 장무서원 · 종약서원 각 2인, 차비대령 서원 · 탕약서원 각 4인, 사환서원 9인, 대령의녀 2명, 사환의녀 6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대령의녀 7명, 연말사령 5명, 사환사령 15명, 군사 21명, 여수공 2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 승정원. 서리 25명, 정서기별서리 3명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사령 35명, 가출사령 12명, 인배 6명은 무명 1필과 삼베 1필과 쌀 2말씩이다. 수공 3명, 구종 8명, 군사 5명은 무명 1필과 쌀 1말씩이다(이상 종후從厚) 액정서. 차비대령중관 6명과 등촉색내관 4명은 모두 2등이다. ○사알 12명은 무명 2필과 삼베 2필씩이다. 별감 16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판하判下)

○무진년(1808, 순조 8) 2월 약으로 쓸 젖을 진상할 때. 젖 나오는 여인이 있는 거처에 무명 1필과 삼베 1필과 쌀 5말을 전교로 제급(題給, 문서와 함께 줌)한다. ○같은 해 윤5월, 전교로 역시 이와 같이 제급하였다.

○신미년(1811, 순조 11) 1월 내의원. 각 담당자에게 정묘년(1807)의 전례대로 지급하되,

수공은 지금 없다 승정원. 서리 25명은 모두 3등급이다. 사령 35명, 가출사령 12명, 인배 6명은 쌀 3말씩이이다. 구종 8명과 수공 3명과 군사 5명은 쌀 1말씩이다(참고参考) 해당 궁. 상궁 17원은 비단 1필과 흰 무명 2필씩이다. 시녀 18명은 비단 1필과 무명 2필씩이다. 나인 28명은 무명 1필과 삼베 2필씩이다. 수사 20명과 수모 35명은 모두 2등이다(참고参考) 액정서. 본궁별감 16명과 반감 · 고정자 · 공색 · 수사별감 · 등총색 2명씩은 쌀 3말씩이다. 조라치 2명은 쌀 2말씩이다. 내관방지기 · 수공 · 군사 2명씩과 사약방군사 2명과 별감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2명과 수라간 군사 5명과 등총방 군사 3명은 쌀 1말씩이다(판하判下) ○왕대비전의 별감 이하 수라간의 담당자와 군사 등은 모두 해당 궁의 소속원과 같다. 별사옹 2명은 쌀 3말씩 추가로 넣도록 마련하였다. ○가순궁 소속의 별감 · 원역 · 군사들 1명은 해당 궁 소속원의 전례대로 마련한다. ○경수궁의 조라치 2명은 쌀 2말씩이다. 방지기 2명, 수공 2명, 군사 3명은 쌀 1말씩이다(이상 고례考例) ○대전장번내관 41명, 출입번내관 132명, 도청내관 90명은 상현궁(上弦弓)을 대신하는 쌀 7말씩이다. 사yal 2명, 사약 11명, 통장 2명, 부통장 6명은 무명 1필씩이다. 별감 36명, 당별감 6명, 중금 6명, 당중금 4명, 무감 202명, 문기수 40명, 내원별감 2명, 직지 4명, 반감 20명, 수사별감 4명, 등총색 4명, 상고지기 2명, 표신지기 2명, 내시서원 2인은 쌀 3말씩이다. 배설방고지기 2명, 서방색고지기 1명, 등총방의 조라치 2명, 내시사령 1명, 승전색사령 1명은 쌀 2말씩이다. 상고 군사 2명, 출입번 방지기 2명, 군사 4명, 수공 2명, 내반원방지기 6명, 수공 4명, 군사 3명, 전령청 군사 2명, 배설방 군사 8명, 서방색 군사 2명, 궁방사약 군사 2명, 별감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2명, 중금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2명, 내원별감방 군사 2명, 수라간 군사 5명, 수라간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1명, 등총방 군사 3명, 등총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1명, 무예청 군사 15명, 문기수청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판하判下) ○중궁전의 별감 20명, 반감 8명, 등총색 2명은 쌀 3말씩이다. 조라치 2명은 쌀 2말씩이다. 내관방지기 · 수공 · 군사 2명씩, 사약방 군사 2명, 별감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2명, 수라간 군사 4명, 수라간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1명, 등총방 군사 3명, 수공 1명은 쌀 1말씩이다(고례考例) ○내궁방의 활 만드는 이 12명, 화살 만드는 이 12명, 창고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내궁방의 군사 5명과 머물러 숙직하는 이 1명은 쌀 1말씩이다. ○내농포 서원 6인과 창고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사령 1명은 쌀 2말이다. 군사 1명은 쌀 1말이다(이상 판하判下)

○임신년(1812, 순조 12) 10월 내의원. 원역(員役, 담당자)은 정묘년(1807, 순조 7)의 전

례대로 하되, 종약서원과 여수공은 지금 없다. 액정서. 해당 궁의 별감 및 수라간 원역 이하 군사들은 모두 신미년(1811, 순조 11)의 전례대로 하되, 사약 2명은 무명 1필씩을 지금 추가한다.

가순궁의 환후가 회복되셨을 때. 순조 22년(1822) 임오년 10월
내의원. 약색서원 · 탕약서원 · 대령서원 · 장무서원 · 종약서원 각 2인, 사환서원 12인, 대령의녀 2명, 사환의녀 3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대령수공 2명, 연말수공 4명, 사환수공 15명, 군사 20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 승정원. 서리 8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참고参考)

주상의 병환이 회복되셨을 때. 순조 1년(1801) 신유년 12월, 수두가 회복되셨다
내의원. 대령서원 2인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사환서원 9인과 종약서원 1인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연말사령 2명, 사환사령 9명, 군사 9명은 무명 1필과 쌀 2말씩이다(종후從厚) ○약색서원 2인은 모두 서제(書題, 서리)로 제수한다. 장무서원 2인은 모두 원하는 대로 면천해준다.

○임술년(1802, 순조 2) 12월에 대전과 중궁전의 마진이 회복되셨다 내의원. 사환의녀 3명은 무명 3필과 쌀 5말씩이다. 대령사령 3명, 연말사령 3명, 사환사령 10명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군사 15명은 무명 1필과 쌀 2말씩이다(종후從厚) ○약색서원은 서제(書題)로 제수한다. 차비대령서원 · 의녀 · 장무 · 탕약 · 사환서원은 모두 면천한다. 시야청. 별감 9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승정원. 서리 17명, 숙직하는 대령호방과 예방서리 각 4명씩, 정서조보서리 3명, 언서조보서리 4명은 무명 2필씩이다. 사령 24명, 숙직하는 대령사령 12명, 인배 5명은 모두 2등이다. 수공 3명, 군사 5명, 구종 8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참고参考)
○을축년(1805, 순조 5) 3월에 두창이 회복되셨다 내의원. 시야청대령사령 5명, 연말사령 5명, 사환사령 17명, 여수공 2명, 군사 19명, 숙수 3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종후從厚) ○약색 · 탕약색 · 장무 · 대령서원은 모두 임술년(1802, 순조 2)의 전례대로 한다. 승정원. 서리 21명, 예방서리 4명, 사령 47명, 인배 6명, 수공 3명, 군사 5명, 구종 8명. 이상은 임술년(1802)의 전례대로 한다.

○정묘년(1807, 순조 7) 12월 내의원. 의관 5원은 모두 1등이다. 서원 5인, 군사 4명, 수공 6명, 숙수 4명은 쌀 5말씩이다(종후從厚)

○임신년(1812, 순조 12) 3월 내의원. 사환서원 16명, 종약서원 2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

씩이다. 연말사령 5명, 사환사령 18명, 여수공 2명, 군사 21명, 동변군 3명, 숙수 5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参考) 승정원. 서리 21명, 예방서리 4명은 모두 3등이다. 사령 47명과 인배 6명은 삼베 1필씩이다. 수공 3명, 군사 5명, 구종 8명은 각각 3말씩이다. 모두 교지하신 수량에 따른다.

○을해년(1815, 순조 15) 1월 내의원. 연말사령 3명, 대령사령 5명, 사환사령 18명, 여수공 2명, 군사 22명, 동변군 3명, 숙수 4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 승정원. 서리 4명은 무명 2필씩이다. 사령 5명은 모두 2등이다. ○이상은 을축년(1805, 순조 5)의 전례대로 한다.
세자의 흥진이 회복되셨을 때. 순조 22년(1822) 임오년 12월

내의원. 종약서원 2인과 사환서원 11인은 모두 1등이다. 대령수공 2명은 모두 2등이다. 연말수공 4명, 사환수공 15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0명은 쌀 3말씩이다. 승정원. 예방서리 4명과 숙직하는 대령서리 4명은 모두 1등이다. 해당 궁. 별감 20명과 수사별감 2명은 모두 1등이다. 반감 2명, 고정자 2명, 다색 2명, 등촉색 2명, 조라치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장번방지기 · 수공 우두머리 · 방지기 · 수공 각 2명은 3등이다(고례考例)

세자빈의 흥진이 회복되셨을 때. 순조 22년(1822) 임오년 11월

내의원. 탕약서원 2인, 장무서원 2인, 대령서원 2인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종약서원 2인, 사환서원 11인은 무명 1필과 쌀 5말씩이다(参考) 대령의녀 2명과 사환의녀 3명은 모두 무명 6필과 쌀 1섬씩이다(종후從厚) 대령수공 2명은 모두 2등이다. 연말수공 4명과 사환수공 15명은 모두 3등이다(고례考例) 승정원. 예방서리 4명, 숙직하는 대령서리 4명, 사령(使令) 2명은 모두 2등이다 해당 궁. 별감 12명은 모두 1등이다. 수사도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반감 2명, 고정자 2명, 다색 2명, 등촉색 2명, 조라치 2명, 승전색방지기 2명, 수공 2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고례考例)

숙선옹주의 두창이 순탄하셨을 때. 정조 20년(1796) 병진년 10월. 창덕궁으로 옮기셨을 때

내의원. 이차대령약색서원 1인과 장무서원 1인은 모두 3등이다. 입변서원 1인은 쌀 5말이고, 다른 1인은 쌀 4말이고, 다른 5명은 쌀 3말씩이고, 다른 4명은 쌀 2말씩이고, 다른 2명은 삼베 1필씩이다. 대청지기 1명과 동변군 3명은 모두 3등급이다. 군사 19명은 쌀 1말씩이다. 수공 12명은 쌀 2말씩이다. 여수공 1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이고, 다른 1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이다(이상 판하判下)

○순조 2년(1802) 임술년 11월. 홍진이 순탄하셨을 때 내의원. 서원 4인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연말사령 2명, 사환수공 7명, 군사 4명은 무명 1필씩이다. 대령의녀 2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판하判下)

▶ 卷7 > 賞典 > 患候平復

翼宗大王誕降時 純宗九年己巳九月

產室廳. 內局藥色書員二, 掌務書員二, 待令軍士四, 司僕諸員五, 並二等. 入番書員三, 使喚書員七, 水工十二, 並三等. 童便軍三, 軍士八, 近仗軍士二, 各米一斗. ○捲草時. 負函抄奴一, 木一疋米二斗, 扶囑軍二, 引路軍二, 奉炬軍六, 各米一斗鼓吹工人四十, 色吏一, 各米二斗. ○洗胎時. 汲水軍六並一等, 又六並二等, 使喚軍九, 並二等, 又七並三等. ○待令中禁二並二等, 次知中使房直·水工·飯工, 各一並三等. 軍士二, 各米一斗, 承傳色房直·水工·飯工, 各一並三等. 軍士二, 各米一斗, 從事官房直, 一名, 三等軍士二, 各米一斗, 司鑰房飯工·水工, 各二, 別監房飯工二, 並三等軍士二, 各米一斗. ○待令地衣契 典涓司軍士, 各二, 各米一斗, 依庚戌例. 政院 待令書吏四, 使令四, 並二等. 禮房書吏四, 書吏十七, 朝報書吏一使令三十一, 並三等. 引陪六, 各米二斗, 水工三軍士三, 各米一斗. 內閣 書吏五書寫一, 大廳直一, 並三等. 引陪七, 房直二, 各米二斗, 軍士五, 各米一斗. 翰苑. 書吏一人, 二等, 又一人三等. 使令一, 布一疋, 軍士一, 米二斗, 鑰硯直四使令三, 各米二斗, 軍士二, 各米一斗. 玉堂. 書吏三, 並三等. 使令二, 各米二斗, 軍士二, 各米一斗. 藏書閣. 書吏一, 米三斗, 房直一, 米二斗. 摠府. 書吏二, 並三等. 大廳直一, 米二斗, 使令三各, 布一疋, 軍士一, 米一斗. 香室. 守僕一人, 三等. 房直一, 米二斗, 軍士一米, 一斗. 禁漏. 書員四, 時童一, 並三等. 兩司. 奇別書吏, 一木二疋. 宣傳官廳. 內吹十, 各米三斗, 軍士二, 各米一斗. 別軍職廳 書員一人, 三等. 使令三, 各米二斗, 軍士二, 各米一斗. ○以上並依庚戌例.

○安胎時. 雲觀書員二, 禁漏書員一, 各木一疋, 米二斗. 排設房照羅赤一, 木一疋, 軍士三, 各米一斗. 地衣負持軍一, 米二斗, 衛將所書員一, 木一疋. 引路軍二, 扶囑軍二, 奉炬軍四, 各米一斗. 鼓吹工人三十八, 各米二斗. 以上參考. 陪胎書員一, 泰時書員一, 各木二疋, 布二疋, 米三斗從厚.

○鄉吏·隸·工匠等, 從厚施賞事, 知委該道.

明溫公主誕生時. 純宗十年庚午十月

產室廳. 內局員役賞典, 比己巳同, 而使喚書員, 今加五童便軍, 今減一軍士, 今減二. ○捲草時賞典, 比己巳同, 而鼓吹工人, 今減二十四. ○洗胎時, 賞典一依, 己巳例同. ○待令飯監一人, 三等. 各色掌三, 各米二斗. 承傳色房直, 水工, 飯工, 各二, 並三等. 軍士四, 各米一斗. 從事官房直,

一名，三等。軍士二，各米一斗。司鑰房·別監房·中禁房 軍士，各二各米一斗，依己巳例。禁漏。
書員二，並三等。軍士二，各米二斗。別軍職廳。員役賞典，比己巳同，而使令，今減一。

福溫公主誕生時。純宗十八年戊寅十一月

產室廳。內局員役賞典，比己巳同，而水工，今減二。○捲草時賞典，比己巳同，而鼓吹工人，今減二十四名，色吏今無。○洗胎時賞典，比己巳，庚午並同。○待令飯監，以下賞典，比庚午同，而別監房，中禁房軍士，今各減一。次知中使房房直，水工，飯工，各一，並三等。軍士二，各米一斗，比庚午加。禁漏，書員二，並三等。依庚午例。○藏胎時。雲觀書員一人，三等。判下。

世孫宮誕降時。純宗二十七年丁亥七月

產室廳。內局員役賞典，比己巳同，而水工二名，有待令名色，故今以二等，磨鍊。其餘十名，並三等。使喚書員，今加三，入番書員，童便軍軍士，今各加二。○捲草時賞典，比己巳同，而色吏今無。○待令中禁二，並二等。各色掌三，各米一斗，待令內官房，房直四，水工三，飯工三，並三等。軍士八，司鑰房軍士四，各米一斗。政院。待令書吏五，使令十一，並二等。禮房書吏四，書吏十九，朝報書吏三，使令三十五，加出代立使令三十五，並三等。引陪五，各米二斗，水工三軍士五，各米一斗。雲觀。書員二，並三等。禁漏。書員二，並三等。兩司。奇別書吏一，木二疋。宣傳官廳。比己巳同，而內吹今減一。別軍職廳。己巳同，而使令今加二。○房直一，米一斗，比己巳今增。掖庭署。世子宮別監二十，庫城上茶色 燈燭色 水賜別監，各二，各色掌四，並三等。照羅赤二，各布一疋，別監房留直二，並三等。軍士四，司鑰房照羅赤二，軍士八，水刺間留直一，軍士四，燈燭房留直一，軍士六，各米一斗。○嬪宮別監十六，並三。等飯監二，各木二疋，庫城上 茶色 燈燭色，各二，並三等。照羅赤二，各布一疋，別監房留直二，並三等。軍士四，司鑰房軍士二，水刺間留直一，軍士四，燈燭房留直一，軍土房直水工各二，各米一斗。○元孫宮別監二，各木二疋，庫城上二，茶色二，各色掌四，並三等。以上因達下單，參考磨鍊。啓下標紙據。大殿司謁·書房色司鑰·弓房司鑰各二，排設。司鑰三，傳命司謁四，並三等。別監四十，並二等。中禁十，水賜別監四，並三等。軍士二，各米二，斗飯監二，多人飯監二，並二等。庫城上二，別司饔二，茶色四，並三等。各色掌十，各布一疋，軍士二，各米二斗，燈燭色四，並三等。照羅赤二，各米三斗，軍士三，各米二斗，統長二，各木二疋，待令武監四十二，把門武監一百五十六，並二等。門旗手三十，並三等。待令下人五，並二等。軍士三，各布一疋，武藝廳軍士十，各米二斗，內苑別監二，並二等。直只四，並三。等軍士二，各米二斗，守直閣監三，各米一石，直只水工近仗軍士，各二並二等。軍士六，並三等。排設房照羅赤三，各木二疋。軍士八，並三。等承傳色使令一，書房色照羅赤一，並三等。軍士二，司謁司鑰房軍士六，

別監中禁房軍士十，各米二斗。○中宮殿司鑰二，各木二疋，別監二十，飯監二，並二等。庫城上茶色 別司饗燈燭色 各二，水賜別監四，並三等。燈燭房照羅赤二，各米三斗，軍士三，水刺間軍士五，內官房軍士二，各米二，斗水工房直，各二各米三斗。○世子宮司鑰二，並三等。別監二十，飯監二，並二等。庫城上 茶色 水賜別監 燈燭色，各二，並三等。各色掌四，各布一疋，燈燭房照羅赤二，各米三斗，軍士五，水刺間軍士四，水賜間軍士二，內官房軍士二，各米二斗，房直二，水工二，各米三，斗排設房照羅赤二，各木二疋，軍士八，小院房直飯工水工，各二，並三等。軍士一，米二斗。○嬪宮司鑰二，各木二疋，別監十六，飯監二，並二等。庫城上 茶色 水賜別監 燈燭色，各二，並三等。照羅赤二，各米三斗，軍士三，水刺間軍士二，內官房軍士二，各米二斗，水工房直，各二各米三斗。○元孫宮司鑰二，各米一石，別監二，並三等。飯監二，並二等。庫城上茶色各二，並三等。各色掌四，各布一疋，加設內官房直水工各二，各米三斗，軍士三，各米二斗。○各殿宮司鑰 房別監 房軍士二十四，各米二斗。○廂庫庫直二，並三等。軍士二，各米二斗。○標信直二，並三等。○內班院房直六飯工二，水工二，並三等。軍士二，各米二斗。○內侍府書員二使令一，並三等。房直二，水工二，各米三斗，軍士四，各米二斗。○內弓房庫直二弓人十四，矢人十二，並三等。水工一，米三斗，軍士五，各米二斗。○內農圃書員六庫直二並二等使令一名，三等。軍士一，米二斗。○真殿守僕六，並三等。照羅赤四，宮內疊房房直二，各米三斗，軍士四，各米二斗。○後苑內官房房直二，各米三斗，軍士六，各米二斗。○建禮堂內官房房直二，各米三斗，軍士四，各米二斗。○都廳上直房軍士八，各米二斗。○別軍職十三，各米一石，錢十兩。○司僕書員五，各木二疋，馬醫司僕，以下十二，並三等。巨達二十五，各米三斗。○龍洞宮，宮內賞格木四疋，小次知一，掌務六稼宮三，書員一，各木二疋，庫直一名，二等。大廳直八，書寫一，色掌七，使喚二，貿易奴一，入役奴二十四，婢子十四，熟手三，綾羅匠五，本宅奴婢，各一，並三等。以上判下。

○安胎時。雲觀書員二，禁漏書員一，各木一疋，米二斗，衛將所書員一，木一疋，衛軍十，引路軍二，扶囑軍二，奉炬軍四，各米一斗，鼓吹工人三十八，各米二斗。以上依已例。陪胎書員一，奏侍書員一，看役書吏一，各木二疋，布二疋米，三斗。以上依庚戌例。○鄉看役·校吏·工匠，並庚戌例，施賞事，知委該道。

의종대왕의 탄강 때 순조 9년(1809, 순조 9) 기사년 9월

산실청 내의원 약색서원 2인, 장무서원 2인, 대령군사 4명, 사복시 원역 5인은 모두 2등이다. 입번서원 3인, 사환서원 7명, 수공 12명은 모두 3등이다. 동변군 3명, 군사 8명, 근장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권초(捲草) 때. 부함초노 1명은 무명 1필, 쌀 2말이다. 두부축군 2명,

인로군 2명, 봉거군 6명은 쌀 1말씩이다. 고취공인 40명과 색리 1인은 쌀 2말씩이다. ○세태(洗胎) 때. 급수군 6명은 모두 1등, 다른 6명은 모두 2등이다. 사환군 9명은 모두 2등, 다른 7명은 모두 3등이다. ○대령증금 2명은 모두 2등이다. 차지증사방지기 · 수공 · 반공 각 1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승전색방지기 · 수공 · 반공 각 1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종사관방지기 1명은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사약방 반공 · 수공 각 2명, 별감방 반공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대령지의계와 전연사 군사 각 2명은 경술년(1790, 정조 14)의 전례대로 쌀 1말씩이다. 승정원. 대령서리 4명과 사령 4명 모두 2등이다. 예방서리 4명, 서리 17명, 조복서리 1명, 사령 31명은 모두 3등이다. 인배 6명은 쌀 2말씩이다. 수공 3명과 군사 3명은 쌀 1말씩이다. 규장각. 서리 5명, 서사 1명, 대청지기 1명은 모두 3등급이다. 인배 7명과 방지기 2명은 쌀 2말씩이다. 군사 5명은 쌀 1말씩이다. 예문관. 서리 1명은 2등, 다른 1명은 3등이다. 사령 1명은 삼베 1필이다. 군사 1명은 쌀 2말이다. 유연지기 4명과 사령 3명은 쌀 2말씩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흥문관 서리 3명은 모두 3등이다. 사령 2명 쌀 2말씩이다. 군사 2명은 모두 쌀 1말이다. 장서각. 서리 1명은 쌀 3말이다. 방지기 1명은 쌀 2말이다. 도총부. 서리 2명 모두 3등이다. 대청지기 1명은 쌀 2말이다. 사령 3명은 삼베 1필씩이다. 군사 1명은 쌀 1말이다. 향실. 수복 1인은 3등이다. 방지기 1명은 쌀 2말이다. 군사 1명은 쌀 1말이다. 금루. 서원 4인과 시동 1명은 모두 3등이다. 사현부와 사간원 기별서리 1명은 무명 2필이다. 선전관청 내취 10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별군직청 서원 1인은 3등이다. 사령 3인은 쌀 2말씩이다. 군사 2인은 쌀 1말씩이다. ○이상은 모두 경술년(1790, 정조 14)의 전례대로 한다.

○안태(安胎) 때. 관상감 서원 2인과 금루 서원 1명은 무명 1필과 쌀 2말씩이다. 배설방조라치 1명은 무명 1필이다. 군사 3명은 쌀 1말씩이다. 지의부지군 1명은 쌀 2말이다. 위장소서원은 무명 1필이다. 인로군 2명, 부촉군 2명, 봉거군 4명은 쌀 1말씩이다. 두고취공인 38명은 쌀 2말씩이다(이상 참고参考). 배태서원 1인과 주시서원 1인은 무명 2필, 삼베 2필, 쌀 3말씩이다(종후從厚). ○향리 · 예 · 공장들은 후하게 시상하도록 각 도에 지위(知委, 통지)하였다.

명온공주 탄생 때 순조 11년(1811) 신미년 11월

산실청. 내의원의 원역에 대한 포상은 기사년(1809, 순조 9)과 비교하면 같지만, 사환서원

은 지금 5명을 추가하였고, 동변군은 지금은 1명을 줄였고, 군사는 지금 2명을 줄였다. ○권초(捲草) 때의 포상은 기사년과 비교하여 같지만, 고취공인은 지금 24명을 줄였다. ○세태(洗胎) 때의 포상은 기사년의 전례와 같다. ○대령반감 1인은 3등이다. 각 색장 3명은 쌀 2말씩이다. 승전색방지기 · 수공 · 반공 각 2명은 3등이다. 군사 4명은 쌀 1말씩이다. 종사방지기 1명은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사약방 · 별감방 · 중금방의 군사 각 2명은 쌀 1말씩이다. 기사년의 전례와 같다 금루. 서원 2인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별군직 청. 원역의 포상은 기사년과 비교하면 같으나, 사령은 지금 1명을 줄였다.

복온공주 탄생 때 순조 18년(1818) 무인년 11월

산실청. 내의원의 원역에 대한 상전은 기사년과 같으나, 수공은 지금 2명을 줄였다. ○권초(捲草) 때의 상전은 기사년과 같으나, 고취공인은 지금 24명을 줄였고, 색리는 지금 없다. ○세태(洗胎) 때의 상전은 기사년 · 경오년(1810)과 같다. ○대령반감 이하의 상전은 경오년과 비교하면 같으나, 별감방과 중금방 군사는 지금 각 1명씩 줄였고, 차지증사방지기 · 수공 · 반공 1명씩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경오년에 비하여 추가되었다. 금루. 서원 2인은 모두 3등이다. 경오년의 전례에 의한다. ○장태(藏胎) 때. 관상감 서원 1인은 3등이다(판하判下)

세손의 탄강 때 순종 27년(1827) 정해년 7월

산실청. 내의원 원역의 상전은 기사년과 비교하여 같으나, 수공 중 2명은 대령하는 역할을 겸했으므로 지금 2등으로 마련한다. 그 밖의 나머지 10명은 모두 3등이다. 사환서원은 지금 3명을 추가하였다. 입번서원과 동변군과 군사는 지금 모두 2명을 추가하였다. ○권초(捲草) 때의 상전은 기사년과 비교하면 같으나, 색리는 지금 없다. ○대령중금 2명은 모두 2등이다. 각 색장 3명은 쌀 1말씩이다. 대령내관방지기 4명, 수공 3명, 반공 3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8명, 사약방 군사 4명은 쌀 1말씩이다. 승정원 대령서리 5명, 사령 11명은 모두 2등이다. 예방서리 4명, 서리 19명, 조보서리 3명, 사령 35명, 추가로 뽑은 대립사령 35명은 모두 3등이다. 인배 5명은 쌀 2말씩이다. 수공 3명, 군사 5명은 쌀 1말씩이다. 관상감. 서원 2인은 모두 3등이다. 금루. 서원 2인은 모두 3등이다. 사헌부와 사간원. 기별서리 1명은 무명 2필이다. 선전관청. 기사년과 비교하면 같으나, 내취는 지금 1명을 줄였다. 별군직 청. 기사년과 같으나, 사령은 지금 2명을 추가했다. ○방지기 1명은 쌀 1말이니, 기사년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액정서. 세자궁 별감 20명, 고정자 · 다색 · 등축색 · 수사별감 각 2명

과 색장 4명은 3등이다. 조라치 3명은 삼베 1필씩이다. 별감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4명, 사약방의 조라치 2명, 군사 8명, 수라간에 머물러 숙직하는 1명, 군사 4명, 등총방에 숙직하는 1명, 군사 6명은 쌀 1말씩이다. ○빈궁 별감 16명은 모두 3등이다. 반감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고정자와 다색과 등총색 각 2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2명은 삼베 1필씩이다. 별감방의 숙직하는 사람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4명, 사약방 군사 2명, 수라간의 당직하는 사람 1명, 군사 4명, 등총방의 당직하는 사람 1명, 군사방지기와 수공(水工) 각 2명은 쌀 1말씩이다. ○원손궁 별감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고정자 2명, 다색 2명, 각 색장 4명은 모두 3등이다. 이상은 달하(達下,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결제함) 단자를 참고하여 마련한다. 임금에게 재가를 받은 표지(標紙)에 근거한다. 대전 사알·서방 색 사약·궁방 사약은 2명씩을 배설한다. 사약 3명과 전명사알 4명은 모두 3등이다. 별감 4명은 2등이다. 중금 10명, 수사별감 4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반감 2명과 다인반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고정자 2명, 별사옹 2명, 다색 4명은 모두 3등급이다. 각 색장 10명은 삼베 1필씩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등총색 4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3명은 쌀 2말씩이다. 통장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대령무감 42명, 파문무감 156명은 모두 3등이다. 문기수 30명은 모두 3등이다. 대령하인 5명은 모두 2등이다. 군사 3명은 삼베 1필씩이다. 무예청 군사 10명은 쌀 2말씩이다. 내원별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지기 4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수지기와 각감 3명은 쌀 1섬씩이다. 지기, 수공, 근장군사 각 2명은 모두 2등이다. 군사 6명은 모두 3등이다. 배설방의 조라치 3명은 무명 2필씩이다. 군사 8명은 모두 3등이다. 승전색 사령 1명, 서방색 조라치 1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 사알사약방 군사 6명, 별감중금방 군사 10명은 쌀 2말씩이다. ○중궁전 사약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별감 20명과 반감 2명은 모두 2등급이다. 고정자·다색·별사옹·등총색 각 2명과 사별감 4명은 모두 3등이다. 등총방 조라치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3명, 수라간 군사 5명, 내관방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수공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세자궁 사약 2명은 3등이다. 별감 20명과 반감 2명은 모두 2등급이다. 고정자·다색·수사별감·등총색 각 2명은 모두 3등급이다. 각 색장 4명은 삼베 1필씩이다. 등총방의 조라치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5명, 수라간 군사 4명, 수사간 군사 2명, 내관방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방지기 2명, 수공 2명은 쌀 3말씩이다. 배설방 조라치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군사 8명, 소원방지기·반공·수공 각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1명은 쌀 2말이다. ○빈궁 사약 2명은 무명 2필씩, 별감 16명, 반감 2명은 모두 2등급이다. 고정자, 다색, 수사별감, 등촉색 각 2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3명, 수라간 군사 2명, 내관방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수공, 방지기 각 2명은 쌀 3말씩이다. ○원순궁 사약 2명은 쌀 1섬씩이다. 별감 2명은 모두 3등이다. 반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고정자와 다색 2명씩은 모두 3등이다. 각 색장 4명은 삼베 1필씩이다. 가설내관방지기과 수공 각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3명은 쌀 2말씩이다. ○각 전궁의 사약방 별감과 방군사 24명은 쌀 2말씩이다. ○상고 고지기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표신 지기 2명은 모두 3등이다. ○내반원방지기 6명, 반공 2명, 수공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내시부 서원 2명과 사령 1명은 모두 3등급이다. 방지기 2명과 수공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4명은 쌀 2말씩이다. ○내궁방고지기 2명, 활 만드는 사람 14명과 화살 만드는 사람 12명은 모두 3등급이다. 수공 1명은 쌀 3말이다. 군사 5명은 쌀 2말씩이다. ○내농포 서원 6명과 고지기 2명은 모두 2등이다. 사령 1명은 3등급이다. 군사 1명은 쌀 2말이다. ○진전수복 6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4명과 내관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7명은 쌀 2말씩이다. ○제정각지기 1명은 3등이다. 군사 1명은 쌀 2말이다. ○경복궁내 관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7명은 쌀 2말씩이다. ○창경궁내변방지기 2명은 쌀 3말이다. 군사 4명은 쌀 2말씩이다. ○후원내관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6명은 쌀 2말씩이다. ○건례당내관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4명은 쌀 2말씩이다. ○도총상 직방 군사 8명은 쌀 2말씩이다. ○별군직 13명은 쌀 1섬과 돈 10냥씩이다. ○사복시 서원 5명은 무명 2필씩이다. 마의와 사복 이하 12명은 모두 3등이다. 거달 25명은 쌀 3말씩이다. ○용동궁의 궁내 상격은 무명 1필이다. 소차지 1명, 장무 6명, 숙궁 3명, 서원 1명은 무명 2필씩이다. 고지기 1명은 2등이다. 대청지기 8명, 서사 1명, 색장 7명, 사환 2명, 무역노 1명, 입역노 24명, 노자 14명, 숙수 3명, 능라장 5명, 본택 노비 각 1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판하判下) ○안태(安胎) 때. 관상감 서원 2인과 금루 서원 1명은 무명 1필과 쌀 2말씩이다. 위장소 서원 1명은 무명 1필이다. 위군 10명, 인로군 2명, 부축군 2명, 봉거군 4명은 쌀 1말씩이다. 고취공인 38명은 쌀 2말씩이다(이상은 기사년의 전례를 따른다) 배태서원 1인, 주시서원 1인, 간역서리 1명은 무명 2필, 삼베 2필, 쌀 3말씩이다(이상은 경술년의 전례를 따른다) ○향간역 · 교리 · 공장은 모두 경술년의 전례를 따라 포상하도록 각 도에 지위(知委, 통지)한다.

濟衆新編 · 雅誦刻役時. 正宗二十三年己未十一月

鑄字所 刻手邊首, 木二疋. 京刻手一, 木二疋, 又六各布一疋, 又一米三斗, 又四並二等, 又十並三等. ○平壤刻手五, 各木二匹. 又三, 各木一疋, 米三斗, 又四並二等, 又四並三等. ○全州刻手, 各木一疋, 米三斗. ○除刻匠 · 小木匠, 並三等. 使喚軍, 各米三斗, 以上判下.

《제중신편》과 《아송》을 판각할 때. 정조 23년(1799) 11월

주자소. 각수 우두머리는 무명 2필이다. 도성의 각수 1명은 무명 2필이고, 다른 6명은 삼베 1필씩이고, 다른 1명은 쌀 3말이고, 다른 4명은 2등이고, 다른 10명은 3등이다. ○평양 각수 5명은 삼베 2필씩이고, 다른 3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고, 다른 4명은 2등이고, 다른 4명은 3등이다. ○전주 각수는 무명 1필과 쌀 3말이다. ○제각장과 소목장은 모두 3등이다. 사환군은 쌀 3말씩이다(이상 판하判下)

瓊玉膏製進時. 正宗二十年丙辰六月

內局. 書員二, 並二等. 水工一, 木二疋. 又一名, 三等. 軍士二各, 米三斗. 瓠山亭舍音一名, 三等. 守直軍士二, 各米三斗, 並判下.

경옥고를 조제할 때. 정조 20년(1796) 6월

내의원. 서원 2명은 모두 2등이다. 수공 1명은 무명 2필이고, 다른 수공 1명은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3말씩이다. 농산정 마름 1명은 3등이다. 수직군사 2명은 쌀 3말씩이다(판하判下)

예전(禮典)

1. 예조속아문(禮曹屬衙門)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禮典. 屬衙門, 弘文館·藝文館·成均館·春秋館·承文院·通禮院·奉常寺·校書館·內醫院·禮賓寺·掌樂院·觀象監·典醫監·司譯院·世子侍講院·宗學·昭格署·宗廟署·社稷署·冰庫·典牲署·司畜署·惠民署·圖畫署·活人署·歸厚署·四學·文昭殿延恩殿參奉·畿內諸陵殿參奉.

예전. 소속 아문은 흥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통례원·봉상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세자시강원·종학(宗學)·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혜민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사학(四學) 및 문소전과 연은전의 참봉·경기 지역 각 능전(陵殿)의 참봉이다.

▶ 禮典 [屬衙門]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禮典

屬衙門, 弘文館·藝文館·成均館·春秋館·承文院·通禮院·奉常寺·校書館·內醫院·禮賓寺·掌樂院·觀象監·典醫監·司譯院·世子侍講院·宗

學·昭格署·宗廟署·社稷署·冰庫·典牲署·司畜署·惠民署·圖畫署·活人署·歸厚署·四學，文昭殿延恩殿參奉·畿內諸陵殿參奉.

예전

소속 아문은 흥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통례원·봉상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세자시강원·종학(宗學)·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혜민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사학(四學) 및 문소전과 연은전의 참봉·경기 지역 각 능전(陵殿)의 참봉이다.

▶ 禮典 上 > [屬衙門]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禮典

屬衙門，弘文館·藝文館·成均館·春秋館·承文院·通禮院·奉常寺·校書館·內醫院·禮賓寺·掌樂院·觀象監·典醫監·司譯院·世子侍講院·宗學·昭格署·宗廟署·社稷署·冰庫·典牲署·司畜署·惠民署·圖畫署·活人署·歸厚署·四學，文昭殿延恩殿參奉·畿內諸陵殿參奉.

예전

소속 아문은 흥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통례원·봉상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세자시강원·종학(宗學)·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혜민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사학(四學) 및 문소전과 연은전의 참봉·경기 지역 각 능전(陵殿)의 참봉이다.

▶ 禮典 > 屬衙門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禮典. 屬衙門，弘文館·藝文館·成均館·春秋館·承文院·通禮院·奉常寺·校書館·內醫院·禮賓寺·掌樂院·觀象監·典醫監·司譯院·世子侍講院·宗學·昭格署·宗廟署·社稷署·冰庫·典牲署·司畜署·惠民署·圖畫署·活人署·歸厚署·四學，文昭殿延恩殿參奉·畿

內諸陵殿參奉([經] [增] [補]) …

예전. 소속 아문은 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통례원·봉상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세자시강원·종학(宗學)·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혜민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사학(四學) 및 문소전과 연은전의 참봉·경기 지역 각 능전(陵殿)의 참봉이다([경국대전] [추가] [보충]) …

▶ 禮典 > [屬衙門]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禮典 [原] 屬衙門, 弘文館·藝文館·成均館·春秋館·承文院·通禮院·奉常寺·校書館·內醫院·禮賓寺·掌樂院·觀象監·典醫監·司譯院·世子侍講院·宗學·昭格署·宗廟署·社稷署·冰庫·典牲署·司畜署·惠民署·圖畫署·活人署·歸厚署·四學, 文昭殿延恩殿參奉·畿內諸陵殿參奉. [增] 景慕宮官. ○校書館, 今屬奎章閣. 文昭殿·延恩殿·宗學·昭格署·司畜署·歸厚署, 今革.

예전 [경국대전] 소속 아문은 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통례원·봉상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세자시강원·종학(宗學)·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혜민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사학(四學) 및 문소전과 연은전의 참봉·경기 지역 각 능전(陵殿)의 참봉이다. [추가] 경모궁의 관원도 소속시킨다. ○교서관은 지금 규장각에 소속되었고, 문소전·연은전·종학·소격서·사축서·귀후서는 지금 혁파되었다.

▶ 禮典 > [屬衙門]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禮典 [原] 屬衙門, 弘文館·藝文館·成均館·春秋館·承文院·通禮院·奉常寺·校書館·內醫院·禮賓寺·掌樂院·觀象監·典醫監·司譯院·世子侍講院·宗學·昭格署·宗廟署·社稷署·冰庫·典牲署·司畜署·惠民署·圖畫署·活人署·歸厚署·四學, 文昭殿延恩殿參奉·畿內諸陵殿參奉. [增] 景慕宮官. ○校書館, 今屬奎章閣. 文昭殿·延恩殿·宗學·昭格署·司畜署·歸厚署, 今革. [補] 永禧殿官.

예전 [경국대전] 소속 아문은 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통례원·봉상

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세자시강원·종학(宗學)·소격서·종묘서·사직서·빙고·전생서·사축서·혜민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사학(四學) 및 문소전과 연은전의 참봉·경기 지역 각 능전(陵殿)의 참봉이다. [대전통편] 경모궁의 관원도 소속시킨다. ○교서관은 지금 규장각에 소속되었고, 문소전·연은전·종학·소격서·사축서·귀후서는 지금 혁파되었다. [보충] 영희전의 관원도 소속시킨다.

▶ 禮典 > [屬衙門]

2. 제과(諸科)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394년

- … 其武科醫科陰陽科吏科通事科，各以類附見焉。
- … 무과·의과·이과(吏科)·통사과(通事科, 역과)는 각각 종류별로 부기해서 보이겠다.

▶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禮典 > 貢擧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諸科] 三年一試，前秋初試，春初覆試·殿試。…

醫科初試

[額數] 十八人。典醫監錄名試取。

[講書] 簿圖脈·銅人經誦，直指方·得效方·婦人大全·瘡疹集·胎產集要·救急方·和劑方 指南則誦 · 本草 · 經國大典 臨文。

醫科覆試

[額數] 九人。本曹同本監提調錄名試取。

[講書] 同初試。

[제과] 3년에 1번씩 시험을 보는데 그 이전 해 가을에 초시(初試, 예비 시험)을, 그해 봄에 복시(覆試) · 전시(殿試)를 보게 한다. …

의과 초시

[인원수] 18인.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찬도맥》 · 《동인경》 외운다 · 《직지방》 · 《득효방》 · 《부인대전》 · 《창진집》 · 《태산집요》 · 《구급방》 · 《화제방》 <지남총론>은 외운다 · 《본초》 · 《경국대전》 책을 보고 풀이한다

의과 복시

[인원수] 9인. 예조에서 전의감 제조와 함께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초시와 같다.

▶ 禮典 > 諸科 > [三年一試…]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년

○司譯院主簿以上職, 依觀象監 · 典醫監例, 並以出身者除授.

○사역원 주부 이상의 직임은 관상감과 전의감의 전례를 따라 과거 합격자를 제수한다.

▶ 禮典 > 諸科 > [司譯院主簿以上…]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司譯院主簿以上職, 依觀象監 · 典醫監例, 并以出身者除授.

○사역원 주부 이상의 직임은 관상감과 전의감의 전례를 따라 과거 합격자를 제수한다.

▶ 禮典 上 > 諸科 > 後續錄 > [以出身者除授]

○三醫司 · 律學 · 算員 · 寫字官等, 或爲代寫冒入, 則曾參雜科者, 依生進例充軍, 未科者, 全家徙邊. 三醫司以下, 常時習業, 應爲赴舉者, 呈本司, 本曹受公文後, 許赴. … 康熙癸亥承傳

○ 삼의사(三醫司)의 관원 · 율관 · 산원 · 사자관들이 혹 대신 써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자음)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한다. 삼의사(三醫司) 이하 중 평상시에 본업을 익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이는 소속 관청을 통해 예조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응시를 허락한다. …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禮典 上 > 諸科 > 受敎輯錄 > [用奸作亂]

醫科初試, 十八人, 典醫監錄名試取. ○講書. 纂圖脈 · 銅人經 誦. 直指方 · 得效方 · 婦人大全 · 瘡疹集 · 胎產集要 · 救急方 · 和劑方 指南則誦 · 本草 · 經國大典 臨文.

의과 초시, 18인.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찬도맥》·《동인경》외운다 · 《직지방》·《득효방》·《부인대전》·《창진집》·《태산집요》·《구급방》·《화제방》〈지남총론〉은 외운다 · 《본초》·《경국대전》책을 펴놓고 설명한다.

▶ 禮典 上 > 諸科 > [大典] > 醫科初試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謁聖儒生, 令四館, 坐於門前, 考其見號牌點入, 而三醫司及各司所屬人等, 聚會點考本司. … 康熙丙子承傳

유생들이 알성시를 볼 때는 사관(四館, 흥문관 · 예문관 · 승문원 · 교서관)의 관원이 문 앞에 앉아서 호패를 살펴보고 표시한 후 들여보내게 하고, 삼의사(三醫司)와 각 관청의 소속 관원들은 각 관사에 모여 점고(點考, 점을 찍으며 확인함)하라.
… 강희 병자년(1696, 숙종 22)에 받은 전교

▶ 禮典 > 諸科 > 454. [謁聖儒生…]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司譯院主簿以上職, 依觀象監 · 典醫監例, 并以出身者除授. …

○사역원 주부 이상의 직임은 관상감과 전의감의 전례를 따라 과거 합격자를 제수한다. …

▶ 禮典 > 諸科 > 《後續錄》

[受教輯錄] … ○三醫司 · 律學 · 算員 · 寫字官等, 或爲代寫冒入, 則曾參雜科者, 依生進例充軍, 未科者, 全家徙邊. 三醫司以下, 常時習業應爲赴舉者, 呈本司, 本曹受公文後, 許赴. ○雜科試講時用情者, 依律科罪 邊遠充軍. 康熙甲子承傳.

…

[수교집록] … ○삼의사(三醫司)의 관원 · 율관 · 산원 · 사자관들이 혹 대신 써 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지움)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한다. 삼의사 이하 중 평상시에 본업을 익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이는 소속 관청을 통해 예조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응시를 허락한다. ○잡과에서 강서를 시험볼 때 놓간을 부린 자는 대명률에 따라 죄를 처벌한다. 변방의 먼 곳으로 충군한다. 강희 갑자년(1684, 숙종 10)에 받은 전교.

▶ 禮典 > 諸科 > 《受教輯錄》

醫科初試, 十八人, 典醫監錄名試取. ○講書. 纂圖脈 · 銅人經 誦. 直指方 · 得效方 · 婦人大全 · 瘡疹集 · 胎產集要 · 救急方 · 和劑方 指南則誦 · 本草 · 經國大典 臨文.

의과 초시, 18인.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찬도맥》 · 《동인경》 외운다 · 《직지방》 · 《득효방》 · 《부인대전》 · 《창진집》 · 《태산집요》 · 《구급방》 · 《화제방》 <지남총론>은 외운다 · 《본초》 · 《경국대전》 책을 펴놓고 설명한다.

▶ 禮典 > 諸科 > [大典] > 醫科初試

醫科覆試, 九人, 本曹同本監提調, 錄名試取. ○講書, 同初試.

의과 복시, 9인. 예조에서 전의감 제조와 함께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초시와 같다.

▶ 禮典 > 諸科 > [大典] > 醫科覆試

[新補受教] 謁聖儒生，令四館，坐於門前，考其見號牌點入，而三醫司及各司所屬人等，聚會點考本司。…康熙丙子承傳

[신보수교집록] 유생들이 알성시를 볼 때는 사관(四館, 홍문관·예문관·승문원·교서관)의 관원이 문 앞에 앉아서 호패를 살펴보고 표시한 후 들여보내게 하고, 삼의사(三醫司)와 각 관청의 소속 관원들은 각 관사에 모여 점고(點考, 이름에 점을 찍으며 확인함)하라. … 강희 병자년(1696, 숙종 22)에 받은 전교

▶ 禮典 > 諸科 > 《新補受教》

춘관지(春官志) 1791년

科舉雜例. 舊例，官至正三品者，不赴文武科，六品者，不赴生員進士試。…

과거의 각종 사례. 전례는 다음과 같다. 관직이 정3품에 이른 자는 문과나 무과에 응시하지 않았고, 6품에 이른 자는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

▶ 卷之一 > 科舉 > 科舉雜例

속대전(續大典) 1746년

[諸科] 式年 三年一試，爲大比之科。今以子·午·卯·酉年設行，名曰式年 · 增廣 國有大慶，或合累慶，則特設增廣試。合慶最多者，名曰大增廣，稍加額數，則竝設文武科，及生員·進士·雜科，而別試 因重試對舉及邦慶設行。庭試同 · 庭試 · 謁聖試 · 春塘臺試，則只設文·武科。…

[제과] 식년시 3년에 한 번 시험을 보니 주나라 대비(大比) 제도를 따른 과거이다. 지금은 자(子) · 오(午) · 묘(卯) · 유(酉)년에 시행하므로 식년(式年)이라 이름한다 와 증광시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몇몇 경사를 합하여 특별히 증광시를 시행한다. 합할 만한 경사가 매우 많으면 대증광(大增廣)이라 이름하고 정원을 좀 더 추가한다는 문·무과 및 생원·진사·잡과를 모두 시행하고, 별시 증시대거(重試對舉) 및 이웃 나라의 경사가 있으면

시행한다. 정시(庭試)도 같다 · 정시 · 알성시 · 춘당대시는 문 · 무과만 시행한다.

...

▶ 禮典 > 諸科 > [試驗種類]

○凡大小科初試 · 謁聖 · 春塘臺 · 沢製之日, 三醫司祿官生徒, 及各司吏胥, 聚會點考于備邊司. 以防冒入借書之弊.

○대과와 소과의 초시 · 알성시 · 춘당대시 · 반제(泮製, 성균관 유생의 초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三醫司)의 녹관, 생도,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점고(點考, 이름에 점을 찍으며 확인함)한다.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와 대신 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禮典 > 諸科 > [大小科點考]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凡初試及謁聖 · 春塘 · 沢製日, 祿官生徒〔續〕 ○觀象監 · 司譯院 · 兩醫司 · 律官 · 寫字官 · 畫員 · 計士〔續〕〔補〕, 及各司吏胥, 點考于備邊司. 防冒入借書之弊. 〔續〕 ○憲府亦點考. 〔增〕

○대과와 소과의 초시 · 알성시 · 춘당대시 · 반제(泮製, 성균관 유생의 초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三醫司)의 녹관, 생도 [속대전] ○관상감 · 사역원 · 양의사(兩醫司) · 율관 · 사자관 · 화원 · 계사[속대전] [보충] 및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점고(點考)한다.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와 대신 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속대전] 사현부에서도 점고한다. [추가]

▶ 禮典 > 諸科 > [點考]

○醫科. 〔經〕 ○初試, 典醫監提調一或二, 同本監官二, 試取十八人. 大增, 加四人. 〔經〕〔續〕〔補〕 ○覆試, 典醫提調一, 同本監官二, 試取, 本曹堂郎各一, 兩司各一參, 取九人. 大增, 加二人.

○初 · 覆試, 本業諸書及大典通編, 背講或臨文〔經〕〔續〕.

○의과. [경국대전] ○초시. 전의감 제조 1-2원이 전의감 관원 2원과 함께 18인을 시험을 보아 뽑는다. 대증광시는 4인을 추가한다. [경국대전] [속대전] [보충] ○복시. 전의감 제조

1월이 전의감 관원 2원과 함께 시험을 보아 뽑되, 예조 당상관과 낭관 각 1원과 양의사에서 각 1월이 참여하여 9인을 뽑는다. 대증광시에는 2인을 추가한다. ○초시와 복시에서는 본업의 책들과 《대전통편》을 보지 않고(혹은 보면서) 설명한다. [경국대전] [속대전].

▶ 禮典 > 諸科 > [醫科]

추관지(秋官志) 1781년

肅宗二十年, 備邊司啓曰, “今此謁聖時, 隨從闈入者, 書吏·書寫率入者, 嚴禁事, 命下矣. … 計士·寫字官·各司書吏·書員·兩醫司·司譯院所屬人等, 開場日各其司點考, 倘無稱頤, 而如有現發, 則該司點考官員, 亦爲定罪, 率入儒生, 依事目, 朝官·生進, 則邊遠充軍, 勿揀赦典, 幼學, 則限己身水軍充定, 永停文武科事, 申飭何如?” 依允. [重補] …

숙종 20년(1694)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번 알성시 때 시종이라며 함부로 들어오는 자와 서리·서사를 거느리고 오는 자를 엄금하는 명을 내려주십시오. … 계사·사자관·각 관청의 서리와 서원·양의사나 사역원 소속원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보는 날에 각 관청에서 점고(點考)하게 하여 평계 댈 수 없게 하시고, 현장에서 발각되면 해당 관청에서 점고한 관원도 죄를 묻고, 사람을 거느리고 간 유생은 사목(事目, 지침)에 따라 조정 관리·생원·진사라면 변방의 먼 곳으로 충군(充軍)시킨 후 사면하지 말아야 하고, 유학(幼學)이라면 본인만을 수군(水軍)으로 충군시키고 영구히 문과와 무과의 자격을 정지시키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윤허하였다. [2차 보충] …

▶ 卷之七 > 考律部 > 繢條三 > 科場 > 文科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凡大小科初試·謁聖·春塘臺·泮製之日, 三醫司祿官·生徒及各司吏胥, 聚會點考于備邊司. 以防冒入借書之弊. [增] 司憲府亦點考.

○대과와 소과의 초시·알성시·춘당대시·반제(泮製, 성균관 유생의 초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三醫司)의 녹관, 생도,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점고(點考, 이름에 점을 찍으며 확인함)한다.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와 대신 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전통편] 사헌부에서도 침고한다.

▶ 禮典 > 諸科 > [大小科點考]

[醫科初試] [原] [額數] 十八人. 典醫監錄名試取. [續] 式年 · 增廣同. 大增廣, 則加四人.

○[講書] 纂圖脈 · 銅人經, 誦, 直指方 · 得效方 · 婦人大全 · 滯疹集 · 胎產集要 · 救急方 · 和劑方(指南則誦) · 本草 · 經國大典, 臨文 [續] 纂圖脈, 銅人經 背誦, 直指方, 本草, 經國大典 臨文. 見原典, 素問, 醫學正傳, 東垣十書. 並新增. 臨文. 其餘諸書, 今廢.

○[試官] [續] 典醫監提調, 同本監官二員, 該監差定, 試取.

[의과 초시] [경국대전] [인원수] 18인이다.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속대전] 식년시와 증광시도 같다. 대증광시는 4인을 추가한다.

○[강서] 《찬도맥》과 《동인경》은 외우고, 《직지방》·《득효방》·《부인대전》·《창진집》·《태산집요》·《구급방》·《화제방》(《지남총론》은 외운다), 《본초》와 《경국대전》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속대전] 《찬도맥》과 《동인경》돌아앉아서 암송한다. 《직지방》·《본초》·《경국대전》책을 보고 풀이한다. 《경국대전》에 보인다. 《소문》·《의학정전》·《동원십서》이다. 이상은 모두 추가된 책이다.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지금 폐지하였다.

○[시관] [속대전] 전의감 제조가 전의감에서 임명한 전의감 관원 2원과 함께 시험하여 뽑는다.

▶ 禮典 > 諸科 > 醫科初試

[醫科覆試] [原] [額數] 九人. 本曹同本監提調, 錄名試取. [續] 式年 · 增廣同. 大增廣, 則加二人.

○[講書] 同初試.

○[試官] [續] 典醫監提調(單望), 同本監官二員試取.

[의과 복시] [경국대전] [인원수] 9인이다. 예조에서 전의감 제조와 함께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다. [속대전] 식년시와 증광시가 같다. 대증광시는 2인을 추가한다.

○[강서] 초시와 같다.

○[시관] [속대전] 전의감 제조(단독 후보)가 전의감의 관원 2원과 함께 시취한다.

▶ 禮典 > 諸科 > 醫科覆試

춘관통고(春官通考) 1788년

世祖三年戊寅 … 同年, 立醫學者講法. …

세조 3년(1457) 무인년 … 같은 해에 의학의 강서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였다.

…

▶ 卷69 > 嘉禮 > 科制【上】> [世祖]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凡大小科初試 · 謁聖 · 春塘臺 · 沢製之日, 三醫司祿官生徒, 及各司吏胥, 聚會點考于備邊司. 以防冒入借書之弊. [增] 司憲府亦點考. [補] 備邊司今屬議政府. ○點考今廢.

○대과와 소과의 초시 · 알성시 · 춘당대시 · 반제(泮製, 성균관 유생의 초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三醫司)의 녹관, 생도,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점고(點考, 이름에 점을 찍으며 확인함)한다.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와 대신 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전통편] 사현부에서도 점고한다[보충] 비변사는 지금은 의정부에 속한다. ○점고는 지금 없어졌다.

▶ 禮典 > 諸科 > [大小科點考]

[醫科初試] [原] [額數] 十八人. 典醫監錄名試取. [續] 式年 · 增廣同. 大增廣, 則加四人.

[의과 초시] [경국대전] [인원수] 18인.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속대전] 식년시와 증광시는 동일하다. 대증광시는 4인을 추가한다.

▶ 禮典 > 諸科 > 醫科初試 > 額數

○[講書] 築圖脈 · 銅人經, 誦, 直指方 · 得效方 · 婦人大全 · 瘡疹集 · 胎產集要 · 救急方 · 和劑方(指南則誦) · 本草 · 經國大典(臨文) [續] 築圖脈 · 銅人經 背誦. [補] 銅人經, 臨文, 直

指方 · 本草 · 經國大典 臨文. 見原典, 素問 · 醫學正傳 · 東垣十書. 畝新增. 臨文. 其餘諸書, 今廢. [補] 醫學入門 新增, 背誦. ○ [續] 典醫監提調, 同本監官二員, 該監差定, 試取.

[강서] 《찬도맥》과 《동인경》은 외우고, 《직지방》·《득효방》·《부인대전》·《창진집》·《태산집요》·《구급방》·《화제방》(《지남총론》은 외운다), 《본초》와 《경국대전》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속대전] 《찬도맥》과 《동인경》돌아앉아서 암송한다. 《직지방》·《본초》·《경국대전》책을 보고 풀이한다. 《경국대전》에 보인다. 《소문》·《의학정전》·《동원십서》이다. 이상은 모두 추가된 책이다.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지금 폐지하였다. [보충] 《의학입문》새로 추가되었다. 돌아앉아서 암송한다. ○ [속대전] 전의감 제조가 전의감에서 임명한 전의감 관원 2원과 함께 시험하여 뽑는다.

▶ 禮典 > 諸科 > 醫科初試 > 講書

[醫科覆試] [原] [額數] 九人. 本曹同本監提調, 錄名試取. [續] 式年 · 增廣同. 大增廣, 則加二人.

[의과 복시] [경국대전] [인원수] 9인이다. 예조에서 전의감 제조와 함께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다. [속대전] 식년시와 증광시가 같다. 대증광시는 2인을 추가한다.

▶ 禮典 > 諸科 > 醫科覆試 > 額數

○[續] 典醫監提調 單望, 同本監官二員試取.

[속대전] 전의감 제조 단독 후보 가 전의감의 관원 2원과 함께 시취한다.

▶ 禮典 > 諸科 > 醫科覆試 > [試官]

3. 의장(儀章)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1474년

○大駕. 迎詔勅, 祭社稷, 享宗廟用之. 其儀物, 與殿庭大仗同. 導駕. 先當部主簿. … 次捧御衣, 護軍六員 · 內侍府 · 尚衣院 · 內醫院官, 各具常服, 隨之. …

대가(大駕). 조칙(詔勅)을 영접하거나 사직 · 종묘에 제향 지낼 때 사용한다. 의례 물품은 전정(殿庭)의 대장(大仗)과 같다. 도가(導駕, 행렬 선도). 해당 관청의 주부가 앞에 선다. … 다음으로 어의(御衣)를 받드는 호군 6원 · 내시부 · 상의원 · 내의원의 관원이 각자 상복(常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

▶ 卷之二 > 嘉禮 > 鹵簿 > 大駕

○法駕. 享文昭殿 · 先農 · 文宣王, 射于射壇, 觀射于射壇, 武科殿試, 用之. 其儀物, 與殿庭半仗同. 導駕. 先當部主簿. … 次捧御衣護軍六員 · 內侍府 · 尚衣院 · 內醫院官, 各具常服, 隨之. …

법가(法駕). 문소전 · 선농제 · 공자 제향 때, 사단(射壇)에서 활을 쏘거나 활 쏘는 것을 볼 때, 무과의 전시(殿試) 때 사용한다. 의례 물품은 전정(殿庭)의 반장(半仗)과 같다. 도가(導駕). 해당 관청의 주부가 앞에 선다. … 다음으로 어의(御衣)를 받드는 호군 6원 · 내시부 · 상의원 · 내의원의 관원이 각자 상복(常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

▶ 卷之二 > 嘉禮 > 鹵簿 > 法駕

○小駕. 拜陵及凡門外行幸, 用之. 其儀物, 與二庭小仗同. 傳香命使路次儀仗, 稱細仗. 外則用細仗之半. 導駕, 先當部主簿. … 次捧御衣護軍六員, 內侍府 · 尚衣院 · 內醫院官, 各具常服, 隨之. …

○소가(小駕). 각 능에 참배할 때 및 궐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행행(行幸) 때 사용한다. 의례 물품은 이정(二庭)의 소장(小仗)과 같다. 전향(傳香)이나 명사(命使)를 위한 의장은 세장(細仗)이라 부른다. 궐 바깥에서는 세장(細仗)의 반절을 쓴다. 도가(導駕). 해당 관청의 주부가 앞에 선다. … 다음으로 어의(御衣)를 받드는 호군 6원 · 내시부 · 상의

원·내의원의 관원이 각자 상복(常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

▶ 卷之二 > 嘉禮 > 鹿簿 > 小駕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475년

發引班次. 導駕. 先當部主簿, … 次捧御衣護軍六員橫行, 內侍府·尙衣院·內醫院官隨之. … 立主奠 … 香湯 用零陵香·紫檀香. 所以浴主者. (內醫院) …

발인 행렬의 차례. 도가(導駕). 해당 관청의 주부가 앞에 선다. … 다음으로 어의(御衣)를 받드는 호군 6원이 옆에서 간다. 내시부·상의원·내의원 관원이 뒤따른다. … 신주를 세우는 제전 … 향탕 영릉향과 자단향을 쓴다. 제주(祭主)를 씻기는 용도이다(내의원) …

▶ 卷之七 > 凶禮 > 發引班次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744년

大駕. 導駕. 見原書序例 … 內侍府·司僕寺官·御醫, 各具常服, 隨之. 承旨六員·注書·史官各二員, 各具朝服, 隨之. … 次兵曹·都摠府堂上官各一員, 具器服, 橫行, 堂下官隨之. 藥院提調, 居中. …

대가(大駕). 도가(導駕). 국조오례서례에 나온다 … 내시부·사복시의 관원·어의가 각자 상복(常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승지 6원과 주서·사관 각 2원도 각자 조복(朝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 다음은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관 각 1원이 기복(器服)을 갖춰 입고 옆에서 가며, 당하관은 뒤따른다. 내의원 제조도 이 중에 있다. …

▶ 卷之一 > 嘉禮 > 鹿簿 > 大駕導駕

○法駕. 導駕. 見原書序例 … 次先廂. 軍兵節次, 見大駕導駕. … 內侍府·司僕寺官·御醫, 各具常服, 隨之. 承旨六員·注書·史官各二員, 各具朝服, 隨之. … 次兵曹·都摠府堂上官, 具器服, 橫行, 堂下官隨之. 藥院提調, 居中. …

○법가(法駕). 도가(導駕) 국조오례서례에 나온다 … 다음은 선상(先廂)이다. 군병의 질차는 대가를 도가할 때와 같다. … 내시부·사복시의 관원·어의가 각자 상복(常

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승지 6원과 주서·사관 각 2원도 각자 조복(朝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 다음은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관 각 1원이 기복(器服)을 갖춰 입고 옆에서 가며, 당하관은 뒤따른다. 내의원 제조도 이 중에 있다. …

▶ 卷之— > 嘉禮 > 鹵簿 > 法駕導駕

○小駕. 導駕. 見原書序例. … 次先廂 軍兵與, 大駕導駕同. … 內侍府·司僕寺官·御醫, 各具常服, 隨之. … 兵曹·都摠府堂上官各一員, 具器服, 橫行, 堂下官隨之. 藥院提調, 居中. 陵幸, 則次於弘文館之後. …

○소가(小駕). 도가(導駕). 국조오례서례에 나온다 … 다음은 선상(先廂)이다. 군병의 절차는 대가를 도가할 때와 같다. … 내시부·사복시의 관원·어의가 각자 상복(常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 다음은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관 각 1원이 기복(器服)을 갖춰 입고 옆에서 가며, 당하관은 뒤따른다. 내의원 제조도 이 중에 있다. 능행(陵幸) 때는 홍문관의 뒤이다. …

▶ 卷之— > 嘉禮 > 鹵簿 > 小駕導駕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1758년

諸具. … 湯 煮檀香水, 所以浴體者(內醫院) …

각종 물품. … 탕 단향(檀香) 달인 물로, 몸을 씻는 용도이다(내의원) …

▶ 卷之— > 沐浴

諸具. … 鹿角膠 所以和金者(內醫院) …

각종 물품. … 녹각교 금을 섞는 용도이다(내의원) …

▶ 卷之— > 銘旌

大斂. 第五日. … 棺衣一. 用紅廣織. ○粉彩, 所以畫黼者(尙衣院) 鹿角膠, 所以和粉彩者. (內醫院)

대렴(大斂). 제5일이다. … 관의(棺衣, 관을 싸는 천) 1개. 흥광직(紅廣織)을 쓴다. ○분채는 도끼 무늬를 그리는 용도이다(상의원) 녹각교는 분채를 섞는 용도이다(내의원)

▶ 卷之— > 大斂

梓宮書上字儀. [續儀] 諸具. … 鹿角膠 所以和金者(內醫院), ….

재궁(梓宮, 관)에 쓰는 글자의 의례. [속오례의] 각종 물품. … 녹각교 금을 섞는 용도이다(내의원) …

▶ 卷之一 > 梓宮書上字儀

發引班次. 導駕. … 內侍府 · 尚衣院 · 內醫院官, 隨之. …

발인 행렬의 차례. 도가(導駕). … 내시부 · 상의원 · 내의원 관원이 뒤따른다.

…

▶ 卷之二 > 發引班次

춘관통고(春官通考) 1788년

原儀 殿下冕服 九章. …

續大典. 自宮禁, 下至閭閻, 章服 · 戎服外, 非土產, 則母得服着, 禁軍 · 扈衛軍官及醫女 · 針線婢, 勿禁僭衣. …

[국조오례의] 제9장 전하의 면복(冕服). …

[속대전] 궁궐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장복(章服)과 응복(戎服) 외에는 국산 품이 아니니 착용을 금지하되, 금군 · 호위군관 · 의녀 · 침선비는 신분에 맞지 않더라도 금지하지 말라. …

▶ 卷49 > 嘉禮 > 冕服

沐浴. 諸具. … 湯 煮檀香水, 所以浴體者. 內醫院 …

목욕. 각종 물품. … 탕 단향(檀香) 달인 물로, 몸을 씻는 용도이다(내의원) …

▶ 卷86 > 凶禮 > 補編諸具 > 沐浴

銘旌. 諸具. … 鹿角膠 所以和金者. 內醫院 …

명정. 각종 물품. … 녹각교 금을 섞는 용도이다(내의원) …

▶ 卷86 > 凶禮 > 補編諸具 > 銘旌

大斂. … 棺衣一. 用紅廣織. ○粉彩, 所以畫黼者. 尚衣院. 鹿角膠, 所以和粉彩者. 內醫院

대령. … 관의(棺衣, 관을 싸는 천) 1개. 홍광직(紅廣纖)을 쓴다. ○분채는 도끼 무늬를 그리는 용도이다(상의원) 녹각교는 분채를 섞는 용도이다(내의원)

▶ 卷86 > 凶禮 > 補編諸具 > 大斂

梓宮書上字. 諸具. … 鹿角膠 所以和金者. 內醫院, …

재궁(梓宮, 관)에 쓰는 글자. 각종 물품. … 녹각교 금을 섞는 용도이다(내의원), …

▶ 卷86 > 凶禮 > 補編諸具 > 梓宮書上字

… 香湯. 用零陵香·紫檀香. 所以浴主者. 內醫院煎器. 工曹 …

… 향탕(香湯). 영릉향과 자단향을 쓴다. 제주(祭主)를 씻기는 용도이다(내의원) 향탕을 끓이는 그릇(공조) …

▶ 卷86 > 凶禮 > 補編諸具 > 立主奠

發引班次. 原儀. 仍舊 導駕. 先當部主簿 … 次捧御衣護軍六員橫行, 內侍府·尙衣院·內醫院官隨之. …

발인 행렬의 차례. [국조오례의] 옛 관례이다. 도가(導駕). 해당 관청의 주부가 앞에 선다. … 다음으로 어의(御衣)를 받드는 호군 6원이 옆에서 간다. 내시부·상의원·내의원·내의원 관원이 뒤따른다. …

▶ 卷90 > 凶禮 > 發引班次【原儀】

發引班次. 補編 導駕. 小喪, 則前導. 先當部都事. 原書, 主簿. … 內侍府·尙衣院·內醫院官隨之. …

발인 행렬의 차례. [국조상례보편] 도가(導駕). 소상(小喪)에서는 앞에서 인도한다. 해당 부의 도사가 앞에 선다. 오례의에서는 주부가 앞에 선다 … 내시부·상의원·내의원 관원이 뒤따른다. …

▶ 卷90 > 凶禮 > 發引班次【補編】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1810년

○大駕. 邀詔勅·祭社稷·享宗廟用之. 其儀物, 與殿庭大仗同. 導駕, 先當部主簿. … 次

捧御衣護軍六員 · 內侍府 · [續] 司僕寺官 · 尚衣院 · 內醫院官, 各具常服隨之。
… 次承旨六員, 注書 · 史官各二員 [續] 各具朝服隨之, 禮曹 · 兵曹堂下官各一員
隨之. [續] 藥院提調居中, 次義禁府堂下官一員, 率羅將橫行 …

대가(大駕). 조칙(詔勅)을 영접하거나 사직 · 종묘에 제향 지낼 때 사용한다. 의해 물품은 전정(殿庭)의 대장(大仗)과 같다. 도가(導駕). 해당 관청의 주부가 앞에 선다. … 다음으로 어의(御衣)를 받드는 호군 6원 · 내시부 [속대전] 사복시 관원 · 상의원 · 내의원의 관원이 각자 상복(常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 다음은 승지 6원, 주서와 사관 각 2원 [속대전] 각자 조복(朝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과 예조 · 병조의 당하관 각 1원이 뒤따른다. [속대전] 내의원 제조는 그 중에 있다. 다음은 의금부의 당하관 1원이 나장을 인솔하고 옆에서 간다 …

▶ 卷之四 > 嘉禮 > 鹿簿 > 大駕

法駕. 享文昭殿([增]今罷) · 先農 · 文宣王 · 射于射壇 · 觀射于射壇 · 武科殿試用之. 其儀物, 與殿庭半仗同. 導駕, 先當部主簿. … 次捧御衣護軍六員 · 內侍府 [續] 司僕寺官 · 尚衣院 · 內醫院官, 各具常服隨之. 後部鼓吹 … 次槍劍軍三十名, 具器服作三隊橫行. 禮曹 · 兵曹堂下官各一員隨之. [續] 藥院提調居中, 次義禁府堂下官一員, 率羅將橫行. …

법가(法駕). 문소전([대전통편] 지금은 없었다) · 선농제 · 공자 제향 때, 사단(射壇)에서 활을 쏘거나 활 쏘는 것을 볼 때, 무과의 전시(殿試) 때 사용한다. 의해 물품은 전정(殿庭)의 반장(半仗)과 같다. 도가(導駕). 해당 관청의 주부가 앞에 선다. … 다음으로 어의(御衣)를 받드는 호군 6원 · 내시부 [속대전] 사복시 관원 · 상의원 · 내의원의 관원이 각자 상복(常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 다음은 창검군 30명이 기복(器服)을 갖춰 입고 3대열로 옆에서 간다. 예조 · 병조의 당하관 각 1원이 뒤따른다. [속대전] 내의원 제조는 그중에 있다. 다음은 의금부의 당하관 1원이 나장을 인솔하고 옆에서 간다. …

▶ 卷之四 > 嘉禮 > 鹿簿 > 法駕

○小駕. 拜陵, 及凡門外幸行用之. 其儀物, 與二庭小仗同. 傳香命使路次儀仗, 稱細仗. 外則用細仗之半. 導駕, 先當部主簿. … 次捧御衣護軍六員 [續] 內官一人, 奉御弓矢隨之. · 內

侍府〔續〕司僕寺官。・尙衣院・內醫院官，各具常服隨之。〔續〕槍劍軍三十名，作三隊橫行。陵幸則無。…次兵曹・都摠府堂上官具器服橫行，堂下官隨之。〔續〕藥院提調居中。陵幸，則次於弘文館之後。…

○소가(小駕)。각 능에 참배할 때 및 궐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행행(行幸) 때 사용한다. 의례 물품은 이정(二庭)의 소장(小仗)과 같다. 전향(傳香)이나 명사(命使)를 위한 의장은 세장(細仗)이라 부른다. 궐 바깥에서는 세장(細仗)의 반절을 쓴다. 도가(導駕). 해당 관청의 주부가 앞에 선다. … 다음으로 어의(御衣)를 받드는 호군 6원 [속대전] 내관 1인이 어궁과 어시를 받들어 따른다. · 내시부 [속대전] 사복시 관원 · 상의원 · 내의원의 관원이 각자 상복(常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속대전] 창검군 30명이 기복(器服)을 갖춰 입고 3대열로 옆에서 간다. 능행(陵幸) 때는 없다. … 다음은 병조 · 도총부의 당상관이 기복(器服)을 갖춰 입고 옆에서 가고, 당하관은 뒤따른다. [속대전] 내의원 제조는 그중에 있다. 능행 때는 홍문관의 뒤이다. …

▶ 卷之四 > 嘉禮 > 鹵簿 > 小駕

沐浴。〔原〕諸具。…湯，煮檀香水，所以浴體者。內醫院。…

목욕。〔오례의〕 각종 물품。…탕 단향(檀香) 달인 물이나 몸을 씻는 용도이다(내의원)
…

▶ 卷之十五 > 凶禮 > 沐浴

大斂 第五日。〔原〕…棺衣一。用紅廣織。○粉彩。所以畫黼者。尙衣院。鹿角膠。所以和粉彩者。內醫院。

대림(大斂)。제5일이다. [오례의] … 관의(棺衣, 관을 싸는 천) 1개 홍광직(紅廣織)을 쓴다. ○분채는 도끼 무늬를 그리는 용도이다(상의원) 녹각교는 분채를 섞는 용도이다(내의원)

▶ 卷之十五 > 凶禮 > 大斂

銘旌[原] 諸具。…鹿角膠，所以和金者。內醫院。…

명정(銘旌)。〔오례의〕 각종 물품。…녹각교 금을 섞는 용도이다(내의원)…

▶ 卷之十五 > 凶禮 > 銘旌

梓宮書上字儀 [續] 諸具. …鹿角膠, 所以和金者. 內醫院 ….

재궁(梓宮, 관)에 쓰는 글자. 각종 물품. … 녹각교 금을 섞는 용도이다(내의원), …

▶ 卷之十六 > 凶禮 > 梓宮書上字儀

發引班次. [原] 導駕. [補] 小喪, 則前導 … 內侍府 · 尚衣院 · 內醫院官, 隨之. …

발인 행렬의 차례. [오례의] 도가(導駕). [보총] 소상(小喪) 때는 앞에서 인도한다 …
내시부 · 상의원 · 내의원 관원이 뒤따른다. …

▶ 卷之十七 > 凶禮 > 發引班次

대한예전(大韓禮典) 1898년

導駕. 先漢城府主事. … 次後殿大旗二分左右. 奉侍 · 太僕司官 · 典醫, 各具常服隨之. … 次太醫院, 次弘文館 …

도가(導駕). 먼저 한성부 주사(漢城府主事). … 다음은 후전대기(後殿大旗) 2명
이 좌우로 있다. 봉시(奉侍) · 태복사(太僕司) 관원 · 전의(典醫)는 각 상복(常服)
을 갖춰 입고 따른다. … 다음은 태의원(太醫院), 다음은 홍문관(弘文館) …

▶ 卷五 > 序例 > 嘉禮 > 龄簿 > 大駕

小駕. 導駕. 先漢城府主簿. … 奉侍 · 太僕司官 · 典醫, 各具常服隨之. 次宮內部. 次奎章閣. 次太醫院. 次弘文館. …

소가(小駕). 도가(導駕). 한성부 주부가 앞에 선다. … 봉시 · 태복사 관원 · 전의
는 각각 상복(常服)을 갖춰 입고 뒤따른다. 다음은 궁내부이다. 다음은 규장각
이다. 다음은 태의원이다. 다음은 홍문관이다. …

▶ 卷五 > 序例 > 嘉禮 > 龄簿 > 小駕

4. 생도(生徒)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394년

… 國家內置成均，以教公卿大夫之子弟及民之俊秀，置部學教授，以教童幼，又推其法，及於州府郡縣，皆有鄉學，置教授生徒，曰兵律·曰書算·曰醫藥·曰象譯，亦倣置教授，以時講勸，其教之也，亦至矣。

… 우리나라에서는 궐내에 성균관을 설치하여 공경·대부의 자제나 백성 가운데서 준수한 자를 가르치고, 각 부의 학당에도 교수를 두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제도를 확대하여 각 주·부·군·현에도 모두 향교를 설치하고 교수와 생도를 두어야 합니다. 병률(兵律)·서산(書算)·의약·통역도 마찬가지로 교수를 두고 때에 맞추어 가르친다면 교육이 지극히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禮典 > 學校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典醫監] 醫學 五十.

[惠民署] 醫學 三十.

[府·大都護府·牧] 醫學 各十四. 府則加二

[都護府] 醫學 十二.

[郡] 醫學 十.

[縣] 醫學 八.

[전의감] 의학생도 50인이다.

[혜민서] 의학생도 30인이다.

[부·대도호부·목] 의학생도 각 14인이다. 부(府)는 2인을 추가한다

[도호부] 의학생도 12인이다.

[군] 의학생도 10인이다.

[현] 의학생도 8인이다.

▶ 禮典 > 生徒 [成均館四學…]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生徒] …典醫監, 醫學五十. 惠民署, 醫學三十. …

[생도] …전의감은 의학생도 50인이다. 혜민서는 의학생도 30인이다. …

▶ 禮典 上 > 生徒 > [大典] > [京]

府 · 大都護府 · 牧 儒學各九十, 年十六歲以下, 不在額內 都護府 · 郡 · 縣同. 漢學, 平壤 · 義州 · 黃州各三十, 女真學, 義州五, 醫學, 各十四 府則加二, 律學, 各十四 府則加二. [都護府] 儒學七十, 女真學, 昌城五 · 北青十, 醫學十二, 律學十二. [郡] 儒學五十, 女真學, 理山五 · 碧潼五 · 渭源五, 醫學十, 律學十. [縣] 儒學三十, 醫學八, 律學八. 滿浦, 女真學五. 肅浦 · 釜山浦, 倭學各十. 鹽浦, 倭學六. 부 · 대도호부 · 목은 유학생도 90인씩이다. 16세 이하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도호부 · 군 · 현도 같다. 한 학생도는 평양 · 의주 · 황주에 30인씩이다. 여진 학생도는 의주에 5인이다. 의학생도는 14인씩이다. 부는 2인을 추가한다. 율학생도는 14인씩이다. 부는 2인을 추가한다. [도호부] 유학생도는 70인이다. 여진 학생도는 창성 5인, 북청 10인이다. 의학생도는 12인이다. 율학생도는 12인이다. [군] 유학생도는 50인이다. 여진 학생도는 이산 5인, 벽동 5인, 위원 5인이다. 의학생도는 10인, 율학생도는 10인이다. [현] 유학생도는 30인이다. 의학생도는 8인, 율학생도는 8인이다. 만포는 여진 학생도가 5인이다. 제포 · 부산포는 왜학생도 10인씩이다. 염포는 왜학생도 6인이다.

▶ 禮典 上 > 生徒 > [大典] > [外]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 典醫監醫學五十. 惠民署醫學三十. … 府 · 大都護府 · 牧 儒學各九十, 年十六歲以下, 不在額內 都護府 · 郡 · 縣同. 漢學, 平壤 · 義州 · 黃州各三十, 女真學, 義州五, 醫學, 各十四 府則加二, 律學, 各十四 府則加二. [都護府] 儒學七十, 女真學, 昌城五 · 北青十, 醫學十二, 律學十二. [郡] 儒學五十, 女真學, 理山五 · 碧潼五 · 渭源五, 醫學十, 律學十. [縣] 儒學三十, 醫學八, 律學八. 滿浦, 女真學五. 肅浦 · 釜山浦, 倭學各十. 鹽浦, 倭學六.

… 전의감은 의학생도 50인이다. 혜민서는 의학생도 30인이다. … 부·대도호부·목은 유학생도 90인씩이다. 16세 이하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도호부·군·현도 같다. 한학생도는 평양·의주·황주에 30인씩이다. 여진학생도는 의주에 5인이다. 의학생도는 14인씩이다. 부는 2인을 추가한다. 율학생도는 14인씩이다. 부는 2인을 추가한다. [도호부] 유학생도는 70인이다. 여진학생도는 창성 5인, 북청 10인이다. 의학생도는 12인이다. 율학생도는 12인이다. [군] 유학생도는 50인이다. 여진학생도는 이산 5인, 벽동 5인, 위원 5인이다. 의학생도는 10인, 율학생도는 10인이다. [현] 유학생도는 30인이다. 의학생도는 8인, 율학생도는 8인이다. 만포는 여진학생도가 5인이다. 제포·부산포는 왜학생도 10인씩이다. 염포는 왜학생도 6인이다.

▶ 禮典 > 生徒 > [大典]

속대전(續大典) 1746년

[典醫監] 醫學加六.

[전의감] 의학생도 6명을 추가한다.

▶ 禮典 > 生徒 > 典醫監

[惠民署] 醫學加三十二.

[혜민서] 의학생도 32명을 추가한다.

▶ 禮典 > 生徒 > 惠民署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諸學 成均館及四學, 觀象監三學, 司譯院四學, 典醫監·惠民署醫學, 刑曹律學, 戶曹籌學, 圖畫署畫學. [經] 生徒, 皆有定額. [經] [補] ○額數在兩典及通編, 而大典, 以館學居齋儒生, 爲儒學生徒, 今見於上獎勵條, 觀象學·譯學·醫學·籌學, 又有前銜, 觀象生徒, 亦稱肄習, 外方儒學·醫學·律學, 州府郡縣, 有定額, 譯學則兩西·關北·嶺南邑鎮及濟州有之. …

○각 학(學) 성균관 및 사학(四學), 관상감의 3학, 사역원의 4학, 전의감·혜민서의 의학, 형조의 율학, 호조의 주학(籌學), 도화서의 화학(畫學)이다. [경국대전] 의 생도는 모두

정원이 있다. [경국대전] [보충] ○정원 수는 《경국대전》과 《속대전》및 《대전통편》에 있다. 《경국대전》에는 성균관의 거재유생(居齋儒生)을 유학생도라 하였고, 지금은 위 권장(獎勸) 조목에 나온다. 관상학·역학·의학·주학은 전함(前銜, 전임관)이 있다. 관상감생도는 이습관(肄習官)이라고도 부른다. 지방의 유학·의학·율학생도와 각 주·부·군·현에는 정원이 있다. 역학은 양서·관북·영남의 읍진과 제주에 있다. …

▶ 禮典 > 雜令 > [諸學生徒定額]

추관지(秋官志) 1781년

宣祖六年軍籍時, 各學生徒·前銜定額. … 典醫監生徒, 大典付五十人, 前銜一百二十人. 惠民署生徒大典付三十人, 前銜一百人. …

선조 6년(1573)의 군적(軍籍) 때 정한 각 학(學)의 생도와 전함(前銜, 전임관)의 정원이다. … 전의감 생도는 경국대전에 50인이며, 전함은 120인이다. 혜민서 생도는 경국대전에 30인이며, 전함은 100인이다. …

▶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大軍籍事目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典醫監] 醫學五十. [續] 加六 [惠民署] 醫學三十. [續] 加三十二 …

…[전의감] 의학생도는 50인이다. [속대전] 6인을 추가하였다 [혜민서] 의학생도는 30인이다. [속대전] 32인을 추가하였다 …

▶ 禮典 > 生徒 > [額數]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典醫監] 醫學五十. [續] 加六 [惠民署] 醫學三十. [續] 加三十二 …

…[전의감] 의학생도는 50인이다. [속대전] 6인을 추가하였다 [혜민서] 의학생도는 30인이다. [속대전] 32인을 추가하였다 …

▶ 禮典 > 生徒 > [官署]

[府] [大都護府] [牧] 儒學各九十, 年十六歲以下, 不在額內. 都護府·郡·縣同. 漢學, 平

壤·義州·黃州各三十，女眞學，義州五，醫學，各十四，府則加二，律學，各十四，府則加二。〔都護府〕 儒學七十，女眞學，昌城五·北青十，醫學十二。〔郡〕 儒學五十，女眞學，理山五·碧潼五·渭原五，醫學十，律學十。〔縣〕 儒學三十，醫學八，律學八。

[부] [대도호부] [목] 유학생도 90인씩이다. 16세 이하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도호부·군·현도 같다. 한 학생도는 평양·의주·황주에 30인씩이다. 여진 학생도는 의주에 5인이다. 의 학생도는 14인씩이다. 부는 2인을 추가한다. 율 학생도는 14인씩이다. 부는 2인을 추가한다. [도호부] 유학생도는 70인이다. 여진 학생도는 창성 5인, 북청 10인이다. 의 학생도는 12인이다. 율 학생도는 12인이다. [군] 유학생도는 50인이다. 여진 학생도는 이산 5인, 벽동 5인, 위원 5인이다. 의 학생도는 10인, 율 학생도는 10인이다. [현] 유학생도는 30인이다. 의 학생도는 8인, 율 학생도는 8인이다.

▶ 禮典 > 生徒 > [地方]

5. 사대(事大)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 赴京醫員，可當人中行未行分揀，輪次入送。
- 중국에 사행 가는 의원은 적당한 사람 중에서 가본 자와 가보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돌아가며 보낸다.

▶ 禮典 下 > 雜令 > 繢錄 > [赴京醫員]

통문관지(通文館志) 1720년

… 外有醫員·寫字官·畫員，共四十餘員。… ○ … 若單使，則押物官，爲二十五員，諸遞兒，隨職次例書，醫員·寫字官·畫員·軍官，亦不足，則以偶語別差以下，推移充數。…

… 그 밖에도 의원·사자관·화원 등 모두 40여 원이다. … ○ … 만약 단사(單使, 부사를 대동하지 않은 사신)라면 압물관(押物官)은 25원이 된다. 각 체아직은 관직의 차례에 따라 관례대로 쓴다. 의원·사자관·화원·군관도 숫자가 부족하면 우어별차(偶語別差, 견습 역관) 이하로 숫자를 보충한다. …

▶ 卷3 > 事大 上 > 赴京使行

… 醫員一員 兩醫司交差 … 畫員一員 ○醫畫員, 則同參於方物類去.

… 의원 1원 양의사(兩醫司)에서 번갈아 임명한다 … 화원 1원 ○의원과 화원은 물품을 수령하여 가는 곳에 같이 참여한다.

▶ 卷3 > 事大 上 > 赴京使行 > 冬至使行

… 別遣御醫二員 帶內醫書員一人. ○一員, 康熙丁丑, 因備局啓辭減. ○院官, 亦有別遣之時, 凡別遣, 皆別先文.

… 特파 어의 2원 내의원의 서원 1인을 대동한다. ○1원은 강희 정축년(1697)에 비변사의 계사로 인하여 줄였다. ○사역원의 관원도 특파할 때가 있다. 특파할 때는 모두 별도의 선문(先文, 미리 알리는 공문)을 만든다.

▶ 卷3 > 事大 上 > 赴京使行 > 謝恩使行

… 醫員一員 …

… 의원 1원 …

▶ 卷3 > 事大 上 > 赴京使行 > 告訃使行

… 軍官·醫·寫·畫員. 各乘下等一匹, 駄下等, 二人竝一匹. ○法典所在如此, 而堂上軍官, 則如堂上通事例, 加給一隻. …

… 군관·의원·사자관·화원. 각자 타는 말은 하등 1필이고, 짐 싣는 말은 2인당 하등 1필이다. ○법전에 실린 바는 이와 같으나, 당상인 군관은 당상인 역관의 전례와 같이 1척을 더 준다. …

▶ 卷3 > 事大 上 > 赴京品驛馬

속대전(續大典) 1746년

○赴燕時一行, 冬至使, … 兩醫司醫員一員 · 雲臺官一員, 竝差送. 醫員唐藥材貿易時, 次上通事, 同力貿易.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使臣)의 일행. 동지사행. … 양의사 의원 1원과 관상감 관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차상통사(次上通事, 2번째 높은 역관)와 함께 구매해야 한다.

▶ 禮典 > 雜令 > [赴燕時一行]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冬至行. 使一 正二, 結銜從一. ○凡使副使, 皆陞品結銜, 副使一 正三, 書狀官一. 正五, 隨品兼臺. [館志] … ○大臣 · 正一宗班 · 儀賓行, 別遣御醫一. [館志] [補] … ○每行, 寫字官二. 一以上使軍官去, 畫員一, 醫員(兩醫司)一, 雲臺官, 三年一次. ([續] [增] ○問安行, 無. [補]) 若有曆法質問, 不在此例, 參覈行, 只醫員一. [增] [館志] …

○동지사행. 정사 1원 정2품이나 결합(結銜, 임시로 품계를 올림)하여 종1품이다. ○정사와 부사는 모두 품계를 올려 결합한다. 부사 1원 정3품이다. 서장관 1원. 정5품이나 품계에 따라 겸대(兼臺, 다른 직임에 있는 이가 겸직)한다. [통문관지] … ○대신이나 정1품의 종실이나 의빈이 사행할 때는 어의 1원을 특별히 파견한다. [통문관지] [보충] … ○사행마다 사자관은 2원이다. 1원은 상사군관(上使軍官)으로 빼고, 화원 1원 · 양의사의 의원 1원 · 관상감 관원 1원은 3년에 1차례씩 돌아간다. ([속대전] [추가] ○문안사행에는 없다. [보충]) 만약 중국에 역법을 질문할 일이 있으면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참핵사행 때는 의원만 1원이다. [추가] [통문관지] …

▶ 禮典 > 事大 > [冬至行]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赴燕時一行. 冬至使, … 兩醫司醫員一員 · 雲臺官一員, 竝差送. 醫員唐藥材貿易時, 次上通事, 同力貿易. [增] …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일행. 동지사행. … 양의사 의원 1원과 관상감 관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차상통사(次上通事, 2번 째 높은 역관)와 함께 구매한다. [대전통편] …

► 禮典 > 雜令 > [赴燕時一行]

춘관통고(春官通考) 1788년

赴京使行. 國初, 歲遣朝京之使, 有冬至 · 正朝 · 聖節 · 千秋四行, 謝恩 · 奏請 · 進賀 · 陳慰 · 進香等使, 則隨事差遣, 崇德, 無千秋, 有歲幣使, 至順治, 因勅諭, 幷三節及歲幣爲一行, 名曰冬至使, … 冬至行 … 醫員一人 … ○謝恩行 …, 醫員一員, 寫字官一人, 別遣御醫一員, … 奏請 · 進賀 · 辨誣行, 幷上同. … 告訃行 … 醫員一員, … 問安行 … 別遣御醫一人, … 醫員一人, …

부경사행. 조선 초기에는 해마다 중국에 사신을 보냈으니 동지 · 정월 초하루 · 성절(聖節) · 천추절(千秋節) 4차례였고, 그 외에도 사은(謝恩) · 주청(奏請) · 진하(進賀) · 진위(陳慰) · 진향(進香) 등의 사절을 사안에 따라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청나라 태종(太宗) 때는 천추사행이 없어지고 세폐사행(歲幣使行)이 생겼으며, 청나라 세조(世祖) 때는 황제의 칙명으로 동지 · 정월 초하루 · 성절과 세폐(歲幣, 조공)를 합쳐 한 차례 사신을 파견하게 하고 동지사(冬至使)라고 불렀다. … 동지사행. … 의원 1인 … ○사은사행. … 의원 1원, 사자관 1인, 특별 파견 어의 1원, … 주청사행 · 진하사행 · 변무사행은 모두 위와 같다. … 고부사행. … 의원 1원, … 문안사행. … 특별 파견 어의 1인, … 의원 1인, …

► 卷46 > 嘉禮 > 赴京使行

太宗元年辛巳, 帝遣陸顥, 賦大統曆 · 紋綺 · 紗羅等物, 又遣章謹 · 端木禮等, 賦誥命 · 金印, 又遣祝孟獻 · 陸顥, 賦勅褒獎及賜彩幣藥材. … 四年甲申, 禮部, 以本國宗系事, 移咨准他改正云云. 帝遣內官楊進保, 頒冊立皇太子詔. 帝遣內官劉璟等, 賦彩幣及藥材 · 古今列女傳. … 六年丙戌, 帝遣太監黃儼, 求銅佛, 禮部咨送, 欽賜帽珠綺絲 · 藥材及通鑑綱目 · 四書衍義 · 大學衍義等書. … 十一年辛卯, 帝遣太監黃儼, 賦藥材 …

태종 1년 신사년(1400), 황제께서 육옹(陸顥)을 보내어 대통력(大統曆) · 문기

(紋綺) · 사라(紗羅) 등의 물품을 하사하시고, 그다음 장근(章謹)과 단목례(端木禮) 등을 보내어 고명(誥命)과 금인(金印)을 하사하셨다. 또한 축맹헌(祝孟獻)과 육옹을 보내어 포장(褒獎)을 내리면서 비단과 약재를 하사하셨다. … 4년 갑신년(1403), 중국 예부(禮部)에서 우리나라의 종계(宗系)에 대한 일로 자문(咨文)을 보내어 인준하고 다른 것은 개정한다고 운운하였다. 황제께서 내관 양집보(楊進保)를 보내어 황태자 책립의 조서를 반포하셨다. 황제께서 내관 유경(劉璟) 등을 보내어서 비단과 약재와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을 하사하셨다. … 6년 무술년(1405), 황제께서 태감(太監) 황엄(黃儼)을 보내어 동불(銅佛)을 구한다는 예부의 자문을 보내고, 모주저사(帽珠綺絲)와 약재 및 《통감강목》 · 《사서연의》 · 《대학연의》 등의 책을 하사하셨다. … 11년 신묘년(1410), 황제께서 태감 황엄을 보내어 약재를 반포하시고 …

▶ 卷47 > 嘉禮 > 皇華來往年紀 > [太宗]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 1939년

… 醫員一員 兩醫司輪差, … 御醫一員 若兼使宗親儀賓大臣行, 則別遣. ○內局書員一人帶去. …
… 의원 1원 양의사에서 번갈아 임명한다. … 어의 1원 종친 · 의빈 · 대신이 사신으로 가면 특별히 파견한다. ○어의는 내의원의 서원 1인을 대동한다. …

▶ 財用編 > 燕使 > [員額]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赴燕時一行. 冬至使, … 兩醫司醫員一員 · 雲臺官一員, 級差送. 醫員唐藥材貿易時, 次上通事, 同力貿易. [增] …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일행. 동지사행 때는 … 양의사의 의원 1원과 관상감 관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차상통사(次上通事, 2번째 높은 역관)와 함께 구매한다. [대전통편] …

▶ 禮典 > 雜令 > [赴燕時一行]

6. 제례(祭禮)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1474년

靈星壇. 老人星·馬祖·先牧·馬步·禡祭·司寒·名山·大川·厲祭·禁祭·酺祭附.

靈星 瞞星，龍左角爲天田，主穀。壇，在南郊，方二丈一尺，高二尺五寸。四出陸，一墳二十五步。神座在北南向。… ○厲祭壇，在北郊，制與靈星同。神座城隍，在壇上北南向。無祀鬼神，在壇下，左右相向。遭兵刃死者·遇水火盜賊死者·被人取財物逼死者·被人強奪妻妾死者·遭刑禍負屈死者·因天災疫疾死者，在左。爲猛獸毒虫所害死者·凍餒死者·戰鬪死者·因危急自縊者·被墻屋壓死者·產難死者·震死者·墜死者·歿而無後者，在右。

…

영성단. 노인성·마조·선목·마보·마제·사한·명산·대천·여제·영제·포제를 덧붙인다.

영성단(靈星壇)은 영성은 용성(龍星)의 좌각(左角)으로 천전(天田)이 되며 곡식을 주관한다
남교(南郊)에 있으며 사방 2장 1척에 높이는 2척 5촌이다. 사방으로 층을
냈으며 한 층의 폭은 25보이다. 신좌(神座)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다.
… ○여제단(厲祭壇)은 북교(北郊)에 있고 규모는 영성과 같다. 신좌와 성황(城
隍)은 단 위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있다. 무사귀신(無祀鬼神, 제사 지내주는 사람
이 없는 귀신)은 단 아래에 있고 좌우로 마주보고 있다. 병인(兵刃)에 당해서 죽은
사람, 수화(水火)나 도적을 만나서 죽은 사람, 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팝박당해서 죽은 사람,
남에게 처첩(妻妾)을 강탈당하고 죽은 사람, 형벌이나 화(禍)를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천재(天災)나 역질(疫疾)을 만나서 죽은 사람은 왼쪽에 있다. 맹수나 독충에게 해를 입어서
죽은 사람, 얼고 굶주려 죽은 사람, 전투에서 죽은 사람, 위급한 일을 당해서 스스로 목멘
사람, 담이나 지붕에 놀려 죽은 사람, 난산(難產)으로 죽은 사람,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떨어져
죽은 사람, 죽은 뒤에 자손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다. …

▶ 卷之一 > 吉禮 > 壇廟圖說 > 靈星壇

각사수교(各司受敎) 1546-1576년

○辛酉九月初三日承傳內, 刑曹乃推鞫之地, 常用刑杖, 血肉狼藉, 至有殞命, 言其犯染, 莫甚於此. 今夕刑人, 翌朝受香, 甚非致齋薦誠之道, 自祖宗朝, 本不差祭爲沙餘良, 其爲廢事亦多爲去乙, 近來如典獄·活人·歸厚等署, 差祭不冬爲乎矣, 同曹耳亦差祭, 甚於前日爲臥乎所, 有乖齋潔敬誠之意. 前雖累有傳教, 近不舉行是如爲昆, 今後同曹官員乙良, 一切差祭安徐爲只爲, 吏曹傳教.

○신유년(1561, 명종 16) 9월 3일에 받은 전교의 내용이다. “형조는 추국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항상 형장(刑杖)을 쓰므로 혈육이 낭자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일도 있으니, 그 범염(犯染, 좋지 않은 기운)을 말하자면 이보다 심한 곳이 없다. 오늘 저녁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고 다음 날 아침 향을 받는다는 것은 재계하고 정성을 올리는 도리와 전혀 다르므로 선왕 때부터 본래 제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뿐더러 각종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근래 전옥서·활인서·귀후서 등의 관서는 제관으로 임명하지 않거늘 형조만 제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예전보다 심하니 재계하고 정성을 올리려는 의도와 맞지 않는다. 제관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전교가 예전에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요즘은 그대로 거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 형조 관원은 일절 제관으로 임명하지 말도록 이조에 전교하라.”

▶ 刑曹受敎 > 139. 辛酉九月初三日承傳內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厲壇. 北郊. ○無祀鬼神. ○遭兵刃死者·遇水火盜賊死者·被人取財物逼死者·被人強奪妻妾死者·遭刑禍負屈死者·因天災疾疫死者, 在左, 為猛獸毒蟲所害死者·凍餒死者·戰鬪死者·因危急自縊死者·被墻屋壓死者·產難死者·震死者·墜死者·歿而無後者, 在右. ○城隍在壇上, 無祀神, 壇下左右. [五禮] ○別祈, 則祭於東西南北郊. [補]

○여단. 북교(北郊)에 있다. ○무사귀신(無祀鬼神,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는 귀신)을 담당한다. ○전쟁을 만나 죽은 사람, 홍수·화재·도적을 만나 죽은 사람, 재물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팝박을 받아 죽은 사람, 아내나 칩을 강탈하는 자에게 죽은 사람, 형화(刑禍)를

만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 천재(天災)나 역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신위는 왼쪽에 있다. 맹수나 독충에게 물려 죽은 이, 얼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 위급한 일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사람, 담이나 지붕에 놀려 죽은 사람, 난산(難產)으로 죽은 사람,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죽은 뒤 후손이 없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다. ○성황(城隍)은 단(壇) 위에 있고, 무사귀신은 단 아래 좌우에 있다. [국조오례의] ○별기(別祈)는 동서남북 각 교(郊)에서 지낸다. [보충]

▶ 別編 > 壇廟 > [厲壇]

춘관통고(春官通考) 1788년

時日. 觀象監, 前期三朔, 報禮曹, 禮曹啓聞, 散告中外, 攸司, 隨職供辦. [原儀] 仲春·仲秋上戊及臘祭. 州縣, 不用臘. [原儀] 凡祀無常日者, 竝卜日. [原儀] 祈告. 如水旱·疾疫·蟲蝗·戰伐, 則祈. ○所祈迫切, 不卜日. ○如封冊·冠昏, 凡國有大事, 則告. ○凡有修補, 則有先告事由, 移還安祭. [原儀] 報祀. 凡祈有應則報, 如祈水旱, 則待立秋後報. [續儀] 祈穀. 孟春上辛祭. [今儀] 祈雨, 卜日祭.

사직(社稷). 시일. 관상감에서 3개월 전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어 중앙과 지방에 전파하고, 맡은 역할을 직책에 따라 준비하게 한다 [오례의] 2월과 8월 상무일(上戊日) 및 납제(臘祭) 때. 주·현에서는 납제를 하지 않는다 [오례의] 정해진 날짜가 없는 경우는 모두 날을 점쳐서 한다. [오례의] 기고(祈告). 흥수와 가뭄, 질병·병충해·전쟁이 있으면 기(祈)를 지낸다. ○기원하는 일이 절박하면 날을 가리지 않는다. ○책봉(冊封)·관혼(冠昏) 등 국가에 대사가 있으면 고(告)를 지낸다. ○무릇 수보(修補)할 일이 있으면 먼저 사유를 고하고,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를 지낸다. [오례의] 보사(報祀). 무릇 기원하여 응답이 있으면 보사를 지내되, 흥수와 가뭄이 그치기를 기원한 경우에는 입추를 기다린 뒤 보사를 지낸다. [속오례의] 기곡(祈穀). 1월 상신일(上辛日)에 제사 지낸다. [현재 의례] 기우제는 좋은 날을 점쳐서 지낸다.

▶ 卷1 > 吉禮 > 社稷【州縣社稷并附】> 時日

膳肉封進. 景宗卽位年庚子七月, 秋享大祭膳肉, 殯殿封進外, 內醫院藥用羊肝·牛羊豬脂足, 進排, 其餘膳肉, 則埋置淨處. 英祖六年庚戌七月, 本署報禮

曹，國恤卒哭前，大·小祭享燔肉，有淨潔處理置之規。庚子國恤時，秋享燔肉，依常時例，進上於殯殿，而內醫院藥用所入羊肝及牛·羊·豬脂足，依例進排外，其餘，一併埋置。甲辰國恤時，臘享燔肉，殯殿及大王大妃殿，依例封進，而大殿·中宮殿，已復常膳，故一體封進。前後膳錄不一，今則何以爲之？禮曹題，依甲辰例舉行。三十六年庚辰六月，祈雨祭，親省牲器後，教曰，噫，孟子穀疎章，鄒聖，稱齊宣以仁心，奚請，齊王昔年親行親享之後，月餘不御牛肉，予嘗仰觀。否德致旱，田疇將拆，民將溝壑，寔予之咎。當此盛暑，軍兵勞攘，寔予之咎。親禱至再，尚未周洽，今日又詣社壇，軍兵無辜，其尤牛羊。欲爲奉審祭器，入神廚門，犧牲已捧，牛在其中，衆軍環立，此將爲宰牲而然也。看來矜惻，奚徒齊宣之心。受燔體重，不可闕也。今番燔肉，只封其羊，以示予體昔年盛德之意也。

번육(燔肉, 제사용 익힌 고기)의 봉진(封進, 포장하여 진상함). 경종 즉위년(1720) 경자년 7월, 추향대제(秋享大祭)의 번육은 빈전에 봉진하는 것 외에 내의원에서 약으로 쓸 양의 간과 소·양·돼지의 기름과 발을 배분하며, 나머지 번육은 정결한 곳에 묻었다. 영조 6년(1730) 경술년 7월, 사직서에서 예조에 보고하기를 “국흘(國恤)의 졸곡(卒哭) 전에 대·소 제향의 번육을 묻는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경자년(1720) 국흘 때 추향에서 쓴 번육은 전례대로 빈전에 진상하고 내의원에서 약으로 쓸 양의 간과 소·양·돼지의 기름과 발을 전례대로 배분하며, 나머지 번육은 모두 묻었습니다. 갑진년(1724) 국흘 때 납향에서 쓴 번육은 빈전과 대왕대비전에 규례대로 봉진하고, 대전과 중궁전은 이미 일상 음식을 회복하였기에 똑같이 봉진하였습니다. 전후의 기록이 한결같지 않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예조에서 “갑진년의 전례에 따라 거행 하라.”라고 답변하였다. 영조 36년(1760) 경진년 6월, 기우제를 위해 친히 희생과 기물을 살핀 뒤에 말씀하셨다. “아, 《맹자·곡속장》에서 맹자가 제 선왕(齊宣王)을 마음이 어질다고 일컬은 것은 어째서인가? 제나라 왕이 예전에 친히 행차하여 제향을 지낸 뒤에 한 달 남짓 소고기를 먹지 않은 일을 내가 전부터 우러러보았다. 아, 덕행이 부족한 내가 가뭄을 초래하여 논밭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수렁에 빠지려 하니 이는 실로 나의 잘못이다. 지금 이런 무더위에 군병들이 수고하고 시달리는 것도 실로 나의 잘못이다. 직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하였

으나 아직까지 두루 적시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다. 오늘 또 제단에 나아왔으나 군병은 죄가 없고 소와 양은 더욱 죄가 없다. 제기를 봉심(奉審)¹하려고 신주(神廚)에 들어가 보니, 희생은 이미 바쳐져 소가 그 안에 있었고 많은 군병이 둘러싸 있었으니, 이는 희생을 도살하기 위해 그러한 것이다. 보고 있자니 불쌍하고 측은해지는 것은 어찌 한갓 제 선왕의 마음뿐이겠는가. 그러나 번육을 받는 것은 중요한 시인이므로 빠뜨릴 수 없다. 이번 번육은 희생 가운데 양만 봉진함으로써 옛날 임금의 성대한 덕행을 본받으려는 내 뜻을 보이라.”

▶ 卷1 > 吉禮 > 社稷【州縣社稷并附】> 膳肉封進

時日. [原儀] 觀象監, 前期三朔, 報禮曹. 禮曹啓聞, 散告中外, 攸司隨職供辨. [原儀] 四孟朔上旬, 卜日, 享宗廟. 七祀, 春, 司命及戶, 夏, 竈, 秋, 門及厲, 冬, 行, 各因時享祭之. ○配享功臣, 四時皆祭. 攝事, 則只祭冬享 春秋孟月上旬, 卜日, 享永寧殿. [原儀] 朔望. 今儀, 永寧殿只焚香 [原儀] 俗節. 正朝 · 寒食 · 端午 · 秋夕 · 冬至 · 臘享. ○臘偏祭七祀, 親享, 則並祭配享功臣. [原儀] 薦新 · 薦禽. 不卜日行. 若值朔望, 則兼薦. ○今儀, 雖值大祭兼薦 [原儀] 祈告. 如水旱 · 疾疫 · 蟲蝗 · 戰伐, 則祈. 所祈迫切, 不卜日, 如封冊 · 冠昏, 凡國有大事, 則告. ○凡廟有修補, 則有先告事由, 移還安祭. ○凡祀無常日者, 並卜日.

종묘. 시일. [오례의] 관상감에서 3개월 전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어 중앙과 지방에 전파하고, 맡은 역할을 직책에 따라 준비하게 한다 [오례의] 4계절 첫 달 상순에 점을 쳐서 좋은 날에 종묘에 제향한다. 칠사(七祀)이다. 봄에는 사명(司命) 및 호(戶), 여름에는 조(竈), 가을에는 국문 및 태려, 겨울에는 사행을 각 때에 맞게 제향한다. ○배향된 공신은 4계절에 모두 제향한다. 대신 지내는 경우에는 겨울에만 제향한다 1월과 7월 상순에는 점을 쳐서 좋은 날에 영녕전에 제향한다. [오례의] 초하루와 보름날. 현재 영녕전은 분향만 한다 [오례의] 속절(俗節, 철에 따라 지내는 제사). 정초 · 한식 · 단오 · 추석 · 동지 · 납일에 제향한다. ○납편제(臘偏祭) 때 칠사(七祀)에 대하여 친히 제향하며 배향된 공신도 함께 제향한다 [오례의] 천신제와 천금제. 점을 쳐서 날을 택하지 않는다. 만약 초하루나 보름과 겹치면 함께 올린다. ○현재는 대제와 겹치더라도

1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陵)이나 묘(廟) 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 · 물품 등을 살피는 일을 뜻한다.

함께 올린다 [오례의] 기고(祈告). 홍수와 가뭄, 질병·병충해·전쟁이 있으면 기(祈)를 지낸다. ○기원하는 일이 절박하면 날을 가리지 않는다. ○책봉(冊封)·관혼(冠昏) 등 국가에 대사가 있으면 고(告)를 지낸다. ○무릇 수보(修補)할 일이 있으면 먼저 사유를 고하고,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를 지낸다. ○보통날에 제사 지내지 않고 모두 점을 쳐서 좋은 날에 한다.

▶ 卷8 > 吉禮 > 宗廟 > 時日

親祭. … 肅宗二年丙辰正月, 藥房, 以上有愆候, 春享大祭請令攝行, 上不聽曰, 莫重大祭, 不親行, 則其於致敬之禮·致哀之情, 何如哉? …

주상이 친히 지내는 제사.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내의원에서 주상의 건강 때문에 춘향대제를 섭행(攝行, 대신들이 대신 함)하기를 청하였다. 주상이 듣지 않고 말하였다. “대제는 막중하니 친히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공경을 다하는 예이며 애절한 정(情)이겠는가? …”

▶ 卷9 > 吉禮 > 宗廟 > 親祭

先農. 附籍田, 親耕·勞酒·省耕·觀稼·觀刈〔原儀〕先農壇在東郊, 制與風雲雷雨同. … 國恤時, 稔灰及五穀, 議藥廳·產室廳·禮葬所用五穀, 竝進排. … 本高麗時郊采公田, 素稱膏沃, 國朝因爲籍田, 使本籍奴婢耕作, 以供宗社以下, 一年元行祭享粢盛, 及宗廟六穀薦新, 五月令, 大·小麥, 六月令, 粞·稻·粢·稷, 隨其成熟, 報禮曹, 春正看品薦新及藥院, 六朔, 蕃蕷進上. …

선농제. 적전(籍田)의 친경례·노주례·생경례·관가례·관예례를 덧붙인다 [오례의] 선농단은 동교(東郊)에 있으며, 규모는 풍운뇌우단과 같다. … 국휼 때 출회(稟灰, 관 밑에 까는 차조의 재) 및 오곡과 의약청·산실청·예장에서 쓰는 오곡을 모두 올린다. … 이곳은 본래 고려 때 교채공전(郊采公田)²으로 평소 기름진 땅이라 불렸고, 조선에 와서 적전(籍田, 임금의 논밭)으로 삼은 후 적전 노비를 시켜 경작하게 하여 수확한 곡식으로 종묘·사직 이하 1년간 정례적으로 행하는

2 교채공전(郊采公田) : 공신에게 지급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외에 설치한 공전이다.

제향의 곡식과 종묘에 올리는 6곡(六穀)을 담당하였다. 5월은 보리와 밀, 6월은 차기장·쌀·메기장·피이다. 곡식이 익으면 예조에 보고한 후 도정하고 품질을 잘 살펴 바친다 내의원에서는 6개월 동안 의이인을 진상한다. …

▶ 卷41 > 吉禮 > 先農

先蠶. 附親蠶〔原儀〕先蠶壇在東郊, 制與風雲雷雨同. … 儀仗差備, 令醫女差定, 如有不足之數, 則尙衣院·工曹婢子抄定, 而令該曹傳掌舉行. …

선잠제. 친잠례를 덧붙인다〔오례의〕선잠단은 동교(東郊)에 있으며, 규모는 풍운 뇌우단과 같다. … 의장차비와 대령의녀를 임명하되 부족한 수는 상의원과 공조의 관비 중에 뽑아 정하고, 해당 육조에서 인계하여 거행한다. …

▶ 卷41 > 吉禮 > 先蠶

祈雨. 附報謝. ○〔續儀〕凡十一次. 祈雨時, 閉南門, 開北門, 遷市 … 藥房, 以東郊癩疫熾盛, 啓請攝行. 答曰, 今茲親禱, 出於悶旱, 雖有厲疫, 不必拘忌, 決不可攝行矣. …

기우제. 보사제를 덧붙인다. ○〔속오례의〕총 11차이다. 기우제 때는 남대문을 닫고 북대문을 열며 시장을 옮긴다 … 내의원에서 동교(東郊)의 나역(癩疫)이 치성하므로 섭행(攝行, 대신이 대신 행함)하기를 청하였다. 주상이 답하였다. “지금 친히 기도하여 가뭄의 근심에서 벗어나려 한다. 여역(厲疫)이 있더라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 결코 섭행은 불가하다. …”

▶ 卷42 > 吉禮 > 祈雨

城隍發告祭. 附州縣城隍 … 肅宗三十一年乙酉二月, … 四十四年戊戌十一月, 以癩疫熾蔓, 親製城隍發告祭祀文, 遣重臣致祭. …

성황발고제. 주·현의 성황제를 덧붙인다 … 숙종 31년(1705) 을유년 2월, … 숙종 44년(1718) 무술년 11월, 여역(癩疫)이 치성하여 주상께서 친히 성황발고제의 축문을 지으시고, 대신을 보내어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

▶ 卷43 > 吉禮 > 城隍發告祭

厲. 互見雜祀祓禳. ○附州縣厲祭 厲壇, 在北郊, 制與靈星同. 享城隍及無祀鬼神. 神座, 城隍, 在壇上北南向, 無祀鬼神, 在壇下左右相向. 遭兵刃死者·遇水火盜賊死者·被人取財物逼死者·被人強奪妻妾死者·遭刑禍負屈死者·因天災疾疫死者, 在左, 為猛獸毒蟲所害死者·凍餒死者·戰鬪死者·因危急自縊死者·被墻屋壓死者·產難死者·震死者·墜死者·歿而無後者, 在右. [原儀] 小祀. 春清明, 秋七月十五日, 冬十月初一日祭. 幷前期三日, 發告城隍. [原儀] 祝版. 與靈星同. [原儀] 祝式. 教闈境無祀鬼神, 王若曰, …… 成宗十三年甲辰, 兩西癘疫, 遣官行厲祭. 中宗二十年乙酉, 平安道癘疫, 死者, 七千七百餘人. 命下送辟瘧方, 遣官行厲祭于棘城. 仁祖二十二年甲申二月, 備邊司啓, 天行瘧氣, 雖非人力所及, 然祈禳之方, 同古有之. 昔我祖宗朝, 棘城癘疫大熾, 文廟, 親製文祭之, 疾疫寢息, 至今傳爲盛德事. 今亦宜遣近臣於名山大川. 允之. 顯宗三年壬寅四月丁卯, 行厲祭於京城北郊. 時京外厲疫大熾, 玉堂箚, 朝廷以兩南癘疫, 遣近侍設厲祭矣. 今者都城中, 瘴氣大熾, 坊曲之間, 十室五染, 間有數家僅淨, 而未有一洞全安者. 請亟命有司, 不卜日設祭. 上下其箚於禮曹, 禮曹覆啓舉行. 九年戊申三月, 命祭山川城隍, 又命遣重臣, 行厲祭于北郊, 又命遣近侍, 致祭于險川·雙嶺·金化·兔山·江華戰亡將士. 時癘疫大熾, 校理李奎齡, 請設祭以禱故也. 肅宗二十四年戊寅十月, 上親製祭文, 遣重臣, 行厲祭于南郊. 四十四年戊戌, 上親製祭文, 遣重臣, 行癘祭于北郊. 英祖二十二年丙寅, 遣近侍, 分設癘祭于八道.

여제. <잡사雜祀>·<발양祓禳>과 서로 참고하라. ○주·현의 여제를 뜻붙인다 **여단(厲壇)**은 북교(北郊)에 있으며, 규모는 영성단과 동일하다. 성황(城隍) 및 무사귀신(無祀鬼神)에 제향한다. 신좌(神座)로서, 성황은 단 위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고, 무사귀신은 단 아래에서 좌우로 마주 보고 있다. 전쟁을 만나 죽은 사람, 홍수·화재·도적을 만나 죽은 사람, 재물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팁박을 받아 죽은 사람, 아내나 청을 강탈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 형화(刑禍)를 만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 천재(天災)나 역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왼쪽에 있다. 맹수나 독충에게 물려 죽은 사람, 열거나 짊주려서 죽은 사람,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 위급한 일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사람, 담이나 집에 암사한 사람, 난산(難產)으로 죽은 사람,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죽은 뒤 후손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다. [오례의] 소사(小祀). 청명일,

7월 15일, 10월 1일에 제향한다. 모두 3일 전에 성황에 고한다. [오례의] 축판(祝版). 영성제와 같다. [오례의] 축식(祝式). “합경(闔境, 전국)의 무사귀신에게 교시 하여 왕이 말한다. … ”

… 성종 13년(1482)인 갑진년, 양서 지방에 여역(癟疫)이 돌아 관원을 보내고 여제(厲祭)를 지냈다. 중종 20년(1525)인 을유년, 평안도에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7,700여 명이었다. 주상이 명하여 《벽온방》을 내려보내고 관원을 보내어 극성(棘城)에서 여제를 지내게 하였다. 인조 22년(1644) 갑신년 2월, 비변사에서 아뢰었다. “역병인 여역은 사람의 힘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지만 기도나 양법(禳法, 액마이)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선왕들께서는 극성에 여역이 크게 치성했을 때 문묘에서 친히 제문을 지어 제사 지내자 여역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큰 덕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관원을 명산과 대천에 보내야 합니다.” 주상께서 윤허하였다. 현종 3년(1662) 임인년 4월 정묘일, 도성의 북교(北郊)에서 여제를 거행했다. 당시 도성 밖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홍문관에서 상소를 올렸다. “조정에서는 양남(兩南) 지방의 여역에 관원을 보내어 여제를 거행하소서. 지금 도성 내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골목의 열 집 중에 다섯 집이 전염되고 몇 집만이 겨우 깨끗한 정도이며, 한 마을이 전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청컨대 담당 관리에게 속히 명하되, 좋은 날을 점치지 말고 제사를 거행하소서.” 주상께서 그 상소문을 예조에 보내니 예조에서 그대로 시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현종 9년(1668) 무신년 3월, 산천의 성황신에게 제사 지내라 명하고, 또 관원을 보내어 북교(北郊)에서 여제를 거행하였다. 또한 측근을 보내어 험천·쌍령·금화·토산·강화의 전투에서 죽은 군인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당시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자 교리 이규령(李奎齡)이 제사를 지내 기도하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숙종 24년(1698)인 무인년 10월, 주상께서 친히 제문을 짓고, 대신을 보내어 남교(南郊)에서 여제를 거행하였다. 숙종 44년(1718) 무술년, 주상께서 친히 제문을 짓고 대신을 보내어 북교(北郊)에서 여제를 거행하였다. 영조 22년(1746) 병인년, 측근을 팔도에 보내 각각 여제를 거행하였다.

▶ 卷43 > 吉禮 > 廣

愍忠壇，在西郊弘濟院側，祭大明征東官軍。宣祖二十六年癸巳，創築。大明征東陣亡官軍位版，設於壬辰平亂之後，故祭儀·祭物，不載五禮儀，而位版，則藏於神室，別卓北向，不與諸神位並列。每年春秋，無享祀之例，但於本室雨漏修改，移還安告由祭時，祭物儀禮，諸神各位同。或因癟疫祈告，朝命設祭，則奉位版，行祭於愍忠壇，而飯羹酒果，如癟神祭。互見神室。…

민충단. 서교(西郊)의 흥제원 옆에 있으며, 일본을 정벌하려던 명나라의 관군을 제향한다. 선조 26년(1593) 계사년에 창건하였다. 대명정동진망관군(大明征東陣亡官軍)의 위패는 임진왜란 후에 세웠으므로 의례나 물품에 대해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다. 위패는 신실(神室)에 담겨 별도의 탁자 위에 북향으로 두었으며, 다른 신위와는 같이 놓지 않는다. 매해 봄과 가을에는 향사를 거행하지 않고 단지 건물의 비 새는 곳을 수선하여 고친다. 이안·환안고유제(移安·還安告由祭) 때는 제물과 의례가 있고, 각 신위의 위치는 같다. 간혹 여역으로 기고제를 드리거나 조정의 명령으로 제사를 거행할 때에는 위패를 받들어 민충단에서 제사를 지내며, 밥·국·술·과일은 여제와 같다. <신실神室>과 서로 참조하라.

…

▶ 卷44 > 吉禮 > 慎忠壇

別祀。附玉樞丹祭·會盟祭。… 文宗元年辛未九月，黃海道·京畿，癟氣甚熾，轉相浸染，民多夭折。上爲之憂慮，親自製文，分遣朝臣祭之。… 宣祖十年丁丑，京城及八道，癟疫大熾，死亡相繼，兩西尤甚。命遣近臣，行癟祭于平安·黃海兩道。時民間訛言，毒疫神下來，當食五穀·雜飯及牛肉，炊飯以禱，殺牛灑血于門，以禳之。… 十六年，遣官，祭戰亡將士於其家。北路，癟疫大熾，人民多死，遣官致祭。顯宗十二年，命設壇于東西郊，祭國中之饑疫死者。… 十六年庚午，黃海道瑞興縣，有毒疾，醫莫能名，死亡甚多。上親製祭文，遣禮官，行祭于本道名山及本縣社壇。… 二十三年丁丑，設壇，祭關西餓死人。上親製文，賜祭。京外，癟疫大熾，死亡相離，遣大臣，致祭于癟壇。二十五年己卯正月，備忘記，邦運不幸，四年大殺，萬死餘罹，又惟無前之虐癟，始自西陲，徧及八路，里無完戶，百不一瘳，… 內而京兆，外而按道之臣，別加飭諭，給藥救療，收屍埋瘞，分遣近臣，

設壇賜祭，以示憫惻，少慰煩冤。三十三年丁亥，以斑疹，死亡無數，兩西·關東·嶺北諸道，別致祭酌，亦於京中，依癟疫死亡人賜祭例，遣近臣，設壇北郊，行祭。…二十五年己巳八月，諸道牛多疫死，用人代耕。命禮官依五禮儀祭先牧之禮，各邑就中央爲壇，京城就馬壇，設牧神位，祭以禳之。…三十九年癸未，命內局所祭神農氏位版，設欵櫈于大廳，以致敬焉。…五十年甲午五月，傳曰，內局祭神農氏，雖曾聞，莫知本事。…

별사(別祀)。옥추단제(玉樞丹祭)와 회맹제(會盟祭)를 뒷불임 … 문종 원년(1451) 신미년 9월, 황해도와 경기에 여역이 심히 치성하여 서로 옮으면서 많은 백성이 요절하였다. 주상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친히 제문을 짓고, 신하를 보내어 제사 지냈다. … 선조 10년(1577) 정축년, 도성과 팔도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사망자가 끊이지 않았고, 양서(兩西) 지방이 특히 심했다. 주상께서 신하를 보내어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여제를 거행하라 명하였다. 당시 백성 사이에서 와전된 말로는 악독한 역신(疫神)이 내려와 오곡과 잡반(雜飯)과 소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소를 죽여 대문에 피를 뿌리는 액막이를 하였다. … 인조 16년(1638), 관원을 보내어 전쟁에서 죽은 군사를 각 집에서 제사 지내게 하였다. 함경도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백성들이 많이 죽었으므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현종 12년(1671)에 동교와 서교에 제단을 설치하도록 명하고, 굶주리거나 역병으로 죽은 백성들을 제사 지냈다. … 숙종 16년(1690) 경오년, 황해도의 서흥현에 독질(毒疾)이 생겼으나 의원조차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사망자가 특히 많았다. 주상께서 친히 제문을 짓고 의례를 집행하는 관리를 보내어 황해도의 명산과 서흥현의 제단에서 제사를 거행하게 하였다. … 숙종 23년(1697) 정축년, 제단을 만들어서 관서 지방에서 굶주려 죽은 이들을 제사 지냈다. 주상께서 친히 제문을 짓고 관리를 보내 제사 지냈다. 도성과 지방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사망자가 끊이지 않으므로 대신을 보내 여단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숙종 25년(1699) 기묘년 정월의 비망기이다. “국운이 불행하여 4년 동안 큰 죽음이 있어 만 명이 죽고 나머지도 병에 걸린 데다가 전에 없던 무서운 역병이 서쪽 변방에서 시작하여 팔도에 두루 번졌다. 마을에는 온전한 집이 없고 백에 한 명도 낫지 못했다. … 도성

안의 한성부에서부터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명령하니 약재를 주어 구제하고 시신을 거두어 묻어 주도록 하라. 중앙의 관원을 파견하여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짐이 답답하고 측은히 여김을 나타내고 조금이나마 원통함을 위로해 주도록 하라.” 숙종 33년(1707) 정해년, 반진(斑疹)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었다. 양서·관동·영북의 각 도에서, 특별히 제수(祭酌)를 지내게 하고 도성에서도 지내게 하였다. 여역으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전례에 따라 측근을 보내어 북교(北郊)을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 영조 25년(1749) 기사년 8월, 각 도에서 역병으로 소가 많이 죽어서 사람이 대신 논밭을 갈았다. 의해 담당 관원에게 명하여 《오례의》의 〈제선목례祭先牧禮〉대로 각 고을에서는 고을 중앙에 제단을 설치하게 하고, 도성에서는 마조단에 나아가게 하여 목신(牧神) 위패를 설치한 다음 제사를 지내 액막이하도록 하였다. … 영조 39년(1763) 계미년, 내의원에서 모시는 신농씨의 위패를 내의원 본청에 함을 만들어 보관함으로써 공경함을 나타내도록 명하였다. … 영조 50년(1774) 갑오년 5월, 주상께서 전교하였다. “내의원에서 신농씨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예전에 들었으나 본래의 업무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 ”

► 卷44 > 吉禮 > 別祀

祓禳. 互見厲祭. … 宣祖十年丁丑, 八道厲疫熾盛, 平安·黃海道尤甚, 遣近臣, 行厲祭于兩道. 詳見雜祀. 肅宗二十四年戊寅 … 四十四年戊戌, 以厲疫熾盛, 遣重臣, 祭山川. 英祖六年庚戌, 以紅疫之餘, 且有厲疫. 命厲祭, 不卜日, 遣近侍設行. 八年壬子, 以厲疫連歲熾盛, 行別厲祭於北郊及京畿. …

발양. 〈여제厲祭〉와 서로 참조하라. … 선조 10년(1577) 정축년, 팔도에 여역이 치성하였을 때 평안도와 황해도가 특히 심하여 측근을 파견하여 두 도에 여제를 거행하게 하였다. 〈잡사雜祀〉에 상세히 나온다. … 숙종 44년(1718) 무술년, 여역이 치성할 때 대신을 보내어 산천에 제사 지냈다. 영조 6년(1730) 경술년, 흥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역까지 생겼다. 좋은 날을 점치지 말고 측근을 파견하여 여제를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영조 8년(1732) 임자년, 여역이 해를 넘겨 치성하고 있어 특별 여제(厲祭)를 북교(北郊)와 경기에서 거행하였다. …

► 卷44 > 吉禮 > 祓禳

서운관지(書雲觀志) 1818년

五禮儀臨弔儀註有曰，巫執桃，祝執荔，蓋巫則活人署官，祝則兩醫司官，桃枝觀象監³主之，荔則益母草，典醫監主之。謹按五禮通考，鄭司農云，桃鬼所畏也，荔辟帚所以掃不祥。陳氏禮書曰，古者人君出戶則巫覲，有事弔臣則桃荔在前，蓋桃荔凶邪之所畏避者也。

《오례의 · 임조의臨弔儀》의 주석에서 “무(巫)는 도(桃)를 잡고 축(祝)은 열(荔)을 잡는다. 아마도 무는 활인서의 관원이고 축은 양의사의 관원인 듯하다. 복승아나무 가지는 활인서에서 주관하고, 열(荔)은 익모초이니 전의감에서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고찰. 오례통고에서 “정 사농(鄭司農, 정중鄭衆)이 말하기를 복승아나무는 귀신이 두려워한다.”라고 하였다. 열초추(荔辟帚, 익모초 빗자루)는 상서롭지 않은 것을 쓸기 위한 것이다. 진 씨의 예서(禮書)에서 말하기를 “예전에는 임금이 문을 나설 때는 무격을 앞에 두고, 일이 있어 신하를 조문할 때는 도와 열을 앞에 두었다. 도와 열은 흥사가 두려워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卷3 > 故事 > 무신년(1668) 12월 附

대한예전(大韓禮典) 1898년

辨祀. 凡祭祀之禮，天神曰祀，地祇曰祭，人鬼曰享，文廟曰釋奠，而以其儀物多少，爲大中小之別。… 如水·旱·疾疫·蟲蝗·戰伐，則祈。…

제사의 구별. 제사의 예법에서는 천신(天神)에게 지내는 제사를 사(祀), 지지(地祇)에게 지내는 제사를 제(祭),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를 향(享), 문묘(文廟)에게 지내는 제사를 석전(釋奠)이라 한다. 제사의 의장과 물품의 수량에 따라 대·중·소로 구별한다. … 예를 들어 홍수·가뭄·역병·황충·전쟁이 생기면 기제(祈祭)를 지낸다. …

▶ 卷二 > 序例 > 吉禮 > 辨祀

3 원본에는 관상감으로 되어있으나 《해국지》에 근거하여 활인서로 번역하였다.

7. 봉심(奉審)

춘관통고(春官通考) 1788년

諸陵事例. 穆祖以上陵寢, 世傳在於太白山蘆洞, 而列聖重賞購問, 而不能得. …各陵假官忠義, 不足數以三醫司差送. 禮曹啓, 以增廣文科時, 參奉給假. 依施. …

각 능의 규정. 목조(穆祖) 이상의 능묘가 태백산 노동(蘆洞)에 있다고 세상에 전하므로 선왕들께서 큰 상을 걸고 텁문했으나 찾지 못하였다. … 각 능의 가관(假官, 임시 관리)은 총의위에서 차출하되, 부족한 인원은 삼의사(三醫司)의 관원 중에 임명하여 보낸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증광시 때 문과를 보는 참봉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시행하였다. …

▶ 卷21 > 吉禮 > 陵寢 > 諸陵事例

8. 치제(致祭)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1810년

立主奠儀 [原] … 香湯, 用零陵香·紫檀香, 所以浴主者(內醫院). 煎器(工曹) …

신주를 세우는 제전의 의례 [오례의] … 향탕, 영릉향과 자단향을 쓴다. 제주(祭主)를 씻기는 용도이다(내의원). 향탕을 끓이는 그릇(공조) …

▶ 卷之十七 > 凶禮 > 立主奠儀

9. 혼가(婚嫁)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년

○婚姻之家. 納采 · 成婚日期, 預告所居部, 前期牒報司憲府, 醫女 · 書吏發送, 撈奸. … 納采 · 納幣 · 成婚一應行禮日, 外則宗簿寺遣書吏摘奸, 內則遣醫女摘奸, 法司亦遣書吏糾察. …

○왕실과 혼인하는 집. 납채 · 성혼을 거행할 날짜를 거주하는 고을에 미리 통보하고, 기일 전에 사헌부에 문서로 보고하며, 의녀와 서리를 보내어서 척간(撈奸, 부정한 일을 조사함)한다. … 납채 · 납폐 · 성혼을 거행하는 모든 날짜에 남자라면 종부시에서 서리를 보내 척간하고 여자라면 의녀를 보내어 척간하되, 사헌부에서도 서리를 보내어 살피게 한다. …

▶ 禮典 > 禁制 > [婚姻之家納采…]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過時未婚, 及貧無以葬者, 間二年, 歲首稟旨顧助. 若置饑疫, 勿拘年次.
[增] …

… ○나이가 넘도록 혼인하지 못한 사람과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은 2년 간격으로 연초에 주상께 여준 후 도와준다. 흥년이나 역병 때는 연도에 구애받지 않는다. [추가] …

▶ 禮典 > 婚家 > [婚嫁過時]

10. 상장(喪葬)

탁지오례고(度支五禮考) 1840-1841년

御醫柳後聖喪 ○顯宗十年己酉二月.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題給. 見別例房別贍錄.

良醫官鄭後啓喪 ○顯宗十一年庚戌八月.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題給. 木綿五疋, 米五石, 因傳教加給. 見別例房別贍錄.

...

醫官崔聖任喪 ○肅宗三十五年己丑六月.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依李東馨例, 題給 見別例房別贍錄.

醫官金有鉉喪 ○肅宗四十一年乙未五月.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題給 見別例房別贍錄.

首醫李應斗喪 ○肅宗四十二年丙申. 英宗元年乙巳三月, 因其孫幼學命積上言, 判付內, 渠以鍼醫之首身故之時, 特給之例, 既不能稟達, 則其孫之今請恩賜, 雖涉猥, 濫情則可矜, 特令該曹, 米布參酌題給. ○葬需, 木綿十疋, 米五石, 因傳教參酌題給. 見別例房別贍錄.

...

醫官李時聖喪 ○英宗元年乙巳七月.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依金有鉉例, 題給 見別例房別贍錄.

...

御醫方震夔喪 ○英宗五年己酉二月.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依金有鉉例, 題給 見別例房別贍錄.

...

御醫權聖徵喪 ○英宗十四年戊午三月. 傳曰, 權聖徵, 依金有鉉例題給事, 分付該曹.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依金有鉉例, 題給 見別例房別贍錄.

...

醫官玄起鵬喪 ○英宗二十六年庚午十月. 傳曰, 醫官玄起鵬, 依他例, 令該曹舉行.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題給 見別例房別曆錄.
醫官金應三喪 ○英宗二十七年辛未二月. 傳曰, 醫官金應三, 以舊醫作故, 深惻于心, 令該曹考例舉行.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題給 見別例房別曆錄.

御醫鄭趾彥喪 ○英宗三十四年戊寅四月. 四月十一日, 講經, 奉朝賀同爲入侍時, 傳曰御醫鄭趾彥, 非徒術業之精明, 爲人純實矣, 其涉惻傷, 令該曹依金應三例, 從厚舉行. 其子, 令該院待闋服, 卽爲復屬. ○葬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依金應三例, 從厚題給 見別例房別曆錄.

...

醫官金壽煃喪 ○英宗四十年甲申九月. 十一月初三日, 次對入侍時, 傳曰, 庚子以前舊醫, 只有金壽煃, 今已作故, 憶甲午歲而愴然, 依權聖徵例, 令該曹舉行. ○喪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祭需, 木綿十五疋, 米五石. 因傳教依權聖徵例, 題給 見別例房別曆錄.

醫官金德峯喪 ○英宗四十三年丁亥九月. 承旨入侍時, 傳曰, 金德峯既已資窮, 純實已, 知應行之事, 於渠闕焉, 其甚愴然, 依金壽煃例, 特爲題給. ○喪需木綿十五疋米五石祭需木綿十五疋米五石因傳教依金壽煃例題給 見別例房別曆錄.

어의 류후성(柳後聖)의 상. ○현종(顯宗) 10년(1669) 기유년 2월 상수(喪需, 상례 물품)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題給, 문서와 함께 지급함)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양의(良醫) 정후계(鄭後啓)의 상. ○현종 11년(1670) 경술년 8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한다. 무명 5필과 쌀 5섬을 전교에 의하여 추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

의관 최성임(崔聖任)의 상. ○숙종 35년(1709) 기축년 6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이동형(李東馨)의 사례에 따라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김유현(金有鉉)의 상. ○숙종 41년(1715) 을미년 5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수의(首醫) 이응두(李應斗)의 상. ○숙종 42년(1716) 병신년 영조 1년(1725) 을사년 3월. 그의 손자인 유학 이명적(李命積)의 건의에 따른 판부(判付, 판결문) 내용이다. ‘그가 침의(鍼醫)의 수의(首醫)로 죽었을 때 특별 지급해달라는 일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그 손자가 지금 하사품을 요청하는 것은 비록 주제 넘지만 너그럽게 생각하면 불쌍하니 특별히 예조에서는 쌀과 삼베를 참작하여 제급하라.’ ○상수는 무명 10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참작하여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

의관 이시성(李時聖)의 상. ○영조 1년(1725) 을사년 7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유현(金有鉉)의 사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

어의 방진기(方震夔)의 상. ○영조 5년(1729) 기유년 2월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유현(金有鉉)의 사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

어의 권성징(權聖徵)의 상. ○영조 14년(1738) 무술년 3월 전교에 이르기를 ‘권성징은 김유현(金有鉉)의 사례대로 제급하라고 예조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유현(金有鉉)의 사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

의관 현기봉(玄起鵬)의 상. ○영조 26년(1750) 경오년 10월 전교에 이르기를 ‘의관 현기봉은 기존 사례대로 예조에서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김응삼(金應三)의 상. ○영조 27년(1751) 신미년 2월 전교에 이르기를 ‘의관

김응삼은 오래 알고 지낸 의원인데 작고하였다니 마음이 매우 슬프다. 예조에서 기준 사례를 살펴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어의 정지언(鄭趾彦)의 상. ○영조 34년(1758) 무인년 4월 4월 11일, 강경(講經)하는 자리에 봉조하(奉朝賀)가 같이 입시했을 때 전교하기를 '어의 정지언은 비단 의술의 정밀함 뿐만 아니라 사람됨이 성실하였기에 매우 슬프고 안타깝다. 예조에서는 김응삼(金應三)의 전례대로 최대한 후하게 거행하라. 내의원에서는 탈상을 기다렸다가 그의 자식을 즉시 복속(復屬, 복직)시키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응삼의 사례대로 최대한 후하게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

의관 김수규(金壽煃)의 상. ○영조 40년(1764) 갑신년 9월 11월 초3일, 차대(次對, 정기 업무 회의) 입시 때 전교에 이르기를 '경자년(1720) 이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의원은 김수규뿐인데 지금은 작고하였다. 갑오년(1714)을 기억하자니 참으로 애달프도다. 권성징(權聖徵)의 전례에 따라 예조에서 거행하게 하라.'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권성징의 전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의관 김덕륜(金德崑)의 상. ○영조 43년(1777) 정해년 9월 승지가 입시했을 때 전교에 이르기를 '김덕륜은 이미 자궁(資窮, 정3품)까지 올랐고 성품이 매우 성실하여 의원이 마땅히 할 일을 잘 알았는데 아아 그가 없다고 하니 심히 슬프도다. 김수규의 전례에 따라 특별히 제급하라.'라고 하였다. ○상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제수는 무명 15필과 쌀 5섬이다. 전교에 의하여 김수규의 전례대로 제급하였다. 《별례방별등록》에 나온다

▶ 卷4 > 흉례 > 醫譯以下恤典

11. 취재(取才)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取才] 諸學, 四孟月, 本曹同提調取才, 無提調處, 則同該曹堂上官取才. 醫學, 簿圖脈·銅人經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瘡疹集·直指方·救急方·婦人大全·得效方·胎產集要·和劑方·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已上臨文, 針灸醫, 簿圖脈·和劑指南·銅人經已上誦·直指脈·針經指南·子午流注·玉龍歌·資生經·外科精要·十四經發揮·針經摘英集已上臨文. … ○已上各學, 諸書輪次試之. 下同. ○宗親府·議政府·忠勤府·都摠府·六曹醫員, 竝取才, 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見在職者謂本司職, 竝勿試, 受遞兒職, 六朔內病滿十五日者·褒貶居下等者, 竝勿試, 後等取才如今年正月都目受職者, 明年秋冬等, 方許試才之類. ○分數同, 則取仕多者.

[취재] 여러 학(學). 1·4·7·10월에 본 예조에서 각 제조와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하되, 제조가 없는 아문에서는 해당 육조의 당상관과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의학은 《찬도맥》·《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창진집》·《직지방》·《구급방》·《부인대전》·《득효방》·《태산집요》·《화제방》·《본초》·《자생경》·《십사경발휘》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화제지남》·《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직지맥》·《침경지남》·《자오유주》·《옥룡가》·《자생경》·《외과정요》·《십사경발휘》·《침경적영집》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 ○각 학(學)에서는 이상의 책들을 돌아가며 시험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종친부·의정부·충훈부·도총부·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 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 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한다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체아직을 받고서 6달 안에 15일 이상 병을 앓은 자, 포폄(褒貶, 업적 평가)에서 하등(下等)을 맞은 자는 모두 취재시험 을 거행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거행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도목정사 때 직임을

받은 자는 이듬해 가을이나 겨울 분기 때가 되어야 취재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같으면 출근 일수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

▶ 禮典 > 取才 > [諸學四孟月…]

○內醫院官員 五十歲以下，四孟月，提調抽試三書，定等第，啓移吏曹，陞降授職。初入屬時，亦依上試取。

○내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4·7·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禮典 > 取才 > [內醫院官員…]

각사수교(各司受敎) 1546-1576년

諸學取才事目 ○取才付祿時，兩都目是白在，司譯院·觀象監·惠民署·律學·算學乙良，定爲六朔仕日。四都目是白在，掌樂院樂生樂工·昭格署道流·圖畫署畫員·漢吏學官乙良，定用三朔爲白遣，已經取才，積久前仕乙良，一切錄用安徐爲白乎旂，各其仕數內，忌祭·時享·服制段，通共給假，不可例論私故是白昆，並只通計實仕爲白乎矣。如有托稱服制，欲圖自便者乙良，摘發治罪爲白乎旂，各等取才入格人中，講畫仕日並同者，考其講性純不純，以次付祿，講性又同者，考其前等祿職高下，遞相陞降付祿爲齊。大典內，一應各學取才，皆爲四都目乙仍于，各於三朔內，仕滿五十日者，許試亦爲白有在果，今則或定兩都，或仍四都目爲白置，四都目以乎爲白在果，兩都目至亦，中分三朔，各准五十日然後許試，非立法本意，今後乙良，六朔內，通計仕滿百日，許試爲白乎矣，在喪人員段，免喪之後，卽赴取才，係是前例是白去等，今者責准仕日爲白在如中，再期之後，又延半歲，情屬可矜爲白昆，不拘仕日，並令許赴取才，永爲恒式。嘉靖三十二年閏三月初一日，啓，依允，單子施行。

각 학(學)의 취재시험 조항 ○취재시험으로 녹직을 줄 때는 1년에 2번 도목정사를 하는 사역원·관상감·혜민서·율학·산학 관원은 6개월을 근무 일수로 정한다. 1년에 4번 도목정사를 하는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소격서의 도류(道流)·

도화서의 화원·한학·이학 관원은 3개월을 근무 일수로 정한다. 이미 취재시험을 거쳤다면 이전의 근무 일수는 일절 계산하지 않는다. 근무 일수 안에 기제(忌祭)·시향(時享)·복제(服制, 상복을 입음)가 있을 때는 모두 휴가를 주되, 각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니 모두 실제 근무 일수를 통틀어 계산한다. 만약 복제(服制)를 평계로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 있으면 적발하여 죄를 다스린다. 각 분기의 취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고강 점수와 근무 일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강생(講生)⁴의 성적을 살펴서 그 순서대로 녹직을 주고, 강생도 같은 경우에는 앞 분기 녹직의 고하를 살펴서 서로 교대로 올리거나 내려서 녹직을 준다. 《경국대전》에서 ‘모든 각 학(學)의 취재시험은 모두 4도목 이므로 3개월 안에 근무 일수가 50일이 이상인 자들에게는 응시를 허락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혹은 2도목(양도목)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혹은 계속 4도목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4도목은 그렇다 치고, 양도목까지 3개월씩 중간을 나누어 각각 50일이 차면 응시를 허락하는 것은 법령을 만든 본의가 아니니, 지금 이후로는 6개월 안에 근무 일수를 통틀어 100일 이상이면 취재시험을 허락해야 한다. 상 중에 있는 사람은 탈상 후 즉시 취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전례인데 지금 근무 일수 채우기를 요구한다면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반년이 연장되어 불쌍하게 되므로 근무 일수에 구애되지 말고 모두 취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영구히 시행할 규정으로 삼는다. 가정 32년(1553, 명종 8) 윤3월 1일에 주상께 문서로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시고 올린 문서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 禮曹受敎 > 46. 取才付祿時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三醫司·律學·算員·寫字官等, 或爲代寫冒入, 則曾參雜科者, 依生·進例充軍, 未科者, 全家徙邊. 三醫司以下, 常時習業應爲赴舉者, 呈本司·本曹, 受

4 강생(講生) : 고강 시, 대쪽에 경서 글귀를 하나씩 써서 통에 넣고 뽑게 하여 그 대목을 암송하게 한다.

公文後，許赴。○書寫·書吏等，代寫冒入者，或於朱草用奸者，并全家徙邊。據康熙甲子九月日，未科者及書寫·書吏，並皆水軍充定，公·私賤則絕島限己身爲奴。康熙癸亥承傳

○삼의사(三醫司)의 관원·율관·산원·사자관들이 혹 대신 써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지움)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 한다. 삼의사 이하 중 평상시에 본업을 익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이는 소속 관청을 통해 예조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응시를 허락한다. ○서사나 서리들 중 답안을 대신 써주기 위해 시험장에 함부로 들어간 자, 혹은 주초(朱草, 성적을 붉게 씀)할 때 놓간을 부린 자는 모두 전가사변에 처한다. 강희 갑자년(1684, 숙종 10) 9월의 수교에 의하여 아직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서사나 서리는 모두 수군으로 충군하고, 공천·사천은 섬에 보내고 당사자에 한하여 노비로 삼는다.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禮典 > 科舉 > 279~280. [中外大小科場…]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醫學·纂圖脈·銅人經 已上誦。年五十歲以上，則背講。凡醫學誦者同。·瘡疹集·直指方·救急方·婦人大全·得效方·胎產集要·和劑方·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 已上臨文。·針灸醫·纂圖脈·和劑指南·銅人經 已上誦。·直指脈·針經指南·子午流注·玉龍歌·資生經·外科精要·十四經發揮·針經摘英集 已上臨文。

의학은 《찬도맥》·《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창진집》·《직지방》·《구급방》·《부인대전》·《득효방》·《태산집요》·《화제방》·《본초》·《자생경》·《십사경 발휘》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화제지남》·《동인 경》 이상은 암송한다 ·《직지맥》·《침경지남》·《자오유주》·《옥룡가》·《자생 경》·《외과정요》·《십사경발휘》·《침경적영집》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

한다

▶ 禮典 中 > 取才 > [大典] > [諸學取才] > 醫學

○宗親府·議政府·忠勤府·都摠府·六曹醫員, 竝取才, 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見在職者 謂本司職, 竝勿試, …

○종친부·의정부·충훈부·도총부·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 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하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

▶ 禮典 中 > 取才 > [大典] > [諸學取才] > [竝勿試]

○內醫院官員 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 初入屬時, 亦依上試取.

○내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4·7·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禮典 中 > 取才 > [大典] > [內醫院官員]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諸學, 四孟月, 本曹同提調取才, 無提調處, 則同該曹堂上官取才. 醫學. 纂圖脈·銅人經 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瘡疹集·直指方·救急方·婦人大全·得效方·胎產集要·和劑方·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 已上臨文. 針灸醫, 纂圖脈·和劑指南·銅人經 已上誦·直指脈·針經指南·子午流注·玉龍歌·資生經·外科精要·十四經發揮·針經摘英集 已上臨文. … ○宗親府·議政府·忠勤府·都摠府·六曹醫員, 竝取才, 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見在職者 謂本司職, 竝勿試. 受遞兒職六朔內病滿十五日者·褒貶居下等者, 竝勿試, 後等取才 如今年正月都目受職者, 明年秋冬等, 方許試才之類. … ○內醫院 官員 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 初入屬時, 亦依上試取.

○여러 학(學)에서는 1·4·7·10월에 본 예조에서 각 제조와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하되, 제조가 없는 아문에서는 해당 육조의 당상관과 함께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의학은 《찬도맥》·《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창진집》·《직지방》·《구급방》·《부인대전》·《득효방》·《태산집요》·《화제방》·《본초》·《자생경》·《십사경발휘》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화제지남》·《동인경》 이상은 암송한다 · 《직지맥》·《침경지남》·《자오유주》·《옥룡가》·《자생경》·《외과정요》·《십사경발휘》·《침경적영집》이다.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 ○각 학(學)에서는 이상의 책들을 돌아가며 시험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종친부·의정부·충훈부·도총부·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 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한다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체아직을 받고서 6달 안에 15일 이상 병을 앓은 자, 포폄(褒貶, 업적 평가)에서 하등(下等)을 맞은 자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거행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도목정사 때 직임을 받은 자는 이듬해 가을이나 겨울 분기 때가 되어야 취재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 ○내 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4·7·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禮典 > 取才 > [大典]

속대전(續大典) 1746년

[取才] 諸學取才時, 本曹堂上官有故, 則該院提調同本曹郎官取才, 該院提調有故, 則本曹堂上官同該院郎官取才, 無郎官處提調有故, 則本曹堂上官·郎官取才. [醫學] 纂圖脈·銅人經(背誦), 直指方·本草(以上見大典)·素問·東垣十書·醫學正傳(新增. 以上臨文), 其餘諸書, 今廢. 針灸醫, 同入醫學取才, 而諸書今廢(素問背誦者, 別給倍畫, 等畫者先計) …

[취재] 각 학(學)의 취재 때 예조 당상관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아문의 제조가

예조의 낭관과 함께 시험한다. 해당 아문의 제조도 사정이 있으면 예조 당상관이 해당 아문의 낭관과 같이 시험한다. 낭관이 없는 아문에 제조도 사정이 있으면 예조 당상관과 예조 낭관이 시험한다. [의학] 《찬도맥》·《동인경》(책을 등지고 외운다), 《직지방》·《본초》(이상은 《경국대전》에 나온다)·《소문》·《동원십서》·《의학정전》(새롭게 추가했다.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모두 폐지했다. 침구의(針灸醫)는 의학 취재에 함께 들어가며, 각종 책은 지금 폐지했다(《소문》을 등지고 외우면 별도로 2배 점수를 주고 같은 점수라면 우선권을 준다) …

▶ 禮典 > 取才 > [諸學取才時有故]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醫學. 築圖脈·銅人經, 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 瘡疹集·直指方·救急方·婦人大全·得效方·胎產集要·和劑方·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 已上臨文. 針灸醫, 築圖脈·和劑指南·銅人經, 已上誦. 直指脈·針經指南·子午流注·玉龍歌·資生經·外科精要·十四經發揮·針經摘英集, 已上臨文.

의학은 《찬도맥》·《동인경》(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창진집》·《직지방》·《구급방》·《부인대전》·《득효방》·《태산집요》·《화제방》·《본초》·《자생경》·《십사경발휘》이다.(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화제지남》·《동인경》(이상은 암송한다)·《직지맥》·《침경지남》·《자오유주》·《옥룡기》·《자생경》·《외과정요》·《십사경발휘》·《침경적영집》이다.(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 禮典 > 取才 > 醫學

○宗親府·議政府·忠勤府·都摠府·六曹醫員, 竝取才, 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見在職者(謂本司職), 竝勿試. 受遞兒職六朔內病滿十五日者·褒貶居下等者, 竝勿試, 後等取才. 如今年正月都目受職者, 明年秋冬等, 方許試才之類. ○分數同, 則取仕多者.

○중친부·의정부·충훈부·도총부·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한다)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체아직을 받고서

6달 안에 15일 이상 병을 앓은 자, 포폄(褒貶, 업적 평가)에서 하등(下等)을 맞은 자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거행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도목정사 때 직임을 받은 자는 이듬해 가을이나 겨울 분기 때가 되어야 취재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같으면 출근 일수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

▶ 禮典 > 取才 > 醫員

○內醫院官員 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
初入屬時, 亦依上試取.

○내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4·7·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禮典 > 取才 > [內醫院官員]

醫學. 纂圖脈 · 銅人經, 背誦, 直指方 · 本草, 以上見原典, 素問 · 東垣十書 · 醫學正傳, 新增, 以上臨文, 其餘諸書, 今廢. 針灸醫, 同入醫學取才, 而諸書, 今廢. 素問背誦者, 別給倍畫, 等畫者先計.

의학. 《찬도백》·《동인경》(책을 등지고 외운다), 《직지방》·《본초》(이상은 《경국대전》에 나온다)·《소문》·《동원십서》·《의학정전》(새롭게 추가했다.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모두 폐지했다. 침구의(針灸醫)는 의학 취재에 함께 들어가며, 각종 책은 지금 폐지했다.(《소문》을 등지고 외우면 별도로 2배 점수를 주고 같은 점수라면 우선권을 준다)

▶ 禮典 > 取才 > [醫學(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醫學. 纂圖脈 · 銅人經, 已上誦, 年五十歲以上, 則背講. 凡醫學誦者同. 瘡疹集 · 直指方 · 救急方 · 婦人大全 · 得效方 · 胎產集要 · 和劑方 · 本草 · 資生經 · 十四經發揮, 已上臨文. 針灸醫, 纂圖脈 · 和劑指南 · 銅人經, 已上誦. 直指脈 · 針經指南 · 子午流注 · 玉龍歌 · 資生經 · 外科精要 · 十四經發揮 · 針經摘英集, 已上臨文.

의학은 《찬도백》·《동인경》(이상은 암송한다. 50살 이상이면 책을 보지 않고 풀이한다).

의학에서 암송하는 책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창진집》 · 《직지방》 · 《구급방》 · 《부인대전》 · 《득효방》 · 《태산집요》 · 《화제방》 · 《본초》 · 《자생경》 · 《십사경발휘》이다.(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침구의는 《찬도맥》 · 《화제지남》 · 《동인경》(이상은 암송한다) · 《직지맥》 · 《침경지남》 · 《자오유주》 · 《옥룡가》 · 《자생경》 · 《외과정요》 · 《십사경발휘》 · 《침경적영집》이다.(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다)

▶ 禮典 > 取才 > [諸學取才] > [醫學]

○宗親府 · 議政府 · 忠勤府 · 都摠府 · 六曹醫員, 並取才, 三朔內仕未滿五十日者 · 一年內無故不仕三十日者 · 見在職者 謂本司職, 並勿試. 受遞兒職六朔內病滿十五日者 · 褒貶居下等者, 並勿試. 後等取才, 如今年正月都目受職者, 明年秋冬等, 方許試才之類. ○分數同, 則取仕多者.

○종친부 · 의정부 · 충훈부 · 도총부 · 육조의 의원은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한다. 3달 중에 출근 일수가 50일 미만인 자, 1년 안에 이유 없이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자, 현재 직무를 맡은 자 해당 관청의 직무를 말한다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는다. 체아직을 받고서 6달 안에 15일 이상 병을 앓은 자, 포폄(褒貶, 업적 평가)에서 하등(下等)을 맞은 자는 모두 취재시험을 거행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거행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도목정사 때 직임을 받은 자는 이듬해 가을이나 겨울 분기 때가 되어야 취재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같으면 출근 일수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

▶ 禮典 > 取才 > [諸學取才] > [醫員]

○內醫院官員 五十歲以下, 四孟月, 提調抽試三書, 定等第, 啓移吏曹, 陞降授職. 初入屬時, 亦依上試取.

○내의원의 관원 50세 이하 은 1 · 4 · 7 · 10월에 제조가 3가지 책을 추첨하여 시험하고 차례를 매긴 다음에 이조에 공문을 보내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고 직임을 임명한다. 처음 임명되었을 때도 위와 같이 시험하여 뽑는다.

▶ 禮典 > 取才 > [內醫院官員]

醫學. 築圖脈 · 銅人經, 背誦, 直指方 · 本草 · 以上見原典. 素問 · 東垣十書 · 醫學正傳, 新增. 以

上臨文, 其餘諸書, 今廢. 針灸醫, 同入醫學取才, 而諸書今廢. 素問背誦者, 別給倍畫, 等畫者先計. 의학.《찬도맥》·《동인경》(책을 등지고 외운다), 《직지방》·《본초》(이상은 《경국대전》에 나온다)·《소문》·《동원십서》·《의학정전》(새롭게 추가했다. 이상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모두 폐지했다. 침구의(針灸醫)는 의학 취재에 함께 들어가며, 각종 책은 지금 폐지했다.(《소문》을 등지고 외우면 별도로 2배 점수를 주고 같은 점수라면 우선권을 준다)

► 禮典 > 取才 > [諸學取才時有故] > [醫學]

12. 장권(獎勵)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醫書習讀官, 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 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習讀官及教授內生員·進士, 以其仕日數准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西班牙隨闕敍用.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증에 따라 별을 준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 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포폄 결과에 따라 문관·무관에 빙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 禮典 > 奬勵 > [醫書習讀官…]

○醫學生徒·女醫, 提調每月考講, 女醫分數多者三人, 紿料三朔, 不通多者, 生徒, 則定其司書吏, 女醫, 則其司茶母以罰之, 能通然後, 許還本業. 諸邑醫生,

觀察使巡行考講, 勸懲.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벌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茶母)로 정하여 벌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禮典 > 標勸 > [醫學生徒女醫…]

○醫員, 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 成效最多者一人, 歲抄啓聞敍用. 產婆, 則給料.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 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抄, 6·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 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產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禮典 > 標勸 > [醫員雖不解方書…]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內醫院習讀官曾時讀, 提調每朔三度考講, 分數通考, 遞兒職陞降除授. 所業精通者, 啓授顯職.

○내의원 습독관의 증시독강(曾時讀講)⁵은 내의원 제조가 매달 3회 고강하고, 점수에 따라 전체를 따진 후 녹을 주는 체아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제수한다. 본업에 정통한 이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직(顯職, 주요 관직)을 제수한다.

▶ 禮典 > 標勸 > [內醫院習讀官…]

○年少聰敏 · 學習可當醫女陳擇, 教官分授, 逐日書徒, 每節季, 本曹及提調一同, 每一書三處講問, 年終分數書啓. 其中優等十分以上者, 或京外中, 從自願奉足一名加給, 或賜物. 三分以下者, 或囚家僮, 或行楚. 其學習能否, 教官殿最時

⁵ 증시독강(曾時讀講) : 지금까지 읽은 책을 말하면 그중에서 시험관이 정하여 고강하는 방식이다.

憑考.

○연소총민(年少聰敏)이나 학습에 적합한 의녀는 선발 후 교관을 나누어 가르치면서 날마다 서도(書徒, 독서 기록)하게 한다. 3·6·9·12월에는 예조에서 해당 제조와 함께 1책마다 3곳의 뜻을 묻고, 연말에 그 점수를 문서로 아뢴다. 그중에 우수하여 점수가 10분(分) 이상인 사람에게는 도성이나 지방 중 본인이 원하는 봉족(奉足) 1명을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물품을 하사한다. 점수가 3분 이하인 자는 가동(家僮)을 대신 가두거나, 혹은 본인을 매질한다. 학습의 성과는 교관의 전최(殿最, 성과 평가) 때 근거로 삼는다.

▶ 禮典 > 奬勸 > [年少聰敏學習可當…]

○外方醫生, 教授·訓導, 兼掌教訓. 觀察使考講, 有醫方精通入, 則戶內完護, 頑不通曉者充軍. 不能檢舉守令, 及不用心教訓教授訓導, 憑考獲貶. 其所讀醫書, 鄉藥方·和劑方·得效方·鄉藥集成方·救急方, 觀察使隨官印出分給.

○외방의생의 교육은 교수나 훈도가 겸직하여 주관한다. 관찰사의 고강 결과, 의서에 정통했다면 그 집을 완호(完護, 요역을 모두 면제함)해주고, 미련하여 이해하지 못한 자는 충군(充軍, 군역으로 충원함)한다. 의생 교육을 단속하지 않은 수령과 교육에 신경 쓰지 않은 교수·훈도는 표평에 반영한다. 읽어야 하는 의서는 《향약방》·《화제방》·《득효방》·《향약집성방》·《구급방》이며, 관찰사가 적당한 고을에서 찍어서 나눠준다.

▶ 禮典 > 奬勸 > [外方醫生…]

○藥夫父子, 母定他役, 世傳其業.

○약부(藥夫, 약초꾼) 부자(父子)는 다른 역에 배정하지 말고, 본업을 대대로 잇게 한다.

▶ 禮典 > 奬勸 > [藥夫父子…]

○外方醫生中, 年少聰敏解文字者, 京畿, 廣州·驪州·坡州, 各一人, 忠淸道, 忠州·淸州·公州, 各一人, 洪州二人, 全羅道, 全州·羅州·濟州各二人, 慶尙道, 慶州三人, 尙州·安東·晉州, 各二人, 星州一人, 江原道, 江陵·原州, 各一

人. 黃海道, 黃州一人, 海州二人, 永安道, 安邊一人, 平安道, 安州·定州·義州, 各一人, 五年一次揀擇上送, 紿保二人. 分屬典醫監·惠民署, 事知醫員, 分授教訓. 每節季本曹堂上, 及兩醫司提調一同, 試講所讀書, 年終啓達. 其中勤業者, 本家復戶. 或逃亡或惰業者, 若役定體. 年終不通居多者, 教訓醫員科罪.

○글자를 아는 외방의생 가운데 연소총민(年少聰敏)으로 뽑는 인원수. 경기는 광주·여주·파주 각 1인이다. 충청도는 충주·청주·공주 각 1인과 흥주 2인이다. 전라도는 전주·나주·제주 각 2인이다. 경상도는 경주 3인, 상주·안동·진주 각 2인, 성주 1인이다. 강원도는 강릉·원주 각 1인이다. 황해도는 황주 1인, 해주 2인이다. 영안도(함경도)는 안변 1인이다. 평안도는 안주·정주·의주 각 1인이다. 연소총민은 5년에 1번 선발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며, 보(保)는 2인을 지급한다. 전의감·혜민서에 나누어 배정한 후 실무에 밝은 의원이 나누어 가르친다. 3·6·9·12월에 예조 당상관이 양의사(兩醫司) 제조과 함께 읽은 책에 대한 풀이를 시험하고, 그 점수를 연말에 문서로 보고한다. 부지런히 공부한 이는 본가를 복호(復戶, 잡세 면제)한다. 혹 도망치거나 공부를 게을리한 자는 원래의 역(役)으로 한다. 연말까지도 불통(不通) 등급을 많이 받은 자는 가르치는 의원에게도 벌을 준다.

▶ 禮典 > 獎勸 > [外方醫生中…]

각사수교(各司受敎) 1546-1576년

○禮曹·戶曹·刑曹, 觀象監領事·提調, 司譯院都提調, 掌樂院·典醫監·惠民署·昭格署·圖畫署提調, 同議磨鍊單子內云云, 諸書內素問乙, 定爲主講, 別給倍畫獎勵.

예조·호조·형조, 관상감의 영사와 제조, 사역원 도제조, 장악원·전의감·혜민서·소격서·도화서의 제조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한 문서 안에 “… 여러 책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고, 특별히 2배의 점수를 주어 장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 禮曹受敎 > 45. 禮曹戶曹刑曹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司譯院·觀象監·典醫監·惠民署·律學·算學, 兩都目取才, 而定爲六朔仕日, 掌樂院樂生樂工·圖畫署畫員·漢吏學官四都目取才, 而定用三朔, 只覈實仕. 講畫仕日並同者, 考其講畫純不純, 以次付祿. 講柱又同者, 考前等祿職高下, 遞相陞降付祿.

○사역원·관상감·전의감·혜민서·율학·산학은 양도목(兩都目)으로 취재하므로 6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고,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도화서 화원·한학·이학은 4도목으로 취재하므로 3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되, 실제 근무 일수만을 따진다. 고강 점수와 근무 일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강생(講生)의 성적을 살펴서 그 순서대로 녹직을 주고, 고강 추첨도 같은 경우에는 앞 분기 녹직의 고하를 살펴서 서로 교대로 올리거나 내려서 녹직을 준다.

▶ 禮典 > 勸獎 > 336.-337. [司譯院·觀象監…]

○六朔內通計仕, 滿百日, 許試, 在喪終制者, 不拘仕日, 卽令許赴取才.嘉靖癸丑承傳

○6개월 안에 근무 일수를 통틀어 100일 이상이면 취재시험을 허락해야 한다. 상 중에 있는 사람은 탈상 후 즉시 취재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 계축년(1553, 명종 8)에 받은 전교

▶ 禮典 > 勸獎 > 337. [六朔內通計仕…]

○醫司春秋取才課試時, 諸書內, 以素問定爲主書, 一切臨講.

○각 의사(醫司)에서 봄·가을 취재시험에서 성과를 시험할 때 각 서적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는다. 모두 책을 보면서 풀이한다.

▶ 禮典 > 勸獎 > 341. [醫司春秋取才課…]

○銅人經·纂圖, 自願代講素問者聽. 素問背講者, 別給倍畫, 等畫者, 先計.嘉靖丁未承傳

○《동인경》·《찬도》 대신 《소문》 고강을 원할 때는 들어준다. 책을 보지 않고

《소문》을 풀이하는 이는 특별히 2배의 점수를 주며, 점수가 같으면 우선권을 준다. 가정 정미년(1547, 명종 2)에 받은 전교

▶ 禮典 > 勸獎 > 342. [銅人經 · 築圖…]

○天文 · 醫藥 · 漢學習讀官, 嚴立科程, 怠慢者黜之, 或用於殿最, 精通者 · 成效者, 遷之東班. 曾爲習讀官者, 許入于醫書權知二十員內, 應試十員, 天文肄習官十員內, 應試五員. 曾爲肄習官者, 待肄習官五人之闕, 許入. 曾爲權知者, 待權知十員之闕, 許入.嘉靖□□承傳

○천문 · 의서 · 한학 습독관은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태만한 자는 쫓아내고, 혹은 전최(殿最, 성과 평가)에서 정통한 자와 성과를 이룬 자는 문관으로 임명한다. 습독관을 지냈던 자는 의서 권지(權知, 견습 관원)의 응시인원 20명 중 10명을 배정하고, 천문 이습관(肄習官)의 응시인원 10명 중 5명을 배정할 수 있다. 이습관을 지냈던 자는 이습관의 우선 배정 5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권지를 지냈던 자는 권지의 우선 배정 10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가정 □□년에 받은 전교

▶ 禮典 > 勸獎 > 345. [天文 · 醫藥…]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醫書習讀官, 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 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習讀官及教授內生員 · 進士, 以其仕日數准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 · 西班隨闕敍用.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중에 따라 별을 준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 · 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 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포폄

결과에 따라 문관·무관에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 禮典 中 > 奬勸 > [大典] > [醫書習讀官]

醫學生徒·女醫，提調每月考講，女醫分數多者三人，給料三朔，不通多者，生徒，則定其司書吏，女醫，則其司茶母以罰之，能通然後，許還本業。諸邑醫生，觀察使巡行考講，勸懲。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벌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로 정하여 벌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禮典 中 > 奬勸 > [大典] > [醫學生徒·女醫]

○醫員，雖不解方書，能治療腫及諸惡疾，成效最多者一人，歲杪啓聞敍用產婆，則給料。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杪, 6·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產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禮典 中 > 奬勸 > [大典] > [醫員能治瘡腫]

○內醫院習讀官，曾時讀，提調每朔三度考講，分數通考，遞兒職陞降除授，所業精通者，啓授顯職。

○내의원 습독관의 증시독강(曾時讀講)은 내의원 제조가 매달 3회 고강하고, 점수에 따라 전체를 따진 후 녹을 주는 체아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제수한다. 본업에 정통한 이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직(顯職, 주요 관직)을 제수한다.

▶ 禮典 中 > 奬勸 > 繢錄 > [內醫院習讀官]

○年少聰敏學習可當醫女揀擇，教官分授，逐日書徒，每節季，本曹及提調一同每一書三處講問，年終分數書啓。其中優等十分以上者，或京·外中從自願奉足

一名加給，或賜物，三分以下者，或囚家僮或行楚，其學習能否，教官殿最時，憑考。

○연소총민(年少聰敏)이나 학습에 적합한 의녀는 선발 후 교관을 나누어 가르치면서 날마다 서도(書徒, 독서 기록)하게 한다. 3·6·9·12월에는 예조에서 해당 제조와 함께 1책마다 3곳의 뜻을 묻고, 연말에 그 점수를 문서로 아뢴다. 그중에 우수하여 점수가 10분(分) 이상인 사람에게는 도성이나 지방 중 본인이 원하는 봉족(奉足) 1명을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물품을 하사한다. 점수가 3분 이하인 자는 가동을 대신 가두거나, 혹은 본인을 매질한다. 학습의 성과는 교관의 전최(殿最, 성과 평가) 때 근거로 삼는다.

▶ 禮典 中 > 獎勸 > 繢錄 > [學習可當醫女]

○外方醫生，教授·訓導兼掌教訓，觀察使考講，有醫方精通人，則戶內完護，頑不通曉者，充軍，不能檢舉守令，及不用心教訓教授·訓導，憑考褒貶。其所讀醫書鄉藥方·和劑方·得效方·鄉藥集成方·救急方，觀察使隨宜印出分給。

○외방의생의 교육은 교수나 훈도가 겸직하여 주관한다. 관찰사의 고강 결과, 의서에 정통했다면 그 집을 완호(完護, 요역을 모두 면제함)해주고, 미련하여 이해하지 못한 자는 충군(充軍, 군역으로 충원함)한다. 의생 교육을 단속하지 않은 수령과 교육에 신경 쓰지 않은 교수·훈도는 포폄에 반영한다. 읽어야 하는 의서는 《향약방》·《화제방》·《득효방》·《향약집성방》·《구급방》이며, 관찰사가 적당한 고을에서 찍어서 나눠준다.

▶ 禮典 中 > 獎勸 > 繢錄 > [外方醫生]

○藥夫父子，母定他役，世傳其業。

○약부(藥夫, 약초꾼) 부자(父子)는 다른 역에 배정하지 말고, 본업을 대대로 잇게 한다.

▶ 禮典 中 > 獎勸 > 繢錄 > [藥夫]

○外方醫生中年少聰敏解文字者，京畿廣州·楊州·驪州·坡州各一人，忠淸道忠州淸州公州各一人·洪州二人，全羅道全州·羅州·濟州各二人，慶尙道慶州

三人·尙州安東晉州各二人·星州一人，江原道江陵·原州各一人，黃海道黃州一人·海州二人，永安道安邊一人，平安道安州·定州·義州各一人，五年一次揀擇上送，給保二人，分屬典醫監·惠民署，事知醫員，分授教訓，每節季，本曹堂上及兩醫司提調一同試講所讀書，年終啓達，其中勤業者，本家復戶，或逃亡或惰業者，苦役定體，年終不通居多者，教訓醫員科罪。

○글자를 아는 외방의생 가운데 연소총민(年少聰敏)으로 뽑는 인원수。경기는 광주·여주·파주 각 1인이다。충청도는 충주·청주·공주 각 1인과 홍주 2인이다。전라도는 전주·나주·제주 각 2인이다。경상도는 경주 3인, 상주·안동·진주 각 2인, 성주 1인이다。강원도는 강릉·원주 각 1인이다。황해도는 황주 1인, 해주 2인이다。영안도(함경도)는 안변 1인이다。평안도는 안주·정주·의주 각 1인이다。연소총민은 5년에 1번 선발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며, 보(保)는 2인을 지급한다。전의감·혜민서에 나누어 배정한 후 실무에 밝은 의원이 나누어 가르친다。3·6·9·12월에 예조 당상관이 양의사(兩醫司) 제조과 함께 읽은 책에 대한 풀이를 시험하고, 그 점수를 연말에 문서로 보고한다。부지런히 공부한 이는 본가를 복호(復戶, 잡세 면제)한다。혹 도망치거나 공부를 게을리한 자는 원래의 역(役)으로 한다。연말까지도 불통(不通) 등급을 많이 받은 자는 가르치는 의원에게도 벌을 준다。

▶ 禮典 中 > 嘉獎 > 繢錄 > [外方醫生年少聰敏]

○司譯院·觀象監·典醫監·惠民署·律學·算學，兩都目取才，而定爲六朔仕日。掌樂院樂生樂工·圖畫署畫員·漢吏學官，四都目取才，而定用三朔，只覈實仕。講畫·仕日並同者，考其講畫純·不純，以次付祿，講牲又同者，考其前等祿職高下，遞相陞降付祿。○六朔內通計仕，滿百日，許試，在喪終制者，不拘仕日，卽令許赴取才。嘉靖癸丑承傳

○사역원·관상감·전의감·혜민서·율학·산학은 양도목(兩都目)으로 취재하므로 6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고,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도화서·화원·한학·이학은 4도목으로 취재하므로 3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되, 실제 근무 일수만을 따진다。고강 점수와 근무 일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강생(講牲)

의 성적을 살펴서 그 순서대로 녹직을 주고, 고강 추첨도 같은 경우에는 앞 분기 녹직의 고하를 살펴서 서로 교대로 올리거나 내려서 녹직을 준다. ○6개월 안에 근무 일수를 통틀어 100일 이상이면 취재시험을 허락해야 한다. 상 중에 있는 사람은 탈상 후 즉시 취재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 계축년(1553, 명종 8)에 받은 전교

▶ 禮典 中 > 獎勸 > 受敎輯錄 > [雜學都目取才]

○醫司春秋取才 · 課試時, 諸書內, 以素問定爲主書, 一切臨講. ○銅人經 · 纂圖, 自願代講素問者聽. 素問背講者, 別給倍畫, 等畫者, 先計.嘉靖丁未承傳

○각 의사(醫司)에서 봄·가을 취재시험에서 성과를 시험할 때 각 서적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는다. 모두 책을 보면서 풀이한다. ○《동인경》·《찬도》 대신 《소문》 고강을 원할 때는 들어준다. 책을 보지 않고 《소문》을 풀이하는 이는 특별히 2배의 점수를 주며, 점수가 같으면 우선권을 준다. 가정 정미년(1547, 명종 2)에 받은 전교

▶ 禮典 中 > 獎勸 > 受敎輯錄 > [素問定爲主書]

○天文 · 醫藥 · 漢學習讀官, 嚴立科程, 懈慢者黜之, 或用於殿最, 精通者 · 成效者, 遷之東班. 曾爲習讀官者, 許入于醫書權知二十員內, 應試十員, 天文肄習官十員內, 應試五員. 曾爲肄習官者, 待肄習官五人之闕, 許入. 曾爲權知者, 待權知十員之闕, 許入. 嘉靖□□承傳

○천문 · 의서 · 한학 습독관은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태만한 자는 쫓아내고, 혹은 전최(殿最, 성과 평가)에서 정통한 자와 성과를 이룬 자는 문관으로 임명한다. 습독관을 지냈던 자는 의서 권지(權知)의 응시인원 20명 중 10명을 배정하고, 천문 이습관(肄習官)의 응시인원 10명 중 5명을 배정할 수 있다. 이습관을 지냈던 자는 이습관의 우선 배정 5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권지를 지냈던 자는 권지의 우선 배정 10명 중 빈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가정 □□년에 받은 전교

▶ 禮典 中 > 獎勸 > 受敎輯錄 > [習讀官嚴立科程]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獎勸. … ○醫書習讀官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依大明律不應爲, 輕, 則笞四十, 重, 則杖八十. 習讀官及教授內生員·進士, 以其仕日數准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任本廳, 考褒貶, 東西班牙隨闕敍用. ○醫學生徒·女醫, 提調每月考講, 女醫分數多者, 三人給料三朔, 不通多者, 生徒, 則定其司書吏, 女醫, 則其司茶母以罰之, 能通然後, 許還本業. 諸邑醫生, 觀察使巡行考講勸懲. … 生員·進士准圓點, 與醫學習讀官同. … ○醫員, 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成效最多者一人, 歲杪啓聞敍用. 產婆, 則給料.

장권. …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종에 따라 별을 준다. 대명률의 <불응위不應爲>에 의해, 가벼우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무거우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포폄 결과에 따라 문관·무관에 빙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별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로 정하여 별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생원과 진사가 원점(圓點)을 찍는 것은 의학습독관과 같다. …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抄, 6·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產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禮典 > 奬勸 > [大典]

[續錄] ○內醫院習讀官曾時讀，提調每朔三度考，分數通者，遞兒職陞降除授，所業精通者，啓授顯職。○年少聰敏學習可當醫女揀擇，教官分授，逐日書徒，每節季，本曹及提調一同每一書三處講問，年終分數書啓。其中優等十分以上者，或京外中從自願奉足一名加給，或賜物，三分以下者，或囚家僮，或行楚，其學習能否，教官殿最時，憑考。○外方醫生，教授·訓導兼掌教訓，觀察使考講，有醫方精通人，則戶內完護，頑不通曉者，充軍，不能檢舉守令及不用心教訓教授·訓導，憑考褒貶。其所讀醫書鄉藥方·和劑方·得效方·鄉藥集成方·救急方，觀察使隨宜印出分給。○藥夫父子，母定他役，世傳其業。… ○外方醫生中年少聰敏解文字者，京畿廣州·楊州·驪州·坡州各一人，忠清道忠州清州公州各一人·洪州二人，全羅道全州·羅州·濟州各二人，慶尚道慶州三人·尙州安東晉州各二人·星州一人，江原道江陵·原州各一人，黃海道黃州一人·海州二人，永安道安邊一人，平安道安州·定州·義州各一人，五年一次揀擇上送，給保二人，分屬典醫監·惠民署，事知醫員，分教授訓，每節季，本曹堂上及兩醫司提調，一同試講所讀書，年終啓達，其中勤業者，本家復戶，或逃亡或惰業者，苦役定體，年終不通居多者，教訓醫員科罪依大明律不應爲，杖八十。…

[대전속록] ○내의원 습독관의 증시독강(曾時讀講)은 내의원 제조가 매달 3회 고강하고, 점수에 따라 전체를 따진 후 녹을 주는 체아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제수한다. 본업에 정통한 이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직(顯職, 주요 관직)을 제수한다. ○연소총민(年少聰敏)이나 학습에 적합한 의녀는 선발 후 교관을 나누어 가르치면서 날마다 서도(書徒, 독서 기록)하게 한다. 3·6·9·12월에는 예조에서 해당 제조와 함께 1책마다 3곳의 뜻을 묻고, 연말에 그 점수를 문서로 아뢴다. 그중에 우수하여 점수가 10분(分) 이상인 사람에게는 도성이나 지방 중본인이 원하는 봉족(奉足) 1명을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물품을 하사한다. 점수가 3분 이하인 자는 가동을 대신 가두거나, 혹은 본인을 매질한다. 학습의 성과는 교관의 전최(殿最, 성과 평가) 때 근거로 삼는다. ○외방의생의 교육은 교수나 훈도가 겸직하여 주관한다. 관찰사의 고강 결과, 의서에 정통했다면 그 집을 완호(完護, 요역을 모두 면제함)해주고, 미련하여 이해하지 못한 자는 충군(充軍, 군역으로 충원함)한다. 의생 교육을 단속하지 않은 수령과 및 교육에

신경 쓰지 않은 교수·훈도는 포폄에 반영한다. 읽어야 하는 의서는 《향약방》·《화제방》·《득효방》·《향약집성방》·《구급방》이며, 관찰사가 적당한 고을에서 찍어서 나눠준다. … ○글자를 아는 외방의생 가운데 연소총민(年少聰敏)으로 뽑은 인원수. 경기는 광주·여주·파주 각 1인이다. 충청도는 충주·청주·공주 각 1인과 홍주 2인이다. 전라도는 전주·나주·제주 각 2인이다. 경상도는 경주 3인, 상주·안동·진주 각 2인, 성주 1인이다. 강원도는 강릉·원주 각 1인이다. 황해도는 황주 1인, 해주 2인이다. 영안도(함경도)는 안변 1인이다. 평안도는 안주·정주·의주 각 1인이다. 연소총민은 5년에 1번 선발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며, 보(保)는 2인을 지급한다. 전의감·혜민서에 나누어 배정한 후 실무에 밝은 의원이 나누어 가르친다. 3·6·9·12월에 예조 당상관이 양의사(兩醫司) 제조과 함께 읽은 책에 대한 풀이를 시험하고, 그 점수를 연말에 문서로 보고한다. 부지런히 공부한 이는 본가를 복호(復戶, 잡세 면제)한다. 혹 도망치거나 공부를 게을리한 자는 원래의 역(役)으로 한다. 연말까지도 불통(不通) 등급을 많이 받은 자는 가르치는 의원에게도 벌을 준다. 《대명률》의 <불응위不應爲>에 의하여 장령 80대에 처한다 …

▶ 禮典 > 奨勸 > 《續錄》

[後續錄] … ○天文·醫術曉解人員，或副提調或兼教授，隨品稱號，每月六次，各其司常仕教誨。醫學，則兩醫司中年少聰敏人精擇，各別教訓，其中最熟者，勿論庶孽，內醫院許屬，或除醫學教授，使之激勵。醫女年少教誨可當十五人揀擇，令教授·訓導嚴加訓誨，顯有成效者，內醫院入屬，令本院官員醫術精通者，別定教誨，講所讀方書，不能曉解者，竝訓官論罰。…

[대전후속록] … ○천문·의술에 정통한 관원은 해당 관청의 부제조나 교수로 겸직하게 하여 품계에 따라 호칭을 부르고, 매달 6차례 각 관청에서 종일 근무하면서 가르치게 하였다. 의학은 양의사(兩醫司) 관원 가운데 연소총민(年少聰敏)을 세심하게 뽑아서 각별하게 가르친 후 그중 가장 뛰어난 이에게는(서얼도 무관하다) 내의원에 배정할 수 있으며, 혹은 의학교수로 임명하여 격려하기도 한다. 의녀 중에 나이가 어리고 가르치기 적당한 15명을 선발하고 교수와 훈도에게 엄격하게 가르치게 하여 현저하게 성과가 있는 이는 내의원에 배정한

후 의술에 정통한 내의원 관원에게 개별적으로 가르치게 한다. 읽은 의서를 고강할 때 깨우치지 못한 자는 담당 교육관까지 모두 벌을 준다. …

▶ 禮典 > 奬勸 > 《後續錄》

○司譯院·觀象監·典醫監·惠民署·律學·算學，兩都目取才，而定爲六朔仕日。掌樂院樂生樂工·圖畫署畫員·漢吏學官四都目取才，而定用三朔。只覈實仕。講畫·仕日並同者，考其講畫純不純以次付祿。講柱又同者，考前等祿職高下，遞相陞降付祿。… ○銅人經·纂圖，自願代講素問者聽。素問背講者，別給倍畫，等畫者，先計嘉靖丁未承傳。… ○天文·醫藥·漢學習讀官，嚴立科程，怠慢者，黜之，或用於殿最，精通者·成效者，遷之東班。曾爲講讀官者，許入于醫書權知二十員內應試十員·天文肄習官十員內應試五員。曾爲肄習官者，待肄習官五人之闕，許入。曾爲權知者，待權知十員之闕，許入嘉靖承傳。… ○醫司春秋取才·課試時，諸書內，以素問定爲主書，一切臨講。

○사역원·관상감·전의감·혜민서·율학·산학은 양도목(兩都目)으로 취재하므로 6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고,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도화서·화원·한학·이학은 4도목으로 취재하므로 3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정하되, 실제 근무 일수만을 따진다. 고강 점수와 근무 일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강생(講柱)의 성적을 살펴서 그 순서대로 녹직을 주고, 고강 추첨도 같은 경우에는 앞 분기 녹직의 고하를 살펴서 서로 교대로 올리거나 내려서 녹직을 준다. … ○《동인경》·《찬도》대신《소문》고강을 원할 때는 들어준다. 책을 보지 않고《소문》을 풀이하는 이는 특별히 2배의 점수를 주며, 점수가 같으면 우선권을 준다. 가정 정미년(1547, 명종 2)에 받은 전교 … ○천문·의서·한학 습독관은 교육 과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태만한 자는 쫓아내고, 혹은 전최(殿最, 성과 평가)에서 정통한 자와 성과를 이룬 자는 문관으로 임명한다. 습독관을 지냈던 자는 의서 권지(權知)의 응시인원 20명 중 10명을 배정하고, 천문 이습관(肄習官)의 응시 인원 10명 중 5명을 배정할 수 있다. 이습관을 지냈던 자는 이습관의 우선 배정 5명 중 빙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권지를 지냈던 자는 권지의 우선 배정 10명 중 빙자리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다. 가정 □□년에 받은 전교 … ○각 의사(醫司)에서 봄·가을 취재시험에서 성과를 시험할 때 각 서적

가운데 《소문》을 중요한 책으로 삼는다. 모두 책을 보면서 풀이한다.

▶ 禮典 > 奬勸 > 《受敎輯錄》

속대전(續大典) 1746년

○兩醫司, 參外前銜 · 生徒中, 擇其年少聰敏者, 每年四孟朔, 任官, 以本業書同取才, 而銅人經 · 纂圖中, 自願代講他書者, 聽. 素問背講者, 紿倍畫, 等畫者, 先計. 考講勸懲. 優等者, 授遞兒職, 三四次居首者, 陞付參上職, 其次, 差諸道審藥, 其次, 差兩都月令, 及統營救療官, 其次, 差內局 · 刑曹 · 司憲府月令.

○양의사(兩醫司)의 참하관인 전함(前銜)과 생도 중에서 연소총민(年少聰敏)을 선발하여 1·4·7·10월에 관원에 임명한 후 본업의 책을 취재시험 때와 같으나 《동인경》과 《찬도》중에서 하되, 다른 책으로 대신 고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소문》을 보지 않고 풀이한 자에게는 점수를 배로 주며, 동점이 있을 때 우선권을 준다 고강하여 권면하거나 징계한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는 체아직에 제수한다. 3~4차례 1위를 차지한 이는 참상직(參上職)으로 승진시켜 준다. 그다음 사람은 각 도의 심약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은 양도(兩都) 월령의 및 통영 구료관에 임명하며, 그다음은 내의원 · 형조 · 사헌부 월령의에 임명한다.

▶ 禮典 > 奬勸 > [兩醫司考講]

○內局女醫 十二人, 每朔二 · 六日 初二 · 十二 · 二十二日, 初六 · 十六 · 二十六日, 本局入直官員, 以本業書 銅人經, 或纂圖. 考講, 通計一朔, 畫滿六分以上, 紿料. 又本局提調, 每朔一次, 以本業 或診脈, 或點穴 考試獎勸. 居首者, 紿綿布二匹, 其次, 一匹, 自戶曹題給.

○내의원 여의 12인은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 2·12·22일과 6·16·26일 내의원에 입직하는 관원에게 본업의 책으로 《동인경》이나 《찬도》 고강 받은 후 1개월을 합하여 점수가 6분(分) 이상이면 요(料)를 지급받는다. 또 내의원 제조가 매달 1차례씩 본업을 진맥이나 접혈 시험한 후 그에 따라 장려한다. 1위는 면포 2필, 2위는 면포 1필이다. 호조에서 제급한다.

▶ 禮典 > 奬勸 > [內局女醫]

○惠民署女醫 七十人 中, 擇其年少聰慧者, 教誨醫書 銅人經, 篆圖, 每朔三次 初十, 二十, 三十日, 考講 一二次, 則三任官會同, 第三次, 提調合講, 合計畫多者, 論賞. 優等四人, 報戶曹, 三人給料, 一人給布. 或內局女醫有闕, 則陞補.

○혜민서 여의 70인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여 의서를 《동인경》과 《찬도》 가르치고, 매달 3차례 10·20·30일 고강하여 1차와 2차 고강에서는 관원 3명이 함께 모여 시행하고, 3차 고강에서는 혜민서 제조까지 합하여 고강한다 합계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는 포상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4인을 호조에 보고하여 3인에게는 요(料)를 주고, 1인에게는 포(布)를 준다. 간혹 내의원 의녀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승급하여 보충한다.

▶ 禮典 > 獎勸 > [惠民署女醫]

○每年都目時, 寫字官·兩醫司·觀象監·圖畫署·司譯院, 久勤人員, 移文吏曹遷轉.

○해마다 도목정사 때 사자관이나 양의사(兩醫司)·관상감·도화서·사역원에서 오래 근무한 관원은 이조에 공문을 보내어 천전(遷轉, 영전榮轉)한다.

▶ 禮典 > 獎勸 > [久勤人員]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諸學雜技, 自本司勸懲. 兩醫司, 參外前御·生徒中, 擇年少聰敏者, 每四孟朔, 任官, 以本業書, 考講, 優等者, 付遞兒職. [續] … ○內局女醫, 差備待令外, 十二人, 每二·六日([續] [補] ○初二·十二·二十二, 初六·十六·二十六日) 本局入直官, 以本業書, 考講, 通計一朔, 畫滿六分以上, 給料. 提調, 每朔一次, 以本業考試, 二人, 賞布. ○惠民署女醫中, 擇年少聰慧者, 每朔三次(初十·二十·三十日) 考講醫書, 一二次則三任官會同, 第三次, 提調合講, 合計畫多者四人, 賞料賞布, 或內局女醫有闕, 則陞補. [續] …

○각 학(學)과 잡기(雜技)는 소속 아문에서 포상과 징계를 거행한다. 양의사(兩醫司)의 참하관인 전함(前衛)과 생도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여 1·4·7·10월에 관직에 임명한다. 본업으로 읽어야 할 서적을 고강한 후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는 채아직을 제수한다. [속대전] … ○내의원 의녀는 차비대령 외에 12명인데,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에([속대전] [보충] ○2·12·22일과 6·16·26일) 내의원에 출근한 관원이 본업의 책을 고강하고, 1개월간 통계를 내서 점수가 6분(分) 이상이면 요(料)를 지급한다. 내의원 제조는 매달 1차례 본업을 시험하고 2인에게 삼베를 포상한다. ○혜민서 의녀 중에 짧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한 후 매달 3차례(10·20·30일) 의서를 고강한다. 1-2자는 세 명의 임관(任官)이 모여서 하고 3자는 제조와 합동으로 고강한 후 총 점수가 높은 4명은 상으로 요(料)와 포(布)를 포상한다. 간혹 내의원 의녀에 결원이 있으면 승급하여 보충한다. [속대전] …

▶ 禮典 > 嘉勸 > [諸學雜技]

○諸學. 天文·地理·命課學·漢·清·蒙·倭學·醫學·律學·寫字官·畫學·籌學. [經]
[補] … ○兩醫司取才, 付祿有差, 其次, 差諸道審藥, 其次, 江華月令, 及統營救療官. [續] [補]
… ○內醫, 每褒貶時, 三提調與本院堂上官, 講本業書, 四十歲以下, 背誦, 以上, 臨文, 次第付錄.
[補]

○각 학(學). 천문·지리·명과학·한학·청학·동학·왜학·의학·율학·사자관·화학·주학이다. [경국대전] [보충] … ○양의사의 취재시험 후 1등급은 녹직을 주어 임명하고, 그다음은 각 도의 심약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은 양도(兩都)의 월령의나 통영의 구료관으로 임명한다. [속대전] [보충] … ○내의는 포폄 때마다 세 제조와 본원의 당상관 앞에서 본업에서 읽어야 하는 책을 고강한다. 40세 이하는 책을 보지 않고 외우고, 40세 이상은 책을 펴놓고 풀이한 후 점수의 순서에 따라 녹직을 준다. [보충]

▶ 禮典 > 嘉勸 > [諸學陞降付祿]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醫書習讀官, 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 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習讀官及教授內生員·進士, 以其仕日數準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西班牙隨闕敍用.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증에 따라 벌을 준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 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포폄 결과에 따라 문관·무관에 빙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 禮典 > 奬勸 > [醫書習讀官]

○醫學生徒·女醫, 提調每月考講, 女醫分數多者三人, 紿料三朔, 不通多者, 生徒, 則定其司書吏, 女醫, 則其司茶母以罰之, 能通然後, 許還本業. 諸邑醫生, 觀察使巡行考講, 勸懲.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별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로 정하여 별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禮典 > 奬勸 > [醫學生徒·女醫]

○醫員, 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 成效最多者一人, 歲抄啓聞敍用 產婆, 則給料.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抄, 6·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 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產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禮典 > 奬勸 > [醫員]

○兩醫司參外前銜·生徒中, 擇其年少聰敏者, 每年四孟朔, 任官, 以本業書同取才, 而銅人經·纂圖中自願, 代講他書者, 聽. 素問背講者, 紿倍畫, 等畫者, 先計 考講勸懲. 優等者, 授遞兒職, 三四次居首者, 陞付參上職, 其次, 差諸道審藥, 其次, 差兩都月令及統營救療官, 其次, 差內局·刑曹·司憲府月令.

○양의사(兩醫司)의 참하관인 전함(前銜)과 생도 중에서 연소총민(年少聰敏)을 선발하여 1·4·7·10월에 관원에 임명한 후 본업의 책을 취재시험 때와 같으나

《동인경》과 《찬도》 중에서 하되, 다른 책으로 대신 고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소문》을 보지 않고 풀이한 자에게는 점수를 배로 주며, 동점이 있을 때 우선권을 준다 고강하여 권면하거나 징계한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는 체아직에 제수한다. 3~4차례 1위를 차지한 이는 참상직(參上職)으로 승진시켜 준다. 그다음 사람은 각 도의 심약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은 양도(兩都) 월령의 및 통영 구료관에 임명하며, 그다음은 내의원·형조·사헌부 월령의에 임명한다.

▶ 禮典 > 奬勸 > [兩醫司考講]

○內局女醫 十二人，每朔二·六日 初二·十二·二十二日，初六·十六·二十六日，本局入直官員，以本業書 銅人經，或纂圖 考講，通計一朔，畫滿六分以上，給料。又本局提調，每朔一次，以本業 或診脈，或點穴 考試獎勸。居首者，給綿布二匹，其次，一匹，自戶曹題給。

○내의원 여의 12인 는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 2·12·22일과 6·16·26일 내의원에 입직하는 관원에게 본업의 책으로 《동인경》이나 《찬도》 고강 받은 후 1개월을 합하여 점수가 6분(分) 이상이면 요(料)를 지급받는다. 또 내의원 제조가 매달 1차례씩 본업을 진맥이나 점혈 시험한 후 그에 따라 장려한다. 1위는 면포 2필, 2위는 면포 1필이다. 호조에서 제급한다.

▶ 禮典 > 奬勸) > [內局女醫]

○惠民署女醫 七十人 中，擇其年少聰慧者，教誨醫書 銅人經，纂圖，每朔三次 初十，二十，三十日，考講 一二次，則三任官會同，第三次，提調合講，合計畫多者，論賞 優等四人，報戶曹，三人給料，一人給布。或內局女醫有闕，則陞補。

○혜민서 여의 70인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여 의서를 《동인경》과 《찬도》 가르치고, 매달 3차례 10·20·30일 고강하여 1차와 2차 고강에서는 관원 3명이 함께 모여 시행하고, 3차 고강에서는 혜민서 제조까지 합하여 고강한다 합계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는 포상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4인을 호조에 보고하여 3인에게는 요(料)를 주고, 1인에게는 포(布)를 준다 간혹 내의원 의녀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승급하여 보충한다.

▶ 禮典 > 奬勸 > [惠民署女醫]

○每年都目時，寫字官·兩醫司·觀象監·圖畫署·司譯院久勤人員，移文吏曹遷轉。

○해마다 도목정사 때 사자관이나 양의사(兩醫司)·관상감·도화서·사역원에서 오래 근무한 관원은 이조에 공문을 보내어 천전(遷轉, 영전榮轉)한다.

▶ 禮典 > 嘉勸 > [久勤人員]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醫書習讀官，所讀諸書，錄日課，本曹同提調考講，能通諸書者，啓授顯官，兼差本職，其懶慢者，隨其輕重罪之。習讀官及教授內生員·進士，以其仕日數準圓點之數，許赴文科館試，成才人屬散者，常仕本廳，考褒貶，東·西班牙隨闕敍用。

○의서 습독관은 읽은 책들을 일과에 기록해야 한다.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한 후 여러 책에 능통한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현관(顯官, 주요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직을 겸임하게 한다. 나태한 자는 경증에 따라 벌을 준다. 습독관과 교수 중 생원·진사 입격자는 근무 일수를 원점(圓點, 성균관 기숙 표시)의 수로 간주하여 문과의 관시(館試, 성균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중 산직(散職, 실제 직임이 없음) 상태인 자는 본청으로 항상 출근하게 하고, 평생 결과에 따라 문관·무관에 빙자리가 생기는 대로 임용한다.

▶ 禮典 > 嘉勸 > [醫書習讀官]

○醫學生徒·女醫，提調每月考講，女醫分數多者三人，給料三朔，不通多者，生徒，則定其司書吏，女醫，則其司茶母以罰之，能通然後，許還本業。諸邑醫生，觀察使巡行考講，勸懲。

○의학 생도와 여의는 제조가 달마다 고강한다. 여의 중 점수를 많이 받은 자 3인에게는 3개월 동안 요(料, 수당)를 지급한다. 불통을 많이 받은 경우, 생도는 해당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벌을 주고, 여의는 해당 관청의 다모로 정하여 벌을 준다. 다시 능통한 뒤에는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 각 고을의 의생은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한 후 권장하거나 징계한다.

▶ 禮典 > 嘉勸 > [醫學生徒女醫]

○醫員, 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 成效最多者一人, 歲抄啓聞敍用. 產婆, 則給料.

○의원 중, 의서에 해박하지 못하더라도 창종(瘡腫)이나 악질(惡疾)을 잘 치료하여 가장 많은 효험을 본 한 사람은 세초(歲抄, 6·12월 도목정사 때 명단을 작성함)하여 주상에게 아뢴 후 임용한다. 산파(產婆)에게는 요(料)를 지급한다.

▶ 禮典 > 奬勸 > [醫員]

○兩醫司參外前銜 · 生徒中, 擇其年少聰敏者, 每年四孟朔, 任官, 以本業書 同取才, 而銅人經 · 纂圖中自願, 代講他書者聽. 素問背講者, 紿倍畫, 等畫者, 先計. 考講勸懲. 優等者, 授遞兒職, 三四次居首者, 陞付參上職, 其次, 差諸道審藥, 其次, 差兩都月令及統營救療官, 其次, 差內局 · 刑曹 · 司憲府月令.

○양의사(兩醫司)의 참하관인 전함(前銜)과 생도 중에서 연소총민(年少聰敏)을 선발하여 1·4·7·10월에 관원에 임명한 후 본업의 책을 취재시험 때와 같으나 《동인경》과 《찬도》중에서 하되, 다른 책으로 대신 고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 《소문》을 보지 않고 풀이한 자에게는 점수를 배로 주며, 동점이 있을 때 우선권을 준다. 고강하여 권면하거나 징계한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는 체아직에 제수한다. 3~4차례 1위를 차지한 이는 참상직(參上職)으로 승진시켜 준다. 그다음 사람은 각 도의 심약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은 양도(兩都) 월령의 및 통영 구료관에 임명하며, 그다음은 내의원 · 형조 · 사헌부 월령의에 임명한다.

▶ 禮典 > 奬勸 > [兩醫司考講]

○內局女醫 十二人, 每朔二 · 六日 初二 · 十二 · 二十二日, 初六 · 十六 · 二十六日, 本局入直官員, 以本業書 銅人經, 或纂圖 考講, 通計一朔, 畫滿六分以上, 紿料. 又本局提調, 每朔一次, 以本業 或診脈, 或點穴 考試獎勸. 居首者, 紿綿布二匹, 其次, 一匹, 自戶曹題給.

○내의원 여의 12인 는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 2·12·22일과 6·16·26일 내의원에 입직하는 관원에게 본업의 책으로 《동인경》이나 《찬도》고강 받은 후 1개월을 합하여 점수가 6분(分) 이상이면 요(料)를 지급받는다. 또 내의원 제조가 매달 1차례씩 본업을 진맥이나 점혈 시험한 후 그에 따라 장려한다. 1위는 면포

2필, 2위는 면포 1필이다. 호조에서 제급한다.

▶ 禮典 > 嘉勸 > [內局女醫]

○惠民署女醫 七十人 中, 擇其年少聰慧者, 教誨醫書 銅人經, 簿圖, 每朔三次 初十, 二十, 三十日, 考講 一二次, 則三任官會同, 第三次, 提調合講, 合計畫多者, 論賞. 優等四人, 報戶曹, 三人給料, 一人給布 或內局女醫有闕, 則陞補.

○혜민서 여의 70인 중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여 의서를 《동인경》과 《찬도》 가르치고, 매달 3차례 10·20·30일 고강하여 1차와 2차 고강에서는 관원 3명이 함께 모여 시행하고, 3차 고강에서는 혜민서 제조까지 합하여 고강한다 합계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는 포상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4인을 호조에 보고하여 3인에게는 요(料)를 주고, 1인에게는 포(布)를 준다 간혹 내의원 의녀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승급하여 보충한다.

▶ 禮典 > 嘉勸 > [惠民署女醫]

○每年都目時, 寫字官 · 兩醫司 · 觀象監 · 圖畫署 · 司譯院久勤人員, 移文吏曹遷轉.

○해마다 도목정사 때 사자관이나 양의사(兩醫司) · 관상감 · 도화서 · 사역원에 서 오래 근무한 관원은 이조에 공문을 보내어 천전(遷轉, 영전榮轉)한다.

▶ 禮典 > 嘉勸 > [久勤人員]

13. 반빙(頒冰)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頒冰] 每歲季夏, 頒冰于諸司 · 宗親, 及文武堂上官 時祭, 又給 · 內侍府堂上官 · 七十歲以上閑散堂上官. 活人署病人 · 義禁府典獄署囚人, 亦給.

[반빙] 매년 6월에 각 관청 · 종친 · 문무관 중 당상관 시제 때도 준다 · 내시부의 당상관 · 70세 이상 중 한산(閑散, 실직이 없음)인 당상관에게 얼음을 하사한다. 활인서의 환자와 의금부 · 전옥서의 죄수에게도 준다.

▶ 禮典 > 頒氷 > [每歲季夏頒氷…]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頒氷] ○每歲季夏, 頒氷于諸司 · 宗親, 及文武堂上官 時祭, 又給 · 內侍府堂上官 · 七十歲以上閑散堂上官. 活人署病人 · 義禁府典獄署囚人, 亦給.

[반빙] 매년 6월에 각 관청 · 종친 · 문무관 중 당상관 시제 때도 준다 · 내시부의 당상관 · 70세 이상 중 한산(閑散, 실직이 없음)인 당상관에게 얼음을 하사한다. 활인서의 환자와 의금부 · 전옥서의 죄수에게도 준다.

▶ 禮典 中 > 頒氷 > [大典] > [每歲季夏頒氷]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頒氷. ○每歲季夏, 頒氷于諸司 · 宗親及文武堂上官 時祭, 又給 · 內侍府堂上官 · 七十歲以上閑散堂上官. 活人署病人 · 義禁府典獄署囚人, 亦給.

반빙. ○매년 6월에 각 관청 · 종친 · 문무관 중 당상관 시제 때도 준다 · 내시부의 당상관 · 70세 이상 중 한산(閑散, 실직이 없음)인 당상관에게 얼음을 하사한다. 활인서의 환자와 의금부 · 전옥서의 죄수에게도 준다.

▶ 禮典 > 頒氷 > [大典]

속대전(續大典) 1746년

○宗親 · 文武正二品以上, 及諸上司頒氷, 竝定期限. 備邊司 · 承政院 · 弘文館 · 侍講院 · 翱衛司 · 春秋館 · 兵曹 · 內醫院 · 養賢庫, 則自五月望後至七月望前止, 宗親 · 東西班牙正二品以上 · 六承旨 · 三司長官 · 六曹 · 諸上司, 則自六月初一日至晦日止.

○종친 · 문무관 중 정2품 이상 · 각 상사(上司)에 얼음을 하사하는 일은 모두 기간을 한정한다. 비변사 · 승정원 · 흥문관 · 시강원 · 익위사 · 춘추관 · 병조 · 내의원 · 양현고는 5월 보름부터 7월 보름 전까지이고, 종친 · 문무관 중 2품 이상의 관원 · 6승지 · 삼

사(三司)의 우두머리·육조·각 상사(上司)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 禮典 > 頒冰 > [定朔限]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備邊司·承政院·弘文館·侍講院·翊衛司·春秋館·兵曹·內醫院·養賢庫, 自五月望後止七月望前, 六曹, 諸上司, 宗親, 東西班牙正二以上, 六承旨, 三司長官, 奎章閣提學·直學·直閣·待教·時原任, 自六月一日止晦日. [續]
[增] ○大典, 有頒冰于堂上官, 而時祭又給, 活人署病人, 禁府·典獄囚人, 亦給之法. [補]

… ○비변사·승정원·홍문관·시강원·의위사·춘추관·병조·내의원·양현고는 5월 보름부터 7월 보름 전까지이고, 종친·문무관 중 2품 이상의 관원·6승지·삼사(三司)의 우두머리·육조·각 상사(上司)는 6월 1일부터 30일 까지이다. [속대전] [추가] ○《경국대전》에는 ‘당상관은 얼음을 하사하고 나서 시제(時祭)에도 지급하며, 활인서의 환자나 의금부·전옥서의 죄수에게도 지급 한다.’라는 법령이 있다. [보충]

▶ 禮典 > 雜令 > [頒冰]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頒冰] [原] 每歲季夏, 頒冰于諸司·宗親及文武堂上官 時祭, 又給 · 內侍府堂上官 · 七十歲以上閒散堂上官. 活人署病人 · 義禁府典獄署囚人, 亦給.

[번역] [경국대전] 매년 6월에 각 관청·종친·문무관 중 당상관 시제 때도 준다 · 내시부의 당상관 · 70세 이상 중 한산(閑散, 실직이 없음)인 당상관에게 얼음을 하사한다. 활인서의 환자와 의금부·전옥서의 죄수에게도 준다.

▶ 禮典 > 頒冰 > [每歲季夏頒冰]

○宗親·文武正二品以上及諸上司頒冰, 竝定朔限. 備邊司·承政院·弘文館·侍講院·翊衛司·春秋館·兵曹·內醫院·養賢庫, 則自五月望後至七月望前止, 宗親·東西班牙正二品以上·六承旨·三司長官·六曹·諸上司, 則自六月初一日至晦日止. [增] 奎章閣提學·直提

學·直閣·待教時原任, 自六月初一日至晦日止.

○종친·문무관 중 정2품 이상·각 상사(上司)에 얼음을 하사하는 일은 모두 기간을 한정한다. 비변사·승정원·홍문관·시강원·의위사·춘추관·병조·내의원·양현고는 5월 보름부터 7월 보름 전까지이고, 종친·문무관 중 2품 이상의 관원·6승지·삼사(三司)의 우두머리·육조·각 상사(上司)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대전통편] 규장각의 전직 및 현직 제학·직제학·직각·대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 禮典 > 頒冰 > [定朔限]

14. 혜휼(惠恤)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등·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 禮典 > 惠恤 > [病人告五部…]

○義禁府·成均館·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病者.

○의금부·성균관·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명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 禮典 > 惠恤 > [義禁府成均館…]

- 病人緊急告醫求救，卽往治療，不卽往治者，許病家陳告治罪。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 禮典 > 惠恤 > [病人緊急告醫…]

- 每月季，本曹考諸醫員治療病人勤慢置簿，憑考殿最。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 禮典 > 惠恤 > [每月季本曹…]

-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請醫司所無之藥，承政院啓給。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禮典 > 惠恤 > [宗親及二品以上…]

- 有溫井處守令，擇定勤謹者，修葺房屋，救護病人。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 禮典 > 惠恤 > [有溫井處守令…]

-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平安道觀察使，定醫生一人，治療一行有疾者，毋或遺棄，如有物故者，埋瘞立標。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명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뜰말을 세워준다.

▶ 禮典 > 惠恤 > [赴京使臣…]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 居齋儒生，如有疾病，自本館言于兩醫司，使之趁卽送醫診視，藥債自本館題

給. 康熙癸亥承傳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값은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禮典 > 惠恤 > 354. [居齋儒生…]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 禮典 下 > 惠恤 > [大典] > [病人告五部]

○義禁府·成均館·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疾者.

○의금부·성균관·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명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 禮典 下 > 惠恤 > [大典] > [月令醫]

○病人緊急告醫求救, 卽往治療, 不卽往治者, 許病家陳告治罪.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 禮典 下 > 惠恤 > [大典] > [告醫求救]

○每月季, 本曹考諸醫員治療病人勤慢置簿, 憑考殿最.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

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 禮典 下 > 惠恤 > [大典] > [考諸醫員治療病人]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 請醫司所無之藥, 承政院啓給.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禮典 下 > 惠恤 > [大典] > [醫司所無之藥]

○有溫井處守令, 擇定勤謹者, 修葺房屋, 救護病人.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 禮典 下 > 惠恤 > [大典] > [溫井處]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 平安道觀察使, 定醫生一人, 治療一行有疾者, 母或遺棄. 如有物故者, 埋瘞立標.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명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끗말을 세워준다.

▶ 禮典 下 > 惠恤 > [大典] > [使臣治療]

○居齋儒生如有疾病, 自本館言于兩醫司, 使之趁即送醫診視, 藥債, 自本館題給. 康熙癸亥承傳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값은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禮典 下 > 惠恤 > 受教輯錄 > [居齋儒生如有疾病]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 1743년

… ○年凶時, 私賑穀一百四十五石以上者, 令該曹稟處. 公賤之納米一百六十石

者, 令該院免賤. 嘉善人納米一百四十五石者, 依事目, 謝恩 · 封贈, 加設同知除授. 納米八十石者, 及折衝人納米五十石者, 依事目, 謝恩 · 封贈, 加設同知除授. 折衝人納米四十石者, 依事目, 封妻, 加設僉知除授. 折衝 · 幼學, 納米三十三石者, 依事目, 除封贈, 加設同知帖成給. 醫員之納米三十二石者, 令本衙門施賞事. … ○今年癟疫, 振古所無, 京外死亡, 殆同兵燹, 全家合歿之類, 勿論士夫 · 下賤, 未得收瘞者, 令京兆 · 諸道, 一一精查, 以示恤典, 而其所受還穀及身布, 一併計減. … 以上, 康熙戊戌賑恤事目.

… ○흉년에 개인적으로 진휼한 곡식이 145섬 이상인 자는 예조에서 주상에게 여쭈어 처리한다. 공천(公賤)이 쌀 156섬을 내면 장례원에서 면천하게 한다. 가선대부가 쌀 145섬을 내면 지침대로 사은 · 봉작 · 증직하고 가설동지증추부사를 제수한다. 가선대부가 쌀 80섬을 내거나 절충장군이 쌀 50섬을 내면 지침대로 사은 · 봉작 · 증직하고 가설동지증추부사를 제수한다. 절충장군이 쌀 40섬을 내면 지침대로 처를 봉작하고 가설첨지를 제수한다. 절충장군이나 유학(幼學)이 쌀 33섬을 내면 지침대로 봉작이나 증직을 제수하고 가설동지첩을 만들어 준다. 의원이 쌀 32섬을 내면 소속 아문에서 시상하게 한다. … ○금년의 여역(癟疫)은 유례없이 치성하여 도성과 지방에서 죽은 자가 전쟁 때와 진배없다. 온 가족이 모두 죽었을 때는 신분의 귀천을 논하지 말고 미처 거두어 묻어주지 못한 자를 한성부나 각 도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파악하게 하여 구휼하는 일을 시행하고, 그 가족에게 부과된 환자곡이나 요역을 모두 감해준다. … 이상은 강희 무술년(1718, 숙종 44)의 진휼사목이다.

▶ 禮典 > 惠恤 > 539~570. [戊戌賑恤事目]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惠恤 …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義禁府 · 成均館 · 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疾者. ○病人緊急告醫求救, 卽往治療, 不卽往治者, 許病家陳告治罪 依大明律違令, 答五十. ○每月季, 本曹考諸醫員治療病人勤慢置簿, 憑考殿最. ○宗親及二品以上官病

革, 請醫司所無之藥, 承政院啓給. ○有溫井處守令, 擇定勤謹者, 修葺房室, 救護病人.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 平安道觀察使定醫生一人, 治療一行有疾者, 每或遺棄. 如有物故者, 埋瘞立標.

혜휼 …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의금부·성균관·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명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대명률의 <위령違令>에 의하여 태형 50대에 처한다.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명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뜻말을 세워준다.

▶ 禮典 > 惠恤 > [大典]

[受教輯錄] ○居齋儒生如有疾病, 自本官言于兩醫司, 使之趁即送醫診視, 藥債, 自本館題給. 康熙癸亥承傳

[수교집록]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값은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禮典 > 惠恤 > 《受教輯錄》

〔新補受敎〕 在前辛丑以後至于乙丑，前後事目中，年歲月日限，各自不同，隨其被災道，或施於一二道。… ○年凶時，私賑穀一百四十五石以上者，令該曹稟處，公賤之納米一百五十六石者，令該院免賤，嘉善人納米一百四十五石者，依事目，謝恩·封贈，加設同知除授，納米八十石者，及折衝人納米五十石者，依事目，謝恩·封贈，加設同知除授，折衝人納米四十石者，依事目，封妻，加設僉知除授，折衝·幼學，納米三十三石者，依事目，除封贈，加設同知帖成給。醫員之納米三十二石者，令本衙門施賞事。… ○今年癟疫，振古所無，京外死亡，殆同兵燹，全家合殮之類，勿論士夫·下賤，未收瘞者，令京兆·諸道，一一精查，以施恤典，而其所受還穀及身布，一併計減。… 以上，康熙戊戌，賑恤事目。

〔신보수교집록〕 ○신축년(1661, 현종 2)부터 정축년(1685, 숙종 11)까지 있었던 조목 중에 거두어 기르는 아이의 나이와 기간에 대한 제한이 각각 달라서 재해 피해가 있는 도에 따라 간혹 한두 도에서만 시행하였다. … ○흉년에 개인적으로 진휼한 곡식이 145섬 이상인 자는 예조에서 주상에게 여쭈어 처리 한다. 공천(公賤)이 쌀 156섬을 내면 장례원에서 면천하게 한다. 가선대부가 쌀 145섬을 내면 지침대로 사은·봉작·증직하고 가설동지증추부사를 제수한다. 가선대부가 쌀 80섬을 내거나 절충장군이 쌀 50섬을 내면 지침대로 사은·봉작·증직하고 가설동지증추부사를 제수한다. 절충장군이 쌀 40섬을 내면 지침대로 처를 봉작하고 가설첨지를 제수한다. 절충장군이나 유학(幼學)이 쌀 33섬을 내면 지침대로 봉작이나 증직을 제수하고 가설동지첩을 만들어 준다. 의원이 쌀 32섬을 내면 소속 아문에서 시상하게 한다. … ○금년의 여역(癟疫)은 유례없이 치성하여 도성과 지방에서 죽은 자가 전쟁 때와 진배없다. 온 가족이 모두 죽었을 때는 신분의 귀천을 논하지 말고 미처 거두어 묻어주지 못한 자를 한성부나 각 도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파악하게 하여 구휼하는 일을 시행하고, 그 가족에게 부과된 환자곡이나 요역을 모두 감해준다. … 이상은 강희 무술년(1718, 숙종 44)의 진휼사목이다.

▶ 禮典 > 惠恤 > 《新補受敎》

속대전(續大典) 1746년

〔惠恤〕 居齋儒生如有疾病，自兩醫司送醫診視，藥物，自本館題給。

〔해풀〕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재를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 禮典 > 惠恤 > [居齋儒生]

○京外癘疫時，全家合沒而未得收瘞者，令戶曹·賑廳及諸道，恤典舉行。

○도성과 지방에 여역이 돌 때 온 가족이 죽어서 묻어줄 사람이 없으면 호조와 진휼청 및 각 도(道)에서 흘전(恤典, 사망자에게 주어지는 전례)을 거행하게 한다.

▶ 禮典 > 惠恤 > [京外癘疫]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京外有病者，官給醫藥. 〔補〕 ○居齋儒生有疾，兩醫司，送醫，本館題給藥物. 〔續〕 ○三軍門，置藥房，救療有病軍卒. 〔增〕 ○禁府·典獄署，各定月令醫，治療罪囚之有疾者. ○病人告五部，卽遣月令治療，貧不能買藥者，官給，報本曹，外則本邑給醫藥. ○病人告醫，不卽往治療者，許病家陳告，治罪. ○巫覡，京則本曹錄籍，分屬活人署，外則本邑錄籍，治療病人. 〔經〕 ○都民癘疫者，活人署報本曹，移文戶曹，給幕材，兩醫司備藥物，使救療官治療. 〔補〕 ○軍士在鎮守處，丁夫雜匠在工役所，有病，該官不請給醫藥救療，笞四十，致死，杖八，行移所司，而不給醫藥，同罪. 〔律〕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請醫司所無之藥，政院啓給。

○도성과 지방의 병자에게는 관청에서 의원과 약재를 지급한다. 〔보충〕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값은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속대전〕 ○삼군문(三軍門)에서는 약방을 설치하여 병든 군졸들을 치료한다. 〔추가〕 ○의금부·성균관·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월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무격(巫覲)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경국대전] ○도성의 백성이 여역에 걸렸을 때 활인서에서 예조로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호조에 공문을 보내어 막사 짓는 재료를 지급하고 양의사(兩醫司)에서는 약재를 구비한 후 구료관(救療官)에게 치료하게 한다. [보충] ○군사가 주둔지에 있을 때 병이 있거나 정부(丁夫)와 각 장인이 공역소에 있을 때 병이 있는데도 해당 관원이 의약의 지급하여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혹 병자가 죽게 되면 장형 8대에 처한다. 해당 관청에 문서를 보냈으나 의약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같은 죄에 처한다. [대명률]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禮典 > 惠恤 > [京外有病者]

○有溫井處, 守令擇定勤謹者, 修葺房屋, 救護病人. [經]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경국대전]

▶ 禮典 > 惠恤 > [溫井]

○行乞兒 · 遺棄兒, 自賑廳收養. … 行乞 · 遺棄兒, 及乳女無衣者, 隨所見, 該廳製給, 疾病則惠民署救療, …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와 버려진 아이는 진휼청에서 거두어 기른다. …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버려진 아이가 옷이 없거나,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옷이 없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대로 진휼청에서 만들어서 지급한다. 혹 병이 들었으면 혜민서에서 치료하게 한다. …

▶ 禮典 > 惠恤 > [行乞遺棄兒]

○癟疫時, 合家全歿, 未得收瘞者, 令戶曹 · 賑廳及諸道, 恤典舉行. [續]

○여역이 돌 때 온 가족이 죽어서 묻어줄 사람이 없으면 호조와 진휼청 및 각 도(道)에서 흘전(恤典, 사망자에게 주어지는 전례)을 거행하게 한다. [속대전]

▶ 禮典 > 惠恤 > [合家全歿]

추관지(秋官志) 1781년

[重補] 遺棄兒收養事目, 今上七年, 特頒字恤典則於京外. … 一, 行乞及遺棄兒中無衣之類, 依賑廳前例, 量宜造給, 乳女或有無衣者, 隨所見, 一體造給, 疾病之類, 自該廳分付惠民署, 使之看審救療. …

[2차 보충]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지침. 정조 17년(1793), 《자휼전칙字恤典則》을 도성과 지방에 특별히 반포하였다. … 하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나 버려진 아이가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진휼청의 전례에 따라 먼저 알아서 옷을 만들어 지급한다.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옷이 없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대로 옷을 만들어 지급한다. 혹시 병이 들었으면 진휼청에서 해민서에 분부하여 돌보고 치료하게 한다. …

▶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賑恤廳事目 > (重補)遺棄兒收養事目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 禮典 > 惠恤 > [病人告五部]

○義禁府·成均館·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病者.

○의금부·성균관·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원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 禮典 > 惠恤 > [月令醫]

○病人緊急告醫求救, 卽往治療, 不卽往治者, 許病家陳告治罪.

○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 禮典 > 惠恤 > [告醫求救]

○ 每月季，本曹考諸醫員治療病人勤慢置簿，憑考殿最。

○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 禮典 > 惠恤 > [考諸醫員治療病人]

○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請醫司所無之藥，承政院啓給。

○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禮典 > 惠恤 > [醫司所無之藥]

○ 有溫井處守令，擇定勤謹者，修葺房屋，救護病人。

○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 禮典 > 惠恤 > [溫井處]

○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平安道觀察使定醫生一人，治療一行有疾者，毋或遺棄，如有物故者，埋瘞立標。

○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인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풋말을 세워준다.

▶ 禮典 > 惠恤 > [使臣治療]

[續] 居齋儒生如有疾病，自兩醫司送醫診視，藥物，自本館題給。

[속대전]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재를 성균관에서 제급(題

給)한다.

▶ 禮典 > 惠恤 > [居齋儒生]

○京·外癟疫時, 全家合沒而未得收瘞者, 令戶曹·賑廳及諸道, 恤典擧行.

○도성과 지방에 여역이 돌 때 온 가족이 죽어서 묻어줄 사람이 없으면 호조와 진휼청 및 각 도(道)에서 훌전(恤典, 사망자에게 주어지는 전례)을 거행하게 한다.

▶ 禮典 > 惠恤 > [京·外癟疫]

[增] 行乞兒·遺棄小兒收養節目, 用字恤典則. 當寧癸卯. … ○行乞兒及遺棄兒及乳女無衣者, 隨所見, 自該廳製給, 疾病, 則使惠民署看審救療. ○該部之慢於收報者·該郎之不勤留養者, 該廳草記論罪. 外則各面里任報本官, 留養等節, 一依京節目. 守令違越者, 道臣狀聞論罪, 或御史摘發, 從重勘罪.

[추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와 벼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에 대한 규정은 《자휼전칙字恤典則》을 사용한다. 당시 계묘년(1783, 정조7) …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벼려진 아이가 웃이 없거나,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웃이 없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대로 진휼청에서 만들어서 지급한다. 혹 병이 들었으면 혜민서에서 치료하게 한다. ○이들을 거두고 보고하는 일에 태만한 오부(五部)의 관원과 데려다 기르는 일에 태만한 해당 낭청은 선혜청에서 문서로 아뢰어 죄를 논한다. 지방에서는 각 면이나 리의 관원이 수령에게 보고하고, 데려다 기르는 등의 절차는 하나같이 도성의 규정대로 시행한다. 규정을 위반한 수령은 관찰사가 문서로 보고하여 죄를 논하고, 간혹 어사에게 적발되면 무거운 쪽으로 죄를 처분하기도 한다.

▶ 禮典 > 惠恤 > [小兒收養節目]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 報本曹. 外, 則本邑給醫藥. ○凡巫覡, 京, 則本曹錄籍, 分屬活人署, 外, 則本邑錄籍, 治療病人.

○환자가 한성의 오부(五部)에 요청하면 즉시 월령의(月令醫, 월 당번 의원)를 보내어 치료하고, 가난하여 약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약재를 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지방은 해당 고을에서 의원과 약재를 준다. ○무격(巫覡)의 경우,

도성에서는 본 예조의 대장에 올려놓고 동·서활인서에 나누어 소속하여 환자를 치료하게 하며,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대장에 올려놓고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 禮典 > 惠恤 > [病人告五部]

○ 義禁府 · 成均館 · 典獄署, 各定月令醫一員, 治療諸生及罪囚之有病者.

○ 의금부 · 성균관 · 전옥서에는 각각 월령의 1원을 정하여 병이 있는 유생이나 죄수들을 치료하게 한다.

▶ 禮典 > 惠恤 > [月令醫]

○ 病人緊急告醫求救, 卽往治療, 不卽往治者, 許病家陳告治罪.

○ 환자가 긴급히 의원에게 치료를 신청하면 의원은 즉시 가서 치료해야 한다. 즉시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하여 죄를 다스릴 수 있다.

▶ 禮典 > 惠恤 > [告醫求救]

○ 每月季, 本曹, 考諸醫員, 治療病人, 勤慢置簿, 憑考殿最.

○ 월말마다 본 예조에서는 환자를 치료한 의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전최(殿最, 성과 평가)한다.

▶ 禮典 > 惠恤 > [考諸醫員治療病人]

○ 宗親及二品以上官病革, 請醫司所無之藥, 承政院啓給.

○ 종친이나 2품 이상의 관원이 위급한 병으로 의약 관청에 없는 약을 요청하면 승정원에서 주상께 보고하여 지급한다.

▶ 禮典 > 惠恤 > [醫司所無之藥]

○ 有溫井處守令, 擇定勤謹者, 修葺房屋, 救護病人.

○ 온천이 있는 곳의 수령은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제해야 한다.

▶ 禮典 > 惠恤 > [溫井處]

○ 赴京使臣及朝廷使臣往來, 平安道觀察使定醫生一人, 治療一行有疾者, 母或

遺棄，如有物故者，埋瘞立標。

○북경에 가는 사신과 명나라 사신이 오고 갈 때 평안도 관찰사는 의생 1인을 선정하여 일행 중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망자가 있으면 묻어 주고 뜰말을 세워준다.

▶ 禮典 > 惠恤 > [使臣治療]

[續] 居齋儒生如有疾病，自兩醫司送醫診視，藥物，自本館題給。

[속대전] 성균관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질병이 생기면 성균관에서 양의사(兩醫司)에게 말하여 즉시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약재를 성균관에서 제급(題給)한다.

▶ 禮典 > 惠恤 > [居齋儒生]

○京·外癘疫時，全家合沒而未得收瘞者，令戶曹·賑廳及諸道，恤典舉行。

○도성과 지방에 여역이 돌 때 온 가족이 죽어서 묻어 줄 사람이 없으면 호조와 진휼청 및 각 도(道)에서 흙전(恤典, 사망자에게 주어지는 전례)을 거행하게 한다.

▶ 禮典 > 惠恤 > [京外癘疫]

[增] 行乞兒·遺棄小兒收養節目，用字恤典則。當寧癸卯。… ○行乞兒及遺棄兒及乳女無衣者，隨所見，自該廳製給，疾病，則使惠民署看審救療。…

[대전통편]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와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에 대한 규정은 《자흘전칙자恤典則》을 사용한다. 당시 계묘년(1783, 정조7)…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버려진 아이가 옷이 없거나,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옷이 없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대로 진휼청에서 만들어서 지급한다. 혹 병이 들었으면 혜민서에서 치료하게 한다.

…

▶ 禮典 > 惠恤 > [小兒收養節目]

15. 선상(選上)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選上]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竝以諸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선상]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禮典 > 選上 > [女妓一百五十人…]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選上]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竝以諸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 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선상]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禮典 下 > 選上 > [大典] > [女妓女醫]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選上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竝以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 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선상.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禮典 > 選上 > [大典]

속대전(續大典) 1746년

- 女醫選上之法, 勿以每三年爲限, 隨其元額有闕, 擇定諸邑.
- 여의를 뽑아 도성으로 보내는 법은 매 3년을 기한으로 삼지 말고, 원래 정원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 禮典 > 選上 > [女醫選上之法]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女醫選上, 勿以三年爲限, 隨闕擇定諸邑. [續] ○內局女醫二十二內, 十稱差備女醫, 惠民署女醫, 亦有定數, 尙衣院針線婢·工曹針線婢, 亦皆有定數, 定於外邑. ○大典法, 女醫, 每三年, 以諸邑婢年少者選上, 成才後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 여의를 뽑아 도성으로 보낸 때 3년을 기한으로 삼지 말고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속대전] ○내의원의 여의는 22명 이내이며, 그중 10명은 차비여의이다. 혜민서의 여의도 정해진 인원수가 있고, 상의원의 침선비와 공조의 침선비도 정해진 인원수가 있어서 지방의 고을에서 선발한다. ○《경국대전》의 법령에서는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라고 하였다.

▶ 刑典 > 雜令 > [女醫選上]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 [選上] [原]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並以諸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 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 [선상] [경국대전]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젊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禮典 > 選上 > [定額]

- 女醫選上之法, 勿以每三年爲限, 隨其元額有闕, 擇定諸邑.

○여의를 뽑아 도성으로 보내는 법은 매 3년을 기한으로 삼지 말고, 원래 정원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 禮典 > 選上 > [女醫選上之法]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選上] [原] 女妓一百五十人, 蓮花臺十人, 女醫七十人, 每三年, 並以諸邑婢年少者選上. 女醫, 則成才後, 還本邑. 京中各司婢, 亦擇定.

[선상] [경국대전] 각 고을에서는 3년마다 짧은 여종 가운데 기생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뽑아 도성으로 보낸다. 여의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게 된 다음에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중앙 관청의 여종 중에서도 선발한다.

▶ 禮典 > 選上 > [定額]

○女醫選上之法, 勿以每三年爲限, 隨其元額有闕, 擇定諸邑.

○여의를 뽑아 도성으로 보내는 법은 매 3년을 기한으로 삼지 말고, 원래 정원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 禮典 > 選上 > [女醫選上之法]

16. 잡령(雜令)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各道栽植甘草 · 麻黃, 培養形止, 每年一度, 以內醫院官員, 傳香別監兼差擲奸, 啓下工曹後, 移內醫院, 置簿檢舉.

○각 도에서 심은 감초 · 마황의 재배 현황을 1년에 1번 내의원 관원에게 전향별감을 겸직하게 하여 척간(擲奸, 부정한 일을 조사함)한다. 공조에서 주상께 재가

를 받은 뒤 내의원으로 문서를 보내고, 내의원에서는 장부에 적어 검거(檢舉, 단속)한다.

▶ 禮典 > 雜令 > [各道栽植甘草麻黃…]

○內藥房所用松節十六斤, 四山監役官, 每年趁時, 躬親採納.

○내의원에서 사용하는 송절 16근은 한성부의 사산감역관이 해마다 편한 시간에 직접 채취하여 납부한다.

▶ 禮典 > 雜令 > [內藥房所用松節…]

○赴京醫員, 可當人中, 行未行分揀, 輪次入送.

○중국에 사행 가는 의원은 적당한 사람 중에서 가본 자와 가보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돌아가며 보낸다.

▶ 禮典 > 雜令 > [赴京醫員…]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년

○各道藥材, 都會官監封上送, 監察考封上送, 監察考封署擇納. 庫子盜出轉賣者, 依代納貢物例, 論斷.

○각 도에서 나는 약재는 도회관(都會官, 중심지)에서 감봉(監封, 포장하고 봉인함)하여 진상하되, 감찰이 약재의 봉인을 살핀 후 진상한다. 감찰은 혜민서에서 가려서 받는 약재의 봉인도 살펴본다. 고지기가 약재를 훔쳐내 판매한 경우는 공물을 대신 납부하는 사례를 따라서 죄를 논한다.

▶ 禮典 > 雜令 > [各道藥材…]

○赴京醫員, 藥材貿易, 令之次通事, 同力貿易.

○중국에 파견되는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차상통사(次上通事, 2번째 높은 역관)와 함께 구매해야 한다.

▶ 禮典 > 雜令 > [赴京醫員藥材…]

○惠民署官員, 依典醫監, 諸司前銜例, 受祿後仕日, 通計受職.

○전의감 및 각 관청 전함관의 사례에 따라, 혜민서의 관원이 녹봉을 받은 후의 근무일을 계산할 때는 관직을 제수받은 날짜로 계산한다.

▶ 禮典 > 雜令 > [惠民署官員…]

○惠民署鄉藥材, 雖上司衙門, 必須提調出庫後, 方許取用, 詳定數外, 毋得取用.

○혜민서의 향약재(鄉藥材)는 상사(上司)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조가 곳간에서 꺼낸 뒤에야 가져다 쓸 수 있고, 상세히 정해진 수량 외에는 가져다 쓸 수 없다.

▶ 禮典 > 雜令 > [惠民署鄉藥材…]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各道栽植甘草·麻黃, 培養形止, 每年一度, 以內醫院官員, 傳香別監兼差擲奸, 啓下工曹後, 移內醫院, 置簿檢舉.

○각 도에서 심은 감초·마황의 재배 현황을 1년에 1번 내의원 관원에게 전항 별감을 겸직하게 하여 척간(擲奸, 부정한 일을 조사함)한다. 공조에서 주상께 재가를 받은 뒤 내의원으로 문서를 보내고, 내의원에서는 장부에 적어 검거(檢舉, 단속)한다.

▶ 禮典 下 > 雜令 > 繢錄 > [甘草·麻黃]

○內藥房所用松節十六斤, 四山監役官, 每年趁時躬親採納.

○내의원에서 사용하는 송절 16근은 한성부의 사산감역관이 해마다 편한 시간에 직접 채취하여 납부한다.

▶ 禮典 下 > 雜令 > 繢錄 > [松節]

○赴京醫員, 可當人中行·未行分揀, 輪次入送.

○중국에 사행 가는 의원은 적당한 사람 중에서 가본 자와 가보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돌아가며 보낸다.

▶ 禮典 下 > 雜令 > 繢錄 > [赴京醫員]

- 赴京醫員, 藥材貿易, 令之次通事同力貿易.
- 중국에 파견되는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차상통사(次上通事, 2번째 높은 역관)와 함께 구매해야 한다.

▶ 禮典 下 > 雜令 > 後續錄 > [赴京醫員藥材貿易]

- 惠民署官員, 依典醫監 · 諸司前銜例, 受祿後, 仕日通計受職.
- 전의감 및 각 관청 전함관의 사례에 따라, 혜민서의 관원이 녹봉을 받은 후의 근무일을 계산할 때는 관직을 제수받은 날짜로 계산한다.

▶ 禮典 下 > 雜令 > 後續錄 > [惠民署官員]

- 惠民署鄉藥材, 雖上司衙門, 必須提調出庫後, 方許取用, 詳定數外, 毋得取用.
- 혜민서의 향약재(鄉藥材)는 상사(上司)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조가 곳간에서 꺼낸 뒤에야 가져다 쓸 수 있고, 상세히 정해진 수량 외에는 가져다 쓸 수 없다.

▶ 禮典 下 > 雜令 > 後續錄 > [惠民署鄉藥材]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 內局提調之兼帶金吾者, 只許議讞捧招, 勿參於用刑之坐. 康熙庚寅承傳
- 내의원 제조가 의금부의 직책을 겸할 때는 단지 죄를 의논하거나 죄인의 진술을 받는 일만 참여할 수 있고, 형벌을 집행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강희 경인년(1710, 숙종 36)에 받은 전교⁶

▶ 禮典 > 雜令 > 584. [內局提調之兼帶…]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續錄] … ○各道栽植甘草 · 麻黃培養形止, 每年一度, 以內醫院官員, 傳香別監兼差摘奸, 啓下工曹後, 移內醫院, 置簿檢擧. … ○內藥房所用松節十六斤, 四山

6 참조 : 《숙종실록》 숙종 36년 6월 8일 /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6월 8일.

監役官, 每年趁時躬親採納. … ○赴京醫員, 可當人中行 · 未行分揀, 輪次入送.

…

[대전속록] … ○각 도에서 심은 감초 · 마황의 재배 현황을 1년에 1번 내의원 관원에게 전향별감을 겸직하게 하여 척간(攤奸, 부정한 일을 조사함)한다. 공조에서 주상께 재가를 받은 뒤 내의원으로 문서를 보내고, 내의원에서는 장부에 적어 짐거(檢舉, 단속)한다. … ○내의원에서 사용하는 송절 16근은 한성부의 사산감역관이 해마다 편한 시간에 직접 채취하여 납부한다. … 중국에 사행 가는 의원은 적당한 사람 중에서 가본 자와 가보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돌아가며 보낸다.

▶ 禮典 > 雜令 > 《續錄》

[後續錄] … ○赴京醫員, 藥材貿易, 令之次通事同力貿易. ○惠民署官員, 依典醫監 · 諸司前銜例, 受錄後, 仕日通計受職. ○惠民署鄉藥材, 雖上司衙門, 必須提調出庫後, 方許取用, 詳定數外, 毋得取用. …

[대전후속록] … ○중국에 파견되는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차상통사 (次上通事, 2번째 높은 역관)와 함께 구매해야 한다. ○전의감 및 각 관청 전함관의 사례에 따라, 혜민서의 관원이 녹봉을 받은 후의 근무일을 계산할 때는 관직을 제수받은 날짜로 계산한다. ○혜민서의 향약재(鄉藥材)는 상사(上司)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조가 곳간에서 끼낸 뒤에야 가져다 쓸 수 있고, 상세히 정해진 수량 외에는 가져다 쓸 수 없다. …

▶ 禮典 > 雜令 > 《後續錄》

[新補受敎] ○內局提調之兼帶金吾者, 只參議讞捧招, 勿參於用刑之坐. 康熙庚寅承傳

[신보수교집록] ○내의원 제조가 의금부의 직책을 겸할 때는 단지 죄를 의논하거나 죄인의 진술을 받는 일만 참여할 수 있고, 형벌을 집행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강희 경인년(1710, 숙종 36)에 받은 전교

▶ 禮典 > 雜令 > 《新補受敎》

춘관지(春官志) 1791년

通信使節目講定別單. 崇禎癸未春, … 醫員亦爲極擇, …

통신사에 대한 규정과 별도로 정한 항목. 숭정 계미년(1643, 인조 21) 봄,
… 의원도 정밀하게 잘 뽑아야 한다. …

▶ 卷之二 > 通信使節目講定別單

通信三使及一行 … 良醫一員. 壬戌, 因倭人之請, 擇術業精通者, 送之 …

통신삼사 및 일행 … 양의(良醫) 1원. 임술년(1682, 숙종 8)에 왜인의 요청에 의하여
의술에 정통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

▶ 卷之二 > 通信三使及一行員役

信使應行節目. … 崇禎癸未, 曹啓目. … 醫員二員, 畫員一員, 別破陣兼軍官二人,
砲手二名, 減依甲子年例. …

통신사가 수행하는 일. … 숭정 계미년(1643, 인조 21)에 예조에서 통신사가 수행
하는 일을 주상께 아뢰었다. … 의원 2원, 화원 1원, 별파진겸군관 2인, 포수
2명. 갑자년(1624, 인조 2) 사례에 의하여 줄인다. …

▶ 卷之二 > 信使應行節目

信使路資盤纏, 戸曹例下衣資. … 上通事 · 次上通事 · 押物通事 · 製述官 · 醫
員 · 寫字官 · 畫員, 各章服次, 黑通絹二十八尺, 藍通絹二十八尺, 木綿二匹, 布
子四匹, 黑黍皮靴子一部, 賜米十石. …

통신사에게 주는 노자와 반전(盤纏, 비용). 호조에서 옷감을 전례대로 내려준다.
… 상통사 · 차상통사 · 압물통사 · 제술관 · 의원 · 사자관 · 화원에게는 각각 장
복(章服)용으로 흑통견 28자, 남통견 28자, 무명 2필, 삼베 4필, 흑칠 가죽신
1부, 쌀 10섬을 내려준다. …

▶ 卷之二 > 信使路資盤纏

속대전(續大典) 1746년

○惠民署鄉藥材, 雖上司衙門, 詳定數外, 毋得濫用.

○혜민서의 향약재(鄉藥材)는 상사(上司)라 하더라도 상세히 정해진 수량 외에는 함부로 쓸 수 없다.

▶ 禮典 > 雜令 > [惠民署鄉藥材]

○赴燕時一行, 冬至使, … 兩醫司醫員一員 · 雲臺官一員, 級差送. 醫員唐藥材貿易時, 次上通事, 同力貿易.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使臣)의 일행. 동지사(冬至使) 때는 … 양의사 의원 1원과 관상감 관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차상통사(次上通事, 2번째 높은 역관)와 함께 구매해야 한다.

▶ 禮典 > 雜令 > [赴燕時一行]

○通信使一行, 堂上譯官三員, 堂下譯官九員, 兩醫司醫員二員 或加定一員, 寫字官二員, 畫員一員, 級差送.

○일본 통신사의 일행. 당상관 역관 3원, 당하관 역관 9원, 양의사의 의원 3원 1원을 추가하기도 한다. 사자관 2원, 회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 禮典 > 雜令 > [通信使一行]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日 · 月食時, 各司救食如儀. …訓鍊 · 通禮院, 校書館, 內資 · 禮賓寺, 典醫監, 義盈庫, 掌苑 · 惠民 · 典獄署, 五部. 不設器械. …

○일식과 월식 때 각 관청에서는 의례대로 구식례(救食禮)⁷를 거행한다. … 훈련원 · 통례원 · 교서관 · 내자시 · 예빈시 · 전의감 · 의영고 · 장원서 · 혜민서 · 전옥서 · 오부(五部). 이상은 천문 관측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

▶ 禮典 > 雜令 > [日月食]

7 구식례(救食禮) : 일식이나 월식 때 불상사를 구제하기 위해 드리는 의례이다.

○產室廳, 婪以下, 稱護產廳. 前期三朔, 護產廳, 當朔 舉行. 內局三提調及醫官, 輪直. [補]

○산실청은 빈(嬪) 이하는 호산청(護產廳)이라 부른다. 분만 3개월 전에 호산청은 당월에 거행한다. 내의원의 세 제조와 의관이 돌아가면서 숙직한다. [보충]

▶ 禮典 > 雜令 > [產室廳]

○惠民署鄉藥材, 雖上司, 詳定數外, 毋得濫用. [續]

○혜민서의 향약재(鄉藥材)는 상사(上司)라 하더라도 상세히 정해진 수량 외에는 함부로 쓸 수 없다. [속대전]

▶ 禮典 > 雜令 > [惠民署鄉藥材]

추관지(秋官志) 1781년

[補] 議藥廳時開坐. 顯宗十五年, 政院啓曰, “自前, 設侍藥廳之後, 則各司不得開坐, 例也. 今此議藥廳, 與侍藥廳名號雖異, 其實則一也. 而第念, 當此多事之時, 合有變通之道, 分付各司, 使之開坐, 何如?” 傳曰, “依爲之.”

[보충] 의약청을 설치할 때의 개좌(開坐, 회의 소집) 문제. 현종 15년(1674), 승정원에서 아뢰었다. “예전부터 시약청이 설치된 이후에는 각 관청에서 개좌하지 않음이 전례입니다. 지금 이 의약청은 시약청과 명칭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해보니 이렇게 일이 많을 때는 융통함이 합당하니 각 관청에 분부하여 개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교에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卷之七 > 考律部 > 繢條一 > 開坐 > (補)議藥廳時開坐

[補] 議藥廳時禁刑. 英宗三年, 政院啓曰, “取考本院戊戌日記, 則大王大妃殿紅疹時, 各司刑杖, 申飭勿用, 闕內亦禁笞杖矣. 今亦依此施行, 何如?” 傳曰, “允.”

[보충] 의약청을 설치할 때는 형벌을 금지한다. 영조 3년(1723), 승정원에서 아뢰었다. “승정원의 무신년 일지를 살펴보니 대왕대비가 홍진(紅疹)에 걸리셨을 때 각 관청에 형장(刑杖, 형벌 집행)을 하지 말라고 신奏하였고, 궐내에도 태형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교에

이르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卷之七 > 考律部 > 繢條一 > 開坐 > (補)藥院直宿時禁刑

[補] 藥院直宿時開坐. 今上丙申, 傳曰, “此後雖直宿之時, 非移直之時, 各司依例開坐事, 分付.”

[보충] 내의원에서 근무할 때 개좌(開坐) 문제. 금상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전교하였다. “지금 이후로는 내의원에서 근무할 때라도 이직(移直, 자리를 옮겨 근무함)할 때가 아니라면 각 관청에서 개좌(開坐)하는 사례에 의하도록 분부하라.”

▶ 卷之七 > 考律部 > 繢條一 > 開坐 > (補)藥院直宿時開坐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惠民署鄉藥材, 雖上司衙門, 詳定數外, 毋得濫用.

○혜민서의 향약재(鄉藥材)는 상사(上司)라 하더라도 상세히 정해진 수량 외에는 함부로 쓸 수 없다.

▶ 禮典 > 雜令 > [惠民署鄉藥材]

○赴燕時一行, 冬至使, 則堂上譯官二員 · 堂下譯官二十一員… 又每行, 寫字官二員 · 畫員一員 · 兩醫司醫員一員 · 雲臺官一員, 紛差送. 醫員唐藥材貿易時, 次上通事, 同力貿易. [增] …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使臣)의 일행. 동지사행 때는 당상관 역관 2원과 당하관 역관 21원이고 … 또 사행마다 사자관 2원, 화원 1원, 양의사(兩醫司)의 의원 1원, 관상감 관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차상통사(次上通事, 2번째 높은 역관)와 함께 구매해야 한다. [대전통편] …

▶ 禮典 > 雜令 > [赴燕時一行]

○通信使一行, 堂上譯官三員, 堂下譯官九員, 兩醫司醫員二員 或加定一員, 寫字官二員, 畫員一員, 紛差送. [增] 減醫員, 堂下譯官九員內, 醫員一員帶去.

○일본 통신사의 일행. 당상관 역관 3원, 당하관 역관 9원, 양의사의 의원 3원

1원을 추가하기도 한다. 사자관 2원, 화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대전통편]
의원을 감하여 당하관 역관 9원 안에서 의원 1원을 포함하여 데리고 간다.

▶ 禮典 > 雜令 > [通信使一行]

○日・月食時, 各司堂・郎各一員 無堂上處, 行首官・佐貳官備二員, 會本司, 救食如儀. … 訓鍊院・通禮院・校書館・內資寺・禮賓寺・典醫監・義盈庫・掌苑署・惠民署・典獄署・五部, 已上不設器械. …

○일식과 월식 때는 각 관청의 당상관과 낭청 각 1원이 당상관이 없는 관청에서는 우두머리 관원과 좌이관(佐貳官, 서열 2위 관원)으로 2원을 갖춘다 본 관청에 모여 의례대로 구식례(救食禮)를 행한다. …훈련원·통례원·교서관·내자시·예빈시·전의감·의영고·장원서·혜민서·전옥서·오부(五部). 이상은 천문 관측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

▶ 禮典 > 雜令 > [各司救食]

춘관통고(春官通考) 1788년

通信使. 我國於日本嘗遣使, 修慶弔禮. 蓋自開國以來, 往聘者多, 皆稱通信使. 至宣廟丙午, 呂祐吉之行, 朝廷以通信之稱爲慊, 且以不可奏聞天朝, 議改以刷還使, 刷還俘口之謂也. … 良醫一員・寫字官一員 … 慶尙・全羅・忠淸・江原四道卜定, 人蔘二十斤, 白苧布五十四疋, … 魚物・實果・藥材. …

통신사.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경조사의 예절을 지켰다. 개국 이래로 오간 이들이 많으니 다 통신사라 칭하였다. 선조 병오년(1606, 선조 39)에 이르러, 여우길(呂祐吉)이 가게 되었을 때 조정에서는 ‘통신(通信)’이라는 명칭에 거리낌이 있고 그 명칭을 명나라에 아릴 수도 없다면서 의논 후 ‘쇄환사(刷還使)’로 고쳤다. 이것은 잡혀있던 포로를 데려온다[刷還]는 뜻이다. … 양의(良醫) 1원·사자관 1원 … 경상·전라·충청·강원 4도의 지정(卜定, 공물의 수량)은 인삼 20근, 백저포 54필, … 어물·과실·약재들이다. …

▶ 卷74 > 賓禮 > 通信使

정원고사(政院故事) 정조 연간 1777-1800년

上候未寧朝夕問安時，朝問安，有勿爲問安之命，則竝與其日夕問安而勿爲之，其翌日朝問安亦勿爲之，第三日朝問安始爲之，而問日問安，又有勿爲問安之命，則仍爲停止，夕問安，若有勿爲問安之命，則只每日夕問安停止，而其每日朝問安依例爲之，夕問安停止，則有問日問安，問日問安，若知道，又問日問安。戊申十一月初七日

주상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아침저녁 문안. 아침 문안을 드린 후 주상이 문안을 하지 말라고 명하시면 당일의 저녁 문안까지 하지 말고, 그다음 날 아침 문안도 하지 않다가 3일째가 되어서야 아침 문안을 드린다. 하루씩 걸러서 문안하는 것마저 또 하지 말라고 명하시면 그대로 중지한다. 그리고 만약 저녁 문안을 하지 말라고 명하시면 매일 저녁 문안만 중지하고 매일 아침 문안은 규례대로 드린다. 저녁 문안을 중지하였으면 하루씩 걸러서 저녁 문안을 하되 하루씩 걸러서 저녁 문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 ‘알았다.’라고 하시면 다시 하루씩 걸러서 저녁 문안을 드린다. 무신년(1788, 정조 12) 11월 7일

▶ 禮考 > 04-03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 1939년

… 良醫一員, 倭人有請, 擇送 醫員二員, 典醫監·惠民署各一員 …

… 양의(良醫) 1원, 왜인의 요청이 있어서 뽑아 보냈다. 의원 2원, 전의감·혜민서에서 각 1명 …

▶ 財用編 > 信使 > 員額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惠民署鄉藥材，雖上司衙門，詳定數外，毋得濫用。

○혜민서의 향약재(鄉藥材)는 상사(上司)라 하더라도 상세히 정해진 수량 외에는 함부로 쓸 수 없다.

▶ 禮典 > 雜令 > [惠民署鄉藥材]

○赴燕時一行, 冬至使, … 兩醫司醫員一員 · 雲臺官一員, 級差送. 醫員唐藥材貿易時, 次上通事, 同力貿易. [增] …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일행. 동지사(冬至使) 때는 … 양의사 의원 1원과 관상감 관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의원이 중국 약재를 구매할 때는 차상통사 (次上通事, 2번째 높은 역관)와 함께 구매한다[대전통편] …

▶ 禮典 > 雜令 > [赴燕時一行]

○通信使一行, 堂上譯官三員, 堂下譯官九員, 兩醫司醫員二員 或加定一員, 寫字官二員, 畫員一員, 級差送. [增] 減醫員, 堂下譯官九員內, 醫員一員帶去.

○일본 통신사의 일행. 당상관 역관 3원, 당하관 역관 9원, 양의사의 의원 3원 1원을 추가하기도 한다. 사자관 2원, 화원 1원을 모두 임명하여 보낸다. [대전통편] 의원을 감하여 당하관 역관 9원 안에서 의원 1원을 포함하여 네리고 간다.

▶ 禮典 > 雜令 > [通信使一行]

○日 · 月食時, 各司堂 · 郎各一員 無堂上處, 行首官 · 佐貳官備二員, 會本司, 救食如儀. … 訓鍊院 · 通禮院 · 校書館 · 內資寺 · 禮賓寺 · 典醫監 · 義盈庫 · 掌苑署 · 惠民署 · 典獄署 · 五部, 已上不設器械. …

○일식과 월식 때는 각 관청의 당상관과 낭청 각 1원이 당상관이 없는 관청에서는 우두머리 관원과 좌이관(佐貳官, 서열 2위 관원)으로 2원을 갖춘다 본 관청에 모여 의례대로 구식례(救食禮)를 행한다. …훈련원 · 통례원 · 교서관 · 내자시 · 예빈시 · 전의감 · 의영고 · 장원서 · 해민서 · 전옥서 · 오부(五部). 이상은 천문 관측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

▶ 禮典 > 雜令 > [各司救食]

17. 용문자식(用文字式)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 1743년

用文字式. 內醫院三提調, 紛爲直宿, 則正一品衙門, 相通關, 從一品以下衙門, 則牒呈, 三提調直宿罷後, 依舊例爲之. 康熙己亥承傳

용문자식. 산실청에 내의원의 세 제조가 돌아가며 근무할 때는 정1품 아문과는 관(關, 동등한 관청 간의 공문)으로 주고받고, 종1품 이하 아문에서는 첨(牒, 상급 관청으로 올리는 공문)으로 올린다. 세 제조의 근무가 끝난 뒤에는 전례대로 한다. 강희 기해년(1719, 속종 45)에 받은 전교

▶ 禮典 > 用文字式 > 597. [三提調, 紛爲直宿…]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新補受教〕 內醫院三提調, 紛爲直宿, 則正一品衙門, 相通關, 從一品以下衙門, 則牒呈, 三提調直宿罷後, 依舊例爲之 康熙乙亥承傳.

〔신보수교집록〕 산실청에 내의원의 세 제조가 돌아가며 근무할 때는 정1품 아문과는 관(關, 동등한 관청 간의 공문)으로 주고받고, 종1품 이하 아문에서는 첨(牒, 상급 관청으로 올리는 공문)으로 올린다. 세 제조의 근무가 끝난 뒤에는 전례대로 한다. 강희 기해년(1719, 속종 45)에 받은 전교

▶ 禮典 > 用文字式 > 《新補受教》

속대전(續大典) 1746년

〔用文字式〕 內醫院三提調紛直時, 則正一品衙門, 通關, 從一品以下衙門, 牒呈. 罷直後, 則依舊例舉行.

〔용문자식〕 산실청에 내의원의 세 제조가 돌아가며 근무할 때는 정1품 아문과는 관(關, 동등한 관청 간의 공문)으로 주고받고, 종1품 이하 아문에서는 첨(牒, 상급 관청으로 올리는 공문)으로 올린다. 세 제조의 근무가 끝난 뒤에는 전례대로

한다.

▶ 禮典 > 用文字式 > [內醫院三提調竝直時]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內醫院三提調竝直時, 正一衙門, 通關, 從一以下衙門, 牒呈, 罷直後, 依舊例. [續] …

… ○산실청에 내의원의 세 제조가 돌아가며 근무할 때는 정1품 아문과는 관(關, 동등한 관청 간의 공문)으로 주고받고, 종1품 이하 아문에서는 첨(牒, 상급관청으로 올리는 공문)으로 올린다. 세 제조의 근무가 끝난 뒤에는 전례대로 한다. [속대전] …

▶ 禮典 > 雜令 > [啓稟行移]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續] 內醫院三提調, 竝直時, 則正一品衙門, 通關, 從一品以下衙門, 牒呈. 罷直後, 則依舊例舉行. [增] …

[속대전] 산실청에 내의원의 세 제조가 돌아가며 근무할 때는 정1품 아문과는 관(關, 동등한 관청 간의 공문)으로 주고받고, 종1품 이하 아문에서는 첨(牒, 상급관청으로 올리는 공문)으로 올린다. 세 제조의 근무가 끝난 뒤에는 전례대로 한다. [대전통편] …

▶ 禮典 > 用文字式 > [內醫院三提調竝直時]

병전(兵典)

1. 경관직(京官職)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西樞知事·同知·僉知之窠, 醫·譯中實職承傳之類, 以三十朔定限, 瓜滿後遞付軍職. 康熙乙卯承傳

○중추부의 지사·동지·첨지사의 자리는 실직에 제수하라는 전교를 받은 의관·역관들의 자리로 삼되, 임기는 30개월로 한정하고 임기를 채운 뒤에는 군직(軍職)¹을 준다. 강희 을묘년(1675, 숙종 1)에 받은 전교²

▶ 兵典 > 官職 > 416. [西樞知事·同知…]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西樞知事·同知·僉知之窠, 醫·譯中實職承傳之類, 以三十朔定限, 瓜滿後, 遷付軍職. 康熙乙卯承傳

1 군직(軍職) : 임진왜란 이후 유명무실해진 오위(五衛)의 관직으로, 주로 임기가 끝난 관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해 임시로 주어졌다.

2 참조 : 《승정원일기》 숙종 1년 9월 5일.

○ 중추부의 지사·동지·첨지사의 자리는 실직에 제수하라는 전교를 받은 의관·역관들의 자리로 삼되, 임기는 30개월로 한정하고 임기를 채운 뒤에는 군직을 준다. 강희 을묘년(1675, 숙종 1)에 받은 전교

▶ 兵典 上 > 京官職 > 受敎輯錄 > [西樞·醫·譯]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御營廳. 天啓甲子, 始置本營, 召募勇健, 教以火砲. 遣于扈駕公山, 仍募近邑山尺之業砲者, 勿論公私賤·有無役, 務以精銳. 還都之後, 屬之摠戎使, 以備環衛. 其後, 漸益增加, 名額稍廣, 置大將, 設爲一局, 專管教訓, 而將士之供, 猶出於地部. 廿辰以後, 始設軍營, 節目頗備, 及至丙戌, 改以一營五部之制. … ○ 鍼醫一員. ○ 藥房一員. …

어영청. 천계 갑자년(1624, 인조 2)에 처음 본영(本營)을 설치한 후 용맹한 사람을 모집하여 화포(火砲)를 가르쳤다. 공주 공산성으로 주상을 호종할 때까지도 여전히 근처 고을에 사는 산척(山尺, 조총 사냥꾼) 중 화포를 업으로 삼는 자들을 모집했고, 공천·사천·유역(有役)·무역(無役)을 막론하고 정예군으로 양성하였다. 도성으로 돌아온 후에는 총융청에 예속시켜서 궁궐 주위의 호위를 맡겼다. 그 후 점차 더욱 그 수가 증가하고 인원이 점점 늘어나자 대장을 두고 하나의 국(局)으로 재편하여 훈련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으나, 대장과 군사들에 대한 비용은 여전히 지부(地部, 호조)에서 나왔다. 임진년(1652, 효종 3) 이후 비로소 군영을 설치하고 규정이 크게 정비되었으며, 병술년(1706, 숙종 32)에는 1영(營) 5부(部)의 편제로 개편하였다. … ○ 침의 1원. ○ 약방 1원.
…

▶ 兵典 > 京官職 > 608–609. [御營廳]

訓鍊都監. 廿辰倭亂後, 罷五衛, 創設訓鍊都監. … ○ 藥房一人. ○ 鍼醫一人. ○ 馬醫一人. …

훈련도감. 임진왜란 이후에 오위(五衛)를 혁파하고 훈련도감을 창설했다. … ○ 약방 1인. ○ 침의 1인. ○ 마의 1인. …

▶ 兵典 > 京官職 > 610. [訓鍊都監]

禁衛營. 壬辰, 先減訓局軍摠, 改定部·司, 以省糧餉, 抽出中部別隊與精抄軍, 合設軍門, 為一百三十六哨, 號以禁衛, … ○馬醫一人. 禁軍廳馬醫, 兼察 … ○鍼醫一人. ○藥房一人. …

금위영. 임진년(1682, 숙종 8)에 우선 훈련도감의 총원을 줄이고 부(部)와 사(司)로 개편하여 줄어든 군량을 확보한 후, 훈련도감 중부(中部)의 별대(別隊)와 정초군(精抄軍)을 새로운 군문(軍門)으로 통합한 다음 136초(哨, 120명 가량의 편제 단위)를 만들어 금위영이라고 불렸다. … ○마의 1인 금군청(禁軍廳, 용호영)의 마의가 겸직한다 … ○침의 1인. ○약방 1인. …

▶ 兵典 > 京官職 > 611. [禁衛營]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受敎輯錄] … ○西樞知事·同知·僉知之窠, 醫·譯中, 實職·承傳之類, 以三十朔定期限, 瓜滿後, 遞付軍職 康熙乙卯承傳. …

[수교집록] … ○중추부의 지사·동지·첨지사의 자리는 실직에 제수하라는 전교를 받은 의관·역관들의 자리로 삼되, 임기는 30개월로 한정하고 임기를 채운 뒤에는 군직을 준다. 강희 을묘년(1675, 숙종 1)에 받은 전교 …

▶ 兵典 > 京官職 > 《受敎輯錄》

御營廳. 天啓甲子, 始置本營, 召募勇健, 教以火砲. 逮于扈駕公山, 仍募近邑山尺之業砲者, 勿論公私賤有無役, 務以精銳. 還都之後, 屬之摠戎使, 以備環衛. 其後, 漸增益加, 名額稍廣. 置大將, 設爲一局, 專管教訓, 而將士之供, 猶出於地部. 壬辰以後, 始設軍營, 節目頗備, 及至丙戌, 改以一營五部之制. … 鍼醫一員. 藥房一員. … 理馬一人. …

어영청. 천계 갑자년(1624, 인조 2)에 처음 본영(本營)을 설치한 후 용맹한 사람을 모집하여 화포(火砲)를 가르쳤다. 공주 공산성으로 주상을 호종할 때까지도 여전히 근처 고을에 사는 산척(山尺, 조총 사냥꾼) 중 화포를 업으로 삼는 자들을 모집했고, 공천·사천·유역(有役)·무역(無役)을 막론하고 정예군으로 양성하였다. 도성으로 돌아온 후에는 총융청에 예속시켜서 궁궐 주위의 호위를 맡겼

다. 그 후 점차 더욱 그 수가 증가하고 인원이 점점 늘어나자 대장을 두고 하나의 국(局)으로 재편하여 훈련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으나, 대장과 군사들에 대한 비용은 여전히 지부(地部, 호조)에서 나왔다. 임진년(1652, 효종 3) 이후 비로소 군영을 설치하고 규정이 크게 정비되었으며, 병술년(1706, 숙종 32)에는 1영(營) 5부(部)의 편제로 개편하였다. … 침의 1원. 약방 1원. … 이마(理馬) 1인. …

▶ 兵典 > 京官職 > 《新補受敎》 > [御營廳]

訓練都監. 壬辰倭亂後, 罷五衛, 創設訓練都監. … 藥房一人. 鍼醫一人. 馬醫一人. …

훈련도감. 임진왜란 이후에 오위(五衛)를 혁파하고 훈련도감을 창설했다. … 약방 1인. 침의 1인. 마의 1인. …

▶ 兵典 > 京官職 > 《新補受敎》 > [訓練都監]

禁衛營. 壬辰, 先減訓局軍摠, 改定部司, 以省糧餉, 抽出中部別隊與精抄軍, 合設軍門, 爲一百三十六哨, 號以禁衛. … 馬醫一人. 禁軍廳馬醫兼察 … 鍼醫一人. 藥房一員. …

금위영. 임진년(1682, 숙종 8)에 우선 훈련도감의 총원을 줄이고 부(部)와 사(司)로 개편하여 줄어든 군량을 확보한 후, 훈련도감 중부(中部)의 별대(別隊)와 정초군(精抄軍)을 새로운 군문(軍門)으로 통합한 다음 136초(哨, 120명 가량의 편제 단위)를 만들어 금위영이라고 불렀다. … 마의 1인. 금군청(禁軍廳, 용호영)의 마의가 겸직한다 … 침의 1인. 약방 1인. …

▶ 兵典 > 京官職 > 《新補受敎》 > [禁衛營]

속대진(續大典) 1746년

[中樞府] … ○知事 · 同知 · 僉知事等窠, 醫 · 譯以承傳見差者, 限三十朔遞. ○同知 · 僉知事, 以老職陞資而除授者, 限三朔. …

[중추부] … ○지사 · 동지 · 침지사의 자리는 실직에 제수하라는 전교를 받은 의관 · 역관들의 자리로 삼되, 임기는 30개월로 한정한다. ○노인직으로 품계가 올라 동지 · 침지사를 제수

받은 경우는 3개월을 임기로 한다. …

▶ 兵典 > 京官職 > 正一品衙門 > 中樞府

〔五衛〕 〔義興衛〕 〔龍驤衛〕 〔虎賁衛〕 〔忠佐衛〕 〔忠武衛〕 ○今五衛兵制盡罷, 獨存官名. 將及部將, 分番入直巡更. 護軍·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 屬軍銜遞兒, 減其祿窠, 以待各色人員, 陞降來付者. 正三品將. … 從四品副護軍. 加二十二員. 今爲七十六員. ○ … 內醫院醫員四 … … 從五品副司直. 減二十三員. 今爲一百員. ○原祿遞兒十七 … 內醫院醫員五 … … 副司果. 加一員. 今爲一百七十七員. ○原祿遞兒三十五 … 內醫院醫員一, … 典醫監習讀一, 觀象監習讀一, 惠民署聰敏一, 治腫一 … … 從七品副司正. 減六十員. 今爲二百四十九員. ○原祿遞兒三十三 … 內醫院醫員二 … 典醫監醫員一 … … 從八品副司猛. 減二百七十員. 今爲二百十三員. ○原祿遞兒二十七 …, 耆老所藥房一 … 宗親府醫員一, 議政府醫員一, 中樞府醫員一, 忠勤府醫員一, 六曹醫員一 … … 從九品副司勇. 減一千三百五十八員. 今爲五百八十一員. ○原祿遞兒一百五, …, 惠民署治腫一 … 宗親府醫員一 …

〔오위〕 〔의홍위〕 〔용양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 ○지금은 오위 제도가 다 혁파되어, 관직명만 남아있다. 장(將)과 부장(副將)은 차례를 나누어 당직을 서고 순찰을 한다. 호군·사직·사과·사정·사맹·사용은 군문에 속한 체아직이지만 녹봉과 자리를 줄여서 각 관청의 관원에게 품계를 올리거나 내리며 데려와서 자리를 준다. 정3품 장(將). … 종4품 부호군. 12원을 더하였다. 지금은 76원이다. ○ … 내의원 의원 4원 … … 종5품 부사직. 23원을 줄였다. 지금은 100원이다. ○원록체아(原祿遞兒, 실직 없이 봉록만 받는 체아직) 17원 … 내의원 의원 5원 … … 부사과. 1원을 더하였다. 지금은 177원이다. ○원록체아 35원 … 내의원 의원 1원 … 전의감 습독관 1원, 관상감 습독관 1원, 혜민서 연소총민 1원, 치종의원 1원 … … 종7품 부사정. 60원을 줄였다. 지금은 249원이다. ○원록체아 33원 … 내의원 의원 2원 … 전의감 의원 1원 … … 종8품 부사맹. 270원을 줄였다. 지금은 213원이다. ○원록체아 27원 … 기로소 약방 1원 … 종친부 의원 1원, 의정부 의원 1원, 중추부 의원 1원, 충훈부 의원 1원, 육조 의원 1원 … … 종9품 부사용. 1,358원을 줄였다. 지금은 581원이다. ○원록체아 105원 … 혜민서 치종의원 1원 … 종친부 의원 1원 …

▶ 兵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五衛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中樞府. 無所掌, 待文武堂上官之無所任者. [經] … ○知事, 同·僉知等, 醫譯, 以承傳見差者, 三十朔遞. … ○醫員一. [續]

중추부. 맙은 일이 없다. 문관·무관 당상관 중에서 소임이 없는 이를 임용한다. [경국대전] … ○지사·동지사·첨지사들의 자리에 의관·역관이 주상의 전교를 받아 임명되며, 30개월을 임기이다. … ○의원 1원. [속대전]

▶ 兵典 > 京官職 > [正一品衙門] > 中樞府

○三軍門, 各醫員二. 鍼·藥各一. [增]

○삼군문에는 각기 의원 2명씩이다. 침의·약방 각 1원이다. [추가]

▶ 兵典 > 京官職 > 軍營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 1939년

… 藥房·鍼醫·馬醫 各一 …

… 훈련도감·약방·침의·마의 각 1원씩 …

▶ 軍政篇 > 訓練都監 > 原額

… 藥房 在銅峴內二十五間. …

… 훈련도감·약방 동현(銅峴, 구리개) 안에 있으며 25칸 건물이다. …

▶ 軍政篇 > 訓練都監 > 公廝

… 馬醫 一人 別騎衛中兼差. …

… 금위영·마의 1인 별기위(別騎衛) 중에서 겸임한다 …

▶ 軍政篇 > 禁衛營 > 將校

鍼醫 一. 肅宗甲戌年置, 以兩醫司前啓. 英宗丁未, 自本營直傳令差出, 藥房 一. 設始與鍼醫同. …

금위영·침의 1원. 숙종 갑술년(1694, 숙종 20)부터 두었다. 양의사(兩醫司)의 전임 관원을

추천하여 재가를 받았다. 영조 정미년(1722, 영조 3)에 본영에서 직접 임명하여 보내게 하였다. 약방 1원. 침의와 같은 때부터 두었다. …

▶ 軍政篇 > 禁衛營 > 員役

… 馬醫 一人 閑散. …

어영청. … 마의 1인 한산(閑散, 실직이 없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

▶ 軍政篇 > 御營廳 > 將校

鍼醫, 一. 孝宗丁酉置, 兩醫司前啓啓 藥房, 一. 閑散. 孝宗丁酉置. …

어영청. 침의, 1원. 효종 정유년(1657, 효종 8)부터 두었다. 양의사(兩醫司)의 전임 관원을 추천하여 재가를 받았다. 약방, 1원. 한산 중에서 임명한다. 효종 정유년부터 두었다. …

▶ 軍政篇 > 御營廳 > 員役

… 藥房 在苧廬洞, 二十二間. …

어영청. … 약방 저전동(苧廬洞)에 있으며, 22칸 건물이다. …

▶ 軍政篇 > 御營廳 > 公廡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中樞府] [原] 無所掌, 待文·武堂上官之無所任者. [續] … ○知事·同知·僉知事等窠, 醫·譯以承傳見差者, 限三十朔遞. … [補] … ○雲臺官與醫·譯, 一體舉擬.

[중추부] [경국대전] 맡은 일이 없다. 문관·무관 당상관 중에서 소임이 없는 이를 임용한다. [속대전] … ○지사·동지사·침지사들의 자리에 주상의 전교를 받아 의관·역관을 임명하며, 30개월이 임기이다. … [보충] … ○관상감·의관·역관 모두 의망(擬望, 후보자 추천)으로 거행한다.

▶ 兵典 > 京官職 > 正一品衙門 > 中樞府 > [總論]

… 副護軍六十九員, 從四品. [原] 五十四員. [續] 加二十二員. [補] 減七員. ○ … 內醫院醫員四 … … 副司直一百二員, 從五品. [原] 一百二十三員. [續] 減二十三員. [補] 加二員. ○原祿遞兒十七 … 內醫院醫員六 … … 副司果一百八十三員, 從六品. [原] 一百七十六員.

[續] 加一員. [補] 加六員. ○原祿遞兒三十五 … 內醫院醫員二 … 典醫監習讀一 … 惠民署聰敏一, 治腫一 … … 副司正二百四十九員, 從七品. [原] 三百九員. [續] 減六十員. ○原祿遞兒三十三 … 內醫院醫員二, … 典醫監醫員一 … … 副司猛二百八員, 從八品. [原] 四百八十三員. [續] 減二百七十員. [補] 減五員. ○原祿遞兒二十七, … 耆老所藥房一 … 宗親府醫員一, 議政府醫員一, 中樞府醫員一, 忠勤府醫員一, 六曹醫員一 … … 副司勇五百八十一員. 從九品. [原] 一千九百三十九員. [續] 減一千三百五十八員. [補] 減一百二十一員. ○原祿遞兒一百五, … 惠民署治腫一 … 宗親府醫員一 …

… 부호군 69원 종4품. [경국대전] 54원. [속대전] 20원을 더하였다. [보충] 7원을 줄였다. ○ … 내의원 의원 4원 … … 부사직 102원 종5품. [경국대전] 123원. [속대전] 23원을 줄였다. [보충] 2원을 더하였다. ○원록체아(原祿遞兒, 실직 없이 봉록만 받는 체아직) 17원 … 내의원 의원 6원, … … 부사과 183원 종6품. [경국대전] 176원. [속대전] 1원을 더하였다. [보충] 6원을 더하였다. ○원록체아 35원 … 내의원 의원 1원 … 전의감 습독관 1원 … 혜민서 연소총민 1원, 치종의원 1원 … … 부사정 249원 종7품. [경국대전] 309원. [속대전] 60원을 줄였다. ○원록체아 33원 … 내의원 의원 2원 … 전의감 의원 1원 … … 부사맹 208원 종8품. [경국대전] 483원. [속대전] 270원을 줄였다. [보충] 5원을 줄였다. ○원록체아 27원 … 기로소 약방 1원 … 종친부 의원 1원, 의정부 의원 1원, 증추부 의원 1원, 충훈부 의원 1원, 육조 의원 1원 … … 부사용 581원 종9품. [경국대전] 1,939원. [속대전] 1,358원을 줄였다. [보충] 121원을 줄였다. ○원록체아 105원 … 혜민서 치종의원 1원 … 종친부 의원 1원 …

▶ 兵典 > 京官職 > 正三品衙門 > 五衛 > [官員 > 定額]

2. 역마(驛馬)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赴燕 · 通信使行及接慰官行, 諸員, 依司譯院手本, 齋咨行, 同. [補] … ○凡

給馬人, 皆給草料, 紿馬人外, 邊將·中軍·軍官·譯學·審檢·…[經] [補]

○연행·통신사행이나 접위관(接慰官, 일본 사절단 영접 관원)의 행차 때 여러 인원은 사역원의 수본(手本)에 의한다. 재자행(齎咨行, 소규모 사행)도 동일하다.
〔보충〕… ○말을 지급받는 사람은 모두 초료장(草料狀, 역참마다 꿀과 음식을 지급하라는 문서)을 함께 지급받는다. 말을 지급받는 사람외에 다음 관원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 변장·증군·군관·역학·심약·검율…[경국대전] [보충]

▶ 兵典 > 驛馬 > 官馬附 > [給馬牌]

3. 시취(試取)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馬醫〕 本曹同司僕寺提調講.

講書. 安驥集 臨文, 講二處.

〔마의〕 병조에서 사복시 제조와 함께 고강한다.

강서. 《안기집》책을 보고 2곳을 풀이한다.

▶ 兵典 > 試取 > [科目]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馬醫. 本曹同司僕寺提調講. ○講書. 安驥集. 臨文, 講三處.

마의. 병조에서 사복시 제조와 함께 고강한다. ○강서. 《안기집》책을 보고 3곳을 풀이한다.

▶ 兵典 上 > 試取 > [大典] > 馬醫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馬醫. 本曹同司僕寺提調講. 講書. 安驥集. 臨文, 講三處.

마의. 병조에서 사복시 제조와 함께 고강한다. 강서. 《안기집》책을 보고 3곳을 풀이한다.

▶ 兵典 > 試取 > [大典]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 馬醫講, 本業書之法, 不可以已廢, 言在於大典.

○ … 마의의 고강은 본업의 책을 읽는 제도이니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은 《경국대전》에 있다.

▶ 兵典 > 試取 > [取才]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馬醫] [原] 本曹同司僕寺提調講. [講書] 安驥集. ○臨文, 講三處.

[마의] [경국대전] 병조에서 사복시 제조와 함께 고강한다. [강서] 《안기집》. ○책을 보고 3곳을 풀이한다.

▶ 兵典 > 試取 > 馬醫

4. 번차도목(番次都目)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習讀官] 訓練院 · 司譯院 · 觀象監 · 典醫監.

都目 兩. 正月 · 七月

遞兒. 從六品一 司譯院 · 從七品四 一訓鍊院, 一司譯院, 一觀象監, 一典醫監 · 從八品九 三訓鍊院, 二司譯院, 一觀象監, 三典醫監 · 從九品十四 四訓鍊院, 五司譯院, 一觀象監, 四典醫監

加階. 仕滿九百. 七品以下, 四百五十

[醫員] 議政府 · 六曹各三員, 宗親府 · 忠勤府 · 都摠府各二員.

都目 四. 正月 · 四月 · 七月 · 十月

遞兒. 從八品七 一宗親府, 二議政府, 二六曹, 一忠勤府, 一都摠府 · 從九品二 一宗親府, 一忠勤府

加階. 仕滿九百. 七品以下, 四百五十

[습독관] 훈련원 · 사역원 · 관상감 · 전의감에 둔다.

도목정사 2번. 1 · 7월

체아직. 종6품 1원 사역원, 종7품 4원 훈련원 · 사역원 · 관상감 · 전의감 각 1원, 종8품 9원 훈련원 3원, 사역원 2원, 관상감 1원, 전의감 3원, 종9품 14원 훈련원 4원, 사역원 5원, 관상감 1원, 전의감 4원

가계(加階, 승진). 출근 일수 900일을 채워야 한다. 7품 이하는 450일

[의원] 의정부와 육조에 각 3원, 종친부 · 충훈부 · 도총부에 각 2원을 둔다.
도목정사 4번. 1 · 4 · 7 · 10월

체아직. 종8품 7원 종친부 1원, 의정부 2원, 육조 2원, 충훈부 1원, 도총부 1원, 종9품 2원 종친부 1원, 충훈부 1원

가계(加階). 출근 일수 900일을 채워야 한다. 7품 이하는 450일

▶ 兵典 > 番次都目 > [總論]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內醫院習讀官十員, 副司直一, 副司果一, 副司正一, 副司猛一, 副司勇一. 典醫監習讀官二十員, 司果一, 副司猛二, 副司勇三.

○체아직. 내의원 습독관은 10원으로 부사직 1원, 부사과 1원, 부사정 1원, 부사맹 1원, 부사용 1원이다. 전의감 습독관은 20원으로 사과 1원, 부사맹 2원, 부사용 3원이다.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년

○ … 中樞府醫員, 副司猛一, 司勇一. … 醫書習讀, 副司果一. 卑品元遞兒三合作.
都摠府醫員, 副司猛一. 加設遞兒. …

○체아직. … 중추부 의원은 부사맹 1원, 사용 1원이다. … 의서 습독관은 부사
과 1원이다. 품계가 낮은 원록체아 3원을 합쳐서 만들었다. 도총부 의원은 부사맹 1원
이다. 체아직을 추가로 만들었다. …

○ … 治腫醫員一 … 已上推移陞降.

○체아직. … 치종의원 1원 … 이상은 형편에 따라 직임을 올리거나 내린다.

경국대전주해 전집(經國大典註解 前集) 1555년

[番次都目] 長番兩都目者, 四孟朔, 連等受祿, 宣傳官·兼司僕·內禁衛·功臣
嫡長, 是也. 長番四都目者, 以仕多少各等受祿, 族親衛·忠義衛, 是也. 二番兩
都目者, 當番, 四孟朔連等受祿, 親軍衛, 是也. 五番六番兩都目三都目者, 各其
當番一等受祿, 別侍衛·甲士·忠贊衛·吹螺赤·大平簫·弓人·矢人諸員·
壯勇衛·隊卒·彭排·破陣軍, 是也. 而忠贊衛以下, 則以仕多少付祿, 議政
府·六曹·忠勤府·宗親府·都摠府醫員, 各其遞兒相遞受祿. 濟州子弟以親着
多少, 連等受祿. 連等者, 正月付祿, 仍受四月祿之類.

[번차도목] 장번(長番)³이면서 양도목에 해당하는 자는 1·4·7·10월에 분기
를 연달아 녹봉을 받으며, 선전관·겸사복·내금위·공신의 적장자가 이에 해
당한다. 장번이면서 4도목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각 분기마다
녹봉을 받으며, 족친위·충의위가 이에 해당한다. 2번(二番, 2교대)이면서 양도

3 장번(長番) : 궁중에서 교대 없이 장기간 유숙하며 계속 근무하던 제도이다.

목에 해당하는 자는 1·4·7·10월 중 당변일 때 분기를 연달아 녹봉을 받으며, 친군위가 이에 해당한다. 5·6번(番)이면서 양도목이나 3도목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당변인 한 분기의 녹봉을 받으며, 별시위·갑사·충찬위·취라치·태평소·궁인(矢人)·시인(矢人)들과 장용위·대졸·팽배·파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충찬위 이하 관원은 근무 일수에 따라 녹봉을 준다. 의정부·육조·충훈부·종친부·도총부 의원은 각각 체아직을 번갈아 가며 녹봉을 받는다. 제주의 부료자제(付料子弟)⁴는 직접 출근한 일수에 따라 분기를 연달아 녹봉을 받는다. ‘분기를 연달아[連等]’라는 말은 1월에 녹봉을 받고 이어서 4월에도 녹봉을 받는 일을 말한다.

▶ 兵典 > 番次都目 > [長番兩都目者…]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習讀官·訓鍊院·司譯院·觀象監·典醫監。○都目，兩正月·七月。遞兒，從六品一司譯院，從七品四一訓鍊院，一司譯院，一觀象監，一典醫監，從八品九三訓鍊院，二司譯院，一觀象監，三典醫監，從九品十四四訓鍊院，五司譯院，一觀象監，四典醫監。加階，仕滿九百，七品以下，四百五十。

습독관은 훈련원·사역원·관상감·전의감에 둔다。○도목정사 2번 1월·7월. 체아직. 종6품 1원 사역원 종7품 4원 훈련원·사역원·관상감·전의감 각 1원, 종8품 9원 훈련원 3원, 사역원 2원, 관상감 1원, 전의감 3원, 종9품 14원 훈련원 4원, 사역원 5원, 관상감 1원, 전의감 4원, 가계(加階, 승진). 출근 일수 900일을 채워야 한다. 7품 이하는 450일이다.

▶ 兵典 上 > 番次都目 > [大典] > 習讀官

○內醫院習讀官十員。副司直一，副司果一，副司正一，副司猛一，副司勇一。典醫監習讀官二十員。司果一，副司猛二，副司勇三。

○체아직. 내의원 습독관은 10원으로 부사직 1원, 부사과 1원, 부사정 1원,

4 제주의 부료자제(付料子弟) : 제주도에서 매년 선출된 체아직 하급 무관이다.

부사맹 1원, 부사용 1원이다. 전의감 습독관은 20원으로 사과 1원, 부사맹 2원, 부사용 3원이다.

▶ 兵典 下 > 遞兒 > 繢錄 > [內醫院 · 典醫監習讀官]

○ … 中樞府醫員, 副司猛一, 司勇一. … 醫書習讀, 副司果一. 卑品元遞兒三合作.
都摠府醫員, 副司猛一. 加設遞兒. …

○체아직. … 중추부 의원은 부사맹 1원, 사용 1원이다. … 의사 습독관은 부사
과 1원이다. 품계가 낮은 원록체아 3월을 합쳐서 만들었다. 도총부 의원은 부사맹 1원
이다. 체아직을 추가로 만들었다. …

▶ 兵典 下 > 遞兒 > 後續錄 > [遞兒職除授]

○ … 治腫醫員一, … . 已上, 推移陞降.

○체아직. … 치종의원 1월 … 이상은 형편에 따라 직임을 올리거나 내린다.

▶ 兵典 下 > 遞兒 > 後續錄 > [推移陞降]

議政府 · 六曹各三員, 宗親府 · 忠勳府 · 都摠府各二員. ○都目, 四. 正月 · 四月 ·
七月 · 十月 遞兒, 從八品七 — 宗親府, 二議政府, 二六曹, 一忠勳府, 一都摠府, 從九品二
— 宗親府, 一忠勳府. 加階, 仕滿九百, 七品以下, 四百五十.

의원. 의정부 · 육조 각 3원, 종친부 · 충훈부 · 도총부 각 2원. ○도목정사 4번.
1 · 4 · 7 · 10월 체아직. 종8품 7원 종친부 1원, 의정부 2원, 육조 2원, 충훈부 1원, 도총
부 1원, 종9품 2원 종친부 1원, 충훈부 1원. 가계(加階). 출근 일수 900일을 채워야
한다. 7품 이하는 450일이다.

▶ 兵典 上 > 番次都目 > [大典] > 醫員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番次都目 … 習讀官, 訓鍊院 · 司譯院 · 觀象監 · 典醫監. 都目, 兩 正月 · 七月.
遞兒, 從六品一 司譯院, 從七品四 一訓鍊院, 一司譯院, 一觀象監, 一典醫監, 從八品九
三訓鍊院, 二司譯院, 一觀象監, 三典醫監, 從九品十四 四訓鍊院, 五司譯院, 一觀象監, 四典醫
監. 加階, 仕滿九百, 七品以下, 四百五十.

醫員, 議政府·六曹各三員, 宗親府·忠勤府·都摠府各二員. 都目, 四正月·四月·七月·十月. 遞兒, 從八品七一宗親府, 二議政府, 二六曹, 一忠勤府, 一都摠府, 從九品二一宗親府, 一忠勤府. 加階, 仕滿九百, 七品以下, 四百五十. …

번차도목 … 습독관. 훈련원·사역원·관상감·전의감에 둔다. ○도목정사 2번 1월·7월. 체아직. 종6품 1원 사역원 종7품 4원 훈련원·사역원·관상감·전의감 각 1원, 종8품 9원 훈련원 3원, 사역원 2원, 관상감 1원, 전의감 3원, 종9품 14원 훈련원 4원, 사역원 5원, 관상감 1원, 전의감 4원, 가계(加階, 승진). 출근 일수 900일을 채워야 한다. 7품 이하는 450일이다.

의원. 의정부·육조 각 3원, 종친부·충훈부·도총부 각 2원. ○도목정사 4번. 1·4·7·10월 체아직. 종8품 7원 종친부 1원, 의정부 2원, 육조 2원, 충훈부 1원, 도총부 1원, 종9품 2원 종친부 1원, 충훈부 1원. 가계(加階). 출근 일수 900일을 채워야 한다. 7품 이하는 450일이다. …

▶ 兵典 > 番次都目 > [大典]

○內醫院習讀官十員, 副司直一, 副司果一, 副司正一, 副司猛一, 副司勇一. 典醫監習讀官二十員, 司果一, 副司猛二, 副司勇三.

○체아직. 내의원 습독관은 10원으로 부사직 1원, 부사과 1원, 부사정 1원, 부사맹 1원, 부사용 1원이다. 전의감 습독관은 20원으로 사과 1원, 부사맹 2원, 부사용 3원이다.

▶ 兵典 > 遞兒 > 《續錄》

[後續錄] … 中樞府醫員, 副司猛一, 司勇一. … 醫書習讀, 副司果一 卑品元遞兒三合作. 都摠府醫員, 副司猛一 加設遞兒. … 治腫醫員一, … 已上推移陞降.

[대전후속록] 체아직. … 중추부 의원은 부사맹 1원, 사용 1원이다. … 의서 습독관은 부사과 1원이다. 품계가 낮은 원록체아 3원을 합쳐서 만들었다. 도총부 의원은 부사맹 1원이다. 체아직을 추가로 만들었다. … 치종의원 1원 … 이상은 형편에 따라 직임을 올리거나 내린다.

▶ 兵典 > 遞兒 > 《後續錄》

속대전(續大典) 1746년

[番次都目] 見大典, 而親軍衛·別侍衛·甲士今廢.

[習讀官] 見大典, 而加減遞兒數.

番次 長番.

都目 四. 正月·四月·七月·十月

遞兒. 從五品五 四司譯院, 一觀象監, 從六品九 七訓鍊院, 一典醫監, 一觀象監, 從七品七
二司譯院, 三觀象監, 一訓鍊院, 一典醫監, 從八品十一 七司譯院, 四觀象監, 從九品四十
三. 十七司譯院, 四觀象監, 二十二訓鍊院

[醫員] 見大典, 而加內局·惠民署·耆老所·中樞府.

番次 長番.

都目 四. 正月·四月·七月·十月

遞兒. 從四品四, 從五品五 內局, 從六品三 一內局, 二惠民署, 從七品二 內局, 從八品
六 宗親府·議政府·六曹·忠勤府·耆老所·中樞府各一, 從九品二. 一惠民署, 一宗親府

[번차도목] 《경국대전》에 나온다. 친군위·별시위·감사는 지금 없다.

[습독관] 《경국대전》에 나온다. 체아직 숫자에 가감이 있다.

번차(番次, 당번의 차례)는 장번(長番)⁵이다.

도목정사 4번. 1·4·7·10월

체아직. 종5품 5원 사역원 4원, 관상감 1원, 종6품 9원 훈련원 7원, 전의감 1원, 관상감
1원, 종7품 7원 사역원 2원, 관상감 3원, 훈련원 1원, 전의감 1원, 종8품 11원 사역원
7원, 관상감 4원, 종9품 43원. 사역원 17원, 관상감 4원, 훈련원 22원

[의원] 《경국대전》에 나온다. 내의원·혜민서·기로소·증추부 의원이 추가되었다.

번자는 장번이다.

도목정사 4번. 1월·4월·7월·10월

체아직. 종4품 4원, 종5품 5원 내의원, 종6품 3원 내의원 1원, 혜민서 2원, 종7품
2원 내의원, 종8품 6원 종친부·의정부·육조·충훈부·기로소·증추부 각 1원, 종9품

5 장번(長番) : 궁중에서 교대 없이 장기간 유숙하며 계속 근무하던 제도이다.

2원. 혜민서 1원, 종친부 1원

▶ 兵典 > 番次都目 > [番次都目]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習讀官] [原] 訓鍊院·司譯院·觀象監·典醫監. [續] 見原典, 而加減遞兒數. [番次]

[續] 長番〔都目〕兩. 正月·七月. [續] 四. 正月·四月·七月·十月〔遞兒〕從六品一, 司譯院. 從七品四, 一訓鍊院, 一司譯院, 一觀象監, 一典醫監. 從八品九, 三訓鍊院, 二司譯院, 一觀象監, 三典醫監. 從九品十四, 四訓鍊院, 五司譯院, 一觀象監, 四典醫監. [續] 從五品五, 四司譯院, 一觀象監. 從六品九, 七訓鍊院, 一典醫監, 一觀象監. 從七品七, 二司譯院, 三觀象監, 一訓鍊院, 一典醫監. 從八品十一, 七司譯院, 四觀象監. 從九品四十三, 十七司譯院, 四觀象監, 二十二訓鍊院. [補] 從五品八, 七司譯院, 一觀象監. 從六品十二, 七訓鍊院, 一典醫監, 四觀象監. 從七品七, 二司譯院, 三觀象監, 一訓鍊院, 一典醫監. 從八品十二, 八司譯院, 四觀象監. 從九品四十四, 十八司譯院, 四觀象監, 二十二訓鍊院. [加階] 仕滿九百, 七品以下, 四百五十.

[습독관] [경국대전] 훈련원·사역원·관상감·전의감에 둔다. [속대전] 《경국대전》에 나온다. 체아직 숫자에 가감이 있다. [번차] [속대전] 장번 [도목정사] 2번. 1월·7월. [속대전] 4번. 1·4·7·11월 [체아직] 종6품 1원(사역원). 종7품 4원(훈련원 1원, 사역원 1원, 관상감 1원, 전의감 1원). 종8품은 9원(훈련원 3원, 사역원 2원, 관상감 1원, 전의감 3원). 종9품 14원(훈련원 4원, 사역원 5원, 관상감 1원, 전의감 4원). [속대전] 종5품 5원(사역원 4원, 관상감 1원). 종6품 9원(훈련원 7원, 전의감 1원, 관상감 1원). 종7품은 7원(사역원 2원, 관상감 3원, 훈련원 1원, 전의감 1원). 종8품 11원(사역원 7원, 관상감 4원). 종9품은 43원(사역원 17원, 관상감 4원, 훈련원 22원). [보충] 종5품은 8원(사역원 7원, 관상감 1원). 종6품 12원(훈련원 7원, 전의감 1원, 관상감 4원). 종7품 7원(사역원 2원, 관상감 3원, 훈련원 1원, 전의감 1원). 종8품 12원(사역원 8원, 관상감 4원). 종9품 44원(사역원 18원, 관상감 4원, 훈련원 22원) [가계(加階)] 출근 일수 900일을 채워야 한다. 7품 이하는 450일이다.

▶ 兵典 > 番次都目 > [習讀官]

[醫員] [原] 議政府·六曹各三員, 宗親府·忠勤府·都摠府各二員. [續] 見原典, 而加內局·

惠民署·耆老所·中樞府. [番次] [續] 長番〔都目〕 四. 正月·四月·七月·十月〔遞兒〕
從八品, 一宗親府, 二議政府, 二六曹, 一忠勤府, 一都摠府. 從九品二, 一宗親府, 一忠勤府. [續]
從四品四, 從五品五, 內局. 從六品三, 一內局, 二惠民署. 從七品二, 內局. 從八品六, 宗親府·議政
府·六曹·忠勤府·耆老所·中樞府各一. 從九品二, 一惠民署, 一宗親府. [補] 從五品六, 內局.
從六品四, 二內局, 二惠民署. [加階] 仕滿九百, 七品以下, 四百五十.

[의원] [경국대전] 의정부·육조 각 3월, 종친부·충훈부·도총부 각 2월. [속대전] 《경
국대전》에 나온다. 내의원·혜민서·기로소·중추부 의원이 추가되었다. [번차] [속대전]
장번〔도목정사〕 4번. 1·4·7·10월〔체아직〕 종8품 7월(종친부 1월, 의정부 2월,
육조 2월, 충훈부 1월, 도총부 1월). 종9품 2월(종친부 1월, 충훈부 1월). [속대전] 종4품
4월. 종5품 5월(내의원). 종6품 3월(내의원 1월, 혜민서 2월). 종7품 2월(내의원). 종8품
6월(종친부·의정부·육조·충훈부·기로소·중추부 각 1월). 종9품 2월(혜민서 1월, 종친
부 1월). [보충] 종5품 6월(내의원). 종7품 4월(내의원 2월, 혜민서 2월). [가계(加階)]
출근 일수 900일을 채워야 한다. 7품 이하는 450일이다.

▶ 兵典 > 番次都目 > [醫員]

5. 입직(入直)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科時試官, 直宿時藥院, 月食時救食所, 紛別省記. [續] [補]
- 과거장의 시험관, 내의원에서 숙직하는 관원, 월식 때 구식례(救食禮)를 거행
하는 관원은 모두 별도로 생기(省記, 근무자 명단)를 올린다. [속대전] [보충]

▶ 兵典 > 入直 > [紛別省記]

6. 부신(符信)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信符依詳定數, 曹堂上親監烙給. … 內醫院二十九 …

○신부(信符)⁶는 상세하게 정해진 수에 따라 병조 당상관이 친히 감독하여 낙인 후 지급한다. … 내의원 29개 …

▶ 兵典 > 符信 > [信符依詳定數…]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信符, 依詳定數, 曹堂上親監烙給. … 內醫院二十九, …

○신부(信符)는 상세하게 정해진 수에 따라 병조 당상관이 친히 감독하여 낙인 후 지급한다. … 내의원 29개 …

▶ 兵典 中 > 符信 > 繢錄 > [信符定數]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續錄] ○信符, 依詳定數, 曹堂上親監烙給. … 內醫院二十九, …

[대전속록] ○신부(信符)는 상세하게 정해진 수에 따라 병조 당상관이 친히 감독하여 낙인 후 지급한다. … 내의원 29개 …

▶ 兵典 > 符信 > 《續錄》

속대전(續大典) 1746년

[符信] 信 · 漢符, 每歲首, 入直堂上官, 依常定數, 親監烙印, 內入外頒. … ○內入, 信符一百七十五, 漢符二百三十五. … 內醫院十三 … 典醫監 … 各二, … 惠民署 … 各一 …

6 신부(信符) : 하례(下隸)가 궐문을 드나들 때 몸에 달도록 병조에서 발급하던 증표이다.

[부신] 신부(信符) · 한부(漢符)⁷는 매해 초에 근무하는 당상관이 상세하게 정해진 수에 따라 친히 감독하여 낙인 후 궐내로 들였다가 궐 밖으로 배포한다.
… ○궐내로 들이는 것. 신부 175개, 한부 235개. … 내의원 13개 … 전의감
… 등은 각 2개, … 혜민서 … 등은 각 1개 …

▶ 兵典 > 符信 > [信符漢符]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續] 信 · 漢符, 每歲首, 入直堂上官, 依常定數, 親監烙印, 內入外頒. … ○內入, 信符一百七十五 [增] 四百六十五, 漢符二百三十五 [增] 五百六十五, …
內醫院十三 … 典醫監 … 各二, … 惠民署一 …

[속대전] 신부 · 한부는 매해 초에 근무하는 당상관이 상세하게 정해진 수에 따라 친히 감독하여 낙인 후 궐내로 들였다가 궐 밖으로 배포한다. … ○궐내로 들이는 것. 신부 175개 [대전통편] 465개, 한부 235개. [대전통편] 565개이다. … 내의원 13개 … 전의감 … 등은 각 2개 … 혜민서 1개 …

▶ 兵典 > 符信 > [信符漢符]

7. 급보(給保)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給保] 京 · 外軍士給保, 有差. 二丁爲一保, 甲士給二保. … ○司譯院 · 典醫監 · 觀象監官員生徒, 惠民署官員 · 算員 · 律員生徒, 道流生徒 · 弓人 · 失人 · 畫員生徒諸員, 馬醫 · 皂隸 · 羅將 · 醫生 · 律生 · 書員 · 日守 · 牧子 · 津夫 · 水夫, 進獻席匠, 則同居族親中一人, 書吏 · 樂生 ·

7 한부(漢符) : 관비(官婢)가 궐문을 드나들 때 몸에 달도록 병조에서 발급하던 증표이다.

良人樂工·水夫, 則二人, 院主, 則三人, 毋定他役. 書吏·樂生·司僕諸員·水夫無同居人, 則定戶別一人.

[급보] 도성과 지방 군사의 급보(給保)⁸는 차이를 둔다. 장정 2인당 보인(保人) 1명이다. 갑사(甲士)에게는 보인 2명을 준다. … ○사역원·전의감·관상감 관원과 생도, 혜민서관원·산원·율원과 생도, 소격서 생도, 궁인(弓人)·시인(矢人)·화원과 생도 등의 각 관원과 마의(馬醫)·조례·나장·의생(醫生)·율생·서원·일수·목자·진부·빙부·중국에 보내는 뜻자리를 만드는 장인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 중에서 1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서리·악생·양인인 악공·수부는 2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각 원(院)의 원주(院主)는 3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동거하는 친족이 없는 서리·악생·사복시 관원·수부는 다른 호에서라도 따로 1인을 정해 준다.

▶ 兵典 > 紿保 > [京·外軍士]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給保] ○京·外軍士給保, 有差. 二丁爲一保, 甲士給二保. … ○司譯院·典醫監·觀象監官員生徒, 惠民署官員, 算員·律員生徒, 道流生徒, 弓人, 矢人, 畫員生徒, 諸員, 馬醫, 皂隸, 羅將, 醫生, 律生, 書員, 日守, 牧子, 津夫, 水夫, 進獻席匠, 則同居族親中一人, 書吏·樂生·良人樂工·水夫, 則二人, 院主, 則三人, 毋定他役. …

[급보] 도성과 지방 군사의 급보(給保)는 차이를 둔다. 장정 2인당 보인(保人) 1명이다. 갑사(甲士)에게는 보인 2명을 준다. … ○사역원·전의감·관상감 관원과 생도, 혜민서관원·산원·율원과 생도, 소격서 생도, 궁인·시인·화원과 생도 등의 각 관원과 마의(馬醫)·조례·나장·의생(醫生)·율생·서원·일수·목자·진부·빙부·중국에 보내는 뜻자리를 만드는 장인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 중에서 1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서리·악생·양인인 악공·수부는 2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각 원(院)의 원주(院主)는 3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

8 급보(給保) : 군역에 종사하는 군사에게 보인(保人, 봉족奉足) 2명을 주는 제도이다. 보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보미(保米)나 보포(保布)를 내어 군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돋는다.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給保. 京·外軍士, 紿保有差. 二丁爲一保, 甲士給二保 … ○司譯院·典醫監·觀象監官員·生徒, 惠民署官員·算員·律員·生徒·道流生徒·弓人·矢人·畫員·生徒·諸員·馬醫·皂隸·羅將·醫生·律生·書員·日守·牧子·津夫·氷夫·進獻席匠, 則同居族親中一人, 書吏·樂生·良人樂工·水夫, 則二人, 院主, 則三人, 母定他役 …

급보. 도성과 지방 군사의 급보(給保)는 차이를 둔다. 장정 2인당 보인(保人) 1명이다. 갑사(甲士)에게는 보인 2명을 준다. … ○사역원·전의감·관상감 관원과 생도, 혜민서 관원·산원·율원과 생도, 소격서 생도, 궁인·시인·화원과 생도 등의 각 관원과 마의(馬醫)·조례·나장·의생(醫生)·율생·서원·일수·목자·진부·병부·중국에 보내는 뜻자리를 만드는 장인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 중에서 1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서리·악생·양인인 악공·수부는 2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각 원(院)의 원주(院主)는 3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諸色人, 紿保. [續] ○二丁, 爲一保. [經] ○ … 醫女·針線婢, 亦有保. [續] [補] … ○大典法, 軍士及漕卒, 同居子·婿·弟, 母定他役, 司譯院·典醫·觀象監官員·生徒, 惠民署官員, 簽員·律員生徒, 弓人·矢人·畫員生徒諸員, 馬醫·皂隸·羅將·醫生·律生·書員·日守·牧子·津夫·氷夫·進獻席匠, 則同居族親中一人, 書吏·樂生·良人樂工·水夫, 則二人, 院主則三人, 母定他役 … [補]

○각 담당자의 급보. [속대전] ○장정 2인당 보인(保人) 1명이다. [경국대전] ○ … 의녀·침선비에게도 보인을 둔다. [속대전] [보충] …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군사와 조졸(漕卒)은 함께 사는 아들·사위·동생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사역원·전의감·관상감의 관원과 생도, 혜민서의 관원, 산원·율원과 생도, 궁인·시인·화원과 생도 등 각 관원과

마의(馬醫) · 조례 · 나장 · 의생(醫生) · 율생 · 서원 · 일수 · 목자 · 진부 · 빙부 · 중국에 보내는 뜻자리를 만드는 장인은 동거하는 친족 중 1인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서리 · 악생 · 양인인 악공 · 수부는 동거하는 친족 중 2인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각 원(院)의 원주(院主)는 동거하는 친족 중 3인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보충]

▶ 兵典 > 名簿 > [諸色人給保]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給保] [原] 京 · 外軍士給保, 有差. 二丁爲一保, 甲士給二保. … ○司譯院 · 典醫監 · 觀象監官員生徒, 惠民署官員, 簽員 · 律員生徒, 道流生徒, 弓人, 失人, 畫員生徒諸員, 馬醫, 皂隸, 羅將, 醫生, 律生, 書員, 日守, 牧子, 津夫, 氷夫, 進獻席匠, 則同居族親中一人, 書吏 · 樂生 · 良人樂工 · 水夫, 則二人, 院主, 則三人, 毋定他役. …

[급보] [경국대전] 도성과 지방 군사의 급보(給保)는 차이를 둔다. 장정 2인당 보인(保人) 1명이다. 갑사(甲士)에게는 보인 2명을 준다. … ○사역원 · 전의감 · 관상감 관원과 생도, 혜민서 관원 · 산원 · 율원과 생도, 소격서 생도, 궁인(弓人) · 시인(矢人) · 화원과 생도 등의 각 관원과 마의(馬醫) · 조례 · 나장 · 의생(醫生) · 율생 · 서원 · 일수 · 목자 · 진부 · 빙부 · 중국에 보내는 뜻자리를 만드는 장인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 중에서 1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서리 · 악생 · 양인인 악공 · 수부는 2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각 원(院)의 원주(院主)는 3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

▶ 兵典 > 紿保 > [軍士給保]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給保] [原] 京 · 外軍士給保, 有差. 二丁爲一保, 甲士給二保. … ○司譯院 · 典醫監 · 觀象監官員生徒, 惠民署官員, 簽員 · 律員生徒, 道流生徒, 弓人, 失人, 畫員生徒諸員, 馬醫, 皂隸, 羅將, 醫生, 律生, 書員, 日守, 牧子, 津夫, 氷夫, 進獻席匠, 則同居族親中一人, 書吏 · 樂生 · 良人樂工 · 水夫, 則二人, 院主, 則三人, 毋定他役. …

[급보] [경국대전] 도성과 지방 군사의 급보(給保)는 차이를 둔다. 장정 2인당 보인(保人) 1명이다. 갑사(甲士)에게는 보인 2명을 준다. … ○사역원 · 전의감 · 관상감 관원과 생도, 혜민서 관원 · 산원 · 율원과 생도, 소격서 생도, 궁인(弓人) · 시인(矢人) · 화원과 생

도 등의 각 관원과 마의(馬醫) · 조례 · 나장 · 의생(醫生) · 율생 · 서원 · 일수 · 목자 · 진부 · 빙부 · 중국에 보내는 둋자리를 만드는 장인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 중에서 1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서리 · 악생 · 양인인 악공 · 수부는 2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각 원(院)의 원주(院主)는 3명의 신역들을 면제한다. …

▶ 兵典 > 紿保 > [軍士給保]

8. 복호(復戶)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년

[復戶] 典醫監 · 司譯院 · 觀象監 · 惠民署 · 律學 · 算學官員生徒, … 醫女 · … 並復戶.

[복호] 전의감 · 사역원 · 관상감 · 혜민서 · 율학 · 산학 관원과 생도 … 의녀 … 들은 모두 복호(復戶, 부역 면제)한다.

▶ 兵典 > 復戶 > [典醫監司譯院…]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後續錄] 典醫監 · 司譯院 · 觀象監 · 惠民署 · 律學 · 算學官員生徒, … 醫女 · … 並復戶.

[대전후속록] 전의감 · 사역원 · 관상감 · 혜민서 · 율학 · 산학 관원과 생도 … 의녀 … 들은 모두 복호(復戶, 부역 면제)한다.

▶ 兵典 中 > 復戶 > 後續錄 > [並復戶]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後續錄] 典醫監 · 司譯院 · 觀象監 · 惠民署 · 律學 · 算學官員生徒, … 醫

女 · … 並復戶.

[대전후속록] 전의감 · 사역원 · 관상감 · 혜민서 · 율학 · 산학 관원과 생도 … 의녀 … 들은 모두 복호(復戶, 부역 면제)한다.

▶ 兵典 > 復戶 > 《後續錄》

9. 구휼(救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

夫匠軍士病給醫藥

凡軍士在鎮守之處, 丁夫雜匠在工役之所, 而有疾病, 當該官司不爲請給醫藥救療者, 答四十, 因而致死者, 杖八十. 若已行移所司, 而不差撥良醫, 及不給對證藥餌醫治者, 罪同.

[直解] 凡軍士在防禦所爲旅, 丁夫及雜匠人等在立役所爲有如可, 有疾病爲去等, 次知官司亦醫藥乙, 傳請救病不冬爲在乙良, 答四十齊, 因此致死爲在乙良, 杖八十齊. 所任官良中, 已行移爲良在乙, 大醫乙發送不冬爲旅, 病證良中 對治爲在藥餌乙, 許給理病不冬爲在乙良, 同罪論爲乎事.

장정 · 장인 · 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재를 제공함.

군사가 주둔지에서, 또는 장정이나 각종 장인이 공사장에서 질병이 생겼을 때 의원과 약재를 지급하여 치료할 것을 해당 관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 때문에 죽게 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담당 관사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파견하지 않은 자나 증상에 맞는 약을 지급 하여 치료하지 않은 자는 죄가 같다.

[직해] 군사가 방어소에 있거나 정부나 각종 장인 등이 요역을 서는 곳에 있다 가 질병이 들었는데, 담당 관사에서 의원과 약을 요청하여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죽으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요청할 관사에 이미 공문을 보냈는데, 좋은 의원을 보내지 않거나 병증을 다스리는 약을 지급하여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논한다.

▶ 卷26 > 刑律 > 雜犯 > 第401條 夫匠軍士病給醫藥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세종 연간 1419-1450년

夫匠軍士病給醫藥

凡軍士在鎮守之處，丁夫雜匠在工役之所，而有疾病，當該官司不爲請給醫藥救療者，笞四十，因而致死者杖八十。若已行移所司，而不差撥良醫，及不給對證藥餌醫治者，罪同。

장정 · 장인 · 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재를 제공함

군사가 주둔지에서, 또는 장정이나 각종 장인이 공사장에서 질병이 생겼을 때 의원과 약재를 지급하여 치료할 것을 해당 관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 때문에 죽게 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담당 관사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파견하지 않은 자나 증상에 맞는 약을 지급하여 치료하지 않은 자는 죄가 같다.⁹

▶ 卷26 > 刑律 > 雜犯 > 第401條 夫匠軍士病給醫藥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1585년

○夫匠軍士病給醫藥

凡軍士在鎮守之處，丁夫雜匠在工役之所，而有疾病，當該 鎮守及管上官司不爲請給醫藥救療者，笞四十，因而致死者，杖八十。若已行移所司，而不差撥良醫，及不給對証藥餌醫治者，同罪。

… ○藥不對症以致死醫人亦，依庸醫律。

장정 · 장인 · 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재를 제공함

9 참조 :《당률소의》 권26 〈잡률雜律〉 396. 丁防官奴婢病不救療.

군사가 주둔지에서, 또는 장정이나 각종 장인이 공사장에서 질병이 생겼을 때 의원과 약재를 지급하여 치료할 것을 해당 관청 진수관(鎮守官)이나 상급 관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 때문에 죽게 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담당 관사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파견하지 않은 자나 증상에 맞는 약을 지급하여 치료하지 않은 자는 죄가 같다.

… ○증상에 맞지 않는 약재를 써서 죽게 만든 의원은 〈용의율庸醫律〉에 따라 처벌한다.

▶ 卷之二十六 > 雜犯 > ○夫匠軍士病給醫藥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救恤] ○水 · 陸赴防軍有病者, 各其將, 責付親管人救護, 病重, 則授所在官治療. 殤者, 草葬立標, 知會本家, 報本曹.

[구휼] ○바다나 국경의 부방군(赴防軍, 변경을 지키는 군사)이 병들면 각 장수에게 몸소 주관하여 구호할 책임을 맡긴다. 병이 위중하면 근처 큰 고을로 보내어 치료한다. 혹 군사가 죽으면 초장(草葬, 가매장)하고 뽧말을 세운 후 본가에 알리고 병조에 보고한다.

▶ 兵典 中 > 救恤 > [大典] > [赴防軍]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救恤. 水陸赴防軍有病者, 各其將責付親管人救護. 病重, 則授所在官治療. 殤者, 草葬立標, 知會本家, 報本曹.

구휼. 바다나 국경의 부방군(赴防軍, 변경을 지키는 군사)이 병들면 각 장수에게 몸소 주관하여 구호할 책임을 맡긴다. 병이 위중하면 근처 큰 고을로 보내어 치료한다. 혹 군사가 죽으면 초장(草葬, 가매장)하고 뽧말을 세운 후 본가에 알려드리고 병조에 보고한다.

▶ 兵典 > 救恤 > [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增] 三軍門置藥房 鍼藥各一, 救療有病軍卒.

[추가] 삼군문(三軍門, 훈련도감 · 어영청 · 금위영)에 약방을 설치하여 침의 · 약방 각 1명 병든 군졸을 치료한다.

▶ 兵典 > 救恤 > [三軍門置藥房]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救恤] [原] 水 · 陸赴防軍有病者, 各其將, 責付親管人救護, 病重, 則授所在官治療. 殤者草葬立標, 知會本家, 報本曹.

[구휼] [경국대전] 바다나 국경의 부방군(赴防軍, 변경을 지키는 군사)이 병들면 각 장수에게 몸소 주관하여 구호할 책임을 맡긴다. 병이 위중하면 근처 큰 고을로 보내어 치료한다. 혹 군사가 죽으면 초장(草葬, 가매장)하고 뜻말을 세운 후 본가에 알려드리고 병조에 보고한다.

▶ 兵典 > 救恤 > [赴防軍有病者]

[增] 三軍門置藥房 鍼藥各一, 救療有病軍卒.

[대전통편] 삼군문(三軍門, 훈련도감 · 어영청 · 금위영)에 약방을 설치하여 침의 · 약방 각 1명 병든 군졸을 치료한다.

▶ 兵典 > 救恤 > [三軍門置藥房]

10. 구목(廝牧)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

養療瘦病畜產不如法

凡養療瘦病馬牛駝驃驢，不如法，笞三十，因而致死者，一頭，笞四十，每三頭，加一等，罪止杖一百。羊減三等。

[直解] 凡瘦弱有病爲在，馬牛駝驃驢等乙，養飼理病爲乎矣，不如法爲在乙良，笞三十齊。因此致死爲在乙良，一頭是去等 答四十，每三頭，加一等，羊是去等，減三等爲乎事。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우

야위거나 병든 말·소·낙타·노새·나귀를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가축이 죽게 되면 1마리당 태형 40대에 처한다. 3마리마다 1등급을 더하며, 최고 장형 100대로 제한한다. 양은 3등급을 감한다.

[직해] 허약하거나 병든 말·소·낙타·노새·나귀 등을 먹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이로 말미암아 죽게 하면 1마리당 태형 40대에 처하고, 3마리마다 1등급을 더하며, 양은 3등급을 줄인다.

▶ 卷16 > 兵律 > 廐牧 > 第251條 養療瘦病畜產不如法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세종 연간 1419-1450년

養療瘦病畜產不如法

凡養療瘦病馬牛駝驃驢，不如法，笞三十，因而致死者，一頭，笞四十，每三頭，加一等，罪止杖一百。羊減三等。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우

야위거나 병든 말·소·낙타·노새·나귀를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가축이 죽게 되면 1마리당 태형 40대에 처한다. 3마리마다 1등급을 더하며, 최고 장형 100대로 제한한다. 양은 3등급을 감한다.¹⁰

▶ 卷16 > 兵律 > 廐牧 > 第251條 養療瘦病畜產不如法

10 참고 :《당률소의》 권15 〈구고廐庫〉 198 受官羸病畜產.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廄牧] 司僕寺祿官兼官, 及馬醫養馬等, 不勤喂養馬牛, 生病或死者, 比犧牲主司喂養不如法律, 加一等論. 諸邑分養馬牛同. ○驕馬, 三七日內死者, 幷論作驕者. ○死者, 每三匹, 徵一匹. 遺失者, 准數追徵.

[구목] 사복시의 녹관·겸관·마의(馬醫)·양마 등이 소와 말을 부지런히 먹이지 않아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에는 《대명률》의 ‘희생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원이 규정대로 먹이지 않은 경우’에 의하되, 1등급을 더하여 처벌한다.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과 소도 마찬가지이다. ○거세한 말이 21일 이내에 죽으면 시술한 사람도 함께 죄를 따진다. ○소나 말이 죽었다면 3마리당 1마리를 추징한다. 가축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숫자대로 추징한다.

▶ 兵典 > 廄牧 > [總論]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1585년

養療瘦病馬牛駝羸驢不如法, 答三十, 因而致死者, 一頭, 答四十, 每三頭, 加一等, 十九頭 罪止杖一百. 羊減三等. …

야위거나 병든 말·소·낙타·노새·나귀를 돌보고 치료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가축이 죽게 되면 1마리당 태형 40대에 처한다. 3마리마다 1등급을 더하며 19마리까지, 최고 장형 100대로 제한한다. 양은 3등급을 감한다. …

▶ 卷之十六 > 廄牧 > 養療瘦病畜產不如法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廄牧] ○司僕寺祿官兼官, 及馬醫養馬等, 不勤喂養馬牛, 生病或死者, 比犧牲主司喂養不如法律, 加一等論. 遺失者, 准數追徵. 諸邑分養馬牛同. ○驕馬, 三七日內死者, 幷論作驕者. ○死者, 每三匹, 徵一匹.

[구목] 사복시의 녹관·겸관·마의(馬醫)·양마 등이 소와 말을 부지런히 먹이지 않아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에는 《대명률》의 ‘희생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원이 규정대로 먹이지 않은 경우'에 의하되, 1등급을 더하여 처벌 한다.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과 소도 마찬가지이다. ○거세한 말이 21일 이내에 죽으면 시술한 사람도 함께 죄를 따진다. ○소나 말이 죽었다면 3마리당 1마리를 추징한다.

▶ 兵典 中 > 廐牧 > [大典] > [不勤喂養馬牛]

○凡乘官馬者，致令折傷或病者，杖七十，死者，杖八十，追徵。驛馬同。○若落馬者，勿論。

○관청의 말을 타다가 말을 다치거나 병들게 한 경우에는 장형 70대에 처한다. 말이 죽었으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추징한다. 각 역참의 말도 같다. ○말에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 兵典 中 > 廐牧 > [大典] > [乘官馬者]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 1743년

濟州貢馬上來之時，或有病留，而該邑守令，不善救療，以至經[徑]斃者，過年不爲上送者，一依分養馬故失例，守令論責，或越祿。康熙戊戌承傳

제주에서 공물로 바친 말을 올려보내다가 간혹 병이 들어 잠시 머무를 때 그 고을의 수령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도중에 죽은 경우와, 해가 지나도록 말을 올려보내지 못한 경우는 모두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을 고의로 잊게 한 사례’에 의하여 수령의 죄를 논하거나 혹은 녹봉을 건너뛴다. 강희 무술년 (1718, 숙종 44)에 받은 전교

▶ 兵典 > 廐牧 > 670. [濟州貢馬上來之時…]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司僕寺祿官·兼官及馬醫·養馬等，不勤喂養，馬·牛生病，或死者，比犧牲主司喂養不如法律，加一等論。依大明律喂養不如法者，杖八十，加一等，則杖九十。遺失者，准數追徵。… 凡乘官馬者，致令折傷或病者，杖七十，死者，杖八十，追徵。驛馬同。○若落馬者，勿論。

사복시의 녹관·겸관·마의(馬醫)·양마 등이 소와 말을 부지런히 먹이지 않아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에는 《대명률》의 ‘희생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원이 규정대로 먹이지 않은 경우’에 의하되, 1등급을 더하여 처벌한다. 대명률에서는 장령 80대라고 하였으나 1등급을 더하면 장령 90대이다. 가축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숫자대로 추징한다. … 관청의 말을 타다가 말을 다치거나 병들게 한 경우에는 장령 70대에 처한다. 말이 죽었으면 장령 80대에 처하고 추징한다. 각 역참의 말도 같다. ○말에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 兵典 > 廐牧 > [大典]

[新補受教] … ○濟州貢馬上來之時, 或有病留, 而該邑守令不善救療, 以至徑斃者, 過年不爲上送者, 一依分養馬故失例, 守令論責, 或越祿. 康熙戊戌承傳

[신보수교집록] … ○제주에서 공물로 바친 말을 올려보내다가 간혹 병이 들어 잠시 머무를 때 그 고을의 수령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도중에 죽은 경우와, 해가 지나도록 말을 올려보내지 못한 경우는 모두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을 고의로 잃게 한 사례’에 의하여 수령의 죄를 논하거나 혹은 녹봉을 건너뛴다. 강희 무술년(1718, 숙종 44)에 받은 전교

▶ 兵典 > 廐牧 > 《新補受教》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廐牧] [原] 司僕寺祿官·兼官及馬醫·養馬等, 不勤喂養馬·牛, 生病或死者, 比犧牲主司, 喂養不如法律, 加一等論. 諸邑分養馬·牛同. ○驕馬, 三七日內死者, 幷論作驕者. ○死者, 每三匹, 徵一匹. 遺失者, 準數追徵.

[구목] [경국대전] 사복시의 녹관·겸관·마의(馬醫)·양마 등이 소와 말을 부지런히 먹이지 않아 병이 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에는 《대명률》의 ‘희생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원이 규정대로 먹이지 않은 경우’에 의하되, 1등급을 더하여 처벌한다. 각 고을에서 기르는 국가의 말과 소도 마찬가지이다. ○거세한 말이 21일 이내에 죽으면 시술한 사람도 함께 죄를 따진다. ○소나 말이 죽었다면 3마리당 1마리를 추징한다. 가축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숫자대로 추징한다.

▶ 兵典 > 廐牧 > [司僕寺官不勤喂養]

11. 잡류(雜類)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雜類] 雜類人差定, 有差. … ○胎室看守軍, 先王·先后各四人, 親盡則二人, 大殿·王妃殿各八人, 王世子四人. … ○藥夫, 牧以上五人, 都護府四人, 郡三人, 縣二人. … ○雜色軍無定數, 以錄事·書吏·諸員·畫員·道流·書題·僕隸·各邑人吏·日守·書員·醫生·律生·守陵軍·守墓軍·看守軍·壇直·堂直·藥夫·津夫·水夫·冰夫·院主·牧子·匠人·公私賤定屬.

[잡류] 잡직을 임명할 때는 차등을 둔다. … ○태실의 간수군. 선왕과 선왕후의 태실에는 각 4인을 임명하되, 제사를 받드는 대수가 끝나면 2인만 둔다. 대전과 왕비전의 태실에는 각 8인이다. 왕세자의 태실에는 4인이다. … ○약부(藥夫)는 목(牧) 이상 고을에 5인, 도호부에 4인, 군(郡)에 3인, 현(縣)에 2인을 임명한다. … ○잡색군(雜色軍)은 정해진 인원수가 없다. 각각 녹사·서리·제원·화원·도류·서제·복례·각 고을의 아전·일수·서원·의생(醫生)·율생·수릉군·수묘군·간수군·단지기·당지기·약부(藥夫)·진부·수부·빙부·원주·목자·장인·공천·사천 등으로 임명하여 배치한다.

▶ 兵典 > 雜類 > [雜類人差定有差]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雜類] ○雜類人差定, 有差. … ○胎室看守軍, 先王·先后各四人, 親盡則二人, 大殿·王妃殿各八人, 王世子四人. … ○藥夫, 牧以上五人, 都護府四人, 郡三人, 縣二人. … ○雜色軍無定數, 以錄事·書吏·諸員·畫員·道流·書題·僕隸·各邑人吏·日守·書員·醫生·律生·守陵軍·守墓軍·看守軍·壇直·堂直·藥夫·津夫·水夫·冰夫·院主·牧子·匠人·公私賤定屬.

[잡류] ○잡직을 임명할 때는 차등을 둔다. … 태실의 간수군. 선왕과 선왕후의 태실에는 각 4인을 임명하되, 제사를 받드는 대수가 끝나면 2인만 둔다. 대전과 왕비전의 태실에는 각 8인이다. 왕세자의 태실에는 4인이다. … ○약부(藥夫)는 목(牧) 이상 고을에 5인, 도호부에 4인, 군(郡)에 3인, 현(縣)에 2인을 임명한다. … ○잡색군(雜色軍)은 정해진 인원수가 없다. 각각 녹사·서리·제원·화원·도류·서제·복례·각 고을의 아전·일수·서원·의생(醫生)·율생·수릉군·수묘군·간수군·단지기·당지기·약부(藥夫)·진부·수부·빙부·원주·목자·장인·공천·사천 등으로 임명하여 배치한다.

도류·서제·복례·각 고을의 아전·일수·서원·의생(醫生)·율생·수릉군·수묘군·간수군·단지기·당지기·약부(藥夫)·진부·수부·빙부·원주·목자·장인·공천·사천 등으로 임명하여 배치한다.

▶ 兵典 下 > 雜類 > [大典] > [雜類人差定]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雜類. 雜類人, 差定有差. … ○胎室看守軍, 先王·先后, 各四人, 親盡, 則二人, 大殿·王妃殿, 各八人, 王世子, 四人. … ○藥夫, 牧以上, 五人, 都護府, 四人, 郡, 三人, 縣, 二人. … ○雜色軍, 無定數, 以錄事·書吏·諸員·畫員·道流·書題·僕隸·各邑人吏·日守·書員·醫生·律生·守陵軍·守墓軍·看守軍·壇直·堂直·藥夫·津夫·水夫·冰夫·院主·牧子·匠人, 公私賤定屬. 잡류. 잡직을 임명할 때는 차등을 둔다. … 태실의 간수군. 선왕과 선왕후의 태실에는 각 4인을 임명하되, 제사를 받드는 대수가 끝나면 2인만 둔다. 대전과 왕비전의 태실에는 각 8인이다. 왕세자의 태실에는 4인이다. … ○약부(藥夫)는 목(牧) 이상 고을에 5인, 도호부에 4인, 군(郡)에 3인, 현(縣)에 2인을 임명한다. … ○잡색군(雜色軍)은 정해진 인원수가 없다. 각각 녹사·서리·제원·화원·도류·서제·복례·각 고을의 아전·일수·서원·의생(醫生)·율생·수릉군·수묘군·간수군·단지기·당지기·약부(藥夫)·진부·수부·빙부·원주·목자·장인·공천·사천 등으로 임명하여 배치한다.

▶ 兵典 > 雜類 > [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雜類] [原] 雜類人差定, 有差. … ○胎室看守軍, 先王·先后各四人, 親盡則二人, 大殿·王妃殿各八人, 王世子四人. … ○藥夫, 牧以上五人, 都護府四人, 郡三人, 縣二人. … ○雜色軍無定數, 以錄事·書吏·諸員·畫員·道流·書題·僕隸·各邑人吏·日守·書員·醫生·律生·守陵軍·守墓軍·看守軍·壇直·堂直·藥夫·津夫·水夫·冰夫·院主·牧子·匠人·公私賤定屬.

[잡류] [경국대전] 잡직을 임명할 때는 차등을 둔다. … ○태실의 간수군. 선왕과

선왕후의 태실에는 각 4인을 임명하되, 제사를 받드는 대수가 끝나면 2인만 둔다. 대전과 왕비전의 태실에는 각 8인이다. 왕세자의 태실에는 4인이다. … ○약부(藥夫)는 목(牧) 이상 고을에 5인, 도호부에 4인, 군(郡)에 3인, 현(縣)에 2인을 임명한다. … ○잡색군(雜色軍)은 정해진 인원수가 없다. 각각 녹사·서리·제원·화원·도류·서제·복례·각 고을의 아전·일수·서원·의생(醫生)·율생·수릉군·수묘군·간수군·단지기·당지기·약부(藥夫)·진부·수부·빙부·원주·목자·장인·공천·사천 등으로 임명하여 배치한다.

▶ 兵典 > 雜類 > [雜類人差定]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雜類〕〔原〕雜類人差定, 有差. … ○胎室看守軍, 先王·先后各四人, 親盡, 則二人, 大殿·王妃殿各八人, 王世子四人. … ○藥夫, 牧以上五人, 都護府四人, 郡三人, 縣二人. … ○雜色軍無定數, 以錄事·書吏·諸員·畫員·道流·書題·僕隸·各邑人吏·日守·書員·醫生·律生·守陵軍·守墓軍·看守軍·壇直·堂直·藥夫·律夫·水夫·冰夫·院主·牧子·匠人·公私賤定屬.

〔잡류〕〔경국대전〕 잡직을 임명할 때는 차등을 둔다. … ○태실의 간수군. 선왕과 선왕후의 태실에는 각 4인을 임명하되, 제사를 받드는 대수가 끝나면 2인만 둔다. 대전과 왕비전의 태실에는 각 8인이다. 왕세자의 태실에는 4인이다. … ○약부(藥夫)는 목(牧) 이상 고을에 5인, 도호부에 4인, 군(郡)에 3인, 현(縣)에 2인을 임명한다. … ○잡색군(雜色軍)은 정해진 인원수가 없다. 각각 녹사·서리·제원·화원·도류·서제·복례·각 고을의 아전·일수·서원·의생(醫生)·율생·수릉군·수묘군·간수군·단지기·당지기·약부(藥夫)·진부·수부·빙부·원주·목자·장인·공천·사천 등으로 임명하여 배치한다.

▶ 兵典 > 雜類 > [雜類人差定]

12. 잡령(雜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

軍人替役

… 若醫工承差關領官藥，隨軍征進，轉雇庸醫冒名代替者，各杖八十，雇工錢入官。

[直解] … 大醫亦官藥乙逢受，軍士良中進使內如可，親進不冬，無用醫員乙，財物許給，代送令是在乙良，各杖八十，代立人矣捧上爲乎財物乙良，沒官爲乎事。

군대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냄

… 의원으로 임명되어 관청의 약재를 수령하고 군대에 파견하게 되었으나, 일반 의원을 고용하여 이름을 사칭한 채 자신을 대체하게 하면 각각 장형 80대에 처한다. 고용할 때 쓴 돈은 관청에 넣는다.

[직해] 유능한 의원이 관청의 약재를 수령하여 군사에게 가게 되었다가 직접 가지 않고 무능한 의원에게 재물을 주어 대신 가게 하면 각각 장형 80대에 처한다. 대신 간 사람이 받은 재물은 관청에 몰수한다.

▶ 卷14 > 兵律 > 軍政 > 第227條 軍人替役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세종 연간 1419-1450년

軍人替役

… 若醫工承差關領官藥 隨軍征進，轉雇庸醫冒名代替者 各杖八十，雇工錢入官。
講曰：謂替身杖六十，收籍充軍，正身杖八十，仍舊充軍。

군대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냄

… 의원으로 임명되어 관청의 약재를 수령하고 군대에 파견하게 되었으나, 일반 의원을 고용하여 이름을 사칭한 채 자신을 대체하게 하면 각각 장형 80대에 처한다. 고용할 때 쓴 돈은 관청에 넣는다.

강해 : 대신 간 사람은 장형 60대에 처한 후 군적에 올려 충군(充軍)하고, 본인은 장형 80대에 처한 후 예전처럼 충군한다.¹¹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騎載馬] 行幸時, … 隨駕醫員二, 及世子隨從醫員一, 竝給司僕馬.

[기재마] 행행(行幸, 주상의 대궐 밖 행차)할 때. … 주상의 행렬을 수행하는 의원 2원과 세자를 수행하는 의원 1원에게는 모두 사복시의 말을 지급한다.

▶ 兵典 > 騎載馬 > [行幸時香醞…]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1585년

○軍人替役

… 若醫工承差關領官藥. 隨軍征進. 轉雇庸醫冒名代替者. 各杖八十, 雇工錢入官.

○군대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냄

… 의원으로 임명되어 관청의 약재를 수령하고 군대에 파견하게 되었으나, 일반 의원을 고용하여 이름을 사칭한 채 자신을 대체하게 하면 각각 장형 80대에 처한다. 고용할 때 쓴 돈은 관청에 넣는다.

▶ 卷之十四 > 軍政 > 第227條 軍人替役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騎載馬] [續錄] 行幸時, … 隨駕醫員二, 及世子隨從醫員一, 竝給司僕馬.

[기재마] [대전속록] 행행할 때. … 주상의 행렬을 수행하는 의원 2원과 세자를 수행하는 의원 1원에게는 모두 사복시의 말을 지급한다.

▶ 兵典 下 > 騎載馬 > 繼錄 > [香醞載持驛馬]

11 참조 : 《당률소의》 권16 〈천홍擅興〉 228. 征人冒名相代 / 《육군법률陸軍法律》 제4편 律例 제 12장 詐僞律 310조.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騎載馬 [續錄] 行幸時, … 隨駕醫員二, 及世子隨從醫員一, 竝給司僕馬.

기재마 [대전속록] 행행 때. … 주상의 행렬을 수행하는 의원 2원과 세자를 수행하는 의원 1원에게는 모두 사복시의 말을 지급한다.

▶ 兵典 > 騎載馬 > 《續錄》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醫工承差隨征, 以庸醫代替, 各杖八十. [律]

○의원으로 임명되어 군대에 파견하게 되었으나, 일반 의원을 고용하여 자신을 대체하게 하면 각각 장형 80대에 처한다. [대명률]

▶ 兵典 > 雜令 > [事關軍機]

형 전(刑典)

1. 용률(用律)

당률소의(唐律疏議) 652년

十惡.

疏議曰, 五刑之中, 十惡尤切, 虧損名教, 毀裂冠冕. 特標篇首, 以爲明誠. 其數甚惡者, 事類有十, 故稱十惡. ...

...

一曰謀反. 謂謀危社稷

...

六曰大不敬. 謂盜大祀神御之物 · 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如本方及封題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牢固, 指斥乘輿, 情理切害, 及對捍制使, 而無人臣之禮.

疏議曰, 禮者, 敬之本, 敬者, 禮之輿. 故禮運云, 禮者, 君之柄, 所以別嫌明微, 考制度, 別仁義. 責其所犯既大, 皆無肅敬之心. 故曰大不敬.

註謂盜大祀神御之物 · 乘輿服御物.

疏議曰, 大祀者, 依祠令, 昊天上帝 · 五方上帝 · 皇地祇 · 神州 · 宗廟等爲大祀. 職制律又云, 凡言祀者, 祭 · 享同. 若大祭 · 大享, 畝同大祀. 神御之物者, 謂神祇所御之物. 本條注云, 謂供神御者, 帷帳 · 几 · 杖, 亦同. 造成未供而盜, 亦是.

酒醴·饌具及籩·豆·簠·簋之屬，在神前而盜者，亦入大不敬，不在神所盜者，非也。乘輿服御物者，謂主上服御之物。人主，以天下爲家，乘輿巡幸，不敢指斥尊號，故託乘輿以言之。本條注云，服，通衾茵之屬，眞副等，皆須監當之官部分擬進，乃爲御物。

注，盜及僞造御寶。

疏議曰，說文云，璽者，印也。古者，尊卑共之。左傳云，襄公自楚還，及方城，季武子取卞，使公冶問，璽書，追而予之。是其義也。秦漢以來，天子曰璽，諸侯曰印。開元歲中，改璽曰寶。本條云，僞造皇帝八寶。此言御寶者，爲攝三后寶，竝入十惡故也。

注，合和御藥，誤不如本方及封題誤。

疏議曰，合和御藥，雖憑正方，中間錯謬，誤違本方。封題誤者，謂依方合訖，封題有誤，若以丸爲散，應冷言熱之類。

注，若造御膳，誤犯食禁。

疏議曰，周禮，食醫掌王之八珍。所司特宜敬慎。營造御膳，須憑食經，誤不依經，卽是不敬。

注，御幸舟船，誤不牢固。

疏議曰，帝王所之，莫不慶幸。舟船旣擬供御，故曰御幸舟船。工匠造船，備盡心力，誤不牢固，卽入此條。但御幸舟船以上三事，皆爲因誤得罪。設未進御，亦同十惡。如其故爲，卽從謀反科罪。其監當官司，準法減科，不入不敬。

注，指斥乘輿，情理切害。

疏議曰，此謂情有觖望，發言謗毀，指斥乘輿，情理切害者。若使無心怨天，唯欲誣構人罪，自依反坐之法，不入十惡之條。舊律云，言理切害。今改爲情理切害者，蓋欲原其本情，廣恩慎罰故也。

注，及對捍制使，而無人臣之禮。

疏議曰，奉制出使，宣布四方，有人對捍，不敬制命，而無人臣之禮者。制使者，謂奉勅定名及令所司差遣者，是也。

...

10악(十惡)。

소의(疏議) : 오형(五刑) 중에서 10악이 가장 중범죄이니 이념을 훼손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특별히 책 앞머리에 기록하여 분명하게 훈계하는 바이다. 여러 죄악 중에서 매우 악독한 것들을 10가지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10악이라고 명명한다. ...

...

첫째, 모반이다. 사직을 무너뜨리기로 모의하는 것이다

...

여섯째, 대불경(大不敬)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御寶)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쳇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황제의 일을 비방하면서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 황제가 보낸 사신에게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경우.

소의(疏議) : 예는 공경의 본질이며 공경은 예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예기 · 예운禮運》에서 ‘예는 임금의 통치 수단으로, 혐의를 구별하고 속마음을 명확하게 만드는 바이며 제도를 따져보고 인과 의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였다. 범죄가 중대한 경우를 캐보면 모두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불경(大不敬)이라고 하였다.

세주(細註)에서 말한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소의 : 대사(大祀)란 제례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천지 · 오방신 · 지신 · 고을신 · 종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뜻한다. 《당률 · 직제율職制律》에도 ‘제사를 언급할 때 제(祭)와 향(享)은 동일하다. 대제(大祭)와 대향(大享) 모두 대사(大祀)이다.’라고 되어 있다. ‘신어지물(神御之物)’이란 신령이 사용하는 물건을 뜻한다. 원래 조향의 주석에서 ‘신령이 사용하는 것은 장막이나 궤나 지팡이 등을 뜻한다.’라고 했으니 같은 의미이다. 이것들을 만들고 진상하지 않거나 훔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신령 앞에 놓인 술이나 음식 또는 제기를 훔치는 경우도 대불경에 포함된다. 신령 앞에 놓이지 않은 것을 훔치면 대불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여복어물(乘輿服御物)’이란 황제의 의복이나 기물을 뜻한다. 군주는

천하를 집으로 삼아 수레나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법이니 함부로 존호를 거론 하지 않아야 하므로 수레나 가마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원래 조항의 주석에서 ‘의복이란 이불이나 방석 같은 것들까지 통틀어 말한 것이다. 사용 중이건 예비 용이건 모두 담당 관원이 처리하여 진상해야만 그때부터 황제의 기물이 된다.’라고 하였다.

세주에서 말한 어보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소의 : 《설문說文》에서는 ‘새(璽)는 인장이다. 옛날에는 귀천과 상관없이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하였고, 《좌전左傳》에서는 ‘양공(襄公)이 초나라에서 돌아오다가 방성에 도착했을 때, 계무자(季武子)가 변읍(卞邑)을 탈취한 후 공야(公冶)를 시켜서 양공께 문안하게 하였다. 한 통의 서신을 써서 봉인하고는 사람을 시켜 따라가게 하고 공야에게 전해 양공께 올리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의미이다. 진한(秦漢)시대부터 천자는 새(璽), 제후는 인(印)이라고 하다가 개원연간(713-741년)에 새(璽)를 보(寶)라고 변경하였다. 원래 조항에서는 ‘황제의 8보(八寶)를 위조한 경우’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어보라고 말한 것은 세황후의 인장을 모두 뜯하는 것으로 10악에 포함하는 것이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소의 :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맞는 처방에 의거했더라도 하나라도 틀리거나 혹은 맞는 처방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약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했다는 것은 맞는 처방에 의거하여 조제한 후에 봉투에 적은 내용이 틀린 경우로, ○○환을 ○○산이라고 적거나 약성이 찬 약재를 뜨겁다고 적은 경우이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소의 : 《주례周禮》에서 ‘식의(食醫)는 왕의 8가지 진미를 관장한다.’라고 하였으니 맡은 이는 특별히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식경食經》에 의거해야 하니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경(不敬)이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소의 : 황제가 행차하는 곳은 경사롭지 않은 경우가 없다. 배는 황제가 사용하

는 기물에 준하기 때문에 황제가 타는 배라고 한 것이다. 기술자가 배를 만들 때 정성을 다해야 하거늘 실수로라도 견고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조항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한다. 단, 이 조항을 포함하여 위의 3가지 일은 모두 착오로 죄를 지은 것이다. 설령 진상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10악과 동일하게 처분한다. 혹시 일부러 했다면 모반의 죄목을 따른다. 당시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와 담당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등급을 감하고 불경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의 일을 비방하면서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

소의 : 이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비방하는 말을 내뱉으며 황제의 일을 비방하되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무심결에 원망하는 경우나, 그저 남의 죄를 꾸미려는 경우나, 자신의 반좌법(反坐法, 위증죄) 때문에 비방한 경우에는 10악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예전의 당률[舊律]에는 ‘말이 불순한 경우[言理切害]’라고 되어 있었다. 지금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情理切害]’로 수정한 까닭은 장본인의 속마음을 헤아리기 위함이니 은택을 널리 베풀고 형벌을 조심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세주에서 말한 황제가 보낸 사신에게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경우.
소의 : 칙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나가서 방방곡곡에 법령을 선포할 때 누구라도 대항하여 법령을 받들지 않고 신하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제사(制使)란 정명이나 법령이 담긴 칙명을 받드는 일을 맡아 파견된 사람이다.

...

▶ 卷1 > 名例 > 十惡

諸合和御藥，誤不如本方及封題誤者，醫絞。

疏議曰，合和御藥，須先依處方合和，不得差誤。若有錯誤，不如本方，謂分兩多
少，不如本方法之類。合成仍題封其上，注藥遲駛冷熱之類，并寫本方俱進。若有
誤不如本方及封題有誤等，但一事有誤，醫即合絞。醫，謂當合和藥者。名例大不
敬條內，已具解訖。

料理 · 捣擇不精者，徒一年。未進御者，各減一等。監當官司，各減醫一等。餘條未
進御及監當官司，並準此。

疏議曰，料理，謂應熬削洗漬之類，揀擇，謂去惡留善，皆須精細之類。有不精者，

徒一年。其藥，未進御者，各減一等，謂應絞者從絞上減，應徒者從徒上減。是名各減一等。監當官司，依令，合和御藥，在內諸省，省別長官一人，并當上大將軍·將軍·衛別一人，與尙藥奉御等監視。藥成，醫以上先嘗。除醫以外，皆是監當官司，竝於已進·未進上，各減醫罪一等。注云，餘條未進御者，謂下條造御膳·御幸舟船·乘輿服御物，但應供奉之物，未進御者，各隨輕重，減一等，監當官司，又各減一等。故云竝準此。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착오로 본방과 같지 않게 하거나 봉투에 오류가 있으면 의관을 교형에 처한다.

소의 :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하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착오로 본방과 같지 않게 했다는 말은 분량이 본방의 기준과 같은 것 따위를 말한다. 조제를 마치면 봉투에 설명을 쓰되 약효의 시간이나 약성의 차가움과 뜨거움 따위를 적고, 아울러 본방을 베껴서 함께 올린다. 만약 오류가 있어서 본방과 같지 않게 조제하거나 봉투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 등에서 단 하나라도 틀림이 있다면 의관을 즉시 교형에 처해야 한다. 의관이란 약의 조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명례名例>편의 <대불경大不敬> 조항에서 자세히 풀이하였다.

요리하거나 재료를 선택할 때 정밀하게 하지 않은 자는 도형 1년에 처한다.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등급을 감한다. 감독을 맡은 관원은 각각 의관에서 1등급을 감한다. 다른 조문에서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와 감독을 맡은 관원의 경우는 모두 이에 준한다.

소의 : 요리란 음식 재료를 익히거나 자르거나 씻거나 담그는 일 등을 말한다. 간택(揀擇)이란 나쁜 부분을 없애고 좋은 부분만을 남기는 행위이다. 이 일들은 모두 반드시 정치하고 세밀하게 해야 할 일들이다. 정밀하지 않으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약재를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등급을 감한다고 한 것은 교형에 처해야 하는 자는 교형에서 1등급을 감하고, 도형에 처해야 하는 자는 도형에서 1등급을 감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각각 1등급을 감한다고 한 것이다. 법령에 의하면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감독을 맡은 관원은 중앙의 여러 성에서 성마다 장관 1인과 당직인 대장군·장군·위장 각 1인이

상약국의 봉어(奉御) 등과 함께 감시한다. ‘약이 완성되면 의관 이상의 관계자가 먼저 맛을 본다.’라고 하고 있어 의관 이외의 사람들이 모두 감독을 맡은 관원이 되며, 이들은 모두 황제에게 이미 약을 올린 경우나 아직 올리지 않은 경우에서 각각 의관의 죄보다 1등급을 감한다. 세주에서 밀한 다른 조문에서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라는 의미는 다음 조문의 조어선(造御膳) · 어행주선(御幸舟船) 및 승여복어물(乘輿服御物) 등을 말하는데, 바쳐야 하는 물품을 아직 황제에게 올리지 않은 경우에만 각각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1등급을 감하고, 감독을 맡은 관원은 또 각각 1등을 감한다. 그러므로 모두 이에 준한다고 하였다.

▶ 卷9 > 職制 > 合和御藥

諸監當官司及主食之人，誤將雜藥，至御膳所者，絞。所，謂監當之人應到之處。

疏議曰，御廚造膳，從造至進，皆有監當官司。依令，主食升階進食。但是雜藥，誤將至御膳所者，絞。雜藥，謂合和爲藥，堪服餌者。若有毒性，雖不合和，亦爲雜藥。

감독을 맡은 관원이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잘못하여 잡약(雜藥)을 가지고 황제가 먹을 음식을 만드는 장소에 들어가면 교형에 처한다. 장소란 감독을 맡은 사람이 들어가야 할 곳을 말한다.

소의 : 황제의 음식을 만드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만든 음식을 올리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감독하는 관원이 있다. 법령에 의하면 ‘주식(主食)은 계단을 올라가 음식을 올린다.’라고 하고 있다. 단, 잘못 하여 황제가 먹을 음식 만드는 장소에 잡약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교형에 처한다. 잡약이란 조제하여 약으로 만들어 복용할 수 있는 약재를 말한다. 만약 독성이 있으면 비록 조제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잡약으로 간주한다.

▶ 卷9 > 職制 > 監當主食有犯

十惡艱字。炯誠 上戶頂反。訓明。… 蠲毒 上音古。謂將毒蛇蟲，聚在一器之內，從其自相吞食，末後一箇，最有其毒，堪傷於人，故名爲蠱毒。厭魅 魘魅，謂事邪鬼，惑用人爲牲，又將人姓名，告此邪魔，令人病死顛狂，皆能害人性命，是陰行不軌之道，故曰不軌(音鬼)。…

10악 내용 중 어려운 글자. 형계(炯誠) 앞 글자는 호(戶)와 정(頂)의 반절(反切)이다. 가르쳐 깨우친다는 의미이다. … 고독(蠱毒) 앞 글자의 독음은 고(古)이다. 독사나 독충을 잡아 같은 통에 모아 놓고 멋대로 서로 잡아먹게 두면 마지막에 한 마리가 남는다. 그것의 독을 모으면 충분히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고독이라고 명명하였다. 염매(厭魅) 염매(魘魅)라고도 한다. 악귀에게 비는 것을 말한다. 의혹시키려면 남을 제물로 삼는다. 또는 남의 성명을 악귀에게 고하여 그 사람이 병들거나 죽거나 미치게 만든다. 모두 남의 목숨을 해할 수 있다. 이것은 몰래 비정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불궤(不軌)라고 부른다. …

▶ 唐律釋文 > 권1 > 名例1 > 十惡艱字

若於東宮犯 · 失及宮衛有違應坐者，亦同減例。本應十惡者，雖得減罪，仍從本法疏議曰，於東宮犯者，謂指斥東宮及對捍皇太子令使 · 車馬之屬不調習 · 駕馭之具不完牢，并闖入東宮宮殿門 · 宮臣宿衛冒名相代 · 兵仗遠身 · 輒離職掌別處宿之類，謂之爲犯。失者，謂合和皇太子藥誤不如本方，及封題誤，并守衛不覺闖入東宮宮殿門，如此之類，謂之爲失。犯之與失得罪，並減上臺一等科斷。

만약 동궁(東宮, 황태자)을 범하였거나 과실이 있거나, 궁위(宮衛, 호위)를 위반하여 처벌해야 할 경우에도 등급을 감하는 규정대로 한다.

소의 : 동궁을 범하였다는 것은 동궁을 지척(指斥, 잘못을 헛함)하였거나, 황태자의 영사(令使, 사신)를 거부하였거나, 거마(車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가여(駕馭, 가마나 수레)의 기물을 견고하게 갖추지 않았거나, 아울러 동궁의 궁전문에 무단으로 출입하였거나, 궁신(宮臣, 황태자 담당 관원)이나 숙위(宿衛, 당직 호위)가 이름을 속여 대신하거나, 무기를 몸에서 멀리하였거나, 함부로 직장(職掌, 담당 직무)을 이탈하여 다른 곳에서 당직한 것 등이며, 이를 일컬어 범했다고 한다. 과실이 있다는 것은 황태자의 약을 조제할 때 잘못하여 본방대로 하지 않았거나, 봉투에 내용을 잘못 썼거나, 아울러 동궁을 호위할 때 동궁의 궁궐 문에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등이며, 이를 일컬어 과실이 있다고 한다. 범하였거나 과실이 있어 죄를 얻는다면 모두 황제에 대한 죄에서 1등급을 감하여 죄를 논한다.

▶ 卷6 > 名例 > 稱乘輿車駕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

十惡

一曰謀反, … 六曰大不敬, …

謂盜大祀神御之物·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堅固. …

[直解] … 大廟及陵廟良中, 神御之物果, 進上車輿服用物等乙, 偷取爲旂, 御印乙, 偷取及僞造爲旂, 進上藥乙, 不依本方, 誤錯合造爲齊, 藥封名乙, 錯書爲齊, 進上飲殮乙, 誤犯食禁爲齊, 親幸船楫乙, 誤錯亦, 堅實造作不冬爲行臥乎事. …

10악(十惡)

첫째, 모반(謀反)이다. … 여섯째, 대불경(大不敬)이다. …

대불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御寶)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

[직해] … 종묘나 능묘에서 사용하는 제례 물품 또는 황제의 물건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에게 올리는 약을 책에 실린 처방에 따르지 않고 조제하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잘못 쓴 경우,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에 착오로 금기를 범하는 경우, 황제가 몸소 타는 배를 착오로 튼튼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이다. …

▶ 卷1 > 名例律 > 第2條 十惡

合和御藥

凡合和御藥, 誤不依本方, 及封題錯誤, 醫人杖一百, 料理揀擇不精者 杖六十. 若造御膳, 誤犯食禁, 廚子 杖一百, 若餅食之物, 不潔淨者 杖八十, 揀擇不精者 杖六十, 不品嘗者 答五十, 監臨提調官, 各減醫人廚子罪二等.

若監臨提調官及廚子人等, 誤將雜藥至造御膳處所者 杖一百, 所將雜藥, 就令自喫, 門官及守衛官失於搜檢者, 與犯人同罪.

並臨時奏聞區處.

[直解] 凡進上藥乙，和合爲乎矣，誤錯亦，本方文依法不冬爲旣，藥封名乙，錯書爲在，醫員乙良，杖一百齊，藥材乙，合和爲乎矣，精擇不冬爲在乙良，杖六十齊，進上餅膳乙，熟造爲乎矣，誤犯食禁爲良在等，次知熟殮各色掌等乙，杖一百齊，飲膳等物亦，潔淨不冬爲在乙良，杖八十齊，揀擇精細不冬爲在乙良，杖六十齊，品味嘗試知味不冬爲在乙良，笞五十爲遣，監臨提調飯監等乙良，各減醫員及次知熟殮人罪二等齊。○雜藥等乙，監臨飯監及司饔人等亦，御膳所良中，誤錯亦，持來爲在乙良，杖一百爲遣，向前，雜藥乙良，自喫令是齊，司門官及侍衛官等亦，搜探考課不冬爲在乙良，犯人罪同爲，並只，申聞決斷爲乎事。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함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할 때 착오로 본방(本方)대로 하지 않거나 봉제(封題)에 착오가 있으면 의원을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 간택이 정밀하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을 만들 때 착오로 금기를 범하면 주자(廚子, 요리사)를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이 정결하지 않으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재료의 간택이 정밀하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맛보거나 미리 먹어 보지 않으면 태형 50이다. 감림제조관(監臨提調官, 감독 책임자)은 각각 의원이나 주자의 죄에서 2등급을 줄인다.

감림제조관이나 주자 등이 착오로 잡약을 가지고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을 만드는 처소에 이르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가지고 있는 잡약은 본인이 먹게 한다. 문관이나 수위관이 제대로 수색하여 적발하지 못하면 범인과 더불어 같은 죄이다.

이상은 모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뢰어 처분한다.

[직해] 진상하는 약을 조제할 때 잘못하여 본방에 따른 방법대로 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잘못 쓴 의원은 장형 100대에 처한다. 약재를 섞을 때 정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진상하는 음식물을 조리할 때 잘못하여 음식의 금기를 범하면 요리하는 담당자들을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물이 정결하지 않으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재료의 간택을 정밀하고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맛보지 않거나 미리 먹어 보지 않으면 태형 50대

에 처한다. 감림제조관이나 반감(飯監, 음식 진상 관원)들은 의원이나 요리 담당자의 죄에서 각각 2등급을 줄인다. ○잡약 등을 감림제조관이나 반감 및 사용원 사람 등이 임금의 음식을 만드는 곳에 실수로 가지고 오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앞서 말한 잡약을 본인이 먹게 한다. 사문관(司門官, 내시)과 시위관(侍衛官, 호위 군사) 등이 수색하여 조사하지 않으면 범인과 죄가 같으며, 모두 황제에게 아뢰어 처결한다.

▶ 卷12 > 禮律 > 儀制 > 第182條 合和御藥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세종 연간 1419-1450년

十惡

一曰謀反, … 六曰大不敬, …

謂盜大祀神御之物·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堅固. …

제2조. 10악(十惡)

첫째, 모반(謀反)이다. … 여섯째, 대불경(大不敬)이다. …

대불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御寶)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 ¹

▶ 卷1 > 名例律 > 第2條 十惡

合和御藥

凡合和御藥, 誤不依本方, 及封題錯誤, 醫人杖一百, 料理揀擇不精者 杖六十.
… 監臨提調官, 各減醫人廚子罪二等.

1 참조 :《당률소의》 권1 〈명례名例〉 6조 10악(十惡) / 《원사元史》 〈형법지刑法志〉 / 《원전장元典章》 41 〈형부刑部〉 권3 제악(諸惡).

若監臨提調官及廚子人等，誤將雜藥至造御膳處所者 杖一百，所將雜藥，就令自喫，門官及守衛官失於搜檢者，與犯人同罪。

並臨時奏聞區處。

講曰：凡合和御藥，須要依方書，分兩多分合和，題封其上，注寫藥性遲疾冷熱，并寫本方俱進，如有誤不依本方，及題封有誤者，杖一百。料理謂熬削洗漬，揀擇謂去惡留善之類，不精細者杖六十。…

제182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해당 의원을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을 요리하거나 음식 재료를 선택할 때 정밀하게 하지 않은 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 감림 제조관은 각각 의원이나 주자(廚子)의 죄에서 2등급을 감한다.

감림제조관이나 주자 등이 어떤 약물을 가지고 황제의 음식을 만드는 곳에 출입하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소지한 약물을 본인에게 먹인다. 출입을 담당하는 관원과 수비를 맡은 관원이 약재를 검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범인과 똑같은 죄로 다스린다.

이상은 모두 발생 즉시 보고하여 처리한다.

강해 :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여 분량에 따라 배합해야 한다. 약 봉투에 표기할 때는 약성이 빠른지 느린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적고, 책에 실린 처방을 베껴서 함께 올려야 한다. 만약 책의 내용에 의거하지 않거나 봉투에 틀리게 표기한 자는 장형 100대에 처한다. 요리란 음식 재료를 끓이거나 썰거나 찢거나 재운다는 의미이다. 간택이란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빼서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를 정밀하게 하지 않는 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²

▶ 卷12 > 禮律 > 儀制 > 第182條 合和御藥

2 참조 :《당률소의》 권9 〈직제職制〉 102. 合和御藥.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1585년

○十惡. 犯十惡者, 先行拘繫, 參提問罪, 覆奏不用取旨奉裁之律. 但今王府雖犯十惡, 亦奏請會議奏裁如應議者.

一曰謀反. …

六曰大不敬. 謂盜大祀神御之物 · 乘輿服御物, 盜及僞造御寶, 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若造御膳, 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堅固. …

○10악(十惡). 10악을 범한 자는 우선 포박한 후 처벌을 요청하고 죄를 묻는다. 복주(覆奏, 재심)는 재가받는 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왕부(王府) 관원은 10악을 범하더라도 회의(會議)하여 어떻게 처결할지 아뢴 후 재가를 받아 처결한다.

첫째, 모반(謀反)이다. …

여섯째, 대불경(大不敬)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제례 물품, 황제의 기물이나 의복 등을 훔친 경우. 어보(御寶)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금기인 재료를 넣은 경우. 황제가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 …

▶ 卷之一 > 十惡

○合和御藥

凡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醫人, 杖一百, 料理揀擇不精者, 杖六十. 若造御膳, 誤犯食禁, 廚子, 杖一百, 若飲食之物, 不潔淨者, 杖八十, 揀擇不精者, 杖六十, 不品嘗者, 答五十, 監臨提調官 太醫院使 · 院判 · 御醫 · 御膳所官, 各減醫人廚子罪二等. ○若監臨提調官及廚子人等, 誤將雜藥至造御膳處所者, 杖一百, 所將雜藥, 就令自喫, 門官 內臣 及守衛官 衛官 失於搜檢者, 與犯人同罪並字, 指醫人 · 廚子 · 監臨 · 提調 · 守衛官, 臨時奏聞區處.

議. 甲. 合依廚子誤將雜藥, 至御膳所者律. 乙. 依門官失於搜檢者, 與犯人甲同罪律. 丙. 依合和御藥封題錯誤醫人律, 與甲等各杖一百. ○丁. 依廚子造御膳飲食之物不潔淨律, 杖八十. 戊. 依提調官減廚子二等律, 杖六十.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책에 실린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 해당 의원을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 재료를 다듬거나 선택할 때 정밀하게 하지 않은 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을 만들 때 착오로 금기를 범하면 주자(廚子)는 장형 100대에 처한다. 음식이 정결하지 않으면 장형 80대에 처하고, 재료의 간택이 정밀하지 않으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맛보거나 미리 먹어 보지 않으면 태형 50대에 처한다. 감립제조관(監臨提調官) 의원의 감립제조관은 태의원사 · 태의원판 · 어의이고, 주자의 감립제조관은 어선소의 관원이다 은 각각 의원이나 주자(廚子)의 죄에서 2등급을 줄인다. ○감립제조관이나 주자 등이 착오로 잡약을 가지고 황제에게 올리는 음식을 만드는 처소에 이르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가지고 있는 잡약은 본인이 먹게 한다. 문관(門官) 내시이나 수위관 호위관이 제대로 수색하여 적발하지 못하면 모두 범인과 같은 죄로 논한다. 의원 · 주자 · 감립제조관 · 수위관을 밀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황제에게 아뢰어 처리한다.

설명. ①주자가 착오로 어떤 약재를 소지한 채 어선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대명률》대로 처리 한다. ②내시가 약재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에는 범인인 1항과 동일한 죄목의 《대명률》대로 처리한다. ③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약 봉투에 이름을 틀리게 기록한 의원에 대해 《대명률》에 의거하면, 1-3항까지는 각각 장형 100대이다. ④주자가 황제의 음식을 만들 때 정결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대명률》에 의거하면 장형 80대이다. ⑤감립제조관은 주자보다 2등급 낮게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대명률》에 의거하면 장형 60대이다.

▶ 卷之十二 > 儀制 > 第182條 合和御藥

2. 수금(囚禁)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京外檢察獄囚, 如有不牢 · 不修 · 漏通 · 侵虐等事, 杖百. [經] ○中外官吏, 淨掃

圈圍, 治療疾病, 無家人護養者, 官給衣糧, 不奉行者, 嚴加糾理. [續] ○囚應請給衣糧醫藥而不請給, 患病應脫枷鎖杻而不脫, 應保管而不保, 官應聽家人入視而不聽, 獄官·典卒笞五十. …

○도성과 지방에서는 감옥의 죄수들을 검사하고 살펴야 한다. 감옥이 튼튼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거나, 빗물이 새고 바람이 통하거나, 죄수를 학대하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경국대전] ○도성과 지방의 담당 관리는 감옥을 청소하고 죄수의 질병을 치료하며 돌볼 가족이 없는 죄수에게는 관청에서 옷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매우 엄중히 처리한다. [속대전] ○죄수가 옷·음식·의약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거나, 질병에 걸린 죄수에게는 칼·족쇄·차꼬를 풀어주어야 하는데도 풀어주지 않거나, 죄수가 밖으로 나갈 때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데도 보호하지 않거나, 담당 관원은 당연히 가족들의 접견 요청을 허용해야 하는데도 허용하지 않으면 담당 육관과 병졸을 태형 50대에 처한다. …

▶ 刑典 > 囚禁 > [京外檢察獄囚]

3. 추단(推斷)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立春後, 秋分前, 不決死刑. 違者杖八. 十惡 謂反·謀大逆·謀叛·惡逆·不道·大不敬·不孝·不睦·不義·內亂. ○謀反, 謂謀危社稷. …大不敬, 謂盜大祀神御物·乘輿服御物, 盜及偽造御寶, 合和御藥, 誤不依本方及封題錯誤, 造御膳誤犯食禁, 御幸舟船, 誤不堅固. … 強盜應死者, 決不待時. …

○입춘에서 추분까지는 사형을 결정하지 않는다. 어긴 자는 장형 8대에 처한다. 10악이나 모반·모대역·모반·악역·불도·대불경(大不敬)·불효·불목·불의·내란이다. ○모반은 사직을 위태롭게 만드려고 모의하는 것이다. … 대불경은 국가 제례의 물품 또는 황제의 물품이나 의복을 훔친 경우, 어보를 훔치거나 위조한 경우, 황제의 약을 조제할

때 본래 처방에 의거하지 않거나 약 봉투에 글씨를 틀린 경우, 어선소(御膳所)에 출입할 때
금기인 재료를 범한 경우, 황제가 행차할 때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경우이다.
… 강도죄로 사형을 당해야 하는 자는 추분을 기다리지 않고 결행한다. …

▶ 刑典 > 推斷 > 發配附 > [不決死刑]

○拷訊, 取旨乃行. 庶人及犯盜否. … ○宗親及文臣, 時任史官, 及曾經侍從以上, 武臣經內乘·宣傳官·摠府郎·閻帥, 蔭官經都正以上, 關係殺人·贓汚外, 遲晚者勿請刑, 直請依受教照律. 別軍職·長番內侍·醫官二品以上同. ○閣臣, 勿論時·原任, 勿請刑. [增] …

○고신(拷訊, 추국)은 주상의 재가를 받고 나서 시행해야 한다. 평민이나 범죄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종친이나 문신 중에 전·현직 사관이나 전직 시종신(侍從臣)³ 이상인 자, 무신 중에 내승이나 선전관이나 도총부 낭관이나 전·현직 병마절도사, 음관 중에 전직 돈녕부 도정 이상을 지낸 자는 살인이나 장오(贓汚, 뇌물)의 죄가 아니라면 의금부에서 지만(遲晚, 자술서)을 받았더라도 처결하지 말고 곧장 주상의 교지로 판결해달라고 청한다. 별군직·장번(長番) 내시·2품 이상인 의관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 ○규장각 관원은 전·현직에 상관없이 형률로 처결할 수 없다. [추가] …

▶ 刑典 > 用刑 > [拷訊]

특교정식(特教定式) 1794년

四十八年, 領議政金致仁所啓, “事雖細微, 宜一稟定, 故敢達矣. 向來秋曹郎懸罰律官事, 至登於臺臣之啓, 而大抵懸罰, 非所可施於有科名之人, 計士何遽, 不若律官, 而古有皮鞭之罰者, 以其與員役同也. 至於律官, 渠雖卑微, 曾經諸科, 荷有可罪, 囚次知除汰, 何所不可, 而必施懸罰, 而後可懲乎. 政院是號令百司之地, 而懸罰猶不及於律官云. 此後則醫·譯·律官, 凡係已經本業之科者, 勿論本衙門·他上司, 毋得懸罰事, 定式分付, 何如?”上曰, “依爲之.”

영조 48년(1772)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의 장계이다. “사소한 일이지만 한번은

3 시종신(侍從臣) :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대간(臺諫) · 옥당(玉堂, 홍문관 관원) · 예문관 겸 열 · 승정원 주서의 총칭이다.

아뢰어 정해야 하므로 김히 아뢸니다. 얼마 전에 형조의 낭관이 율관(律官)에게 현벌(懸罰, 두 손을 묶어 나무에 매다는 형벌)을 준 일이 사헌부 관원의 장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현벌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시행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계사(計士, 산원算員)에게도 적용하지 못하거늘 율관에게 어찌 적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피편(皮鞭, 채찍)의 형벌이 있었던 까닭은 관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율관은 비천한 신분이지만 이미 잡과에 급제한 자입니다. 만약 죄를 물을 것이 있더라도 담당 관리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불가하니 반드시 현벌을 시행해야만 징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정원은 모든 관원에게 호령하는 곳이지만 현벌에 대해서는 아직도 율관에게 적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후로 의관·역관·율관 등 각 과의 본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속 아문이나 상부 관청에 상관없이 현벌을 시행하지 말도록 규정으로 정하여 분부함이 어떻습니까?” 주상께서 말하였다. “그대로 시행하라.”

▶ 備局稟定 > 醫譯律官勿懸罰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朝官犯罪，被推於本曹·司憲府·司諫院而應囚者，竝啓移義禁府。…[補] 兼引儀依御醫例，王府拿囚。

○조정 관리가 죄를 범한 후 형조·사헌부·사간원에 추국을 당해 옥에 가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주상에게 보고한 다음 의금부로 이송한다. …[보충] 겸인의(兼引儀)는 어의(御醫)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금부에서 잡아 가둔다.

▶ 刑典 > 囚禁 > [朝官犯罪被推]

○宗親及文臣，時任史官及曾經侍從以上人，武臣內乘·宣傳官·摠府郎，閩帥曾經·時任人，蔭官曾經敦寧都正以上人，關係殺人及贓污外，該府遲晚者，竝勿爲請刑，直請依受教照律。別軍職·長番內侍·醫官二品以上，亦用此例。…

○종친이나 문신 중에 전·현직 사관이나 전직 시종신(侍從臣) 이상인 자, 무신 중에 내승이나 선전관이나 도총부 낭관이나 전·현직 병마절도사, 음관 중에 전직 돈녕부 도정 이상을 지낸 자는 살인이나 장오(贓汚, 뇌물)의 죄가 아니라면

의금부에서 지만(遲晚, 자술서)을 받았더라도 처결하지 말고 곧장 주상의 교지로 판결해달라고 청한다. 별군직·장번(長番) 내시·2품 이상인 의관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

...

▶ 刑典 > 推斷 > [宗親及文臣史官侍從]

4. 흘수(恤囚)

당률소의(唐律疏議) 652년

諸囚應請給衣食醫藥而不請給，及應聽家人入視而不聽，應脫去枷鎖杻而不脫去者，杖六十，以故致死者，徒一年。卽減竊囚食，笞五十，以故致死者，絞。

疏議曰，準獄官令，囚去家懸遠絕餉者，官給衣糧，家人至日，依數徵納，囚有疾病，主司陳牒，請給醫藥救療，此等應合請給，而主司不爲請給，及主司不卽給，準令，病重聽家人入視而不聽，及應脫去枷鎖杻，而所司不爲脫去者，所由官司，合杖六十。以故致死者，謂不爲請，及雖請不卽爲給衣糧醫藥，病重不許家人入視，及不脫去枷鎖杻，由此致死者，所由官司，徒一年。卽減竊囚食者，不限多少，笞五十，若由減竊囚食，其囚以故致死者，減竊之人，合絞。

무릇 죄수가 의복·음식·의약을 요청하면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 옥에 들어가 직접 죄수를 돌보는 것을 허락해야 하지만 허락하지 않은 경우, 형구를 풀어주어야 하지만 풀어주지 않은 경우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게 되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죄수의 음식을 줄이거나 훔치면 태형 50대에 처하며,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게 되면 교형에 처한다.

소의 : <옥관령獄官令>의 “죄수의 집이 너무 멀어 가족이 옥바라지를 할 수 없으면 관청에서 의식을 지급하고, 가족이 오는 날 지급했던 수량만큼 납부하게

한다.”거나 “죄수에게 질병이 있으면 담당 관리가 문서로 보고한 후 의약을 지급하여 치료한다.”라는 형률에 준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의식이나 의약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담당 관리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혹은 담당 관리가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옥관령>의 “죄수의 병이 위중하면 가족이 들어와 감옥에서 돌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혹은 형구를 풀어주어야 하는데도 담당자가 풀어주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관원을 장형 60대에 처함이 합당하다. ‘이것 때문에 죄수를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의식이나 의약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요청했더라도 즉시 지급하지 않았거나, 혹은 병이 중한데도 가족이 들어가 돌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나 형구를 풀어주지 않아 결국 죄수가 죽게 된 경우를 말하며, 책임이 있는 관원을 도형 1년에 처한다. 죄수의 음식을 줄이거나 훔쳤다면 분량에 상관없이 태형 50대에 처하고,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게 되면 음식을 줄이거나 훔친 자를 교형에 처함이 합당하다.

▶ 卷29 > 斷獄 > 囚給衣食醫藥

諸領徒應役而不役，及徒囚病愈不計日令陪役者，過三日，笞三十，三日，加一等，過杖一百，十日，加一等，罪止徒二年。不得過罪人之罪。

疏議曰，領徒應役，謂掌領囚徒令役身者而不役，及徒囚因病給假，病愈合役，不令陪役者，過三日，笞三十，三日加一等，過二十四日，合杖一百。過杖一百，十日加一等，罪止徒二年。

注云，不得過罪人之罪，謂如應徒一年者，雖多日不役，亦不得過徒一年。其二年以下，並準此。囚數多者，從不役人日多者爲罪。

무릇 담당 관원은 도죄수(도형을 받은 죄수)를 통솔하여 노역시켜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나, 도죄수의 병이 나은 후 빠진 날을 계산하여 노역을 보충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상이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3일마다 1등급씩 더하며, 장형 100대를 넘으면 10일마다 1등급씩 더하고, 죄의 최고형은 도형 2년이다. 죄수의 죄를 초과할 수 없다.

소의 : ‘도죄수를 통솔하여 노역시켜야 하지만 … ’이란 도죄수를 책임지고 통

솔하여 노역하도록 해야 하나 노역시키지 않은 경우나, 도죄수가 병 때문에 휴가를 받았다면 병이 나은 후 노역해야 하지만 노역을 보충시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일을 넘기면 태형 30대에 처하고, 3일마다 1등급씩 더하므로 24일이 지나면 장형 100대에 처해야 한다. 장형 100대를 넘으면 10일마다 1등급씩 더하고, 죄의 최고형은 도형 2년이다.

세주에서 ‘죄수의 죄를 초과할 수 없다.’란 만약 죄수의 죄가 도형 1년에 해당할 경우 비록 그가 노역하지 않은 날 수가 많더라도 담당 관원의 죄 역시 도형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2년 이상도 모두 이와 같다. 담당 죄수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노역시키지 않은 일수가 많은 죄수를 기준으로 죄를 논한다.

▶ 卷30 > 斷獄 > 領徒囚應役不役

… 診候 上止忍反. 診候, 差醫人看診脈候也. … 痞 尸介反. 痞愈, 謂之瘥, 亦作差. …

… 진후(診候) 앞 글자는 지(止)와 인(忍)의 반절(反切)이다. 진후란 의원을 정하여 진맥하는 것이다. … 채(瘥) 시(尸)와 개(介)의 반절이다. 병이 낫는 것을 채(瘥)라고 한다. 차(差)라고도 한다. …

▶ 唐律釋文 > 권29 > 斷獄1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

保辜限期

凡保辜者, 責令犯人醫治, 辜限內, 皆須因傷死者, 以鬪毆殺人論.

其在辜限外, 及雖在辜限內, 傷已平復, 官司文案明白, 別因他故死者, 各從本毆傷法. 若折傷以上, 辜內醫治平復者, 各減二等. 辜內雖平復, 而成殘廢篤疾, 及辜限滿日不平復者, 各依律全科. 手足及他物毆傷人者, 限二十日. 以刃及湯火傷人者, 限三十日, 折跌肢體及破骨墮胎者, 無問手足他物, 皆限五十日.

謂毆及傷, 各依限保辜, 然傷人皆須因毆乃是, 若打人頭傷, 風從頭瘡而入, 因風致死之類, 以鬪毆殺人科罪.

謂打人頭傷, 不因頭瘡得風, 別因他病而死者, 是爲他故, 各依本毆傷科罪.

墮胎子死者，不減.

[直解]

凡保辜者，犯罪人當爲，藥材以，理病令是乎矣，限內良中，因傷身故爲在乙良，並只，鬪毆殺人例以，論爲乎事.

毆及因毆有傷爲在乙良，辜限定日爲乎矣，須只，毆乙仍于，傷爲在乙沙，論爲遣，因打頭有傷爲去等，傷處風入乙仍于，身故爲在乙良，鬪毆殺人以，論.

辜限外良中沙，身故人及，必于辜限內身故爲良置，曾只，傷處平復爲乎，官司文字明白捧上，後良中，他病以，身故爲在乙良，本毆傷法以，論.

他人頭乙，打傷後頭瘡乙，因風得病爲乎所不喻，他病乙，因爲身故爲在亦中，是爲他故是良尔，本毆傷例乙，依准科罪.

折傷以上者，辜限內理病平復爲在乙良，各減二等爲乎矣，落胎子死爲在乙良，不減.

辜限內良中，必于平復爲良置，殘廢篤疾成病爲旅，辜限滿日爲去乙，平復不冬爲在乙良，各依律全科齊，手足果，及他物以，打傷人爲在乙良，限二十日齊，刀刃及湯火以，傷人爲在乙良，限三十日齊，肢體乙，折跌爲旅，及破骨落胎爲在乙良，不問手足他物，皆限五十日.

보고(保辜) 기한

보고는 범인에게 책임지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 기한 안에 반드시 상해 때문에 죽은 경우에만 투구살인(鬪毆殺人, 구타로 인한 살인)으로 논한다.

보고 기한이 지난 경우, 보고 기한 이내라도 상처가 회복되었고 담당 관원의 문서도 명백할 때 다른 이유로 죽으면 각각 구상(毆傷)에 대한 형률을 따른다.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더라도 보고 기한 이내에 치료하여 회복된 경우에는 각각 2등급을 감한다. 보고 기한 이내에 회복되었더라도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나, 보고 기한의 날짜가 찼는데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형률에 따라 그대로 죄를 논한다. 손발이나 물건으로 타인을 때렸을 때는 2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하고, 칼이나 끓는 물이나 불로 타인을 해치면 3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하며, 사지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시켰을 때는 손발이나 물건의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5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한다.

이를테면, 때리거나 상해하면 각각 보고 기한에 따라야 하나, 상처가 모두 반드시 때린 것으로 생겨야만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풍사(風邪)가 머리의 상처로 들어가서 풍증으로 죽게 된 경우는 투구살인(鬪毆殺人)으로 죄를 논한다.

이를테면,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머리에 난 상처로 풍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병으로 죽었으면 이것을 다른 이유[他故]라고 하니 각각 본래의 구상(毆傷)으로 죄를 논한다.

낙태하게 하여 태아가 죽으면 보고 기한을 줄이지 않는다.

[직해]

보고는 범죄인이 약재로 피해자의 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기한 내에 상해로 말미암아 죽으면 모두 투구살인 조항으로 논한다.

때리거나 때린 것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기면 보고 기한의 날짜를 정할 때 반드시 때린 것으로 인한 상처만을 논한다. 머리를 때려서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에 풍사가 들어간 것으로 죽으면 투구살인(鬪毆殺人)으로 죄를 논한다.

보고 기한이 지나서 죽은 사람과, 비록 보고 기한 내에 죽었어도 그 전에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담당 관원의 문서를 명백히 받은 후에 다른 병으로 죽은 사람은, 본래의 구상(毆傷)으로 죄를 논한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상해한 후 머리의 상처로 인하여 풍을 얻어 병든 것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죽었다면, 이것은 다른 이유이므로 본래의 구상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는 보고 기한 내에 치료하여 회복하면 각각 2등급을 줄여주되, 낙태하여 태아가 죽은 경우는 줄여주지 않는다.

보고 기한 내에 비록 회복되어도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이 남거나, 보고 기한 날짜가 찼는데 회복되지 않으면, 각각 형률에 그대로 죄를 논한다. 손발이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하면 2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한다. 칼이나 끓는 물이나 불로 사람을 상해하면 30일을 기한으로 한다. 사지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하게 하면, 손발이나 다른 물건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두 5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한다.

▶ 卷20 > 刑律 > 罷毆 > 第326條 保辜限期

獄囚衣糧

凡獄囚應請給衣糧醫藥而不請給，患病應脫去枷鎖杻而不脫去，應保管出外而不保管，應聽家人入視而不聽，司獄官典獄卒笞五十，因而致死者，若囚該死罪杖六十，流罪杖八十，徒罪杖一百，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提牢官知而不舉者，與同罪。

若已申稟上司，不卽施行者，一日笞一十，每一日加一等，罪止笞四十，因而致死者，若囚該死罪杖六十，流罪杖八十，徒罪杖一百，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

[直解]

凡獄囚亦中，衣糧醫藥乙，理合請給爲在乙，請給不冬爲旂，病囚亦，枷鎖杻乙，脫去爲良音可爲在乙，脫去不冬爲旂，取保准受出外爲良音可爲在乙，取保出外不冬爲旂，同家人乙，入獄中視養爲良音可爲在乙，入視養不冬爲在乙良，典獄官員令史獄卒等乙，笞五十齊，因此致死爲在乙良，囚人亦，當死罪去等，杖六十，流罪去等，杖八十，徒罪是去等，杖一百，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齊，提牢官亦，知而不問爲在乙良，罪同齊。上司官良中，曾只，啓課爲在事乙，卽時決絕施行不冬爲在乙良，一日是去等，笞一十，每一日加一等，笞四十爲限齊，因此致死爲在乙良，囚人亦，當死罪是去等，杖六十，流罪是去等，杖八十，徒罪是去等，杖一百，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爲乎事。

죄수의 옷과 양식

죄수가 옷·양식·의약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죄수가 병에 걸리면 벗겨 주어야 하지만 벗겨 주지 않거나, 죄수가 외출할 때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하지 않거나, 가족이 감옥에 들어와서 돌보도록 허락해야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옥사 담당 관원과 아전과 군졸을 태형 5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었을 때, 죄수가 사형죄라면 장형 60대, 유죄(流罪)면 장형 80대, 도죄(徒罪)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장죄(杖罪) 이하면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 제뢰관(提牢官, 옥사의 최고 책임자)이 알고도 적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논한다.

상급 관청에 보고하였나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일이면 태형 10대에 처하고, 1일마다 1등급을 더하며, 최고 태형 40대로 제한한다.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경우, 죄수가 사형죄에면 장형 60대, 유죄면 장형 80대, 도죄면 장형 100대, 장죄 이하면 장형 60대를 치고 도형 1년이다.

[직해]

죄수에게 옷 · 양식 · 의약을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병든 죄수는 형구를 벗겨야 하지만 벗겨 주지 않거나, 보증인을 세워 다짐을 받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보증인을 세워 밖으로 내보내지 않거나, 가족을 감옥에 들어가서 돌보게 할 수 있지만 들어가 돌보게 하지 않으면, 감옥을 담당하는 관원 · 아전 · 군졸 등을 태형 50대로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은 경우, 죄수가 사형죄면 장형 60대로 처하고, 유죄면 장형 80대로 처하고, 도죄면 장형 100대로 처하고, 장죄 이하는 장형 60대로 도형 1년에 처한다. 옥사의 최고 책임관이 알고도 죄를 묻지 않으면 죄가 같다. 상급 관사의 관원에게 일찍이 보고한 일을 즉시 결정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일이면 태형 10대로 처하고, 1일마다 1등급을 더하며, 태형 40대로 한도로 한다. 이것 때문에 죽은 경우, 죄수가 사형죄면 장형 60대로 처하고, 유죄면 장형 80대로 처하고, 도죄면 장형 100대로 처하고, 장죄 이하면 장형 60대로 도형 1년에 처한다.

▶ 卷28 > 刑律 > 斷獄 > 第425條 獄囚衣糧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세종 연간 1419-1450년

保辜限期

凡保辜者，責令犯人醫治，辜限內，皆須因傷死者，以鬪毆殺人論。

其在辜限外，及雖在辜限內，傷已平復，官司文案明白，別因他故死者，各從本毆傷法。若折傷以上，辜內醫治平復者，各減二等。辜內雖平復，而成殘廢篤疾，及辜限滿日，不平復者，各依律全科。手足及他物，毆傷人者，限二十日。以刃及湯火傷人者，限三十日。折跌肢體及破骨墮胎者，無問手足他物，皆限五十日。

謂毆及傷，各依限保辜，然傷人皆須因毆乃是，若打人頭傷，風從頭瘡而入，因風

致死之類，以鬪毆殺人科罪。

謂打人頭傷，不因頭瘡得風，別因他病而死者，是爲‘他故’各依本毆傷科罪。

墮胎子死者，不減。

講曰：其在辜限外，謂毆傷人保辜限期已滿，限外身死者，各從本毆傷法。又本條毆傷法者，如原毆內損，坐以內損罪，原毆折傷，坐以折傷罪之類，故謂之各從本毆傷法。

보고(保辜) 기한

보고는 범인에게 책임지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 기한 안에 반드시 상해 때문에 죽은 경우에만 투구살인(鬪毆殺人， 구타로 인한 살인)으로 논한다.

보고 기한이 지난 경우, 보고 기한 이내라도 상처가 회복되었고 담당 관원의 문서도 명백할 때 다른 이유로 죽으면 각각 구상(毆傷)에 대한 형률을 따른다.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더라도 보고 기한 이내에 치료하여 회복된 경우에는 각각 2등급을 감한다. 보고 기한 이내에 회복되었더라도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나, 보고 기한의 날짜가 찼는데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형률에 따라 그대로 죄를 논한다. 손발이나 물건으로 타인을 때렸을 때는 2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하고, 칼이나 끓는 물이나 불로 타인을 해치면 3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하며, 사지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시켰을 때는 손발이나 물건의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50일을 보고 기한으로 한다.

이를테면, 때리거나 상해하면 각각 보고 기한에 따라야 하나, 상처가 모두 반드시 때린 것으로 생겨야만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풍사(風邪)가 머리의 상처로 들어가서 풍증으로 죽게 된 경우는 투구살인(鬪毆殺人)으로 죄를 논한다.

이를테면,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머리에 난 상처로 풍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병으로 죽었으면 이것을 다른 이유[他故]라고 하니 각각 본래의 구상(毆傷)으로 죄를 논한다.

낙태하게 하여 태아가 죽으면 보고 기한을 줄이지 않는다.

강해：‘보고 기한이 지났거나’란 타인을 상해한 자의 보고 기한이 지났다는

뜻이니 그 후에 죽은 경우에는 각각 본래 구상(毆傷)의 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조문에서 말하는 구상의 법이란 애초에 때린 행위가 내장을 손상시켰으면 내장을 손상시킨 죄로 처벌하고, 애초에 때린 행위가 절상을 입혔으면 절상의 죄로 처벌한다는 것 따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를 각각 본래 구상의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한 것이다.⁴

▶ 卷20 > 刑律 > 鬪毆 > 第326條 保辜限期

獄囚衣糧

凡獄囚應請給衣糧醫藥而不請給，患病應脫去枷鎖杻而不脫去，應保管出外而不保管，應聽家人入視而不聽，司獄官典獄卒笞五十，因而致死者 若囚該死罪杖六十，流罪杖八十，徒罪杖一百，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提牢官知而不舉者，與同罪。

若已申稟上司，不卽施行者，一日笞一十，每一日加一等 罪止笞四十，因而致死者 若囚該死罪杖六十，流罪杖八十 徒罪杖一百，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

죄수의 옷과 양식

죄수가 옷·양식·의약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죄수가 병에 걸리면 형구를 벗겨 주어야 하지만 벗겨 주지 않거나, 죄수가 외출할 때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하지 않거나, 가족이 감옥에 들어와서 돌보도록 허락해야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옥사 담당 관원과 아전과 군졸을 태형 5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었을 때, 죄수가 사형죄라면 장형 60대, 유죄(流罪)면 장형 80대, 도죄(徒罪)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장죄(杖罪) 이하면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 제뢰관(提牢官, 옥사의 최고 책임자)이 알고도 적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논한다.

상급 관청에 보고하였나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일이면 태형 10대에 처하고, 1일마다 1등급을 더하며, 최고 태형 40대로 제한한다. 이것 때문에 죽게

⁴ 참조 :《당률소의》 권21 〈투송鬪訟〉 307조 보고(保辜) / 《형법대전》 제1편 법례(法例) 제1장 용법범위(用法範圍) 제5절 기한통규(期限通規) 25조.

될 경우, 죄수가 사형죄에면 장형 60대, 유죄면 장형 80대, 도죄면 장형 100대, 장죄 이하면 장형 60대를 치고 도형 1년이다.⁵

▶ 卷28 > 刑律 > 斷獄 > 第425條 獄囚衣糧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1585년

○保辜限期

凡保辜者，責令犯人醫治，辜限內，皆須因傷死者，鬪毆殺人論。謂毆及傷，各依限保辜，然傷人，皆須因毆乃是。若打人頭傷，風從頭瘡而入，因風致死之類，以鬪毆殺人科罪。○其在辜限外，及雖在辜限內，傷已平復，官司文案明白，別因他故死者，各從本毆傷法。謂打人頭傷，不因頭瘡得風，別因他病而死者，是爲他故，各依本毆傷科罪。若折傷以上，辜內醫治平復，雖服親，俱與凡人問者，各減二等。墮胎子死者，不減辜內雖平復，而成殘廢篤疾，兩目失明，及辜限滿日不復者，各依律全科。…

條例

一. 鬪毆傷人，辜限內不平復，延至限外。若手足他物金刃及湯火傷，限外十五日之內。折跌肢體及破骨墮胎，限二十日之內。果因本傷身死情真事實者，方擬死罪奏請定奪。此外不許一概濫擬瀆奏。…

○보고(保辜) 기한

보고는 범인에게 책임지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 기한 안에 반드시 상해 때문에 죽은 경우에만 투구살인(鬪毆殺人, 구타로 인한 살인)으로 논한다. 이를테면, 때리거나 상해하면 각각 보고 기한에 따라야 하나, 상처가 모두 반드시 때린 것으로 생겨야만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풍사(風邪)가 머리의 상처로 들어가서 풍증으로 죽게 된 경우는 투구살인(鬪毆殺人)으로 죄를 논한다. ○보고 기한이 지난 경우, 보고 기한 이내라도 상처가 회복되었고 담당 관원의 문서도 명백할 때 다른 이유로 죽으면 각각 구상(毆傷)에 대한 형률을 따른다. 이를테면,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는데 머리에 난 상처로 풍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5 참조 : 《당률소의》 권29 〈단옥斷獄〉 473조 囚應給衣食醫藥而不給 / 《형법대전》 제4편 〈율례(상)〉 제3장 斷獄及訴訟所干律 제14절 不恤罪囚律 334~335조.

병으로 죽었으면 이것을 다른 이유[他故]라고 하니 각각 본래의 구상(毆傷)으로 죄를 논한다.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더라도 보고 기한 이내에 치료하여 회복된 경우에는 비록 복친(服親, 상복을 입는 친족의 초상)이더라도 모두 보통 사람들 사이와 동일하게 죄를 묻는다 각각 2등급을 감한다. 낙태하게 하여 아기가 죽으면 줄이지 않는다 보고 기한 이내에 회복되었더라도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나, 양 눈의 실명 등 보고 기한의 날짜가 찼는데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형률에 따라 그대로 죄를 논한다. …

조례

- 투구(鬪毆, 구타)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보고 기한 내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보고 기한을 연장한다. 손발이나 물건이나 무기나 끓는 물이나 불로 상해하였다면 기존 보고 기한에 15일 이내로 추가할 수 있고, 사지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시켰을 경우에는 기존 보고 기한에 20일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본 상해로 사망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라야 비로소 사형죄로 적어서 아뢴 후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는 일체 가볍게 적어서 아릴 수 없다. …

▶ 卷之二十 > 鬪毆 > 第326條 保辜限期

○獄囚衣糧

凡獄囚應請給衣糧醫藥而不請給，患病應脫去枷鎖杻而不脫去，應保管出外而不保管，應聽家人入視而不聽，司獄官典·獄卒，笞五十。因而致死者，若囚該死罪，杖六十，流罪，杖八十，徒罪，杖一百，杖罪以下，杖六十徒一年，提牢官知而不舉者，與同罪。…

○죄수의 옷과 양식

죄수가 옷·양식·의약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죄수가 병에 걸리면 형구를 벗겨 주어야 하지만 벗겨 주지 않거나, 죄수가 외출할 때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하지 않거나, 가족이 감옥에 들어와서 돌보도록 허락해야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옥사 담당 관원과 아전과 군졸을 태형 5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죄수가 죽었을 때, 죄수가 사형죄라면 장형 60대, 유죄(流罪)면 장형 80대, 도죄(徒罪)면 장형 100대에 처하고, 장죄(杖罪) 이하면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 제로관(提牢官, 옥사의 최고 책임자)이 알고도 적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논한다. …

▶ 卷之二十八 > 斷獄 > 第425條 獄囚衣糧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恤囚] ○京, 司憲府, 外, 觀察使, 檢察獄囚. 囚死, 則典獄署報本曹, 本曹移文漢城府. 義禁府, 則直移文. 外, 則守令移文隣官, 檢屍覈實 凡檢屍, 依檢屍圖, 方許埋葬. 其致死根因救療形狀, 漢城府 · 觀察使啓聞. …

[휼수] ○한양에서는 사헌부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죄수를 단속하고 살핀다. 죄수가 죽으면 전옥서에서 형조에 보고를 하고, 형조에서는 한성부에 공문을 보낸다. 의금부에서는 본 형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문을 보낸다. 지방에서는 수령이 인근 고을의 수령에게 공문을 보낸 후 시신을 검험하여 실체를 파헤치고 나서 시신 검험은 <검시도檢屍圖>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비로소 매장을 허가한다. 죄수의 직접적인 사인이나 생전의 치료 내역은 한성부 또는 관찰사가 주상께 문서로 아뢴다. …

▶ 刑典 上 > 恤囚 > [大典] > [檢察獄囚]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獄者,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司獄官怠於審察, 獄囚, 於祁寒 · 盛暑, 或罹疾病, 或因凍餓, 間有非命致死者, 中外官吏, 淨掃囹圄, 療治疾病, 無家人護養者, 官給衣糧, 如有懈緩不奉行者, 嚴加糾理. 雍正乙卯承傳

○옥사(獄事)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일 뿐 원래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옥사를 담당하는 관원이 죄수를 돌보려고 노력하지 않아 죄수가 한파나 폭염에 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동상을 입거나 굶주리다가 비명에 횡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도성과 지방의 담당 관리는 감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질병에 걸린 죄수를 치료해야 하며, 돌봐줄 식구가 없는 죄수에게는 관청에서 옷과 음식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이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들지 않는 자는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옹정 을묘년(1735, 영조 11)의 전교

▶ 刑典 > 恤囚 > 928 [獄者, 所以懲…]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新補受敎] … ○獄者,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司獄官怠於審察, 獄囚於祈
寒盛暑, 或罹疾病, 或因凍餓, 間有非命致死者, 中外官吏, 淨掃囹圄, 療治疾病,
無家人護養者, 官給衣糧, 如有懈緩不奉行者, 嚴加糾理. 雍正乙卯承傳 ○典獄所
囚重囚外, 罪名稍輕, 而身病極重者, 待獄官文報, 月令看審後, 啓請保放.

[신보수교집록] … ○옥사(獄事)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일 뿐 원래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옥사를 담당하는 관원이 죄수를 돌보려
고 노력하지 않아 죄수가 한파나 폭염에 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동상을
입거나 굶주리다가 비명에 횡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도성과 지방의
담당 관리는 감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질병에 걸린 죄수를 치료해야 하며,
돌봐줄 식구가 없는 죄수에게는 관청에서 옷과 음식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이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들지 않는 자는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옹정 을묘년
(1735, 영조 11)의 전교이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 중에서 중죄인을 제외하고, 죄
목이 비교적 가벼우면서 질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담당 옥관의 공문을 받은
다음 월령의원이 죄수를 살핀 후 보방(保放)⁶할 것을 문서로 요청한다.

▶ 刑典 > 恤囚 > 《新補受敎》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附 壟限. 保辜者, 令犯人醫治, 壟限內, 囚傷死, 以鬪毆殺論, 限外死, 各從本毆
傷. 雖在壘內, 傷已平復, 文案明白, 別因他故死, 從本毆傷. [律] ○故殺亦用壘限. [續]
부록 보고의 기한. 보고는 범인에게 책임지고 피해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 기한 안에 반드시 상해 때문에 죽은 경우에만 투구살인(鬪毆殺人, 구타로

6 보방(保放) : 질병 치료나 초상 때 수감자를 석방했다가, 추후에 다시 수감하는 일을 뜻한다.

인한 살인)으로 논한다. 비록 보고 기한 이내라도 상처가 이미 회복되었고, 관청의 문서도 명백할 때 다른 이유로 죽으면 구상(毆傷)의 본법(本法)에 따른다. [대명률] ○고의적인 살인도 보고의 기한을 둔다. [속대전]

▶ 刑典 > 附 > 壽限 > [保辜者]

추관지(秋官志) 1781년

明宗二十二年, 教曰, 囚人冬月則給鋪席, 夏月則淨修獄中, 洗灑枷杻, 使無寒凍·薰蒸之患. 又定醫官, 備藥物救之. 貧不能養獄者, 官給廩料, 欽恤刑獄, 痛繩濫刑之吏.

명종 22년(1567). 주상께서 전교하였다. “죄수에게 겨울에는 바닥에 깔 자리를 제공하고, 여름에는 감옥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칼이나 차꼬를 세척하여 동상을 입거나 더위에 살이 문드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담당 의관을 정하여 약재를 구비한 후 죄수를 치료하게 하라. 가난하여 옥바라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청에서 음식을 지급하라. 형옥을 안타깝게 여기고 과도한 형벌을 내리는 관리를 통렬히 다스리라.”

▶ 卷之五 > 詳覆部 > 附 > 欽恤 > 明宗二十二年

[補] 三十七年, 傳曰, … 此後宗親及文臣時任史官·曾經侍從以上, 武臣時任內乘·宣傳官·曾經閫帥以上, 蔭官曾經敦寧都正以上, 關係殺人及贓汚外, 本府結語既已遲晚, 依受教照律何如事, 奉承傳施行. 雖與朝臣有異, 近侍則一也, 別軍職與長番內侍, 內醫官二品以上, 亦用此例事, 一體分付.

[보충] 영조 37년(1761).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 지금부터는 종친과 문신 중에 전·현직 사관이나 시종관(侍從官) 이상을 지낸 자, 무신 중에 전·현직 내승이나 선전관이나 곤수(閫帥, 절도사) 이상을 지낸 자, 음관 중에 돈녕부 도정 이상을 지낸 자는 살인 및 장오(贓汚, 뇌물)의 죄가 아니라면 의금부에서지만(遲晚, 자술서)을 받았더라도 처결하지 말고 곧장 주상의 교지로 판결해달라고 청하라. 조정의 신료와 다르진 하나 측근에서 모신다는 점은 동일하니 별궁 직이나 장번 내시(長番內侍)나 2품 이상인 내의원 의관에게도 이와 같은 규례를

사용하도록 일률적으로 지시하라.”

► 卷之五 > 詳覆部 > 附 > 欽恤 > (補)英宗三十七年

형법대전(刑法大全) 1905년

獄具를 應司 施用할 罪囚라도 疾病이 有할 時는 脫危하기까지 脱去함을
許함이라.

형구를 사용해야 하는 죄수라도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형구 벗기는 것을 허락한다.

► 第1編 法例 > 第1章 用法範圍 > 第4節 罪囚應禁・應許條例 > 第15條 [獄具脫去]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에 對한 약을 左開 五項을 犯한 者는 幷히 答五十에
處함이라. 一. 應給할 衣糧을 紿지 아니한 者. 二. 疾病이 有한 者를 救療에
不勤한 者. 三. 應히 解할 獄具를 解치 아니한 者. 四. 應히 保放할 者를
保放치 아니한 者. 五. 應히 入視할 人을 擋阻한 者.

옥사 담당 관원이나 관리가 죄수에게 다음 5가지 항목을 범한 경우에는 모두 태형 50대에 처한다. ①지급해야 할 의복이나 음식을 지급하지 않은 자. ②질병이 있는 죄수를 치료하는 일에 소홀한 자. ③당연히 풀어야 할 형구를 풀어주지 않은 자. ④당연히 보방(保放, 가석방)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죄수를 풀어주지 않은 자. ⑤당연히 감옥에 들어와 돌볼 가족을 막은 자.⁷

► 第4編 律例上 >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 第14節 不恤罪囚律 > 第334條 [不恤罪囚]

獄舍를 淨潔케 아니한 者는 答 二十이며, 堅完케 아니한거나 修葺치 아니한
者는 答 四十에 處함이라.

감옥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은 자는 태형 20대에 처하며, 감옥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은 자는 태형 40대에 처한다.⁸

► 第4編 律例上 > 第2章 職權所干律 > 第8節 濫職律 > 第241條「獄舍不實」

⁷ 참조 : 《대명률·형율·단옥》 425조 獄囚衣糧.

8 참조 : 《대전회통·형전·흘수》 淨掃罔圖, 療治疾病 ….

5. 포도(捕盜)

추관지(秋官志) 1781년

[補] 購捕亡命. 仁祖二年, 逆賊尹伸亡命, 購捕事目. 東西班牙三品以下, 隸堂上, 實職除授, 六品以下, 隸堂上, 生進·幼學·閑良·禁軍, 竝六品實職除授, 諸色軍士, 免役, 鄉吏, 免鄉, 醫·律生, 免役, 壽擊, 許通, 公私賤, 各賞銀二十兩.
...

[보충] 망명자에 대한 현상금. 인조 2년(1624)에 역적 윤신(尹伸, 광해군의 사돈)이 망명하여 현상금을 전 사례. 문·무관 중 3품 이하인 자가 윤신을 체포하면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고 실직을 제수한다. 6품 이하인 자가 체포하면 당상관으로 승진시킨다. 생원·진사·유학·한량·금군(禁軍)이 체포하면 모두 6품의 실직을 제수한다. 군사가 체포하면 군역을 면제하고, 향리면 향리의 신분을 면하며, 의생·율생이면 요역을 면하고, 서얼이면 허통(許通, 벼슬길을 열어줌)하며, 공천·사천이면 각각 상으로 은 20냥을 준다. ...

▶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購捕事目 > (補)購捕亡命

6. 장도(贓盜)

당률소의(唐律疏議) 652년

諸役功力, 有所採取而不任用者, 計所欠庸, 坐贓論, 減一等.

疏議曰, 謂官役功力, 若採藥或取材之類, 而不任用者. ...

무릇 백성의 공력을 동원하여 채취한 것이 쓸모가 없을 때는 허비한 비용을 계산하여 좌장(坐贓,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함)의 죄로 논하되 1등급을 감한다.

소의(疏議) : 관청에서 백성의 공력을 동원하여 약재나 목재 따위를 채취하였으나 쓸모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卷16 > 擅興 > 功力採取不任用

諸強盜謂以威若力而取其財，先強後盜，先盜後強，等。若與人藥酒及食，使狂亂，取財亦是。…

疏議曰，強盜取人財，注云，謂以威若力，假有以威脅人，不加兇力，或有直用兇力，不作威脅，而劫掠取財者。… 若飲人藥酒或食中加藥，令其迷謬而取其財者，亦從強盜之法。…

무릇 강도란 힘으로 위협하여 재물을 탈취한 것을 말한다. 먼저 폭행하고 나중에 훔치든 먼저 훔치고 나중에 폭행하든 동일하게 적용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약을 탄 술이나 음식을 주어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재물을 훔친 것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소의 : 강도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것에 대한 주석에 ‘힘으로 위협하여 그 재물을 탈취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을 위협했으나 폭력을 가하지 않았거나 혹은 폭력을 직접 사용했으나 위협은 하지 않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취한 경우도 있다. … 약 넣은 술이나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하여 혼미하게 만든 후 재물을 탈취했더라도 강도 조항으로 다룬다. …

► 卷19 > 賊盜 > 強盜

諸醫違法方詐療病，取財物者，以盜論。

疏議曰，醫違背本方，詐療疾病，率情增損，以取財物，計贓，以盜論。監臨之與凡人，各依本法。

무릇 의원이 본방(本方)을 어기고 혀위로 병을 치료하면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 조항으로 논한다.

소의 : 의원이 본방을 어기고 혀위로 질병을 치료하면서 임의로 약재나 분량을 가감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물을 장물로 계산하고 절도 조항으로 논한다. 감림제조관과 일반인은 각각 본법에 의하여 논한다.

► 卷25 > 詐僞 > 醫違方詐療病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

强盜

… 若以藥迷人圖財者，罪同。…

[直解] 凡強盜已行而不得財物者，並只，杖一百，流三千里遣，財物乙，得爲在乙良，不論首從，並只，斬齊。人乙，飲藥恍惚令是遣，財物謀取爲在乙良，罪同齊。…

강도

… 약으로 타인을 혼미하게 만든 후 재물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자는 강도의 죄와 동일하다。…

[직해] 무릇 강도짓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는 모두 장형 100대와 유형 3,000리에 처하고, 재물을 얻은 경우에는 범행 주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참형에 처한다. 타인에게 약을 먹여 혼미하게 만든 후 재물을 얻으려고 모의했거든 강도의 죄와 동일하게 처분한다。…

▶ 卷18 > 刑律 > 賊盜 > 第289條 強盜

坐贓致罪

凡官吏人等，非因事受財，坐贓致罪，各主者通算折半科罪，與者減五等。一貫以下，笞二十。…

謂如被人盜財或毆傷，若陪償及醫藥之外，因而受財之類，各主者並通算折半科罪，爲兩相和同取與，故出錢人減受錢人罪五等，又如擅科斂財物，或多收少徵錢糧，雖不入己，或造作虛費人工物料之類，凡罪由此贓者，皆名爲坐贓致罪。

[直解]

凡官吏人等亦，無緣故受財爲，贓物以，致罪爲在乙良，各人財物乙，通計爲，折半科罪爲遣，與者乙良，受者罪良中，減五等爲乎事。

他人亦中，財物乙，偷取令是遣，財物乙，還生徵爲去乃，或他人亦中，被打有傷爲，藥乙，生徵已受爲去乃，因此數外他財物乙，受用爲在乙良，各主者通算折半科罪爲乎矣，兩相和論許給爲去乙，捧上爲乎等用良，錢物許給人乙，錢物捧上，人矣，罪良中，減五等論齊。又自擅亦，財物乙，科斂爲乎矣，或數少收齊爲乎，

物乙，數多收齊爲去乃，必于，斜用不冬爲良置，凡錢造作乙因于，人工錢物乙，虛費爲在乙良，並只，坐贓以，稱云爲乎事。

좌장(坐贓,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함)으로 죄를 지음

무릇 관리들이 업무 외에 재물을 받으면 좌장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하여 절반에 대해 죄를 묻고, 재물을 준 자는 그보다 5등급을 감한다. 금액이 1관(貫) 이하라면 태형 20대에 처한다. …

이를테면 이런 경우이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도둑맞거나 맞아서 다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이나 치료비 및 약값 외에 이를 빌미로 재물을 받았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그 절반 금액만큼 죄를 논한다. 양쪽이 서로 합의하여 주고받았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는 의미이다. 또 만약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수학을 많이 했는데도 규정보다 세금을 적게 거두었으나 이를 자기의 수입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품삯과 물건 재료를 혗되어 소비하는 경우 등의 죄는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재물 때문이므로 모두 좌장으로 부르고 죄를 논한다.

[직해]

무릇 관리들이 이유 없이 재물을 받아 장물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하여 절반의 금액만큼 죄로 논하고 재물을 준 자는 받은 자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

타인에게 재물을 훔치게 하고 재물을 도로 생징(生徵, 강제로 회수함)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은 뒤에 약을 생징하여 받아냈거나, 이런 일로 정해진 액수 외에 별도의 재물을 받아서 썼거든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한 것의 절반을 죄로 논한다. 서로 합의하여 주었거든 금전이나 물건을 준 사람의 죄는 금전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 또한 스스로 제멋대로 정한 재물을 부과하여 거두었거나 혹은 적은 액수로 징수해야 하는 재물을 액수를 늘려 징수했거나 비록 유용하지 않았어도 무릇 금전이나 다시 제작함을 말미 암아 인력 · 공력 · 금전 · 재물을 허비했거든 모두 좌장으로 간주해야 한다.

▶ 卷23 > 刑律 > 受贓 > 第368條 坐贓致罪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세종 연간 1419-1450년

坐贓致罪

凡官吏人等, 非因事受財, 坐贓致罪, 各主者通算折半科罪, 與者減五等. 一貫以下, 答二十. …

謂如被人盜財或毆傷, 若陪償及醫藥之外, 因而受財之類, 各主者並通算折半科罪, 為兩相和同取與, 故出錢人減受錢人罪五等, 又如擅科斂財物, 或多收少徵錢糧, 雖不入己, 或造作虛費人工物料之類, 凡罪由此贓者, 皆名為坐贓致罪. …

좌장(坐贓,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함)으로 죄를 지음

무릇 관리들이 업무 외에 재물을 받으면 좌장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하여 절반에 대해 죄를 묻고, 재물을 준 자는 그보다 5등급을 감한다. 금액이 1관(貫) 이하라면 태형 20대에 처한다. …

이를테면 이런 경우이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도둑맞거나 맞아서 다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이나 치료비 및 약값 외에 이를 빌미로 재물을 받았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그 절반 금액만큼 죄를 논한다. 양쪽이 서로 합의하여 주고받았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는 의미이다. 또 만약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수확을 많이 했는데도 규정보다 세금을 적게 거두었으나 이를 자기의 수입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품삯과 물건 재료를 혗되어 소비하는 경우 등의 죄는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재물 때문이므로 모두 좌장으로 부르고 죄를 논한다. …⁹

▶ 卷23 > 刑律 > 受贓 > 第368條 坐贓致罪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1585년

○强盜

9 참조 :《당율소의》 권26 〈잡율雜律〉 389조 坐贓致罪 / 《형법대전》 제5편 〈율례(하)〉 제13장 財產所干律 제5절 犯贓律 631조.

凡強盜已行，而不得財者，皆杖一百流三千里，但得財者，不分首從，皆斬。決。○
若以藥迷圖財者，罪同。須分已未得。…

… ○以藥迷人，須分已未得財，同強盜論。但行術，以圖人財，或用麻藥，使不能言語而圖之，皆是，此等心在利，初無殺人，成心，若用砒礮毒人，則必主於死，亦分已未得財已得，依謀殺人，… …

○강도

강도짓을 했으나 재물을 탈취하지 않은 자는 모두 장형 100대와 유형 3,000리에 처한다. 단, 재물을 탈취한 자는 범행 주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참형에 처한다. 즉각 집행한다. ○약물로 타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재물을 탈취하려고 한 자는 같은 죄이다. 반드시 재물 탈취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

… ○약물로 혼미하게 만들었으면 마땅히 재물을 탈취하였는지 탈취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여 강도죄와 동일하게 논한다. 다만 술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고자 할 때, 혹 마비약을 써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도모함이 모두 이런 경우이다. 이들의 마음이 이익에만 있었고 애초부터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고의로 비상(砒礮)을 써서 사람을 중독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강도 후에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는지 탈취하였는지를 구분한 후 모살인(謀殺人)의 조항에 의거하여 죄를 논해야 한다. … …

▶ 卷之十八 > 賊盜 > 第289條 強盜

○坐贓致罪

凡官吏人等，非因事受財，坐贓致罪，各主者，通算折半科罪，與者，減五等。謂如被人盜財或歐傷，若陪償及醫藥之外，因而受財之類，各主者，並通算折半科罪，爲兩相和同取與，故出錢人減受錢人罪五等，又如擅科斂財物，或多收少徵錢糧，雖不入己，或造作虛費人工物料之類，凡罪由此贓者，皆名爲坐贓致罪。…

○좌장(坐贓,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함)으로 죄를 지음

무릇 관리들이 업무 외에 재물을 받으면 좌장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각 사람의 재물을 합산하여 절반에 대해 죄를 묻고, 재물을 준 자는 그보다 5등급을 감한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이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도둑맞거나 맞아서 다친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이나 치료비 및 약값 외에 이를 빌미로 재물을 받았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그 절반 금액만큼 죄를 논한다. 양쪽이 서로 합의하여 주고받았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의 죄에서 5등급을 감한다는 의미이다. 또 만약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수확을 많이 했는데도 규정보다 세금을 적게 거두었으나 이를 자기의 수입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품삯과 물건 재료를 헛되이 소비하는 경우 등의 죄는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재물 때문이므로 모두 좌장으로 부르고 죄를 논한다.

...

▶ 卷之二十三 > 受贓 > 第368條 坐贓致罪

수교집록(受教輯錄) 1698년

○訓局納布, 與諸上司藥債木, 竝五同十五疋載來人, 稱以周旋畢納, 詐欺色吏, 中間偷取者, 不待時處斬. 康熙壬申承傳

○훈련도감에 납부할 삼베와 각 상사(上司)에 납부할 약값 명목의 무명을 합하여 모두 5동 15필을 신고 온 사람에게 모두 납부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하면서 담당 아전을 속여 중간에서 훔친 자는 정해진 사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에 처한다. 1692년(숙종 18, 강희 임신)에 받은 전교

▶ 刑典 > 賊盜 > 775. [訓局納布與諸上…]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 1743년

○御藥所用銀器偷取罪人, 其三寸發告, 參以律文內小功親自首之文, 特爲減死定配. 康熙庚辰承傳

○왕실의 약을 담는 데 사용하는 은그릇을 훔친 죄인을 그 외삼촌이 신고하였다. 율문의 ‘소공친(小功親)이 대신 자수할 때 치별하는 조문’을 참고하여 특별히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정배(定配, 귀양 보냄)하라. 1700년(숙종 26, 강희 경진)에 받은 전교

▶ 刑典 > 賊盜 > 964. [御藥所用銀器偷…]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新補受教] … ○御藥所用銀器偷取罪人, 其外三寸發告, 參以律文內小功親自

首之文，特爲減死定配。康熙庚辰承傳。…

[신보수교집록] … ○왕실의 약을 담는 데 사용하는 은그릇을 훔친 죄인을 그 외삼촌이 신고하였다. 율문의 ‘소공친(小功親)¹⁰이 대신 자수할 때 처벌하는 조문’을 참고하여 특별히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정배(定配, 귀양 보냄)하라.

1700년(숙종 26, 강희 경진)에 받은 전교 …

▶ 刑典 > 賊盜 > 《新補受敎》

속대전(續大典) 1746년

[贊盜] 御廚物偷竊者，以盜大祀神御物論。內醫院銀器偷竊者，同律。…

[장도]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자는 국가의 제례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것과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내의원의 은그릇을 훔친 자도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

▶ 刑典 > 賊盜 > [御廚物偷竊者]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御廚物偷竊，以盜大祀神御物論。內醫院銀器同。…[續] …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자는 국가의 제례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것과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내의원의 은그릇도 같다。…[속대전]

…

▶ 刑典 > 賊盜 > [御廚物偷竊]

○強盜已行而不得財，皆杖百流三，得財，皆斬。以藥迷人圖財者同。〔律〕…

○강도를 행했으나 재물을 탈취하지 않은 자는 모두 장형 100대와 유형 3,000 리에 처하고,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모두 침형에 처한다. 약으로 타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재물을 탈취하려고 한 경우도 같은 죄이다。〔대명률〕…

▶ 刑典 > 賊盜 > [強盜]

10 소공친(小功親) : 5개월 간 상복을 입는 친족인 종조부모 · 재종형제 · 종질 · 종손의 총칭이다.

추관지(秋官志) 1781년

御器偷竊. … 五十年, 雲峯君陪人許麟, 偷賣內醫院銀器蓋子, 現捉捕廳, 承款. 本曹判書黃仁儉奏曰, “乙亥年, 朴太山依律正刑, 己丑年, 姜遇喜減死島配. 今此許麟, 當用何律乎.” 上曰, “依己丑年例, 勘律, 許麟島配, 割給治匠安世寬·買取銀匠金夏伊, 俱無知情之事, 幷決杖放送.” … [重補] 五年, 奴泰山, 偷出內局銀器. 因捕廳移文, 曹啓, “泰山偷出破鼎, 潛自吹鍊, 簡箇承款. 繢大典, ‘內醫院銀器偷竊者, 以盜大祀神御物律論’, 大明律, ‘盜大祀神祇御用祭器帷帳者, 斬不待時’, 係是一罪, 結案取招後稟處.” 云. 判付, 依允. …

주상의 기물을 훔친 경우. … 영조 50년(1774), 운봉군(雲峯君, 이심李杺)의 하인인 허린(許麟)이 내의원의 은그릇 뚜껑을 훔쳐 팔려다가 발각되어 포도청에 체포되었고, 죄를 자백하였다. 형조 판서 황인검(黃仁儉)이 아뢰기를 ‘을해년에는 박태산(朴太山)을 형률에 따라 사형하였고, 기축년에 강우희(姜遇喜)는 사형을 감하여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지금 허린에게는 어떤 형률을 적용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기축년의 전례에 따라 형률을 적용하여 허린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돈을 일부 받은 야장(冶匠) 안세관(安世寬)과 그것을 구입한 은장(銀匠) 김돌이(金夏伊)는 정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 모두장을 친 후 석방하라.’라고 하였다. … [2차 보충] 금상 5년(1781, 정조 5), 노비 태산(泰山)이 내의원의 은그릇을 훔쳤다. 포도청의 공문을 받은 후 형조에서는 이렇게 아뢰었다. “깨어진 은그릇을 훔쳐 몰래 직접 불로 정련한 사실을 태산이 낱낱이 자복하였습니다. 《속대전》에 ‘내의원의 은그릇을 훔친자는 국가의 제례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형률로 죄를 논한다.’라고 하였고, 《대명률》에 ‘국가의 제례 물품이나 왕실에서 사용하는 제기나 장막을 훔친자는 사형의 시기와 상관없이 참형에 처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일죄(一罪, 가장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결안(結案, 진술서)을 받은 후 아뢰어 처분하겠습니다.” 판부(判付, 판결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윤허하였다. …

▶ 卷之七 > 考律部 > 繢條三 > 竊盜 > 御器偷竊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續] 御廚物偷竊者, 以盜大祀神御物律論. 內醫院銀器偷竊者, 同律. …[增] 御廚物, 亦有輕重, 臨時稟旨.

[속대전]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자는 국가의 제례에 사용하는 물품이나 신령이 사용하는 물품을 훔친 것과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내의원의 은그릇을 훔친 자도 같은 형률을 적용한다. … [대전통편] 수라간의 물건을 훔친 경우라도 죄의 경중이 있으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상께 아뢰어 처분한다.

▶ 刑典 > 賊盜 > [御廚物偷竊者]

형법대전(刑法大全) 1905년

闕內에 在한 一應御供한 物品이나 御廚器皿或物料나 藥用器具或物料를 盜한 者는 紂에 處함이라.

대궐 내에 있는 물품 중 주상께 진상하는 물품이나, 수라간의 그릇들과 음식 재료나, 약을 조제할 때 쓰는 도구와 약재를 훔친 자는 교형에 처한다.¹¹

▶ 第5編 律例下 > 第12章 賊盜所干律 > 第1節 盜大祀所用及御用物律 > 第587條 [御供物品竊盜]

財產을 劫取한 計로 左開 所爲를 犯한 者는 首·從을 不分하고 紂에 處호되며, 已行하고 未得財한 者는 懲役終身에 處함이라. 一. 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 僻靜處或大道上에나 人家에 突入하여 拳腳棍棒이나 兵器를 使用한 者. 二. 人家에 潛入하여 挿劍或橫槍하고 威嚇한 者. 三. 徒黨을 嘘聚하여 兵仗을 持하고 閨巷或市井에 攔入한 者. 四. 藥으로 人の精神을昏迷케 한 者. 五. 人家의 神主를 藏匿한 者. 六. 墳塚을 發掘하거나 山殯을 開하여 尸柩를 藏匿한 者. 七. 老幼를 誘引或劫取하여 藏匿한 者. 八. 放火或發塚或破殯한 것과 聲言하고 掛榜或投書하여 恐嚇한 者. 九. 山殯을 毀破하고 衣衾을 剝取한 者.

11 참조 : 《대명률 · 형률 · 도적賊盜》 289조 강도(強盜) 賊盜處斷例 7조.

재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범한 자는 범행 주도 여부에 상관없이 교형에 처하되, 강도 행위를 했으나 재물을 탈취하지 않은 자는 종신 징역형에 처한다. ①1인 혹은 2인 이상이 주야에 상관없이 으슥한 곳이나 혹은 대로나 민가에 침입하여 손발·몽둥이·흉기를 사용한 자. ②민가에 침입하여 칼이나 창을 휘두르면서 위협한 자. ③무리를 불러 모아 흉기를 소지한 채 길거리나 시장에 난입한 자. ④약으로 타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자. ⑤민가의 신주를 훔쳐서 은닉한 자. ⑥무덤을 발굴하거나 가묘를 파헤쳐서 시신을 가져간 자. ⑦노약자를 유인 또는 납치하여 가둔 자. ⑧방화하거나 파묘하거나 가묘를 파헤치겠다고 공언하면서 방을 불이거나 투서하여 협박한 자. ⑨가묘를 파헤치고 옷가지를 탈취한 자.¹²

▶ 第5編 律例下 > 第12章 賊盜所干律 > 第4節 强盜律 > 第593條 [强盜]

7. 금제(禁制)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

詐病死傷避事

凡官吏人等，詐稱疾病，臨事避難者，笞四十，事重者，杖八十。…

[直解] 凡官吏人等亦，詐稱疾病，臨事避難爲在乙良，笞四十遣，重事是去等，杖八十齊。犯人罪對論次，故只，自身傷殘爲在乙良，杖一百齊，詐稱身故爲在乙良，杖一百徒三年齊。回避事重爲去等，從重論齊。回避緣故無亦，故只，自身傷殘爲在乙良，杖八十齊。他矣錢物捧上爲，其人乙，傷殘爲在乙良，犯人以，同罪齊，因此致死令是在乙良，鬪殺罪良中，減一等齊。次知官司亦，知而聽行爲在乙

12 참조 :《대명률·형률·도직賊盜》 289조 강도(強盜) 賊盜處斷例 7조.

良，同罪遣，不知者，不坐爲乎事.

질병 · 사망 · 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관원이나 아전들이 질병을 사칭하여 닥친 일의 어려움을 피하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회피한 사안이 무거우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

[직해] 관원이나 아전들이 질병을 사칭하고 닥친 일의 어려움을 회피하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중한 일이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범인의 죄를 심문할 때 고의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죽었다고 사칭하면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한다. 회피한 사안이 무거우면 중한 쪽 죄로 논한다. 회피할 이유 없이 고의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받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내주면 범인과 같은 죄이다. 이로 인하여 죽게 만들면 투구살인(鬪毆殺人) 죄에서 1등급을 감한다. 담당 관원이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죄가 같고,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卷24 > 刑律 > 詐僞 > 第387條 詐病死傷避事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세종 연간 1419-1450년

詐病死傷避事

凡官吏人等，詐稱疾病，臨事避難者，笞四十，事重者，杖八十. …

질병 · 사망 · 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관원이나 아전들이 질병을 사칭하여 닥친 일의 어려움을 피하면 태형 40대에 처하고, 회피한 사안이 무거우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¹³

▶ 卷24 > 刑律 > 詐僞 > 第388條 詐病死傷避事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醫女衣服，依京妓例，勿禁.

13 참조 : 《당률소의》 권25 〈詐僞〉 381조 詐疾病有所避 / 《형법대전》 제4편 律例上 제2장 職權所干律 제6절 厥避職役律 226.

○의녀의 의복은 한양 기생의 사례를 따르고, 신분 이상의 의복을 금지하지 않는다.

▶ 刑典 > 禁制 > [醫女衣服…]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년

○燒酒, 老病服藥外, 一禁.

○소주는 늙거나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 외에 일절 금지한다.

▶ 刑典 > 禁制 > [燒酒老病服藥…]

○章服 · 儀物 · 入染彩具 · 藥材 · 弓角外, 不緊雜物公私貿易, 幷一禁. 聖節使 · 冬至使行次外, 一應唐物, 勿貿易.

○장복(章服) · 의례 물품 · 염색 용품 · 약재 · 궁각(弓角) 외에 긴요하지 않은 온갖 물품의 공 · 사무역은 일절 금지한다. 성절사행 · 동지사행 외에는 어떤 중국 물품도 구매할 수 없다.

▶ 刑典 > 禁制 > [章服儀物…]

○客人處以本土不產之物及綿紬藥材買賣者, 依潛賣禁物條論. …

○외국인의 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 · 포목 · 약재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잠매금물潛賣禁物¹⁴〉 조에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 …

▶ 刑典 > 禁制 > [客人處以本土不產…]

수교집록(受教輯錄) 1698년

○法司禁吏, 與坊民結爲契房, 及庶人孽妾乘轎, 付法官, 一切禁斷. … ○儒生, 勿着毛衣紫的衣及帶. 三醫司同. … 康熙丁未承傳

법사(法司, 형법을 집행하는 관청들)의 금리(禁吏,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서리)가 한양 각 방(坊)의 백성들과 함께 계(契)를 결성하거나, 서인이나 서얼 출신 침이 가마

14 잠매금물(潛賣禁物) : 금지 물품을 몰래 파는 행위이다.

를 타는 경우에는 법사로 넘기고, 이런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 ○유생은 텔옷이나 자줏빛 옷과 요대를 착용하지 못한다. 삼의사(三醫司) 관원도 동일하다. … 강희 정미년(1667, 현종 8)에 받은 전교

▶ 刑典 > 禁制 > 660~669. [丁未承傳]

… ○庶人·僧人都城內騎馬者. 兩醫司·觀象監·司譯院·算員·律官·寫字官·畫員·錄事·雜科出身及前銜, 勿禁. 禁軍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捉付兵曹治罪.

… ○士夫妾及孽屬·醫·譯·雜職等妻女, 乘轎者, 着貂皮女帽者. ○常女, 着羅兀·帽段足道里者, 用金·珠玉指環者, 着紗羅綾段者. 妓生·醫女, 勿禁.

… ○以上條件, 定式出禁, 勿以一時臺諫意見, 別出雜禁. 康熙庚戌承傳

… ○서인(庶人)이나 승려가 도성 안에서 말을 타는 경우. 양의사(兩醫司)·관상감·사역원·산원·율관·사자관·화원·녹사·잡과 출신 및 잡과의 전직 관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도성의 금군(禁軍) 역시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마구 달리는 자는 잡아서 병조에 넘겨 죄를 다스린다.

… ○사대부의 첨이나 서얼·의관·역관·잡직인 자들의 쳐와 땀이 가마를 타는 경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두건)를 쓰는 경우. ○상민 여성이나 옥(羅兀)·모단(帽段)·족두리(足道里)를 착용하는 경우, 금이나 옥으로 만든 반지를 끼는 경우,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경우. 기생과 의녀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 ○이상의 규정을 규정으로 삼아 출금(出禁, 단속)하되, 일시적인 대간(臺諫)의 의견으로 이외에 온갖 금지 규정을 만들어내지 말라. 1670년(현종 11 강희 경술)에 받은 전교¹⁵

▶ 刑典 > 禁制 > 672~692. [庚戌承傳]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醫女衣服, 依京妓例, 勿禁.

15 참조 : 《비변사등록》 현종 11년 12월 29일.

○의녀의 의복은 한양 기생의 사례를 따르고, 신분 이상의 의복을 금지하지 않는다.

▶ 刑典 中 > 禁制 > 繢錄 > [醫女衣服]

○燒酒, 老病服藥外, 一禁.

○소주는 늙거나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 외에 일절 금지한다.

▶ 刑典 中 > 禁制 > 後續錄 > [燒酒]

○章服 · 儀物 · 入染彩具 · 藥材 · 弓角外, 不繁雜物公私貿易, 竝一禁. 聖節使 · 冬至使行次外, 一應唐物, 勿貿易.

○장복(章服) · 의례 물품 · 염색 용품 · 약재 · 궁각(弓角) 외에 긴요하지 않은 온갖 물품의 공 · 사무역은 일절 금지한다. 성절사행 · 동지사행 외에는 어떤 중국 물품도 구매할 수 없다.

▶ 刑典 中 > 禁制 > 後續錄 > [不繁雜物公私貿易]

○客人處以本土不產之物及綿紬 · 藥材買賣者, 依潛賣禁物條論. …

○외국인의 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 · 포목 · 약재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잠매금물潛賣禁物〉 조에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 …

▶ 刑典 中 > 禁制 > 後續錄 > [客人處買賣者]

○法司禁吏與坊民, 結爲契房及庶人孽妾乘轎, 付法官, 一切禁斷. … ○儒生, 勿着毛衣 · 紫的衣及帶. 三醫司同. … 康熙丁未承傳

○법사(法司, 형법을 집행하는 관청들)의 금리(禁吏,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서리)가 한양 각 방(坊)의 백성들과 함께 계(契)를 결성하거나, 서인이나 서얼 출신 첨이 가마를 타는 경우에는 법사로 넘기고, 이런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 ○유생은 털옷이나 자줏빛 옷과 요대를 착용하지 못한다. 삼의사(三醫司) 관원도 동일하다. … 강희 정미년(1667, 현종 8)에 받은 전교

▶ 刑典 中 > 禁制 > 受教輯錄 > [服着禁制]

… ○庶人·僧人都城內騎馬者. 兩醫司·觀象監·司譯院·算員·律官·寫字官·畫員·錄事·雜科出身及前銜, 勿禁. 禁軍, 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捉付兵曹治罪. … ○士夫妾及擊屬·醫·譯·雜職等妻女乘轎者, 着貂皮·女帽者. ○常女着羅兀·帽段·足道里者, 用金·珠玉·指環者, 着紗羅·綾段者. 妓生·醫女, 勿禁.

… ○以上條件, 定式出禁, 勿以一時臺諫意見, 別出雜禁. 康熙庚戌承傳

… ○서인(庶人)이나 승려가 도성 안에서 말을 타는 경우. 양의사(兩醫司)·관상감·사역원·산원·율관·사자관·화원·녹사·잡과 출신 및 잡과의 전직 관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도성의 금군(禁軍) 역시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마구 달리는 자는 잡아서 병조에 넘겨 죄를 다스린다.

… ○사대부의 첨이나 서얼·의관·역관·잡직인 자들의 쳐와 땔이 가마를 타는 경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두건)를 쓰는 경우. ○상민 여성이 나올(羅兀)·모단(帽段)·족두리(足道里)를 착용하는 경우, 금이나 옥으로 만든 반지를 끼는 경우,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경우. 기생과 의녀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 ○이상의 규정을 규정으로 삼아 출금(出禁, 단속)하되, 일시적인 대간(臺諫)의 의견으로 이외에 온갖 금지 규정을 만들어내지 말라. 1670년(현종 11 강희 경술)에 받은 전교

▶ 刑典 中 > 禁制 > 受敎輯錄 > [庚戌定式出禁]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刑曹·漢城府, 則一朔內, 六次出禁, 每一次, 無過二條. 司憲府, 雖不一定日限, 間間出禁, 倘無如前無節之弊. 三司, 各以禁制條目, 造爲禁牌, 刻其禁目, 隨其所出, 紿付禁吏, 以爲符驗, 倘無假稱作弊·詐侵他物之弊. … 士夫妾, 及擊屬醫譯雜職等人妻, 乘轎者, 着貂皮女帽者, 常漢女, 着紗羅綾段者, 醫女·妓生, 勿禁. … 醫官·觀象監·司譯院·寫字官·畫員·律官·錄事·算員·雜科出身及各軍門將士有銜者, 禁軍勿禁. … 康熙戊辰承傳

○형조와 한성부는 한 달에 6차례 출금(出禁, 단속)하는데, 한 차례마다 2개 조항을 넘지 않게 한다. 사헌부는 비록 출금하는 기한을 일정하게 하지 않더라도

도 간간이 출금하여 전처럼 무절제한 폐단이 없도록 한다. 세 법사(法司, 형조·한성부·사헌부)에서 각각 금지하는 조목은 금패(禁牌)로 만들어 거기에 금지하는 조목을 새긴 후 출금 나갈 때 금리(禁吏,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서리)에게 지급하여 부험(符驗, 신분 증표)으로 삼아서, 거짓으로 금리라 하여 폐단을 일으키거나 금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항목을 함부로 침범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사대부의 첨이나 서얼·의관·역관·잡직의 쳐는 가마 타는 것을 금지하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쓰는 것을 금지한다. 상민 여자가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의복을 입은 것을 금지하되, 의녀나 기생에게는 금지하지 않는다. … 의관·관상감·사역원·사자관·화원·율관·녹사·산원·잡과 출신 및 각 군문의 장교로서 직함이 있는 사람·금군(禁軍)에게는 도성 안에서 말 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¹⁶

▶ 刑典 > 禁制 > 1075~1084. [三司禁制節目]

○錄事·醫員·籌員與軍門將校之屬正妻, 各衙門·諸宮家, 毋得囚禁拘留事, 永爲定式, 而如有犯者, 耳目之官, 紛察論罪. 依大明律制違, 杖一百. ○雍正乙卯承傳

○녹사·의원·산원들 및 각 군문 장교들의 부인은 각 아문이나 여러 궁가(宮家)에서 가두거나 구류할 수 없도록 영구히 규정으로 삼는다. 이후에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헌부 관원이 조사하여 죄를 논한다. 《대명률·제위制違》조에 따르면 장형 100대이다. ○옹정 을묘년(1735, 영조 11)에 받은 전교¹⁷

▶ 刑典 > 禁制 > 1120. [正妻毋得囚禁拘留…]

○藥材中人蔘, 以他雜物膠付造蔘, 潛賣現發, 蔘商, 以造銀錢罪, 一體定律. 雍正辛亥承傳

○약재 가운데 인삼에다 다른 약재를 붙여 완전한 인삼으로 만든 후 몰래 팔다가 적발될 경우, 인삼 상인은 은전을 만든 죄와 마찬가지로 형률을 적용한다.

16 참조 : 《비변사등록》 숙종 14년 4월 4일.

17 참조 :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2월 5일.

옹정 신해년(1731, 영조 7)에 받은 전교

▶ 刑典 > 禁制 > 1219. [藥材中人蔘…]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續錄] … ○醫女衣服, 依京妓例, 勿禁. …

[대전속록] … ○의녀의 의복은 한양 기생의 사례를 따르고, 신분 이상의 의복을 금지하지 않는다. …

▶ 刑典 > 禁制 > 《續錄》

[後續錄] … ○燒酒, 老病服藥外, 一禁. ○蠱毒案付人, 托於興販, 出入他境者, 治罪. … ○章服·儀物·入染彩具·藥材·弓角外, 不緊雜物公私貿易, 竝一禁. 聖節使·冬至使行次外, 一應唐物勿貿易. … ○客人處以本土不產之物及綿紬·藥材買賣者, 依潛賣禁物條論. 依大典, 杖一百徒三年 …

[대전후속록] … ○소주는 늙거나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 외에 일절 금지한다. ○고독(蠱毒)을 타인에게 보내려고 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에 숨겨서 국경을 출입한 자는 죄를 다스린다. … ○장복(章服)·의례 물품·염색 용품·약재·궁각(弓角) 외에 긴요하지 않은 온갖 물품의 공·사무역은 일절 금지한다. 성질사행·동지사행 외에는 어떤 중국 물품도 구매할 수 없다. … ○외국인의 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포목·약재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잠매금물潛賣禁物〉 조에 의거하여 죄를 논한다. 법전에 따르면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이다. …

▶ 刑典 > 禁制 > 《後續錄》

[受教輯錄] … ○儒生, 勿着毛衣·紫的衣及帶. 三醫司同. … ○庶人·僧人都城內騎馬者 兩醫司·觀象監·司譯院·算員·律官·寫字官·畫員·錄事·雜科出身及前銜, 勿禁. 禁軍, 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提付兵曹治罪. … ○士夫妾及擎屬·醫·譯·雜職等妻女乘轎者, 着貂皮·女帽者. ○常女着羅兀·帽段·足道里者, 用金·珠玉·指環者, 着紗羅綾段者 妓生·醫女, 勿禁. …

[수교집록] … ○유생은 털옷이나 자줏빛 옷과 요대를 착용하지 못한다. 삼의사(三醫司) 관원도 동일하다. … ○서인(庶人)이나 승려가 도성 안에서 말을 타는 경우. 양의사(兩醫司) · 관상감 · 사역원 · 산원 · 율관 · 사자관 · 화원 · 녹사 · 잡과 출신 및 잡과의 전직 관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도성의 금군(禁軍) 역시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마구 달리는 자는 잡아서 병조에 넘겨 죄를 다스린다. … ○사대부의 청이나 서얼 · 의관 · 역관 · 잡직인 자들의 쳐와 땀이 가마를 타는 경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두건)를 쓰는 경우. ○상민 여성이 나올(羅兀) · 모단(帽段) · 족두리(足道里)를 착용하는 경우, 금이나 옥으로 만든 반지를 끼는 경우,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경우. 기생과 의녀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

▶ 刑典 > 禁制 > 《受教輯錄》

[新補受教] … 士夫妾及孽屬，醫·譯·雜職等妻，乘轎者，着貂皮女帽者，常漢女，着紗羅綾段者。醫女·妓生，勿禁。…醫官·觀象監·司譯院·寫字官·畫員·律官·錄事·算員·雜科出身，及各軍門將士有銜者·禁軍，勿禁。…康熙戊辰承傳… ○藥材中人蔘，以他雜物膠付，造蔘潛賣現發，蔘商，以造銀錢罪，一體定律。雍正辛亥承傳… ○錄事·醫官·算員輩與軍門將校之屬正妻，各衙門·諸宮家，毋得囚禁拘留事，永為定式。而如有犯者，耳目之官，糾察論罪。依大明律制違，杖一百。○雍正乙卯承傳…

[신보수교집록] … 사대부의 청이나 서얼 · 의관 · 역관 · 잡직인 자들의 쳐와 땀이 가마를 타는 경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모(女帽, 두건)를 쓰는 것을 금지한다. 상민 여성이 사라(紗羅)나 능단(綾段)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되, 의녀나 기생에게는 금지하지 않는다. … 의관 · 관상감 · 사역원 · 사자관 · 화원 · 율관 · 녹사 · 산원 · 잡과 출신 및 각 군문의 장교로서 직함이 있는 사람 · 금군(禁軍)에게는 도성 안에서 말 타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 ○약재 가운데 인삼에다 다른 약재를 불여 완전한 인삼으로 만든 후 몰래 팔다가 적발될 경우, 인삼 상인은 은전을 만든 죄와 마찬가지로 형률을 적용하라. 응정 신해년(1731, 영조 7)에 받은 전교… ○녹사 · 의원 · 산원들 및 각 군문 장교들의 부인은 각 아문이나 여러 궁가(宮家)에서 가두거나 구류할

수 없도록 영구히 규정으로 삼으라. 이후에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헌부 관원이 조사하여 죄를 논하라. 《대명률·제위制違》조에 따르면 장형 100대이다. ○옹정 을묘년(1735, 영조 11)에 받은 전교 …

▶ 刑典 > 禁制 > 《新補受敎》

속대전(續大典) 1746년

○奔競者, 都目政定日後, 吏·兵曹堂上家, 過都政後署經前, 兩司官員家, 非同姓六寸·異姓四寸及婚家而出入者 牛馬私屠者, 廉人犯禁者, 杖一百徒三年. 士夫, 則坐其家長同律. ○兩都·水原·廣州等邑, 及其他道不得不許屠處, 五日屠一牛, 違越官長, 從重論 都城內庶人騎馬者, 三醫司·譯官·律官·日官·寫字官·算員·畫員等雜科出身及前銜, 勿禁. 錄事·禁軍, 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捉付兵曹, 決棍 … 竝禁斷, 而申嚴舊典, 其勿濫及.

○분경하는 자, 도목정사가 정해진 날 이후에 이조와 병조 당상관의 집에 출입하거나, 도목정사가 지난 후부터 서경(署經)¹⁸ 전까지 양사(兩司, 사헌부·사간원) 관원의 집에 출입하는 자이다. 친족 6촌이나 외척 4촌이나 혼인하는 집안은 제외한다 소나 말을 사사로이 도축한 자, 서인(庶人)이 금기를 범한 경우에는 장형 100대, 도형 3년에 처한다. 사대부가 금기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집안의 가장까지 같은 죄목을 묻는다. ○양도(兩都)·수원·광주 또는 다른 도 중에 부득이하게 도축을 허가받은 곳에서는 매달 5일에 소 1마리를 도축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수령은 중형을 따라 죄를 논한다.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서인(庶人), 삼의사(三醫司)·역관·율관·일관·사자관·산원·화원들과 잡과 출신 및 잡과 전임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녹사와 금군에게도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달릴 경우에는 잡아서 병조로 보낸 후 곤장에 처한다 … 등은 모두 단속하고 옛 법전을 엄중하게 신칙하여 외람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 刑典 > 禁制 > [奔競牛馬私屠者]

○上自宮禁, 下至閨閣, 章服·戎服外, 非土產, 則母得服着. 禁軍·扈衛軍官, 及醫

18 서경(署經) : 임금이 관원을 임명하거나 그 외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명을 받아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다.

女·針線婢, 勿禁僭衣. …

○ 궁중에서부터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장복(章服)·용복(戎服) 외에는 국산품이 아니면 입지 말아야 한다. 금군·호위군관·의녀·침선비는 신분 이상의 옷을 금지하지 않는다. …

▶ 刑典 > 禁制 > [非土產母得服着]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上自宮禁, 下至閨閣, 章服·式服外, 非土產, 母得服着. 禁軍·扈衛軍官·醫女·針線婢, 勿禁僭衣. …

○ 궁중에서부터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장복(章服)·용복(戎服) 외에는 국산품이 아니면 입지 말아야 한다. 금군·호위군관·의녀·침선비는 신분 이상의 옷을 금지하지 않는다. …

▶ 刑典 > 禁制 > [服着]

추관지(秋官志) 1781년

犯越罪人推覈式. … 犯越罪人, 病勢看審, 兩醫司救療官, 持藥物待令. …

국경을 함부로 출입한 죄인의 조사. … 국경을 함부로 출입한 죄인이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양의사(兩醫司)의 구료관(救療官)을 약재와 함께 보낸다. …

▶ 卷之一 > 雜儀 > 犯越罪人推覈式

[重補] 加髢申禁事目. 傳教擧條, 幷見申章. 節目. 婦人首飾, 亦有儀度, 加髢之出, 未踰數十年, 其源已乖於倣華, 其流漸痼於尙侈, 甚至於富猶蕩產·貧或廢倫. … 合行事件, 謹遵下教, 條列于左. … 一, 常賤女人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 幷許令以本髮加首, 而貼髢·加髢之制, 各別禁斷. 各宮房水賜里·醫女·針線婢, 各營邑女妓, 本髮加首之上, 戴以加里丫, 以示區別等威之意, 而內醫女, 仍用冒緞, 餘則用黑三升. …

[2차 보충] 가체(加髢, 큰머리나 어여머리)를 거듭 금지하는 조목. 전교(傳教)와 거조(擧條, 아뢴 조항) 모두 <신장申章>에 나온다. 절목(節目, 지침). 부인의 머리

꾸미는 것도 또한 의례의 정도가 있어야 한다. 가체의 출현은 수십 년을 넘지 못한다. 중국을 모방하려고 시작한 것도 전혀 아니고 이제는 사치 송상보다 고질병이 되고 있는지라 심지어 부유한 사람도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한 사람이 간혹 인륜을 쳐버리기까지 하고 있다. … 마땅히 지켜야 할 일에 대해 삼가 전교를 받들어 아래에 조목을 열거한다. … 하나. 거리에서 얼굴을 드러내도 되는 상민이나 천민 여인과 공천·사천에게는 모두 자기 머리털을 머리 위에 얹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침체(貼鬚, 침지머리)나 가체는 각별히 금지한다. 각 궁방의 무수리·의녀·침선비와 각 감영·군영의 기생은 자기 머리털을 머리 위에 얹고 가리마를 써서 등위(等威, 신분에 맞는 의례)의 구별을 표시한다. 그리고 내의녀는 계속하여 모단(冒緞)을 사용하고 그밖에는 흑삼승포(黑三升布)를 사용한다. …

▶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重補)加髢申禁事目

科學事目. 肅宗九年, 禮曹啓目, … 三醫司·律學·計士·寫字官等, 爲代寫冒入現露, 則已雜科者, 依生進例, 充軍永停, 未科者, 則全家徙邊. 三醫司以下, 常時習業, 應爲赴舉者, 則呈本司及本曹, 受公文後許赴. …

과거에 대한 조목. 숙종 9년(1683)에 예조에서 아뢴 조목들이다. … 삼의사(三醫司)의 관원·율관·산원·사자관들이 혹 대신 써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지음)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한다. 삼의사(三醫司) 이하 중 평상시에 본업을 익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이는 소속 관청을 통해 예조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응시를 허락한다. …

▶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科舉事目

[重補] 御器還下. 今上十一年, 因內醫院草記, 司饔院吏移送秋曹事, 傳曰, “在前則各種砂器, 皆有用後還下之規, 筵稟定奪, 不啻丁寧, 近來則此規掃地, 一入本院, 便歸烏有, 雖使廚院, 月造萬種, 日費千竹, 將不勝其支當. 以是之故, 莫重御藥封入之器皿, 猶令還下, 而還下者, 又皆消濫於本院, 若此而又必侵責於廚

院, 至有草記之擧, 一則本院之罪, 二則本院之罪. 掌務官及院吏, 以廚院所請施行, 可也.” 曹草記, “大明律有曰, ‘凡收受支給官物, 當該官吏, 無故留難刁蹬, 不卽收支者, 杖六十徒一年.’ 內醫院書員趙慶國, 依此律收贖.”

[2차 보충] 왕실의 기물을 반환함. 금상 11년(1787, 정조 11), 내의원의 초기(草記, 간단한 보고문)로 사용원 아전을 형조로 이송하는 사건에 대한 전교이다. “예전에는 각종 사기그릇을 사용한 후에는 반환하는 규정이 있어 연품(筵稟, 연석에서 아름)에 따라 재가를 한 사실이 분명하나, 근래 이 규정이 땅에 떨어져 한번 내의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득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니, 사용원에서 달마다 그릇 만 개를 만들게 하더라도 하루에 천 죽(竹, 10별)씩 쓴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 때문에 어약(御藥)을 담는 그릇보다 막중한 물품이 없더라도 오히려 반환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반환해야 하는 그릇까지 모두 내의원에서 사라지는 마당에 이처럼 사용원에 책임을 강요해달라는 초기까지 올렸으니 첫째도 내의원의 죄요, 둘째도 내의원의 죄이다. 장무관(掌務官, 수석 실무자)과 내의원 서리에게는 사용원의 요청대로 시행함이 맞다.” 형조의 초기이다. “《대명률》에 이르기를 ‘지급된 관청 물품을 받는 담당 관원이 이유 없이 교활한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즉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지 않은 자는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내의원 서원 조경국(趙慶國)은 이 형률에 의거하여 속전을 징수해야 합니다.”

▶ 卷之十 > 掌禁部 > 申章 > 奢侈 > (重補)御器還下

僭猥. 醫女乘轎. 英宗十四年, 右議政李所啓, “日前醫女刷推命下之後, 敢乘草轎赴刑曹云. 有關國綱, 率畜之人, 令政院捧現告罷職, 該曹之任其乘轎不能禁斷堂上, 推考何如?” 依允.

참외(僭猥). 의녀가 가마를 탐. 영조 14년(1738)에 우의정 이 아무개의 장계이다. “일전에 의녀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도 감히 초교(草轎, 삿갓가마)를 타고 형조에 왔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의 기강에 관계된 일이오니 이 의녀를 함부로 교육한 자는 승정원에서 위반 사실을 즉시 알려 파직하게 하시고, 가마를 타도 단속하지 않은 형조의 담당 당상관을 추고(推考, 징계)하심이 어떻습니까?”

까?” 주상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卷之十 > 掌禁部 > 雜令 > 僮猥 > 醫女乘轎

특교정식(特敎定式) 1794년

英宗四十年, 傳曰, “近者, 莫辨葉草, 設局者夥然, 心常非之, 甚至於公廡門傍, 揭板設局, 事之可駭, 莫此爲甚, 卽命去之, 該司次知中官, 從重推考. … ”

영조 41년(1765)의 전교이다. “근래, 엽초(葉草)도 구분하지 못하면서¹⁹ 약국을 여는 경우가 많아 마음에 늘 잘못이라 여겼거늘 심지어 관청 근처에서까지 현판을 걸고 약국을 열고 있다. 사안의 해괴함으로 이보다 심한 경우가 없으니 즉시 명하여 없애고 해당 관청의 관원과 담당 내시를 중죄 쪽으로 추고(推考, 징계)하라. … ”²⁰

▶ 特敎定式 > 禁藥局懸板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奔競者 都目政定日後, 吏·兵曹堂上家, 過都政後署經前, 兩司官員家, 非同姓六寸·異姓四寸及婚家而出入者, 牛馬私屠者 庶人犯禁者, 杖一百徒三年. 士夫, 則坐其家長同律. ○兩都·水原·廣州等邑及其他道不得不許屠處, 五日屠一牛, 違越官長, 從重論, 都城內庶人騎馬者三醫司·譯官·律官·日官·寫字官·算員·畫員等雜科出身及前銜, 勿禁. 錄事·禁軍, 亦勿禁. 而城內驅馳者, 捉付兵曹, 決棍, … 竝禁斷, 而申嚴舊典, 其勿濫及.

○분경하는 자, 도목정사가 정해진 날 이후에 이조와 병조 당상관의 집에 출입하거나, 도목정사가 지난 후부터 서경(署經) 전까지 양시(兩司, 사헌부·사간원) 관원의 집에 출입하는 자이다. 친족 6촌이나 외척 4촌이나 혼인하는 집안은 제외한다 소나 말을 사사로이 도축한 자, 서인(庶人)이 금기를 범한 경우에는 장형 100대, 도형 3년에 처한다. 사대부가 금기를

19 엽초(葉草)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 엽초는 보통 담배를 가리키지만 여기서 엽초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겠다. 대략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①약재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약국을 여는 경우가 많아 ②엽초전(담배를 판매하는 상인)과 약국 할 것 없이 매우 많아

20 참조 : 《승정원일기》 영조 40년(1764) 5월 20일.

범한 경우에는 그 집안의 가장까지 같은 죄목을 묻는다. ○양도(兩都) · 수원 · 광주 또는 다른 도 중에 부득이하게 도축을 허가받은 곳에서는 매달 5일에 소 1마리를 도축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수령은 중형을 따라 죄를 논한다.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서인(庶人), 삼의사(三醫司) · 역관 · 율관 · 일관 · 사자관 · 산원 · 화원들과 잡과 출신 및 잡과 전임자에게는 금하지 않는다. 녹사와 금군에게도 금하지 않으나,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달릴 경우에는 잡아서 병조로 보낸 후 곤장에 처한다 … 등은 모두 단속하고 옛 법전을 엄중하게 신칙하여 외람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 刑典 > 禁制 > [奔競牛馬私屠者]

○上自宮禁, 下至閨閣, 章服 · 戎服外, 非土產, 則毋得服着. 禁軍 · 扱衛軍官及醫女 · 針線婢, 勿禁僭衣. …

○궁중에서부터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장복(章服) · 응복(戎服) 외에는 국산품이 아니면 입지 말아야 한다. 금군 · 호위군관 · 의녀 · 침선비는 신분 이상의 옷을 금지하지 않는다. …

▶ 刑典 > 禁制 > [非土產毋得服着]

8.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贱妻妾子女] 宗親總麻以上 · 外姓小功以上親賤妻子女, 竝從良, 無贖身 · 立役. 親功臣賤妻子女同. ○娼妓 · 女醫, 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大小員人同)

[천처첩자녀] 시마복(総麻服)²¹ 이상을 입는 종친과 소공복(小功服) 이상을 입

21 상복은 친소(親疏)와 존비(尊卑)에 따라 참최(斬縗) · 재최(齋縗) · 대공(大功) · 소공(小功) · 시

는 외척의 천인 첨이 낳은 자녀는 모두 양인으로 한다. 속신(贖身, 몸값을 내고 양인이 됨)이나 신역은 없다. 친공신(親功臣, 공신 본인)의 천인 첨이 낳은 자녀도 같다.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대소 신료도 같다)

▶ 刑典 > 賤妻妾子女 > [宗親總麻以上…]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賤妻子女] 大典內, 媚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之法, 以成化戊戌年受教, 爲始行用.

[천첩자녀] 경국대전의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성화 무술년(1478, 성종 9)의 수교 부터 시행되었다.

▶ 刑典 > 賤妻子女 > [大典內媚妓女醫…]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년

[賤妻子女] 宗親及大小人員, 娶倡流女醫爲妾, 除仕無出入者, 以家畜論.

[천첩자녀]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기생이나 여의를 첨으로 삼은 경우,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刑典 > 賤妻子女 > [宗親及大小人員…]

경국대전주해 후집(經國大典註解 後集) 1555년

마(總麻)로 분류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참최는 3년, 재최는 3년, 기년(朞年)은 만 1년, 대공은 9개월, 소공은 5개월, 시마는 3개월이다. 아버지와 국왕의 상에는 참최를 입고, 어머니 상에는 재최로 3년을 입었으며, 조부모 · 백부모 · 형제의 상에는 재최 기년복을 입었다. 대공은 종부곤제(從父昆弟)의 상에, 소공은 재종제(再從弟) · 외조모의 상에, 시마는 종증조(從曾祖) · 삼종형제(三從兄弟) · 증손 · 현손의 상에 입었다.

倡妓·女醫, 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

非家畜, 則未辨其父, 故勿許爲良. 爲良, 放之仍爲良人也.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의미.

집에서 데리고 사는 자가 아니면 자녀의 아버지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위량(爲良)’이란 천인에서 해방시켜 양인이 된다는 것이다.

▶ 刑典 秋官 司寇 > 賤妻妾子女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賤妻妾子女] ○宗親總麻以上·外姓小功以上親賤妻子女, 並從良, 無贖身·立役. 親功臣賤妻子女同. ○倡妓·女醫, 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 大小員人同.

[천처첩자녀] ○시마복(総麻服) 이상을 입는 종친과 소공복(小功服) 이상을 입는 외척의 천인 청이 낳은 자녀는 모두 양인으로 한다. 속신(贖身, 몸값을 내고 양인이 됨)이나 신역은 없다. 친공신(親功臣, 공신 본인)의 천인 청이 낳은 자녀도 같다.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대소신료도 같다.

▶ 刑典 中 > 賤妻妾子女 > [大典] > [從良無贖身·立役]

[續錄] 大典內, 娟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之法, 以成化戊戌年受教, 爲始行用.

[대전속록] 경국대전의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성화 무술년(1478, 성종 9)의 수교부터 시행되었다.

▶ 刑典 中 > 賤妻妾子女 > 繢錄 > [成化戊戌年受教始行]

[後續錄] 宗親及大小人員, 娟倡流·女醫爲妾, 除仕無出入者, 以家畜論.

[대전후속록]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기생이나 여의를 첨으로 삼은 경우,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刑典 中 > 賤妻妾子女 > 後續錄 > [宗親及大小人員]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賤妻妾子女. 宗親總麻以上 · 外姓小功以上親, 賤妻子女, 竝從良, 無贖身 · 立役. 親功臣賤妻子女同. ○倡妓 · 女醫, 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 大小員人同. … 천처첩자녀. 시마복(總麻服) 이상을 입는 종친과 소공복(小功服) 이상을 입는 외척의 천인 첨이 낳은 자녀는 모두 양인으로 한다. 속신(贖身, 몸값을 내고 양인이 됨)이나 신역은 없다. 친공신(親功臣, 공신 본인)의 천인 첨이 낳은 자녀도 같다.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대소신료도 같다. …

▶ 刑典 > 賤妻妾子女 > [大典]

[續錄] 大典內, 媚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之法, 以成化戊戌年受教爲始行用. … 弘治五年十一月二十一日承傳 …

[대전속록] 경국대전의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성화 무술년(1478, 성종 9)의 수교부터 시행되었다. … 흥치 5년(1492) 11월 21일의 전교 …

▶ 刑典 > 賤妻妾子女 > 《續錄》

[後續錄] 宗親及大小人員, 娶倡流 · 女醫爲妾, 除仕無出入者, 以家畜論. … 正德七年四月初七日, 掌隸院受教. …

[대전후속록]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기생이나 여의를 첨으로 삼은 경우,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정덕 7년(1512) 4월 7일에 장예원으로 내린 전교 …

▶ 刑典 > 賤妻妾子女 > 《後續錄》

속대전(續大典) 1746년

○宗親及大小人員, 媚流女醫家畜者所生, 許良之法, 見大典 惟除仕無出入者, 方以家畜論.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에게는 양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전은 경국대전에 나온다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刑典 > 賤妻妾子女 > [家畜者所生許良之法]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賤妻妾子女] [原] 宗親總麻以上 · 外姓小功以上親賤妻子女, 紛從良, 無贖身 · 立役. 親功臣賤妻子女同. ○娼妓 · 女醫 · 家畜者所生外, 勿許為良. 大小員人同

[천처첩자녀] [경국대전] 시마복(總麻服) 이상을 입는 종친과 소공복(小功服) 이상을 입는 외척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는 모두 양인으로 한다. 속신(贖身, 몸값을 내고 양인이 됨)이나 신역은 없다. 친공신(親功臣, 공신 본인)의 천인 첩이 낳은 자녀도 같다.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 이외에는 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대소신료도 같다.

▶ 刑典 > 賤妻妾子女 > [宗親賤妻子女從良]

○宗親及大小人員, 媚流女醫家畜者所生, 許良之法 見原典, 惟除仕無出入者, 方以家畜論.

○종친이나 대소 신료가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가 낳은 자녀에게는 양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전은 경국대전에 나온다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의 자녀만 해당한다.

▶ 刑典 > 賤妻妾子女 > [家畜者所生許良之法]

9. 공천(公賤)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加定選上奴, 昭敬殿, 差備十六. … 內醫院堂上, 根隨各二. … 醫書習讀官 · 講肆習讀官, 根隨各一. 隨時仕員數. … 六曹藥房, 差備二, 根隨三. 七品以下, 則無. …

○추가로 정한 선상노(選上奴, 각 지방에서 도성으로 보내는 노비). 소경전은 차비노 16명. … 내의원 당상관은 근수노 각각 2명. … 의서습독관 · 강이습독관은 근수노 각각 1명. 당시 관원 수에 따른다. … 육조의 약방은 차비노 2명, 근수노 3명. 7품 이하의 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 刑典 > 公賤 > [加定選上奴…]

○景福宮後苑種藥田, 看守奴四. 內醫院習讀官, 廳直奴四, 熟饌婢四, 竝以各司奴婢定給. 藥田, 差備選上十亦給.

○경복궁 후원의 종약전(種藥田)은 간수노 4명. 내의원의 의서습독관은 청지기 노 4명과 숙찬비 4명. 이상은 모두 각 관노비에서 정해진 대로 지급한다. 종약전에는 차비노와 선상노 10명도 지급한다.

▶ 刑典 > 公賤 > [景福宮後苑…]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針線婢 · 醫女 · 丘史之屬, 上京之後所生子女, 皆付京案, 不還本官, 外方官屬, 日漸凋殘, 令該院一一查出, 還送本官. 康熙乙丑承傳

○지금은 침선비 · 의녀 · 구사(丘史, 종친이나 공신에게 파견하는 관노비) 등이 상경한 뒤에 낳은 자녀를 모두 경안(京案, 도성의 노비 명부)에 기재해두고 본 고을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관노비들이 날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장예원에서 일일이 조사한 다음 본 고을로 돌려보내라. 1685년(숙종 11, 강희 을축)에 받은 전교²²

▶ 刑典 > 公賤 > 877. [針線婢 · 醫女…]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加定選上奴, 昭敬殿, 差備十六. … 內醫院堂上, 根隨各二. … 醫書習讀官 ·

講肄習讀官, 根隨各一. 隨時仕員數. … 六曹藥房, 差備二, 根隨三. 七品以下, 則無

…

○추가로 정한 선상노(選上奴, 각 지방에서 도성으로 보내는 노비). 소경전은 차비노 16명. … 내의원 당상관은 근수노 각각 2명. … 의서습독관·강이습독관은 근수노 각각 1명. 당시 관원 수에 따른다. … 육조의 약방은 차비노 2명, 근수노 3명. 7품 이하의 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 刑典 中 > 公賤 > 繢錄 > [加定選上奴]

○景福宮後苑種藥田, 看守奴四. 內醫院習讀官, 廳直奴四, 熟饌婢四, 並以各司奴婢定給. 藥田, 差備選上十亦給.

○경복궁 후원의 종약전(種藥田)은 간수노 4명. 내의원의 의서습독관은 청지기 노 4명과 숙찬비 4명. 이상은 모두 각 관노비에서 정해진 대로 지급한다. 종약 전에는 차비노와 선상노 10명도 지급한다.

▶ 刑典 中 > 公賤 > 繢錄 > [種藥田看守奴]

○針線婢 · 醫女 · 丘史之屬, 上京之後所生子女, 皆付京案, 不還本官. 外方官屬日漸凋殘, 令該院一一查出, 還送本官. 康熙乙丑承傳

○지금은 침선비 · 의녀 · 구사(丘史, 종친이나 공신에게 파견하는 관노비) 등이 상경 한 뒤에 낳은 자녀를 모두 경안(京案, 도성의 노비 명부)에 기재해두고 본 고을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관노비들이 날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장예원에서 일일이 조사한 다음 본 고을로 돌려보내라. 1685년(숙종 11, 강희 을축)에 받은 전교

▶ 刑典 中 > 公賤 > 受敎輯錄 > [針線婢 · 醫女 · 丘史]

22 참조 :《승정원일기》 숙종 11년 9월 3일.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續錄] … ○加定選上奴, 昭敬殿, 差備十六. … 內醫院堂上, 根隨各二. … 醫書習讀官·講肄習讀官, 根隨各一 隨時仕員數. … 六曹藥房, 差備二, 根隨三 七品以下, 則無. … ○景福宮後苑種藥田, 看守奴四. 內醫院習讀官, 廳直奴四, 熟饌婢四, 並以各司奴婢定給. 藥田差備·選上十六給. …

[대전속록] … ○추가로 정한 선상노(選上奴, 각 지방에서 도성으로 보내는 노비). 소경전은 차비노 16명. … 내의원 당상관은 근수노 각각 2명. … 의서습독관·강이습독관은 근수노 각각 1명. 당시 관원 수에 따른다. … 육조의 약방은 차비노 2명, 근수노 3명. 7품 이하의 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경복궁 후원의 종약전(種藥田)은 간수노 4명. 내의원의 의서습독관은 청지기노 4명과 숙찬비 4명. 이상은 모두 각 관노비에서 정해진 대로 지급한다. 종약전에는 차비노와 선상노 10명도 지급한다. …

▶ 刑典 > 公賤 > 《續錄》

[受教輯錄] … ○針線婢·醫女·丘史之屬上京之後所生子女, 皆附京案. 不還本官, 外方官屬日漸凋殘, 令該院, 一一查出, 還送本官. 康熙乙丑承傳 …

[수교집록] … ○자금은 침선비·의녀·구사(丘史, 종친이나 공신에게 파견하는 관노비) 등이 상경한 뒤에 낳은 자녀를 모두 경안(京案, 도성의 노비 명부)에 기재해 두고 본 고을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관노비들이 날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장예원에서 일일이 조사한 다음 본 고을로 돌려보내라. 1685년(숙종 11, 강희 을축)에 받은 전교

▶ 刑典 > 公賤 > 《受教輯錄》

속대전(續大典) 1746년

○各邑公賤老除物故, 關由掌隸院, 成送立案施行. … 外案付奴婢, 逃接京中者, 仍留錄案役使. … ○針線婢·醫女之屬, 上京後所生子女, 勿付京案, 查還本官. …

○각 읍에서는 소속 공천(公賤, 관노비)이 노쇠하거나 죽으면 장예원에 공문을 보내고, 장예원에서는 명부를 수정하고 각 읍에 보내 시행한다. … 외안(外案,

각 지방의 노비 명부)에 실린 노비가 한양으로 도망가면 추가로 명부에 기록해 놓고 요역에 동원한다. … ○침선비·의녀·구사(丘史) 등이 상경한 뒤에 낳은 자녀는 경안(京案, 도성의 노비 명부)에 기재하지 말고 조사하여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

▶ 刑典 > 公賤 > [各邑公賤老除物故]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 外案付奴婢逃接京中者, 仍留錄案役使. … ○針線婢·醫女之屬, 上京後所生, 査還本官. [續] …

… 외안(外案, 각 지방의 노비 명부)에 실린 노비가 한양으로 도망가면 추가로 명부에 기록해 놓고 요역에 동원한다. … ○침선비·의녀·구사(丘史) 등이 상경한 뒤에 낳은 자녀는 경안(京案, 도성의 노비 명부)에 기재하지 말고 조사하여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속대전] …

▶ 刑典 > 公賤 > 私賤 > [各邑公賤老除物故]

특교정식(特教定式) 1794년

今上十年, 備邊司啓曰, “刑曹正郎鄭杆所懷, ‘各邑婢子, 稱以公廨修補·印信改造·賑恤願納, 憑藉頃免. 醫女·針線婢, 托疾圖免事.’ 批旨有‘爾言有理, 掣弊之方, 議于判堂稟處’之命矣. 該曹判書李以爲, ‘官奴婢與醫女針線婢, 頃免圖免, 關飭諸道, 倪無如前之弊’云. …

금상 10년(1786, 정조 10), 비변사에서 문서로 아뢰었다. “형조 정랑 정간(鄭杆)이 소회(所懷)하기를 ‘각 고을의 관비(官婢)가 관청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거나, 인신(印信, 관용 인장)을 다시 만들거나, 진휼미를 스스로 내놓으면 장부에 의거하여 요역에서 빼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의녀·침선비가 질병을 핑계 삼아 요역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말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니, 폐해를 바로잡을 방법을 판당(判堂, 판서 등 당상관)과 의논한 후 여쭈거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병조 판서 이 아무개는 ‘관노비와 의녀·침선비의 요역 면제와 면제받으려고 하는 행동에 대하여 각 도에 공문을 보내 단속함으로써 예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였습

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 ”²³

▶ 本曹稟定 > 醫女針線婢勿頃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各邑公賤老除·物故, 關由掌隸院, 成送立案施行. …外案付奴婢, 逃接京中者, 仍留錄案役使. … ○針線婢·醫女之屬, 上京後所生子女, 勿付京案, 查還本官. …

○각 읍에서는 소속 공천(公賤, 관노비)이 노쇠하거나 죽으면 장예원에 공문을 보내고, 장예원에서는 명부를 수정하고 각 읍에 보내 시행한다. … 외안(外案, 각 지방의 노비 명부)에 실린 노비가 한양으로 도망가면 추가로 명부에 기록해 놓고 요역에 동원한다. … ○침선비·의녀·구사(丘史) 등이 상경한 뒤에 낳은 자녀는 경안(京案, 도성의 노비 명부)에 기재하지 말고 조사하여 본 고을로 돌려보낸다. …

▶ 刑典 > 公賤 > [各邑公賤老除物故]

10. 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闕內各差備. 文昭殿 飯監二, …灸色四, … 別監六. 大殿 … 灸色六 四多人廳, … 別監四十六 四洗手間, 四水賜間. 王妣殿 … 灸色四 二多人廳, … 別監十六. 世子宮 … 灸色四 二多人廳, … 別監十八 三洗手間, 三水賜間.

궁궐 안의 각종 차비노. 문소전은 반감(飯監) 2명, … 구색(灸色) 4명, … 별감(別監) 6명. 대전(大殿)은 … 구색 6명 4명은 다인청, … 별감 46명 4명은 세수간, 4명은

23 참조 : 《추관지》 권10 〈장례부〉 公隸 / 《각사정교各司定教》 53. 各邑婢不得因緣稱頃.

수사간. 왕비전(王妣殿)은 … 구색 4명 2명은 다인청, … 별감 16명. 세자궁은 … 구색 4명 2명은 다인청, … 별감 18명 3명은 세수간, 3명은 수사간.

▶ 刑典 > 關內各差備 > [大典]

11. 제사차비노(諸司差備奴)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內醫院] 差備奴 七, 根隨奴 七

[典醫監] 差備奴 十三, 根隨奴 九

[惠民署] 差備奴 十二, 根隨奴 二

[活人署] 差備奴 十四, 根隨奴 四

[내의원] 차비노 7명, 근수노 7명

[전의감] 차비노 13명, 근수노 9명

[혜민서] 차비노 12명, 근수노 2명

[활인서] 차비노 14명, 근수노 4명

▶ 刑典 > 諸司差備奴 · 根隨奴定額 > [諸司差備奴…]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 內醫院 差備奴七, 根隨奴七. … 典醫監 差備奴十三, 根隨奴九. … 惠民署 差備奴十二, 根隨奴二. … 活人署 差備奴十四, 根隨奴四. …

… 내의원은 차비노 7명과 근수노 7명. … 전의감은 차비노 13명과 근수노 9명. … 혜민서는 차비노 12명과 근수노 2명. … 활인서는 차비노 14명과 근수노 4명. …

▶ 刑典 下 > 諸司差備奴根隨奴定額 > [大典] > [定額]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諸司差備奴 · 根隨奴定額. 差備奴, 以京奴及選上充定. 根隨同. 選上不足處, 以補充隊充定. ○每番, 刑曹, 先考京奴贏縮, 定選上, 具數啓聞. … 內醫院, 差備奴七, 根隨奴七. … 典醫監, 差備奴十三, 根隨奴九. … 惠民署, 差備奴十二, 根隨奴二. … 活人署, 差備奴十四, 根隨奴四. …

각 관청의 차비노와 근수노의 정해진 인원. 차비노는 한양의 관노와 선상노로 충당한다. 근수노도 동일하다. 선상노가 부족한 곳에는 보충대(補充隊)로 충당한다. ○ 매번 형조에서는 우선 한양 관노의 숫자를 따진 후 선상노의 숫자를 정하고 각각의 숫자를 모두 문서로 아뢴다. … 내의원은 차비노 7명과 근수노 7명. … 전의감은 차비노 13구와 근수노 9명. … 혜민서는 차비노 12명과 근수노 2명. … 활인서는 차비노 14명과 근수노 4명. …

▶ 刑典 > 諸司差備奴 · 根隨奴定額 > [大典]

추관지(秋官志) 1781년

嘉禮都監. 斜付假各色掌. 大殿嘉禮時, 儀仗差備假醫女, 一百八十五名, 本曹筵稟後, 母論諸上司及祭享衙門 · 學宮 · 內侍府婢子, 一體抄送, 司饔院 · 本宮 · 三寺使役假各色掌, 分定各司. 司饔院饌品熟設使役 三十名, 分定各司. … 惠民署二名, … 典醫監 一名, … 本宮使役 五十名. … 惠民署 三名, … 典醫監 二名, … 內資寺宣醞床熟設使役, 七十名. … 惠民署 四名, 典醫監 三名, … 王世子嘉禮時, 嫫宮儀仗差備假醫女, 三十六名. …

가례도감(嘉禮都監). 임시로 만든 각 담당자를 사부(斜付)²⁴한다. 주상의 가례 때. 의장 을 차비할 임시 의녀 185명. 형조가 연석에서 아뢴 후 각 상사(上司)와 제향을 맡은 아문과 학궁(學宮)과 내시부의 여종을 막론하고 한꺼번에 명단을 작성하여 보낸다. 사옹원과 해당 궁과 삼시(三寺, 봉상시 · 내자시 · 내섭시)에서 사역하는 여러 임시 담당자를 각 관청에 나누어 배정한다. 사옹원에서 음식을 하는 일에

24 사부(斜付) : 증명서를 작성하여 관노비를 다른 관청으로 폐주는 것이다.

동원되는 30명을 각 관청에 나누어 배정한다. … 혜민서 2명, … 전의감 1명, … 해당 궁의 사역에 동원되는 50명을 각 관청에 나누어 배정한다. … 혜민서 3명, … 전의감 2명, … 내자시에서 선온상(宣溫床, 주상이 하사하는 술상)을 차리는 사역에 동원되는 70명을 각 관청에 나누어 배정한다. … 혜민서 4명, 전의감 3명, … 왕세자의 가례 때. 빈궁의 의장을 차비할 임시 의녀 36명. …

▶ 卷之十 > 掌隸部 > 公隸 > 附 > 斜付 > 嘉禮都監

進宴都監. 斜付假各色掌. 英宗四十一年, … 進宴三房. 世孫宮陽繖扇差備, 四名, 嫨宮陽繖扇差備, 四名, 合假醫女八名, 曹婢中定送, 而浮遮首, 自本曹依例造給, 長赤古里·藍裳上加着紅裳, 東·西活人署捧甘來納. …

小爵. 英宗四十三年, … 親蠶勞酒. 英宗四十三年, 中宮殿親蠶·光明殿習儀時, 女各色掌·闕下待令, 親蠶後勞酒時分排. 內贍寺 … , 兩殿·三宮, 陽繖扇差備·醫女·役只使役, 十五名. 禮賓寺 … 各殿·各宮, 差備醫女, 供饋時使役, 五十名. … 司畜署各殿·各宮, 陽繖扇差備·醫女·蠶母所饋肉湯使役, 十五名. …

진연도감(進宴都監). 임시로 만든 각 담당자를 사부(斜付)한다. 영조 41년(1765). … 진연3방(進宴三房). 세손궁의 양산선(陽繖扇) 차비에 4명, 빈궁의 양산선 차비에 4명, 합 임시 의녀 8명을 본 조의 관비 중에서 정해서 보낸다. 부차수(浮遮首, 머리에 써서 얼굴을 가리는 쓰개)는 본 조에서 전례대로 만들어 주며, 긴 저고리와 남상 위에 덧입는 붉은 치마는 동·서활인서에서 공문을 받으면 와서 납부한다. …

소작(小爵). 영조 43년(1767). … 친잠(親蠶) 때 노주(勞酒, 위로주). 영조 43년 중궁전의 친잠과 광명전의 습의(習儀, 예행연습) 때 각 담당 관비과 궐하에서 대령하는 관비와 친잠 후 노주 의례 때 동원하는 관비의 분배. 내설시. … 양전(兩殿, 대전과 중궁전)·3궁의 양산선 차비의녀와 겪기(役只, 손님 치르기) 사역 15명으로 한다. 예빈시. … 각 전궁의 차비의녀와 공궤(供饋) 때 사역 50명으로 한다. … 사축서. 각 전궁의 양산선 차비의녀와 잠모(蠶母)에게 드리는 육탕(肉湯) 사역 15명으로 한다.

...

▶ 卷之十 > 掌隸部 > 公隸 > 附 > 斜付 > 進宴都監

禮葬都監. 斜付擔軍. 英宗四十年, 噎嬪喪三日後, 詣本宮時, 肩輦軍一百五十名,
… 惠民署七名, … 典醫監五名. …

예장도감(禮葬都監). 짐꾼을 사부(斜付)한다. 영조 40년(1764). 영빈(暎嬪, 영조의 후
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의 상 3일 후 본궁에 나아갈 때. 견여꾼 150명. … 혜민서
7명, … 전의감 5명. …

▶ 卷之十 > 掌隸部 > 公隸 > 附 > 斜付 > 禮葬都監

童便軍. 內醫院藥用時, 定送三名.

동변꾼. 내의원에서 어린아이의 소변을 약재로 사용할 때 3명을 정하여 보낸다.

▶ 卷之十 > 掌隸部 > 公隸 > 附 > 斜付 > 童便軍

四糞散軍. 英宗三十九年, 內醫院四糞散製造時, 以奉常寺·司譯院·觀象監三
處, 兒童待令.

사분산꾼. 영조 39년(1763). 내의원에서 사분산(四糞散)을 만들 때 봉상시·사
역원·관상감 3곳에서 아이를 대령하였다.

▶ 卷之十 > 掌隸部 > 公隸 > 附 > 斜付 > 四糞散軍

龍虎水散軍. 內醫院製造龍虎水散時, 各司十五歲以下童男·童女, 色吏·首奴,
領來于惠民署, 逢點.

용호수산꾼. 내의원에서 용호수산(龍虎水散)을 만들 때 각 관청에서 15세 이하
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담당 아전과 수노(首奴)가 혜민서에 데리고 와서
인원 점검을 받는다.

▶ 卷之十 > 掌隸部 > 公隸 > 附 > 斜付 > 龍虎水散軍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 [內醫院] 差備奴七, 跟隨奴七 … [典醫監] 差備奴十三, 跟隨奴九 … [惠民署]

差備奴十二, 跟隨奴二 … [活人署] 差備奴十四, 跟隨奴四 …

… [내의원] 차비노 7명, 근수노 7명 … [전의감] 차비노 13명, 근수노 9명 … [혜민서] 차비노 12명, 근수노 2명 … [활인서] 차비노 14명, 근수노 4명 …

▶ 刑典 > 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 > [定額]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 [內醫院] 差備奴七, 跟隨奴七, … [典醫監] 差備奴十三, 跟隨奴九, …

… [내의원] 차비노 7명, 근수노 7명, … [전의감] 차비노 13명, 근수노 9명, …

▶ 刑典 > 諸司差備奴 · 跟隨奴定額 > [三品衙門定額]

… [惠民署] 差備奴十二, 跟隨奴二, … [活人署] 差備奴十四, 跟隨奴四, …

… [혜민서] 차비노 12명, 근수노 2명, … [활인서] 차비노 14명, 근수노 4명, …

▶ 刑典 > 諸司差備奴 · 跟隨奴定額 > [六品衙門定額]

12. 살옥(殺獄)

당률소의(唐律疏議) 652년

諸以毒藥藥人及賣者, 紂. 謂堪以殺人者, 雖毒藥, 可以療病, 買者將毒人, 賣者不知情, 不坐. 卽賣買而未用者, 流二千里.

疏議曰, 凡以毒藥藥人, 謂以鳩毒 · 野葛 · 烏頭 · 附子之類, 堪以殺人者. 將用藥人及賣者, 知情, 紋合科絞.

注云, 謂堪以殺人者.

注疏, 雖毒藥, 可以療病, 買者將以毒人, 賣者不知毒人之情, 賣者不坐.

疏, 卽賣買而未用者, 謂買毒藥, 擬將殺人, 賣者知其本意, 而未用者, 流二千里. 問曰, 毒藥藥人, 合絞. 其有尊卑 · 長幼 · 貴賤, 得罪, 紋依律以否?

答曰，律條簡要，止爲凡人生文。其有尊卑貴賤，例從輕重相舉。若犯尊長及貴者，各依謀殺已殺法，如其施於卑賤，亦準謀殺已殺論。如其藥而不死者，竝同謀殺已傷之法。

무릇 독약을 타인에게 먹인 자 및 판매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할 만한 것을 말한다. 독약이라 하더라도 병을 치료하기도 하므로, 구매한 자가 타인에게 독약을 먹였을 때 판매한 자가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매매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형 2천 리에 처한다.

소의 : 무릇 ‘독약을 타인에게 먹인 경우’란 짐독·야갈·오두·부자 따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할 만한 것을 타인에게 먹인 것을 말한다. 독약을 타인에게 먹이려고 한 자, 그 독약을 판매한 자가 정황을 안 경우는 모두 교형으로 죄를 논한다.

세주의 ‘사람을 살해할 만한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

주소(注疏) : 독약이라 하더라도 병을 치료하기도 하므로, 구매한 자가 타인에게 독약을 먹였더라도 판매한 자는 타인에게 독을 먹이려는 정황을 알지 못했 으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소(疏) : ‘매매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란 독약을 사서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고 판매한 자가 그 본의를 알았으나 구매한 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형 2천 리에 처한다는 의미이다.

질문 : 독약을 타인에게 먹였다면 교형이 합당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비·장유·귀천 관계라도 죄가 되는 것은 모두 이 형률에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답변 : 형률의 조문은 간명하고 요약해야 하므로 단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문을 만든다. 만약 양측이 존비·귀천 관계라면 으레 사안의 경증이나 양측의 행동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존장이나 귀인을 범한 때는 모살(謀殺, 살인 모의)·이살(已殺, 살인) 법에 따르고, 천민에게 사용하였다면 역시 모살·이살 법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 독약을 먹였으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모든 경우에 모살·이상(已傷, 상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卷18 > 賊盜 > 以毒藥藥人

脯肉有毒，曾經病人，有餘者速焚之，違者，杖九十。若故與人食，并出賣令人病者，徒一年，以故致死者，絞。卽人自食致死者，從過失殺人法。盜而食者，不坐。疏議曰，脯肉有毒，謂曾經人食，爲脯肉所病者。有餘，速卽焚之，恐人更食，須絕根本，違者，杖九十。其知前人食已得病，故將更與人食或將出賣，以故令人病者，合徒一年，因而致死者，絞。卽人自食致死者，謂有餘，不速焚之，雖不與人，其人自食，因卽致死者，從過失殺人法，徵銅入死家。注云，盜而食者，不坐，謂人竊盜而食之，以致死傷者，脯肉主，不坐，仍科不速焚之罪。其有害心，故與尊長食，欲令死者，亦準謀殺條論，施於卑賤至死，依故殺法。

육포에 독이 있어 이미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면 남은 것을 신속히 태워야 한다. 위반한 자는 장형 90대에 처한다. 만약 고의로 타인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판매하여 일부로 타인을 병들게 한 자는 도형 1년에 처하되, 그 때문에 죽었다면 교형에 처한다. 타인이 스스로 먹고 죽게 한 자는 과실살인(過失殺人, 과실치사)에 따른다. 훔쳐 먹은 경우에는 물건 주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소의 : '육포에 독이 있다'란 사람이 이미 먹었고 포육 때문에 병을 얻은 것을 말한다. 남은 것이 있다면 신속히 태워 버려야 하니 이것은 사람들이 다시 먹을까 염려하여 반드시 근본을 없애려는 것이다. 위반한 자는 장형 90대에 처한다. 앞서 어떤 사람이 먹고 병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혹은 내다 팔아 일부로 사람을 병들게 한 경우에는 도형 1년에 처하며, 그 때문에 죽었다면 교형에 처한다. '타인이 스스로 먹고 죽었다'란 남은 육포를 신속히 태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먹고 그로 인하여 죽은 경우를 말하며, 과실살인법에 따라 속전을 추징하여 사망자의 집에 준다. 세주에서 '훔쳐 먹은 경우에는 물건 주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란 어떤 사람이 훔쳐 먹고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육포의 주인을 처벌하지 않지만 여전히 '신속히 태워 버리지 않은 죄'로 처벌한다. 그런데 해치려는 마음을 먹고 고의로 존장에게 먹여 죽이고자 한 경우에는 역시 모살(謀殺, 살인 모의)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 천민에게 먹여 죽게 하였다면 고살(故殺, 고의 살인)에 따른다.

▶ 卷18 > 賊盜 > 以毒藥藥人

諸有詐病及死傷，受使檢驗不實者，各依所欺，減一等。若實病死及傷，不以實驗者，以故入人罪論。

疏議曰，有詐病及死若傷，受使檢驗不以實，各以所欺減一等，卽上條詐疾病者，杖一百，檢驗不實，同詐妄，減一等，杖九十，傷殘，徒一年半，減一等，徒一年，若詐死，徒二年上，減一等，處徒一年半之類。若實病及傷，謂非詐病及詐傷，使者，妄云無病及傷，使是故入人徒杖之罪，若實死，妄云不死，即是妄入二年徒坐。使人枉入杖者，得杖罪，枉入徒者，得徒坐，各依前人入罪法。未決者，減一等。

무릇 질병·사망·상해를 사칭함이 있을 때 명령을 받고 검험(檢驗, 검시)하는 것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자는 각각 속인 항목의 죄에 따르되 1등급을 감한다. 만약 실제로 질병·사망·상해가 있을 때 사실대로 검험하지 않은 자는 고의로 타인의 죄를 추가한 것으로 논한다.

소의 : 질병·사망·상해를 사칭하는 것 같아 명령을 받고 검험하였으나 사실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각각 속인 항목에 따르되 1등급을 감한다’라는 말은 곧 앞 조항에서 말한 ‘질병을 사칭한 자는 장형 100대에 해당하므로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행동은 사칭의 죄와 동일하지만 1등급을 감하여 장형 90대에 처하고, 상해하여 후유증이 남은 경우는 도형 1.5년에 해당하므로 1등급을 감하여 도형 1년에 처하며, 사망을 사칭한 경우는 도형 2년이므로 1등급을 감하여 도형 1.5년에 처하는 것’ 따위이다. ‘만약 실제로 질병·상해가 있을 때’란 질병이나 상해를 사칭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관원이 ‘질병이나 상해가 없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면 그 관원은 고의로 타인에게 도죄·장죄를 더한 것이고, 만약 실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면 규정에 맞지 않는 도형 2년의 형벌을 더한 것이다. 관원이 왜곡하여 장죄를 더하면 장죄를 받게 하고, 왜곡하여 도죄를 더하면 도죄를 받게 해야 하니 각각 관원이 죄를 더했을 때의 처벌법에 따른 것이다.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관원의 죄를 1등급 감한다.

▶ 卷25 > 詐僞 > 詐病死傷不實

諸醫爲人合藥及題疏·鍼刺，誤不如本方，殺人者，徒二年半。

疏議曰，醫師爲人合和湯藥，其藥有君臣·分兩，題疏藥名，或注冷熱遲駛，疎史反竝針刺等，錯誤不如本方者，謂如今古藥方及本草，以故殺人者，醫合徒二年半。若殺傷親屬尊長，得罪輕於過失者，各依過失殺傷論。其有殺不至徒二年半者，亦從殺罪，減三等。

假如誤不如本方，殺舊奴婢，徒二年，減三等，杖一百之類。傷者，各同過失法。其故不如本方，殺傷人者，以故殺傷論，雖不傷人，杖六十。卽賣藥不如本方，殺傷人者，亦如之。

疏議曰，其故不如本方，不依舊法，殺傷人者，以故殺傷論。尊長·卑幼·貴賤，竝依故殺之律。雖不殺傷人，謂故不如本方，於人無損，猶杖六十，於尊長及官人，亦同毆而不傷之法。卽賣藥不如本方，謂非指的爲人療患，尋常賣藥，故不如本方，雖未損人，杖六十，已有殺傷者，亦依故殺傷法。故云亦如之。

무릇 의원이 타인에게 약을 조제하거나 봉투에 설명을 쓰거나 침을 놓을 때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죽였으면 도형 2.5년에 처한다.

소의 : 의원이 타인에게 탕약을 조제할 때는 약재에 군신(君臣)과 분량의 구분이 있어야 하고, 봉투에는 약재의 이름을 적거나 약성의 한열과 효과의 속도를 적어야 하며, 아울러 침을 놓을 때도 같다.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았다’란 고금의 처방이나 본초대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의원을 도형 2.5년에 처해야 한다. 만약 친족이나 존장이 죽거나 상해를 입었는데도 실수로 죽이거나 상해한 죄보다 가볍다면, 각각 과실살(過失殺, 과실치사)·과실상(過失傷, 과실치상)에 의거하여 논한다.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죄가 도형 2.5년 이하인 경우에는 살인죄에서 3등급을 감한다.

가령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 예전에 일하던 노비를 살해했다면 도형 2년에 서 3등급을 감하여 장형 100대에 처하는 것 따위이다. 상해의 경우는 각각 과실상(過失傷)과 같은 법으로 처벌한다. 고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는 고살상(故殺傷)으로 논하되,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더라도 장형 60대에 처한다. 약을 팔 때 본방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살상한 경우도 이와 같다.

소의 : ‘고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았다’란 예부터 내려오는 치료법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타인을 살상한 자는 고살상으로 논한다. 존장·비유·귀천의 경우는 모두 고살상의 형률에 따른다.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더라도’란 고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았으나 타인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을 말하며, 그래도 장형 60대에 처한다. 존장이나 관원에게 그렇게 했다면 역시 구타하였으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법과 같이 처벌한다. ‘약을 팔 때 본방대로 하지 않았다’란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약을 팔면서 고의로 본방대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비록 사람을 손상시키지 않았더라도 장형 60대에 처한다. 이미 살상한 경우에는 역시 고살상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와 같다’라고 한 것이다.

▶ 卷26 > 雜律 > 醫合藥不如方

諸丁匠在役及防人在防，若官戶奴婢疾病，主司不爲請給醫藥救療者，笞四十，以故致死者，徒一年。

疏議曰，丁匠在作役之所，防人在鎮守之處，若官戶·奴婢在本司上者，而有疾病，所管主司不爲請，雖請而主醫藥官司不給，關於救療者，笞四十。以故致死者，謂不請給醫藥救療，以故致死者，各徒一年。

무릇 장정이나 장인이 노역을 할 때나, 변방의 군사가 수자리를 살 때나, 방인(防人, 요충지 경비병)이 경비 중에, 또는 관호(官戶)나 노비가 질병이 있을 때, 담당 관원이 의약을 지급하여 치료하지 않은 자는 태형 40대에 처하고, 이것 때문에 죽게 되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소의 : 장정이나 장인이 노역하는 곳에 있을 때나, 변방의 군사가 수자리를 사는 곳에 있을 때나, 또는 관호나 노비가 해당 관청에서 일할 때 질병이 있거든 관할하는 관원이 의약 담당 관원에게 요청하지 않았거나 비록 요청하였지만 의약 담당 관원이 지급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태형 40대에 처한다. ‘이것 때문에 죽게 되면’이란 치료할 의약을 요청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죽게 된 경우로 각기 도형 1년에 처한다.

▶ 卷26 > 雜律 > 丁匠防人等疾病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

庸醫殺傷人

凡庸醫爲人用藥針刺，誤不如本方，因而致死者，責令別醫辨驗藥餌穴道，如無故害之情者，以過失殺人論，不許行醫。

若故違本方，詐療疾病，而取財物者，計贓准竊盜論，因而致死，及因事故用藥殺人者，斬。

[直解] 凡常醫亦，爲人爲，用藥針灸爲乎矣，誤錯亦，本方文良中，依法不冬，因乎，致死爲在乙良，佗醫人乙用良，藥味及血道乙，辨驗令是乎矣，初亦，故只，害傷之情無在乙良，過失殺人例以，論遣，醫業使內不得爲只爲，禁止齊。故只，本方文，依法不冬，虛事以，理病爲，財物乙，謀取爲在乙良，贓物乙，計爲，竊盜例以，論齊，因此致死爲彌，事故憑據，用藥殺人爲在乙良，斬爲乎事。

일반 의원이 타인을 살상함

일반 의원이 타인에게 약을 지어 주거나 침을 놓을 때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다른 의원에게 책임지고 그 약물이나 혈도(穴道)를 조사하게 하여 만약 고의로 해치려는 정황이 없으면 과실 살인으로 논하되, 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고의로 본방을 어겨 질병을 치료한다고 사칭하면서 재물을 받으면 장오로 계산하여 절도에 준하는 죄로 논한다. 이로 인하여 죽게 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고의로 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이다.

[직해] 일반 의원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약·침·뜸을 쓸 때 착오로 본방의 글에 따르지 않아 그로 인하여 죽게 되면, 다른 의원에게 약재와 혈도를 조사하도록 한다. 애초에 고의로 해치려는 정황이 없었으면 과실 살인의 사례로 논하고 의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고의로 본방의 글에 따르지 않고 엉터리로 병을 다스려서 재물을 취하려고 했다면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의 사례로 논한다. 이로 인하여 죽게 하거나 어떤 일을 빙자하여 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이다.

▶ 卷19 > 刑律 > 人命 > 第320條 庸醫殺傷人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세종 연간 1419-1450년

造畜蠱毒殺人

… 若用毒藥殺人者，斬，買而未用者，杖一百，徒三年。知情賣藥者，與同罪，不知者，不坐。…

講曰：‘與同罪’者，謂至死，杖一百，流三千里。

고독(蠱毒)을 만들어 사람을 죽인 죄

… 독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이고, 독약을 구입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자는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한다. 정황을 알고도 독약을 판매한 자는 같은 죄로 논하고, 정황을 몰랐던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

강해 : ‘같은 죄로 논한다’란 피해자가 죽었으면 장형 100대와 유형 3천 리에 처한다는 의미이다.²⁵

▶ 卷19 > 刑律 > 人命 > 第312條 造畜蠱毒殺人

庸醫殺傷人

凡庸醫爲人用藥針刺，誤不如本方，因而致死者，責令別醫辨驗藥餌穴道，如無故害之情者，以過失殺人論，不許行醫。

若故違本方，詐療疾病，而取財物者，計贓准竊盜論，因而致死，及因事故用藥殺人者，斬。

일반 의원이 타인을 살상함

일반 의원이 타인에게 약을 지어 주거나 침을 놓을 때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다른 의원에게 책임지고 그 약물이나 혈도(穴道)를 조사하게 하여 만약 고의로 해치려는 정황이 없으면 과실 살인으로 논하되, 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고의로 본방을 어겨 질병을 치료한다고 사칭하면서 재물을 받으면 장오로 계산하여 절도에 준하는 죄로 논한다. 이로 인하여 죽게 되거나 어떤 일로

25 참조 : 《당률소의》 권18 〈적도賊盜〉 262~264조 / 《형법대전》 제5편 律例下 제9장 殺傷所干律 제1절 謀殺人律 475조.

인하여 고의로 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면 참형이다.²⁶

▶ 卷19 > 刑律 > 人命 > 第320條 傳醫殺傷人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1585년

○造畜蠱毒殺人

凡造畜蠱堪以殺人及教令 教他人造成而傳 者，斬 決，造畜者財產入官，妻子 若男女 及同居家口 不問親疎，雖不知情，竝流二千里安置。… ○若用毒藥 斷腸草·砒礦· 班苗·草烏·野葛之物 殺人者，斬 秋，買而未用者，杖一百徒三年。知情賣藥者，與 同罪 至死減等，不知者，不坐。

○고독(蠱毒)을 만들어 타인을 죽인 죄

무릇 고독을 만들거나 저장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사주한 자는 타인에게 만들게 시키고 전달하는 행위 참형에 처한다. 즉시 결행한다. 고독을 만들거나 비축한 자의 재산은 관청으로 몰수하고, 처자식 남녀 동일하다 과 함께 사는 가족 친소(親疎)를 불문한다 은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모두 유형 2천 리와 안치에 처한다. … ○독약 단장초·비상·반묘·초오·야갈 같은 것이다 을 사용하여 살인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추분 이후에 시행한다 독약을 구매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는 장형 100대, 도형 3년에 처한다. 정황을 알고도 독약을 판매한 자는 같은 죄로 논하고 죄가 사형에 이르면 형벌 등급을 감한다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卷之十九 > 人命 > 第312條 造畜蠱毒殺人

○庸醫殺傷人

凡庸醫爲人用藥針刺，誤不如本方，因而致死者，責令別醫辨驗餌穴道，如無故害之情者，以過失殺人 准鬪殺，收贖給付 論，不許行醫。○若故違本方，詐療 輕病用重病藥 疾病，而取財物者，計贓 入己 准竊盜 免刺 論，因而致死及因事 仇隙謀 故用

26 참조 :《당률소의》 권26 〈잡률雜律〉 395조 醫合藥不如方 / 《형법대전》 제5편 律例下 제9장 殺傷所干律 제7절 醫藥殺人律 485.

藥 避罪之類 殺人者，斬 秋.

攻病之物曰藥，服食之物曰餌，審脈爲診，察色爲視。○人病本輕，故用重病之藥，使不易愈而圖其財，因而致死。或因仇嫌，故用不對症之藥，或受人買囑用藥殺人者，皆是。○故用藥殺人，不必是毒藥，若專用藥，則造蟲自有律矣。…

議。甲. 合依庸醫爲人用藥誤，不如本方因而致死，以過失論，進閭□□²⁷其家。○乙. 依故違本方，詐療疾病而取財，因而致死，律斬決。

○일반 의원이 타인을 살상함

일반 의원이 타인에게 약을 지어 주거나 침을 놓을 때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다른 의원에게 책임지고 그 약물이나 혈도(穴道)를 조사하게 하여 만약 고의로 해치려는 정황이 없으면 과실 살인으로 논하되, 투구살인에 준하되, 속전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준다 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고의로 본방을 어겨 질병을 치료한다고 사칭하면서 경미한 병에 중한 질환의 약을 쓰는 것이다 재물을 받으면 장오 자기 소유로 넣음로 계산하여 절도에 준하는 죄로 논한다. 자형(刺刑)은 면한다. 이로 인하여 죽게 되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 원한으로 모의하는 것이다 고의로 약을 써서 죄를 피하려는 부류이다 사람을 죽이면 참형에 처한다. 추분 이후에 시행한다.

병을 치료하는 종류를 약(藥)이라 부르고, 식사로서 먹는 종류를 이(餌)라 하고, 맷을 살피는 것을 진(診), 형색을 살피는 것을 시(視)라 한다。○어떤 사람의 병이 본래 경미하였는데 중한 질환의 약을 써서 쉽게 나을 수 없게 하여 그 재물을 꾀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혹 원망하고 싫어하여 고의로 적절하지 않은 약을 쓰는 경우, 혹 다른 사람에게 매수 청탁을 받아서 약을 써서 살인하는 경우는 모두 이와 같다。○고의로 약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반드시 독약이 아니라 만약 약재로만 하였더라도 고독을 만들어 보관하는 형률에 따른다。…

설명。①일반 의원이 실수로 살인하거나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과실 살인으로 논하고 속전을 그 집에 준다。②고의로 본방을 따르지 않고 질병 치료를 사칭하여

27 현존하는 여러 판본을 살펴보았으나 이 부분은 모두 글자가 비어 있다. 문맥상 ‘給付’가 들어가야 할 듯하다.

재물을 취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된다면 참형에 처한다.

▶ 卷之十九 > 人命 > 第320條 廉醫殺傷人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用毒藥殺人, 斬, 買而未用, 杖百·徒三. 知情賣藥, 與同罪. [律] ○誘取略賣人, 因而傷殺, 見下私賤條. [補]

○독약을 사용하여 살인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독약을 구매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자는 장형 100대와 도형 3천 리에 처한다. 정황을 알고도 독약을 판매한 자는 같은 죄로 논한다. [대명률] ○꼬드겨서 남에게 독약을 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살상한 경우에는 아래 〈사천私賤〉 조항에 나온다. [보충]

▶ 刑典 > 殺傷 > [用毒藥殺人]

○庸醫爲人藥鍼, 誤不如本方致死, 令別醫辨驗, 無故意之情者, 過失殺論. 故違本方, 詐療疾病而取財, 準竊盜論. 致死及故用藥殺人, 斬.

○일반 의원이 사람들에게 약이나 침을 쓰다가 실수로 본방과 같게 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면 다른 의원에게 검증하게 한 후 고의로 해칠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살(過失殺, 과실치사)로 논한다. 고의로 본방과 다르게 하거나 질병을 치료한다고 사칭하면서 재물을 취하려 한 경우에는 절도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 만약 피해자가 죽었거나 고의로 독약을 사용하여 살인했다면 참형에 처한다.

▶ 刑典 > 殺傷 > [爲人藥鍼致死]

형법대전(刑法大全) 1905년

第七節 醫藥殺人律. 第四百八十五條. 醫人이 人の 疾病을 治療하다가 因事用詐호야 毒藥을 故下호야 人을 殺호 者는 本章 第二節 故殺人律로 論호이라. 제7절 의약살인율. 제485조. 의원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다가 어떤 일을 사칭하여 독약을 고의로 투여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본장 제2절 고살인(故殺人)의 형률로 논한다.²⁸

▶ 第5編 律例下 > 第9章 殺傷所干律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485條 [毒藥殺人]

第四百八十六條. 孕婦의 請求를 從호야 墮胎藥을 用호야 孕婦로 死에 致호
者는 懲役 三年에 處함이라.

제486조.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유산시키는 약을 써서 임산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 第5編 律例下 > 第9章 殺傷所干律 > 第7節 醫藥殺人律 > 第486條 [墮胎孕婦致死]

13. 검험(檢驗)

추관지(秋官志) 1781년

九房舉行. 殺獄罪人, 當部初檢, 漢城府覆檢, 而若有相左, 則本曹啓達三檢, 而
該房郎官率律官進去. … 侍藥廳排設時, 雖開坐, 勿爲刑訊. 侍藥廳排設時, 童
便軍, 以各司兒弱奴子, 擇出待令. … 進宴時差備假醫女, 以各司婢子抄擇. 尊崇
同. …

9방의 거행. 살옥죄인(殺獄罪人, 살인죄를 지은 자)과 관련된 사건은 해당 부
(部)에서 초검(初檢, 1차 검시)하고 한성부에서 복검(覆檢, 2차 검시)하되, 만약
의견이 서로 어긋나면 형조에서 문서로 아뢴 뒤 삼검(三檢, 3차 검시)한다. 이때
9방 중 해당 방의 낭관이 율관을 이끌고 참석한다. … 시약청을 설치할 때는
개좌(開坐, 회의 소집)는 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할 수는 없다. 시약청을 설치
할 때 동변꾼은 각 관청의 사내아이 종 중에서 뽑아 대령한다. … 진연(進宴,
궁중 잔치)할 때 차비하는 임시 의녀는 각 관청의 관비 중에서 가려 뽑는다.
존승(尊崇, 존호를 올리는 행사) 때도 같다. …

▶ 卷之一 > 雜儀 > 九房舉行

28 참조 : 《대명률·형률》〈인명人命〉 320 庸醫殺傷人.

檢驗. 附 初檢甘結規式. 某年某月某日甘結. 右甘結爲星火舉行事, 某人名呈所志內, 或白活內·或某部牒呈內云云事據, 如是發甘爲去乎. 到甘卽時, 到彼停屍處, 依例檢驗後, 實因懸錄牒報, 以爲憑處之地爲乎矣, 萬一遲緩, 甘罪不辭. 某部·惠民署·典醫監·平市署·典獄署·律學廳.

검험. 부록 초검(初檢)의 감결(甘結, 공문) 양식. 。。년 。。월 。。일의 감결. 위의 감결을 신속히 거행할 것. 아무개가 바친 소지에 。。라고 한 일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감결을 발송하니,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그 시체가 놓여 있는 곳에 가서 예규에 따라 검험한 뒤 실인을 현록(懸錄, 일지에 기록함)하고 첨보(牒報, 서면 보고)함으로써 증거로 삼되, 만일 늦장을 부린다면 죄를 달게 받고 다른 말이 없어야 한다. 。。부·혜민서·전의감·평시서·전옥서·율학청.

▶ 卷之二 > 詳覆部 > 啓覆 > (補)附 > 檢驗 > 初檢甘結規式

初檢規式. 某部爲初檢事, 刑曹甘結據, 部屬某坊某契居, 某役某姓名屍身, 部以初檢亦爲有等以, 某年某月某日, 某部某官某·醫員某·檢律某·書員某一同, 停屍處某坊某契近處到彼爲乎矣, 上項某屍身乙, 在置於某處爲有去乙, 移出路邊, 某方頭·某方足仰臥在置. …

초검(初檢)의 양식. 。。부는 초검의 일로 해서 형조의 감결(甘結)에 의거하여 우리 부에 소속된 。。방의 。。계에 사는 。。의 시신을 부에서 초검을 하였다. 。。년 。。월 。。일에 。。부의 。。관원과 의원 。。。, 검을 。。。, 서원 。。。가 함께 시신을 놓아둔 곳인 。。방의 。。계 근처로 갔다. 상기 시신을 。。곳에 두었 으므로 길가로 옮겨내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방향으로 발을 두어 반듯 이 눕혀 놓았다. …

▶ 卷之二 > 詳覆部 > 啓覆 > (補)附 > 檢驗 > 初檢規式

[重補] 京司檢驗新定事目. 京師, 四方之表準, 而所以治殺獄者, 極其疎漏. … 應行節目, 畝爲條列于左. … 一. 三檢後, 檢驗不實之官員·醫·律生·下吏等, 會推後, 卽爲論罪. …

[2차 보충] 중앙 관청의 검험(檢驗)에 대해 새로 정한 조항. 한양은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하나 살옥(殺獄, 살인 사건)을 다스리는 것이 극히 소략하다. …

응당 시행하여야 할 항목을 다음에 열거한다. … 하나. 삼검(三檢)한 뒤 검험이 부실했던 관원·의생·율생·하리들은 모아서 추고한 뒤 즉시 죄를 논한다.

…

▶ 卷之二 > 詳覆部 > 啓覆 > (補)附 > 檢驗 > (重補)京司檢驗新定事目

14. 사령(赦令)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世子痘疫後, 時囚中, 雜犯死罪以下, 承旨馳往, 一一放釋. 康熙己卯承傳

○세자가 두역(痘疫)을 앓고 난 뒤에는 당시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잡범이면서 사형죄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지가 달려 가서 일일이 석방해 주도록 하라.

강희 기묘년(1699, 숙종 25)에 받은 전교

▶ 刑典 > 舅令 > 1340. [世子痘疫後…]

추관지(秋官志) 1781년

顯宗十一年, 當覆死囚, 大臣以都中痘疫方熾, 有妨引接外臣, 請停. 教曰, 今歲以此不行, 明年以此不行, 則彼罪人皆爲罔罔之魂而後已, 非爲國之道, 不許.

현종 11년(1670). 사형수를 재심하려는데 대신이 “한양에 두역이 창궐하고 있어 지방의 관원을 데려오는 데 방해가 있습니다.”라고 하여 잠시 중지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전교하였다. “금년은 이 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년에는 저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저 죄인들은 모두 감옥에서 귀신이 되고야 말 것이다. 나라를 위한 도리가 아니니 불허한다.”

▶ 卷之二 > 詳覆部 > 啓覆 > 顯宗十一年

15. 속량(贖良)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宗親及大小員人 文武官·生進·錄事·有蔭子孫·及無嫡子孫者之妾子孫承重者·娼妓·女醫·家畜者所生外·勿許爲良. [經] ○除仕無出入者·方以家畜論.

○종친이나 대소신료 문관·무관·생원·진사·녹사·음직을 받은 자손·적자나 적손이 없어 첨실 자손으로서 제사를 모시는 관원 가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생이나 여의의 자손 외에는 양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경국대전] ○역을 받고도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을 하지 않는 천첩을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경우만 해당한다.

▶ 刑典 > 賦良 > [宗親大小員人所生]

16. 잡령(雜令)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년

○赴京通事·公物不用意貿來者·囚禁推考·以制書有違律論斷·本價倍徵·藥材貿易醫員同.

○중국에 사행을 간 통사(通事, 역관)가 주의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어 추고하되 〈제서유위制書有違〉의 형률로 논하여 처리하고 본래 물품값의 2배를 징수한다. 약재를 구입하는 의원도 같다.

▶ 刑典 > 雜令 > [赴京通事公物…]

수교집록(受敎輯錄) 1698년

○侍藥廳排設時·則時急公事·開坐稟定舉行·而勿爲刑推·康熙戊辰承傳

○시약청을 배설(排設, 설치)할 때는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좌(開坐, 회의 소집)하여 아뢴 후 거행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은 할 수 없다.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²⁹

▶ 刑典 > 雜令 > 977. [侍藥廳排設時…]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赴京通事, 公物不用意貿來者, 囚禁推考, 以制書有違律論斷, 本價, 倍徵. 藥材貿易醫員同.

○중국에 사행을 간 통사(通事, 역관)가 주의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어 추고하되 〈제서유위制書有違〉의 형률로 논하여 처리하고 본래 물품값의 2배를 징수한다. 약재를 구입하는 의원도 같다.

▶ 刑典 下 > 雜令 > 後續錄 > [赴京通事公物不用意貿來者]

○侍藥廳排設時, 則時急公事, 開坐稟定舉行, 而勿爲刑推. 康熙戊辰承傳

○시약청을 배설(排設, 설치)할 때는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좌(開坐, 회의 소집)하여 아뢴 후 거행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은 할 수 없다.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

▶ 刑典 下 > 雜令 > 受敎輯錄 > [侍藥廳排設時]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後續錄] … ○赴京通事, 公物不用意貿來者, 囚禁推考, 以制書有違律論斷, 本價, 倍徵. 藥材貿易醫員同. 依大明律制違, 杖一百. …

[대전후속록] … ○중국에 사행을 간 통사(通事, 역관)가 주의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어 추고하되 〈제서유위制書有違〉의 형률로 논하여 처리하고 본래 물품값의 2배를 징수한다. 약재를 구입하는 의원도 같다.

29 참조 :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7월 3일.

《대명률》의 <제서유위>에 의거하면 장형 100대이다. …

▶ 刑典 > 雜令 > 《後續錄》

[受教輯錄] … ○侍藥廳排設時, 則時急公事, 開坐稟定舉行, 而勿爲刑推 康熙戊辰承傳. …

[수교집록] … ○시약청을 배설(排設, 설치)할 때는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좌(開坐, 회의 소집)하여 아뢴 후 거행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은 할 수 없다.

강희 무진년(1688, 숙종 14)에 받은 전교

▶ 刑典 > 雜令 > 《受教輯錄》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各司不得開坐日. … ○侍藥廳時, 時急公事舉行, 而勿用刑. [補] …

○각 관청에서 개좌(開坐, 회의 소집)할 수 없는 날. … ○시약청을 배설(排設, 설치)할 때는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좌(開坐)하여 아뢴 후 거행하더라도 형신(刑訊, 고문)은 할 수 없다. [보충] …

▶ 刑典 > 雜令 > [忌日]

추관지(秋官志) 1781년

[補] 二品醫譯不杖. 三十五年, 領議政金所啓, 曾經從二品以上, 雖有罪, 不得決杖, 乃所以別等級示優待之意, 為其爵秩也, 非為其人也. 而士夫則階雖通政, 職經防禦使者, 以二品不為決杖. 中庶雖經同中樞, 而為守令邊將者, 一併決杖. 國家官爵, 何嘗隨人貴賤而輕重之乎. 此後則中庶醫譯從二品實職者, 依例勿為決杖事, 令金吾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為之.

[보충] 2품인 의관·역관에게는 장형을 집행하지 않음. 영조 35년(1759)에 영의정 김 아무개가 아뢰었다. ‘종2품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자는 죄가 있더라도 결장(決杖, 장형을 집행하는 것)은 할 수 없으니 이는 바로 품계를 구별하여 우대하는 뜻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 관직을 위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대부인 경우에는 품계가 비록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라도 방어사(防禦使)의 직임을 지낸 자는 2품으로 쳐서 결장하지 않지만, 중인이나 서인은 동중추부사(同中樞府使, 종2품)를 지냈더라고 수령이나 변장(邊將)을 하고 있으면 모두 결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관직이 어찌 사람의 귀천에 따라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겠습니까. 이후로는 중인·서인·의관·역관 중 종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자에게는 상례에 따라 결장하지 말 것을 의금부에서 규정으로 삼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주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卷之五 > 考律部 > 除律 > 輕刑 > (補)二品醫譯不杖

改定徙邊事目 … 九年, 禮曹科舉事目, 三醫司·律學·計士·寫字官等或代寫冒入現露, 則雜科者, 依生進例充軍, 未科者, 全家徙邊. 書寫·書吏等或爲代寫冒入者, 或於朱草用奸者, 竝全家徙邊. 今改以依新定事目, 幷水軍充定, 公私賤則絕島限己身爲奴.

개정한 사변(徙邊, 변경으로 이사시킴) 조항. … 숙종 9년(1683), 예조의 과거(科舉) 조항에 '삼의사(三醫司)·율학·계사·사자관들이 혹 대필하기 위하여 과장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잡과 합격자는 생원·진사의 예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지음)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한다. 서사(書寫)나 서리들이 혹 대필하기 위하여 함부로 과장에 들어갔거나 혹은 주초(朱草, 성적을 붉게 씀)로 농간을 부린 자는 모두 전가사변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제 개정하여 새로 정한 조항에 따라 모두 수군(水軍)으로 충군하고, 공천·사친인 경우에는 본인만 외딴섬에 보내어 종노릇하게 한다.

▶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改定徙邊事目

형법대전(刑法大全) 1905년

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的 請救호을 厥惰호야 卽히 診察치 아니호 者는笞 五十이며, 因호야 病人이 死에 至호 者는笞 一百에 處호이라.

제230조. 의관이 환자의 요청을 듣고도 안이하게 생각하여 즉시 진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형 50대에 처하며, 그로 인하여 환자가 죽게 된 경우에는 태형 100대에 처한다.

▶ 第4編 律例上 > 第2章 職權所干律 > 第6節 厥避職役律 > 第230條 [官醫病人回避]

第六百六十二條. 染疫이 流行할 時에 警察하는 職任이 되야 街路上에 暴疾이 發한 人을 見하고 卽時 病院에 交付치 아니한 者는 答三十에 處함이라.
제662조. 역병이 유행할 때 순찰하는 직무를 가진 자가 도로에서 갑작스런 질병이 발작한 사람을 보고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태형 30대에 처한다.

▶ 第5編 律例下 > 第14章 雜犯律 > 第2節 衛生妨害律 > 第662條 [染疫警察職務]

공전(工典)

1. 영선(營繕)

속대전(續大典) 1746년

〔營繕〕 紫門監 · 九營繕, 分掌闕內 · 闕外各處修理之役. 紫門監掌時御所各殿 · 各堂 · 內各司公廨修補, 差備門內各項器用造作, 內冰庫供上.

○二所掌社稷 · 德興大院君祠宇 · 義禁府 · 金吾當直 · 敦寧府朝房 · 北漢行宮 · 南關王廟 · 廣智營 · 旅帥營 · 西活人署 · 東大門.

○ … 七所掌司寒壇 · 先農壇 · 成均館 · 東學 · 疟所 · 太平館 · 東關王廟 · 療病家 · 惠化門.

○八所掌空闕內各司 · 景福宮 · 宗親府 · 西學 · 宣武祠 · 南營 · 興化門外政府朝房 · 北郊厲壇 · 東活人署 · 牛毛煮取假家 · 昭義門.

… ○繕工監官員各一人分差, 隨毀隨補.

〔영선〕 자문감은 궐내의 시설 관리를, 9개 영선소는 궐외의 시설 관리를 관장한다. 자문감은 시어소(時御所, 주상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를 포함하여 모든 전(殿) · 당(堂) 및 궐내의 각 관청을 수리한다. 차비문 안의 각종 기물의 제작과 내빙고로 얼음을 진상하는 일도 담당한다.

… ○제2영선소는 사직 · 덕흥대원군의 사우(祠宇) · 의금부 · 의금부의 당직소 · 돈녕부의 조방(朝房, 조회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장소) · 북한산성 행궁 · 남관왕묘 · 광지영 · 여수영 · 서

활인서 · 동대문을 담당한다.

… ○제7영선소는 사한단 · 선농단 · 성균관 · 동학 · 득소 · 태평관 · 동관왕묘 · 요병가(療病家, 궁인 환자가 머물며 치료받는 집) · 해화문을 담당한다.

○제8영선소는 비어 있는 궐내의 각 관청 · 경복궁 · 종친부 · 서학 · 선무사 · 남영 · 흥화문 밖 의정부의 조방(朝房) · 북교(北郊)의 여단(厲壇) · 동활인서 · 우무(한천)를 끓이는 임시 집 [牛毛煮取假家] · 소의문을 담당한다.

… ○선공감에서는 9개 영선소에 관원을 각 1명씩 파견하여 파손된 곳을 보수하게 한다.

► 工典 > 營繕 > [紫門監 · 九營繕]

전율통보(典律通補) 1761년, 1787년

紫門監 · 九營繕, 掌 繕工監官, 各一分差 闕內外修理. 紫門監, 掌時御所各殿 · 各堂 · 內各司公廨修補, 差備門內器用造作. … [續]

… ○二所, 掌社稷 · 德興大院君祠宇 · 儲慶宮 · 西壇 楊花津邊. · 南關王廟 · 義禁府 · 禁府上下當直 · 敦寧府朝房 · 西活人署 · 廣智營 · 旅帥營 衛將所. · 東大門. [續] [增] [補]

… ○八所, 掌景慕宮 · 景福宮 · 北壇 卽北郊. · 厲壇 · 宣武祠 · 宗親府 · 慶熙宮 內各司 · 西學 · 東活人署 · 政府上下朝房 · 南營 · 北一營 武德門外. · 牛毛煮取假家 內瞻寺內. · 昭義門. …

자문감과 9개 영선소 선공감의 관원을 1명씩 각각 파견하는 궁궐 내외의 수리를 관장한다. 자문감은 시어소(時御所)를 포함하여 모든 전(殿) · 당(堂) 및 궐내의 각 관청을 수리한다. 차비문 안의 각종 기물의 제작도 담당한다. … [속대전]

… ○제2영선소는 사직 · 덕흥대원군의 사우(祠宇) · 저경궁 · 서단 양화나루 옆에 있다 · 남관왕묘 · 의금부 · 의금부 상하번 당직소 · 돈녕부의 조방(朝房) · 서활인서 · 광지영 · 여수영 위장소 · 동대문을 담당한다. [속대전] [추가] [보충]

… ○제8영선소는 경모궁 · 경복궁 · 북단(北壇) 북교(北郊)에 있다 · 여단(厲壇) · 선무사 · 종친부 · 경희궁 안의 각 관청들 · 서학 · 동활인서 · 의정부 상하번 조방 · 남영 · 북일영 무덕문 밖에 있다 · 우무(한천)를 끓이는 임시 집[牛毛煮取假家] 내첩시 안에 있다 · 소의문을 담당한다. …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續〕 紫門監 · 九營繕，分掌闕內 · 闕外各處修理之役。紫門監掌時御所各殿 · 各堂 · 內各司公廡修補，差備門內各項器用造作，內冰庫供上。

… ○二所掌社稷 · 德興大院君祠宇 · 義禁府 · 金吾當直 · 敦寧府朝房 · 北漢行宮 · 南關王廟 · 廣智營 · 旅帥營 · 西活人署 · 東大門。

… ○七所掌司寒壇 · 先農壇 · 成均館 · 東學 · 麟所 · 太平館 · 東關王廟 · 療病家 · 惠化門。

○八所掌空闕內各司 · 景福宮 · 宗親府 · 西學 · 宣武祠 · 南營 · 興化門外政府朝房 · 北郊厲壇 · 東活人署 · 牛毛煮取假家 · 昭義門。

… ○繕工監官員各一人分差，隨毀隨補。

…[補] 九營繕今爲五所掌。

… ○三所掌永禧殿 · 儲慶宮 · 璞源錄廳 · 大嬪宮 · 南別宮 · 奉常寺 · 神室 · 北壇 · 厲壇 · 內資寺 · 捲草閣 · 上含春苑 · 中樞府 · 禮曹 · 西學 · 內贍寺 · 牛毛假家 · 上 · 下當直。

… ○紫門監內冰庫供上，今革。

[속대전] 자문감은 궐내의 시설 관리를, 9개 영선소는 궐외의 시설 관리를 관장한다. 자문감은 시어소(時御所, 주상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를 포함하여 모든 전(殿) · 당(堂) 및 궐내의 각 관청을 수리한다. 차비문 안의 각종 기물의 제작과 내빙고로 얼음을 진상하는 일도 담당한다. … ○제 2영선소는 사직 · 덕흥대원군의 사우(祠宇) · 의금부 · 의금부의 당직소 · 돈녕부의 조방(朝房) · 북한산성 행궁 · 남관왕묘 · 광지영 · 여수영 · 서활인서 · 동대문을 담당한다.

… ○제7영선소는 사한단 · 선농단 · 성균관 · 동학 · 득소 · 태평관 · 동관왕묘 · 요병가(療病家) · 혜화문을 담당한다.

○제8영선소는 비어 있는 궐내의 각 관청 · 경복궁 · 종친부 · 서학 · 선무사 · 남영 · 흥화문 밖 의정부의 조방(朝房) · 북교(北郊)의 여단(厲壇) · 동활인서 · 우무(한천)를 끓이는 임시 집 [牛毛煮取假家] · 소의문을 담당한다.

… ○선공감에서는 9개 영선소에 관원을 각 1명씩 파견하여 파손된 곳을 보수하게 한다.

…[보충] 9개 영선소는 현재 5개 영선소가 담당한다.

- … ○제3영선소는 영희전·저경궁·선원록청·대빈궁·남별궁·봉상시·신실·북단·여단·내자시·권초각·위쪽 함춘원·중추부·예조·서학·내섬시·우무(한천)를 끓이는 임시 집[牛毛假家]·상하번 당직소를 담당한다.
- … ○자문감에서 내빙고로 진상하던 전례가 지금은 폐지되었다.

▶ 工典 > 營繕 > [紫門監九營繕]

2. 재식(栽植)

대전속록(大典續錄) 1492년

[栽植] 各司分爲左右邊，栗島亦半分而授，每年各植稚桑，大司，三百條，中司，二百條，小司，一百條，并古桑亦曲盡培養，以稚桑栽植多少，古桑茂盛與否，定其勝否。如有斫伐者，斫伐人及看守人·島內居各司奴等，依松木所取例論。…右邊所屬，內贍寺·司橐寺·司僕寺·典醫監·觀象監·繕工監·承文院·掌樂院·司圃署·訓練院·廣興倉·典設司·義盈庫·平市署·西活人署·掌苑署·典獄署·校書館·惠民署·東活人署·歸厚署·中學·瓦署。

[재식] 각 관청을 좌변과 우변으로 편성하고 밤섬[栗島]도 절반씩 나누어 준다. 매년 각 관청을 뽕나무 묘목을 심되, 대형 관청은 300주, 중형 관청은 200주, 소형 관청은 100주를 심는다. 아울러 오래된 뽕나무도 정성스레 길러야 한다. 뽕나무 묘목을 얼마나 심었는지, 오래된 뽕나무가 무성한지를 따져 성과를 결정한다. 만약 뽕나무를 벤 자가 있거든 그자와 그 나무를 간수해야 하는 자와 밤섬에 상주하는 관노비들을 소나무 베는 경우와 동일하게 죄를 논한다. … 우변에 편성된 관청은 내섬시·사도시·사복시·전의감·관상감·선공감·승문원·장악원·사포서·훈련원·광흥창·전설사·의영고·평시서·서활인서·장악서·전옥서·교서관·혜민서·동활인서·귀후서·중학·와

서이다.

▶ 工典 > 栽植 > [各司分爲左右邊…]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續錄] 各司分爲左右邊，栗島亦半分而授，每年各植稚桑，大司，三百條，中司，二百條，小司，一百條，并古桑亦曲盡培養。以稚桑栽植多少，古桑茂盛與否，定其勝否。如有斫伐者，斫伐人及看守人·島內居各司奴等，依松木斫取例論。…右邊所屬，內贍寺·司橐寺·司僕寺·典醫監·觀象監·繕工監·承文院·掌樂院·司圃署·訓鍊院·廣興倉·典設司·義盈庫·平市署·西活人署·掌苑署·典獄署·校書館·惠民署·東活人署·歸厚署·中學·瓦署。

[대전속록] 각 관청을 좌변과 우변으로 편성하고 밤섬[栗島]도 절반씩 나누어 준다. 매년 각 관청을 뽕나무 묘목을 심되, 대형 관청은 300주, 중형 관청은 200주, 소형 관청은 100주를 심는다. 아울러 오래된 뽕나무도 정성스레 길러야 한다. 뽕나무 묘목을 얼마나 심었는지, 오래된 뽕나무가 무성한지를 따져 성과를 결정한다. 만약 뽕나무를 벤 자가 있거든 그자와 그 나무를 간수해야 하는 자와 밤섬에 상주하는 관노비들을 소나무 베는 경우와 동일하게 죄를 논한다. … 우변에 편성된 관청은 내섬시·사도시·사복시·전의감·관상감·선공감·승문원·장악원·사포서·훈련원·광흥창·전설사·의영고·평시서·서활인서·장악서·전옥서·교서관·혜민서·동활인서·귀후서·중학·와서이다.

▶ 工典 > 栽植 > 繢錄 > [栗島每年植稚桑]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續錄] 各司分爲左右邊，栗島亦半分而授。每年各植稚桑，大司三百條，中司二百條，小司一百條，并古桑亦曲盡培養。以稚桑栽植多少，古桑茂盛與否，定其勝否。如有斫伐者，斫伐人及看守人·島內居各司奴等，依松木斫取例論 依受教，生松元株斫伐，則杖一百徒三年，枝葉斫伐者，杖一百。… 右邊所屬，內贍寺·司橐寺·司僕寺·典醫監·觀象監·繕工監·承文院·掌樂院·司圃署·訓鍊院·廣興倉·

典設司 · 義盈庫 · 平市署 · 西活人署 · 掌苑署 · 典獄署 · 校書館 · 惠民署 · 東活人署 · 歸厚署 · 中學 · 瓦署. …

[대전속록] 각 관청을 좌변과 우변으로 편성하고 밤섬[栗島]도 절반씩 나누어 준다. 매년 각 관청을 뽕나무 묘목을 심되, 대형 관청은 300주, 중형 관청은 200주, 소형 관청은 100주를 심는다. 아울러 오래된 뽕나무도 정성스레 길러야 한다. 뽕나무 묘목을 얼마나 심었는지, 오래된 뽕나무가 무성한지를 따져 성과를 결정한다. 만약 뽕나무를 벤 자가 있거든 그자와 그 나무를 간수해야 하는 자와 밤섬에 상주하는 관노비들을 소나무 베는 경우와 동일하게 죄를 논한다. 수교(受教)에 따라 멀쩡한 소나무의 줄기를 베면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하며, 가지를 베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 우변에 편성된 관청은 내섬시 · 사도시 · 사복시 · 전의감 · 관상감 · 선공감 · 승문원 · 장악원 · 사포서 · 훈련원 · 광흥창 · 전설사 · 의영고 · 평시서 · 서활인서 · 장악서 · 전옥서 · 교서관 · 혜민서 · 동활인서 · 귀후서 · 중학 · 와서이다.

▶ 工典 > 栽植 > 《續錄》

3. 경공장(京工匠)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京工匠] [內醫院] … 紛匠 二 … 香匠 四 …

[한양의 공장(工匠)] [내의원] … 분장(紛匠) 2명 … 향장(香匠) 4명 …

▶ 工典 > 京工匠 > [京工匠定額]

전록통고(典錄通考) 1707년

內醫院. 紛匠二, 香匠四.

내의원. 분장 2명, 향장 4명이다.

▶ 工典 > 京工匠 > [大典] > 内醫院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京工匠…內醫院. 粉匠二, 香匠四. …

한양의 공장. …내의원. 분장 2명, 향장 4명이다. …

▶ 工典 > 京工匠 > [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

[内醫院] 粉匠二, 香匠四.

[내의원] . 분장 2명, 향장 4명이다.

▶ 工典 > 京工匠 > 内醫院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

[内醫院] 粉匠二, 香匠四

[내의원] . 분장 2명, 향장 4명이다

▶ 工典 > 京工匠 > [京工匠定額] > [内醫院]

4. 잡령(雜令)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1743년

○典設司, 遮日帳進排處, 抄出定式. ○宗廟・社稷及各殿祭享時, … 藥房・政院・玉堂・侍講院・翊衛司問安時, 舉動時, 大君・王子・時任原任大臣・國舅・駙馬・藥房・政院・玉堂・侍講院・翊衛司・禁漏依幕, … 藥房劑藥時,

… 並進排. 康熙癸未承傳

○전설사에서 차일장(遮日帳)을 바쳐야 하는 곳을 기록한 지침. ○종묘·사직 및 각 전(殿)에 제사 지낼 때. … 약방(藥房, 내의원)·승정원·옥당·시강원·의위사에서 문안할 때. 왕이 거동할 때. 대군·왕자·시임대신·원임대신·국구·부마·약방·승정원·옥당·시강원·의위사·금루에서 의막(依幕, 임시 천막)을 쓸 때. … 약방에서 약을 조제할 때. … 이상의 모든 경우에 차일장을 바치라. 강희 기축년(1703, 숙종 29)의 전교¹

▶ 工典 > 雜令 > 1390. [遮日帳抄出定式]

○長興庫, 每朔進排紙地, 定式. … ○內醫院, 分藥貼厚白紙四卷, 癸丑年降品, 三豆飲厚白紙十卷十張, 癸丑年降品, 日記楮注紙一卷十張. … ○宗親府, 單子楮注紙二卷五張, 厚白紙二卷五張, 癸丑年降品, 藥貼厚白紙二卷, 癸丑年降品. … ○議政府, 單子楮注紙一卷, 藥貼厚白紙二卷, 癸丑年降品. … ○忠勳府, 單子楮注紙一卷, 藥貼厚白紙一卷, 癸丑年降品. ○中樞府, 單子楮注紙一卷, 藥貼厚白紙一卷, 癸丑年降品. … ○洗心宮, 藥貼厚白紙一卷, 癸丑年降品. …

○장흥고에서 달마다 바치는 종이에 대한 지침. … ○내의원 : 분약첩(分藥貼)으로 쓰는 후백지(厚白紙) 4권. 계축년(1733, 영조 9)에 품질을 낮추었다. 삼두음에 쓰는 후백지 10권 10장.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일기(日記, 관청 일지) 작성에 쓰는 저주지(楮注紙) 1권 10장. … ○종친부 : 단자 작성에 쓰는 저주지 2권 5장, 후백지가 2권 5장.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 2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 ○의정부 : 단자 작성에 쓰는 저주지 1권.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가 2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 ○충훈부 : 단자 작성에 쓰는 저주지 1권.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가 1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중추부 : 단자 작성에 쓰는 저주지가 1권.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 1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 ○세심궁 :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 4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

1 참조 :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3월 9일.

○豐儲倉, 每朔應進排紙地. … 疾病家, 公事次楮常注紙一卷. …內醫院, 御藥貼搗鍊楮注紙四卷, 分藥次草注紙二卷, 薦苡封裹次草注紙一卷五張, 駝駱蓋草注紙一卷十張, 公事所用楮常注紙九卷. …

○풍저창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바치는 종이. … 질병가(疾病家)² : 업무에 쓸 저상주지(楮常注紙) 1권. … 내의원 : 어약첩으로 쓸 도련저주지(搗鍊楮注紙) 4권. 약재를 소분할 때 쓸 초주지(草注紙) 2권. 의이인을 싸는 데 쓸 초주지 1권 5장. 타락죽 덮개로 쓸 초주지 1권 10장. 업무에 쓸 저상주지 9권. …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영조 연간 1725-1776년

〔新補受敎〕各司受敎裒集, 先爲印出 康熙丁丑承傳. … ○典設司遮日帳進排處抄出定式. … 藥房·政院·玉堂·侍講院·翊衛司問安時, 舉動時, 大君·王子·時任原任大臣·國舅·駙馬·藥房·政院·玉堂·侍講院·翊衛司·禁漏依幕, … 藥房劑藥時, … 並進排. 康熙癸未承傳 … ○內醫院, 分藥貼厚白紙四卷, 癸丑年降品, 三豆飲厚白紙十卷十張, 癸丑年降品, 日記楮注紙一卷十張. … ○宗親府, 單子楮注紙二卷五張, 厚白紙二卷五張, 癸丑年降品, 藥貼厚白紙二卷, 癸丑年降品. … ○議政府, 單子楮注紙一卷, 藥貼厚白紙二卷, 癸丑年降品. … ○忠勤府, 單子楮注紙一卷, 藥貼厚白紙一卷, 癸丑年降品. ○中樞府, 單子楮注紙一卷, 藥貼厚白紙一卷, 癸丑年降品. … ○洗心宮, 藥貼厚白紙一卷, 癸丑年降品. …

〔신보수교집록〕 각 관사의 수교를 모아 우선 인출하라. 강희 정축년(1697년)의 전교 … ○전설사에서 차일장(遮日帳, 해 가림용 장막)을 제공하는 곳에 대해 적어 지침으로 삼으라. … 약방(藥房, 내의원)·승정원·옥당·시강원·의위사에서 문안할 때. 왕이 거동할 때. 대군·왕자·시임대신·원임대신·국구·부마·

2 질병가(疾病家) : 궁궐에 사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피접(避接, 임시 피난)해 가는 장소이다.

약방 · 승정원 · 옥당 · 시강원 · 익위사 · 금루에서 의막(依幕, 임시 천막)을 쓸 때. … 약방에서 약을 조제할 때. … 이상의 모든 경우에 차일장을 바치라. 강희 계미년(1703, 숙종 29)의 전교 … ○내의원 : 분약첩(分藥貼)으로 쓰는 후백지(厚白紙) 4권. 계축년(1733, 영조 9)에 품질을 낮추었다. 삼두음에 쓰는 후백지 10권 10장.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일기(日記, 관청 일지) 작성에 쓰는 저주지(楮注紙) 1권 10장. … ○종친부 : 단자 작성에 쓰는 저주지 2권 5장, 후백지가 2권 5장.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 2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 ○의정부 : 단자 작성에 쓰는 저주지 1권.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가 2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 ○충훈부 : 단자 작성에 쓰는 저주지 1권.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가 1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증추부 : 단자 작성에 쓰는 저주지가 1권.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 1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 ○세심궁 : 약첩으로 쓰는 후백지 4권. 계축년에 품질을 낮추었다.

….

▶ 工典 > 雜令 > 《新補受敎》

3부 의료관청 자료 (각론)

내의원정례 (1751년)

혜국지 (1719, 1778년)

내의원식례 (1810년경)

의정부약방식례 (1812년)

약방등록 (1820년 이후)

심약사례 (1873년)

산실청총규 (1875년)

내의원정례(內醫院定例)^{1 2}

박문수(朴文秀) 외³

1. 달마다 늘 정해진 규례[每朔恒式]

各殿進上薏苡仁十斗 東籍田·西籍田,

각 전에 진상하는 의이인(율무씨) 10밀 동적전(東籍田)⁴과 서적전⁵에서 낸다.

封裹草注紙一卷,

봉과⁶에 쓰는 초주지 1권,

御藥貼草注紙四卷,

1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2 《내의원정례》는 본래 별도의 책이 아니라 《탁지정례》 중 내의원 부분만을 추출한 것이다. 원본에는 ‘內醫院’이라고 되어 있으나 《탁지정례》의 내의원 부분이라는 의미로 ‘내의원정례’라고 명명하였음을 밝힌다.

3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4 동적전(東籍田) : 도성 흥인문 밖에 전농동(田農洞)에 있던 적전이다. 적전이란 임금이 제향(祭享)에 쓸 곡식을 몸소 짓는 제전(祭田)이다.

5 서적전 : 서적전(西籍田)은 경기도 개성부에 있었다.

6 봉과 : 물건을 싸서 봉하는 것이다.

어약첩에 쓰는 초주지 4권,
啓下藥貼楮注紙四卷,
계하약첩에 쓰는 저주지 4권,
《日記》楮注紙一卷十張,
《내의원일기》에 쓰는 저주지 1권 10장,
三豆飲楮注紙十張,
삼두음에 쓰는 저주지 10장,
忍冬茶楮注紙十二張,
인동차에 쓰는 저주지 12장,
《公事》厚白紙八卷 以上長興庫,
《공사등록》에 쓰는 후백지 8권 이상은 장흥고⁷에서 낸다.
白休紙四斤 司瞻寺,
백휴지⁸ 4근 사섬시⁹에서 낸다.
黃筆四柄,
황모필 4자루,
白筆四柄,
백필 4자루,
眞墨四丁 以上三種, 本院所用,
참먹 4정 이상 3종류는 본원(내의원)에서 쓰는 것이다.

7 장흥고 : 궁중에서 쓰는 종이, 뜻자리를 담당한 종6품 아문이다.

8 백휴지 : 못 쓰게 된 흰 종이이다.

9 사섬시 : 저화(楮貨, 종이 화폐)의 제조(製造) 및 지방 노비의 공포(貢布)를 관장하던 아문이다.

黃筆二柄,

황모필 2자루,

白筆二柄,

백필 2자루,

眞墨二丁 以上三種, 內藥房所用. ○工曹,

참먹 2정 이상 3종류는 내약방에서 쓰는 것이다.¹⁰ ○공조에서 낸다.

正醋一升,

정초(식초) 1되,

膠末三升 以上內瞻寺,

풀가루¹¹ 3되 이상은 내섬시¹²에서 낸다.

黑太一斗四升 軍資監 · 廣興倉,

검은콩 1말 4되 군자감¹³과 광홍창¹⁴에서 낸다.

綠豆一斗四升 內資寺,

녹두 1말 4되 내자시¹⁵에서 낸다.

赤豆一豆四升 以上三種, 三豆飲所入. 內瞻寺,

팥 1말 4되 이상 3종류는 삼두음에 들어가는 물품이다. 내섬시에서 낸다.

三廳燈油五升五合 義盈庫,

10 이를 통해 내약방(內藥房)이 별도의 장소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풀가루 : 풀을 쑤려고 마련한 가루이다.

12 내섬시 : 여러 전궁(殿宮)에 대한 공상(供上)과 2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술 등을 관장하면 아문이다.

13 군자감 :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관장한 아문이다.

14 광홍창 : 관리들의 녹봉에 관한 일을 맡은 아문이다.

15 내자시 : 왕실에서 소용되는 물품, 예를 들어 쌀 · 채소 · 과일 · 기름 등을 관장하는 아문이다.

세 청(내의청, 침의청, 의약동참청)의 등유 5되 5홉 의영고¹⁶에서 낸다.

銀器洗淨白鹽五升 司宰監,

은그릇을 세정할 때 쓰는 흰 소금 5되 사재감¹⁷에서 낸다.

尾箒二柄 繕工監. ○都下中取用.

개꼬리 비 2자루 선공감에서 낸다. ○도하(都下)¹⁸ 중에서 가져다 쓴다.

薏苡炭四石,

율무에 쓸 숯 4섬,

藥炭十斗 以上其人.

약에 쓸 숯 10말 이상은 기인(其人)¹⁹이 낸다.

2. 날마다의 진배[逐日進排]

生薑八兩 司圃署,

생강 8냥 사포서²⁰에서 낸다.

16 의영고 : 궁중에서 쓰는 끌, 기름, 과일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17 사재감 : 궁중에서 쓰는 어류, 육류, 소금, 뱃나무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18 도하(都下) : 여기서는 도하하는 물품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都下가 회계 용어로 쓰일 경우에 는 일정기간 지출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뜻이다. 본문 <도하하는 물품에 대한 질(都下秩)>에서 도하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설명한다.

19 기인(其人) : 원래는 지방 토호의 자제를 볼모로 도성에 두는 제도였으나, 조선 전기에는 번갈 아 한양에서 머물면서 해당될 때에 숯과 장작을 진상하는 향리 역(役)으로 변하였다.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혁파되어 대신 고을에서 숯 등을 사게 되었는데 이를 기인목(其人木) 이라 하였다. 《속대전》〈공전工典·경역京役〉 참조.

20 사포서 : 궁중의 원포(園圃), 채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아문이다.

竹瀝炭一斗,
죽력에 쓸 숯 1말,
三提調房溫塗燒木一丹,
세 제조(내의원 도제조, 제조, 부제조)방의 온돌 장작 1단,
掌務官房溫塗燒木一丹,
장무관방²¹의 온돌 장작 1단,
御醫房溫塗燒木半丹,
어의방의 온돌 장작 반단,
內醫房溫塗燒木半丹,
내의방의 온돌 장작 반단,
鍼醫房溫塗燒木半丹,
침의방의 온돌 장작 반단,
議藥同參房溫塗燒木半丹,
의약동참방의 온돌 장작 반단,
藥庫點火燒木一丹, 自四月至八月 以上其人.
약고에서 점화할 때 쓰는 장작 1단은 4월부터 8월까지이다 이상은 기인이 낸다.

21 장무관방 : 《내의원식례》〈관사官舍〉를 보면 장무소(掌務所), 본청(本廳), 침의청(鍼醫廳), 의약동참청(議藥同參廳), 약재동서고(藥材東西庫)가 나온다. 어의방(御醫房)에 대한 언급은 없다.

3. 사흘마다의 진배[每三日進排]

薏苡乾正燒木一丹, 自九月至四月.

율무를 건정(乾正)²²할 때 쓰는 장작 1단은 9월부터 4월까지이다.

內藥房別點火燒木二丹, 自四月至八月 以上其人.

내약방에서²³ 별도로 점화할 때 쓰는 장작 2단은 4월부터 8월까지이다 이상은
기인이 낸다.

4. 내의원일기를 장황²⁴할 때 들어가는 물품 [日記粧纊所入]²⁵

歲初進排.

세초에 진배한다.

黃染紙一張,

황염지 1장,

厚白紙一張 以上長興庫,

후백지 1장 이상은 장홍고에서 낸다.

白休紙二兩 司瞻寺,

22 건정(乾正) : 약재를 올바른 방법으로 알맞게 말리는 것을 가리킨다.

23 이를 통해 내약방(內藥房)이 별도의 장소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장황(粧纊) : 배접한 종이를 대고 끈을 묶어 책표지를 꾸미는 일을 말한다.

25 본문을 통해 《내의원일기》 표지를 만들 때에 들어가는 물품과 그 양을 알 수 있다.

백휴지 2냥 사섬시에서 낸다.

紅鄉絲一錢五分 濟用監,

홍향사 1돈 5푼 제용감에서 낸다.

黃蜜二錢 義盈庫,

황밀 2돈 의영고에서 낸다.

膠末五合 內贍寺.

풀가루 5홉 내섬시에서 낸다.

5. 진어약치부책²⁶에 쓰이는 물품[進御藥置簿冊所用]

厚白紙 長興庫. ○從實入.

후백지 장흥고에서 낸다. ○실제 들어가는 양을 따른다.

6. 각도약공안책²⁷ 한 건에 들어가는 물품

[各道藥貢案冊一件所入]

十年一次.

10년에 한 차례이다.

26 《내의원식례》〈문부文簿〉에는 《진어약등록進御藥曆錄》으로 나온다.

27 《내의원식례》〈문부文簿〉에는 나오지 않는다. 《혜국지惠局志》〈식례式例·서적書籍〉에는 공안(貢案)이 나온다.

楮注紙一卷二張半,
저주지 1권 2장 반,
衣次黃染紙一張,
책가위 재료로 황염지 1장,
隔次楮注紙一張 以上長興庫,
사이를 나누는 용도의 저주지 1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白休紙二兩 司瞻寺,
백휴지 2냥 사섬시에서 낸다.
紅鄉絲五分 濟用監,
홍향사 5푼 제용감에서 낸다.
黃蜜三分 義盈庫,
황밀 3푼 의영고에서 낸다.
膠末五合 內瞻寺.
풀가루 5홉 내섬시에서 낸다.

7. 보통의 거동 때[凡舉動時]

白正布二尺,
백정포 2척,
白苧布二尺 以上濟用監,
백저포 2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陶東海一坐,
토동해 1자

질동이 1좌,

陶所羅一坐 以上工曹. ○以上用還.

질소래기 1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床卓 紫門監. ○前排用還.

탁상 자문감²⁸에서 낸다.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大棗五合 掌苑署,

대추 5홉 장원서²⁹에서 낸다.

生薑一升 司圃署,

생강 1되 사포서에서 낸다.

炭三斗,

숯 3말,

燒木一丹 以上其人.

장작 1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8. 간병 때[看病時]

有傳教, 則舉行.

전교가 있으면 거행한다.

鎰狹刀一部 工曹,

28 자문감 : 선공감에 속하여 시어소(時御所), 궐내 각청의 보수 등을 담당한 관청이다.

29 장원서 : 궐내 화초와 과실수 등의 관리를 담당한 관청이다.

놋쇠 협도 1부 공조에서 낸다.

鐵狹刀一部 紫門監. ○以上, 前排用還.

철 협도 1부 자문감에서 낸다. ○이상은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陶東海一坐,

질동이 1좌,

陶所羅一坐,

질소래기 1좌,

分稱一部 以上工曹,

문 저울 1부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柳箕一部,

버들 고리 1부,

草席一立. ○以上用還.

풀방석 1蓆.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書啓次厚白紙每日一張 以上長興庫.

서계할 때 쓰는 후백지 매일 1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白休紙四兩 司瞻寺,

백휴지 4냥 사섬시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大棗五合 掌苑署,

대추 5홉 장원서에서 낸다.

生薑一升 司圃署,

생강 1되 사포서에서 낸다.

條所一艮衣 繕工監.

밧줄³⁰ 1거리 선공감에서 낸다.

9. 부연하여³¹ 간병할 때[赴燕看病時]

有傳教, 則舉行.

전교가 있으면 거행한다.

鎰狹刀一部 工曹,

놋쇠 협도 1부 공조에서 낸다.

鐵狹刀一部 紫門監. ○以上, 前排用還.

철 협도 1부 자문감에서 낸다. ○이상은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分稱一部 工曹. ○用還.

30 밧줄 : 條所는 벗짚이나 삼으로 굽고 길게 드리운 줄이다. '條'는 줄이란 뜻, '所'는 '바'라는 음을 가차해서 밧줄이란 의미이다.

31 부연하여 : 중국 사행(使行)의 원역(員役)이 되는 경우이다.

푼 저울 1부 공조에서 낸다.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二尺,

백정포 2척,

白苧布二尺,

백저포 2척,

十斗容入木綿甲帛一件 以上濟用監,

10말 들이 목화솜 겹 자루 1건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柳箒一部,

버드나무 상자 1부,

草席二立,

풀방석 2蓆,

六油葷一番,

육유둔³² 1번,

油紙五張,

기름종이 5장,

楮注紙十張 以上長興庫,

저주지 10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白休紙一斤八兩 司瞻寺,

백휴지 1근 8냥 사섭시에서 낸다.

黃筆一柄,

32 육유둔 : 두꺼운 종이에 기름을 발라 방석처럼 깔고 앓게 만든 것으로, 6장을 불인 것을 육유둔, 4장을 불인 것을 사유둔이라고 한다. 세는 단위는 장 수를 의미하는 ‘浮’ 또는 ‘番’으로 표기한다.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大棗一升 掌苑署.

대조 1되 장원서에서 낸다.

生薑一升 司圃署.

생강 1되 사포서에서 낸다.

條所二艮衣 繕工監.

밧줄 2거리 선공감에서 낸다.

10. 우황청심원에 들어가는 물품[牛黃清心元所入]³³

因標紙舉行, 下倣此.

표지(標紙)³⁴에 따라서 거행하는데, 아래도 이와 비슷하다.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백저포 1척 5촌,

33 이 조부터는 내국(內局)에서 연례적으로 진상하거나 제조하는 약 등에 소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설명한다.

34 표지(標紙) : 증거의 표로 적은 종이를 뜻한다.

飯帶白正布五尺 以上濟用監.

시루 띠로 쓰는 백정포 5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陶飯一坐,

질시루 1좌,

飮蓋一箇 以上工曹

시루 뚜껑 1개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繕工監. ○以上用還.

흰말총체 1부 선공감.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油紙一張,

기름종이 1장,

楮注紙一張 以上長興庫.

저주지 1장 이상은 장홍고에서 낸다.

白休紙二兩 司瞻寺.

백휴지 2냥 사섬시에서 낸다.

眞末五合 內瞻寺.

밀가루 5홉 내섬시에서 낸다.

大棗三升 掌苑署.

대조 3되 장원서에서 낸다.

生薑八兩 司圃署.

생강 8냥 사포서에서 낸다.

炭三斗,

숯 3말,

燒木一丹 以上其人.

장작 1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11. 안신환에 들어가는 물품[安神丸所入]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정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繕工監. ○以上用還.

흰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白休紙二兩 司瞻寺,

백휴지 2냥 사섬시에서 낸다.

炭三斗 其人.

숯 3말 기인이 낸다.

12. 우황고에 들어가는 물품[牛黃膏所入]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繕工監. ○以上用還.

흰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炭三斗 其人.

숯 3말. 기인이 낸다.

13. 팔미원에 들어가는 물품[八味元所入]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馬尾篩一部 繕工監. ○以上用還.

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白休紙二兩 司瞻寺,

백휴지 2냥 사찰서에서 낸다.

炭三斗,

숯 3말,

燒木二丹 以上其人.

장작 2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14. 구미청심원에 들어가는 물품[九味淸心元所入]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馬尾篩一部 繕工監. ○以上用還.

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白休紙二兩 司瞻寺,

백휴지 2냥 사섬시에서 낸다.

炭三斗 其人.

숯 3말 기인이 낸다.

15. 경옥고³⁵에 들어가는 물품[瓊玉膏所入]

白正布八尺,

백정포 8척,

白苧布八尺,

백저포 8척,

白布二幅袱二件,

두 폭짜리 백포 보자기 2건,

35 경옥고 : 《내의원식례》〈공궤供饋〉에 나온다.

白苧布四幅袱一件,
네 폭짜리 백저포 보자기 1건,
紅木四幅甲袱一件 以上濟用監,
네 폭짜리 홍목 겹보자기 1건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繕工監,
흰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柳箒一部,
버드나무 상자 1부,
柳箕二部,
버들고리 2부,
四油菴一番 以上長興庫,
사유둔 1번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木瓢子一箇,
나무 표주박 1개,
小瓢子一介 以上司橐寺. ○以上用還.
작은 표주박 1개 이상은 사도시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白紋席一張,
백문석 1장,
油紙三張,
기름종이 3장,
楮注紙二張 以上長興庫,
저주지 2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白休紙四兩 司贍寺,

백휴지 4냥 사섬시에서 낸다.

三兩燭四雙,

3냥짜리 촉 4쌍,

黃蜜二兩,

황밀 2냥,

龍脂十柄 以上義盈庫,

용지 10자루 이상은 의영고에서 낸다.

紅木四幅甲狀綿槊一件 膏藥缸封裹次. ○濟用監,

네 폭짜리 흥목 겹보자기와 이불 속 솜 1건 고약 항아리를 봉과하는 재료이다. ○제용감에서 낸다.

大索一艮衣,

큰 새끼줄 1거리,

小索二艮衣,

작은 새끼줄 2거리,

細繩十把 以上繕工監,

가는 노끈 10발 이상은 선공감에서 낸다.

網具空石八立,

망을 갖춘 빈 가마니 8닙,

空石十立 以上軍資監 · 廣興倉,

빈 가마니 10닙 이상은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낸다.

炭三斗 其人.

숯 3말 기인이 낸다.

16. 수유³⁶ 제조에 들어가는 물품[酥油劑造所入]

間年一次進排.

한 해 걸러 한 차례 진배한다.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黑馬尾篩一部 繕工監,

검정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大釜二坐 工曹,

큰 가마솥 2좌 공조에서 낸다.

瓢子一介 司稟寺. ○以上用還.

표주박 1개 사도시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油紙二張,

기름종이 2장,

楮注紙二張 以上長興庫,

저주지 2장 이상은 장홍고에서 낸다.

小素一艮衣 繕工監,

작은 새끼줄 1거리 선공감에서 낸다.

36 수유 : 《내의원식례》 <연례제조年例劑造를 보면 타락(駝酪)을 정지한 뒤 올린다.

炭六斗,

숯 6말,

燒木八十丹 以上其人.

장작 80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17. 율무 도말³⁷에 들어가는 물품[薏苡撲末所入]

春秋進排.

봄과 가을에 진배한다.

四油菴一番. ○前排用還.

사유둔 1번.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柳簾二部 以上長興庫,

버들고리 2부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絡篩一部. ○以上用還.

초사³⁸ 1부. ○이상은 쓰고 들려준다.

馬尾篩二部. 以上繕工監.

말총체 2부 이상은 선공감에서 낸다.

柳箕一箇,

버들 키 1개,

37 도말 : 《내의원식례》〈솔속率屬〉을 보면 의이 도말사령을 따로 두기도 했다.

38 초사 : 생사로 만든 고운 체이다.

厚紙七張 以上長興庫,

후지 7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白休紙八兩 司瞻寺,

백휴지 8냥 사섬시에서 낸다.

瓢子二箇,

표주박 2개,

省二箇 以上司藻寺,

솔 2개 이상은 사도시에서 낸다.

木貫子一箇,

나무로 만든 두레박 1개,

擔桶一部 以上紫門監. ○以上都下中取用.

질통 1부. 이상은 자문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膠末二升 內瞻寺.

풀가루 2되 내섬시에서 낸다.

18. 태을고 · 만병무우고 · 운모고에 들어가는 물품

[太乙膏 · 萬病無憂膏 · 雲母膏所入]

春秋進排.

봄과 가을에 진배한다.³⁹

39 《내의원식례》〈연례제조年例劑造〉에 같은 내용이 있다.

白正布二尺,

백정포 2척,

白苧布二尺 以上濟用監,

백저포 2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油紙四張 長興庫. ○以上都下中取用.

기름종이 4장 장흥고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生苧布三尺 濟用監,

생저포 3척 제용감에서 낸다.

黃丹五斤 戶曹·濟用監,

황단⁴⁰ 5근 호조와 제용감에서 낸다.

眞油一斗一升 內贍寺,

참기름 1말 1도 내섬시에서 낸다.

炭十五斗 其人.

숯 15말 기인이 낸다.

19. 진상하는 부용향⁴¹에 들어가는 물품

[進上芙蓉香所入]

春秋進排.

봄과 가을에 진배한다.

40 황단 : 납을 가공하여 만든 약재이다.

41 부용향 : 《내의원식례》〈연례진상年例進上〉에 나온다.

生布十五尺 濟用監,

생포 15척 제용감에서 낸다.

草注紙二卷 長興庫,

초주지 2권 장흥고에서 낸다.

陶東海二坐,

질동이 2좌,

陶所羅二坐,

질소래기 2좌,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海長竹二十箇 軍器寺,

해장죽 20개 군기시⁴²에서 낸다.

尾筭三柄 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개꼬리 비 3자루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入盛櫃子鎖鑰 · 紅紬袱具 尚衣院,

자물쇠와 붉은 비단 보자기를 갖춘 담는 궤 상의원⁴³에서 낸다.

炭一石五斗 其人.

숯 1섬 5말 기인이 낸다.

42 군기시 : 병기의 제조를 담당한 관청이다.

43 상의원 :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재화, 보물을 관리하던 아문이다.

20. 加劑(加劑) 부용향에 들어가는 물품 [加劑芙蓉香所入]

春秋進排.

봄과 가을에 진배한다.

生布十五尺 濟用監,

생포 15척 제용감에서 낸다.

草注紙十張 長興庫,

초주지 10장 장흥고에서 낸다.

陶東海二坐,

질동이 2좌,

陶所羅二坐,

질소래기 2좌,

眞墨一丁 以上工曹,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海長竹二十箇 軍器寺,

해장죽 20개 군기시⁴⁴에서 낸다.

尾筭三柄 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개꼬리 비 3자루.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香欵子十八部 紫門監 · 濟用監,

향장⁴⁵ 18부 자문감과 제용감에서 낸다.

44 군기시 : 병기의 제조를 담당한 관청이다.

香機 紫門監. ○以上隨毀修補.

향기(香機)⁴⁶ 자문감에 낸다. ○이상은 훼손되면 수보한다.

炭一石五斗,

숯 1섬 5말,

燒木二十丹 以上其人.

장작 20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21. 연례로 제조하는 아교에 들어가는 물품 [年例阿膠所入]

春秋進排.

봄과 가을에 진배한다. ⁴⁷

木綿四幅袱一件 濟用監. ○用還.

네 폭짜리 목화솜 보자기 1건 제용감에서 낸다. ○쓰고 돌려준다.

陶東海二坐,

질동이 2좌,

陶所羅二坐 以上工曹,

질소래기 2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45 향장 : 향을 담는 장이다.

46 향기(香機) : 향을 피우기 위해 담는 그릇

47 《내의원식례》〈연례제조年例劑造에〉 나온다.

瓢子二箇 司橐寺,

표주박 2개 사도시에서 낸다.

木把槽一部 內瞻寺,

손잡이 있는 나무 물통 1부 내섬시에서 낸다.

齧簾四浮,

완렴⁴⁸ 4부,

條所三艮衣 以上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밧줄 3거리 이상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生牛皮二令 戶曹,

생 소가죽 2령 호조에서 낸다.

燒木五百斤 司宰監.

장작 500근. 사재감에서 낸다.

22. 별도로 만드는 아교에 들어가는 물품 〔別阿膠所入〕

春秋進排.

봄과 가을에 진배한다.

木綿四幅袱一件 濟用監. ○用還.

네 폭짜리 목화솜 보자기 1건. 제용감에서 낸다. ○쓰고 돌려준다.

48 완렴 : 갈대나 억새로 만든 발이다.

陶東海二坐,

질동이 2좌,

陶所羅二坐 以上工曹,

질소래기 2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瓢子二箇 司橐寺,

표주박 2개 사도시(司橐寺)에서 낸다.

木把槽二部 內贍寺,

손잡이 있는 나무 물통 2부 내첩서에서 낸다.

翫簾三浮,

완렴 3부,

條所三艮衣 以上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밧줄 3거리 이상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生牛皮二令 戶曹,

생 소가죽 2령 호조에서 낸다.

燒木五百斤 司宰監.

장작 500근 사재감에서 낸다.

23. 빙매환⁴⁹에 들어가는 물품[冰梅丸所入]

春秋進排.

49 빙매환 : 《의림촬요醫林撮要》〈권8 · 후비喉痺〉에 18종의 후비(喉痺)에 효과가 좋다고 나온다. 《내의원식례》에는 나오지 않는다.

봄과 가을에 진배한다.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흰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白礪五兩 濟用監,

백반 5냥 제용감에서 낸다.

炭三斗 其人.

숯 3말. 기인.

24. 반하를 법제할 때 들어가는 물품[法製半夏所入]

春秋進排.

봄과 가을에 진배한다.⁵⁰

皮硝一斤 軍器寺,

피초(박초) 1근 군기시에서 낸다.

白礪八兩 濟用監,

50 《내의원식례》〈연례제조年例劑造에는 때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나온다.

백반 8냥 제용감에서 낸다.

炭三斗,

숯 3말,

燒木三丹. 以上其人

장작 3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25. 마통차⁵¹를 진상할 때 들어가는 물품

[進上馬通茶所入]

自五月十五日爲始, 七月晦日止.

5월 15일부터 시작하여 7월 그믐날에 그친다.

白正布十尺,

백정포 10척,

白苧布十尺 以上濟用監,

백저포 10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馬尾篩一部 繕工監,

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楮注紙三卷三張 各殿宮進上, 每日七瓶. 楮注紙, 每朔一卷五張. 自五月十五日, 七月晦日至. ○長

51 마통차 : 《급유방》에 서증(暑症)을 예방하는 효능이 실려 있다. 마통(馬通)은 어린 말이 눈 뜰을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馬通’은 ‘말똥’의 이두일 가능성도 있다. 《내의원식례》〈연례진상年例進上〉에 나온다. 《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11월 27일 기사를 보면 마통차의 진상을 없앴다.

興庫. ○以上都下中取用.

저주지 3권 3장. 각 전과 궁에 날마다 7병씩 진상한다. 저주지는 달마다 1권 5장씩이다. 5월 15일부터 7월 그믐날까지이다. ○장홍고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以上一朔一次.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한 달에 한 차례이다.

細繩二把半 各殿合毎日所用. ○繕工監,

가는 노끈 2발 반 각 전에서 날마다 쓰는 양을 합한 것이다. ○선공감에서 낸다.

胡椒每三日二兩五錢 義盈庫,

후추는 사흘마다 2냥 5돈씩 의영고에서 낸다.

炭每三日十五斗 其人.

숯은 사흘마다 15말씩 기인이 낸다.

26. 여러 사람을 구료할 때의 마통차에 들어가는 물품 [多人求療馬通茶所入]

自初伏日爲始, 末伏日止.

초복날부터 시작하여 말복날에 그친다.

白瓶六箇 內贍寺. ○用還.

흰 병 6개 내선시에서 낸다. ○쓰고 돌려준다.

陶東海一坐,

질동이 1좌,

陶所羅一坐 以上工曹,

질소래기 1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馬尾篩一部 繕工監,

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木瓢子一介,

나무 표주박 1개,

小瓢子一介 以上司橐寺. ○以上都下中取用.

작은 표주박 1개 이상은 사도시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五尺甲布帛一件 濟用監⁵². ○一次進排.

5척 들이 겹 자루 1건 제용감에서 낸다. ○한 차례 진배한다.⁵³

燒木每三日三丹 其人.

장작은 사흘마다 3단씩 기인이 낸다.

27. 타락죽에 들어가는 물품[駝酪粥所入]

自十月初一日爲始, 封入, 因傳教停止. ⁵⁴

52 監 : 원본에는 ‘監’이 없는데 바로 뒤 ‘駝酪粥所入’ 조의 주석에 ‘因監傳教停止’의 ‘監’자가 잘못 들어간 까닭으로, 여기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53 초복부터 말복까지 마통차(馬通茶)를 들이지만 이 기간 동안 자루는 한 번만 진배한다는 말이다.

54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0월 18일. 우역(牛疫)으로 인하여 우유 진상이 어려워져서

10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봉입했는데, 전교로 인하여 정지되었다.⁵⁵

鍮涼盆一坐,

놋쇠 양푼 1좌,

鍮蓋兒一坐,

놋쇠 뚜껑 1좌,

鍮匙一箇 以上工曹. ○以上前排用還.

놋수저 1개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四油菴一番 長興庫. ○用還.

사유둔 1번 장흥고에서 낸다.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六尺,

백정포 6척,

白苧布六尺 以上濟用監,

백저포 6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以上都下中取用.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임시로 타락 진상을 정지시키게 되었다. 다음해에도 영조 24년 11월 29일 기사를 보면 우역으로 인하여 정지되었고, 그 다음해인 영조 25년 10월 20일에 가서야 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문현은 영조 25년에 완성되었으므로 타락 진상이 정지된 시기이다. 원본에는 ‘因’과 ‘傳’ 사이에 ‘監’자가 있는데 임금의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 傳教는 ‘傳’ 앞에 한 칸을 띠워 빈칸으로 두어야 하는 데서 유추하면 잘못 들어간 글자이다. 앞의 주석 참조.

55 《내의원식례》〈연례진상年例進上〉에는 10월 초하루부터 정월 30일까지 날마다 들인다고 되어있다.

白鹽二斗一升 各殿鹽湯次. ○司宰監. ○逐朔進排.

鹽 소금 2말 1되 각 전의 염탕(鹽湯) 재료이다. ○사재감에서 낸다. ○달마다 진배한다.

粳米每日三升二合式 入於司橐寺抨.

멥쌀은 날마다 3되 2홉씩 사도시의 들에서 들인다.

草注紙每朔一卷十張 自十月初一日, 二月十五日至. 九卷而如或因傳教停止, 則餘紙還下本曹, 出給貢人. 加進上, 則自內局捧甘取用. ○長興庫.

초주지는 달마다 1권 10장씩 10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다. 9권이 되거나 만일 전교로 인해 정지하게 되면, 남은 종이는 본조(호조)로 되돌려 내려 공인에게 내준다. 가외의 진상은 내국에서 감결(甘結)을 보내 가져다 쓴다. ○장홍고에서 낸다.

炭每三日十斗 其人.

숯은 사흘마다 10말씩 기인이 낸다.

28. 향유산에 들어가는 물품[香薷散所入]

自五月初一日爲始, 八月十一日止.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8월 11일에 그친다.⁵⁶

草注紙五卷十八張 每三日三張半. ○長興庫. ○都下中取用.

초주지 5권 18장 사흘마다 3장 반씩이다. ○장홍고에서 낸다.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56 《내의원식례》〈연례진상年例進上〉에서는 5월 초하루부터 8월 초하루까지 초하루에만 진상하는 것으로 나온다.

29. 약해해에 들어가는 물품[藥蟹醢所入]

每年秋, 因傳教封進, 因傳教停止.

해마다 가을에 전교로 인하여 봉진하고 전교로 인하여 정지한다.⁵⁷

陶鳳缸二箇 工曹. ○用還.

큰 질항아리 2개. 공조에서 낸다.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三尺,

백정포 3척,

白苧布三尺 以上濟用監,

백저포 3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陶東海二坐,

질동이 2좌,

陶所羅二坐 以上工曹,

질소래기 2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繕工監,

흰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瓢子一箇,

표주박 1개,

省一箇 以上司彙寺. ○以上都下中取用.

57 《내의원식례》〈연례진상年例進上〉을 보면 ‘약해해(藥蟹醢). 계(蟹)가 성숙하기를 기다려 연석에서 아뢴 뒤에 관문을 경기감영과 평시서로 보내는데, 본원(내의원)에서 숙성시켜서 날마다 들이되 30차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솔 1개 이상은 사도시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布袋一件 濟用監. ○一次進排.

포대자루 1건 제용감에서 낸다. ○한 차례 진배한다.

川椒一升 司僕寺. ○每三日進排.

산초 1되 사복시에서 낸다. ○사흘마다 진배한다.

油紙半張,

기름종이 반장,

楮注紙半張 以上長興庫,

저주지 반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藥蟹一百箇,

약해 100개,

牛心肉一部 以上戶曹,

소 등심 1부 이상은 호조에서 낸다.

艮醬二斗 內資寺,

간장 2말 내자시에서 낸다.

眞油一合 內瞻寺,

참기름 1홉 내섬시에서 낸다.

細繩二把 繕工監,

가는 노끈 2발 선공감에서 낸다.

炭一斗 其人. ○以上每次進排.

숯 1말. 기인. ○이상은 차례마다 진배한다.

30. 소독보영단에 들어가는 물품[消毒保嬰丹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⁵⁸

四油菴一番 長興庫. ○用還.

사유둔 1번 장흥고에서 낸다.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柳箇一部,

버드나무 상자 1부,

油紙三張,

기름종이 3장,

草注紙六張 以上長興庫,

초주지 6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白休紙二兩 司瞻寺,

백휴지 2냥 사선시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58 《내의원식례》〈연례진상年例進上〉에서는 정월 보름과 칠석날에 진상하는 것으로 나온다.

眞墨一丁 以上工曹,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흰말총체 1부,

條所一艮衣. 以上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밧줄 1거리 이상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鎚狹刀一部,

놋쇠 협도 1부,

鐵狹刀一部. ○以上本院所在取用.

철 협도 1부. ○이상은 본원(내의원)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쓴다.

燈油五合 義盈庫,

등유 5홉 의영고에서 낸다.

赤豆二升 內瞻寺,

팥 2도 내심시에서 낸다.

黑太一升,

검은콩 1되,

空石四立 以上軍資監 · 廣興倉,

빈 가마니 4�� 이상은 군자감과 광홍창에서 낸다.

炭六斗 其人.

숯 6말. 기인.

31. 한식면에 들어가는 물품[寒食麵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⁵⁹

鑄機. ○自本院捧甘五部, 用後還給本主.

주물 기구. 본원에서 감결을 보내 쓰는 것이 5부인데, 쓰고 나서 본래 주인에게 환급한다.

白正布二尺,

백정포 2척,

白苧布二尺 以上濟用監,

백저포 2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瓢子一箇 司羹寺,

표주박 1개 사도시에서 낸다.

齧簾一浮 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완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小麥末三斗 內資寺,

밀가루 3말 내자시에서 낸다.

燒木二丹 其人.

장작 2단 기인이 낸다.

59 《내의원식례》〈연례제조年例劑造에 나온다. 한식날에 제조한다.

32. 익원산에 들어가는 물품[益元散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⁶⁰

白苧布十尺 濟用監,

백저포 10척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흰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33. 형화환 · 신명산에 들어가는 물품 [螢火丸神明散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⁶¹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60 《내의원식례》〈연례제조年例劑造에〉 나온다. 5월에 제조한다.

61 《내의원식례》〈연례진상年例進上〉에 나온다. 영조(英祖) 조에 하교(下敎)로 없앴다고 되어 있다. 형화환은 《간이벽온방》을 보면 병을 일으키는 악기(惡氣)나 온갖 귀신을 물리친다고 하였다. 신명산은 《분문온역이해방》을 보면 역병을 물리치는 처방이라고 하였다.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馬尾篩一部 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石雄黃三兩 戶曹·濟用監,

석옹황 3냥 호조와 제용감에서 낸다.

白礮三兩,

백반 3냥,

平絳囊四十七部 纓子具 每部, 紅紬二尺八寸,

끈을 갖춘 평강 주머니 47부 부마다 붉은 비단 2척 8촌씩이다.

三角囊四十七部 纓子具 每部, 紅紬一尺四寸. ○以上濟用監,

끈을 갖춘 삼각 주머니 47부 부마다 붉은 비단 1척 4촌씩이다.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丹雄鷄二首,

붉은 수탉 2마리,

鷄卵三十箇 以上戶曹,

계란 30개 이상은 호조에서 낸다.

羚羊角二對 典牲暑,

영양각 2대 전생서⁶²에서 낸다.

鍛因灰⁶³三兩 軍器寺,

대장간의 재 3냥 군기시에서 낸다.

加莫金四十七箇 紫門監,

62 전생서 : 궁중의 제향(祭享)·빈례(賓禮)·사여(賜與)에 쓰는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은 관청이다.

63 鍛因灰 : 원본에는 ‘鍛因灰’로 되어있다.

가막쇠 47개 자문감에서 낸다.

鐵槌柄二十箇,

철퇴 자루 20개,

炭十斗 以上其人.

숯 10말 이상은 기인이 낸다.

34. 제호탕 · 계령원에 들어가는 물품

〔醜醜湯桂苓元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⁶⁴

白正布各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씩,

白苧布各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씩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繕工監,

흰말총체 1부 선공감에서 낸다.

油紙五張,

64 《내의원식례》〈연례진상〉에 나온다. 제호탕은 5월 5일에 진상한다. 계령환은 영조(英祖) 조에 하교(下教)로 없었다고 되어있다. 《의방유취》를 보면 부인(婦人)의 오래된 징병(癥病)의 제반 증상에 활용된다.

기름종이 5장,

楮注紙一卷五張 以上長興庫. ○以上都下中取用.

저주지 1권 5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炭 醒醐湯所入, 五斗, 桂苓元所入, 三斗. ○其人.

숯 제호탕에는 5말이 소요되고, 계령원에는 3말이 소요된다. ○기인이 낸다.

35. 진상하는 의향⁶⁵의 겉과 속 봉과

[進上衣香內外封裹]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草注紙一卷 長興庫,

초주지 1권 장흥고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참먹 1정,

陶所羅二坐 以上工曹. ○以上都下中取用.

질소래기 2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65 의향 : 의향(衣香)은 부용향과 함께 내국에서 진상했던 향재(香材)이다. 《내의원식례》〈연례진상年例進上〉에 나온다.

炭十二斗 其人.

숯 12말 기인이 낸다.

36. 일곱 방에 진상하는⁶⁶ 의향의 봉과[七房衣香封裹]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草注紙十四張 長興庫,

초주지 14장 장흥고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以上都下中取用.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炭十二斗 其人.

숯 12말 기인.

66 일곱 방에 진상하는 : 《내의원식례》 <연례진상年例進上>을 보면 여러 궁방(宮房)에도 보냈다.

37. 신국 · 두시 · 반하국에 들어가는 물품 〔神麵 · 豆豉 · 半夏麵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⁶⁷

帶麩白麵十五斗,

기울 섞인 메밀가루 15말,

赤豆一斗 以上內資寺,

팥 1말 이상은 내자사에서 낸다.

黑太二斗 軍資監 · 廣興倉,

검은콩 2말 군자감과 광홍창에서 낸다.

白鹽八升 司宰監,

흰 소금 8되 사재감에서 낸다.

白礪十兩 濟用監,

백반 10냥 제용감에서 낸다.

生薑三斤 司圃署,

생강 3근 사포서에서 낸다.

燒木六丹 其人.

장작 6단 기인이 낸다.

67 《내의원식례》〈연례제조年例劑造를 보면 신국은 6월 6일, 두시와 반하국은 7월에 제조했다.

38. 백하염에 들어가는 물품[白荷鹽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⁶⁸

白鹽七斗 司宰監,

흔 소금 7말 사재감에서 낸다.

蓮葉七百葉,

연잎 700잎,

蓮房五十箇 以上掌苑署,

연방⁶⁹ 50개 이상은 장원서에서 낸다.

炭一石五斗 其人.

숯 1섬 5말 기인이 낸다.

39. 자구합 가루에 들어가는 물품[紫口蛤粉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⁷⁰

68 《내의원식례》〈연례제조年例劑造〉를 보면 7월에 제조했다.

69 연방 : 연꽃 열매가 들어있는 송이이다.

70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 ‘인천(仁川), 남양(南陽), 안산(安山), 교동(喬桐) 등의 수령이 기영(畿營, 경기감영)으로부터 나누어서 정하여 상납(上納)한다.’고 되어 있다.

炭一石 其人.

숯 1섬 기인이 낸다.

40. 육향고에 들어가는 물품[六香膏所入]

一年一次進排. ○因傳教別劑, 不在此限.

한 해에 한 차례 진배한다.⁷¹ ○전교로 인한 별도 조제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草注紙十五張 長興庫,

초주지 15장 장흥고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참먹 1정,

陶東海二坐,

질동이 2좌,

71 《내의원식례》〈연례진상〉를 보면 10월 1일에 진상했다.

陶所羅二坐 以上工曹,

질소래기 2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馬尾篩七部 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말총체 7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冬瓜仁三十斤十三兩 不以各殿封進, 多少加減. ○平市署,

동과인(동과자) 30근 13냥 각 전에 봉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소 줄인다. ○평시서⁷²에서 낸다.

炭二石 其人.

숯 2섬 기인이 낸다.

41. 전약에 들어가는 물품[煎藥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⁷³

木綿四幅袱一件,

네 폭짜리 목화솜 보자기 1건,

木綿二斗容入袋一件 以上濟用監,

목화솜 2말 들이] 자루 1건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水鐵釜子一坐 工曹. ○以上用還.

72 평시서 : 시전(市塵), 도량형(度量衡), 물가 등을 담당한 관청이다.

73 《내의원식례》〈연례진상〉을 보면 동짓날에 진상한다고 되어 있다.

무쇠 가마솥 1좌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三尺,

백정포 3척,

白苧布三尺 以上濟用監,

백저포 3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草注紙一卷十五張 長興庫,

초주지 1권 15장 장흥고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참먹 1정,

陶東海二坐,

질동이 2좌,

陶所羅二坐,

질소래기 2좌,

陶甑一坐 以上工曹,

질시루 1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木瓢子一箇,

나무 표주박 1개,

中瓢子一箇,

중간 표주박 1개,

小瓢子一箇 以上司稟寺,

작은 표주박 1개 이상은 사도시에서 낸다.

木把槽二部 內資寺 · 內瞻寺,

손잡이 있는 나무 물통 2부 내자시와 내섬시에서 낸다.

馬尾篩五部,

말총체 5부,

齒簾三浮,

완렴 3부,

條所一艮衣 以上繕工監. ○以上都下中取用.

밧줄 1거리. 이상은 선공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厚油紙五張 長興庫,

두꺼운 기름종이 5장 장흥고에서 낸다.

生牛皮三令 戶曹,

생 소가죽 3령 호조에서 낸다.

芋毛五斗 內瞻寺,

우모(토란 텔) 5말 내섬시에서 낸다.

炭三十斗 其人,

숯 30말 기인이 낸다.

燒木一千一百五十斤 司宰監.

장작 1,150근 사재감에서 낸다.

42. 납약에 들어가는 물품[臘藥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⁷⁴

白正布十尺,

백정포 10척,

白苧布七十尺 以上濟用監,

백저포 70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常馬尾篩五部,

보통 말총체 5부,

白馬尾篩五部,

흰말총체 5부,

尾箒五柄 以上繕工監,

개꼬리 비 5자루 이상은 선공감에서 낸다.

封裹草注紙四卷,

봉과에 쓰는 초주지 4권,

合藥厚紙一卷十張,

합약(合藥)에 쓰는 후지 1권 10장,

各種熟製次楮注紙七卷,

여러 종류의 숙제(熟製)에 쓰는 저주지 7권,

74 《내의원식례》〈연례진상〉을 보면 납일에 진상한다고 되어 있다.

白紙七卷 以上長興庫,

백지 7권 이상은 장홍고에서 낸다.

炮炙及去油次白休紙三斤 司贍寺,

굽고 지지거나 기름기를 없앨 때에 쓰는 백휴지 3근 사섬시에서 낸다.

黃筆六柄,

황모필 6자루,

白筆四柄,

백필 4자루,

真墨三丁,

참먹 3정,

硯石二面,

벼룻돌 2면,

陶東海五坐 以上工曹,

질동이 5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瓢子三箇 司橐寺,

표주박 3개 사도시에서 낸다.

刀子十柄,

칼 10자루,

木燈檠六坐 以上紫門監. ○以上都下中取用.

나무 등잔걸이 6좌 이상은 자문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四油菴四番 長興庫,

사유둔 4번 장홍고에서 낸다.

大盤五立 內贍寺,

큰 소반 5닙 내첨시에서 낸다.

中鼎一坐,

중간 솔 1좌,

陶火爐五坐,

질화로 5좌,

陶湯罐五箇 以上工曹,

질탕관⁷⁵ 5개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土火爐五坐,

흙화로 5좌,

土烽爐五坐,

흙봉로 5좌,

土硯爐五坐 以上瓦署,

흙연로 5좌 이상은 와서⁷⁶에서 낸다.

草板四立,

초판 4닙,

焙籠一部 以上紫門監. ○以上用還.

배롱⁷⁷ 1부 이상은 자문감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大地衣五部 長興庫,

75 질탕관 : 흙으로 만들어 끓일 때 쓰는 그릇이다.

76 와서 : 왕실에서 쓰는 기와, 벽돌을 만들던 관청이다.

77 배롱 : 화로 위에 엎어 씌워 놓고 그 위에 젖은 옷 등을 말릴 때에 쓰는 기구이다.

큰 지의 5부 장홍고에서 낸다.

劑藥補階,

제약보계⁷⁸,

假家二間 以上紫門監. ○以上前排用還.

임시로 지은 집 2칸 이상은 자문감에서 낸다. ○이상은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 준다.

挾刀四部. ○以本院所在取用.

협도 4부. ○본원(내의원)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쓴다.

厚油紙二卷 長興庫,

두꺼운 기름종이 2권 장홍고에서 낸다.

糯米三升 內資寺,

찹쌀 3되 내자시에서 낸다.

粳米三升 司稟寺,

멥쌀 3되 사도시에서 낸다.

黑太四升 軍資監 · 廣興倉,

검은콩 4되 군자감과 광홍창에서 낸다.

實柏子五升 掌苑署,

잣 5되 장원서에서 낸다.

黃丹三斤 戶曹 · 濟用監,

황단 3근 호조와 제용감에서 낸다.

78 제약보계 : 제약(劑藥)을 할 때에 마루를 넓게 쓰려고, 대청마루 앞에 좌판을 잇대어 임시로 만든 자리이다.

虎頭一部,

호랑이 머리뼈 1부,

常山十斤 以上惠民署,

상산 10근 이상은 혜민서에서 낸다.

生薑三斤 司圃署,

생강 3근 사포서에서 낸다.

眞末七升,

밀가루 7되,

正醋七升,

정초(식초) 7되,

眞油五升 以上內瞻寺,

참기름 5되 이상은 내섬시에서 낸다.

焰硝五兩,

염초 5냥,

芒硝五兩,

망초 5냥,

馬牙硝五兩,

마아초 5냥,

雉羽五十箇 以上軍器寺,

꿩 날개 50개 이상은 군기시에서 낸다.

燈油一斗 義盈庫,

등유 1말 의영고에서 낸다.

絳紗囊十五部縷子具.

끈을 갖춘 강사 주머니 15부.

臘藥金箔依定式, 從丸劑數爻, 移來上下 別啓下丸藥金箔同. ○以上戶曹.

납약에 쓰는 금박은 정식에 의거하여 환제 수효에 따라 옮겨와 지급한다 별도로 계하한 환약의 금박도 동일하다. ○이상은 호조에서 낸다.

雪綿子一兩,

설면자⁷⁹ 1냥,

入盛櫃子鎖鑰 · 紅紬袱具 以上尙衣院,

자물쇠와 붉은 비단 보자기를 갖춘, 납약을 담는 궤 이상은 상의원에서 낸다.

加莫金十五箇 紫門監,

가막쇠 15개 자문감에서 낸다.

草蓆七番,

초둔⁸⁰ 7번,

空石五十立 以上軍資監 · 廣興倉,

빈 가마니 50닙 이상은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낸다.

次知書員二人十五日兩時料米 軍資監,

일을 맡은 서원 2인의 보름치 두 끼니 요미⁸¹ 군자감에서 낸다.

炭十一石 其人,

숯 11섬 기인이 낸다.

燒木三十丹 司宰監.

장작 30단 사재감에서 낸다.

79 설면자 : 풀솜. 실을 켤 수 없는 허드레 고치를 삶아 만든 솜이다.

80 초둔 : 띠, 부들 같은 풀로 거적처럼 만든 물건이다.

81 요미 : 급료로 주는 쌀이다.

43. 모과 건정에 쓰이는 물품[木瓜乾正所用]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⁸²

蘆簾二浮 繕工監,

삿자리 2부 선공감에서 낸다.

空石十立 軍資監·廣興倉,

빈 가마니 10닙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낸다.

燒木八丹 其人.

장작 8단 기인이 낸다.

44. 토흥환⁸³에 들어가는 물품[兔紅丸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以上都下中取用.

82 《내의원식례》〈연례진상〉을 보면 겨울에 한 차례 진상한다고 되어 있다.

83 토흥환 : 《내의원식례》〈연례진상〉에 나온다.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를 보면 토흥환은 두진(痘疹)의 예방약으로 사용한다.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木麥末四斗 內資寺,

메밀가루 4말 내자시에서 낸다.

白鹽四斗 司宰監.

흰 소금 4말 사재감에서 낸다.

45. 산사전에 들어가는 물품[山查煎所入]

一年一次進排. ○因傳教別劑, 不在此限.

한 해에 한 차례 진배한다.⁸⁴ ○전교로 인한 별도 조제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鍮匙二箇 工曹. ○前排用還.

놋수저 2개 공조에서 낸다.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木蓋兒一箇 紫門監,

나무뚜껑 1개 자문감에서 낸다.

白正布二幅單祫一件. ○以上用還.

두 폭짜리 백정포 훌 보자기 1건.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三尺,

백정포 3척,

白苧布三尺,

84 《내의원식례》〈연례진상〉을 보면 산사는 가을에 한 차례 진상한다. 산사전에 대한 내역은 없다.

백저포 3척,

飯帶白正布五尺 以上濟用監,

시루 띠로 쓰는 백정포 5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五部 繕工監,

흰말총체 5부 선공감에서 낸다.

油紙一張,

기름종이 1장,

楮注紙一張 以上長興庫,

저주지 1장 이상은 장홍고에서 낸다.

陶甑一坐 工曹. ○以上都下中取用.

질시루 1좌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炭十斗,

숯 10말,

燒木六丹 以上其人.

장작 6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46. 모과전에 들어가는 물품[木瓜煎所入]

一年一次進排. ○因傳教別劑, 不在此限.

한 해에 한 차례 진배한다. ○전교로 인한 별도 조제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鎰匙二箇 工曹. ○前排用還.

놋수저 2개 공조에서 낸다.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木蓋兒一箇 紫門監,

나무뚜껑 1개 자문감에서 낸다.

白正布二幅單祫一件. ○以上用還.

두 폭짜리 백정포 훌 보자기 1건.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三尺,

백정포 3척,

白苧布三尺,

백저포 3척,

鼈帶白正布三尺 以上濟用監,

시루 띠로 쓰는 백정포 3척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三部 繕工監,

흰말총체 3부 선공감에서 낸다.

油紙一張,

기름종이 1장,

楮注紙一張 以上長興庫,

저주지 1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陶甑一坐 工曹. ○以上都下中取用.

질시루 1좌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 중에서 가져다 쓴다.

生薑三斤 司圃署,

생강 3근 사포서에서 낸다.

炭十斗,

숯 10말,

燒木六丹 以上其人.

장작 6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47. 사분산⁸⁵에 들어가는 물품[四糞散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鑰匙二箇. ○前排用還.

놋수저 2개.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食鼎二坐 以上工曹. ○用還.

밥솥 2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쓰고 돌려준다.

白休紙八兩 司瞻寺,

백휴지 8냥 사섬시에서 낸다.

瓢子二箇,

표주박 2개,

省一箇 以上司叢寺,

솔 1개 이상은 사도시에서 낸다.

杻籠二駄 平市署. ○以上都下中取用.

싸리롱 2바리. 평시서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85 사분산 : 검은 개의 똥이 들어가는 처방이다. 만금산(萬金散)으로도 부른다. 《언해두창집요》에
‘又曰, 痘瘡倒黽黑陷, 危惡至死, 宜四糞散’이라 하였다.

燈油每日一合 義盈庫. ○自九月初一日爲始上下，臘日止.

등유 날마다 1홉 의영고에서 낸다. ○9월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납일에 그친다.

膠末一升 內瞻寺，

풀가루 1되 내섬시에서 낸다.

蘆葦四浮 繕工監，

삿자리 4부 선공감에서 낸다.

空石十立 軍資監·廣興倉.

빈 가마니 10닢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낸다.

48. 동자 2명의 양찬으로, 1명당 매일 들어가는 수효 [童子二名糧饌, 每名每日]

米一升 軍資監，

쌀 1되 군자감에서 낸다.

石魚二箇 司宰監，

조기 2개 사재감에서 낸다.

甘醬一合 內資寺. ○以上自九月初九日爲始上下，臘日止.

감장 1홉 내자시에서 낸다. ○이상은 9월 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납일에 그친다.

黑狗二口, 黑貓二口, 獵豬二口, 以上每口毎日, 米五合 軍資監. ○自九月初九日爲始上下，臘日止.

검은 개 2마리, 검은 고양이 2마리, 불깐 돼지 2마리, 이상은 마리당 날마다

쌀 5홉씩이다. 군자감에서 낸다. ○9월 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납일에 그친다.

童子炊飯燒木每日一丹,

동자 밥 짓는 데 쓰는 장작으로 날마다 1단씩,

黑狗炊飯燒木每日一丹 以上司宰監. ○以上自九月初九日爲始上下, 臘日止.

검은 개 밥 짓는 데 쓰는 장작으로 날마다 1단씩이다. 이상은 사재감에서 낸다. ○이상은 9월 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납일에 그친다.

49. 사분산 제조 때에 들어가는 물품

[四糞散劑造時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油紙四張,

기름종이 4장,

楮注紙四張 以上長興庫. ○以上都下中取用.

저주지 4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炭三斗,

숯 3말,

燒木三丹 以上其人.

장작 3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50. 괴실을 채취할 때에 쓰는 물품〔槐實摘取時所用〕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長竹五箇 繕工監. ○都下中取用.

장죽 5개 선공감에서 낸다.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網具空石六立 軍資監·廣興倉.

망을 갖춘 빈 가마니 6鼐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낸다.

51. 남청대를 만들 때에 쓰이는 물품 〔藍青黛打造時所用〕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⁸⁶

大甕二坐,

큰 독 2좌,

大所羅四坐 以上工曹,

큰 소래기 4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白休紙八兩 司瞻寺,

86 《내의원식례》〈연례제조〉를 보면 7월에 제조한다고 되어 있다.

백휴지 8냥 사섬시에서 낸다.

馬尾篩二部 繕工監,

말총체 2부 선공감에서 낸다.

瓢子二箇 司糞寺. ○以上都下中取用.

표주박 2개 사도시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52. 종약전⁸⁷ 약재 건정 때에 쓰는 물품

[種藥田藥材乾正時所用]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柳箆四部,

버드나무 상자 4부,

柳箕二箇,

벼들 키 2개,

厚白紙一卷 以上長興庫. ○以上都下中取用.

후백지 1권 이상은 장홍고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網席四立,

명석 4蓆,

87 종약전 : 약전(藥田)이라고도 한다. 《내의원식례》〈약전〉에 상세하다. 내의원의 약전의 밤섬과
너섬(현재의 여의도), 약전고개 세 곳에 있었다.

網具空石八十立 以上軍資監·廣興倉.

망을 갖춘 빈 가마니 80닙. 이상은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낸다.

53. 주사환⁸⁸에 들어가는 물품[朱砂丸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油紙二張,

기름종이 2장,

楮注紙三張 以上長興庫. ○以上都下中取用.

저주지 3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炭三斗 其人.

숯 3말 기인이 낸다.

88 주사환 : 《내의원식례》〈연례진상〉에 나온다.

54. 자금단에 들어가는 물품[紫金丹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⁸⁹

四油菴一番 長興庫. ○前排用還.

사유둔 1번 장흥고에서 낸다.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흰말총체 1부,

條所一艮衣 以上繕工監,

밧줄 1거리 이상은 선공감에서 낸다.

柳箇一部,

버드나무 상자 1부,

油紙五張,

기름종이 5장,

草注紙五張 以上長興庫,

초주지 5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89 《내의원식례》〈연례진상〉을 보면 음력 12월 열흘이 되기 전에 진상한다.

白休紙四兩 司瞻寺,

백휴지 4냥 사섬시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以上都下中取用.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挾刀二部. ○以本院所在取用.

협도 2부. ○본원(내의원)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쓴다.

糯米三升 內資寺,

찹쌀 3되 내자시에서 낸다.

蚊蛤八斤 平市署,

문합(오배자) 8근 평시서에서 낸다.

眞油七合 內瞻寺,

참기름 7홉 내섬시에서 낸다.

燈油一升 義盈庫,

등유 1되 의영고에서 낸다.

空石四立 軍資監 · 廣興倉,

빈 가마니 4덟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낸다.

炭六斗 其人.

숯 6말 기인이 낸다.

55. 장원향에 들어가는 물품[長圓香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⁹⁰

草注紙十二張 長興庫,

초주지 12장 장흥고에서 낸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以上都下中取用.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小盤六立 內贍寺,

소반 6입 내섬시에서 낸다.

海藏竹十箇 軍器寺,

해장죽 10개 군기시에서 낸다.

炭五斗,

숯 5말,

燒木二丹 以上其人.

장작 2단 이상은 기인이 낸다.

⁹⁰ 《내의원식례》〈연례진상〉에 나온다. 영조 조에 하교로 없어졌다.

56. 옥추단과 비한단에 들어가는 물품

[玉樞丹 · 脾寒丹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⁹¹

白正布一尺五寸,

백정포 1척 5촌,

白苧布一尺五寸 以上濟用監,

백저포 1척 5촌 이상은 제용감에서 낸다.

白馬尾篩一部,

흰말총체 1부,

黑馬尾篩一部 以上繕工監,

검정말총체 1부 이상은 선공감에서 낸다.

油紙五張,

기름종이 5장,

草注紙十四張,

초주지 14장,

厚白紙十五張 以上長興庫,

후백지 15장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白休紙八兩 司瞻寺,

백휴지 8냥 사섬시에서 낸다.

91 《내의원식례》〈연례제조年例劑造〉를 보면 옥추단은 5월 5일에 진상한다. 비한단은 5월 5일에 제조한다. 즉 옥추단과 같은 날이다.

黃筆一柄,

황모필 1자루,

眞墨一丁 以上工曹,

참먹 1정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瓢子一箇 司橐寺. ○以上都下中取用.

표주박 1개 사도시에서 낸다. ○이상은 도하(都下) 중에서 가져다 쓴다.

黃丹一斤十三兩 戸曹·濟用監,

황단 1근 13냥 호조와 제용감에서 낸다.

粘米三升 內資寺,

찹쌀 3되 내자시에서 낸다.

獨頭蒜三升 司圃署,

외톨마늘 3되 사포서에서 낸다.

五倍子八兩 平市署,

오배자 8냥 평시서에서 낸다.

眞油五合,

참기름 5흡,

眞末二升 以上內贍寺,

밀가루 2되 이상은 내섬시에서 낸다.

炭十斗 其人.

숯 10밀 기인이 낸다.

57. 옥추단제에 들어가는 물품[玉樞丹祭所入]

一年一次.

한 해에 한 차례이다. ⁹²

陶東海二坐,

질동이 2좌,

陶所羅二坐,

질소래기 2좌,

陶甌一坐,

질시루 1좌,

水鐵釜一坐,

무쇠솥 1좌,

食鼎蓋具一坐 以上工曹,

뚜껑을 갖춘 밥솥 1좌 이상은 공조에서 낸다.

玉樞丹乾正朱砂爲衣時平盤一竹 內贍寺,

옥추단의 건정과 주사를 입힐 때의 평반 1죽 내섬시에서 낸다.

地排 軍資監 · 廣興倉. ○以上用還.

깔자리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낸다. ○이상은 쓰고 돌려준다.

大地衣四浮,

큰 지의(地衣) 4부,

92 《내의원식례》〈연례진상〉을 보면 옥추단은 5월 5일에 진상한다. 《내의원식례》〈옥추단제〉에 관련 내용이 있다.

拜席 以上長興庫,

배석⁹³ 이상은 장홍고에서 낸다.

卓床,

탁상,

案板,

안판,

隅板 以上紫門監,

모판 이상은 자문감에서 낸다.

遮日. 典設司. ○以上前排用還.

차일⁹⁴. 전설사⁹⁵에서 낸다. ○이상은 전에 진배한 것을 쓰고 돌려준다.

祭物,

제물,

籠燭十柄 奉常寺,

농축 10자루 이상은 봉상시⁹⁶에서 낸다.

三兩燭二雙,

3냥짜리 촉 2쌍,

燈油五合 以上義盈庫,

등유 5홉 이상은 의영고에서 낸다.

氷一丁 氷庫,

93 배석 : 의식 때에 까는 자리이다.

94 차일 : 햇볕을 가리기 위한 포장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사용한다. 삼베 등으로 만든다.

95 전설사 : 장막 등의 설치를 담당한 관청이다.

96 봉상시 : 종묘, 제향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얼음 1정 빙고에서 낸다.

中炬五柄,

중간 화 5자루,

炭五斗,

숯 5말,

燒木一百五十斤 以上其人.

장작 150근 이상은 기인이 낸다.

58. 침도감⁹⁷의 진배[鍼都監進排]

間三年進排.

세 해 간격으로 진배한다. ⁹⁸

進上鍼子入盛櫃子鎖鑰 · 紅紬袱具,

자물쇠와 붉은 비단 보자기를 갖춘, 진상할 침을 담는 궤,

進獻鍼子入盛櫃子鎖鑰 · 紅紬袱具 以上尙衣院.

자물쇠와 붉은 비단 보자기를 갖춘, 진현할 침을 담는 궤 이상은 상의원에서 낸다.

97 침도감 : 침자(鍼子)를 만들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다.

98 《내의원식례》〈연례진상〉에 나온다. 《내의원식례》〈관제官制〉에 나오는 침감조관(鍼監造官)이 하는 일이다. 침감조관은 세 해를 임기로 하여 내침의 중에서 임명되었고, 임기가 끝나면 참상(參上)으로 승륙(陞六)하거나, 이미 참상관이면 상당직(相當職)에 제수하는 것이 관례였다.

59. 인년 삼인침자[寅年三寅鍼子]⁹⁹

進上鍼子入盛櫃子鎖鑰 · 紅紬袱具,

자물쇠와 붉은 비단 보자기를 갖춘, 진상할 침을 담는 궤,

進獻鍼子入盛櫃子鎖鑰 · 紅紬袱具 以上尙衣院.

자물쇠와 붉은 비단 보자기를 갖춘, 진현할 침을 담는 궤 이상은 상의원에서 낸다.

60. 도하(都下)¹⁰⁰하는 물품에 대한 질[都下秩]¹⁰¹

白正布六十八尺五寸,

백정포 68척 5촌,

白苧布一百三十九尺五寸,

백저포 139척 5촌,

生布六十尺,

생포 60척,

草注紙二十卷十九張,

초주지 20권 19장,

楮注紙十三卷二張,

99 《승정원일기》 영조 10년(1734) 3월 26일 기사를 보면 삼인침은 정월 초하루에 만든다. 인년 (寅年)의 인월(寅月) 인일(寅日)이므로 삼인(三寅)이라 한다. 《내의원식례》〈연례진상〉에 나온다.

100 도하(都下) : '都下'가 회계 용어로 쓰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출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뜻이다.

101 본문에서 '都下中取用'한다고 할 때의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철이다.

저주지 13권 2장,

厚紙二卷四張,

후지 2권 4장,

厚白紙一卷十五張,

후백지 1권 15장,

油紙一卷十四張,

기름종이 1권 14장,

柳箆六部,

버드나무 상자 6부,

柳簾四箇,

버들 키 4개,

白休紙五斤十四兩,

백휴지 5근 14냥,

黃筆十七柄,

황모필 17자루,

眞墨十六丁,

참먹 16정,

陶東海二十八坐,

질동이 28좌,

陶所羅二十九坐,

질소래기 29좌,

陶甌三坐,

질시루 3좌,

瓢子二十七箇,
표주박 27개,
省七箇,
솔 7개,
馬尾飾四十八部,
말총체 48부,
條所十五艮衣,
밧줄 15거리,
蘷簾十八浮,
완렴 18부,
尾箒四十一柄. ○以上春秋分半上下.
개꼬리 비 41자루. ○이상은 봄·가을 분기에 절반씩 지급한다.
分藥貼楮注紙二卷,
분약첩에 쓰이는 저주지 2권,
白紙七卷,
백지 7권,
白筆四柄,
백필 4자루,
海藏竹四十箇,
해장죽 40개,
木貫子二箇. ○以上一年都下.
나무로 만든 두레박 2개. ○이상은 한 해 단위로 도하(都下)한다.
木燈檠六箇,

나무 등잔걸이 6개,

擔桶二部 一年兩次改帶,

질통 2부 한 해에 두 차례 띠를 바꾼다.

粗籠二駄,

싸리릉 2바리,

陶大瓮二坐. ○以上二年都下.

큰 질독 2좌. ○이상은 두 해 단위로 도하(都下)한다.

硯石二面,

벼루 돌 2면,

長竹五箇,

장죽 5개,

刀子十柄. ○以上三年都下.

칼 10자루. ○이상은 세 해 단위로 도하(都下)한다.

木把槽二部 內資寺 · 內贍寺. ○一年都下後用還.

손잡이 있는 나무 물통 2부 내자시와 내섬시에서 낸다. ○한 해 단위로 도하한 후 쓰고 돌려준다.

61. 여러 가지 그릇불이 훼손에 따른 수보(修補) 질

[各樣器皿隨毀修補秩]

銀大鼎一坐蓋具,

뚜껑을 갖춘 은제 큰 솥 1좌,

銀中鼎一坐蓋具,
뚜껑을 갖춘 은제 중간 솔 1좌,
銀廣鼎一坐,
은제 넓은 솔 1좌,
銀鎖炒兒三坐蓋具,
뚜껑을 갖춘 은제 자물쇠냄비¹⁰² 3좌,
銀卵炒兒三坐蓋具,
뚜껑을 갖춘 은제 알냄비 3좌,
銀耳炒兒三坐蓋具,
뚜껑을 갖춘 은제 귀때냄비¹⁰³ 3좌,
銀貢二箇,
은자(銀貢)¹⁰⁴ 2개,
銀升二箇,
은제 되 그릇 2개,
銀合二箇,
은제 흡 그릇 2개,
銀瓶三坐,
은병 3좌,

102 《승정원일기》 현종 9년(1843) 10월 2일 기사를 보면 임금에게 탕제를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탕제(湯劑)는 임금에게 올리기 전에 봉입(封入)되었고, 은제 자물쇠(銀鎖)가 달린 약초기(藥炒器)를 수의(首醫)가 열쇠로 열었다.

103 귀때냄비 : 주전자의 부리같이 그릇 한 쪽에 바깥쪽으로 내밀어 만든 구멍이다. 귀때그릇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릇 이름 앞에 ‘耳’를 붙인다.

104 은자(銀貢) : 은제 번철

銀阿里金二箇,

은제 아리쇠¹⁰⁵ 2개,

銀匙二箇,

은수저 2개,

銀麗瓢二箇 臺具,

걸 수 있는 은제 표주박 2개 받침을 갖춤,

銀挾刀二部,

은제 협도 2부,

銀分稱三部 錘具,

은제 푼 저울 3부 추를 갖춤,

三十斤稱子二部,

서른 근까지 다는 저울 2부,

十一斤稱子二部,

열한 근까지 다는 저울 2부,

鑄東海一坐,

무쇠 동이 1좌,

鑄中火爐二坐,

무쇠 중간 화로 2좌,

鑄小火爐二坐,

무쇠 작은 화로 2좌,

鑄伐兒二坐,

105 아리쇠 : 삼발이의 옛말이다.

무쇠 바라기¹⁰⁶ 2좌,

鑄貢鐵一坐,

무쇠 자칠(貢鐵)¹⁰⁷ 1좌,

鑄香器一部,

무쇠 향기(香器)¹⁰⁸ 1부,

鎰鎌一箇,

놋쇠 낫 1개,

鎰睡器三坐,

놋쇠 타기(睡器) 3좌,

鎰斗一坐,

놋쇠 말 그릇 1좌,

鐵烽爐三坐,

철제 봉로 3좌,

炷香香筒大中小各一,

향 피우는 항통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하나씩.

大研輪具二部,

연알을 갖춘 큰 약연 2부,

中研輪具七部,

연알을 갖춘 중간 약연 7부,

106 바라기 :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크기는 보시기만한데 아가리가 더 크다.

107 자칠(貢鐵) : 번철(燔鐵). 전을 부치거나 고기 따위를 볶을 때에 쓰는, 솔뚜껑처럼 생긴 무쇠 그릇이다.

108 향기(香器) : 향을 피우기 위해 담는 그릇이다.

食鼎一坐,

밥솥 1좌,

炙金一部,

적쇠 1부,

火鏡一部,

화경¹⁰⁹ 1부,

生薑磨板一坐,

생강 갈판 1좌,

木餉一坐,

나무 시루 1좌,

進上劑藥床二部,

진상할 때 쓰는 제약상(劑藥床) 2부,

進上藥櫃二部,

진상할 때 쓰는 약궤 2부,

藥合劑黑漆瓢子一箇,

약 합제(合劑)에 쓰는 검게 옷칠한 표주박 1개,

黑漆隅板二立,

검게 옷칠한 모판 2��,

白草板三立,

흰 초판 3��,

黑漆草板二立,

109 화경 : 화경(火鏡)은 볼록렌즈이다.

검게 옷칠한 초판 2닙,

紅漆受炙盤三立內 一立內入不出,

붉게 옷칠한 뜰 받는 쟁반 3닙 중에 1닙은 대내(大內)에 들이고 내보내지 않는다.

書鎮七箇,

서진(書鎮) 7개,

書案五部,

서안 5부,

芙蓉香筒五箇,

부용향 통 5개,

雨傘三柄,

우산 3자루,

斜羅篩一部,

싸라기 채 1부,

劑藥床一坐,

제약상 1좌,

火珠一箇,

화주(火珠) 1개,

黑漆爲衣盒一部,

겉을 검게 옷칠한 합 1부,

香欌子十八部,

향장(香欌) 18부,

黑漆大盤二立,

검게 옷칠한 큰 쟁반 2닙,

架子一部.

가자(架子) 1부.

62. 포진에 대한 질[鋪陳秩]

都提調房, 白紋八張付地衣一部. ○隨毀修補.

도제조방의 경우, 무늬 없는 여덟 장 붙인 지의 1부. ○훼손되면 수보한다.

滿花登每二坐,

만화 등메¹¹⁰ 2좌,

滿花方席二立,

만화 방석 2닙,

彩花案息二坐 以上長興庫. ○以上毎年一坐式上下.

채화 안식¹¹¹ 2좌.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이상은 해마다 1좌씩 지급한다.

豹皮方席一立 戸曹. ○五年一改.

표범가죽 방석 1닙 호조에서 낸다. ○5년에 한 번 교체한다.

提調房, 白紋四張付地衣一部. ○隨毀修補.

제조방의 경우, 무늬 없는 넉 장 붙인 지의 1부. ○훼손되면 수보한다.

別紋登每二坐,

110 만화 등메 : 만화는 꽃무늬가 가득한 것을 말하고, 등메는 형겼으로 가선을 두르고 뒤에 부들 자리를 대서 만든 둋자리를 말한다.

111 채화 안식 : 안식은 안석(案席)이라고도 부른다. 앓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이다. 채화 안식은 채색한 꽃이 들어간 안석이다.

별문¹¹² 등메 2좌,

別紋方席二立,

별문 방석 2닙,

別紋案息二坐 以上長興庫. ○以上毎年一坐式上下.

별문 안식 2좌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이상은 해마다 1좌씩 지급한다.

虎皮方席一立 戶曹. ○五年一改.

호랑이가죽¹¹³ 방석 1닙 호조에서 낸다. ○5년에 한 번 교체한다.

副提調房, 別紋登每二坐,

부제조방의 경우, 별문 등메 2좌,

別紋方席二立,

별문 방석 2닙,

別紋案息二坐 以上長興庫. ○以上毎年一坐式上下.

별문 안식 2좌 이상은 장흥고에서 낸다. ○이상은 해마다 1좌씩 지급한다.

山羊皮方席一立 戶曹. ○三年一改.

산양가죽 방석 1닙 호조에서 낸다. ○3년에 한 번 교체한다.

問安廳, 白紋四十八張付地衣一部.

문안청은 무늬 없는 마흔여덟 장 붙인 지의 1부.

劑藥廳, 草席十二立付地衣一部. ○以上隨毀修補.

제약청은 풀방석 12닙을 붙인 지의 1부. ○이상은 훼손되면 수보한다.

112 별문 : 별문(別紋)은 꽃무늬가 약간 들어간 것을 말한다. 도제조의 경우와 비교하면, 만화(滿花)보다는 덜 화려한 꽃무늬이다.

113 호랑이가죽 : 도제조의 경우에는 표범가죽이고 제조의 경우는 호랑이가죽인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問安啓辭時所用黃燭一隻 義盈庫.

계사문안¹¹⁴ 때 쓰는 황촉 1척 의영고에서 낸다.

63. 도배에 대한 질[塗褙秩]

大廳壁塗,

대청 벽 칠하기,

溫揆壁塗. ○以上隨毀修補.

온돌 벽 칠하기. ○이상은 훼손되면 수보한다.

窓戶一年一改.

창호는 1년에 한 번 교체한다.

醫官入直房等, 修理時, 改塗.

의관이 입직하는 방을 수리할 때 새로 칠한다.

窓戶一年一改.

창호는 1년에 한 번 교체한다.

藥庫窓戶一年一改.

약고의 창호는 1년에 한 번 교체한다.

114 계사문안 : 계사(啓辭)란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문(上奏文)을 말한다. 《육전조례》〈예전·내의원〉에서는 계사문안을 세 제조가 모든 의관을 데리고 하는 것이라 하였다. 《내의원식례》에도 〈계사문안〉이 있다.

64. 겨울을 나는 데 들어가는 물품[過冬所入]

一年一次進排.

한 해에 한 차례 진배한다.

製藥廳, 空石二十立 軍資監·廣興倉,

제약청의 경우, 빈 가마니 20닙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낸다.

穀草一同,

볏짚 1동,

細切草二石 以上司僕寺.

잘게 자른 풀 2섬 이상은 사복시에서 낸다.

혜국지(惠局志)¹

지은이 강위빙(康渭聘), 고친이 변태항(卞泰恒)²

혜국지 서문(惠局志序)

夫惠局之設其來久矣。粵自麗代逮于我朝，置司設官，掌醫藥之政令，求民庶之疾苦，實效《周禮》醫師之遺制也。自壬丙以後，官員之減省，藥物之節損，文簿之散逸，條式之遺失，大有乖於設立之本意，不免有靡微之歎矣。幸有我素軒趙尙書閣下提衡是署也，飭教訓而勸課醫學，捐己捧而修葺官廨，雖退處郊垌之外，愈切憂憂之懷。

무릇 혜국(惠局, 혜민서)의 설립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멀리 고려 시대부터 우리 조선에 이르기까지³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의약의 정령(政令)을 관장하고 백성의 질병을 구제한 것은 실로 《주례》 의사(醫師)⁴에서 전해온 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관원 수가 줄고, 약물 비용이 삭감되며

1 규장각 소장.奎7361

2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3 혜민국은 고려 예종 7년(1112)에 처음 설치되어 조선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4 《주례》 의사(醫師) : 《주례周禮》〈천관총재天官冢宰〉‘醫師上士二人, 下士四人, 府二人, 史二人, 徒二十人。’

문서와 장부가 산일되고 법규와 제도가 유실되어 설립의 본뜻과 크게 어긋나서 무너지고 쇠퇴해버렸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다행히 우리 소현(素軒) 조상서(趙尙書)⁵ 합하(閣下)⁶가 혜민서의 제조가 되어⁷ 교육에 신경을 써서 의학을 권과(勸課)하며, 자신의 녹봉을 덜어 관청을 수리하였고, 비록 재야로 물러나면서도 근심하는 마음이 더욱 깊었다.

一日誨余曰：“一署規模散失無徵，子可裒集諸條，作爲一冊，以爲永久遵行也。”余稽首而退，遂與療官金世顯等，探討舊籍，博採近聞，繁者刪之，漏者補之，疑者質之，紊者正之，爰自《提舉》·《醫官先生案》·《騰錄》·《大仕冊》，暨夫《前卿》·《生徒》·《官垈藥田》·《奴婢》·《救療功勞》·《赴京》之案，無不釐整，且撮其一署之最緊要者，分爲二十五條，名之曰《惠局志》。於是乎本署之顛末，醫政之綱領，一開卷而瞭然於心目，若非閣下用心之至，何能及此耶！

하루는 나에게 말씀하기를, “혜민서의 규범이 산실되어 징험할 바가 없으니, 그대가 모든 법규를 모아서 한 책으로 만들어 영구히 준행할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하셨다. 나는 머리를 조아려 인사드리고 물러나 마침내 의관 김세현(金世顯)⁸ 등과 더불어 옛 서적을 탐구 토론하고 근래 들은 것을 널리 채집하여 번잡한 부분은 없애고 탈루된 부분은 보충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은 묻고, 어지러운 부분은 바르게 하였다. 이렇게 《제거(제조선생안)》⁹ · 《의관선생안》¹⁰ · 《등록

5 소현(素軒) 조 상서(趙尙書) : 조태구(趙泰耆, 1660-1723)는 본관이 양주(楊州), 호는 소현(素軒)으로 우의정 사석(師錫)의 차남이다. 1686년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경종 때에 영의정을 지냈다. 문강공파 14세이다. 조태구는 공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역임했으므로 ‘조상서’라 칭했다.

6 합하(閣下) : 정1품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는 말로 삼정승이 이에 해당된다.

7 혜민서의 제조가 되어 : 《승정원일기》 숙종 38년(1712) 5월 12일 기사. 조태구가 혜민서 제조에 임명되었다.

8 김세현(金世顯) : 1678-?. 본관은 청양(青陽), 자는 달포(達甫)로 만호 익찬(益燦)의 장남이다. 1699년 식년시 의과에 급제하고 혜민서 교수를 지낸 의관(醫官)이다. 감무공계 8세이다.

9 《제거(제조선생안)》 : 제조선생안(提調先生案)은 혜민서 역대 제조의 이름과 재임 기간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본문의 〈서적〉 부분을 보면 혜민서의 구임소(久任所)에 필사본으로 한 부가 있었다.

(혜민서등록)》¹¹ · 《대사책大仕冊》¹²으로부터 《전함》¹³ · 《생도》¹⁴ · 《관대약전官代藥田》¹⁵ · 《노비》¹⁶ · 《구료공로(공로책)》¹⁷ · 《부경赴京》¹⁸의 안(案)에 이르기 까지 정리하지 않은 내용이 없었고, 여기에서 혜민서의 가장 긴요한 사항들을 뽑아 25조문¹⁹으로 나눈 뒤 《혜국지惠局志》라 명명하였다. 이에 비로소 본 혜민서의 전말과 의정(醫政)의 강령이 한 번 책을 펼치기만 하면 심목(心目)²⁰에 명료하게 들어왔으니, 만일 합하(閣下)의 지극한 마음 씀이 아니었다면, 어찌 능히 이에 도달할 수 있었겠는가.

噫! 有國而有民, 有民而有疾病, 有疾病然後有醫藥, 有醫藥然後可濟其扎瘥之患. 此正周之醫師, 宋元惠民局之所以設也. 蓋是署雖曰微司, 既廁於百官之末 · 衣冠之列, 而且所主者, 是救活民庶, 則其責也, 顧不重歟? 然則蒞是任者, 誠能仰體國家設

10 《의관선생안》: 의관선생안은 임관선생안(任官先生案)과 녹관선생안(祿官先生案)으로 나누어서 현직의 의관을 기록한 책이다. 전자는 녹봉 없이 근무하는 무록관(無祿官)을 함께 기록한 것이며, 후자는 혜민서의 주부(主簿), 직장(直長) 등 녹관(祿官)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의 〈서적〉 부분을 보면 혜민서의 구임소(久任所)에 임관선생안은 1부, 녹관선생안은 3부 가 있었다.

11 《등록(혜민서등록)》: 본문의 〈서적〉 부분을 보면 전함청(前唧廳)에 3부가 있었다. 《승정원일기》에 이 등록의 내용이 일부 인용 되어있다. 인용부는 주로 예조(禮曹)가 혜민서 관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임금께 아뢰는 내용이다.

12 《대사책大仕冊》: 본문의 〈서적〉 부분을 보면 구임소와 전함청에 각 한 부씩 있었다.

13 《전함》: 전함(前唧)은 전에 그 직임에 있던 사람을 지칭하며 前銜이라고도 한다. 본문의 서적 조를 보면 전함청에 1부가 있었다. 현재 전하지 않는다.

14 《생도》: 본문의 〈서적〉 부분을 보면 전함청과 구임소에 각기 2부씩 있었다.

15 《관대약전官代藥田》: <약전안藥田案>이라고도 한다. 본문의 〈서적〉 부분을 보면 구임소에 1부 가 있었다. 본문 지공(支供)의 〈약전>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다.

16 《노비》: 본문의 〈서적〉 부분을 보면 구임소에 1부가 있었다. 현재 전하지 않는다.

17 《구료공로(공로책)》: 본문의 〈서적〉에서는 전함청에 1부가 있었다고 하였다.

18 《부경赴京》: 부경(赴京)이란 원래 중국에 가는 사신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행 원역으로 따라 간 의원을 말한다.

19 25조문: 현존 본은 29조문으로 되어있다. 중수(重修)를 거치면서 4조문이 늘어났다.

20 심목(心目): 사물을 알아보는 마음과 눈을 뜻한다.

立之意·委任之責，凡諸醫藥教誨之方·權課之典，靡不用極，培養人材，則發軔是司，爲國手醫民命者，將不知幾人，而助益元氣，導成春化，俾一世蒼生，咸躋于壽域之中，其於聖上好生之德·澤民之治，不無小補，豈不猗歟休²¹哉！

아아!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질병이 있고, 질병이 있은 연후에야 의약이 있고, 의약이 있게 된 뒤에야 역병이나 질병으로 죽는 데서 구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나라의 의사(醫師) 제도와 송과 원나라의 혜민국(惠民局)이 설치된 까닭이다. 대개 이 혜민서가 비록 보잘것없는 관사라고는 하지만, 이미 백관(百官)의 끝과 관료의 반열에 끼어 있는 데다 주관하는 바는 백성을 구활(救活)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그러한즉 이 직임을 맡는 자가 참으로 국가가 설립한 뜻과 위임한 책무를 우러러 헤아려서 무릇 모든 의약을 가르치는 방법과 권과(勸課)하는 법도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인재를 북돋고 기른다면, 이 혜민서를 처음 설립함에 국수(國手)²²가 되어 백성의 목숨을 치료하는 자가 장차 몇 사람이나 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원기(元氣)를 도와 더해주고, 춘화(春化, 짊게 만들)를 이끌어 이루어 한 세상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장수할 수 있게 한다면 성상(聖上)의 생명을 좋아하는 덕과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는 다스림에 있어 자그마한 보탬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찌 매우 아름답지 않겠는가!

余極知文辭拙陋，而適忝任官，辭不獲已，何敢謂能也。後之君子，幸勿誚焉。

내 문장의 출렬함을 잘 알고 있지만 마침 황송하게도 혜민서의 관직을 맡고 있어 사양에도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 어찌 감히 글재주가 있다 하겠는가. 후세의 군자들은 부디 꾸짖지 않기를 바란다.

歲舍己亥端月上澣，久任晉山康渭聘謹識。

기해년(1719) 단월(음력 1월) 상한(상순)에 구임²³ 진산(진주)인 강위빙(康渭

21 休 : 원문은 ‘体’로 되어 있는데, 문맥에 근거하여 ‘休’로 수정하였다.

22 국수(國手) : 솜씨 좋은 의사를 뜻한다.

23 구임 : 이 당시 혜민서에서 구임(久任)이라 하면 주부(主簿) 이상이며, 전의감에서 구임이라

聘)²⁴은 삼가 쓴다.

강해수 서문(康海秀序)²⁵

嗚厚! 此卽我六代祖考贈參判公所著也。公生於顯廟辛亥，此《誌》之成在於肅廟己亥，則公年時爲四十九，而今距己亥，爲一百五十有六年矣。公之處官蒞事，概得於耆舊之記述，而近見惠局所藏舊《誌》，是乃公之撰定條約，式爲一署之遵守，豈不贊歟！且其弁首文字，雖不過當時記實，文體古雅，筆畫遒勁，仍竊念片墨隻辭，固不可湮沒無傳，只因子孫之零替，未能典守，致此遺佚，竟不知祖先儀型之萬一，深庸愴惜，何幸《署誌》之數百年不泯，使不肖後孫，得以知先祖規模之縝密·事功之悠遠者，豈偶然也哉！

아! 이는 바로 나의 6대조인 증참판공(贈參判公, 강위빙)이 지으신 것이다. 공(公)은 현종(顯宗) 신해년(1671)에 태어나셨고 이 《혜국지》는 숙종(肅宗) 기해년(1719)에 완성되었으니, 공(公)의 나이 49세였고 지금은 기해년으로부터 156년이 흘렸다. 공이 관직에 나아가 일을 처리하신 것은 원로들의 기술에서 대략 얻어 알 수가 있는데 근자에 혜국(惠局) 소장의 옛 《혜국지》를 보니 이것은 바로 공이 조문을 찬정(撰定)하여 혜민서가 준수하도록 한 것이니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앞에 둔 글(서문)은 비록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데 불과하지만, 문체는 예스럽고 아담하며, 필체는 힘차고 굳세다. 이어 가만히 생각건대 한 조각 글자, 한 가닥 말조차 참으로 인몰(湮沒)되어 전하지 못하게 되서는

하면 판관(判官) 이상인 자이다. 본문의 <관제>에 구임에 대해 나온다.

24 강위빙(康渭聘) : 1671-?.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군망(君望)으로 사과(司果) 득건(得健)의 아들이다. 혜민서 의원으로 있다가 1722년 의약동참의가 되어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칠방(察訪)의 벼슬을 지냈다. 수운(守雲)계 4세이다. 아버지와 조부가 무과(武科)로 출사한 집안이었으나 강위빙 이후로는 조선후기 고종 조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에서 의관(醫官)이 배출되게 된다.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대전 :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18.

2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안 되건만, 자손이 보잘것없이 된 까닭으로 맡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유실되 기까지 하여 마침내 선조의 의용(儀容)을 만에 하나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몹시 슬프고 애석하도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혜국지》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아, 불초한 후손이 얻어 선조의 치밀한 규모와 유구하게 전해온 공적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擊讀屢回，宛若承誨聞命於當日膝下者然，顧我雲仍，孰不愛慕而瞻想也？然又過幾十百年，而舊蹟之愈久愈泯，是懼是恐，此所以蕉泉族父，亟贍一本，藏之于家者也。小子既敬先祖之遺蹟，且感族父之至意，敢識數語于後。

여러 회 받들어 읽으니, 흡사 완연히 당일에 슬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명을 듣는 듯하였다. 돌이켜볼 때 우리 먼 후손 가운데 누군들 애모하고 우러러보며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또 수십 수백 년이 흘러 옛 자취가 오래될수록 점점 더 없어질까,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무섭도다. 이것이 초천(蕉泉)²⁶ 족부(族父, 재당숙)가 이 책 1본을 급히 베끼어 집에 보관하게 된 까닭이다. 나는 선조의 남기신 자취를 경애해 온 데다 족부의 지극한 뜻에 감탄하였으므로, 감히 몇 마디 말을 뒤에 적는다.

歲同治甲戌端陽后二日，後孫海秀敬志。

동치(同治) 갑술년(1874) 단양(端陽, 음력 5월 5일) 이틀 뒤에 후손 해수(海秀)²⁷는 삼가 쓴다.

26 초천(蕉泉) : 누군가의 호로 추정되지만 특정하기가 어렵다.

27 해수(海秀) : 생몰년 미상. 본관은 진주(晉州)로 전의감교수 직순(直淳)의 아들이며 강위빙의 6대손이다. 고종 조에 전의감직장을 지낸 의관이다. 수운(守雲)계 10세이다. 박훈평, op.cit. p.20.

중수혜국지 서문(重修惠局志序)

署舊無志，雍正己亥，姜公渭聘草創之，乾隆丁卯，不佞先父修飾之，凡有事務，賴以考据，歲月既久，事例隨變，勢宜有釐整之。今提舉鄭參判以命不佞，不佞乃與二三同僚，蒐聚舊章，參訂新式，逐條增損，必因原書，竊附古人述而不作之義。編既成，仍藏于署，若其著《志》之規模節目，已悉前序，茲不贅焉。

혜민서에는 오랫동안 관청지가 없었는데, 옹정(雍正) 기해년(1719)에 강위빙(姜渭聘) 공이 처음 저술하였고 건륭(乾隆) 정묘년(1747)에 나의 선친(변석화)²⁸께서 수정하셔서 모든 사무들이 이 책에 힘입어 상고하고 근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월이 이미 오래 지나 사례가 그에 따라 변하였기에 형세상 바로잡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제조인²⁹ 정 참판(鄭參判)³⁰이 이 일을 나(변태항)에게 명하니, 내가 두세 동료들과 더불어 옛 제도를 모아 취합하고 새 규정을 참고하고 바로잡아 조목마다 더하고 덜되, 반드시 원서(原書, 혜국지 원본)에 근거하였으니 ‘전해 내려오는 것을 기술할 따름이지 새로운 것을 지어내지 않는다[述而不作]’³¹는 옛사람의 뜻을 삼가 따른 것이었다. 책이 완성되자 혜민서에 보관하였는데, 《혜국지》를 지은 규범과 절목은 이미 앞의 서문에 모두 있으니 여기에는 덧붙이지 않는다.

歲在戊戌仲秋下澣，久任密陽卞泰恒謹識。

28 선친(변석화) : 변석화(卞碩和, 1707-?)는 본관이 밀양(密陽), 자는 의백(義伯)으로 역과동지 (譯科同知) 변삼원(卞三元)의 장남이다. 혜민서 교수를 지낸 의관이다. 경성파 20세이다. 박훈 평, op.cit. p.214.

29 지금 제조인 : 《승정원일기》 정조 1년(1777) 12월 28일 기사. 정창성이 혜민서제조에 임명되었다.

30 정 참판(鄭參判) : 참판은 육조에 있는 종2품 벼슬이다. 당시 정창성은 예조참판이었다. 정창성 (鄭昌聖, 1724-?)은 본관이 온양(溫陽), 자는 희천(希天)으로 지평 광은(光殷)의 장남이다. 1751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경기감사, 대사헌을 지냈다. 북창공파 24세이다.

31 전해 내려오는 것을 기술할 따름이지 새로운 것을 지어내지 않는다[述而不作] : 《논어》〈술이〉 ‘子曰，述而不作，信而好古，竊比於我老彭。’

무술년(1778) 중추(음력 8월) 하순에 구임 밀양인(密陽人) 변태항(卞泰恒)³²은 삼가 쓴다.

혜국지 목록(惠局志目錄)

沿革

연혁³³

官制 衛職 外任 原籍 官舍

관제 위치 외임 원적 관사

率屬

솔속

員役 醫女 奴婢

원역 의녀 노비

考課

고과

入屬 褒貶 祿試 愛敏 勸獎 生徒考講 醫女考講 遷轉

입속 포폄 녹시 총민 권장 생도고강 의녀고강 천전

32 변태항(卞泰恒) : 1730-1783. 본관은 밀양, 자는 사구(士久)로 혜민서교수 석화의 차남이다. 1754년 증광시 의과에 급제, 혜민서주부를 지낸 의관이다. 경성파 21세이다. 박훈평, op.cit. p.221.

33 《혜국지》는 사역원의 관청지인 《통문관지通文館志》(1708년 저술, 1720년 활자화)와 기술 순서와 형식면에서 유사하다. 이들보다 후대인 1811년에 간행된 관상감의 관청지인 《서운관지》는 내용의 순서와 항목 명에서 차이를 보이며, 18세기에 간행된 관청지인 《시강원지》(1784년), 《규장각지》(1784년)를 보아도 편제에서 차이를 보인다.

式例

식례

入直 分差 供仕 擬望 賄助 該用文狀 書籍 什物

입직 분차 공사 의망 부조 해용문장 의적 집물

支供

지공

藥田 貢物 進排 應役 經費

약전 공물 진배 응역 경비

《惠局志》 目錄 終

《혜국지》 목록 마침

1. 연혁(沿革)

凡五條.

모두 5조이다.

관제(官制)³⁴

麗朝始置惠民局，掌救民疾苦 出《高麗史》。國初改局爲署，仁廟丁丑，與典醫監合爲一局，後復分置 丙子亂後，汰減冗官時，兩醫司亦合爲一局，其年秋，因本署員役等上言，依前分置。出《本署》及《醫監騰錄》。屬禮曹 出《經國大典》。

34 이 조문에서는 혜민서에 설치되어있는 직임인 제조와 녹관에 대해 설명한다.

고려조에 처음 혜민국을 두어 백성의 질병을 구제하는 일을 관장하였다³⁵ 출전 《고려사》³⁶. 국초(조선초)에 국(혜민국)을 서(혜민서)로 바꾸었고,³⁷ 인조(仁祖) 정축년(1637)에 전의감과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다가,³⁸ 뒤에 다시 분리하여 두었다. 병자란 이후에 쓸모없는 관직을 감축할 적에, 양의사³⁹ 또한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해 가을 본서(혜민서) 원역들의 상소로 인하여 전과 같이 분리하여 두었다. 출전 《본서등록》 및 《전의감등록》⁴⁰. 예조에 속한다⁴¹ 출전 《경국대전》⁴².

提調 二員 從二品以上文官或儀賓兼. 萬曆丁卯, 一員減省, 乾隆癸未, 復置. 出《本署騰錄》,
제조 2원⁴³ 종2품 이상의 문관 또는 의빈(부마)이 겸직한다. 만력 정묘년(1627)에 1원을 감생하였다가,⁴⁴ 건륭 계미년(1763)에 다시 두었다. 출전 《혜민서등록》,
主簿 一員 從六品. 掌印信, 摹括署務. 如有取材, 兩次居首者, 年少聰敏連三次間四次居首, 及有功勞

35 《고려사》 <백관지(百官志)·혜국지> 1112년(예종 7)에 판관 4원을 두어 의업과 산직을 상호 교차해 임용하게 하고 을과권무(乙科權務)로서 임명하였다.

36 《고려사》: 세종의 명을 받아 정인지 등이 편찬한 기전체 역사서이다. 1449년(세종 31)에 시작해 1451년(문종 원년)에 완성되었다.

37 《실록》 세조 12년(1430) 1월 15일 기사. 혜민국을 혜민서로 개칭하고, 녹사(綠事) 2인을 없앴으며, 주부(主簿)·훈도(訓導) 각 1원과 참봉(參奉) 4원을 두었다.

38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4월 20일 기사. 목서흡(睦敍欽)이 아뢰어 윤허하였다.

39 양의사: 본문에서 별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양의사는 전의감과 혜민서를 지칭하며, 삼의사(三醫司)는 내의원·혜민서·전의감을 말한다.

40 《본서등록》 및 《전의감등록》: 본문 중의 본서(本署)는 혜민서(惠民署)를 말하고 의감(醫監)은 전의감(典醫監)을 말한다.

41 예조에 속한다: 《경국대전》 <예전> 서두에 내의원·전의감 등 삼의사(三醫司)는 모두 예조의 아문으로 나온다.

42 《경국대전》: 1481년 완성되어 148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선의 법전이다.

43 원: 원문의 <관제>와 <원역> 등을 보면 사람을 세는 단위로 員, 人, 名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은 정직(正職)에, ‘인’은 잡직(雜職)에, ‘명’은 천역(賤役)에 사용된다.

44 《속대전》 <이전·경관직京官職>(1746년)에서는 혜민서 제조를 1원으로 줄였다고 나오는데, 《대전통편》 <이전·경관직京官職>(1784년)에서는 혜민서 제조가 2원으로 복구된다. 이후 고종 조까지 동일하다.

者，許陞參上，而不許原祿，只授主簿告身，

주부 1원 종6품이다. 인신(印信)을 관장하고⁴⁵ 관청 일을 총괄한다. 취재가 있을 때 2번 수석을 차지한 자, 연달아 3번 혹은 총 4번 수석을 차지한 연소총민(年少聰敏)⁴⁶ 및 공로가 있는 자는 참상관(參上官)⁴⁷으로 올려 주되, 참상관에 맞는 녹봉은 허락해 주지 않고 단지 주부 고신(직첩)만 준다.

直長 一員 從七品. 掌奴婢，

직장 1원 종7품이다. 노비를 관장한다.

奉事 一員 從八品. 掌書冊，

봉사 1원 종8품이다. 서책을 관장한다.

參奉 四員 二員掌唐藥，舊例受價戶曹，貿易唐材，今廢。二員掌鄉藥。順治間，減省二員，康熙己巳，復置，乙亥裁減時，二窠以散料磨鍊。○以上祿官中，以再授職解事者一員，例差掌務官，俾掌出入簿牒及諸般差役等事，而許赴回試，以酬其勞，

참봉 4원⁴⁸ 2원은 중국산 약재를 관장하는데 옛 규례에는 호조에서 돈을 받아 중국산 약재를 사고팔았으나 지금은 없앴다. 2월은 국산 약재를 관장한다. 순치(順治) 연간에 2월을 감생했다가 강희 기사년(1689)에 다시 두었는데,⁴⁹ 을해년(1755)에 해아려 줄일 적에 2자리를 산료(散料)⁵⁰로 마련하였다. ○이상 녹관 중에서 일에 통달한 1원에게 다시 직임을 제수하여 예에 따라 장무관⁵¹으로 임명하여 장부와 문서의 출입 및 각종 차역하는 일 등을 관장하게 하고, 회시(도목회

45 인신(印信)을 관장하고 : 인신을 관장한다는 것은 그 관서나 부서의 서무상의 최고 책임자임을 말한다.

46 연소총민(年少聰敏) : 총민청에 속한 인원이다. 본문의 <총민>에 상세하다.

47 참상관(參上官) : 6품 이상에서 종3품 이하의 관직으로, 참상관으로 올리는 것을 ‘승륙(陞六)’이라 한다.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참하관(參下官)은 7품 이하를 말한다.

48 《실록》연산 12년(1506) 1월 6일 기사에 관계 개혁을 하면서 혜민서참봉 2원(員)을 없앴다. 이는 중종반정 이후 복설된 듯하다.

49 《승정원일기》숙종 15년(1669) 윤3월 17일 기사

50 산료(散料) : 관원의 녹봉을 춘·하·추·동 사철의 첫 달에 지급하던 것을 월별로 나누어 주던 일을 말한다.

시)⁵²에 응시하도록 해 주어 그 공로를 보상한다.⁵³,

活人署參奉 二員 以上並從九品. 分差東西署, 掌救活都城病人. ○直長以下八員, 以兩都目取材分數, 第次付祿, 並遞兒職. 主簿一員, 久任職. 出《大典》,

활인서참봉 2원⁵⁴ 이상은 모두 종9품이다. 동활인서와 서활인서에 나누어 임명하여 도성의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관장한다. ○직장 이하 8원은 양도목에서 취재 점수를 가지고 차례대로 녹봉이 있는 관직에 붙이는데 모두 체아직이다. 주부 1원은 구임직⁵⁵이다. 출전 《경국대전》.⁵⁶,

教授 二員 掌敎訓聰敏及凡諸課講等事. 一員文官兼, 今廢. ○中廟朝, 鄭北窓疊, 以曉解醫藥, 朝廷薦

51 장무관 : 직접 사무를 하는 관원이다.

52 회시(도목회시) : 매년 음력 6월과 12월 도목(都目)의 기일이 되기 전에 보는 취재를 말한다. 매 도목(6개월)마다 치루는 시험이라 회시(回試)라 하였다. 도목회시(都目回試)라고도 한다. 6개월 내에 무록(無祿, 녹봉을 받지 않음)으로 근무일수가 백일을 넘어야 취재를 볼 수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급을 받은 경우와 기복 등의 경우에 한해서 백일을 넘지 않아도 응시가 가능했다. 본문의 <녹시祿試>에 상세하다. 《통문관지》<연혁·녹취재祿取才>를 보면 신은(新恩)으로 취재에 직부(直赴)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으로 취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회 균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녹봉을 받는 녹직(祿職)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회시(回試)를 허가하는 일은 실제로 보상으로서 의미가 커졌다. 《각사수교》를 보면 이미 취재를 거쳤을 경우 오래 쌓인 전의 근무 일수는 일절 적용하지 않았다. 《각사수교》는 명종 1년 (1546)부터 선조 9년(1576)사이의 수교를 모은 법령집이다.

53 《서운관지》<취재>에 관상감의 장무관(掌務官)의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다. 관상감은 영조 45년(1769)에야 장무관 1원을 두었는데, 구임관의 사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고, 시임녹관(時任祿官)으로 임명하며 6개월이 되면 교체하고 회시(回試)를 허락했다. 본문 중에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다른 내용의 유사성을 볼 때에 혜민서의 장무관도 6개월의 교체주기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54 《실록》 세조 12년(1466) 1월 15일 기사를 보면 기존의 동서활인원이 동서활인서로 개칭되면서 참봉 각 1원씩을 처음 두었다.

55 구임직 : 해당 업무에 숙달되도록 임기가 보장되는 직임이다. 3년의 임기가 끝나고 체직될 때에도 왕의 윤허 없이는 이동시키지 않았다.

56 《경국대전》<이전吏典·경관직京官職>에 나온다. 혜민서는 직장(直長) 이상 1원을 구임으로 한 내용만 다르다. 18세기에는 구임관이 주부(主簿)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보수교집록》<이전·경관직>을 보면 영조 3년(1727)의 옹정정미승전(雍正丁未承傳)을 보면 긴요한 관사의 관원이 구임하는 것은 30개월을 기한으로 삼았다.

爲教授。出《北窓集》，

교수 2원 총민(聰敏)을 가르치는 일 및 온갖 시험 등의 일을 관장한다. 1원은 문관이 겸했는데 현재는 없었다.⁵⁷ ○중종(中宗) 조에 북창(北窓) 정렴(鄭礪)⁵⁸이 의학에 환히 통달하고 있다고 하여 조정에서 천거하여 교수가 되었다.⁵⁹ 출전 《북창집》，

治腫教授 一員 並從六品。掌醫治民庶瘡腫。仕滿四十五朔，遷傳。○舊例內局醫監輪差，乾隆辛巳，以三醫司，通同輪差事，筵奏定式。出《本署臘錄》，

치종교수 1원 모두 종6품이다. 백성의 종창 치료를 관장한다. 임기 45개월을 채우면 옮겨간다.⁶⁰ ○옛 규례에 내국(내의원)과 전의감에서 교대로 임명하였는데, 건륭 신사년(1761)에 삼의사가 함께 교대로 임명하는 것으로, 연석에서 아뢰어 정식으로 삼았다.⁶¹⁶² 출전 《혜민서등록》，

訓導 一員 正九品。掌教訓生徒及醫女等事。康熙庚戌減。丁卯復置。乙亥裁減時，以散料磨鍊。○以上主簿·教授·訓導並仕滿三十朔遞，而或長望，或廳圈，或試材，或勸獎廳畫居首者差出。

훈도 1원 정9품이다. 생도 및 의녀를 가르치는 일 등을 관장한다. 강희 경술년(1670)에 없앴다.

57 《속대전》〈이전吏典·경관직京官職〉(1746년)에서 의학교수 1원을 줄였다.

58 북창(北窓) 정렴(鄭礪) : 1506-1549.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사결(士潔), 호는 북창으로 좌의정 정순봉(鄭順朋)의 장남이다. 1537년 식년시 생원시에 급제하여 혜민서 교수, 포천현감을 지냈다. 북창공파 17세이다. 시문집 《북창집》 1책이 전한다.

59 《실록》 중종 39년(1544) 11월 3일 기사에 정렴을 혜민서 교수로 추천하는 내용이 있다.

60 《신보수교집록》〈이전(吏典)·경관직〉의 경종 4년(1724)의 응정갑진승전(雍正甲辰承傳)을 보면 ‘觀象監教授，吏學官，以四十五朔，遷轉，治腫教授，亦依此例.’라는 기록이 있다.

61 《승정원일기》 숙종 29년(1703) 11월 5일 기사를 보면 치종교수(治腫教授)가 전의감 소속이지만 실제는 내의원 소속이라는 내용이 나오며, 숙종 38년(1712) 4월 18일 기사에서는 당초에 전의감 소속이었다가 중간에 내의원으로, 그 후 전의감으로 환속되었다가 다시 내의원으로 복귀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치종교수의 소속 문제는 복잡한 변천사를 보인다. 영조 36년(1760) 4월 6일 기사에 삼의사에서 교대로 하자는 방안이 처음 나온다. 《혜국지》를 보면 실제 시행은 한 해 뒤로 보인다.

62 《승정원일기》 숙종 30년(1704) 6월 25일 기사를 보면 치종교수는 30개월이면 6품으로 승진이 보장되는 혜택이 있었다. 치종교수 인선은 의관 직임에도 예조가 아닌 이조에서 인사 행정을 했다. 이조 인사 기록인 《정사책政事冊》에도 임기를 채운 치종교수에 대한 인선 사례가 네 차례 나온다.

정묘년(1747)에 다시 두었는데, 을해년(1755)에 해아려 줄일 때 산료(散料)로 마련하였다. ○이상 주부, 교수, 훈도는 모두 임기 30개월을 채우면 교체하는데, 장망(천망에서 으뜸) 혹은 청권⁶³ 혹은 시재 혹은 권장청의 성적 합산 결과 수석을 차지한 자를 차출한다.

위직(衛職)

副司果 一員 萬曆癸丑, 趙相國挺提擧時, 爲勸課年少聰敏, 啓稟設置, 四等輪付. 丙子亂後權減, 康熙己酉, 洪相國重普提擧時, 入啓復設,

부사과⁶⁴ 1원 만력 계축년(1613), 상국(相國) 조정(趙挺)⁶⁵이 제조로 있을 때 연소총민을 권면하기 위해 계품하여 설치하고 4등까지 돌아가며 부사과에 부쳤다. 병자란 이후로 임시로 줄였다가, 강희 기유년(1669) 상국 홍중보(洪重普)⁶⁶이 제조로 있을 때⁶⁷ 입계(入啓)하여 다시 설치하였다.

副司勇 一員 治腫鍼醫祿窠, 掌醫民庶瘡腫事. 舊無瓜限, 中間依敎訓.

부사용⁶⁸ 1원 치종침의⁶⁹에게 녹봉을 주는 자리로, 백성의 종창을 치료하는 일을 관장한다. 과거에는 임기가 따로 없었는데 중간에 교훈에 의거하여 정하였다.

63 청권 : 청권점. 관서(官署)에서 행하는 권점제를 말한다. 추천권을 가진 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비 후보자 이름을 벌려 놓고 이를 아래에 등근 점을 찍어 후보자를 추린다.

64 부사과 :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6품 서반 벼슬이다.

65 상국(相國) 조정(趙挺) : 1551-1629. 본관은 양주(楊洲), 자는 여호(汝豪), 호는 죽천(竹川)으로 진사 충수(忠秀)의 차남이다. 1583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광해 조에 우의정을 지냈다. 문강 공파 10세이다. 상국은 정승을 부르는 다른 말이다.

66 상국 홍중보(洪重普) : 1612-1671.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원백(遠伯)으로 감사 명구(明耆)의 독자이다. 1645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현종 조에 우의정을 지냈다. 당홍계 남양군파 24세 이다.

67 《승정원일기》 현종 10년(1669) 1월 11일 기사. 홍중보가 제조가 되었다.

68 부사용 :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9품 서반 벼슬이다.

69 치종침의 : 《육전조례》에 위직(衛職)과 별개로 침의(鍼醫)를 두고 있어 본문의 치종침의와 혜민 서침의는 별개이다.

외임(外任)⁷⁰

審藥 從九品。掌看審進上藥材與士庶軍兵救療等事。兩都目，取材分數，祿官之次者差。出《大典》。並仕滿十六朔而遞，自下批日計閏，只四百八十日。○舊例，兩醫司，只以瓜滿，次第分差，每有厚薄不均之弊。乾隆乙酉，始依月令例兩醫司輪回交差事，論報備局，定式。出《備局騰本》及《本署騰錄》。

심약 종9품이다. 진상 약재를 자세히 살피는 일과 일반 백성, 군병(軍兵)에 대한 치료 등의 일을 관장한다. 양도목(兩都目)에서 취재 접수가 녹관 가운데 차등인 자를 차출한다. 출전 《경국대전》⁷¹. 모두 임기 16개월을 채우고 나서 체직되는데, 하비(下批)⁷²한 날부터 윤달까지 계산하여 단지 480일이다. ○옛 규례에는 양의사에서 임기 만료가 될 때에만 순서에 따라 나누어 차임하였기에, 매양 넉넉하고 모자람이 균등치 못한 폐단이 있었다.⁷³ 건륭 을유년(1765)에야 비로소 월령의(양도월령의)의 규례대로 양의사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임명하는 일을 비국(비변사)에 논보⁷⁴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다.⁷⁵ 출전 《비국등본(비변사등록)》 및 《혜민서등록》.

京畿監營 一員 取材等第時，付於諸道審藥之下·月令救療官之上，周年遞。○中間減復無常，而康

70 도성 바깥에서 근무하는 직임에 대해 설명하는 조문이다.

71 《경국대전》〈이전吏典·경관직京官職〉에 외임(外任)은 체아직 녹관 다음이라 나온다.

72 하비(下批) : 관원이 제수된 뒤에 전조(銓曹)에서 거행하는 인사 행위를 말한다. 관원의 이력 등을 적은 하비 단자(下批單子)를 올려 계하(啓下)받거나,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기도 한다. 하비가 끝나면 교지(教旨)가 작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 관원의 임명 절차를 살펴보면, ① 전조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올리고 ② 왕이 낙점을 하고 ③ 전조에서 하비(下批)한 뒤에 ④ 최종적으로 교지(教旨)가 내려진다.

73 예를 들어 과거에는 A심약이 임기가 만료되어 혜민서에서 임명하였으면 다음 B심약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전의감에서 임명하였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뇌물을 써서 임임(仍任)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하게 양의사에 배분되지 못하였다. 이를 바꾸어 A심약의 전임자가 전의감 출신이면 혜민서에서, 혜민서 출신이면 전의감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74 논보 : 아래 관청에서 상부 관청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일을 뜻한다.

75 《육전조례》〈예전禮典·전의감〉을 보면 원등제(元等第) 30원은 감영(監營) 심약으로 신등제(新等第) 30원은 병영(兵營) 심약으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있다. 기존에 《의등제보醫等第譜》에 기록된 ‘元’, ‘新’ 등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설이 없었는데, 본문 〈녹시〉에서 원등(元等)을 제 1도목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있어 의문이 풀린다. 즉 원등(元等)은 6월의 첫 도목, 신등(新等)은 12월의 두 번째 도목 등제(等第)를 지칭한다.

熙己卯復，庚辰革，

경기감영 1월 취재하여 등제⁷⁶할 때 제도심약의 아래, 월령의(양도월령의)와 구료관(통영구료관)의 위에 붙이는데, 1년 단위로 체직된다. ○중간에 줄였다 복구한 것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강희 기묘년(1689)에 복구했다가 경진년(1700)에 혁파했다.

洪忠監營 一員 二三九十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內局, 正四五七月令, 陪持領納.

兵營 一員 無進上, 只管營中救療藥物,

홍충감영⁷⁷(충청감영) 1월 2·3·9·10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내국에 영납(통솔하여 거두어 바침)하고, 1·4·5·7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⁷⁸가 영납한다.⁷⁹

홍충병영 1월 진상은 하지 않고, 단지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한다.

慶尙監營 一員 二三九十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內局, 四五六七八臘月令, 陪持領納,

左兵營 一員 無進上, 只管營中救療藥物,

右兵營 一員 上同. ○康熙庚申, 本道兵使啓聞, 始罷, 丙寅復置,

경상감영 1월 2·3·9·10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4·5·6·7·8·12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경상좌병영 1월 진상은 하지 않고, 단지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한다.

경상우병영 1월 앞과 동일하다. ○강희 경신년(1680)에 본도의 병마절도사가 계문하여 잠시 없어졌다가, 병인년(1686)에 다시 두었다.

全羅監營 一員 二三九十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內局, 正四五七八臘月令, 陪持領納,

兵營 一員 無進上, 只管營中救療藥物,

76 등제 : 등제는 취재에서 우등자를 선발하여 관직에 나갈 서열을 정하는 일, 또는 그 서열, 그 서열에 든 사람, 그 서열에 든 사람이 맡는 자리 등을 의미한다.

77 홍충감영 : 《실록》 정조2년(1778) 7월 30일 기사. 공주(公州)가 대역죄인의 출신지인 까닭으로 공충도(公忠道)에서 공주에 해당하는 '公'을 '洪'으로 바꾸었다. 공충도는 현재의 충청도이다.

78 배지 : 지방에서 장계를 가지고 한양으로 파송되는 이를 뜻한다.

79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서는 심약은 대령(大令) 때, 배지는 소령(小令) 때로 구분하고 있다.

전라감영 1월 2·3·9·10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1·4·5·7·8·12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전라병영 1월 진상은 하지 않고, 단지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한다.⁸⁰

濟州 一員 八月令及歲抄進上藥材, 陪持領納. ○康熙己丑, 因巡撫御史⁸¹李海朝書啓, 改以二周年爲瓜,

제주목 1월 8월 월령 및 세초(歲抄)⁸²의 진상 약재를 배지가 영납한다. ○강희 기축년(1709)에 순무여사⁸³ 이해조(李海朝)⁸⁴의 서계⁸⁵를 인하여 임기를 2년으로 고쳤다.

黃海監營 一員 二三八九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內局, 五十一月令, 陪持領納,
兵營 一員 舊有進上, 今無, 只管營中救療藥物,

황해감영 1월 2·3·8·9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5·11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황해병영 1월⁸⁶ 과거에는 진상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단지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 한다.

江原監營 一員 三十月令進上藥材, 審藥與差使員, 眼同領納內局, 臘月令, 差使員領納, 五八月令,

80 이상 삼남(三南)의 약재 진상은 정조 계축년(1793)에 일시적으로 반으로 줄였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

81 史 : 원본에는 史로 되어 있으나 관직명으로는 使가 맞다.

82 세초(歲抄) : 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원의 공과, 포상 따위를 상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죄명의 경우 파직 이상의 죄명을 써넣어서 서용되기를 기다린다.

83 순무여사 : 지방에 변란이나 재해가 있을 때 파견되어 진정하는 역할을 하는 임시직이다.

84 이해조(李海朝) : 1660-1711.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동(子東)으로 대제학 일상(一相)의 아들이다. 1702년 알성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제학, 전라감사를 지냈다. 판소부감공계 관동파 16세이다.

85 서계 : 임금의 명령을 받은 관료의 복명을 뜻한다.

86 《경국대전》〈이전吏典·외관직外官職〉을 보면 황해병영의 심약은 따로 없었다. 이는 황해병영과 감영이 둘 다 해주에 있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대전통편》〈이전吏典·외관직外官職〉에 황해절도영심약이 1원이 증원되어 보인다. 그러나 경기심약이 감원되었기에 제도심약(諸道審藥)은 동일하게 16원이다.

陪持領納. ○乾隆庚辰, 三月令進上, 因閑散人等訴, 作貢京納,

강원감영 1월 3·10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과 차사원(差使員)⁸⁷이 함께 내국에 영납하고, 12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차사원이 영납하며, 5·8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건륭 경진년(1760)에 3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한산인(閑散人)⁸⁸ 등이 하소연한 까닭으로, 경공(京貢)으로 만들어 납부하기로 하였다.

咸鏡監營 一員 三五十月令進上藥材, 陪持領納內局,

南兵營 一員, 北兵營 一員 並正七月令進上藥材, 審藥領納,

함경감영 1월 3·5·10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내국에 영납한다. 함경남병영 1원,

함경북병영 1원 모두 1·7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심약이 영납한다.

平安監營 一員, 兵營 一員 月令同上, 陪持領納.

평안감영 1원, 평안병영 1원 앞과 동일한 월에 배지가 영납한다.

○月令 主士庶·軍兵救療等事. 以取材分數審藥之次者, 兩醫司輪回交差. 周年而遞, 自望差日, 不計閏爲瓜.

○월령(月令)⁸⁹ 일반 백성과 군병(軍兵)에 대한 치료 등의 일을 주관한다. 취재 점수가 심약의 다음인 자를 양의사에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임명한다. 1년 임기로 교체되는데, 후보자를 뽑아 임무를 맡긴 날부터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임기를 삼는다.

開城府 一員 無進上, 只管營中救療藥物. ○中間或革或復, 乾隆庚辰, 留守南泰齊狀達, 蘇完問權減,

개성부 1원 진상은 하지 않고, 다만 군영 중의 구료와 약물을 관장한다. ○중간에 혹 혁파하기도 하고 복구하기도 했다가 건륭 경진년(1760)에 유수(留守)⁹⁰ 남태제(南泰齊)⁹¹가 장계로 아뢰어

87 차사원(差使員) :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차출되어 임명되는 관원이다. 여기서는 약재 겸수를 위해 임명된 약재차사원을 지칭한다. 관찰사가 해당 도의 수령이나 칠방 중에서 임명하여 도성으로 보냈으므로 심약보다 고위직이다.

88 한산인(閑散人) : 직무가 없이 관계를 가진 관원을 뜻한다.

89 월령(月令) : 강화부와 개성부에 각 1원씩으로 강화부는 강도(江都), 개성부는 송도(松都)로도 불리어서, 이 둘을 양도월령(兩都月令)으로 부른다. 이러한 예가 <녹시>에도 보인다.

90 유수(留守) : 임금을 대신하여 머물러 지킨다는 뜻으로 긴요한 지역에 3품 이상을 임명하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임시로 줄였다.⁹²,

江華府 一員 職掌上同. ○中間或革或復, 乾隆甲戌, 典醫監提調李鼎輔筮奏復置.

강화부 1월⁹³ 직임의 관장은 위와 같다. ○중간에 혹 혁파하기도 하고 복구하기도 했다가 건륭 갑술년(1754)에 전의감 제조 이정보(李鼎輔)⁹⁴가 연석에서 아뢰어 다시 설치하였다.

○救療官 職掌及差遞同月令,

○구료관 직임의 관장 및 임명, 체직은 월령의와 동일하다.

統營 一員 七月令, 進上藥材, 陪持領納. ○以上諸道, 進上藥材, 種數斤兩, 詳載《本署⁹⁵》及《內局騰錄》.

통영 1월⁹⁶ 7월의 월령 진상 약재는 배지가 영납한다. ○이상의 각 도에서 진상하는 약재의 종수(種數)와 무게는 본서의 《혜민서등록》 및 《내국등록內局騰錄》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按《本署騰錄》, 崇德戊寅, 因本署牒呈, 兩醫司交差審藥, 不得越次謀占, 及非次薦狀, 勿爲舉行事, 禮曹入啓, 蒙允. ○己卯, 因兩醫司官員李大榮等上言, 納藥內局, 罷占審藥者, 一切禁斷事, 吏曹粘啓, 蒙允 ○順治戊戌, 因江原監司狀啓, 本道審藥仍任事, 禮曹覆啓, 防塞請推監司. ○辛丑, 因全羅監司狀啓, 本道審藥李衡精, 納米

보내던 고을의 수령이다. 경기도의 강화, 광주, 수원, 강원도의 춘천이 유수부였다.

91 남태제(南泰齊) : 1699-1776.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공조좌랑 필명(弼明)의 독자이다. 1727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를 지냈다. 1760년에는 개성부유수였다. 충간공파 18세이다.

92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8월 10일 기사.

93 《육전조례》〈예전(禮典)·전의감〉을 보면 강화부월령을 ‘統禦營審藥’으로 지칭하고 있다. 강화부 교동에는 수군 통어영이 있었다.

94 이정보(李鼎輔) : 1693-1766.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참판 우신(雨臣)의 차남이며 감사 이해조의 종손(從孫)이다. 1732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영조 조에 좌참찬, 이조판서를 지냈다. 판소부감공계 관동파 18세이다.

95 署 : 원문에는 道로 되어있으나 내용상 署로 수정한다.

96 《육전조례》〈예전(禮典)·전의감〉을 보면 통영구료관을 ‘통제영심약(統制營審藥)’으로 지칭한다. 경상도 통영에는 수군 통제영이 있었다.

五十石, 於救荒廳, 請爲仍存事, 禮曹覆啓, 防塞. ○同年, 因本署提調吳竣箚辭, 八道審藥, 切勿仍任事, 禮曹覆啓, 蒙允. ○康熙庚申, 因本署牒呈, 兩都月令, 以兩醫司時仕人員, 差送事, 禮曹入啓, 蒙允. ○癸未⁹⁷, 因開城留守狀啓, 本府月令, 仍任事, 禮曹覆啓, 防塞, 請推留守. ○乾隆癸未, 全羅道審藥玄道泰, 監司朴宗德, 移閔汰去, 因本署回移, 勿施. ○同年, 領議政洪鳳漢, 以各道審藥, 毋得任意汰去事, 筵奏蒙允.

본서의 《혜민서등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송덕 무인년(1638)에 본서의 첨정으로 인하여 양의사가 교대로 심약을 임명하는데, 차례를 뛰어 넘어 자리를 차지하거나 차례가 아닌 추천은 거행하지 않도록 예조에서 입계하여 윤허를 얻었다. ○기묘년(1639)에 양의사 관원인 이대영(李大榮)⁹⁸ 등의 상언으로 인하여 내국으로 약을 들여서 심약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부 금지하도록 이조에서 점계(粘啓)하여 윤허를 얻었다. ○순치 무술년(1658)에 강원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본도의 심약을 임임하는 일은 예조에서 복계하여 막고 감사를 청추(請推)⁹⁹하였다. ○신축년(1661)에 전라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본도심약인 이형정(李衡精)¹⁰⁰이 쌀 50가마니를 구황청(救荒廳)에 바쳐서 재차 임명되는 일은 예조에서 복계하여 틀어막았다. ○같은 해 본서 제조 오준(吳竣)의 차사(箚辭)로 인하여 8도의 심약은 절대로 임임시키지 않도록 예조에서 복계하여 윤허를 얻었다. ○강희 경신년(1680)에 본서의 첨정으로 인하여 양도월령의는 양의사의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 차송하는 일을 예조에서 아뢰서 윤허를 얻었다. ○계미년(1703) 개성유수의 장계로 인하여 본부월령의를 임임하는 일은 예조에서 복계하여 틀어막고 유수를 청추하였다. ○건륭계미년(1763)에 전라도심약

97 癸未 : 원문에는 ‘癸未’가 앞 문장 뒤에 있는 오류가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뒷문장 앞으로 옮겨서 번역하였다.

98 이대영(李大榮) : 1605년에 증광시의과에 급제하여 전의감정을 지냈다. 박훈평. op.cit. p.301.

99 청추(請推) : 공무상 잘못이 있는 벼슬아치에 대하여 추문하고 고찰하는 것을 청하는 일이다.

100 이형정(李衡精) : 숙종조에 의약동참의를 지낸 이이정(李以楨)의 아버지로 후에 도화서별제를 지냈다.

현도태(玄道泰)¹⁰¹를 감사 박종덕(朴宗德)이 관문을 보내어 직무에서 쫓아내려 했는데 본서의 회이(回移)로 인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같은 해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각도의 심약은 임의로 직무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일을 임금한테 아뢰어서 윤허를 얻었다.

원적(原籍)

前御 舊有定額, 京居五十員, 鄉居五十員. 康熙戊寅, 自查整廳, 汰減鄉居, 後京居, 今無定額.

전함 예전의 정해진 수는 한양에 거주하는 50원, 지방에 거주하는 50원이었다. 강희 무인년(1698)에 스스로 조사하여 전함청을 정리할 때에 지방 거주 인원을 줄였고, 뒤에 한양에 거주하는 인원도 줄여서 지금은 정해진 수가 없다.

出身 登醫科者, 無定額.

출신 의과에 급제한 이로 정해진 수는 없다.

生徒 《大典》, 額數三十人, 而康熙己酉, 洪相國重普提舉時, 入啓, 加出四十人, 戊寅, 自查整廳, 汰減八人.

생도 《경국대전》에서는 30인이 정원이었는데, 강희 기유년(1669) 상국(相國) 홍중보(洪重普)가 제거 때에 아뢰어서 더하여 40인으로 하였다가, 무인년(1698)에 스스로 조사하여 전함청을 정리 할 때에 8인을 줄였다.

관사(官舍)¹⁰²

署 在南部大平坊, 出《輿地勝覽》.

혜민서 남부(南部) 대평방(大平坊)에 위치한다. 출전 《여지승람輿地勝覽》.¹⁰³

101 현도태(玄道泰) : 1735년 증광시의과에 급제하여 혜민서주부를 지냈다. 박훈평. op.cit. p.301.

102 혜민서 관청 건물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103 《통문관지》를 보면 먼저 ‘본원(本院)’이라 하여 관청의 도성내 위치를 설명하고, 대청 같은

大廳 十間內, 南上房一間, 南夾抹樓房一間, 西退二間, 廳六間. 戊坐辰向. 創建未詳年紀.

대청 10칸인데 그 중에 남상방(南上房) 1칸, 남쪽 마루방(南夾抹樓房) 1칸, 서퇴(西退) 2칸, 청(廳) 6칸이 있다. 술좌진향(戊坐辰向)¹⁰⁴ 방향이다. 처음 세워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다.

庫 二間半.

창고 2칸 반이다.

抹樓房 二間內, 一間書員房, 一間庫子房, 附在大廳北.

마루방 2칸인데 그 중에 1칸은 서원방이고 1칸은 고지기방으로 대청 북쪽에 붙어있다.

前御廳 在大廳南, 廳四間半, 房一間半, 廚一間.

전함청 대청 남쪽에 있는데, 청 4칸 반, 방 1칸 반, 부엌 1칸이다.

符君祠 三間, 在大廳西北, 蓮池北.

부군사 3칸인데 대청 서북쪽에 있고 연지(蓮池)의 북쪽이다.

廁間 一間, 在大廳西南隅.

화장실 1칸인데 대청 서남쪽 모퉁이에 있다.

馬廐 一間, 在廁東, 今廢作空間.

마굿간 1칸으로 화장실 동쪽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빈 공간이다.

中門 一間, 在大廳東.

중문 1칸인데 대청 동쪽에 있다.

夾門 附在中門南 ○舊無夾門, 中間創丘, 以別參上參下官, 出入.

쪽문 중문 남쪽에 붙어있다. ○예전에는 쪽문이 없었는데 중간에 생겼으며, 침상관과 침하관을 구별하여 출입한다.

각 건물에 대해 기술한다. 혜민서는 《궁궐지宮闈志》를 보면 남부(南部) 태평방(太平坊, 현재의 종구 을지로2가)에 위치했다.

104 (戊坐辰向) : 집터가 서북쪽을 등지고 동남쪽을 바라본다는 말이다.

公事門 一間. 在大廳東南隅, 前廊廳東. ○康熙甲申, 趾齊閣尚書鎮厚提舉時, 捐出官參價四百兩及司圃署米九石, 修補,

공사문 1칸이다. 대청의 동남쪽 모서리, 전합청의 동쪽에 있다. ○강희 갑신년(1704), 상서(尚書) 지재(趾齋) 민진후(閔鎮厚)¹⁰⁵가 제거(제조)로 있을 때¹⁰⁶에 관삼(官蔴)¹⁰⁷ 값 400냥 및 사포서¹⁰⁸의 쌀 9섬을 덜어 내어 보수하였다.

大門 一間,

대문 1칸이다.

左右夾廊 二間. 在大門左右夾路傍. 今入閭家, 未詳年紀,

좌우협랑 2칸이다. 대문 좌우 좁은 길의 옆에 있다. 현재 여염집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典賣廳 舊例受銀戶曹, 貿易唐材, 以補萬民救療之需, 定廳官句管. 中間廢. ○廳三間, 房一間半. 在前廊廳南大路傍. 乾隆甲申, 公廨修葺時, 斥賣補用,

전매청 옛 규례에 호조에서 은을 받아 중국산 약재를 무역하여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수요를 보충하였는데, 청의 관리를 정해 사무를 맡아왔다. 중간에 없앴다. ○청은 3칸이고 방(房)은 1칸 반이다. 전합청 남쪽, 대로의 옆에 있었다. 건륭 갑신년(1764) 관청을 수리할 때, 싸게 팔아 수리 비용을 보태었다.

醫女廳 在大門內北. 瓦家三間 · 草家三間. 舊《志》, 賢人郭之堅入接云,

의녀청 대문 안 북쪽에 있다. 기와집이 3칸, 초가집이 3칸이다. 옛 《혜국지》¹⁰⁹에는 공인 곽지견(郭之堅)이 들어가 살았다고 한다.

105 민진후(閔鎮厚) : 1659-1720.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지재(趾齋)로 여양부원군 유중(維重)의 장남이다. 1686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 공조판서를 지냈다. 삼방파 21세이다.

106 《승정원일기》 숙종 29년(1703) 10월 13일 기사. 민진후가 제조가 되었다.

107 관삼(官蔴) : 호조에서 관리한 인삼을 뜻한다.

108 사포서 : 왕실 소속의 원포(圓圃)와 채소 재배를 관장하던 관청이다. 원포란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심는 밭을 말한다.

109 《혜국지》 : 강위빙이 처음 저술한 《혜국지》를 말한다.

惠民樓 在蓮池南·大路北。古傳層樓屹立路傍，壬辰亂後廢，

혜민루¹¹⁰ 연지(蓮池)의 남쪽, 대로의 북쪽에 있었다. 옛날 전해 내려오는 말에는 층루가 길가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임진란 이후에 무너졌다고 한다.

池 在大廳西，東西三間半·南北四間半，

연지 대청 서쪽에 있는데 동서로 3칸 반이고, 남북으로 4칸 반이다.

基址 古傳基址一千間，迎華使時右山車，來造於本署，可想其廣闊，而今存官舍所坐，外空塈二百餘間，而又閭家入接塈一百七十五間，其餘累經兵燹，無可憑考，良可憐惜，

기지 옛날 전해 내려오는 말에 기지가 1000 칸인데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 귀한 산거(山車)¹¹¹를 본서에 와서 만들었다고 하니 그 광활함을 상상해 볼 수 있으나 지금은 관사가 있던 자리만 남아 있고, 바깥 공터가 200여 칸에, 또 여염집이 들어와 붙어 있는 터가 175칸이고 나머지는 여러 차례 병화를 겪어 균거하여 상고할 수 없으니 참으로 슬프고 애석하도다.

直房 在中部瑞麟坊。乾隆甲申，公廨修葺時，斥賣補用。

직방¹¹² 중부 서린방¹¹³에 있었다. 건륭 갑신년(1764) 관청을 수리할 때 짜게 팔아 수리 비용을 보태었다.

110 혜민루 :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8월 11일 기사. 혜민서제조 한광회(韓光會)의 말에서 혜민루의 용도에 대해 추측이 가능하다. ‘古有惠民樓，民有病，來告者，劑藥以給矣，其法之不行，久矣，而其後貢價，亦多減損矣。’

111 산거(山車) : 침향산(沈香山)이라고도 한다. 향약 궁중무를 출 때 쓰는 산 모양의 기구로 일종의 가설무대이다. 세종 때에 왕비가 온천에서 돌아올 때에 기생이 침향산을 설치해 맞이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침향산 자체는 무대 장치를 단순히 지칭하는 말이지만 (《실록》 세종 22년(1440) 4월 26일 기사 참조) 국가적인 사용례를 보면 종묘에 제례하거나, 친접(親疎)하고 나서 환궁할 때에 사용되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전통이 단절되었다가 광해군(光海君)이 다시 복원하여 종묘에 제례하고 환궁할 때에 사용되곤 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예조(禮曹)의 정에 의해 네거리에서 불태워 없어졌고 이후 다시 단절되었다. 《실록》 인조 1년(1623) 3월 25일 기사.

112 직방 : 조회 시간을 기다릴 때에 관아별로 기다리는 장소를 뜻한다.

113 서린방 : 현재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이다.

2. 솔속(率屬)

凡三條.

모두 3조문이다.

원역(員役)¹¹⁴

書員 二人. 出《大典》. 今減一人,

서원 2인이다. 출전 《경국대전》¹¹⁵. 지금은 1인을 줄였다.¹¹⁶,

庫直 二名. 舊例一名, 謂之萬民救療庫子. 今減,

고지기¹¹⁷ 2명이다. 옛 규례에는 1명으로, 만민을 구료하는 창고의 지기라 일컬어진다. 지금은 줄였다.¹¹⁸,

分撥使令 三名. 署中使喚等事擔當. 草藥契及蓼契分半雇立,

분발¹¹⁹ 사령 3명이다.¹²⁰ 혜민서의 사환 등의 일을 담당한다. 초약계(草藥契)¹²¹ 및 삼계(蓼契)에서 반씩 나누어 고립¹²²한다.

軍士 一名. 自兵曹定給. 康熙辛亥, 減,

114 혜민서에 근무하던 이속과 하인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115 《경국대전》〈이전吏典 · 경아전京衙前〉을 보면 서리(書吏)로 되어 있고 2명이다.

116 《속대전》〈이전吏典 · 경아전京衙前〉에 서원(書員)이 1명이다. 이후 고종 조까지 유지된다.

117 고지기 : 《공폐貢弊》〈혜민서고지기惠民署庫直〉에 따르면 고지기는 본래 요포 없이 관깃(官衿) 공물을 책응하였다. 약전에 초재(草材)를 심어 여러 상사(上司)에 진배하는 역할도 하였다.

118 《육전조례》〈예전(禮典) · 혜민서〉에도 한 사람으로 되어있다.

119 분발 : 소식을 전달하는 파발이다.

120 《육전조례》〈예전(禮典) · 혜민서〉(1867년)에는 5명으로 되어 있다.

121 초약계(草藥契) : 본문에서 ‘계(契)’는 공계(貢契)를 말한다.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을 납부하는 공인들이 조직하였다. 초약계(草藥契)라 하면 초약을 담당한 공인들이 조직한 계이다.

122 고립 :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부역하게 함을 뜻한다.

군사 1명이다.¹²³ 병조에서 정해진 급료를 받는다. 강희 신해년(1671)에 줄였다.

色丘 二名. 乾隆戊戌, 以官麥價雇立, 分差於兩提調,

색구¹²⁴ 2명이다. 건륭 무술년(1778)에 관삼(官麥)¹²⁵ 값으로 고립하여 두 제조에게 나누어 차임하였다.

丘從 二名. 舊以官麥價雇立. 分差於提調及久任. 中間減, 乾隆戊戌, 復置, 分差於兩提調,

구종 2명이다. 예전에 관삼 값으로 고립하여 제조 및 구종(久任)에게 나누어 보냈다. 중간에 줄였다가 건륭 무술년(1778)에 다시 두어 두 제조에게 나누어 차임하였다.

貢人 貢物互相買賣故主人. 無定數.

공인 공물을 서로 사고파는 까닭으로 주인이라고도 한다. 정해진 수는 없다.

의녀(醫女)

醫女 舊有七十名. 乾隆庚午, 減三十名, 戊戌, 又減九名. ○分左右番, 主婦女看病與內局及諸上司攢藥等事. 三南江原四道列邑中官婢·年少可合者擇定, 令原籍官定給六保奉足·復戶一結. ○舊例有闕, 則自其番聞見望定, 而其父母·年歲·居住, 本署具錄, 報于禮曹. 禮曹粘啓, 選上. 乾隆丁酉, 洪尙書樂純提舉時, 直閔該道該邑選上. ○內醫女有闕, 則以本署將來醫女中成才者, 陞差, 自內局退來者, 還屬本署. ○治腫癰, 定送五名, 庚午, 減數後革. ○進上臘藥時, 教授訓導, 領付內局. 常時進御藥, 教授領付. 啓下藥, 訓導領付. 豐呈及嘉禮各色差備待令時, 教授訓導領去. ○每式年, 刑曹推刷時, 錄其生產物故, 訓導領去. ○內局日次, 每二名, 限三日, 輪差定送. ○色掌, 每朔, 一名式, 左右番輪差, 掌各處差役. ○年滿六十老除, 若成才者, 勿許.

의녀 과거에는 70명이었다.¹²⁶ 건륭 경오년(1750)에 30명을 줄이고, 무술년(1778)에 다시 9명

123 《육전조례》〈예전(禮典)·해민서〉에도 인원은 동일하다. 색구와 구종의 인원도 그러하다.

124 색구 : 시중드는 하인들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25 관삼(官麥) : 호조에서 관리하는 인삼이다.

126 《실록》 태종 6년(1406) 3월 16일 기사.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허도(許衡)가 아뢰어 제생원에 처음 두었다. 당시는 창고와 각사의 동녀(童女)에서 택했다. 태종 18년(1418) 6월 21일 기사. 처음에는 7명이었는데 이 때 이르러 10명을 더 늘렸다.

을 줄였다. ○좌우 번으로 나누어 부녀를 간병하고 내국 및 여러 상급 관청의 찬약(攢藥) 등의 일을 주관한다. 삼남(경상, 전라, 흥충)과 강원 4도(道)의 여러 고을 관노비 중에서 나이 어리면서¹²⁷ 합당한 이를 택하여 정하고 원적(原籍) 관청으로 하여금 6보인(保人)의 봉족(奉足)¹²⁸, 복호¹²⁹ 1결을 정해 주게 한다. ○옛 규례에는 결원이 생기면 번을 선 이들의 의견을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그 부모, 나이, 거주지를 본서에서 모두 기록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 점계(粘啓)하여 뽑아서 올린다. 건륭 정유년(1777) 상서(尙書) 흥낙순(洪樂純)의 제거(提舉) 때에 직관(直關)¹³⁰하여 각 도와 고을에서 뽑아서 올렸다. ○내의녀에 결원이 있으면 본서 장래의녀(將來醫女) 가운데 재능이 있는 이를 승차시키고, 내국에서 물러나온 이는 본서로 환속(還屬)시킨다. ○치종청(治腫廳)에 5명을 정송(定送)하였는데, 경오년(1750)에 수를 줄여서 혁파하였다. ○납약을 진상할 때에는 교수와 훈도가 내국에 영부(領付)¹³¹한다. 평상시 어약(御藥)을 드릴 때에는 교수가 영부한다. 계하약(啓下藥) 때에는 훈도(訓導)가 영부한다. 풍정(豐呈)¹³² 및 가례(嘉禮)에서 차비대령(差備待令)이 여러 임무를 맡은 때에는 교수와 훈도가 영거(領去)한다. ○식년(式年)마다 형조(刑曹)의 추쇄(推刷) 때에 출산과 사망을 기록하는데 훈도가 영거(領去)한다. ○내국(內局)에서 날마다 하는 일은 2명씩을 사흘을 기한으로 하여 번갈아 임명하여 정송(定送)한다. ○색장(色掌)은 보름마다 1명씩으로 좌우 번(番)을 교대로 임명하는데, 여러 장소의 노역 시키는 것을 맡는다. ○60세가 되면 제외하는데 재주가 있어도 혀하지 않는다.

按本署《騰錄》, 順治乙酉, 因本署牒呈, 將來醫女, 諸上司撰藥, 及宴餞婚姻處, 勿爲題名下帖使喚事, 禮曹粘啓, 蒙允。○順治壬辰, 本署提調箚辭, 將來醫女, 五上司,

127 《실록》 세종 5년(1423) 12월 4일 기사를 참고하면 ‘나이 어리고’는 15세 이하 10세 이상으로 보인다.

128 봉족(奉足) : 조선 초기, 국가가 호(戶)에 역을 분담시킬 때에 그 역을 담당하지 않은 호는 봉족이 되어 경제적 뒷받침을 했다. 본문에서는 의녀의 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호를 여섯으로 한다는 뜻이다.

129 복호 : 국가가 호(戶)에 요역을 부담시킬 때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본문에서는 한 결 이하의 토지만 소유했다면 세를 면제한다는 뜻이다.

130 직관(直關) : 행정적 계통을 밟지 않고 직접 관문을 내려 보내는 일.

131 영부(領付) : 영솔하여 부속시킨다.

132 풍정(豐呈) : 임금 내외의 경사 때, 축하의 예로 어떤 물품을 바치는 일이다.

切勿題名推捉事，入啓，蒙允。

본서의 《혜민서등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순치 을유년(1645)에 본서의 첨정으로 인하여 장래의녀(將來醫女)는 여러 상사(上司)의 약을 지을 때 및 혼인에서 베푸는 송별연 때, 하체(下帖)¹³³에 이름을 써서 사환(使喚)으로 부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예조에서 점계(粘啓)하여 윤허를 얻었다. ○순치 임진년(1652)에 본서 제조의 차사(箚辭)로서 장래의녀는 오상사(五上司)가 이름을 써서 추착(推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아뢰어서 윤허를 얻었다.

노비(奴婢)¹³⁴

奴婢 供署中茶母，及諸般使喚，中間逃故未推，或免役，或免賤，或賜牌移屬，今無一口。見存詳載《奴婢案》。○每式年，修整本《案》，呈于刑曹。

노비] 혜민서에서 일하는 다모(茶母) 및 여러 분야의 사환(使喚)인데, 중간에 도망쳐서 추쇄하지 못하였거나 역이 면해졌거나 면천되었거나 사패(賜牌)로 내려지면서 소속이 바뀌어서, 지금은 한 사람도 없다. 《노비안奴婢案》에 상세하게 실려있다. ○식년마다 본 《노비안》을 수정(修整)하여 형조에 바쳤다.

按《大典》，本署差備奴十二，跟隨奴二。

《경국대전》을 보면 본서의 차비노는 12명, 근수노(跟隨奴)¹³⁵ 2명이다.

3. 고과(考課)

凡八條。

모두 8조문이다.

133 하체(下帖) : 윗 관청에서 아랫관청에 체문을 내리는 일이다.

134 혜민서의 노비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혜민서의 노비는 직장(直長)이 관장했다.

135 근수노(跟隨奴) :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는 노비이다.

입속(入屬)¹³⁶

凡願屬之人，書六行單子，父母妻四祖 受三保於參上官，直長，或參未保。呈于前唧廳，則一會時，滿二十員後，完議可否。先以捻紙，寸許納，于各員前，而回公單子後，下人持缸筒。次詣，以受捻紙，受畢，看其結，否三結以上，則不許入。取其二結以上¹³⁷，置簿許屬未越人，亦爲置簿，以爲憑考。格例，詳載廳憲。

입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육행단자(六行單子) 부모와 처의 4조(祖)이다. 를 쓰고, 참상관 직장(直長)이거나 보증인이 아니어야 한다에게 인정 받은 3명에게서 보증받아서 전함청에 바치는데, 한 차례 모일 때에 20원을 채워서 가부(可否)를 완의(完議) 한다. 먼저 제비로서 입속 허락을 해아리게 하고, 각 관원 앞에 가서 단자를 회공(回公)¹³⁸한 이후에 하인이 항통(缸筒)을 지킨다. 다음으로 나아가 제비를 받는데, 마친 뒤에 결과를 살펴서 '아니다'가 3개 이상이면 입속을 허락하지 않는다. 2개 이하는 장부에 적고 입속을 허락 한다. 입속되지 못한 사람도 또한 장부에 적고 자세히 따지고 검토한다. 격례(格例)는 청현(廳憲)에 상세하게 실려있다.

포폄(褒貶)¹³⁹

每年五月·十一月二十五日，兩廳 祿官廳久任掌務官，前唧廳行首官·有司官，
매년 5월과 11월의 25일에 양청에서 녹관청에서는 구임 장무관, 전함청에서는 행수관
(行首官)¹⁴⁰과 유사관(有司官)¹⁴¹이 맡는다.

136 입속(入屬)이란 완천(完薦)을 거쳐 혜민서의 생도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말한다. 입속의 순서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속을 원하는 이는 서경(署經)의 예에 따라 부모와 처의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증인(현직 녹관)의 보거단자(保擧單子)를 녹관청(祿官廳)에 바치면 녹관(祿官)들이 모여 가부를 상의한 후 허용되면 입속을 허가하고 생도안(生徒案)에 기록한다.

137 以上 : 원본에는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수정하였다

138 회공(回公) : 전체 관원이 돌려보는 일이다.

139 혜민서의 포폄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포폄은 조선시대에 관료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전최(殿最)라고도 한다.

140 행수관(行首官) : 전함도관(前唧都官)이라고도 한다. 전함청의 수석관원이다.

磨鍊祿官及前卿仕日 仕日磨鍊, 詳見該用文狀,

녹관과 전함의 근무일을 마련¹⁴²하고 근무일을 마련하는 것은 <해용문장>에 자세히 보인다.

書仕冊二件 久任掌務官署于手本, 行首官·有司官署于磨鍊下, 分置兩廳,

사책(仕冊)¹⁴³을 2건 써서 구임 장무관이 수본에 서명하고, 행수관과 유사관이 마련한 내용 뒤에 서명하고 양청에 나누어 둔다.

傳于仕色官 見供仕,

사색관(仕色官)에게 전해 주어 <공사>에 보인다.

正書單子十件 提調二件, 留署二件, 展最一件, 並厚紙半折, 禮曹四件厚紙全張, 御覽一件, 楷注紙全張, 並連幅作帖. 詳見該用文狀.

단자 10건을 또박또박 쓰게 한다 제조가 볼 2건, 혜민서에 두는 2건, 전최(展最)에 쓸 1건은 모두 두꺼운 종이 반절이고, 예조에서 쓸 4건은 두꺼운 종이 온장이고, 어람에 쓸 1건은 저주지(楷注紙)¹⁴⁴ 온장인데, 모두 종이를 붙여 첨을 만든다. <해용문장>에 자세히 보인다.

六月·十二月朔日, 祿官廳任官以單子二件 皮封, 兩行書惠民署某等褒貶仕日單子, 踏印, 6월과 12월 1일에 녹관청 임관(任官)은 단자 2건을 피봉에 ‘혜민서 아무개 등 포폄사 일단자(褒貶仕日單子)’라고 2줄로 쓰고, 도장을 찍는다.

呈于兩提調, 仍稟坐起 提調有故, 則頃報禮曹. ○一提調有故, 則二提調不得設行.

두 제조에게 드리고 이어 좌기¹⁴⁵할 것을 여쭌다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예조에 탈보¹⁴⁶

141 유사관(有司官) : 사무를 맡아보는 관원이다.

142 마련 : 준비하여 갖춤을 뜻한다. 여기서는 근무일을 원일(元日)로부터 실제 근무일이 며칠인지 등을 계산하여 둔다는 말이다.

143 사책(仕冊) : 근무일을 기록한 책이다.

144 저주지(楷注紙) :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이다.

145 좌기 : 으뜸 관원이 출근하여 일을 잡음을 뜻한다.

146 탈보 : 특별한 사고가 있음을 말하여 탈면을 청함을 뜻한다.

한다. ○일제조(一提調)가 사정이 있으면 이제조(二提調)는 실행할 수 없다.¹⁴⁷.

當日請坐 祿官中從前職座次, 以下位差送, 取材時同,

당일 청좌¹⁴⁸하여 녹관 중에서 이전 직임의 좌차¹⁴⁹에 따라 아래 직위의 사람을 차출하여 보낸다. 취재 때에도 같다.

提調詣衙 祿官中門內, 書員大門外, 醫女大門內, 遷送,

제조가 관아에 오면 녹관은 중문 안에서, 서원은 대문 밖에서, 의녀는 대문 안에서 맞이하고 보낸다.

行相見禮 行再拜,

상견례를 하고 2번 절한다.

就椅坐 書員以留署單子, 進呈于書案上.

의자로 나아가 앉는다 서원이 혜민서에 둔 단자를 서안¹⁵⁰ 위에 올려드린다.

稟公私禮 書員稟,

공사례(公私禮)를 여쭈어서 서원이 여준다.

請謁 參上階下南庭北面序立, 參下東庭西面序立. 書員進揖于班首, 詣提調前, 公禮則稱公禮請謁, 私禮則稱私禮請謁, 退下南庭更揖班首, 引至廳上,

참알¹⁵¹을 청하고 참상관은 계단 아래의 남쪽 뜰에서 북쪽을 보고 순서대로 서고, 참하관은 동쪽 뜰에서 서쪽을 보고 순서대로 선다. 서원은 반수(班首)¹⁵²에게 나아가 읍하고 제조 앞으로

147 당시 제조(提調)는 두 사람으로, 품계에 따라 서열이 위인 사람을 일제조, 아래인 사람을 이제조라고 한다.

148 청좌 : 으뜸 벼슬아치의 출석을 청함을 뜻한다.

149 좌차 :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 등에서 앉는 자리의 차례를 가리킨다.

150 서안 : 책을 얹는 재래식 책상이다.

151 참알 : 관청의 벼슬아치가 그의 으뜸 벼슬아치를 뵙는 일을 뜻한다.

152 반수(班首) : 우두머리란 뜻이다. 혜민서에서는 구임(久任)이 아닐까 추정된다. 《서운관지》 <좌아坐衙>를 보면 관상감(觀象監)에서 반수(班首)는 3품을 지낸 시임관원이다. 《통문관지》 <권장

나아가, 공례(公禮)에는 공례로 참알을 청한다고 하고, 사례(私禮)에는 사례로 참알을 청한다고 하여서 남쪽 뜰에 물러나서는 다시 반수에게 읍하고, 청 위까지 인도한다.

祿官前啣序次行禮訖 公禮, 提調公服交椅坐, 祿官前啣亦公服行再拜禮. 私禮, 提調時服交椅坐, 祿官前啣亦時履行揖, 平坐則行單拜, 而參上楹內 · 參下楹外行禮, 還復位如初, 序立而退. 軍職前啣並同, 分差員亦來參. ○生徒具巾服, 階上行揖, 訓導預點到未到. ○書員居前 · 庫子居後, 階下行禮. ○醫女真髻, 庭中行禮, 書員呼點, 分差醫女亦參. ○貢人庭中行禮,

녹관의 전함이 차례대로 예를 행하고 나면 공례에는 제조가 공복을 입고 교의(의자)에 앉으면 녹관의 전함 역시 공복(公服)을 입고 2번 절하는 예를 행한다. 사례에는 제조가 시복(평복)을 입고 교의에 앉으면 녹관의 전함 역시 시복을 입고 읍을 행하고 제조가 평좌하면 한 번 절하는 예를 행하되, 침상관은 기둥 안에서, 침하관은 기둥 밖에서 예를 행하고 다시 처음처럼 자기 자리로 돌아와 차례대로 섰다가 물러간다. 군직(위직)의 전함도 모두 동일하고, 분차된 인원¹⁵³들 또한 와서 참여한다. ○생도는 건복(巾服)을 갖추고 계단 위에서 읍을 행하는데, 훈도가 미리 참석자와 비참석자를 점검한다. ○서원은 앞에 서고 고지기는 뒤에 서서 계단 아래서 예를 행한다. ○의녀는 가체(加髢)¹⁵⁴가 아닌 자기 머리로 뜰 가운데서 예를 행하는데, 서원이 불러 참석유무를 점검하며, 분차된 의녀 또한 참여한다. ○공인은 뜰 가운데서 예를 행한다.

提調封書 京官滿三十日, 外官滿五十日, 方許等第. 出《大典》. ○不仕者 · 未到者 · 受由過限者, 隨事殿最, 而二提調手書, 仍斜封署押. ○年少聰敏及將來醫女, 考講憑考勤慢,

제조는 봉서(封書)하고 경관(京官)은 30일을 채우고, 외관(外官)은 50일을 채워야 비로소 등제(等第)¹⁵⁵를 허락한다. 출전 《경국대전》.¹⁵⁶ ○벼슬하지 않은 이, 포폄에 오지 않은 이, 말미를 받았으나 기한을 넘긴 이는 일에 따라 전최(殿最)하고, 이제조(二提調)가 손으로 직접 쓰고 이어

勸獎 · 좌기절차坐起節次>를 보면 사역원(司譯院)에서의 반수는 3품을 지낸 시임관원이다.

153 분차된 인원 : 본문의 <분차>에 상세하다. 이조의 《포폄등록》을 보면 육조의원(六曹醫員)의 포폄은 이조(吏曹)에서 시행함을 알 수 있다. 군문(軍門)에 배속된 약방과 침의 또한 혜민서 포폄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군문의 장(長)이 포폄한다.

154 가체(加髢) : 다리. 머리숱이 많아 보이기 위하여 덧붙는 머리이다.

155 등제(等第) : 근무성적을 사정하여 등급을 매기는 일을 뜻한다.

156 《경국대전》 <이전吏典 · 포폄褒貶>에 나온다.

비스듬히 봉하고[斜封] 착압(着押)¹⁵⁷ 한다. ○연소총민과 장래의녀는 고강을 근거로 삼아 근만(勤慢)을 살펴본다.

禮曹褒貶日, 親呈同參 御覽單子 · 禮曹單子及六行單子, 祿官, 進不進擧案, 書員前期進呈. ○褒貶時, 各司提調, 分明老病人外, 一切勿爲書送, 親自來勘. 出《受教集錄》. ○提調有故, 則頃報. 當日任官進受封書單子于提調, 褒貶參謁後, 掌務官進呈于堂上. ○順治壬辰, 海嵩尉 尹新之 提舉時, 以該司提調正一品, 則褒貶封書, 該曹官員親進受去, 先王朝曾有定奪事上箚. 出《本署騰錄》,

예조에서 포폄하는 날에 직접 올리고 함께 참여하여 어람단자, 예조단자 및 육행단자(六行單子)¹⁵⁸는 녹관이, 진부진 거안¹⁵⁹은 서원이 기한 전에 올린다. ○포폄 때에 각 관사의 제조는 분명하게 노병(老病)인 사람 외에는 포폄단자를 일절 문서로 보내지 말고 직접 해당 조로 와서 마감해야 한다. 출전 《수교집록》¹⁶⁰.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탈보(頃報)해야 한다. 당일에 임관(任官)이 제조에게 나아가 봉서단자를 받고 포폄에 참알한 뒤 장무관이 당상관¹⁶¹에게 드린다. ○순치(順治) 임진년(1652), 해승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¹⁶²가 제조로 있을 때¹⁶³ 해당 관사의 제조가 정1품이면 포폄봉서를 해당 조(曹)의 관원이 직접 나아가 받아 가도록 선왕(英祖) 때 일찍이 결정한 일이 있다고 차자(箚子)¹⁶⁴를 올렸다. 출전 《혜민서등록》.

157 착압(着押) : 수결(手決) 즉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쓰는 자신만의 독특한 부호로 표시한다는 말이다.

158 육행단자(六行單子) : 여섯 줄로 된 문서를 말한다. 참알이나 사은 등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나, 여섯 줄이라는 형식은 같다.

159 진부진 거안 : 회의나 행사의 참석 명부로, 참석을 진(進), 불참석을 부진(不進)이라 한 데서 온 말이다.

160 《수교집록》 : 《수교집록》 <이전(吏典) · 포폄>에서 인조 5년(1627)의 천계정묘승전(天啓丁卯承傳)에 나온다.

161 당상관 : 관계(官階)가 정3품 상계(上階)인 통정대부나 절충장군 이상인 관료. 예조의 경우 판서(정2품), 참판(종2품), 참의(정3품)가 이에 해당된다.

162 윤신지(尹新之) : 1582-1657.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중우(仲又)로 영의정 방(昉)의 차남이다. 선조의 딸인 정혜옹주가 결혼하여 해승위가 되었다. 충간공파 14세이다.

163 《승정원일기》 효종 3년(1652) 4월 24일 기사. 윤(尹)이 제조로 임명되었다.

164 차자(箚子) : 조선시대 관료가 임금에게 올리는 간단한 양식의 상소문이다.

等第 御覽單子上, 書填上中下. ○提調磨鍊外, 自該曹亦爲殿最,
등제(等第)를 하고 어람단자 위에 상중하(上中下)를 써 채운다. ○제조가 마련한 것 외에 해당
조(曹)에서도 전최(殿最)를 한다.

入啓啓下後, 置簿憑考 開坼下政院後, 本署等第, 及各道審藥 · 兩都月令等第, 謄書, 掌務官呈于
提調. ○居下者 · 連中者, 減下醫籍, 十五日內願還仕者聽, 只計仕日, 依《大典》經二年乃敍例, 限二年,
勿許取材. 居中者, 依《大典》勿敍右職例, 不許當等取材. 經赦蕩滌, 則並勿拘. ○乾隆己丑, 領議政洪
鳳漢, 以兩醫司 · 司譯院 · 雲監 · 寫字 · 圖畫 · 律學 · 計仕等官員, 特教刊汰者, 過一都目後, 循例收
用事, 筵奏蒙允. 出《本署謄錄》.

입계하고 계하받은 뒤에 장부를 두고 근거로 삼아 살펴본다 개탁(뜯어 봄)하여 승정
원에 내린 뒤에는 본서의 등제(等第)¹⁶⁵ 및 각도심약, 양도월령의 등제를 베끼어서, 장무관이
제조에게 올린다. 포폄 결과가 하등(下等)인 자와, 이전 결과와 잇달아서 중등(中等)인 자는 의적
(醫籍)에서 빼는데,¹⁶⁶ 15일 내에 다시 벼슬을 하기 원하는 이는 들어주되, 근무일을 신입하기만
하고 《경국대전》의 '2년이 지나야 서용한다'¹⁶⁷는 전례에 따라 2년 내에는 취재를 허락하지 않는
다. 포폄 결과가 중등(中等)인 자는 《경국대전》의 '높은 직임으로 서용하지 말라'¹⁶⁸는 전례에
따라 해당 분기의 취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사면을 거쳐 탕척(蕩滌)되는 경우는 모두 구애받지
않는다. ○건륭 기축년(1769)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¹⁶⁹이 양의사, 사역원(역관), 운감(서운관),
사자청(사자관), 도화서(화원), 율학(율관), 계사(산원) 등의 관원 가운데 특교로 간태(刊汰)된 자는
1차례의 도목이 지난 뒤에 규례에 따라 거두어 서용하도록 연석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¹⁷⁰
출전 《혜민서등록》.

165 등제(等第) : 여기서는 취재결과에 의해 임명된 녹관을 말한다.

166 사유가 있어 탕척되어 출사하더라도 이전 근무일을 세지 않게 된다.

167 《경국대전》〈이전吏典 · 고과考課〉에 나온다.

168 《경국대전》〈이전吏典 · 포폄褒貶〉에 나온다.

169 홍봉한(洪鳳漢) : 1713-1778. 본관은 풍산(豐山), 자 익여(翼汝)로 판서 현보(鉉輔)의 장남이다. 영조 조에 영의정을 지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다. 문경공파 16세이다.

170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12월 21일 기사.

녹시(祿試)¹⁷¹

每年六月十五日十二月十五日，褒貶開坼後，前唧廳開錄應試人員 六朔內通計，仕滿百日後，許赴，在喪終制者，不拘仕日，卽令許赴取才。出《受教集錄》。○不仕五日及受由三十日者·生徒越等入屬者，勿許赴試。諸道審藥六月十二月初十日前遞來現身者·在喪正月七月內終制現身者，並許當等取才。○祿官中有功勞者，掌務官受單子，許赴回試，而久任·教授·訓導·鍼醫，及諸司藥房鍼醫·統管救療官·兩都月令·內局·刑曹·司憲府月令，勿論功勞有無，並許赴試，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¹⁷²에 포폄 단자를 개탁(開坼)한 뒤에 전함청이 응시 인원을 개록(開錄)¹⁷³하여 6개월 동안을 통계(通計)하여 근무일수가 100일을 채운 뒤에 응시를 허락하는데, 상중(喪中)에 있다 복제(服制)를 마친 이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바로 취재에 응시하도록 허락한다. 출전 《수교집록》.¹⁷⁴ ○무단으로 5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거나 말미를 얻었어도 30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은 이, 생도 중에 월등(越等)으로 입속한 이는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제도심약으로 6월과 12월의 10일 이전에 체직되어 와서 현신¹⁷⁵한 이와 상중에 있다가 1월과 7월 안에 복제를 마치고 현신한 이는 모두 당 분기의 취재 응시를 허락한다. ○녹관 중에 공로가 있는 이는 장무관이 단자를 받아 회시에 응시를 허락하고, 구임관·교수·훈도·침의(혜민서침의) 및 각 관사 약방의 침의(군문침의)·통영구료관·양도 월령·내국 월령·형조 월령·사현부 월령은 공로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응시를 허락한다.

送于祿官廳。祿官廳磨勘于提調，正書試記二件 講畢後，錄講畫，受押于堂上，留署，
녹관청으로 보낸다. 녹관청은 제조에게 마감하고, 시기(試記, 시기책) 2건을 또 박또박 쓰고 고강이 끝난 뒤에 고강 접수를 기록하고 당상의 서압(署押)을 받아 혜민서에 둔다.

171 혜민서의 취재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172 《신보수교집록》〈예전·장권獎勸〉을 보면 숙종 27년(1701)의 강희신사승전(康熙辛巳承傳)에 국휼(國恤) 때라도 녹취재를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기록이 있다.

173 개록(開錄) : 장계(狀啓) 등 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보고 사항이나 의견 등을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174 《수교집록》〈예전·권장〉에서 명종 8년(1553)의 가정계축승전(嘉靖癸丑承傳)에 나온다. 여기서 근무일수는 녹봉을 받지 않은 무록(無祿)으로서의 근무일을 말한다.

175 현신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이는 일을 이른다.

稟定試日于禮曹 掌務官稟.

예조에 시험일을 여쭈어 정한다 장무관이 여준다.

禮曹堂上與提調，同坐開試 康熙甲申，趾齋閔尙書鎮厚判禮部時，建白，以本曹堂上有故，則該司提調同本曹郎 官試取，提調有故，則本曹堂郎 試取事，定奪。

예조 당상과 제조는 자리를 같이하여 시험을 시작한다 강희 갑신년(1704), 상서(尙書) 지재(趾齋) 민진후(閔鎮厚)가 예조 판서로 있을 때 건백(建白)¹⁷⁶하여, 본조(예조)의 당상이 사정이 있으면 해당 관사의 제조가 본조의 낭관¹⁷⁷과 함께 시취(試取)하며,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본조의 당상과 낭관이 시취하도록 결정하였다.¹⁷⁸

試冊，春夏等，《纂圖》背講，年五十臨講。出《大典》。·《素問》十二卷。分兩等，春夏上六，秋冬下六。○諸書中，以《素問》定爲主書，一切臨講。《銅人經》·《纂圖》者，自願代講，則聽，《素問》背講者，別給倍畫。出《典錄》，《東垣十書》·《直指方》以上臨講，秋冬等，《銅人經》背講，《素問》·《大觀本草》·《醫學正傳》。以上臨講。

시책(試冊)은 춘하(春夏) 분기에는 《찬도방론맥결집성》¹⁷⁹ 배강(背講)¹⁸⁰을 하는데 나이 50살이면 임강(臨講)한다. 출전 《경국대전》,¹⁸¹ 《황제내경소문》¹⁸² 12권이다. 2분기로

176 건백(建白) : 윗사람에게 의견을 말함을 뜻한다.

177 낭관 : 낭관이란 육조에서 실무 책임을 맡아보면 정랑(正郎, 정5품)과 좌랑(佐郎, 정6품)의 총칭이다. 둘 다 '郎'으로 끝나므로 붙은 이름이다.

178 《승정원일기》 숙종 30년(1704) 6월 25일 기사에 나온다.

179 《찬도방론맥결집성》 : 중국 육조시대의 고양생(高陽生)이 쓴 《찬도맥결纂圖脈訣》을 선조 14년(1581)에 허준(許浚)이 개찬하여 내의원에서 간행한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을 말한다. 4권 4책본. 《경국대전》등에 나오는 《찬도纂圖》는 고양생 저작이고, 《혜국지》에 나오는 《찬도》는 허준의 저작이다.

180 배강(背講) : 배강(背講)과 임강(臨講)은 시험 방법이다. 전자는 책을 펼쳐 놓고 돌아서 외워 시험보고, 후자는 책을 펼쳐놓고 시험을 치른다. 후자를 다른 말로 임문(臨文)이라 한다. 배강(背講)과 송(誦)은 다르며 《경국대전》〈예전 · 취재〉에서 송(誦)하는 과목을 나이 50이면 배강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181 《경국대전》〈예전 · 취재〉에 나온다. 원본에는 배강(背講)이 아니라 송(誦)으로 되어있다.

182 《황제내경소문》 : 《혜국지》의 《소문》은 1615년에 내의원에서 교정하여 간행한 12권 14책

나누어 춘하(春夏)에는 앞 6권을, 추동(秋冬)에는 뒤 6권으로 한다. ○여러 책 중에 《소문》을 주요 책자로 정하여 모두 임강한다. 《동인수혈침구도경》¹⁸³이나 《찬도방론맥결집성》를 임강하는 자가 《황제내경소문》을¹⁸⁴ 강하기를 스스로 원하면 들어주고, 《황제내경소문》을 배강하는 자는 별도로 2배의 점수를 준다.¹⁸⁵ 출전 《전록통고》¹⁸⁶, 《동원십서》¹⁸⁷, 《직지방》이고 이상은 임강한다. 추동(秋冬) 분기에는 《동인경》 배강한다. 《소문》, 《대관본초》¹⁸⁸, 《의학정전》¹⁸⁹이다. 이상은 임강한다.^{190 191}

본을 말한다. 이 교정본을 바탕으로 번각본으로 12권 14책 본과 12권 15책 본이 조선 후기에 간행되었다. 성종 조에 취재 시책(試冊)으로만 언급되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의과(醫科) 과목이나 취재(取才) 과목은 아니었고 《속대전》에 가서야 정식 의과 과목이 된다.

183 《동인수혈침구도경》: 중국 송나라 왕유일(王惟一)이 지은 침구에 관한 책이다.

184 《수교집록》에 ‘自願代講素問者聽’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185 《각사수교》를 보면 예조, 호조, 형조, 관상감의 영사(領事)와 전의감, 혜민서, 소격서 등의 제조가 함께 모여 의논하여 마련한 단자에 《소문素問》을 주요 강서로 삼아서 별도로 점수를 두 배로 주어 장려한다는 내용이 있다. 《수교집록》〈예전·권장〉에 이를 ‘嘉靖丁未承傳’이라 하여 명종 2년(1547년)의 때라 밝히고 있다.

186 《전록통고》: 《대전후속록》〈예전·권장〉에 나온다. 《대전후속록》은 《대전속록》이후 약 50여 년의 법령을 모아 펴낸 법전이다. 중종 38년(1543) 편찬.

187 《동원십서》: 중국 금원사대가의 한명인 이동원(李東垣)과 그 제자 왕호고(王好古) 등의 의학 저술 열 종을 모은 책이다.

188 《대관본초》: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가 원제이며 《본초》라고도 부른다. 《대관경사증류비급본초大觀經史證類備急本草》를 1249년에 개정한 본초서이다. 《대관본초》는 일반적으로 개정 이전의 책을 지칭한다.

189 《의학정전》: 1515년 중국 명나라 우단(虞搏)이 지은 종합의학서이다.

190 《속대전》〈이전·제과〉에 나오는 의과과목의 의서들과 일치한다. 의과과목은 《경국대전》도 포함되어 8종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의과과목이 총 11책이었는데 《속대전》에서는 《창진집瘡疹集》, 《태산집요胎產集要》, 《부인대전婦人大全》, 《화제방和劑方》, 《구금방救急方》, 《득효방得效方》의 6책이 빠지고 《소문》, 《의학정전醫學正傳》, 《동원십서東垣十書》의 3책이 새로 들어갔다.

191 조선전기 의원의 취재 시책(試冊)은 다음은 같다. 《실록》성종 2년(1471) 5월 25일 기사에 ‘춘등(春等)에 《소문素問》, 《본초本草》, 《직지방直指方》, 《찬도맥纂圖脈》, 《외과정요外科精要》, 《창진집瘡疹集》. 추등(秋等)에는 《장자화방張子和方》, 《득효방得效方》, 《부인대전婦人大全》, 《상한유서傷寒類書》, 《자생경資生經》, 《화제방和劑方》.’ 《경국대전》〈예전·취재〉에 보

隔帳抽簽 當日, 以《千字文》, 作簽納筒, 應試人員從座次抽之, 每巡母過十字. 列錄試記, 依字次背講, 字盡更抽, 而臨講時亦如之.

휘장으로 사이를 막고 제비를 뽑는다 당일 《천자문千字文》의 글자로 제비를 만들어 통에 넣고, 응시한 인원이 좌차(坐次)에 따라 뽑되 매 차례마다 10자를 넘지 않는다. 시기(試記, 시기책)에 열거해 기록하되 글자 순서대로 배강하고 뽑은 글자가 소진되면 다시 뽑는데 임강할 때에도 똑같다.

隱柱 試官手書講柱, 藏于鋗筒,

은생¹⁹²하고 시험관은 고강에 대한 생(牲)을 손수 써서 항통(鋗筒)¹⁹³에 담는다.

破柱 誦與臨文母論, 純不純及有不之牲, 一並破柱計畫. ○牲之從下, 雖在法典, 而依《大典註解》, 一略一粗一不, 既以從中柱, 連分施行, 則如一通一略一粗之類, 亦從中柱施行. ○破柱畫數, 通則二分·略則一分·粗則半分計畫者, 自是應行之規, 則一通一略一粗, 以三分半計畫, 一通一略一不, 以三分計畫, 一通一粗一不, 以二分半計畫, 一略一粗二不, 以一分半計畫,

파생¹⁹⁴하고 암송과 임문(臨文)에 상관없이, ‘순(純)¹⁹⁵’, ‘불순(不純)’ 및 ‘불(不)’이 있는 생(牲)을 모두 파생하여 접수를 합산한다. ○하생(下牲)을 따른다고¹⁹⁶ 비록 법전에 되어 있지만, 《경국대전주해》에 ‘1략(略) 1조(粗) 1불(不)¹⁹⁷은 이미 중생(中牲)을 따르는 것¹⁹⁸에 의거하여 연분(連

이는 의원의 취재 과목은 ‘찬도액’, 《동인경銅人經》 이상 송(誦). 《창진집》, 《직지방》, 《구급방救急方》, 《부인대전婦人大全》, 《득효방得效方》, 《태산집요胎產集要》, 《화제방和劑方》, 《본초》, 《자생경資生經》,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이상 임문(臨文).’으로 되어있다. 《경국대전》〈이전 · 제과〉를 보면 의원의 취재 과목에서 의과 과목이 아닌 것은 《자생경》과 《십사경발휘》이다.

192 은생 : 생(牲)은 길이가 1촌 반의 둑근 나무에 통(通), 략(略), 조(粗), 불(不)를 각각 한자씩 적어서 시험 성적의 우열에 따라 내었다.

193 항통(鋗筒) : 관아에서 투서를 받던 통이다.

194 파생 : 응시자가 받은 생(牲)을 모두 꺼내 살펴 접수를 해야리는 절차를 말한다.

195 순(純) : 원래는 한자의 틀림도 없는 최우등의 접수를 말하는데, 통(通)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있다.

196 하생(下牲)을 따른다고 : 가장 낮은 접수의 생(牲)을 쫓음을 뜻한다.

197 《경국대전주해》〈예전 · 제과諸科〉에 나온다. ‘一略一粗一不, 則略從’이라 하여 하생을 따르지

分)¹⁹⁹하여 시행하였으니 ‘1통(通) 1략(略) 1조(粗)’ 따위 역시 중생을 따라 시행한다. ○파생할 때 점수를 통(通)은 2분(分), 략(略)은 1분, 조(粗)는 반 분으로²⁰⁰ 합산하는 것이 본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규칙이니, 1통(通) 1략(略) 1조(粗)이면 3분 반으로 합산하고, 1통(通) 1략(略) 1불(不)이면 3분으로 합산하며, 1략 1조 2불이면 1분 반으로 합산한다.

計畫 先見大畫, 大畫同, 則次見六朔仕, 六朔仕同, 則次見牲畫, 牝畫同, 則又次見遠仕, 遠仕同²⁰¹, 則又次見前等祿職高下, 高者降付, 下者陞付. 回試中, 大畫同, 則先見祿官仕日, 次見牲畫, 又次見當等祿職高下.

합산한다 먼저 대획(大畫)²⁰²을 보고, 대획이 같다면, 그다음 6개월 근무했는지를 보고, 이도 같다면 그다음 생획(牲畫)²⁰³을 보고, 이도 같다면 그다음 임지가 면 곳인가를 보고, 이도 같다면 다시 그다음 이전 분기에 받은 녹직(祿職)의 높고 낮음을 살피는데(높은 이는 낮춰서 붙이고, 낮은 이는 올려서 붙인다), 회시(回試)에서는²⁰⁴ 대획이 같다면 먼저 녹관으로서 근무한 날수를 보고, 그다음 생획을 보고, 그다음 해당 분기에서 녹직의 높고 낮음을 본다.²⁰⁵.

取分數多者, 先付祿官 直長以下八窠, 次第陞付, 薦狀下批, 謂恩行公.

점수를 많이 받은 이를 먼저 녹관에 붙인다 직장 이하 여덟 자리를 차례대로 올려

않고 있다. 《경국대전주해》는 명종 9년(1554)에 간행되었는데, 《경국대전》의 규정 중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풀었다.

198 중생(中性)을 따르는 것 : 3개의 생(牲)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각각 상, 중, 하의 점수가 나왔을 때 중을 최종 점수로 한다는 말이다.

199 연분(連分) : 여러 시험에서 모두 점수를 얻는 것 또는 그 점수를 말한다.

200 《경국대전》〈예전 · 제과諸科〉에 나온다.

201 遠仕, 遠仕同 : 원래의 본문은 ‘遠遠仕仕同’으로 되어있어 오류이므로 ‘遠’과 ‘仕’의 글자 위치를 바꾸었다.

202 대획(大畫) : 성직의 점수를 하생(下牲)에 따라 봄을 뜻한다.

203 생획(牲畫) : 파생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204 도목회시가 아닌 별취재(別取才)의 경우 보통 녹관직(祿官職) 이외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므로 당 분기의 녹관(祿官)이 응시하는 경우가 없다.

205 《각사수교》에서는 강획(講畫)이 동일한 경우에 근무일수, 강생(講牲)의 순불순(純不純), 녹직(祿職)의 높고 낮음 순으로 평가했다. 조선 전기와의 변화상이 보인다.

붙이는데 천장(薦狀)²⁰⁶에 대해 비답을 내리면 사은숙배하고 공무를 행한다.

居次者差審藥 薦狀下批, 謝恩下直赴任.

다음 순위자는 심약에 임명한다 천장에 대해 비답을 내리면 사은숙배하고 하직하여 부임 한다.²⁰⁷.

居次者兩都月令, 統營救療官 見外任.

다음 순위자는 양도월령과 통영구료관에 임명한다 <외임>에 보인다.

居次者都預差. 居次者內局 · 刑曹 · 司憲府月令 見分差. 並無薦狀, 只望差. ○京外月令, 付於六朔仕之下 · 一日病仕之上, 外司藥房鍼醫, 付於回試之下, 而鍼醫則付於藥房之下. ○俱是月令, 而分數同, 則依祿職高下陞降例, 先付憲府, 次付刑曹, 次付內局, 次付統營, 次付江都, 次付松都. 俱是藥房, 則見分差前前唧仕日計付, 鍼醫亦然. 俱是生徒, 則以入屬先後陞付, 而與前唧同分, 則付於末端, 並不破性. ○生徒雖分數, 當次於月令, 惟統營及兩都外, 京司則勿差. ○再授職後, 始差審藥, 而兩差祿官及聰敏講四次居首者 · 鍼醫兩次准瓜者 · 科者, 並許通再職, 而他科則勿許.

다음 순위자는 도예차(都預差)²⁰⁸에 임명한다. 다음 순위자는 내국 · 형조 · 사헌부 월령에 임명한다 <분차>에 보인다. 모두 천장(薦狀) 없이 다만 후보 명단을 올려 차출한다. ○한양과 지방의 월령(京外月令)은 6개월 근무한 경우 명단의 아래, 하루라도 병이 든 채 근무한 경우 위에 붙인다. 외사(外司)의 약방과 침의(군문침의)는 회시를 통과한 이를 아래에 붙이는데, 침의는 약방의 아래에 붙인다. ○모두 월령의이면서 접수가 동일하다면 녹직의 고하로 올리고 내리는 예에 의거하여 먼저 사헌부, 다음으로 형조, 다음으로 내국, 다음으로 통영, 다음으로 강화부, 다음으로 개성부에 붙인다. 모두 약방이라면 분차되기 전의 전함(前銜)으로 근무한 날을 계산하여 붙이는데, 침의 또한 그러하다. 모두 생도라면 입속의 순서로 붙이는데, 전함과 같은 접수라면 말단에 붙이고 모두 파생(破性)하지 않는다. ○생도는 비록 접수가 월령의에 해당하더라

206 천장(薦狀) : 추천하는 서류이다. 본문 <해용문장> 천장식(薦狀式)에 자세하다.

207 천장(薦狀)의 대상인 녹관(祿官)과 심약(審藥)의 경우 꼭 사은(謝恩)을 해야 했다. 사은은 공복(公服)을 갖추어 왕에게 숙배(肅拜)하고 사은단자(謝恩單子)를 올리는 예식이다. 만약 사은하지 않으면 경하면 추고(推考), 중하면 파직(罷職)에 이르기도 하였다.

208 도예차(都預差) : 예비해 놓은 관원이다. 본문의 <녹시>에 보인다.

도, 오직 통영 및 양도월령 이외에 한양의 관사에는 임명하지 않는다. ○재차 직책을 제수받은 뒤에 비로소 심약에 임명되고 두 차례 녹관에 차임된 경우 및 총민에 대한 강에서 네 차례 수석을 차지한 자, 혜민서 침의이면서 두 차례 임기를 채운 이, 의과 출신자는 모두 재차 직책을 맡는 것을 허락하지만, 타과(역과나 음양과 등) 출신자는 허락하지 않는다.

坼榜後, 切勿推移陞降 應試後, 雖有公私故, 切勿推移陞降. 當次祿官者, 有厭避者, 則勿許來等一都目取才. 卽元等. ○六臘月初十日前, 京外職有闕, 則以當等都豫差陞付, 而外任則在喪, 身死, 隸職外, 狀罷貶罷等闕, 勿爲許差, 卽付於來等取材.

탁방(이름을 내어 불임) 뒤에는 일절 변통하여 올리고 내리지 못한다 응시 뒤에는 비록 공적이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도 일절 변통하여 올리고 내리지 못한다. 녹관의 해당 차례가 된 자 가운데 마음에 꺼리어 피하는 자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한도목(都目)의 취재(取材)를 허락하지 않는다(바로 원등元等이다). ○6월과 12월 초10일 전에 경직(京職)과 외직(外職)에 결원이 있으면 해당 분기의 도예차(都豫差)를 올려 붙이는데, 외임의 경우는 상을 당했거나 죽거나 승진한 경우 외에 장파(狀罷)²⁰⁹되거나 폄파(貶罷)²¹⁰되는 등으로 생긴 결원은 임명해 주지 않고, 다음 분기의 취재에 붙인다.

총민(聰敏)²¹¹

年少聰敏 十五員 參下前啓及生徒可中合者, 自其廳或從論或圈點望差. ○萬歷癸丑, 趙相國挺 提舉時, 啓稟, 令兩醫司擇年少聰敏者十人, 置司果一窠, 教授勸課. ○康熙丙戌, 趾齊閔尙書鎮厚 提舉時, 特出五員.

연소총민 15원 참하와 전함 및 생도 중에 합당한 이를 해당 청에서 혹 논의를 쫓거나, 혹 권점하고 후보 명단을 올려 차출한다. ○만력 계축년(1613)에 상국(相國) 조정(趙挺)이 제조로

209 장파(狀罷) : 죄를 지은 수령을 감사가 임금에게 장계하여 파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210 폄파(貶罷) : 포폄(褒貶) 결과로 파직되는 것으로, 10회의 포폄에서 3회 중(中)을 맞은 경우, 5회, 3회, 2회의 포폄에서 2회 중을 맞은 경우, 당상 수령으로서 1회 중을 맞은 경우, 1회의 포폄에서 하(下)를 맞은 경우로서 파직되는 것을 말한다.

211 혜민서 총민청의 연소총민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있을 때 계품하여 양의사에서 연소총민 10인을 뽑고 사과²¹² 한 자리를 두어 교수가 권과하도록 하였다. ○강희 병술년(1706)에 상서(尙書) 지재(趾齊) 민진후(閔鎮厚)가 제조로 있을 때 특지로 5원을 늘렸다.

考講 一年分四等, 每等三任官眼同考講, 八巡後, 都講于提調, 而提調有故, 則任官替行. ○講書依元等試才例, 隨等考講.

고강 1년을 4분기로 나누어서, 매 분기별로 세 임관(任官)이 함께 고강하고, 8차례 행한 뒤에 제조 앞에서 도강(都講)을 하는데,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임관이 대신한다. ○강서(講書)는 첫 분기 시재(試才)의 예에 의거하여 분기에 따라 고강한다.

分數優等者付司果 時任祿官中居首, 則以之次人替授告身, 而施賞時, 以元分數次第置簿施賞. ○祿分三等, 居首者授其半, 之次二員以其半, 差等施賞. ○連三次及間四次居首者, 陞付參上, 而未再職者連三次, 則特其再職陞付, 陞付則減下聰敏.

점수가 우수한 이는 사과(司果)에 붙인다. 현직 녹관 중에서 수석을 차지하였으면 차순위 자로 대신 고신을 받게 하나, 상을 줄 때에는 원래의 점수 순서에 따라 상을 준다. ○녹봉은 3등급으로 나누어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그 절반을 주고 다음 순위 2원에게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차등하여 상을 준다. ○연속으로 3번 또는 총 4번 수석을 차지한 자는 참상에 올려 붙이는데, 재차 직임을 맡지 않은 이가 연속으로 3번 수석을 차지하면, 특별히 그 직임에 재차 올려 부치고 올려 부쳤으면 총민에서 뺀다.

製述施賞 每年分兩等製述, 而教授躬稟受題, 赴衙開試. 收券呈考于提調, 入格五人施賞有差. 詳見該廳憲. ○兩等講畫優等者及製述居首者, 若參祿官, 則並許當等回試.

제술(시문이나 글을 지음), 시상 매년 2분기로 나누어 제술을 하는데, 교수가 몸소 여쭈어 시험 제목을 받아, 관사에 나아가 시험을 시작한다. 시권(試卷)을 거두어 제조에게 올려 살피도록 하고, 입격한 5인은 차이를 두어 상을 준다. 총민청의 규정에 상세히 보인다. ○두 분기의 고강 점수가 우등인 이 및 제술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가 만약 참관인 녹관이라면 모두 당 분기의 회시 응시를 허락한다.

212 사과 : 오위에 두었던 정6품 서반 벼슬이다.

권장(勸獎)²¹³

勸獎廳十五員 趙齊閔尙書鎮厚提學時，別設參上聰敏，中間廢閣。乾隆戊午，休谷李相國宗城提學時，選參上十五員，廳名勸獎。

권장청 15원 상서(尙書) 지재(趾齊) 민진후(閔鎮厚)가 제조로 있을 때 참상 총민을 별도로 설치하였는데 중간에 없앴다. 건륭(乾隆) 무오년(1738), 상국(相國) 휴곡(休谷) 이종성(李宗城)²¹⁴이 제조로 있을 때 참상 15원을 선발하고 청 이름을 권장청이라 하였다.

考講 一年分四等, 每朔提調考講一次. ○背講, 每朔, 《醫學入門》三十句. 臨文, 春等《醫學正傳》, 夏等《原病式》, 秋冬兩等《東垣十書》, 分排考講.

고강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별 초하루에 제조가 1차례 고강한다. ○배강(背講)은 매 초하루에 《의학입문》²¹⁵ 30구절로 한다. 임문(臨文)은 봄 분기에는 《의학정전》, 여름 분기에는 《원병식》²¹⁶, 추동(秋冬) 분기에는 《동원십서》로 분배하여 고강한다.

製述 每等一次, 而該廳任官與祿官廳任官, 偕進提調前, 受題製進. ○提調有故不得考講, 則以製述代行. ○通計六朔分數, 居首二員, 若參其等祿官, 則許赴回試, 非祿官, 則勿施. ○通計一年分數, 居首者, 陞付任官.

제술 매 분기에 1차례 하는데, 해당 청의 임관과 녹관청의 임관이 함께 제조 앞으로 나아가 제목을 받고 지어 올린다. ○제조가 사정이 있어 고강하지 못하면 제술로 대신한다. ○6개월의 점수를 통계하여 상위 두 사람이 만약 그 분기의 녹관이라면 회시를 보도록 혀락하고 녹관이

213 혜민서의 권장청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214 상국(相國) 휴곡(休谷) 이종성(李宗城) : 1692-1759.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고(子固)로 좌의정 태좌(台左)의 장남이다. 1727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해 영조 조에 영의정을 지냈다. 백사문충공파 30세이다.

215 《의학입문》 : 중국 명대 의가인 이천(李梴)이 1575년에 간행한 의서이다. 《육전조례》〈예전·전의감〉을 보면 《의학입문》이 의과과목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순조 31년(1831) 8월 30일 기사에 판증추 이희갑(李羲甲)이 아뢰어 1834년 식년시 의과부터 《의학입문》 배강을 시행하자는 내용이 있다.

216 《원병식》 : 중국 금원사대가의 한 명인 유완소의 저작 《소문현기원병식素問玄機原病式》을 말한다. 《의학입문》처럼 《원병식原病式》은 당시의 의과나 취재의 과목이 아니었다. 권장청의 강서(講書)들이 금원사대가의 저술이거나 명나라 의가들의 저술인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아니라면 시행하지 않는다. ○1년의 점수를 통계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는 임관에 올려 붙인다.

○施賞 合計考講 · 製述, 分數優等六人, 第次施賞. 詳載《該廳節目》.

○시상 고강과 제술을 합계하여 점수가 상위인 6인은 차례대로 상을 준다. 《해청절목》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勸獎所用作米, 大米三十石 · 小米十石內, 大米六石 · 小米四石, 聰敏廳及生徒 · 書員隨等典守, 臨時納上, 其餘大米二十四石 · 小米六石, 該廳任官隨等捧置, 以爲施賞.

권장청에서 쓰는 작미(作米) 쌀 30섬과 좁쌀 10섬 내에서 쌀 6섬과 좁쌀 4섬은 총민청 및 생도, 서원이 분기에 따라 맡아 관리하며 임시로 바치고, 그 나머지 쌀 24섬과 좁쌀 6섬은 해당 청의 임관(任官)이 분기에 따라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가지고 상을 준다.

생도고강(生徒考講)²¹⁷

每年分兩等, 考講, 每等抄出八人施賞 孟仲兩朔, 三任官眼同試取, 季朔提調考講. ○分數同, 則先見講性, 性同, 則以入屬先後, 陞降. ○居首者, 白紙三束, 黃筆二枝, 白筆一枝, 真墨三丁, 第二第三, 各白紙二束, 黃筆二枝, 白筆一枝, 真墨二丁, 第四第五, 各白紙二束, 黃筆二枝, 白筆一枝, 真墨一丁, 第六至第八, 各白紙二束, 黃筆一枝, 白筆一枝, 真墨一丁, 施賞. ○不通者, 罰紙一束, 再次不通者, 罚紙二束, 三次則除案. ○無緣不參者, 罚紙一束, 再次不參, 則罰紙二束, 三次則除案. ○隨其所讀考講, 而《銅》·《纂》則背講, 他書臨講.

매년 2분기로 나누어 고강하고, 매 분기별로 8인을 뽑아 상을 준다 맹월(孟月)과 중월(仲月)에, 세 임관이 함께 시취(試取)하고, 계월(季月)에는 제조가 고강한다. ○점수가 같다면 먼저 강생(講性)을 살피고, 생(性)이 같다면 입속의 빠르고 늦음으로 올리고 내린다. 수석을 차지한 이는 백지(白紙) 3속²¹⁸, 황필(黃筆)²¹⁹ 2지, 백필(白筆) 1지, 진묵(真墨) 3정을, 2등과 3등은 각기 백지 2속, 황필 2지, 백필 1지, 진묵 2정을, 4등과 5등은 각기 백지 2속, 황필 2지, 백필

217 혜민서 생도의 고강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218 속 : 종이를 세는 단위로 10장이다.

219 황필(黃筆) :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붓이다.

1지, 진목 1정을, 6등부터 8등은 각기 백지 2속과 황필 1지, 백필 1지, 진목 1정을 상으로 준다.
○불통(不通)한 이는 별로 백지 1속을 내고, 2번 불통하면 별로 백지 2속을 내며, 3번 불통하면 생도안에서 뺀다.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이는 별로 백지 1속을 내고, 2번째는 별로 백지 2속을 내며, 3번째는 생도안에서 뺀다. ○읽고 있는 책을 따라 고강하는데, 《동인수혈침구도경》과 《찬도방론맥결집성》은 배강(背講)하고 다른 책들은 임강(臨講)한다.

의녀고강(醫女考講)²²⁰

將來醫女 舊則十五名. 乾隆庚午, 元額減省後, 減下三名, 戊戌又減一名.

장래의녀 과거에는 15명이었다. 건륭 경오년(1750)에 원액(元額)을 감생하면서 3명을 감하(減下)하였고, 무술년(1778)에 다시 1명을 줄였다.

考講 教授訓導分教《銅》·《纂》, 每次, 二次考講, 而久任眼同, 點穴則鍼醫參試. 至月終都講于提調.

고강 교수와 훈도가 《동인수혈침구도경》과 《찬도방론맥결집성》을 나누어 가르쳐 매번 2차례 고강하는데 구임관이 함께하고, 점혈 때에는 해민서침의가 참시(參試)한다. 월말에 이르러서는 제조 앞에서 도강(都講)을 한다.

優等四人, 報戶曹, 賞給料布《銅人經》至百會穴, 《纂圖》至肝藏成誦, 然後許付料布. ○料三窠布一窠, 以分數第次賞付, 而若有成才者, 則除講例付.

우등한 4인은 호조에 보고하여 요포(급료와 포)를 상으로 준다 《동인경》은 백회혈(百會穴)²²¹까지, 《찬도》는 간장(肝藏)²²²까지 외울 수 있는 뒤에야 요포를 주었다. ○급료는 3자리, 포(布)는 1자리를 점수 순서에 따라 상으로 붙이는데, 만약 재주가 성취된 이가 있다면, 고강을

220 해민서의 의녀 고강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221 백회혈(百會穴) : 두정(頭頂) 정중앙에 있는 경혈로 독맥경(督脈經)의 다섯 번째 경혈이다. 《동인경》 원문을 보면 독맥(督脈)은 수족(手足)의 삼음삼양경맥(三陰三陽經脈) 뒤에 나온다. 따라서 임맥(任脈) 전체 및 독맥(督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혈들을 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222 간장(肝藏) : 권2 오장육부(五臟六腑)의 2번째가 간장(肝臟)이다. 간장까지는 《찬도纂圖》 원문에서 반이 조금 못되는 양이다.

보지 않고 규례대로 주었다.

每節季, 禮曹同提調考講, 錄其勤慢 每節季, 禮曹同提調考講, 至年終, 抄分數, 書啓. 優等十分以上, 從自願,²²³ 奉足一名加給, 或賜物. 三分以下者, 或囚家僮, 或行楚, 教官能否殿最時憑考. 出《續錄》. ○依該曹奉甘, 教授·訓導·鍼醫主管舉行. ○提調有故, 則頃報.

매 계절 마지막 달에 예조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하여 근만(勤慢)을 기록한다
매 계절 마지막 달에 예조가 제조와 함께 고강하여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점수를 베껴서 서계한다. 높은 등수로 10분 이상의 점수를 맞은 이는 자기 원하는 대로 봉족(奉足) 1명을 더 주거나 혹은 물건을 내린다. 3분 이하의 점수를 맞은 이는 가동(家童)을 가두거나 혹 매를 치고 교관(教官)의 능부(能否)를 전최(殿最)할 때 근거로 삼는다.²²⁴ 출전 《대전속록》²²⁵. ○해당 조(曹)에서 보낸 감결(甘結)에 따라 교수·훈도·혜민서침의가 주관하여 거행한다.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탈보 한다.

成才者陞差內醫院 醫女年少聰慧者, 十五人抄擇, 令教授訓導, 嚴加教誨, 顯有成效者, 內醫院入屬. 出《典錄通考》.

재주가 성취된 이는 내의원으로 승차한다 의녀로서 어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15인을 뽑아서 교수와 훈도로 하여금 엄하게 교육하게 하여 뚜렷하게 성취가 나타나는 이는 내의원에 임속한다. 출전 《전록통고》.²²⁶.

천전(遷轉)²²⁷

醫學習讀官所業精通者, 啓授顯官 出《大典》. ○康熙庚午, 因醫官張有齡等上言, 吏曹覆啓, 醫

223 인용된 ‘優等十分以上, 從自願’이 원문에서는 ‘優等十分以上者, 京外中從’으로 되어 있다.

224 《대전속록》에는 ‘三分以下者, 或囚家僮, 或行楚, 其學習能否, 教官殿最時憑考.’로 되어 있어 참고하였다.

225 《대전속록》: 《대전속록》〈예전·권장〉에 나온다.

226 《전록통고》〈예전·권장〉에 나온다. 해당 내용은 《대전후속록》〈예전·권장〉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227 의학습독관과 치종교수 등이 벼슬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員術業精通者, 除授東班正職, 一以依《大典》勸獎之條, 一以爲醫業興起之地, 似好得宜事, 蒙允. ○每都目, 從公議, 擇可合者, 備三望, 告提調, 後報吏曹. ○李相國 畏, 判吏部時, 雜技居官授正職者, 依參下陞六例, 經書中一書·本業中一書應講後, 擬望事, 啓稟定式. ○廳官卞三彬·玄萬初·李長白, 大政時, 以末副擬受點.

의학습독관으로 그 업에 정통한 이는 아뢰어 현관(顯官)²²⁸을 제수한다 출전 《경국대전》.²²⁹ ○강희 경오년(1690)에 의관 장유령(張有齡)²³⁰ 등의 상언으로 인하여 이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의원으로 솔업에 정통한 이에게 동반 정직²³¹을 제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국대전》〈권장〉에 의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업을 흥기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참으로 시의적절할 듯합니다.’라고 하여, 윤허를 얻었다. ○매 도목마다 공의(公議)를 따라 합당한 이를 택하여 삼망(三望, 세 후보자)을 갖추어 제조에게 고한 뒤에 이조에 보고한다. ○상국(相國) 이여(李奮)²³²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잡기로 벼슬하다가 정직을 제수 받는 경우 참하관이 승륙(陞六)²³³하는 예에 의거하여 경서 중에 1책, 본업 중에 1책을 응강한 뒤에 의망(擬望)하도록 하자고 계품하여 정식으로 삼았다. ○청관(廳官) 변삼빈(卞三彬)²³⁴, 현만초(玄萬初)²³⁵, 이장백(李長白)²³⁶은 대정(大政)²³⁷ 때에 말망(末望), 부망(副望)으로 의망하여 낙점을 받았다.²³⁸

228 현관(顯官) : 문무과 출신만이 할 수 있는 관직을 뜻한다.

229 《경국대전》〈예전·권장〉에 나온다. 본문에는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으로 되어있다.

230 장유령(張有齡) : 1651-?.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긍만(巨萬)으로 무과 세영(世英)의 아들이다. 1675년 식년시 의과에 급제하여 전의감정을 지낸 의관이다. 치손계 7세이다. 박훈평. op.cit. p.416.

231 정직 : 사족 이상의 신분만이 임명되는 관직을 뜻한다.

232 상국(相國) 이여(李奮) : 1645-1718.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삼(子三)으로 예빈시정 신하(紳夏)의 차남이다. 1680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숙종 조에 영의정이 되었다. 용재공파 17세이다.

233 승륙(陞六) : 6품으로 오름을 뜻한다. 참하관에서 참상관이 되는 것은 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었다.

234 변삼빈(卞三彬) : 1667-1725.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문재(文哉)로 역과자현 이숙(爾璣)의 독자이다. 1694년 내침의가 되어 와서별제, 조지서별제, 칠방 등을 지냈다. 경성파 19세이다. 박훈평. op.cit. p.214.

235 현만초(玄萬初) : ?-. 본관은 천녕(川寧), 자는 백순(伯淳)으로 통정(通政) 위(瑋)의 3남이다. 통훈대부, 혜민서주부를 지낸 의관이다. 박훈평. op.cit. p.581.

治腫教授, 仕滿遷轉 詳見〈官制〉.

치종교수는 임기가 만료되면 천전한다〈관제〉에 자세히 보인다.

按, 《典錄通考》²³⁹云: 醫學習讀官所讀諸書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者, 啓授顯職. 習讀官及教授內生員進士, 以其仕日, 淮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材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西班隨闕敍用. ○《受教集錄》云: 三醫司已經六品職者, 東西班牙賞職, 除授時, 從初入仕例, 從品數.

살펴보건대, 《전록통고》에 '의학습독관이 읽는 책들은 일과(日課)를 기록하여 본조(本曹)에서 제조와 함께 고강하고 능통한 이를 아뢰어 현직(顯職)을 제수한다. 습독관 및 교수 안에서 생원과 진사라면 그 근무일을 원점(圓點)²⁴⁰ 수에 준하도록 해 주어 문과와 관시(館試)²⁴¹를 보는 것을 허락한다. 재주를 성취한 사람으로 산직(散職)에 속한 자는 본청에 늘 출근하다가 포폄을 살펴 동서반직에 빙자리가 생기는 대로 서용(敍用)한다.²⁴²'라고 하였다. ○《수교집록》에 '삼의사(三醫司)에서 6품직을 이미 거친 이가 동서반직을 상으로 제수받을 때에는, 초입사²⁴³의 예를 따르되, 품수(品數)²⁴⁴를 따른다.²⁴⁵'라고 하였다.

236 이장백(李長白): 1656-1715. 본관은 안산(安山), 자는 여구(汝久)이다. 혜민서교수 빈영(贊英)의 3남이다. 혜민서 의관으로 재직하다 1678년 증광시 의과에 급제하고, 1702년 내의원에 입속, 통정대부 내의원정을 지낸 의관이다. 빈영공파 8세이다. 박훈평. op.cit. p.357.

237 대정(大政): 음력 12월의 도목정사이다. 도목정사는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행해졌는데 음력 12월의 도목정사가 더 커서 대정이라 불렸다.

238 세 후보자(三望) 중 2번째 후보자를 부망(副望), 3번째 후보자를 말망(末望)이라 한다.

239 《전록통고》를 참고하여 '錄'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240 원점(圓點): 출결을 위해 식당에 들어갈 때 찍는 점이다. 아침과 저녁을 한 점으로 했다.

241 관시(館試): 성균관 유생들만이 볼 수 있는 초시를 뜻한다.

242 《전록통고》〈예전·권장〉에 나온다.

243 초입사: 처음 조정에 들어와서 벼슬하는 것, 또는 처음 조정에 들어와서 맡는 관직·자리 및 처음 조정에 들어와서 벼슬하는 사람을 말한다.

244 품수(品數): 벼슬 등급의 차례를 뜻한다.

245 《수교집록》〈이전·관직〉 숙종 12년(1686)의 강희병인승전(康熙丙寅承傳)에 나온다.

4. 식례(式例)

凡八條.

모두 8조문이다.

입직(入直)²⁴⁶

入直 舊例晝出夜直, 乾隆庚寅, 仍傳教, 晝夜直定式.

입직 옛 규례에는 낮에는 나가고 밤에만 입직하였는데, 건륭 경인년(1770)에 전교에 의해 밤낮으로 입직하는 것으로 제도를 삼았다.

做度 新來十五日, 重來五日.

주도²⁴⁷ 처음 임명되어 온 이는 15일이고, 재차 임명되어 온 이는 5일이다.

例直 三日. ○吏曹正郎入直, 則主簿入直.

예직²⁴⁸ 3일이다. ○이조 정랑²⁴⁹이 입직하면 주부가 입직한다.²⁵⁰

분차(分差)²⁵¹

東西活人署參奉 舊例晝夜直, 乾隆庚寅, 仍傳教廢直, 見官制.

동서활인서참봉 옛 규례에는 밤낮으로 입직했는데, 건륭 경인년(1770)에 전교에 의해 입직을

246 혜민서 관청 내에서의 입직에 관해 설명한 조문이다.

247 주도 : 새로 벼슬한 사람이 한 차례에 연거푸 번을 서는 일을 뜻한다.

248 예직 : 의례적으로 서는 입직, 즉 평상시의 입직을 말한다.

249 이조 정랑 : 이조의 정5품 벼슬로 이조의 실무 담당자이다.

250 《승정원일기》 숙종 12년(1686) 12월 3일 기사 ‘領議政金壽恒曰, 吏曹正郎入直時, 則各司皆以長官爲省記, 常時, 則正無輪直之規’. 이조정랑이 입직을 하면 각 기관의 장관(長官)이 입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251 혜민서에서 분차(分差)되는 의원에 대해 설명되는 조문이다.

없었다. <관제>에 보인다.²⁵²

諸道審藥 · 兩都月令 · 統營救療官 並見外任.

제도심약, 양도월령, 통영구료관 모두 <외임>에 보인다.

內局月令 二員 掌院中劑藥.

내국월령 2원 내의원의 약을 제조하는 일을 관장한다.

刑曹月令 一員 掌罪囚救療.

형조월령 1원 죄수의 구료를 관장한다.

司憲府月令 一員 掌臺閣看病及劑藥等事. ○以上取材分數差送, 而外任外兩都目交遞.

사현부월령 1원²⁵³ 대각(사현부와 사간원)에서 병든 사람의 간호 및 약을 제조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이상은 취재의 점수에 따라 차출하여 보내는데 외임²⁵⁴이 아니라면 양도목 때 교체한다.²⁵⁵.

宗親府藥房 二員 乾隆辛卯, 仍傳教減省一員.

종친부약방 2원 건륭 신묘년(1771)에 전교에 의해 1원을 감생하였다.

議政府藥房 二員.

의정부약방 2원²⁵⁶.

忠勳府藥房 一員.

충훈부약방 1원.²⁵⁷

252 <입직> 관련 내용이 필사의 오류로 <분차>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원본대로 그대로 두었다.

253 《육전조례》(1867년) <예전>에는 장무관(掌務官)의 겸직으로 되어있다.

254 외임 : 여기서는 제도심약, 양도월령, 통영구료관을 말한다.

255 외임(外任)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256 《실록》 세종 12년(1430) 8월 10일 기사를 보면 이 시기 전에 의정부약방은 설치되었다.

257 《실록》 예종 1년(1469) 1월 3일 기사를 보면 충훈부와 도총부약방이 언급된다.

中樞府藥房 一員.

중추부약방 1원²⁵⁸.

都摠府藥房 一員 今減.

도총부약방 1원²⁵⁹ 지금은 없앴다.

禮曹藥房 一員 舊例六曹皆置藥房, 並減只存禮曹.

예조약방 1원²⁶⁰ 옛 규례에는 육조(六曹)에 모두 약방 벼슬을 두었으나, 모두 없애고 예조에만 남겼다.²⁶¹

耆老所藥房 一員.

기로소약방 1원

訓鍊都監藥房 一員. 鍼醫 一員.

훈련도감약방 1원, 침의 1원.

御營廳藥房 一員. 鍼醫 一員.

어영청약방 1원, 침의 1원.

禁衛營藥房 一員. 鍼醫 一員.

258 《실록》 중종 22년(1527) 12월 10일 기사를 보면 중추부약방은 1510년 9월에 처음 설치되었다.

259 《신보수교집록》〈공전工典 · 잡령雜令〉을 보면 무인년 정식(定式)에 장흥고(長興庫)에서 달마다 각 기관에 바치는 종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 중 오상사(五上司)에 쓰는 약봉지(藥貼)를 보면 종친부는 후백지(厚白紙) 2권(卷), 의정부는 후백지 2권, 중추부는 후백지 1권, 충훈부 후백지 1권으로 약방 하나 당 후백지 1권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총부에는 관련 기록이 없는데 영조 34년(1758) 당시는 도총부약방이 혁파된 이후로 볼 수 있다.

260 《실록》 세종 12년(1430) 8월 10일 기사에서 예조약방이 처음 설치되었다.

261 《실록》 세종 19년(1437) 5월 27일 기사를 보면 육조약방(六曹藥房)이 언급된다. 1430년에서 1437년 사이에 예조 이외의 육조에도 약방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조약방만이 남은 이후에 예조약방을 육조의원(六曹醫員)으로 부르는 예가 규장각 소장의 《(예조)포폄등록》에 순조 조에서 고종 조 사이에 보인다. 다른 육조약방이 혁파된 이후에 예조약방의 업무가 단순히 예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육조약방의 업무까지 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위영약방 1원, 침의 1원.

守禦廳藥房 一員 今減.

수어청약방 1원 지금은 없앴다.

摠戎廳藥房 一員 今減. ○以上以兩醫司時仕人員分差, 無瓜限. 凡分差人員, 並除本仕, 計仕第次, 見祿試.

총용청약방 1원 지금은 없앴다. ○이상은 양의사의 현직 인원으로 분차(分差)하고 임기는 따로 없다. 분차한 인원은 모두 본 직책의 근무를 면제하는데,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차례는 <녹시>에 보인다.

按《本署騰錄》, 康熙庚申, 因兩醫司醫官等上言, 各衙門藥房, 以兩醫司時仕人員差送事, 禮曹覆啓, 蒙允. 甲申, 趯齊閔尚書 鎮厚 判禮部時, 啓達, 五上司藥房, 以兩醫司醫員差定, 各軍門藥房, 自軍門差定, 而議政府·忠勤府·中樞府藥房, 若非醫司入屬之人, 並卽汰去事, 蒙允.

《혜민서등록》을 살펴보면, 강희 경신년(1680)에 양의사 의관 등의 상언을 인하여 각 관청의 약방을 양의사의 현직 인원으로 차출하여 보내도록 예조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얻었다. 갑신년(1704), 상서 지재(趾齊) 민진후(閔鎮厚)가 예조판서로 있을 때 오상사 약방(五上司藥房)²⁶²은 양의사 의원으로 차정하고, 각 군문 약방²⁶³은 군문에서 차정하며, 의정부·충훈부·증추부약방의 경우 만약 의사(醫司)에 입속한 인원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태거(파면)하도록 계달하여 윤허를 얻었다.²⁶⁴

공사(供仕)²⁶⁵

出疆使臣救療官 時仕人員中, 自初授職始計仕日, 最多者一員. 節使及別使兩醫司輪差, 通信使則兩醫司各差一員. ○節使醫官, 兼管藥材貿易, 受價戶曹, 貨納內局. 《續錄》云: 赴京醫官藥材貿易, 令之次通使, 同力貿易. ○救療藥物醫監專當進排. 下皆倣此. ○乾隆丁酉, 以祿官受祿人, 始計大仕, 代職則

262 오상사 약방(五上司藥房): 충훈부, 의정부, 도총부, 증추부, 종친부약방을 뜻한다.

263 각 군문 약방: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영, 총용청약방을 뜻한다.

264 《승정원일기》 숙종 30년(1704) 9월 10일과 11월 13일 기사에 나온다.

265 혜민서 의관이 임시로 차출되는 공사(公仕)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勿許, 司果·司勇雖受實祿, 係是衛職, 亦勿許計仕事, 論稟定式.

출강사신구료관²⁶⁶ 현재 근무하는 이 가운데에 처음 직임을 맡은 날로부터 근무일을 계산하여 최장 근무자 1원이다. 절사(節使)²⁶⁷ 및 별사(別使)²⁶⁸일 경우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하고, 통신사일 경우 양의사에서 각기 1월을 차출한다. ○절사 의관(節使醫官)은 약재 무역을 겸하는데 호조로부터 돈을 받아 무역하여 내국에 바친다. 《대전속록》에 이르기를 ‘부경의관(赴京醫官)이 약재무역을 함에, 차통사(次通使)²⁶⁹로 하여금 함께 힘써 무역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구료와 약물은 전의감에서 전담하여 진배²⁷⁰한다. 아래도 모두 이와 같다[下皆倣此].²⁷¹ ○건륭 정유년 (1777), 녹관으로 녹봉을 받는 사람에 대해 비로소 대사(大仕)를 계산하고 대직(代職)은 허락하지 않되, 사과와 사용은 비록 실제 녹봉을 받더라도 위직(衛職)에 관계되므로 또한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논의하고 여쭈어 정식으로 삼았다.

軍兵救療官 限竣事. 勿論參上參下, 以時仕人員, 自上達下, 而兩醫司輪差.

군병구료관 일이 끝날 때까지이다. 참상과 참하에 관계없이 현직에 있는 인원으로 위아래 모두 포함하여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한다.

勅使問疾官,

칙사문질관,

伴送使救療官,

반송사²⁷²구료관,

266 출강사신구료관 : 왕명을 받아 영토 밖으로 나가는 사행 원역의 구료 목적으로 설정된 의관이다.

267 절사(節使) : 《통문관지》〈사대(事大) 상(上)·부경사행〉을 보면 동지사(冬至使), 정조사(正朝使), 성절사(聖節使), 천추사(千秋使)가 절행(節行)이다.

268 별사(別使) : 절사 이외에 용무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가는 사행을 말한다.

269 차통사(次通使) : 사행 때 상통사(上通使) 다음가는 지위의 통역관이다. 《통문관지》〈연혁·등 제等第〉를 보면 한학(漢學) 차상통사(次上通使)가 약재 무역하는 일을 하였다.

270 진배 : 물건을 나라에 바침을 뜻한다.

271 아래의 다른 공사(供仕)도 별 다른 내용이 없는 한 전의감(典醫監)에서 구료 약물을 진배(進排) 한다는 말이다.

接待所救療官,

접대소구료관,

外方別科救療官,

외방별과구료관,

輦土軍救療官,

여사군구료관,

山陵都監救療官,

산릉도감²⁷³구료관,

築城所救療官,

축성소구료관,

京外癟疫救療官 並限竣事. 差送上同, 而與軍兵救療一體施行. 兩醫司輪差.

경외여역구료관 모두 일이 끝날 때까지이다.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군병 구료와 함께 시행한다.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한다.

推鞠救療官 勿論參上·參下, 自下達上, 而本府則以再職員, 路程則以未再職員, 限二日差送, 而兩醫司並差. ○時仕久任·教授及年六十員勿差. 已行久任·教授及時祿官·訓導·鍼醫與執綱官, 惟推鞠救療·軍兵救療外, 勿差諸般救療及禁府月令. ○三省救療官亦同, 而限三日. ○親鞫及庭鞫時, 內外庭救療官, 醫監專當. ○或有謀避者, 削名後, 差之次員. ○乾隆丙子, 兩醫司等訴, 路程救療官, 上闕本署·下府醫監擔當事, 定式. ○推鞠姑罷而更設, 則仍連次差送, 若永罷, 則復自下差送.

추국구료관 참상과 참하에 관계없이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하는데, 본부(本府)라면 재차 직임을 맡은 인원으로, 노정(路程)이라면 재차 직임을 맡지 않은 인원으로 하여 이를 기한으로

272 반송사 : 《통문관지》 <사대事大 하(下)·빈사차견賓使差遣>을 보면 칙사(勅使)에는 정경(正卿)을 원접사로 보내고 차관(差官)에는 아경(亞卿)을 접반사로 보내는데, 회정(回程) 때에는 접반사를 반송사로 고쳐 부른다고 하였다.

273 산릉도감 :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만들 때 임시로 만든 기구이다.

차출하여 보내고, 양의사에서 모두 차출한다. ○현직의 구임관, 교수 및 나이 60살이 된 이는 차출하지 않는다. 이미 구임관을 지낸 이, 교수 및 현직의 녹관, 훈도, 혜민서침의는 집강관(執綱官)²⁷⁴과 함께 오직 추국구료와 군병구료 외에 제반 구료 및 의금부월령에 차출하지 않는다. ○삼성²⁷⁵ 구료관(三省救療官) 또한 동일한데 사흘을 기한으로 한다. ○친국(親鞠)²⁷⁶ 및 정국(庭鞠)²⁷⁷ 때의 내외정구료관(內外庭救療官)²⁷⁸은 전의감이 전담한다. ○혹여 이 직무를 피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으면 이름을 지운 뒤에 다음 인원으로 차출한다. ○건륭 병자년(1756)에 양의사 등이 상소하여 노정구료관(路程救療官)의 경우, 위로 대궐은 본서(혜민서)에서, 아래로 부(府)는 전의감에서 담당하도록 정식으로 삼았다. ○추국이 잠깐 파했다가 다시 열리면 그대로 같은 이를 연달아 차출하여 보내고, 만약 오랫동안 파했다가 다시 열리면 다시 아래에서 차출하여 보낸다.

場中救療官 以曾經參上員, 自下達上差送. 一所醫監, 二所本署, 三所則兩醫司交差. 文武科殿試 · 謄聖 · 春塘臺試所, 醫監擔當.

장중구료관 이전에 참상을 거친 인원으로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하여 차출하여 보낸다. 일소(一所)에는 전의감에서, 이소(二所)에는 본서에서, 삼소(三所)에는 양의사에서 교대로 차출한다. 문·무과 전시²⁷⁹, 알성시²⁸⁰, 춘당대시²⁸¹의 시소는 전의감이 담당한다.

進宴都監救療官 差送 上同, 而兩醫司交差.

진연도감²⁸² 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교대로 차출한다.

設粥所救療官 差送 上同, 而兩醫司交差, 分二所則分差.

274 집강관(執綱官) : 본문 <공사>에 나온다.

275 삼성 : 형조, 사헌부, 사간원이 함께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을 뜻한다.

276 친국(親鞠) : 임금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는 일을 뜻한다.

277 정국(庭鞠) : 의정부나 사헌부에서 왕의 명에 의해 죄인을 심문하는 일을 뜻한다.

278 내외정구료관(內外庭救療官) : 내정과 외정구료관이 별도로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1739) 12월 16일 기사 참조.

279 전시 : 임금 앞에서 보는 최종 시험이다.

280 알성시 : 임금이 문묘를 참배한 뒤 치르던 과거이다.

281 춘당대시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친립하여 보던 과거이다.

282 진연도감 :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를 위한 임시 기구이다.

설죽소²⁸³ 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교대로 차출하되, 이소(二所)로 나누었다면 나누어 차임한다.

勅使頭目救療官 差送上同, 而兩醫司並差. 煎茶官醫監差送.

칙사두목²⁸⁴ 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모두 차출한다. 전다관(煎茶官)은 전의감에서 차출하여 보낸다.

犯越罪人救療官 差送上同, 而兩醫司並差.

범월²⁸⁵ 죄인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모두 차출한다.

漂泊人救療官 勿論參上·參下, 自下達上, 而兩醫司並差. 以上限三日.

표박인구료관 참상과 참하에 관계없이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하는데, 양의사에서 모두 차출한다. 이상은 3일을 기한으로 한다.

氷庫救療官 差送上同. 東氷庫本署, 西氷庫及內氷庫醫監.

빙고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낸다. 동빙고는 본서에서, 서빙고 및 내빙고는 전의감에서 맡는다.

試射救療官 差送上同. 依兵曹捧甘, 文臣武臣堂上朔試射·將官試射·禁軍都試·內三廳薦取才時, 差送.

시사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낸다. 병조에서 보낸 감결(甘結)에 따라 문신과 무신 당상 대상 삭시사²⁸⁶, 장관 대상 시사, 금군 대상²⁸⁷, 내삼청천 대상 취재²⁸⁸ 때 차출하여 보낸다.

283 설죽소 : 빈민들을 위해 설치하여 죽을 무료로 제공하던 곳이다.

284 칙사두목 : 두목(頭目)이란 중국 사신 일행 중 무역을 목적으로 따라온 북경 상인을 말한다.

285 범월 : 국경을 넘었다는 뜻이다.

286 삭시사 : 매월 초하루 당하의 문관과 일반 무관의 궁술을 시험하는 일이다. 병조에서는 50세 이하의 문관이 대상이었다.

287 내삼청의 기사(騎士)가 모여 보는 시험을 뜻한다.

288 금군청에서 무과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아직 임관되지 않은 이를 채용하려고 보던 시험이다. ‘내삼청출신취재(內三廳出身取才)’라고도 한다.

兵曹習陳救療官 差送上同.

병조습진구료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낸다.

成均官儒生救療官 以參上員, 自下達上差送, 而兩醫司輪差. 每月望前本署, 望後醫監. ○居齋儒生, 如有疾病, 自本館言于兩醫司, 使之趨卽診視²⁸⁹, 藥債自本館題給. 出《受教集錄》. ○以上並除本仕, 限竣事差送.

성균관유생구료관 참상 인원으로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하여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한다. 매월 보름 전에는 본서에서, 보름 뒤에는 전의감에서 맡는다. ○기숙사에 사는 유생이 만일 질병이 있으면 성균관에서 양의사에 말을 전하여서 즉시 진료를 받게 하고, 약값은 본관에서 제급(題給)²⁹⁰한다. 출전《수교집록》.²⁹¹ ○이상은 모두 본 직책의 근무를 면제하고 일을 마칠 때까지 차출하여 보낸다.

義禁府月令 差送上同, 而限五日輪差. 冬夏本署, 春秋醫監.

의금부월령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5일을 기한으로 하여 돌아가며 차출한다. 여름과 겨울에는 본서에서, 봄과 가을에는 전의감에서 맡는다.

各司入直 祿官中, 自吏曹擧入.

각사 입직²⁹² 녹관 가운데서 이조가 추천하여 들인다.

各陵入直 祿官中, 自禮曹捧甘差送.

각릉 입직 녹관 가운데서 예조가 감결(甘結)을 보내 차출하여 보낸다.

各司進排 祿官中, 依吏曹捧甘差送.

각사 진배 녹관 가운데서 이조에서 보낸 감결에 따라 차출하여 보낸다.

289 使之趨卽診視 : 원문은 ‘使之趨卽送醫診視’ 단락에 ‘送醫’가 추가되어 있다.

290 제급(題給) : 값을 매기어 줌을 뜻한다.

291 《수교집록》〈예전·혜휼惠恤〉에서 숙종 9년(1683)의 강희계해승전(康熙癸亥承傳)에 있다.

292 각사 입직 : 《승정원일기》를 보면 의정부(議政府), 충훈부(忠勳府), 기로소(耆老所), 장흥고(長興庫) 등 관원 수가 적은 관청의 입직의 경우에 관원 수가 많은 관청 예를 들어 사역원, 혜민서, 전의감 등의 관원들이 임시직(假官)으로 임명되어 입직을 했다.

巫祝官 大駕親臨吊祭時，兩醫司官員各一員，以淺淡服，奉荔，兩活人署官員各一員，奉桃枝，分列左右。大駕至喪次，自外門內前導，至吊所，吊罷後，大駕乘輦則止。本署以入直員差送。

무축관 대가(大駕)²⁹³가 친립하여 조제(弔祭)할 때 양의사 관원 각 1원이 천담복(淺淡服)²⁹⁴을 입은 채로 열(荔, 익모초)²⁹⁵을 들고, 양 활인서 관원 각 1원이 복승아나무 가지를 들고, 좌우로 열을 나누어 선다. 대가(大駕)가 상차(喪次)²⁹⁶에 이르면 바깥문 안에서 앞서 인도하여 조소(弔所)에 이르고, 조문이 끝난 뒤 대가가 대련에 오르면 그친다. 본서에서 입직할 인원을 차출하여 보낸다.

廂救療官 郊外舉動時，前後射隊救療官。祿官中從前職座次，自下達上差送。右廂本署，左廂醫監。○禁軍救療官，以鍼醫差送，而兩醫司輪差。

상구료관²⁹⁷ 교외 거동 때 전후사대(前後射隊)²⁹⁸의 구료관이다. 녹관 중에서 이전 직임의 좌차에 따라 위아래 모두 대상자에 포함해 차출하여 보낸다. 우상(右廂)은 본서에서, 좌상(左廂)은 전의감에서 맡는다. ○금군²⁹⁹ 구료관은 침의로 차출하여 보내는데 양의사에서 돌아가며 차출한다.

檢屍官 差送上同，而初檢本署，覆檢醫監。○杖弊檢屍，醫監獨當。○進排官及檢屍官，並參下官行三次後，參上官行一次。

검시관 위와 동일하게 차출하여 보내는데, 초검은 본서에서, 복검은 전의감에서 맡는다。○장

293 대가(大駕) : 원래 임금이 타는 어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을 뜻한다.

294 천담복(淺淡服) : 제사 때 입는 연한 옥빛의 옷이다.

295 열(荔, 익모초) : 《승정원일기》 효종 9년(1658) 5월 16일 기사에 무축관(巫祝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내용 중에 열(荔)을 익모초(益母草)로 당시에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6 상차(喪次) : 상주가 거하는 처소이다.

297 상구료관 : 여기서 상(廂)은 군문의 상위(廂衛)를 말한다.

298 전후사대(前後射隊) : 어가가 교외 거동 할 때에 이동 중에 금군 앞뒤로 위치한 이루어진 시위대이다. 이동을 마치고 포진하게 되면 좌상과 우상으로 나뉜다. 활을 잘 쏘는 이로 수장을 삼았다. 《실록》 선조 34년(1601) 11월 12일 기사를 보면 ‘명시에 상(上)께서 조칙을 영접할 때에 시위군사는 좌우상을 각 5위, 전후사대는 각 3위를 마련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299 금군 : 여기서는 어가를 호위하는 중앙의 시위대를 말한다. 이동 중과 포진 시에도 중앙에 위치한다.

(杖)을 맞아 죽은 사람에 대한 검시는 전의감에서 전담한다. ○진배관³⁰⁰ 및 검시관은 모두 참하관이 3차례 한 뒤에 참상관이 한 차례 한다.

重記進呈官 本署草藥, 四孟朔重記, 該色參奉二員, 輪回進呈于戶曹.

증기진정관 본서의 초약(草藥)은 사맹삭(四孟溯)³⁰¹에 증기(重記)³⁰²를 담당 참봉 2원이 교대로 호조에 나아가 올린다.

唐藥看品官 戸曹捧唐藥時, 該色參奉二員, 輪回進去.

당약간품관 호조가 중국산 약재를 봉입(捧入)할 때 담당 참봉 2원이 교대로 나아간다.

仕色官 參上參下中, 擇善書者二員, 書寫褒貶單子. 一員今減.

사색관 참상과 참하관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 2원을 택하여 포폄단자를 베껴 쓰게 한다.
지금은 1원을 줄였다.

執綱官 參上參下中二員, 望差于行首官. 級檢一廳.

집강관 참상과 참하관 중에서 2원을 행수관³⁰³에게 후보 명단을 올려 차출한다. 청 전체를 규
검³⁰⁴한다.

內局劑藥官 進上臘藥時, 勿論參上·參下·生徒, 依內局關文差送. 久任掌務官, 限畢間, 親呈舉案,
而久任行古風禮後, 不進. ○年例藥及無時進御藥, 並以參下員及生徒中, 時帶聰敏者差送. ○年五十員
及已行訓導並勿差.

내국제약관 납약³⁰⁵을 진상할 때 참상·참하·생도에 관계없이 내국의 관문³⁰⁶에 의해 차출하

300 진배관 : 물건을 지급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이다.

301 사맹삭(四孟溯) : 매 계절의 첫째 달. 즉 음력 1·4·7·10월이다.

302 증기(重記) : 물품을 기록한 장부이다.

303 행수관 : 본문의 <포폄>에 나온다. 전합청(前唧廳)의 우두머리이다.

304 규검 : 바로잡고 검속함을 뜻한다.

305 납약 : 해마다 납일에 왕이 근신(近臣)에게 하사하던 환약으로 우황청심원, 소합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의원식례》<연례진상年例進上>을 보면 납약은 모두 21종이다.

306 관문 : 상부 관청에서 아래 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서이다.

여 보낸다. 구임 장무관은 일을 마칠 때까지 직접 명부를 올리는데, 구임관이 고풍례³⁰⁷를 하였다 면 직접 올리지 않는다. ○연례적으로 올리는 약 및 때 없이 드시는 약은 모두 참하 인원 및 생도 중에서 현재 영민한 자를 차출하여 보낸다. ○나이 50세가 된 인원 및 이전에 훈도를 했던 사람은 모두 차출하지 않는다.

各處元定劑藥官 宗親府·議政府·忠勤府·中樞府·禮曹·承政院, 元定各一員. 以參下官, 限十日輪差, 臘藥時, 或依捧甘加定. 戊寅汰減鄉居前卿後, 元定外, 勿爲加定事, 自備局, 捧甘于五上司.
○年少總敏, 勿差于議政府·忠勤府·承政院.

여러 곳에 원래 정해진 제약관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중추부, 예조, 승정원에 원래 정해진 인원은 각 1원이다. 참하관으로 10일을 기한으로 하여 돌아가며 차출하되, 납약을 만들 때는 더러 보내온 감결(甘結)에 따라 정원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무인년(1758)에 고향에서 지내는 전함을 줄인 뒤 원래 정해진 인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지 말도록 비변사에서 오상사(五上司)로 감결을 보냈다. ○연소총민은 의정부, 충훈부, 승정원에 차출하지 않는다.

禁亂官 兩等取才時, 以赴京當次員差定, 使之糾察.

금란관 두 분기의 취재 때 도성으로 올라올 해당 차례인 인원³⁰⁸으로 차정하고서 그로 하여금 규찰하게 한다.

假儒生 延勅時, 依成均官捧甘, 生徒六人差送. 具巾服於延勅所, 序立祇迎後, 徑入闕內, 仁政門外, 又爲祇迎.

가유생(임시유생) 칙사를 맞이할 때 성균관에서 보낸 감결에 의해 생도 6인을 차출하여 보낸다. 칙사를 맞이하는 장소에서 건복(巾服)을 갖추어 입고 차례대로 서서 지영(祇迎)한 뒤 곧바로 궐안에 들어와 인정문³⁰⁹ 밖에서 다시 지영한다.

307 고풍례 : 신임 관원이 전례에 의해 서리 등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308 본문의 <공사>를 보면 부경의원은 현재 근무하는 이 가운데에 처음 직임을 맡은 날로부터 근무일을 계산하여 최장 근무자이다.

309 인정문 :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의 정문이다.

의망(擬望)³¹⁰

久任望 直長以上,

구임 후보자 직장 이상이어야 한다.

教授望 奉事以上,

교수 후보자 봉사 이상이어야 한다.

訓導望 參奉以上,

훈도 후보자 참봉 이상이어야 한다.

治腫教授望 主簿以上. ○以上以曾經再職員, 隨品並疑.

치종교수 후보자 주부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은 이전에 재차 직임을 거친 인원으로 품계에 따라 모두 의망한다.

鍼醫望 未再職前啣並疑.

혜민서침의 후보자 재차 직임을 맡지 않은 전함을 모두 의망한다.

부조(轉助)³¹¹

助哀所 舊有大同契, 轉助四喪, 中間物力不達, 仍爲廢閣. 乾隆戊子, 鄭尙書 亨復 提舉時, 慨然於此, 謂諸任官, 鳩聚財力, 別立一所, 名以助哀. 條成節目, 手製序文, 弁于卷首, 寔體古人歸厚無憾之意也.

조애소 옛날에 대동계(大同契)가 있어 4가지 상(喪)³¹²을 부조했는데, 중간에 물력(物力)이 미치지 못하여 그대로 없어졌다. 건륭 무자년(1768), 상서(尙書) 정형복(鄭亨復)³¹³이 제조로 있을

310 혜민서에서 의망(擬望)하는 규칙과 대상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의망이란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311 혜민서에 있던 조애소(助哀所)의 내역과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312 4가지 상(喪) : 부모, 본인, 처의 상사(喪事)이다.

313 상서(尙書) 정형복(鄭亨復) : 1686-1769. 본관은 동래(東萊), 호는 정현(靖軒)으로 지평(濟平) 제선(濟先)의 차남이다. 1725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영조 조에 호조판서를 지냈다. 문익공파 23세이다.

때 이를 애석하게 여겨서 모든 임관과 의논하여 재력을 끌어모아 별도로 1곳을 세우고 조애(助哀)라 이름 붙였다. 절목을 조목별로 만들고 손수 서문을 써서 책머리에 갖추었으니, 실로 옛사람의 ‘후하게 장사지내서 섭섭함이 없게 하라[歸厚無憾]’는 뜻을 체득한 것이다.

儲置齋需 諸般禮木, 酉酌增加, 添以官貯錢五十兩, 辦置齋需, 以備不虞, 以救四喪 廉官經再職納
禮後施行. 父母已妻四望³¹⁴喪, 及時任提調四望, 並致轉吊慰. 詳載《該廳節目》.

재수(齋需)³¹⁵를 쌓아 두어 제반 예목(禮木)을 적절히 해아려 증가시키고 관사에 비축한 돈 50냥을 더하여 재수를 마련해 두어 예기치 못한 일을 대비한다. 4가지 상(喪)을 구제한다 청관이면서 재차 직임을 거친 이가 납례(納禮)³¹⁶ 뒤에 시행한다. 부모, 자기, 처의 네 가지 상(喪)을 당한 경우 및 현직 제조의 네 가지 상도 모두 치부(致轉)하고, 조문하고 위로한다. 《권장청절목》에 자세히 실려 있다.

해용문장(該用文狀)³¹⁷

二品衙門直行, 餘衙門並報屬曹. ○各司有緊事, 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凡中外文字, 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 ○凡文書, 悉書見設員位名押, 不必僉署. 以上並出《典錄》.

2품아문³¹⁸은 바로 올리고, 다른 아문은 모두 속한 조(曹)에 보고한다. ○각 관사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제조가 직접 아뢰고, 중대한 사무는 계본(啓本)으로, 작은 사무는 계목(啓目)으로 한다. ○무릇 중앙과 지방 사이에 오가는 문서에서 등등 또는 이하의 관사에는 관문(關文)을 쓰고, 이상의 관사에는 첨정(牒呈)을 쓰며, 7품 이하는 첨문(帖文)을 쓴다. ○무릇 문서에

314 望 : 원본의 ‘망(望)’은 ‘망(亡)’의 음차(音借)로 추측된다. 아래도 같다.

315 재수(齋需) : 명복을 비는 비용이나 물품이다.

316 납례(納禮) : 관청에 받아들여지는 절차이다.

317 이 조에서는 혜민서에서 쓰는 공문서 양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조에 실린 서식의 원문은 표점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해당 원문에서 행 바꿈은 실제 서식에서도 행 바꿈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행했다. 해당 원문의 띠어쓰기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임금과 관련된 글자 앞에서 는 띠어쓰기를 한다.

318 2품아문 : 으뜸 벼슬이 2품인 관청이다. 예를 들어 육조(六曹)가 이에 해당한다.

는 현재 설치된 인원의 지위, 이름, 서압을 다 쓰되, 굳이 모든 인원이 서압할 필요는 없다.
이상은 모두 《전록통고》에 나온다.³¹⁹

계본식 교지를 받을 일이 아니라면, 복후 이하 여섯 글자(伏候教旨謹啓)는 없고, 단지 현재 인원의
직함을 쓰고 서명을 한다. 계목식도 동일하다. (啓本式 非取旨事, 無伏候以下六字,
只見在員書銜署名. 啓目同.)

惠民署提調某職臣姓名謹³²⁰

啓爲某事云云 謹具啓

聞伏候

教旨謹啓³²¹

年號幾年某月 日 提調臣姓署 提調同品, 則列書.

혜민서 제조 아무 직(職) 신(臣) 아무개가 삼가 아무 일에 관하여 아뢸니다.
운운. 삼가 갖추어 계문(啓聞)합니다. 삼가 교지를 기다립니다. 삼가 아れます.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제조 신 성(姓) 서압 제조가 같은 품계이면 열서(列書)³²²한다.

계목식(啓目式) 다른 관사에 보내는 이문(移文)으로 말이 빈다할 경우에는 원본에 붙여서
잇는다.³²³ (啓目式 他司移文語繁者, 粘連元本.)

惠民署³²⁴

啓目云云 何如

319 《전록통고》〈예전 · 용문자식用文字式〉

320 첫줄의 ‘혜민서’ 앞은 두 칸을 비우고, 둘째 줄의 ‘계(啓)’와 끝줄 ‘연호’ 앞은 한 칸을 비운다.

321 윗줄의 ‘候’와 ‘啓’ 글자를 상하 일렬이 되게 맞춘다.

322 글자를 반절크기로 하여 ‘日’ 밑에 각각을 적는다는 말이다. 본문 〈해용문장〉의 첨식 등에서도
직장(直長) 이하의 녹관을 적으면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323 계목(啓目)의 내용과 관계되는 첨정(牒呈), 수본(手本)은 이어 붙인다.

324 첫줄의 ‘혜민서’ 앞은 두 칸을 비우고, 끝줄 ‘연호’ 앞은 한 칸을 비운다.

年號以下上同 以上出《典錄》.

혜민서 계목. 운운. 어떻습니까.

연호 이하는 위와 같다. 이상은 《전록통고》에 나온다.³²⁵

천장식(薦狀式) 제조가 사정이 있으면 본사의 관원이 예조에 보고하여 천장(薦狀)을 아뢴다.(薦狀式 提調有故, 則本司官員報禮曹, 啓薦狀.)

惠民署提調某職 臣 姓名謹³²⁶

啓爲薦狀事云云 取才則某等取才, 祿職·衛職則某等副司果, 審藥, 監營則某道·兵營則某道節度使審藥某瓜滿代. 凡有頃則云‘某有頃代’. 當次人員職姓名磨鍊謹具啓 聞

某職幾望 取才, 祿官則主簿一望, 直長一望, 奉事一望, 參奉四望, 東活人署參奉一望, 西活人署參奉一望. 衛職則副司果一望, 副司勇一望. 審藥, 監營則某道審藥一望, 兵營則某道節度使審藥一望.

某階 某 祿官·審藥, 則郎大夫階, 衛職則校尉·將軍階.

年號幾年某月 日 提調臣姓署

혜민서 제조 아무 직(職) 신(臣) 아무개가 삼가 천장(薦狀)에 관하여 아뢸니다. 운운 취재라면 아무 분기의 취재, 녹직(祿職)·위직(衛職)이라면 아무 분기의 부사과, 심약이라면 감영은 아무 도(道), 병영은 아무 도(道) 절도사 심약 아무개의 임기 만료로 대신할 후임이다. 무릇 탈(頃)이 있으면 ‘아무개가 탈이 있어 대신할 후임[某有頃代]’이라고 한다. 해당 차례 인원의 직책과 성명을 마련(磨鍊)하여 삼가 갖추어 아뢸니다.

아무 직(職) 몇 후보자 취재의 경우 녹관은 주부 한 후보자, 직장 한 후보자, 봉사 한 후보자, 참봉 네 후보자, 동활인서참봉 한 후보자, 서활인서참봉 한 후보자이고, 위직(衛職)은 부사과 한 후보자, 부사용(副司勇) 한 후보자이다. 심약은 감영(監營)이라면 아무 도(道)의 심약 한 후보자, 병영(兵營)이라면 아무 도(道)의 절도사 심약 한 후보자이다. 아무 관계(官階)의 아무개 녹관과 심약이라면 낭(郎), 대부(大夫)의 품계, 위직(衛職)이라면 교위(校尉)이나 장군(將軍)의 품계

325 《전록통고》〈예전·용문사식用文字式〉

326 첫줄의 ‘혜민서’ 앞은 2칸을 비우고, 2번째 줄의 ‘계(啓)’와 끝줄 ‘연호’ 앞은 1칸을 비운다. 중간의 ‘某職’, ‘某階’는 3칸을 비운다.

이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제조 신 성(姓) 서암

천관식(薦關式) 옛 규례에 경외직(京外職)은 단지 천장(薦狀)이었는데, 강희 갑신년(1704) 어람문서(御覽文書)의 번잡한 것을 없앨 때 천관(薦關)으로 고쳤다. ○제조(提調)가 사정이 있으면 혜민서 관원이 예부(禮部)에 보고하여 해당 조(曹)에 관문을 전달한다. (**薦關式 舊例**, 京外職直薦狀, 康熙甲申, 御覽文書削繁時, 改以薦關. ○提調有故, 則本署官員報禮部, 轉關該曹.)

惠民署提調爲相考事云云 京外職某瓜滿有頃云云, 一如薦狀. 當次人員職姓名磨鍊關後錄
爲去乎依例啓下向事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關

某曹³²⁷ 祿官 · 審藥吏曹, 衛職兵曹.

年號幾年某月 日 幾字左傍書相考.

提調押 提調上印關字.

後

某職幾望

某階某 並依上薦狀式.

혜민서 제조의 상고(相考)하는 일입니다. 운운 경외직(京外職) 아무개의 임기 만료로
탈이 있다 운운함은 일체 천장식(薦狀式)과 같다. 해당 차례의 인원의 직책과 성명을 마련하여
관문 뒤에 기록하오니, 규례대로 계하(啓下) 할 일입니다. 이에 관문을 보내오니 청컨대

살펴 확인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관문대로 할 일입니다.

이상의 관문을

아무 조(曹)에 보냅니다 녹관과 심약은 이조이고, 위직(衛職)은 병조이다.

연호(年號) 몇 년 아무 월 일 '기(幾)' 자 원쪽 곁에 '상고(相考)'라 쓴다.

327 ‘者’, ‘曹’, ‘關’이 위아래로 같은 열에 있게 한다.

제조(提調) 착압(着押)³²⁸ ‘제조(提調)’ 자 위에다 ‘관(關)’ 자를 찍는다.

뒤(後)

아무 직(職) 몇째 후보자(望)

아무 계(階) 아무 모두 위의 천장식(薦狀式)에 의한다.

초기식(草記式)³²⁹

惠民署官員以提調意³³⁰

啓曰云云 何如

혜민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뢸니다. 운운. 어떻습니까.

첩정식(牒呈式)

惠民署爲某事云云 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³³¹

右牒呈

某衙門

年號幾年某月 日 某職姓署衙押 幾字左傍書牒呈.

혜민서의 무엇하는 일입니다. 운운. 이에 첨정(牒呈)을 보내오니 삼가 청컨대 살펴 확인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첨정대로 할 일입니다.

이상의 첨정을

아무 아문에 보냅니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아무 직(職) 성(姓) 서명(署名)³³² 착압(着押) ‘기(幾)’ 자

328 착압(着押) : 관문식에서는 ‘不姓着押’을 첨정식에서는 ‘着姓着名着押’으로 한다. 천관식도 관문식의 일종으로 着姓이 없다.

329 각 아문에서 사무상 중대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단히 적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330 첫줄의 ‘혜민서’ 앞은 1칸을 비운다.

331 ‘者’와 ‘呈’, ‘門’ 글자를 상하로 일렬로 맞추고, ‘須’, ‘牒’, ‘衙’도 그러하다.

왼쪽 곁에 ‘첩정(牒呈)’이라 쓴다.

평관식(平關式)³³³

惠民署某事云云 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關³³⁴

某衙門

年號幾年某月 日 幾字左傍書某事. 主簿押 主簿上印關字. 某職 上同.

혜민서의 무엇하는 일입니다. 운운. 이에 관문을 보내오니 청컨대
살펴 확인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관문대로 할 일입니다.
이상의 관문을
아무 아문에 보냅니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기(幾)’ 자 왼쪽 곁에 ‘아무 일(某事)’이라 쓴다. 주부 착압(着押)
‘주부(主簿)’ 자 위에다 ‘관(關)’ 자로 된 도장을 찍는다. 아무 직(職) 위와 같다.

입안식(立案式)

惠民署爲入屬事署生徒有闕本閑良 童蒙則云童蒙 姓名身乙入屬令是遺合行立案者

年號幾年某月 日

提調押 主簿押 直長, 奉事, 參奉, 參奉. ³³⁵

혜민서의 입속에 관한 일입니다. 혜민서 생도에 빈자리가 있어 본 한량 동몽이라
면 동몽이라 한다 아무개 봄을 입속하게 하고 이에 입안을 보냅니다.

332 원문의 ‘衡’은 살아있는 사람의 ‘名’을 높일 때 사용한다.

333 동등한 아문(衙門)끼리 문서를 보낼 때에 평관식을 사용한다.

334 ‘曹’와 ‘關’ 글자가 같은 열에 있게 한다.

335 실제 공문서를 보면 주부(主簿)의 착압(수결) 바로 밑에 직장(좌)과 봉사(우)가 그다음 참봉
이원이 열서(列書)되는데, 제조와 주부 글씨의 반절 크기이며, 각기 착압(수결)이 들어간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제조 착압(着押) 주부 착압(着押) 직장. 봉사. 참봉. 침봉.

첩식(帖式)³³⁶

惠民署爲某事云云 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某准此³³⁷

年號幾年某月 日

主簿押 主簿上印帖字. 直長, 奉事, 參奉, 參奉.³³⁸

혜민서의 무엇하는 일입니다. 운운. 이에 우리러

살펴 확인하고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첨(帖)대로 할 일입니다.

이상의 첨(帖)을 아무개에게 내리니 이를 따르십시오.

연호 몇 년 아무 월 일

주부 착압(着押) ‘주부’ 자 위에다 ‘첨(帖)’ 자로 된 도장을 찍는다. 직장. 봉사. 참봉. 침봉.

포폄단자식 첫째 첨(帖)에는 수본³³⁹을 쓰고, 둘째 첨(帖) 이하에 녹관, 의학³⁴⁰, 전함, 치종교수 등의 직책을 열서(列書)하고 성명의 각 아래에 근무일을 쓴다. ○어람단자(御覽單子), 전최단자(殿最單子)에는 모두 근무일 및 수본(手本)이 없는데. 전최(殿最) 건은 둘째 첨(帖)의 첫째 행(行)에 ‘혜민서(惠民署)의 이번 춘하 분기(추동 분기라면 추동 분기라고 한다) 포폄

336 고품(高品) 아문(衙門)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내리는 문서 양식인데, 관청의 장(長)이 소속 관원에게 내리는 문서 양식으로도 활용된다.

337 ‘右’ 글자 앞에 두 칸을 비운다.

338 실제 공문서를 보면 주부의 수결 바로 밑에 직장(좌)과 봉사(우)가 그다음 참봉 2원이 열서(列書)되는데, 제조와 주부 글씨의 반절 크기이며, 각기 수결이 들어간다.

339 수본 : 상부 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공문서이다.

340 의학 : 겸교수, 교수, 훈도를 맡한다.

등제(褒貶等第)'라고 쓰고 다음 첨(帖)에 연호, 월일(月日)를 쓴다.(제조 성姓 서암한다)

(褒貶單子式 第一帖書手本, 第二帖以下列書祿官·醫學·前啣·治腫等職, 而姓名各其下書仕日.

○御覽單子·殿最單子, 並無仕日及手本, 而殿最佳, 則第二帖第一行書惠民署今春夏等,
秋冬等則云秋冬等, 褒貶等第, 來帖書年號月日. 提調, 姓署.)

惠民署手本

右手本爲署祿官及前啣治腫今某等褒貶仕日磨鍊後錄爲臥乎事

年號幾年某月 日 主簿姓署銜 掌務官 上同.

혜민서수본

이상의 수본은 혜민서의 녹관 및 전함, 치종교수의 이번 아무 분기 포폄을 위한
근무일을 마련하여 후록(後錄)한 일입니다.

연호 몇 년 모 월 일 주부 성(姓) 서명(署名) 장무관 위와 같다.

祿官³⁴¹ 以下批日始計仕..

某職某 去某月某日, 以今某月某日至, 計元日幾日·實仕幾日. 有受由不仕, 則云元日幾日內受由不
仕幾日·實仕幾日. ○或日淺·或未差·或減省, 隨時開錄. ○主簿·直長·奉事·參奉·活人署參奉
並同.

녹관 하비(下批)한 날부터 시작하여 근무일을 계산한다.

아무 직(職) 아무개 지난 아무 월 아무 일에서 지금 아무 월 아무 일까지 원일(元日, 원래의
근무일) 며칠, 실제 근무일 며칠인지 계산한다. 말미를 받아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일(元日) 며칠
안에 말미를 받아 근무하지 않은 날 며칠, 실제 근무일 며칠'이라고 한다. ○혹 근무한 날이
적거나, 혹 아직 임명되지 않았거나, 혹 감생(減省)이 되었다면³⁴² 때에 따라 개록(開錄)³⁴³한다.
○주부, 직장, 봉사, 참봉, 활인서참봉 모두 동일하다.

醫學

某職某 兼教授·教授·訓導並上同.

341 앞 한 칸을 비운다. 아래 '의학(醫學)' 등도 그러하다.

342 감생(減省)이 되었다면: 해당 관직을 없앴다는 뜻이다.

343 개록(開錄): 상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 끝에 이름이나 의견을 붙임을 뜻한다.

의학(醫學)

아무 직(職) 아무개 겸교수, 교수, 훈도 모두 위와 동일하다.

前銜 春夏等, 則自去十二月十一日, 至今六月初十日, 秋冬等, 則自六月十一日, 至今十二月初十日.

某階某 去某月某日, 以今某月某日至, 計元日幾日·實仕幾日. 有受由不仕, 則云元日幾日內受由不仕幾日·京仕幾日. 有各衙門藥房月令仕, 則云元日幾日內某仕幾日.

전함(前啓) 춘하(春夏) 분기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지금 6월 10일까지이며, 추동(秋冬) 분기는 6월 11일부터 지금 12월 10일까지이다.

아무 계(階) 아무개 지난 아무 월 아무 일에서 지금 아무 월 아무 일까지 원일(元日) 며칠, 실제 근무일 며칠인지 계산한다. 말미를 받아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일 며칠 안에 말미를 받아 근무하지 않은 날 며칠, 한양에서 근무한 날 며칠’이라고 한다. 각 아문에서 약방, 월령(月令)으로 근무한 일이 있으면 ‘원일 며칠 안에 아무 직(職) 근무일 며칠’이라고 한다.

治腫

某階某 與祿官同. 階從軍銜.

치종교수

아무 계(階) 아무개 녹관과 동일하다. 품계는 군함(軍銜)을 따른다.

서적(書籍)³⁴⁴

《銅人經》五帙, 《纂圖》四帙, 《醫學正傳》四帙, 《大觀本草》四帙, 《素問》五帙, 《直指方》五帙, 《東垣十書》十帙 乾隆乙酉, 以活字印出. ○以上並留官庫.

《동인수혈침구도경》5질, 《찬도방론맥결집성》4질, 《의학정전》4질, 《대관본초》4질, 《황제내경소문》5질, 《직지방》5질, 《동원십서》10질 건륭 을유년(1765)에 활자로 인출하였다.³⁴⁵ ○이상은 모두 관고(官庫)에 두었다.

《提調先生案》一本 久任所在, 《前銜先生案》一本 前銜廳在, 《任官先生案》一本, 《祿

344 혜민서에 보관되어 있는 서적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345 제조 홍계희의 발문을 보면 영조 41년 9월 하순에 16권 10책으로 간행되었다.

官先生案》三本³⁴⁶, 《出身案》一本, 《前卿都案》一本 以上並在久任所, 《生徒案》四本 分在前卿廳 · 久任所.

《제조선생안》 1본(本) 구임소에 있다. 《전함선생안》 1본. 전함청에 있다. 《임관선생안》 1본, 《녹관선생안》 3본, 《출신안》³⁴⁷ 1본, 《전함도안》 1본 이상은 모두 구임소에 있다. 《생도안》 4본 전함청과 구임소에 나누어 있다.

《大仕冊》 二本 一久任所, 一前卿廳, 《功勞冊》 一本, 《軍兵救療置簿冊》 一本, 《贍錄》 三本 以上在前卿廳.

《대사책》 2본 하나는 구임소에 하나는 전함청에 있다. 《공로책》 1본, 《군병구료치부책》 1본, 《혜민서등록》 3본 이상은 전함청에 있다.

《惠局志》 二件³⁴⁸ 乾隆戊戌, 新校. 一前卿廳, 一久任所. 《奴婢案》 一本, 《藥田案》 一本, 《貢案》 一本 並在久任所.

《해국지》 2건 건륭 무술년(1778)에 새롭게 교정했다. 하나는 전함청에 하나는 구임소에 있다. 《노비안》 1본, 《약전안》 1본, 《공안》 1본 모두 구임소에 있다.

집물(什物)³⁴⁹

印信 乾隆癸未, 改造.

인신(印信) 건륭 계미년(1763)에 다시 만들었다.

346 《통문관지》〈서적書籍〉을 보면 《녹관선생안》을 3본으로 기록하면서 같은 내용의 3책이 아니라, 수정하여 계속 기록이 된 각기 다른 내용의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교회청선생안敎誨廳先生案》 등에서도 동일하다. 이로 유추해보면 《녹관선생안》 등도 같은 책이 여러 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본이 추가되면서 책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47 《출신안》: 출신(出身)이라 하면 의과(醫科)를 합격한 이를 말한다.

348 件 : '件'이란 표현을 통하여 《해국지》가 활자로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의 형태로만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349 이 조에서는 혜민서에 소속된 집기를 설명한다.

國忌板一,

국기판(國忌板)³⁵⁰ 하나,

衙門題額一,

관청의 제액³⁵¹ 하나,

掲板一 乾隆庚寅秋, 英廟朝, 永禧殿行幸時, 歷臨本署, 當寧以春宮陪焉, 實無前盛舉也. 時提調 韓尙書 光會, 記以掲之.

게판 하나 전통 경인년(1770) 가을, 영조 조, 영희전³⁵² 행행(行幸)³⁵³ 때³⁵⁴ 본서에 역림³⁵⁵ 하셨는데 지금 주상전께서 춘궁으로 배행(陪行)하셨으니 실로 전에 없는 성대한 일이었다. 당시 제조인 상서(尙書) 한광회(韓光會)^{356 357}가 기록하여 게시하였다.

《銅人經》上下卷 板子七十三立,

350 국기판(國忌板) : 임금과 왕비의 기일 등 국기(國忌)에 관련된 사항들을 적어서 걸어놓은 판이다.

351 제액 : 글씨나 그림을 써서 둔 액자이다.

352 영희전 : 한성부 남부 훈도방에 위치한 조선시대 임금의 어진(御眞)을 모신 전각이다. 광해 11년(1619)에 태조, 세조의 어진을 모시면서 남별전 또는 봉자전이라 불렸는데, 인조 때에 원종(인조의 생부)의 어진도 함께 봉안하였다. 숙종 때, 전주에 있던 태조의 어진을 베끼어서 모시면서 영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숙종, 영조, 순조의 어진도 이후 모셔졌으며 그 때마다 건물이 중수되었다.

353 행행(行幸) : 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동함을 뜻한다.

354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8월 10일 기사. 이날 영조(英祖)는 혜민서에서 전좌(殿座)하였다. 제조 한광회를 불러 혜민(惠民)이라 이름 하였으니 혜민할 수 있나 묻자, 제조는 과거에는 약(藥)으로 혜민하였지만 근래에는 그러지 못하다고 답한다. 영조가 각 관청에 올리는 약재 수에 관한 등록을 들여서 본 뒤, 제조와 계속 이어 문답을 한다. 혜민서관원과 생도십여 인에게도 《소문素問》이 황제가 진실로 저술한 것인가 묻고 차례차례 답을 들어 보았다.

355 역림 : 지나는 길에 들름을 뜻한다.

356 상서(尙書) 한광회(韓光會) : 1715-1792.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문숙(文叔)으로 현감 사덕(師德)의 3남이다. 1738년 식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영·정조 때에 형조판서, 판의금부사를 지냈다. 공안공파 25세이다.

357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6월 20일 기사. 한광회가 혜민서제조에 임명되었다.

《동인수혈침구도경》 상하권의 책판 73닙,

《纂圖》四卷 板子一百二十七立 並在官庫.

《찬도방론맥결집성》 4권의 책판 127닙 모두 관고에 있다.

5. 지공(支供)³⁵⁸

凡五條.

모두 5조문이다.

약전(藥田)³⁵⁹

358 조선시대 관비물품(官備物品)의 지급을 말한다.

359 이 조에서는 혜민서 약전(藥田)의 위치와 수세(收稅)에 대해 설명한다. 종약전(種藥田)은 원래 약재를 종식(種植)하여 해당 관청에서 소용(所用)할 용도의 토지였고, 혜민서뿐 아니라 전의감(《실록》중종 39년 11월 1일 기사 참조), 내의원에도 관련 기록이 있다. 내의원의 종약전은 생지황, 형개 등의 약재를 기르며 두 명의 관원을 파견하였는데, 《승정원일기》현종 2년 1월 18일 기사 참조 그 관원들의 명칭은 종약관(種藥官)으로 내의(內醫) 중에서 교대로 6월과 12월에 교체하여 임명했다. 《내의원식례》〈약전〉 참조. 현재의 서울 중구 약고개(藥峴)의 지명은 내의원의 약전(藥田)에서 유래했으며 《승정원일기》上同, 내국(內局)의 약전은 숙종(肅宗), 영조(英祖) 때에는 밤섬(栗島)에도 있었다. 《승정원일기》숙종 34년, 2월 25일, 영조 6년 1월 9일, 기사 참조. 이밖에 규장각 소장의 《내의원식례》〈약전藥田〉에도 내의원(內醫院) 약전 관련 기록이 있다. 영조 기사년(1749)에 약전고개에는 1결(結) 89부(負) 7속(束)이, 밤섬에는 10결 8속이 있었고, 영조 을유년(1765)에는 약전고개와 밤섬의 약전이 본래보다 줄어든 대신 여우도(汝于島)에 추가로 3결(結) 73부(負)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전의감(典醫監)과 혜민서의 약전은 내의원의 약전과는 다르게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대전(代田)하여 세를 받는 식(두 관청의 약전은 조세 정수 대상이 아니었다)으로 변화되었고, 이는 두 기관의 약전이 혁파되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 강위빙의 서문에 《약전안藥田案》을 지칭하면서 《대약전안代藥田案》이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당시의 현실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 전의감의 약전은 조선 중기 이후로 관련 기록이 없어 일찍이 혁파된 것으로 보이며 혜민서의 약전도 본문에 따르면 영조(英祖) 말년까지 해서 모두 팔아 없어졌다.

藥田 舊時，藥田九日半耕，在於東小門外沙阿里。乾隆乙酉，洪啓禧提調時，斥賣，逐年生殖，至庚寅，李尚書福源提舉時，分買於三處。○一在東部建德坊紅門立洞，空塈三百間，及田半日耕，每年收稅十七兩。○一在高陽富原面西江舊水鐵里，場字田六負二束，同字田八負四束，每年收稅五兩。○一在同面新水鐵里，冬字田六負，同字田半日耕，食字田三負，合三作二日耕，每年收稅十兩。以上收稅錢，庫子收捧二十兩，以補本署及諸上司無來貢進排藥材，十二兩添補於入直柴油價。○詳見《藥田案》。

약전 과거 약전은 9일 반 같이로 동소문(東小門)³⁶⁰ 바깥 사아리(沙阿里)³⁶¹에 있었다.³⁶² 전릉을유년(1765), 홍계희(洪啓禧)가 제조로 있을 때 헐값으로 팔고 해마다 이자를 불리다가 경인년(1770)에 이르러 상서(尚書) 이복원(李福源)³⁶³가 제조로 있을 때³⁶⁴ 3곳에 나누어 샀다. ○하나는 동부 건덕방(建德坊)³⁶⁵ 흥문입동(紅門立洞)³⁶⁶에 있었는데, 공터 300칸 및 밭 반일 같이로 매년 거두는 세금이 17냥이었다. ○하나는 고양(高陽) 부원면(富原面)³⁶⁷ 서강(西江) 구수철리(舊水鐵里)³⁶⁸에 있었는데 장자전(場字田)³⁶⁹ 6부³⁷⁰ 2속, 동자전(同字田) 8부 4속으로 매년 거두는 세금

360 동소문(東小門) : 한양 8대문의 하나로 동북쪽 문의 속칭이다. 처음에는 혜화문으로 부르다 중종 때에 혜화문으로 개칭하여 불렀다. 현재의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다.

361 사아리(沙阿里) : 현재의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던 마을 이름이다.

362 《공폐貢弊》〈혜민서고지기惠民署庫直〉에 혜화문(동소문) 밖의 약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모래와 돌로 된 척박한 땅인데 초재(草材)를 심어 고지기로 하여금 여러 상사에게 책응하게 하였다.

363 상서(尚書) 이복원(李福源) : 이복원(李福源, 1719-1792).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수지(綏之)로 판서 철보(iscal輔)의 장남이다. 정조 때에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판사공파 19세이다.

364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11월 11일 기사. 이복원이 혜민서제조가 되었다.

365 건덕방(建德坊) : 한양 동부 12방의 하나이다. 현재의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일부와 충신동에 해당한다.

366 흥문입동(紅門立洞) : 흥문선골.

367 부원면(富原面) : 부원이 한성부로 편입되면서 용산방(龍山坊)과 서강방(西江坊)으로 되었는데 용산방이 현재의 용산구, 서강방이 현재의 마포구이다.

368 구수철리(舊水鐵里) : 현재의 서울 마포구 구수동 일원이다.

369 장자전(場字田) : 《천자문千字文》에 수록된 글자 차례의 순서대로 지번의 순서를 표시하여 붙인 이름이다. 예를 들어 ‘천자전, 지자전’식으로 순서대로 붙인다.

370 부 : 결부파속법에 따라 산출량에 의해 정해지는 면적 단위이다. 10파(把)=1속(束), 10속=1부(負), 100부=1결(結). 조선시대에는 양전(量田)을 시행해서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

이 5냥이었다. ○하나는 같은 면(面) 신수철리(新水鐵里)³⁷¹에 있었는데, 동자전(冬字田) 6부, 동자전(同字田) 반일 같이, 식자전(食字田) 3부, 셋을 합치면 이를 같이로 매년 거두는 세금이 10냥이었다. 이상 수세전(收稅錢)에서 고지기가 20냥을 수봉(收捧, 세금을 거둬들임)하여 본서 및 여러 상사(上司)의 무래공(無來貢)³⁷² 진배 약재를 보충하고 12냥은 입직 때의 땔나무와 기름 값으로 더하였다. ○《약전안》에 자세히 보인다.

공물(貢物)³⁷³

各道元貢 舊例, 諸道土產藥材直上納時, 請臺捧上, 分排於供上及諸上司本署矣. 自大同作米後, 惠廳給價貢人, 使之自京措備.

각도원공(각도에 원래 정해진 공물) 옛 규례에는 여러 도의 토산 약재를 직접 상납할 때 청대(請臺)³⁷⁴하여 받아들이고 공상(진상) 및 여러 상사(上司), 본서에 분배하였다. 대동법이 시행되어 작미(作米)한 뒤로 선혜청에서 공인에게 값을 지불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양에서 조비(措備)하도록 했다.³⁷⁵

全羅道 元貢五十五種, 一千一百七十二斤十二兩, 價米九百六十九石十三斗八升.

전라도 원공(元貢)은 55종으로 1,172근 12냥³⁷⁶이니, 가미(價米)³⁷⁷는 969석³⁷⁸ 13말 8되이다.

을 나누었는데, 가장 척박한 6등의 전(田)은 1등에 비해 4배 정도 넓었다.

371 신수철리(新水鐵里) : 현재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일원이다.

372 무래공(無來貢) : 공물로 바쳐지지 않음을 뜻한다. 본문 <공물>에 나온다.

373 혜민서에 공납되는 공물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374 청대(請臺) : 각 관아(官衙)에서 사무를 종료하고 창고를 봉해 두기 위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의 검사를 청하는 일을 말한다.

375 순조 8~9년(1808~9)에 집필된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篇·각공各貢>을 통해 18세기 후반의 약재 공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76 냥 : 무게 단위이다. 16냥=1근. 10돈=1근

377 가미(價米) : 공물(貢物) 등의 물품이나 공역(公役) 등의 값으로 대신 거두거나 지급하는 쌀로, 특히 대동법 시행 후 지방에서 공물 대신 그것을 살 수 있는 값을 백성에게 거두어 해당 관청에 바치면 해당 관청에서 공인(貢人)을 선정해서 그 값을 주어 물건 구입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을 말한다.

濟州三邑 濟州元貢六種, 七十一斤. 大靜五種, 二十三斤四兩. 旌義五種, 四十七斤四兩. 並直納.

제주의 3읍³⁷⁹ 제주의 원공은 6종으로 71근, 대정은 5종으로 23근 4냥, 정의는 5종으로 47근 4냥이다. 모두 직접 상납한다.

慶尙道 元貢二十四種, 一百八十六斤四兩, 價米一百四十三石一斗九升二合.

경상도 원공은 24종으로 186근 4냥, 가미(價米)는 143섬 1말 9되 2홉이다.

洪忠道 元貢四十五種, 四百八十五斤九兩, 價米三百六十二石十斗八升九合.

홍충도 원공은 45종으로 485근 9냥, 가미(價米)는 362섬 10말 8되 9홉이다.

江原道 元貢十三種, 三百六十二斤, 價米二百四十石十三斗九升五合.

강원도 원공은 13종으로 362근, 가미(價米)는 240섬 13말 9되 5홉이다.

平安道 元貢十二種, 一百六十八斤八兩, 價米二百二十二石七斗二升五合.

평안도 원공은 12종으로 168근 8냥, 가미(價米)는 222섬 7말 2되 5홉이다.

黃海道 元貢三十四種, 六百二十二斤八兩五錢, 價米一百八十九石三斗五升五合.

황해도 원공은 34종으로 622근 8냥 5돈, 가미(價米)는 189섬 3말 5되 5홉이다.

京畿道 元貢十三種, 四百四斤一兩, 價米一百八十七石十斗八升.

경기도 원공은 13종으로 404근 1냥, 가미(價米)는 187섬 10말 8되이다.

咸鏡道 元貢, 安邊二種 · 德源二種 · 永興三種 · 北青一種 · 吉州二種 · 鏡城一種 · 咸興三種. 並直納. 乾隆革罷.

함경도 원공은 안변 2종, 덕원 2종, 영흥 3종, 북청 1종, 길주(吉州) 2종, 경성 1종, 함흥 3종이다. 모두 직접 상납한다. 전통 연간에 혁파되었다.

○牛黃元貢五十八部 慶尙道十九部 · 洪忠道三十一部 · 黃海道八部, 價米合八百七十石.

378 섬 : 곡식을 세는 단위이다. 섬(石)=15말(斗), 1말=10되(升). 1되=10홉(合)

379 제주의 3읍 : 제주목(濟州牧)은 현재의 제주시, 대정현과 정의현은 현재의 서귀포시를 반분하여 각기 동부와 서부이다.

○우황의 원공(元貢) 58부³⁸⁰ 경상도 19부, 홍충도 31부, 황해도 8부로, 가미(價米)는 도합 870섬이다.

牛黃加定二十六部 慶尙道八部·全羅道五部·黃海道六部·洪忠道七部, 價米合三百九十石.

우황의 가정(加定)³⁸¹ 26부 경상도 8부, 전라도 5부, 황해도 6부, 홍충도 7부로, 가미(價米)는 도합 390섬이다.

臘藥別貿牛黃一百部七分 每部價銀十五兩, 自戶曹上下³⁸².

납약 별무³⁸³ 우황 100부 7푼 매 부(部)당 가은(價銀)은 15냥을 호조에서 지급한다.

鹿茸二十五對 常平倉六對半, 慶尙道七對半, 全羅道五對, 洪忠道五對, 江原道一對, 價米合七十五石.

녹용 25대 상평창³⁸⁴ 6대 반, 경상도 7대 반, 전라도 5대, 홍충도 5대, 강원도 1대로, 가미(價米)는 75섬이다.

鹿茸加定一對 黃海道一對, 價米三石.

녹용의 가정 1대 황해도 1대로, 가미(價米)는 3섬이다.

熊膽九部 全羅道五部·洪忠道四部, 價米合二十七石.

옹담 9부 전라도 5부, 홍충도 4부로, 가미(價米)는 도합 27섬이다.

熊膽加定五部 黃海道五部, 價米合十五石.

옹담의 가정 5부 황해도 5부로, 가미(價米)는 도합 15섬이다.

麝香元貢一百八十二部五分 價米合三百六十五石.

380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우황 1부(部)는 1돈 5푼이다.

381 가정(加定) : 원래 정해진 수 이상으로 더하여 추가로 거둠을 뜻한다.

382 上下 : '上下'는 이두식 표현으로 '차하'로 읽고 '지급한다, 준다'의 뜻이다.

383 납약 별무 : 납약을 만들 용도로 가외 것을 따로 구함을 뜻한다.

384 상평창 : 풍년에 곡식을 값은 올려 사들이고, 흥년에 값을 내려 팔아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사향의 원공 182부 5푼³⁸⁵ 가미(價米)는 365섬이다.

麝香加定三十二部 價米合六十四石. ○以上進排內局.

사향의 가정 32부 가미(價米)는 도합 64섬이다. ○이상은 내국에 진배한다.

別貿易唐材 舊例, 牛黃貢人受價戶曹, 貿納內局, 中間貢人不能支保. 故乾隆丙子, 募定藥局, 使之貿納.

별도로 무역하는 중국산 약재 옛 규례에는 우황 공인이 호조에서 돈을 받아 무역하여 내국에 납입하였는데, 중간에 공인이 감당해 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건륭 병자년(1756)에 약국을 모정(募定)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역하여 납입하게 하였다.

人蔘三十斤 每斤價米四十二石十斗. 二十斤, 貢人受價, 進排於五上司. 六斤八兩, 雍正甲辰, 因國財乏用, 廟堂陳達權減, 只有三斤八兩, 以爲官用. 同年, 以貢人蔘價踊貴, 不能支撑, 伊時, 提調姑給二斤, 使之補用, 而乾隆丁巳, 貢人, 又難支保, 納券自退, 則惠廳, 以本價上下于本署, 分排於五上司及官用. 庚申, 因大臣陳達, 復使貢人, 依前受價進排, 而官蔘二斤, 因未推尋矣, 戊戌, 鄭參判 昌聖 提舉時, 查實推納.

인삼 30근 매 근(斤)당 가미(價米)는 42섬 10말이다. 20근을 공인이 값을 받아 오상사(五上司)에 진배하였다. 6근 8냥은 응정 갑진년(1724)에 국가 재정이 부족함으로 인해 비변사에서 진달(陳達)하여 임시로 덜어주고 단지 3근 8냥만 관용(官用)으로 썼다. 같은 해 공인이 급등한 인삼값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이때 제조가 잠시 2근을 주어 부족한 것을 보태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건륭 정사년(1737)에 공인이 다시 감당하기 어려워하면서 계약서를 반납하고 스스로 물러나니, 선혜청³⁸⁶에서 본래 가격으로 본서에 지급하여 오상사(五上司) 및 관용으로 분배하였다. 경신년(1740)에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다시 공인으로 하여금 전처럼 값을 받아 진배하게 하였으나, 관삼(官蔘) 2근은 그대로 두고 추심하지 않았다가 무술년(1778) 참판(參判) 정창성(鄭昌聖)이 제조로 있을 때 사실을 조사하여 추납(推納)하게 하였다.

385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를 보면 사향의 1부(部)는 1돈이다. 같은 1부여도 우황과 사향이 다르다.

386 선혜청 :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을 관리하였다.

生參五斤十五兩 每兩價米三石. 康熙乙未, 因內局提調陳達, 加給十斗, 合三百四十八石五斗.

생삼(生蔘) 5근 15냥 매 냥(兩)당 가미(價米)는 3섬이다. 강희 을미년(1715)에 내국 제조의 진달로 인하여 10말을 더 주어서 도합 348섬 5말이다.

稅蔘七斤八兩 每兩價米三石, 合三百六十石內, 五十八石十四斗, 以般價計減, 因貢人等上言, 還給.

세삼(稅蔘)³⁸⁷ 7근 8냥 매 냥당 가미(價米)는 3섬으로, 도합 360섬 내에서 58섬 14말은 운반 값으로 계산하여 덜어냈는데, 공인 등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도로 지급하였다.

無來貢 草藥八十餘種, 本署書員·庫子及貢人, 擔當進排於五上司及本署. ○以上邑排藥種, 詳載《貢案》. ○《貢案》外藥材, 勿爲勒徵事³⁸⁸, 自朝家, 屢度申飭.

무래공³⁸⁹ 초약 80여 종은 본서의 서원, 고지기 및 공인이 담당하여 오상사(五上司) 및 본서에 진배한다. ○이상 읍에서 진배하는 약재의 종류는 《공안》에 자세히 실려 있다. ○《공안》 외의 약재는 강제로 징수하지 말도록 조정에서 여러 번 타일러 경계하였다.

진배(進排)³⁹⁰

大殿 每三日, 燒木一斤半, 陳艾一編. 水刺間, 燒木三斤, 陳艾六編. ○每年正三四六七九十二月, 本署進排, 二五八十一月, 醫監進排, 諸宮房同,

대전 사흘마다 장작³⁹¹ 1근 반, 목은 쑥 1편. 수라간³⁹²에는 장작 3근, 목은 쑥 6편. ○해마다 1·3·4·6·7·9·10·12월에는 본서에서 진배하고, 2·5·8·11월에는 전의감에서 진배하는데 모든 궁방이 동일하다.

中宮殿 上同,

387 세삼(稅蔘) : 실물 징수에 따른 인삼세이다.

388 勒徵事 : 원문은 ‘勒事徵’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에 근거하여 ‘勒徵事’로 바로잡았다.

389 무래공 : 공납으로 받지 않음을 뜻한다.

390 혜민서에서 궁방과 기관에 바치는 물품과 약재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391 장작 : 대궐에서 쓰는 참나무 장작이다.

392 수라간 : 대전에 떨려 있는 수라를 짓는 주방이다.

중궁전 위와 동일하다.

世子宮 每三日, 燒木一斤, 陳艾四編,

세자궁 사흘마다 장작 1근, 묵은 쑥 4편,

嬪宮 上同,

빈궁³⁹³ 위와 동일하다.

諸嬪昭儀房 每三日, 燒木一斤,

제빈소의방³⁹⁴ 사흘마다 장작 1근,

大君房, 大君夫人房, 公主房, 翁主房 並上同,

대군방³⁹⁵, 대군부인방, 공주방, 응주방 모두 위와 동일하다.

王子君房, 王子夫人房 每三日, 燒木一斤, 陳艾二編. ○以上大君以下出宮則止.

왕자군방, 王子부인방 사흘마다 장작 1근, 묵은 쑥 2편. ○이상 대군 이하는 출궁하면 증지한다.³⁹⁶.

宗廟 五享大祭時, 蕭艾各三十斤.

종묘 오향대제³⁹⁷ 때 사철쑥³⁹⁸과 쑥 각 30근.

山陵及實錄所 國恤時陵所, 及宗簿·藝文館, 川芎隨所入進排.

393 빈궁 : 빈(嬪)은 세자의 적실 또는 정1품 품계를 지닌 왕의 후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세자의 적실을 지칭한다.

394 제빈소의방 : 왕의 후궁들이 거처하는 궁방(宮房)을 말하며 소의(昭儀)는 내명부(內命婦)의 정 2품 품계이다.

395 대군방 : 왕의 정실 아들을 왕자대군(王子大君), 정실 딸을 공주(公主)라 하며, 왕의 측실 아들을 왕자군(王子君), 측실 딸을 응주(翁主)라 한다.

396 대군(大君) 이하는 결혼하면 궐 밖에 살림집을 따로 마련해주어 출궁하였는데, 왕자대군(王子大君)과 왕자군(王子君)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열 살이 넘어가면 관례적으로 출궁하게 된다.

397 오향대제 : 종묘에서 지내던 춘하추동 사시제와 납제(12월 납일)의 다섯 번의 제사이다.

398 사철쑥 : 《갈암집葛庵集》 권12 ‘蕭艾蒿也’

산릉소 및 실록소 국흘(국장) 때의 능소 및 종부시, 예문관에 천궁³⁹⁹을 들어가는 대로 진배 한다.

宗親府, 禮曹 每朔, 草藥十七斤, 人蔘五兩.

종친부, 예조 매달 초약 17근, 인삼 5냥.

議政府, 中樞府, 忠勳府 每朔, 草藥⁴⁰⁰十七斤, 人蔘三兩六錢.

의정부, 중추부, 충훈부 매달 초약 17근, 인삼 3냥 5돈.

本署 每朔, 草藥十七斤, 人蔘二兩.

본서 매달 초약 17근, 인삼 2냥.

通信使行中 黃芪三斤, 吉更二斤十三兩, 白朮三斤八兩, 防風二斤十二兩, 山藥二斤十兩, 白芍藥二斤十一兩, 郁李二斤十兩, 蒼朮三斤八兩, 赤芍藥二斤八兩, 與醫監分半進排.

통신사행 중에 횡기 3근, 길경 2근 13냥, 백출 3근 8냥, 방풍 2근 12냥, 산약 2근 10냥, 백작약 2근 11냥, 육리인 2근 10냥, 창출 3근 8냥, 적작약 2근 8냥을 전의감과 더불어 절반씩 진배한다.

東西活人署 每年, 大柴胡湯各十貼, 二聖救苦丸各二劑, 陳艾各六編, 本署進排. 清心元 · 蘭合元各十丸, 平胃散 · 升麻葛根湯 · 九味羌活湯各十貼, 醫監進排.

동서활인서 해마다 대시호탕 각 10첩, 이성구고환 각 2제, 묵은 쑥 각 6면은 본서에서 진배한다. 청심원 · 소합원 각 10알, 평위산 · 승마길근탕 · 구미강활탕 각 10첩은 전의감에서 진배한다⁴⁰¹.

399 천궁 :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근경을 말려 약재로 쓴다. 궁궁이. 조선시대에는 좀이 종이를 먹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천궁을 이용했다. 종부시는 왕실의 계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예문관에서는 실록의 편찬 자료인 사초(史草)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천궁을 필요로 하였다.

400 草藥 : 원본에는 ‘草蔘’으로 되어있으나 전후 용례를 보면 오기이므로 수정하였다.

401 여기에 수록된 처방들은 전염병 치료와 구급 처방으로 활용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광해 5년(1613)에 허준이 친한 전염병 치료서 《신찬벽온방》을 보면 온역표증(溫疫表證)에 구미강 활탕(九味羌活湯), 대두온(大頭瘟)에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이 수록되어 있다. 광해 6년

京外別療官 瘟疫紅疫時，有朝令則舉行，京則兩醫司分半進排，外則本署獨擔。○康熙戊寅，朝堂陳達，自惠廳給兩醫司別救療藥價米三百石，丁酉給二百石，戊戌給五十石。○以上草藥貢人進排。

경외별료관 역병이나 흥역 때 조정의 명령이 내리면 거행하는데, 도성은 양의사에서 절반씩 진배하고, 지방은 본서에서 전담한다. ○강희 무인년(1698)에 비변사에서 진달하여, 선혜청에서 양의사의 별구료(別救療) 약값 쌀 300섬을 지급하였고, 정유년(1717)에는 200섬을 지급하고 무술년(1766)에는 50섬을 지급하였다. ○이상은 초약 공인이 진배한다.

內局 牛黃·鹿茸·熊膽·麝香及唐鄉材，各其貢人隨時進排。

내국 우황·녹용·웅담·사향 및 중국산과 국내산 약재를 각기 공인이 수시로 진배한다.

응역(應役)⁴⁰²

提調丘債 每朔錢文六兩。

제조의 구채⁴⁰³ 매달 돈 6냥이다.

坐起時茶啖 褒貶時茶啖床價，作木八疋，無油密果則六疋，平排則四疋，單排則二疋。取才時床價，米一石三斗。並自官上下⁴⁰⁴，則貢人添價排盤，而坐起設行於本署，然後有茶啖。

좌기 때의 다담⁴⁰⁵ 포폄 때의 다담상 값은 작목⁴⁰⁶ 8필인데, 유밀과⁴⁰⁷가 없다면 6필, 평배(平排)하면 4필, 단배(單排)하면 2필이다. 취재 때의 상 값은 쌀 1섬 3말이다. 모두 관청에서 지급하면

(1614) 혜준이 찬한전염병 치료서 《벽역신방》을 보면 당독역(唐毒疫)에 구미강활탕과 대시호탕(大柴胡湯)을 활용하고 있다.

402 혜민서의 해당 공역(公役)을 담당하는 공인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403 구채 : 구채란 부리는 하인의 급료로서 녹봉 외에 주는 돈이나 물품을 말한다.

404 上下 : ‘차하’는 지급한다는 의미의 이두 표현이다.

405 다담 :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은 다과 따위를 뜻한다.

406 작목 : 미(米)나 태(太) 등의 물종을 목(木) 즉 무명으로 바꾸어 놓거나 바꾸어 내게 하는 것 또는 낸 것을 말한다.

407 유밀과 : 밀가루를 꿀, 참기름으로 반죽하여 다식판 또는 약과판에 찍어 기름에 지져 꿀에 담가먹는 과자이다.

공인이 값을 더해 상을 까는데 좌기를 본서에서 베풀어 행한 뒤에야 담당이 있다.

陪從官籠載馬 郊外舉動時, 陪從官籠載馬貲價折半, 自官上下, 折半, 貢人擔當. ○依幕貢人擔當.

배종관의 농재마 임금이 교외로 거동할 때 배종관의 바구니를 싣는 말을 빌리는 값은 절반은 관청에서 지급하고, 절반은 공인이 담당한다. ○의막 공인⁴⁰⁸이 담당한다.

鋪陳 提調坐起時, 鋪陳及器皿.

포진 제조 좌기 때의 까는 자리 및 그릇붙이.

勅使時頭目支供飯酒 價米自戶曹上下.

칙사 때 두목(頭目)⁴⁰⁹에게 이바지할 반주(飯酒) 가미(價米)는 호조에서 지급한다.

本署茶母 以上草藥貢人擔當, 而坐起時茶母及都使令, 與蓼貢人分半雇立.

본서의 다모⁴¹⁰ 이상은 초약 공인이 담당하는데, 좌기 때의 다모 및 도사령⁴¹¹은 인삼 공인과 절반씩 나누어 고립(雇立)한다.

場中役只⁴¹² 依戶曹分定役只與器皿.

장중 손님 치르기 호조에서 손님 치르기와 그릇붙이를 분정(分定)한 데 따른다.

燒木紙岱 一年八朔每日供上所入. ○以上蓼契貢人擔當.

소목(장작)⁴¹³과 종이 포대 한 해의 8개월 동안 매일 들어가는 비용을 바친다. ○이상은 삼계 공인이 담당한다.

假水工 承旨·史官依幕所, 依刑曹甘結定送.

408 의막 공인 : 막사로 쓰는 천막이나 장막을 의막(依幕)이라 한다.

409 두목(頭目) : 두목(頭目)이란 중국 사신 일행 중 무역을 목적으로 따라온 북경 상인을 말한다.

410 《실록》 성종 2년(1471) 5월 25일 기사를 보면 의녀 고강(考講)에서 3개월 내에 세 번 불통(不通)하면 혜민서의 다모로 정체(定體)하였다.

411 도사령 : 우두머리 사령이다.

412 役只 : 役只是 ‘겪기’로 발음되며 ‘손님 치르기’란 뜻의 이두이다.

413 소목(장작) : 참나무 장작이다.

임시 수공⁴¹⁴ 승지, 사관의 의막소에 형조의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襦衣 北送襦衣.

유의(襦衣)⁴¹⁵ 추운 지방으로 보낼 때의 유의.

告功紙債 每朔錢文六兩, 輸送吏曹. ○以上蔘契·草藥契貢人, 分半擔當.

고공지채 매달 돈 6냥을 이조에 보낸다. ○이상은 삼계와 초약계의 공인이 절반씩 나누어 담당한다.

假各色掌 進宴時及勅使時, 依刑曹甘結定送.

임시로 각기 일을 맡아보는 직임 나라에서 진연을 베풀 때 및 칙사가 올 때 형조의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禮葬軍 凡禮葬時, 依刑曹甘結定送.

예장군⁴¹⁶ 예장하는 때 형조의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犒饋酒物 犬饋軍兵時, 依戶曹甘結進排.

호궤하는 간단한 음식 군병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할 때 호조의 감결에 의해 진배한다.

直宿時使喚 以上元貢牛黃貢人擔當.

숙직 때의 사환 이상은 원공(元貢)의 우황 공인이 담당한다.

天童軍 科學時, 依刑曹甘結定送.

천동군 과거 때 형조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童子軍 祈雨祭時, 依刑曹甘結定送. ○以上加定牛黃貢人擔當.

동자군 기우제 때 형조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이상은 가정(加定) 우황 공인이 담당한다.

勅使時茶匠 依都監甘結定送.

414 수공 : 수공은 각사에 속한 미천한 사람으로 마당을 쓸고 물을 긋는 일을 하였다.

415 유의(襦衣) : 남자가 입는 저고리이다.

416 예장군 : 조묘군(造墓軍)이라고도 부른다.

칙사 때의 다장⁴¹⁷ 도감(都監)의 감결에 의해 정하여 보낸다.

內局研臼 以上別貿易牛黃貢人擔當.

내국의 약연과 절구 이상은 별무역 우황 공인이 담당한다.

湯藥使令 門外舉動時, 及親鞫時, 勅使時湯藥使令, 鹿茸貢人擔當.

탕약사령 문외거동 때 및 친국 때와 칙사 때의 텡약사령으로 녹용 공인이 담당한다.

藏冰米 元貢, 每年每石六合, 自惠廳啓減, 各契貢同.

장빙미⁴¹⁸ 원공은 매해 1섬당 6흡이었는데 선혜청에서 아뢰어 감하여서, 각 공인계의 공납이 같아졌다.

官用紙地 凡公事紙元貢, 各色白紙各五張式, 書員次知捧納.

관용(官用) 종이 모든 공무용 종이의 원공은 각색마다 백지 각 5장씩으로, 서원이 담당하여 봉납⁴¹⁹ 한다.

大廳塗褙 每年春秋, 官基入接人擔當. ○大廳前庫第一壁及後庫門上, 韓鶴松. ○大廳前庫第二壁, 龍
暹. ○大廳前庫第二間東壁, 張先伊. ○大廳南障子及兩柱, 趙海昌. ○大廳南障子內兩柱, 郭之堅. ○上
房東障子內外, 康斗萬. ○上房西壁, 楊儉同. ○上房南壁, 金秀萬. ○夾房東壁, 金奩萬. ○夾房南壁,
金貴宗. ○夾房北壁, 金覓說. ○上房外西壁, 廉相俊.

대청의 도배 매해 봄·가을, 관청 터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담당한다. ○대청 전고(前庫)의
1번째 벽 및 후고(後庫) 문 위쪽은 한학송(韓鶴松)이 맡는다. ○대청 전고(前庫) 둘째 벽은 용심(龍
暹)이 맡는다. ○대청 전고(前庫) 2번째 칸의 동쪽 벽은 장선이(張先伊)가 맡는다. ○대청 남쪽
장지⁴²⁰ 및 양 기둥은 조해창(趙海昌)이 맡는다. ○대청 남쪽 장지 안쪽의 양 기둥은 꽈지견(郭之
堅)이 맡는다. ○윗방 동쪽 장지의 안쪽과 바깥은 강두만(康斗萬)이 맡는다. ○윗방 서벽은 양겸동
(楊儉同)이 맡는다. ○윗방 동벽은 김수만(金秀萬)이 맡는다. ○협방 서벽은 김꽃만(金奩萬)이 맡는

417 다장 : 영접사는 칙사를 영접할 때에 다장(茶匠)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작설차를 대접했다.

418 장빙미 :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고 빙고에 저장하는 역군에게 주는 쌀이다.

419 봉납 : 물건을 바치어 올립을 뜻한다.

420 장지 : 방의 아랫간이나 방과 마루 사이에 가리어 막은 문이다.

다. ○협방 남벽은 김귀종(金貴宗)이 맡는다. ○협방 북벽은 김멱설(金覓說)이 맡는다. ○윗방 바깥 서벽은 염상준(廉相俊)이 맡는다.⁴²¹

官塈修灑 大廳東南庭, 正七月趙海昌, 二八月金奩萬, 三九月郭之堅, 四十月楊儉同, 五十一月康斗萬, 六十二月金覓說, 潦雨積雪時, 同力修掃. ○大廳後塈, 龍遲·張先伊·廉相俊·韓鶴松·金秀萬, 凡坐起時, 同力修掃去穢.

관대의 정리와 청소 대청의 동쪽과 남쪽 정원은 1·7월에는 조해창(趙海昌)이, 2·8월에는 김꿋만(金奩萬)이 3·9월에는 곽지견(郭之堅)이, 4·10월에는 양검동(楊儉同)이, 5·11월에는 강두만(康斗萬)이, 6·12월에는 김멱설(金覓說)이 장마나 눈이 쌓일 때 힘을 합쳐 정리하고 소제한다. ○대청 뒤편 터는 용섬(龍遲), 장선이(張先伊), 염상준(廉相俊), 한학송(韓鶴松), 김수만(金秀萬)이 무릇 좌기할 때 힘을 합쳐 정리하고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경비(經費)⁴²²

凡經費久任所主管 公廡修補, 廳中鋪陳, 及各司例債, 與褒貶取才時所費, 自官上下, 而符君祠修補, 則各契貢人亦添物力. 詳載《久任所贍錄》.

무릇 경비는 구임소에서 주관한다 관청의 수리 보수, 청 안의 포진 및 각 관사의 예채(例債)⁴²³와 포폄, 취재 때 쓰는 것은 관청에서 지급하는데, 부군사(符君祠)⁴²⁴의 수리 보수는 각 계의 공인 역시 물력(物力)을 더한다. 《구임소등록》에 자세히 실려 있다.

421 〈관사〉에서 곽지견(郭之堅)에 대해 기술하면서 구지(舊志, 강위빙의 저술)의 내용이라고 하였는데, 본문에도 곽지견이 나오므로 다른 이들도 강위빙(姜渭聘) 시대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422 혜민서의 경비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423 예채(例債) : 의례적으로 수고비로 주는 돈 또는 물품이다.

424 부군사(符君祠) : 부군신(符君神)이 모셔진 사당이다. 부강전(富降殿), 부군묘(府君廟), 부근당(付根堂)이라고도 불린다. 10월 1일에 제사를 지낸다. 《통문관지 연혁》〈관사〉를 보면 사역원(司譯院)의 부군당(符君堂)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2칸 건물로, 강희(康熙) 정해년(1707)에 중건(重建)하면서 옛날 건물에 비해 반 칸을 더 늘렸다고 했다. 그 위치는 대청(大廳) 동쪽의 누각 정북쪽이었다.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¹

내의원(內醫院) 편찬²

총목(總目)³

官舍

官制 附 遷轉 甄復 起復

啓辭問安 附 口傳啓

口傳問安

分提調問安

醫官單子問安

醫女問安

入侍

設廳 附 直宿 分藥房

年例進上

1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2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3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年例卜定
年例劑造
京外貢藥材
應下
藥劣
監劑
玉樞丹祭
入番 附 別入直
舉動進參
坐起 附 考講
奉使
給馬
供饋
入啓文書
文簿
率屬
料布
什物 附 書冊
藥田
雜例
관사
관제 덧붙여 천전 견복 기복
계사문안 덧붙여 구전계
구전문안
분제조문안
의관단자문안
의녀문안
입시

설청 뒷붙여 직숙 분야방

연례진상

연례복정

연례제조

경외공약재

응하

약열

감제

옥추단제

입번 뒷붙여 별입직

거동진참

좌기 뒷붙여 고강

봉사

급마

공궤

입계문서

문적

솔속

요포

집물 뒷붙여 서책

약전

잡례

1. 관사(官舍)⁴

○院 一在昌德宮弘文館東, 一在慶熙宮崇政門南.

○원(내의원) 하나는 창덕궁 흥문관⁵ 동쪽에 있고⁶, 다른 하나는 경희궁 숭정문⁷ 남쪽에 있다.^{8 9}

大廳.

대청.

史官房.

4 내의원의 관청 건물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5 흥문관 : 조선시대에 궁중의 경서(經書), 사적(史籍)을 관리, 왕의 자문기구로서 옥당(玉堂)이라고도 부른다.

6 동쪽에 있고 : 현종(憲宗) 때 증보된 《궁궐지宮闈志》 권2에서는 '흥문관의 북쪽(弘文館北)'이라 하였다. 《동궐도東闕圖》를 보면 내의원 관청 건물들은 북쪽과 동쪽에 걸쳐있으므로 본문과 《궁궐지》의 설명은 둘 다 옳다.

7 경희궁 숭정문 : 경희궁의 정전(正殿)인 숭정전(崇政殿)의 정문이다.

8 《궁궐지》 권4에서는 '승정문 바깥의 남쪽(崇政門外南)'이라 하였다.

9 내의원은 국왕과 세자 등의 진료를 담당하였기에 궁궐 내에 있었다. 따라서 전란이나 화재 등의 이유로 기존 국왕의 거처가 새롭게 바뀌게 되면 내의원의 위치도 바뀌게 된다. 즉 《내의원식례》가 저술될 시기에 내의원의 위치가 이 두 곳이지 조선 전 시기를 거쳐 이 장소로 볼 수 없다. 반면 혜민서와 전의감은 궁궐 밖에 있었고, 훠파되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단순히 관아 건물의 증감만 있다. 원래 조선의 법궁(法宮)은 경복궁(景福宮)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기 전까지 그 역할을 했다. 《궁궐지》 권1을 보면 경복궁의 내의원은 '관상감의 남쪽[在觀象監南]'이라 하였다. 관상감은 상의원(尙衣院) 남쪽에 있었고, 상의원은 영추문(迎秋門) 안에 있었다. 영추문은 경복궁의 서문(西門)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전까지 내의원의 위치는 이 장소로 보아야 한다. 《궁궐지》 권2를 보면 창경궁(昌慶宮)의 내의원은 '명정전 북쪽에 있다[在明政殿北]'라고 하였다. 해당 내용은 경희궁의 화재와 관련되어 내의원이 창덕궁과 창경궁에 설치되었던 시기로 이해하면 되겠다. 또한 내의원을 설명하면서 '입심역석의 계판은 영조의 어필이다[入審憶昔揭板, 英祖御筆]'라고 되어 있어 현재의 억석루(憶昔樓)도 내의원의 부속 건물임이 확인된다. 《승정원일기》 영조 37년(1761) 6월 11일 기사에 영조(英祖)가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가 입시한 가운데 '입심역석(入審憶昔)'의 네 글자를 친필로 썼다는 내용이 있다. 억석루(憶昔樓)는 흥문관의 동쪽에 있다.

사관방.

本廳.

본청.

鍼醫廳.

침의청.

議藥同參廳.

의약동참청¹⁰.

掌務所.

장무소.

書員房.

서원방.

醫女房.

의녀방.

藥材東西庫 東庫提調監鎖.

약재동서고 동고제조가 자물쇠를 맡는다.

冊庫.

책고.

水庫.

빙고.

研末間.

10 침의청과 의약동참청은 각각 내침의(內鍼醫)와 의약동참의(議藥同參醫)가 머무는 곳이다. 본청과 이 두 건물을 합쳐서 삼청(三廳)이라 한다.

연말간¹¹.

搗末間 以上兩院同.

도말간¹² 이상은 두 월이 같다.

直房 一在昌德宮敦化門外, 一在慶熙宮開陽門外.

직방¹³ 하나는 창덕궁 돈화문¹⁴ 바깥에 있고, 다른 하나는 경희궁 개양문¹⁵ 바깥에 있다.

2. 관제(官制)¹⁶

附 遷轉 甄復 起復

부기(附記) : 천전(遷轉), 견복(甄復), 기복(起復)

《國典》內醫院掌和御藥.

《경국대전》을 보면 내의원은 어약을 조제하는 일을 담당한다.¹⁷

11 연말간 : 《동궐도東闕圖》를 보면 창덕궁(昌德宮)의 경우 홍문관(弘文館) 북쪽에 위치한 두 칸 크기의 건물로 돌로 된 약연(藥硯)이 칸 별로 놓여있다.

12 도말간 : 《동궐도》를 보면 창덕궁의 경우 홍문관 동북쪽에 위치한 한 칸 크기의 건물이다.

13 직방 : 조회 시간을 기다릴 때에 관아별로 기다리는 장소이다.

14 창덕궁 돈화문 : 창덕궁의 정문이다.

15 경희궁 개양문 : 경희궁의 남문이다.

16 이 조문에서는 내의원의 직임(職任)에 대해 설명한다.

17 《경국대전》〈이전吏典 · 경관직京官職〉에 나온다. 이후 원주(原註)를 제외한 본문의 원역(員役)에 관한 내용도 〈경관직〉에 내용이 있다. 내의원은 《실록》에 따르면 1443년에 내약방(內藥房)에다 처음으로 그 명칭을 붙였는데 당시에는 관원이 16원(員)으로 3품은 제거(提擧), 6품 이상의 별좌(別坐), 7품 이하의 참하관, 조교(助教)로 구분되었다.(세종 25년 6월 15일 기사 참조) 《실록》 세종 27년(1445) 4월 11일 기사를 보면 별좌(別坐) 2원을 추가하여, 문종 2년(1452) 4월 2일 기사를 보면 13원에 이르렀다가 1원을 줄였다. 《경국대전》〈이전〉을 보면 내의원에서

○都提調 一員 大臣兼.

○도제조 1원 대신¹⁸이 겸한다.

提調 一員 正二品以上兼. ○秋曹金吾堂上不得兼. ○無實職, 則稟旨口傳付軍職.

제조 1원 정2품 이상이 겸한다. ○형조와 의금부의 당상¹⁹은 겸대(兼帶)하지 못한다. ○실직이 없으면 품지하여 구전으로 군직에 붙인다.

副提調 一員 承旨例兼. ○金吾堂上刑房承旨不得兼. ○三提調以下無式暇.

부제조 1원 승지²⁰가 관례로 겸한다.²¹ ○의금부당상과 형방승지(우부승지)는 겸대하지 못한다.²² ○세 제조 이하는 식가(式暇)²³가 없다.

分提調 教外動駕, 經宿動駕, 內殿動駕時, 及分藥房排設時差出.

분제조 교외동가, 경숙동가²⁴, 내전동가 때 및 분약방이 배설(排設)될 때 차출한다.

代房承旨 問安時, 開庫時, 竹瀝薑汁等監封時, 副提調有故則例請. 監煎則稟旨.

대방승지 문안 때, 창고를 열 때, 죽력·생강즙 등을 감봉할 때에 부제조에게 사정이 있으면 관례에 따라 청한다. 약 달이는 것을 감독할 때에는 품지한다.

사무를 보는 원액은 제조(提調) 3원과 의관(醫官) 12원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조선 후기까지 직장(直長)을 제외하고는 변동 없이 이어졌다.

18 대신 : 의정부(議政府)의 삼정승(三政丞)을 말한다.

19 당상 : 관계(官階)가 정3품 상계(上階)인 통정대부나 절충장군 이상인 관료이다.

20 승지 : 승정원의 정3품 관직.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구이다.

21 승지(承旨)의 겸직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이전吏典·경관직京官職〉에 나온다. 《은대조례》〈이고(吏攷)·승지〉를 보면 내의원 부제조는 6명의 승지 중에서 낙점(落點)을 받아 겸직했다.

22 1870년에 저술된 《은대조례》〈이고(吏攷)·승지〉를 보면 ‘不得’이 ‘毋得’으로 강화되었다.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제조와 부제조가 형옥(刑獄)이나 금오(金吾), 도총관(都摠管)의 직임을 맡으면 초기(草記)로서 제직을 청해야 한다.

23 식가(式暇) : 관원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이다.

24 경숙동가 : 경숙동가(經宿動駕)는 대가(임금이 탄 수레)가 궐 밖으로 나가서 밤을 지새운다는 뜻이다.

正·僉正·判官·主簿各一員,

정·첨정·판관·주부 각 1원,

直長三員 仁祖朝乙酉, 二員換作副司正.

직장 3원 인조(仁祖) 조 을유년(1645)에 2원을 부사정²⁵으로 바꾸었다.²⁶

奉事·副奉事各二員,

봉사와 부봉사 각 2원,

參奉一員 以上內醫十二員, 以醫科被薦人, 啓目差下, 六臘月升降遞付.

참봉 1원. 이상 내의 12원은 의과 출신에 천거를 받은 사람으로 계목²⁷을 올려 임명하는데, 6월과 12월에²⁸ 올리거나 내리거나 체직하거나 붙인다.²⁹

御醫無定額 內醫中加貴, 或東班遷轉後, 例爲草記差下, 仍付軍職. 內醫中術業精通者, 或因下教, 或筵稟後, 草記兼差.

어의 정원(定員) 없음³⁰ 내의 중에서 가자(加資)되어 높아지거나³¹, 동반직으로 벼슬을 옮긴 뒤에는³² 전례에 따라 초기³³로 임명하고 이어 군직에 붙인다.³⁴ 내의 중에 의술이 정통한 이를

25 부사정 : 오위(五衛)에 속한 종7품 서반(西班牙) 벼슬이다.

26 영조(英祖) 조의 《속대전》〈이전·경관직京官職〉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직장(直長)은 원래 3원(員)인데 둘을 줄여 1원이라 하였다. 이후 변동은 없다.

27 계목 : 각 관청의 작은 사무를 임금에게 아뢰 때에 쓰는 서식이다.

28 6월과 12월에 : 양도목(兩都目) 정사(政事)에 맞추어 임명하는 체아직(遞兒職)이라는 말이다.

29 《육전조례》〈예전(禮典)·내의원〉을 보면 삼청(三廳) 의관(醫官)은 세의(世醫)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30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당상(堂上) 7원에 결원이 없다면 당하(堂下)는 일절 초계(抄啓)하지 않는다.

31 가자(加資)되어 높아지거나 : 통정대부나 절충장군의 관계(官階)를 받아 당상관(堂上官)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2 동반직으로 벼슬을 옮긴 뒤에는 :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삼청(三廳) 중에 근로(勤勞)한 사람을 택해 양도목(兩都目) 때 양전(兩銓, 이조와 병조)으로 천전(遷轉, 벼슬을 옮김)한다. 즉 동반직을 주거나 가자시킨다는 말이다.

혹은 하교를 받거나 혹은 연석(筵席)에서 아뢴 뒤에 초기로 겸차한다.³⁵³⁶

鍼醫十二員 孝宗朝辛卯, 設廳.

침의³⁷ 12원 효종(孝宗) 조 신묘년(1651)에 침의청(鍼醫廳)을 설립했다.

議藥同參十二員 顯宗朝癸丑, 設廳. ○以上並, 以醫司, 或方外土人, 術業精明者, 無論堂上堂下, 草記差下.

의약동참 12원 현종(顯宗) 조 계축년(1673)에 의약동참청을 설립했다. ○이상은 모두 의학 관청에 속한 여부에 상관없이³⁸ 의술에 정통한 사람을 당상·당하에 관계없이 초기로 임명한다.

別軍職, 龕散料四窠 三窠三廳首醫例付, 一窠, 粟旨差下.

별군직 파산(罷散)³⁹에게 봉급을 주는 네 자리 세 자리는 삼청(三廳)⁴⁰의 수의(首醫)를 관례에 따라 붙이고, 한 자리는 품지하여 임명한다.⁴¹

副護軍四窠,

부호군⁴² 네 자리,

33 초기 : 각 아문에서 사무 상 중대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단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34 일반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는 부호군(副護軍)이나 첨지(僉知)로, 가선대부(嘉善大夫)는 대호군(大護軍)이나 동지(同知)로, 자헌대부(資憲大夫)는 지주(知樞)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35 가자(加資)로 당상관이 되면 그냥 어의(御醫)로 부르지만, 예를 들어 겸차(兼差)로 어의가 되는 경우는 가차어의(加差內醫)라 하여 구분하였다. 가차어의의 관계(官階) 또한 통훈대부나 어모장군처럼 정3품 하계(下階)인 경우이므로, 낮은 관계의 내의(內醫)가 어의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36 본문에는 설명이 없으나 내침의(內鍼醫)와 의약동참의(議藥同參醫)의 경우 품계와 관련 없이 모두 어의(御醫)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어의라 함은 이 둘을 제외한 용어이다.

37 침의 : 본문 중의 침의(鍼醫)는 내침의(內鍼醫)를 말한다.

38 의학 관청에 속한 여부에 상관없이 : 방외(方外)란 말은 의학 관청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39 파산(罷散) : 벼슬을 그만두고 한산한 이를 뜻한다.

40 삼청(三廳) : 내의청(內醫廳), 침의청(鍼醫廳), 의약동참청(議藥同參廳)를 말한다.

41 《만기요람》〈재용편·요록料祿〉, ‘一窠, 則稟旨永付. 永付司果, 特教外無得稟請.’

副司直六窠,

부사직⁴³ 여섯 자리,

副司果二窠 御醫遞付, 而員額過此數, 則例付堂上厚料.

부사과⁴⁴ 두 자리 어의가 체직하면 붙이는데, 인원이 이 수보다 많으면 관례에 따라 당상의 후료(厚料)를 준다.

副護軍二窠,

부호군 두 자리,

副司直二窠,

부사직 두 자리,

副司果二窠 鍼醫·議藥同參, 各付一窠, 而此外員額, 隨品例付厚料.

부사과 두 자리 내침의와 의약동참 각각 한 자리를 붙이는데 이외의 인원은 품계에 따라 규례대로 후료(厚料)를 준다.⁴⁵

掌務官二員 掌一應事務.

장무관 2원⁴⁶⁴⁷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42 부호군 :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4품 서반 벼슬이다.

43 부사직 :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5품 서반 벼슬이다.

44 부사과 :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6품 서반 벼슬이다.

45 《육전조례》〈예전(禮典)·내의원〉을 보면 내침의나 의약동참으로 입속(入屬)한지 30개월이 지나면 사과(司果)에 붙인다.

46 내의원에는 구임(久任)이 따로 없다. 《해국지》〈연혁沿革·관제官制〉를 보면 녹관에서 다시 직임을 받아 일에 통달한 한 사람을 예에 따라 장무관(掌務官)으로 임명한다. 그 역할에 있어 구임관의 일을 나누는 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혜민서도 장무관이 두 사람인 경우에 해당한다. 두 사람을 상장무관(上掌務官)과 하장무관(下掌務官)으로 구분한다. 두 사람 외에 별장무관(別掌務官)이 있는데 시약청이나 호산청이 배설(排設)될 때에 임명되었다. 《육전조례》〈예전(禮典)·내의원〉을 보면 장무관으로 처음 의망(擬望)되면 가자(加資)한다고 하였다.

47 《실록》 세종 27년(1445) 4월 11일 기사를 보면 일찍이 약색의원(藥色醫員) 2원으로 하여금 다른 일없이 내의원 원내의 공무에만 종사하게 하다가 당시 별좌(別坐) 2원을 추가로 두어

酒房官二員 掌釀酒. 英宗朝丙戌, 因特教革罷, 掌務官兼.

주방관 2원 술 빚는 일을 관장한다. 영조 조 병술년(1766)에 특교로 혁파되어, 장무관이 겸하게 되었다.⁴⁸,

種藥官二員 掌藥田. ○以上內醫中輪差, 六臘月交遞.

종약관 2원 약전을 관장한다. ○이상은 내의 중에서 교대로 임명하는데, 6월과 12월에 교체한다.⁴⁹.

鍼監造官 鍼醫間三年差下. ○鍼子進上後, 相當職除授, 承傳, 前例不一, 更爲考例, 指一定式事, 正宗朝庚申受教.

침감조관 침의를 세 해 간격으로 임명한다. ○침자(鍼子)를 진상한 뒤에 상당직을 제수하라는 승전(承傳)⁵⁰은 전례가 한결같지 않으니 다시 규례를 상고하여 하나로 결론을 내 정식을 삼으라고 정조 조 경신년(1800)의 수교가 있었다.

遷轉 兩都目, 御醫鍼醫議藥同參各三望, 報東西銓, 內醫三望, 報東銓. ○治腫教授一窠, 鍼醫與兩醫司輪差, 仕滿報吏曹.

천전⁵¹ 양도목에 어의 · 내침의 · 의약동참을 모두 세 후보자씩 이조와 병조에 보고하고, 내의 세 후보자를 이조에 보고한다. ○치종교수 한 자리는 내침의와 양의사⁵²에서 교대로 임명하는 데⁵³ 임기가 끝나면 이조에 보고한다.⁵⁴.

야색(藥色)의 일을 나누게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내의원 장무관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명이다.

48 《승정원일기》 영조 42년(1766) 1월 28일 기사에 주방관을 장무관으로 겸하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 같은 해 1월 23일 기사에 주방(酒房)이 없어져서 맡은 관리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

49 6월과 12월에 교체한다 : 양도목(兩都目) 정사(政事) 때에 임명한다는 뜻이다.

50 승전(承傳) : 참상(參上)으로 승륙(陞六)하거나, 이미 참상관이면 상당직(相當職)에 제수하였다.

51 천전 : 벼슬자리를 옮긴다는 뜻이다.

52 양의사 : 전의감과 해민서를 뜻한다.

53 《혜국지》〈연혁沿革 · 관제官制〉에 치종교수의 임명에 대해 상세하다. 임기는 45개월이었다.

54 치종교수(治腫教授) 인선은 의관 직임에도 예조가 아닌 이조에서 인사 행정을 했다. 이조 인사 기록인 《정사책政事冊》에도 임기를 채운 치종교수에 대한 인선 사례가 네 차례 나온다.

甄復 御醫外任遞來及在任遭故, 待闋服, 草記還差. ○鍼醫議藥同參, 同御醫例. ○待令醫官中, 或坐罷削, 或拘解由, 隨時稟旨權着給料. ○內醫在任遭喪之類, 隨闕卽差事, 及如有無故作散人, 隨其落仕次第, 差下前仕, 無可差人然後, 始以外醫啓下事, 受教定式.

견복⁵⁵ 어의가 외임을 하다가⁵⁶ 체직되어 돌아오는 경우 및 재직 중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탈상하기를 기다렸다가 초기로 다시 임명한다. ○내침의와 의약동참은 어의의 예와 동일하다. ○대령의관⁵⁷ 중에 혹 파직되거나 사직되는 별을 받게 되거나 해유⁵⁸에 구애받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 품지하여 일시적으로 급료를 준다. ○내의가 재임하다가 상을 당한 경우는 자리가 비는 대로 즉시 임명하고, 만일 까닭 없이 산관(散官)⁵⁹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는 벼슬을 그만둔 차례대로 이전 직임에 임명하고⁶⁰ 임명할 사람이 없는 뒤에야 비로소 외의(外醫)로 계하하도록⁶¹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

起復 如有特教, 則報禮曹, 出依牒施行.

기복⁶² 특교가 있다면 예조에 보고하고, 의첩⁶³을 내어 시행한다.

55 견복 : 벼슬에서 물려난 이가 견차(甄差)에 응하여 다시 벼슬길에 나음을 뜻한다.

56 외임을 하다가 : 군수(郡守), 현령(縣令) 등의 목민관(牧民官)의 직임이나 찰방(察訪), 감목관(監牧官)인 경우를 뜻한다.

57 대령의관 : 임금 옆에서 시위하는 의관이다.

58 해유 : 관원 교체 때에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계를 하는 법률적 절차이다.

59 산관(散官) : 직임 없이 관계(官階)만 가진 이를 뜻한다.

60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내의(內醫)의 경우는 기존 벼슬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자리에 임명하기 어려우면 가출(加出, 정원 외에 두는 벼슬)로 붙인다고 하였다.

61 외의(外醫)는 내의원이 아닌 전의감, 혜민서에서 근무하는 의관(醫官)을 말한다. 만약 환속(還屬)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입속(入屬)시키고, 그 뒤에도 자리에 결원이 있다면 그제야 외의 중에 마땅한 사람을 내의로 입속시킨다는 말이다.

62 기복 : 상(喪) 중에 벼슬길에 나가는 일로 기복출사의 준말이다.

63 의첩 : 의정부의 의안(議案)을 예조에서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참고한 뒤에 내어 주는 공첩(公牒)이다.

3. 계사문안(啓辭問安)⁶⁴

附 口傳啓

부기(附記) : 구전계(口傳啓)

日次 間五日爲之。正宗朝乙卯，以每月六次，五日十日爲之，而月小則以二十九日爲之事，受教定式。

○日次，若值誕日·冬至，則進行，除夕·正初，亦爲進行，

일차(정기적인 문안) 닷새 간격으로 한다. 정조 조 을묘년(1795)에 매달 여섯 차례로 매 5일과 10일에 하고, 달이 작으면 29일에 하도록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 ○일차 문안은 탄일(誕日)·동지와 겹펴도 진행하고 제석(선달 그믐날), 정초(정월 초하루)에도 진행한다.⁶⁵.

未寧，設廳，苦熱 中伏後，未伏前，隆冬 小寒後，大寒前。○他問安不得兼行。苦熱同，
미령한 날⁶⁶，청을 배설 중인 날⁶⁷，한여름 중복 뒤 말복 전，한겨울 소한 뒤 대한
전。○다른 문안은 겹하여 행하지 못한다. 한여름 때도 같다。

郊外舉動，闕外經宿，皇壇親祭，親耕蠶，觀刈，親政，進宴，進饌，受酌，大禮 隨時，
慶賀 隨時，受鍼灸，移御奉慰 隨時，啓覆 只初覆後，親鞠 撤罷後。○以上並翌日爲之。○凡諸
啓辭問安時，各殿宮口傳問安爲之。○啓辭中，慈殿慈宮問候，依例爲之。正宗朝甲寅，若值議藥，措辭則
不得爲之事，受教定式。○中宮殿·世子宮·世子嬪宮問候，則只於高熱隆冬爲之。當殿·當宮動駕翌

64 계사(啓辭)란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문(上奏文)을 말한다. 내국(內局)에서 행하는 계사문안의 시기와 그 대상에 대해 설명한다. 《육전조례》〈예전(禮典)·내의원〉에서는 계사문안을 세 제조(提調)가 모든 의관(醫官)을 데리고 하는 것이라 하였다.

65 1867년의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의 규정을 보면 닷새마다 하는데, 정월에는 5일, 12월에는 30일에 하고, 탄일(誕日)과 동지는 전날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870년의 《은대조례》〈예고禮敍·약방藥房〉에서는 탄일과 경사 있는 날과 겹치면 전날에 문안하고, 정초(正初)에는 4일에 문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66 미령한 날 : 국왕과 왕비, 세자 등 궁궐에 거주하는 국왕의 직계 가족이 몸이 불편한 경우를 말한다.

67 청을 배설 중인 날 : 산실청(產室廳) 등이 설치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본문의 〈설청設廳〉에 상세하다.

日，及嘉禮入闕翌日，若值日次，則爲之。○世子宮·嬪宮問安時，侍講院官員來參。○啓辭若於入侍承批，或批下政院，則各殿宮不爲承批事，受教定式。○問安時，提調·副提調，或未進參，則自本院請牌。三提調俱有故，則自政院稟旨變通。○承傳色如或遲滯，則副提調草記論節事受教，

임금이 교외에 거동한 날⁶⁸, 임금이 궐 밖에서 잔 날, 황단(皇壇)⁶⁹에서 친제(親祭)한 날, 친경과 친참례를 행한 날, 관예(觀刈)례⁷⁰를 행한 날, 친정(親政)을 한 날⁷¹, 진연을 베푼 날, 진찬(進饌)⁷²을 베푼 날, 술을 마신 날, 대례(Honinje)를 한 날 때에 따른다, 경하한 날 때에 따른다, 침구 치료를 받은 날, 이어(移御)⁷³와 봉위(奉慰)례⁷⁴를 행한 날 때에 따른다, 계복(啓覆)⁷⁵을 들은 날 초복(初覆)⁷⁶ 후에만 한다, 친국(親鞠)을 행한 날 마친 뒤에 한다. ○이상은 모두 이튿날에 한다. ○무릇 모든 계사문안 때에는 여러 전(대전, 대비전, 중궁전)과 궁(세자궁과 세자빈궁)에 구전으로 문안한다. ○계사 내용 중에 자전⁷⁷과 자궁⁷⁸에 대해 문후를 여주는 것은 관례대로 한다. 정조 조 갑인년

68 《육전조례》〈예전(禮典)·내의원〉을 보면 수가(隨駕)에는 세 제조(提調)와 의관(醫官) 다섯 사람 이 따랐다. 의관 다섯 사람이란 어의, 내의, 침의, 의약동침, 장무관이다. 행행(行幸) 때에는 장망(長望)을 서입(書入)했다. 그 밖에 기타 원역은 서원(書員) 다섯 사람과 동사군사(童使軍士) 가 두 사람인데, 이들의 경우는 내전(內殿)이 궐 밖으로 나갈 때에도 동일하다.

69 황단(皇壇) : 속종 30년(1704), 명나라 신종(神宗)이 원병을 보내 조선을 도와주는 공을 기리며 세운 제단이다. 창덕궁 안에 있었다.

70 관예(觀刈)례 : 임금이 적전(籍田)에서 곡식을 베는 풍경을 친히 관람하는 예식이다.

71 친정(親政)을 한 날 : 임금이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친히 행함을 뜻한다.

72 진찬(進饌) : 진연과 진찬은 둘 다 궁중 잔치이다. 진찬이 진연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의식도 간단 했다.

73 이어(移御) : 임금이나 상왕(上王)이 사는 곳을 옮김을 뜻한다.

74 봉위(奉慰)례 : 임금이나 왕비의 상(喪)에 곡립(哭臨)례 다음으로 시행하는 의식이다.

75 계복(啓覆)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는 제도. 9월과 10월 중 날짜를 정하여 하였다.

76 초복(初覆) : 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의 처벌을 신중히 하기 위해 세 번 심리하던 일을 삼복(三覆)이라 하는데, 1차를 초복, 2차를 재복(再覆), 3차를 삼복(三覆)이라 한다. 고려 문종 원년 (1047)부터 실시하였다.

77 자전 : 임금의 어머니를 뜻한다.

78 자궁 : 세자가 즉위하지 못한 채로 죽고, 세손이 즉위할 때에 세손의 어머니를 뜻한다. 예를

(1794)에 의약⁷⁹과 겹치게 되면 조사(措辭)는 할 수 없도록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 ○중궁전, 세자궁, 세자빈궁에 문후하는 일은 다만 한여름과 한겨울에만 한다. 해당 전과 궁이 동가⁸⁰한 이튿날 및 가례(흔례)로 입궐한 이튿날은 일차(정기적인 문안)와 겹쳐도 한다. ○세자궁과 빈궁(세자비의 궁)에 문안할 때에는 시강원⁸¹ 관원이 와서 참여한다.⁸² ○계사에 대해 만약 입시하였을 때 비답을 받거나 혹은 승정원에 비답이 내려지면 여러 전과 궁에서는 비답을 받지 않도록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 ○문안 때에 제조와 부제조가 혹여 진참(進參)하지 않았다면, 본원(내의원)에서 패초(牌招)⁸³하기를 청한다.⁸⁴ 세 제조가 모두 사정이 있으면 승정원에서 품지하여 변통한다. ○승전색⁸⁵이 혹여 지체한다면, 부제조가 초기로 절차를 논하도록 수교하였다.⁸⁶

口傳啓 凡諸仰請事, 及無時間候議藥等事, 以口啓爲之.

구전계(구전으로 아뢰는) 무릇 모든 우러러 청하는 일 및 때 없이 여쭈는 문후나 의약 등의 일은 구두로 아뢰어서 한다.

들어 정조(正祖)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경우이다.

79 의약 : 내의원의 제조와 의관(醫官)들이 한데 모여서 임금이나 왕비 등의 병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진찰 및 투약 등의 일을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 혹은 참여하는 사람을 의약동참(議藥同參)이라 하고, 의약하는 청사를 의약청(議藥廳)이라고 부른다.

80 동가 : 궁 밖으로 나감을 뜻한다.

81 시강원 : 왕세자 교육을 담당한 관청이다.

82 1891년 간행된 시강원(侍講院)의 『어정이원조례御定離院條例』 〈약방일차藥房日次〉를 보면 도 제조(都提調)가 진(進)하면 시강원 관원 중 상번(上番)이 진참(進參)하고 제조(提調)가 진(進)하면 시강원 관원 중 하번(下番)이 진참한다고 하였다.

83 패초(牌招) : 승지가 왕명으로 신하를 부르는 일을 말한다.

84 『은대조례』 〈예고禮攷 · 약방藥房〉을 보면 승지가 겹하는 부제조(副提調)가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면 상위의 다른 승지가 참석하는데, 형방승지(刑房承旨)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만약 승지방에 형방승지만 있다면 임금에게 아뢰어 승지를 바꾼다고 되어있다.

85 승전색 : 내시부에서 임금의 명을 전하는 것을 맡은 이를 뜻한다.

86 『은대조례』 〈예고禮攷 · 약방藥房〉에는 종묘에서 묘현례(廟見禮)를 행한 날도 다음 날에 문안(問安)하도록 하였다.

4. 구전문안(口傳問安)⁸⁷

動駕, 殿座, 經宿, 行禮, 大禮 隨時, 慶賀 隨時, 未寧, 受鍼灸, 設廳, 移御, 奉慰 隨時.

동가할 때, 임금이 전좌⁸⁸한 날, 임금이 궐 밖에서 잔 날, 행례한 날, 대례한 날 때에 따른다, 경하할 일이 있는 날 때에 따른다, 미령한 날, 침구 치료를 받은 날, 청을 배설 중인 날, 이어한 날, 봉위례를 행한 날 때에 따른다.

5. 분제조문안(分提調問安)⁸⁹

經宿 陵行一宿, 及闕外兩宿, 則內殿宮留院提調, 逐日爲之. 醫女問安亦爲之, 內殿動駕.

경숙 능행(陵行)으로 하룻밤 묵거나 궐 밖에서 이틀을 묵게 되면 내전과 내궁에는 원(내의원)에 남아 있는 제조가 날마다 한다.⁹⁰ 의녀의 문안도 한다. 내전동가(내전이 궐 밖에 가는 날)

87 내의원에서 구전문안(口傳問安)하는 때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본문 <계사문안>의 구전계(口傳啓)와 시행하는 시기는 같다. 다만 《육전조례》〈예전(禮典) · 내의원〉을 참조하면 구전문안은 단지 제조(提調) 한 사람이 시행하는 것이므로 시행하는 주체에 의해 구분된다.

88 전좌 : 임금이 정사(政事)를 보거나 조하(朝賀)를 받을 때를 말한다.

89 분약방(分藥房)이 배설(排設)될 때의 분제조(分提調)가 하는 문안(問安)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90 본문의 <계사문안>에 상세하다.

6. 의관단자문안(醫官單子問安)⁹¹

誕日, 生辰, 正朝, 冬至, 除夕, 慶賀 隨時, 未寧, 受鍼灸, 設廳, 移御, 奉慰 隨時.
탄일, 생신, 정월 초하루, 동지, 제석, 경하한 날 때에 따른다, 미령한 날, 침구
치료를 받은 날, 청을 배설 중인 날, 이어한 날, 봉위례를 행한 날 때에 따른다.

7. 의녀문안(醫女問安)⁹²

內殿宮誕日 大殿誕日, 各殿宮並爲之, 生辰, 正朝, 冬至, 除夕, 腊月, 慶賀 隨時, 動駕,
未寧, 受鍼灸, 設廳, 移御, 奉慰 隨時.

내전과 내궁의 탄일 임금의 탄일에는 각 전궁(왕비와 세자, 세자비)이 모두 한다. 생신,
정월 초하루, 동지, 제석, 초하루와 보름, 경하할 일이 있는 날 때에 따른다, 동가
한 때, 미령한 날, 침구 치료를 받은 날, 청을 배설 중인 날, 이어한 날, 봉위례를
행한 날 때에 따른다.

8. 입시(入侍)⁹³

入診 三提調率醫官入侍. 次對同入, 則藥房在前, 經筵同入, 則經筵官在前. ○都提調問候後請診, 醫
官以次入診. 而自上交椅坐, 則起入左邊, 曲拜診左手訖, 又曲拜診右手亦如左, 退伏奏脈候. 臥內, 則曲
拜之節, 不得如例, 隨便爲之. ○啓辭問安, 則醫官座目書入,

91 내의원 의관이 단자(單子)로서 하는 문안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92 의녀(醫女)가 문안(問安)하는 시기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93 내의원에서 용건을 가지고 임금을 뵙는 일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입진 세 제조가 의관을 인솔하여 입시한다. 차대(次對)⁹⁴에 같이 입시하면 약방(藥房)이 먼저이고, 경연에 같이 입시하면 경연관이 먼저이다. ○도제조가 문후를 드린 뒤 진맥을 청하면 의관이 차례대로 입진한다.⁹⁵ 임금이 교의에 앉아 계시면 일어나 좌측에 서서 곡배(曲拜)⁹⁶하고서 원손을 진맥하고 마치면 다시 곡배하고서 오른손을 진맥하기를 원손처럼 하고, 물러나 엎드려 맥상을 아뢴다. 대내에 누워계시면 곡배의 절차는 규례대로 할 수 없으므로 편의대로 한다. ○계사문안할 때에는 의관좌목(참여한 의관명부)을 문서로 들인다.⁹⁷

持湯劑 掌務官奉盤, 下番醫官奉爐. 三提調及首醫隨入, 至殿階, 首醫奉盤升殿, 鑰匙奉監. 都提調後唱告, 開鑰, 注銀瓢, 以餘湛注瓢. 蓋都提調嘗藥後, 奉傳挾侍以進,

지탕제(탕제를 받듦) 장무관은 소반을 받들고, 하번의관(下番醫官)⁹⁸은 화로를 받든다.⁹⁹ 세 제조 및 수의(首醫)가 따라 들어가 전의 계단에 이르면 수의가 소반을 받든 채 전에 올라 열쇠를 봉감한다.¹⁰⁰ 도제조가 뒤에서 외쳐 고하기를 ‘자물쇠를 열어 은표(은으로 된 구기)에 봇습니다.’라고 하고, 남아 가라앉은 것까지 표주박에 봇는다. 대개 도제조가 약을 맛본 뒤에 반들어 협시¹⁰¹

94 차대(次對) : 매달 여섯 차례 의정(議政), 대간(臺諫), 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을 뜻한다.

95 수의(首醫)부터 순서대로 입진(入診)한다.

96 곡배(曲拜) : 임금을 볼 때 하는 절을 말한다. 임금이 남쪽을 향해 앉으므로 마주 보지 않고 동쪽이나 서쪽을 향해 절을 하므로 붙여졌다.

97 《육전조례》〈예전(禮典) · 내의원〉에는 진찰 이후 의약(議藥)에 대한 규정도 나온다. 세 제조가 어의, 의약동참과 모이는데, 내의와 내침의는 계품(啓稟)하여야만 의약(議藥)에 참여할 수 있다. 각기 의견을 말하여 논의가 동일해지면 품계가 낮은 어의가 도제조(都提調) 앞에 나아가 처방문을 쓰고, 돌아와서 조제하고 달이는데 전교(傳教)로서 시행한다.

98 하번의관(下番醫官) : 본문 <입번入番>의 ‘내약방(內藥房)’을 보면 상번(上番)은 어의이고 하번(下番)은 내의이다.

99 원문의 <감제監劑>에 탕약(湯藥)의 조제와 전(煎)에 대한 설명이 있다.

100 《승정원일기》 현종 9년(1843) 10월 2일 기사를 통해 임금에게 탕제를 올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탕제(湯劑)는 임금에게 올리기 전에 봉입(封入)되었고, 은제 자물쇠[銀鎖]가 달린 약초기(藥炒器)를 수의(首醫)가 열쇠로 열었다. 이는 탕제에 흑여 임금을 해할 목적으로 다른 내용물을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01 협시 : 임금 곁에서 수족처럼 보좌하는 내시를 말한다.

에게 전하여 올린다.¹⁰²

受鍼灸 鍼醫議定穴名. 禁漏官奏時刻, 則三提調率醫官, 詣闕, 穴單子, 先爲書入. 醫官一員, 奉鍼灸盤, 三提調及首醫鍼醫隨入. 而受鍼時, 則首醫奉穴單子, 唱告, 某穴受鍼, 受灸時, 則首醫奉劃紙, 唱告, 某穴幾壯, 鍼灸畢後, 生脈散煎入. ○內殿受鍼灸時, 行首醫女舉行, 而三提調率醫官, 詣闕, 待候. ○以上入侍時, 閣臣同參事, 篓稟定式,

수침구(침구 치료를 받음) 내침의가 의논하여 혈명을 정한다.¹⁰³ 금루관(禁漏官)¹⁰⁴이 시각을 아뢰면, 세 제조가 의관을 인솔하여 궁궐에 이르러 혈단자(穴單子)를 먼저 문서로 들인다. 의관 한 사람이 침구반(鍼灸盤)을 받들고 세 제조 및 수의(首醫), 내침의가 따라 들어간다. 침을 놓을 때에는 수의가 혈단자를 받들어 외쳐 고하기를 ‘아무 혈에 침을 놓습니다.’라고 하며, 뜸을 뜰 때에는 수의가 희지(劃紙)를 받들어 외쳐 고하기를 ‘아무 혈에 몇 장(壯)입니다.’라고 한다. 침구를 마치고 나서 생맥산¹⁰⁵을 달여서 들인다. ○왕비가 침구 치료를 받을 때에는 행수 의녀(行首醫女)가 거행하는데, 세 제조가 의관을 인솔하여 궁궐에 이르러 명령을 기다린다. ○이상의 입시 때 각신¹⁰⁶이 함께 참여하도록 연석에서 아뢰어 정식으로 삼았다.

承候 不時承候, 以口啓或請對爲之. ○入侍時, 毋論榻前轎前, 都提調承候, 提調起伏. 都提調若不進參, 而如診筵講筵, 或出宮時, 提調亦爲承候. ○宗廟舉動, 永寧殿展拜時, 步輦啓請, 而都提調不參, 則提調啓請.

승후(안부를 물음) 정하지 않고 안부를 묻는 것은 구두로 아뢰거나 혹은 청대(請對)¹⁰⁷로서

102 《육전조례》〈예전(禮典)·내의원〉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 본문에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소지(別小紙)에 탕명(湯名)을 적어서 약을 담은 조아(銚兒)에 붙인다. 상반(上盤)에는 걸어둔 표주박(棄瓢)과, 밀조(蜜棗) 두 개, 흰 모시 수건을 갖춘다. 내전(內殿, 王비)에 올릴 때는 표주박(棄瓢)과, 밀조, 흰 모시 수건이 없다. 자물쇠를 여는 사람은 수의(首醫)이다.

103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세 제조(提調)도 함께 의논한다.

104 금루관(禁漏官) :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된 벼슬로 누각(漏閣)을 맡아 시각을 알리는 일을 했다.

105 생맥산 : 인삼생맥산(人蔘生脈散), 생맥음(生脈飲)이라고도 한다. 인삼 5돈, 맥문동, 오미자 각각 3돈을 물로 달여 복용한다. 익기렴한(益氣斂汗), 양음생진(養陰生津)하는 효능이 있다.

106 각신 : 규장각(奎章閣)의 벼슬아치를 말한다.

107 청대(請對) : 급한 일로 임금 복기를 청하는 일을 뜻한다.

한다. ○입시 때, 어탑(御榻) 앞과 가마 앞을 막론하고 도제조가 안부를 묻는데 제조는 기복(起伏)¹⁰⁸ 한다. 도제조가 만약 진참하지 못하는데 진연, 강연¹⁰⁹ 혹은 출궁하는 때라면 제조가 또한 안부를 물을 수 있다. ○임금이 종묘에 거동하여 영령전¹¹⁰에 전배¹¹¹할 때 보련(步輦)¹¹²에 오르시도록 계청하는데 도제조가 불참했다면 제조가 계청한다.

9. 설정(設廳)¹¹³

附 直宿 分藥房

부기(附記) : 직숙(直宿) 분약방(分藥房)

產室廳 前期三朔, 嫫宮, 則前期一朔, 以擇日設廳. 醫官差出, 預爲直宿事, 粿定後, 醫官望單子, 仍爲修入. 御醫二望, 或三望, 內醫一望, 以長望受點. 鍼醫議藥同參¹¹⁴, 則因特教待令, 或有並望之例. ○書員, 醫女, 奏時官, 司僕諸員, 亦爲啓下. ○捲草官, 自吏曹, 正二品以上差出. ○設廳日, 提調輪直, 醫官並直事, 草記, 排設吉日推擇入啓. ○排設所用, 令該曹進排, 雜物依例捧甘, 取用事, 草記. ○排設前一日, 以產室廳, 明日某時排設事, 草記. ○待令醫官, 以產室廳, 明日某時排設事, 書啓. ○排設日大殿承傳色·中宮殿承傳色·護產醫官·泛鈔官率書員, 詣正室舉行後, 三提調入詣排設所看審. ○排設後, 產圖逐月改付, 而加莫金馬轡等亦爲改, 安於吉方之意. 每月初待令醫官書啓. ○解娩臨時, 持藥物,

108 기복(起伏) : 아릴 때에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린다.

109 강연 : 임금 앞에서 경서(經書)를 진강(進講)하는 일을 말한다.

110 영령전 : 태조(太祖)의 4대조(四代祖) 및 그 비(妃), 정종(定宗), 문종(文宗) 등 단명(短命)한 왕이나 공(功)이 없는 왕을 모신 사당으로 종묘 서쪽에 있다.

111 전배 : 국왕이 종묘, 문묘, 능침 등에 참배하는 일을 뜻한다.

112 보련(步輦) : 임금이 타는 위를 꾸미지 않은 가마이다.

113 산실청(產室廳), 호산청(護產廳), 시약청(施藥廳)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114 議藥同參 : 본문에는 ‘議藥’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進詣差備近處，待候之意，草記。○解娩後，待令醫官，以醫女言，當殿，某時某刻，某阿只氏產娩之意，大殿大妃殿書啓。胞衣順下書啓同。○三提調自今日並直事，草記。○待令醫官，以醫女言，當殿氣候，阿只氏氣候，逐日三時書啓。翌日待令醫官，以第三日，洗浴吉時，阿只氏洗浴吉時，洗胎吉時，推擇之意，書啓。當殿，以諺書書啓。○第三日，待令醫官，以洗浴水，及洗胎水棄瀨於某方之意，書啓。當殿，以諺書書啓。○洗胎所用雜物，自各司進排。○第七日捲草時舉行，自產室廳，預為分付各該司。待令醫官，以當日某時捲草之意，書啓。當殿，以諺書書啓。○捲草祭時，捲草官同待令醫官，具黑團領，率書員等入詣產室，排設處行之。同日洗胎後，自內擇送胎峯藏之。○三提調自今日撤直，待令醫官仍留事，口啓，

산실청¹¹⁵ 분만 예정일보다 석 달 앞서 두는데, 빈궁이라면 한 달 앞서 길일을 택하여 청을 배설한다.¹¹⁶ 의관을 차출하여 미리 직숙(번을 들어 잡)하겠다고 아뢰어 정한 뒤, 의관 후보자 명부를 이어 정리해서 들인다. 어의는 둘 또는 세 후보자,¹¹⁷ 내의는 단일 후보자인데 장망(長望, 천망에서 으뜸)으로 낙점을 받는다. 내침의, 의약동참은 특교를 인하여 대령하거나 혹은 병망(並望)¹¹⁸의 예로 한다. ○서원, 의녀, 주시관(奏時官)¹¹⁹, 사복시의 여러 원역 또한 계하한다. ○권초관(捲草官)은 이조에서 정2품 이상을 차출한다.¹²⁰ ○청을 배설하는 날에 제조는 교대로 입직하고 의관은 함께 입직하겠다고 초기하고 배설 길일은 추산하여 택해서 입계한다. ○배설에 쓰이는 것은 해당 조(曹)로 하여금 진배하게 하는데, 잡물(雜物)은 관례에 따라 감결(甘結)을 보내 가져다 쓰겠다고 초기한다. ○배설 하루 전에 산실청을 내일 아무 시(時)에 배설하겠다고 초기한다. ○대령의관은 산실청을 내일 아무 시에 배설하겠다고 서계한다. ○배설일에 대전승전색, 중궁전승전

115 산실청 : 1875년에 저술된 《산실청총규產室廳總規》에 관련 내용이 상세하다.

116 중전의 경우 산실청이라 하고 후궁의 경우 호산청(護產廳)이라 하여 구분했다. 호산청에 대해서는 본문 <설청(設廳)>에 상세하다.

117 《실록》 선조 36년(1603) 3월 22일 기사를 보면 산실청 설정(設廳)에 대한 내용이 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당시에도 기존의 등록이나 일기는 소실되어서, 의거할 만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기존 의례에는 어의 3명이 입직하였고, 당시도 이를 따랐다.

118 병망(並望) : 대상자 전부를 후보자로 놓고 낙점하는 일을 뜻한다.

119 주시관(奏時官) : 시간을 알리는 일을 맡은 임시 관원이다.

120 《은대조례》 <예고禮放·약방藥房>에서는 권초관(捲草官)을 종실(宗室)과 조신(朝臣) 중에 유복인(有福人, 복이 있는 사람)으로 차출한다고 되어있다.

색, 호산의관(護產醫官), 범철관(泛鉄官)¹²¹이 서원을 인솔하여 정해진 방에 이르러 절차에 따라 일을 한 뒤에¹²², 세 제조가 배설하는 장소에 들어와서 간심(살피고 조사)한다. ○배설한 뒤에 산도(產圖)¹²³는 달마다 고쳐서 붙이며, 가막쇠(加莫金)¹²⁴와 말고삐¹²⁵ 등도 또한 고치는데¹²⁶ 길(吉)한 방위에 맞게 하려는 뜻이다. 매월 초에 대령의관이 서계한다. ○해산이 임박하면 지약물

121 범철관(泛鉄官) : 관상감(觀象監)의 관원으로 산릉(山陵) 및 산실청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나무를 벌목할 때에 방향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고 조사한다.

122 《임하필기林下筆記》 28권에는 1871년 10월 7일 산실청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본문에서 ‘詣正室舉行後’라고만 기술되어 생략되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의 일각(一刻)에 앞서서 세 제조가 대령의관(待令醫官), 별장무관(別掌務官) 등을 거느리고 온다. 이때 여러 집사(執事)들은 방에서 24방위도를 각 해당 방위에 붙이고 주사(朱砂)를 물에 풀어 쓴 당월도(當月圖, 산도)와 차지법(借地法)을 붙인다. 그런 뒤에 길(吉)한 방위에 먼저 황초(黃草)를 깔고, 고석(藁席, 거적자리), 백교석(白絞席), 양모전(羊毛氈, 양털담요), 유둔(油蓆, 두꺼운 기름종이), 백마파(白馬皮), 세고석(細藁席)을 깐 뒤에, 날다람쥐 가죽과 삼실을 백마파에 둔다. 태의(胎衣)가 놓일 방위에는 또한 부적을 붙인 다음 의관(醫官, 호산의관)이 차지법(借地法)에 따라 부적을 세 번 읽는다. 구리 방울은 청(廳) 난간에 걸어두니 일이 생기면 흔들어서 의관(醫官)을 부르는 용도이다. 이러한 절차를 훌기(笏記)에 모두 기재해둔다. 《일성록》 정조 5년(1781) 2월 1일 기사를 보면 차지법(借地法)에 따라 읽는 것은 배설일(排設日)에만 하고 이후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產廳小日記》 숙종 19년(1693) 9월 12일 내용을 보면 날다람쥐 가죽은 헌말 가죽 머리 위에 두었고, 생저(生苧, 생모시)는 머리 아래에 두었다. 백문석 대신 초석(草席)이, 세고석(細藁席) 대신 전변공섬(剪邊空石, 변두리를 자른 빈 가마니)이 기록되어있다. 삼실과 생모시란 점도 다르다. 또한 이날 현초(懸草)할 곳에 못도 박아둔다. 현초(懸草)란 해산할 때 쓴 거적자리를 길한 방향의 궁중 대문에 붉은 끈으로 매달아 두는 것이다.

123 산도(產圖) : 《동의보감》〈집병편 · 부인〉에 나온다. 해산할 방(房)의 북쪽에 맨 위에 안산방위도(安產方位圖), 다음으로 최생부(催生符), 마지막으로 차지법(借地法)을 붙이는데 모두 주사를 풀어 놓은 물로 쓴 것이다. 여기서 안산방위도(安產方位圖)가 산도(產圖)이다. 동 저자(허준)의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에도 ‘첨산도법(貼產圖法)’, ‘차지법(借地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24 가막쇠(加莫金) : 쇠로 만든 고리 모양의 기구이다. 《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產廳小日記》 숙종 19년(1693) 9월 12일 내용을 보면 가막쇠는 말고삐를 매다는 데 사용된다.

125 말고삐 : 《임하필기林下筆記》 28권을 보면 말고삐를 방의 벽에 걸어두는데, 해산할 때 잡는 용도이다.

126 고치는데 : 산도(產圖)를 고쳐 붙이면, 가막쇠와 말고삐도 옮겨 걸게 된다. 말가죽[馬皮] 도 이에 따라 머리와 꼬리의 방향을 바꾼다.

(持藥物)¹²⁷하여 미리 차비문(差備門) 근처로 나아가 해산 조짐을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초기한다.

○해산한 뒤 대령의관은 해당 전(출산한 중전 또는 아무 비빈)이 아무 시(時) 아무 각(刻)에 아무 아기씨를 산만(해산)하였다고 의녀가 말하는 내용으로 대전(국왕)과 대비전에 서계한다. 태반이 정상적으로 나온 뒤의 서계도 동일하다.¹²⁸ ○세 제조가 오늘부터 모두 입직하겠다고 초기한다.¹²⁹ ○대령의관은 의녀가 말하는 해당 전의 기후(기체후)와 아기씨의 기후를 가지고 날마다 세 번¹³⁰씩 서계한다. 다음날 대령의관은 셋째 날에 세욕(독욕)을 위한 길시와 아기씨의 세욕을 위한 길시, 태(胎)를 씻기 위한 길시(吉時)를 가려 뽑겠다는 내용으로 서계한다. 해당 전에는 언문으로 된 글로 서계한다. ○셋째 날 대령의관은 세욕한 물 및 태를 씻은 물을 아무 방(方, 방향)에 뿌리겠다는 내용으로 서계한다. 해당 전에는 언문으로 된 글로 서계한다. ○태를 씻는 데 쓰이는 잡물(雜物)은 각사(各司)에서 진배한다. ○일곱째 날 권초(捲草)¹³¹ 때의 거행(舉行)은 산실청에서 미리 각 해당 관사(官司)에 분부(分付)한다. 대령의관은 당일 아무 시(時)에 권초한다는 내용으로 서계한다. 해당 전에는 언문으로 된 글로 서계한다. ○권초제(捲草祭)¹³² 때에 권초관(捲草官)은

127 지역물(持藥物) : 본문 〈봉사〉 ‘간병(看病)’을 보면 지역물(持藥物)이란 간병(看病) 대상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음을 말하며 약물(藥物)이란 인삼(人蔘) 두 낭과 초재(草材) 여러 가지를 말한다.

128 태반이 나오지 않으면 산모(產母)의 생명이 위태롭다.

129 《은대편고》 〈예방고禮房攷·약방藥房〉을 보면 산실청이 설청되면 세 제조가 돌아가면서 입직 하다가, 분만하는 달에 이르면 세 제조가 함께 입직을 하였다. 《은대조례》 〈예고禮攷·약방藥房〉을 보면 이 밖에 여러 전(殿)이나 궁(宮)이 미령할 때에도 세 제조가 함께 입직을 하였다. 《신보수교집록》 〈예전禮典·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숙종 45년(1719)의 강희기해승전(康熙己亥承傳)을 보면 내의원의 세 제조가 모두 입직하거나 입직하여 잠을 자게 되면 정일품 관청과 관문(關文)을 주고받고 정일품 이하의 아문에는 첨정(牒呈)을 보낸다. 그러나 직숙(直宿)이 끝나면 종전대로 한다고 하였다.

130 세 번 : 아침, 점심, 저녁이다.

131 권초(捲草) : 출산 때 까는 벗짚을 거두는 일을 뜻한다.

132 권초제(捲草祭) : 왕실 자녀의 무병장수를 비는 의례이다. 《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產廳小日記》 숙종 19년(1693) 10월 12일 기사를 보면 권초제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호산의관이 자리에 나아가 재배한 뒤 이어 현초(懸草) 앞으로 나아간다. 현초(懸草)란 해산할 때 쓴 거적자리를 길한 방향의 궁중 대문에 붉은 끈으로 매달아 둔 것이다. 의관은 향안(香案) 앞에 분향하고 계단에서 내려와 자리에 나아가서 두 번 절하는 예를 한다. 그런

대령의관과 함께 흑단령(黑團領)¹³³을 갖추고 서원 등을 이끌고 산실에 이르러 들어가서 배설한 장소에서 행한다. 같은 날, 태를 씻은¹³⁴ 뒤 대내(大內)에서 가려 보내 태봉(胎峯)에 안치한다.¹³⁵

○ 세 제조는 오늘부터 입직하는 것을 거두고 대령의관은 계속 머무르겠다고 구두로 아뢴다.

產室廳問安 擇日單子, 及醫官望單, 啓下後, 三提調口傳問安, 護產官問安, 而稟旨後, 並間五日或間三日爲之. ○設廳日, 三提調口傳問安, 諸醫官單子問安, 待令醫官單子問安. 直宿提調, 逐日口傳問安. ○排設後, 三提調口傳問安, 醫官單子問安. ○解娩後, 三提調, 逐日朝夕, 啓辭問安. 大殿當殿, 待令醫官, 逐日朝夕, 問安. 當日及一七二七三七百日, 各殿宮, 醫官單子問安. ○洗胎後, 三提調啓辭問安. ○醫女亦爲依例問安,

산실청문안 택일단자 및 의관망단(의관 후보 명단)이 제하된 뒤에 세 제조는 구전문안하고 호산관은 문안하는데 품지한 뒤에 모두 닷새 간격으로 하거나 혹은 사흘 간격으로 한다. ○ 청을 설치한 날에는 세 제조가 구전문안하는데, 모든 의관들은 단자문안하며 대령의관도 단자문안한다. 직속하는 제조는 날마다 구전문안한다. ○ 배설한 뒤에 세 제조는 구전문안하고, 의관은 단자문안한다. ○ 해산한 뒤에 세 제조는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계사문안한다. 대전과 해당 내전에는 대령의관이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문안한다. 당일 및 초칠일, 이칠일, 삼칠일¹³⁶, 백일에는 각 전과 궁에 의관이 단자문안한다. ○ 태(胎)를 씻은 뒤에 세 제조는 계사문안한다. ○ 의녀 또한 전례에 따라 문안한다.

護產廳 後宮當朔設廳. ○ 醫官一望或二望, 若俱以御醫點下, 則內醫別掌務官一員差下. ○ 捲草官, 以護產官兼. ○ 解娩前, 則醫官問安,

뒤 차지내관과 의관이 함께 권초를 모시로 된 포대에 담아 붉은 보자기로 싸서 봉하고 바깥에 의관이 착압서명(着押署名)하여 함 속에 넣는다. 이를 차지내관이 함 밖에서 끈으로 봉하고 착압서명한다. 이는 이후 내자시(內資寺)로 보내진다.

133 흑단령(黑團領) : 검은 빛깔의 깃이 동근 옷이다.

134 태를 씻은 : 《계유호산청소일기》 숙종 19년(1693) 10월 8일 기사를 보면 좋은 방위의 물로 100번 씻은 뒤에 술로 다시 씻어 향아리에 넣고 봉한다.

135 《은대조례》〈예고禮攷·약방藥房〉에 태(胎)를 묻기 위해 파견되는 안태사(安胎使)는 종실(宗室)과 조신(朝臣) 중에 유복인(有福人, 복이 있는 사람)으로 차출한다고 되어있다.

136 삼칠일 : 아기가 태어나면 7일 단위로 구분하여 보살피던 풍습에 기인한다.

호산청 후궁은 해산달에 청을 설치한다. ○의관은 하나 또는 두 후보자를 올리는데, 만약 모두 어의로 낙점하여 내리면 내의 별장무관 1원을 임명한다. ○권초관은 호산관이 겹직한다. ○해산하기 전에는 의관이 문안한다.¹³⁷

各宮房護產 有傳教, 則醫官一員, 持藥物, 隨時書啓. 書員醫女亦爲待令,
각 궁방의 호산 전교가 있으면 의관 1원이 지약물(持藥物)하며¹³⁸, 상황에 따라 서제한다.
서원, 의녀 또한 대령한다.

侍藥廳 大殿·大妃殿未寧時曰侍藥廳, 設於差備近處, 諸各司晝夜待令於闕下. 凡諸進排, 自廳直爲分付舉行. ○三提調以下並直, 待令醫官, 別掌務官, 草記差下. ○平復後, 有退待本院之下教, 則提調並直, 或輪直, 醫官仍爲並直, 更待下教撤罷. ○問安, 自設廳日, 朝夕爲之, 而勿爲問安節次, 待下教擧行,

시약청 대전이나 대비전이 미령한 때 배설하는 청을 시약청이라고 하는데 차비문(差備門) 근처에 설치하고 여러 각사(各司)는 밤낮으로 궐하에 대령한다. 무릇 모든 진배는 시약청에서 직접 분부하여 거행한다. ○세 제조 이하는 모두 입직하는데, 대령의관, 별장무관은 초기로 임명한다. ○병이 나아 건강해진 뒤 물러나 본원(내의원)에서 기다리라는 하교가 있으면, 제조는 모두 입직하거나 혹은 돌아가면서 입직하는 한편, 의관은 그대로 모두 입직하다가 다시 하교를 기다려 철파한다. ○문안은 청을 설치한 날부터 아침저녁으로 하는데, 문안 절차대로 하지 말고 하교를 기다려 거행한다.

議藥廳 中宮殿·世子宮·嬪宮未寧時, 則曰議藥廳, 凡例上同. ○以上 各廳員役, 依例差定, 內殿待令醫女差定,

의약청 중궁전, 세자궁, 빈궁이 미령할 때 배설하는 청을 의약청이라고 하는데 모든 규례는 위와 동일하다. ○이상의 각 청의 원역은 전례에 따라 임명하여 정하는데, 내전(왕비)에는 대령의

137 본문의 <설청設廳>에 나온 산실청(產室廳)보다 원역(員役)의 지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은대조례》 《예고禮攷· 약방藥房》을 보면 호산청의 호산관(護產官)은 의관(醫官)이며, 아들이 아닌 딸의 경우는 호산관과 권초관(捲草官)을 따로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38 본문 <봉사奉使>의 '간병(看病)'을 보면 지약물(持藥物)이란 간병(看病) 대상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음을 말한다. 또한 약물이란 인삼 두 냥과 초재(草材) 갖가지를 말한다.

녀를 임명하여 정한다.

直宿 在未設廳前, 而擧行諸條上同. ○以上三提調以下, 別單書啓, 待下教入之,

직숙(번을 들어 잔다) 청을 설치하기 전에 하는데 거행하는 조목들은 위와 동일하다. ○이상은 세 제조 이하를 별단으로 서계하는데 하교를 기다려 들인다.

分藥房 移御時, 及無廳號移設時, 有之, 而移御時入直等節, 與本院同.

분약방 이어할 때 및 청의 이름 없이 옮겨 설치할 경우에 두는데, 이어할 때 입직 등의 규범은 본원(내의원)과 동일하다.

10. 연례진상(年例進上)¹³⁹

芙蓉香, 衣香 各宮房亦爲封送,

부용향¹⁴⁰, 의향¹⁴¹ 각 궁방에도 또한 봉하여 보낸다.¹⁴²

醸飴湯, 玉樞丹 以上五月五日, 香薷散 五月初一日爲始, 至八月初一日進上, 而每一日入之. ○中宮殿不爲進上,

제호탕¹⁴³, 옥추단¹⁴⁴ 이상은 5월 5일, 향유산¹⁴⁵ 5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8월 초하루까지

139 해마다 정기적으로 내의원에서 대전(大殿)과 여러 궁방(宮房)에 진상하는 물품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140 부용향 :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3월 3일, 3월 25일 기사를 보면 부용향은 내의원에서 봄과 가을에 여리 약재로서 만드는 향료로 조사(詔使)의 접대와 산릉에서 사용하였다. 세는 단위는 병(柄)이다. 《내의원정례》 <진상부용향소입進上芙蓉香所入>을 보면 봄과 가을에 진상 한다.

141 의향 : 좀이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옷의 갈피나 옷장에 넣어두는 향이다.

142 《육전조례》 <예전(禮典) · 내의원>을 보면 들어가는 당약(唐藥)의 종류와 양이 상세하다.

143 제호탕 : 《구급이해방救急易解方》을 보면 해서지갈(解暑止渴)하는 효능이 있는 처방이다.

144 옥추단 : 《구급이해방》을 보면 고독(蠱毒) 일체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진상하는데, 매 초하루에 들인다. ○중궁전에는 진상하지 않는다.

藥蟹醢 待蟹熟, 築稟後, 發關畿營平市署, 自本院沉熟, 逐日入之, 準三十次,
약해해 게가 성숙하기를 기다려 연석에서 아뢴 뒤에 관문¹⁴⁶을 경기감영과 평시서¹⁴⁷로 보내는
데, 본원(내의원)에서 숙성시켜서 날마다 들이되 30회를 기준으로 한다.¹⁴⁸,

六香膏 十月初一日. ○各宮房亦爲封送,

육향고¹⁴⁹ 시월 초하루. ○각 궁방에도 봉하여 보낸다.

煎藥 冬至日. ○各宮房亦爲封送,

전약¹⁵⁰ 동짓날. ○각 궁방에도 봉하여 보낸다.

山楂 秋一次, 木瓜 冬一次,

산사¹⁵¹ 가을에 한 차례,¹⁵² 모과 겨울에 한 차례,¹⁵³

臘藥 臘日. ○牛黃清心元, 九味清心元, 龍腦安神丸, 小兒清心元, 牛黃抱龍丸, 龍腦蘇合元, 驚香蘇合元, 水煮木香膏, 龍腦膏, 木香保命丹, 加減薄荷煎元, 感應元, 安胎丸, 抱龍丸, 牛黃涼膈元, 瀉青丸, 好合茵蔯元, 神保元, 神聖辟瘧丹, 千金廣濟丸, 立效濟衆丹, 二十一種,

145 향유산 : 《구급이해방》을 보면 서증(暑證)으로 인한 발열두통(發熱頭痛), 심복통(心腹痛), 토리(吐利)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146 관문 : 상부관청에서 하부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서식이다.

147 평시서 : 도량형을 단속하고 시전을 감독, 물가를 조절하는 관청이다.

148 《승정원일기》 순조 4년(1804) 8월 19일 기사에 ‘藥蠣醢, 依例以三十次沈入’의 내용이 있다.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수량을 정해 놓은 것이다.

149 육향고 : 《의립촬요醫林撮要》를 보면 동한(冬寒)으로 인한 동상(凍傷)과 군축(皯癥, 손발이 얼어터지고 얼음이 박힘)을 치료하는 고약이다.

150 전약 :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전약소입(煎藥所入)에 들어가는 당약(唐藥)인 계피(桂皮), 관계(官桂), 정향(丁香)의 양에 대해 나온다.

151 산사 : 산사나무의 익은 열매를 말린 약재이다.

152 《육전조례》〈예전·내의원〉에 성숙하기를 기다려 올린다는 내용이 있다.

153 《육전조례》〈예전·내의원〉에 10월에 올린다는 내용이 있다.

납약 납일¹⁵⁴. ○우황첨심원, 구미청심원, 용뇌안신환, 소아청심원, 우황포룡환, 용뇌소합원, 사향소합원, 수자목향고, 용뇌고, 목향보명단, 가감박하전원, 감응원, 안태환, 포룡환, 우황양격원, 사청환, 호합인진원, 신보원, 신성벽온단, 천금광제환, 입효제증단의 21종이다.¹⁵⁵,

紫金丹 臨前十日, 消毒保嬰丹 上元, 七夕. ○七夕, 當寧因下教姑停,

자금단¹⁵⁶ 설달(음력 12월) 열흘 전, 소독보영단 상원(음력 정월 보름)과 칠석(음력 7월 7일).

○칠석은 지금 임금(순조)께서 하교를 내려 잠시 정지하였다.

駝酪粥 十月初一日, 至正月三十日, 逐日入之, 薏苡仁末 每三日一次. ○十二月初一日, 別進上一次, 羊肝羊腎 大亨後, 各司令封進. 江心水 逐日. ○若值江水漲濁, 則桶井水代封,

타락죽¹⁵⁷ 10월 초하루부터 정월 30일까지 날마다 들인다. 율무가루 매 사흘마다 한 차례.

○12월 초하루에 별도의 진상 한 차례,¹⁵⁸ 양(羊)의 간과 신(腎) 대향(大亨) 뒤에 각사(各司)가 봉진하게 한다. 강심수¹⁵⁹ 날마다. ○만약 강물이 넘쳐 탁한 때를 만나면 용정수¹⁶⁰로 대신하여 봉진한다.

炭 逐日, 鍼子 間三年一次. ○寅年, 則三寅鍼別爲進上, 生熟鰐 統制使, 慶尙左兵使相間, 逐朔一次. ○當寧辛酉因下教停捧, 免紅丸, 活免 正宗朝, 因下教減,

숯 날마다. 침자(鍼子) 세 해 걸러 한 차례.¹⁶¹ ○인년(寅年)이라면 삼인침(三寅鍼)¹⁶²을 별도로

154 납일 :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未日)이다.

155 《납약증치방臘藥症治方》에 수록된 납약은 37종이다. 《혜국지》〈식례式例·공사供仕〉를 보면 혜민서의 참상(參上), 참하(參下), 생도(生徒) 중에 내의원의 관문(關文)에 의해 내국제약관(內局劑藥官)을 임명하여 납약(臘藥)을 진상하게 하였다.

156 자금단 : 신선태을자금단(神仙太乙紫金丹)을 말한다.

157 타락죽 : 《시폐市弊》 제2책 〈우전牛塵〉을 보면 타락(駝酪)의 공급원으로서 새끼를 놓은 어미 소를 송아지와 함께 사복시나 기로소에 진배하는 내용이 있다.

158 《육전조례》〈예전·내의원〉에 진술축미일(辰戌丑未日)에 올리고 별도로 12월 1일에도 올린다고 되하였다.

159 강심수 : 한강(漢江)의 강심(江心, 강 한가운데) 물을 말한다.

160 용정수 : 훈련도감 서남쪽에 있던 우물물로, 용정(桶井)은 물이 좋아 어정(御井)으로 삼았다.

161 본문 〈관제官制〉에서 침감조관(鍼監造官)의 임기가 3년인 이유이다.

진상한다. 생복(生鰻)과 숙복(熟鰻)¹⁶³ 통제사와 경상좌병사가 번갈아서 매달 한 차례.¹⁶⁴

○지금 임금(순조) 신유년(1801)에 하교로 인해 정봉(봉납을 정지)했다.¹⁶⁵, 토흥환¹⁶⁶, 살아 있는 토끼 정조 조에 하교로 줄였다.¹⁶⁷,

各色酒, 蟹火丸, 神明散, 桂苓元, 三豆飲, 朱砂丸, 長圓香, 凍沙花, 馬通茶 以上英宗朝, 因下教減.

여러 종류의 술, 형화환¹⁶⁸, 신명산¹⁶⁹, 계령원(계지복령환)¹⁷⁰, 삼두음¹⁷¹, 주사환, 장원향, 동사화, 마통차¹⁷² 이상은 영조 조에 하교로 줄였다.¹⁷³.

162 삼인침(三寅鍼) : 《승정원일기》 영조 10년(1734) 3월 26일 기사를 보면 삼인침은 정월 초하루에 만든다. 인년(寅年)의 인월(寅月) 인일(寅日)이므로 삼인(三寅)이라 한다.

163 생복(生鰻)과 숙복(熟鰻) : 생복(生鰻)은 소금에 절인 전복이고 숙복(熟鰻)은 삶은 전복이다.

164 《육전조례》〈예전(禮典) · 내의원〉을 보면 매월 14일에 올리는데, 5 · 6 · 7월에는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165 《승정원일기》 순조 1년(1801) 1월 28일 기사에 나온다.

166 토흥환 : 《육전조례》〈예전(禮典) · 내의원〉을 보면 12월 8일에 올린다고 하였다.

167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12월 8일에 나온다.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를 보면 토흥환을 두진(痘疹)의 예방약으로 사용한다.

168 형화환 : 《간이벽온방》을 보면 병을 일으키는 악기(惡氣)나 온갖 귀신을 물리친다고 하였다.

169 신명산 : 《분문온역이해방》을 보면 역병을 물리치는 처방이다.

170 계령원(계지복령환) : 《의방유취》를 보면 부인(婦人)의 오래된 징병(癥病)으로 생긴 제반 증상에 활용된다.

171 삼두음 : 《구급이해방》을 보면 두창을 치료하는데 활혈해독(活血解毒)하는 효능이 있다.

172 마통차 : 《급유방》에 서증(暑症)을 예방하는 효능이 실려 있다. 마통(馬通)은 어린 말이 눈 뜰을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173 《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11월 27일 기사를 보면 마통차(馬通茶)의 진상을 없앴고, 12월 20일 기사를 보면 주사환(朱砂丸)과 장원향(長圓香)의 진상을 없앴다.

11. 연례복정(年例卜定)¹⁷⁴

有匣生鰻 忠淸·黃海兩道水營, 半乾全鰻, 蔚大全鰻 以上統營·左營, 蝦卵 箕營·海營, 甘冬醱 海營, 細蝦醱 黃海監·兵營, 皮狄栗¹⁷⁵ 平安道咸從, 慶尙道尙州·宣山·密陽, 沙果 箕營, 咸營, 石榴, 柚子, 蹤柿 以上 嶺營·完營, 倭柑子 釜山訓導. ○以上年例發關封進. 當寧辛酉, 因下教停減,

껍질 있는 생복(生鰻)¹⁷⁶ 충청과 황해 두 도(道)의 수군영. 반쯤 말린 전복¹⁷⁷. 울대전복(蔚大全鰻)¹⁷⁸ 이상은 통영과 경상좌수영, 새우알 평안감영과 황해감영, 감동젓 황해감영, 잔 새우젓¹⁷⁹ 황해감영과 병영, 피적율(皮狄栗) 평안도의 함종, 경상도의 상주·선산·밀양, 사과 평안과 함경감영, 석류, 유자¹⁸⁰, 준시(蹲柿)¹⁸¹ 이상은 경상과 전라감영, 왜감자(倭柑子)¹⁸² 부산포의 훈도¹⁸³. ○이상은 연례로 관문을 보내 봉진하도록 하였다. 지금 임금(순조) 신유년(1801)에 하교로 인해 정감(停減)되었다.¹⁸⁴.

不塩民魚, 淡塩民魚 以上箕營, 海營. 凍秀魚 箕營. 紅柿 嶺營, 完營. ○以上年例發關封進.

174 복정 : 복정(卜定)이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게 물품을 지정하여 강제로 바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내의원에서 다른 관청들에게 복정(卜定)한 물품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175 皮狄栗 : 밤의 한 품종이다. 원본에는 '荻'으로 되어있으나 '狄'이 옳으므로 수정했다.

176 껍질 있는 생복(生鰻) : 《육전조례》〈예전(禮典)·내의원〉을 보면 2·3·8·9월에 올린다.

177 반쯤 말린 전복 :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2·3·8·9월에 올린다고 되어 있다.

178 울대전복(蔚大全鰻) : 경상 울산(蔚山)의 커다란 전복이다.

179 잔 새우젓 : 《승정원일기》 순조 1년(1801) 1월 28일 기사에는 '白細蝦醱'이라 했다. 감동젓이 새우젓으로 볼 수 있는 곤쟁이것인데 자색이므로 이와 상대적인 표현으로는 '백(白)'이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인다.

180 유자 :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9월에 두 차례 올린다고 되어 있다.

181 준시(蹲柿) : 껍질을 깎아서 납작하게 말린 감이다.

182 왜감자(倭柑子) :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동지와 정초(正初)에 올린다고 되어 있다.

183 부산포의 훈도 : 부산포(釜山浦)에는 종9품 역학(譯學)과 왜학훈도(倭學訓導)가 한명씩 있었다. 본문의 훈도는 왜학훈도를 말한다.

184 《승정원일기》 순조 1년(1801) 1월 28일 기사에 나온다.

正宗朝, 因下教停減.

소금에 절이지 않은 민어, 얼간한 민어 이상은 평안과 함경감영, 겨울에 잡은 송어 평안감영, 흥시 경상과 전라감영. ○이상은 연례로 관문을 보내어 봉진하도록 하였다. 정조 조에 하교로 인하여 정감(停減)되었다.¹⁸⁵.

12. 연례제조(年例劑造)¹⁸⁶

阿膠, 雲母膏, 太乙膏, 神異膏, 萬病無憂膏, 海蛤紛 以上春秋兩次,
아교, 운모고¹⁸⁷, 태을고¹⁸⁸, 신이고¹⁸⁹, 만병무우고¹⁹⁰, 해합가루 이상은 봄과 가을
두 차례,

寒食麵, 蒸餅 以上寒食日,

한식면¹⁹¹, 증편¹⁹² 이상은 한식날,

脾寒丹, 陳艾, 益母草 以上端午,

185 ‘凍秀魚’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12월 7일 기사에 나온다.

186 본 조문에서는 내의원에서 해마다 제조하는 물품을 설명한다.

187 운모고 : 《의방유취》〈제창문諸瘡門〉에 일체의 창종(瘡腫)과 상절(傷折)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188 태을고 : 《의방유취》〈옹저문癰疽門〉에 옹저발배(癰疽發背)와 악독(惡毒)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189 신이고 : 《의방유취》〈고약문膏藥門〉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달종(疽腫), 타박손상(打撲傷損), 골내착독(骨內著毒)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190 만병무우고 : 다른 이름으로 통신고(通神膏)라고도 한다. 《의방유취》〈고약문膏藥門〉에 나오는 주치(主治)는 태을고(太乙膏)와 같다.

191 한식면 : 흔히 메밀로 만든다.

192 증편 : 멱쌀가루에 막걸리를 조금 넣고 더운 물로 반죽한 떡이다.

비한단¹⁹³, 묵은 쑥¹⁹⁴, 익모초 이상은 단오(음력 5월 5일),

益元散 五月,

의원산¹⁹⁵ 5월,

神麵 六月六日,

신국¹⁹⁶ 6월 6일,

白荷塙, 青黛, 豆豉, 半夏麵 以上七月,

백하염, 청대¹⁹⁷, 두시¹⁹⁸, 반하국¹⁹⁹ 이상은 7월,

法製半夏, 牛膽南星, 煉艾 以上隨時爲之,

법제반하²⁰⁰, 우담남성²⁰¹, 연애(煉艾)²⁰² 이상은 수시로 만든다.

蛇油丸 七月,

사유환²⁰³ 7월,

193 비한단 : 《언해납약증치방》에서 제학(諸瘡)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194 묵은 쑥 : 단오가 지나서 채취한 쑥은 약용으로 쓰지 않는다.

195 익원산 : 《인제지》 권6에서 중서(中暑), 신열(身熱), 토사(吐瀉), 장벽(腸澼), 하리(下痢)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196 신국 : 여려 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약으로 일종의 소화제로 보면 된다.

197 청대 : 《승정원일기》 영조 10년(1734) 10월 26일 기사를 보면 치은증(齒斷症)이 있을 때에 백하염(白荷鹽)이나 청염(青鹽)을 때때로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되어있다.

198 두시 : 콩을 삶아 발효시킨 약재이다.

199 반하국 : 반하(半夏)를 넣어 발효시킨 약으로 습병(濕病)을 치료한다. 반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을 중화시키는 법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0 법제반하 : 썰지 않은 생반하(生半夏)를 물에 담가 속까지 적신 뒤 생강과 백반을 달인 물에 넣고 약한 불에 졸여 만든다.

201 우담남성 : 천남성 가루를 소의 담낭에 넣어 말린 약. 천남성(天南星)을 생으로 쓰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거치는 법제 방법의 하나이다.

202 연애(煉艾) : 이는 뜸용 쑥이다. 본문 〈연례제조년例劑造〉에 나온 묵은 쑥(陳艾)은 탕제에 넣는 용도로서 둘은 구분된다.

熟地黃 九月,

숙지황 9월,

酥油 駝酪停止後.

수유²⁰⁴ 타락을 정지한 뒤에.

13.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²⁰⁵

外貢 大令審藥領納, 小令陪持來納, 慶尙道 二月十月大令, 四月六月八月十二月小令, 統營 正月令, 七月令, 左兵營 七月令, 全羅道 二月九月大令, 正月三月四月五月七月八月十月十二月小令, 濟州 八月令, 十月令, 忠清道 二月九月大令, 正月三月四月五月六月七月八月十月小令. ○以上三南草材, 正宗癸丑, 折半權減, 江原道 二月九月臘月大令, 黃海道 三月九月大令, 五月十一月小令, 咸鏡道 十月大令, 三月五月小令, 南兵營 七月令, 北兵營 七月令, 平安道 正月令, 七月令, 兵營 正月令, 七月令.

외공(지방에서 바치는 공물)²⁰⁶ 대령(大令)에는 심약(審藥)²⁰⁷이 영납(영솔하여 바침)하고, 소령(小令)에는 배지(陪持)²⁰⁸가 와서 납부한다. 경상도 2·10월은 대령이고, 4·6·8·12월은

203 사유환 : 《승정원일기》 현종 11년(1670) 윤2월 12일 기사를 보면 핵(核)을 치료하는데 최고로 좋다고 하였다. 사유환의 감제(監劑)에 대해서는 본문 〈봉사〉 참조.

204 수유 : 소나 산양의 젖을 끓였다가 냉각하여 응고된 지방으로 만든 기름이다.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 〈수유제조소입酥油劑造所入〉을 보면 한 해를 걸러 한 차례씩 제조하였다.

205 도성 안팎에서 내국(內局)으로 공납하는 약재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206 외공(지방에서 바치는 공물) : 본문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서 ‘사향(麝香)’까지가 외공(外貢)이다. 《육전조례》 〈예전·내의원〉을 보면 여러 도(道)에서 진상하는 약재의 종류와 양에 대해 상세하다.

207 심약(審藥) : 《혜국지》 〈연혁·외임外任〉 ‘심약은 종9품으로 진상약재를 자세히 살피는 일과 일반 백성 및 병사(兵士)에 대한 치료 등의 일을 관장한다. 양도록 취재 점수에 따라, 녹관 다음으로 임명된다.’

소령이다.²⁰⁹, 통영²¹⁰ 1·7월령이다. 좌병영(경상좌병영) 7월령.²¹¹, 전라도 2·9월은 대령이고, 1·3·4·5·7·8·10·12월은 소령이다.²¹², 제주 8·10월령.²¹³, 충청도 2·9월은 대령이고 1·3·4·5·6·7·8·10월은 소령이다.²¹⁴ ○이상 삼남(三南, 경상·전라·충청)의 초재(草材)는 정조 계축년(1793)에 절반을 임시로 줄였다.²¹⁵, 강원도 2·9·12월은 대령이다.²¹⁶, 황해도 3·9월은 대령이고, 5·11월은 소령이다.²¹⁷, 함경도 10월은 대령이고 3·5월은 소령이다.²¹⁸, 남병영(함경남병영) 7월령이다.²¹⁹, 북병영(함경북병영) 7월령이다.²²⁰, 평안도 1·7월령이다.²²¹, 병영(평안병영) 1·7월령이다.²²².

羅蔘 慶尙道, 二月十月令, 各二斤, 差使員·審藥領納,

나삼 경상도에서 2·10월령으로 각각 2근을 차사원²²³과 심약이 영납한다.

208 배지(陪持) : 지방에서 장례를 가지고 한양으로 파송되는 이를 말한다.

209 《혜국지》〈연혁·외임〉 '2·3·9·10월에는 진상하는 약재를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4·5·6·7·8·12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210 통영 : 《혜국지》〈연혁·외임〉 '7월의 약재진상은 배지가 영납한다.'

211 《혜국지》〈연혁·외임〉 '진상은 하지 않는다.'

212 《혜국지》〈연혁·외임〉 '2·3·9·10월에는 진상하는 약재를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1·4·5·7·8·12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213 《혜국지》〈연혁·외임〉 '팔월 및 세초(歲杪, 6월과 12월)에 진상약재를 배지가 영납한다.'

214 《혜국지》〈연혁·외임〉 '2·3·9·10월에는 진상하는 약재를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1·4·5·7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215 《승정원일기》 정조 17년(1793) 2월 20일 기사에 나온다.

216 《혜국지》〈연혁·외임〉 '3·10월에는 진상약재를 심약과 차사원이 안동(眼同)하여 내국에 영납하고, 12월에는 차사원이 영납하며, 5·8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217 《혜국지》〈연혁·외임〉 '2·3·8·9월에는 진상하는 약재를 심약이 내국에 영납하고, 5·11월에는 배지가 영납한다.'

218 《혜국지》〈연혁·외임〉 '3·5·10월에는 진상약재를 배지가 내국에 영납한다.'

219 《혜국지》〈연혁·외임〉 '1·7월에 진상약재를 심약이 영납한다.'

220 《혜국지》〈연혁·외임〉 '1·7월에 진상약재를 심약이 영납한다.'

221 《혜국지》〈연혁·외임〉 '1·7월에 진상약재를 배지가 영납한다.'

222 《혜국지》〈연혁·외임〉 '1·7월에 진상약재를 배지가 영납한다.'

江蔴 每年五十斤內, 十五斤, 肅宗朝戊子, 因繡啓, 特減, 六兩, 正宗朝丁未, 特減, 六兩, 壬子, 因慰諭使啓, 特減, 十四兩三錢, 當寧丁卯, 因江陵府使疏, 特減, 二十斤, 英宗朝己卯, 作京貢矣, 十斤, 正宗朝丙申, 權減. 實時捧二十三斤五兩七錢內, 十三斤五兩七錢, 江原道九月令, 差使員審藥領納, 十斤, 貢人來納,

강삼 매년 50근²²⁴에서 15근은 숙종 조 무자년(1708)에 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특별히 줄이고,²²⁵ 6냥은 정조 조 정미년(1787)에 특별히 줄이고,²²⁶ 6냥은 임자년(1792)에 위유사(慰諭使)²²⁷가 아뢰어서 특별히 줄이고,²²⁸ 14냥 3돈은 지금 임금(순조) 정묘년(1807)에 강릉부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이고,²²⁹ 20근은 영조 조 기묘년(1759)에 경공(京貢)으로 만들고,²³⁰ 10근은 정조 조 병신년(1776)에 임시로 줄였다.²³¹ 실제 징수하는 23근 5냥 7돈에서 13근 5냥 7돈은 강원도에서 9월령으로 차사원과 심약이 영납하고, 10근은 공인이 와서 납부한다.

223 차사원 :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차출 임명되는 관원이다. 여기서는 약재 검수를 위해 임명된 약재차사원을 지칭한다. 관찰사가 해당 도의 수령이나 칠방 중에서 임명하여 도성으로 보냈으므로 심약보다 고위직이다.

224 매년 50근 : 《만기요람》〈재용편 · 내국 어공삼〉에 따르면 봄 분기에 30근, 가을 분기에 20근이었다.

225 《승정원일기》 숙종 34년(1708) 7월 20일과 23일 기사에 나온다. 《만기요람》〈재용편 · 내국 어공삼御供蔴〉에 따르면 수계(繡啓)를 올린 어사(御使)는 심수현(沈壽賢)이었다. 봄 분기에 10근, 가을 분기에 5근을 줄였다.

226 《만기요람》〈재용편 · 내국 어공삼御供蔴〉을 보면 가을 분기의 6냥이었다.

227 위유사(慰諭使) : 지방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임금이 파견하는 임시 관원이다.

228 《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윤 4월 27일과 28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위유어사(慰諭御史)는 홍대협(洪大協)이었다. 《만기요람》〈재용편 · 내국 어공삼御供蔴〉을 보면 가을 분기의 6냥 이었다.

229 《승정원일기》 순조 7년(1807) 4월 22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강릉부사(江陵府使)는 이우경(李儒慶)이었다.

230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 4월 1일, 4일, 18일 기사에 나온다. 《만기요람》〈재용편 · 내국 어공삼御供蔴〉을 보면 봄 분기 20근이 경공(京貢)이 되었다.

231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1776) 9월 24일 기사에 나온다. 《만기요람》〈재용편 · 내국 어공삼御供蔴〉을 보면 경공삼(京貢蔴) 10근이었다.

臘蓼 每年十斤內, 三斤, 景宗朝庚子, 特減, 四兩, 正宗朝丁未, 特減, 四兩, 壬子, 因慰諭使啓, 特減, 四兩, 當寧丁卯, 因江陵府使疏, 特減. 實時捧六斤四兩, 江原道臘月令, 差使員審藥領納,
납삼²³² 매년 10근에서 3근은 경종(景宗) 조 경자년(1720)에 특별히 줄이고,²³³ 4냥은 정조
조 정미년(1787)에 특별히 줄이고, 4냥은 임자년(1792)에 위유사(慰諭使)가 아뢰어서 특별히
줄이고,²³⁴ 4냥은 지금 임금(순조) 정묘년(1807)에 강릉부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였다.²³⁵ 실제
징수하는 6근 4냥을 강원도에서 12월령으로 차사원과 심약이 영납한다.

戶蓼 每年九斤內, 三斤, 英宗朝戊子, 因關西伯疏, 特減, 一斤, 壬辰, 因江界府使疏, 特減, 二斤, 正宗
朝庚子, 因江界府使疏, 特減. 實時捧三斤內, 一斤, 直爲進上, 戶曹計士, 下往江界, 十月領納, 移來戶
蓼. 一斤, 戶曹郎 廳陪進, 直爲進上,

호삼(강계호삼) 해마다 9근에서 3근은 영조 조 무자년(1768)에 평안감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이고,²³⁶ 1근은 임진년(1772)에 강계부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이고,²³⁷ 2근은 정조 조 경자년
(1780)에 강계부사가 상소하여 특별히 줄였다.²³⁸ 실제 징수하는 3근에서 1근은 직접 진상하는데
호조의 계사(計士)²³⁹가 강계(강계부)로 내려가 10월에 영납하여 호삼을 옮겨오고, 1근은 호조의
낭청(당하관)이 배진(陪進)하여 직접 진상한다.

○大同人蓼 春大同, 嶺南四斤二兩, 每兩代錢十一兩五錢, 海西一斤, 每兩代錢十六兩, 合代錢一千
八十一兩. 秋大同, 嶺南五斤十二兩, 海西二斤, 每兩代錢, 並上同, 合代錢一千六百六十二兩. 春秋都

232 납삼 : 납약을 만들 때 쓰이는 삼이다.

233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1720) 8월 16일 기사에 나온다.

234 《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윤 4월 27일과 28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위유어사(慰諭御史)
는 홍대협(洪大協)이었다.

235 《승정원일기》 순조 7년(1807) 4월 22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강릉부사(江陵府使)는 이우경
(李儒慶)이었다.

236 《승정원일기》 영조 44년(1768) 4월 21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평안감사는 정포(鄭楨)였다.

237 《승정원일기》 영조 48년(1772) 1월 25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강계부사는 정언충(鄭彦忠)이
다. 강계(江界)는 평안도에 있는 도호부이다.

238 《승정원일기》 정조 4년(1780) 2월 25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강계부사는 류당(柳憲)이었다.

239 계사(計士) : 호조에서 토지, 세금 등에 관한 통계(統計) 등의 업무를 맡은 종8품 기술직 관원
이다. 주학(籌學)에 입격한 이들이 임명되었다.

合代錢二千七百四十三兩, 本院捧用矣. 正宗朝辛丑, 春大同錢, 作蓼八兩, 秋大同錢, 作蓼十二兩, 入於月計, 而作蓼, 則以應下劣條中, 計數會減. ○以上人蓼, 逐月會計, 每初一日入啓,

○대동인삼²⁴⁰ 봄 분기의 대동(大同)은 경상도는 4근 2냥인데, 냥당 돈으로 대신하면 11냥 5전이고, 황해도는 1근인데, 냥당 돈으로 대신하면 16냥이므로, 총합을 돈으로 대신하면 1,081 냥이다. 가을 분기의 대동은 경상도가 5근 12냥이고, 황해도는 2근인데, 냥당 돈으로 대신하는 것은 모두 위와 동일하므로, 총합을 돈으로 대신하면 1,662냥이다. 봄과 가을 분기를 모두 합하여 돈으로 대신하면 2,743냥이니, 본원(내의원)에서 봉용(捧用)²⁴¹한다. 정조 조 신축년(1781)에 봄 분기의 대동전(大同錢)으로 작삼(作蓼)한 8냥과 가을 분기의 대동전으로 작삼(作蓼)한 12냥을 월계(月計)에 넣는데, 작삼한 것은 <응하應下>와 <약열藥劣>²⁴² 내에서 계산하는 수로 회계 처리하였다.²⁴³ ○이상의 인삼은 달마다 회계(會計)하여, 매 초하루에 입계한다.

麝香 咸鏡監營, 十五部, 三月, 三十一部, 十月. 平安兵營, 三十部, 七月. 統營, 三十部, 七月. 慶尙左兵營, 二十部, 七月. 南兵營, 六十八部, 七月. 北兵營, 五十八部, 七月. 麗貢 咸鏡監營, 十六對, 七月. 平安監營兵營, 各五對, 正月, 五對, 七月. 統營, 五對, 正月, 五對, 七月. 南兵營, 北兵營, 各十對, 七月. ○以上審藥領納,

사향 함경감영에서는 15부²⁴⁴를 3월에, 31부를 10월에 영납한다. 평안병영에서는 30부를 7월에 영납한다. 통영에서는 30부를 7월에 영납한다. 경상좌병영에서는 20부를 7월에 영납한다. 함경남병영에서는 68부를 7월에 영납한다. 함경북병영에서는 58부를 7월에 영납한다. 녹용 함경감영에서는 16대를 7월에 영납한다. 평안감영과 병영에서는 각각 5대를 1월에, 5대를 7월

240 대동인삼 : 대동법에 의해 공납되는 인삼을 뜻한다.

241 봉용(捧用) :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거나, 거두어들인 것을 쓰는 행위를 뜻한다.

242 두 조문 내용 중에 인삼이 나오는데 이런 사용의 경우 월계(月計)에 넣지 말라는 뜻이다.

243 《만기요람》〈재용편 · 내국 어공삼御供蓼〉에도 작삼(作蓼)을 계산하여 월계(月計)에 넣을 때에 열(劣, 약열)에 해당하는 ‘열삼(劣蓼)’을 제외하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어공삼(御供蓼)의 감생 내력(減省來歷)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해당 《내의원식례》의 본문과 그 내용에 있어 유사성을 보이며, 《내의원식례》에 언급된 실제로 내국에 공납되는 인삼의 양도 같다. 《만기요람》이 순조(純祖)에 의해 1808-9년 사이에 찬진(撰進)된 점을 감안하면 《내의원식례》의 집필 시기 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244 15부 : 본문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사향 한 부(部)는 한 돈과 같다.

에 영납한다. 통영에서는 5대를 1월에, 5대를 7월에 영납한다. 함경남병영과 북병영에서는 각각 10대를 7월에 영납한다. ○이상은 심약이 영납한다.

唐藥材 每節行時, 別單啓下. 自戶曹給價, 醫司赴燕醫員, 及次上通事譯官使之貿納,
당약재(중국산 약재)²⁴⁵ 매 절행²⁴⁶ 때에 별단²⁴⁷으로 계하한다. 호조로부터 그 값을 지급받아서 의사(醫司)의 부연의원²⁴⁸ 및 차상통사²⁴⁹ 역관이 무역하여 들이게 한다.

倭黃連 每年五十斤內, 正宗朝辛丑, 減三十五斤. 實時捧十五斤, 釜山訓導, 分春秋上納,
왜황련(일본산 황련) 매년 50근에서 정조 조 신축년(1781)에 35근을 줄였다.²⁵⁰ 실제 징수하는 15근을 부산포의 훈도가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상납(上納)한다.

海艾 安山·喬桐·富平·通津·南陽·仁川·金浦等官上納,
해애(섬에서 나는 쑥) 안산, 교동, 부평, 통진, 남양, 인천, 김포 등²⁵¹의 수령이 상납한다.

紫口蛤 仁川·南陽·安山·喬桐等官, 自畿營分定上納,
자구합 인천, 남양, 안산, 교동 등의 수령이 경기감영으로부터 나누어 정해 상납한다.

青大竹 兩南, 每朔, 各三十箇內, 肅宗朝癸亥, 各減五箇. 實時捧各二十五箇, 各該監營封進. 正宗朝戊午, 自各該邑直納事, 受教定式.

청대죽²⁵² 경상과 전라도에서 올리는 매달 각각 30개에서 숙종 조 계해년(1683)에 각각 5개를

245 당약재(중국산 약재) : 《육전조례》〈예전(禮典) · 내의원〉에 연무당재(燕賀唐材)라 하여 감초 등 약재의 종류와 수량이 자세하게 나온다. 또한 봄 분기에는 의사(醫司)가 가을 분기에는 역원(譯院)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246 매 절행 : 《통문관지》〈사대(事大) · 부경사행〉을 보면 동지사(冬至使), 정조사(正朝使), 성절사(聖節使), 천추사(千秋使)가 절행(節行)이다.

247 별단 : 임금에게 올리는 본 문서에서 덧붙여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한 문서이다.

248 부연의원 : 《혜국지》〈식례式例 · 공사供仕〉를 보면 혜민서와 전의감에서 교대로 임명한다.

249 차상통사 : 사행(使行) 때 상통사(上通使) 다음가는 지위의 통역관이다. 《통문관지》〈연혁 · 등제等第〉를 보면 한학(漢學) 차상통사(次上通使)가 약재 무역하는 일을 하였다.

250 《승정원일기》 정조 5년(1781) 8월 25일 기사에 나온다.

251 모두 도성에서 가까운 경기도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고을들이다.

줄였다.²⁵³ 실제 징수하는 각 25개를 각 해당 감영에서 봉진한다. 정조 조 무오년(1798)에 각 해당 고을에서 직접 상납하도록 수교로 정식을 삼았다.²⁵⁴.

○京貢 戊寅大同後, 作貢進排.

○경공 무인년(1758) 대동 이후에²⁵⁵ 경공(京貢)으로 만들어 진배하였다.

人蔘 十斤, 見上,

인삼 10근인데 위에 보인다.²⁵⁶,

牛黃 典醫監, 春納四十七部, 秋納五十一部. 惠民署, 春納四十五部, 秋納五十部. ○以上牛黃, 逐月會計, 每初一日入啓. ○臘藥牛黃, 八十八部九分九里七毫, 草記取用. ○每部, 一錢五分,

우황²⁵⁷ 전의감에서는 봄에 47부를 들이고, 가을에 51부를 들인다. 혜민서에서는 봄에 45부를 들이고, 가을에 50부를 들인다. ○이상의 우황은 달마다 회계(會計)하여, 매 초하루에 입계한다. ○납약우황(납약을 만들 때 쓰는 우황)은 88부 9푼 9리 7호인데 초기를 올리고 가져다 쓴다. ○매 부는 1돈 5푼이다.

○麝香 典醫監, 春納十四部, 秋納十四部. 惠民署, 春納十六部, 秋納十六部. 三南貢人, 春納一百五十五部. ○臘藥麝香, 二百三部二分四里八毫, 草記取用. ○每部, 一錢,

○사향 전의감에서는 봄에 14부를 들이고, 가을에 14부를 들인다. 혜민서에서는 봄에 16부를 들이고, 가을에 16부를 들인다. 삼남(경상, 충청, 전라)의 공인이 봄에 155부를 들인다. ○납약사향(납약을 만들 때 쓰는 사향)은 203부 2푼 4리 8호인데 초기를 올리고 가져다 쓴다. ○매 부는

252 청대죽 : 불에 쪘어서 약재인 죽력(竹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253 《승정원일기》 숙종 9년(1683) 1월 3일 기사에 나온다.

254 《승정원일기》 정조 22년(1798) 9월 15일, 17일 기사에 나온다. 당시 해당 고을은 20여 고을이었다. 여러 고을이 돌아가면서 상납하기로 하였다.

255 대동 이후에 : 대동법이 실시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년 대동세를 거둘 때부터 이후라는 의미이다. 이는 《승정원일기》 순조 12년 7월 27일 기사에서 ‘依戊寅春等麥京作貢之例, 限折半作貢, 則麥弊可祛.’라고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256 본문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의 강삼(江蔘) 내용 중에 공인(貢人)이 10근을 상납한다고 하였다.

257 우황 : 외공(外貢) 없이 경공(京貢)만으로 공납된 약재이다.

1돈이다.

鹿茸 典醫監, 春納十二對半, 秋納十一對. 惠民署, 春納十二對半, 秋納十一對,

녹용 전의감에서는 봄에 12대 반을 들이고, 가을에 11대를 들인다. 혜민서에서는 봄에 12대 반을 들이고, 가을에 11대를 들인다.

熊膽 三南貢人, 春納二十一部. 典醫監, 秋納四部. 惠民署, 秋納五部,

옹담 삼남의 공인이 봄에 21부를 들인다. 전의감에서는 가을에 4부를 들인다. 혜민서에서는 가을에 5부를 들인다.

茯苓 湖南貢人, 以香材黃柏, 代納,

복령 호남의 공인이 향재²⁵⁸나 황백으로 대신 납부한다.

草材 京畿,

초재(초약) 경기,

양 京軍門, 及京畿邑. 留養入於月計.

양 도성의 군문(군대)²⁵⁹ 및 경기의 고을. 기르고 있는 양은 월계에 넣는다.

14. 응하(應下)²⁶⁰

人蔘 各殿宮, 待令南飛介所入, 各一兩. 春等, 公用, 二斤一兩, 院用, 一斤二兩, 稱縮, 一斤八兩. 秋等,

公用, 一斤十四兩, 院用, 一斤二兩, 稱縮, 一斤八兩. 臘藥所入, 五斤二兩六分二里五毫. ○入於月計,

인삼 각 전과 궁의 대령 남비개²⁶¹에 각각 1냥이 들어간다. 봄 분기에는 공용(公用)이 2근 1냥,

258 향재 : 본문 <연례진상>에 나오는 부용향(芙蓉香)이나 의향(衣香)의 원료를 향재라 한다.

259 군문(군대) :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영, 총융청을 말한다.

260 해당 약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를 설명한 조문이다.

261 남비개 : 남날개. 한자로 南飛箇, 南飛蓋 등으로 가차해서 쓰기도 한다. 화약이나 탄약 등의

원용(院用, 내의원에서 쓰는 것)이 1근 2냥, 칭축(稱縮)²⁶²이 1근 8냥이다. 가을 분기에는 공용이 한 근 14냥, 원용이 1근 2냥, 칭축이 1근 8냥이다. 납약에 5근 2냥 6푼 2리 5호가 들어간다. ○월계(月計)에 넣는다.

牛黃 各殿宮, 待令南飛介所入, 各一錢. 院用, 二部六分, 臘藥所入, 一百六十五部一錢三分一里二毫.
○入於月計,

우황 각 전과 궁의 대령 남비개에 각각 한 돈이 들어간다. 원용이 2부 6푼이고, 납약에 165부 1돈 3푼 1리 2호가 들어간다. ○월계에 넣는다.

麝香 待令雲母膏所入, 十部. 衣香所入, 二十二部. 玉樞丹所入, 六十七部. 紫金丹所入, 六十七部. 臘藥所入, 四百二十二部一分二里八毫. ○以上人蔘牛黃麝香不足之時, 則筵稟或草記後, 取用.

사향 대령하는 운모고에 10부가 들어간다. 의향(衣香)에 22부가 들어간다. 옥추단에 67부가 들어간다. 자금단에 67부가 들어간다. 납약에 422부 1푼 2리 8호가 들어간다. ○이상의 인삼, 우황, 사향이 부족할 때에는 연석에서 아뢰거나 초기를 올린 뒤에 가져다 쓴다.

15. 약열(藥劣)²⁶³

人蔘 貼藥 · 丸劑所入, 每錢五分. ○生材無劣法, 而若於內入時, 或有并劣以入之下敎, 則每錢以二分封入,

인삼 첨약과 환제의 경우에 1돈마다 5푼이 들어간다. ○생재(生材)는 열법(劣法)을 적용하지 않지만,²⁶⁴ 만약 대내에 들일 때나 혹은 열(劣)한 것과 함께 들이라는 하교가 있으면 1돈마다 2푼을

물건을 담는 통을 말한다. 본문의 <집물什物>에 나온다.

262 칭축(稱縮) : 여기서 칭축(稱縮)이란 칭축가(稱縮價)를 말한다. 칭축가란 원래 달았던 무게에서 수분이 빠지는 등의 이유로 감소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비용이다.

263 약력(藥力)이 모자란 경우에 각 약재마다 추가하는 양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264 원래 두석(豆錫, 놋쇠)이나 정철(正鐵)같은 금속성 물품의 경우에 열법(劣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질이 좋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보통 ‘열병(劣并)’을 해당 물품 이름 앞에

봉입한다.

牛黃 每錢三分,

우황 1돈마다 3푼이다.

龍腦 每錢三分,

용뇌 1돈마다 3푼이다.

唐材 每錢五分,

당재(중국산 약재) 1돈마다 5푼이다.

草材 每錢一錢,

초재 1돈마다 1돈이다.

骨角 每錢一錢五分.

골각(骨角) 1돈마다 1돈 5푼이다.

16. 감제(監劑)²⁶⁵

湯劑 提調一員, 御醫一員, 監劑. 掌務官執秤. 提調一員, 下番醫官, 監煎. 書員煎藥後, 提調嘗藥監封, 御醫及掌務官陪進. ○持湯劑見上. ○進御·進服藥, 煎入·製入, 及加減·停止時, 承旨入侍, 書出楊敷, 而未及入侍, 則自政院書入, 不得踰日. 殿宮藥, 則令醫女微稟于當殿當宮. ○動駕時, 值有殿宮湯劑煎入之事, 則提調中一員稟旨, 暫留監煎後, 進參. ○三提調俱有故, 則自政院稟旨監煎,

탕제] 제조 1월과 어의 1월이 약의 조제를 살핀다.²⁶⁶ 장무관이 약재 무게 다는 것을 맡는다.²⁶⁷

불인다.

265 탕제, 납약 등의 감제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266 《혜국지》〈식례·공사供仕〉를 보면 혜민서에서 내국제약관을 임명하여 보내는데, 연례적으로 드리는 약 및 때 없이 드리는 임금의 약은 모두 침하 및 생도 중에서 그 때마다 테리고

제조 1원과 하번의관(下番醫官)이 약 달이는 것을 살핀다. 서원이 약을 달인 뒤에 제조가 약을 맛보고 나서 감봉(監封)하고, 어의 및 장무관이 수행하여 나아간다. ○지탕제(持湯劑)는 위에 보인다.²⁶⁸ ○진어약(進御藥)²⁶⁹이나 진복약(進服藥)을 달여서 들이거나 조제하여 들이거나 약물을 가감(加減)하거나 복용을 중단할 때에는 승지가 입시하여 탑교(榻敎)²⁷⁰를 써 내는데 미처 입시하지 못하였으면 승정원에서 문서를 들이되 날을 넘기지 못한다. 전과 궁의 약은 의녀로 하여금 해당 전과 궁에 미품(微稟)²⁷¹하게 한다. ○동기할 때 전과 궁에 탕제를 달여 들일 일이 겹치게 되면 제조 중 1원이 품지하고 잠깐 머물러 약 달이는 것을 살핀 뒤에 나아가 참여한다. ○세 제조가 모두 사정이 있으면, 승정원에서 품지하고 약 달이는 것을 살핀다.

臘藥 提調一員, 御醫一員, 監劑. 劑藥官執秤, 惠民署醫女作丸,

남약 제조 1원과 어의 1원이 약의 조제를 살핀다. 제약관(내국제약관)이 약재 무게 다는 것을 맡고, 혜민서의 의녀가 환을 만든다.²⁷²

啓下藥 蔘²⁷³黃不入藥, 則掌務官監劑. 有蔘黃, 而監劑醫官, 不爲書下, 則微稟舉行. ○劑藥官執秤. 丸劑作丸, 同臘藥,

계하약(임금의 재가를 받은 약) 인삼·우황이 들어가지 않은 약은 장무관이 약 조제를 살핀다. 인삼·우황이 들어가는데 조제를 살필 의관을 써 내리지 않았다면 넌지시 아뢰어 거행한다. ○제약관이 약재 무게 다는 것을 맡는다. 환제에서 환을 만드는 것은 남약과 동일하다.

있는 총명하고 민첩한 사람을 임명하여 보낸다.

267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장무관이 ‘合劑作貼’ 하는데, 장무관 한 사람과 입번(入番) 서원 한 사람이 배진(陪進)한다 하였다.

268 본문 〈입시入侍〉에 나온다.

269 진어(進御) : 임금이 약물 등을 복용할 때 ‘진어(進御)’라고 하는 궁중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중전이나 세자, 세자빈 등에게도 이 말을 쓰고 진어 대신에 ‘진복(進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270 탑교(榻敎) : 임금이 의정(議政) 대신을 불러 친히 왕명을 전하는 것을 뜻한다.

271 미품(微稟) :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넌지시 아름을 뜻한다.

272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남약소입(臘藥所入)에 들어가는 당약(唐藥)의 종류와 양이 자세하게 나온다.

273 蔘 : 본문에는 ‘蔘’으로 되어있지만 ‘蓼’으로 수정한다.

茶飲, 水刺饌品, 各種藥物 以上醫官監劑.

다음(차음료), 수라간의 반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재 식재료. 이상은 의관이 조제하는 것을 살핀다.

17. 옥추단제(玉樞丹祭)²⁷⁴

神農氏位版 一奉昌德宮藥房, 一奉慶熙宮藥房,

신농씨²⁷⁵의 위패 하나는 창덕궁의 내의원에 봉안하고, 하나는 경희궁의 내의원에 봉안한다.

行祭 五月五日,

행제(제사 거행) 5월 5일(단오)이다.

香祝 香室,

향축(제사에서 쓰는 향과 축문) 향실²⁷⁶,

祭物 奉常寺 · 典牲暑,

제물 봉상서²⁷⁷와 전생서²⁷⁸,

祭官 御醫爲獻官, 內醫爲諸執事.

제관 어의가 현관이 되고, 내의가 집사들이 된다.

274 본문 <연례진상>을 보면 5월 5일에 연례적으로 옥추단(玉樞丹)을 진상했다. 옥추단제는 신농제(神農祭)의 다른 이름인데 올리는 날이 같기 때문에 불었다. 신농제는 음력 5월 5일에 의약의 신인 신농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9) 5월 4일 기사에 따르면 제문은 예문관에서 지어 올렸다.

275 신농씨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인물로 농업, 의약의 신이다.

276 향실 : 교서관에 팔려 궁중 제사 때 쓰이는 축문 · 향 · 양 등을 맡아보던 곳이다.

277 봉상서 : 종묘, 제향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278 전생서 : 궁중의 제사에서 쓰는 양, 돼지 따위를 기르던 관청이다.

18. 입번(入番)

附 別入直

부기(附記) : 별입직(別入直)

本院 掌務官一員,

본원(내의원) 장무관 1원이다.

內藥房 上番御醫一員, 下番內醫一員, 鍼醫一員, 議藥同參一員,

내약방²⁷⁹. 상번어의 1원, 하번내의 1원,²⁸⁰ 내침의 1원, 의약동참 1원이다.

員役 書員四人, 大廳直一名, 水工三名, 軍士六名, 童便童二名,

원역 서원은 4인, 대청지기 1명, 수공²⁸¹ 3명, 군사 6명, 동변동²⁸² 2명이다.

別入直 凡諸設廳時, 三廳元入直外, 有別入直,

별입직 무릇 모든 청을 배설할 때에 삼청(본청, 침의청, 의약동참청)의 원래 입직 외에 별입직이 있다.

別省記 直宿時, 動駕時, 提調·醫官·員役, 或承候官別入直, 並隨時省記.

별생기 직숙할 때와 동가할 때 제조, 의관, 원역 혹은 승후관²⁸³이 별입직하는데 모두 때에

279 내약방 : 내약방(內藥房)은 조선 전기 전의감 내에 있던 별도의 조직으로, 세종 조에 내의원과 전의감이 분화된 이후 내국(內局)의 모태가 되므로, 내의원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와는 구분이 필요하다. 『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9월 7일 기사를 보면 내의원과 내약방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런 사례는 『승정원일기』 중에 종종 발견된다. 궁궐 내에 내의원 건물과는 별도로 내약방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280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1660) 11월 8일 기사에도 이 내용이 '舊例'로 나온다.

281 수공 : 수공(水工)은 여러 관아에 속한 미천한 사람으로 마당을 쓸고 물을 짓는 일을 하였다.

282 동변동 : 내의원에 속한 사내아이 종으로, 동변군(童便軍)이라고도 한다. 동변은 12세 미만의 아이 오줌이다.

283 승후관 : 임금이나 대비의 기거나 안부를 물던 관직이다.

따라 생기²⁸⁴를 올린다.

19. 거동진참(舉動進參)

三提調 班次在內閣之後·玉堂之前。○都提調·提調俱未進參，則副提調來參本院班，

세 제조 반차(班次, 행렬의 차례)는 내각(정승과 육조)의 뒤, 옥당(홍문관)의 앞이다. ○도제조와 제조가 모두 나아와 참여하지 않으면 부제조가 와서 본원의 반차에 참여한다.²⁸⁵

侍衛官 世子宮·嬪宮，稱侍陪官。○御醫·內醫·鍼醫·議藥同參·掌務官各一員，班於政院之前。

○內殿動駕時，有侍衛·侍陪官，及醫女二名。○行幸時，及進宴時，侍衛官，受點。

시위관 세자궁과 빈궁이 거동할 때는 시배관이라고 일컫는다。○어의·내의·내침의·의약동 참·장무관 각 1원으로, 반차는 승정원의 앞이다。○내전(왕비)이 동가할 때는 시위관, 시배관 및 의녀 2명을 둔다. 행행(行幸)²⁸⁶ 때 및 진연을 베풀 때의 시위관은 낙점을 받는다²⁸⁷。

20. 좌기(坐起)²⁸⁸

附 考講

284 생기 : 관청에 입직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285 본문의 <관제>를 보면 도제조는 정1품의 대신이고 제조는 정2품관이다. 이들이 오면 그 순서대로 내의원의 차례가 결정된다.

286 행행(行幸) : 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동함을 뜻한다.

287 낙점을 받는다 : 천망(薦望)을 올려 임금이 그 중에서 고른다는 뜻이다.

288 좌기 : 좌기(坐起)란 으뜸 관원이 출근하여 일을 잡는다는 뜻이다. 본 조에서는 제조가 좌기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부기(附記) : 고강(考講)

啓辭問安, 褒貶 兼考講, 藥材捧上, 臘藥封裹,
계사문안, 포폄 고강을 겸한다.²⁸⁹, 약재 봉상²⁹⁰, 납약 봉과(封裹, 싸서 봉함),
醫女講 每月二六日, 醫官考試, 月終, 提調坐起.
의녀강 매달 2·6일에는 의관이 고시하고, 월말에는 제조가 좌기한다.²⁹¹

21. 봉사(奉使)²⁹²

赴燕 大君·王子·勳戚·耆壽大臣行, 則御醫依例隨往. 大臣·儀賓行, 則稟旨隨往. 宗班·正卿行, 則或因特教隨往. ○隨往御醫, 或指名下教, 或命自主家率去, 或首醫稟旨矣. 正宗朝癸卯, 因下教, 三廳醫官, 長望受點, 定式. ○大君·王子行, 則二員隨往. ○渡江, 入柵, 自燕離發, 還渡江時, 各書啓一度. ○人蔘十一兩五分, 貼藥材料, 丸藥各種, 別單啓下後, 賚去, 而儀賓同大臣例, 只人蔘減半. 正卿視儀賓例, 減半, 宗班, 稟旨. 盤纏八包·乾糧賜米等物, 御醫以堂上例施行, 書員依堂下例題給,
부연(중국으로 가는 사신) 대군(임금의 정실아들), 왕자(임금의 측실아들), 훈척(훈공이 있는 임금의 친척), 기구대신(耆壽大臣, 기로소에 든 대신)의 사행에는 어의가 규례에 따라 수행한다. 대신(정승)과 의빈(부마)의 사행에는 품지받은 이가 수행한다. 종반(임금의 종친)과 정경(정2품 이상의 벼슬)의 사행에는 혹 특교를 통해 수행하기도 한다. ○수행하는 어의는 혹 지명하여 하교하

289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내의가 세 차례 상(上)으로 포폄되면 가자(加資)한다.

290 봉상 : '밧자'로 읊훈 되는 이두는 회계 표현의 경우이다. 임금과 관련될 때에는 원래의 한자음으로 읽는다.

291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매월 26일 입직의관이 《동인경》과 《찬도맥》으로 고강한다. 한 달 통계를 내서 6분(分) 이상은 급료를 주고, 유품한 사람은 면포 두 필을, 벼금한 사람은 한 필을 호조에서 제급(題給)받는다.

292 내의(內醫)가 임시적으로 차임(差任)되는 직무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거나, 혹 주가(主家)²⁹³에서 데리고 가도록 명하거나, 혹 수의(首醫)가 품지한다. 정조 조 계묘년(1783)에 하교를 통해 삼청(본청, 침의청, 의약동참청) 의관에서 장망(長望, 유품으로 추천된 이)을 낙점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대군, 왕자의 사행에는 의관 2인이 함께 간다. ○강(압록강)을 건널 때, 책문²⁹⁴에 들어갈 때, 연경에서 출발할 때, 돌아와 강(압록강)을 건널 때에 각기 서계를 한 번씩 올린다. ○인삼 11냥 5푼, 첨약 재료와 환약의 여러 가지 종류는 별단으로 계하받은 뒤에 가지고 가는데, 의빈은 대신의 예와 동일하고 단지 인삼만 절반으로 줄인다. 정경의 경우는 의빈의 예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다. 종반의 경우는 품지를 받아 정한다. 반전(노자)인 팔포(八包)²⁹⁵, 마른 식량과 하사반은 쌀 등의 물품은 어의는 당상(堂上)의 예로 시행하고, 서원은 당하의 예로 제급한다.

看病 御醫奉下教舉行. ○有持藥物下教, 則例爲不離, 有不離下教, 則例爲持藥物, 有持相當藥物下教, 則一次看病, 有往來下教, 則逐日往來, 有隨往下教, 則隨往. ○不離則仍留逐日書啓, 往來則逐日往來書啓, 隨往則隨時書啓, 其餘只一次書啓. ○藥物, 人蔘二兩草材各種資去, 相當藥物, 只人蔘二兩,
간병 어의가 하교를 받들어 거행한다. ○지약물(持藥物)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규례상 불리(不離)²⁹⁶하며, 불리(不離)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규례상 지약물(持藥物)하며, 지상당약물(持相當藥物)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한 차례 간병하고, 왕래(往來)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날마다 왕래하며, 수왕(隨往)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수왕한다. ○불리(不離)하는 경우 그대로 머물면서 날마다 서계하고, 왕래하는 경우는 날마다 왕래하며 서계하고, 수왕(隨往)하는 경우 때에 따라 서계하고, 나머지 경우는 한 차례 서계한다. ○약물(藥物)이라 하면 인삼 2냥과 초재(草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약물(相當藥物)이라 하면 단지 인삼 2냥이다.

293 주가(主家) : 주가(主家)는 사행(使行)의 유품 원(員)을 맡하는 것으로 보인다.

294 책문 : 조선의 국경에 접한 청나라의 변방 지역이다. 무역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이기도 하다.

295 팔포(八包) : 《만기요람》〈재용편 · 연행팔포〉에 상세히 나온다. 조선 초에는 사행 인원이 은을 가지고 가서 무역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다 금과 은을 가져가는 것을 금하는 대신 한 사람당 인삼 10근을 가지고 가게 하였고, 인조 6년(1628)에 이르러서는 80근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는데 이를 연행팔포(燕行八包)라 하였다. 중간에 은화를 가져가는 것이 다시 허용되었다.

296 불리(不離) : 간병(看病) 대상 옆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간병함을 맡한다.

熟地黃監採 御醫下往黃州製來,

숙지황 감채²⁹⁷ 어의가 황주²⁹⁸로 내려가 숙지황을 만들어서 온다.

蛇油丸監劑 御醫下往製來. 江華·南陽·湖西, 間年輪回, 而若值南陽當次年, 則稟旨舉行.

사유환 감제 어의가 내려가 사유환을 만들어서 온다. 강화, 남양, 충청도²⁹⁹에서 해를 걸러 돌아가는데, 남양이 차례인 해에 겹치면 품지하여 거행한다.^{300 301}.

監艾 鍼醫下往江華採來,

감애 침의가 강화에 내려가 약쑥을 채취하여 온다.

溫井汲水 隋時內醫下往汲來. ○以上奉使依例, 以先文草料舉行. ○書員一人, 依例隨往.

297 숙지황 감채 : 《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產廳小日記》나 《갑술호산청소일기甲戌護產廳小日記》를 보면 감채관(監採官)이나 감제관(監劑官)의 직임이 보이는데 이는 내의 중에서 임시직으로 지방에 파견되어 각기 감채(監採)와 감제(監劑)의 사무를 하였다.

298 황주 : 황해도에 있던 목사가 다스리는 고을이다. 황해병마절도영이 있었다.

299 충청도 : 《승정원일기》 순조 29년(1829) 8월 9일 기사에서는 보령(保靈)과 결성(結城)이, 순조 32년 8월 25일 기사에서는 흥주(洪州)가 언급된다. 호서(湖西)의 여러 고을이 돌아가면서 호서의 순서일 때 담당했다.

300 셋이므로 세 해 주기로 돌아가는데, 남양 차례 때에는 품지(稟旨)에 따라 만들기도 안 만들기도 한다는 뜻이다.

301 사유환을 만드는 감제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시기 별로 변동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 26년(1700) 6월 9일 기사를 보면 강화(江華)와 수원(水原) 1년, 교동 1년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조제하게 하여, 내의를 파견하였다. 숙종 43년(1717)에 수원과 교동으로 정했다가, 다시 남양과 태안으로 정했다. 영조 원년(1725) 5월 2일 기사를 보면 남양과 태안에서 태안을 빼고, 새로 고을을 정하였다. 영조 25년(1749) 3월 14일 기사에서는 수원, 강화, 호서로 돌아간다 하였다. 정조 15년(1791) 4월 29일에 수원을 빼고 새로 남양으로 정했다. 순조 원년(1801) 7월 10일 기사 내용에 그 해가 남양이 차례인 해였는데 ‘南陽是新定邑, 而自分定以後, 雖值當次之年, 連有勿擣之教’이라는 내용이 있어, 정조 때의 하교 내용을 알 수 있다. 순조 2년(1802) 호서, 순조 3년(1803), 순조 4년(1804) 다시 남양 순으로 돌아가면서 이후 순조 13년(1813)까지 남양 차례 해가 되면 사유환의 제조가 정지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순조 13년(1813) 8월 10일 기사. 순조 14년 7월 25일 기사에서는 남양이 빠지고 강화와 호서만이 나온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이 문헌이 1814년 이전에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온천에서 물을 길을 때에 따라 내의가 내려가 온천물을 길어 온다. ○이상의 봉사(일을 받듦)는 규례에 따라 선문(先文)³⁰²과 초료(草料)³⁰³를 가지고 거행한다. ○서원 1인이 규례에 따라 수행한다.

22. 급마(給馬)³⁰⁴

啓請馬 動駕時，侍衛·侍陪官，內殿動駕時，侍衛醫女所騎馬，及紫金丹·保豐丹·瓊玉膏監劑官騎
卜馬，書員所騎馬，並啓請于差備，

계청마(임금에게 아뢰어서 청한 말) 동가할 때 시위관과 시배관, 내전(왕비)이 동가할 때 시위하는 의녀가 탈 말 및 자금단·보영단(소독보영단)³⁰⁵·경옥고의 감제관이 타거나 짐 싣는 말, 서원이 탈 말은 모두 차비문에 준비하도록 계청한다.

補把馬 經宿行幸時，掌務官所騎馬，草記題給。江心水陪進官，及書員所騎馬，分付兵曹，
보파마(보충하여 입파하는 말) 경숙행행(잠을 자야 하는 거리의 행행) 때 장무관이 탈 말은 초기로 제급한다. 강심수배진관³⁰⁶ 및 서원이 탈 말은 병조에 분부한다.

載持馬 行幸時，銀器藥材雜物等載持馬三匹，兵曹待令。江心水載持馬，隨其馱數，司僕侍待令。

재지마(짐 싣는 말) 행행(行幸) 때 은기(銀器), 약재, 잡물 등을 싣는 말 세 필은 병조에서 대령한다. 강심수(江心水)를 싣는 말은 그 싣는 수량에 맞춰 사복시³⁰⁷에서 대령한다.

302 선문(先文) : 외국에 가는 사신이나 벼슬아치가 지방에 출장할 때에 그 곳에 도착할 날짜와 일행의 수효 등을 미리 통지하는 공문이다. 뒤에 노문(路文)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303 초료(草料) : 초료장(草料狀). 관원들이 공무로 지방에 갈 때 역참에서 숙식 따위를 공급하는 것을 규정한 명령서이다.

304 내의가 말을 지급하는 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305 자금단·보영단(소독보영단) : 2가지 처방은 본문 <연례진상>에 나온다.

306 강심수배진관 : 강심수는 한강 한가운데에서 길어다가 임금이 쓰도록 한 물로, 이 물을 운반하는 관원을 말한다.

23. 공궤(供饋)³⁰⁸

直宿待令時 醫官以下員役, 草記後, 自戶曹依例舉行,

입직하여 잠을 자면서 대령할 때 의관 이하 원역에 대한 공궤는 초기한 뒤에, 호조에서 규례에 따라 거행한다.

紫金丹 · 保嬰丹製造時 糧饌, 自內賜下,

자금단과 보영단을 제조할 때 양식과 반찬은 대내에서 하사한다.

瓊玉膏製造時 提調以下醫官員役, 自惠廳舉行,

경옥고를 제조할 때 제조 이하 의관과 원역에 대한 공궤는 선혜청³⁰⁹에서 거행한다.

臘藥製造時 書員二人, 十五日兩時料米, 自軍資監上下³¹⁰.

납약을 제조할 때 서원 2인이 보름 동안 두 끼니 먹는 쌀은 군자감³¹¹에서 지급한다.

24. 입계문서(入啓文書)³¹²

啓目, 粘啓, 啓辭, 草記, 啓狀 行幸時, 書啓, 望單子, 別單, 小單, 月計, 未啓下單子.

계목³¹³, 접계³¹⁴, 계사, 초기, 계장 행행 때, 서계, 망단자(후보 명부), 별단, 소단,

307 사복시 : 궁궐에서 쓰는 말의 사육과, 수레의 관리를 맡은 관청이다.

308 내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음식의 공급처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309 선혜청 :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을 관리하였다.

310 上下 : '上下'는 이두식 표현으로 '차하'로 읽고 '지급한다, 준다'의 뜻이다.

311 군자감 : 군수품의 비축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312 입계(入啓) 때 쓰는 서식의 종류를 열거한 조문이다. 다른 관청지(官廳志)들이 <해용문장>을 따로 두어 자세히 설명한 반면 여기에서는 그 이름만을 열거한다.

313 계목 : 여러 관청의 작은 사무를 임금에게 아뢰울 때에 쓰는 서식이다.

월계, 재가를 받지 않은 단자.

25. 문부(文簿)³¹⁵

《日記》下番醫官逐日修整,

《일기(내의원일기)》³¹⁶ 하번의관이 날마다 고치고 정리한다.

《小日記》設廳時, 別爲修整,

《소일기》³¹⁷ 청을 설치할 때 별도로 정리한다.

《院志》,

《원지(내의원지)》³¹⁸,

《進御藥膳錄》,

314 점계 : 임금에게 아뢸 때에 관계되는 서류를 덧붙여서 아름을 뜻한다.

315 내의원에서 생성되는 관청의 문서와 장부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내의원의 서책은 본문의 〈집물什物〉에 나오나 그 내용은 소략하다.

316 《일기(내의원일기)》 : 약방(藥房)의 관청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현종(憲宗)과 철종(哲宗) 때의 일기 일부가 현존한다. 내의원이 태의원(太醫院)으로 바뀐 이후의 기록인 태의원 일기는 1908년부터 한일한방 때까지 온전하게 남아있다.

317 《소일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호산청일기護產廳日記》만 4종이 현존한다. 《계유호산청소일기癸酉護產廳小日記》(1693년), 《갑술호산청소일기甲戌護產廳小日記》(1694년), 《무인호산청소일기戊寅護產廳小日記》(1698년), 《정유호산청소일기丁酉護產廳小日記》(1897년)

318 《원지(내의원지)》 : 《내의원지內醫院志》 기록이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8 월 3일 기사에 보인다. 이를 통해 정조 7년 이전에 관청지가 저술되었음은 확인되지만 그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본 문헌은 내용상 관청지라 불릴만하지만 19세기 초에 쓰인 것이므로 《일성록》에 기재된 《내의원지》는 분명 다른 문헌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원지(院志)’ 기록 외에 본 문헌을 지칭할 만한 다른 기록이 없는 점은 이 책이 관청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내국에서 생성된 일기 등의 다른 문헌들은 모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진어약등록》,

《草記臘錄》傳教·擧條並錄,

《초기등록》전교와 거조(임금께 아뢰는 조항)를 모두 수록한다.

《公事臘錄》,

《공사등록》,

《藥材臘錄》,

《약재등록》,

《先生案》,

《선생안》³¹⁹,

《官案》,

《관안》³²⁰,

《度支定例》.

《탁지정례》³²¹.

319 《선생안》: 《선생안》이란 역대 내의의 명부이다. 현재 두 종의 《선생안》이 전하는데 《태의원 선생안》과 《내의선생안》이다. 《태의원선생안》에는 《의약동참선생안》과 《내침의선생안》이 합본되어 있다.

320 《관안》: 《관안》은 현재 재직 중인 내의를 기록한 장부이다. 현재 전하는 다른 관청의 《관안》을 보면 여러 벼슬 밑에 별도의 색지(色紙)로 해당 관직자의 이름을 써서 붙였다가, 체직되면 다른 색지에다 이름을 써서 붙일 수 있게 해두었다.

321 《탁지정례》: 영조 25년(1749)에 호조판서로 있던 박문수(朴文秀) 등에 의하여 규장각에서 12책으로 간행되었다. 내의원(내의원정례)은 제8책에 수록되어 있다.

26. 솔속(率屬)³²²

書員二十三人 以院屬掖屬, 啓目差下, 分掌各色,

서원 23인³²³ 원(내의원)의 이속이나 액정서³²⁴의 이속으로 계목을 올려 임명하고³²⁵ 각 색³²⁶ 을 나누어 맡는다.

醫女二十二名 以醫司將來醫女, 或鍼線婢中, 啓目充差. ○差備待令十名, 講醫女十二名, 鍼脈分半
敎訓,

의녀 22명 의사(醫司)의 장래의녀(將來醫女) 혹은 침선비(鍼線婢)³²⁷ 중에서 계목으로 충차(충
원하여 임명)한다. ○차비대령이 10명이고 강의녀가 12명인데,³²⁸ 침(침의녀)과 맥(맥의녀)으로

322 내의원에 속한 제조와 의관 이외의 원역(員役)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323 서원(書員)의 시기에 따른 명칭과 인원은 다소 다르다. 법전의 규정을 보면 먼저 《경국대전》〈이전吏典·경아전京衙前〉을 보면 내의원 서사(書史)는 네 사람이다. 영조(英祖) 조의 《속대전》〈이전·경아전〉에서는 서사(書史)에서 강등되어 서원으로 바뀌며 20인이다. 정조 조의 《대전통편》〈이전·경아전〉의 규정은 앞과 동일하고, 고종 조의 《대전회통》〈이전·경아전〉에서는 서원 23인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1777) 8월 19일 기사에 내의원의 서원은 23인으로 되어 있어 법전의 규정과는 인원이 다르다. 《승정원일기》 영조 32년(1756) 9월 16일 기사를 보면 실제 서원 인원수의 변천에 대한 내역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에는 28인이었는데 임진란 이후에 네 사람을 줄여 24인이 되었고, 정묘호란 이후에 또 네 사람을 줄여 20인이 되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 인조 임신년(1632)에 두 사람을 늘리고, 숙종 계해년(1683)에 다시 한 사람을 늘려서 23인으로 당시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즉 법전의 규정과는 다르게 서원을 23인을 두었고 이런 관례는 정조, 순조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결국은 고종에 이르러 법전의 내용까지 바꾸게 됨을 알 수 있다.

324 액정서 : 임금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대궐 뜰 설비 등을 맡은 내시부 부설 관청이다.

325 《은대조례》〈부록·통례通例〉를 보면 소단(小單)으로 계하(啓下)한다고 하였다.

326 각 색 : 특정한 일을 맡은 사람 또는 부서를 가리키는 말로, 장인(匠人), 군사, 하리(下吏), 관원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327 침선비(鍼線婢) : 상의원(尙衣院)에 속하여 바느질을 하던 관비(官婢). 침비(鍼婢)라고도 한다.

328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1월 8일 기사를 보면 강의녀(講醫女)가 열 두 사람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어의를 제외하고 사무를 보는 내의원의 의관은 정(正)에서 참봉(參奉)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두 사람이다. 강의녀를 그들에게 각기 한 사람씩 보내어서 의서와 침술을 강습시켜 서[講習醫書及鍼術 재주가 성취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차비대령에 결원이 생기면 이를 승차시

절반씩 나누어 가르친다.

大廳直二名 本院雇立,

대청지기 2명 본원에서 고립³²⁹한다.

研末水工七名 五名, 本院雇立,

연말수공 7명 5명은 본원에서 고립한다.

鍼醫廳 · 議藥廳水工四名.

침의청과 의약동참청 수공 4명³³⁰,

女水工二名. 一名, 以薏苡搗末使令, 换作,

여수공 2명 1명은 의이도말사령(율무를 빻아서 가루로 내는 사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

軍士十九名 水庫軍士二名, 使喚軍士十名, 三廳直所軍士四名, 掌務所軍士三名,

군사 19명 수고 군사 2명, 사환 군사 10명, 세 청의 직소(의약청, 침의청, 의약동참청에 입직하는 처소) 군사 4명, 장무소 군사 3명이다.

水庫直一名 以酒房庫直, 换作,

수고지기 1명 주방고지기로서 대신할 수 있다.

童便童三名,

동변동 3명,

種藥首奴二名,

겼다.

329 고립 :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부역하게 함을 뜻한다.

330 《승정원일기》 현종 9년(1668) 9월 15일 기사를 보면 의약동참청과 침의청의 수공(水工)은 각각 한 사람씩이었다. 《승정원일기》 현종 14년(1673) 8월 25일 기사를 보면 의약동참청에 수종사환(隨從使喚)이 없으므로 침의청수공(鍼醫廳水工)의 예처럼 두 사람으로 정급(定給)해 주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 때 의약청수공이 두 사람으로 늘었으며 각각 두 사람씩 총 네 사람이 되었다.

종약수노 2명,

軍士二名,

군사(종약군사) 2명,

募軍八名,

모군(종약모군)³³¹ 8명,³³²

各色房直五名 本院雇立.

각 색 방지기 5명 본원에서 고립한다.

27. 요포(料布)³³³

料祿 醫官見官制. ○月令劑藥官四員料, 每員各米六斗. ○書員料, 每人各米八斗. ○差備待令醫女料, 每名各米十一斗. 講醫女, 每名各大米八斗, 小米一斗. ○女水工料, 米十二斗. ○種藥首奴·軍士·募軍·薏苡搗末使令·研末水工料, 大米五石五斗, 小月則減三斗二升, 小米十六斗. 都下. ○水庫直料, 大米十斗, 小米二斗. ○童便童料, 每名各米三斗, 石魚四束, 甘醬一斗, 燒木十丹. ○種藥牛一隻粥, 小米三斗, 太六斗,

331 모군(종약모군) : 모군(募軍)은 팔려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종약전(種藥田)에 팔려서 일하는 사람이다.

332 내의원의 약전(藥田)은 원래 약전고개와 밤섬[栗島] 두 곳에 있다가 숙종 때에 너섬[汝島]이 추가되었다. 너섬은 밤섬과 인접한 곳이므로 크게 두 곳으로 봐도 된다. 두 곳이었으므로 원역(員役)도 짹수가 된다. 예를 들어 종약관(種藥官) 2원, 종약수노 2명인 식이다. 《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1월 23일 기사를 보면 밤섬 약전의 시종역군(時種役軍)은 원래 병조에서 4명을 정급(定級) 받았는데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하나를 줄이고, 인조 16년에 다시 하나를 줄이고 인조 17년 봄에 또 하나를 줄였다가 당시에 하나를 늘렸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시종역군은 종약 모군(募軍)을 말한다.

333 내의원의 솔속(率屬)이 받는 급여 등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요록(한 달 급여와 녹봉)³³⁴ 의관은 <관제>에 보인다. ○월령제약관 4원의 한 달 급여는 1월마다 각각 쌀 6말씩이다. ○서원의 한 달 급여는 1인마다 각각 쌀 8말씩이다. ○차비대령의녀의 한 달 급여는 1명마다 각각 쌀 11말씩이다. 강의녀는 1명마다 각각 쌀 8말과 좁쌀 1말이다. ○여수공의 한 달 급여는 쌀 12말이다. ○종약수노, 군사(종약군사), 모군(종약모군), 의이도말사령, 연말수공의 한 달 급여는 쌀은 5섬 5말인데 달이 작으면 3말 2되를 줄이며, 좁쌀은 16말이다. 한꺼번에 지출한다. ○수고지기의 한 달 급여는 쌀 10말과 좁쌀 2말이다. ○동변동의 한 달 급여는 1명마다 각각 쌀 3말, 조기 4두름³³⁵, 감장(甘醬, 단 간장) 1말, 소목(장작) 10단이다. ○종약우(種藥牛) 1짝³³⁶의 죽으로 좁쌀 3말과 콩 6말이다.

戶布 醫女取才, 鍼脈居首各二疋, 之次各一疋,

호포(호조에서 지급하는 면포) 의녀 취재에서 침(동인경)과 맥(찬도맥결)에서 수석을 차지한 이는 각각 2필, 차등인 사람은 각자 1필이다.³³⁷,

兵布 醫官每員二疋, 未經入侍則一疋. ○掌務官二員各二疋, 卽兵曹履馬代. ○書員每人各二疋. ○差備待令醫女, 每名各二兩. ○研末水工二名, 各四兩. ○鍼醫廳·議藥廳水工, 各六兩. ○女水工一名, 二兩,

병포(병조에서 지급하는 면포나 돈) 의관은 1월마다 2필인데, 아직 입시한 경험이 없으면 1필이다. ○장무관 2원은 각각 2필인데 병조의 고마가(雇馬價)³³⁸로 대신한다. ○서원은 1인마다 2필이다. ○차비대령의녀는 1명마다 각각 2냥이다. ○연말수공 2명은 각각 4냥이다. ○침의청과 의약동참청 수공은 각각 6냥이다. ○여수공 1명은 2냥이다.

雇立 三廳直所軍士·掌務所軍士, 每名各四兩. ○種藥首奴·軍士, 每名, 各二兩,

334 요록(한 달 급여와 녹봉) : 요(料)는 매달 지급하는 것이고 녹(祿)은 반년이나 한 해 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335 두름 : 물고기 한 두름은 20마리이다.

336 짹 : '짝(隻)'은 소를 셀 때의 단위로 한 마리를 말한다.

337 여기서 침(鍼)은 《동인경》으로 맥(脈)은 《찬도맥》으로 고강한다.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매월 26일 입직의관(入直醫官)이 고강하고, 한 달 통계를 내서 6분(分) 이상은 급료를 주고, 유품한 사람은 면포 두 필을, 벼금한 사람은 한 필을 호조에서 제급(題給)받는다 하였다.

338 고마가(雇馬價) : 고마는 민간에서 값을 주고 징발하여 쓰던 말로, 그 값을 가리킨다.

고립 세 청의 직소(直所) 군사와 장무소의 군사는 1명마다 각각 4냥이다. ○종약수노와 군사(종약군사)는 1명마다 각각 2냥이다.

軍丁錢 古則院中使喚, 以衛軍取用矣. ○正宗朝壬寅, 因下教, 每年錢一千二百兩, 自兵曹都下, 水庫軍士·使喚軍士朔下, 及舉動時負持軍, 臘藥·薏苡·駝酪·芙蓉香製造時不足軍雇價, 磨鍊上下.

군정전 과거에는 원(내의원)에 있는 사환이 위군(衛軍)을 함으로서 가져다 썼다. ○정조 조 임인년(1782)에 하교를 통해 해마다 돈 1,200냥을 병조에서 한꺼번에 내려 수고 군사·사환 군사의 삭하(朔下)³³⁹ 및 거동 때 짐꾼과 납약·율무가루·타락죽·부용향을 제조할 때 부족한 군고가(軍雇價, 군역을 지는 품삯)를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28. 집물(什物)

附 書冊

부기(附記) : 서책(書冊)

御筆懸板, 賚和詩帖, 扁額,

어필현판³⁴⁰, 갱화시첩³⁴¹, 편액³⁴².

提調印, 郎 廳印,

339 삭하(朔下) : 하급 벼슬아치나 원역(員役)들에게 다달이 주는 월급이다.

340 어필현판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1761) 6월 11일 기사에 영조(英祖)가 약방(藥房)의 세 제조가 입시한 가운데 ‘입심억석(入審億昔)’의 네 글자를 친필로 썼다는 내용이 있다.

341 갱화시첩 : 《승정원일기》 영조 48년(1772) 1월 6일 기사, 내국(內局)의 두 장무관을 입시시켜 서 어제 지은 어제시(御製詩)에 화답하는 시를 짓게 하자[賚進昨日御製], 장무관 박명규(朴明奎, 1741-?)와 변치한(邊致翰, 1743-1796)이 지어 올렸다. 둘에게 경직(京職)의 은전을 내리고 이어 내국갱재첩(內局賚載帖)을 작첩(作帖)하여 반사(頒賜)하도록 하교하였다.

342 편액 : 현재 ‘조화어약(調和御藥)’과 ‘보호성궁(保護聖躬)’ 등의 편액이 창덕궁에 남아있다.

제조인, 낭청인³⁴³,

待令藥櫃, 待令南飛介, 各本醫書, 銅人,

대령약궤, 대령남비개³⁴⁴, 여러 본(本)의 의서³⁴⁵, 동인(침구동인)³⁴⁶,

各樣器皿鋪陳 見《度支定例》.

여러 모양의 그릇붙이와 포진(자리) 《탁지정례》에³⁴⁷ 보인다.³⁴⁸

29. 약전(藥田)³⁴⁹

藥田峴 英宗朝已巳打量, 一結八十九負七束內, 家垈六十五負二束除, 時起一結二十四負五束,

약전고개³⁵⁰ 영조 조 기사년(1749) 측량한 1결³⁵¹ 89부 7속 가운데 가대(집과 그에 딸린 토지)

343 낭청인 : 여기서 낭청이란 당하관인 내의원정을 말한다.

344 대령남비개 : 《육전조례》〈예전·내의원〉을 보면 인삼 1냥, 우황 1냥, 응담 1부(部), 혈갈(血竭) 1돈, 여러 종의 환약이 들어있다.

345 본문 〈관사〉를 보면 부속 건물로 책고(冊庫)가 보인다. 이는 별도로 창고로 둘만큼 소장 서적 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346 동인(침구동인) : 국립고궁박물관에 현존한다.

347 본문 〈문부文簿〉에 보인다.

348 12책 중 제 6책에 내의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진배하는 물품의 종류와 양을 적고 작은 글씨로 진배를 담당하는 관청 또는 공계(貢契) 등을 기록한 내용이다.

349 내의원 약전(藥田)의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해 설명한 조문이다.

350 약전고개 : 중종 25년(1530)에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의 한성부(漢城府) 내용 중에 약전고개가 나온다. 약전고개의 약전이 언제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서울 중구 종림동 일원이다.

351 결 : 결부파속법에 따라 산출량에 의해 정해지는 면적 단위이다. 10파(把)=1속(束), 10속=1부(負), 100부=1결(結). 조선시대에는 양전(量田)을 시행해서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여섯 개의 등급을 나누었는데, 가장 척박한 6등의 전(田)은 1등에 비해 네 배 정도 넓었다.

65부 2속을 빼면 시기전(時起田)³⁵²은 1결 24부 5속이다.³⁵³,

栗島 己巳打量, 十結八束內, 乙酉打量, 舊浦落四結四十九負一束, 今浦落覆沙二結六十四負三束, 加耕浦落三負七束, 家垈一結八十負六束除, 時起一結六負八束,

밤섬³⁵⁴ 기사년(1749) 측량한 10결 8속 가운데 을유년(1765) 측량으로 과거의 포락³⁵⁵ 4결 49부 1속, 근래의 포락과 복사³⁵⁶ 2결 64부 3속, 가경(加耕)³⁵⁷ 포락 3부 7속과 가대 1결 80부 6속을 빼면 시기전은 1결 6부 8속이다.³⁵⁸,

汝于島 乙酉打量, 三結七十三負³⁵⁹二束³⁶⁰內, 覆沙一結六負除, 時起二結六十七負二束,

너섬³⁶¹ 을유년(1765) 측량한 3결 73부 2속 가운데 복사 1결 6부를 빼면, 시기전은 2결 67부 2속이다.³⁶²,

牛一隻, 船一隻.

소 한 짝, 배 한 척³⁶³.

352 시기전(時起田) : 논밭을 개간하여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이다.

353 $189.7 - 65.2 = 124.5$ 결

354 밤섬 : 《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1월 23일 기사를 통해 밤섬의 약전이 병자호란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마포구 당인동 사이의 한강에 있는 작은 섬이다.

355 포락 : 강물이나 냅물에 의해 논밭이 개먹어서 두둑이 무너져 떨어짐을 뜻한다.

356 복사 : 사태(沙汰)가 나서 모래가 뒤덮인 논밭을 뜻한다.

357 가경(加耕) : 가경전. 새로 개간하여 아직 토지대장에 오르지 않은 밭을 뜻한다.

358 $1000.8 - 449.1 - 264.3 - 180.6 = 106.8$ 결. 가경(加耕)은 아직 양안(量案)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포락(浦落)되어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359 負 : '卜'으로 되어있지만 통용인 '負'로 수정했다.

360 二束 : 원본에는 '2束'이 없으나 필사과정에서 오기된 것으로 보고 추가했다.

361 너섬 : 《승정원일기》 숙종 34년(1708) 2월 25일 기사. '汝於島'로 나온다. 밤섬의 약전(藥田)에 포락(浦落)이 많은 까닭으로 인접해있던 너섬의 사축서(司畜署) 밭을 약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윤허 받았다. 현재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이다. 여의도(汝矣島)가 곧 '汝于島'인데 '于'가 '於'와 더불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발음은 '어'로 보아야 한다.

362 $373.2 - 106 = 267.2$ 결

30. 잡례(雜例)

提調請牌時，下位不得請右位.

제조가 패초(牌招)³⁶⁴하기를 청할 때에는 아래 지위의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을 청할 수 없다.

○提調有實故時，都提調筵稟請遞，而若值逐日監煎，動駕臨時，則或以草記變通。

○제조가 실제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제조가 연석에서 아뢰어 체직을 청하는 데, 감전(약 달이는 것을 살핌)을 날마다 해야 할 때와 겹치거나 동가가 다가오는 때라면 혹 초기로 변통하기도 한다.

○江心水汲來時，掌務官微稟.

○강심수를 길어 올 때에는 장무관이 넘지시 아뢴다.

○褒貶前一日，掌務官微稟.

○포폄 하루 전에 장무관이 넘지시 아뢴다.

○崇範門下鑰，自本院管檢，而如有不時開閉，則待政院知委舉行。

○승범문³⁶⁵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내의원에서 관리하는데, 뜻하지 않게 열고 닫을 일이 있으면 승정원의 지위(知委)³⁶⁶를 기다렸다 거행한다.

○臘藥·香材·應下之物，待提調開座時，上下.

○납약, 향재(부용향과 의향), 응하 물품은 제조가 개좌(開座)할 때를 기다렸다가 지급한다.

363 척 : 배를 셀 때에는 척으로 뱉음된다.

364 패초(牌招) : 패초는 임금이 비상사태나 야간에 급히 만나야 할 신하가 있을 경우, 승정원에 명하여 패를 써서 입궐하게 하던 제도를 뜻한다.

365 승범문 :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의 서쪽 문으로 보통 문무백관이 출입한다.

366 지위(知委) : 통지(通知) 따위로 명령을 알려주는 것이다.

○人蔘·牛黃·鹿茸·麝香等物，如有不足，則筵稟後，行關於所在各處取用，而如白清·倭黃蓮，亦爲稟旨後取用。

○인삼·우황·녹용·사향 등의 물품이 부족하다면 연석에서 아뢴 뒤에 물품이 있는 각처에 관문을 보내어 가져다 쓰는데，백청(白清，희고 품질이 좋은 꿀)과 왜황련 같은 것도 품지한 뒤에 가져다 쓴다。

○年例應用物種，依《度支定例》，成手本，呈政院，捧甘取用於各該司。

○연례적으로 써야하는 물품의 종류는 《탁지정례》에 의거하여 수본을 만들어 승정원에 올리고，각 해당 관사에 감결(甘結)을 보내 가져다 쓴다。

○進上待令，不時需用之物，掌務官成小帖取用，而每月終，以都數成關，送于戶曹。

○진상할 때나 대령할 때나 수시로 사용하는 물품은 장무관이 소첩(小帖)을 만들어서 가져다 쓰는데，월말마다 도수(총 합계)로 관문을 만들어서 호조로 보낸다.

○藥材·文簿·什物，每春秋，掌務官計數傳掌。

○약재와 문부，집물은 봄과 가을 분기마다³⁶⁷ 장무관이 수를 해아려서 전장³⁶⁸ 한다.

○書員各色，六臘月遞易，而藥色則醫官圈點差出。

○각 색 서원은 6월과 12월에 체직하여 바꾸는데，³⁶⁹ 약색(약색 서원)은 의관이 권점³⁷⁰하여 차출한다.

367 봄과 가을 분기마다：장무관도 이 때 체직되기 때문이다.

368 전장：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는 것을 뜻한다.

369 도목정사 때 바꾼다는 말이다.

370 권점：이름 아래에 둑근 점을 찍어 후보자를 뽑는다.

의정부약방식례(議政府藥房式例)¹

1. 절목(節目)

藥房之年來舊逋，莫可收拾，而債用之弊，至於難保之境者，專由於捧上不實，用下無節，而員役輩私相取用，圖得預下之致，今依本府式例及度支定例，更爲節目，而刪去謬習，則從前無限之痼弊，庶可矯革，故諸般舉行事例，條列于下，一年內，應捧上應上下數爻，及閏朔留置條，與不虞備用下，並錄于左，自茲以往，一遵新定式施行，以爲永久不易之典爲齊。

약방의 오래 된 포흡(逋欠, 사적으로 유용하여 생기는 예산 부족)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빚을 내어 쓰는 폐단으로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오로지 수입이 채워지지 않고 지출이 절제가 없으며 원역(員役, 담당자)들이 독단으로 가져다 쓰고는 예하(預下, 선지급)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의정부식례》와 《탁지정례》²에 의거하여 추가로 절목(節目, 각 항목)을 마련하고 악습을 없앤다면 이전의 수많은 폐단들이 거의 바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실행할 사례(事例, 지침)들을 조목조

1 규장각 소장. 청구기호奎17199

2 의정부를 비롯한 각사(各司)에 대한 정례는 1752년(영조 28)에 간행되었다. 따라서 이 내용이 1752년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 아래에 나열한다. 1년 동안 고정적인 수입 및 지출의 규모, 윤달의 유치(留置, 비축)에 대한 조목, 불우비(不虞備,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모두 아래에 기록해 놓는다. 지금 이후로 새로 만든 정식(定式, 규정)을 한결같이 지켜서 시행해야 하며, 이것을 영구히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一. 戶曹江界所納人蔘, 兩藥房眼同監捧於公事堂上前, 分封於三相位兩堂上及司錄, 朔用爲乎矣, 元數肆斤, 則稱用際, 自有減縮補縮次, 每斤壹兩式肆兩外, 封授久任藥房是如可, 每於月初, 依例封納於各宅, 餘蔘拾肆兩貳収內, 拾貳兩貳収, 藥房以下處分, 春秋上下, 其餘貳兩, 每年封置傳掌, 以爲計用於閏朔及舍檢差出時爲旤, 相位與堂上位不齊時未納條, 則稟于行公相位前區處爲齊.

- 호조와 강계(江界)에서 바친 인삼은 양 약방(藥房)³이 업무를 맡은 당상관 앞에서 안동(眼同, 함께 입회하여 봄)하여 감독하며 받는다. 삼정승 · 양당상⁴ · 사록(司錄)⁵에게 나누어 드리는 일은 초하루에 시행하되, 원래의 수량은 4근이 규례이나 무게를 쟈 때 감축과 보축 명목이 있으므로 1근마다 1냥씩 4냥을 더하여 구임약방(久任藥房)⁶에게 주었다가 매달 초마다 전례대로 각 닥에 드린다. 남은 인삼 14냥 2돈 중 12냥 2돈은 약방 이하 담당자에게 나누어 주되 봄과 가을에 지급한다. 그 나머지 2냥은 매년 봉해 두었다가 전장(傳掌, 인계)하여 윤달이나 사검(舍檢, 사인舍人과 검상檢詳)이 차출(差出, 임명)되었을 때 사용하며 정승과 당상관의 자리가 빌 때 드리지 못한 인삼은 업무를 담당하는 정승께 품고(稟告, 상급자에게 여쭙는 것)하여 처리한다.

3 약방(藥房) : 의정부에서 소속된 무품직 의관. 『혜국지 식례』를 보면 의정부약방은 2원(員)이다.

4 양당상 : 의정부 당상은 종1품인 좌 · 우찬성과 정2품인 좌 · 우참찬을 말한다. 합하면 4원이어야 하나 조선후기 비변사 강화 시기에는 유명무실화되어 정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되었다. 영조 이후 시기에는 특히 좌찬성은 증직으로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3원도 동시에 임명된 경우는 없다. 즉 시기에 따라 우찬성, 좌 · 우참찬 중에 2원이었으므로 양당상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문헌이 작성된 시기에는 좌 · 우찬성 없이 좌 · 우참찬만 임명되었다.

5 사록(司錄) : 의정부에 소속된 정8품 관직으로 정원이 1원이다.

6 구임약방(久任藥房) : 약방 2원 중에 더 오래 근무한 약방을 말한다.

一. 相位與堂上位不齊時未納條唐材價，則添補於不虞備條，以爲用下之地爲乎矣，若有餘剩，則亦爲載錄於會計中，次次傳掌，草材則依人蔘例施行爲齊。

- 정승과 당상관의 자리가 비었을 때 드리지 못한 당재(唐材, 중국 약재)값은 불우비(不虞備) 항목에 보태어 지출 비용으로 삼되, 만약 그래도 남으면 회계장부에 적어 놓고 일이 있을 때 전장(傳掌)하여 사용한다. 초재(草材, 초부草部 약재)는 인삼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

一. 扶安納屯稅錢壹千陸百兩內，壹千參百伍拾陸兩，則逐年捧上用下是遣，餘錢貳百肆拾肆兩，則每年留置于均廳是如可，如或一年所出藥債，有所減縮於定數之內是去乃，又或有不時之需用，則稟于行公相位前區處，以爲用下之地爲旂，閏朔條用下，則留置餘錢中玖拾伍兩式，每閏年捧上爲乎矣，每年留置都數件記，均廳該吏，來監于本府是去等，本府藥房，告課舉行爲齊。

- 부안(扶安)에서 받는 둔전세(屯田稅)인 전문(錢文) 1,600냥 중에서 1,356냥은 해마다 수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전문 244냥은 매년 균역청(均役廳)에 유치(留置)해 두었다가 혹시 당해에 지출한 약채(藥債)가 정해진 수량보다 감축된 곳이 있거나 또는 불시에 쓸 곳이 있거든 업무를 맡은 정승께 품고(稟告)하고 처리하여 지출 비용으로 삼는다. 윤달의 지출은 유치해 둔 나머지 전문 중에서 95냥씩 윤년마다 받되, 매년 유치해 둔 총 금액과 목록을 균역청의 담당 서리가 본 의정부에 와서 살피거든 본 의정부의 약방(藥房)은 고과(告課, 상관에게 보고함)하여 시행한다.

一. 凡一年所出，守令邊將之堂參債，及差使員試暇查對古風債例，以壹千肆百伍拾兩酌定，以爲每年捧上之數爲去乎，如或一年之所出，若有不足於定數之內，則稟告變通，若有餘剩於定數之外，則以爲藥房以下聊賴之資爲齊。

- 대체로 1년의 소출(所出, 받는 돈)은 수령(守令) · 변장(邊將)의 당참채(堂參債)⁷, 차사원(差使員)의 시가(試暇)나 사대(查對) 때의 고풍채(古風債)⁸ 1,450냥

7 당참채(堂參債) : 수령이 새로 나가거나 또는 다른 고을로 옮길 때 단골 서리(書吏)에게 주는 전문을 말한다.

으로 정한다. 이것을 매년 수입 금액으로 여기되 만약 1년의 지출이 정해진 금액보다 부족하다면 품고(稟告)하여 임시로 융통하고, 만약 정해진 금액보다 남는다면 약방 이하 담당자의 생계비로 한다.

一. 相位與堂上宅進排藥貼紙, 依古例, 以楮注紙製納爲齊.

- 삼정승과 당상관 댁에 진배(進排, 진상하여 바침)하는 약의 첨지(貼紙)는 관례대로 저주지(楮注紙)로 만들어 드린다.

一. 舍檢新坐時唐材價, 依古例, 以不虞備進排爲齊.

- 사검(舍檢, 사인송사과 겸상검詳)이 새로 오면 당재(唐材)값을 관례대로 불우비(不虞備)에서 진배(進排)한다.

一. 各邑年例上納之如干清蜜及紫草茸價, 依古例, 付於醍醐湯煎藥所入物力中, 以爲添補用下之地爲齊.

- 각 읍에서 해마다 상납하는 약간의 청밀(清蜜)과 자초용(紫草茸)값은 관례대로 제호탕(醍醐湯) · 전약(煎藥)에 들어가는 재료나 인건비로 주어 지출 비용에 보탠다.

一. 藥用各樣器皿及物種之自度支進排者, 並隨所入, 逐朔捧上用下爲旂, 如或有闕失, 徵捧於典守員役, 倘無疊下貿用之弊爲齊.

- 약에 쓰는 여러 가지 그릇과 물건 중 탁지(度支, 호조)에서 진배(進排, 진상하여 바침)한 것은 모두 쓸 만큼 매달 받아서 지출하며 만약 서실(闕失, 분실)하면 담당 원역(員役)에게 징수하여 다시 사서 쓰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한다.

一. 凡外任之堂參債, 辭朝後過三日不納, 則自本府捉致隨陪及該吏, 決笞拘留督捧例也, 而近來紀綱解弛, 至於多日愆期者, 萬萬痛駭, 自今以後, 吏兵吏及邸吏處, 捧甘知委, 使之趨期來納後, 受到付以去是遣, 各司捧上段置, 並依此例舉行爲旂, 若有如前過限之弊, 則自藥房出牌子, 拘留決笞督納爲乎矣, 但出牌囚徒與移法司等節, 則稟告舉行爲齊.

8 고풍채(古風債) : 관리나 수령이 새로 부임하였을 때, 관례에 따라 하리(下吏)에게 주는 돈이다.

- 대체로 외임관(外任官)이 당참채(堂參債)⁹를 하직 후 3일이 지나도록 납입하지 않으면 수배(隨陪, 수행해 모시는 사람)와 담당 서리를 본 의정부로 잡아와서 곤장을 때리고 가두는 것이 독봉(督捧, 독촉하여 거두어들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강이 해이해져 오래도록 기일을 끄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지금 이후로 서리와 병리(兵吏) 및 저리(邸吏)¹⁰에게 감결(甘結)¹¹을 내려 통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때맞춰 와서 납부한 후에 도부(到付, 접수증)를 받아서 가게 하고 각 관아에서 받는 것도 모두 이 방식대로 시행한다. 만약 여전히 기한을 넘는 폐단이 있거든 약방에서 패자(牌子, 체포장)를 발행하여 가두고 곤장을 때려 납부를 독촉하되 다만 죄수에 대한 패자를 내거나 법사(法司, 형조 등 법을 집행하는 관아)에 넘겨야 하는 경우에는 품고(稟告)하여 시행한다.

一. 藥房之稱以雜下者, 本是定例外私用, 則所當一并除去是乎乃, 神祀所用, 員役所賴, 有難遽絕, 而他無變通之道, 故姑以藥債餘剩錢壹百兩, 酌定以給爲去乎, 自今以後, 每年告祀債伍拾捌兩貳銖, 并依舊上下是遣, 上下色¹²庫直處, 每朔縮錢貳兩伍銖式爲遣, 催促使令處, 每朔縮錢伍銖式爲遣, 奇別軍士處, 每朔雇價參銖式爲遣, 餘錢貳兩貳銖, 各色雇價, 隨所入上下爲乎矣, 原定壹百兩之外, 妙得一分加用爲齊.

- 약방에서 ‘잡하(雜下, 잡비)’라고 부르는 것은 본래 규정 외에 사사로이 쓰는 것이므로 마땅히 한번에 모두 없애야하나 신사(神祀,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에 쓰는 것과 원역(員役)의 생계비는 갑자기 끊기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달리 변통할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우선 약채(藥債)에서 남는 전문 100냥을 정하여 주되

9 당참채(堂參債) : 당참전 · 당참 예물 · 도착채[到付債]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수령 · 진장(鎭將) 등의 지방관이 부임 직후에 의정부 · 이조 · 병조에 상납하던 사례용 금품이다.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유력 기관의 부과금이 하나의 공식적인 수수료가 되어 정식으로 정수되었고 자문[尺文]이라는 영수증까지 발부되었다.

10 저리(邸吏) : 한양에 상주하며 지방 관청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행하던 서리이다.

11 감결(甘結)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공문이나 지시를 말한다.

12 上下色 : (차하벳)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나 사람.

지금 이후로는 매년 고사채(告祀債) 58냥 2전을 모두 관례대로 지급하고, 상하색(上下色,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과 고지기(庫直)에게는 매달 축전(縮錢, 일정 액수에서 부족한 돈)을 2냥 5전씩, 최촉사령(催促使令)에게는 매달 축전을 5전씩, 기별군사(奇別軍士)에게는 매달 품삯을 3전씩 지급한다. 남은 전문 2냥 2전은 각 색(色)의 품삯으로 쓴 만큼 지출하되 원래 정해진 100냥 이상으로는 1푼도 더 쓰지 말아야 한다.

一. 藥房員役, 若以官錢, 私相稱貸於府屬是去乃, 私自費用於府中是去等, 元錢卽刻還徵, 與受者告于相位前, 卽付法司, 勿收贖刑配爲旅, 員役中, 或以朔下預下之意呈訴, 而受題音白活, 而蒙分付是良置, 必以此節目, 消詳提稟, 使之毋得舉行之地爲齊.

- 약방의 원역(員役)이 만약 관청의 전문을 독단으로 같은 의정부 소속 원역에게 빌려주거나 독단으로 관청에서 사용하거든 원금을 즉각 환수하고 그 전문을 받은 자와 함께 정승에게 고발한 후 즉시 법사(法司, 형조 등 법을 집행하는 관아)로 보낸다. 이 때 형벌이나 유배를 속전(贖錢)으로 대신할 수 없다. 원역 중에 간혹 월급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소장(訴狀)을 올려서 데김(題音, 판결문)과 발괄(白活, 청원문)¹³을 받고 상전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이 항목을 가지고 소상히 여쭈어 함부로 행동할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

一. 凡藥房之捧上上下及錢財出納, 藥房與員役眼同舉行例也, 而近來員役輩之私自舉行者, 事極無嚴忿除良, 古例之不遵與謬習之轉盛, 專由於檢飭之齟齬是如乎, 自今以後, 錢財出納與諸般會計, 及各項捧上上下之公事帖文到付等節, 藥房一一照檢署押後舉行, 倘無如前混雜之弊爲齊.

- 대체로 약방에서 수입과 지출, 전문(錢文) · 재물의 출납시에는 약방(藥房)과 원역(員役)이 안동(眼同, 함께 입회하여 봄)하여 시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근래에 원역들이 독단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안이 아주 무엄할 뿐 아니라 관례가 지켜지지 않고 악습이 오히려 융성해지고 있으니 이는 오로지 검칙(檢飭)에

13 발괄은 판결할 때 돌려주어 판결의 증거자료가 되게 하였다.

저어(齟齬, 차질)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 이후로 전문·재물의 출납과 모든 회계장부와 각 항의 수입·지출 같은 업무에서 첨문(帖文)을 송부하는 등의 절차는 약방이 하나하나 조검(照檢, 점검)하고 서압(署押, 서명)한 후에 시행하여 예전처럼 혼잡한 폐단이 없게 해야 한다.

一. 凡藥房捧上之錢財, 無論多少, 藏置于櫃中是如可, 每於用下之時, 上下開鎖等節, 藥房一看檢, 恪勤典守爲齊.

- 대체로 약방으로 들어오는 전문과 재물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궤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번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지급하기 위해 자물쇠를 여는 과정 등에서 약방이 하나하나 살피고 검사하여 조심 또 조심히 맡아 지켜야 한다.

一. 如是定式之後, 更有不遵節目, 如前蹈習之弊是去等, 不飭之藥房汰去, 犯科之員役移法司重治, 斷不饒貸爲齊.

- 위와 같이 정식(定式)을 정한 후에도 다시 절목(節目)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악습을 되풀이하거든 제대로 검진(檢飭)하지 못한 약방은 파면하고 잘못한 원역(員役)은 법사(法司)로 이송하여 무겁게 다스린다.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약채(藥債)의 수입(藥債捧上)

一, 新除授兵水使府尹庶尹, 藥債參謁債, 錢文各拾參兩伍箋式.

- 새로 제수된 병마사(兵馬使) ·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목사(牧使) · 부사(府使) · 부윤(府尹) · 여러 윤(尹)에게서 받는 약채(藥債) · 참알채(參謁債). 각각 전문 13냥 5전씩.

一, 新除授郡守判官縣令縣監僉使, 藥債參謁債, 錢文各玖兩伍箋式.

- 새로 제수된 군수(郡守) · 판관(判官) · 현령(縣令) · 현감(縣監) · 첨절제사(僉節制使)에게서 받는 약채(藥債) · 참알채(參謁債). 각각 전문 9냥 5전씩.

一, 新除授萬戶, 藥債參謁債, 柒兩伍箋式.

- 새로 제수된 만호(萬戶)에게서 받는 약채(藥債) · 참알채(參謁債). 전문 7냥 5전씩.

一, 新除授察訪, 藥債參謁債, 伍兩伍箋式.

- 새로 제수된 칠방(察訪)에게서 받는 약채(藥債) · 참알채(參謁債). 전문 5냥 5전씩.

一, 差使員, 試暇古風債, 伍兩伍箋式.

- 차사원(差使員)에게서 받는 시가(試暇)¹⁴ 때의 고풍채(古風債). 전문 5냥 5전씩.

一, 方物差使員, 古風債參謁債, 柒兩伍箋式.

- 방물차사원(方物差使員)에게서 받는 고풍채(古風債) · 참알채(參謁債). 전문 7냥 5전씩.

14 시가(試暇) : 과거를 보기 위한 휴가이다.

약방의 매년 수입과 지출 총계(藥房年例捧上上下都數)

인삼의 수입과 지출(人蔘捧上上下)

① 인삼의 수입(人蔘捧上)¹⁵

戶曹納生脉散及臘藥所入人蔘貳斤.

호조에서 바치는 것. 생맥산(生脉散)과 납약(臘藥)에 쓰는 인삼 2근.

江界納藥用人蔘貳斤.

강계에서 바치는 것. 약재로 사용할 인삼 2근.

本府貿易人蔘壹兩.

본 의정부에서 사오는 것. 인삼 1냥.

已上一年捧上, 合人蔘肆斤壹兩.

이상 1년의 수입. 도합 인삼 4근 1냥.

② 각 댁에 드리는 인삼(各宅分封)

三相位宅朔蔘, 每朔捌箋式, 一朔合貳兩肆箋.

삼정승댁에 달마다 보내는 인삼. 매달 8돈씩. 1달에 총 2냥 4돈.

兩堂上宅朔蔘, 每朔陸箋式, 一朔合壹兩貳箋.

양당상댁에 달마다 보내는 인삼. 매달 6돈씩, 1달에 총 1냥 2돈.

司錄朔蔘, 每朔參箋.

사록에게 달마다 보내는 인삼. 매달 3돈씩.

1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一年分封, 合人蔘貳斤拾肆兩捌箋.

1년에 드리는 인삼. 도합 인삼 2근 14냥 8돈

③ 인삼의 매년 고정 지출(每年應上下)

藥房二員,

春等人蔘各壹兩式, 合貳兩,

冬等人蔘各玖箋式, 合壹兩捌箋.

약방 2원.

봄철에 인삼 각 1냥씩, 도합 2냥.

겨울철에 인삼 각 9돈씩, 도합 1냥 8돈.

藥色書吏二人,

春等人蔘各壹兩式, 合貳兩,

冬等人蔘各玖箋式, 合壹兩捌箋.

약색서리 2인.

봄철에 인삼 각 1냥씩, 도합 2냥.

겨울철에 인삼 각 9돈씩, 도합 1냥 8돈.

藥色庫直二名,

春等人蔘各壹兩式, 合貳兩,

冬等人蔘各捌箋式, 合壹兩陸箋.

약색고지기 2명.

봄철에 인삼 각 1냥씩, 도합 2냥.

겨울철에 인삼 각 8돈씩, 도합 1냥 6돈.

催促使令一名, 軍士四名, 壹兩.

최촉사령 1명과 군사 4명. 1냥.

分封稱縮次, 每斤壹兩式, 肆斤合人蔘肆兩.

각 택에 드리는 인삼의 감축(減縮, 수분 건조에 따른 자연 감소)분. 1근에 1냥씩, 4근에 도합 4냥.

五年再閏朔, 及舍檢新坐時分封次, 每年留置, 人蔘貳兩.

5년마다 있는 재윤달과 사검(舍檢, 사인송人과 검상檢詳)이 새로 왔을 때 드리는 목적으로 매년 유치(留置)할 것. 인삼 2냥.

一年應上下, 合人蔘壹斤貳兩貳錢.

1년의 고정 지출. 도합 인삼 1근 2냥 2돈.

以上一年上下, 都合人蔘肆斤壹兩.

이상 1년의 지출. 도합 인삼 4근 1냥.

전문(錢文)의 수입과 지출(錢文捧上上下)

各司納間朔古風債, 一年六次, 合錢文壹百捌拾捌兩陸錢貳分.

각 관아에서 2달마다 바치는 고풍채(古風債). 1년에 6번, 도합 전문 188냥 6전 2푼.

戶曹納藥價, 下地木肆拾參疋拾壹尺柒寸, 代純錢捌拾陸兩陸錢七分.

호조에서 바치는 약값. 하지목(下地木)¹⁶ 43필 11자 7촌. 전문으로 대신하면 86냥 6전 7푼.

玄木貳拾疋, 代純錢參拾肆兩.

현목(玄木)¹⁷ 20필. 전문으로 대신하면 34냥.

錢文貳拾陸兩陸錢柒分.

전문 26냥 6전 7푼.

16 하지목(下地木) : 품질이 가장 나쁜 무명이다.

17 현목(玄木) : 표백하지 않은 무명이다.

兵曹納藥價, 木玖拾疋, 代純錢壹百捌拾兩.

병조에서 바치는 약값. 목(木, 무명) 90필. 전문으로 대신하면 180냥.

宣惠廳納古風, 米肆拾柒石拾壹斗參升伍合內, 米錢參半, 錢文壹百肆拾參兩貳叡
陸分.

선혜청(宣惠廳)에서 바치는 고풍채. 쌀 47섬 11말 3되 5홉. 쌀과 전문 각각
절반씩 가능. 전문으로는 143냥 2전 6푼.

古風參半, 米貳拾參石拾參斗壹升七合伍夕, 每石參兩式發賣, 錢文柒
拾兩肆叡捌分.

고풍채로 쌀과 전문 각각 절반씩일 때. 쌀 23섬 13말 1되 7홉 5작.
매 섬마다 3냥씩 팔면 전문으로는 70냥 4전 8푼.

唐材價, 米拾伍石, 每石參兩式發賣, 錢文肆拾伍兩.

당재(唐材)값으로 쌀 15섬. 매 섬마다 3냥씩 팔면 전문으로는 45냥.

均役廳納給代, 錢文參百玖拾貳兩.

균역청(均役廳)에서 바치는 급대전(給代錢)¹⁸. 전문 392냥.

惠民署納蓼價, 錢文陸百玖拾壹兩貳叡, 每閏朔, 伍拾柒兩陸叡式, 加捧上
혜민서(惠民署)에서 바치는 인삼값. 전문 691냥 2전. 윤달이 낀 해에는 57냥 6전을
더하여 받는다

江原道納常定, 錢肆拾兩, 二月當

강원도에서 연례로 바치는 것. 전문 40냥. 2월에 받는다

遂安納藥價, 錢文壹百兩, 正月當

수안에서 바치는 약값. 전문 100냥. 정월에 받는다

扶安納屯稅, 錢文壹千三百伍拾陸兩, 每閏朔, 玖拾伍兩式加捧上

18 급대전(給代錢) : 값을 쳐서 돈으로 대신 주는 것을 말한다.

부안에서 바치는 둔전세(屯田稅). 전문 1,356냥. 윤달이 낀 해에는 95냥을 더하여 받는다

堂參債,

兩都目債,

差使員古風債,

試暇古風債,

查對古風債,

酌定, 合錢文壹千肆百伍拾兩.

당참채(堂參債)

양도목¹⁹채(兩都目債)

차사원(差使員)의 고풍채(古風債)

시가(試暇)의 고풍채

사대(查對)의 고풍채

정해진 대로. 도합 전문 1,450냥.

已上一年捧上, 合錢文肆千捌百參兩玖錢.

이상 1년의 수입. 도합 전문 4,803냥 9전.

각 댁에 보낼 당재(唐材)값 매달 119냥씩 (各宅唐材價 每朔壹百拾玖兩式)

三相位宅唐材價, 每朔貳拾伍兩式, 合錢文柒拾伍兩.

삼정승댁에 보낼 당재(唐材)값. 매달 25냥씩, 도합 전문 75냥.

兩堂上宅唐材價, 每朔拾柒兩伍錢式, 合錢文參拾伍兩.

양당상댁에 보낼 당재(唐材)값. 매달 17냥 5전씩, 도합 전문 35냥.

司錄唐材價, 錢文每朔玖兩.

19 양도목 : 1년에 2번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찰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록에게 보낼 당재(唐材)값. 매달 전문 9냥.

一年唐材價, 合錢文壹千肆百貳拾捌兩.

1년에 지출할 당재(唐材)값. 도함 전문 1,428냥.

원역(員役)의 월급 매달 164냥 2전씩 (員役朔下 每朔壹百陸拾肆兩貳銖式)

三相位宅, 陪吏房掌務錄事五員水工木價, 錢文拾壹兩.

삼정승댁. 배리(陪吏)²⁰ · 장무(掌務)²¹ · 녹사(錄事)²² 5원과 수공(水工, 물 긴는 하속)의 무명값. 전문 11냥.

陪權頭三名朔下, 錢文玖兩.

삼정승을 곁에서 모시는 권두(權頭)²³ 3명의 월급. 전문 9냥.

間陪使令三名朔下, 錢文柒兩.

간배사령(間陪使令) 3명의 월급. 전문 7냥.

驅從六名朔下, 錢文拾伍兩.

구종(驅從)²⁴ 6명의 월급. 전문 15냥.

帶率驅從十五名朔下, 錢文參兩.

대솔구종(帶率驅從) 15명의 월급. 전문 3냥.

20 배리(陪吏) : 삼정승을 곁에서 모시는 서리이다.

21 장무(掌務) : 장관 밑에서 일을 보는 수석 서리이다.

22 녹사(錄事) : 조선시대 중앙 관서의 상급 서리이다. 대체로 2품 이상의 실권이 있고 업무가 많은 관부나 대신들에게 배정되어 문서의 취급과 기록, 연락 업무, 공문서의 전달, 기타 잡무를 담당하였다.

23 권두(權頭) : 종친부, 의정부, 의빈부, 충훈부, 돈녕부, 중추부 등에 소속된 하례(下隸)들의 우두머리로 ‘권도(權導)’라고도 한다.

24 구종(驅從) : 고관(高官)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이다.

兩堂上宅, 陪權頭二名朔下, 錢文拾兩.

양당상댁. 당상관을 곁에서 모시는 권두(權頭) 2명의 월급. 전문 10냥.

間陪使令二名朔下, 錢文肆兩.

간배사령(間陪使令) 2명의 월급. 전문 4냥.

驅從二名朔下, 錢文捌兩.

구종(驅從) 2명의 월급. 전문 8냥.

三相位宅, 奇別書吏三人紙債, 錢文肆兩伍箋.

삼정승댁. 기별서리(奇別書吏)²⁵ 3인이 쓸 지채(紙債, 종이값). 전문 4냥 5전.

兩堂上宅, 奇別書吏二人朔下, 錢文壹兩柒箋.

양당상댁. 기별서리(奇別書吏) 2인의 월급. 전문 1냥 7전.

司錄, 奇別書吏紙債, 錢文參兩.

사록. 기별서리(奇別書吏)가 쓸 지채(紙債, 종이값). 전문 3냥.

司錄分撥紙債, 錢文壹兩.

사록의 분발(分撥)²⁶이 쓸 지채(紙債, 종이값). 전문 1냥.

疏劄書吏六人朔下, 錢文拾貳兩,²⁷

소차서리(疏劄書吏) 6인의 월급. 전문 12냥.²⁸

25 기별서리(奇別書吏) : 조선시대에 승정원에서 반포하는 기별(奇別)을 쓰던 서리이다. 기별(奇別)은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기록해서 아침마다 널리 알리던 일, 또는 그것을 기록한 종이를 말한다.

26 분발(分撥) : 조보(朝報)는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官報)로, 왕명,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狀啓)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분발은 이 조보를 발행하기 전에 그 당일(當日)에 긴요한 사항을 각사(各司)의 하인(下人)이 쪽지에 써서 관원에게 먼저 돌리던 문서로, 소보(小報)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직책명으로 사용한 듯하다.

27 원본에는 ‘錢文拾貳兩’ 뒤에 ‘內, 五戈長房紙債除’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疏劄書吏六人紙債, 錢文參兩.

소차서리(疏劄書吏) 6인의 쓸 지채(紙債, 종이값). 전문 3냥.

掌務書吏一人朔下, 錢文貳兩.

장무서리(掌務書吏) 1인의 월급. 전문 2냥.

留司權頭十名朔下, 錢文肆拾兩.

관아에 상주하는 권두(權頭) 10명의 월급. 전문 40냥.

藥色庫直二名朔下, 錢文肆兩.

약색고지기(藥色庫直) 2명의 월급. 전문 4냥.

大廳庫直一名朔下, 錢文肆兩.

대청고지기(大廳庫直) 1명의 월급. 전문 4냥.

直房庫直一名朔下, 錢文肆兩.

직방고지기(直房庫直) 1명의 월급. 전문 4냥.

催促使令一名朔下, 錢文肆兩.

최촉사령(催促使令) 1명의 월급. 전문 4냥.

錄事房直一名朔下, 錢文參兩.

녹사방지기(錄事房直) 1명의 월급. 전문 3냥.

書吏房直一名朔下, 錢文參兩.

서리방지기(書吏房直) 1명의 월급. 전문 3냥.

茶母二名朔下, 錢文參兩.

다모(茶母) 2명의 월급. 전문 3냥.

藥房柴油債, 錢文參兩.

28 다음과 같은 후세 가필이 있다. ‘12냥에서 5전은 장방(長房)의 종이값으로 제한다.’

약방에서 사용할 시유채(柴油債, 땔감과 기름값). 전문 3냥.

書吏上直房柴油債, 錢文貳兩.

서리가 상직방(上直房, 입직할 때 머무는 방)에서 사용할 시유채(柴油債). 전문 2냥.

一年朔下, 合錢文壹千玖百柒拾兩肆錢.

1년의 월급. 도합 전문 1,970냥 4전.

매년 고정 지출(每年應上下)

藥房以下一年療飢債, 錢文參拾陸兩.

약방 이하 원역(員役)의 1년 요기채(療飢債, 새참값). 전문 36냥.

錄事一年帽債衣資歲饌等, 合錢文柒拾陸兩, 夏等貳拾兩, 冬等伍拾陸兩

녹사(錄事)의 1년 모채(帽債, 모자값), 옷감, 세찬(歲饌)²⁹ 등의 값. 도합 전문 76냥. 여름철에 20냥, 겨울철에 56냥

錄事兩等帽債, 貳拾兩, 春等拾兩, 秋等拾兩

녹사에게 1년에 2번 지급하는 모채(帽債, 모자값) 20냥. 봄철에 10냥, 가을철에 10냥
兩等褒貶及方物封裹查對合坐時, 錄事等療飢債貳兩式, 合錢文捌兩.

1년에 2번 포폄할 때, 방물을 포장할 때³⁰, 사대(查對)에 참석할 때 녹사(錄事)에게
지급하는 요기채(療飢債) 2냥씩. 도합 전문 8냥.

錄事廳婢貢減, 錢文伍兩.

녹사청(錄事廳)의 여종에 대한 신공(身貢)³¹을 줄이는 비용. 전문 5냥.

藥房一年舖陳債, 錢文伍兩.

29 세찬(歲饌) :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이나 설에 세배하러 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음식을 말한다.

30 방물을 포장할 때 : 중국으로 사신을 파견할 때 보낼 예물을 점검하고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31 신공(身貢) : 노비가 신역(身役) 대신 내는 면포이다.

약방에서 1년 동안 쓰는 포진채(舖陳債, 뜻자리와 천막값). 전문 5냥.

司錄入直時馬草粥太柴炭等價, 一年合錢文拾貳兩陸箋參分.

사록이 입직할 때 쓸 마초(馬草, 말여물), 죽태(粥太, 말죽거리), 시탄(柴炭, 땔감과 숫) 등의 값. 1년에 도합 전문 12냥 6전 3푼.

一年文書紙價, 錢文拾陸兩.

1년 동안 쓰는 문서지(文書紙)값. 전문 16냥.

書吏頭巾債, 錢文柒兩伍箋.

서리의 두건값. 전문 7냥 5전.

公故炬燭價, 一年合錢文柒兩.

행사에 쓸 촛값. 1년에 도합 전문 7냥.

行用隅板肆部價, 錢文貳兩.

행차할 때 쓸 모판[隅板, 사각 판자] 4개 값. 전문 2냥.

鎖子肆部價, 錢文貳兩.

자물쇠 4부 값. 전문 2냥.

分稱壹部價, 錢文壹兩參箋.

저울 1부 값. 전문 1냥 3전.

茶亘里價, 一年合錢文拾兩.

차걸이값. 1년에 도합 전문 10냥.

春秋柴木刈取價, 錢文參拾玖兩.

봄 · 가을에 땔감 마련하는 값. 전문 39냥.

春秋柴木船價, 錢文伍拾兩.

봄 · 가을에 땔감 실어오는 값. 전문 50냥.

醍醐湯所入材料及清蜜等雜費, 合錢文壹百陸拾伍兩參箋.

제호탕에 넣을 재료와 청밀(清蜜) 등 잡비. 합계 전문 165냥 3전.

合劑時藥房以下療飢債, 錢文參兩.

제호탕을 만들 때 약방 이하 원역의 요기채(療飢債). 전문 3냥.

研末時劑藥官療飢債, 錢文貳兩.

약재를 가루 낼 때 제약관의 요기채(療飢債). 전문 2냥.

醫女及研末軍供饋債, 合錢文拾兩.

의녀와 연말꾼의 공궤채(供饋債, 밥값). 합계 전문 10냥.

益元散所入甘草等雜費, 合錢文貳兩玖箇捌分.

익원산에 넣을 감초 등 잡비. 도합 전문 2냥 9전 8푼.

研末軍供饋債, 錢文壹兩.

연말꾼의 공궤채(供饋債). 전문 1냥.

煎藥所入材料及清蜜等雜費, 合錢文壹百參拾參兩.

전약(煎藥)에 넣을 재료와 청밀(清蜜) 등 잡비. 합계 전문 133냥.

合劑時藥房以下療飢債, 錢文參兩.

전약을 만들 때 약방 이하 원역의 요기채(療飢債). 전문 3냥.

削桂時劑藥官療飢債, 錢文貳兩.

육계(肉桂)를 깎을 때 제약관의 요기채(療飢債). 전문 2냥.

研末軍及唐皮匠等供饋債, 錢文伍兩.

연말꾼과 당피장(唐皮匠, 당나귀 가죽 장인)³² 등의 공궤채(供饋債). 전문 5냥.

不足人蔘壹兩貿易價, 錢文壹百伍拾兩.

32 전약을 만들 때 가죽에서 아교를 추출한다.

부족한 인삼 1냥을 사울 비용. 전문 150냥.

戶曹移送江蓼貳斤價, 玄木參同, 代錢文參百兩.

호조에서 강계(江界) 인삼 2근을 이송해오는 비용. 혼목(玄木) 3동(同, 1동은 50닢), 전문으로 대신하면 300냥.

員役歲饌, 錢文壹百陸兩.

원역의 세찬(歲饌) 비용. 전문 106냥.

舍檢差出時驅從朔下, 每日柒分式, 上下次每年留置錢文捌兩, 未差時及用餘, 則留置傳掌

사검(舍檢, 사인舍人과 검상檢詳)이 차출(差出, 임명)되었을 때 구종(驅從)의 월급. 매일 7푼씩.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전문 8냥씩 유치(留置, 비축)해 놓는다. 차출되지 않거나 쓰고 남았으면 유치하고 전장(傳掌, 인계)한다

五年再閏朔用下次, 每年留置, 錢文陸拾伍兩柒爻陸分, 用餘則留置傳掌

5년마다 오는 재윤달에 지출하기 위해 매년 유치(留置)할 것. 전문 65냥 7전 6푼. 쓰고 남으면 유치하고 전장(傳掌)한다

一年內不虞備用下條, 錢文壹百伍拾壹兩參分, 用餘則留置傳掌

1년 동안 불우비(不虞備, 예비비)로 사용할 것. 전문 151냥 3푼. 쓰고 남으면 유치(留置)하고 전장(傳掌)한다

一年應上下, 合錢文壹千肆百伍兩伍爻.

1년의 고정 지출. 합계 전문 1,405냥 5전.

已上一年上下, 都合錢文肆千捌百參兩玖爻.

이상 1년의 지출. 총 전문 4,803냥 9전.

불우비(不虞備)에 대한 정식(不虞備定式)

城內舉動時, 堂上依幕点火柴, 九月以三月至 每日參爻, 四月以八月至 每日壹爻, 經宿則

各加壹爻

임금께서 도성 안에 거동하실 때. 당상관이 장막에 거하면서 쓸 땔나무 값.
9월부터 3월까지는 매일 3전. 4월부터 8월까지는 매일 1전. 경숙(經宿, 밤을 지냄)할 때는
각각 1전씩 추가한다

馬草價, 每日參爻, 兼帶米布衙門則不下

마초(馬草, 말여풀)값. 매일 3전. 당상관이 미포아문(米布衙門, 쌀이나 배를
직접 취급하는 관아)을 겸직하고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錄事馬貲, 每日參爻, 吏房錄事倅上下

녹사(錄事)의 말 대여료. 매일 3전. 이방(吏房)의 녹사에게만 지급한다

陵行舉動時, 錄事馬貲, 每日貳兩.

능행(陵行)차 거동하실 때. 녹사의 말 대여료. 매일 2냥.

書吏馬貲, 每日貳兩.

서리의 말 대여료. 매일 2냥.

隨廳書吏掌務書吏指路權頭糧饌, 每日肆爻.

수청서리(隨廳書吏) · 장무서리(掌務書吏) · 지로(指路, 길을 안내하는
사람) · 권두(權頭)의 양찬(糧饌, 식재료)값. 매일 4전.

直房使令工房使令陪行使令分撥使令軍土茶母糧饌, 每日貳爻.

직방사령(直房使令) · 공방사령(工房使令) · 배행사령(陪行使令) · 분발
사령(分撥使令) · 군사(軍士) · 다모(茶母)의 양찬(糧饌)값. 매일 2전.

藥待令軍土糧饌, 每日貳爻.

약대령군사(藥待令軍士)의 양찬(糧饌)값 : 매일 2전.

相位與堂上陵所依幕, 器皿負持軍雇價, 隨所入.

삼정승과 당상관이 능의 의막(依幕, 임시 막사)에 계실 때 그릇 부지꾼(負持軍,
지제꾼)의 품값. 쓴 만큼 지출한다.

隨駕堂上本府帶率下人糧饌及馬草價, 兼帶米布衙門則不下

임금의 가마를 따라가는 당상관에 딸린 의정부 하인들의 양찬(糧饌) 및 마초(馬草, 말여물) 값.³³ 당상관이 미포아문(米布衙門, 쌀이나 베를 직접 취급하는 관아)을 겸직하고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懿昭墓舉動時, 錄事馬貲, 每日伍箋.

임금께서 의소묘(懿昭墓, 의소세손懿昭世孫의 묘)³⁴에 거동하실 때. 녹사의 말 대여료. 매일 5전.

隨廳書吏掌務書吏指路權頭糧饌, 每日貳箋.

수청서리(隨廳書吏) · 장무서리(掌務書吏) · 지로(指路) · 권두(權頭)
의 양찬(糧饌)값. 매일 2전.

直房使令工房使令陪行使令分撥使令軍士茶母糧饌, 每日壹箋.

직방사령(直房使令) · 공방사령(工房使令) · 배행사령(陪行使令) · 분발
사령(分撥使令) · 군사(軍士) · 다모(茶母)의 양찬(糧饌)값. 매일 1전.

郊外舉動時待令茶藥等物, 隨所入.

임금께서 교외로 거동하실 때 대령할 차와 약 같은 물품. 쓴 만큼 지출한다.

郊壇祈雨祭舉動時, 錄事馬貲, 每日壹兩.

임금께서 교단(郊壇)에 기우제를 지내러 거동하실 때. 녹사의 말 대여료. 매일 1냥.

大小科榜及試券紙, 隨所入.

대과(大科)나 소과(小科)의 방문(榜文) 및 시권(試券, 과거 답안지)으로 사용할 종이. 쓴 만큼 지출한다.

33 지출 금액이 누락되어 있으나, 문맥상 '쓴 만큼 지출한다[隨所入]'인 듯하다.

34 의소세손은 사도세자의 적장자로 정조의 형이다. 1752년 4월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본 문헌은 1752년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都目壯紙及白紙，隨所入.

도목(都目)³⁵ 때 사용할 장지(壯紙, 두껍고 질기며 질이 좋은 종이) 및 백지(白紙, 일반적인 한지). 쓴 만큼 지출한다.

謚號都堂刑決合坐時，錄事療飢債，各貳兩.

시호(謚號)의 추천이나 도당(都堂)³⁶이나 형벌 결정을 위하여 합좌(合坐)³⁷할 때.
녹사의 요기채(療飢債). 각 2냥.

各宅攢藥醫女療飢債，參彙.

각 댁 찬약의녀(攢藥醫女)의 요기채(療飢債). 3전.

舍人先生四喪賻儀，木貳疋，代錢文肆兩.

사인선생(舍人先生, 의정부 사인舍人을 역임한 관리)의 사상(四喪, 부모·처·본인의 상)
때 부의금. 목(木) 2필. 전문으로 대신하면 4냥.

錄事身死，木貳疋，代錢文肆兩.

녹사 본인의 사망 때 부의금. 목(木) 2필. 전문으로 대신하면 4냥.

書吏典僕等身死，木壹疋，代錢文貳兩.

서리나 전복(典僕, 각 관아에 딸린 노복) 본인의 사망 때 부의금. 목(木) 1필. 전문으로 대신하면 2냥.

각 댁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품목에 대한 문서(各宅應納秩)

三相位宅，每朔草材參斤，惠民署納

삼정승댁. 매달 초재(草材) 3근, 혜민서에서 보낸다

35 도목(都目) :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찰하여 출직(黜陟)을 행하던 절차이다.

36 도당(都堂) : 의정부에서 홍문관의 교리와 수찬을 선임하기 위해 홍문록의 명단에서 적합한
이름에 권점으로 찬반을 표시하기 위해 모이는 일을 말한다.

37 합좌(合坐) : 2명 이상의 당상관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醍醐湯柒升,
제호탕(醍醐湯) 7도,
益元散參拾貼,
의원산(益元散) 30첩,
煎藥柒升, 已上藥房納
전약(煎藥) 7도, 이상은 약방에서 보낸다
春等柴陸拾同,
봄철에 땔감 60동,
秋等柴柒拾同, 已上柴場納
가을철에 땔감 70동, 이상은 시장(柴場)³⁸에서 보낸다
春等炭貳石,
봄철에 숯 2섬,
秋等炭貳石, 已上綠楊場納
가을철에 숯 2섬, 이상은 녹양장(綠楊場)에서 보낸다
兩³⁹堂上宅, 每朔草材參斤, 惠民署納
양당상택. 매달 초재(草材) 3근, 해민서(惠民署)에서 보낸다
醍醐湯伍升,
제호탕 5도,
益元散參拾貼,
의원산 30첩,

38 시장(柴場) : 국가에서 각 관아에 땔나무를 하도록 지정한 장소이다.

39 원본에는 ‘兩’ 옆에 ‘四’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煎藥伍升, 以上藥房納

전약 5되, 이상은 약방에서 보낸다

春等柴陸拾同,

봄철에 땔감 60동,

秋等柴⁴⁰拾同, 已上柴場納

가을철에 땔감 70동, 이상은 시장(柴場)에서 보낸다

春等炭貳石,

봄철에 숯 2섬,

秋等炭貳石, 已上綠楊場納

가을철에 숯 2섬, 이상은 녹양장에서 보낸다

左右舍人遙兒, 醍醐湯貳升,

좌·우사인(舍人) 체아직(遙兒職)⁴¹. 제호탕 2되,

煎藥貳升, 已上藥房納

전약 2되, 이상은 약방에서 보낸다

春等柴貳拾伍同, 柴場納

봄철에 땔감 25동, 시장(柴場)에서 보낸다

秋等柴伍拾伍⁴²同, 柴場及綠楊場納

가을철에 땔감 55동, 시장(柴場)과 녹양장에서 보낸다

春等炭貳石,

40 원본에는 ‘柒’ 옆에 ‘六’이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41 체아직(遙兒職) : 현직을 떠난 문·무관(文武官)에게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관직이다.
임기가 끝나도 적당한 벼슬자리가 생길 때까지 그 관아에 남아 있는 예비직을 말한다.

42 원본에는 ‘伍拾’ 옆에 ‘二十’이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봄철에 숯 2섬,

秋等炭貳石, 已上綠楊場納

가을철에 숯 2섬, 이상은 녹양장에서 보낸다

檢詳遙兒, 醍醐湯貳升,

검상(檢詳)⁴³ 체아직. 제호탕 2되,

煎藥貳升, 已上藥房納

전약 2되, 이상은 약방에서 보낸다

春等柴貳拾伍同, 柴場納

봄철에 땔감 25동, 시장에서 보낸다

秋等柴肆拾⁴⁴同, 柴場及綠楊場納

가을철에 땔감 40동, 시장과 녹양장에서 보낸다

春等炭貳石,

봄철에 숯 2섬,

秋等炭貳石, 已上綠楊場納

가을철에 숯 2섬, 이상은 녹양장에서 보낸다

司錄, 每朔草材捌兩, 惠民署納

사록. 매달 초재(草材) 8냥, 혜민서에서 보낸다

醍醐湯貳升,

제호탕 2되,

益元散貳拾貼,

43 검상(檢詳) : 의정부의 정5품 벼슬로 죄인을 거듭 심리하여 검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44 원본에는 ‘肆拾’ 옆에 ‘二十’이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의원산 20첩,

煎藥貳升, 已上藥房納

전약 2되, 이상은 약방에서 보낸다

春等柴貳拾同,

봄철에 팔감 20동,

秋等柴貳拾同, 已上柴場納

가을철에 팔감 20동, 이상은 시장(柴場)에서 보낸다

春等炭貳石,

봄철에 숯 2섬,

秋等炭貳石, 已上綠楊場納

가을철에 숯 2섬, 이상은 녹양장에서 보낸다

二相新坐時, 每朔人蔘陸芰, 不虞備貿納

이상(二相, 의정부의 좌·우찬성)이 새로 왔을 때. 매달 인삼 6돈, 불우비(不虞備, 예비비)로 사서 보낸다

每朔唐材價, 拾柒兩伍芰, 不虞備納

매달 당재(唐材)값. 17냥 5전, 불우비(不虞備)에서 보낸다

每朔草材貳斤, 兩堂上宅陸斤內, 各貳斤式分封

매달 초재 2근, 양당상액에 보내는 6근 안에서 각각 2근씩 나누어 드린다

醍醐湯伍升,

제호탕 5되,

煎藥伍升, 已上藥房納

전약 5되, 이상은 약방에서 보낸다

春等柴肆拾同,

봄철에 땔감 40동,

秋等柴肆拾同, 已上兩堂上宅納壹百貳拾同內, 各肆拾同式分封

가을철에 땔감 40동, 이상은 양당상택에 보내는 120동 안에서 각각 40동씩
나누어 드린다

春等炭貳石,

봄철에 숯 2섬,

秋等炭貳石, 已上綠楊場納

가을철에 숯 2섬, 이상은 녹양장에서 보낸다

舍檢新坐時, 每朔人蔘肆貳, 藥房納

사검(舍檢, 사인舍人과 검상檢詳)이 새로 왔을 때. 매달 인삼 4돈씩, 약방에서 보낸다

每朔唐材價拾兩, 不虞備納

매달 당재(唐材)값 10냥, 불우비(不虞備)에서 보낸다

每朔草材貳斤, 惠民署納

매달 초재(草材) 2근, 혜민서에서 보낸다

원역(員役)의 세찬(歲饌) 비용에 대한 문서(員役歲饌秩)

三相位宅, 陪吏房掌務錄事五員, 各參兩式, 合錢文拾伍兩.

삼정승택. 배리(陪吏) · 장무(掌務) · 녹사(錄事) 5원. 각 3냥씩, 도합 전문 15냥.

陪權頭三名, 各貳兩式, 合錢文陸兩.

삼정승을 곁에서 모시는 권두(權頭) 3명. 각 2냥씩, 도합 전문 6냥.

間陪引陪驅從等處, 各宅參兩式, 合錢文玖兩.

간배사령(間陪使令) · 인배사령(引陪使令) · 구종(驅從)들. 각 택에 3
냥씩, 도합 전문 9냥.

兩⁴⁵堂上宅, 陪錄事二⁴⁶員, 各貳兩式, 合錢文肆⁴⁷兩.

양당상댁. 곁에서 모시는 녹사 2원. 각 2냥씩, 도합 전문 4냥.

陪權頭二⁴⁸名, 各壹兩式, 合錢文貳⁴⁹兩.

곁에서 모시는 권두(權頭) 2명. 각 1냥씩, 도합 전문 2냥.

間陪引陪驅從等處, 各宅貳兩式, 合錢文肆⁵⁰兩.

간배사령(間陪使令) · 인배사령(引陪使令) · 구종(驅從)들. 각 댁에 2
냥씩, 도합 전문 4냥.

藥房二員, 各參兩式, 合錢文陸兩.

약방 2원. 각 3냥씩, 도합 전문 6냥.

錄事廳, 錢文拾貳兩.

녹사청(錄事廳). 전문 12냥.

書吏房, 錢文貳拾參兩.

서리방(書吏房). 전문 23냥.

權頭房, 錢文拾參兩.

권두방(權頭房). 전문 13냥.

大廳庫直一名, 錢文壹兩.

대청고지기(大廳庫直) 1명. 전문 1냥.

45 원본에는 ‘兩’ 옆에 ‘四’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46 원본에는 ‘二’ 옆에 ‘四’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47 원본에는 ‘肆’ 옆에 ‘八’이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48 원본에는 ‘二’ 옆에 ‘四’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49 원본에는 ‘貳’ 옆에 ‘四’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50 원본에는 ‘肆’ 옆에 ‘八’이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直房庫直一名，錢文壹兩.

직방고지기(直房庫直) 1명. 전문 1냥.

直房使令十名，軍士二名，茶母二名處，錢文柒兩.

직방사령(直房使令) 10명, 군사 2명, 다모 2명. 전문 7냥.

催捉使令一名，

藥房軍士四名，

大廳軍士一名，

錄事房直二名，

書吏房直一名，

合錢文參兩.

최촉사령(催捉使令) 1명，

약방군사(藥房軍士) 4명，

대청군사(大廳軍士) 1명，

녹사방지기(錄事房直) 2명，

서리방지기(書吏房直) 1명.

합계 전문 3냥.

已上合錢文壹百陸兩.

이상 도합 전문 106냥.

2달마다 받는 고풍채(古風債) 수입(間朔古風債捧上)

戶曹納，錢文陸兩陸壹柒分.

호조에서 바치는 것. 전문 6냥 6전 7푼.

禮曹納，上紙貳卷柒張，文書紙下

예조에서 바치는 것. 상지(上紙) 2권 7장, 문서지로 지급한다

白紙肆卷拾參張，文書紙下

백지(白紙) 4권 13장, 문서지로 지급한다

兵曹納, 錢文肆兩.

병조에서 바치는 것. 전문 4냥.

刑曹納, 錢文參兩貳収柒分.

형조에서 바치는 것. 전문 3냥 2전 7푼.

工曹納, 錢文壹兩陸収柒分.

공조에서 바치는 것. 전문 1냥 6전 7푼.

漢城府納, 錢文貳兩.

한성부(漢城府)에서 바치는 것. 전문 2냥.

掌樂院納, 錢文壹兩捌収.

장악원(掌樂院)에서 바치는 것. 전문 1냥 8전.

典牲署納, 錢文貳兩貳収柒分.

전생서(典牲署)에서 바치는 것. 전문 2냥 2전 7푼.

長興庫納, 錢文貳兩陸収柒分.

장흥고(長興庫)에서 바치는 것. 전문 2냥 6전 7푼.

廣興倉納, 米貳拾斗發賣, 錢文參兩伍収伍分.

장흥창(廣興倉)에서 바치는 것. 쌀 20말을 판 전문 3냥 5전 5푼.

軍盜監納, 米貳拾斗發賣, 錢文參兩伍収伍分,⁵¹

군자감(軍盜監)에서 바치는 것. 쌀 20말을 판 전문 3냥 5전 5푼. (약색원역藥色
員役에게 관례대로 지급한다.)

已上合錢文參拾壹兩肆収伍分.

51 원본에는 ‘錢文參兩伍収伍分’ 다음에 ‘藥色員役例下’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이상 총 전문 31냥 4전 5푼.

사대(查對)할 때 고풍채 수입(查對古風債捧上)

濟用監納, 錢文貳兩參爻.

제용감(濟用監)에서 바치는 것. 전문 2냥 3전.

繕工監納, 錢文參兩.

선공감(繕工監)에서 바치는 것. 전문 3냥.

司凜寺納, 錢文貳兩.

사도시(司凜寺)에서 바치는 것. 전문 2냥.

平市署納, 錢文貳兩.

평시서(平市署)에서 바치는 것. 전문 2냥.

廣興倉納, 米陸斗發賣, 錢文壹兩貳爻.

광흥창(廣興倉)에서 바치는 것. 쌀 6말을 판 전문 1냥 2전.

軍資監納, 米陸斗發賣, 錢文壹兩貳爻,⁵²

군자감(軍資監)에서 바치는 것. 쌀 6말을 판 전문 1냥 2전. (약색원역藥色員役에
게 관례대로 지급한다.)

已上合錢文拾壹兩柒爻.

이상 총 전문 11냥 7전.

52 원본에는 ‘錢文壹兩貳爻’ 다음에 ‘藥色員役例下’라는 후세 가필이 있다.

백밀(白蜜)의 수입(白蜜捧上)

① 경기도(京畿道)

加平白清壹升.

가평. 백청 1되.

抱川白清貳升.

포천. 백청 2되.

朔寧白清參升.

삭녕. 백청 3되.

安城白清參升.

안성. 백청 3되.

② 공충도(公忠道)

忠州白清參升.

충주. 백청 3되.

淸風白清貳升, 壯油紙各壹卷

청풍. 백청 2되, 장유지(壯油紙) 각 1권

丹陽白清貳升, 壯油紙各壹卷

단양. 백청 2되, 장유지(壯油紙) 각 1권

淸州白清捌升.

청주. 백청 8되.

永春白清貳升.

영춘. 백청 2되.

堤川白清貳升.

제천. 백청 2되.

沃川白清參升.

옥천. 백청 3되.

公州白清參升.

공주. 백청 3되.

槐山白清貳升.

괴산. 백청 2되.

永同白清貳升.

영동. 백청 2되.

(3) 경상도(慶尙道)

안동. 白清參升.

안동. 백청 3되.

醴泉白清貳升.

예천. 백청 2되.

豐基白清肆升.

풍기. 백청 4되.

義城白清貳升.

의성. 백청 2되.

禮安白清參升.

예안. 백청 3되.

奉化白清伍升.

봉화. 백청 5되.

青松白清參升.

청송. 백청 3도.

順興白清參升.

순흥. 백청 3도.

英陽白清參升.

영양. 백청 3도.

山淸白淸貳升.

산청. 백청 2도.

咸陽白淸肆升.

함양. 백청 4도.

安義白淸肆升.

안의. 백청 4도.

永川白淸參升.

영천. 백청 3도.

淸道白淸貳升.

청도. 백청 2도.

玄風白淸貳升.

현풍. 백청 2도.

大丘白淸參升.

대구. 백청 3도.

金山白淸參升.

금산. 백청 3도.

聞慶白淸貳升.

문경. 백청 2도.

尙州白清肆升.

상주. 백청 4도.

陝川白清貳升.

합천. 백청 2도.

密陽白清貳升.

밀양. 백청 2도.

慶州白清捌升.

경주. 백청 8도.

晉州白清壹斗.

진주. 백청 1말.

④ 황해도(黃海道)

谷山白清捌升.

곡산. 백청 8도.

金川白清參升.

금천. 백청 3도.

遂安白清肆升.

수안. 백청 4도.

新溪白清貳升.

신계. 백청 2도.

瑞興白清參升.

서흥. 백청 3도.

黃州白清肆升.

황주. 백청 4되.

平山白清肆升.

평산. 백청 4되.

已上合白清拾肆斗伍升.

이상 총 백청 14말 5되.

자초용의 수입(紫草茸捧上)

堤川, 紫草茸貳兩價, 代錢文陸兩.

제천. 자초용 2냥 값은 전문으로 대신하여 6냥.

丹陽, 紫草茸壹兩伍収價, 代錢文陸兩.

단양. 자초용 1냥 5돈 값을 전문으로 대신하여 6냥.

永春, 紫草茸壹兩伍収價, 代錢文參兩.

영춘. 자초용 1냥 5돈 값을 전문으로 대신하여 3냥.

康翎, 紫草茸貳兩價, 代錢文參兩伍収.

강령. 자초용 2냥 값을 전문으로 대신하여 3냥 5전.

松禾, 紫草茸壹兩伍収價, 代錢文肆兩伍収.

송화. 자초용 1냥 5돈 값을 전문으로 대신하여 4냥 5전.

長連, 紫草茸肆兩價, 代錢文陸兩.

장련. 자초용 4냥 값을 전문으로 대신하여 6냥.

新溪, 紫草茸壹兩價, 代錢文參兩.

신계. 자초용 1냥 값을 전문으로 대신하여 3냥.

谷山, 紫草茸貳兩價, 代錢文參兩.

곡산. 자초용 2냥 값을 전문으로 대신하여 3냥.

平山, 紫草茸肆兩價, 代錢文陸兩.

평산. 자초용 4냥 값을 전문으로 대신하여 6냥.

已上紫草茸價, 合錢文肆拾壹兩.

이상 자초용값 총 전문 41냥.

활석의 수입(滑石捧上)

충주, 滑石伍拾斤.

충주. 활석 50근.

서압(署押)⁵³

壬申七月 日.

임신년(1812) 7월 일.⁵⁴



53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54 영의정 김재찬(金載贊), 좌의정 한용귀(韓用龜), 우의정 김사목(金思穆, 서압 없음), 좌찬성 박종래(朴宗來), 우찬성 홍명호(洪明浩). 승정원일기 순조12년 7월 13일 기사에 “右議政金思穆, 病未獻議”라는 내용이 있고, 7월 20일 기사에는 “右議政金思穆疏曰, 伏以臣年邁告老, 痘在瀆危...”라며 우의정의 상소에 비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본 식례의 완성은 7월 13일에서 7월 20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2. 새로 추가된 절목(新節目)

右節目，爲本府藥房不虞備，每年加用，漸至難保者，專由於藥色輩不能檢束之致也，若此不已，則勢將不知至於何境，故依樞府例付吏房錄事，使之用下，則庶可節用，故應捧上不虞備條，列錄于下，付之吏房錄事爲去乎，恪勤照檢用下，以爲永久遵行爲齊。

이 절목은 본 의정부 약방의 불우비(不虞備, 예비비)에 대한 것이다. 불우비를 매년 추가로 사용하여 점점 유지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오로지 약색(藥色)들이 제대로 검속(檢束,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태를 그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지 모르겠다. 예전에 중추부(中樞府)에서 이방녹사(吏房錄事)에게 맡기는 관례대로 이방녹사를 통해 불우비를 지급하게 한다면 거의 아껴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정 수입 중 불우비에 대한 항목을 아래에 기록한다. 이방녹사에게 맡기되 삼가고 단속하며 써야 하며, 이것을 영구히 준행해야 한다.

불우비(不虞備) 항목의 고정 수입에 대한 문서(不虞備條應捧上秩)

一, 不虞備條，壹佰伍拾壹兩參分，每年正月內輸送爲齊。

- 불우비(不虞備) 항목. 151냥 3푼을 매년 정월 중에 수송해 온다.

一, 相位堂上位虛條, 唐材價錢, 依定例逐朔輸送爲齊。

- 삼정승과 당상관의 자리가 비었을 때. 당재(唐材)값 만큼의 전문을 정한 관례대로 매달 수송해 온다.

一, 扶安錢用餘條，貳佰肆拾肆兩，每年八月內輸送，而若閏年，則壹佰肆拾玖兩，依例輸送爲齊。

- 부안의 둔전세 중 쓰고 남은 비용. 244냥을 매년 8월 중에 수송해 온다. 윤년에는 149냥을 관례대로 수송해 온다.

一, 如是節目之後，藥房應捧上藥債，雖有不足之弊良置，毋得位虛條充數，而不虞

備，雖有加用之弊良置，毋得一分加輸送爲齊。

- 이와 같이 절목을 정한 뒤에 약방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약값이 비록 부족해지는 폐단이 있더라도 정승과 당상의 자리가 비어 남게 된 항목으로 그 수량을 채우지 말고, 불우비(不虞備)가 비록 더욱 쓰이는 폐단이 있더라도 1푼이라도 더하여 수송해오지 말아야 한다.

서압(署押)⁵⁵

壬辰正月 日.

임진년(1832) 정월 일⁵⁶



5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56 영의정 공석, 좌의정 공석, 우의정 김이교(金履喬), 우찬성 이면승(李勉昇). 승정원일기 순조32년 1월 16일 기사. 좌의정 이진황을 사신단의 부사로 임명하면서 판부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좌의정이 공석이다.

3. 새로 추가된 정식(新定式)

本府藥房之年來痼弊，今不必一一枚舉，而以目下事勢言之，應入不能，當應下至有相位堂上唐材價停封之舉，言念事體誠甚苟艱益除良，員役輩削下退等，亦極可憫乙仍于，兩相位位虛人蓼十朔條壹斤，代錢壹千貳佰捌拾兩出給，以爲捄弊之資，而應行事件條，列于後爲去乎，以此載之，次次傳掌，永久遵行事。

본 의정부 약방의 오래 된 폐단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으로 말하건대 고정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고정 지출이 모자라 삼정승과 당상관에 보내는 당재(唐材, 중국 약재)값도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사태가 정말 심각하고 어려울 뿐더러 원역(員役)들 월급이 밀리고 있는 것도 매우 답답한 지경이기 때문에 두 정승 자리가 비어서 남은 인삼 10달치의 항목⁵⁷으로 인삼 1근을 대신한 전문 1,280냥을 내어주어 폐단을 구제하는 자금으로 삼고 정기적으로 시행할 항목을 아래에 나열하니 이것을 기록하여 차례차례 전장(傳掌, 인계)하고 영구히 준행해야 한다.

아래(後)

一，自正月以七月至，應捧壹千伍佰伍拾伍兩參彙陸分內，舊色傳掌，錢肆佰參拾貳兩貳彙柒分。

- 1월부터 7월까지 고정 수입인 1,555냥 3전 6푼 중에서 구색(舊色)에게 전장(傳掌) 받은 것. 전문 432냥 2전 7푼.

各司間朔古風債三次，錢玖拾肆兩參彙伍分。

각 관아에서 2달마다 바치는 고풍채 3번. 전문 94냥 3전 5푼.

兵曹藥價，木玖拾疋，代錢壹佰捌拾兩。

⁵⁷ 1840년 12월 당시 영의정과 우의정이 공석으로 있은 지 10개월이었다.

병조에서 바치는 약값. 목(木) 90필, 전문으로 대신하면 180냥.

宣惠廳古風, 米肆拾柒石拾壹斗參升伍合, 代錢貳佰拾參兩柒叡肆分,
唐材價, 米拾伍石, 代錢肆拾伍兩.

선혜청에서 바치는 고풍채. 쌀 47섬 11말 3되 5흡, 전문으로 대신
하면 213냥 7전 4푼.

당재(唐材)값. 쌀 15섬, 전문으로 대신하면 45냥.

惠民署麥價, 正月四月兩等, 錢肆佰伍拾兩.

혜민서에서 정월과 4월에 2번 바치는 인삼값. 전문 450냥.

遂安藥債, 錢壹佰兩.

수안에서 바치는 약값. 전문 100냥.

江原道常定, 錢肆拾兩.

강원도에서 늘 바치는 돈. 전문 40냥.

合錢壹千伍佰伍拾伍兩參叡陸分.

이상 합계. 전문 1,555냥 3전 6푼.

位虛, 人麥壹斤, 代錢壹千貳佰捌拾兩.

정승이 공석이라 남은 것. 인삼 1근, 전문으로 대신하면 1,280냥.

合捧上, 錢貳千捌佰參拾伍兩參叡陸分.

총 수입. 전문 2,835냥 3전 6푼.

一, 自正月以七月至, 應下貳千伍佰拾柒兩壹分內.

- 1월부터 7월까지 고정 지출인 2,517냥 1푼 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各宅唐材價, 每朔壹佰拾玖兩式, 暈百參拾參兩.

각 댁에 보내는 당재(唐材)값. 매달 119냥씩, 7달에 833냥.

員役朔下, 錢每朔壹佰陸拾肆兩貳叡式, 壹千壹佰肆拾玖兩肆叡.

원역의 월급. 전문으로 매달 164냥 2전씩, 7달에 1,149냥 4전.

藥房以下療飢債, 每朔參兩式, 貳拾壹兩.

약방 이하 담당자의 요기채(療飢債). 매달 3냥씩, 7달에 21냥.

錄事衣資, 春等伍拾陸兩,

帽債拾兩.

녹사의 옷값. 봄철에 56냥.

모자값 10냥.

藥房舖陳債伍兩,

文書紙債拾兩,

書吏文書紙債拾陸兩.

약방에서 사용하는 포진채(舖陳債, 둑자리와 천막 비용). 5냥.

문서지값. 10냥.

서리의 문서지값. 16냥.

書吏十五人頭巾債, 柒兩伍叡.

서리 15인의 두건값. 7냥 5전.

司錄入直時, 馬草柴粥太炭價, 每朔壹兩式柒兩.

사록이 입직할 때 사용하는 마초(馬草, 밀여물) · 시탄(柴炭, 땔감과 숯) · 죽태(粥太, 말죽거리) 비용. 매달 1냥씩, 7달에 7냥.

不虞備用下次, 移送吏房錄事, 錢壹佰伍拾壹兩參分.

불우비(不虞備) 지급차 이방녹사(吏房錄事)에게 이송시키는 비용.
전문 151냥 3푼.

公故炬燭價, 柒兩.

공무에 사용하는 촛값. 7냥.

行用隅板價, 貳兩,

鎖子價, 貳兩,

分稱價, 壹兩參箋,

茶巨里價拾兩.

임금께서 행차할 때 쓰는 모판[隅板, 사각 판자]값. 2냥.

자물쇠값. 2냥.

저울값. 1냥 3전.

차걸이값. 10냥.

春等柴刈取船價, 肆拾肆兩伍箋.

봄철에 땔감을 마련하고 운반하는 값. 44냥 5전.

醍醐湯所入, 壹佰捌拾兩參箋.

제호탕에 쓸 재료값. 180냥 3전.

益元散所入, 參兩玖箋捌分.

의원산에 쓸 재료값. 3냥 9전 8푼.

合上下, 錢貳千伍佰拾柒兩壹分.

이상 지출 합계. 전문 2,517냥 1푼.

捧上錢貳千捌佰參拾伍兩參箋陸分內,

應下, 錢貳千伍佰拾柒兩壹分除.

총 수입금 전문 2,835냥 3전 6푼 중에

고정 지출금 전문 2,517냥 1푼을 제하면

實餘錢參佰拾捌兩參箋伍分, 次次傳掌, 以爲閏朔上下次.

실제 잔액 전문 318냥 3전 5푼. 이는 차례차례 전장(傳掌)하여 윤달에
지출할 비용으로 삼는다.

一. 今年位虛麥, 代錢中壹千兩, 爲先捧傍音後出給, 麥契貢人都中, 自翌年二月以六月至, 每朔貳佰兩式來納, 以爲逐朔應下之地爲旣, 貳佰捌拾兩, 載錄會計, 流伊傳掌是齊.

- 금년에 정승 자리가 비어 남는 인삼의 대전 1,280냥 중 1,000냥은 먼저 다짐(傍音, 확인증)을 받은 후에 내어 주고, 삼계공인(麥契貢人) 도중(都中, 육의전 상인들의 단체)이 다음해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200냥씩 와서 납부하게끔 하여 그것으로 매달 고정 지출 비용으로 삼는다. 나머지 280냥은 장부에 적어 놓았다가 유이(流伊, 몇 번에 나누어)하여 전장(傳掌)한다.

一. 扶安屯稅錢一年條欠縮後，每以待上納挪移用下之致，八月前，無以排用，以致停封退等者也，今則既有添補，優可支繼，則扶安錢上納後，自無充報未下等事，而委於藥色，則或不無逋縮之弊矣，壹千陸佰兩內，陸佰兩，依前用下爲旣，壹千兩段，貢人處捧傍音出給，自翌年二月以六月至，每朔貳佰兩式來納，每年循環，依此則自今以後，永無停封退等與除留逋縮等弊端是齊。

- 부안의 둔전세 전문 1년 항목에서 부족분이 생긴 뒤에는 매번 상납을 기다려 지출할 곳으로 유통했기 때문에 8월 전에는 돌려 쓸 수 없어서 봉납(封納)을 멈추거나 지출 시기를 늦추어 왔다⁵⁸. 지금은 보충해 놓았으니 충분히 유지한다면 부안의 둔전세 상납 후에 갚았네 지급할 게 없네 하는 일들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지만 약색(藥色)에게 위임하는 이상 간혹 부족하게 되는 폐단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1,600냥 중 600냥은 전례에 의거하여 지출하며 1,000냥은 공인(貢人,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다짐(傍音, 확인증)을 받고 내어 준 후 다음해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200냥씩 상납하게 하고, 매년 되풀이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후로 봉납을 멈추거나 지출 시기를 늦추거나 미리 빼두거나 포축(逋縮, 사적으로 유용하여 생기는 예산 부족)하는 등의 폐단이 영영 없을 것이다.

一. 未盡條件，追後磨鍊是齊。

- 미진한 항목은 추후에 다듬기로 한다.

58 지출 시기를 늦추어 왔다 : 退는 미루는 것이고 等은 분기 같은 기간을 가리킨다. 위 신정식(新定式)에서는 원역의 월급을 퇴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압(署押)⁵⁹

庚子十二月 日.

경자년(1840) 12월 일.⁶⁰



59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60 영의정 공석, 좌의정 공석, 우의정 조인영(趙寅永), 좌참찬 이지연(李志淵), 우참찬 김홍근(金弘根). 승정원일기 현종6년 12월 15일 기사. ‘領議政·左議政未差’

약방등록(藥房臘錄)

종친부(宗親府) 편집¹

1. 약방 세입에 대한 질(藥房稅入秩²)

每朔惠民署, 朔麥五³兩重, 每兩價錢十六兩式, 合八十兩內,

달마다 혜민서는 삭삼⁴ 5냥쭝⁵을 1냥마다 돈 16냥씩으로⁶ 합계 80냥 내에서⁷

1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2 秩 : '秩'은 여러 문서를 쌓아놓았다는 뜻으로 오늘날로 치면 보고 문서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3 五 : 원본에는 '伍'로 되어있으며 다른 숫자도 역시 갖은자로 되어있다. 본 역주본에서는 모두 원래자로 바꾸었다.

4 삭삼 : 달마다 초하루에 진상하는 인삼

5 5냥쭝 : 《혜국지》〈지공支供 · 진배進排〉. 혜민서가 종친부에 진배하는 인삼은 5냥쭝이다.

6 '代錢'과 '代文'은 화폐 경제가 성장한 시기 이후에 가능하다. 실례로 정조 2년(1778)에 증수된 《혜국지》의 경우 원래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돈으로 바꾸는 사례가 한 차례도 없으며, 순조 10년경(1810) 《내의원식례內醫院式例》에 가서야 그런 사례들이 보인다. 따라서 이 문헌의 작성 시기는 순조 이후로 보는 게 옳다.

7 《혜국지》〈지공 · 공물貢物〉을 보면 혜민서에서 원래 30근을 오상사(五上司)와 관용(官用)으로 나누어 분배했다. 종친부는 오상사(五上司)의 하나이다.

有司堂上三員, 每員二十兩二錢式, 公主·翁主·郡主·縣主房, 莓三錢式, 代錢四兩八錢式.

유사당상⁸ 3원⁹에게는 1원마다 20냥 2전씩, 공주방·옹주방·군주방·현주방에는¹⁰ 인삼 3돈씩으로 대전¹¹은 4냥 8전씩이다.¹²

草材十五斤 堂郎及諸宗, 隨品分排.

초재(초약) 15근¹³ 당상과 낭청¹⁴ 및 여러 종친은 품계에 따라 분배한다.

江界稅蓼, 三十六兩重代錢二千八百八十兩內 捧上則自戶曹捧上輸送,

강계세삼¹⁵ 36냥중의 대전 2,880냥 내에서¹⁶ 봉상(捧上)의 경우 호조에서 봉상하여

8 종친부의 유사당상(有司堂上) 세 사람은 1품과 2품의 종품(宗品) 가운데 임명하는데 종친관계(宗親官階)를 통솔하였다.

9 원 : 사람을 세는 단위로 員, 人, 名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은 정직(正職)에, '인'은 잡직(雜職)에, '명'은 천역(賤役)에 사용된다.

10 왕실에서는 정실과 측실 소생의 딸을 달리 불렀는데, 국왕의 경우 공주와 옹주, 세자의 경우 군주와 현주이다. 본문에 대군과 왕자군에 대한 내역이 없으므로, 본 문헌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대군과 왕자군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순조는 세자 외에 대군(1820년 사망)이 하나 있을 뿐이고, 현종과 철종은 남자후손이 없다. 따라서 본 내역으로 순조 20년(1820) 이후에 문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대전 : 물건 대신으로 주는 돈이다.

12 1냥마다 돈으로 하면 16냥이므로, 1돈마다 돈으로 하면 1냥 6전이 된다. 3돈이면 4냥 8전이다.

13 《혜국지》〈지공支供·공물貢物〉을 보면 초약(草藥) 80여종은 혜민서의 서원, 고지기 및 공인이 오상사(五上司)와 본서(本署)의 진배(進排)를 담당한다. 《혜국지》〈지공支供·진배進排〉에서는 혜민서가 종친부에 진배하는 초약이 매달 초하루에 17근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두 문헌이 같은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혜국지》는 정조 2년(1778)에 중수되었다.

14 당상과 낭청 : 당상(堂上)은 정3품 상계(上階) 이상, 낭청은 당하(堂下)를 지칭하는 말이다. 종친부에는 종친을 제외하고 조관(朝官)으로 정4품 전첨(典籤) 한 사람과 정5품 전부(典簿) 한 사람을 두어 실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이를 당하 조관이 낭청이다.

15 강계세삼 :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의 호삼(戶蓼)이 강계호삼이다. 강계는 평안도의 고을 이름이다. 호조에 맡아 봉상하므로 호삼으로도 불렸다. 원래 해마다 9근을 들였는데, 영·정조시기를 거치면서 6근이 줄어들어 순조 초기에는 3근을 들었다. 세삼(稅蓼)은 실물징수로 거두는 세금으로서의 인삼을 말한다.

수송(輸送)한다.

公主 · 翁主房 元封三兩重, 加封三兩重, 因傳教,

공주방, 옹주방 원봉(元封)은 3냥쭝, 가봉(加封)은 3냥쭝으로, 전교에 의한다.

郡主 · 縣主房 元封三兩重, 加封一兩重, 因傳教,

군주방, 현주방 원봉은 3냥쭝, 가봉은 1냥쭝으로, 전교에 의한다.

有司堂上三員, 各三兩式, 合九兩重.

유사당상 3원에게 각각 3냥씩으로 합계 9냥쭝,

諸宗丘價麥, 十兩重 分排事.

여러 종친의 구가(丘價)¹⁷ 인삼은 10냥쭝을 분배한다.

臘藥所入五兩重內 五錢重, 劑藥所入, 四兩半重, 藥房以下該色吏分用.

납약에 소요되는 5냥쭝 내에서 5돈쭝은 제약(劑藥)에 들어가고, 4냥 5돈쭝은 종친부약방
이하 해당 색리¹⁸가 나누어 쓴다.

每年七月令, 戶曹上下, 唐材價木五同二十疋內,

해마다 7월령에 호조가 지급하는 당재(중국산 약재) 값 무명 5동¹⁹ 20필 내에서

醍醐湯債, 二十疋,

제호탕²⁰ 값으로 20필,

16 본문 <약방 세입에 대한 질藥房稅入秩>에서 삭삼(朔蔴)의 경우 1냥마다 돈 16냥이 규례였다.
강계세삼(江界稅蔴)의 경우는 36냥쭝인데 돈이 2,880냥이므로 삭삼의 5배에 달한다. 규례가
나오지 않아 2,880냥의 정확한 산출내역은 없다. 그런데 납월에만 만드는 납약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삭삼이 달마다의 내역인 반면 강계세삼은 연간 내역이다.

17 구가(丘價) : 관원이 녹봉 이외에 사적으로 부리는 구종의 급료로 지급받는 돈이나 물품

18 색리 : 직무를 맡은 아전

19 동 : 면포의 단위는 1필(疋)이 35척이고, 1동(同)이 50필이다.

20 제호탕 : 《내의원식례》 〈연례진상年例進上〉을 보면 제호탕은 단오에, 전약은 동짓날에 내국에
서 진상하는데, 전약의 경우는 궁방(宮房)에도 진상했다.

煎藥債, 十疋,
전약 값으로 10필,
臘藥債, 二同二十三疋半,
납약 값으로 2동 23필 반,
合三同三疋半, 除給藥房. 餘木二同十六疋半, 移送上下色.
합하여 3동 3필 반을²¹ 약방에 제급한다. 나머지 무명 2동 16필 반은²² 상하색²³
에게 이송한다.

2. 봉약에 대한 질(封藥秩)

每年五月 日, 醬醡湯分封.

해마다 5월 모일(某日)에 제호탕을 분봉한다.

公主 · 翁主 · 郡主 · 縣主房 醌醡湯, 各一碗式, 封進.

공주방, 옹주방, 군주방, 현주방 제호탕 한 사발씩 봉진한다.

有司三堂上宅 醌醡湯, 各一碗式, 封進. 凡堂無.

세 유사당상 댁 제호탕 한 사발씩 봉진한다. 일반 당상은 없다.

郎位宅 醌醡湯一碗.

낭위(전첨과 전부) 댁 제호탕 한 사발이다.

21 20필 + 10필 + 2동 23필 반 = 3동 3필 반(1동 = 50필).

22 5동 20필 - 3동 3필 반 = 2동 16필 반

23 상하색 : 이두로는 차하벗으로 읽는다.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그 부서의 사람을 가리킨다.

3. 전약 봉진에 대한 질(煎藥封秩)

十一月 日, 分封.

11월 모일(某日)에 나누어 봉진한다.

公主 · 翁主 · 郡主 · 縣主房 各一碗式, 封進.

공주방, 응주방, 군주방, 현주방 한 사발씩 봉진한다.

有司堂上三員²⁴宅 各一碗式²⁵, 封進. 凡堂無.

세 유사당상 택 3원 한 사발씩 봉진한다. 일반 당상은 없다.

郎位宅 一碗封.

낭위댁 한 사발을 봉입한다.

4. 납약 봉진에 대한 질(臘藥封秩)

十二月 日, 分封.

12월 모일(某日)에 나누어 봉진한다.

公主 · 翁主 · 郡主 · 縣主房 依三堂上封進例擧行.

공주방, 응주방, 군주방, 현주방 세 당상에게 봉진하는 예에 따라 거행한다.

有司堂上三員宅 牛黃清心元二十丸, 抱龍元十五丸, 小兒清心元十五丸, 九味清心元十五丸, 麝香蘇合元一百四十丸, 龍腦蘇合元七十丸, 千金廣濟元七十丸, 薄荷煎十丸, 備急大黃元三錢, 好合茵陳元三

24 員 : 원본에는 없으나 문맥상 추가하였다.

25 式 : 원본에는 없으나 문맥상 추가하였다.

錢, 各封.

유사당상 3원의 택 우황청심원 20환, 포룡원 15환, 소아청심원 15환, 구미청심원 15환, 사향소합원 140환, 용뇌소합원 17환, 천금광제원 17환, 박하전 10환, 비급대황원 3돈, 호합인진원 3돈을 각각 봉진한다.

郎位宅 牛黃清心元十九丸, 抱龍元八丸, 小兒清心元八丸, 九味清心元八丸, 麝香蘇合元七十丸, 千金廣濟元三十五丸, 薄荷煎五丸, 備急大黃元一箋, 好合茵陳元一箋, 龍腦蘇合元三十五丸.

낭위댁²⁶ 우황청심원 10환, 포룡원 8환, 소아청심원 8환, 구미청심원 8환, 사향소합원 70환, 천금광제원 35환, 박하전 5환, 비급대황원 1돈, 호합인진원 1돈, 용뇌소합원 35환이다.

劑藥官 牛黃清心元五丸, 九味清心元三丸, 麝香蘇合元七丸, 薄荷煎七丸, 備急大黃元五分, 好合茵陳元五分.

제약관(劑藥官)²⁷. 우황청심원 5환, 구미청심원 3환, 사향소합원 7환, 박하전 7환, 비급대황원 5푼, 호합인진원 5푼이다.

藥色色吏四人, 庫直一名 牛黃清心元三丸, 九味清心元三丸, 麝香蘇合元五丸, 薄荷煎三丸, 龍腦蘇合元三丸.

약색색리 4인, 고지기(약색고지기) 1명 우황청심원 3환, 구미청심원 3환, 사향소합원 5환, 박하전 3환, 용뇌소합원 3환이다.

錄事二人, 書吏十一人各 牛黃清心元二丸, 九味清心元二丸, 麝香蘇合元五丸, 龍腦蘇合元三丸, 薄荷煎三丸.

녹사 2인, 서리(書吏) 11인마다²⁸ 우황청심원 2환, 구미청심원 2환, 사향소합원 5환, 용뇌

26 낭위댁 : 본문 중에 조관(朝官)으로는 마지막 언급이다. 종친부는 고종 1년(1864)에 종부시(宗府寺)를 합치면서 직장(直長), 참봉(參奉) 등의 원역을 추가로 두게 된다. 따라서 이 원역들에 대한 내역이 없으므로 본 문헌의 생성은 고종 이전으로 올라간다.

27 제약관(劑藥官) : 《해국지》〈식례式例 · 공사供仕〉를 보면 종친부에는 약방(藥房) 외에 제약관(劑藥官)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 이 제약관은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중추부, 예조, 승정원에 한 사람씩으로 모두 1인이 원래 정원이다. 혜민서 참하관(參下官) 중에서 열흘을 기한으로 하여 교대로 임명되었는데, 납약을 만들 때나, 봉감(捧甘)이 있게 되면 정원이 추가되었다.

소합원 3환, 박하전 3환이다.

庫直三名 牛黃清心元, 一丸, 九味清心元, 一丸, 麝香蘇合元, 三丸, 龍腦蘇合元, 二丸, 薄荷煎, 二丸.

고지기 3명 우황청심원 1환, 구미청심원 1환, 사향소합원 3환, 용뇌소합원 2환, 박하전 2환
이다.

都使令一名, 催促使令一名,

도사령(都使令) 1명, 최촉사령(催促使令)²⁹ 1명,

藥色首奴二名各 牛黃清心元, 一丸, 麝香蘇合元, 三丸, 薄荷煎, 二丸.

약색수노(藥色首奴) 2명마다 우황청심원 1환, 사향소합원 3환, 박하전 2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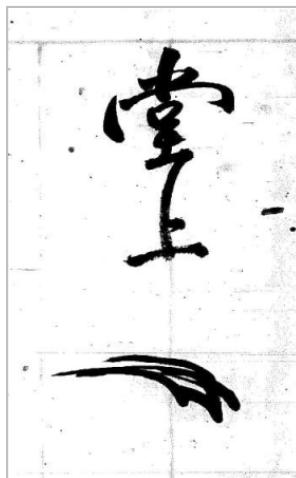
28 법전에서 종친부의 녹사(錄事)와 서리(書吏)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속대전》〈이전吏典·경아전京衙前〉에 녹사는 없고, 서사는 10인이다. 《대전통편》〈이전·경아전京衙前〉에 녹사는 대군(大君) 1인, 왕자군(王子君) 1인으로 증(增), 서사는 대군 2인, 왕자군 1인, 군(君) 1인이다. 속(續, 속대전)에는 10인이다. 《대전회통》〈이전·경아전京衙前〉을 보면 앞 내용과 동일한데, 서사에서 보(補, 보충) 24인이다. 그런데 법전 규정이 실제와 부합한 것은 아니므로, 《승정원일기》를 통해 실제 녹사와 서사 인원에 대한 정보를 일부 얻을 수 있다. 숙종 45년(1719) 9월 26일 기사. 종친부 녹사가 나온다. 따라서 법전에 명문화되기 이전에 이미 녹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41년(1765) 9월 3일 기사. 종친부의 예에 따라 기로소에도 녹사 한 사람을 두라는 내용이 나온다. 영조 47년(1771) 1월 27일 기사. 종친부에 유사녹사(留司錄事) 한 사람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녹사에 대한 기술은 유사녹사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후대처럼 대군과 왕자군에게 따로 녹사가 주어지지 않았다. 즉 본문에서 녹사를 두 사람이라 하였으므로 영조보다 후대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9 최촉사령(催促使令) : '催促'은 재촉한다는 뜻이다.

5. 기타(其他)³⁰

凡堂宅, 醬翻湯煎藥, 事例雖無, 因堂上分付, 同爲分兒事.

일반 당상 댁에 제호탕과 전약을 주는 사례는 비록 없지만, 당상의 분부를 인하여 함께 분야³¹한다.



此亦中惠署, 以來草藥代錢, 朔蓼代錢, 江界稅蓼錢, 煎藥, 醌翻湯, 臘藥等物, 依事例, 都正宅, 勿爲封進, 而初制君啣, 舉行事.

이에 혜민서³²에서 초약을 대신하는 값, 삭삼을 대신하는 값, 강계세삼 값, 전약, 제호탕, 납약 등의 물품을 들임에 있어서, 사례에 따라 도정(都正)³³댁에는

30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31 분아 : 분출분아(分出分兒)의 준말로, 분하(分下)라고도 한다. 관부(官府)에서 소속 관원에게 해마다 약간의 물품이나 돈을 나누어 주던 관례를 말한다.

32 혜민서 : 혜민서는 고려조의 혜민국을 계승하였고, 조선 초기에도 그 이름이 혜민국이었던 까닭에 약칭하여 보통 해국(惠局)이라 부르지만, 해서(惠署) 또한 혜민서의 달리 부르는 명칭이었다.

33 도정(都正) : 종친부 정3품의 당상 관직으로 세자의 증증손(衆曾孫), 대군의 증손(衆孫), 왕자군

봉진하지 말고, 처음으로 군(君) 직함을 짓게 되면 거행한다.



의 증자(衆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에게 주어졌다. 종실에서 군(君)의 바로 아래 지위이다.
훈련원과 돈녕부에도 도정이 있는데 종실 관직은 아니다.

심약사례(審藥事例)¹ (單)

전의감(典醫監) 편찬¹

완의(完議)²

右完議，爲審藥藥房料布及例俸者。自古及今，原有一定之規矣，人心漸不如舊，每於到任之初，因其該色輩之幻弄，或致有見失之弊。故博收僉議，裒聚前後事例，輯成一冊，以爲金石之指南，以其於赴任之際，勢將謄本然後，可免携貳之歎。其於謄出之時，該任官同爲赴衙，使之別可謄去，卽地藏奉，各別典守，是矣。如是之後，各有不勤之弊，則該任官斷當施以離行也，以爲惕念遵守之地焉。

이 완의는 심약과 약방의 요포³ 및 예봉⁴에 관한 것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원래 일정한 규례가 있었지만, 인심(人心)이 점차 예전만 못하게 되어 새 관원이 매번 부임하는 초기마다 담당 색리(色吏)들의 농간으로 인해 간혹 누락되는

1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2 완의 : 완의(完議)란 의논하여 합의된 것을 서로 지키기로 한 내용의 문서이다. 본 문헌의 서문 격인 글이다.

3 요포 : 달마다 지급되는 돈과 면포이다.

4 예봉 : 전례에 따른 봉입이다.

폐단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중의(衆議)를 널리 수렴하고 전후의 사례를 모아서 책 하나를 만들어 금석처럼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았으니, 새 관리가 부임할 때 형세상 이 책을 베낀 후에야 서로 맞지 않는다는 탄식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베껴 낼 때 부임하는 해당 관원이 함께 관아에 나아가 따로 직접 베껴 가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잘 보관하여 각별히 맡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 각자 업무에 태만한 폐단이 있거든 부임한 해당 관원을 단연코 마땅히 떠나가게 하는 법을 시행하여 두려워하며 준수하도록 하는 근 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丙辰九月 日.

병진년(1856, 철종 7)⁵ 9월 일.

5 심약 제도가 1895년에 혁파되므로 그 이전이어야 하고, 본문 중에 순조(純祖)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등장하므로 순조의 즉위년(1800) 이후로 보아야 한다. 둘을 만족시키는 연도는 1856년뿐이다. 그러나 본문 내용 중에 고종(高宗) 때의 기록이 있어서 저술 시기에 논란을 빚어왔다. 역주자의 생각으로는 본 문현은 완의를 작성하여 초고를 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기술되어졌고, 문현의 완성 시기는 하한이 고종 10년(1873) 12월 이후로까지 내려간다. 또한 이점에서 경상도심약 관련 분량이 다른 의관들에 비해 많은 점도 설명되는데, 원래 완의는 경상도심약 관련 자료를 취합한 뒤에 저술되었고, 그 후에 다시 다른 의관들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경상감영 내용에서 1856년 이후의 기록은 말미의 병인년(1866)과 계유년(1873) 관련 기록뿐이어서, 이런 추측을 지지한다.

1. 경상감영(慶尙監營)⁶

2월령의 봉여 고을(二月令封餘邑)^{7 8 9}

二月大令, 四月小令, 五六月小令, 七八月小令, 十月大令, 臘月小令.

2월은 대령¹⁰, 4월은 소령, 5·6월은 소령, 7·8월은 소령, 10월은 대령, 12월은 소령이다.

靈山, 五錢二分 元二百八兩, 縮¹¹二十兩八錢, 別二十五兩, 驂十三兩五錢二分. 合二百六十七兩三錢二分.

寧海, 三錢七分 元一百四十八兩, 縮十四兩八錢, 別二十兩, 驂九兩六錢二分. 合一百九十二兩四錢二分.

宜寧, 三錢六分 加二分¹². 元一百四十四兩, 加八兩, 縮十四兩四錢, 加八錢, 別十五兩, 驂九兩三錢

6 경상도 대구에 있던 경상감영에서 근무하는 종9품 경상도심약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상도심약은 영영심약(嶺營審藥)으로도 불린다. 본 문헌에서는 25원(員)의 외임(外任)과 분차(分差) 의관을 다룬다. 그 중 하나인 경상도심약은 전체 분량의 1/3을 차지한다. 《혜국지》〈연혁沿革·외임外任〉을 보면 보통의 제도심약(諸道審藥) 임기는 14개월이다.

7 봉여 고을 : 봉여(封餘)는 본래 중앙에 진상하고 남은 물품을 국왕이 벼슬아치들에게 회사(回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상은 관료들에게 지급될 물품이 상납 과정에서 봉여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즉 봉여읍이란 봉여 명목으로 물품을 진상하는 고을이라는 뜻이다. 2월과 10월의 대령(大令)은 봉여읍, 각읍작지초지어질(各邑作紙草紙魚秩), 각읍토산잡종질(各邑土產雜種秩)의 3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한다.

8 모두 12고을이다.

9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경상도 인삼을 나삼(羅蔘)이라 부르고 2월과 10월에 합하여 2근을 진상했다.

10 대령 :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서 '대령(大令)은 심약(審藥)이 영납(領納, 통솔하여 거두어들임)하고, 소령(小令)은 배지(陪持)가 와서 들인다.'고 하였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와 해당 월령(月令)을 비교하면 대령과 소령이 동일하다. 《내의원식례》의 경우 5월과 7월에 대해 별 내역이 없지만 실제로 5·6월과 7·8월의 경우 6월과 8월에 진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11 缩 : 원본에는 '丑'으로 되어있는데 '縮'이 원래자이다.

12 원문에서 '加'이하 부분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지만, 합계에는 이 수치도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六分，加五錢二分。合一百九十二兩八分。

安義，三錢三分 元一百三十二兩，縮十三兩二錢，別二十兩，馱八兩五錢八分。合一百七十三兩七錢八分。

三嘉，三錢三分 元一百三十二兩，縮十三兩二錢，別十五兩，馱八兩五錢八分。合一百六十八兩七錢八分。

仁同，三錢三分 元一百三十二兩，縮十三兩二錢，別二十兩，馱八兩五錢八分。合一百七十三兩七錢八分。

興海，三錢二分 元一百二十八兩，縮十二兩八錢，別二十六兩，馱八兩三錢二分。合一百七十五兩一錢二分。

盈德，三錢一分 元一百二十四兩，縮十二兩四錢，別二十兩，馱八兩六分。合一百六十四兩四錢六分。

熊川，二錢 元八十兩，縮八兩，別五兩，馱五兩二錢。合九十八兩二錢。

鎮海，二錢 元八十兩，縮八兩，別十兩，馱五兩二錢。合一百三兩二錢。

清河，二錢 元八十兩，縮八兩，別十兩，馱五兩二錢。合一百三兩二錢。

彦陽，一錢 元四十兩，縮四兩，別十兩，馱二兩六錢。合五十六兩六錢。

영산 5돈¹³ 2푼 원(元)은 208냥, 축(縮)은 24냥 8전, 별(別)은 25냥, 태(馱)는 13냥 5전 2푼이다.¹⁴ 합계 267냥 3전 2푼이다.

영해 3돈 7푼 원은 148냥, 축은 14냥 8전, 별은 20냥, 태는 9냥 6전 2푼이다. 합계 192냥 4전 2푼이다.

의령 3돈 6푼 2푼을 더한다. 원은 144냥인데 8냥을 더하고, 축은 14냥 4전인데 8전을 더하고, 별은 15냥, 태는 9냥 3전 6푼인데 5전 2푼을 더한다. 합계 192냥 8푼이다.

안의 3돈 3푼 원은 132냥, 축은 13냥 2전, 별은 20냥, 태는 8냥 5전 8푼이다. 합계 173냥

후대에 추가된 부분은 아니다.

13 돈 : 무게 단위는 돈으로, 화폐 단위는 전(錢)으로 번역하였다.

14 원(元)은 원공삼(元貢蔴), 즉 원래의 공납으로 정해진 인삼 값을 말하고, 축(縮)은 보축조(補縮條), 즉 손실되는 양을 보충하는 값, 별(別)은 별공삼(別貢蔴), 즉 원래 공납으로 정해진 양 이외의 인삼 값, 태(馱)는 인삼을 운반하는 비용을 말한다.

7전 8푼이다.

삼가 3돈 3푼 원은 132냥, 축은 13냥 2전, 별은 15냥, 태는 8냥 5전 8푼이다. 합계 168냥 7전 8푼이다.

인동 3돈 3푼 원은 132냥, 축은 13냥 2전, 별은 20냥, 태는 8냥 5전 8푼이다. 합계 173냥 7전 8푼이다.

홍해 3돈 2푼 원은 128냥, 축은 12냥 8전, 별은 26냥, 태는 8냥 3전 2푼이다. 합계 175냥 1전 2푼이다.

영덕 3돈 1푼 원은 124냥, 축은 12냥 4전, 별은 20냥, 태는 8냥 6푼이다. 합계 164냥 4전 6푼이다.

옹천 2돈 원은 80냥, 축은 8냥, 별은 5냥, 태는 5냥 2전이다. 합계 98냥 2돈이다.

진해 2돈이다. 원은 80냥, 축은 8냥, 별은 10냥, 태는 5냥 2전이다. 합계 103냥 2전이다.

청하 2돈 원은 80냥, 축은 8냥, 별은 10냥, 태는 5냥 2전이다. 합계 103냥 2전이다.

언양 1돈 원은 40냥, 축은 4냥, 별은 10냥, 태는 2냥 6전이다. 합계 56냥 6전이다.

以上元蓼重三兩五錢九分價一千四百三十六兩,

縮一百四十三兩六錢,

別一百九十六兩,

馱九十三兩三錢四分.

四口合一千八百六十八兩九錢四分.

元封餘八百兩,

元縮條一千二百八十兩,

都已上合三千九百四十八兩九錢四分內,

元蓼價出給次一千四百三十六兩,

縮條出給次一百四十三兩六錢,

大邱縮條十六兩八錢,

內局醫生例下二百兩,

合一千七百九十六兩四錢除,

實入文二千一百五十二兩五錢四分.¹⁵

이상 원삼(元蓼)의 무게 3냥 5돈 9푼의 값은 1,436냥이고,

축은 143냥 6전,
별은 196냥,
태는 93냥 3전 4푼이니,
4가지 명목 합계 1,868냥 9전 4푼이다.
원래의 봉여는 800냥이고,
원래의 축조는 1,280냥이다.
이상을 모두 합한[都已上]¹⁶ 3,948냥 9전 4푼¹⁷ 내에서
원삼 값을 내주기 위한 1,436냥,
축조를 내주기 위한 143냥 6전,
대구(경상감영)의 축조 16냥 8전,
내국의생¹⁸에게 주는 예하¹⁹ 200냥,
합계 1,796냥 4전을 빼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2,152냥 5전 4푼이다.²⁰

2월령 여러 고을의 작지, 초, 지어에 대한 질(二月令各邑作紙草紙魚
秩)^{21 22}

15 원문은 ‘二千一百五十三兩一錢’으로 되어있으나 오류이다.

16 都已上 : ‘도이자’로 읽으며 회계에서 중간 정산할 때 사용하던 이두 표기이다.

17 $1868.94 + 800 + 1280 = 3948.94$ 냥

18 내국의생 : 내의원에는 의학생도가 없고, 전의감과 혜민서, 지방 관아(도호부, 목, 군현 등)에만 있다. 여기서 내국의생이란 지방 관아의 의생이 내의원 관련 사무, 즉 약재 공납 관련 일을 하게 될 때를 지칭한다.

19 정해진 예에 따라 윗사람이 내리는 물건이나 돈을 말한다.

20 $3948.94 - 1796.4 = 2152.54$ 냥

21 질 : ‘秩’은 여러 문서를 쌓아놓았다는 뜻으로 오늘날로 치면 보고문서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22 회소(會所) 별로 4묶음인데 첫 묶음은 안동부 이하 22개 고을, 둘째 묶음은 경주부 이하 18개 고을, 셋째 묶음은 진주목 이하 20개 고을, 마지막 묶음은 상주목 이하 11개 고을이다. 모두

安東, 一兩五錢三分 作六兩一錢二分, 草二兩, 紙魚代四錢. 合八兩五錢二分.

禮安, 三錢 作一兩二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

奉化, 一錢五分 戊子, 春等減. 作六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

龍宮,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醴泉, 一兩八分 加二分. 作四兩四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五兩八錢.

豐基, 一錢 作四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八錢.

榮川, 三錢六分 作一兩四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八錢四分.

順興, 六錢七分 作二兩六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四兩八分.

青松, 八錢一分 作三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四兩六錢四分.

真寶, 二錢五分 作一兩,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四錢.

英陽, 五錢 作二兩,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四錢.

寧海, 三錢七分 作一兩四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八錢八分.

軍威, 三錢 作一兩二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

比安, 三錢 作一兩二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

仁同, 三錢三分 作一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二分.

漆谷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四錢.

義城, 一兩二分 作四兩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五兩四錢八分.

義興,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新寧, 五錢 作二兩,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四錢.

永川, 一兩三錢二分 作五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六兩六錢八分.

盈德,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²³六錢四分.

河陽, 一錢 作四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八錢.

안동 1냥 5돈 3푼 작지(作紙)²⁴는 6냥 1전 2푼, 초(草)²⁵는 2냥, 지어(紙魚)²⁶를 대신하여

71개 고을이다.

23 냥 : 원본에는 ‘兩’이 없으나 다른 문장 형식에 맞추어 넣었다.

24 작지 : 관청에서 문서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종이 값으로 거두는 세금이다.

25 초 : 진상 물품을 운반한 마부나 운송한 사람에게 마초대(馬草代)를 지불하는데, ‘草’가 이를

4전이다. 합계 8냥 5전 2푼이다.

예안 3돈 작지는 1냥 2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이다.

봉화 1돈 5푼 무자년(1828, 순조 28)부터 봄 분기 분을 줄였다. 작지는 6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이다.

용궁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예천 1냥 8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4냥 4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5냥 8전이다.

풍기 1돈 작지는 4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8전이다.

영천 3돈 6푼 작지는 1냥 4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8전 4푼이다.

순흥 6돈 7푼 작지는 2냥 6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4냥 8푼이다.

청송 8돈 1푼 작지는 3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4냥 6전 4푼이다.

진보 2돈 5푼 작지는 1냥,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4전이다.

영양 5돈 작지는 2냥,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4전이다.

영해 3돈 7푼 작지는 1냥 4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8전 8푼이다.

군위 3돈 작지는 1냥 2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이다.

비안 3돈 작지는 1냥 2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이다.

인동 3돈 3푼 작지는 1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2푼이다.

칠곡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4전이다.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6 지어 : 전세(田稅)에서 대동(大同) 이외에 평, 닭 등의 물품을 공상(供上)하는데 종이나 물고기로 대신하여 내게 하고 이를 제역(除役)이라 한다.

의성 1냥 2푼 작지는 4냥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5냥 4전 8푼이다.

의흥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신녕 5돈 작지는 2냥,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4전이다.

영천 1냥 3돈 2푼 작지는 5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6냥 6전 8푼이다.

영덕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하양 1돈 작지는 4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8전이다.

蓼重十兩九錢六分. 作合四十三兩八錢四分,

草合二十三兩,

紙魚合八兩八錢,

會合三十三兩.

都合一百八兩六錢四分.

인삼 무게는 10냥 9돈 6푼이다. 작지(作紙)는 합계 43냥 8전 4푼,
초(草)는 합계 23냥,

지어(紙魚)는 합계 8냥 8전,

회(會)²⁷는 합계 33냥이다.

도합 108냥 6전 4푼이다.

慶州, 二兩一分 作八兩四錢, 草二兩, 紙魚代二錢. 合十兩二錢四分.

東萊, 六錢一分 作二兩四錢四分, 草一兩. 合三兩四錢四分.

蔚山, 一兩三分 作四兩一錢二分, 草一兩. 合五兩一錢二分.

機張, 三錢 作一兩二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

長鬱, 二錢 作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

27 회(會) : 회소(會所)에서 따로 거두는 비용

延日, 三錢 作一兩二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

清河, 二錢 作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

興海,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彥陽, 一錢 作四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八錢.

梁山,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密陽, 一兩九分 作四兩三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五兩七錢六分.

清道, 五錢八分 作二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七錢二分.

慈仁, 五錢 作二兩,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四錢.

慶山, 二錢一分 作八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四分.

大邱, 四錢二分 作一兩六錢八分. 合一兩六錢八分.

玄風, 二錢二分 作八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八分.

昌寧, 五錢二分 加二分. 作二兩一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五錢六分.

靈山, 五錢二分 作二兩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四錢八分.

경주 2냥 1푼 작지(作紙)는 8냥 4전, 초(草)는 2냥, 지어를 대신하여 2전이다. 합계 10냥 2전 4푼이다.

동래 6돈 1푼 작지는 2냥 4전 4푼, 초는 1냥이다. 합계 3냥 4전 4푼이다.

울산 1냥 3푼 작지는 4냥 1전 2푼, 초는 1냥이다. 합계 5냥 1전 2푼이다.

기장 3돈 작지는 1냥 2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이다.

장기 2돈 작지는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이다.

연일 3돈 작지는 1냥 2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이다.

청하 2돈 작지는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이다.

홍해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언양 1돈 작지는 4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8전이다.

양산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밀양 1냥 9푼 작지는 4냥 3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5냥 7전 6푼이다.

청도 5돈 8푼 작지는 2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7전 2푼이다.

자인 5돈 작지는 2냥,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4전이다.

경산 2돈 1푼 작지는 8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4푼이다.

대구(감영) 4돈 2푼 작지는 1냥 6전 8푼이다. 합계 1냥 6전 8푼이다.

현풍 2돈 2푼 작지는 8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8푼이다.

창녕 5돈 2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2냥 1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5전 6푼이다.

영산 5돈 2푼 작지는 2냥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4전 8푼이다.

蓼重九兩四錢七分. 作合三十七兩八錢八分,

草合十八兩,

紙魚合六兩,

會合二十七兩.

都合文八十八兩八錢八分.

인삼 무게는 9냥 4돈 7푼이다. 작지는 합계 37냥 8전 8푼,

초는 합계 18냥,

지어(紙魚)는 합계 6냥,

회(會)는 합계 27냥이다.

도합 돈으로 88냥 8전 8푼이다.

晉州, 一兩三分 作四兩一錢二分, 草二兩. 合六兩一錢二分.

丹城, 二錢 作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

山清,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咸陽, 四錢七分 加二分. 作一兩九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三錢六分.

安義, 三錢三分 作一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二分.

居昌, 四錢 作一兩六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

三嘉, 三錢三分 作一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二分.
宜寧, 三錢六分 加二分. 作一兩五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九錢二分.
泗川,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河東, 七錢. 作二兩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四兩二錢.
昆陽, 三錢三分 作一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二分.
固城, 三錢三分 作一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二分.
咸安,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漆原, 二錢 作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
熊川, 二錢 作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
昌原, 四錢八分 作一兩九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三錢二分.
金海, 五錢八分 作二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七錢二分.
鎮海, 二錢 作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
南海 草一兩. 合一兩.
居濟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四錢.

진주 1냥 3푼 작지(作紙)는 4냥 1전 2푼, 초(草)는 2냥이다. 합계 6냥 1전 2푼이다.
단성 2돈 작지는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이다.
산청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함양 4돈 7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1냥 9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3전 6푼이다.
안의 3돈 3푼 작지는 1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2푼이다.
거창 4돈 작지는 1냥 6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이다.
삼가 3돈 3푼 작지는 1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2푼이다.
의령 3돈 6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1냥 5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9전 2푼이다.
사천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하동 7돈 작지는 2냥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4냥 2전이다.

곤양 3돈 3푼 작지는 1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2푼이다.

고성 3돈 3푼 작지는 1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2푼이다.

함안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칠원 2돈 작지는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이다.

웅천 2돈 작지는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이다.

창원 4돈 8푼 작지는 1냥 9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3전 2푼이다.

김해 5돈 8푼 작지는 2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7전 2푼이다.

진해는 2돈 작지는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이다.

남해 초는 1냥이다. 합계 1냥이다.

거제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4전이다.

蓼重七兩一錢三分。作合二十八兩五錢二分，

草合二十一兩，

紙魚合七兩六錢，

會合二十七兩。

都合八十四兩一錢二分。

인삼 무게는 7냥 1돈 3푼이다. 작지(作紙)는 합계 28냥 5전 2푼,
초(草)는 합계 21냥,

지어(紙魚)는 합계 7냥 6전,

회(會)는 합계 27냥이다.

도합 84냥 1전 2푼이다.

尙州, 一兩一錢一分 作四兩四錢四分, 草二兩, 紙魚代四錢. 合六兩八錢四分.

聞慶,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咸昌, 一錢一分 作四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八錢四分.

善山, 四錢三分 作一兩七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一錢二分.

星州, 七錢一分 加三分. 作二兩九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四兩三錢六分.

知禮, 二錢一分 作八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四分.

金山, 三錢一分 加二分. 作一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二分.

開寧, 三錢三分 作一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二分.

陝川, 三錢二分 加二分. 作一兩三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六分.

高靈,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草溪,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상주 1냥 1돈 1푼 작지(作紙)는 4냥 4전 4푼, 초(草)는 2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6냥 8전 4푼이다.

문경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함창 1돈 1푼 작지는 4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8전 4푼이다.

선산 4돈 3푼 작지는 1냥 7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1전 2푼이다.

성주 7돈 1푼 3푼을 더한다. 작지는 2냥 9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4냥 3전 6푼이다.

지례 2돈 1푼 작지는 8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4푼이다.

금산 3돈 1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1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2푼이다.

개령 3돈 3푼 작지는 1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2푼이다.

합천 3돈 2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1냥 3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6푼이다.

고령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초계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麥重四兩五錢四分。作合十八兩一錢六分，

草合十二兩，

紙魚合四兩四錢，

會合十六兩五錢 白紙一束代二錢。

都合五十一兩六錢。

인삼 무게는 4냥 5돈 4푼이다. 작지(作紙)는 합계 18냥 1전 6푼, 초는 합계 12냥,

지어(紙魚)는 합계 4냥 4전,

회(會)는 합계 16냥 5전이다 백지(白紙) 1속²⁸을 대신하여 2전이다.

도합 51냥 6전이다.

已上四會所作·草·紙魚·會，都合文三百三十二兩七錢。

이상 네 회소(會所)²⁹의 작지(作紙), 초(草), 지어(紙魚), 회(會)는 도합 돈으로 332냥 7전이다.

28 속 : ‘束’은 종이를 세는 단위로 10장이다.

29 회소(會所) : 도내 각 군현 중 도회(都會)로 지정된 특정 읍의 처소이다. 주로 큰 읍에 설치되었지만 행정적 필요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진상도회(進上都會)는 지정된 군현에서 진상되는 물품을 모아 관찰사의 감독 하에 감봉(監封)되었다. 관찰사 등이 정하는 차사원(差使員) 등이 실제 수송을 하고, 관찰사를 대신하는 판관(判官)이나 도사(都事)가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각 군현에서 개별적으로 상납하는 공물과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문헌이 작성된 시기에는 경상도에 안동부, 경주부, 진주목, 상주목의 4곳에 회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월령 여러 고을의 토산잡종³⁰에 대한 질(二月令各邑土產雜種秩)³¹

慶州 眼鏡代文七兩, 梳省一介, 同串或雄梳, 大口一尾代二錢.

安東 級紬一疋, 南草二斤.

晉州 引刀一箇, 真梳二介, 舌盒一箇代文則三兩.

青松 線紬一疋, 各別擇捧.

醴泉 木二疋.

清道 刀刃一柄, 黃栗一封, 竹瀝膏一瓶代一兩.

密陽 腰帶一件, 黃栗一斗.

宜寧 花紋席一雙.

榮川 白紋席一立, 火鐵一介代一錢.

東萊 雨傘一柄, 別烟竹二介, 陳皮一斤.

蔚山 大口一尾, 海衣一吐, 全鰻一貫³².

金海 簡竹十介.

漆谷 藥艾一同.

星州 雄梳一介.

咸昌 南草一把.

巨濟 木履一部.

梁山 裝刀一柄.

聞慶 石清一升, 蔴一束.

熊川 全密宕巾一部代五兩.

真寶 火石一介代二錢, 生雉一首代三錢.

경주 안경을 대신하는 돈 7냥, 빗솔 1개, 동곳³³이나 숫빗, 대구 1마리를 대신하여 2전이다.

안동 명주 1필, 담배 2근이다.

30 토산잡종 : 각종 특산품을 가리킨다.

31 20개 고을이다.

32 貫 : 원본에는 ‘串’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貫’의 뜻으로 사용된 표기이다.

33 동곳 : 상투를 튼 후에 머리가 틀어지지 않도록 꽂는 장식이다.

진주 인두 1개, 참빗 2개, 서랍 1개를 대신하는 돈 3냥이다.

청송 명주 1필로, 각별히 골라 봉납한다.

예천 무명 2필이다.

청도 칼 1자루, 황률³⁴ 1봉, 죽력고 1병을 대신하여 1냥이다.

밀양 허리띠 1건, 황률 1말이다.

의령 화문석 1쌍이다.

영천 백문석 1닢, 부시 1개를 대신하여 1전이다.

동래 우산 1자루, 별연죽(담뱃대) 2개, 진피 1근이다.

울산 대구 1마리, 김 1톳³⁵, 전복 1관³⁶이다.

김해 간죽³⁷ 10개이다.

칠곡 약쑥 1동이다.

성주 숫빗 1개이다.

함창 담배 1다발이다.

거제 나막신 1부이다.

양산 장도(裝刀) 1자루이다.

문경 석청 1되, 꼴 1속이다.

옹천 전체가 촘촘한 탕건 1부(部)를 대신하여 5냥이다.

진보 부싯돌 1개를 대신하여 2전, 꿩 1마리를 대신하여 3전이다.

10월령(十月令)³⁸

34 황률 : 말려서 껌데기를 벗긴 밤이다. 건율(乾栗).

35 톳 : 김을 세는 단위로 100장이다.

36 관 : 관(貫)은 무게 단위로 100냥이다.

37 간죽 : 담배설대. 담배통과 물부리 사이에 끼워놓는 가느다란 대로 흡연자의 혀가 닿는 부위이다.

38 내용상 10월령의 각읍토산잡종질(各邑土產雜種秩)이다. 따로 기록된 8개 고을을 합쳐서 모두 26개 고을이다. 원문 순서에 있어 10월령에 관한 내역이 본문 10월령봉여읍(十月令封餘邑) 이후에 나오며, 계절 순서로 보아도 2월, 4월, 5-6월, 7-8월, 10월식으로 기술되었으므로

秋等.

가을분기이다.

蔚山 全鰻一貫, 海衣一吐, 廣魚一尾.

永川 黃苧布一疋.

義城 花紋席二立, 真墨一同代三錢.

丹城 竹瀝膏一瓶代一兩.

高靈 寢席一立.

盈德 海衣五吐, 大蟹一介.

南海 檀子二升, 桀子二升.

清河 笠帽十事代三兩.

延日 磚石一塊.

聞慶 石清一升, 葛粉五升, 山蔬二級.

울산 전복 1관, 김 1톳, 넙치 1마리이다.

영천 황색 모시 1필이다.

의성 화문석 2닢, 참먹 1동을 대신하여 3냥이다.

단성 죽력고 1병을 대신하여 1냥이다.

고령 침석³⁹ 1닢이다.

영덕 김 5톳, 대게 1개이다.

남해 비자 2되, 치자 2되이다.

청하 갈모⁴⁰ 10별을 대신하여 3냥이다.

연일 솟돌 1덩이이다.

문경 석청 1되, 칡가루 5되, 산나물 2두름⁴¹이다.

이 부분은 순서의 오류이다. 원문을 보면 같은 면에서 2월령에 바로 이어졌으며, 본문 10월령 각읍작지초지어질(十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에서도 앞에 나왔다고 언급하므로, 제책 과정에서 뺏어진 오류는 아니다.

39 침석 : 잡자리에 까는 듯자리이다.

40 갈모 :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던 고깔 비슷한 물건이다.

此外各邑，並同二月令。

이외의 여러 고을은 모두 2월령과 같다.⁴²

4월 소령(四月小令)⁴³

十九邑。

열아홉 고을이다.

慶州 草一兩, 紙魚代四錢。

永川 草一兩, 紙魚代四錢。

昌原 草一兩, 紙魚代四錢。

清道 草一兩, 紙魚代四錢。

善山 草一兩, 紙魚代四錢。

順興 草一兩, 紙魚代四錢。

新寧 草一兩, 紙魚代四錢。

晉州 草一兩, 真梳二介。

義城 草一兩, 紙魚代四錢。

蔚山 草一兩, 紙代二錢, 全鰻一貫, 海衣一吐, 大口一尾。

清河 草一兩, 紙魚代四錢。

長鬚 草一兩, 紙魚代四錢。

金海 草一兩, 紙魚代四錢, 簡竹十介。

玄風 草一兩, 紙魚代四錢。

星州 草一兩, 紙魚代四錢。

41 두름 : '級'이란 단위는 20개 단위이다.

42 2월령에는 20개의 고을이 나온다. 이 중에서 울산부와 문경현만 다르고 경주부를 비롯한 나머지 18개의 고을은 같다는 말이다.

43 2월과 같은 대령(大令)이 봉여음, 각읍작지초지어질(各邑作紙草紙魚秩), 각읍토산잡종질(各邑土產雜種秩)의 3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함에 반해, 4월과 같은 소령(小令)은 함께 기술한다.

密陽 草一兩, 紙魚代四錢.

昌原 草一兩, 紙魚代四錢.

梁山 草一兩, 紙魚代四錢.

彦陽 草一兩, 紙魚代四錢.

경주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영천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창원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청도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선산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순흥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신녕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진주 초 1냥, 참빗 2개이다.

의성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울산 초 1냥, 종이를 대신하여 2전, 전복 1관, 김 1톳, 대구 1마리이다.

청하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장기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김해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 간죽 10개이다.

현풍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성주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밀양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창원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양산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언양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草合十九兩, 紙魚合七兩四錢, 會合九兩五錢.

都合三十五兩九錢.

초는 합계 19냥이고, 지어는 합계 7냥 4전이고, 회는 합계 9냥 5전
이다.

도합 35냥 9전이다.

5·6월 소령(五六月小令)⁴⁴

三十七邑.

서른일곱 고을이다.

慶州 草一兩, 紙魚代四錢.

安東 草一兩, 紙魚代四錢, 南草一斤.

密陽 草一兩, 紙魚代四錢.

醴泉 草一兩, 紙魚代四錢.

昌寧 草一兩, 紙魚代四錢.

昌原 草一兩, 紙魚代四錢.

尙州 草一兩, 紙魚代四錢.

固城 草一兩, 紙魚代四錢.

陝川 草一兩, 紙魚代四錢.

咸昌 草一兩, 紙魚代四錢.

三嘉 草一兩, 紙魚代四錢.

靈山 草一兩, 紙魚代四錢.

興海 草一兩, 紙魚代四錢.

義城 草一兩, 紙魚代四錢.

永川 草一兩, 紙魚代四錢.

清道 草一兩, 紙魚代四錢.

榮川 草一兩, 紙魚代四錢.

金海 草一兩, 紙魚代四錢, 簡竹十介.

宜寧 草一兩, 紙魚代四錢.

草溪 草一兩, 紙魚代四錢.

泗川 草一兩, 紙魚代四錢.

玄風 草一兩, 紙魚代四錢.

44 하나의 소령(小令)이다. 6월에 진상이 이루어지므로 6월 소령으로도 부른다.

順興 草一兩, 紙魚代四錢.

比安 草一兩, 紙魚代四錢.

軍威 草一兩, 紙魚代四錢.

長鬚 草一兩, 紙魚代四錢.

星州 草一兩, 紙魚代四錢.

真寶 草一兩, 紙魚代四錢.

晉州 草一兩, 梳二介.

南海 草一兩, 桀子二升, 桀子二升.

山清 草一兩, 紙魚代四錢.

新寧 草一兩, 紙魚代四錢.

義興 草一兩, 紙魚代四錢.

昆陽 草一兩, 紙魚代四錢.

慈仁 草一兩, 紙魚代四錢.

丹城 草一兩, 紙魚代四錢.

河東 草一兩, 紙魚代四錢.

경주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안동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 담배 1근이다.

밀양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예천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창녕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창원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상주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고성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천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함창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삼가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영산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흥해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의성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영천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청도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영천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김해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 간죽 10개이다.
의령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초계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사천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현풍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순흥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비안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군위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장기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성주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진보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진주 초 1냥, 얼레빗 2개이다.
남해 초 1냥, 비자 2되, 치자 2되이다.
산청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신녕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의흥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곤양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자인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단성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하동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草合三十七兩，紙魚合十四兩四錢，會合十八兩五錢 加一兩。

都合七十兩九錢 尚會紙一束。

초는 합계 37냥이고, 지어는 합계 14냥 4전이고, 회는 합계 18냥 5전 1냥을 더한다. 이다.

도합 70냥 9전이다 상회지⁴⁵는 1속이다.⁴⁶

7·8월 소령(七八月小令)⁴⁷

二十四邑.

스물네 고을이다.

慶州 草一兩, 紙魚代四錢.

安東 草一兩, 紙魚代四錢, 南草一斤.

密陽 草一兩, 紙魚代四錢.

玄風 草一兩, 紙魚代四錢.

興海 草一兩, 紙魚代四錢.

軍威 草一兩, 紙魚代四錢.

丹城 草一兩, 紙魚代四錢.

知禮 草一兩, 紙魚代四錢.

清河 草一兩, 紙魚代四錢.

善山 草一兩, 紙魚代四錢.

咸陽 草一兩, 紙魚代四錢.

尙州 草一兩, 紙魚代四錢.

比安 草一兩, 紙魚代四錢.

仁同 草一兩, 紙魚代四錢.

漆谷 草一兩, 紙魚代四錢, 香艾一同.

東萊 草一兩, 雨傘一柄, 胡椒一斤, 煙竹一介.

延日 草一兩, 紙魚代四錢, 磺石一塊.

山淸 草一兩, 紙魚代四錢.

45 상회지 : 상주회소에서 바치는 종이이다.

46 본문 내용에는 따로 나오지 않는다.

47 하나의 소령(小令)이다. 8월에 진상이 이루어지므로 8월 소령으로도 부른다.

盈德 草一兩, 紙魚代四錢.

星州 草一兩, 紙魚代四錢.

開寧 草一兩, 紙魚代四錢.

高靈 草一兩, 紙魚代四錢.

三嘉 草一兩, 紙魚代四錢.

晉州 草二兩, 紙魚代五錢.

경주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안동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 담배 1근이다.

밀양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현풍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홍해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군위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단성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지례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청하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선산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함양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상주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비안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인동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칠곡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 향쑥 1동이다.

동래 초 1냥, 우산 1자루, 후추 1근, 담뱃대 1개이다.

연일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 숫돌 1덩이이다.

산청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영덕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성주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개령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고령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삼가 초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진주 초 2냥, 지어를 대신하여 5전이다.

草合二十五兩, 紙魚合九兩三錢,

會合十二兩五錢.

尙會白紙一束, 藥情二兩.

都合四十六兩三錢.

초는 합계 25냥이고, 지어는 합계 9냥 3전이고,

회는 합계 12냥 5전이다.

상회백지는 1속이고 약정⁴⁸은 2냥이다.

도합 46냥 3전이다.

10월령의 봉여 고을(十月令封餘邑)⁴⁹

靈山, 五錢一分 元二百四兩, 縮二十兩四錢, 別二十五兩, 驂十三兩二錢六分. 合二百六十二兩六錢六分.

宜寧, 三錢二分 元一百二十八兩, 縮十二兩八錢, 別十五兩, 驂八兩三錢二分. 合一百六十四兩一錢二分.

寧海, 三錢一分 元一百二十四兩, 縮十二兩四錢, 別二十兩, 驂八兩六分. 合一百六十四兩四錢六分.

盈德, 三錢一分 元一百二十四兩, 縮十二兩四錢, 別二十兩, 驂八兩六分. 合一百六十四兩四錢六分.

仁同, 三錢一分 元一百二十四兩, 縮十二兩四錢, 別二十兩, 驂八兩六分. 合一百六十四兩四錢六分.

安義, 三錢一分 元一百二十四兩, 縮十二兩四錢, 别二十兩, 驂八兩六分. 合一百六十四兩四錢六分.

48 약정 : 약정채(藥情債). 인정(人情)이라 하여 시골의 아전이 선혜청이나 호조 등에 진상하면서 관례적으로 건네는 돈이 있는데, 여기서는 약재를 진상하면서 건네는 인정을 말한다.

49 모두 열네 고을이다.

六分.

三嘉, 三錢一分 元一百二十四兩, 縮十二兩四錢, 別十五兩, 驂八兩六分, 加五錢二分. 合一百五十九兩四錢六分.

興海, 三錢一分 元一百二十四兩, 縮十二兩四錢, 別二十六兩, 驂八兩六分. 合一百七十兩四錢六分.

南海, 二錢六分 元一百四兩, 縮十兩四錢, 別十五兩, 驂六兩七錢六分. 合一百三十六兩一錢六分.

巨濟, 二錢六分 元一百四兩, 縮十兩四錢, 別十五兩, 驂六兩七錢六分. 合一百三十六兩一錢六分.

清河, 二錢一分 元八十四兩, 縮八兩四錢, 別十兩, 驂五兩四錢六分. 合一百七兩八錢六分.

熊川, 二錢 元八十兩, 縮八兩, 別五兩, 驂五兩二錢. 合九十八兩二錢.

鎮海, 二錢 元八十兩, 縮八兩, 別十兩, 驂五兩二錢. 合一百三兩二錢.

彥陽, 一錢一分 元四十四兩, 縮四兩四錢, 別十兩, 驂二兩八錢六分. 合六十一兩二錢六分.

영산 5돈 1푼 원(元)은 204냥, 축(縮)은 20냥 4전, 별(別)은 25냥, 태(駄)는 13냥 2전 6푼이다.

합계 262냥 6전 6푼이다.

의령 3돈 2푼 원은 128냥, 축은 12냥 8전, 별은 15냥, 태는 8냥 3전 2푼이다. 합계 164냥 1전 2푼이다.

영해 3돈 1푼 원은 124냥, 축은 12냥 4전, 별은 20냥, 태는 8냥 6푼이다. 합계 164냥 4전 6푼이다.

영덕 3돈 1푼 원은 124냥, 축은 12냥 4전, 별은 20냥, 태는 8냥 6푼이다. 합계 164냥 4전 6푼이다.

인동 3돈 1푼 원은 124냥, 축은 12냥 4전, 별은 20냥, 태는 8냥 6푼이다. 합계 164냥 4전 6푼이다.

안의 3돈 1푼 원은 124냥, 축은 12냥 4전, 별은 20냥, 태는 8냥 6푼이다. 합계 164냥 4전 6푼이다.

삼가 3돈 1푼 원은 124냥, 축은 12냥 4전, 별은 15냥, 태는 8냥 6푼인데, 5전 2푼을 더한다. 합계 159냥 4전 6푼이다.

홍해 3돈 1푼 원은 124냥, 축은 12냥 4전, 별은 26냥, 태는 8냥 6푼이다. 합계 170냥

4전 6푼이다.

남해 2돈 6푼 원은 104냥, 축은 10냥 4전, 별은 15냥, 태는 6냥 7전 6푼이다. 합계 136냥 1전 6푼이다.

거제 2돈 6푼 원은 104냥, 축은 10냥 4전, 별은 15냥, 태는 6냥 7전 6푼이다. 합계 136냥 1전 6푼이다.

청하 2돈 1푼 원은 84냥, 축은 8냥 4전, 별은 10냥, 태는 5냥 4전 6푼이다. 합계 107냥 8전 6푼이다.

옹천 2돈 원은 80냥, 축은 8냥, 별은 5냥, 태는 5냥 2전이다. 합계 98냥 2전이다.

진해 2돈 원은 80냥, 축은 8냥, 별은 10냥, 태는 5냥 2전이다. 합계 103냥 2전이다.

언양 1돈 1푼 원은 44냥, 축은 4냥 4전, 별은 10냥, 태는 2냥 8전 6푼이다. 합계 61냥 2전 6푼이다.

以上元麥重三兩九錢三分價一千五百七十二兩,

縮一百五十七兩二錢,

別二百三十六兩,

馱一百二兩一錢八分.

四口合二千六十七兩三錢八分.

元封餘八百兩,

元縮條一千二百八十兩,

都已上四千一百四十七兩三錢八分內,

元麥價出給次一千五百七十二兩,

縮條出給次一百五十七兩二錢,

大邱縮條十六兩四錢,

內局醫生例下二百兩,

合一千九百四十五兩六錢除,

實入文二千二百一兩七錢八分.

이상 원삼의 무게 3냥 9돈 3푼의 값은 1,572냥이고,

축은 157냥 2전,

별은 236냥,

태는 102냥 1전 8푼이니,
 4가지 명목의 합계는 2,067냥 3전 8푼이다.
 원래의 봉여는 800냥이고,
 원래의 축조는 1,280냥이다.
 이상을 모두 합한[都已上]⁵⁰ 4,147냥 3전 8푼⁵¹ 내에서
 원삼 값을 내주기 위한 1,572냥,
 축조를 내주기 위한 157냥 2전,
 대구(경상감영)의 축조 16냥 4전,
 내국의 생에게 주는 예하 200냥,
 합계 1,945냥 6전을 빼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2,201냥 7전 8푼⁵²이다.

10월령 여러 고을의 작지, 초, 지어에 대한 질(十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⁵³

安東, 一兩五錢二分 加二分. 作六兩一錢六分, 草二兩, 紙魚代四錢. 合八兩五錢六分.

禮安,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奉化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四錢⁵⁴.

龍宮,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醴泉, 一兩二分 作四兩八分, 紙魚代四錢. 合四兩四錢八分.

50 都已上 : ‘도이자’로 읽으며, 회계에서 중간 정산할 때 사용하던 이두 표기이다.

51 $2067.38 + 800 + 1280 = 4147.38$ 냥

52 $4147.38 - 1945.6 = 2201.78$ 냥

53 회소(會所) 별로 모두 네 뮤음인데 첫 뮤음은 안동부 이하 22개 고을, 둘째 뮤음은 경주부 이하 18개 고을, 셋째 뮤음은 진주목 이하 20개 고을, 넷째 뮤음은 상주목 이하 11개 고을로서 모두 71개 고을이다. 이 고을들은 본문 2월령의 각읍작지초지어질(各邑作紙草紙魚秩)의 경우와 동일하다.

54 合一兩四錢 : 원본에는 ‘合一兩四錢’이 없으나 다른 문장으로 보아 필사자가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榮川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四錢.

順興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四錢.

青松, 八錢六分 作三兩四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四兩八錢四分.

豐基, 一錢一分 作四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八錢四分.

真寶, 二錢一分 作八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四分.

英陽, 五錢二分 作二兩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四錢八分.

寧海,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盈德,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軍威,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比安,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仁同,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漆谷, 一錢二分 作四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八錢八分.

義城, 一兩七分 加二分. 作四兩三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五兩七錢六分.

義興,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新寧, 五錢二分 作二兩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四錢八分.

永川, 一兩三錢二分 加二分. 作五兩三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六兩七錢六分.

河陽, 一錢一分 作四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八錢四分.

안동 1냥 5돈 2푼 2푼을 더한다. 작지(作紙)는 6냥 1전 6푼, 초(草)는 2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8냥 5전 6푼이다.

예안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봉화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4전이다.

용궁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예천 1냥 2푼 작지는 4냥 8푼,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4냥 4전 8푼이다.

영천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4전이다.

순흥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4전이다.

청송 8돈 6푼 작지는 3냥 4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4냥 8전

4푼이다.

풍기 1돈 1푼 작지는 4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8전 4푼이다.

진보 2돈 1푼 작지는 8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4푼이다.

영양 5돈 2푼 작지는 2냥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4전 8푼이다.

영해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영덕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군위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비안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인동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칠곡 1돈 2푼 작지는 4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8전 8푼이다.

의성 1냥 7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4냥 3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5냥 7전 6푼이다.

의흥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신녕 5돈 2푼 작지는 2냥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4전 8푼이다.

영천 1냥 3돈 2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5냥 3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6냥 7전 6푼이다.

하양 1돈 1푼 작지는 4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8전 4푼이다.

이다.

蓼重九兩九錢五分. 作合三十九兩八錢,

草合二十二兩,

紙魚合八兩八錢,

會合三十三兩.

都合一百三兩六錢.

인삼 무게는 9냥 9돈 5푼이다. 작지는 합계 39냥 8전,

초는 합계 22냥,

지어(紙魚)는 합계 8냥 8전,

회(會)는 합계 33냥이다.

도합 103냥 6전이다.

慶州, 二兩二分 加二分. 作八兩八分, 加八分, 草二兩, 紙魚代二錢. 合十兩三錢六分.

東萊, 五錢一分 加二分. 作二兩一錢二分. 合二兩一錢二分.

蔚山, 一兩一分 加二分. 作四兩一錢二分, 草一兩. 合五兩一錢二分.

機張,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長鬚, 二錢一分 作八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四分.

延日, 二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清河, 二錢一分 作八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四分.

興海,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彥陽, 一錢一分 作四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八錢四分.

梁山,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密陽, 一兩二分 加二分. 作四兩一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五兩五錢六分.

清道, 五錢二分 加二分. 作二兩一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五錢六分.

慈仁, 五錢一分 作二兩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四錢四分.

慶山, 二錢一分 作八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四分.

大邱, 四錢一分 加二分. 作一兩七錢二分. 合一兩七錢二分.

玄風, 二錢二分 作八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八分.

昌寧, 五錢二分 作二兩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四錢八分.

靈山, 五錢一分 作二兩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四錢四分.

경주 2냥 2푼 2푼을 더한다. 작지(作紙)는 8냥 8푼인데 8푼을 더하고, 초(草)는 2냥, 지어를 대신하여 2전이다. 합계 10냥 3전 6푼이다.

동래 5돈 1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2냥 1전 2푼이다. 합계 2냥 1전 2푼이다.

울산 1냥 1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4냥 1전 2푼, 초는 1냥이다. 합계 5냥 1전 2푼이다.

기장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장기 2돈 1푼 작지는 8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4푼이다.

연일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청하 2돈 1푼 작지는 8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4푼이다.

홍해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언양 1돈 1푼 작지는 4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8전 4푼이다.

양산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밀양 1냥 2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4냥 1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5냥 5전 6푼이다.

청도 5돈 2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2냥 1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5전 6푼이다.

자인 5돈 1푼 작지는 2냥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4전 4푼이다.

경산 2돈 1푼 작지는 8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4푼이다.

대구 4돈 1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1냥 7전 2푼이다. 합계 1냥 7전 2푼이다.

현풍 2돈 2푼 작지는 8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8푼이다.

창녕 5돈 2푼 작지는 2냥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4전 8푼이다.

영산 5돈 1푼 작지는 2냥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4전 4푼이다.

蓼重九兩三錢六分. 作合三十七兩四錢四分,

草合十七兩,

紙魚合六兩二錢,

會合二十七兩.

都合八十七兩六錢四分.

인삼 무계는 9냥 3돈 6푼이다. 작지는 합계 37냥 4전 4푼,

초는 합계 17냥,

지어(紙魚)는 합계 6냥 2전,

회(會)는 합계 27냥이다.

도합 87냥 6전 4푼이다.

晉州, 一兩一錢三分 加二分. 作四兩六錢, 草二兩. 合六兩六錢.

丹城, 二錢一分 作八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四分.

山清,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咸陽, 四錢六分 作一兩八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二錢四分.

安義,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居昌, 三錢一分 加二分. 作一兩三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二分.

三嘉,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宜寧,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泗川,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河東, 六錢九分 作二兩七錢六分⁵⁵,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四兩一錢六分.

昆陽,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固城, 三錢一分 作一兩二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四分.

咸安, 三錢六分 作一兩四錢四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八錢四分.

漆原, 二錢 作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

熊川, 二錢 作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

昌原, 四錢六分 加二分. 作一兩九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三錢二分.

金海, 六錢一分 加二分. 作二兩五錢二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九錢二分.

鎮海, 二錢. 作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

南海, 二錢六分 作一兩四分⁵⁶,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四錢四分.

巨濟, 二錢六分 作一兩四分⁵⁷,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四錢四分.

진주 1냥 1돈 3푼 2푼을 더한다. 작지(作紙)는 4냥 6전, 초(草)는 2냥이다. 합계 6냥 6전이다.

단성 2돈 1푼 작지는 8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4푼이다.

산청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함양 4돈 6푼 작지는 1냥 8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2전 4푼이다.

안의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거창 3돈 1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1냥 3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2푼이다.

삼가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의령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55 作二兩七錢六分 : 원본에는 ‘作一兩七錢六分’으로 되어 있다.

56 作一兩四分 : 원본에는 ‘作一兩四錢’으로 되어 있다.

57 作一兩四分 : 원본에는 ‘作一兩四錢’으로 되어 있다.

8푼이다.

사천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하동 6돈 9푼 작지는 2냥 7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4냥 1전 6푼이다.

곤양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고성 3돈 1푼 작지는 1냥 2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4푼이다.

함안 3돈 6푼 작지는 1냥 4전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8전 4푼이다.

칠원 2돈 작지는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이다.

웅천 2돈 작지는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이다.

창원 4돈 6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1냥 9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3전 2푼이다.

김해 6돈 1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2냥 5전 2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9전 2푼이다.

진해 2돈 작지는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이다.

남해 2돈 6푼 작지는 1냥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4전 4푼이다.

거제 2돈 6푼 작지는 1냥 4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4전 4푼이다.

蓼重七兩六錢二分。作合三十兩四錢八分，

草合⁵⁸二十一兩，

紙魚合七兩六錢，

58 合 : 원본에는 合이 탈락되어있다.

會合三十兩.

都合八十九兩八分.

인삼 무계는 7냥 6돈 2푼이다. 작지는 합계 30냥 4전 8푼,
초는 합계 21냥,
지어(紙魚)는 합계 7냥 6전,
회(會)는 합계 30냥이다.
도합 89냥 8푼이다.

尙州, 一兩九分 加三分. 作四兩四錢八分, 草二兩, 紙魚代四錢. 合六兩八錢八分.

聞慶,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咸昌, 一錢二分 作四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一兩八錢八分.

善山, 五錢七分 加二分. 作二兩三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七錢六分.

星州, 七錢九分 作三兩一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四兩七錢六分.

知禮, 二錢二分 作八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二錢八分.

金山, 四錢五分 作一兩八錢,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二錢.

開寧, 三錢二分 作一兩二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六錢八分.

陝川, 四錢七分 作一兩八錢八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三兩二錢八分.

高靈, 三錢四分 作一兩三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合二兩七錢六分.

草溪, 三錢四分 作一兩三錢六分, 草一兩, 紙魚代四錢, 又白紙一束代二錢. 合二兩九錢六分.

상주 1냥 9푼 3푼을 더한다. 작지는 4냥 4전 8푼, 초는 2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6냥 8전 8푼이다.

문경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함창 1돈 2푼 작지는 4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1냥 8전 8푼
이다.

선산 5돈 7푼 2푼을 더한다. 작지는 2냥 3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7전 6푼이다.

성주 7돈 9푼 작지는 3냥 1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4냥 5전
6푼이다.

지례 2돈 2푼 작지는 8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2전 8푼이다.

금산 4돈 5푼 작지는 1냥 8전,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2전이다.

개령 3돈 2푼 작지는 1냥 2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6전 8푼이다.

합천 4돈 7푼 작지는 1냥 8전 8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3냥 2전 8푼이다.

고령 3돈 4푼 작지는 1냥 3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이다. 합계 2냥 7전 6푼이다.

초계 3돈 4푼 작지는 1냥 3전 6푼, 초는 1냥, 지어를 대신하여 4전, 또 백지 1속을 대신하여 2전이다. 합계 2냥 9전 6푼이다.

麥重五兩八分. 作合二十兩三錢二分,

草合十二兩,

紙魚合四兩四錢,

會合十六兩五錢 白紙一束代二錢.

都合五十三兩二錢二分.

인삼 무게는 5냥 8푼이다. 작지(作紙)는 합계 20냥 3전 2푼,

초는 합계 12냥,

지어는 합계 4냥 4전,

회(會)는 합계 16냥 5전이다 백지 1속을 대신하여 2전이다.

도합 53냥 2전 2푼이다.

已上四會所作 · 草 · 紙魚 · 會, 都合文三百三十三兩五錢四分.

이상 네 회소(會所)의 작지(作紙), 초(草), 지어(紙魚), 회(會)는 도합 돈으로 333냥 5전 4푼이다.

十月令各邑土產雜種, 並同二月令, 而惟蔚山 · 聞慶少異, 此則二月令考見次.

'10월령 여러 고을의 토산잡종'은 모두 2월령과 같으나 단지 울산과 문경만 조금 다르니, 이는 2월령을 살펴보시오.⁵⁹

12월령(臘令)

星州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八兩.

宜寧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六兩.

居昌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十二兩五錢.

晉州 草一兩, 乾柿一貼, 真梳二介.

安義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十兩五錢.

咸陽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六兩五錢.

三嘉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五兩五錢.

善山 草一兩.

咸安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五兩五錢.

丹城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五兩五錢.

晉會, 乾柿十貼.

陝川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七兩.

草溪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七兩.

山清 草一兩, 乾柿一貼, 柿雪六兩五錢.

성주 초(草) 1냥, 곶감 1첩⁶⁰, 시설(柿雪)⁶¹ 8냥이다.

의령 초 1냥, 곶감 1첩, 시설 6냥이다.

거창 초 1냥, 곶감 1첩, 시설 12냥 5돈이다.

진주 초 1냥, 곶감 1첩, 참빗 2개이다.

안의 초 1냥, 곶감 1첩, 시설 10냥 5돈이다.

함양 초 1냥, 곶감 1첩, 시설 6냥 5돈이다.

59 본문 2월령각읍토산잡종질(二月令各邑土產雜種秩)에서 언급한다. 울산과 문경의 차이 외에도 영천현등 6개 고을이 2월령에 비해 더 언급되어있다.

60 접 : 곶감을 세는 단위로 100개가 한 접이다.

61 시설(柿雪) : 곶감이 마르면서 생기는 하얀 가루이다. 내부의 당분이 흘러나와 생긴다. 비변사에서 편한 《시폐市弊》 <제3책·육우전여인六隅塵女人>에서 시설은 종친부·의정부·중추부·충훈부·기로소에서 전약(煎藥) 중 대조약(大棗藥)을 만들 때 들어간다고 하였다.

삼가 초 1냥, 곶감 1첩, 시설 5냥 5돈이다.

선산 초 1냥이다.

함안 초 1냥, 곶감 1첩, 시설 5냥 5돈이다.

단성 초 1냥, 곶감 1첩, 시설 5냥 5돈이다.

진회(진주회소) 곶감 10첩.

합천 초 1냥, 곶감 1첩, 시설 7냥이다.

초계 초 1냥, 곶감 1첩, 시설 7냥이다.

산청 초 1냥, 곶감 1첩, 시설 6냥 5돈이다.

草合十三兩. 合柿雪五斤內, 進上三斤八兩. 加三兩五錢.

會合七兩.

合錢二十兩.

乾柿二十二帖.

초(草)는 합계 13냥이다. 시설의 합계 5근 안에서 진상은 3근 8냥이다. 3냥 5돈을 더한다.

회(會)는 합계 7냥이다.⁶²

합한 돈은 20냥이다.

곶감은 22첩이다.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⁶³

糯米一石 從市直,

還米二石十二斗五升 每斗二錢式,

太十二斗,

租十二斗六升,

赤豆一升 已上從市直,

62 회소(會所)에서 거두는 비용이다.

63 경상심약이 달마다 받는 급여에 대한 문서철이다.

饌價錢四兩五錢,
廣魚四尾代文一兩,
明太九束代文九錢,
眞末一升五合代文三分 糯米以下戶房,
甘藿一丹代文一錢三分,
白鹽二升四合代文三分,
眞油二升九合代文七錢三分 甘藿以下庫子.
已上營庫.

찹쌀 1섬 시장 가격에 따른다.

환미⁶⁴ 2섬 12말 5되 말마다 2전씩,

콩 12말,

벼 12말 6되,

팥 1되 이상은 시장 가격에 따른다.

반찬값 4냥 5전,

넙치 4마리를 대신하는 돈 1냥.

명태 9두름⁶⁵을 대신하는 돈 9전,

밀가루 1되 5홉을 대신하는 돈 3푼 찹쌀 이하는 호방에서 낸다.

미역 1단을 대신하는 돈 1전 3푼,

흰 소금 2되 4홉을 대신하는 돈 3푼,

참기름 2되 9홉을 대신하는 돈 7전 3푼 미역 이하는 창고지기.

이상은 영고⁶⁶에서 낸다.

朔布二疋代文六兩 軍需庫,

柴木六十束代文三兩 每束五分式,

64 환미 : 환자곡(還上穀). 각 고을의 사장(社倉)에서 백성에게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더하여 받아들이는 쌀이다. 여기서 환자는 이두이다.

65 두름 : '級'이란 단위는 20개 단위이다.

66 영고 : 감영에 떨린 창고로 식량, 병장기를 보관하는 곳이다.

炭一石代文四錢 每斗二分六里式. 已上營繕,
馬草代文七兩五錢 自五月五日, 以九月九日至, 每日二錢五分式. 兼濟庫.
穀草代文七錢五分 自九月十日, 以五月四日至, 每日二分五里式. 本府.
年分紙一束代文一兩五錢,
草白紙一束代文一錢七分,
黃筆一柄代文二錢,
白筆一柄代文八分,
真墨二丁代文一錢,
南草二斤代文五錢.
已上工庫.

삭포(朔布)⁶⁷ 2필을 대신하는 돈 6냥 군수고,
땔나무 60속⁶⁸을 대신하는 돈 3냥 속마다 5푼씩,
숯 1섬을 대신하는 돈 4전 말마다 2푼씩. 이상은 영선고⁶⁹,
말 먹이 풀을 대신하는 돈 7냥 5전 5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날마다 2전 5푼씩. 겸제
고⁷⁰.
볏짚을 대신하는 돈 7전 5푼⁷¹ 9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날마다 2푼 5리씩. 본부⁷².
연분지(年分紙) 1속을 대신하는 돈 1냥 5전,
초백지(草白紙) 1속을 대신하는 돈 1전 7푼,

67 삭포(朔布) : 매달 관청에서 급료로 주는 베이다.

68 속 : 본문 합경감영을 보면 1속(束)은 3단(丹)이다. 본문 청주병영을 보면 1속은 2단이다. 경상
도의 경우는 알 수 없지만 2단으로 추정해 본다.

69 영선고 : 훠손된 것을 보수하는 일이 영선(營繕)이다. 영선고는 그에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70 겸제고 : 겸제는 아울러 구제한다는 뜻이다. 중국 사신이 돌아가는 행로에 지방 관아에서
소용되는 비용이나 유배자의 끼니를 구제하기 위해 쓰이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71 이 볏짚도 말먹이용이다. 가을 이후로는 생풀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볏짚으로 먹였다.

72 본부 : 소속 관원이 자신의 관청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황모필⁷³ 1자루를 대신하는 돈 2전,

백필 1자루를 대신하는 돈 8푼,

참먹 2정을 대신하는 돈 1전,

담배 2근을 대신하는 돈 5전.

이상은 공고(工庫)에서 낸다.

泉紙一束代文一兩三錢,

皮紙一束代文三錢.

已上紙所.

천지(泉紙) 1속을 대신하는 돈 1냥 3전,

피지(皮紙)⁷⁴ 10장을 대신하는 돈 3전.

이상은 지소(종이를 만드는 곳)에서 낸다.

松烟三十柄⁷⁵代文一錢五分. 本府客舍吏.

菜蔬四各色, 每日進排 代錢則每日五分式.

園頭漢 真瓜出後, 每日三介, 處暑後, 西瓜每日一介.

송연묵⁷⁶ 30자루를 대신하는 돈 1전 5푼. 본부 객사의 아전이 낸다.

채소 4종류는 날마다 진배 대전(代錢)하여 날마다 5푼씩이다.

원두한(채소밭 가꾸는 사람)이 낸다 참외가 나온 뒤에는 날마다 3개씩, 쳐서 뒤에는 수박을 날마다 1개씩 올린다.

二月, 衣資木四疋代文八兩 或正月. 軍需庫.

笠帽紙⁷⁷一張代文四錢. 紙所.

73 황모필 :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봇이다.

74 피지(皮紙) : 닥나무 껍질의 찌끼로 만든 품질이 낮은 종이이다.

75 松烟을 세는 단위는 다른 문헌을 보면 ‘兩’, ‘錢’ 같은 무게 단위인데 여기서는 ‘柄’으로 되어 있다.

76 송연묵 :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먹이다.

77 원본에는 ‘紙’가 탈락되어있다.

2월, 옷감 무명 4필을 대신하는 돈 8냥 혹은 1월. 군수고에서 낸다.
갈모를 만드는 종이 1장을 대신하는 돈 4전. 지소(紙所)에서 낸다.

三月, 燻造十四斗四升,

白鹽七斗五升,

醬瓮一部具蓋,

杜屈伊一部.

3월, 메주 14말 4되,

焜 소금 7말 5되,

뚜껑을 갖춘 장독 1부,

두구리⁷⁸ 1부이다.

四月, 箭竹二浮. 軍器.

4월, 화살대 2부. 군기시⁷⁹에서 낸다.

五月, 節扇十五柄 元無定額, 而在營門處分. 節扇所.

5월, 절선⁸⁰ 15자루 원래 정해진 수가 없어서 영문⁸¹의 처분에 따른다. 절선소에서 낸다.

八月, 衣資木四疋代文八兩 或七月. 軍需庫.

笠帽一張代文四錢. 紙所.

8월, 옷감 무명 4필을 대신하는 돈 8냥 혹은 7월. 군수고에서 낸다.

갈모 종이 1장을 대신하는 돈 4전. 지소(紙所)에서 낸다.

十月, 耳掩次木三疋代文六兩,

選武都試時, 不中賞木三疋代文六兩. 軍需庫.

去核五斤代文二兩六錢. 巫女掌務.

78 두구리 : 탕약을 달아는데 쓰는 자루가 달린 놋그릇이다.

79 군기시 : 병기 제조를 담당한 관청이다.

80 절선 : 단오절에 주는 부채이다.

81 영문 : 관찰사가 일을 보는 관아이다.

10월, 이엄(耳掩)⁸²감 목⁸³ 3필을 대신하는 돈 6냥,
선무도시⁸⁴ 때 통과하지 못한 상⁸⁵인 무명 3필을 대신하는 돈 6냥. 군수고에서
낸다.

씨를 뺀 촘 5근을 대신하는 돈 2냥 6전. 무녀장무가 낸다.

十一月，冬至赤豆二升五合，大米五合，粘米五合，白清一合並營庫，
曆書在營門處分。

11월, 동짓날의 붉은 팥 2되 5홉, 쌀 5홉, 찹쌀 5홉, 백청(좋은 꿀) 1홉 모두
영고,

역서(曆書)이다 영문의 처분에 따른다.

十二月，元歲饌，大米五斗，清醬一斗，乾柿一貼，廣魚一尾，生鷄一首，青魚一級
或大口二尾，

別歲饌，大米四斗，生雉一首，大口一尾，廣魚一尾，乾柿一貼，生栗一斗或無。已上
營庫。

12월, 원세찬⁸⁶에는 쌀 5말, 청장⁸⁷ 1말, 곶감 1접, 넙치 1마리, 생닭 1마리,
청어 1두름 혹은 대구 2마리 이고,

82 이엄(耳掩) : 귀를 가리는 방한구이다.

83 목 : 재료로 쓰는 무명이다.

84 선무도시 :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병마사에 의해 군사와 한량, 종3품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한 무재시험을 보고, 우등한 경우 가자(加資)하거나 서용하고 급대를 주었다. 이는 중앙에서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이 행하는 예에 따른 것이다.

85 심약(審藥)이 선무도시(選武都試)에 참여하여 우등한다면 당연히 전례대로 상을 받을 것이나
성적이 좋지 않아도 무명 3필을 받는다는 말이다. 《혜국지》〈식례式例·공사供士〉를 보면
시사구료관(試射救療官)이라 하여 ‘文臣武臣堂上溯試射，將官試射，禁軍都試，內三廳薦取才時將
官試射’의 경우에 혜민서 의관이 차송되었다. 선무도시의 경우 이러한 예에 속하지는 않지만
심약이 그 자리에 있다면 구료관의 역할까지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명 3필은 상보다
는 수고비 정도로 추정된다.

86 원세찬 : 설에 차리는 정해진 음식이다.

87 청장 : 진하지 않은 간장

별세찬에는 쌀 4말, 생꿩 1마리, 대구 1마리, 넙치 1마리, 끽감 1점, 생밤 1말이 다 없을 때도 있다. 이상은 영고에서 낸다.

체등 때(遞等時)^{88 89}

遞等時，元遞等，木七疋代文十四兩，錢文五兩，大米二石，租五石 並從市直，
厚白紙二束，筆二柄，墨二丁，大口五尾，
明太五束 米租從市直，廣魚一尾。

체등 때에 원체등⁹⁰은 무명 7필을 대신하는 돈 14냥, 돈 5냥, 쌀 2섬, 벼 5섬 모두 시장 가격에 따른다.

후백지 2속, 봇 2자루, 멱 2정, 대구 5마리,
명태 5속 쌀과 졉쌀은 시장 가격에 따른다. 넙치 1마리이다.

別遞等 在營門處分。

별체등⁹¹ 영문의 처분에 따른다.

도임 후 본부에서 진배하는 식례(到任後本府進排式例)⁹²

草料二時，茶啖一番，地衣二張付一浮，登每一立，方席一立，
常沙器盤床一件 營門同，方盤一坐，木燈檠一介，燭籠一隻，
箱子一隻，古里一雙，柳箕一隻，笠巨里一隻，中篩一隻，
窓戶紙四張，白紙二束，小皮紙二束，真末五合，松木半丹 已上本府工房。

88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89 체등(遞等)은 신임과 후임 관리가 서로 교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관찰사가 교대될 때에 그 영속(營屬)인 심약에게 물품과 돈을 나누어 주는 예이다. 원본에는 '遞等時'의 단일 항목으로 되어있지 않으나 분량상 '元遞等'과 '別遞等'을 '遞等時'란 이름의 한 항목으로 합하였다.

90 원체등 : 원래의 체등례(遞等例)이다.

91 별체등 : 원체등(元遞等) 이외의 체등례이다.

92 관찰사가 도임한 후에 본부의 이속들이 바치는 물품에 대한 설명이다.

東海一坐, 伐於只二坐, 中所羅二坐, 瓶三箇, 中瓮一坐, 甌一坐, 大所羅一坐. 已上店主人.

井朴一介 具壺, 鞍子巨里一介, 砧杵二介, 長杵一介, 取子車·引絲車, 房箒一介, 庭簾一介 逐朔入. 已上寺主人. 虛間材木 寺主人. 蓋草 本府工房. 墻垣與各樣修理 募軍. 鼎二坐 具蓋.

초료(마소에게 먹이는 꼴) 두 끼니, 다담⁹³ 한 차례, 2장 붙인 지의⁹⁴ 1부, 등메 1닢, 방석 1닢,

보통의 그릇과 반상 1건 영문은 같다. 방반⁹⁵ 1좌, 나무로 된 등걸이 1개, 촉룡 1짝,

상자 1짝, 고리 1쌍, 벼드나무 키 1짝, 모자걸이 1짝, 중간크기의 체 1짝, 창호지 4장, 백지 2속, 소피지(小皮紙) 2속, 밀가루 5홉, 소나무 반 단 이상은 본부의 공방.

동이 1좌, 포대기 2좌, 중간 소래기⁹⁶ 2좌, 단지 3통, 중간 독 1좌, 시루 1좌, 큰 소래기 1좌. 이상은 점주인(店主)이 낸다.

두레박 1개 줄을 갖춘다. 안장걸이 1개, 다듬잇방망이 2개, 큰 공이 1개, 씨아와 물레, 방 빗자루 1개, 마당 빗자루 1개 달마다 들인다. 이상은 사주인(寺主人). 헛간 재목 사주인(寺主人). 이영⁹⁷ 본부의 공방. 담장과 각종 수리 모군⁹⁸. 솔 2좌 뚜껑을 갖춘다.

傳掌.

전장한다.⁹⁹

93 다담 :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은 다음과 따위이다.

94 지의 : 형겼으로 가장자리를 꾸민 둑자리이다.

95 방반 : 모가 난 쟁반이다.

96 중간 소래기 : 중간 크기의 소래기이다. 소래기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넓은 접시 모양의 질그릇이다.

97 이영 :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해 짚으로 만든 물건이다.

98 모군 : 품삯 일꾼이다.

도임 후 하인의 예하에 대한 질(到任後下人例下秩)

澄清閣, 隨廳妓生等二兩, 通引等二兩, 及昌等二兩, 刑房等一兩, 陪吏等五錢.

裨將廳, 通引等二兩, 都房子等一兩, 巡令手等三錢, 敲人等三錢.

징청각¹⁰⁰은 수청기생들 2냥, 통인¹⁰¹들 2냥, 급창¹⁰²들 2냥, 형방들 1냥, 배리¹⁰³들 5전이다.

비장청은 통인들 2냥, 도방자(비장청도방자)들 1냥, 순령수¹⁰⁴들 3전, 고인¹⁰⁵들 3전이다.

2월 대령 후, 하인의 예하에 대한 질(二月大令後下人例下秩)

十月令同.

10월령과 동일하다.

澄清閣, 隨廳妓生各一兩, 通引等二兩, 刑房等五錢, 及昌等一兩.

裨將廳, 妓生各一兩, 通引等一兩, 都房子等一兩.

本堂通引二兩, 都房子五錢, 軍牢二兩, 房婢五錢.

檢律堂, 通引五錢, 都房子三錢, 軍牢五錢, 房婢三錢.

藥房, 都下典二兩, 立下典三兩, 庫子一兩 懸狀次一兩二錢.

進上陪持五兩二兩, 門入條, 大口一尾, 明太一束 鳥嶺用下,

差使五錢, 陪吏等一兩, 婢行首各一兩 永減, 紙魚代各二錢 永減.

99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 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기는 것이다.

100 징청각 : 대구 경상감영의 관아건물로서 관찰사의 숙소이다.

101 통인 : 관찰사에게 딸리어 잔심부름하던 이속이다.

102 급창 : 급창노이다. 관아에서 부리던 사령의 하나로 섭돌 위에서 수령의 명을 받아 큰소리로 외치는 역할을 하였다.

103 배리 : 시종아전이다.

104 순령수 : 대장(大將)의 전령, 호위를 맡고 영기를 드는 군사이다.

105 고인 : 복치는 사람이다.

정청각은 수청기생 각 1냥, 통인 등 2냥, 형방 등 5전, 급창 등 1냥이다.

비장청은 기생 각 1냥, 통인 등 1냥, 도방자 등 1냥이다.

본당은 통인 2냥, 도방자 5전, 군뢰 2냥, 방비 5전이다.

검율당¹⁰⁶은 통인 5전, 도방자 3전, 군뢰 5전, 방비 3전이다.

약방¹⁰⁷은 도하전 2냥, 입하전 3냥, 고지기 1냥 현장하는 비용은 1냥 2전이다. 이다.

진상 배지 5냥 2냥은 문입조¹⁰⁸이다. 대구 1마리, 명태 1속 조령 용하¹⁰⁹로 한다.

차사원 5전, 배리 등 1냥, 비행수(우두머리 여종) 각 1냥 영구히 줄였다. 지어를 대신하여 각 2전이다 영구히 줄였다.

소령 후 하인의 예하에 대한 질(小令後人例下秩)

四等同.

네 분기가 동일하다.¹¹⁰

本堂, 通引五錢, 都房子三錢, 軍牢五錢, 房婢三錢 並各明太一束.

檢律堂, 通引三錢, 都房子二錢, 軍牢三錢, 房婢二錢.

본당은 통인 5전, 도방자 3전, 군뢰 5전, 방비 3전이다 모두에게 각각 명태 1속을 준다.

검율당은 통인 3전, 도방자 2전, 군뢰 3전, 방비 2전이다.

본당 하인의 급료에 대한 질(本堂下人給料秩)

通引一名, 每朔還米三斗. 軍牢一名, 每朔還米三斗. 婢子一名, 每朔還米三斗. 都房

106 검율당 : 검율(檢律)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으로, 지방 관아에서 심약처럼 중앙에서 파견하는 기술직 관원이다. 검율당은 감영에서 검율이 사무를 보는 곳이다.

107 약방 : 여기서의 약방(藥房)은 감영에서 심약이 사무를 보는 곳이다.

108 문입조 : 진상 받는 관청이 속들이 떼는 인정을 말한다.

109 조령 용하 : 조령을 넣는 비용을 말한다.

110 4월, 5·6월(6월), 7·8월(8월), 12월(납월)의 넷이다.

子一名，每朔還米三斗 壬子，鄭壽物行。婢子訖春秋衣資木 各半疋，代錢一兩。

통인 1명은 달마다 환미 3말. 군뢰 1명은 달마다 환미 3말. 계집종 1명은 달마다 환미 3말. 도방자 1명은 달마다 환미 3말이다 임자년(1852, 칠종3)에 정수(鄭壽)가 시작하였다. 계집종만 봄·가을 옷감 무명이 있다 철마다 반 필인데 대전(代錢)은 1냥이다.

八月秋夕.

本堂通引·都房子·軍牢·婢子，各生肉二斤，明太一束。

寺主人一名，生肉一斤，店主人一名，生肉一斤。

園頭漢二名，生肉一斤式，陪吏三人生肉一斤式 近物。

檢堂通引·都房子·軍牢·房婢，各生肉一斤式 隨時，閏狹年終同。

8월 추석.

본당의 통인, 도방자, 군뢰, 계집종은 각각 날고기¹¹¹ 2근, 명태 1속이다.

사주인(寺主人) 1명은 날고기 1근, 점주인(店主人) 1명은 날고기 1근이다.

원두한 2명은 날고기 1근씩, 배리 3인은 날고기 1근씩이다. 근래에 비롯되었다.

검율당의 통인, 도방자, 군뢰, 방비는 각각 날고기 1근씩이다 때에 따르는데, 윤달이 끼거나 연말에도 동일하다.

年終歲饌.

本堂通引·都房子·軍牢·婢子，各還米二斗，生肉二斤，明太一束。

寺主人一名，生肉一斤，店主人一名，生肉一斤。

園頭漢二名，生肉一斤式，陪吏三人，生肉一斤 永減，明太一束式 近物。

연종세찬¹¹².

본당의 통인, 도방자, 군뢰, 계집종은 각각 환미 2말, 날고기 2근, 명태 1속이다.

사주인 1명은 날고기 1근, 점주인 1명은 날고기 1근이다.

원두한 2명은 날고기 1근씩, 배리 3인은 날고기 1근 영구히 줄였다. 명태 1속씩이

111 날고기 : 《조선왕조실록》 태종 3년(1403) 기사를 참조하면 날고기는 노루고기의 날고기이다.

112 연종세찬 :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세배하는 이에게 접대하는 음식, 즉 묵은 세배 때의 접대 음식이다.

다 근래에 비롯되었다.

약원¹¹³ 청중¹¹⁴ 및 해당 색리에 대한 응례(藥院廳中及該色應例)

二十月兩等同.

2월과 10월의 두 분기가 같다. ¹¹⁵

上令監宅, 黃苧布一疋 價限六兩, 綿紬一疋 價限八兩.

白絲帶一條 細肖, 簡紙一百幅 年三折二丑, 泉三折四丑, 泉四折四丑,

別烟竹二箇 東萊, 壽福, 花簡竹五介 金海,

寢席一立 高靈, 全密, 廣魚二尾.

상영감¹¹⁶ 댁에는 황색 모시 1필 값은 6냥이 한도이다. 명주 1필 값은 8냥이 한도이다.

흰 실로 짠 띠 1조 자잘한 것이다. 간지(簡紙)¹¹⁷ 100폭 연지(年紙)를 3번 접어서 2번 묶거나, 천지(泉紙)를 3번 접어서 4번 묶거나, 천지(泉紙)를 4번 접어서 4번 묶는다.

별연죽 2개 동래에서 올리는데, 수복(壽福)의 뜻이다. 화간죽 5개 김해¹¹⁸,

침석 1닢 고령¹¹⁹, 탕건 1부 전체가 촘촘한 것이다¹²⁰, 넙치 2마리이다.

上掌務官宅, 黃苧布一疋, 綿紬一疋, 白絲帶一條,

簡紙八十幅 大二·中四·小二, 別烟竹二介, 花簡竹五介,

寢席一立, 宕巾一部, 廣魚二尾.

상장무관¹²¹ 댁에는 황색 모시 1필, 명주 1필, 흰 실로 짠 띠 1조,

113 약원 : 내의원을 지칭한다.

114 청중 : 관청에 소속된 관원을 지칭한다.

115 2월과 10월은 대령이다.

116 상영감 : 영감(令監)이란 당상관의 품계를 지닌 관원을 지칭한다.

117 간지(簡紙) : 종이를 접어 편지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118 본문 2월령각읍토산잡종질(二月令各邑土產雜種秩)

119 본문 10월령(十月令)

120 본문 2월령각읍토산잡종질(二月令各邑土產雜種秩) 응천(熊川)에서 값을 낸다.

간지(簡紙) 80폭 큰 것 20폭, 중간 것 40폭, 작은 것 20폭이다. 별연죽 2개, 화간죽 5개, 침석 1닢, 탕건 1부, 넙치 2마리이다.

下掌務官宅, 白絲帶一條, 別烟竹二箇, 花簡竹五介,
簡紙五十幅 大二·中三, 寢席一立, 廣魚二尾.

하장무관 댁에는 흰 실로 짠 띠 1조, 별연죽 2개, 화간죽 5개,
간지 50폭 큰 것 20폭, 중간 것 30폭이다. 침석 1닢, 넙치 2마리이다.

上下藥色, 各黃苧布一疋合二疋, 綿紬一疋合二疋,
白絲帶一條合二條, 簡紙五十幅合一百幅,
別烟竹二箇合四箇, 花簡竹五介合十介,
大席一立合二立 莞席, 壯紙一束合二束 泉紙,
扇子一柄合二柄, 西草一斤合二斤,
笠帽一事合二事, 廣魚二尾合四尾.

別單, 又各錢文十兩合二十兩, 白細木一疋合二疋 每疋價限五兩, 腰帶一條合二條.

상하 약색은 황색 모시 1필씩 합계 2필, 명주 1필씩 합계 2필,
흰 실로 짠 띠 1조씩 합계 2조, 간지 50폭씩 합계 100폭,
별연죽 2개씩 합계 4개, 화간죽 5개씩 합계 10개,
큰 자리 1닢씩 합계 2닢 왕골 뜻자리이다. 장지(壯紙) 1속씩 합계 2속 천지(泉紙)이다.
부채 1자루씩 합계 2자루, 서초(질 좋은 담배) 1근씩 합계 2근,
갈모 1벌씩 합계 2벌, 넙치 2마리씩 합계 4마리이다.
별단(別單)¹²². 또 각각 돈 10냥씩 합계 20냥, 백세목(白細木) 1필씩 합계 2필
필마다 값은 5냥이 한도이다. 허리띠 1조씩 합계 2조이다.

堂上每員, 錢一兩一錢, 白紙二束, 北魚二級,
大口二尾.

121 상장무관 : 내의원의 장무관은 2원으로 상장무관, 하장무관으로 지칭한다.

122 별단(別單) :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에 덧붙이는 문서나 명부이다.

당상관¹²³은 1원당 돈 1냥 1전, 백지 2속, 북어 2두름,
대구 2마리이다.

廳官 十二員, 每員, 錢文九錢, 白紙二束, 北魚二級, 大口二尾.

청관(廳官)¹²⁴은 12원이다. 1원당이다. 돈 9전, 백지 2속, 북어 2두름, 대구 2마리
이다.

上下掌務官宅, 各錢文二兩三錢, 白紙三束, 北魚三級,
大口三尾, 文魚一尾.

상하장무관 택은 돈 2냥 3전씩, 백지 3속씩, 북어 3두름씩,
대구 3마리씩, 문어 1마리씩이다.

上下藥色, 各錢文二兩三錢, 白紙三束, 北魚三級,
大口三尾, 文魚一尾 代文二兩式.

상하 약색은 돈 2냥 3전씩, 백지 3속씩, 북어 3두름씩,
대구 3마리씩, 문어 1마리씩이다 대신하는 돈은 2냥씩이다.

掌務書員 二人各, 錢文一兩二錢, 白紙二束, 北魚二級,
大口二尾, 文魚一尾, 烟竹一箇, 簡竹三介,
簡紙三十幅 中簡.

장무서원 2인 각각이다. 은 돈 1냥 2전씩, 백지 2속씩, 북어 2두름씩,
대구 2마리씩, 문어 1마리씩, 담뱃대 1개씩, 간죽 3개씩,
간지 30폭씩이다 중간 크기.

香色四人, 各錢文七錢, 白紙一束, 北魚一級, 大口一尾.
廳中古風五兩,

123 당상관 : 당상관(堂上官)은 통정대부나 절충장군의 이상의 관계(官階)를 지닌 관원으로 여기
서는 어의를 지칭한다.

124 청관(廳官) : 내의원에서 사무를 보는 내의로서 정3품 정에서 종9품 참봉까지 있다. 모두
의과 출신자이다.

後鞋次一兩五錢.
大廳直二兩 本廳掌務官所並,
實水工二兩,
三提調宅下隸二兩七錢,
假水工二名例錢九錢式 北魚二級, 大口二尾, 白紙二束式. 此外更無他物.
進上畢納後, 假水工三兩, 越門次六錢.
향색(香色) 4인은 돈 7전씩, 백지 1속씩, 북어 1두름씩, 대구 1마리씩이다.
청중(廳中)의 고풍(古風)¹²⁵은 5냥,
후혜(後鞋)하는 비용은 1냥 5전이다.
대청지기는 2냥 본청과 장무관소도 아우른다. 실수공¹²⁶은 2냥,
세 제조¹²⁷ 택의 하례는 2냥 7전,
가수공 2명의 예전은 9전씩이다 북어 2두름, 대구 2마리, 백지 2속씩이다. 이밖에 다른
물건은 더 없다.
진상을 다 바친 뒤 가수공은 3냥인데, 월문¹²⁸하는 비용은 6전이다.

단자식(單子式)

上令監 · 上下掌務官, 則先書某宅, 其次列書某某物目, 其次降一字, 書際字, 然後
方書某年月日, 嶺營審藥某姓名. 上下藥色, 則自當無宅字與姓名, 別單只書物目.
상영감과 상 · 하장무관이라면 먼저 ‘아무개 택’이라 쓰고, 그 다음에 ‘아무 아무
물목(物目)’을 나열해 쓰고, 그 다음에 한 글자를 내려 ‘제(際)’ 자를 쓴 뒤에야
비로소 ‘아무 해 월 일, 영영¹²⁹심약 아무개 성명’을 쓴다. 상하약색이라면 본래

125 고풍(古風) : 새로 부임한 관원이 전례에 따라 인사, 부임과 관련 있는 관청의 서리 등에게
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다.

126 실수공 : 실수공은 원래의 수공이고 가수공은 임시 수공이다.

127 세 제조 :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이다.

128 월문 : 진상받는 관청의 이속들이 물건을 받기 전에 받는 돈을 뜻한다.

‘댁(宅)’ 자와 성명은 없이 별단에 단지 물목만 쓴다.

영문에서 봉여 인삼 값을 구쳐¹³⁰함에 대한 질(營門封餘蔘價區處秩)

二十月兩等同.

2월과 10월 두 분기가 같다.¹³¹

元封餘蔘, 六兩四錢 元封三十二兩, 每兩封餘二錢, 代文二千五百六十兩內,

八百兩審藥,

一百兩差使員,

五十兩禮房,

七十兩醫生,

四十兩藥漢等,

四十兩奉化封餘減,

合下一千一百兩除,

實餘錢一千四百六十兩入於下記.

원봉여삼 6냥 4돈 원봉(元封)은 32냥인데, 냥마다 봉여가 2돈씩이다. 을 대신하는 돈 2,560냥 안에서

800냥은 심약,

100냥은 차사원,

50냥은 예방,

70냥은 의생,

40냥은 약한¹³² 등의 뜻이고,

129 영영 : 영영(嶺營)은 경상감영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130 구쳐 : 변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131 2월과 10월은 대령이며 이때 인삼의 진상 또한 이루어진다.

132 약한 : 약부(藥夫). 약을 캐는 데 종사하는 심부름꾼이다. 《경국대전》〈병전·잡류雜類〉에 ‘牧以上五人, 都護府四人, 郡三人, 縣二人.’으로 규정되어 있다.

40냥인 봉화의 봉여는 줄였다.
합계 1,100냥을 빼고
실제 남는 돈 1,460냥을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본당 하인 등이 2월과 10월 대령 때 봉여 고을에서 의생이 맡은 수봉¹³³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규례(本堂下人等, 二十月大令時, 封餘邑醫生處收捧分處式.)

寧海七兩 通引二兩, 軍牢二兩, 都房子五錢, 京奴一兩, 主人一兩五錢.

靈山七兩 通引二兩二錢五分, 軍牢二兩二錢五分, 都房子五錢, 京奴一兩, 主人一兩.

盈德七兩 通引一兩七錢五分, 軍牢一兩七錢五分, 都房子五錢, 京奴一兩, 主人二兩.

宜寧六兩 通引二兩二錢五分, 軍牢二兩二錢五分, 都房子五錢, 京奴一兩.

鎮海五兩 通引一兩五錢, 軍牢一兩五錢, 都房子五錢, 京奴一兩, 主人五錢.

清河五兩. 上同.

安義. 上同.

興海五兩 通引一兩二錢五錢, 軍牢一兩二錢五錢, 都房子五錢, 京奴一兩, 主人一兩.

彥陽五兩. 同鎮海. 三嘉五兩 通引一兩七錢五錢, 軍牢一兩七錢五錢, 都房子五錢, 京奴一兩.

仁同四兩 通引一兩二錢五錢, 軍牢一兩二錢五錢, 都房子五錢, 京奴一兩.

熊川三兩. 代宕巾一部 軍牢.

영해 7냥 통인(通引)은 2냥, 군뢰(軍牢)는 2냥, 도방자(都房子)는 5전, 경노(京奴)¹³⁴는 1냥, 주인(主人)은 1냥 5전이다.

영산 7냥 통인은 2냥 2전 5푼, 군뢰는 2냥 2전 5푼, 도방자는 5전, 경노는 1냥, 주인은 1냥이다.

영덕 7냥 통인은 1냥 7전 5푼, 군뢰는 1냥 7전 5푼, 도방자는 5전, 경노는 1냥, 주인은 2냥이다.

의령 6냥 통인은 2냥 2전 5푼, 군뢰는 2냥 2전 5푼, 도방자는 5전, 경노는 1냥이다.

진해 5냥 통인은 1냥 5전, 군뢰는 1냥 5전, 도방자는 5전, 경노는 1냥, 주인은 5전이다.

133 수봉 :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134 경노(京奴) : 한양에 있는 관청에 딸린 노비이다.

청하 5냥. 위와 같다.

안의. 위와 같다.

홍해 5냥 통인은 1냥 2전 5푼, 군뢰는 1냥 2전 5푼, 도방자는 5전, 경노는 1냥, 주인은 1냥이다.

언양 5냥. 진해와 같다.

삼가 5냥 통인은 1냥 7전 5푼, 군뢰는 1냥 7전 5푼, 도방자는 5전, 경노는 1냥이다.

인동 4냥 통인은 1냥 2전 5푼, 군뢰는 1냥 2전 5푼, 도방자는 5전, 경노는 1냥이다.

웅천 3냥. 탕건 1부로 대신한다 군뢰.

10월령에 추가된 고을(十月令加入邑)

南海五兩,

巨濟五兩. 並同三嘉.

남해 5냥,

거제 5냥. 모두 삼가와 같다.

본당 통인이 대령 때 회소에서 받는 예추(本堂通引大令時會所例推)¹³⁵

尙會四錢, 晉會三錢, 慶會二錢, 安東會三錢.

상주 회소 4전, 진주 회소 3전, 경주 회소 2전, 안동 회소 3전이다.

네 분기 소령 때 회소에서 받는 예추(四等小令時會所例推)

四月令三錢, 六月令二錢, 八月令二錢, 臘月乾柿一貼.

4월령 3전, 6월령 2전, 8월령 2전, 12월령 곶감 1접이다.

六月令, 京奴子推次, 安東二錢, 晉州二錢. 八月令, 尙州五錢.

6월령에 경노자가 받는 뜻은 안동 2전, 진주 2전이다. 8월령에는 상주 5전이다.

135 예추 : 의례적으로 받는 것을 뜻한다.

2월과 10월령 후, 경노자의 응출과 예봉¹³⁶에 대한 질(二十月令後京奴子應出例捧秩)

慶會二兩, 尙會二兩, 晉會三兩五錢, 安東二兩五錢 內局醫生一兩.

경주 회소 2냥, 상주 회소 2냥, 진주 회소 3냥 5전, 안동 회소 2냥 5전 내국의 생¹³⁷은 1냥이다.

기타(其他)¹³⁸

二月白清進上,

安東 · 順興 · 體泉 · 義城, 各二升二合,

青松 · 奉化 · 貞寶 · 陝川 · 丹城 · 三嘉, 各二升一合.

八月進上,

安東 · 順興 · 奉化 · 體泉 · 青松 · 貞寶, 各二升二合,

山淸 · 丹城 · 三嘉 · 陹川, 各二升一合.

2월의 백청 진상은

안동, 순흥, 예천, 의성이 각각 2되 2홉씩이고,

청송, 봉화, 진보, 합천, 단성, 삼가가 각각 2되 1홉씩이다.

8월의 진상은

안동, 순흥, 봉화, 예천, 청송, 진보가 각각 2되 2홉씩이고,

산청, 단성, 삼가, 합천이 각각 2되 1홉씩이다.

十月令作木,

順興二十尺, 義興一疋, 靈山二疋二十尺, 慈仁一疋, 晉州十一疋, 金海一疋二十尺,

善山二疋二十尺, 草溪六疋, 咸昌五疋, 三嘉四疋,

136 응출과 예봉 : 마땅히 내야하는 의례적인 돈이나 물품을 뜻한다.

137 본문 2월령봉여읍(二月令封餘邑)에도 나온다.

138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彦陽二疋二十尺, 新寧二疋, 比安一疋二十尺, 尙州二疋二十尺, 星州二疋, 昆陽二十尺, 河東三疋, 開寧二疋二十尺, 泗川二疋二十尺, 合一同四疋.

10월령의 작목(전세를 무명으로 환산하여 들임)은
순흥 20척, 의흥 1필, 영산은 2필 20척, 자인 1필, 진주 11필, 김해 1필 20척,
선산 2필 20척, 초계 6필, 함창 5필, 삼가 4필,
언양 2필 20척, 신녕 2필, 비안 1필 20척, 상주 2필 20척, 성주 2필, 곤양
20척, 하동 3필, 개령 2필 20척, 사천 2필 20척으로 합계 1동¹³⁹ 4필이다.

白缸四坐 晉州三坐, 昆陽一坐.

흰 항아리 4좌 진주에서 3좌, 곤양에서 1좌이다.

義城 · 榮川 · 義興, 正月初三日白清進上, 一斗五升, 二月初六日白清進上, 三斗,
七月初三日白清進上, 一斗五升, 八月初三日白清進上, 三斗, 十月初六日白清進上,
九斗. 山清 · 居昌 · 清道, 各五升, 河東, 白缸二坐.

의성, 영천, 의흥은 1월 3일 백청 진상 1말 5되, 2월 6일 백청 진상 3되, 7월
3일 백청 진상 1말 5되, 8월 3일 백청 진상 3말, 10월 6일 백청 진상 9되이다.
산청, 거창, 청도는 각각 5되씩, 하동은 흰 항아리 2좌이다.

계미년(1823)¹⁴⁰ 7월 모일, 내의원의 관문으로 인하여 인삼을 공납하는
여러 고을을 신칙하기 위해 내린 관문(癸未七月日, 因內醫院關, 申飭
貢蓼各邑關文)

關是置有亦. 御供事體, 何莫非審慎, 而至於本道貢蓼段, 乃是大殿進御湯劑之需,
則尤何等重大, 而挽近蓼弊, 轉益膠固, 封進列邑少不惕念, 本官則專委於醫生. 醫
生則一付之蓼商, 而所謂蓼商, 都是逐利無賴之類也. 囂念御供之所重, 徒售肥己之

139 동 : 면포의 단위는 1필(疋)이 35척이고, 1동(同)이 50필이다.

140 내용 말미의 내의원 제조 김시근(金蓍根)의 기록을 통해 계미년이 순조 23년(1823)으로 확정
할 수 있다.

奸計，幻假粧真，演小成大，體樣只取眩眼，性味不啻相背。故雖或捱過於營門看品之時，每致生頗於藥院入用之際，揆以道理義分，寧不滿滿悚懼也哉！

관문¹⁴¹입니다. 어공(임금에게 물건을 바침)의 사체(事體)는 무엇인들 살피고 삼가지 않겠습니까마는 본도에서 공납하는 인삼의 경우에는 바로 대전(임금)께서 드실 탕제에 쓰이니 그 얼마나 더 중대합니까. 그런데도 근래 인삼의 폐해가 갈수록 더욱 굳어져서 봉진하는 고을들이 조금도 척념¹⁴²하지 않아 본관(고을 관아)은 의생에게 전부 위임해버리고 의생은 인삼 상인에게 일체 맡겨버렸는데, 이른바 인삼 상인이란 자들은 모두 이익만을 쫓는 무뢰한 무리입니다. 어공의 막중함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자기만 살찌우는 간사한 계책을 부려 거짓을 바꾸고 진실을 꾸미고, 작은 것을 부풀려서 큰 것을 만들어 눈을 혼란하게 하는 모양만 취하여 약성이 어긋날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혹 영문에서 간품 할 때 넘어가기도 하지만 매번 내의원에서 들여 사용할 즈음에 탈이 생기게 되니, 도리와 사정으로 해아려볼 때 어찌 참으로 몹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苟究弊源，蓼商何論。若自本邑先期廣貿，如不合用，退而更求，期得真品而後，始乃封進，則蓼商輩作奸之弊，何從而生乎！不此之爲，沁泄看過，一委醫生之後，蓼品真匱，少少無察飭，拋閣一邊，任他作俑。於是乎醫生則幸其彌縫，蓼商則利其取剩，容僞售奸，愈往愈甚。究其所爲，固是萬戮猶輕，而馴致此弊，漸至難醫者，獨豈非列邑不察之所使然乎。

진실로 폐해의 원인을 궁구한다면 인삼 상인을 어찌 논하겠습니까. 본읍에서 기한보다 앞서 널리 매매하되 만일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내쳐버리고 다시 구하여 기필코 진품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봉진한다면, 인삼 상인들이 간악한 짓을 하는 폐단이 어디로부터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고을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고 흐리멍텅하게 보아넘기면서 의생에게 일체 맡겨버린 뒤에 인삼의 품질이

141 관문 : 관문이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서 양식이다.

142 척념 :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도 살펴 신칙함이 없이 한 번 포기해 버린 채 그들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에 의생은 요행으로 미봉책을 쓰고 인삼 상인은 부당 이득을 얻는 데 빠져 거짓을 용인하고 간계를 부림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그 하는 짓들을 따져보면 진실로 만 번을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만, 이러한 폐단을 점차 조성하여 점점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유독 어찌 고을들이 잘 살피지 못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營門業欲矯革，而京關際此申嚴，爲今之道，唯有還復舊規，自各該邑，求賈封進，則庶可爲一分挾弊之方是矣，姑以令申之義，先此措辭發關爲去乎，自今秋等爲始，貢麥各邑，勿復專委於無知一醫生，起送首吏，鄉中一人眼同醫生，前期求賈，勿論體樣之獨頭兩枝¹⁴³·長短大小，必得真箇山麥，然後始乃看品於營門是矣。如是另飭之後，若或視同循例，復襲前謬，萬有一容奸狹雜之弊，現發於看品之際，則該邑醫生之直地嚴刑遠配，已無可論，而不飭之本官，斷當狀聞論勘，除尋常，預各惕勵，毋致後悔爲旅，雖以麥價言之，看品之後，每多有麥商輩未收爾寃之弊，莫重貢麥之不給價封進，寧有如許事體乎！況自今麥料既已前期賈取，則價本亦當隨卽備給。若於看品之時，雖零些之數，有所未收之是如，及聞於營門，則該醫生之限死嚴治，斷不饒貸，而責亦有所歸。並須知悉後，九月初十日看品次，初九日及良，各邑首吏，鄉中一人，實醫生眼同待令爲旅，舉行形止，亦卽馳報，宜當向事。

영문에서 이미 바로잡으려 하고 경관(도성의 관청)에서 이러한 때 거듭 엄중히 단속할 것인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도를 들자면 오직 예전 법규를 복구하여 각 해당 고을에서 구무(求賈)하여 봉진하는 일만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거의 조금이나마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되, 우선 법령을 펴는 뜻으로 먼저 이렇게 문장을 써서 관문을 보내오니, 이번 가을 분기부터 시작하여 인삼을 공납하는 각 읍은 다시는 무지한 일개 의생에게 전담시키지 말고, 으뜸 아전을 보내어 고을의 한 사람이 의생과 안동(眼同)¹⁴⁴하여 기한

143 枝 : 원문은 ‘妓’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근거하여 ‘枝’로 수정하였다.

144 안동(眼同) : 함께 참여하여 보게 한다는 뜻이다.

보다 앞서 구무(求賀)하되, 외톨 노두와 두 결뿌리의 구분이나 장단과 대소의 모양은 따지지 말고 반드시 진짜 산삼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영문에서 간품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따로 신칙한 뒤에 만약 혹여 예전과 똑같이 보고 관례를 따르며 다시 이전의 착오를 인습하여 만에 하나라도 간계를 용인하고 협잡질을 하는 폐단이 간풀할 때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고을의 의생을 곧바로 엄중히 형벌하고 멀리 유배보내는 것은 이미 논할 것도 없거니와 신칙하지 않은 본관은 단호히 장계로 보고하여 논하여 감처(勘處)하되 예사로 이 하지 말고 미리 각기 두렵게 여겨서 후회를 부르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인삼 값은 놓고 말하더라도 간풀한 뒤에 매양 인삼 상인들이 값을 받지 못해 원통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많습니다. 더없이 중한 공삼(貢蔘)을 값도 주지 않고 봉진하니 어찌 이러한 사체가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제부터 삼료(蔘料)는 이미 미리 사서 확보하도록 하였으니 값은 본래 역시 곧바로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간풀할 때 비록 적은 수량이라도 값을 받지 못한 일이 있다고 영문에 들리게 된다면 해당 의생을 죽을 정도로 엄히 다스려야지 단연코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되거니와 책임 역시 귀착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반드시 잘 알게 한 뒤 9월 10일에 간풀하기 위해 9일에 미쳐 각 고을의 으뜸 아전, 고을 사람 하나가 실제로 의생과 안동(眼同)하여 대령하며 거행한 전말도 역시 곧바로 급히 보고해야 할 일입니다.

附內醫院關，爲相考事。御供事體，何等嚴重，而近日蔘弊，去而益甚，前後關節，徒
皈空言，未見實效。容僞售奸，愈出愈奇，山家之附贅，蘆頭之冠長，細尾之纏絡，
惟務取重，專事巧幻。雖在常時，猶萬萬駭悚，況於近來，湯劑日進，蔘用居多，揆以
分義道理，寧不凜然而寒心哉。究其爲弊之本，專由於蔘商輩之逐利奸僞，往來京鄉，
以前年占退之物，作今歲封進之需，亂加膠糊，苟免目前之患。而且多蛀損色敗，可
憮可驚之端，不一而足。渠輩亦人耳，若有一分彝性，念及所重，焉敢如是除良。究厥
所爲，雖萬加誅戮，何能贖其一半分乎。

내의원 관문에 덧붙여 상고(相考)할 일입니다. 어공의 사체가 그 얼마나 엄중하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근래 인삼의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그동안 관문으로 신칙한 것이 한갓 빈말이 되어버리고 실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거짓을

용인하고 간계를 부림이 갈수록 더 기이해져서 산촌에서 혹을 붙이고 노두에 관(冠)을 씌우고¹⁴⁵ 가는 뿌리를 얹고 이어서 오직 무겁게 하는 데만 힘쓰고 오로지 교묘하게 현혹시키는 것에만 전념합니다. 이는 비록 평상시라도 오히려 몹시 놀랍고 두려운 일인데, 더구나 근래 탕제를 날마다 올립에 인삼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 사정과 도리로 헤아려볼 때 어찌 등골이 서늘하면서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폐단의 근본을 궁구하자면 인삼 상인들이 이익을 쫓아 간계와 거짓을 일삼아 한양과 지방을 왕래하면서 지난해 점퇴(點退)당한 물품을 가지고 올해 봉진할 물건으로 만들면서 이리저리 아교풀질을 해서 눈앞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한 데서 전적으로 연유합니다. 그리고 좀으로 손상되고¹⁴⁶ 색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 경악스럽고 놀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사람일 뿐이니 만약 조금이나마 떳떳한 본성이 있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에 생각이 미친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를 깊이 헤아려 보면, 비록 만 번 처형을 하더라도 어찌 능히 그 반푼이나마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大抵長短大小，一依本體，專爲務實，則右項奸弊，無自而生。今此費辭張皇，非同循例申飭，必欲痛革前謬而已。須悉此意，斷自今秋，所貢蓼梗，無論獨頭兩枝·長短大小，一從本體，無敢復蹈前習之意，嚴明申飭於封進列邑等處是矣。如是除尋常，刻意布論之後，若或視以例飭，依前伎倆，則該邑守令之論勘，斷不饒貸。其責當有所歸¹⁴⁷，惕念奉行之地，宜當向事。

대저 길이와 크기는 한결같이 산삼의 몸체에 의거하여 오직 실질에 힘쓴다면 위에서 말한 간사한 폐단은 생겨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은 것은 관례에 따라 신칙한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반드시 이전의 잘못을 통렬하게 고치려고 한 뒤에야 끝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뜻을 잘

145 혹을 붙이고 노두에 관(冠)을 씌우고 : 인삼의 노두는 연령을 알려주는 지표이므로, 본래의 연령보다 꾸며서 더 오래된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146 좀으로 손상되고 : 좀이 아교풀을 좋아하므로 더욱 좀 먹게 된다.

147 歸 : 원본에는 '故'으로 되어있으나 통용자인 '歸'로 수정했다. 이후로도 동일하다.

알아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여 공납하는 인삼은 외톨 노두와 두 결뿌리의 구분 및 장단과 대소는 따지지 말고 한결같이 산삼의 몸체를 기준으로 하고 감히 이전의 관습을 다시 따르지 말라는 뜻으로 봉진하는 여러 고을들에 엄중하고 분명하게 신칙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사로이 하지 말고 애를 써서 논의사항을 알린 뒤에 만일 혹여라도 이를 의례적인 신칙으로만 보고 예전처럼 꼼수를 부린다면 해당 고을 수령을 논하여 감처(勘處)하는 문제는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할뿐더러 그 책임을 마땅히 귀착할 것이니, 두렵고 삼가면서 받들어 거행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藥院提調金尙書著根.

내의원제조 상서(尙書) 김시근(金蓍根)¹⁴⁸.

丙寅二月，仍傳教減一斤，癸酉十二月二十四日，領相李裕元，筵稟復舊。

병인년(1866, 고종 3) 2월 전교로 인하여 1근을 줄였다가¹⁴⁹ 계유년(1873)

12월 24일 영의정 이유원¹⁵⁰이 경연에서 아뢰어서 복구했다.^{151 152}

148 상서(尙書) 김시근(金蓍根) : 김시근(1755-?)은 본관이 안동(安東), 자는 흥지(興之)로 재순(在淳)의 계자이다. 1802년 성상수두평복경과(聖上水痘平復慶科)에 급제, 순조(純祖) 조에 이조판서를 지냈다. 신안동김씨 23세이다.

149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2월 26일 기사에 나온다. 봄과 가을 분기에 반근씩, 합계 1근을 줄였다.

150 이유원 : 이유원(1814-1888)은 본관이 경주(慶州), 자는 경춘(京春)으로 이조판서 계조(啓朝)의 독자이다. 현종 7년(1841)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고종 조에 영의정을 지냈다. 1871년 완성한 잡록집인 『임하필기』는 내의원제조로서 겪은 일도 실려 있어서 의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백사공파 33세이다.

151 《승정원일기》 고종 10년(1873) 12월 24일 기사에 나온다.

152 이 내용으로 인해 문헌의 작성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 이는 문헌이 제책된 뒤에 후대에 가필된 부분으로 보인다.

2. 충청감영(忠淸監營)¹⁵³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¹⁵⁴

禮庫. 糯米二石五斗 從市直, 作錢. 通引料米三斗給.

清醬八升, 甘醬七升, 每升二分八利式.

眞油三升六合 每升一錢六分式.

眞末四升五合 每升二分式.

鹽八升.

馬太十斗三升.

馬粥租七斗二升.

예고의 경우 : 찹쌀 2섬 5말 시장가격에 따라 돈으로 바꾼다. 통인에게 급료로 쌀 3말을 준다.

청장(진하지 않은 간장) 8되, 감장(甘醬) 7되인데 되당 2푼 8리씩이다.

참기름 3되 6홉 되당 1전 6푼씩이다.

밀가루 4되 5홉 되당 2푼씩이다.

소금 8되.

말먹이 콩 10말 3되.

마죽벼 7말 2되.

營庫. 糯米一石六斗六升 從市直, 作錢.

朔布代錢四兩.

영고의 경우 : 찹쌀 1섬 6말 6되 시장가격에 따라 돈으로 바꾼다.

삭포를 대신하는 돈 4냥.

魚物庫. 民魚四尾 每尾五錢式.

153 충청도 공주에 있던 충청감영에서 근무하는 종9품 충청도심약(忠淸道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154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石魚九束 每束一錢五分式.

石花鹽二升七合. 每升二錢式.

어물고의 경우 : 민어 4마리 마리당 5전씩이다.

조기 9두름 두름당 1전 5푼씩이다.

석화염¹⁵⁵ 2되 7홉 되당 2전씩이다.

營繕. 自十月至二月合五朔, 燒木九十丹 房木每丹二分五里式.

炭九丹 爐炭作錢則三錢. 柴木九十丹 兼食木每丹二分式.

柴木一百二十丹 馬木每丹二分式. 穀草六十丹 馬草每丹三分式. 每朔合, 八兩五錢五分式.

自三月至四月合二朔, 燒木六十丹. 柴木六十丹.

炭九斗. 馬柴木一百二十丹 兼食木. 穀草六十丹 每朔七兩二錢式.

自五月九月合五朔, 燒木六十丹. 柴木六十丹.

炭九斗. 馬柴木一百二十丹 兼食木. 青草六十丹 每丹五分式.

每朔合, 八兩四錢式.

영선고의 경우 :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 동안 참나무 장작 90단 방목¹⁵⁶은 단당 2푼 5리씩이다.

숯 9말 화로 숯은 돈으로 바꾸면 3전이다. 땔나무 90단 식목(食木)을 겹한다. 단당 2푼씩이다.

땔나무 120단 마목(馬木)은 단당 2푼씩이다. 벗짚 60단 마초(馬草)는 단당 3푼씩이다. 1개 월당 합계 8냥 5전 5푼씩이다.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참나무 장작 60단. 땔나무 60단.

숯 9말. 마시목(馬柴木) 120단 식목을 겹한다. 벗짚 60단 1개월당 7냥 2전씩이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참나무 장작 60단. 땔나무 60단.

숯 9말. 마시목 120단 식목을 겹한다. 푸른 풀 60단 단당 5푼씩이다.

1개월당 합계 8냥 4전씩이다.

155 석화염 : 소금으로 끓인 굴 껌데기를 불에 구워 가루 낸 것이다.

156 방목 : 방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의 장작이다. 식목은 음식을 만드는 용도의 장작이다.

工庫. 別白紙二束 每束一兩式. 次白紙一束 每束六錢式.
年紙一束 每束一錢五分式. 白筆一柄 三分. 南草二斤十三兩 作錢則九錢, 工庫子入.
공고의 경우 : 별백지(別白紙) 2속 속당 1냥씩이다. 차백지(次白紙) 1속 속당 6전씩
이다.
연지(年紙) 1속 속당 1전 5푼씩이다. 백필 1자루 3푼이다. 담배 2근 13냥 돈으로 바꾸
면 9전으로, 공고지기가 들인다.

三月 日, 油衫紙八張,
笠帽紙一張 三錢五分式, 工庫色吏納,
白木纓次作錢六分,
法油三升三合 每升一錢五分式. 工庫子入.

3월 모일에는 유삼지(油衫紙) 8장과
갈모지 1장 3전 5푼씩이다. 공고 색리가 들인다.¹⁵⁷
흰 무명으로 된 갓끈 재료값 1전 6푼과
들기름 3되 3흡 되당 1전 5푼씩이다. 공고지기가 들인다¹⁵⁸.

墨庫. 大節二丁 中節則四丁, 小節則八丁, 代錢四錢.

먹고(墨庫)의 경우 : 큰 크기로 2정 중간 크기로는 4정, 작은 크기로 8정이다. 읊 대신하
는 돈 4전.

軍餉庫. 菜蔬一兩二錢.

군향고의 경우 : 채소 1냥 2전.

營庫. 五月 日, 牟開倉時例下五石 從市直, 作錢.

春秋衣資各四兩 春則正月, 秋則七月.

十月租開倉時例下五石 從市直, 作錢. 歲饑米三斗, 端午米一斗, 秋夕米一斗, 冬至米
一斗, 赤豆一斗, 禮庫.

157 원본에는 유삼 이하가 밀줄로 묶여있다.

158 원본에는 흰 무명으로 된 갓끈 이하가 밀줄로 묶여있다.

二月 日，本官，公石五十立 盖墻次，每立三分式。

二月三月間，軍餉，分給時，具綱空石四百立 每立二分五里，或每立五分式，或行廊蓋屋次。

墻垣修補，凡干雜役處募軍，等待爲之。

下處修補，勿論某處，本府造備。

영고의 경우 : 5월 모일, 밀을 개창(開倉)¹⁵⁹할 때 예하(例下) 5섬 시장 가격에 따라 돈으로 바꾼다.

봄 · 가을 옷감값으로 각 4냥씩 봄에는 정월, 가을에는 7월이다.

10월, 벼를 개창할 때 예하 5섬 시장 가격에 따라 돈으로 바꾼다. 세찬미 3말. 단오미 1말. 추석미 1말. 동지미 1말. 팔 1말은 예고에서 낸다.

2월 모일, 본관(本官) 빙가마니 50닢 담장을 덮을 비용인데, 1닢당 3푼씩이다.

2월과 3월 사이 균량을 나누어 줄 때 줄을 갖춘 빙 가마니 400닢 1닢당 값은 2푼 5리씩이거나 1닢당 5푼씩이다. 혹은 행랑 지봉을 덮을 비용으로도 쓴다.

담장의 수보(修補)는 모든 잡역에 관계되는 곳의 모군(募軍)을 기다렸다 한다.
임시 숙소의 수보는 아무 처소든지 가리지 말고 본부에서 마련해 대비한다.

도임 초에 하인 등에 내리는 체하(到任初下人等帖下)¹⁶⁰

隨廳妓處一兩，宣化堂通引處一兩，及唱處三錢，

陪吏處五錢，廳通引處三錢，廳都房子處二錢，

廳房子處二錢，廳門使令處二錢，使令廳五錢，

下處使令處二錢，下處都房子處二錢，檢律通引處二錢，

茶母處二錢，

合五兩。此外無前例，檢律堂事例同。再任則無。

수청기에게 1냥, 선화당¹⁶¹ 통인에게 1냥, 급창에게 3전,

159 개창(開倉) : 창고를 열어 저장 중인 곡식을 내는 것이다.

160 체하(帖下) : 관아에서 쓰는 문서 양식의 하나로 하급 이속이나 상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때 이두 문자로 작성해서 ‘帖’ 글자의 도장을 찍어 내려보낸다.

배리에게 5전, 청의 통인에게 3전, 청의 도방자에게 2전,
청의 방자에게 2전, 청문사령에게 2전, 사령청에 5전,
임시 숙소의 사령에게 2전, 임시 숙소의 도방자에게 2전, 검율당의 통인에게
2전,
다모에게 2전,
합계 5냥이다. 이외에 이전 사례가 없으면 검율당의 사례와 같다. 재임하는
경우에는 없다.

도임 초의 본부에서의 예납(到任初本府例納)

圓盤一立 內工房入, 方盤二立 都工房入, 沙盤床一件 湯器二立, 楪匙五立, 甫兒五立, 鍾子一
立, 沙大楪三立,
湯器三立, 沙鉢四立, 甫兒三立, 小楪匙一竹, 種子三立, 大陶器一坐, 廣陶器一坐,
陶釜一坐, 餃一坐, 東海一坐, 耳大也一坐, 洗水器一坐, 火爐一坐.
已上私工房納.

등근 쟁반 1닢 내공방(內工房)이 들인다. 모가 난 쟁반 2닢 도공방(都工房)이 들인다. 사
기반상 1건 탕기(湯器) 2닢, 접시 5닢, 보시기 5닢, 종지 1닢이다. 사기대접 3닢, 탕기
3닢, 사발 4닢, 보시기 3닢, 작은 접시 1죽, 종지 3닢, 큰 질그릇 1좌, 넓은
질그릇 1좌, 질솥 1좌, 시루 1좌, 동이 1좌, 귀때대야¹⁶² 1좌, 세수 그릇 1좌,
화로 1좌.

이상은 사공방(私工房)이 들인다.

大隅古里一雙 作錢三錢, 燈杯巨里一坐 或二坐, 燭臺一坐, 炭櫃一坐, 食刀一介, 火箸
一雙, 箕一介, 火匙一介, 簠一介, 釜省一介, 衣巨里竹一介 二寸釘二介, 瓢朴二介,
齒朴一介, 刀磨一坐, 造乃一介, 驂篩一介, 周罵一介.

161 선화당 : 감영의 부속 건물로 관찰사가 사무를 보는 곳으로 감영마다 있다.

162 귀때대야 : 귀때란 그릇 한쪽에 새의 부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액체를 따르기 편하도록 만든
부위이다. 귀때는 사발, 대야, 동이, 항아리 등에 만들어졌다.

已上都工吏納.

큰 귀고리 1쌍 돈으로 바꾸면 3전이다. 등잔걸이 1좌 혹은 2좌이다. 촉대 1좌, 숯 담는 궤 1좌, 식칼 1개, 부젓가락 1쌍, 키 1개, 부순 1개, 비 1개, 솔솔 1개, 옷걸이 대나무 1개 2촌 못 2개, 표주박 2개, 치박(齒朴)¹⁶³ 1개, 도마 1좌, 조리 1개, 말총체 1개, 주걱 1개.

이상은 도공리(都工吏)가 들인다.

沙廊一坐, 鼎蓋二坐. 已上私工房納.

사랑(沙廊) 1좌와 솔뚜껑 2좌. 이상은 사공방이 들인다.

竹簾 一部 五六月間, 都工房入, 或二三部, 隨所入, 馬鞍巨里, 登每一立, 方席一立, 安息一立, 茵席六立, 鎖子一介.

已上都工房入.

대나무로 엮은 발 1부 5월과 6월 사이에 도공방이 들이는데, 혹 2·3부를 들어가는 데 따른다. 말안장걸이, 등메¹⁶⁴ 1닢, 방석 1닢, 안식(安息)¹⁶⁵ 1닢, 인석(茵席)¹⁶⁶ 6닢, 자물쇠 1개.

이상은 도공방이 들인다.

塗排所入窓戶紙三卷,

白紙二十卷, 皮紙四卷

本府紙箇通引納.

도배에 들어가는 창호지 3권,

백지(白紙) 20권, 피지(皮紙) 4권

본부의 지통통인이 들인다.

163 치박(齒朴) : 안쪽에 고랑이 지게 돌려 파서 만든 표주박이다.

164 등메 : 형겼으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뒤에 부들자리를 대서 꾸민 둛자리이다.

165 안식(安息) : 안석(安席)이라고도 부른다. 앓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이다.

166 인석(茵席) : 왕골이나 부들로 만들어서 까는 방석이나 요이다.

大陶器一坐, 廣陶器一坐, 小陶器一坐, 冬海一坐,
土盆一坐, 耳大也一坐, 火爐一坐 已上禮庫庫子納.

큰 질그릇 1좌, 넓은 질그릇 1좌, 작은 질그릇 1좌, 동이 1좌,
흙 가마솥 1좌, 귀때대야 1좌, 화로 1좌 이상은 예고지기가 들인다.

木臼 公伊具,

砧石 砧木具, 洞里所任, 借納.

나무절구 공이를 갖춘다. 와

다듬잇돌 다듬이 나무를 갖춘다. 마을의 맡은 이가 빌려서 들인다.

大小鼎各一坐. 工庫子入.

크고 작은 솔 1개씩 공고지기가 들인다.

월령예납(月令例納)

正月. 別卜定白清作紙二兩四錢 八邑, 每邑三錢式.

정월. 별지정¹⁶⁷ 백청(白清)에 대한 작지 2냥 4전 여덟 고을인데, 고을마다 3전씩이다.

二月令. 二十八兩, 白芨二斤八兩代 每兩七錢式.

八兩一錢, 二十七邑白芨作紙 每邑三錢式.

六兩六錢, 十一邑都作紙 每邑六錢式.

三兩, 十邑白清作紙 每邑三錢式.

合四十五兩七錢內 四兩, 藥庫下人帖下, 實四十一兩七錢, 奴子一錢五分, 通引五錢 已上都
家主人例給下人等.

167 별지정 : 원래 지정(卜定)한 물품이나 인력 외에 별도로 각 지방에 부과하는 것으로, 나라에
큰 행사가 생기거나 중국의 칙사(勅使)가 예기치 않게 나오게 되어 원래 각 지방에 지정(卜定)
한 물품이나 인력 등으로는 부족할 때 더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추가 배정하여 부과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정은 복정(卜定)의 이두음이다. 지정의 ‘卜’는 책임을 지운다는
‘짐’의 뜻이어서 ‘負’로도 표기한다. 지정은 원래의 원지정(元卜定)과 별도로 추가하여 부과하
는 별지정(別卜定) 또는 가지정(加卜定)으로 나뉜다.

2월령. 28냥은 백급¹⁶⁸ 2근 8냥의 대전(代錢)이다 냥당 7전씩이다.

8냥 1전은 27읍의 백급 작지이다 읍마다 3전씩이다.

6냥 6전은 11읍의 도작지(도가¹⁶⁹작지)이다 읍마다 6전씩이다.

3냥은 10읍의 백청 작지이다 읍마다 3전씩이다.

합계 45냥 7전 안에서 4냥은 약고 하인의 체하로, 실제는 41냥 7전이다. 사내종은 1전 5푼, 통인은 5전이다 이상은 도가주인(都家主人)이 하인 등에게 관례적으로 주는 것이다.

三月令. 白芨進上, 六斤二兩五錢內 三兩七錢五分, 公州本邑除, 實五斤十四兩七錢五分, 代文六十六兩三¹⁷⁰錢三分. 忠原綿紬十二尺, 藍浦硯石一面, 黃簡·永同各席一立式, 清州脯一貼, 林泉苧絲二台,

五十六兩一錢, 五十三州都家 作紙.

十兩人蔘代錢, 營庫.

二十六兩五錢, 五十三州物膳¹⁷¹代錢.

合一百五十八兩九錢三分內 八兩藥庫下人帖下除, 實一百五十兩九錢三分, 奴子六兩, 通引五錢 以上都主人例給下人等.

3월령. 백급 진상 6근 2냥 5돈 안에서 3냥 7돈 5푼의 공주 본읍¹⁷²을 빼면 실제로는 5근 14냥 7돈 5푼을 대신하는 돈 66냥 3전 3푼이다. 충원(충주목)은 명주 12척, 남포는 벼루 1면, 황간과 영동 각각 방석 1蓆씩, 청주는 포육 1첩, 임천은 모시실 2태이다.

56냥 1전이 53주(州)의 도가(도가작지)이다 작지이다. 10냥은 인삼의 대전(代錢)으로, 영고에서 낸다.

26냥 5전은 53주(州)의 물선(物膳)의 대전이다.

합계 158냥 9전 3푼 안에서 8냥의 약고 하인의 체하를 빼면 실제로는 150냥 9전 3푼이다.

168 백급 : 자란의 뿌리를 말린 약재이다.

169 도가 : 도가(都家)란 상인조직의 본부로서 관할 시전을 통할하고, 국역 부담의 업무를 하였다. 일종의 동업자 계이다.

170 三 : 원본에는 ‘三’이 중복되어 있다.

171 원본에는 ‘物餚’으로 오기되어 있다. 임금이나 왕족의 생일에 바치는 물품이 물선(物膳)이다.

172 공주 본읍 : 공주목은 충청감영이 있는 곳이다.

사내종은 6냥, 통인은 5전이다 이상은 도주인(都主人)이 하인 등에게 관례적으로 준다.

四月令. 八兩四錢, 十四邑作紙 奴子一錢五分, 通引二錢. 都家主人例給.

4월령. 8냥 4전은 열네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1전 5푼, 통인은 2푼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五月令. 六兩六錢, 十一邑作紙 奴子一錢五分, 通引一錢五分. 都家主人例給.

5월령. 6냥 6전은 열한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1전 5푼, 통인은 1전 5푼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六月令. 十四兩四錢, 二十四邑作紙. 奴子二錢, 通引一錢五分. 都家主人例給.

二兩七錢, 別卜定九邑, 白清作紙.

6월령. 14냥 4전은 스물네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2전, 통인은 2전 5푼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2냥 7전은 별지정 아홉 고을의 백청 작지이다.

七月令. 二十六兩六錢, 白芨二斤六兩代.

七兩八錢, 二十二邑, 白芨作紙.

二兩一錢七邑白清紙.

十九兩八錢, 三十三邑, 都家作紙.

合錢五十六兩三錢內 四兩藥庫下人帖下, 實五十二兩三錢, 奴子五錢, 通引五錢, 都家主人例給.

7월령. 26냥 6전은 백금 2근 6냥의 대전(代錢)이다.

7냥 8전은 22고을의 백금 작지이다.

2냥 1전은 7고을의 백청 작지이다.

19냥 8전은 33고을의 도가작지이다.

합한 돈 56냥 3전 안에서 4냥은 약고 하인의 체하로, 실제는 52냥 3전이다. 사내종은 5전, 통인은 5전을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八月令. 十五兩六錢, 二十六邑作紙 奴子二錢五分, 通引二錢五分. 都家主人例給.

8월령. 15냥 6전은 스물여섯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2전 5푼, 통인은 2전 5푼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九月令. 六兩, 十邑作紙 奴子一錢五分, 通引二錢. 都家主人例給.

9월령. 6냥은 열 고을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1전 5푼, 통인은 2전이다. 도가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十月令. 二十六兩九錢五分 白芨二斤六兩五錢代, 加一兩五錢.

五十六兩一錢, 五十三州作紙.

十五兩 真荘 · 木花代錢.

四十八兩, 人蔘代錢, 營庫.

二十六兩五錢, 五十三州膳物代錢. 三兩, 十邑白清作紙.

合一百七十五兩五錢五分內 四兩藥庫下人帖下, 實一百七十一兩五錢五分, 奴子六兩, 通引五錢, 都家主人例給. ○忠原綿紬十二尺, 藍浦硯石一介, 黃簡 · 永同各席一立式, 清州脯一貼, 青山 · 報恩各大枣一斗式, 林泉苧絲二台 · 白清封餘二升.

10월령. 26냥 9전 5푼이다 백금 2근 6냥 5돈의 대전(代錢)으로, 1냥 5돈을 더한다.

56냥 1전은 53주(州)의 작지이다.

15냥이다 참깨, 목화의 대전이다.

48냥은 인삼의 대전으로, 영고에서 낸다.

26냥 5전은 53주(州)의 물선(物膳)의 대전이다. 3냥은 열 고을의 백청의 작지이다.

합계 175냥 5전 5푼 안에서 4냥은 약고 하인의 체하로, 실제로는 171냥 5전 5푼이다.

사내종 6냥, 통인 5전을 도가 주인이 관례적으로 준다. ○충원(충주목)은 명주 12척, 남포는 벼루 1개, 황간과 영동 각각 방석 1닢씩, 청주는 포육 1첩, 청산과 보은 각각 대추 1말씩, 임천은 모시실 2태와 백청 봉여 2되이다.¹⁷³

十一月令. 十二兩, 二十邑作紙. 奴子二錢, 通引二錢 都家主人例給.

11월령. 12냥은 20읍의 작지이다. 사내종은 2전, 통인은 2전이다 도가주인이

173 본문 충청감영 월령예납(月令例納)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관례적으로 준다.

3·10월 두 분기 영납 때 하인 등에게 주는 체하(三十月令兩等令納時下人等帖下)

隨廳妓處一兩 若無則不給,
宣化堂通引處一兩, 及唱處五錢,
布政司使令等處一兩, 下處通引處一兩,
陪吏等處五錢, 使令等處一兩,
檢律堂通引二錢, 都房子一兩,
廳通引處五錢, 都房子處三錢,
宣化堂房子一錢, 廳門使令處二錢,
茶母處二錢.

수청기에게 1냥 만약 없다면 주지 않는다.
선화당의 통인에게 1냥, 급창에게 5전,
포정사¹⁷⁴의 사령 등에게 1냥, 임시 숙소의 통인에게 1냥,
배리 등에게 5전, 사령 등에게 1냥,
검율당의 통인 2전, 도방자 1냥,
청(廳)의 통인에게 5전, 도방자에게 3전,
선화당의 방자 1전, 청문사령에게 2전,
다모에게 2전이다.

3·10월의 두 분기 영납 때 내국에서 드는 비용(三十月兩等令納內局所費)¹⁷⁵

174 포정사 : 관찰사가 집무하는 관아이다.

175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서는 2월과 9월이 대령(大令)이고 1·3·4·5·6·7·8·10월이 소령(小令)이다. 본 문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內局古風錢三兩.

三提調宅, 帶率等處, 二兩七錢.

大廳直處一兩. 水工處一兩.

내국의 고풍은 돈으로 3냥이다.

세 제조 댁의 거느리는 하인 등에게 2냥 7전이다.

대청지기에게 1냥이다. 수공에게 1냥이다.

기타(其他)¹⁷⁶

傳掌大櫃一坐, 事例.

큰 궤 1좌를 인계하는 것은 사례이다.

藥庫色吏一人, 四月初一日, 自墨庫色吏移差.

약고의 색리 1인은 4월 1일에 먹고의 색리에서 옮겨 임명한다.

醫生二人, 自本府上來, 庫子一名, 營奴入番.

의생 2인은 본부에서 올라오고 고지기 1명은 감영의 사내종이 입번한다.

3. 전라감영(全羅監營)¹⁷⁷

4월에 요를 받음(四月受料)¹⁷⁸

補軍庫. 太十二斗價一兩六錢 每石二兩, 每斗一錢三分三厘.

176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177 전라도 전주에 있던 전라감영에서 근무하는 종9품 전라도심약에 관련된 내용이다.

178 본문에는 항목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과 맞지 않는다. 본문 함경감영에서 비슷한 말이 세주로 되어있는데 달수 앞에 '自'가 추가되어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에 '自'를 넣어도 어울리지 않는다.

木三疋價六兩 每疋二兩永定. 錢邊色吏納.

常米二石一斗五升 自三月至八月二石一斗五升, 自九月至二月二石三升. 米邊色吏納. 詳定三兩.
每斗二錢.

보군고¹⁷⁹의 경우 : 콩 12말 값으로 1냥 6전 섬당 2냥씩, 말당 1전 3푼 3리씩이다.
무명 3필 값으로 6냥 필당 2냥씩으로 영구히 정했다. 전변색리¹⁸⁰가 들인다.

상미(常米) 2섬 1말 5되 3월부터 8월까지는 2섬 1말 5되, 9월부터 2월까지는 2섬 3되이다.
미변색리¹⁸¹가 들인다. 상정가(詳定價)는 3냥이다. 말당 2전씩이다.

營庫. 真油三升價七錢五分 每升二錢五分.

法油一升五合價三錢三分 每升二錢二分.

石魚十三束價一兩五錢六分 每束一錢二分.

白蝦四升五合價二錢七分 每升六分.

鹽四升五分價七分三里 每升一分六里.

真末三升價六分.

南草二斤價七錢五分 每兩二分五里.

營庫庫子納 一斤, 小朔十三兩¹⁸². 已上大朔三兩七錢九分二里, 小朔三兩七錢六分七里.

黃肉三十斤價三兩 每斤一錢. 營庫色吏納.

清醬一斗一升五合價二錢三分, 甘醬一斗三升五合價一錢五分. 醬婢納. 合三錢八分.

영고의 경우 : 참기름 3되 값으로 7전 5푼 되당 2전 5푼씩이다.

들기름 1되 5홉 값으로 3전 3푼 되당 2전 2푼씩이다.

조기 13속 값으로 1냥 5전 6푼 속당 1전 2푼씩이다.

쌀새우 4되 5홉 값으로 2전 7푼 되당 6푼씩이다.

소금 4되 5홉 값으로 7푼 2리 되당 1푼 6리씩이다.

179 보군고 : 보군(補軍)이란 예비 군사이다. 보군전(補軍錢, 세금의 한 가지이다.)을 납부하는 병역 대상이 되었다. 본문의 보군고도 보군전고를 지칭한다.

180 전변색리 : 돈의 이자를 담당한 아전이다.

181 미변색리 : 쌀의 이자를 맡은 아전이다.

182 十三兩 : 원본에는 ‘十三兩’이 들어가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밀가루 3되 값으로 6푼.

남초(南草) 2근 값으로 7전 5푼 냥당 2푼 5리씩이다.

영고지기가 들인다 1근은 소삭으로 한다. 이상으로 대삭은 3냥 7전 9푼 2리, 소삭은 3냥 7전 6푼 7리이다.

쇠고기 30근 값으로 3냥 근당 1전씩이다. 영고색리가 들인다.

청장(淸醬) 1말 1되 5홉 값으로 2전 3푼, 감장(甘醬) 1말 3되 5홉 값으로 1전 5푼. 장비¹⁸³가 들인다. 합계 3전 8푼이다.

營繕. 房木六十束價一兩八錢.

支供木十束價一兩八錢 小溯五十八束代文, 一兩七錢四分, 每束三分式.

眞炭九斗價六錢六分 小溯八斗七升代文, 六錢四分, 每斗七分三厘三毫.

炬十五柄價四錢五分 小溯十四柄半代文, 四錢三分五厘, 每柄三分.

馬木六十束價一兩八錢 每束三分.

馬草一百二十束 價三兩六錢 每束三分. 小溯一百十六束. 已上大溯十兩一錢一分, 小溯九兩七錢七分.

영선고의 경우 : 방목(房木) 60속 값으로 1냥 8전,

지공목(支供木) 60속 값으로 1냥 8전 소삭에 58속을 대신하는 돈은 1냥 7전 4푼으로,
속당 3푼씩이다.¹⁸⁴

참숯 9되 값으로 6전 6푼 소삭에는 8말 7되를 대신하는 돈은 6전 4푼으로, 되당 7푼 3리 3호씩이다.

홰 15자루 값으로 4전 5푼 소삭에 14자루 반을 대신하는 돈은 4전 3푼 5리로, 자루당 3푼씩이다.

마목(馬木) 60속 값으로 1냥 8전 속당 3푼씩이다.

마초(馬草) 120속 값으로 3냥 6전 속당 3푼씩이다. 소삭은 116속이다. 이상은 대삭 10냥 1전 1푼, 소삭 9냥 7전 7푼이다.

183 장비 : 장 담그는 여종이다.

184 원본에는 방목과 지공목이 밀줄로 묶여있다.

紙所. 厚紙一卷價一兩二錢六分. 營白紙一卷價一兩.

지소의 경우 : 후지(厚紙) 한 권 값으로 1냥 2전 6푼. 영백지(營白紙) 1권 값으로 1냥.

工庫. 黃筆一柄價二錢二分. 真玄一丁價七分.

공고(工庫)의 경우 : 황모필 1자루 값으로 2전 2푼. 참먹 1정 값으로 7푼.

補膳庫. 饌價米二石式 正月, 從市直執錢.

本府菜蔬色吏所納, 一兩八錢 每朔六場式, 每場三錢式. 小朔一兩七錢四分, 每日六分式.

보선고의 경우 : 반찬 값으로 쌀 2섬씩 정월에 시장 가격에 따라 돈으로 바꾼다.

본부 채소색리가 들이는 것 1냥 8전 달마다 여섯 밭씩, 밭당 3전씩이다. 소삭은 1냥 7전 4푼이며, 날마다 6푼씩이다.

正月衣資木, 四疋價八兩,

七月衣資木, 五疋價十兩. 補軍錢邊色吏納.

歲饌米五斗 常米. 補軍米邊色吏納.

正月, 二張付油菴一浮價, 一兩五錢四分.

厚紙二卷價, 二兩八錢.

男梳貼一部價五錢.

笠冒一事價, 二錢五分.

正月, 真玄一同價七錢. 五兩九分紙所色吏納.

十二月灰白紙價十三兩 賑恤庫錢邊色吏納.

十月都試不中賞四兩 若其時不參則無.

二月胎水令五兩 此則三月下去時推納云.

三月白清二升.

三月令錢二百五兩內 內局浮費七兩二錢除, 實一百九十七兩八錢. 藥在米二十四石八斗六升
二合 正月從市直執錢.

四月, 桑寄生令作錢十兩, 甘蘿十束, 海衣十吐, 海蓼一斗一升, 薤古一斗, 冬栢油
一升.

六月胎水錢五兩.

八月胎水錢五兩.

九月白清二升.

十月令錢二百五兩內 內局浮費七兩二錢除, 實一百九十七兩八錢.

十一月鹿角霜令, 作紙錢二兩, 南草二斤 此則三月下去後推納云.

정월령 옷감인 무명 4필 값으로 8냥,

7월령 옷감인 무명 5필 값으로 10냥. 보군전변색리(補軍錢邊色吏)가 들인다.

세찬미 5말 상미(常米)이다. 보군미변색리(補軍米邊色吏)가 들인다.

정월령 2장 붙인 유둔(油菴)¹⁸⁵ 1부 값으로 1냥 5전 4푼.

후지(厚紙) 2권 값으로 2냥 8전.

남자 빗 접¹⁸⁶ 1부 값으로 5전.

갈모 1벌 값으로 2전 5푼.

정월령 참먹 1동 값으로 7전. 이상 5냥 9푼을 지소(紙所)색리가 들인다.

12월령 재백지(灰白紙) 값으로 13냥 진휼고전변색리(賑恤庫錢邊色吏)가 들인다.

10월령 선무도시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의 상으로 4냥 만약 그 때에 참석하지 않는다
면 주지 않는다.

2월령 태수(胎水)¹⁸⁷ 5냥 이는 3월에 내려갈 때 추납한다고 한다.

3월령 백청 3되.

3월령 돈 205냥 안에서 내의원에서 써서 없어지는 돈 7냥 2전을 빼면, 실제로는 197냥
8전이다. 약재미(藥在米) 24섬 8말 6되 2홉 정월에 시장 가격에 따라 돈으로 바꾼다.

4월령 상기생을 돈으로 바꾼 10냥, 미역 10속, 김 10톳, 해삼 1말 1되, 표고버
섯 1말, 동백기름 1되.

6월령 태수(胎水) 값 5냥.

185 유둔(油菴) : 비 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기름종이이다.

186 빗 접 : 빗 접은 참빗, 얼레빗 등을 넣어두기 위해 기름종이로 만든 제품이다.

187 태수(胎水) :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89) 7월 16일 기사. 의녀(醫女)를 도성 오부의 출산
한 부인들에게 보내어 남태(男胎)의 것을 거두어서 정결하게 보관했다가 약용으로 쓴다. 직접
공납하는 것이 아니라 태수 비용을 추납한다.

8월령 태수(胎水) 값 5냥.

9월령 백청 2되.

10월령 돈 205냥 안에서 내의원에서 써서 없어지는 돈 7냥 2전을 빼면, 실제로는 197냥 8전이다.

11월령 녹각상 작지전¹⁸⁸ 2냥, 담배 2근 이는 3월에 내려간 뒤 추납한다고 한다.

도임 때 잡물에 대한 기록(到任時雜物記)

漆盤一立代七錢, 統盤一立代八錢,

莞骨席一立代八錢, 茵席二立代四錢,

篩一件代一錢五分, 單篩一件代二錢,

周馬一介代二分, 房篩二柄代六分,

挾金一件代五錢, 刀子一介代一錢五分,

火箸一件代一錢, 木瓢子一介代一錢,

【助+乙】刀一介代一分, 炙金一介代三錢,

【助+乙】邑朴一介代一錢, 含朴一介代一錢五分.

以上本府散料色吏納 合四兩五錢四分內, 四錢五分, 戶長應除, 實四兩九錢.

옻칠을 한 쟁반 1닢을 대신하여 7전, 통반 1닢을 대신하여 8전,

완골자리 1닢을 대신하여 8전, 인석(茵席) 2닢을 대신하여 4전,

체 1건을 대신하여 1전 5푼, 짧은 체 1건을 대신하여 2전,

주걱 1개를 대신하여 2푼, 방 빗자루 2자루를 대신하여 6푼,

징 1건을 대신하여 5전, 칼 1개를 대신하여 1전 5푼,

부젓가락 1건을 대신하여 1전, 나무 표주박 1개를 대신하여 1전, 조롱이 칼¹⁸⁹

1개를 대신하여 1푼,

석쇠 1개를 대신하여 3전, 조롱박 1개를 대신하여 1전, 함지박 1개를 대신하여

188 작지전 : 관청에서 문서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종이 값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189 가운데가 잘록한 칼이다.

1전 5푼이다.

이상은 본부의 산료(散料)색리가 들인다 합계 4냥 5전 4푼 안에서 4전 5푼인 호장의 비용을 빼면 실제로는 4냥 9전이다.

白紙五束, 壯紙十張, 皮紙三卷, 本府紙所色吏納.

毛方席一立, 九月納 代文一兩, 或四錢五分, 草方席一立, 三月納. 本府都工房納.

扇子二十柄, 扇子廳納.

火爐·中缸·東海·子朴只·油瓶·汝乙朴·峩阿只·翁朴只, 各一介, 店主人納

丁酉節目, 十二月, 因本府所陽面黃雲里捲弊條, 除減下, 隨時變通, 今則推納云.

大接二箇, 甫兒二箇, 楪匙十箇, 鐘子二箇, 沙鉢二箇, 官廳牌頭納.

燭板, 斗升, 刀磨, 各一介, 桶造色納.

瓠瓜 自六月初一日至晦日三介式, 西瓜 自七月初一日至晦日一介式,

早紅 自八月初一日至晦日十介式.

백지 5속, 장지(壯紙) 10장, 피지(皮紙) 3권은 본부의 지소(紙所)색리가 들인다.

털방석 1닢은 9월에 들이고 대신하는 돈은 1냥 혹은 4전 5푼이다. 풀방석 1닢은 3월에 들인다. 본부 도공방(都工房)이 들인다.

부채 20자루는 선자청이 들인다.

화로, 중간 항아리, 동이, 자배기¹⁹⁰, 기름병, 널박, 싸라기, 옹배기¹⁹¹ 각 1개씩
점주인(店主人)이 들인다 《정유년(1837, 순조 37) 절목》에 보면, 12월에 본부(전주부) 소양
면 황운리¹⁹²의 〈구폐조捲弊條〉를 인하여 제감(除減)해 준 바탕에서 때에 따라 변통하였다가,
지금은 추납한다고 한다.

대접 2개, 보시기 2개, 접시 10개, 종지 2개, 사발 2개는 관청의 패두(牌頭)가
들인다.

촛불 판, 말과 되 그릇, 도마 각 1개씩 통조색(桶造色)¹⁹³이 들인다.

190 자배기 :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은 질그릇이다.

191 옹배기 : 자배기와 비슷하지만 아주 작은 질그릇이다.

192 황운리 : 현재의 전북 완산군 소양면 황운리이다.

193 통조색(桶造色) : 통 만들기를 담당한 사람이다.

참외 6월 1일부터 그믐날까지 3개씩이다. 수박 7월 1일부터 그믐날까지 1개씩이다.
이른 흥시 8월 1일부터 그믐날까지 10개씩이다.¹⁹⁴

도방자 행하(都房子行下)¹⁹⁵

都房子八名等處, 前無行下名色, 戊戌年分, 因昧例而行下一兩矣, 遂爲前例云, 而行下書入. 故退之而只給一兩, 此則永爲前例矣 或不給云.

도방자 8명 등에게는 이전에 행하의 명색이 없었는데, 무술년(1838, 순조 38) 연분(年分) 때 전례에 어두움으로 인하여 1냥을 행하로 주었기에 마침내 전례라고 하면서 행하를 써서 들였다. 그래서 물리치고 그냥 1냥만 주니 이것이 영원히 전례가 되었다 혹은 주지 않기도 한다고 한다.

4. 함경감영(咸鏡監營)¹⁹⁶

自五月受. 丙寅四月, 仍傳教, 減鹿茸八對, 癸酉十二月復設.

5월부터 받는다. 병인년(1866, 고종 3) 4월 전교로 인하여 녹용 8대를 줄였다가¹⁹⁷ 계유년(1873) 12월에 복설하였다.^{198 199}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²⁰⁰

194 납입의 주체가 나오지 않지만 경상감영의 예에 따르면 원두한(園頭漢)이다.

19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196 함경도 함흥에 있던 함경감영(咸鏡監營)에서 근무하는 종9품 함경도심약(咸鏡道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197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4월 13일 기사.

198 《승정원일기》 고종 10년(1873) 12월 24일 기사.

199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함경감영에서는 7월 대령으로 녹용 16대를 진상했다.

營庫. 大米一石代錢五兩八錢.

稷二石代錢一兩六錢.

赤豆二斗代錢四錢二分六里六毫 每年十月折價, 從市直.

朔布二疋代文四兩. 饋價三兩. 鹽六斗代文六錢.

清醬五升代文一錢. 甘醬一斗代文五分.

大口三尾代文四錢五分. 北魚三十尾代文一錢八分七厘.

加魚三十尾代文二錢二分五厘.

法油三升代文三錢. 南草三十兩代文五錢八分.

영고의 경우 : 쌀 1섬을 대신하는 돈 5냥 8전.

기장 2섬을 대신하는 돈 1냥 6전.

팥 2말을 대신하는 돈 4전 2푼 6리 6호 해마다 10월에 물건 값을 정하는데 시장 가격에 따른다.²⁰¹

삭포(朔布) 2필을 대신하는 돈 4냥. 반찬값 3냥. 소금 6말을 대신하는 돈 6전.

청장(清醬) 5되를 대신하는 돈 1전, 감장(甘醬) 1말을 대신하는 돈 5푼.

대구 3마리를 대신하는 돈 4전 5푼, 북어 30마리를 대신하는 돈 1전 8푼 7리.

가자미 30마리를 대신하는 돈 2전 2푼 5리.

들기름 3되를 대신하는 돈 3전. 담배 30냥을 대신하는 돈 5전 8푼이다.

禮庫. 真油一升代文三錢. 鷄三數代文三錢 五六月以軟鷄六數式.

예고의 경우 : 참기름 1되를 대신하는 돈 3전. 닭 3마리를 대신하는 돈 3전 5, 6월에는 영계 6마리씩이다.

都務司. 柴六十束 作小一百八十丹, 代文一兩八錢.

炭六斗代文一錢二分.

炬二十柄 前或三十柄, 代文二錢 吏房納.

도무사의 경우 : 땅나무 60속 작게 만들면 180단이다.²⁰²을 대신하는 돈 1냥 8전.

200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201 원본에는 쌀 이하로 묶여있다.

속 6말을 대신하는 돈 1냥 2푼.

홰 20자루 과거에는 서른 자루이기도 했다. 를 대신하는 돈 2돈 이방이 들인다.

紙庫. 白紙一束代文二錢. 黃簡三十幅代文二錢一分.

黃筆一柄代文五分. 真墨一丁代文五分.

지고의 경우 : 백지(白紙) 1속을 대신하는 돈 2전. 황간지 30폭을 대신하는 돈 2전 1푼.

황모필 1자루를 대신하는 돈 5푼. 참먹 1정을 대신하는 돈 5푼.

糧餉庫. 四等衣資 每等十四兩式, 合五十六兩. 四孟朔.

양향고의 경우 : 네 분기의 옷감 분기마다 14냥씩이니 합계 56냥이다. 네 계절의 첫 달에 낸다.

草監. 馬草代文三兩式.

초감의 경우 : 말먹이 풀을 대신하는 돈 3냥씩.

本府東倉. 奴料田米 大月十二斗, 小月十一斗六升, 從市直, 詳定三兩.

馬太六斗 小月減二升, 自四月望後至九月先望, 每日一升, 從市直, 詳定一兩五錢.

空石十五立式代文七分 東倉納. 每朔合二十三兩五錢四分八里六毫, 合二百八十二兩五錢八分三里二毫.

본부 동창의 경우 : 노료 밭벼쌀 대삭은 12말, 소삭은 11말 6되이다. 은 시장 가격에 따라 상정가(詳定價) 3냥.

말먹이 콩 6되 소삭은 2되를 줄이고 4월 보름 뒤부터 9월 보름 앞까지 날마다 1되씩이다.
는 시장 가격에 따라 상정가(詳定價) 1냥 5전.

빈 가마니 15닢씩을 대신하는 돈 7푼 동창에서 들인다. 달마다 합계 23냥 5전 4푼 8리 6호로, 도합 282냥 5전 8푼 3리 2호이다.

本府工庫. 白席四立 正月二立, 七月二立, 每立代文四錢式.

202 1속(束)은 3단(丹)임을 알려준다.

본부 공고의 경우 : 흰 자리 4닢 정월에 2닢, 7월에 2닢이다. 을 닢당 대신하는 돈은 4전씩이다.

冬至. 白米五升, 赤豆五升, 白清五合 營庫.

동짓날 : 백미 5되, 팔 5되, 백청 5홉 영고 몇이다.

正朝. 白米一斗, 田米一斗, 大口魚二尾.

설날 : 백미 1말, 밭벼쌀 1말, 대구 2마리.

十月都試後, 不中賞木二疋代文三兩式.

十月令, 赤白伏令代文一百兩五錢內 四十兩納于內局, 實六十兩五錢. 白茯苓九斤, 每斤八兩式, 赤茯苓 九斤加九兩.

白布袋九尺, 赤布袋五尺. 營庫納.

封餘錢三兩. 黃牛價布一同內 二十五疋, 慶源·穩城, 輪納. 二十五疋, 會寧納.

四幅幘²⁰³二件.

10월 선무도시 후에 통과하지 못한 상인 무명 2필을 대신하는 돈 3냥씩.

10월령 적백복령을 대신하는 돈 100냥 5전 안에서 40냥은 내의원에 들이므로, 실제로는 60냥 5전이다.

백복령은 9근인데, 근당 8냥씩이며, 적복령은 9근인데, 9냥을 더한다.

흰 삼베포대 9척, 붉은 삼베포대 5척. 영고에서 들인다.

봉여전 3냥. 황우 값 삼베 1동 안에서 25필은 경원, 온성에서 돌아가며 들이고 25필은 회령에서 들인다.

네 폭 보자기는 2건.

三月令封餘二兩. 五月令封餘一兩.

七月令封餘文一百兩內 十兩庫屬處行下, 實九十兩.

各色人情錢, 二十七兩三錢 情布三十七疋中, 見下.

茂山封餘錢六十兩. 四升布十四匹內 五疋, 庫屬行下.

203幘 : 문액상 보자기를 뜻하는 보(袱)인 듯하다.

穩城, 一對 布三疋. 端川, 一對 布二疋.

吉州, 四對 辛丑, 一對權減, 布十疋. 明川, 二對 辛丑, 一對權減, 布八疋.

鏡城, 三對 布七疋. 富寧, 一對 布二疋.

會寧, 一對 布三疋. 鐘城, 一對 布二疋. 已上布每匹代文, 一兩式.

茂山 二對 本色納. 合十二對代文二千四百兩內 八對減時, 在四對代文八百兩.

駄價一百六十八兩 每百兩七兩式.

已上布合三十七疋代文三十七兩內, 九兩七錢, 以七月令京人情條出給醫生, 實餘文二十七兩三錢. 見上七月令各色人情條.

3월령 봉여 2냥. 5월령 봉여 1냥.

7월령²⁰⁴ 봉여전 100냥 안에서 10냥은 고속(庫屬)에게 주는 행하이므로 실제로는 90냥이다.

각색 인정전(인정채) 27냥 3전 정포(情布)는 37필이다. 아래에 보인다.

무산 봉여전 60냥. 넉새베²⁰⁵ 14필 안에서 5필은 고속(庫屬)의 행하이다.

온성 1대 삼베는 3필이다. 단천 1대 삼베는 2필이다.

길주 4대 신축년(1841, 현종 7)에 1대를 임시로 줄였다. 삼베는 10필이다. 명천 2대 신축년(1841)에 1대를 임시로 줄였다. 삼베는 8필이다.

경성 3대 삼베는 7필이다. 부령 1대 삼베는 2필이다.

회령 1대 삼베는 3필이다. 종성 1대 삼베는 2필이다. 이상의 삼베는 1필당 대신하는 돈 1냥씩이다.

무산 2대 본색²⁰⁶을 들인다. 합계 12대를 대신하는 돈 2,400냥 안에서 8대를 줄였을 때 4대를 대신하는 돈은 800냥이다.

204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함경감영에서는 7월에 녹용 16대를 진상했다. 본문에는 명기되어있지 않으나 ‘對’라는 단위는 녹용에만 쓰인다.

205 넉새베 : 원래 면포를 화폐로 사용할 때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인 다섯새베(五升布)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점차 넉새베, 석새베도 활용되었고, 이 정도만 하여도 서민의 옷을 만들 정도의 크기였다. 그러나 두새베 같은 단포(短布)가 등장하면서 악포(惡布)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를 논하는 내용이 종종 보인다.

206 본색 : 본색(本色)은 다른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지 않고 본래 정해진 물종대로 한다는 말이다.

태가(駄價) 168냥 100냥당 7냥씩이다.

이상 삼베 합계 37필을 대신하는 돈 37냥 안에서 9냥 7전을 7월령 경인정(京人情) 조로 의생에게 내주면 실제로 남는 돈은 27냥 3전이다. 위 7월령 각색 인정 조에 보인다.

도임 초의 수리(到任初修理)

紙庫. 白紙十束.

窓戶紙五張.

지고의 경우 : 백지 10속.

창호지 5장.

監造所. 地衣一浮. 登每一浮. 方席一立.

安息一立. 洗手方席一立.

감조소(監造所)의 경우 : 지의(地衣) 1부. 등매 1부. 방석 1닢.

안식(安息) 1닢. 세수 방석 1닢.

雜物庫. 笠巨里一部. 衣架一部. 【火+市】捨一部.

灰板一部. 硯匣一部 硯滴具. 【火+市】籠一部 串之具.

火爐一部. 飛陋筒一部. 鹽筒一部.

窓簾一部. 鎖子二介. 食刀一介.

鐵柄刀一部. 【西+乙】金一介. 火箸一介.

火匙一介. 炙金一介. 芦葦五立.

잡물고의 경우 : 모자걸이 1부. 옷걸이 1부. 촉대²⁰⁷ 1부.

재떨이 1부. 벼룻집 1부 연적을 갖춘다. 촉롱 1부 꽃이를 갖춘다.

화로 1부. 비누통 1부. 소금통 1부.

창찬(대그릇의 일종) 1부. 자물쇠 2개. 식칼 1개.

207 「【火+市】」은 「燭」의 이체자이다.

자루가 철인 칼 1부. 설쇠²⁰⁸ 1개. 부젓가락 1개.
부손 1개. 적쇠 1개. 거적 5닢.

체등조(遞等條)

錢文十兩, 田米二石, 黃清三升, 加魚三級,
北魚二級, 文魚一尾, 赤豆五斗, 耳麥二石,
海蔘一百介, 蒸昆布三同.
돈 10냥, 밭벼쌀 2섬, 황청 3되, 가자미 3두름,
북어 2두름, 문어 1마리, 팔 5말, 귀리 2섬,
해삼 100개, 찐 다시마 3동이다.

7월령(七月令)²⁰⁹

七月令內局所入.
懸狀次一兩四錢, 水工五錢, 越門次六錢,
庫直一兩, 到付次五錢, 水工別下七錢.
7월령의 내국에서 들어가는 비용.
현장(懸狀)하는 비용 1냥 4전, 수공에게 5전, 월문하는 비용 6전,
고지기에게 1냥, 도부하는 비용 5전, 수공 별하로 7전이다.
七月令封裹時. 中櫃一坐 具鎖子, 紅麻絲二巨里, 席子一立 監造所納.
營庫, 大袱次布一疋一尺, 袋布次十五尺.
紙庫, 壯油紙二張, 密紙二張, 壯紙二張.
7월령을 봉과할 때 : 중간 켜 1좌 자물쇠를 갖춘다. 붉은 삼실 2걸이, 둑자리 1닢

208 설쇠 : 설쇠는 강원도·함경도 등지에서 적쇠를 부르는 방언이다.

209 본문에는 이 항목이 따로 없다. 내용으로 이름을 붙였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함경도는 7월이 대령, 3월과 10월이 소령이다.

감조소에서 들인다.

영고에서는 큰 보자기용 삼베 1필 1척, 자루용 삼베 15척.

지고에서는 장유지 2장, 밀지 2장, 장지 2장.

七月令進上鹿茸十六對內, 二對權減, 自辛丑十四對內. 十二對別貿, 二對茂山本色.

7월령 진상 녹용 16대 안에서 2대는 임시로 줄였는데 신축년(1841, 현종7)²¹⁰

부터 14대 안에서 12대는 별무(別貿)로 하고 2대는 무산에서 본색으로 한다.²¹¹

도광 3년(1823, 순조23) 3월 모일 함경도 경성부(鏡城府)의 진상 녹용의 대전에 대한 절목. 계미년.(道光三年三月 日, 鏡城府進上鹿茸代錢節目. 癸未.)

右節目爲永久遵行事. 楊橘荊龜, 載於〈禹貢〉, 漆魚越雉, 著於周制. 今此進上鹿茸, 卽〈禹貢〉周制之遺規也. 始以土貢, 各自本邑, 擇其真品, 封進受價矣. 法久弊生, 元價不足, 無以當納, 各自該邑, 從長變通, 或布或穀添給, 營邸與審藥, 相議封進, 而弊日益滋, 莫可矯救, 至有先朝辛未定式, 鹿茸每對, 元會減一百兩·駄價十八兩外, 無敢以添價斂民之意, 行會施行是如尼, 曾未幾何, 審藥操縱之弊, 營邸漁利之習, 轉轉層加, 至於會寧而極矣. 自巡營特軫, 爲弊源講定矯救之策, 論啓蒙允, 發關各邑, 代錢與本色間, 廣詢便否矣. 節到使²¹²關內, 卽見各邑所報, 則代錢直納, 皆爲便宜是如, 一辭同然. 可見列邑詢謀僉同, 代錢一欵, 別無留難乙仍于, 今爲始茲²¹³, 以代錢則²¹⁴納之意, 停當發關爲去乎. 須悉此意, 每對二百兩代錢, 三月內納于巡兵營爲乎矣, 如是酌定之後, 各邑之穀布間出給營邸與差人之謬例, 一切革罷, 直自該

210 본문 함경감영 '3월령 봉여 2냥(三月令封餘二兩)'에 나온다. 길주와 명천에서 한 대씩 줄였다.

211 본문 함경감영에 고종조 녹용 진상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7월령에서 이 내역을 반영하지 못한 까닭은 함경감영 내용이 더 후대에 추가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12 使 : '使'는 '付'의 오자이거나 앞에 '付'를 빠뜨린 듯하다.

213 今爲始茲 : '今爲始茲'는 '自今爲始'의 오류로 보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14 則 : '則'은 문맥에 근거할 때 '直'의 오자이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邑，從便辦錢，直納于巡兵營審藥，俾除科外濫斂之弊，則本色點退·臨時窘急之患，價穀濫下·從中漁利之習，運穀載船·無價遠輸之弊，可以次第蘇革，公私²¹⁵幸甚是在果。

이상의 절목은 영구하게 준행할 일입니다. 양(楊) 지방의 끌(橘)과 형 지방의 거북이는 <우공禹貢>²¹⁶에 실려 있고, 칠수의 물고기²¹⁷와 월상씨²¹⁸의 꿩은 주 나라의 제도에 보입니다. 지금 이 진상 녹용은 <우공>과 주나라 제도의 남겨진 규례입니다. 처음에는 토공으로 각자 본읍에서 그 진품을 간택하여 봉진하고 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오래되면서 폐단이 생겨나 원래의 값으로는 부족해져서 맞추어 바칠 수가 없게 되자, 제각각 해당 읍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통하여 삼베 혹은 곡식을 더 주어 영저(營邸)²¹⁹에서 심약(審藥)과 함께 상의하여 봉진하였습니다만, 폐단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조(先朝)[영조]의 신미년(1751, 영조 27) 정식에서 녹용 1대마다 원회 감(元會減)²²⁰ 100냥, 태가(駄價) 18냥 외에는 감히 값을 더하여 백성들에게 거두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 알려 시행하는 데 이르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약이 마음대로 다루는 폐단과 영저(營邸)에서 이익을 꾀하는 습속이 점점 갈수록 쌓이다가 회령(會寧)의 일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감영²²¹에서 특별히 헤아려 폐해의 근원에 대해 바로잡을 대책을 강정(講定)하

215 私 : 원본에는 ‘松’으로 되어있으나 앞뒤 문맥으로 보아 오류로 보인다.

216 <우공禹貢> : 《서경書經》의 편명으로 은나라 이전 하(夏)를 세운 우(禹)가 홍수를 다스리고 천하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우왕이 순임금의 명을 받들어 치수에 성공한 뒤에 천하를 아홉 개의 주로 나누었는데 양과 형은 그 아홉 지방의 하나이다. 이를 우공구주(禹貢九州)라 한다. <우공>에서는 우공구주의 지리와 물산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17 칠수의 물고기 : 《시경》〈주송周頌〉에서 ‘猗與漆沮 潛有多魚 … 중략 … 以亨以祀 以介景福’이라 하여 저수와 칠수의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나라 사당에 제사 지내던 일을 말한다.

218 월상씨 : 고대 중국 남쪽의 나라이다. 면길에서 와서 조공하니 성왕과 주공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한다.

219 영저(營邸) : 감영에 딸려 각 군현과 감영의 연락을 취하는 장소이다.

220 원회감(元會減) : 관사에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원래 소용되는 액수이다. 회감은 회록(會錄) 된 재화를 회안(會案)상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고 논계(論啓)하여 윤허를 얻고 나서 각 고을에 관문을 보내 대전(代錢)과 본색(本色) 중에 어떤 방법이 편한지 널리 물었습니다. 지금 도착한 관문에서 각 고을에서 보고한 바를 방금 살펴본즉, 대전(代錢)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다들 편리하다고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었습니다. 고을들에 상의한 내용이 모두 같음을 알 수가 있으니 대전이라는 한 조목은 주저하거나 어려워할 것이 별로 없으므로 지금부터 시작하여 대전을 직접 납부하도록 합당하게 처리하여 관문을 보냅니다. 반드시 이러한 뜻을 잘 알고서 녹용 1대당 200냥의 대전(代錢)을 3월 안에 감영과 병영에 들이도록 하되, 이렇게 결정한 뒤에는 각 고을들에서 곡식이나 삼베 간에 영저(營邸)와 차인(差人)에게 내주는 잘못된 규례를 일체 혁파하고 곧바로 해당 고을에서 편의대로 돈을 마련하여 감영과 병영의 심약에게 직접 납부하여 조목 외로 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제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색²²²을 점퇴²²³하여 임시로 군색해지는 문제와 곡물 값을 함부로 후려쳐 그 가운데서 이익을 피하는 습속과 곡식을 운송하느라 배에싣고 대가 없이 멀리 수송하는 폐단이 차례대로 회복되고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니 공사(公私) 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今則營邸既不替受，列邑自當直納，原價二百兩外，更無駄運之費，則駄與換間，許多浮費，在所當念。除良，事係所重。如是變通者，蓋出除弊從便之地，而今於新式之初，不思來頭之掣碍，有非俱便之道，駄價如是磨鍊是如乎，每百兩駄價，巡營納邑段，七十兩式，添給爲乎矣，定例之初，列邑必也牢確定制，嚴立科條，期於夬祛冗費，然後可有變通之實效。苟或失之照檢，因循舊套，穀布之費，與前一般，則顧安有啓聞定奪之意哉。辦錢輸納之際，十分操切，分明稱停，無或濫觴爲旤，麝香熊膽等

221 감영 : 순영의 뜻은 감사가 공무를 보던 관아이다. 여기서는 감영의 뜻으로 쓰였다.

222 본색 : 본색(本色)은 조세를 거둠에 있어 본래 종류대로 거두는 것을 지칭한다. 돈으로 바꾸게되면 절색(絶色)이라 부른다.

223 점퇴 : 점퇴(點退)는 받은 물건을 조사하여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물리침을 말한다. 점퇴는 해당 관청의 고지기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졌는데, 점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정해진 양보다 많이 거두어 올리는 폐단도 생겨나거나 웃돈을 주어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屬，或有一體代錢之請²²⁴，而此則既啓聞之事，有難硬定，聞于審藥，本色與代錢間，相議折定，非營所可定者者²²⁵，知悉舉行爲旣，諸條後錄，知委惕念奉行。成節目三件反貼，一置巡營，一置兵營，一置本府，以爲遵行之地向事。三月內備納事。

지금에는 영저에서 이미 대신 받지 않고 고을들이 따로 직접 납부를 맡아 원래 값 200냥 외에 다시 운반하는 비용이 없으니, 운반하고 교대하는 사이에 들어가는 허다한 부비(浮費)는 마땅히 감안해야 할 뿐더러 중요한 일에 관련됩니다. 이와 같이 변통하는 것은 대개 폐단을 없애고 편리하게 해주려는 데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 새로운 정식을 시행하는 초기에 앞으로 닉칠 장애를 생각하지 않음에 모두가 편한 방도가 아닌 점이 있어 태가를 이처럼 마련합니다. 100냥 당 태가를 감영에 들이는 고을은 70냥씩 더 지급하되, 규례를 정한 처음에 고을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제도를 정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세워서 쓸데없는 비용을 확실히 없애기를 기약해야 합니다. 이런 뒤에야 변통의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혹여라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옛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쌀과 삼베로 내는 비용이 이전과 똑같다면 도리어 어디에 이 사안을 보고하여 결정한 뜻이 있겠습니까. 돈을 마련하고 운송하여 들일 때 충분히 단속하고 분명히 헤아려서 혹여라도 지나침이 없도록 하며, 사향, 응담 등속을 혹여 함께 대전해 달라는 청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미 보고한 일인지라 확실하게 정하기 어려움이 있기에 심약에게 보고하여 본색과 대전 중에서 상의하여 절정(折定)²²⁶할 것이요 감영에서 정할 것이 아니니 그리 알고 거행하며, 여러 조문은 뒤에 수록하니 통지하고 깊이 유념하여 봉행해야 합니다. 절목 세 건을 만들어 번첩(反貼)²²⁷하니, 하나는 감영에 두고 하나는 병영(兵營)에 두고 하나는 본부

224 請 : 원문은 ‘淸’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225 者 : 뒤의 ‘者’는 연문으로 보인다.

226 절정(折定) : 어떤 물건 대신으로 다른 물건을 받을 적에 알맞게 셈을 쳐서 그에 상당한 값이나 수량을 정하는 것이다.

227 번첩(反貼) : 결제 라인의 하급 관원이나 기관이 관련 상급 관원이나 기관으로 공문서를 보내어 검토와 허락을 받는 일 또는 관련 상급 관원이나 기관이 검토하고 허락하여 다시 그 상위의 관련 기관이나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일 등을 말한다.

(종성부)에 두어 준행할 일입니다. 3월 안으로 비납(갖추어서 상납)할 일입니다.

5. 황해감영(黃海監營)²²⁸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²²⁹

二月受料：糯米二石 每石恒定七兩式. 營庫.

小米九斗代錢，三兩一錢六里，

馬太十二斗代錢，一兩四錢四里 合四兩五錢一分，而譯學則本府以此數推捧，審檢則只捧三兩八分，未知何年謬例。

柴三百束代錢，三兩 本府工庫色吏。

炭三斗代錢，一錢二分 本府工庫子。

馬草代錢 五月至九月，二兩四錢式，十月至四月，一兩二錢式，本府工庫子。

炬二柄代錢四分 本府工庫子。

鷄代錢一兩二錢 軟鷄一首一錢式，十二首，本府官廳色吏。

朔木三疋代錢六兩 都兵庫。

肉代錢一兩一錢一分 式例則一兩五錢，而三錢九分，未知何年除減爲旤，有閏朔，則又減九分，只捧一兩二分。物膳，軍需庫。

鹽六升代錢六分，

石魚九束代錢九錢，

白蝦九升代錢三錢，魚價所。

眞油一升五合代錢，四錢五分，營庫。

法油一升五合代錢，三錢六分，別營庫。

眞末三升代錢一錢二分，營庫。

228 황해도 해주에 있던 황해감영(黃海監營)에서 근무하는 종9품 황해도심약에 관련된 내용이다.

229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淸醬一斗代錢三錢,

甘醬一斗代錢二錢, 首婢.

南草二斤十三兩 每日一兩五錢重式, 代錢則無論大小月, 每朔七錢. 別營庫.

肉燭六十柄代錢六錢 刑房營吏.

菜蔬代錢一兩五錢 小月減五分,

壯紙一束代錢一兩一錢,

白紙一束代錢二錢, 工房所.

黃筆一柄代錢六分,

眞墨一丁, 本邑.

馬鐵一部代錢二錢, 工房庫.

汲水代錢五錢, 刑房營吏.

每朔合三十七兩八錢二分,

十二朔合四百五十三兩八錢四分.

2월에 받는 요(料)²³⁰. 찹쌀 2섬 1섬당 7냥씩으로 영구히 정한다. 영고(營庫)에서 낸다.

좁쌀 9말의 대전(代錢) 3냥 1전 6리,

말먹이 콩 12말의 대전 1냥 4전 4리 합계 4냥 5전 1푼인데, 역학훈도²³¹라면 본부에서 이 수량으로 추봉(推捧)하고, 심약과 검율이라면 단지 3냥 8푼만 추봉하니, 어느 해의 유례(謬例)²³²인지는 모르겠다.

땔나무 300속의 대전 3냥 본부 공고(工庫)의 색리.

숯 3말의 대전 1전 2푼 본부 공고지기.

말먹이 풀의 대전 5월에서 9월까지는 2냥 4전씩, 10월부터 4월까지는 1냥 2전씩이다. 은 본부 공고지기가 들인다.

홰 2자루의 대전 4푼 본부 공고지기.

230 비슷한 내용이 본문 여러 심약 첫 부분에 기술된다.

231 역학훈도 : 외국어의 통역, 교육을 담당하는 역관으로 도성의 사역원은 정9품, 지방에는 종9 품직이었다.

232 유례(謬例) : 잘못된 사례이다.

닭의 대전 1냥 2전 영계 1마리에 1전씩 12마리이다. 본부관청의 색리.

삭목(급료로 받는 무명) 3필의 대전 6냥 도병고(都兵庫).

고기의 대전 1냥 1전 1푼 식례에는 1냥 5전인데, 3전 9푼을 어느 해에 줄였는지 알지 못하며, 윤달이 있다면 다시 9푼을 줄여 단지 1냥 2푼만 바친다. 물선고와 군수고.

소금 6되의 대전 6푼,

조기 9속의 대전 9전,

쌀새우 9되의 대전 3전은 어가소(魚價所)에서 낸다.

참기름 1되 5홉의 대전 4전 5푼은 영고(營庫)에서 낸다.

들기름 1되 5홉의 대전 3전 6푼은 별영고(別營庫)에서 낸다.

밀가루 3되의 대전 1전 2푼은 영고에서 낸다.

청장(清醬) 1말의 대전 3전,

감장(甘醬) 1말의 대전 2전은 우두머리 여종이 들인다.

담배 2근 13냥 날마다 1냥 5푼쯤씩으로, 대전은 크고 소삭에 관계없이 달마다 7전이다.

별영고.

육촉²³³ 60자루의 대전 6전 형방영리(刑房營吏).

채소의 대전 1냥 5전 소삭에는 5푼을 줄인다.

장지(壯紙) 1속의 대전 1냥 1전,

백지(白紙) 1속의 대전 2전은 공방소(工房所)에서 낸다.

황모필 1자루의 대전 8푼,

참먹 1정은 본읍에서 낸다.

견마철 1부의 대전 2전은 공방고(工房庫)에서 낸다.

물 길는 고가(雇價)의 대전 5전은 형방영리가 들인다.

매달 합계 37냥 8전 2푼으로,

열두 달 합계 453냥 8전 4푼이다.

二八月令作紙錢, 各五十四兩式 醫生納.

233 육촉 : 쇠기름으로 만든 초이다.

黃州四兩三錢，延安四兩三錢，瑞興四兩三錢，谷山四兩七錢，
平山四兩三錢，豐川四兩三錢，信川四兩四錢，金川四兩三錢，
鳳山四兩三錢，載寧四兩九錢，安岳四兩九錢，白川三兩三錢 白紋席一立，
新溪四兩四錢，文化三兩 五合古里一部，長淵四兩三錢，長連四兩三錢，
殷栗三兩八錢，康翎四兩二錢，兔山四兩四錢，遂安四兩四錢，
松禾四兩三錢，甕津四兩。

白紋席一立代錢一兩。

五合古里一部代錢五錢。

合文九十四兩九錢式。

各邑藥古里代文，四兩四錢內 四錢本府醫生行下。二八月合八兩八錢。白清各二升式，本邑。

2월과 8월령의 작지전(作紙錢)²³⁴은 각각 54냥씩이다 의생이 들인다.

황주 4냥 3전, 연안 4냥 3전, 서흥 4냥 3전, 곡산 4냥 7전,
평산 4냥 3전, 풍천 4냥 3전, 신천 4냥 4전, 금천 4냥 3전,
봉산 4냥 3전, 재령 4냥 9전, 안악 4냥 9전, 배천 3냥 3전 백문석 1닢,
신계 4냥 4전, 문화 3냥 5홉 고리 1부, 장연 4냥 3전, 장련 4냥 3전,
은을 3냥 8전, 강령 4냥 2전, 토산 4냥 4전, 수안 4냥 4전,
송화 4냥 3전, 옹진 4냥이다.

백문석 1닢의 대전 1냥,

5홉 고리 1부의 대전 5전이다.

합계 돈 94냥 9전씩이다.

각 읍의 약고리를 대신하는 돈 4냥 4전 안에서 4전은 본부 의생의 행하이다. 2월과
8월을 합쳐서 8냥 8전이다. 백청 각 2되씩 본읍에서 낸다.

四十月令作紙錢，各三十八兩。

黃州二兩九錢，延安二兩九錢，瑞興二兩九錢，谷山三兩二錢，
平山二兩九錢，豐川二兩九錢，信川二兩九錢，金川二兩九錢，

234 작지전(作紙錢) : 관청에서 문서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종이 값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鳳山二兩九錢, 安岳二兩九錢, 白川三兩五錢, 新溪二兩九錢,
文化二兩九錢, 長淵二兩九錢, 長連二兩九錢, 殷栗二兩九錢,
康翎二兩九錢, 兔山三兩二錢, 松禾二兩九錢, 鏡津二兩九錢,
載寧三兩二錢, 遂安三兩二錢.

白紋席一立代文一兩.

五合古里一部代文五錢.

合文六十七兩一錢式.

細紬二疋代錢十兩,

生梨三十介 十月令.

4월과 10월령의 작지전(作紙錢)은 각각 38냥이다.

황주 2냥 9전, 연안 2냥 9전, 서흥 2냥 9전, 곡산 3냥 2전,
평산 2냥 9전, 풍천 2냥 9전, 신천 2냥 9전, 금천 2냥 9전,
봉산 2냥 9전, 안악 2냥 9전, 배천 3냥 5전, 신계 2냥 9전,
문화 2냥 9전, 장연 2냥 9전, 장련 2냥 9전, 은율 2냥 9전,
강령 2냥 9전, 토산 3냥 2전, 송화 2냥 9전, 용진 2냥 9전,
재령 3냥 2전, 수안 3냥 2전이다.²³⁵

백문석 1닢을 대신하는 돈 1냥,

5흡 고리 1부를 대신하는 돈 5전이다.²³⁶

합계 돈 67냥 1전씩이다.

가는 명주 2필의 대전 10냥,

배 30개 10월령이다.

貰麝價, 春等二十兩二錢五分, 秋等十二兩七錢五分.

녹용과 사향 값은 봄 분기²³⁷에는 20냥 2전 5푼이고, 가을 분기²³⁸에는 12냥

235 본문 '2월과 8월령의 작지전(二八月令作紙錢)'에 나오는 고을과 동일하다. 재령과 수안의 순서만 바꾸어졌다.

236 내용 중에는 없으나 필사 과정 중에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 '2월과 8월령의 작지전(二八月令作紙錢)'을 참조하면 배천과 문화에서 낸다.

7전 5푼이다.

冬至. 白米一斗代文四錢六分六里, 粘米三升代文一錢六分,

赤豆二升代文三錢三分四里, 清一升代文五錢 合一兩四錢六分.

동짓날 : 백미 1말을 대신하는 돈 4전 6푼 6리, 찹쌀 3되를 대신하는 돈 1전 6푼,

팥 2말을 대신하는 돈 3전 3푼 4리, 꿀 1되를 대신하는 돈 5전이다 합계 1냥 4전 6푼이다.

歲時. 白米二斗代文九錢三分二里, 粘米五升代文二錢六分六里,

生雉一首代文三錢, 真荏一斗代文五錢三分三里,

清一升代文五錢, 白蝦一升五合代文五分.

합二兩五錢八分一里.

세시 : 백미 2말을 대신하는 돈 9전 3푼 2리, 찹쌀 5되를 대신하는 돈 2전 6푼 6리,

꿩 1마리를 대신하는 돈 3전, 참깨 1말을 대신하는 돈 5전 3푼 3리,

꿀 1되를 대신하는 돈 5전, 쌀새우 1되 5홉을 대신하는 돈 5푼이다.

함께 2냥 5전 8푼 1리이다.

衣資代文九兩 都鎮庫, 釜一坐具蓋代錢四兩,

鼎一坐具蓋代文二兩, 石魚二束代文二錢 魚價所.

正七月兩次各十五兩二錢 工房庫.

옷 재료를 대신하는 돈 9냥 도진고(都鎮庫)에서 낸다. 뚜껑을 갖춘 가마솥 1좌를 대신하는 돈 4냥,

뚜껑을 갖춘 솥 1좌를 대신하는 돈 2냥, 조기 2속을 대신하는 돈 2전이다 어가소(魚價所)에서 낸다.

237 본문 '2월과 8월 대령의 응하(二八月大令應下)'를 참조하면 2월이다.

238 본문 '2월과 8월 대령의 응하(二八月大令應下)'를 참조하면 8월이다.

정월과 7월 두 차례 각각 15냥 2전씩이다 공방고(工房庫)에서 낸다.

都試不中賞六兩五錢 軍需庫.

年分紙五束代文一兩 通引營中.

선무도시에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의 상으로 6냥 5전 군수고에서 낸다.

연분지(年分紙) 5속을 대신하는 돈 1냥 영내의 통인이다.

合六百兩九錢四分,

二口都合一千五十四兩七八分.²³⁹

遞等則錢五兩, 正鐵五斤代文五錢, 白清一升代²⁴⁰一兩.

합계 600냥 9전 4푼이다.

2구 도합 1,054냥 7·8푼이다.²⁴¹

체등에는 돈 5냥, 정철 5근을 대신하는 돈 5전, 백청 1되를 대신하는 1냥이다.

二八月大令應下, 內局浮費, 八兩七錢.

入番醫生等處二兩, 入番藥庫直處一兩,

入番營通引處一兩, 使令一兩,

通引二錢, 譯檢堂下人各一錢.

各色禮吏下直時, 每名小折墨一丁²⁴²式.

2월과 8월 대령²⁴³의 응하(應下)²⁴⁴. 내의원에서 써서 없어지는 돈 8냥 7전,

입번하는 의생 등에게 2냥, 입번하는 약고지기에게 1냥,

입번하는 감영 통인에게 1냥, 사령 1냥,

239 본 내용은 오기로 보인다.

240 代 : 원본에는 '代'가 없으나 삽입했다.

241 2구 도합 1,054냥 7·8푼이다. : 본 내용은 오기로 보인다.

242 丁 : 본문에는 '丈'으로 되어있으나 오기이다.

243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황해감영의 경우 대령은 3·9월이고 소령이 5·11월 이었다. 고종 조에는 2·8월이 대령, 4·10월이 소령이다.

244 응하(應下) : 관청에서 마땅히 지출해야 할 돈이다.

통인 2전, 역검당(譯檢堂)²⁴⁵ 하인마다 1전씩이다.²⁴⁶

각 색의 예리(예방을 맡은 아전)²⁴⁷가 하직할 때 1명당 작은 크기 멱 1정씩이다.

四十月小令應下, 醫生處一兩, 藥庫直五錢,

營通引五錢. 使令五錢.

兩令應下合十六兩六錢式.

4월과 10월 소령의 응하는 의생에게 1냥, 약고지기 5전,

감영 통인 5전, 사령 5전이다.

대령과 소령의 응하는 합계 16냥 6전씩이다.²⁴⁸

도임 때의 포진과 기명을 대신하는 돈(到任時鋪陳器皿代文)

客舍工房吏納文, 四兩二錢六分. 沙器工房吏納文, 三兩八錢.

別白色吏納 文, 二兩二錢. 鋪陳色吏納文, 二兩九錢.

工庫色吏納文, 八錢. 工庫色吏納文, 九錢.

釜鼎婢首納文, 一兩二錢. 甕器諸種 本色.

蘆簾三部. 合文十六兩六錢.

객사공방리가 들이는 돈 4냥 2전 6푼. 사기공방리가 들이는 돈 3냥 8전.

별백(別白)²⁴⁹ 색리가 들이는 돈 2냥 2전. 포진(鋪陳) 색리가 들이는 돈 2냥 9전.

공고(工庫) 색리가 들이는 돈 8전. 공고(工庫) 색리가 들이는 돈 9전.²⁵⁰

245 역검당(譯檢堂) : 역학훈도와 검율이 사무를 보는 장소이다.

246 아래의 계산 합계를 보면 세 사람이다.

247 《광양현각소사례책光陽懸各所事例冊》을 보면 각종 진상물의 대가(代價)를 담당하는 것은 예방색(禮房色)이다.

248 $8.7 + 2 + 1 + 1 + 0.1 + 0.3 = 14.1$ 냥 / 1 + 0.5 + 0.5 + 0.5 = 2.5냥 / 14.1 + 2.5 = 16.6냥

249 별백(別白) : 별백지. 품질이 아주 좋은 종이이다.

250 공고색리에 대하여 반복되는데 정확한 연문(衍文)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둘 중 하나가 공고가

부정비(가마솥과 솥을 맡은 여자 종) 우두머리가 들이는 돈 1냥 2전. 각종 응기
본색으로 들인다.

노렴(갈대를 엮어 만든 빨) 3부. 합계 돈 16냥 6전이다.²⁵¹

6. 평안감영(平安監營)²⁵²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²⁵³

每朔. 大米十斗二升 每斗五錢六分六里式, 每石八兩五錢式, 小月九斗八升六合.

小米十一斗四升, 每石三兩式, 小月十一斗二合.

太十斗五升, 每石一兩五錢式, 小月十斗一升五合.

달마다 : 쌀은 10말 2되 말당 5전 6푼 6리씩, 섬당 8냥 5전씩이다. 인데, 소삭은 9말 8되 6홉이다.

좁쌀은 11말 4되인데, 섬당 3냥씩이고, 소삭에는 11말 2홉이다.

콩은 10말 5되인데, 섬당 1냥 5전씩이고, 소삭에는 10말 1되 5홉이다.

營庫. 大米一石 每石四兩式,

小米一石六斗 無大小月.

馬太七斗五升代文七錢五分.

正木三疋代文六兩.

石魚六束代文一兩二錢.

아닌데 공고로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

251 $4.26 + 3.8 + 2.2 + 2.9 + 0.8 + 0.9 + 1.2 = 16.06$ 냥. 따라서 응기와 노렴의 값은 5전 4푼이다.

252 평안도 평안에 있던 평안감영에서 근무하는 종9품 평안도심약(平安道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253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眞魚六尾代文三錢.
蘇魚六級代文二錢四分.
石卵三升代錢文一兩二錢.
白蝦三升代文一錢二分.
鹽六升代文六分.
眞油三升代文七錢五分 油庫子納.
南草三斤代錢六錢.
黃肉三十斤代錢二兩四錢.
醬五斗代錢一兩五錢.
奴醬三斗代錢九分.
鹽三十二斗二升五合代錢三兩五錢五分 沈醬時用.

菜蔬代錢二兩二錢五分 前則每朔二兩二錢式，捧上矣，今則在任時瓮，首奴納.

영고의 경우 : 쌀 1섬 섬당 4냥씩이다.
좁쌀 1섬 6말 대삭과 소삭에 관계없다.²⁵⁴
말먹이 콩 7말 5되를 대신하는 돈 7전 5푼.
정목(正木, 품질이 좋은 무명베) 3필을 대신하는 돈 6냥.
조기 6속을 대신하는 돈 1냥 2전.
준치 6마리를 대신하는 돈 3전.
밴댕이 6두름을 대신하는 돈 2전 4푼.
조기 알 3되를 대신하는 돈 1냥 2전.
쌀새우 3되를 대신하는 돈 1전 2푼.
소금 6되를 대신하는 돈 6푼.
참기름 3되를 대신하는 돈 7전 5푼 유고(油庫)지기가 들인다.
담배 3근의 대전(代錢) 6전.
소고기 30근의 대전 2냥 4전.
간장 5말의 대전 1냥 5전.

254 원본에는 쌀과 좁쌀이 밑줄로 묶여있다.

노장(奴醬) 3말의 대전 9푼.

소금 32말 2되 5홉의 대전 3냥 5전 5푼 간장을 담글 때 쓴다.

채소의 대전 2냥 2전 5푼 과거에는 달마다 2냥 2전씩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재임 때에만 수노(首奴)가 들인다.

補膳庫. 陳鷄五首代文七錢五分 自四月至七月, 以軟鷄十首式.

보선고의 경우 : 다 자란 닭 5마리를 대신하는 돈 7전 5푼 4월부터 7월까지 영계 10마리씩으로 한다.

監造所. 馬鐵一部代錢二錢.

감조소(監造所) : 견마철 1부의 대전 2전.

紙墨庫. 黃筆一柄代錢一錢三分. 白紙二束代文三錢四分.

中墨一丁代錢四錢一分. 厚紙一束代文四錢 合一兩二錢八分.

지목고(紙墨庫) : 황모필 1자루의 대전 1전 3푼. 백지 2속을 대신하는 돈 3전 4푼.

중간 멱 1정의 대전 4전 1푼. 후지(厚紙) 1속을 대신하는 돈 4전 합계 1냥 2전 8푼이다.

營繕. 柴 十 · 十一 · 十二 · 正, 代錢九兩式, 二 · 三 · 八 · 九月, 代文七兩五錢式, 四 · 五 · 六 · 七月, 代文六兩式, 合九十兩.

馬草 九 · 十 · 十一 · 十二 · 正 · 二 · 三 · 四月, 代文四兩五錢式, 五 · 六 · 七 · 八月, 代文三兩六錢式, 合五十兩四錢.

杻炬²⁵⁵三同代文一兩二錢.

炭二石十斗代文一兩五分.

點心次 自二月至七月.

영선고 : 떨나무 10 · 11 · 12 · 1월에는 대전 9냥씩, 2 · 3 · 8 · 9월에는 대신하는 돈 7냥 5전 씩, 4 · 5 · 6 · 7월에는 대신하는 돈 6냥씩으로, 합계 90냥이다.

255 扳炬 : 원본에는 ‘丑炬’으로 되어있으나 고쳤다.

말먹이 풀 9·10·11·12·1·2·3·4월에는 대신하는 돈 4냥 5전씩, 5·6·7·8월에는 대신하는 돈 3냥 6전씩으로, 합계 50냥 4전이다. 싸리나무 화 3동을 대신하는 돈 1냥 2전.

숯 2섬 10말을 대신하는 돈 1냥 5푼.

점심 갚 2월부터 7월까지이다.

營庫. 大米三斗,

石魚三束,

蘇魚一級十介,

鹽一升五合 一分半,

醬一升五合 四分半, 代文上同.

영고의 경우 : 쌀 3말,

조기 3속,

밴댕이 1두름²⁵⁶ 10개,

소금 1되 5홉 1푼 반이다.

간장 1되 5홉 4푼 반이다. 을 대신하는 돈은 위와 동일하다.²⁵⁷

歲饌. 正木二疋.

大米七斗五升.

粘米五升.

眞油五升.

黃清五合.

生雉一首代文四錢.

세찬 : 정목 2필.

쌀 7말 5되.

찹쌀 5되.

256 두름 : 한 두름은 20개이다. 한 두름 10개이면 30개이다.

257 쌀 한 말과 밴댕이 한 두름은 4전이다.

참기름 5되.

황청 5홉.

꿩 1마리를 대신하는 돈 4전.

冬至. 大米一升. 赤豆一升.

粘米二合. 黃清一合.

동짓날 : 쌀 1되. 팥 1되.

찹쌀 2홉. 황청 1홉.

床盃價 正月初一日, 初三日, 十五日, 三月三日, 四月八日, 五月五日, 六月流頭, 七月七夕, 八月秋夕, 九月九日, 十一月冬至, 十二月臘日, 三伏, 合十五次, 每節日二兩式, 合三十兩.

상차림 값 정월 초하루, 초사흘, 15일(대보름), 3월 3일(삼짓날), 4월 8일(불탄일), 5월 5일(단오), 7월 칠석, 8월 추석, 9월 9일(중양절), 11월 동짓날, 12월 납일, 삼복의 합계 15차의 절일마다 2냥씩 합계 30냥이다.

四等衣資. 去核三斤式, 每斤九錢二分,

中紬一疋代文四兩五錢,

正木二疋代文四兩, 春秋冬三等合文三十三兩七錢八分.

九升布一疋代文六兩,

正木二疋代文四兩, 夏等合文十兩.

네 분기의 옷 재료 : 씨를 뺀 솜 3근씩 근당 9전 2푼,

중간 품질의 명주 1필을 대신하는 돈 4냥 5전,

정목 2필을 대신하는 돈 4냥, 이상 봄·가을·겨울 3분기 합계 돈 33냥 7전 8푼이다.²⁵⁸

아홉새 베 1필을 대신하는 돈 6냥,

정목 2필을 대신하는 돈 4냥, 이상 여름 분기 합계 돈 10냥이다.

²⁵⁸ $0.92 \times 3 = 2.76\text{냥} / 4.5 + 4 = 8.5\text{냥} / 2.76 + 8.5 = 11.26\text{냥}$. 한분기당 11.26냥이므로 세 배인 33.78냥이 된다.

閏朔料布. 元朔料布同.
毛方席一立代文四錢五分,
廳筭一柄九錢, 駕尉納.
蠅拂子一柄代文四錢三分,
法扇一柄代文一錢二分, 館舍庫納.
真西瓜代文五兩內 駕尉二錢²⁵⁹, 通引·食婢, 各一錢行下. 本府首奴納.
空石一百立代文三兩, 司倉還分時納.
윤달의 요포(料布) : 원삭(元朔)의 요포와 같다.
털방석 1닢을 대신하는 돈 4전 5푼,
청 빗자루 1자루 값 9전은 효위(驍尉)²⁶⁰가 들인다.
파리채 1자루를 대신하는 돈 4전 3푼,
법선(法扇) 1자루를 대신하는 돈 1전 2푼은 관사고(館舍庫)에서 들인다.
참외와 수박을 대신하는 돈 5냥 안에서 효위는 2전을, 통인, 식비(부엌일을 하는 여종)마다 1전씩 행하(行下)로 준다. 본부의 우두머리 종이 들인다.
빈 가마니 100닢을 대신하는 돈 3냥은 사창(司倉)에서 환곡을 분급할 때에 들인다.

포진하는 세 차례인 도임 때 및 봄·가을 두 분기(鋪陳三次, 到任時及春秋兩等)

安息一坐式代文四錢五分,
登每一立代文四錢五分,
方席一立代文四錢七分,
二張付地衣一立代錢四錢五分 合一兩八錢二分. 舩舍庫納, 一次本色, 春秋兩等代錢納.

259 駕尉二錢 : 원본에는 '驍尉'가 '二錢' 뒤에 있으나 오류로 보인다. 본문 '연명한 뒤 하인에게 주는 체하(延命後下人帖下)'를 참조.

260 效位(驍尉) : 영홍부, 평양부에 두었던 군직(軍職)이다. 본문 '연명한 뒤 하인에게 주는 체하(延命後下人帖下)'를 보면 사학당(四學堂)에 네 사람이 있다. 통인과 식비는 사학당 소속이다.

簾席八立代文一兩, 蘆草市人納.

茵席四立代文六錢四分, 工房庫子納. 本府.

大中葦簾合二浮, 五月, 工房庫納.

안식(安息) 1좌씩 대신하는 돈 4전 5푼,

등메 1닢씩 대신하는 돈 4전 5푼,

방석 1닢씩 대신하는 돈 4전 7푼,

2장 불인 지의(地衣) 1닢을 대신하는 돈 4전 5푼 합계 1냥 8전 2푼이다. 포사고(舗舍庫)에서 들이는데 한 번은 본색으로 하고 봄·가을 두 분기에는 대전(代錢)을 들인다.

점석(대자리) 8닢을 대신하는 돈 1냥은 노초시인(蘆草市人)이 들인다.

인석(茵席) 4닢을 대신하는 돈 6전 4푼은 공방고지기가 들인다. 본부에서 한다.

큰 위렴과 중간 위렴(葦簾)을 합한 2부는 5월에 공방고에서 들인다.

도임 후에 소용되는 물품의 종류(到任後所用物種)

沙鉢十介, 甫兒五介, 砂缸五介,

大楪十五介, 種子五介, 素用二介, 真末四升,

小盤二坐 代錢則八錢五分, 本府官納, 出給食婢, 柳古里一部, 行擔一部,

箕一部 本色, 食婢納.

사발 10개, 보시기 5개, 사기 항아리 5개,

큰 접시 15개, 종지 5개, 소용(素用, 장식이 없는 그릇) 2개, 밀가루 4되,

소반 2좌 대전(代錢)은 8전 5푼인데 본부(本府)의 관리가 들이고 식비에게 내어준다. 벼드나

무 고리 1부, 행담(行擔)²⁶¹ 1부,

키 1부 본색을 식비가 들인다.

需用庫. 雪金一部, 炙金一部, 火箸一部 本色.

수용고(需用庫)의 경우 : 설쇠²⁶² 1부, 적쇠 1부, 부젓가락 1부 본색으로 한다.

261 행담(行擔) : 길을 가는데 가지고 다니는 싸리나 벼들로 만든 작은 상자이다.

262 설쇠 : 강원도, 함경도 등지에서 적쇠를 부르는 방언이다.

補軍庫. 火匙一介, 食刀一介, 鋤子一介 本色.

보군고(補軍庫)의 경우 : 부손 1개, 식도 1개, 호미 1개 본색으로 한다.

平貿庫. 大函之一坐代文五錢, 足朴二介, 中篩·細篩各一介,

齒函之一介, 白紙四束, 厚紙十張 本色.

평무고(平貿庫)의 경우 : 큰 함지 1좌를 대신하는 돈 5전, 쪽박 2개, 중간 체와
가는 체 각 1개,

이남박²⁶³ 1개, 백지 4속, 후지(厚紙) 10장 본색으로 한다.

甕匠庫. 土器皿等代錢二錢七分,

大甕二坐代錢三兩八錢,

中甕二坐代錢四錢.

옹장고(甕匠庫)의 경우 : 훑 그릇붙이 등의 대전(代錢) 2전 7푼,

큰 독 2좌의 대전 3냥 8전,

중간 독 2좌의 대전 4전.

本府 木物庫.

禱²⁶⁴砧木二介, 洪禱介一介, 家升一介, 別火臺一坐,

中小草火臺各一坐, 鞍粧巨里一坐代錢二錢,

飾橋一介, 刀磨一坐, 衣巨里一坐,

柱木四介代錢一錢二分, 榉木十介代文五錢二分,

空石十五立代文四錢五分, 廁間所入及遮陽機蘆苦四立 蘆草塵.

鐵古里六介,

朴²⁶⁵乙釘六介, 大釘二十介, 補軍庫.

본부 목물고(木物庫)의 경우 : 다듬이목²⁶⁶ 2개, 흥두깨 1개, 뒷박²⁶⁷ 1개, 별화

263 이남박 : 쌀, 보리 등을 씻을 때 쓰는 도구로 통나무를 깍아 만든 함지박의 일종이다. 흄들이
빠져 있는데 이 흄들을 ‘齒’라 불렀다.

264 禱 : 문맥상 ‘擣’인 듯하다.

265 朴 : 원본에는 ‘朴’이 없으나 삽입했다.

대(別火臺)²⁶⁸ 1좌,

중소(中小) 초화대(草火臺) 각 1좌, 안장걸이 1좌의 대전 2전,
장식된 가마 1개, 도마 1좌, 옷걸이 1좌, 주목(柱木)²⁶⁹ 4개의 대전 1전 2푼,
연목(椽木) 10개를 대신하는 돈 5전 2푼,
빈 가마니 15닢을 대신하는 돈 4전 5푼, 측간에 들어가는 것 및 햇빛 가리개의
갈대 이영 4닢 노초전(蘆草臺)에서 들인다.
쇠고리 6개, 박을 못 6개, 큰 못 20개는 보군고(補軍庫)에서 들인다.

補軍庫. 正木六疋代錢二十兩 不中賞資, 九月納.

보군고의 경우 : 정목 6필의 대전 20냥 선무도시(選武都試)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의 상
용도로 9월에 들인다.

기타(其他)²⁷⁰

遞等錢, 三十五兩內, 駍尉一兩, 通引·食婢, 各一錢出給. 會計所.

체등전 35냥 안에서 효위 1냥, 통인과 식비마다 1전씩 내어준다. 회계소에서
한다.

延命後, 下人帖下. 都房子一兩, 水尺四名四錢,

殿庭典隸²⁷¹二人一兩, 四學堂駍尉四名八錢,

營典隸二人一兩, 四學堂通引四人四錢,

266 다듬이목 : 피륙이나 종이 따위를 다듬잇돌에 올려놓고 윤기 나고 매끈하게 다듬을 때 쓰는
반침대 나무이다.

267 뒷박 : 뒷박[家升]은 민간에서 곡물을 되던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로 관승(官升)의 상대어이다.
가승(家升)으로도 부른다.

268 별화대(別火臺) : 화대(火臺)란 나무나 놋쇠로 촛대 비슷하게 만든 등잔걸이이다.

269 주목(柱木) : 기둥감 목재이다. 연목(椽木)은 서까래감 목재이다.

270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271 典隸 : 원본에는 ‘典禮’로 오기되어있다.

敎諭書土官五錢, 四學堂食婢五名五錢,
舉動土官五錢, 陪持二十名一兩, 殿直·樂工五錢,
以上合七兩六錢.

연명(延命)²⁷²한 뒤 하인에게 주는 체하 : 도방자 1냥, 수척²⁷³ 4명 4전,
전정 전례 2인 1냥, 사학당 효위 4명 8전,
영(營) 전례 2인 1냥, 사학당 통인 4인 4전,
교유서²⁷⁴ 토관²⁷⁵ 5전, 사학당 식비 5명 5전,
거동 토관 5전, 배지 20명 1냥, 전지기와 악공 5전,
이상 합계 7냥 6전이다.

本堂下人等朔料上下.

驍慰一名, 每朔小米三斗, 真魚二尾 代文一錢式. 十二朔合小米二石六斗, 真魚二十四尾, 代文
一兩二錢.

食婢二名, 每朔小米一斗, 真魚一尾 在任時餧上下.

본당 하인 등에 대한 삭료의 지급 :

효위 1명은 달마다 졉쌀 3말, 준치 2마리 대신하는 돈은 1전씩이다. 12달 합계 졉쌀
2섬 6말, 준치 24마리로, 대신하는 돈은 1냥 2전이다.

식비 2명은 달마다 졉쌀 1말, 준치 1마리 재임(在任) 때에만 지급한다.

本堂²⁷⁶下人等歲時帖下.

驍慰, 大米一斗, 黃肉一斤.

通引, 大米五升, 黃肉一斤.

272 연명(延命) : 새로 부임한 수령이 감사를 처음 찾아가서 뵙는 일을 말한다.

273 수척 : 천업(賤業)에 종사하는 무리인 백정이나 광대를 뜻한다.

274 교유서 : 교서와 유서를 합한 말이다. 교서는 일반적인 명령이고 유서는 병사권을 가진 관리
에게 하는 명령 동원의 명령이다.

275 토관 : 토착민에게 준 벼슬이다.

276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水尺, 小米一斗, 黃肉一斤.

營待發軍, 小米一斗, 黃肉一斤.

食婢, 小米五升, 黃肉一斤.

馬夫, 小米一斗, 黃肉一斤 此六名, 曆書·節扇亦分給.

본당 하인 등에 대한 세시의 체하 :

효위는 쌀 1말, 소고기 1근이다.

통인은 쌀 5되, 소고기 1근이다.

수척은 좁쌀 1말, 소고기 1근이다.

영대발군(營待發軍)은 좁쌀 1말, 소고기 1근이다.

식비는 좁쌀 5되, 소고기 1근이다.

마부는 좁쌀 1말과 소고기 1근이다 이 6명에게는 역서(曆書)와 절선(節扇)도 분급한다.

遞歸時, 刷馬一匹, 以遠邑發關, 則三十八兩代納 若近邑發關, 則不及此數.

체직되어 돌아갈 때 쇄마 1필인데, 먼 고을에서 관문(關文)을 보냈다면 38냥을 대신 납부한다 만약 가까운 고을에서 관문을 보냈다면 이런 수량에 미치지 못한다.

藥庫. 鹿角代綿紬二疋, 代文七兩.

例納錢四十兩 正月.

七月令, 例納錢, 四十七兩 正月·七月兩令, 藥庫屬例下者, 為四十七兩式, 而以藥庫所納者計給.

약고의 경우 : 녹각 대신의 명주 2필을 대신하는 돈 7냥,

예납전 40냥 정월령.

7월령 예납전 47냥 정월·7월 두 령에 약고의 소속원에게 예하(例下)하는 것이 47냥씩인데
약고에서 들이는 것으로 셈하여 준다.

正七月. 進上時, 白紙 或十束, 或五束, 草席, 繩索, 槓, 鎖子等 自本府備納, 而一件, 上來時持來, 一件, 七月進上時上來, 而七月則又有紫草葺檻一坐.

上京時雇馬一匹代文九兩.

정월과 7월.²⁷⁷ 진상 때의 백지 10속이거나 5속이다. 풀방석, 노끈, 궤, 자물쇠 등 본부에서 갖추어 들이는데 1건은 올라올 때 가지고 오고 1건은 7월 진상 때 올라온다. 그런데 7월에는 자초용 궤 1좌가 더 있다.

상경 때의 고마²⁷⁸ 1필을 대신하는 돈 9냥.

녹용의 대전(鹿茸代錢)²⁷⁹

正月令, 七百二十兩, 七月令, 六百八十兩.

정월령은 720냥, 7월령은 680냥이다.

昌城, 一百兩, 八十兩,

陽德 一百兩, 八十兩,

渭原 一百兩, 八十兩,

雲山 一百兩, 八十兩,

碧潼 一百兩, 八十兩,

寧遠 一百兩, 八十兩,

寧邊 一百兩, 八十兩,

楚山 一百兩, 八十兩,

孟山 一百兩, 八十兩,

熙川 一百兩, 八十兩,

德川 九十兩, 九十兩,

江界 一百兩, 八十兩 已上十二邑, 茛代文, 春秋輪回捧納. 春秋進上茌代文, 一千四百兩外餘數,

爲營門封餘.

창성은 정월령 100냥과 7월령 80냥,

양덕 100냥과 80냥,

위원 100냥과 80냥,

운산 100냥과 80냥,

벽동 100냥과 80냥,

277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에도 대령이 1월과 7월로 나온다. 소령은 따로 없다.

278 고마 : 시골 관아에서 민간으로부터 강제로 징발하여 쓰는 말이다.

279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를 보면 평안감영은 1월과 7월에 녹용 5대씩을 진상했다.

영원 100냥과 80냥,
영변 100냥과 80냥,
초산 100냥과 80냥,
맹산 80냥과 100냥,
희천 80냥과 100냥,
덕천 90냥과 90냥,
강계 80냥과 100냥이다 이상 12읍의 녹용을 대신하는 돈을 봄·가을로 돌아가며 봉납한다.
봄·가을의 진상 녹용을 대신하는 돈 1,400냥 외 나머지 수는 영문의 봉여이다.

자초용의 대전(紫草貢代錢)

七月納.

7월에 들인다.

三登十七兩,
孟山十八兩,
殷山十八兩,
陽德十八兩,
順川十八兩,
德川十八兩,
价川十八兩,
祥原十八兩,
江界十八兩.
合一百六十一兩.

삼등 17냥,
맹산 18냥,
은산 18냥,
양덕 18냥,
순천 18냥,

덕천 18냥,
개천 18냥,
상원 18냥,
강계 18냥이다.²⁸⁰
합계 161냥이다.

내국의 인정(內局人情)

上令監, 上掌務官, 各綿紬一疋, 或代則八兩式, 唐鞋一部代文一兩一錢式, 香草二斤代文三錢式, 闔干一封則八兩重式, 代文三錢式, 墨靴一部代文二兩式. 下掌務, 唐鞋一部代文一兩一錢, 香草二斤上下. 藥色, 各綿紬一疋, 履一部代一兩式, 西草一斤式, 草匣一介代文一錢式上下. 掌務色, 各履一部代文一兩式, 西草一斤式, 草匣一介式代文一錢式. 已上合十三兩六錢.

상영감과 상장무관마다 명주 1필씩 혹은 돈으로 대신하면 8냥씩, 당혜(唐鞋) 1부를 대신하는 돈 1냥 1전씩, 향초 2근을 대신하는 돈 3전씩, 모기장 1봉은 8냥쯤씩으로 대신하는 돈 3전씩, 묵화(墨靴) 1부를 대신하는 돈 2냥씩이다. 하장무관에게는 당혜 1부를 대신하는 돈 1냥 1전, 향초 2근을 지급한다. 약색(藥色)마다 명주 1필씩과 짚신 1부를 대신하는 1냥씩, 서초(西草) 1근씩, 담배쌈지 1개를 대신하는 돈 1전씩 지급한다. 장무색마다 짚신 1부를 대신하는 돈 1냥씩, 서초 1근씩, 담배쌈지 1개씩 대신하는 돈 1전씩이다. 이상 합계 13냥 6전이다.

懸狀次一兩四錢, 越門次六錢, 實水工一兩,
藥色房直五錢, 掌務庫直五錢, 進上畢納後, 假水工四兩.
현장(懸狀)하는 비용 1냥 4전, 월문하는 비용 6전, 실수공 1냥,
약색방지기 5전, 장무고지기 5전, 진상을 마친 후에 가수공 4냥이다.
正·七月. 進上鹿茸四對式.
정월과 7월. 진상 녹용 4대씩이다.²⁸¹

280 모두 아홉 고을이다.

281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를 보면 평안감영은 1월과 7월에 녹용 5대씩을 진상했다. 《승정

7. 평안병영(平安兵營)²⁸²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²⁸³

大米六斗 每斗二錢六分六里六毫式, 合價一兩六錢. 每石四兩式代納, 每日二升式, 十二朔合四石十二斗,

小米十一斗四升 每斗二錢式, 合價二兩二錢八分. 每石三兩式代納, 每日三升八合式, 十二朔合九石一斗八升,

太九斗 每斗一錢式, 合價九錢. 每石一兩五錢式代納, 每日三升式, 十二朔合七石三斗.

已上本府都倉, 計日納.

쌀 6말 말당 2전 6푼 6리 6호씩, 합한 값은 1냥 6전이다. 섬당 4냥씩 대납하는데 날마다 2되씩, 12개월 합계 4섬 12말이다.

좁쌀 11말 4되 말당 2전씩, 합한 값은 2냥 2전 8푼이다. 섬당 3냥씩 대납하는데 날마다 3되씩 12개월 합계 8홉씩, 12개월 합계 9섬 1말 8되이다.

콩 9말 말당 1전씩, 합한 값은 9전이다. 섬당 1냥 5전씩 대납하는데 날마다 3되씩 12개월 합계 7섬 3말이다.

이상은 본부 도창(都倉)에서 날짜를 헤아려 들인다.

膠米一斗八升,

小米六斗, 戶庫從市直納.

眞油六合價一錢八里, 每合一分八里式,

法油九合價一錢八分, 每合二分式,

民魚二尾價六錢, 每尾三錢式,

石魚六束價一兩二錢, 每束二錢式,

원일기》 현종 7년(1841) 4월 17일 기사에 1대씩을 줄이는 내용이 나온다.

282 평안도 영변에 있던 평안병영(平安兵營)에서 근무하는 종9품 평안절도영심약(平安節度營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를 보면 평안병영은 1월과 7월 소령이다.

283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眞魚六尾價七錢八分，每尾一錢三分，戶庫納。

蘇魚三級價九分，

白蝦三升價三分，營需庫納。

鹽三升價三分 每升一分式，肉庫納。

풀쌀 1말 8되，

좁쌀 6말은 호고(戶庫)에서 시장 가격으로 들인다.

참기름 6홉 값 1전 8리를 흡당 1푼 8리씩，

들기름 9홉 값 1전 8푼을 흡당 2푼씩，

민어 2마리 값 6전을 마리당 3전씩，

조기 6속 값 1냥 2전을 속당 2전씩，

준치 6마리 값 7전 8푼을 마리당 1전 3푼씩 호고(戶庫)에서 들인다.

밴댕이 3두를 값 9푼，

쌀새우 3되 값 6푼은 영수고(營需庫)에서 들인다.

소금 3되 값 3푼 되당 1푼씩 육고(肉庫)에서 들인다。

柴一百八十束價五兩四錢 每束三分式，每日六束，小月減六束，

穀草三十束價一兩五錢 每束五分式，自八月至三月納，

青草一百二十束價三兩六錢 每束三分式，自四月至七月納，

炭三斗價五分一里 每斗一分七里式。已上營繕納。

땔나무 180속 값 5냥 4전 속당 3푼씩 날마다 6속으로，소삭에는 6속을 줄인다.

볏짚 30속 값 1냥 5전 속당 5푼씩 8월부터 3월까지 들인다.

푸른 풀 120속 값 3냥 6전 속당 3푼씩 4월부터 7월까지 들인다.

숯 3말 값 5푼 1리 말당 1푼 7리씩이다. 이상은 영선고에서 들인다.

壯紙二張價七分 每張三分五里，

白紙一束價一錢七分，

黃筆一柄價八分，

眞墨一丁價八分 紙庫納。

朔錢八兩 工庫納，

小米五斗價一兩 別餉庫. 已上並朔下.

장지(壯紙) 2장 값 7푼 장당 3푼 5리이다.

백지 1속 값 1전 7푼,

황모필 1자루 값 8푼, 참먹 1정 값 8푼 지고(紙庫)에서 들인다.

삭전(달마다 주는 돈) 8냥 공고(工庫)에서 들인다.

좁쌀 5말 값 1냥 별향고(別餉庫)에서 들인다. 이상은 모두 삭하(朔下)²⁸⁴이다.

大米二斗一升,

眞油三合價五分四里 戶庫,

鹽一升五合價一分五里,

石魚三束價六錢 肉庫. 自三月至七月, 點心次.

쌀 2말 1되,

참기름 3홉 값 5푼 4리 호고(戶庫)에서 들인다.

소금 1되 5홉 값 1푼 5리,

조기 3속 값 6전 육고(肉庫)에서 들인다. 3월부터 7월까지의 점심 값이다.

赤豆一升,

大米四升 戸庫納,

粘米一升,

白清三合 營需庫. 冬至.

팥 1말,

쌀 4되 호고(戶庫)에서 들인다.

찹쌀 1되,

백청(白清) 3홉 영수고(營需庫)에서 동짓날에 들인다.

大米五斗, 歲儀戶庫納.

쌀 5말은 세의(歲儀)²⁸⁵로 호고에서 들인다.

284 삭하(朔下) : 하급 벼슬아치나 원역(員役)들에게 다달이 주는 월급이다.

壯紙十張三錢五分，

白紙三束五錢一分 紙庫，

錢文一兩 工庫納。已上三種修理次。修理次²⁸⁶。

장지(壯紙) 10장 3전 5푼,

백지(白紙) 3속 5전 1푼 지고(紙庫)에서 들인다.

돈 1냥 공고(工庫)에서 들인다. 이상 3종은 수리하는 비용이다.

燻造一石價一兩五錢 醬婢納。

鹽一石價一兩二錢 肉庫納。

매주 1섬 값 1냥 5전 장비(醬婢)가 들인다.

소금 1섬 값 1냥 2전 육고(肉庫)에서 들인다.

四十八兩, 衣資 正·七·四·十月十二兩式, 工庫。

48냥은 옷감 값이 1·7·4·10월에 12냥씩 공고에서 들인다.

八十兩 六·七·十一·十二月, 白清作紙, 每等二十兩式, 或有別卜定, 依例作紙, 二十兩. 白清封餘一缸。

80냥 6·7·11·12월의 백청 작지는 분기마다 20냥씩인데, 혹 별지정²⁸⁷이 있을 경우 규례대로 작지 20냥이다. 백청봉여는 1단지이다.

三十兩, 春秋兩等, 藥材作紙 藥庫。

30냥은 봄·가을 두 분기의 약재 작지이다 약고。

285 세의(歲儀) :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이다.

286 修理次 : 연문인 듯하다.

287 별지정 : 원래 지정(卜定)한 물품이나 인력 외에 별도로 각 지방에 부과하는 것으로, 나라에 큰 행사가 생기거나 중국의 칙사(勅使)가 예기치 않게 나오게 되어 원래 각 지방에 지정(卜定)한 물품이나 인력 등으로는 부족할 때 더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추가 배정하여 부과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정은 복정(卜定)의 이두음이다. 지정의 '卜'은 책임을 지운다는 '짐'의 뜻이어서 '負'로도 표기한다. 지정은 원래의 원지정(元卜定)과 별도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별지정(別卜定) 또는 가지정(加卜定)으로 나뉜다.

十八兩, 遷歸馬一匹駄價 雇馬庫.

18냥은 체귀마²⁸⁸ 1필의 태가이다 고마고.

九兩, 空石三百立價.

9냥은 빈 가마니 300닢 값이다.

녹용의 봉상²⁸⁹에 대한 질(鹿茸捧上秩)

正七月.

정월과 7월이다.²⁹⁰

順川一對一百兩, 殷山一對一百兩, 成川一對一百兩,

价川一對一百兩, 朔州一對一百兩

春秋兩等, 各五百兩式, 作紙捧上矣, 辛丑二對權減. 正·七月兩等, 四百兩式捧納, 每等四對式, 京貿進上.

순천 1대 값 100냥, 은산 1대 값 100냥, 성천 1대 값 100냥,

개천 1대 값 100냥, 삭주 1대 값 100냥이다

봄·가을 두 분기마다 500냥씩 작지 봉상하였는데, 신축년(1841, 현종 7)²⁹¹에 2대를 임시로 줄였다. 정월과 7월 두 분기에 400냥씩 봉납하는데, 분기마다 4대씩 도성에서 사서 진상한다.

오미자 봉상에 대한 질(五味子捧上帙)

正·七月, 兩等納.

288 체귀마 : 벼슬이 갈리어서 돌아갈 때 타는 말이다.

289 봉상 : '받자'로 음훈 되는 이두 표현은 회계의 경우이다. 그때의 경우 자산 정도의 뜻이다. 여기서는 공물 등의 진상을 의미한다.

290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를 보면 평안병영은 1월과 7월에 녹용 5대씩을 진상했다. 평안병영은 1월과 7월이 대령이며 소령은 따로 없다.

291 《승정원일기》현종 7년(1841) 4월 17일 기사에 나온다. 이 때 함경도의 녹용 진상분도 줄였다.

정월과 7월 두 분기에 들인다.

孟山五味子十斤, 陽德五味子²⁹²十斤, 熙川五味子十斤,
楚山五味子十斤, 殷山五味子²⁹³十斤 合五十斤內, 二十斤進上, 二十斤營門封餘, 十斤審藥封
餘. 或殷山代納, 九兩二錢.

맹산 오미자 10근, 양덕 오미자 10근, 희천 오미자 10근,
초산 오미자 10근, 은산 오미자 10근이다 합계 50근 안에서 20근은 진상하고, 20근은
영문 봉여로 하고 10근은 심약 봉여로 한다. 혹 은산에서 대납하면 9냥 2전으로 한다.

7월령 자초용 1근 8돈중의 봉상에 대한 질(七月令紫草茸一斤八錢重 捧上秩)

八兩重, 進上, 八兩八錢重, 審藥封餘.

8냥중은 진상하고, 8냥 8돈중은 심약 봉여이다.

孟山七錢, 陽德七錢, 熙川七錢, 楚山七錢, 殷山七錢, 順川七錢,
成川七錢, 价川七錢, 德川七錢, 寧遠七錢, 寧邊七錢, 江界七錢,
雲山七錢, 渭原七錢, 泰川²⁹⁴七錢, 龜城七錢, 朔州七錢, 昌城七錢,
碧潼七錢, 滋山七錢, 江東七錢, 三登七錢, 祥原七錢 合十六兩八錢重, 代納一百六十八兩.
맹산 7돈, 양덕 7돈, 희천 7돈, 초산 7돈, 은산 7돈, 순천 7돈,
성천 7돈, 개천 7돈, 덕천 7돈, 영원 7돈, 영변 7돈, 강계는 7돈 ,
운산 7돈, 위원 7돈, 태천 7돈, 구성 7돈, 삭주는 7돈, 창성 7돈,
벽동 7돈, 자산 7돈, 강동 7돈, 삼등 7돈, 상원 7돈이다 합계 16냥 8돈중인데,
대납하면 168냥이다.

292 子 : 원본에 ‘子’가 탈락되어 있으나 삽입했다.

293 子 : ‘子’가 탈락되어 있으나 삽입했다.

294 泰川 : 본문에는 ‘泰安’으로 되어있으나 평안도에 없는 고을 이름이므로 태천인 듯하다.

7월령 사향 봉상에 대한 질(七月令麝香捧上秩)

合三十三部內, 三十部進上, 三部審藥封餘. 每部五兩式, 合一百六十五兩.

합계 33부²⁹⁵ 안에서 30부는 진상하고 3부는 심약 봉여이다. 1부당 5냥씩 합계 165냥이다.

孟山二部, 陽德二部, 熙川一部, 楚山二部, 殷山一部,
順川二部, 成川一部, 价川一部, 德川二部, 寧遠二部,
寧邊二部, 江界三部, 雲山一部, 渭原二部, 泰川二部,
龜城二部, 哺州二部, 昌城二部, 碧潼一部.

맹산 2부, 양덕 2부, 희천 1부, 초산 2부, 은산 1부,
순천 2부, 성천 1부, 개천 1부, 덕천 2부, 영원 2부,
영변 2부, 강계 3부, 운산 1부, 위원 2부, 태천 2부,
구성 2부, 삁주 2부, 창성 2부, 벽동 1부이다.

달마다의 진상(每月進上)²⁹⁶

正月令進上.

鹿茸四對, 五味子二十斤, 白清四缸, 分入二櫃.

정월령 진상.

녹용 4대와 오미자 20근, 백청 4항아리를 2궤에 나누어 넣는다.

六月令進上.

白清四缸, 分入櫃一²⁹⁷ 陪持陪進上來.

6월령 진상.

295 부 :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 7월령으로 30부를 진상한다. 사향(麝香) 1부는 1돈의 무게이다.

296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297 一 : ‘一’이 ‘二’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다.

백청 4항아리를 나누어 넣은 궤 하나 배지가 배진하여 올라온다.²⁹⁸

七月令進上.

鹿茸四對, 麝香三十部, 紫草茸八兩,

五味子二十斤, 白清四缸, 分入櫃二.

7월령 진상.

녹용 4대, 사향 30부, 자초용 8냥,

오미자 20근, 백청 4항아리를 2궤에 나누어 넣는다.

十二月令進上.

白清四缸, 分入櫃二 本官陪持陪進上來.

12월령 진상.

백청 4항아리를 2궤에 나누어 넣는다 본관 배지가 배진하여 올라온다.

白清 六·七·臘·正, 各四缸式, 元封, 審藥封餘, 每令各一小缸式.

백청 6·7·12·1월에 각각 네 항아리씩이 원봉인데, 심약 봉여는 영(令)마다 각각 작은 항아리 하나씩이다.

정월과 7월령 진상 때 내국의 예정(例情) 기록(正·七月令進上時內局例情記)²⁹⁹

兩次.

두 차례이다.

綿紬一疋, 墨靴一部代文二兩, 西草二斤,

唐鞋一部代文一兩二錢, 閨干一斤代文四錢五分,

砂糖一元代文二錢. 上令監·上掌務同. 唐鞋一部, 西草二斤. 下掌務官.

298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를 보면 평안병영에도 6월과 12월에 소령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299 1월과 7월은 대령이다.

綿紬二疋, 履價二兩, 西草二斤, 草匣二介 代文二錢. 藥色書員二人.

履價二兩, 西草二斤, 草匣二介 掌務書員二人. ³⁰⁰

명주 1필, 목화(墨靴) 1부를 대신하는 돈 2냥, 서초(西草) 2근,
당혜(唐鞋) 1부를 대신하는 돈 1냥 2전, 모기장 1근을 대신하는 돈 4전 5푼,
사탕 1알을 대신하는 돈 2전 상영감과 상장무관이 동일하다. 당혜 1부, 서초 2근
하장문관.

명주 2필, 짚신 값 2냥, 서초 2근, 담배쌈지 2개 대신하는 돈 2전이다. 약색서원
2인.

짚신 값 2냥, 서초 2근, 담배쌈지 2개 장무서원 2인.

진상 봉상 때의 행하(進上捧上時行下)

五兩藥庫屬帖給, 一兩差使帖給, 五錢房子帖給,

五錢房婢給 以上合七兩.

倍持草料次五錢.

5냥은 약고 소속원의 체급이고, 1냥은 차사원의 체급이고, 5전은 방자(房子)의
체급이고,

5전은 방비에게 준다 이상 합계 7냥이다.

배지의 초료³⁰¹에 지불하는 5전이다.

差使一名, 每朔小米三斗 自料布中給, 十二朔合二石六斗. 鋪陳等各種, 貿易庫·工庫·戶庫等三
庫納.

차사원 1명은 달마다 족쌀 3말이다 유포에서 지급하고, 12달 합계 2섬 6말이다. 포진
등의 여러 종류는 무역고, 공고, 호고 등 세 창고에서 들인다.

300 마지막 문장은 중복된 연문(衍文)이다.

301 초료 : 초료장.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에게 역참에서 마필, 숙식 등을 제공하는 명령서이다.

6월과 12월 백청 진상 때 내국의 예정(六月·十二月白清進上時內局例情)³⁰²

兩次.

두 차례이다.

四兩書員履價, 四錢草匣價, 一兩四錢懸狀次,
六錢越門次, 五錢房直掌務所, 一兩實水工,
五錢到任次³⁰³文書直, 西草四斤, 一錢軍士負持價.
4냥은 서원의 짚신 값, 4전은 담배쌈지 값, 1냥 4전은 현장(懸狀)하는 비용,
6전은 월문하는 비용, 5전은 장무소 방지기 뜻, 1냥은 실수공 뜻,
5전은 도임을 맡은 문서지기 뜻, 서초 4근, 1전은 군사의 부지가(負持價)이다.

도임 뒤 포진의 여러 종류에 대한 무역고, 공고, 호고에서의 진배(到任後鋪陳各種, 貿易庫·工庫·戶庫進排)

簾子四立六錢四分, 茵席一立三錢, 真末一升,
齒含朴一介一錢三分, 瓢子一介六分, 篩子一介,
木含之一坐代文三錢五分, 草簾一柄三分,
箕一介一錢六分, 土盆一介, 土代赤只一坐,
土所羅一坐, 土火爐一坐, 完沙鉢一介,
中沙鉢一介, 大貼一介, 小貼一介, 通甫兒一介,
種子一介.

대자리 4닢의 값 6전 4푼, 인석(茵席) 1닢의 값 3전, 밀가루 1되,
이남박 1개의 값 1전 3푼, 표주박의 1개 값 6푼, 체 1개,
나무 함지 1좌를 대신하는 돈 3전 5푼, 풀 빗자루 1자루의 값 3푼,

302 6월과 12월령은 소령이다.

303 次 : '差人'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키 1개의 값 1전 6푼, 흙 동이 1개, 흙 보시기 1좌,
흙 소래기 1좌, 흙 화로 1좌, 등근 사발 1개,
중간 사발 1개, 대접 1개, 소접 1개, 통보시기 1개,
종지 1개이다.

8. 강원감영(江原監營)³⁰⁴

四月受料. ³⁰⁵

4월에 요를 받는다.

달마다의 진상(毎月進上)³⁰⁶

大米十斗代錢三兩三錢三分 每石五兩, 一年合八石四十兩,
田米七斗五升代錢一兩五錢 每石三兩, 一年合六石十八兩.
布三疋代朔下錢五兩四錢 一年合六十四兩八錢,
饌價錢三兩 一年合三十六兩. 補營庫色吏納.
甘薑八十立代錢四錢八分 每束六分式, 一年合九十六丹,
南草一斤十四兩代錢三錢 每日一兩, 一年二十斤八兩三兩六錢.
眞油一升代錢三錢 一年合一斗二升三兩六錢,
魚油二升代錢一錢四分 一年合二斗四升一兩六錢八分. 營庫庫子納.
厚白紙二束代錢七錢 一年合二十四束八兩四錢,
黃筆一柄代錢一錢 一年合十二柄一兩二錢,

304 강원도 원주에 있던 강원감영에서 근무하는 종9품 강원도심약(江原道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305 전라감영 본문에는 세주가 아니라 항목처럼 기재되어 있다.

306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中墨一丁代錢一錢 一年合十二丁一兩二錢. 工庫色吏納.
柴九十束代錢二兩七錢 每束三分式, 自四月至九月, 十束式, 合十六兩二錢, 自十月至三月, 一百二十束式, 合二十一兩六錢, 都合三十七兩八錢,
炭十二斗代錢六錢四分 每斗五分四里式, 三斗作一石, 或七錢六分,
馬草六十束代錢一兩二錢 每丹二分式, 合十四兩四錢,
小炬三十柄代錢二錢二分 每柄七里五毫式, 合二兩六錢四分. 營繕色吏納.
大米九斗代錢三兩,
田米九斗代錢一兩八錢,
馬太六斗代錢六錢 本府司倉, 從市直捧納.
點心米二斗一升代錢七錢 自二月初一日至八月初一日, 合七朔, 四兩九錢,
粥米九斗代錢三錢,
真油一升代錢三錢,
法油一升代錢一錢七分,
鹽一斗代錢二錢,
真末三升代錢一錢 自九月至正月, 合五朔. 本府官廳.
쌀 10말의 대전(代錢) 3냥 3전 3푼 섭당 5냥씩이고, 1년 합계 8섬 40냥이다.
밭벼쌀 7말 5되의 대전 1냥 5전 섭당 3냥씩이고, 1년 합계 6섬 18냥이다.
삼베 3필을 대신하는 삭하전(朔下錢) 5냥 4전 1년 합계 64냥 8전이다.
반찬값 3냥 1년 합계 36냥이다. 보영고(補營庫) 색리가 들인다.
미역 80닢의 대전 4전 8푼 속당 6푼씩이고, 1년 합계 96단이다.
담배 1근 14냥의 대전 3전 날마다 1냥씩이고, 1년 합계 20근 8냥, 돈으로 3냥 6전이다.
참기름 1되의 대전 3전 1년 합계 1말 2되, 돈으로 3냥 6전이다.
물고기기름 2되의 대전 1전 4푼 1년 합계 2말 4되, 돈으로 1냥 6전 8푼이다. 영고(營庫)지
기가 들인다.
후백지(厚白紙) 2속의 대전 7전 1년 합계 24속, 돈으로 8냥 4전이다.
황모필 1자루의 대전 1전 1년 합계 12자루, 돈으로 1냥 2전이다.
중간 멱 1정의 대전 1전 1년 합계 12정, 돈으로 1냥 2전이다. 공고(工庫)색리가 들인다.
땔나무 90속의 대전 2냥 7전 속당 3푼씩이고, 4월부터 9월까지는 10속씩으로 합계 16냥

2전이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120속씩으로 합계 21냥 6전이다. 도합 37냥 8전이다.
숯 12말의 대전 6전 4푼 말당 5푼 4리씩인데 3말을 더하여 1섬으로 바꾸거나³⁰⁷ 혹은
돈으로 7전 6푼이다.

말먹이 풀 60속의 대전 1냥 2전 단당 2푼씩으로, 합계 14냥 4전이다.
작은 화 30자루의 대전 2전 2푼 자루당 7리 5호씩으로, 합계 2냥 6전 4푼이다. 영선(營繕)
색리가 들인다.³⁰⁸

쌀 9말의 대전 3냥,
발벼쌀 9말의 대전 1냥 8전,
말먹이 콩 6말의 대전 6전 본부 사창(司倉)에서 시장가격에 따라 봉납한다.
점심에 쓰는 쌀 2말 1되의 대전 7전 2월 초하루부터 8월 초하루까지 합계 7개월 동안
4냥 9전이다.
죽에 들어가는 쌀 9말의 대전 3전,
참기름 1되의 대전 3전,
들기름 1되의 대전 1전 7푼,
소금 1말의 대전 2전,
밀가루 3되의 대전 1전 9월부터 정월까지 합계 5개월이다.³⁰⁹ 본부 관청에서 낸다.

詳考前例，則小豆七斗五升，黃肉五斤，大口二尾，而或因昧例見漏。故依此錄推尋次。

白米三斗代錢九錢九分，
黃肉三斤代錢二錢一分，
生雉二首代錢六錢，
大口一尾代錢二錢五分 歲饌條。營庫。

전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팔 7말 5되, 소고기 5근, 대구 2마리인데, 혹 전례에 어두운 까닭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에 의거하여 추심하기 위해 기록한다.

307 15말이 한 섬이다. ‘三斗作一石’을 의역했다.

308 원본에는 떨나무 이하로 밑줄로 묶여있다.

309 원본에는 죽에 들어가는 쌀 이하로 밑줄로 묶여있다.

백미 3말의 대전 9전 9푼,
소고기 3근의 대전 2전 1푼,
꿩 2마리의 대전 6전,
대구 1마리의 대전 2전 5푼 설음식 항목. 영고(營庫)에서 낸다.
四孟朔衣資, 各六兩六錢式, 合二十六兩四錢 補營庫.
네 계절 첫 달의 옷감 각 6냥 6전씩으로 합계 26냥 4전 보영고에서 낸다.
清醬一斗,
甘醬五升 已上本府首婢, 代錢則三錢, 而本色捧納, 無可奈何.
청장(清醬) 1말,
감장(甘醬) 5되 이상은 본부의 우두머리 여종이 낸다. 대전(代錢)으로 3전인데, 본색으로 봉납하여도 어쩔 수 없다.
十月令, 醫生所納秋臘等錢一百八兩四錢,
京下人例給文三兩 合一百十一兩四錢內.
內局古風次五兩,
後鞋次一兩五錢 合六兩五錢除, 實一百四兩九錢.
春等納四十二兩八錢, 京下人例給三兩 合四十五兩八錢內.
內局古風次五兩,
後鞋次一兩五錢 合六兩五錢除, 實三十九兩三錢.
10월령, 의생이 납부하는 가을과 겨울 분기³¹⁰의 돈 108냥 4전,
경하인(京下人)에 대한 예금(例給)하는 돈 3냥 합계 111냥 4전 안에서.
내의원의 고풍(古風)을 위해 지급하는 5냥,
후혜(後鞋)를 위해 지급하는 1냥 5전 합계 6냥 5전을 빼면, 실제로는 104냥 9전이다.
봄 분기³¹¹ 납부 42냥 8전,

310 가을과 겨울 분기 :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를 참고했을 때 9월과 12월 대령을 말한다.

311 봄 분기 :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를 참고했을 때 2월 대령을 말한다.

경하인에 대한 예금 3냥 합계 45냥 8전 안에서.

내의원의 고풍을 위해 지급하는 5냥,

후혜를 위해 지급하는 1냥 5전 합계 6냥 5전을 빼면, 실제로는 39냥 3전이다.

三月令, 各邑醫生所納錢合三十兩四錢二分 無論三·十月, 上京時, 有騎卜馬二匹, 而若不用, 則騎馬代錢八兩, 卜馬代錢七兩.

3월령, 각 읍의 의생이 납부하는 돈 합계 30냥 4전 2푼 3월과 10월에 관계없이, 상경할 때 타는 말과 짐 싣는 말 2필이 있는데, 만약 쓰지 않게 되면, 타는 말의 대전은 8냥, 짐 싣는 말의 대전은 7냥이다.

본영 하인 등의 행하(本營下人等行下)

隨廳妓生二兩 若非房隨廳, 全無, 及唱等一兩, 使令等一兩,

宣化堂通引一兩, 茶母等一錢, 房子等一錢 十月令詔, 行下.

陪吏二名三錢, 裨將廳通引三錢, 都房子每名一錢式 合六錢,

藥直四名一兩, 藥庫下典二錢, 陪使令三錢,

該食母二錢 三·十月令兩次, 行下.

수청기생 2냥 만일 방 수청이 아니면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급창 등 1냥, 사령 등 1냥,

선화당 통인 1냥, 다모 등 1전, 방자 등 1전 10월령 뿐의 행하이다.³¹²

배리 2명 3전, 비장첨 통인 3전, 도방자 1명당 1전씩 합계 6전이다.³¹³,

약지기 4명 1냥, 약고 하전 2전, 배사령 3전,

모든 식모 2전 3월과 10월 두 차례의 행하이다.

도임 초의 여러 종류의 진배(到任初各種進排)

茵席二立九錢, 足盤一立三錢五分, 駄篩一部三錢,

312 원본에는 수청기생 이하를 밑줄로 묶고 있다.

313 도방자가 여섯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竹篩一部一錢, 齒朴一介一錢五分, 湯器二介四分,
中鉢二介四分, 楪匙六介一錢二分, 大楪四介八分,
種子二介二分, 木標二介一錢, 周匱一介二分,
暨一介二分, 湖米一介二分 已上本府工房進排. 都已上合十四種代納, 則二兩二錢六分.
大甕二坐, 東海二坐, 火爐二坐, 代於只二坐 已上四種, 甕器店漢納, 而外此有各種, 半則審
藥堂庫直, 以本色納, 半則代錢.
陶鼎蓋二坐代文七分 本府貢房納.
柳古里一部, 箕子一部 已上本府柳匠進排, 兩種代錢, 五錢五分.
牆垣修改次空石六十立 司倉直所納, 代錢一兩八錢.
인석 2닢 값 9전, 족반(굽이 있는 소반) 1닢 값 3전 5푼, 말총체 1부 값 3전,
대나무 체 1부 값 1전, 이남박 1개 값 1전 5푼, 탕기 2개 값 4푼,
중간 사발 2개 값 4푼, 접시 6개 값 1전 2푼, 대접 4개 값 8푼,
종지 2개 값 2푼, 나무 표주박 2개 값 1전,
주걱 1개 값 2푼, 솔 1개 값 2푼, 호미 1개 값 2푼 이상은 본부 공방이 진배한다.
이상을 모두 합한 도이자(都已上)³¹⁴ 14종의 대납(代納)은 2냥 2전 6푼이다.
큰 독 2좌, 동이 2좌, 화로 2좌, 포대기 2좌 이상 4종은 옹기점한(甕器店漢)이 들이는데,
이외 여러 종류의 절반은 심약당 고지기가 본색으로 들이고, 절반은 대전(代錢)한다.
질그릇 솔뚜껑 2좌를 대신하는 돈 7푼 본부공방이 들인다.
벼드나무 고리 1부, 키 1부 이상은 본부 유장(고리장이)³¹⁵이 진배하는데, 2종의 대전은
5전 5푼이다.
담장을 수리하는 재료로 빈 가마니 60닢 사창(司倉)지기가 납부하는 것인데 대전은 1냥
8전이다.

기타(其他)³¹⁶

314 도이자(都已上) : 이두로서 회계에서 지출 사항을 중간 정산할 때 사용된다.

315 고리장이 : 고리벼들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다.

316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到任三日，本府舉行，而兩時食床·及南草一兩·肉燭一兩式進排。

도임 사흘이 지나면 본부에서 거행하여 두 끼니 밥상 및 담배 1냥, 육족 1냥씩 진배한다.

審藥堂修補負役·及架竹·砧石·砧杵等物 藥庫下典，擔當舉行。

심약당의 허름한 곳을 손보는 부역 및 가죽, 다듬잇돌, 다듬이공이 등의 물건 약고 하전이 담당하여 거행한다.

鼎二坐，杵臼，次次傳掌 任置審藥堂庫直。

술 2좌, 공이와 절구는 차례대로 전장한다 심약당고지기가 맡아 둔다.

菜蔬，園頭漢，逐日進排。

채소는 원두한이 날마다 진배한다.

遞等 元錢文七兩，別錢文十兩，小米一石，甘蓄二百四十立，大口七尾。又別，黃蜜一斤，甘蓄五束，明太二束，眞油二升，清二升。

체등 원전은 돈 7냥, 별전은 돈 10냥, 좁쌀 1섬, 미역 240닢, 대구 7마리이다. 또 별도로 황밀³¹⁷ 1근, 미역 5속, 명태 2속, 참기름 2되, 꿀 2되이다.

習操時 正木一疋，箭竹四十介，紫帽二立，黑帽二立。

습조³¹⁸ 때 정목 1필, 화살대 40개, 자모 2닢, 흑모 2닢이다.

耗作錢十兩，至臘月間帖下。

모작전³¹⁹ 10냥은 납월까지 사이의 체하이다.

317 황밀 : 벌통에서 꺼낸 그대로의 꿀이다.

318 습조 : 병사들이 진법을 익히고 조련하는 것이다.

319 모작전 : 환곡 등의 이자로 받은 곡식을 바꾼 돈이다.

9. 남병영(南兵營)³²⁰

丙寅四月, 仍傳教, 減鹿茸三對. 辛未本營啓請, 又減二對. 壶酉十二月還復.

병인년(1866, 고종3) 4월에 전교에 의하여 녹용 3대를 줄였다.³²¹ 신미년(1871)에 본영에 서 주청하여 또 2대를 줄였다. 계유년(1873) 12월에 원래대로 복구했다.³²²

달마다의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³²³

本府 計日上下. 大米三斗,

田米十二斗 近受九斗云,

太 風高七朔六斗, 風和五朔三斗.

본부의 경우 날짜를 해아려 지급한다. : 쌀 3말,

밭벼쌀 12말 가까운 곳은 9말을 받는다고 한다.

콩 바람이 센 일곱 달은 6말, 바람이 약한 다섯 달은 3말이다.³²⁴

禮庫. 大米六斗,

田米六斗,

太三斗,

眞油六合代錢三錢一分九里八毫,

法油一升五合代錢二錢二分五里,

眞末五升代錢三錢九分五里,

320 함경도 북청에 있던 함경남병영에서 근무하는 종9품 함경남절도영심약(咸鏡南節度營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병마절도사가 2원인 도(道)는 함경도 이외에도 경상도가 있는데 함경도는 북과 남으로 경상도는 좌와 우로 나누어 병영을 두었다.

321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4월 13일 기사에 나온다.

322 《승정원일기》 고종 10년(1873) 12월 24일 기사에 나온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를 보면 원래는 10대를 진상했다.

323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324 조운(漕運)과 관련된 내용이다. 바람이 세면 바다를 통한 조운에 지장을 준다.

淸醬六升 留營時斧,
甘醬六升 留營時斧,
赤豆三合,
鹽二升四合代錢一錢五分.

예고(禮庫)의 경우 : 쌀 6말,
밭벼쌀 6말,
콩 3말,
참기름 6홉의 대전(代錢) 3전 1푼 9리 8호,
들기름 1되 5홉의 대전 2전 2푼 5리,
밀가루 5되의 대전인 3전 9푼 5리,
청장(淸醬) 6되 영(營)에 머무를 때뿐이다.
감장(甘醬) 6되 영(營)에 머무를 때뿐이다.
팥 3홉,
소금 2되 4홉의 대전 1전 5푼.

工庫. 白紙一束代錢一錢五分,
筆一柄代錢三分,
墨一丁代錢三分,
南草一斤代錢一錢五分.

공고(工庫)의 경우 : 백지 1속의 대전 1전 5푼,
붓 1자루의 대전 3푼,
먹 1정의 대전 3푼,
담배 1근의 대전 1전 5푼.

營繕. 房柴 夏秋七朔四十八束, 冬春五朔六十三束. 每束三分,
房炭四斗八升代錢四錢八分 每升一分式.

영선고(營繕庫)의 경우 : 방시(房柴) 여름 · 가을의 일곱 달은 48속이고, 겨울 · 봄 다섯 달은 63속이다. 속당 3푼,
방탄(房炭) 4말 8되의 대전 4전 8푼 되당 1푼씩이다.

兵庫. 饋價四兩 卽朔錢,
四孟溯衣資各四兩,
封裹時, 懸狀次三兩 兵房鎮撫納.

병고(兵庫)의 경우 : 반찬 값 4냥 바로 삭전(달마다 주는 돈)이다.
네 계절 첫 달의 옷감 값 각 4냥,
봉과할 때 현장(懸狀)하는 비용 3냥 병방 진무(兵房鎮撫)가 들인다.

十月令, 草材代錢, 二十九兩內 二十兩工庫納. 今則由吏先代納九兩, 藥漢納.

10월령, 초재(草材)의 대전 29냥 안에서 20냥은 공고(工庫)에서 들인다. 지금은 유리(由
吏)³²⁵가 9냥을 먼저 대납하는데, 약한이 들인다.

利原. 牛黃封餘細布代錢三兩 藥漢納.

이원의 경우 : 우황 봉여인 가는 삼베의 대전 3냥 약한이 들인다.

工庫. 封裹時大壯紙十張,
大櫃二坐 或代二木籠二坐,
小櫃一坐 具鎖,
白紙一束,
油紙 隨所入,
布袋二件,
細繩一斤,
正鐵五斤 槓粧飾所入.

공고(工庫)의 경우 : 봉과할 때 대장지(大壯紙) 10장,

큰 궤 2좌 목룡 2좌로 대신할 수도 있다.

작은 궤 1좌 사슬을 갖춘다.

백지 1속,

기름종이 들어가는 테 따른다.

325 유리(由吏) : 지방 관아에 딸린 이방의 아전이다.

포대 2건,
가는 새끼줄 1근,
정철(正鐵) 5근 궤를 꾸밀 때 들어간다.

여러 고을의 녹용 봉상에 대한 질(各邑鹿茸捧上秩)

長津. 一對代錢二百兩, 駄價十四兩, 人情三兩 元錢二百兩, 自南關邑移劃捧上, 而作還穀
次. 審藥移送于北青本府駄價總捧上. 人情條, 今無.

장진의 경우 : 1대의 대전(代錢) 200냥, 태가(駄價) 14냥, 인정(人情) 3냥 원전(元
錢, 원래 정해진 돈) 200냥은 남관(함경도 남부)의 고을에서 옮겨 떼어 주어 받아들이고 환곡으로
작정하기 위한 것이다. 심약이 북청 본부로 이송하는 태가는 모두 받아들인다. 인정 조는 지금
없다.

北青. 一對代錢二百兩, 駄價十四兩, 人情三兩 元錢二百兩, 仍留該府, 作還穀. 駄價人情,
今並無. 已上兩邑, 元錢四百兩, 辛丑減貢.

북청의 경우 : 1대의 대전 200냥, 태가 14냥, 인정 3냥 원전(元錢) 200냥은 해당
부(府)에 임류(仍留)³²⁶하여 환곡으로 작정한다. 태가와 인정은 지금 모두 없다. 이상 두 고을의
원전 400냥은 신축년(1841, 현종7)에 공납을 출였다.

端川. 二對代錢四百兩, 駄價二十八兩, 人情六兩.

厚州, 一對代錢二百兩, 駄價十四兩, 人情三兩.

甲山, 四對代七百兩, 駄價四十九兩, 人情無 元錢駄價並七百四十九兩內, 四百九十八兩九
錢二分, 該邑來納, 二百五十兩八分, 自該邑先送鹽于北青, 以其鹽價, 移劃納上.

단천의 경우 : 2대의 대전 400냥, 태가는 28냥, 인정 6냥.

후주 1대의 대전 200냥, 태가 14냥, 인정 3냥.

갑산 4대의 대전 700냥, 태가 49냥, 인정은 없다 원전(元錢)과 태가 모두 749냥 안에

326 임류(仍留) : 중앙으로 세곡을 보내지 않고 현지에서 군사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제도
이다.

서 498냥 9전 2푼은 해당 고을에서 와서 바치고, 250냥 8푼은 해당 고을에서 먼저 소금을 북청으로 보내어 그 소금 값으로 옮겨 떼어 주어 납부한다.

三水. 三對代五百兩, 駄價三十五兩, 人情無 元錢駄價並五百三十三兩內, 九十四兩二錢八分, 該邑來納, 一百四十兩七錢二分, 自該邑先送鹽九十三石十二斗二升, 北青使以鹽價移劃納上, 三百兩, 自該邑送田米一百石于北青, 趁期輸納, 而或以代錢三百兩捧上, 或以本色一百石捧上. 已上鹿茸十對代錢一千八百兩, 駄價一百四十兩, 情條九兩, 都合一千九百四十九兩. 北青一對代錢二百兩, 辛丑權減, 仍留本府作穀, 駄價十四兩推尋. 長津一對代錢二百兩, 辛丑權減, 南關邑中, 移劃捧上, 而本錢二百兩, 則作穀次. 移送北青府駄價十四兩, 推尋次.

삼수의 경우 : 3대의 대전 500냥, 태가 35냥, 인정은 없다 원전(元錢)과 태가 모두 533냥 안에서 94냥 2전 8푼은 해당 고을에서 와서 바치고, 140냥 7전 2푼은 해당 고을에서 먼저 소금 93섬 12말 2되를 보내어 북청에서 소금 값으로 옮겨 떼어 주어 납부하게 하고, 300냥은 해당 고을에서 밭벼쌀 100섬을 북청으로 보내되 기한에 맞추어 수송해 바치는데, 혹은 대전(代錢) 300냥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본색(本色) 100섬으로 받아들인다. 이상 녹용 10대의 대전 1,800냥, 태가 140냥, 인정 조 9냥으로, 도합 1,949냥이다. 북청 1대의 대전 200냥은 신축년(1841, 현종 7)에 임시로 줄여서,³²⁷ 본부에 임류하여 환곡으로 작정하고, 태가 14냥은 추심하였다. 장진 1대의 대전 200냥은 신축년(1841, 현종 7)에 임시로 줄여서,³²⁸ 남관 고을 가운데에서 옮겨 떼어 주어 받아들이되, 본전 200냥은 환곡으로 작정하기 위한 것이다. 북청부로 이송하는 태가 14냥은 추심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고을과 진의 사향 봉상에 대한 질(各邑鎮麝香捧上秩)

高原二部, 洪原二部, 利原二部, 永興三部, 三水十九部,
德原二部, 端川三部, 文川一部, 定平一部, 甲山十二部,
安邊二部, 北青一部, 咸興二部, 厚州五部 已上十四邑麝香, 合五十七部, 每部代錢九兩式捧上, 自京貿納, 每部例情五錢式, 合二十八兩五錢.

327 《승정원일기》 현종 7년(1841) 4월 17일 기사에 나온다. 함경도의 녹용 6대를 임시로 줄였다.

328 《승정원일기》 현종 7년(1841) 4월 17일 기사에 나온다.

고원 2부, 흥원 2부, 이원 2부, 영홍 3부, 삼수 19부,
덕원 2부, 단천 3부, 문천 1부, 정평 1부, 갑산 12부,
안변 2부, 북청 1부, 함홍 2부, 후주 5부이다 이상 열네 고을의 사향은 합계 57부로,
1부당 대전(代錢) 9냥씩 받아들여 도성에서 사서 납부하고, 1부당 예정(例情, 예에 따른 인정)은
5전씩 합계 28냥 5전이다.

惠山五部, 雲寵五部, 同仁一部, 仁遮二部, 羅暖二部,
利同一部, 鎮東一部, 黃土坡一部, 雙青一部, 舊坡一部,
笠坡一部, 長津四部 長津麝香, 原是四部, 而庚子減半, 只捧代錢二十兩, 無人情條. 《審藥堂事例》
云, 十年權減, 《藥色謄錄》云, 永減. 已上十二鎮麝香, 合二十五部, 每部代錢九兩式捧上, 自京貢納,
每部人情三錢式, 合七兩五錢. 都合麝香八十二部內, 進上六十八部, 营門封餘六部, 審藥封餘八部.

혜산 5부, 운총 5부, 동인 1부, 인차 2부, 나난 2부,
이동 1부, 진동 1부, 황토파 1부, 쌍청 1부, 구파 1부,
갈파 1부, 장진 4부이다 장진의 사향은 본디 4부인데, 경자년(1840, 현종6)에 절반으로
줄여 단지 대전(代錢) 24냥만 바치고 인정(人情) 조는 없다. 《심약당사례》에서는 10년 동안 임시로
줄였다고 하고, 《약색등록》에서는 영구히 줄였다고 하였다. 이상 열두 진(鎮)의 사향은 합계 25부
로, 1부당 대전 9냥씩 받아들여 도성에서 사서 납부하고, 1부당 인정은 3전씩 합계 7냥 5전이다.
도합 사향 82부 안에서 진상(進上) 68부,³²⁹ 영문(營門) 봉여(封餘) 6부, 심약 봉여 8부이다.

기타(其他)³³⁰

進上鹿茸十對³³¹, 麝香六十八部.

진상하는 녹용 10대, 사향 68부이다.

進上時內局人情 越門次六錢, 懸狀次一兩四錢, 上下掌務·兩藥色履價八兩, 庫直五錢, 水工³³²一

329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를 보면 남병영은 7월에 68부를 진상했다.

330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331 十對 : 원본에는 8대로 되어있다. 본문 '여러 고을의 녹용 봉상에 대한 질[各邑鹿茸捧上秩]'에
는 녹용 10대로 나온다.

兩。紬價四兩，賈布價十兩二錢，到付次五錢，細布八疋內。上監·上掌務·上下藥色各二疋代錢，則每疋十兩式納。

진상 때의 내의원에 주는 인정(人情) 월문하는 비용 6전, 현장(懸狀)하는 비용 1냥 4전, 상하장무관과 두 약색(상하약색서원) 짚신 값 8냥, 고지기 5전, 수공 1냥, 비단 값 4냥, 무포(賈布) 값 10냥 2전, 도부(到付)³³³하는 비용 5전, 가는 삼베 8필 안에서 상영감, 상장무관, 상하약색마다 각 2필의 대전(代錢)은 1필당 10냥씩 들인다.

10. 북병영(北兵營)³³⁴

丙寅四月，仍傳教，鹿茸三對。十一月，仍傳教審藥革罷。癸酉十二月二十四日，領相李裕元，啓請復設。

병인년(1866, 고종3) 4월에 전교에 의하여 녹용 3대를 줄였다.³³⁵ 11월에 전교에 의하여 십약을 혁파했다.³³⁶ 계유년(1873) 12월 24일에 영상 이유원(李裕元)이 주청(奏請)하여 십약을 다시 두었다.³³⁷

달마다의 진상(每月進上)³³⁸

吉州。麝香四部代錢四十兩，

332 工 : 원본에는 ‘貢’으로 되어있으나 오기이다.

333 도부(到付) : 공문이 도달하는 것이다.

334 함경도 경성에 있던 함경북병영에서 근무하는 종9품 함경북절도영십약(咸鏡北節度營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335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4월 13일 기사에 나온다.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를 보면 북병영은 7월에 녹용 10대를 진상했다. 앞의 <남병영>의 소주에는 ‘鹿茸’ 앞에 ‘減’자가 있다.

336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12월 23일 기사에 나온다.

337 《승정원일기》 고종 10년(1873) 12월 24일 기사에 나온다.

338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熊膽一部代錢十兩,

京人情木十疋代錢五兩 每部十兩式, 合五十五兩. 麝香檳價一兩,

秩布三疋 本色納七升布, 代錢則從市直, 私通,

蓼布二疋 代粟六石, 本州監官來納, 私通.

길주의 경우 : 사향 4부의 대전(代錢) 40냥,

옹담 1부의 대전 10냥,

경인정(京人情) 무명 10필의 대전 5냥 1부당 10냥씩이고, 합계 55냥이다. 사향 담는
궤 값은 1냥이다.

질포(秩布) 3필 본색은 일곱새베를 바치고, 대전은 시장 가격에 따르고, 사통(私通)한다.

삼포(蓼布) 2필 대신하는 조는 6섬인데, 본주(本州)의 감관(監官)이 와서 바치고, 사통한다.

明川. 鹿茸一對,

封餘一對 元.³³⁹, 代文四百兩, 駄價四十兩,

麝香七部,

熊膽一部 每部十兩式. 繢布八同, 辛丑因下教, 一對權減, 只以續布四同捧上. 麝香檳一兩,

秩布三疋 本色納, 七升布, 或代十二兩,

京人情木二十疋代錢十兩 或四升布十疋納,

虎脛骨一對代錢十兩 或本色納,

명천의 경우 : 녹용 1대,

봉여 1대 원수(元數)이다. 를 대신하는 돈 400냥, 태가(駄價) 40냥,

사향 7부,

옹담 1부 1부당 10냥씩이다. 속포(續布)는 8동인데, 신축년(1841, 현종7)에 하교로 인하여
1대를 임시로 줄여서 단지 속포 4동을 받아들였다.³⁴⁰ 사향 궤는 1냥이다.

질포(秩布) 3필 본색은 일곱새베를 바치고 후 대전으로는 12냥이다.

경인정(京人情) 무명 20필의 대전 10냥 혹은 넉새베 10필을 바치기도 한다.

339 원본에는 녹용과 봉여가 밑줄로 묶여있다.

340 《승정원일기》 현종 7년(1841) 4월 17일 기사에 나온다. 함경도의 녹용 6대를 임시로 줄였다.

호경골 1대의 대전 10냥 혹은 본색으로 바치기도 한다.

富寧. 鹿茸二對代錢二百兩 京納, 訓局條,
麝香六部代錢四十八兩,
熊膽一部代錢八兩 代小米二十五石納. 麝香價一兩. 壬寅年, 自該邑, 兵耗穀代文例酌定,
秩布三疋代錢十二兩,
利布二十疋 本色, 七升布納,
蓼布二疋 田米十斗, 三月推用於戶庫, 以營需米價納. 檢價一兩.

부령의 경우 : 녹용 2대의 대전 200냥 도성에서 바치는데, 훈련도감 조이다.
사향 6부의 대전 48냥,
옹담 1부의 대전 8냥 대신하는 족쌀은 25섬을 바친다. 사향 궤 값은 1냥이다. 임인년(1842,
현종8)에 해당 고을에서 병모곡(兵耗穀)을 대신하는 돈의 예로 작정(酌定)하였다.
질포(秩布) 3필의 대전 12냥,
이포(利布) 20필 본색은 일곱새베를 바친다.
삼포(蓼布) 2필 밭벼쌀 10말을 3월에 호고(戶庫)에서 추용(推用)하여 영수미(營需米) 값으로
바친다. 궤 값 1냥이다.

茂山. 鹿茸三對 進上,
封餘二對 內局進上八對中, 充封,
封餘一對 營門,
麝香六部代錢六十兩, 又封餘六部,
熊膽一部代錢十兩,
鹿角二對 本色,
虎脰骨二對內 一對文十兩, 一本色. 大鹿皮, 鹿賢, 私求請, 紿價,
羚羊角二對 內封餘一對, 訓局,
續布三十疋,
秩布三疋 本色納九升布, 私通,
鼬皮八張,
三丁二駄,

白仙茶一斗 進上櫃子具鎖金, 私通,

毫粥一斗.

무산의 경우 : 녹용 3대 진상한다.

봉여 2대 내국 진상 8대 중에서 봉여에 충당한다.

봉여 1대 영문(營門),

사향 6부의 대전 60냥 그리고 봉여 6부,

웅담 1부의 대전 10냥,

녹각 2대 본색으로 한다.

호경골 2대 안에서 1대는 대신하는 돈 10냥, 1대는 본색으로 한다. 큰 사슴 가죽, 녹현(鹿賢),

사사로운 구청(求請)은 값을 치려준다.

영양각 2대 그 안에서 봉여 1대는 훈련도감,

속포(續布) 30필,

질포 3필 본색은 아홉새베를 바치고, 사통한다.

족제비 가죽 8장,

삼정(三丁)³⁴¹ 2집,

백선차 1말 자물쇠를 갖춘 진상 궤로 사통한다.

들쭉 열매 1말.

會寧. 鹿茸二對,

麝香八部,

熊膽一部,

京人情木二十疋代錢十兩 合六百八兩, 京納,

秩布三疋,

參布三疋 小米十斗, 三月推用於戶庫. 檢價文一兩.

회령의 경우 : 녹용 2대,

사향 8부,

341 삼정(三丁) : 상자를 넣거나 싸려고 노끈을 엮어 만든 망태나 보이다.

옹담 1부,

경인정(京人情) 무명 20필의 대전 10냥 합계 608냥이다. 도성에서 바친다.

질포 3필,

삼포(參布) 3필 좁쌀 10말을 3월에 호고에서 추용(推用)한다. 궤 값은 돈 1냥이다.

鍾城. 鹿茸二對,

封餘二對,

麝香七部,

熊膽二部,

京人情木三十疋 合錢六百五十兩. 又櫃代文一兩,

駄價文五十兩,

秩布三疋 九升布, 本色納,

清納米十五升 布三疋無,

白清三升.

종성의 경우 : 녹용 2대,

봉여 1대,

사향 7부,

옹담 2부,

경인정(京人情) 무명 30필 합계 650냥이다. 또 궤를 대신하는 돈 1냥이다.

태가 돈 50냥,

질포 3필 아홉새배를 본색으로 들인다.

청납미(清納米)³⁴² 15도 삼배 3필은 없다.

백청 3도.

穩城. 鹿茸一對 京納. 者所. 麝香櫃價一兩,

麝香七部,

熊膽一部,

342 청납미(清納米) : 납세를 깨끗하게 마친 쌀이다.

京人情木十疋,

秩布三疋 田米四十石, 私通. 本色九升布納.

온성의 경우 : 녹용 1대 도성에서 바친다. 기로소(耆老所). 사향 궤 값은 1냥이다.

사향 7부,

옹담 1부,

경인정(京人情) 무명 10필,

질포 3필 밭벼쌀 40석으로 사통한다.³⁴³ 본색은 아홉새베를 바친다.

慶源. 鹿茸一對代錢二百兩 京換納, 而若直納于營門, 則駄賈二百兩納,

封餘一對,

麝香七部,

熊膽一部,

京人情木二十疋代錢十兩 代米一百十石. 田米一百四十石內, 水陸輸運雜費條, 三十石除, 只捧一百十石,

秩布三疋 九升布納,

文魚三尾,

紅蛤一斗,

海蔘一斗,

江甲五介 本色納. 進上樁本色納. 或代文一兩.

경원의 경우 : 녹용 1대의 대전 200냥 도성에서 바꾸어 바치는데, 만약 직접 영문(營門)에 바치게 되면 태가 20냥을 바친다.

봉여 1대,

사향 7부,

옹담 1부,

경인정(京人情) 무명 20필의 대전 10냥 대신하는 쌀은 110석이다. 밭벼쌀 140석 안에서 수륙(水陸) 수운(輸運) 잡비 항목으로 30석을 제외하고 110석만 봉납한다.³⁴⁴

343 원본에는 사향 이하로 밑줄로 뚜여있다.

질포 3필 아홉새베를 바친다.
문어 3마리,
홍합 1말,
해삼 1말,
강갑(江甲) 5개 본색으로 들인다. 진상 궤에 본색으로 바친다. 혹 대신하는 돈은 1냥이다.³⁴⁵

鏡城. 鹿茸一對 進,
封餘一對 營. 代文四百兩,
麝香七部 代錢五十六兩,
熊膽一部 代錢六兩,
秩布三疋 代錢三兩,

浮費布代錢三兩 麝香檳子本色納. 合四百六十八兩內, 三百三十兩, 營門納, 一百三十八兩, 審藥堂.

경성의 경우 : 녹용 1대 진상,
봉여 1대 영(營). 대신하는 돈은 400냥이다.³⁴⁶,
사향 7부 대전은 56냥이다.
옹담 1부 대전은 6냥이다.

질포 3필 대전은 3냥이다.
부비포(浮費布)³⁴⁷의 대전 3냥 사향 궤에 본색으로 바친다. 합계 468냥 안에서 330냥은
영문(營門)에 바치고 138냥은 심약당(審藥堂)에 바친다.

慶興. 封餘一對 檳代文一兩,
麝香七部,
熊膽一部,

344 원본에는 봉여 이하로 밑줄로 묶여 있다.

345 원본에는 문어 이하로 밑줄로 묶여 있다.

346 녹용과 봉여가 밑줄로 묶여 있다.

347 부비포(浮費布) : 부비란 무슨 일을 하는데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京人情木十疋,
秩布三疋 代田米一百二十五石.

경홍의 경우 : 봉여 1대 궤를 대신하는 돈은 1냥이다.

사향 7부,
옹담 1부,
경인정 무명 10필,
질포 3필 대신하는 밭벼쌀은 125섬이다.

西北鎮, 犹羊角二對,
京人情木一疋 代錢五錢,
火石一斗.

서북진(西北鎮)의 경우 : 영양각 2대,
경인정 무명 1필 대전은 5전이다.
부싯돌 1말이다.

吉州. 草藥價, 七升布十疋代錢十五兩 白朮十兩, 蒼朮十兩, 大黃五兩, 桔梗五兩, 白芍五兩,
川芎五兩, 赤芍五兩, 當歸五兩, 苦蔘五兩.

길주의 경우 : 초약(草藥) 값은 일곱새베 10필의 대전 15냥이다 백출 10냥, 창출
10냥, 대황 5냥, 길경 5냥, 백작약 5냥, 천궁 5냥, 적작약 5냥, 당귀 5냥, 고삼 5냥이다.

明川. 草藥價, 十五升布一疋 白朮十兩, 蒼朮十兩, 川芎五兩, 葛根五兩, 苦蔘七兩, 桔梗四兩,
黃柏五兩, 大黃四兩, 白芍三兩, 赤芍三兩, 七升布二疋.

명천의 경우 : 초약 값은 열다섯새베 1필과 백출 10냥, 창출 10냥, 천궁 5냥, 갈근
5냥, 고삼 7냥, 길경 4냥, 황백 5냥, 대황 4냥, 백작약 3냥, 적작약 3냥이다 일곱새베 2필
이다.

富寧. 草藥價, 七升布二疋, 別麻紙五束 白芍五兩, 赤芍五兩, 當歸五兩, 山茱五兩, 桔梗四兩,
黃柏三兩, 陳艾十同, 蒼朮三兩, 苦蔘五兩, 白朮三兩, 白芷三兩.

부령의 경우 : 초약 값은 일곱새베 2필과 별마지(別麻紙) 5속이다 백작약 5냥, 적작
약 5냥, 당귀 5냥, 산수유 5냥, 길경 4냥, 황백 3냥, 묵은 쑥 10동, 창출 3냥, 고삼 5냥, 백출

3냥, 백지 3냥이다.

茂山. 草藥價, 六升布三疋, 三丁二次 白朮五兩, 赤芍五兩³⁴⁸, 蒼朮五兩, 當歸四兩, 桔梗四兩, 五味子二刀³⁴⁹, 苦蔘四兩, 白芷四兩, 細辛四兩, 防風四兩, 陳艾.

무산의 경우 : 초약 값은 여섯새베 3필, 삼정(三丁) 2차이다 백출 5냥, 적작약 5냥, 창출 5냥, 당귀 4냥, 길경 4냥, 오미자 2돈, 고삼 4냥, 백지 4냥, 세신 4냥, 방풍 4냥, 묵은 쑥이다.

鍾城. 草藥價, 十升布二疋 白芍五兩, 赤芍五兩, 當歸五兩, 白朮五兩, 蒼朮五兩, 白附子二兩六錢, 白芷三兩, 右種代, 甘草一斤四兩六錢.

종성의 경우 : 초약 값은 열새베 2필이다 백작약 5냥, 적작약 5냥, 당귀 5냥, 백출 5냥, 창출 5냥, 백부자 2냥 6돈, 백지 3냥, 이상의 종류를 대신하는 감초 1근 4냥 6돈이다.

穩城. 草藥價, 六升布五疋 桔梗四兩, 赤芍四兩, 白芍五兩, 川芎五兩³⁵⁰, 細辛五兩, 藜蘆五兩, 白朮五兩, 大黃五兩, 升麻五兩.

온성의 경우 : 초약 값은 여섯새베 5필이다 길경 4냥, 적작약 4냥, 백작약 5냥, 천궁 5냥, 세신 5냥, 여로 5냥, 백출 5냥, 대황 5냥, 승마 5냥이다.

慶源. 草藥價, 六升布五疋 白芷五兩, 桔梗五兩, 細辛三兩, 白朮五兩, 苦蔘十兩, 蒼朮五兩, 川芎三兩, 白芍三兩, 赤芍三兩, 白附子三兩, 陳艾十月乃.

경원의 경우 : 초약 값은 여섯새베 5필이다 백지 5냥, 길경 5냥, 세신 3냥, 백출 5냥, 고삼 10냥, 창출 5냥, 천궁 3냥, 백작약 3냥, 적작약 3냥, 백부자 3냥, 묵은 쑥 10월 내의 것이다.

慶興. 草藥價, 七升布五疋 白朮五兩, 乾葛五兩, 桔梗五兩, 蒼朮五兩, 赤芍五兩, 白芍五兩.

경흥의 경우 : 초약 값은 일곱새베 5필이다 백출 5냥, 전갈 5냥, 길경 5냥, 창출 5냥, 적작약 5냥, 백작약 5냥이다.

348 五兩 : 원본에는 ‘五兩’이 탈락되었다.

349 刀 : ‘刀’는 무게 단위로 ‘돈’과 통용된다.

350 五兩 : 원본에는 ‘五兩’이 탈락되었다.

會寧. 草藥價, 七升布一疋 白朮十兩, 蒼朮十兩, 陳艾十級, 五味子三刀, 大黃三兩, 細辛三兩, 黃柏十兩, 防風五兩, 赤芍十兩, 白芍十兩.

회령의 경우 : 초약 값은 일곱새베 1필이다 백출 10냥, 창출 10냥, 묵은 쑥 10두름, 오미자 3돈, 대황 3냥, 세신 3냥, 황백 10냥, 방풍 5냥, 적작약 10냥, 백작약 10냥이다.

右草藥價, 自營門納.

이상의 초약 값은 영문(營門)에서 바친다.

戶庫. 大米七斗八升 每朔上下料布,

田米十一斗,

真末三升代米三升,

菉豆一升代米一升,

小豆一升代米七升,

稷六斗代米二斗,

太六斗代米三斗,

鹽七升代米七升,

醬二斗一升代米二斗一升.

호고(戶庫)의 경우 : 쌀 7말 8되 달마다 요포(料布)를 지급한다.

밭벼쌀 11말,

밀가루 3되를 대신하는 쌀 3되,

녹두 1되를 대신하는 쌀 1되,

팥 1되를 대신하는 쌀 7되,

피(稷) 6말을 대신하는 쌀 2말,

콩 6말을 대신하는 쌀 3말,

소금 7되를 대신하는 쌀 7되,

간장 2말 1되를 대신하는 쌀 2말 1되.

魚物庫. 雜藿七同代米二升一合 每同三合. 五十條爲一同,

中昆布五回代米三升五合 每同七合式,

饅布一疋代錢五錢 辛亥御使革罷,

眞油三合代米四升八合 每合一升六合式,

麻油一升五合代米七升五合,

法油一升五合代米一斗五合.

어물고(魚物庫)의 경우 : 잡팍(雜叢) 7동을 대신하는 쌀 2되 1홉 동당 3홉씩이다.

50줄기가 1동이다.

중간품질 다시마 5동을 대신하는 쌀 3되 5홉 동당 7홉씩이다.

찬포(饌布) 1필을 대신하는 돈 5전 신해년(1851, 철종2)에 어사(御使)가 혁파했다.

참기름 3홉을 대신하는 쌀 4되 8홉 홑당 1되 6홉씩이다.

삼씨기름 1되 5홉을 대신하는 쌀 7되 5홉,

들기름 1되 5홉을 대신하는 쌀 1말 5홉.

工庫. 筆一柄, 墨一丁 代米八升,

白紙一束代米一斗五升,

朔布三疋式. 每疋二兩式.

공고(工庫)의 경우 : 볶 1자루, 먹 1정 대신하는 쌀은 8되이다.³⁵¹,

백지 1속을 대신하는 쌀 1말 5되,

삭포(朔布) 3필씩 필당 2냥씩이다.

營繕庫. 炭六斗代米二斗 每斗三升三合三夕,

木一百五十束, 每束二分式 行營冬五朔, 則木一百八十束式.

영선고(營繕庫)의 경우 : 숯 6말을 대신하는 쌀 2말 말당 3되 3홉 3작씩이다.

나무 150속인데, 속당 2푼씩 행영(行營)에서의 겨울 다섯 달은 나무 180속씩이다.

鷄庫. 鷄三首代米一斗八升 每首六升式.

계고(鷄庫)의 경우 : 닭 3마리를 대신하는 쌀 1말 8되 마리당 6되씩이다.

府邑倉. 田米十二斗 小朔則十一斗. 自正月至十二月, 合十二朔,

太六斗 五斗九升用下, 則減半三斗式. 又有草枯草長之別.

351 원문에서는 볶과 먹이 밑줄로 묶여있다.

부읍창(府邑倉)의 경우 : 밭벼쌀 12말 소삭에는 11말 6되이다. 정월부터 12월까지 합계 열두 달이다.

콩 6말 5말 9되를 용하(用下)³⁵²하는데, 절반을 줄여 3말씩이다. 또 풀이 마르고 자라나에 따라 차이가 있다.

府營繕庫. 三月朔草六十束,
四月朔草六十束,
九月朔草六十束 五月五日至十束, 每束二分式.

부영선고(府營繕庫)의 경우 : 3월 삭초(朔草)³⁵³ 60속,
4월 삭초 60속,
9월 삭초 60속 5월 5일에 이르기까지 10속인데 속당 2푼씩이다.

府戶庫. 大米三升 小朔則二升九合,
田米三升 小朔則二升九合. 從市直, 醬六升代米六升,
鹽三升代米三升.

부호고(府戶庫)의 경우 : 쌀 3되 소삭은 2되 9홉이다.

밭벼쌀 3되 소삭은 2되 9홉이다. 시장가격에 따른다.

간장 6되를 대신하는 쌀 6되, 소금 3되를 대신하는 쌀 6되.

府官廳. 大口三十尾代二兩七錢 每尾九分,
中昆布三十條代文九分 以上夏七朔納,
魚油三升代錢一錢五分 本沙工所納, 自三月至六月, 裨將廳都房子, 以代文捧納. 自七月至九月,
三朔條先納, 則本府官廳色吏捧納,
別料米十斗式, 每朔軍需監官納, 軍需庫·府邑倉兩庫推尋,
四等衣資木四疋,
衣資布八疋 內四疋, 行營條,
秩布三疋,

352 용하(用下) : 비용을 내어주는 것이다.

353 삭초(朔草) : 관에서 쓰이는 담배이다.

麝香布岱軍布五疋 穩城條, 雇馬庫, 推尋.

부관청(府官廳)의 경우 : 대구 30마리를 대신하는 2냥 7전 마리당 9푼씩이다.

중간품질 다시마 30조를 대신하는 돈 9푼 이상은 여름 일곱 달에 바친다.

물고기기름 3되의 대전 1전 5푼 본래 사공(沙工)이 바치는 것으로, 3월부터 6월까지는 비장청(裨將廳) 도방자가 대신하는 돈으로 봉납한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조의 선납(先納)은 본부 관청색리가 봉납한다.

달마다 군수감관(軍需監官)이 바치되 군수고(軍需庫)와 부읍창(府邑倉)의 두 창고에서 추심하는 별료미(別料米) 10말씩,

네 분기의 옷감 무명 4필,

옷감 삼베 8필 그 안에서 4필은 행영(行營) 항목이다.

질포(秩布) 3필,

사향 포대에 쓰는 군포(軍布) 5필 온성(穩城) 항목으로 고마고(雇馬庫)에서 추심한다.³⁵⁴

行營, 五朔料布.

中米二石九斗代田米五石三斗,

田米三石十斗,

小豆五升代田米三斗五升,

菉豆五升,

醬十斗五升,

鹽三斗五升,

眞末一斗五升 田米相代,

太二石代田米一石,

合田米十一石二斗五升.

행영(行營) 다섯 달의 요포(料布)의 경우 :

중미(中米)³⁵⁵ 2섬 9말을 대신하는 밭벼쌀 5섬 3말,

354 원본에는 질포 이하가 밑줄로 묶여있다.

355 중미(中米) : 품질이 중간쯤 되는 쌀이다.

밭벼쌀 3섬 10말,
팥 5말을 대신하는 밭벼쌀 3말 5되,
녹두 5되,
간장 10말 5되,
소금 3말 5되,
밀가루 1말 5되 밭벼쌀 같은 양으로 대신한다.³⁵⁶
콩 2섬을 대신하는 밭벼쌀 1섬.
합계 밭벼쌀 11섬 2말 5되.

禮庫. 眞油一升五合代田米二斗四升,
麻油七升五合,
法油七升五合 代田米七斗五升,
中昆布二十五同代田米一斗七升五合,
雜叢三十同代田米一斗五合,
生鷄十五首代田米九斗,
合田米一石六斗五升五合.

예고(禮庫)의 경우 : 참기름 1되 5홉을 대신하는 밭벼쌀 2말 4되,
삼씨기름 7되 5홉,
들기름 7되 5홉 대신하는 밭벼쌀은 7말 5되이다.³⁵⁷
중간 품질 다시마 25동을 대신하는 밭벼쌀 1말 7되 5홉,
잡곡(雜叢) 30동을 대신하는 밭벼쌀 1말 5홉,
생닭 15마리를 대신하는 밭벼쌀 9말.
합계 밭벼쌀 1섬 6말 5되 5홉.

營繕. 木九百丹代十八兩,
炭二石代米十斗.

356 원본에는 녹두 이하가 밀줄로 묶여있다.

357 원본에는 삼씨 기름 이하가 밀줄로 묶여있다.

영선고(營繕庫)의 경우 : 무명 900단을 대신하는 18냥,
숯 2섬을 대신하는 쌀 10말.

別向庫. 耳麥二石代田米三斗.

별향고(別向庫)의 경우 : 귀리 2섬을 대신하는 밭벼쌀 10말.

工庫. 白紙五卷代田米七斗五升,
筆五柄代田米二斗,
墨五丁代田米二斗,
軍布十五疋,
衣資布四疋 合十九疋代文二十八兩五錢, 每疋一兩五錢式,
別劃米五朔條三石五斗.

공고(工庫)의 경우 : 백지 5권을 대신하는 밭벼쌀 7말 5되,
붓 5자루를 대신하는 밭벼쌀 2말,
먹 5정을 대신하는 밭벼쌀 2말,
군포(軍布) 15필,
옷감 삼베 4필 합계 19필을 대신하는 돈은 28냥 5전이다. 필당 1냥 5전씩이다.
별회미(別劃米) 5개월 조 3섬 5말.

已上田米合十八石七升.

이상 밭벼쌀 합계 18섬 7되이다.

進上封裹 營工庫.

利布十五尺,
壯紙六張,
直所三巨里,
油密紙各二張,
白繩三十把,
紅繩三十把,
席子四立,

皮所二巨里,

柳箇二部,

皮大繩四斤,

樺皮二三同,

籠一隻 具鎖.

진상 봉과 영공고(營工庫)의 경우 :

이포(利布) 15척,

장지(壯紙) 6장,

곧은 밧줄 3걸이,

유밀지(油密紙) 각 2장씩,

흰 새끼줄 30다발,

붉은 새끼줄 30다발,

돛자리 4닢,

박달나무 껍질로 만든 밧줄³⁵⁸ 2걸이,

버드나무 상자 2부,

박달나무 껍질로 만든 큰 새끼줄 4근,

자작나무 껍질 2-3동,

대바구니 1짝 자물쇠를 갖춘다.

府工庫. 進上櫃一具鎖,

柳箇二部,

席子四立,

皮大繩一斤半,

紅袱一令 審藥自備.

부공고(府工庫)의 경우 : 진상궤(進上櫃) 하나 자물쇠를 갖춘다.

버드나무 상자 2부,

358 밧줄 : 달피바(槿皮所)라 하여 박달나무 껍질로 만든 줄을 지칭한다.

돛자리 4닢,
박달나무 껍질로 만든 큰 새끼줄 1근 반,
붉은 보자기 1령 심약이 스스로 준비한다.

체하(帖下)

藥漢十兩 上京,
及唱二兩,
運籌軒通引三兩,
都房子五錢,
使令等一兩,
軍牢等一兩.

약한 10냥 상경하는 경우,
급창 2냥,
운주현³⁵⁹통인 3냥,
도방자(都房子) 5전,
사령 등 1냥,
군뢰 등 1냥이다.

내국(內局)

細布八疋 二疋上令監, 二疋上掌務, 二疋上藥色, 二疋下藥色,
秩布代錢八兩四錢,
雙鼻鞋次文八兩,
廳直五錢,
入番水工五錢,
軍士十名三錢,

359 운주현 : 영(營)에서 행정 사무를 보던 관아로 함경도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

懸狀次一兩四錢,
童便軍士三錢,
藥色房直五錢,
越門次六錢,
進上畢納後往來水行下一兩,
訓局捧上後到付持來下人行下五錢,
備局公事到付覓來時例給五錢,
藥院公事到付次五錢.

가는 삼베 8필 2필은 상영감, 2필은 상장무관, 2필은 상약색서원, 2필은 하약색서원이다.³⁶⁰,
질포(秩布)의 대전(代錢) 8냥 4전,
쌍비혜(雙鼻鞋) 마련하는 돈 8냥,
청지기 5전,
입변 수공(水工) 5전,
군사(軍士) 10명 3전,
현장(懸狀)하는 비용 1냥 4전,
동변군사(童便軍士) 3전,
약색(藥色)방지기 5전,
월문(越門)하는 비용 6전,
진상을 다 바친 뒤 왕래하는 수공의 행하 1냥,
훈련도감 봉상 뒤 도부를 갖고 오는 하인의 행하 5전,
비변사 공사(公事)의 도부를 찾아올 때의 예급(例給) 5전,
내의원 공사의 도부하는 비용 5전이다.

내국(內局)

進上鹿茸八對 元進上十對內, 辛丑權減二對, 今封爲八對, 而明川二對內, 一對權減, 故只捧續布四

360 하장무관 뜻이 없다.

同，又一對權減者，八邑中輪回去矣。今或二對都減於明川，故續布四同，亦不得推捧云，此則在於周旋之如何耳，

麝香五十八部。

진상 녹용 8대 원래의 진상 10대 안에서 신축년(1841, 현종 7)에 임시로 2대를 줄여서³⁶¹ 지금 봉입이 8대인데, 명천은 2대 안에서 1대를 임시로 줄인 까닭에 단지 속포(續布) 4동만 봉납하였고³⁶² 또 1대를 임시로 줄인 것은 여덟 고을 중에 돌아가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혹 2대를 모두 명천에서 줄이기도 하였으므로 속포 4동조차 추봉(推捧)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주선(周旋)³⁶³ 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사향 58부。³⁶⁴

훈국(訓局)

鹿茸一對代文二百兩，

鹿角二對，

麝香二部，

虎脛骨二對，

羚羊角一對 十邑進上櫃紙繩與鎖子等代錢，則相議捧納是遣，十邑櫃都封次，大櫃具鎖金，及紙繩，亦推尋於營門，以爲上來次。麝香六十六部內，五十八部進上，五部營門封餘。熊膽十一部內，十部營門封餘。熊麝合十五部，各每部二兩式，合三十兩，依前例計納營門次。

녹용 1대를 대신하는 돈 200냥，

녹각 2대，

361 《승정원일기》 현종 7년(1841) 4월 17일 기사에 나온다. 함경도의 녹용 6대를 임시로 줄였다.

본문 함경감영의 '3월령 봉여 2냥(三月令封餘二兩)'과 '7월령 진상 녹용(七月令進上鹿茸)', 남병영의 '장진 1대(長津一對)' 참조.

362 본문 남병영 '본부의 경우 날짜를 해아려 지금한다(本府計日上下)'에 나온다. 명천은 녹용 1대와 봉여 1대를 진상하여 대신하는 속포(續布)로 8동을 바쳤다.

363 주선(周旋) : 일이 잘되도록 변통하는 것이다.

364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를 보면 북병영은 사향 58부를 진상한다.

사향 2부,

호경골 2대,

영양가 1대 열 고을에서 진상하는 궤에 쓰는 종이, 새끼줄과 아울러 자물쇠 등의 대전은 상의하여 봉납하고, 열 고을의 궤를 한꺼번에 봉입하기 위한 자물쇠를 갖춘 큰 궤 및 종이, 새끼줄은 또한 영문(營門)에서 추심하여 올라오는 비용으로 삼는다. 사향 66부 안에서 58부는 진상하고 5부는 영문 봉여이다.³⁶⁵ 웅담 11부 안에서 10부가 영문 봉여이다. 웅담과 사향 합계 15부 각각 부당 2냥씩 합계 30냥은 전례에 따라 영문에 헤아려 납부하기 위한 것이다.

의송(議送)³⁶⁶

云云. 矣身方以北兵營審藥舉行, 而進上鹿茸價並駄價, 以二百二十兩, 已有所定式行會, 則外此京各司所納, 與封餘設置, 宜無異同, 而應封各邑, 或有二百兩備給者, 或有一百兩備給處, 各邑納錢, 多寡不同, 則畢竟狼狽, 勢所必至是委遣, 且北關非用錢之地, 各邑勢將以穀以布間, 運置南關辦錢, 其出穀出布一也, 少益於邑民, 利反於中間是乎所, 當此大更張之日, 如無一定之式, 則莫重貢獻, 難免其生梗是乎等以, 兹敢據實仰訴爲去乎, 伏乞洞燭教是後, 以布者, 依例以布運給, 自前以穀之邑, 則依例以穀運給之意, 特爲行關于各邑, 以爲無弊上納之地云云.

… 저는 바야흐로 북병영 심약이 거행하면서 진상 녹용 값은 태가(駄價)와 합쳐 220냥으로 이미 정식을 삼은 바가 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한즉 이 밖의 경각사(京各司)에 납부하는 것과 봉여도 마땅히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봉입해야 하는 각 고을이 혹은 200냥을 비급(備給)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100냥을 비급하는 경우도 있어 각 고을에서 납부하는 돈의 수량이 같지 않으니 이렇게 되면 필경에 낭패를 볼 것이 형세상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북관(함경도 북부지역)은 돈으로 납부하는 지역이 아니기에 각 고을이 장차 곡물이나 삼베나 간에 남관(南關)으로 옮겨 놓아 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니 곡물을 내나 삼베를 내나 똑같아 고을 백성에게 조금 이익이 되더라도³⁶⁷ 그 이익이 중간보다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개혁하는 때를 만나 만일

365 나머지 3부는 심약의 봉여이다.

366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사가 추가하였다.

367 곡식과 삼베 중 더 싼 것으로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일정한 정식이 없다면 더없이 중요한 공헌(貢獻)³⁶⁸이 생경하게 됨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감히 실상에 의거하여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통촉하신 뒤에, 삼베로 내던 곳은 전례에 따라 삼베로 운급(運給)하고, 이전부터 곡물로 내던 고을은 전례에 따라 곡물로 운급 하라는 뜻으로 특별히 각 고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폐단 없이 상납하도록 해 주소서.……

議送. 題, 封餘·及京各司納之, 從前百兩定式者, 今以元貢之爲二百兩³⁶⁹, 並責二數者, 殊非救弊之本意也. 然以穀以布間給者, 欲以本色推索, 亦或無恆. 故穩城·慶源之報, 有題送者矣. 假令米爲百石, 則百石之中, 計除輸運雜費, 以除民役, 以其餘數, 運于鏡城, 可謂兩便, 依此爲之, 告于兵營, 施以宜當向事.

의송(議送)³⁷⁰. 제사(題辭, 판결문)에 봉여 및 경각사에 납부할 때 이제까지 100냥으로 정식을 삼은 것을 지금 원贡(元貢)을 200냥으로 하고 아울러 두 가지 수량으로 책임을 지우니 폐해를 바로잡자는 본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곡물이나 삼베나 간에 비급하는 것은 본색으로 추색(推索)하려고 하는 것이니 혹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성과 경원의 보고에 제사를 써서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쌀 100섬이라면 100섬 중에 해아려 수운(輸運) 잡비를 제외하여 민역³⁷¹을 덜어주고 그 나머지 수효를 가지고 경성에 운반한다면 둘 다 편리하다고 이를 만하니, 이에 따라 행하되 병영(兵營)에 고하여 마땅히 시행할 일입니다.

368 공헌(貢獻) : 공물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다.

369 兩 : 원본에는 '兩'이 탈락되어 있다.

370 의송(議送) : 백성이 고을 사또에게 소(訴)를 제기했다가 폐소를 당한 뒤에 관찰사에게 상소하는 일을 지칭한다. 상소 과정 중에 해당 고을을 거치면서 덧붙인 내용이다.

371 민역 : 백성이 부담하는 구실이다.

11. 종친부약방(宗親府藥房)³⁷²

庚戌, 因本府堂上草記, 以閑散差出. 今姑減下.

경술년(1850, 현종 1)에 본부 당상의 초기로 인하여 한산(閑散)을 차출하였다. 지금은 임시로 감하하였다.³⁷³

12. 통영 요포(統營料布)³⁷⁴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³⁷⁵

米二石十二斗 小月減八升,
太十二斗 代米四斗八升. 小月減一升六合,
租十斗 代米四斗. 馬直料條. 軍倉.
錢四兩 三兩, 扱立軍代錢. 兵庫.

372 《혜국지》〈식례·분차分差〉를 보면 원래는 두 사람이었다가 건륭 신묘년(1771)에 전교에 의해 하나로 줄였다.

373 《혜국지》〈식례·분차〉를 보면 강희 경신년(1680)에 전의감과 혜민서의 현직 인원으로 임명하는 일로 윤허를 얻었다. 갑신년(1704)에는 전의감과 혜민서의 의원만으로 임명하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본문의 경술년은 1704년 이후의 경신년임을 알 수 있다. 1730년, 1790년, 1850년이 간기로 추산되는 연도이다. 여기서 《혜국지》의 중수(重修) 연도인 1778년을 감안하면 1730년은 제외된다. ‘지금’이란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종 10년(1873) 경 전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를 감안하면 경술년은 1850년으로 추측된다.

374 《육전조례》〈예전·전의감〉을 보면 통영구료관을 ‘통제영심약(統制營審藥)’으로 지칭한다. 경상도 통영에는 수군 통제영이 있었다. 《혜국지》〈연혁沿革·외임外任〉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있다. 제도심약(諸道審藥)과 양도월령(兩都月令) 다음으로 임명되는 임기 1년의 외임 의관 직임이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1월과 7월령이다. 《심약사례》의 시기에는 진상하지 않았다.

37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饌價五錢一分，官廳。
柴一百五十丹代錢五錢，
炭三升價三分，營繕，
魚油三升價六錢，
生魚六束價六錢，真油九合價二錢七分，
片藿一丹半價二錢二分五里三十條爲一丹，
白蝦三升價一錢二分，官廳。
鹽六升價六分，軍倉。
甘醬九升價³⁷⁶一錢八分，
真末九合價一分八里，官廳。
白紙十張價一錢二分五里，紙筒庫。
四等衣資二十四兩，歲饌一兩，兵庫。
木花十斤代一兩，軍倉。
扇子十五柄本色納，工庫。

쌀 2섬 12말 소삭에는 8되를 줄인다.

콩 12말 대신하는 쌀은 4말 8되이다. 소삭에는 1되 6홉을 줄인다.

벼 10말 대신하는 쌀은 4말이다. 말지기의 요조(料條)이다. 군창(軍倉).

돈 4냥 3냥은 고립군(雇立軍)을 대신하는 돈이다. 병고(兵庫).

반찬값 5전 1푼, 관청(官廳).

땔나무 150단의 대전(代錢) 5전,

숯 3되 값 3푼, 영선(營繕).

물고기기름 3되 값 6전,

생어(生魚) 6속 값 6전, 참기름 9홉 값 2전 7푼,

편곽(片藿) 1단 반 값 2전 2푼 5리 30조가 1단이다.

쌀새우 3되 값 1전 2푼, 관청(官廳).

소금 6되 값 6푼, 군창(軍倉).

376 價 : ‘價’가 틸락되었으나 삽입했다.

감장(甘醬) 9되 갚 1전 8푼,
밀가루 9홉 갚 1푼 8리, 관청(官廳).
백지 10장 갚 1전 2푼 5리, 지통고(紙筒庫).
네 분기의 옷감 24냥, 세찬(歲饌) 1냥, 병고(兵庫).
목화 10근을 대신하는 1냥, 군창(軍倉). 부채 15자루 본색으로 들인다. 공고(工庫).

진상(進上)

鹿茸五對代錢三百五十兩 正·七月, 合七百兩. 兵庫,
麝香三十部代錢七十八兩, 添補錢一百兩 七月令詔. 兵庫.
正·七月兩令, 進上茸代錢二百兩式, 納于內局.
七月令, 麝香三十部代錢六十兩 或三十兩, 納于內局, 或以本色責納.
녹용 5대의 대전 350냥 정월과 7월 합계 700냥이다. 병고(兵庫),
사향 30부의 대전 78냥과 첨보전(添補錢) 100냥 7월령뿐이다. 병고(兵庫).
정월과 7월 두 령³⁷⁷의 진상 녹용의 대전 200냥씩 내의원에 바친다.
7월령 사향 30부의 대전 60냥 혹은 30냥을 내의원에 바치거나, 혹은 본색으로 책임지고
납부한다.

膳狀次二兩 正·七月同, 推來于兵庫.

笠帽二事 正·七月同, 工庫柴匠納.

進上櫃具鎖金 正月一坐, 七月二坐. 工庫.

引導二柄, 剪子二柄, 錫項刀二柄 工庫色吏例納, 而審藥各加賀三柄式, 合五柄式, 用於內局.
正·七月進上時.

선장(膳狀)³⁷⁸하는 비용 2냥 정월과 7월이 같다. 은 병고(兵庫)에서 추래(推來)한다.

377 정월과 7월 두 령 : 《내의원식례》 <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통영은 1월과 7월령이 있다.

378 선장(膳狀) : 여러 도(道)에서 보름 전후에 진상하는 월선(月膳)이나 찬선(饌膳)의 이름과 수량을 적어서 승정원(承政院)에 바치었다.

갈모 2별 정월과 7월이 같다 은 공고(工庫)의 시장(柴匠)이 바친다.
자물쇠를 갖춘 진상하는 궤 정월에 1좌, 7월에 2좌이다. 공고(工庫).
인두 3자루, 가위 2자루, 석항도(錫項刀) 2자루 공고색리가 예납(例納)하는데 심약이
각각 3자루씩 더 사서 합계 5자루씩 내의원에서 사용한다. 정월과 7월 진상하는 때이다.

正·七月，進上封裹次，壯紙二張 紙筒庫，

壯油紙二張，大皮紙二張 工庫。

山麻中繩三百把，草席六立 兵船。膳狀一度 正·七月同。

정월과 7월 진상 때 봉과(封裹)하기 위한 장지(壯紙) 2장 지통고(紙筒庫),

장유지(壯油紙) 2장, 대피지(大皮紙) 2장 공고(工庫).

산마로 만든 중간 크기 줄 100다발, 풀방식 6닢 병선(兵船). 선장(膳狀) 한 차례

정월과 7월이 같다.

到任後，大白文席一立代八錢，小白文席一立代五錢 正·七月同。工庫納。

도임 뒤 큰 백문석 1닢을 대신하는 8전, 작은 백문석 1닢을 대신하는 5전 정월과
7월이 같다. 공고(工庫)가 바친다.

내국의 예정(內局例情)

綿紬二疋代八兩，鞋子二部代二兩，

實水工一兩，掌務庫直五錢，假水工三錢，

書員庫直五錢，越門次二錢。合十二兩五錢 正·七月同。

명주 2필을 대신하는 8냥, 짚신 2부를 대신하는 2냥,

실수공 1냥, 장무고지기 5전, 가수공 3전,

서원고지기 5전, 월문하는 비용 2전. 합계 12냥 5전 정월과 7월이 같다.

13. 강화(江華)³⁷⁹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³⁸⁰

官廳. 糯米二石三斗 十月定價, 太九斗, 牟六升, 甘醬一斗代二錢,
艮醬三升代九分, 真油一升代三錢, 法油一升代二錢,
白蝦三升代九分, 民魚一尾代三錢, 石魚二束代三錢,
生鷄二首代六錢, 饋價二兩.

관청(강화부)의 경우 : 찹쌀 2섬 3말 10월에 값을 정한다. 콩 9말, 보리 6되, 감장
(甘醬) 1말을 대신하는 2전,

간장 3되를 대신하는 9푼, 참기름 1되를 대신하는 3전, 들기름 1되를 대신하는
2전,

쌀새우 3되를 대신하는 9푼, 민어 1마리를 대신하는 3전, 조기 2속을 대신하는
3전,

생닭 2마리를 대신하는 6전, 반찬 값 2냥.

工庫. 筆一柄代五分, 墨一丁代五分, 白紙一束代二錢.

공고(工庫)의 경우 : 붓 1자루를 대신하는 5푼, 먹 1정을 대신하는 5푼, 백지
1속을 대신하는 2전.

兵庫. 房柴三十束, 炭三斗 在營時斧.

병고(兵庫)의 경우 : 방시(房柴) 30속, 숯 3말 영(營)에 있을 때뿐이다.

官廳. 燻太一石 前例, 以太一石出給, 傳燈寺僧, 五月, 以燻造一石捧上, 或捧以代錢.

379 《혜국지》〈연혁沿革 · 외임外任〉을 보면 제도심약(諸道審藥) 다음으로 임명되는 외임 의관
직임이다. 강화부와 개성부에 각 한 사람씩으로 강화부는 강도(江都), 개성부는 송도(松都)로
도 불리어서, 이 둘을 양도월령(兩都月令)으로 부른다. 강화월령의는 중간에 혹 혁파되기도
하는데, 건륭 갑술년(1754)에 복구된 이후 유지되었다. 개성부월령은 건륭 경진년(1760)에
혁파된 후 복구되지 않았다. 임기는 1년으로, 진상은 하지 않는다.

380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관청의 경우 : 메주콩 1섬 전례에는 콩 1섬을 출급하여, 전등사(傳燈寺)의 승려가 5월에 메주로 만든 1섬으로 봉상하거나 대전으로 봉납하였다.

14. 진주병영(晉州兵營)³⁸¹

右兵營.

우병영이다.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³⁸²

兵庫. 錢八兩朔代 閏朔無, 饋價六錢六分 閏朔無,
錢一兩五錢肉價, 錢八兩四等衣資, 錢五兩一錢五分柴炭價.

병고의 경우 : 돈 8냥은 삭대(달마다 주는 돈) 윤달에는 없다. 반찬 값 6전 6푼 윤달에는 없다.

돈 1냥 5전의 고기 값, 돈 8냥의 네 분기 옷감 값, 돈 5냥 1전 5푼의 땔나무와 숯 값.

工庫. 錢五分黃筆一柄價, 錢五³⁸³分真玄一丁價.

공고의 경우 : 돈 5푼은 황모필 1자루 값, 돈 5푼은 참먹 1정 값.

紙所. 錢二錢六分白紙一束價.

지소의 경우 : 돈 2전 6푼은 백지 1속 값.

381 경상도 진주에 있던 경상우병영(慶尙右兵營)에서 근무하는 종9품 경상우절도영심약(慶尙右節度營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진상은 하지 않는다.

382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383 五 : 원본에는 '五'가 탈락되어있다.

營庫. 米一石四斗三升 從市價, 太八斗 從市價, 真油一升價二錢五分,
錢二錢法油一升價, 錢一兩五錢燻太一石價,
錢八分鹽一斗價, 錢六錢燻造鹽七斗五升價,
租八斗式 從市價.

영고의 경우 : 쌀 1섬 4말 3되 시장 가격에 따른다. 콩 8말[†] 시장 가격에 따른다. 참기름
1되 값 2전 5푼,
돈 2전은 들기름 1되 값, 돈 1냥 5전은 매주콩 1섬 값,
돈 8푼은 소금 1말 값, 돈 6전은 매주 만드는 소금 7말 5되 값,
벼 8말씩 시장 가격에 따른다.

雇馬庫. 錢八兩五錢, 刷馬半駄價.

고마고의 경우 : 돈 8냥 5전인데, 쇄마는 태가의 절반이다.

15. 을산병영(蔚山兵營)³⁸⁴

左兵營.

좌병영(左兵營)이다.

달마다 받는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³⁸⁵

官廳. 白米一石 從市價, 草米一石代三兩七錢 原定式, 五月劈出,

384 경상도 을산에 있던 경상좌병영(慶尙左兵營)에서 근무하는 종9품 경상좌절도영심약(慶尙左節度營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혜국지》〈연혁·외임外任〉을 보면 좌병영은 원래 진상하지 않았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는 7월령으로 되어있다. 《심약사례》의 시기 에 오면 다시 진상하지 않았다.

38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點心米合四斗五升 從市價, 魚油一升五合代三錢四分五里,
眞油一升五合代二錢, 鹽一斗五升代一錢.

관청(좌병영)의 경우 : 백미 1섬 시장 가격에 따른다. 초미(草米) 1석을 대신하는
3냥 7전 원래 정식은 5월에만 낸다.

점심 쌀 합계 4말 5되 시장 가격에 따른다. 물고기 기름 1되 5홉을 대신하는 3전
4푼 5리,

참기름 1되 5홉을 대신하는 2전, 소금 1말 5되를 대신하는 1전.

山倉. 太六斗作米三斗 從常定, 租十斗五升作米四斗二升 從常定.

산창(山倉)의 경우 : 콩 6말을 쌀로 바꾼 3말 상정가(常定價)를 따른다. 벼 10말 5되
를 쌀로 바꾼 4말 2되 상정가를 따른다.

工房. 小壯紙一束代八錢.

공방(工房)의 경우 : 작은 장지(壯紙) 1속을 대신하는 8전.

紙庫. 黃筆一柄代五分, 真墨一丁代三分.

지고(紙庫)의 경우 : 황모필 1자루를 대신하는 5푼, 참먹 1정을 대신하는 3푼.

藥庫. 煙太一石五斗 從常定, 鹽一石八升 從常定.

약고(藥庫)의 경우 : 매주콩 1섬 5말 상정가를 따른다. 소금 1섬 8되 상정가를 따른다.

營繕. 燒木九十束代九錢, 炭三斗六分,

藁草七疋半代二錢二分五里.

영선고(營繕庫)의 경우 : 떨나무 90속을 대신하는 9전, 숯 3말 6푼,
벗짚 7자래 반을 대신하는 2전 2푼 5리.

兵庫. 錢八兩給代, 麝香代八十兩 內二十兩, 內局納.

병고의 경우 : 돈 8냥은 급대전, 사향 갑 80냥 그 안에서 20냥은 내국에 바친다.

雇馬庫. 駄價十三兩.

고마고의 경우 : 태가 13냥.

16. 청주병영(淸州兵營)³⁸⁶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布帙)³⁸⁷

戶庫, 白米一石九斗 白米, 自十月至九月執錢, 雜米, 自正月至十二月執錢,
朔布錢十八兩.

호고(戶庫)의 경우 : 백미 1석 9말 백미는 10월부터 9월까지 집전(執錢)³⁸⁸하고, 잡미는 정월부터 12월까지 집전한다.
삭포전(朔布錢) 18냥.

解懸庫, 真油二升四合, 法油二升四合, 赤豆一斗五升. 從市價.

해현고(解懸庫)의 경우 : 참기름 2되 4흡, 들기름 2되 4흡, 팥 1말 5되 시장 가격에 따른다.

禮庫, 石魚三束代三錢三分, 鹽一斗二升代³⁸⁹二錢四分.

예고(禮庫)의 경우 : 조기 3속을 대신하는 3전 3푼, 소금 1말 2되를 대신하는 2전 4푼.

肉庫, 黃肉十五斤代一兩五錢.

육고(肉庫)의 경우 : 소고기 15근을 대신하는 1냥 5전.

工庫, 白紙一束代一錢六分 癸丑下記云, 一錢三分式, 合一兩九錢二分,
黃筆一柄代七分, 白筆一柄代三分, 真墨一丁代五分,
南草二斤代三錢二分 癸丑下記云, 二錢四分式, 合三兩八錢四分.

공고(工庫)의 경우 : 백지 1속을 대신하는 1전 6푼 제축년(1852, 철종 3)의 하기(下記)

386 충청도 청주에 있던 충청병영(忠淸兵營)에서 근무하는 종9품 충청절도영십약(忠淸節度營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진상은 하지 않는다.

387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사가 추가하였다.

388 집전(執錢) : 집전(執錢)은 돈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389 代 : 원본에는 '代'가 탈락되었다.

에는 ‘1전 3푼씩이다.’라고 하였다 으로 합계 1냥 9전 2푼.³⁹⁰

황모필 1자루를 대신하는 7푼, 백필 1자루를 대신하는 3푼, 참먹 1정을 대신하는 5푼,

담배 2근을 대신하는 3전 2푼 계축년(1852)의 하기(下記)에는 ‘2전 4푼씩이다.’라고 하였다 으로 합계 3냥 8전 4푼.³⁹¹

營繕, 柴三十五束 二丹爲一束. 柴一束代雜米三升, 合四百二十束代米八石六斗,

炭十二斗 每斗代雜米一升三合四夕. 每石代米一斗. 合九石九斗, 代米一石四斗二升,

小炬十柄 每十柄代雜米七升五合. 一百二十柄代米九斗.

영선고(營繕庫)의 경우 : 땔나무 35속 2단이 1속이다.³⁹² 땔나무 1속을 대신하는 잡미(雜米)는 3되로, 합계 420속을 대신하는 쌀은 8섬 6말이다.

숯 12말 말당 대신하는 잡미 1되 3흡 4작씩이다. 섬당 대신하는 쌀은 2말이다. 합계 9섬 9말로, 대신하는 쌀은 1섬 4말 2되이다.

작은 화 10자루 10자루마다 대신하는 잡미는 7되 5흡이다. 120자루를 대신하는 쌀은 9말 이다.

雇馬庫. 遷歸時, 刷馬價七兩 補供色吏納.

고마고의 경우 : 체귀 때 쇄마 값 7냥 보공색리가 바친다.

390 1냥 9전 2푼은 열두 달의 합이다.

391 3냥 8전 4푼은 열두 달의 합이다.

392 본문 함경감영(咸鏡監營) ‘도무사(都務司)’를 보면 3단이 1속으로 되어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17. 전라병영(全羅兵營)³⁹³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³⁹⁴

官廳. 米一石六斗, 租十斗五升, 太十斗五升 從市價,
眞末一升八合 從市價, 醬二斗四升代四錢九分六里,
鹽九升代九分, 甘藿三束代六錢.

관청(전라병영)의 경우 : 쌀 1석 6말, 벼 10말 5되, 콩 10말 5되 시장 가격에 따른다.

밀가루 1되 8홉 시장 가격에 따른다. 간장 2말 4되를 대신하는 4전 9푼 6리,
소금 9되를 대신하는 9푼, 미역 3속을 대신하는 6전.

補軍庫. 眞油一升八合 從市價,
眞荏一升八合 從市價,
法油一升二合 從市價.

보군고(補軍庫)의 경우 : 참기름 1되 8홉 시장 가격에 따른다.

참깨 1되 8홉 시장 가격에 따른다.

들기름 1되 2홉 시장 가격에 따른다.

嚮土庫. 石魚三束代三錢.

향사고(嚮土庫)의 경우 : 조기 3속을 대신하는 3전.

紙庫. 白紙一束代一錢九分.

지고(紙庫)의 경우 : 백지 1속을 대신하는 1전 9푼.

工庫. 黃筆一柄代五分, 眞玄一丁代五分.

공고(工庫)의 경우 : 황모필 1자루를 대신하는 5푼, 참먹 1정을 대신하는 5푼.

393 전라도 강진에 있던 전라병영(全羅兵營)에서 근무하는 종9품 전라절도영심약(全羅節度營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진상은 하지 않는다.

394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兵庫. 錢八兩, 四節衣資每節四兩式.

병고(兵庫)의 경우 : 돈 8냥, 네 계절 옷감으로 계절마다 4냥씩.

營繕. 柴九十束代一兩八錢, 燒木三十束代一兩二錢,

炭六斗代一錢六分, 草一百二十束 每束一分式, 一日四束式, 霜降後端午前出.

영선고(營繕庫)의 경우 : 떨나무 90속을 대신하는 1냥 8전, 떨나무 30속을 대신하는 1냥 2전,

숯 6말을 대신하는 1전 6푼, 풀 120속 속당 1푼씩으로, 하루 4속씩 상강 뒤부터 단오 전까지 낸다.

18. 황주병영(黃州兵營)³⁹⁵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³⁹⁶

禮房. 大米七斗八升五合四夕八毫代二兩三錢五分六里,

田米一石五升代三兩六錢一分五里,

太一石二斗九升二夕代一兩二錢五分八里,

眞油二升代四錢, 法油一升代一錢五分,

生鷄三首代六錢, 眞末一升 從市價,

395 황해도 황주에 있던 황해병영(黃海兵營)에서 근무하는 종9품 황해절도영심약(黃海節度營審藥)에 관련된 내용이다. 황해도 병영은 처음에 해주에 있었으나, 1601년에 황주로 이전되었다. 《혜국지》〈연혁·외임外任〉을 보면 과거에는 진상했으나, 당시에는 하지 않고, 군영 구료만 하는 것으로 나온다. 《경국대전》〈이전吏典·외관직外官職〉을 보면 황해병영의 심약은 따로 없었다. 《대전통편》〈이전吏典·외관직〉에 황해절도영심약이 1원이 증원된 내용이 보인다. 황해도 해주에는 감영이 있고 감영에는 심약이 파견되어 있던 까닭으로, 병영에 따로 심약을 파견하지 않았으나, 이후 황주로 이전되면서 병영에도 심약이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를 보면 진상은 하지 않는다.

396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石魚三束代六錢, 白蝦三升代一錢八分,

甘醬一升代二錢, 蘇魚三級代九分,

鹽三升代三分九里.

예방(禮房)의 경우 : 쌀 7말 8되 5홉 4작 8호를 대신하는 2냥 3전 5푼 6리,

밭벼쌀 1섬 5되를 대신하는 3냥 6전 1푼 5리,

콩 1섬 2말 9되 2작을 대신하는 1냥 2전 5푼 8리,

참기름 2되를 대신하는 4전, 들기름 1되를 대신하는 1전 5푼,

생닭 3마리를 대신하는 6전, 밀가루 1되 시장 가격에 따른다.

조기 3속을 대신하는 6전, 쌀새우 3되를 대신하는 1전 8푼,

감장(甘醬) 1되를 대신하는 2전, 배댕이 3두름을 대신하는 9푼,

소금 3되를 대신하는 3푼 9리.

內外工房. 白紙一束代二錢, 黃筆一柄代四分,

眞玄一丁代四分,

내외공방(內外工房)의 경우 : 백지 1속을 대신하는 2전, 황모필 1자루를 대신하는 4푼,

참먹 1정을 대신하는 4푼.

營繕. 柴一百五十束代九兩,

草四十束代三兩二錢,

小木三十束代二兩七錢, 矩子六柄代五錢七分,

炭四斗七升五合代三錢, 青草三十束代一兩二錢 合十四兩四錢.

영선고(營繕庫)의 경우 : 맬나무 150속을 대신하는 9냥,

풀 40속을 대신하는 3냥 2전,

소목 30속을 대신하는 2냥 7전, 화 6자루를 대신하는 5전 7푼,

숯 4말 7되 5홉을 대신하는 3전, 푸른 풀 30속을 대신하는 1냥 2전 합계 14냥 4전이다.

助糧庫. 朔錢六兩, 遷歸馬九兩,

藥漢錢八十二兩, 木花十五斤 本色, 或從市直.

조량고의 경우 : 삭전(달마다 주는 돈) 6냥, 체귀마 9냥,
약한전(藥漢錢) 82냥, 목화 15근 본색으로 하거나 시장 가격에 따른다.

19. 의정부약방(議政府藥房)³⁹⁷

十月受料.

10월에 요(料)를 받는다.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³⁹⁸

春等條一百三十七兩六錢六分內 莓一兩重價八十兩. 剩條二十六兩六錢六分³⁹⁹, 他種價三十一兩.

醍醐湯私劑清價十兩 今則無, 其代衣資條, 夏等五兩.

春等清價二十兩, 秋等剩條二十六兩六錢六分.

秋等蓼八錢重價七十二兩.

秋等清價十三兩. 煎藥私劑清價十兩 今則無, 其代冬等衣資, 五兩.

봄 분기 항목 137냥 6전 6푼 안에서 인삼 1냥쯤 값 80냥, 잉조(剩條) 26냥 6전 6푼,
기타 종류의 값 31냥이다.

제호탕⁴⁰⁰을 사제(私劑)⁴⁰¹할 때의 꿀 값 10냥 지금은 없어졌고, 그 대신에 옷감 항목으

397 《혜국지》〈식례式例·분차分差〉를 보면 두 사람이다. 양도목(兩都目) 때 교체하는 체아직 의관 직임이다. 《실록》 세종 12년(1430) 8월 10일 기사를 보면 의정부약방은 이 시기 전에 설치되었다.

398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399 分 : 원본에는 ‘卜’으로 되어있지만 ‘分’으로 수정했다.

400 제호탕 : 《내의원식례》〈연례진상〉을 보면 해마다 5월 5일에 내의원에서 진상한다.

401 《실록》 세종 22년(1440) 11월 22일 기사에 도성의 전의감, 혜민국(혜민서의 전신), 의정부,

로 여름 분기에 5냥이다.

봄 분기의 꿀 값 20냥, 가을 분기의 잉조 26냥 6전 6푼.

가을 분기의 인삼 8돈쯤 값 72냥.

가을 분기의 꿀 값 13냥, 전약(煎藥)⁴⁰²을 사제 할 때의 꿀 값 10냥 지금은 없어졌고, 그 대신에 겨울 분기의 옷감 값으로 5냥이다.

炭價三兩, 十二朔驅價三十六兩.

六朔祿米七十二斗, 六朔料米五十四斗,

間朔六朔米三十六斗 作石十石十二斗.

六朔祿太三十斗,

六朔料太十八斗 作石三石三斗.

十二朔壯紙代十四兩四錢 輪差. 今無.

每年正月米五石內 三石久任內. 半石價一兩五錢. 二石輪差.

숯값은 3냥, 열두 달 구가(驅價)⁴⁰³ 36냥.

여섯 달 녹미(祿米, 녹으로 받는 쌀) 72말, 여섯 달 요미(料米) 54말.

한 달씩 걸려 여섯 달 쌀 36말 섶으로 하면 10섬 12말이다.⁴⁰⁴

여섯 달 녹태(祿太, 녹으로 받는 콩) 30말,

여섯 달 요태(料太) 18말 섶으로 하면 3섬 3말이다.

열두 달 장지(壯紙)를 대신하여 14냥 4전 돌아가면서 차임(差任)한다. 지금은 없다.

해마다 정월에 받는 쌀 5섬 안에서 3섬은 구입 안에서이다. 반 섶 값은 1냥 5전이다.

2섬은 교대로 차임한다.

육조(六曹)와 외방 감사(監司) 외에는 사제(私劑)를 금하였다. 의사(醫司)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면 그 성분과 함량을 믿을 수 없기에 행한 조치였다. 여러 관청에서는 만들어진 환약 등은 갖추어 두었다가, 민간에 팔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제(私劑)라 한다. 즉 사제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경우 뿐 아니라, 관청에서 만들어졌어도 본래의 목적인 왕실과 관인(官人)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지칭된다.

402 전약(煎藥) : 《내의원식례》〈연례진상〉을 보면 해마다 동짓날에 내의원에서 진상한다.

403 구가(驅價) : 벼슬아치가 사사로 부리는 하인에게 봉록 외에 더 주던 돈이나 물품이다.

404 1섬은 15말이다. 앞부분의 합계가 162말이므로 10섬 12말이 된다.

篩子一介 正月出,
春柴六同,
秋柴六同,
益元散代文六錢 今無,
唐米·太, 合代八錢,
歲饌錢八兩,
陳艾十級內 大五, 小五.

체 1개 정월에 낸다.

봄 땔나무 6동,

가을 땔나무 6동, 익원산⁴⁰⁵을 대신하는 돈 6전 지금은 없다.

수수쌀과 콩을 합하여 대신하는 8전,

세찬전 8냥,

묵은 쑥 10두름 안에서 큰 것 5두름, 작은 것 5두름이다.

20. 예조약방(禮曹藥房)⁴⁰⁶

四月十六日, 受祿.

4월 16일에 녹(祿)을 받는다.

405 익원산 : 《내의원식례》〈연례제조〉를 보면 해마다 5월에 내의원에서 제조하였다.

406 《혜국지》〈식례式例·분차分差〉를 보면 한 사람이다. 《실록》 세종 12년(1430) 8월 10일 기사. 예조약방이 처음 설치되었다. 과거에는 육조(六曹)에 모두 약방이 있었으나 모두 없애고 예조에만 남겨두었다. 《실록》 세종 19년(1437) 5월 27일 기사를 보면 육조약방(六曹藥房)이 언급된다. 1430년에서 1437년 사이에 예조 이외의 육조에도 약방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조약방만이 남은 이후에 예조약방을 육조의원(六曹醫員)으로 부르는 예가 규장각 소장의 《(예조)포폄등록》 중 순조 조에서 고종 조 사이 기록에 보인다. 다른 육조약방이 혁파된 이후에 예조약방의 업무가 단순히 예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육조약방의 업무까지 겸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목(兩都目) 때 교체하는 체아직 의관 직임이다.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⁴⁰⁷

每朔 祿米十二斗 太五斗 太倉推來.

麥價錢三兩六錢 醫監·麥契·貢房出.

壯紙四張半,

白紙一束 禮曹貢房出. 壯紙代錢, 每張五分, 中紙則每張四分, 白紙代錢每束二錢.

매달 : 녹(祿)으로 쌀 12말, 콩 5말 태창(太倉)에서 추래(推來)한다.

인삼값 대전 3냥 6전 전의감, 삼계(麥契), 공방(貢房)이 낸다.

장지(壯紙) 4장 반,

백지 1속 예조공방(禮曹貢房)이 낸다. 장지의 대전(代錢)은 장당 5푼씩이고, 중지(中紙)는 장당 4푼씩이고, 백지의 대전은 속당 2전씩이다.

正朝紅綿紬⁴⁰⁸一幅, 端午冬至真紅綿紬二幅,

方物封裹後真紅綿紬一尺 禮曹庫直處出.

설날의 붉은 비단 1폭, 단오와 동짓날의 진홍색 비단 2폭,

방물을 봉과(封裹)한 뒤에 진홍색 비단 1척 예조고지기 쪽에서 낸다.

正月 江原米十二斗一升三合九夕 禮曹貢房出,

木半疋 錢一兩 禮曹奇別軍士持來. 十二月.⁴⁰⁹

정월 : 강원미⁴¹⁰ 13말 1되 3홉 9작 예조공방(禮曹貢房)이 낸다.

무명 반 필, 돈 1냥 예조기별군사(禮曹奇別軍士)가 가지고 온다. 12월이다.

二月 湖南米一石二合五夕, 錢一兩四錢,

木半疋 木七疋 禮曹貢房出.

2월 : 호남미 1섬 2홉 5작, 돈 1냥 4전,

407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408 綿紬 : 원본에는 ‘綿細’로 되어있으나 오기이다.

409 원본에는 이 뒤에 ‘十二月’이 삽입되어 있는데 오류이다.

410 강원미 : 지역명으로 해당 도에서 난 쌀이다. 이후도 동일하다.

무명 반 필, 무명 7필 예조공방이 낸다.

三月. 江原布一疋半 禮曹貢房出.

3월 : 강원포(江原布) 1필 반 예조공방이 낸다.

四月. 木半疋, 錢一兩 禮曹奇別軍士持來, 木三分二 禮曹庫直處出.

4월 : 무명 반 필, 돈 1냥 예조기별군사가 가지고 온다. 무명 3분의 2필 예조고지기 자리에서 낸다.

五月. 江原米六斗五升四合, 田米六斗九升四合 禮曹貢房出,

米十斗, 木三分二 禮曹庫直處出.

5월 : 강원미 6말 5되 4흡, 밭벼쌀 6말 9되 4흡 예조공방이 낸다.

쌀 10말, 무명 3분의 2필 예조고지기 쪽에서 낸다.

六月. 湖南米一石二合五夕, 錢一兩四錢, 木半疋,

木七疋 禮曹貢房出, 江原布代米半石 禮曹貢房出.

6월 : 호남미 1섬 2흡 5작, 돈 1냥 4전, 무명 반 필,

무명 7필 예조공방이 낸다.⁴¹¹ 강원포를 대신하는 쌀 반 섬 예조공방이 낸다.

七月. 四升布二十二尺, 或木二十二尺 禮曹庫直處出,

木半疋, 錢一兩 禮曹奇別軍士持來.

7월 : 낙새베 22척, 혹은 무명 22척 예조고지기 쪽에서 낸다.

무명 반 필, 돈 1냥 예조의 기별군사가 가지고 온다.

九月. 米十斗,

木三分二 禮曹庫直處出.

9월 : 쌀 10말,

무명 3분의 2필 예조고지기 쪽에서 낸다.

十月. 湖南米一石二合五夕, 錢一兩四錢, 木半疋,

411 2월과 동일하다.

木七尺 禮曹貢房出,
布十八尺 禮曹庫直處出,
木半疋, 錢一兩 禮曹奇別軍土持來.

10월 : 호남미 1섬 2홉 5작, 돈 1냥 4전, 무명 반 필,
무명 7필 예조공방이 낸다.
삼베 18척 예조고지기 쪽에서 낸다.
무명 반 필, 돈 1냥 예조의 기별군사가 가지고 온다.

十一月. 米十斗, 木三分二 禮曹庫直處出.

11월 : 쌀 10말, 무명 3분의 2필 예조고지기 쪽에서 낸다.

十二月. 戶長錢五兩, 年從錢三錢六分 禮曹房直⁴¹²出, 而庫直處推尋,
牡丹皮價三兩六錢 醫監·都庫·藥局出.

12월 : 호장전(戶長錢) 5냥, 연종전(年從錢) 3전 6푼 예조방지기가 내는데, 고지기
쪽에서 추심한다.

목단피 값 3냥 6전 전의감과 도고(都庫), 약국(藥局)이 낸다.

行下 三堂上宅下人處, 各一兩五錢式. 禮曹房直處告事次三兩, 教旨持來下人五錢.

행하(行下) 세 당상관 댁 하인에게 각 1냥 5전씩이다. 예조방지기에게 고사(告事)하기 위한
비용 3냥, 교지를 가지고 오는 하인에게 5전이다.

21. 충훈부약방(忠勳府藥房)⁴¹³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⁴¹⁴

412 房直 : 원본에는 ‘直房’으로 되어있다.

413 《혜국지》〈식례·분차分差〉를 보면 한 사람이다. 양도목(兩都目) 때 교체하는 체아직 의관
직임이다.

每朔祿米十二斗，太五斗 廣興倉，錢四兩 每朔二十八日，前期來納。

달마다 녹으로 받는 쌀 12말, 콩 5말 광흥창, 돈 4냥 달마다 28일인데, 기한에 앞서 와서 납부한다.

三月. 煙太十斗.

3월 : 메주콩 10말.

五月. 醍醐湯一器.

5월 : 제호탕 1그릇.

十月. 菁根一太，黃清一升，柴一駄 十五同式，或代錢五分。

10월 : 무 1짐, 황청 1되, 떨나무 1짐 15동씩, 혹은 대전(代錢) 5푼으로 한다.

十一月. 煎藥一器，中曆二件，真荳子一斗，
去核一斤，正租十一石十五斗作石。

11월 : 전약 1그릇, 중력(中曆)⁴¹⁵ 2건, 참깨 1말,
씨를 뺀 솜 1근, 벼 1섬 15말로 섬을 만든다.

十二月. 正租一石 代錢從時價，歲饌錢二兩。

12월 : 벼 1섬 대전은 시장 가격을 따른다. 세찬전 2냥.

行下 投刺時，堂上宅下人等，行下二兩，都事宅下人等，行下一兩，大匠直留司使令等，行下一兩五錢。
歲時勳府軍士，行下五錢，米官斗一斗。歲饌錢，持來時行下。

행하 투자(投刺)⁴¹⁶ 때에 당상관 맥 하인 등의 행하는 2냥, 도사(都事) 맥 하인 등의 행하는 1냥,
대장(大匠)지기, 유사사령(留司使令) 등의 행하는 1냥 5전이다. 설날에 충훈부군사의 행하는 5전,
쌀은 관말로 1말이다. 세찬전은 지래 때의 행하이다.

414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415 중력(中曆) : 겉장을 꾸미지 않은 책력이다.

416 투자(投刺) : 윗사람을 처음 볼 때에 미리 명함을 드리는 것이다.

22. 내국월령 두 자리(內局月令二窠)⁴¹⁷

合四窠內, 二窠醫監.

합계 네 자리⁴¹⁸ 안에서 두 자리가 전의감 뜻이다.

달마다 받는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帙)⁴¹⁹

每朔祿米五斗, 小米一斗,

麝香二部, 錢文二百兩 四十八朔後, 臘藥時出,

牛黃一部.

달마다 녹으로 받는 쌀 5말, 좁쌀 1말,

사향 2부, 돈 200냥 48개월 뒤, 납약 때에 낸다.

우황 1부.

23. 형조월령 한 자리(刑曹月令一窠)⁴²⁰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⁴²¹

每朔錢四兩.

417 《혜국지》〈식례·분차分差〉를 보면 두 사람이다. 내의원에서 약을 제조하는 일을 관장한다. 양도목 때 교체하는 체아직 의관 직임이다.

418 네 자리는 형조월령과 사현부월령까지 포함한 말이다. 두 자리가 전의감 뜻이라면 나머지는 혜민서 뜻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본 문헌이 전의감에서 생성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내용이다.

419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420 《혜국지》〈식례·분차分差〉를 보면 한 사람이다. 죄수의 구료를 관장한다. 양도목 때 교체하는 체아직 의관 직임이다.

421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달마다 4냥씩.

24. 사헌부월령 한 자리(司憲府月令一窠)⁴²²

달마다 받는 료(每朔料)⁴²³

朔錢二兩二錢式 二錢例下.

삭전 2냥 2전씩 2전은 예하이다.

25. 제주(濟州)⁴²⁴

翌年七月受料.

이듬해 7월에 요를 받는다.

사창 등의 예납(司倉等例納)⁴²⁵

422 《혜국지》〈식례·분차〉를 보면 한 사람이다. 대각(臺閣,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병든 사람의 간호와 약을 제조하는 일을 관장한다. 양도목(兩都目) 때 교체하는 체아직 의관 직임이다.

423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424 전라도 제주목에 파견되었던 종9품 제주심약(濟州審藥)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심약들의 임기가 14개월인데 반해 제주심약만 2년이다. 《혜국지》〈연혁·외임外任〉을 보면 강희 기축년(1709)에 순무어사 이해조(李海朝)가 서계하여 임기를 2년으로 고쳤다. 《내의원식례》〈경외공약재京外貢藥材〉에는 8월과 10월령이고, 《혜국지》〈연혁·외임〉에서는 8월 및 세초(歲抄, 6월과 12월)의 소령이다.

42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還米三石二斗一升五合 司倉. 從市直,

白米九斗,

平米一石 從市直. 平役庫,

眞油一升五合 三錢式. 戶庫,

鹽五升代六分五里 元禮庫⁴²⁶,

燒木十八丹 每丹一錢二分⁴²⁷ 式,

炭二斗 二十斗爲一石代一兩,

青草十巨里 每巨里一錢二分式. 營繕庫.

白紙一束代三錢,

又四束 到任時, 例納. 工庫.

稅米七斗五升 秋等例納. 以上營門朔例.

환미 3섬 2말 1되 5흡 사창. 시장 가격에 따른다.

백미 9말,

평미(평역미) 1섬 시장 가격에 따른다. 평역고(平役庫)⁴²⁸.

참기름 1되 5흡 3전씩이다. 호고(戶庫),

소금 5되를 대신하는 6푼 5리 원례고(元禮庫)⁴²⁹.

땔나무 18단 단당 1전 2푼씩이다.

숯 2말 20말이 1섬인데 돈으로 1냥이다.

푸른 풀 10걸이 걸이마다 1전 2푼씩이다. 영선고(營繕庫).

백지 1속을 대신하는 3전,

또 4속 도임 때의 예납(例納)이다. 공고(工庫).

426 元禮庫 : 원본에는 ‘元禮庫’로 되어있다.

427 分 : 원본에는 ‘分’이 탈락되어있다.

428 평역고(平役庫) : 《제주읍지濟州邑誌》. 영조 14년(1738)에 평역고가 설치되었는데 그 목적은 각종 군관(軍官)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점차 군역보다는 관속과 관노비에 대한 급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429 원례고(元禮庫) : 《탐라영사례耽羅營事例》. 현물과 전문(錢文)을 수봉했던 기관이 원례고와 호고이다.

세미(稅米)⁴³⁰ 7말 5되 가을 분기의 예납이다. 이상은 영문(營門)의 삭례(朔例)이다.

본부(本府)

白米一斗,

小米二斗 從市直,

燈油三升 每升一錢八分, 牧戶庫.

生鷄十首 每首一錢二分. 已上本府朔例. 牧支禮庫.

莞骨席一立 七錢五分,

方席一立 一錢一分,

地衣八立 每立八分式. 到任時一次. 牧修工庫. 五月端午日九月九日, 每一次式例納.

白紙四束,

壯紙三張 每張三分式. 到任時一次, 又秋等一次. 牧工庫.

백미 1말,

좁쌀 2말 시장 가격에 따른다.

등유 3되 되당 1전 8푼씩이다. 목호고(牧戶庫).

생닭 10마리 마리당 1전 2푼씩이다. 이상은 본부의 삭례이다. 목지례고(牧支禮庫).

완골석 1닢 7전 5푼이다.

방석 1닢 1전 1푼이다.

지의 8닢 높당 8푼씩이다. 도임 때 한 차례이다. 목수공고(牧修工庫). 5월 단오일, 9월 9일에

매번 한 차례씩 예납한다.

백지 4속,

장지(壯紙) 3장 장당 3푼씩이다. 도임 때 한 차례, 또 가을 분기에 한 차례이다. 목공고(牧工庫).

체임시(遞任時)

篩本二竹四錢,

430 세미(稅米) : 조세로 바치는 쌀이다.

木梳二竹二錢,

毛索一巨里,

北頭一巨里 營庫房色吏.

馬鐵三部代 正鐵三斤, 炭九斗納, 正鐵三斤代九錢.

刀子五柄,

鎌子一柄 營工庫子.

卜鞍一部代 平米一斗, 從市直.

赴任越海時, 海糧米一石, 都會·官邑出.

遞歸時, 候風次料布, 依元一朔料布同內 平米一石, 牧平役庫出.

閏朔則依元一朔料布同內 平米一石, 牧平役庫出.

馬於赤一隻代四錢.

皮卯五箇 或馬皮一張, 又代文四錢.

쳇바퀴 2죽 값 4전,

나무빗 2죽 값 2전,

모삭(毛索) 1걸이, 복두⁴³¹ 1걸이 영고방색리.

견마철 3부를 대신하는 것 정철(正鐵) 3근과 숯 9말을 들이는데, 정철 3근을 대신하여 9전이다.

칼 5자루,

낫 1자루 영공고지기.

짐말 안장 1부를 대신하는 것 평미 1말인데, 시장 가격을 따른다.

부임하여 바다를 건널 때 해량미⁴³² 1섬은 도회소와 관읍⁴³³에서 낸다.

체귀 때, 후풍⁴³⁴하면서 지불받는 요포는 원래의 한 달 요포에 의거한 동수(同數) 내에서이다 평미 1섬을 목평역고(牧平役庫)에서 낸다.

431 복두 : 마소의 등에 실은 짐을 배와 한데 묶는데 쓰는 줄이다.

432 해량미 : 뱃길에서 먹을 쌀이다.

433 관읍 : 관청이 소재한 읍이다.

434 후풍 : 배 떠날 무렵 순풍을 기다리는 일을 뜻한다.

윤달에는 원래의 한 달 요포에 의거한 동수(同數) 내에서이다 평미 1섬을 목평역고에서 낸다.

말보자기 하나를 대신하는 4전.

피묘⁴³⁵ 5개 혹은 말가죽 1장이나 대신하는 돈 4전이다.

435 피묘 : 가죽으로 만든 술 담는 그릇이다.

산실청총규(產室廳總規)

乙亥釐正

을해년(1875)에 정리한 것이다

산실청법례(產室廳凡例)

一. 產室官落點後, 凡草記, 皆以產室醫官以都提調提調意云云事.

하나. 산실청 담당 관원이 낙점된 이후에 간단한 보고서인 초기(草記)는 모두 '산실청 의관에 대하여 도제조(都提調) 또는 제조(提調)의 의견이 어떠어떠하다'라는 형식으로 써서 올린다.

一. 提調直宿, 若不在排設日, 而待下教之命, 則仍請醫官直宿, 醫官亦姑爲本院輪直之命, 則無逐日問安, 而只間三日問安, 依前爲之事. 凡問安, 提調口傳, 醫官詣差備單子, 醫女請色掌內人爲之.

하나. 제조의 직숙(直宿)이 만약 산실청을 배설(排設)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대로 의관의 직숙(直宿)을 청한다. 의관도 역시 잠시 내의원에서 윤직(輪直)하라는 어명을 수행할 때는 날마다 문안(問安)하지 않고, 이전에 행했던 사례처럼 단지 3일 간격으로 문안한다. 모든 문안 대해서는 제조는 구두로 문안하고 의관은 차비문(差備門)에 나아가 단자(單子)를 올리며 의녀는 색장나인(色掌內人)에게 청하여 행한다.

一，中宮殿產室時，症候與湯劑議定，措辭於元啓辭中，而世子嬪宮，則元啓辭中，不得問候措辭，而別爲口啓，移直時，值本院日次問安，則入直提調來參而兼行，移設所當宮問安，不得爲之事。雖解娩後並直時，移設所不得問安，而本院元問安兼行。○若值他殿宮症候問安時，則以此時，產室廳提調，不可專在直所，畫則往來藥房之意措辭草記。

하나. 중궁전 산실청의 경우, 증세나 탕제에 대해 의논하여 확정한 내용을 계사(啓辭) 원본에 기술한다. 그러나 세자빈궁의 경우는 계사 원본에 문후(問候)에 대한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두로 아뢴다. 이직(移直)¹할 때 5일마다 올리도록 규정된 내의원의 일차문안(日次問安)을 만나면 입직(入直)한 제조가 와서 참석하여 함께 행하고, 이설소(移設所)²에서의 당궁문안(當宮問安)³은 할 수 없다. 비록 분만한 뒤에 병직(並直)⁴할 때라도 이설소에서는 문안할 수 없고, 내의원에서 거행하는 원래 문안과 함께 거행한다. ○만약 다른 전궁(殿宮)에 대해 증후 문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이러한 때에는 산실청 제조가 직속하는 곳에만 전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 낮에는 약방에 왕래하겠다.’고 글을 꾸며 초기를 작성한다.

一. 世子嬪宮產室時，凡草記啓目書啓稟事，世子宮亦皆入之，而若事係承批發落者，則待大朝批下後，申達事。啓曰則達曰，啓目則申目，啓達則申達，凡達辭不書世子，只嬪宮云云。

하나.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 모든 초기(草記)와 계목(啓目)과 서계(書啓)로 아뢰는 일은 세자궁에도 동시에 써서 올리지만, 만약 성상의 비답(批答)을 받아 결정해야 할 사안이면 대조(大朝)의 비답이 내려진 뒤에 세자궁에 신달한다. 세자궁에 들일 문서를 작성할 때는 ‘계월(啓曰)’은 ‘달월(達曰)’로,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으로, ‘계달(啓達)’은 ‘신달(申達)’로 고쳐 쓴다. 세자궁에 올리는 모든 문서에는 ‘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지 ‘빈궁’이라고 쓴다.

1 이직(移直) : 장소를 옮겨 직속한다는 뜻으로, 내의원이 아니라 차비문 근처에서 입직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설소(移設所) : 내의원의 숙직 장소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임시로 마련한 숙직 장소이다.

3 당궁문안(當宮問安) : 해당 궁에 직접 나아가 문후를 여쭙는 것을 말한다.

4 병직(並直) : 내의원 도제조와 제조가 모두 함께 숙직하는 것.

一. 直宿時，舉動，則提調一員留院事稟定，而醫官書啓，傳于隨駕所，入啓事。輪直及並直時，毋論京內京外舉動，依例入稟，而或有轎前承候時稟之，或有輿前承候時，以直宿時提調一員留直所，故臣留院之意，仰達。

하나. 직숙할 때 성상께서 거동(舉動)하시면 제조 1원을 내의원에 남기겠다고 품정(稟定)하고, 의관의 서계(書啓)는 어가(御駕)가 계신 곳에 전하여 입계한다. 윤직(輪直) 혹은 병직(並直)할 때는 성상께서 도성 안에서 거동하시든 밖에서 거동하시든 막론하고 규례에 따라 아뢰되, 어가 앞에서 문후를 여쭐 때 아뢰게 되거나 수레 앞에서 문후를 여쭙게 되면 ‘직숙 때문에 제조 1원이 직소(直所)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신이 내의원에 남겠습니다.’라고 아뢴다.

〔頭註〕 戊午直宿時，永禧殿舉動前日，副提調以司謁，明日動駕時，提調一員，當留直所矣，何提調留院事入稟，而提調留院事下教。

〔두주〕 무오년(철종9, 1858) 직숙(直宿)할 때에 성상께서 영희전(永禧殿)에 거동하시기 전날 부제조가 사yal(司謁)을 통해 ‘내일 거동하실 때 제조 1원을 직소에 남겨야 합니다. 어떤 제조를 내의원에 남길지 여쭙니다.’라고 아뢰니, 제조를 내의원에 남기라고 하교하셨다.

〔頭註〕 乙亥直宿時，以司謁，今日親行望拜禮時，提調副提調，當為進參，而本院守直，何以為之事入稟，而口傳下教于政院曰，提調進去，副提調守直。

〔두주〕 을해년(고종12, 1875) 직숙할 때에 사yal(司謁)을 통해 ‘성상께서 오늘 망배례(望拜禮)를 직접 거행하실 때 제조와 부제조가 마땅히 나아가 참석해야 하니, 내의원에서 수직(守直)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쭙니다.’라고 아뢰니, 구전(口傳)으로 승정원에 ‘제조가 참석하고 부제조는 수직하도록 하라.’고 하교하셨다.

一. 提調輪直日，不拘日次，當殿別問安事。並直初日同。○醫官同。

하나. 제조가 윤직(輪直)하는 날에는 일차문안(日次問安)⁵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 전궁에 별도로 문안을 행한다. 병직(並直)하는 첫날도 마찬가지이다。○의관도 같다。

5 일차문안(日次問安) :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문안이다.

一. 解娩後七日內入直, 不得交替事. 待令醫女, 自解娩後, 至三七日, 逐日三時間安, 諸醫女, 只朝問安後出退.

하나. 분만한 뒤 7일 이내의 입직은 다른 사람과 교체할 수 없다. 대령의녀(待令醫女)는 분만 이후로 삼칠일까지 매일 아침·점심·저녁으로 세 번 문안하고, 나머지 의녀들은 아침 문안만 올린 후 물러난다.

一. 產圖三件, 催生符三件, 以朱砂印出, 借地法三件, 以朱砂書之, 而字樣如綱目小字大, 安產室吉方三件, 藏胎衣吉方三件, 並朱砂書之, 而如產圖字樣大, 二十四方位紙, 方面以朱砂各書一字, 字樣如產圖字書之事.

하나. 산도(產圖) 3건과 최생부(催生符) 3건은 주사(朱砂)로 찍어내고, 차지법(借地法) 3건은 주사로 쓰되 글자의 모양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綱》의 작은 글자 크기로 한다. 안산실길방(安產室吉方) 3건과 장태의길방(藏胎衣吉方) 3건도 모두 주사로 쓰되 산도의 글자 모양과 크기로 한다. 이십사방위지(二十四方位紙)는 방면(方面)에 주사로 각각 한 글자씩 쓰되 글자의 모양은 산도의 글자처럼 한다.

一. 剪邊空石 長參尺玖寸, 廣壹尺柒寸 造來事. 凡尺用鎰尺.

하나. 가장자리를 잘라 낸 빈 가마니 길이 3척 9촌, 넓이 1척 7촌를 만들어 온다. 모든 자는 유척(鎰尺)을 사용한다.

一. 捲草函 長壹尺捌寸伍分, 廣肆寸參分, 全漆, 內塗紅紬 造來事.

하나. 권초함(捲草函) 길이 1척 8촌 5푼, 넓이 1척, 높이 4촌 3푼. 전체를 윗칠하고 안쪽에는 붉은 비단을 바른다 을 만들어 온다.

一. 命絹十疋 每疋貳拾捌尺, ○紅紬袱裹, 命紬十疋 每疋參拾伍尺. ○紅紬袱裹, 命白絲十斤 入盛白苧岱. ○紅紬袱裹, 命正銀一百兩 紅紬付綿甲袱裹. ○入盛紅假函, 命白米一百斗 分作拾岱, 入盛白木岱來納, 而捲草祭設行日, 自移設所, 又爲入盛白苧岱封裹, 鎰燭臺一雙, 鎰香爐一坐, 鎰香盒一坐, 全漆函一坐 各其司官員, 臣謹封, 前期一日, 躬親進排, 三提調會同監捧後, 各其司官員, 更書臣謹封, 奉置于移設所事.

하나. 명견(命絹) 10필 매 필은 28척이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짠다. 명주(命紬) 10필

매 필은 35척이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쌌다. 명백사(命白絲) 10근 흰 모시 포대에 넣는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쌌다. 명정은(命正銀) 100냥 면갑(綿甲)을 덧댄 붉은 비단 보자기로 쌌다. ○홍가함(紅假函)에 넣는다. 명백미(命白米) 100말 열 포대로 나누어 무명 포대에 넣어 들이고, 권초제(捲草祭)를 실행하는 날에 이설소에서 다시 하얀 모시 포대에 넣어 싸서 봉한다. 놋촛대 1쌍, 놋향로 1좌(坐), 놋향합 1좌, 전체를 옷칠한 함 1좌. 각 관청의 관원이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써서 정한 기한 하루 전에 몸소 진배(進排)한다. 세 제조가 회동하여 감독한 후에 각 관청의 관원이 다시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쓰고 그 기물들을 이설소(移設所)에 옮겨 둔다.

산실청총규(產室廳總規)

태후(胎候)에 대한 전교(傳教)가 내려진 뒤(胎候傳教後)⁶

胎候傳教後，毋論月數多少，稟請擇日診候 擇日後，以某日爲吉，微稟，當日來待，亦微稟，仍請前期三朔排設事。若胎候不在多朔之時，則追後限三朔前，更爲稟請。○世子嬪宮產室時，凡口達書達，世子宮亦皆入達。

태후(胎候)에 대한 전교(傳教)가 내려진 뒤에는 달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날을 택하여 진후(診候)할 것을 품청(稟請)하고 날을 택한 뒤에 어느 날이 길한지 미품(微稟)⁷하고, 그 날이 되었을 때 와서 대령하는 것도 역시 미품한다. 이어서 산달 3개월 이전에 산실청을 배설(排設)할 것을 품청한다. 만약 태후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에는 추후에 산달 셋 달 이전을 기한으로 다시 품청한다.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에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뢸 때 모두 세자궁에도 역시 함께 아뢴다.

〔頭註〕 胎候傳教後，舊例則差備待令針藥醫女卽爲入診而，十日一次入診。

6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7 미품(微稟) :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넘지시 아뢰는 것이다.

[두주] 태후에 대한 전교가 내려진 뒤에는, 예전의 규례에 따르면 차비대령(差備待令)하는 침의녀(針醫女)와 약의녀(藥醫女)가 즉시 입진하고 10일에 한 차례씩 입진하였다.

〔頭註〕 胎候傳教, 若承於三朔之內, 則卽請擇日排設, 而待批下, 諸般稟定, 仍卽爲之. ○近則某入侍時, 都提調, 以承候官或國舅所傳中宮殿胎候, 今爲多朔云云, 篡奏.

[두주] 태후에 대한 전교를 만약 산달 3개월 이전에 받들면 즉시 날을 택하여 산실청을 배설(排設)할 것을 청한 뒤에 성상의 비답(批答)이 내려오길 기다려 제반 사항을 품정(稟定)하고 곧바로 행한다. ○근래에 아무개가 입시했을 때에 도제조가 ‘승후관(承候官) 혹은 국구(國舅)가 전한 내용으로서 중궁전의 태후가 지금 여러 달이 되었다’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산실청을 설치할 날짜를 택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設廳擇日命下後)⁸

設廳擇日命下後, 卽令日官推擇後, 草記.

산실청을 설치할 날짜를 택하라는 어명이 내려오면 즉시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날짜를 계산하여 택하라고 한 뒤에 초기(草記)를 작성한다.

○捲草官, 政官牌招, 差出. 篡奏或草記. ○甲戌 診候日入侍時, 篡稟.

○권초관은 인사 담당자인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차출한다. 연석에서 아뢰거나 초기(草記)를 작성한다. ○갑술년(고종11, 1874)에는 진후(診候)하는 날에 입시하여 연석에서 아뢰었다.

○提調, 間四日問安 擇日命下日爲始, 醫官醫女, 間三日問安 護產官, 落點日爲始, 醫女, 啓目日爲始, 而朔望日, 則別問安, 而排設後, 直宿提調及醫官醫女, 逐日問安 間四日, 間三日, 仍爲之, 稟定.

○제조는 4일 간격으로 문안하고 택일하라는 어명이 내려온 날부터 시작한다 의관과 의녀는 3일 간격으로 문안하되 호산관(護產官)은 낙점된 날부터 시작하고, 의녀는 계목(啓

8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目)을 올린 날부터 시작하는데, 초하루와 보름에는 별도로 문안한다. 산실청을 배설(排設)한 뒤로는 ‘직숙 제조와 의관·의녀는 매일 문안 제조가 4일 간격으로 문안하고 의관과 의녀가 3일 간격으로 문안하는 것은 그대로 한다 하는 것’을 품정(稟定)한다.

〔頭註〕未蒙設廳之命，而若先入診，則醫女問安，設廳命下前，五日日次爲之事。

〔두주〕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입진(入診)해야 한다면 의녀가 문안하고, 산실청 설치의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는 5일마다 하는 일차문안을 거행 한다.

〔頭註〕設廳吉日，若多則以某日某日俱吉云，以何日舉行之意，措辭。

〔두주〕산실청을 설치할 만한 길일이 많으면 ‘어느 날 어느 날이 모두 길하다고 하니 어느 날에 거행합니까?’라고 문장을 작성한다.

〔頭註〕捲草官有實病，則陳疏遞改，而有闕代，令政院政官牌招，開政差出草記。

〔두주〕권초관(捲草官)에게 실제로 병이 있으면 그를 체차(遞差)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고, 빈 자리를 채울 일이 있으면 승정원으로 하여금 정관을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어 차출해달라는 내용으로 초기(草記)를 작성한다.

〔頭註〕輪直時，入直提調，雖逐日問安，他提調，間四日問安，仍爲之。

〔두주〕윤직(輪直)할 때에 입직하게 된 제조는 비록 날마다 문안하지만, 다른 제조들은 4일 간격으로 문안하는 규례를 그대로 거행한다.

〔頭註〕世子嬪宮產室時，設廳命下日，三提調當宮問安，醫官則當宮及世子宮問安。

〔두주〕세자빈궁의 산실청의 경우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날에 세 제조는 해당 궁에 문안하고 의관은 해당 궁과 세자궁에 문안한다.

진후하는 날짜(診候日字)⁹

診候日字，令日官推擇後，以某日舉行事入稟。

9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여자가 추가하였다.

진후하는 날짜는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계산하여 선택하게 한 뒤에 ‘모일에 거행하겠다.’고 아뢴다.

○產室醫官, 長望單子 御醫二望, 議藥同參二望, 書入受點, 丁亥則差定後, 草記. ○落點後, 當殿宮問安.

○산실청 의관은 장망단자(長望單子)¹⁰ 어의(御醫) 2원과 의약동참(議藥同參) 2원 를 써서 들여 낙점을 받는다. 정해년(순조27, 1827)에는 산실청 의관을 정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렸다. ○낙점을 받은 후에는 해당 전궁(殿宮)¹¹에 문안한다.

○借地法, 當殿宮姓氏, 依例書之事, 篓稟. 甲戌, 診候日入侍時, 稟定.

○‘차지법(借地法)에 의거하여 해당 전궁(殿宮)의 성씨를 규례대로 쓰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 갑술년(고종11, 1874)에는 진후하는 날에 입시하였을 때 아뢰어 결정하였다.

○別入直醫官, 別掌務官, 依例自本院差出事, 稟定後, 草記. 別入直醫官, 則三廳合七員, 或五員, 或三廳各一員, 而別掌務官則, 堂下醫官中, 行首一員差出.

○‘별입직의관(別入直醫官)과 별장무관(別掌務官)을 규례대로 본원에서 차출하겠다.’고 품정(稟定)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린다. 별입직의관은 삼청(三廳)에서 도합 7원 또는 5원을 차출하는데, 혹은 삼청(三廳)에서 각 1원씩 차출하기도 한다. 별장무관은 당하관(堂下官)에 해당하는 의관 중에서 행수(行首) 1원을 차출한다.

○書員 四人, 醫女 二名, 差定事, 啓目. 丁亥以後草記. ○書員則或五人或六人.

○서원(書員) 4인 과 의녀 2명 을 차출하여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계목(啓目)을 올린다. 정해년(순조27, 1827) 이후로는 초기(草記)로 작성한다. ○서원(書員)은 5인 또는 6인 으로 하기도 한다.

○排設時及捲草時所用物種, 依例捧上事, 啓目. 允下後, 卽爲捧甘各司.

10 장망단자(長望單子) : 인재를 구하기 위하여 3원 이상을 추천한 명단을 말한다. 합당한 사람을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조리 기명하기 때문에 장망이라고 한다.

11 전궁(殿宮) : 중궁전의 경우 당전문안으로, 세자빈궁인 경우에는 당궁문안으로 표현한다.

○ 산실청을 설치할 때와 권초제(捲草祭)를 행할 때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규례대로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계목(啓目)을 올린다. 윤허가 내려온 뒤에 즉시 담당 관청에 각각 감결(甘結)을 보낸다.

○ 禁忌方單子，逐月入節前一日，自雲觀入啓事，分付該監事。

○ 금기하는 방향을 기록한 단자는 매달 절기에 드는 날 하루 전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입계(入啓)하도록 해당 관청에 분부한다.

● 已上，並擇日命下日，舉行。

● 이상의 일들은 모두 택일(擇日)하라는 어명이 내려온 날에 거행한다.

[頭註] 診候日，率醫官來待稟。○入侍記修正，而醫女俱官服，入診待令。

[두주] 진후(診候)하는 날에는 ‘의관을 인솔하여 대령했다.’고 아뢴다. ○ 입시기(入侍記)를 수정할 때 의녀는 모두 관복을 입고 입진(入診)하여 대령한다.

[頭註] 診候日字稟，則令政院出朝報。○診候日，每有時原任大臣承候入侍時，藥房三提調同爲入侍，傳教。○已巳，診候後，中宮殿湯劑，以達生散議定，自今日煎入事，口啓。

[두주] 진후(診候)하는 날짜를 아뢰면 승정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보(朝報)에 내게 한다. ○ 진후하는 날에는 매번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이 문후를 여쭙기 위해 입시할 때에 약방의 세 제조도 함께 입시하라고 전교한다. ○ 기사년(고종6, 1869)에는 진후한 뒤에 중궁전에 올리는 탕제를 달생산(達生散)으로 의논하여 결정하고 오늘부터 달여서 들이겠다고 구두로 아뢰었다.

[頭註] 辛未，近因下教，產室醫官，只以有術業人長望入之，蒙點。○戊午，別掌務官，病代，改差下事，微稟。○近改差草記。

[두주] 신미년(고종8, 1871) 근래에는 하교에 따라 산실청 의관을 의술이 뛰어난 자로만 장망단자(長望單子)를 들여 낙점을 받도록 하였다. ○ 무오년(철종9, 1858)에는 별장무관(別掌務官)의 신병 때문에 개차(改差)해달라고 넌지시 아뢰었다. ○ 근래에는 개차한 일을 초기하였다.

[頭註] 排設物種，並前期，各其司官員領納，提調監捧。

[두주] 산실청을 배설할 때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기일에 앞서 각 해당 관청의 관원들이 가지고 와서 들이고, 제조가 봉납하는 것을 감독한다.

〔頭註〕 禁忌方單子，設廳命下後，依例入之，而逐月改付標以入。

[두주] 금기하는 방향을 기록한 단자는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에 규례에 따라 들이고, 매달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에 찌를 붙여 들인다.

산실청을 설치하는 장소(產室排設處所)¹²

產室排設處所及待令醫官入直處所，並前期一二日入稟事。國恤時，則以產室待令承傳色次知內官以下服色借吉舉行事，入稟。○戊午。

산실청을 설치하는 장소와 대령하는 의관이 입직하는 장소는 모두 기일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아뢴다. 국상(國喪)이 발생했을 때에는 산실청의 대령승전색(待令承傳色)과 담당 내관 이하의 복색을 차길(借吉)¹³하여 거행하겠다고 아뢴다. ○무오년(철종9, 1858)의 일이다.¹⁴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排設日)¹⁵

排設日，護產官以今日某時排設之意，書啓。時刻單子，奏時官入啓，正時漏局入之，凡奏時同。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는 호산관(護產官)이 오늘 모 시에 설치하겠다고 서제(書啓)한다. 시각 단자는 주시관(奏時官)이 입계한다. 정시에 보루각(報漏閣)에서 들이는데, 시각을 보고하는 모든 경우는 이와 같이 한다.

○三提調看審排設之意，副提調以司謁入稟。

12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13 차길(借吉) : 길례 때에 임시로 길복을 입는 것이다.

14 철종 8년(丁巳, 1857) 8월에 대왕대비인 순원왕후 김씨가 승하한 이듬해인 무오년에 산실청이 배설되었을 때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1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세 제조가 산실청의 설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부제조가 사yal(司謁)을 통해 아뢴다.

○排設時舉行節次. 見日記.

○산실청을 설치할 때 거행하는 절차. 일기에 보인다.

○排設時，以懸草門何門爲之之意，稟旨。或排設處所入稟時，同稟。

○산실청을 설치할 때 현초문(懸草門)을 어떤 문으로 할지에 대해 아뢰어 결재를 받는다. 혹은 산실청을 설치할 장소를 아릴 때 동시에 아뢰어 결재를 받기도 한다.

○待令書員醫女，居接于醫官直所近處事，以司謁入稟。

○대령서원(待令書員)과 의녀가 의관의 직숙소(直宿所) 근처에서 잠시 거주한다고 사yal(司謁)을 통해 아뢴다.

○眞諺貼冊 吉方及禁忌節次 各三件 見日記，紅紬二幅袱裹，海馬石燕子各一雙 各眞紅唐絲三甲纓子結紐，先心封書當殿宮進上海馬石燕子各一雙，臣謹封，並入于大殿差備。世子嬪宮產室時，各貼冊各三件式，入于大殿，世子宮嬪宮，諺書各差備。

○한문 첨책(貼冊)과 한글 첨책 길한 방향 및 금기 절차를 적는다 각 3건 일기에 보인다. 붉은 비단으로 된 2폭의 보자기로 짠다. 해마와 석연자 각 1쌍 각각 진홍색 중국 명주로 끈 세겹 끈으로 매듭을 만들되, 우선 가운데를 봉하고 ‘해당 전궁에 해마와 석연자 각 1쌍을 올립니다.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쓴다 을 모두 대전에 들여 차비(差備)한다.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 첨책마다 각각 3건씩을 대전에 들이고, 세자궁과 세자빈궁에 한글 첨책을 각각 차비한다.

○排設後，各殿宮，三提調口傳問安 古例則只大殿當殿宮問安，護產官三廳醫官，當殿宮，單子問安。醫女問安亦爲之，後同。

○산실청을 설치한 뒤에 각 전궁에 세 제조가 구전문안(口傳問安)하고 옛 규례에 따르면 대전과 해당 전궁에만 문안한다. 호산관(護產官)과 삼청(三廳) 의관은 해당 전궁에 단자로 문안한다. 의녀의 문안도 또한 거행한다. 이후로도 같다.

○當殿宮診候，稟旨舉行。至解娩前，間間請診。

○ 해당 전궁에 대한 진후(診候)를 품지(稟旨)한 뒤에 거행한다. 분만 이전까지 간간이 진후를 청한다.

○ 提調以下，依例直宿事，草記。世子嬪宮，則直請移直。○近則排設日有三提調入侍之命，而設廳在於當朔，則三提調自今日並直，承候官亦爲別入直事，筵稟，而又以待令醫官亦自設廳日並直，而前或因下教有姑爲輪直之時，而今番則自今日使之依例並直事，筵稟。

○ 제조 이하로는 규례에 따라 직숙(直宿)한다고 초기(草記)한다. 세자빈궁의 경우 곧장 이직(移直)을 청한다.¹⁶ ○ 근래에는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세 제조에게 입시하라는 어명이 있었는데, 산실청의 설치가 산달에 있었으니 세 제조가 오늘부터 모두 직숙하고 승후관(承候官)도 또한 별도로 입직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뢰었다.¹⁷ 또,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부터 대령의관(待令醫官)도 모두 직숙하게 했는데, 이전에는 간혹 성상의 하교(下教)에 따라 잠시 운직할 때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들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모두 직숙하게 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頭註〕 排設日，每有時原任大臣承候入侍時，藥房三提調同爲入侍，傳教。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매번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이 문후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약방의 세 제조도 함께 입시하라고 전교하였다.

〔頭註〕 排設日，三提調來待差備門外。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세 제조는 차비문(差備門) 밖에 와서 대기한다.

〔頭註〕 自排設日請診後，至解娩前，間間請診，而至臨朔以後，則亦以議定當進湯劑之意，兼爲措辭，入稟。

〔두주〕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진후를 청한 이후로 분만 이전까지 간간이 진후를 청하고, 산달이 된 이후로는 진후를 청하는 동시에 ‘어떤 탕제를 올려야 하는지 의논하여 결정했습니다.’라고 문장을 꾸려서 아뢴다.

〔頭註〕 眞諺貼冊及海馬石燕子，入盛一盤。

16 세자 빈궁의 경우 산실청의 설치 장소가 곤전(坤殿)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을 청하는 것이다.

17 고종 8년(1871) 10월 7일 승정원일기에 도제조 이유원(李裕元)이 연품한 기사가 나온다.

[두주] 한문 첨책(貼冊)과 한글 첨책 및 해마(海馬)와 석연자(石燕子)를 한 쟁반에 담는다.

〔頭註〕直宿，若有姑勿爲之命，則待其命下之日，以依下教直宿之意，措辭草記，或有入侍時命下，則出榻教。○若承提調姑勿輪直之命，則仍請醫官輪直，而提調輪直命下後，更請醫官並直。○提調輪直若不在排設日，則輪直初日，不拘日次，當殿，三提調別門安，至並直初日，亦如之。○護產官，雖於排設後，若有本院輪直，或姑爲本院元入直之命，逐日問安不爲之，只間三日問安，依前爲之。

[두주] 직숙(直宿)의 경우, 만약 당분간 직숙하지 말라는 어명이 있으면 그 어명이 내려온 날에 ‘하교에 따라 직숙하겠습니다.’라고 문장을 꾸려서 초기(草記)한다. 혹 입시했을 때 어명이 내려지면 탑교(榻教)¹⁸를 낸다. ○만약 제조에게 당분간 윤직하지 말라는 어명이 내려지면 의관으로 윤직하게 할 것을 청하고, 제조에게 윤직(輪直)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에는 다시 의관도 모두 병직(並直)하게 할 것을 청한다. ○제조의 윤직이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윤직한 첫날에 문안하도록 규정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전궁에 나아가 세 제조가 별도로 문안한다. 병직하는 첫날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호 산관은 비록 산실청을 설치한 뒤라도 만약 본원에서의 윤직이 있거나 혹 당분간 본원에서 원입직(元入直)하라는 어명이 있으면 매일 하는 문안은 하지 않고 3일 간격으로 하는 문안만 이전처럼 거행한다.

〔頭註〕英宗朝庚午，各其司官員待令事下教，而仍以承傳色摘奸捧舉案，各司闕點官員，並拿勘。

[두주] 영조 경오년(영조26, 1750)에 각 관청의 관원들을 대령하라고 하교하였다. 이어서 승전색(承傳色)에게 적간(摘奸)하여 거안(舉案)¹⁹을 올리게 하고, 점고(點考)에 빠진 각 관청의 관원들을 모두 의금부에 잡아들여 조처하였다.

18 탑교(榻教) : 임금이 정승에게 직접 내린 명령

19 거안(舉案) : 공회(公會)에 참여하는 자의 명함이다.

산실청을 설치한 후에 거행하는 일(設廳後舉行)²⁰

設廳後舉行, 各司例爲待令事, 筵稟.

산실청을 설치한 후에 거행하는 일은 각 관청이 규례에 따라 대령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

○副提調入直時, 若值政院備員公故, 勿令進參事, 筵稟.

○부제조가 입직(入直)할 때 만약 승정원의 비원(備員)에게 공무가 있는 상황이면 진참(進參)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연석에서 아뢴다.²¹

○醫官書員, 依例供饋事 只視醫官直宿, 草記.

○‘의관과 서원(書員)에게 규례대로 공궤(供饋)하겠다’고 의관이 직숙할 때의 규정을 보라 초기(草記)한다.

●已上 並排設日舉行.

●이상은 모두 산실청을 설치하는 날에 거행한다.

내의의 별입직(內醫別入直)²²

內醫別入直, 自提調輪直日爲始, 別掌務官, 自護產官並直日爲始, 書員, 亦護產官直宿日爲始, 而並直則自當朔爲之. 雖當朔, 護產官若輪直, 則亦輪直 醫女, 自護產官輪直日並宿, 而夕問安, 則自護產官並直日爲之, 護產官, 自並直翌日朝夕, 書啓事. 輪直時, 無書啓.

내의가 별입직(別入直)하는 것은 제조가 윤직(輪直)하는 날로부터 시작하고, 별장무관(別掌務官)이 별입직하는 것은 호산관이 병직(並直)하는 날로부터 시작한다. 서원(書員)도 또한 호산관이 직숙(直宿)하는 날로부터 별입직을 시작하는

20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21 고종 8년(1871) 10월 7일 승정원일기에 도제조 이유원이 연품한 기사가 나온다.

22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데, 병직은 산달로부터 한다. 비록 산달이라도 호산관이 윤직하면 서원도 역시 윤직한다 의녀는 호산관이 윤직하는 날로부터 병숙하고, 저녁 문안은 호산관이 병직하는 날로부터 한다. 호산관은 병직하는 다음날부터 조석(朝夕)으로 서계(書啓)한다. 윤직할 때에는 서계하지 않는다.

〔頭註〕若有醫官並直之命, 則待令醫官別掌務官姓名, 省記中列書, 軍士四名並爲省記. ○醫官雖並直, 書員則輪回入宿, 而當朔, 三提調並直後, 並皆入宿, 諸員五名, 亦爲省記.

〔두주〕 만약 의관에게 병직하라는 어명이 있으면 대령의관(待令醫官)과 별장무관(別掌務官)의 성명을 생기(省記)²³에 나열하여 기록하고, 군사 4명도 함께 기록한다. ○의관이 비록 병직하더라도 서원은 돌아가면서 입숙(入宿)하고, 산달에는 세 제조가 병직한 뒤에 서원(書員)도 함께 모두 입숙하며, 모든 서원 5명의 성명도 역시 기록한다.

〔頭註〕輪直時省記, 醫官二員式, 書員二人式, 醫女二名, 使令二名, 軍士二名式.

〔두주〕 윤직할 때의 생기(省記)는 의관 2원씩, 서원 2인씩, 의녀 2명, 사령 2명, 군사 2명씩으로 한다.

〔頭註〕護產官, 自並直翌日, 朝夕書啓, 而若有症候與湯劑如達生散, 則並爲措辭於書啓中, 凡有藥物封入之事, 亦皆書啓.

〔두주〕 호산관은 병직한 다음날부터 조석으로 서계(書啓)하는데, 만약 병세의 진후가 있거나 달생산 같은 탕제를 올리는 일이 있으면 모두 서계 가운데 서술한다. 약물을 봉입(封入)하는 모든 경우에 역시 모두 서계한다.

매달 초하루(逐月初一日)²⁴

逐月初一日, 產室排設移鋪 奏時, 排設時同, 而前一日, 某時舉行事, 書啓, 及當日舉行事. 並見日記. ○提調及泛鐵官擇日官, 待令于差備門外矣. 丁亥則依下令並入參. ○移鋪後, 只護產

23 생기(省記) : 병조에 입직한 낭관이 궁궐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와 각 문에 입직하는 장사(將士)의 이름을 열기하여 승정원을 거쳐서 임금에게 올리는 기록.

24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官, 當殿宮問安.

매달 초하루에 산실에 배설(排設)한 물품을 옮겨서 진열한다. 시각을 아뢰는 것은 산실청을 배설할 때와 똑같이 한다 그 하루 전날에 모 시에 거행하겠다고 서계(書啓)를 올리고 당일에 거행한다. 모두 일기에 보인다. ○제조와 범철관(泛鐵官)·택일관(擇日官)은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대령한다. 정해년(순조27, 1827)에는 내려진 하명에 따라 함께 입참(入參) 했다. ○옮겨 배설한 뒤에는 단지 호산관만 해당 전궁에 문안한다.

若閏月, 則不爲移鋪之意, 入稟事. 若越朔, 則卽初一日書啓, 而仍改付之例.

만약 윤달이라면 옮겨 배설하지 않겠다고 아뢴다. 만약 달이 넘어가면 즉시 초하루에 서계(書啓)하고 고쳐 붙이도록 한 규례에 따른다.

산달 하루 전날(當朔前一日)²⁵

當朔前一日, 三提調及戚臣別入直, 醫官別入直, 自明日依例並直事, 草記. 當殿宮, 提調及醫官逐日一次問安, 與輪直時同, 而產漸時及或有症候時, 則朝夕問安.

산달 하루 전날에 세 제조와 척신(戚臣)이 별입직한다. 의관의 별입직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규례에 따라 병직하겠다고 초기(草記)한다. 해당 전궁에 제조와 의관이 매일 한차례 문안하는 것은 윤직할 때와 마찬가지이고, 분만의 기미가 있거나 병세의 증후가 있을 때에는 조석으로 문안한다.

○奏時官亦居接於差備近處之意, 入稟事. 近則設廳在於當朔, 故設廳日入稟.

○주시관(奏時官)도 차비문 근처에서 임시로 거주하겠다고 아뢴다. 근래에는 산달에 산실청을 설치하기 때문에 산실청을 설치한 날에 아른다.

〔頭註〕 戊午, 傳曰產圖改貼時, 三提調留差備外, 只醫官等入來移舗.

〔두주〕 무오년(철종9, 1858)에는 '산도(產圖)를 고쳐 붙일 때 세 제조는 차비문 밖에 머물고, 단지 의관 등만 들어와서 옮겨 배설하라.'고 전교(傳教)하였다.

2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頭註〕自設廳命下後，若值朔望日，則不拘日次，當宮醫官醫女別問安，而產改貼後，亦爲問安。

〔두주〕산실청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내려진 뒤에 만약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날짜가 규정된 일차문안(日次問安)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궁에 의관과 의녀가 별도로 문안하고, 산도(產圖)를 고쳐 붙인 후에도 또한 문안한다.

〔頭註〕當朔既届，則三提調雖已輪直，更請並直，至解娩日，又請移院直宿，而並直與移直，皆以草記或筵奏。○並直稟請，而若未蒙允，則至解娩日並直，而仍請移直。○承候戚臣別入直，待當朔，三提調並直草記中，同爲稟旨，省記，自本院爲之。

〔두주〕산달에 이르면 세 제조가 비록 이미 윤직(輪直)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병직(並直)하겠다고 청하고, 분만하는 날짜가 되면 다시 원(院)을 옮겨 직숙하겠다고 청하는데, 병직이든 이직(移直)이든 모두 초기(草記)하거나 연석에서 아뢴다. ○병직하겠다고 아뢰어 청했으나 만약 윤허를 받지 못했으면 분만일까지 병직하고, 분만일에 이직을 청한다. ○문후를 여쭙는 척신(戚臣)의 별입직(別入直)은 산달을 기다리되, 세 제조가 병직하겠다고 청하는 초기에 함께 아뢴다. 생기(省記)는 본원에서 작성한다.

〔頭註〕戊午入診入侍時，都提調請并直，上曰都提調元老大臣，間間入直，可也。

〔두주〕무오년(철종9, 1858)에 입진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도제조가 병직(並直)하겠다고 청하자, 성상이 ‘도제조는 원로대신이니 간간이 입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頭註〕癸酉并直時，差備招掌務官，傳曰藥院三提調，家有事故，則輪回畫出事下教。

〔두주〕계유년(고종10, 1873)에 병직할 때 차비관(差備官)이 장무관(掌務官)을 불러 ‘‘야 원의 세 제조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낮에 나가고 밤에 직숙하게 하라.’’고 하교하셨다.’라고 전하였다.

〔頭註〕戊午當朔，入診入侍時，都提調，以醫官三人別入直，加差下事，筵稟後，草記。

〔두주〕무오년(철종9, 1858) 산달에 입진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도제조가 의관 3인을 별입직으로 가차(加差)할 것을 연석에서 아뢴 뒤에 초기(草記)하였다.

산달 초(當朔初)²⁶

當朔初，三提調以某殿宮誕彌之月請診候，議定湯劑 每以達生散，及臨產時，預備藥料

製入事，入稟。預備藥則近以設廳在於當朔，故設廳日入稟後，並入之。

산달 초에 세 제조가 ‘모 전궁의 탄미월(誕彌月)²⁷이므로 진후할 것을 청하고, 탕제 매번 달생산으로 한다 및 분만할 때 필요한 예비 약물을 만들어 들이겠다’고 아뢴다. 예비 약물은 근래에는 산실청을 산달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실청을 설정하는 날에 아뢴 뒤에 아울러 들인다.

○佛手散 本方, 加益母草, 二箋 五貼. 先心封書當殿宮進上佛手散五貼, 臣謹封, 方文書入. ○方文書式, 當歸六箋, 川芎四箋, 益母草二箋, 右作一貼, 水一升二合, 臨熟, 入酒少許, 煎至四合, 去滓, 不拘時, 溫進 人蔘正末 羅參, 三錢重一封, 二錢重一封. 先心封書當殿宮進上人蔘正末三錢重一封二錢重一封, 臣謹封. ○辛未, 因大院位分付, 只以三錢重製入. ○作末時, 石研沙椀, 篩次苧布七寸, 雉羽板紙 進御節次書啓, 入于大殿當殿宮 謂書, 下同. 黃連甘草湯一貼 唐黃連甘草各二錢. ○外幅周封, 只書謹封, 蜜朱砂 煉蜜, 如胡桃大, 和水飛朱砂三分重, 盛小沙盒, 付小紙周封, 只謹封, 胡桃肉 溫水去皮, 碎之篩, 如胡桃大, 盛小沙盒, 付小紙周封, 只謹封, 已上, 若越朔則更爲製入, 而以製入者日久故又入之之意, 微稟. 且佛手散, 則產漸時, 或自本院煎入, 白清二升 盛沙鉢, 幅中只書白清, 南北端, 書臣着唧, 白絹一尺 周封, 書胡桃肉裹次, 白絹一尺, 只謹封, 白鼎紬一尺 周封書, 黃連甘草湯拭口次, 白鼎紬一尺, 只謹封, 拭口法抹朱砂法胡桃含口法, 合書諺單一張, 並入事. 紙用草注紙四絕, 一絕摺, 作八貼單子.

○불수산 본래 처방에 익모초 2돈을 더한다 5첩. 우선 가운데를 봉하고 ‘해당 전궁에 불수산 5첩을 올립니다.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쓰고 약방문을 써서 들인다. ○약방문의 서식은 ‘당귀 6돈, 천궁 3돈, 익모초 2돈을 1첩으로 하여 물 1되 2홉을 넣고 끓을 때 술을 조금 넣고, 4홉이 될 때까지 달인 후에 찌꺼기를 제거하고,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할 때 올린다.’라고 쓴다 매우 고운 인삼가루 나삼(羅參)을 쓴다 3돈중 1봉, 2돈중 1봉. 우선 가운데를 봉하고 ‘해당 전궁에 매우 고운 인삼가루 3돈중 1봉과 2돈중 1봉을 올립니다.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쓴다. ○신미년(고종8, 1871)에 흥선대원군의 분부에 따라 단지 3돈중 짜리로만 지어서 올렸다. ○가루를 낼 때는 돌로 만든 약연(藥研), 사기그릇, 체로 거를 때 쓸 모시포 7촌,

26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27 탄미월(誕彌月) : 산달이 찼다는 뜻이다.

찡깃, 판지를 사용한다 진어(進御)하는 절차를 서계(書啓)하여 대전과 해당 전궁 한글로 쓴다. 아래도 같다 예 들인다. 황련감초탕 1첩. 당황련과 감초 각 2돈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단지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밀주사(蜜朱砂). 끝을 고아서 호도만한 크기로 만들고, 그것을 미세한 분말로 만든 주사 3푼증과 합하여 작은 사기그릇에 담은 후 작은 종이로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호도육. 따뜻한 물에 담궈서 껌질을 제거하고 같아서 체에 내린 뒤에 호도만한 크기로 만들어 작은 사기그릇에 담고 작은 종이로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이상의 약물은 만약 달을 넘기면 다시 만들어 들이는는데, ‘만들어 들인 날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들인다.’고 널지시 아뢴다. 또한 불수산은 분만이 임박했을 때 들이거나 혹 내의원에서 달여서 들이기도 한다. 백청(白清) 2도. 사발에 담아서 감싸는 천 가운데에 ‘백청’이라고만 쓰고, 남북쪽 끝에 ‘신 아무개’라고 이름을 쓰거나 수결을 한다 백견(白絹) 1척.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호도육을 포장하기 위한 백견 1척’이라고 쓴 뒤에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백정주(白鼎紬) 1척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황련감초탕으로 입안을 닦기 위한 백정주 1척’이라고 쓴 뒤에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식구법(拭口法)²⁸, 주사를 바르는 법, 호도를 입에 머금게 하는 법을 1장의 언문 단자로 써서 함께 들인다. 종이는 초주지(草注紙) 4절을 쓰는데, 1절마다 접어 8첩 단자를 만든다.

[頭註] 佛手散及方文, 人參正末, 黃連甘草湯, 白鼎紬, 入盛一盤, 蜜朱砂, 胡桃肉, 及白絹, 白清, 諺書單子, 入盛一盤.

[두주] 불수산과 악방문 · 매우 고운 인삼가루 · 황련감초탕 · 백정주는 하나의 쟁반에 담고, 밀주사 · 호도육 · 백견(白絹) · 백청(白清) · 언문단자는 또 다른 쟁반에 담는다.

대령하는 약물(待令藥物)

加益母草二錢佛手散

加桃仁泥酒紅花各□²⁹錢芎歸散

28 식구법(拭口法) :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드러운 솜으로 입안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방법.

29 □ : 원본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紫蘇飲

榆白皮湯

牛膝湯

失笑散

滑石末

木麥末

白扁豆末

花蘂石煅末

伏龍肝末

草麻仁

草麻莖

清蜜

眞油

鷄卵

生薑

生葱

並預備待令于差備直所.

익모초 2돈을 더한 불수산,

찧은 도인과 술을 뿌려 불에 말린 홍화를 각각 □³⁰돈을 더한 궁귀산,

자소음,

유백피탕,

우슬탕,

실소산,

활석 가루,

목맥 가루,

백편두 가루,

30 □ : 원본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화예석을 불에 달궈 낸 가루,
복통간 가루,
아주까리 씨,
아주까리 줄기,
청밀(淸蜜),
참기름,
계란,
생강,
생파를
모두 미리 준비하여 차비문 근처 의관 직소(直所)에 대령해 둔다

분만이 시작될 때(產漸時)³¹

產漸時，護產官隨症候，書啓，自解娩後，當殿宮氣候羹飯進藥之節，及阿只氏吮乳大小便之由，當日則逐時書啓，自翌日，自朝至夕間一時，書啓，自第四日至七日，朝間二時書啓，七日後則護產官雖仍直，無書啓事。

분만이 시작될 때에 호산관(護產官)이 증후에 따라 서계(書啓)한다. 분만 이후로는 해당 전궁의 신체 상태, 음식, 복용하는 약의 상황 및 아기씨의 수유, 대소변의 상태를 분만 당일에는 매시마다 서계하고, 다음날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각마다 서계하며, 제4일부터 7일까지는 아침나절 2시각마다 서계하고, 7일 이후로는 호산관이 비록 그대로 직숙하고 있더라도 서계하지 않는다.

〔頭註〕有產漸，則口啓請診。○醫官入診後，議定湯劑，則入稟後，製入與煎入，出榻教，入諺稟。○凡產室湯劑人蔘，則以羅蔘入之。

〔두주〕분만이 임박하면 구두로 아뢰어 입진(入診)하기를 청한다. ○의관이 입진한 뒤로는 탕제를 의논하여 결정하면 아뢴 뒤에 조제하여 올리거나 달여서 올리는데, 이에 대해 텁교(榻教)를 내면 언문으로 써서 여준다. ○산실에 들이는 탕제에 넣는 인삼은 모두 나삼

31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羅夢)으로 들인다.

분만한 뒤(解娩後)³²

解娩後, 某殿宮, 今日某時刻, 誕生某阿只氏, 胞衣順下之意, 各殿宮 內殿, 諺書, 並即書啓.

분만한 뒤에는 ‘모 전궁에서 오늘 모 시각에 모 아기씨를 탄생하였고, 태반이 순조롭게 내려왔다.’고 각 전궁 내전에는 한글로 쓴다 애 함께 즉시 서계(書啓)한다.

○安胎次, 四耳內白缸一坐, 盖具, 卽令醫女入之, 而胎缸安於某方之意, 書啓于大殿當殿宮.

○태반을 안치하기 위한, 뚜껑이 있고 네 귀가 붙어있는 백자 항아리 1좌를 즉시 의녀로 하여금 들이게 하고, 태항아리를 모 방향에 안치한다고 대전과 해당 전궁에 서계(書啓)한다.

○護產官書員醫女詣差備門外, 以捲草出給之意微稟 無蓋函, 入之, 待奉出, 與次知內官眼同懸于懸草門.

○호산관·서원(書員)·의녀가 차비문 밖으로 나아가 권초(捲草)를 내어가겠다고 넘지시 아뢰고 뚜껑이 없는 함을 들인다. 받들어 나오기를 기다려 담당 내관과 함께 현초문(懸草門)에 거는 것을 안동(眼同)한다.

○大殿各殿宮, 三提調, 口傳問安, 三廳醫官, 單子問安, 護產官, 大殿當殿宮, 單子問安.

○대전과 각전궁에 대해 세 제조는 구전으로 문안하고, 삼청(三廳) 의관은 단자로 문안하며, 호산관은 대전과 해당 전궁에 단자로 문안한다.

○三提調請對入侍時, 提調以洗胎第三日依例爲之之意, 稟定. 或請承傳色, 入稟.

○세 제조가 청대(請對)하여 입시했을 때 제조가 ‘아기씨가 태어난 지 3일째에

32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규례대로 세태(洗胎)를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품정(稟定)한다. 혹은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입품(入稟)하기도 한다.

○移直草記.

○장소를 옮겨 직숙하겠다고 초기한다.

○乾古刀魚三十箇. 書中宮殿進上, 提調監封, 入紙囊, 盛木盤.

○건고도어(乾古刀魚)³³ 30개. '중궁전에 진상한다.'라고 쓴다. 제조가 검사하고 봉한 뒤에 종이주머니에 넣고 나무 소반에 담는다.

●已上, 並解婉日舉行. 虎頭, 知委.

●이상은 모두 분만일에 거행한다. 호랑이 머리뼈를 준비하라고 명령·고지한다.

[頭註] 庚戌己巳丁亥洗胎, 因下教第七日爲之.

[두주] 경술년(정조14, 1790), 기사년(순조9, 1809), 정해년(순조27, 1827)의 세태는 하교에 따라 탄생한 지 7일째에 하였다.

[頭註] 入侍時, 捲草官引儀齋宿於闕中事, 筵稟. ○或請承傳色, 入稟.

[두주] 입시할 때 권초관(捲草官)과 인의(引儀)가 궐 안에서 재계하고 직숙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 ○혹은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입품하기도 한다.

[頭註] 移直草記中, 昌德宮, 每以司饔院, 而景福宮, 則思政門近處事, 入啓.

[두주] 장소를 옮겨 직숙하겠다는 내용의 초기 중에 창덕궁은 매번 사옹원으로, 경복궁은 사정문(思政門) 근처로 이직하겠다고 입계한다.

[頭註] 解婉後七日內值日次, 則元啓辭中, 不書各殿, 只書聖體若何, 中宮殿元子宮氣候, 而各殿則, 口傳問安. ○若值昨日洗浴時, 則以元子洗浴萬安措辭.

[두주] 분만한 뒤 7일 이내에 날짜가 규정된 일차문안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원계사(元啓辭) 안에 각 전에 대해 쓰지 않고, 다만 성상의 옥체가 어떠한지와 중궁전과 원자궁(元子宮)

33 건고도어(乾古刀魚) : 건고도어(乾古刀魚)는 말린 고등어로 보기도 하고 가쓰오부시로 보기도 한다.

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만 쓰며, 각 전에 대해서는 구전으로 문안한다. ○만약 세욕(洗浴)한 때가 어제였다면 ‘원자께서 세욕 후에 매우 평안합니다.’라고 글을 쓴다.

[頭註] 解娩前, 或有別入直醫官加差下事, 筵稟, 而解娩後, 亦有三廳醫官中, 小兒醫御醫差下, 使之輪回入直事, 筵稟.

[두주] 분만 전에 혹 별입직(別入直)할 의관을 더 차하(差下)할 일이 있으면 연석에서 아뢴다. 분만 뒤에도 또한 삼청(三廳) 의관 중에 소아의(小兒醫)와 어의(御醫)를 차하하여 돌아가면서 입직하게 하겠다고 연석에서 아뢴다.

세 제조(三提調)³⁴

三提調自當日至七日朝, 大殿, 朝夕啓辭, 各殿宮, 朝夕口傳問安, 二三七及百日, 並同一七, 護產官自當日至七日朝, 大殿當殿宮, 朝夕問安, 二三七及百日, 並同一七, 三廳醫官當日至一二三七日及百日, 並各殿宮, 問安. 元子誕降時, 自當日朝夕啓辭, 亦有元子宮, 問候, 護產官三廳醫官, 一二三七日及百日, 亦元子宮, 問安.

세 제조는 분만 당일부터 7일째 아침까지 대전(大殿)에는 조석으로 계사(啓辭)하고, 각 전궁에는 조석으로 구전 문안하며, 14일과 21일 및 백일에는 7일과 동일하게 한다. 호산관(護產官)은 분만 당일부터 7일째 아침까지 대전과 해당 전궁에 조석으로 문안하고, 14일과 21일 및 백일에는 7일과 동일하게 한다. 삼청(三廳) 의관은 분만 당일부터 7일 · 14일 · 21일 및 백일에 모두 각 전궁에 문안한다. 원자가 탄생했을 때에는 당일부터 조석으로 계사하고, 또한 원자궁(元子宮)에 문후한다. 호산관과 삼청 의관은 7일 · 14일 · 21일 및 백일에 역시 원자궁에 문안한다.

○世子嬪宮解娩時, 三提調, 各殿宮, 口傳問安, 仍自當日至七日朝, 大殿世子宮, 朝口啓, 當宮, 朝夕口傳問安, 一二三七日及百日, 並同當日, 而各殿宮問安, 護產官自當日至七日朝, 當宮, 朝夕問安, 二三七日及百日, 並同一七, 而三廳醫官問安, 並如上例事. 元孫誕降時, 自當日口啓, 亦元孫宮問候, 護產官三廳醫官, 並如元子誕降時例而問安.

34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세자빈궁이 분만했을 때에 세 제조는 각 전궁에 구전으로 문안하고, 당일부터 7일째 아침까지 대전과 세자궁에 아침으로 구계(口啓)하고, 해당 궁에 조석으로 구전으로 문안한다. 7일 · 14일 · 21일 및 백일에는 모두 출산 당일과 동일하게 각 전궁에 문안한다. 호산관은 당일부터 7일째 아침까지 해당 궁에 조석으로 문안한다. 14일과 21일 및 백일에는 7일과 동일하게 한다. 삼청(三廳) 의관의 문안도 모두 위의 예와 같이 한다. 원손(元孫)이 탄생했을 때에는 당일부터 구계하고, 원손궁(元孫宮)에도 역시 문후한다. 호산관과 삼청 의관은 모두 원자가 탄생했을 때의 예와 같이 문안한다.

○元孫誕降時外，無請對之例。

○원손이 탄생할 때 이외에는 청대(請對)하는 예가 없다.

목욕(洗浴)³⁵

洗浴，第三日爲之奏時，改貼時例，前一日，護產官以某時推擇，當取某方水，而洗浴謹慎之意，及洗浴湯煎次，水出給之意，並書啓于大殿當殿宮。汲水所盛次，陶東海同入。

세욕(洗浴)은 분만 3일째에 하는데 시각을 아뢰는 것은 산도를 개첩(改貼)할 때의 예와 같이 한다. 하루 전날에 호산관이 ‘모 시를 가려 뽑아 모 방향의 물을 가져다가 신중하게 세욕할 것이고, 세욕에 사용할 물을 끓이기 위해 물을 내어 오겠습니다.’라고 아울러 써서 대전과 해당 궁전에 서계한다. 물을 길어다 담기 위하여 도기로 만든 동이도 함께 들인다.

○當日吉時前，三提調以洗浴謹慎之意，口啓。元子元孫誕降時，亦以保護詳審之意添，措辭。

○당일 길한 시각 이전에 세 제조가 신중하게 세욕하겠다고 구계(口啓)한다.

원자나 원손이 탄생했을 때에도 역시 잘 보호하고 자세히 살피겠다는 뜻을 더해 문서를 작성한다.

○當殿宮洗浴次，陳艾湯水，二陶所羅紙蓋覆，書某殿宮洗浴次，白正布白苧布各三尺各周封書當殿宮手巾次，某布三尺，只謹封，陳艾二編帶封，書陳艾二編，只謹封，阿只氏洗浴次，

35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李根, 梅根, 桃根, 虎頭骨一部, 同煎水, 和豬膽汁一部, 盛鑑東海一坐 紙蓋覆, 書阿只氏洗浴次, 白絹三尺 封書式, 如上布苧例, 並時刻前入之, 而大殿當殿宮, 以洗浴水棄汝某方事, 書啓同入.

○해당 전궁의 세욕(洗浴)을 위해 묵힌 쪽으로 끓인 물 2도소라(陶所羅)³⁶ 종이로 만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모 전궁의 세욕을 위한 것.’이라고 쓴다. 백정포(白正布)와 백저포(白苧布) 각 3척 각각 가장자리를 두루 봉하고 ‘해당 전궁을 닦을 수건의 용도로 사용하는 백정포 3척과 백저포 3척.’이라고 쓰고 단지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묵힌 쪽 2두릅 떠로 싸서 봉하고 ‘묵힌 쪽 2두릅.’이라고 쓰고, 단지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아기씨의 세욕을 위해 오얏나무 뿌리, 매화나무 뿌리, 복숭아나무 뿌리, 호랑이 머리뼈 1부를 섞어 물에 넣어 끓이다가 돼지쓸개 즙 1부를 타서 놋동이 1좌에 담고 종이로 만든 뚜껑을 덮고 ‘아기씨의 세욕을 위한 것.’이라고 쓴다. 흰 명주 3척 봉합하고 쓰는 형식은 위의 백정포와 백저포의 예와 같다 을 모두 정해진 시각 이전에 들이고, 대전과 해당 전궁에 세욕한 물을 아무개 방향으로 버리겠다고 서계하여 함께 들인다.

○傳纏次, 鏡面朱砂·石雄黃各一兩重一塊, 各封入之. 封書傳纏次, 鏡面朱砂一塊, 石雄黃, 封式同.

○햇줄을 묶기 위해 경면주사(鏡面朱砂)와 석웅황 각각 1냥쯤 무게의 한 덩이를 각각 봉해서 들인다. 봉하고 ‘햇줄을 묶기 위한 경면주사 한 덩이.’라고 쓴다. 석웅황에 대해 봉하고 쓰는 형식도 같다.

○洗浴後, 卽時以當殿宮及阿只氏, 洗浴後氣候平安之意, 皆爲書啓事. 若值元書啓時, 則兼爲措辭入之.

○세욕한 뒤에 즉시 ‘해당 전궁과 아기씨가 세욕한 뒤에 몸 상태가 평안합니다.’라고 써서 함께 서계한다. 만약 원서계(元書啓)할 때와 겹치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문장을 꾸려서 들인다.

36 도소라(陶所羅) : 도기로 된 소래기이다. 소래기는 운두(둘레, 높이)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점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으로, 독의 뚜껑이나 그릇으로 쓴다.

〔頭註〕近則中宮殿洗浴水，入盛鑑東海一坐，阿只氏洗浴水，入盛鑑大也一坐，各盛漆盤，而盤則還出。

〔두주〕근래에는 중궁전의 목욕물을 놋동이 1좌에 담아 들이고, 아기씨의 목욕물은 놋대야 1좌에 담아 들였는데, 각각 옷칠한 쟁반에 담아서 들이고 쟁반은 다시 가지고 나왔다.

〔頭註〕洗浴水煎次，鐵烽爐及銀鼎，本院待令。

〔두주〕목욕물을 끓이기 위한 철제 화로와 은으로 만든 솥은 내의원에서 대령한다.

〔頭註〕手巾次，布苧及白絹，入盛一盤。

〔두주〕수건으로 사용할 백정포와 백저포 및 백견(白絹)은 하나의 쟁반에 담아 들인다.

〔頭註〕朱砂石雄黃，提調監封，入盛一盤。

〔두주〕주사와 석용황은 제조가 조사하고 봉한 뒤에 하나의 쟁반에 담아 들인다.

태를 씻음(洗胎)³⁷

洗胎，第三日爲之奏時如上例。○或因下教，第七日爲之，前一日，護產官以某時推擇，當取某方水，而洗胎節次，及自內封標出給，則與次知內官舉行之意，書啓于大殿當殿宮。

태를 씻는 것은 분만 3일째에 한다. 시간을 아뢰는 것은 앞의 예와 같다. ○혹 하교에 따라 7일째에 하기도 한다 하루 전날 호산관이 ‘모 시를 가려 뽑아 모 방향의 물을 취했습니다. 태를 씻는 절차 및 대내(大內)에서 봉표(封標)하여 물품을 내어주면 담당 내관과 함께 거행하겠습니다.’라고 대전과 해당 전궁에 서계한다.

○洗胎時，物種見日記，而甘糖則使工曹匠人，預爲作片待令，前一日夕入之，而當日醫女先入舉行。

○태를 씻을 때의 각종 물품 일기에 보인다. 옛은 공조 소속 장인으로 하여금 미리 조각을 내어 대령하게 한다 은 하루 전날 저녁에 들이는데, 당일에 의녀가 먼저 들어와서 거행한다.

37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當日時刻前，大殿當殿宮，以洗胎水棄汎某方之意，書啓，又封裹物種，護產官以下領入，舉行事。物種及封裹式，見日記。

○태를 씻는 당일 정해진 시각 이전에 대전과 해당 전궁에 세태(洗胎)한 물을 아무개 방향으로 버리겠다고 서계한다. 또 각종 물품을 봉과(封裹)하고 호산관 이하가 가지고 들어와 거행한다. 각종 물품과 봉과하는 방식은 일기에서 보인다.

〔頭註〕洗胎物種，近日則當日持入。

〔두주〕태를 씻을 때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근래에는 당일에 들인다.

〔頭註〕今日某時洗胎之意，真諺書啓。

〔두주〕오늘 모 시에 태를 씻겠다고 한문과 한글로 서계한다.

운모고(雲母膏)³⁸

雲母膏 一種子 盖紙 書雲母膏，藍紬 一尺 封書藍綿紬一尺，只謹封，第三四日間入之，而以阿只氏臍帶解胎後付貼次入之之意，書啓事。

운모고 1종지기 종이로 만든 뚜껑에 ‘운모고’라고 쓴다. 남색 명주 1척 봉하고 ‘남색 명주 1척.’이라고 쓰고, 단지 ‘삼가 봉합니다.’라고만 쓴다 을 분만 후 3일이나 4일째 사이에 들이는데, ‘아기씨의 탯줄이 배꼽에서 떨어진 후에 붙이기 위하여 들입니다.’라고 서계한다.

〔頭註〕入盛一盤。

〔두주〕하나의 쟁반에 담아 들인다.

권초제(捲草祭)³⁹

捲草祭，第七日爲之 奏時如上例，捲草官及引儀二人，二日齋宿於本院之意，前期微稟。

38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39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권초제는 분만 후 7일째에 한다. 시간을 아뢰는 것은 앞의 예와 같다 권초관(捲草官)과 인의(引儀) 2인이 이틀 동안 내의원에서 재계·직숙하겠다고 기일에 앞서 넘지 시 아뢴다.

○捲草日, 培從各司, 預爲分付事. 內資寺官員一員捧甘該寺. ○女阿只氏, 內瞻寺. ○部將二員, 騎馬一匹, 鞍具, 引路軍二名, 奉炬軍六名, 扶囑軍二名, 及儀仗軍, 並捧甘兵曹, 負函抄奴, 具鮮明服色, 捧甘廚院, 大中炬六炳, 捧甘工曹, 樂工等, 捧甘掌樂院.

○권초하는 날 배종(陪從)하는 각 관청에 미리 분부한다. 내자시의 관원 1인이 해당 시(寺)에 각각 감결을 전한다. ○여자 아기씨의 경우에는 내섬시(內瞻寺)에서 맡는다. ○부장 2원, 기마 1필, 안장, 인로군 2명, 봉거군 6명, 부촉군 2명 및 의장군은 모두 병조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는다. 함을 지도록 선발된 노비는 선명한 복색을 갖추는데 사용원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는다. 큰 햇불과 중간 햇불 6자루는 공조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고, 악공 등은 장악원에 감결을 전하여 지원을 받는다.

○前一日, 以某時推擇依例舉行之意, 書啓.

○하루 전날에 모 시를 가려 뽑아 규례대로 거행하겠다고 서제한다.

○捲草祭物種 見日記, 各其司官員領納, 提調監捧 葉紙書某物, 而古道里封, 臣謹封, 當日入之.

○권초제의 각종 물품은 일기에 보인다 각 관청의 관원이 가지고 와서 바치고, 제조가 조사하고 봉하여 엽지(葉紙)에 '어떤 물건.'이라고 쓰되, 고도리(古道里)⁴⁰를 봉한 것에는 '신 아무개가 삼가 봉합니다.'라고 쓴다 권초제 당일에 들인다.

○封裹物種. 見日記.

○봉과(封裹)하는 각종 물품. 일기에 보인다.

○當日時刻前, 捲草官以下 三提調, 依下教入參, 入詣產室, 鋪陳後行, 祭法及封裹後, 陪行節次, 並詳見事例. ○所入物種, 並不出.

40 고도리(古道里) : 고도리(古道里)는 앞에 나온 건고도어처럼 말린 고등어로 보기도 하고 가쓰오부시로 보기도 한다.

○권초제 당일 정해진 시각 이전에 권초관 이하가 세 제조는 하교에 따라 참석한다 산실에 들어와 제물을 진설한 뒤에 거행한다. 제사지내는 법과 봉과(封裹)한 뒤의 배행하는 절차는 모두 사례에 자세히 보인다. ○들이는 각종 물품도 모두 서술하지 않는다.

○祭罷後, 三提調依例撤直, 護產官姑爲仍留之意, 口啓事. 護產官仍直, 則只翌日行當宮殿問安. ○二七三七百日同, 而待令醫女同.

○권초제가 끝나면 ‘세 제조는 규례에 따라 직숙을 거두고, 호산관은 당분간 그대로 남아 직숙하겠습니다.’라고 구계(口啓)한다. 호산관이 그대로 직숙하면 단지 권초제를 끝낸 다음날에만 해당 전궁에 문안한다. ○14일과 21일 및 백일에도 같고 대령의녀(待令醫女)도 마찬가지이다.

○三提調來待, 啓辭. 戊午入侍時, 都提調元子宮供上, 本院各種依例入之事, 篓稟. ○七日後, 卽時安神丸一劑製入, 而封入時, 依例製入之意, 微稟.

○세 제조가 와서 대령하다가 계사(啓辭)한다. 무오년(철종9, 1858) 입시했을 때에 도제조가 ‘원자궁에 공상하는 내의원의 각종 물품을 규례대로 들였습니다.’라고 연석에서 아뢰었다. ○7일 뒤에 즉시 안신환 1제를 지어 들이고, 봉입(封入)할 때에 규례대로 들였다고 넘지시 아뢰었다.

〔頭註〕捲草陪進門, 稟後當日預開待令事, 分付結束色.

〔두주〕권초(捲草)를 배진(陪進)하는 문을 여준 뒤에 당일에 미리 열어서 대령하라고 결속색(結束色)에게 분부한다.

〔頭註〕捲草陪進, 以何門爲之, 掌務官詣差備, 前期微稟.

〔두주〕권초를 배진하는 문을 어떤 문으로 할지를 장무관(掌務官)이 차비문에 나아가 기일 이전에 넘지시 아뢴다.

〔頭註〕捲草官引儀, 每齋宿於闕中他司, 而亦別省記.

〔두주〕권초관과 인의(引儀)가 매번 대궐 안의 다른 관사에서 재계·직숙하면 역시 별도로 생기(省記)한다.

〔頭註〕某時捲草之意，書啓。

〔두주〕모 시에 권초제를 거행하겠다고 서계한다.

〔頭註〕捲草祭時，三提調入參事及殿庭用樂，以司謁微稟。

〔두주〕권초제를 거행할 때 세 제조가 입참하는 것과 궁궐 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yal(司謁)을 통해 넘지시 아뢴다.

〔頭註〕牛黃膏，第三日製入，安神丸，第七日製入之例，而戊辰五月產室廳進排物種裁減草記，特依雲峴宮所教，待下教入之事，定式。

〔두주〕우황고는 분만 후 3일째에 지어서 들이고, 안신환은 7일째에 만들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무진년(고종5, 1868) 5월 산실청에 배설하는 각종 물품을 줄이겠다고 초기(草記)했을 때에 특별히 운현궁의 지시에 따라 하교를 기다려 들이는 것을 정식으로 삼게 되었다.

별단(別單)⁴¹

別單，待下教入之事。

별단은 하교를 기다려 들인다.

三提調一張，別入直幾張隨時，捲草官一張，史官一張，待令醫官·別掌務官·別入直醫官·元掌務官，合一張，待令書員·醫女·水工 卽研未使令·軍士諸員，合一張，本院三廳元入直已上，元入直六日·內醫別入直已上輪回別入直，合一張，各色書員一張，內資官員及各該司員役，合一張已上，自本院修入，引儀·擇日官·奏時官·寫字官·樂工等，已上五張，自各該司書來，本院捧入。

세 제조는 1장에, 별입직(別入直)은 몇 장에 때에 따라 다르다. 권초관(捲草官)은 1장에, 사관(史官)은 1장에, 대령의관(待令醫官)·별장무관(別掌務官)·별입직의관(別入直醫官)·원장무관(元掌務官)은 합하여 1장에, 대령서원(待令書員)·의녀·수공(水工) 곧 연말사령(研末使令)이다·군사 등의 인원은 합하여 1장에, 본

41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원과 삼청(三廳)의 원입직(元入直)과 이상은 원입직을 6일간 한다 내의의 별입직(別入直) 이상은 돌아가면서 별입직한다 은 합하여 1장에, 각 색의 서원(書員)은 1장에, 내자시 관원 및 해당 각 관사의 원역(員役)은 합하여 1장에 작성한다. 이상은 내의원에서 정리하여 들인다 인의(引儀), 택일관(擇日官), 주시관(奏時官), 사자관(寫字官), 악공 등은(이상은 5장이다) 해당 각사에서 써서 보내오면 본원에서 봉입(捧入)한다.

世子嬪宮產室時，侍講院書啓，自該院入之。近則三提調一張，別入直幾張，捲草官一張，史官二員一張，待令醫官四員·別掌務官一員·別入直醫官三員，一張，待令書員四人·醫女二名·研末使令二名·軍士四名·司僕諸員五名，一張，御醫·內醫·上下掌務官，一張，藥色二人·掌務色二人·入番書員·使喚書員·庫直使令·軍士·童便軍士·近仗軍士·官使喚，一張，畫員·寫字官，一張，捲草陪進時，內資寺官員一員·清道部將二員·負函抄奴一名·扶囑軍二名·引路軍二名·奉炬軍六名，一張，已上自本院修入，引儀·擇日官·奏時官·樂工，自各該司書來，本院捧入。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에는 시강원(侍講院)에서 서계하는데, 해당 원에서 들인다. 근래에는 세 제조는 1장에, 별입직은 몇 장에, 권초관은 1장에, 사관 2원은 1장에, 대령의관 4원·별장무관 1원·별입직 의관 3원은 합하여 1장에, 대령서원 4인·의녀 2명·연말사령 2명·군사 4명·사복시 제원 5명은 합하여 1장에, 어의·내의·상하의 장무관은 합하여 1장에, 약색(藥色) 2인·장무색(掌務色) 2인·입번서원(入番書員)·사환서원(使喚書員)·고직사령(庫直使令)·군사·동변군사(童便軍士)·근장군사(近仗軍士)·관사환(官使喚)은 합하여 1장에, 화원(畫員)·사자관(寫字官)은 합하여 1장에 작성한다. 권초를 배진(陪進)할 때에는 내자시 관원 1원·정도부장(清道部將) 2원·함을 짊어지는 노비 1명·부축군(扶囑軍) 2명·인로군(引路軍) 2명·봉거군(奉炬軍) 6명은 합하여 1장이다.(이상은 본원에서 정리하여 들인다) 인의(引儀)·택일관(擇日官)·주시관(奏時官)·악공은 각 해당 관사에서 써서 보내면 본원에서 봉입(捧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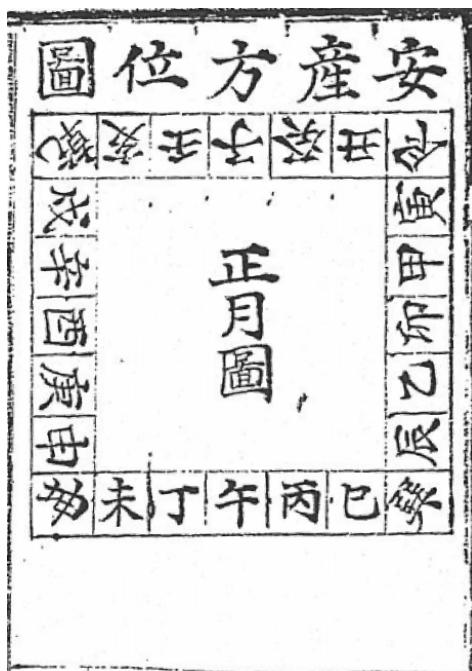
[頭註] 捲草陪進日，早朝待令，負函抄奴一名，扶囑軍二名，引路軍二名，奉炬軍六名等處，足巾次，白木二疋，自差備先爲賜給，而一疋負函抄奴，一疋則扶囑軍等十名分處。

[두주] 권초를 배진(陪進)하는 날에 이른 아침부터 대령하는 함을 짊어지는 노비 1명, 부축군 2명, 인로군 2명, 봉거군 6명 등에게 벼선으로 사용할 무명 2필을 차비문에서 미리 지급하는데, 1필은 함을 짊어지는 노비에게, 1필은 부축군 등 10명에게 나누어 준다.

산도, 최생부, 차지법(產圖及催生符借地法)⁴²

產圖及催生符借地法，並以朱書，產母房內北壁上先貼產圖，次貼催生符，次貼借地法，讀借地法三遍而止。紙用草注紙，方一尺一寸，以朱砂印出。○板在本院。

산도(產圖), 최생부(催生符), 차지법(借地法)은 모두 붉은 글씨로 쓴다. 산모의 방 안 북쪽 벽 위에 먼저 산도를 붙이고, 다음에 최생부를 붙이며, 다음에 차지법을 붙인다. 차지법을 세 번 읽고 마친다. 종이는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는데 사방 1척 1촌으로, 주사로 인출(印出)한다. ○인판은 본원에 있다.



안산방위도(安產方位圖)

凡逐月安產藏胎衣，並向月德月空方位，所有十三神殺，並須避忌，若交得次月，即換次月產圖，有人從入節日作產圖者，非也，假如正月十四日立春，若姪婦十三日臥乳，豈可作去年十二月用也，必依每月朔

42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日用之乃是，若依節氣更換，則天德月德所在差矣。○凡產訖，棄汙穢不淨之水，並隨藏衣之方所向，不拘遠近棄之，切忌閉肚方。○如正月，月德在丙，可安產室，月空在壬，可藏胎衣，後倣此。

무릇 매달 분만실의 방향은 월덕(月德)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태반을 보관하는 방향은 월공(月空)의 방위로 향하게 하여 13개의 신살(神殺)을 모두 피한다. 만약 산달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즉시 다음 달의 산도로 바꾸어야 한다. 혹자는 절기에 드는 날을 기준으로 산도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가령 정월 14일이 입춘인데 임산부가 13일에 분만한 뒤에 누워서 젖을 먹인다면 어찌 작년 12월의 것을 쓸 수 있겠는가. 반드시 매월 초하루의 것을 써야만 옳다. 만약 절기에 따라서 바꾸게 된다면 천덕(天德)과 월덕의 소재와 어긋나게 된다. ○무릇 분만이 끝난 뒤에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벼릴 때는 원근을 따지지 않고 태반을 묻는 방향을 따르되, 폐두방(閉肚方)은 절대로 피한다. ○가령 정월이라면 월덕이 병(丙) 방향에 있으니 분만실을 병 방향으로 정할 수 있고, 월공은 임(壬) 방향에 있으니 태반을 임 방향에 보관할 수 있다. 나머지 달도 이와 같다.

安產藏胎衣吉方。凡月德安產室，月空藏衣爲準。

분만실의 길한 방향과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 무릇 월덕(月德)의 방향에 분만실을, 월공(月空)의 방향에 태반을 묻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천덕(天德)	월덕(月德)	월공(月空)	생기(生氣)
정월(正月)	정(丁)	병(丙)	임(壬)	자(子)
2월(二月)	곤(坤)	갑(甲)	경(庚)	축(丑)
3월(三月)	임(壬)	임(壬)	병(丙)	인(寅)
4월(四月)	신(辛)	경(庚)	갑(甲)	묘(卯)
5월(五月)	건(乾)	병(丙)	임(壬)	진(辰)
6월(六月)	갑(甲)	갑(甲)	경(庚)	사(巳)
7월(七月)	계(癸)	임(壬)	병(丙)	오(午)
8월(八月)	간(艮)	경(庚)	갑(甲)	미(未)
9월(九月)	병(丙)	병(丙)	임(壬)	신(申)
10월(十月)	을(乙)	갑(甲)	경(庚)	유(酉)
11월(十一月)	순(巽)	임(壬)	병(丙)	술(戌)
12월(十二月)	경(庚)	경(庚)	갑(甲)	해(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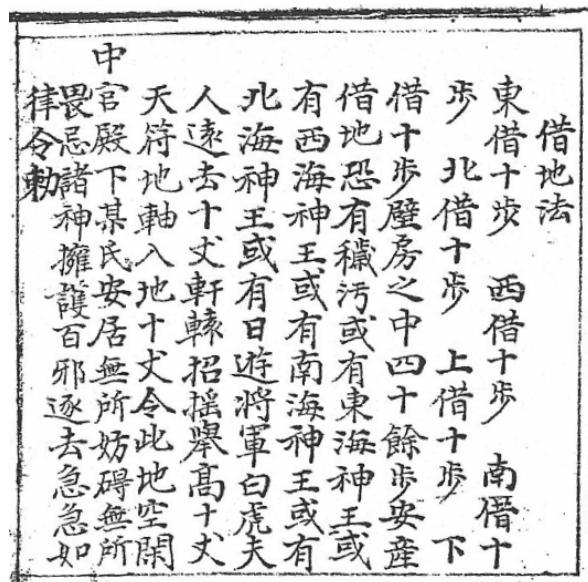
최생부(催生符)

右符，以朱砂書之，貼於方內北壁上，遇坐草之時，筭於針上，就燈燒之，不得飛揚，溫水調服。○紙用草注紙，長九寸，廣三寸，以朱砂印出。○板在本院。○產圖催生符，並印出。

위의 부적은 주사로 써서 방 안의 북쪽 벽 위에 붙인다. 분만이 시작되면 부적을 떼어 바늘로 찌른 뒤에 등잔불에 태우되, 그 재를 날려버리지 말고 따뜻한 물에 타서 임산부가 마신다. ○종이는 조주지(草注紙)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9촌이고 폭은 3촌으로, 주사로 인출(印出)한다. ○인판은 본원에 있다. ○산도와 최생부와 함께 인출한다.

〔頭註〕 簮於鍼上，就燈燒之，溫水調服之法，醫方所在，而不用此法。

〔두주〕 벽에 붙였던 부적을 떼어 바늘로 찌른 뒤에 등잔불에 태워 그 재를 따뜻한 물에 타서 임산부가 마시는 방법은 의서에 있기는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차지법(借地法)

借地法。東借十步，西借十步，南借十步，北借十步，上借十步，下借十步，壁房之中，四十餘步，安產借地，恐有穢污，或有東海神王，或有西海神王，或有南海神王，或有北海神王，或有日遊將軍，白虎夫人，遠去十丈，軒轅招搖，舉高十丈，天符地軸，入地十丈，令此地空閑，中宮殿下某氏安居，無所妨礙，無所畏忌，諸神擁護，百邪逐去，急急如律令勅。

차지법. 동쪽으로 10걸음, 서쪽으로 10걸음을, 남쪽으로 10걸음을, 북쪽으로 10걸음을, 위로 10걸음을, 아래로 10걸음을, 방의 가운데 40여 걸음의 땅을 안산을 위해 벌립니다. 혹여 오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혹 동해신왕이나 서해신왕이나 남해신왕이나 북해신왕이나 일유장군이나 백호부인이 계신다면 멀리 10길 밖으로 떠나시고, 현원초요는 10길 높이로 오르시며, 천부지축은 10길 깊이로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땅을 비워 중궁전하 모씨가 편안히 거처하여 방해가 없고 두려움이 없도록 모든 신령께서 보호하여 온갖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시기를 마치 율령이 내려진 듯 급하게 하소서.

以朱砂書之，字樣如綱目小字大，紙用草注紙，方一尺一寸。

주사로 쓰는데, 글자의 모양은 《자치통감강목》의 작은 글자 크기로 한다. 용지는 초주지를 사용하는데 사방 1척 1촌이다.

已上產圖催生符借地法, 北壁子方下, 次次付之. 產室房內, 泛鐵先定二十四方位, 而每方位字, 分排付之于班子下.

이상의 산도와 최생부와 차지법은 분만실 북쪽 벽의 자(子) 방향 아래 차례대로 붙인다. 분만실 안에 범철관(泛鐵官)이 먼저 24방위를 정하고, 각 방위에 해당하는 글자를 반자(班子)⁴³ 아래에 나누어 붙인다.

二十四方位字  . 草注紙, 方一寸七分, 以朱砂斜方書之, 字樣如產圖.

24방위에 해당하는 글자는  와 같은 모양으로 쓴다. 초주지를 사용하는데 사방 1촌 7푼이고, 주사로 마름모꼴로 쓰는데 글자의 모양은 산도와 같게 한다.

安產室吉方. 草注紙, 長八寸廣二寸五分, 以朱砂書之, 字樣如產圖字.

분만실의 길한 방향. 초주지를 사용하는데 길이 8촌, 너비 2촌 5푼으로, 주사로 쓰는데 글자의 모양은 산도의 글자와 같게 한다.

藏胎衣吉方. 上同.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 위와 같다.

命白米 十斗式, 葉紙十張, 命絹 十疋, 命紬 十疋, 命白絲 十斤, 命正銀 一百兩, 葉紙各一張 草注紙, 長一尺廣一寸五分, 以墨書之 ○已上, 並令寫字官書之.

명백미 10말씩⁴⁴, 엽지 10장, 명견 10필, 명주 10필, 명백사 10근, 명정은 100냥, 엽지 각 1장 초주지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1척, 너비는 1촌 5푼으로, 먹으로 쓴다 ○이상은 모두 사자관(寫字官)에게 쓰게 한다.

43 반자(班子) :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천장이다. 김호.

44 물명에 모두 ‘목숨 명(命)’을 붙여 장수를 기원한 것이다.

房中日遊神所在。癸巳甲午乙未丙申丁酉日在房內北。○癸卯日在房內西。
 ○甲辰乙巳，丙午丁未日在房內東。○六戊六巳日在房中。○庚子辛丑壬寅日在房內南。○凡遊神所在，忌安床換帳致重物於床中，必主傷產墮胎。○自觀象監真諺書來，而作貼裹狀等節，並同本院貼冊。產室排設日及每月晦日，依例書入。

방 안에 일유신(日遊神)이 있는 곳 계사·갑오·을미·병신·정유 일에는 방 안의 북쪽에 있다. ○계묘일에는 방 안의 서쪽에 있다. ○갑신·을사·병오·정미일에는 방 안의 동쪽에 있다. ○여섯 번의 무일과 여섯 번의 사일에는 방 가운데 있다. ○경자·신축·임인일에는 방 안의 남쪽에 있다. ○무릇 떠도는 신령이 있는 곳에는 침상을 두거나 휘장을 바꾸는 것을 꺼리고 침상 가운데에 무거운 물건을 두는 것을 꺼리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산모가 상하여 태아가 떨어진다 ○관상감(觀象監)에서 한문과 한글로 써서 보내는데, 첨책(貼冊)을 만들고 보자기에 싸는 등의 절차는 모두 내의원의 첨책과 같은 양식으로 한다.
 산실을 배설(排設)하는 날과 매월 그믐에 관상감에서 규례대로 써서 들인다.

소용 물품 및 서식(所用 · 書式)⁴⁵

○배설시 소용 물목(排設時所用)

二十四方位字

產圖

催生符

借地法 又讀件一張

安產室吉方



유척 3촌
(鎰尺三寸)

⁴⁵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藏胎衣吉方 已上，同裹紅紬四幅袱
加莫金一箇
鹿皮馬轡一部 裹厚白紙半張
黃草五封 裹白紙
空石六立 七莖者
草席六立
羊毛氈二浮 裹厚白紙
油芭二浮 四張付。○或只用六張
白馬皮一領 裹厚白紙。○有耳者
鼴鼠皮二領 裹厚白紙。○或入櫃
生苧一斤 裹白紙
剪邊空石 一立 裹厚白紙。○二十一莖者，長三尺九寸，廣一尺七寸
長道里一箇
所串一箇
執介一箇
大登床一坐 塗朱
小登床一坐 塗朱
大書板一箇
糊桶一箇
大圓環二箇 一介殿前柱中懸鈴鑊所用，一介產室廳竹柱所鏡
銅絲 隨所入
紅綿絲三甲大所三把 殿前懸鈴鑊所入
雲梯一部 塗朱
架子二部
竹柱一箇
大鈴一箇 具紅條所。○已上二種，移設所用
笏記

24방위에 해당하는 글자,

산도,
최생부,
차지법 독본용으로 1장,
분만실의 길한 방향,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 이상은 함께 붉은 명주로 만든 4폭짜리 보자기에 쌌다.
가막쇠 1개
사슴가죽으로 만든 말고삐 1부 두꺼운 백지 반 장으로 쌌다.
황초 5봉 백지로 쌌다.
빈 가마니 6닢 7경(莖)으로 짠 것,
명석 6닢
양탄자 2부 두꺼운 백지로 쌌다.
기름먹인 방석 2부 4장을 붙인다. ○혹은 6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백마 가죽 1령 두꺼운 백지로 쌌다. ○귀까지 있는 가죽으로 한다.
날다람쥐 가죽 2령 두꺼운 백지로 쌌다. ○꿰에 넣기도 한다.
생 모시 1근 백지로 쌌다.
가장자리를 잘라낸 빈 가마니 1닢 두꺼운 백지로 쌌다. ○21경으로 짠 것으로, 길이는
3척 9촌, 폭은 1척 7촌이다.
장도리 1개,
송곳 1개,
집게 1개,
대등상 1좌 붉은 칠을 한다.
소등상 1좌 붉은 칠을 한다.
큰 서판 1개,
풀통 1개,
큰 등근 고리 2개 1개는 전궁 앞 기둥에 방울을 매다는 줄을 거는 용도이고, 1개는 산실청
대나무 기둥에 박는 용도이다.
구리 철사 장소에 따라서 들인다.
붉은 목화 실로 세 겹으로 꼳 큰 뱃줄 3발 전궁 앞에 방울을 매다는 줄에 들어간다.

구름사다리 1부 붉은 색을 칠한다.

가자 2부,

대나무 기둥 1개,

큰 방울 1개 붉은 줄바⁴⁶를 갖춘다. ○이상 두 가지 물품은 이설소에 소용되는 것이다.
홀기.

〔頭註〕借地法讀件，長道里·所串·執介·書板·糊桶·架子，並還出，而大小登床·雲梯，則後用次，別置於差備內。

〔두주〕차지법의 독본, 장도리, 송곳, 집개, 서판, 풀통, 가자는 모두 다시 돌려보내지만, 대등상, 소등상, 사다리는 이후에 쓰기 위해 차비문 안에 따로 둔다.

○현초문 행사에 소용되는 물목(懸草門所用)

三寸釘三箇

紅綿絲三甲大所一把 橫繫釘左右次

紅鄉絲三甲所一把式三条 各繫釘三處次

大登床

小登床

雲梯 已上三種，前排仍用

3촌짜리 못 3개,

붉은 목화실로 세 겹으로 꼰 큰 밧줄 1발 가로로 못의 좌우로 매기 위한 것이다.

국내산 붉은 명주실로 세 겹으로 꼰 밧줄 1발씩 3조 각각 3군데 못에 매달기 위한 것이다.

대등상(大登床),

소등상(小登床),

구름사다리. 이상의 세 종류 물품은 이전에 배설한 것을 그대로 쓴다

46 줄바 : 벗짚이나 삼 등으로 굽고 길게 드리운 줄

○다시 불일 때 소용되는 물품(改付貼時所用)

產圖

催生符

借地法

安產室吉方

藏胎衣吉方 已上, 同裹紅紬四幅袱

加莫金一箇 預備

長道里

所串

執介

大登床

小登床

書板

糊桶 已上七種, 前排仍用

歛髮竹

笏記

산도,

최생부,

차지법,

분만실의 길한 방향,

태반을 보관하는 길한 방향 이상은 함께 붉은 비단으로 만든 4폭짜리 보자기로 쌓다.

가막쇠 1개 예비용이다.

장도리,

송곳,

집게,

대등상,

소등상,

서판,

풀통 이상 7가지는 이전에 배설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살쩍밀이 대나무,
흘기.

〔頭註〕 長道里 · 所串 · 執介 · 書板 · 糊桶 · 斂髮竹, 並還出.

〔두주〕 장도리 · 송곳 · 집개 · 서판 · 풀통 · 살쩍밀이 대나무는 모두 다시 돌려보낸다.

○태반을 씻을 때 소용되는 물품(洗胎時所用)

香醞酒一瓶

古銅錢

油紙 依胎缸, 缸口稍大

藍綿紬 上同

外白缸

白綿花 裹白紙

草注紙 圓切, 依缸口稍大

甘糖 上同

紅木牌 具纓

四耳陶豆毛

常毛氈 二立

紅鄉絲 四耳陶豆毛所入

大陶豆毛

陶東海一坐

陶所羅一坐

瓢子一箇

白馬尾篩一部

火爐 實炭起火

火筋

手巾布一尺

擔桶一部 具杖

封標紙二条

着署紙二条

結封紙二条

硯 濡紙具

筆墨

糊桶

架子一部

筭竹一百箇

地依一浮

紅纓子三件 內白缸二件, 外白缸一件

木盤一

笏記

향온주 1병,

오래된 동전,

기름종이 태항아리에 따라 태항아리 입구보다 조금 크게 만든다.

남색 명주 위와 같다.

바깥 백자 항아리,

흰 솜 흰 종이로 짠다.

초주지 등글게 자르는, 항아리 입구보다 조금 크게 만든다.

엿 위와 같다.

홍목패 끈을 갖춘다.

4귀를 갖춘 도기 두명⁴⁷,

상모전 2닢,

국내산 붉은 실 4귀를 갖춘 도기 두명을 묶을 때에 사용된다.

큰 도기 두명,

47 두명 : 물을 담아 놓고 쓰는 큰 가마나 독

도기 동이 1좌,
도기 소래기 1좌,
표주박 1개,
백마의 꼬리로 만든 체 1부,
화로 숯불로 불을 지핀다.
부젓가락,
수건포 1척,
질통 1부 지팡이를 갖춘다.
봉표지 2조,
착서지 2조,
결봉지 2조,
벼루 적신 종이도 갖춘다.
붓과 먹,
풀통,
가자 1부,
산가지 100개,
지의 1부,
붉은 끈 3건 안쪽 백자 항아리에 2건, 바깥쪽 백자 항아리에 1건,
나무 쟁반 하나,
흘기.

〔頭註〕 古銅錢·油紙·藍綿紬·草注紙·紅木牌·紅鄉絲·手巾布·封標紙·着署紙·結封紙·筭竹·紅纓子，同裹紅木三幅袱·而入盛一盤.

〔두주〕 오래된 동전·기름종이·남색 명주·초주지·홍목패·국내산 붉은 실·수건포·봉표지·착서지·결봉지·산가지·붉은 끈은 붉은 목면으로 만든 3폭짜리 보자기에 함께 싸서 하나의 쟁반에 담아 들인다.

〔頭註〕 近則大陶豆毛不入用.

〔두주〕 근래에는 큰 도기 두명은 쓰지 않는다.

[頭註] 空瓶·火爐·火箸·擔桶·硯·筆墨·糊桶·架子·筭竹·地衣，並還出。

[두주] 빙·병·화로·부젓가락·질통·벼루·붓·먹·풀통·가자·산가지·지의는 모두
다시 돌려보낸다.

○권초제 때 소용되는 물목 및 봉과할 때 소용되는 물목(捲草祭時所用及封裹所用)

命白米

命絹

命紬

命白絲

命正銀

地衣 九張付

塗朱馬木 二坐

塗朱大板子 五立

畫邊油紙 六張

香案

鎰香爐 具火

鎰香盒具沈香

鎰燭臺 一雙

四兩黃燭 一雙

高足床

拜席 二立

鎰大也

手巾布一尺，捲草官

全漆函 紅鄉絲具

紅紬六幅袱 紅綿絲具

白苧帔 紅纓子具

紅紬 長三尺 二幅袱 紅纓子具

紅木牌 貝纓

紅紬五幅袱 覆函次, 紅纓子具

支機一部

紫的頭巾

紫的冠帶

色絛帶

靴子

着署紙四条

負函大紅 繼絲 条所 支機塗

結封紙 四条

硯

筆

墨

糊桶

架子五部

鎰火爐 實炭起火

火箸

地衣一浮

笏記

명백미,

명견,

명주,

명백사,

명정은,

지의 9장을 불인다.

붉은 색 칠한 말목 2좌,

붉은 색 칠한 큰 판자 5닢,

화변유지 6장,

향안,
놋향로 불도 갖춘다.
침향을 갖춘 놋향합,
놋촛대 1쌍,
4냥짜리 황촉 1쌍,
고족상,
배석 2닢,
놋대야,
수건포 1척, 권초관이 쓴다.
전칠함 국내산 붉은색 실을 갖춘다.
6폭 짜리 붉은색 명주 보자기 붉은색 목화실을 갖춘다.
흰 모시 포대 붉은색 끈을 갖춘다.
붉은색 명주 길이 3척 2폭짜리 보자기 붉은색 끈을 갖춘다.
홍목패 끈을 갖춘다.
5폭짜리 붉은색 명주 보자기. 함을 덮기 위한 것으로, 붉은색 끈을 갖춘다
지게 1부,
자주색 두건,
자주색 갓과 허리띠,
색깔이 있는 조대,
가죽신,
착서지 4조,
함을 질 때 쓰는 큰 붉은색 면사 줄바 지켓줄,
결봉지 4조,
벼루,
붓,
먹,
풀통,
가자 5부,

놋화로 숯불로 불을 지핀다.

부젓가락,

지의 1부,

홀기].

〔頭註〕 覆函次, 或用紅木五幅袱.

〔두주〕 함을 덮을 용도로 흑 5폭의 붉은 무명 보자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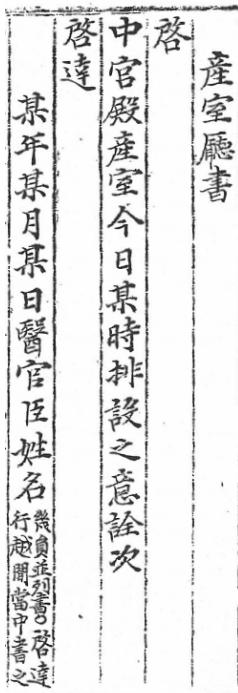
〔頭註〕 命白米十包, 入盛五架子, 而手巾布, 紅紬六幅袱, 白苧岱, 紅紬二幅袱, 紅木牌, 紅紬五幅袱, 負函大條所·着署紙·結封紙, 同裹紅木五幅袱.

〔두주〕 명백미 10포대는 가자 5부에 담고, 수건포(手巾布)는 6폭짜리 붉은색 명주 보자기에, 흰 모시 포대는 2폭짜리 붉은색 명주 보자기에, 흥목패(紅木牌)는 5폭짜리 붉은색 명주 보자기에 싸고, 함을 질 큰 줄바·착서지(着署紙)·결봉지(結封紙)는 5폭짜리 붉은 무명 보자기에 함께 짠다.

〔頭註〕 高足床·鑑大也·硯·筆·墨·架子·鑑火爐·火節·地衣, 並還出.

〔두주〕 고족상·놋대야·벼루·붓·먹·가자·놋화로·부젓가락·지의는 모두 다시 돌려보낸다.

○서계(書啓)의 양식 두꺼운 백지를 3절한다. ○한글로 쓴 서계에 대해서는 알았다[知道]는 전교를 내리시지 않는다. ○모든 서계는 대령별감(待令別監)이 들인다 (書啓式 厚白紙三切. ○諺書書啓, 不下知道. ○凡書啓, 待令別監入之.)



서계(書啓)의 양식(書啓式)

산실청의 서계

啓

中宮殿產室 今日某時 排設之意 詮次 啓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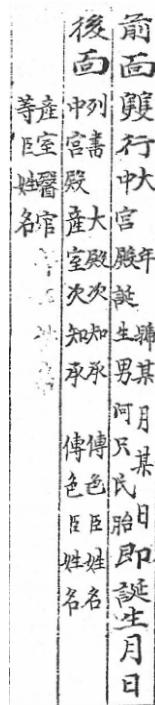
某年某月某日 醫官臣姓名 幾員並列書. ○啓達, 行越間, 當中書之.

산실청의 서계

중궁전의 분만실을 오늘 모 시에 배설하겠다고 전차하여 계달한다.

모년 모월 모일 의관인 신 아무개의 성명 여러 명을 모두 나열하여 적는다. ○‘계달(啓達)’은 행을 바꾸어 가운데에 적는다

○태항아리에 매다는 홍목패(紅木牌)의 서식 권초함(捲草函)에 매다는 패도 동일하나,
아기씨 아래의 ‘태(胎)’자를 없애고 ‘권초(捲草)’라고 적으며 뒷면에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胎缸紅木牌書式 捲草函牌同, 而阿只氏下去胎字, 書捲草, 無後面)



태항아리에 매다는 홍목패(紅木牌)의
서식(胎缸紅木牌書式)

前面雙行 大年號某月某日, 中宮殿誕生男阿只氏胎, 卽誕生日日.

앞면은 두 줄이니 청나라 연호와 모월 모일, 중궁전께서 탄생하신 남자 아기씨의 태 곤 탄생
한 날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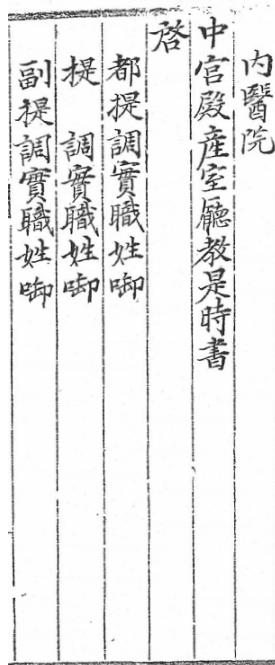
後面 列書大殿次知承傳色臣姓名, 中宮殿產室次知承傳色臣姓名, 產室醫官等臣姓名.

뒷면 대전의 담당 승전색(承傳色)의 성명, 중궁전의 담당 승전색의 성명, 산실 의관 등의 성명을
줄지어 적는다.

〔頭註〕 見下洗胎笏記頭註.

〔두주〕 아래의 태를 씻을 때의 홀기(笏記) 중 두주(頭註)에 보인다.

○별단 서계의 서식 저주지 반장을 4칸으로 나누고 10줄로 쓰는 단자이다 (別單書啓式
楮注紙半張, 四間十行, 單子)



별단 서계의 서식(別單書啓式)

內醫院

中宮殿產室廳教是時書

啓

都提調實職姓啣

提調實職姓啣

副提調實職姓啣

내의원 중궁전 산실청을 설치할 때의 서계

도제조의 실제 직함, 성, 이름

제조의 실제 직함, 성, 이름

부제조의 실제 직함, 성, 이름

○윤직할 때의 생기(省記) 병직할 때는 의관·별장무관·서원·군사에 대해 전원의 수를
생기하고, 군사를 생기한 아래에 제원 5명도 또한 생기한다 (輪直時省記 幷直時, 醫官·
別掌務官·書員·軍士, 全數省記, 而軍士下, 諸員五名, 亦爲省記)

侍 令 書 員 名 字 等 二 名	待 令 書 員 名 字 等 二 名	醫 女 名 姓 名 姓 名 姓 名	某 年 月 日 產 室 廳 省 記
---	---	---	---

윤직할 때의 생기(輪直時省記)

某年某月某日 產室廳省記

待令醫官姓名

姓名

待令書員姓名

姓名

醫女名

名

使令某等二名

軍士某等二名

모년 모월 모일 산실청 생기

대령의관의 성명

성명

대령서원의 성명

성명

의녀의 이름

이름

사령 아무개 등 2명

군사 아무개 등 2명

○ 말고삐 제조법(馬轡製法)

黃鹿皮一令，環而裁之。以黃鄉絲縫造，長則限六尺，而廣製後限二寸。

황색 사슴 가죽 1령을 등글게 자른다. 국내산 황색실로 페매어 만드는데, 길이는 6척으로 한정하고, 너비는 만들어진 뒤에 2촌으로 한정한다.

○ 해마와 석연자를 묶는 법(海馬石燕子結紐法)

海馬一雙 紅真絲三甲纓子，而長一尺二寸式，二条

해마 1쌍 붉은색 진사(真絲)를 세 겹으로 꼬아 만든 끈으로, 길이는 1척 2촌씩 2줄

石燕子一雙 紅真絲三甲纓子，而長一尺式，二条

석연자 1쌍 붉은색 진사(真絲)를 세 겹으로 꼬아 만든 끈으로, 길이는 1척씩 2줄

기타 필요한 물종(其他物種)⁴⁸

- 無蓋函 紅漆. ○長一尺八寸, 廣一尺, 高四寸
- 뚜껑없는 함 붉게 옷칠을 한다. ○길이 1척 8촌, 너비 1척, 높이 4촌
- 香案 長一尺一寸, 廣五寸, 高一尺
- 향안(香案) 길이 1척 1촌, 너비 5촌, 높이 1척
- 大登床 高三尺, 小登床 高一尺五寸
- 대등상(大登床) 높이 3척, 소등상(小登床) 높이 1척 5촌
- 大板子五立 卽祭床. ○每立, 長五尺, 廣五寸, 厚七分
- 큰 판자 5닢 즉 제상(祭床)이다. ○매 닭마다 길이 5척, 너비 5촌, 두께 7푼
- 馬木二坐 卽擇舖大板子五立次. ○每坐, 長二尺五寸, 高二尺二寸
- 말목(馬木) 2좌 즉 큰 판자 5닢을 지탱하여 평기 위한 것 ○매 좌마다 길이 2척 5촌, 높이 2척 2촌
- 紅木牌 外白缸所用. ○長三寸, 廣一寸三分. ○朱砂漆. ○捲草牌同.
- 홍목패(紅木牌) 바깥쪽 백자 태항아리에 사용된다. ○길이 3촌, 너비 1촌 3푼 ○주사로 칠한다. ○권초패(捲草牌)도 동일하다.

○배설(排設)할 때 소용되는 물종(排設所用物種)

- 啓目紙 楷注紙半張, 四間單子
- 계목지(啓目紙) 저주지(楷注紙) 반 장을 4칸으로 한 단자
- 醫官問安單子紙 厚白紙三切, 第四間末端, 醫官臣姓名, 列書.
- 의관이 문안할 때의 단자 종이 두꺼운 백지를 3절한다. 4번째 칸 말단에 의관인 신 아무개의 성명을 나열하여 적는다.

48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엿을 편으로 만드는 법(甘糖作片法)

甘糖一斤 作圓片, 如外白缸蓋, 而比缸口, 四面剩二分許. ○工曹銀匠.

엿 1근 등근 편으로 만들 때는 바깥쪽 백자 태항아리 뚜껑과 같게 만들되, 태항아리 입구에 비하여 4면에 2푼 쯤 남게 한다. ○공조(工曹)의 은장(銀匠)이 만든다.

○관문을 내는 서식(出關式)

爲相考事, 中宮殿產室廳教是時所用, 鼬鼠三箇, 必以新捉精乾, 頭足腹尾完全者, 今月某日內, 罔夜封進, 以爲及時入用之地云云. 江監. ○本院取用, 而若破傷, 則或十月令封進鼴鼠, 先爲上送事, 急急發關.

상고하라.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날다람쥐 가죽 3개는 반드시 새로 잡아 잘 다듬고 말린, 머리와 발 및 배와 꼬리가 완전한 것으로 이달 모 일 이내에 밤을 잊고 밭들어 올려 때맞추어 들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운운. 강감(江監)⁴⁹에 보낸다. ○본원에서 가져다 쓰되, 만약 부서지거나 상했다면 혹 10월에 봉진했던 날다람쥐 가죽을 우선 올려 보내라고 다급히 관문을 보낸다.

爲相考事, 中宮殿產室廳教是時所用, 虎頭一部, 必以新捕精乾者, 分娩教是後, 卽爲封進, 宜當云云. 畿營. ○當朔前出關, 又臨時分付.

상고하라.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호랑이 머리뼈 1부는 반드시 새로 잡아서 잘 다듬고 말린 것으로 준비하고, 분만하신 후에 즉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운운. 경기감영에 보낸다. ○산달 이전에 관문을 보내고, 또한 분만이 임박했을 때 또 분부한다.

爲相考事, 中宮殿產室廳教是時, 待令醫官及員役等, 依例供饋事草記, 允下爲有置, 醫官, 及員役等, 關後錄爲去乎, 到關, 卽爲磨鍊上下云云. 戶曹. ○後待令醫官幾員, 別掌務官壹員, 書員幾人, 醫女貳名, 水工貳名, 軍士肆名, 司僕諸員伍名印. ○排設日書送. ○撤直後, 醫官仍直, 則幾員幾人, 更爲移文. ○請直草記允下後, 供饋草記爲之.

49 강감(江監) : 용산강 가까이에 있던 군자감의 별장

상고하라.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대령의관(待令醫官) 및 원역(員役) 등에 대하여 규례에 의거하여 음식을 공궤(供饋)하라고 초기(草記)하여 윤허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의관 및 원역 등을 관문의 뒷면에 기록했으니, 관문이 도착하면 즉시 마련하여 치리주도록 하라 운운. 호조(戶曹)에 보낸다. ○관문의 뒷면에 대령의관 몇 원, 별장무관(別掌務官) 1원, 서원(書員) 몇 인, 의녀 2명, 수공(水工) 2명, 군사 4명, 사복시 제원 5명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배설하는 날에 적어 보낸다. ○직속을 거둔 뒤에 의관이 그대로 직속할 경우 근무하는 사람이 몇 원(員), 몇 인(人)인지를 다시 적어 공문을 보낸다. ○직속하겠다고 청한 초기에 대해 윤허가 내려진 뒤에 공궤에 관한 초기를 올린다.

爲相考事, 中宮殿產室廳教是時, 諸員伍名, 依例定送, 以爲使役之地, 云云. 司僕寺.
○每名, 每日一錢三分式, 一朔合三兩九爻式, 輸來, 排設日書送.

상고하라.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제원 5명을 규례에 의거하여 정하여 보내어 사역할 수 있게 한다 운운. 사복시에 보낸다. ○인원 각각에게 매일 1전 3푼씩, 한 달에 도합 3냥 9전씩 보낸다. 배설하는 날에 적어 보낸다.

爲輸送事, 今此產室廳教是時所用, 小小盒肆坐, 沙鉢甫兒楪匙鐘子各貳 竹椀伍箇, 飯鉢里瓶各貳坐, 乳朮貳箇, 依例輸送之地云云. 司饔院. ○過一朔, 則依此數更爲移文. ○當朔初一日, 藥物封入所用, 蜜朱砂小小盒一, 胡桃肉小小盒一, 白清沙鉢一, 留置. ○椀二, 甫兒·沙鉢·楪匙·鐘子 各五, 瓶一, 留用.

수송하라. 지금 이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가장 작은 합 4좌, 사발·보시기·접시·종자 각 2개, 주발 5개, 밥그릇과 이병(里瓶) 각 2좌, 유발(乳鉢) 2개를 규례에 의거하여 수송하도록 하라 운운. 사용원에 보낸다. ○한 달이 지나면 이 숫자에 의거하여 다시 공문을 보낸다. ○산달 초하루에 약물을 봉입할 때 소용되는 밀주사(蜜朱砂)를 담는 가장 작은 합 1개, 호도육(胡桃肉)을 담는 가장 작은 합 1개, 백청(白清)을 담는 사발 1개는 그대로 남겨둔다. ○주발 2개, 보시기·사발·접시·종자 각 5개, 병 1개는 남겨 사용한다.

爲輸送事, 產室廳教是時所用, 延日礪石一塊, 擇其柔軟者, 依例輸送云云. 軍器寺.
수송하라.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연일(延日)에서 나는 숫돌 한 덩어리는 유연한 것을 골라 규례에 따라 수송하라 운운. 군기사(軍器寺)에 보낸다.

○고지하여 대령할 것 연적 2좌, 요강 2좌는 주원(廚院)에 사통(私通)을 보내 가져온다
(知委待令 硯滴二坐, 溉缸二坐, 私通廚院)

鼈鼠皮二令 本院, 白清二沙鉢 本院, 時牌具釘一件, 木燭臺四坐, 灰板四坐, 木枕十箇. 已上, 紫門監.

날다람쥐 가죽 2령 본원에서 준비한다. 백청 2사발 본원에서 준비한다. 뜻을 갖춘 시패 (時牌) 1건, 나무 촛대 4좌, 회판(灰板) 4좌, 목침 10개 이상은 자문감에서 준비한다.

〔頭註〕朱砂·海馬·石燕.

〔두주〕주사와 해마와 석연도 포함된다.

○소첩(小帖)으로 가져다 사용할 것 이설하는 날에 사용할 지의 10건에 대해 사용하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여 즉시 소첩을 써서 받아들여 사용한다 (小帖取用 移設日, 地衣十件, 用還次, 卽爲小帖捧用)

產室廳教是時, 待令生薑二十角, 青葱十本, 以上, 星火進排次. 司圃署, 菜蔬廬.

산실청을 운영할 때 대령해야 할 것은 생강 20각, 푸른 파 10본이다. 이상을 급히 진배(進排)하라. 사포서(司圃署)나 채소전(菜蔬廬)에 보낸다.

〔頭註〕生薑則入於朔圖內入秩.

〔두주〕생강은 삽도(朔圖)⁵⁰를 통해 들이는 물품에 포함된다.

產室廳教是時所用, 胡桃肉次, 實胡桃一升, 星火進排次. 掌苑署.

산실청을 운영할 때 소용되는 호도육을 만들기 위해 일이 찬 호도 1되를 급히 진배(進排)하라. 장원서에 보낸다.

產室廳教是時, 內入次, 羌古道魚參拾箇, 星火進排次. 樺皮廬. ○此則設廳後先爲知委, 當朔初捧置, 解娩日即進上.

산실청을 운영할 때 들여오기 위한 강고도어(羌古道魚)⁵¹ 30개를 급히 진배하

50 삽도(朔圖) : 매달 초하루에 왕궁에 진상하는 각종 물품에 대해 도식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다

라. 화피전(樺皮廳)에 보낸다. ○이것은 산실청을 설치한 뒤에 우선 고지하여 산달 초반에 받들어 두고, 분만일에 즉시 진상한다.

〔頭註〕羌古道，則入於朔圖進上秩。

〔두주〕강고도어(羌古道魚)⁵¹는 삭도에 기재된 진상 물품에 포함되어 있다.

產室廳教是時，移設所用，櫃子具鎖鑰貳部，鐵烽爐壹坐，剪板貳部，尾箒貳柄，齒瓢子貳箇，省貳箇，陶東海貳坐，陶所羅參坐，黃筆伍柄，翰林風月貳丁，真漆小盤伍立，白正布白苧布各參尺，撻皮索伍巨里，每日參兩黃燭壹雙式，燈油參升式，劑藥次楮注紙半張式，書啓次楮注紙壹張式，日用次楮注紙厚白紙各貳張式白休紙肆兩式，三提調書簡次厚白紙貳張式，草日記次白休紙參卷，用還次，擔桶具杖壹坐，書案硯匣各貳坐，硯石貳面，書板貳立，木光明臺貳坐，二立付懸板具足壹部，屏風柒坐，中鼎蓋具水瓮各壹坐，紅木衣紅木巾各貳拾件，以上，星火進排次。紫門監，紫門鉄契，繕工監，司導寺，戶曹，工曹，盤契，濟用監，苧布壘，索契，義盈庫，長興庫，司瞻寺。○此則排設後，即爲出關。

산실청을 운영할 때 이설소(移設所)에서 소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자물쇠를 갖춘 궤짝 2부, 철화로 1좌, 전판(剪板) 2부, 미추(尾箒) 2자루, 치표자(齒瓢子)⁵³ 2개, 솔 2개, 도기 동이 2좌, 도기 소래기 3좌, 황필(黃筆) 5자루, 한림풍월(翰林風月)⁵⁴ 2정, 참옻을 칠한 소반 5닢, 백정포(白正布)와 백저포(白苧布) 각 3척, 달피삭(撻皮索) 5꾸리, 매일 3냥짜리 황족(黃燭) 1쌍씩, 등유(燈油) 3되씩, 약을 쌀 때 사용하는 저주지 반장씩, 서계를 올릴 사용하는 저주지 1장씩, 일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저주지와 후백지(厚白紙) 각 2장씩, 백휴지(白休紙) 4냥씩, 세 제조의 서간으로 사용하는 후백지 2장씩, 일기의 초안에 사용하는 백휴지 3권이고, 사용한 뒤에 돌려줄 물품은 지팡이를 갖춘 질통[擔桶] 1좌, 서안과

51 강고도어(羌古道魚) : 앞에 나온 전고도어 주석 참조.

52 강고도어(羌古道魚) : 앞에 나온 전고도어 주석 참조.

53 치표자(齒瓢子) : 안쪽에 여러 줄로 고랑이 지게 돌려 파서 만든 함지박이다.

54 한림풍월(翰林風月) : 황해도 해주에서 나던 먹의 이름이다.

연갑 각 2좌, 벼루 2면, 서판 2닢, 나무로 만든 등잔걸이 2좌, 발을 갖추고 2닢을 붙인 현판 1부, 병풍 7좌, 뚜껑을 갖춘 중간 크기 솔과 물동이 각 1좌, 홍목으로 만든 옷과 홍목으로 만든 수건 각 20건이다. 이상의 물품을 급히 진배하라. 자문감(紫門監), 자문철계(紫門鐵契), 선공감(鑄工監), 사도시(司導寺), 호조, 공조, 반계(盤契), 제용감(濟用監), 저포전(苧布塵), 삵계(索契), 의영고(義盈庫), 장흥고(長興庫), 사섬시(司瞻寺)에 보낸다. ○ 이것은 배설(排設)한 후에 즉시 관문을 보낸다.

產室廳小日記次, 楷注紙肆拾張, 厚白紙參張, 黃染紙壹張, 黃筆貳柄, 真墨貳丁, 紅鄉絲貳錢, 黃蠟參錢, 白休紙貳兩, 真末伍合, 以上, 星火進排次. 長興庫, 工曹, 濟用監, 義盈庫, 司瞻寺, 小麥契. ○此則直宿罷後, 卽出關.

산실청의 소일기(小日記)를 작성하기 위한 물품은 저주지 40장, 후백지 3장, 황염지(黃染紙)⁵⁵ 1장, 황필 2자루, 진묵 2정, 흥향사(紅鄉絲) 2돈, 황납 3돈, 백휴지 2냥, 밀가루 5홉이다. 이상의 물품을 급히 진배하라. 장흥고(長興庫), 공조, 제용감(濟用監), 의영고(義盈庫), 사섬시(司瞻寺), 소맥계(小麥契)에 보낸다. ○ 이것은 직숙(直宿)을 파한 후에 즉시 관문을 보낸다.

產室廳捲草陪進教是時, 抄奴所着, 用還次, 紫的頭巾, 紫的冠帶, 色條帶, 各壹件, 鞠子最大者壹部, 函支機壹部, 以上, 星火進排次. 濟用監, 真絲塵, 工曹, 平市署.

산실청에서 권초(捲草)를 배진(陪進)할 때에 초노(抄奴)가 입는 복장은, 사용하고 돌려줄 용도의 자주색 두건, 자주색 갓과 허리띠, 색깔이 있는 조대(條帶) 각 1건, 가장 큰 가죽신 1부, 함 지게 1부이다. 이상의 물품을 급히 진배하라. 제용감, 진사전, 공조, 평시서에 보낸다.

〔頭註〕舊例, 則招司饔院書史, 捲草日早朝, 負函抄奴一名, 具鮮明紫的巾服, 待令事分付矣, 近則自本院以行首使令舉行.

〔두주〕과거의 예로는 사옹원의 서리를 불러 권초하는 날 이른 아침에 함을 질 초노(抄奴) 1명에게 선명한 자주색의 두건과 옷을 입혀 대령하라고 분부했는데, 근래에는 본원에서

55 황염지(黃染紙) : 황색으로 물들인 종이로 소일기책의 장황을 위한 용도로 보인다.

행수사령(行首使令)이 거행하도록 하였다.

產室廳捲草祭設行教是時所用，用還次，紅木四幅袱伍件，星火進排次。濟用監。

산실청에서 권초제를 할 때 소용되는, 사용하고 돌려줄 용도의 4폭짜리 흥목(紅木) 보자기 5건을 급히 진배하라. 제용감에 보낸다.

○감결(甘結)의 봉입(捧甘)

右甘結，今月某日，產室廳捲草祭設行教是時，樂工等依例齋宿於本司是如可，伊日平明，待開門，待令舉行爲乎矣，萬一遲緩，甘罪不辭。掌樂院

다음은 감결(甘結)입니다. 이달 모일에 산실청에서 권초제(捲草祭)를 행하실 때 악공 등은 규례에 의거하여 본사에서 재계·직숙하다가 그날 새벽에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대령하다가 거행하겠습니다. 만일 지체한다면 죄를 달게 받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장악원(掌樂院)

右甘結，今月某日，產室廳捲草陪進教是時，內資寺官員一員，清道部將二人，抄奴所騎馬具鞍一匹，扶囑軍引路軍各二名，奉炬軍六名，伊日待開門，待令于差備門外舉行爲乎矣，萬一遲緩，甘罪不辭。內資寺，女阿只氏則內瞻寺，內三廳，兵曹馬色，軍契，其人。

다음은 감결입니다. 이달 모일에 산실청에서 권초를 배진(陪進)하실 때 내자시(內資寺) 관원 1원, 청도부장(清道部將) 2인, 초노가 타는 안장을 갖춘 말 1필, 부축군(扶囑軍)과 인로군(引路軍) 각 2명, 봉거군(奉炬軍) 6명은 그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차비문 밖에서 대령하여 거행하겠습니다. 만일 지체한다면 죄를 달게 받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남자 아기씨면 내자시, 여자 아기씨면 내섬시, 내삼청(內三廳)⁵⁶，병조 소속 마색(馬色)，군계(軍契)，기인(其人).⁵⁷

右甘結，中宮殿產室廳排設時，所用物種進排事啓目，允下爲有置，各其司依後錄極擇精備，卽爲進排爲乎矣，萬一遲緩，甘罪不辭。

56 내삼청(內三廳) : 왕실의 수비와 임금의 호위를 담당했던 내금위·검사복·우림위를 이른다.

57 기인(其人) : 관청에 솟과 뺨나무를 바치던 경저리(京邸吏) 또는 그러한 계를 이른다.

다음은 감결입니다. 중궁전 산실청을 배설할 때 소용되는 각종 물품을 진배하기 위한 계목(啓目)에 대하여 윤허가 내려졌습니다. 각 관사에서는 뒷면의 기록에 의거하여 극진히 선택하고 세밀히 준비하여 즉시 진배하겠습니다. 만일 자체한다면 죄를 달게 받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後 加莫金貳介 蠕染大鹿皮壹令 黃鄉絲壹兩 黃蠶參錢 黃草伍封 空石拾立 白紋席拾立 羊毛氈貳浮 六張付油菴壹浮 四張付油菴貳浮 白馬皮壹令 有耳 生苧參斤 剪邊空石貳立 長參尺玖寸 廣壹尺柒寸 鑰尺 襷板壹坐 塗朱大登床壹坐 塗朱小登床壹坐 大圓環具排目蠶染貳介 大銅絲 隨所入 大鈴壹介 紅綿絲三甲所貳巨里 塗朱雲梯壹部 架子伍部 水刺間取用 擔塗拾肆巨里 排設房取用 長道里壹介 所串壹介 執箇壹介 懸草門所用三寸釘參介 紅鄉絲三甲所拾把 產圖及各樣付貼次草注紙拾張 白休紙肆兩 紅輕光紬參尺 藍輕光紬參寸 紅扇子紙壹張 青扇子紙半半張 片臙脂壹張 紅紬二幅祫貳件 紅木三幅祫貳件 耳也壹介 細繩伍兩 海馬石燕子纓子次真紅唐絲壹兩 黃連甘草湯所用白鼎紬壹尺 白正布壹尺伍寸 白苧布壹尺伍寸 胡桃肉入盛次白絹壹尺 產圖改付貼所用草注紙肆張 紅紬四幅祫壹件 紅木五幅祫壹件 懸草時所用紅漆無蓋函壹坐 長壹尺捌寸 廣壹尺 高肆寸 鑰尺 紅綿絲三甲所貳巨里 傳纏次鏡面朱砂壹兩重壹塊 石雄黃壹兩重壹塊 洗浴時所用鑑東海壹坐 白正布參尺 白苧布伍尺 阿只氏洗浴時所用李根壹本 桃根壹本 梅根壹本 猪膽壹部 鑰所羅壹坐 白絹參尺 白正布壹尺伍寸 白苧布壹尺伍寸 洗胎及封裹所用藍綿紬貳尺 白正布壹尺伍寸 白苧布壹尺伍寸 香醞酒參瓶 古銅錢壹分 油紙壹張 四耳內白缸蓋具壹坐 四耳外白缸蓋具壹坐 陶東海壹坐 陶所羅壹坐 大陶豆毛壹坐 瓢子貳介 省壹介 白馬尾篩壹部 四耳陶豆毛蓋具壹坐 甘糖壹斤 鑰火爐壹坐 火箸壹部 去核參斤 草注紙參張 常毛氈貳立 紅鄉絲三甲小纓子拾把 紅木牌壹介 長參寸 廣壹寸參分 鑰尺 各樣物種裹入次紅木四幅祫貳件 紅紬三幅祫貳件 紅綿絲三甲所貳巨里 印戶曹 紫門監 狗皮契 濟用監 義盈庫 司僕草契 紫門鐵契 立塵 紙塵 長興庫 尚衣院 修理契 馬皮契 銅絲契 東床塵 豐儲倉 司贍寺 彩色契 細繩契 真絲塵 苧布塵 平市署 唐材契 內資寺 司饔院 司導寺 繕工監 純子契 純紬塵 水刺間 排設房 牛毛氈契 軍資監 廣興倉 惠民署 典醫監 工曹

뒷면의 기록이다. 가막쇠 2개, 납염(蠶染)한 대록피(大鹿皮) 1령, 황향사(黃鄉

絲) 1냥, 황납(黃蠅) 3돈, 황초(黃草) 5봉, 빈 가마니 10닢, 백문석(白紋席) 10닢, 양탄자 2부, 6장을 붙인 유둔(油蓖) 1부, 4장을 붙인 유둔 2부, 백마피(白馬皮) 1령 귀가 있는 것, 생모시 3근, 가장자리를 자른 가마니 2닢 유척으로 길이 3척 9촌, 너비 1척 7촌, 배판(褙板) 1좌, 붉은색을 칠한 대등상(大登床) 1좌, 붉은색을 칠한 소등상(小登床) 1좌, 배목(排目)⁵⁸을 갖추고 밀납을 먹인 큰 등근 고리 2개, 굵은 구리 철사 들어가는 바에 따른다. 큰 방울 1개, 붉은 면사(綿絲)를 세 겹으로 꼰 밧줄 2꾸리, 붉은색을 칠한 구름사다리 1부, 가자(架子) 5부 수라간에서 가져와 사용한다. 담줄 14꾸리 배설방(排設房)에서 가져와 사용한다. 장도리 1개, 송곳 1개, 집게 1개, 현초문(懸草門)에 사용할 3촌의 못 3개, 붉은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꼰 밧줄 10발, 산도 및 기타 부착물을 붙이기 위한 초주지 10장, 백휴지 4냥, 붉은색 경광주(輕光紬) 3척, 남색 경광주 3촌, 붉은색 부채종이 1장, 푸른색 부채종이 1/4장, 편연지(片臘脂)⁵⁹ 1장, 2폭의 붉은 명주 보자기 2건, 3폭의 흥목 보자기 2건, 귀때대야(耳大也) 1개, 가는 끈 5냥, 해마와 석연자의 뜶을 꼰으로 사용할 진홍당사(真紅唐絲) 1냥, 황련감초탕에 쓸 백정주(白鼎紬) 1척, 백정포(白正布) 1척 5촌, 백저포(白苧布) 1척 5촌, 호도육을 담기 위한 백견(白絹) 1척, 산도를 다시 붙일 때 사용할 초주지 4장, 4폭의 붉은 명주 보자기 1건, 5폭의 흥목 보자기 1건, 현초(懸草)에 사용하기 위한 붉은색 옻칠을 한 뚜껑 없는 함 1좌 유척으로 길이 1척 8촌, 너비 1척, 높이 4촌, 붉은 면사를 세 겹으로 꼰 밧줄 2꾸리, 텃줄을 뜶기 위한 경면주사(鏡面朱砂) 1냥쯤 한 덩어리, 석옹황 1냥쯤 한 덩어리, 산모 목욕할 때 사용할 놋동이 1좌, 백정포 3척, 백저포 5척, 아기씨 목욕할 때 사용할 오얏나무 뿌리 1본, 복숭아나무 뿌리 1본, 매화나무 뿌리 1본, 옛돼지 쓸개 1부, 놋소래기 1좌, 백견 3척, 백정포 1척 5촌, 백저포 1척 5촌, 태반을 씻고 쌀 때 사용할 남색 면주 2척 백정포 1척 5촌, 백저포 1척 5촌, 향온주(香醞酒) 3병, 오래된 동전 1푼, 유지(油紙) 1장, 네

58 배목(排目) : 문고리를 걸어 자물쇠를 끗게 한 철물로, 한 끝은 등근 구멍을 내고 다른 끝은 못 모양으로 되어 있다.

59 편연지(片臘脂) : 붉은 물을 솜에 먹여 말렸다가 끓는 물에 담아 우려서 사용하는 중국산 물감.

귀가 있고 뚜껑 있는 안쪽 백자 항아리 1좌, 네 귀가 있고 뚜껑 있는 바깥 백자 항아리 1좌, 도기 동이 1좌, 도기 소래기 1좌, 큰 도기 두명 1좌, 바가지 2개, 솔 1개, 백마 꼬리로 만든 체 1부, 네 귀가 있고 뚜껑 있는 도기 두명 1좌, 옛 1근, 놋화로 1좌, 부젓가락 1부, 씨를 뺀 솜 3근, 초주지 3장, 상모전(常毛氈) 2닢, 붉은 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꼳 가는 끈 10발, 홍목패(紅木牌) 1개. 유척으로 길이 3촌, 너비 1촌 3푼, 각종 물품을 싸기 위한 4폭의 흥목 보자기 2건, 3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 2건, 붉은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꼳 밧줄 2꾸리. 인장. 호조(戶曹), 자문감(紫門監), 구피계(狗皮契), 제용감(濟用監), 의영고(義盈庫), 사복 초계(草契), 자문철계(紫門鐵契), 입전(立塵), 지전(紙塵), 장흥고(長興庫), 상의원(尙衣院), 수리계(修理契), 마피계(馬皮契), 동사계(銅絲契), 동상전(東床塵), 풍저창(豐儲倉), 사섬시(司瞻寺), 채색계(彩色契), 세승계(細繩契), 진사전(真絲塵), 저포전(苧布塵), 평시서(平市署), 당재계(唐材契), 내자시(內資寺), 사옹원(司饔院), 사도시(司導寺), 선공감(繕工監), 면자계(綿子契), 면주전(綿紬塵), 수라간(水刺間), 배설방(排設房), 우모전계(牛毛氈契), 군자감(軍資監), 광흥창(廣興倉), 혜민서(惠民署), 전의감(典醫監), 공조(工曹).

〔頭註〕壬申釐正.

〔두주〕임신년(고종9, 1872)에 정리한 것이다.

〔頭註〕朱砂石雄黃, 本院無入用者, 故自辛未, 雲峴宮受來矣, 今則出關.

〔두주〕주사와 석옹황은 본원에 들여와 사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미년(고종8, 1871)부터 운현궁에서 받아왔는데 지금은 관문을 보낸다.

右甘結, 產室廳教是時, 捲草祭所用物種, 進排事啓目, 允下爲有置, 各其司官員依後錄精備封裹, 躬親進排爲乎矣, 萬一遲緩, 甘罪不辭.

다음은 감결입니다. 산실청을 운영할 때 권초제에 사용할 각종 물품을 진배(進排)하겠다고 올린 계목(啓目)에 대해 윤허가 내려졌으니, 각 관사의 관원들은 뒷면의 기록에 의거하여 세밀히 준비하고 싸서 몸소 진배하겠습니다. 만일 지체한다면 죄를 달게 받고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後. 命白米壹百斗, 命絹拾疋, 命紬拾疋, 命白絲拾斤, 命正銀壹百兩, 鑰大燭臺壹雙, 鑰香爐壹坐, 鑰香盒壹坐, 鑰大也壹坐, 沈香壹兩, 四兩黃燭壹雙, 香案壹坐, 高

足床壹坐 尚衣取用, 畫邊油紙陸張, 塗朱大板子伍立, 塗朱馬木貳坐, 白紋九張付地衣臺浮, 白紋拜席貳立, 捲草入盛次全漆有蓋函壹坐 長壹尺捌寸伍分, 廣壹尺高肆寸參分, 鑑尺, 白苧帛壹件 長參尺, 紅木五幅袱壹件, 紅紬三幅袱壹件, 函外裹次紅紬六幅袱壹件, 紅鄉絲三甲所壹巨里, 紅綿絲三甲所壹巨里, 紅木牌壹介 長參寸廣, 壹寸參分, 鑑尺, 覆函次紅紬五幅袱壹件, 命白米一百斗分入拾斗式所用白苧甲帛拾件, 四油菴壹浮, 紅木五幅袱伍件, 捧草陪進時所用大中炬陸柄, 印 戸曹, 工曹, 濟用監, 唐材契, 立塵, 長興庫, 尚衣院, 紫門監, 義盈庫, 其人, 平市署.

뒷면의 기록이다. 명백미(命白米) 100말, 명견(命絹) 10필, 명주(命紬) 10필, 명백사(命白絲) 10근, 명정은(命正銀) 100냥, 큰 놋촉대 1쌍, 놋향로 1좌, 놋향합 1좌, 놋대야 1좌, 침향 1냥, 4냥짜리 황촉 1쌍, 향안(香案) 1좌, 고족상(高足床) 1좌 상의원에서 가져와 사용한다. 화변유지(畫邊油紙) 6장, 붉은색을 칠한 큰 판자 5닢, 붉은색을 칠한 말목 2좌, 백문(白紋)을 9장 붙인 지의 1부, 백문배석(白紋拜席) 2닢, 권초를 담기 위한 용도로 전체 옻칠한 뚜껑 있는 함 1좌 유척으로 길이 1척 8촌 5푼, 너비 1척, 높이 4촌 3푼, 백저 포대 1건 길이 3척, 5폭의 홍목 보자기 1건, 3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 1건, 함을 싸기 위한 6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 1건, 붉은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꼳 밧줄 1꾸리, 붉은색 면사를 세 겹으로 꼳 밧줄 1꾸리, 홍목패 1개 유척으로 길이 3촌, 너비 1촌 3푼, 함을 덮기 위한 5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 1건, 명백미 100말을 10말씩 나누어 담는 데 사용할 백저 겹포대 10건, 사유둔(四油菴) 1부, 5폭의 홍목 보자기 5건, 권초를 배진할 때 사용할 큰 햇불과 중간 햇불 6자루. 인장. 호조, 공조, 제용감(濟用監), 당재계(唐材契), 입전(立塵), 장흥고(長興庫), 상의원(尚衣院), 자문감(紫門監), 의영고(義盈庫), 기인(其人), 평시서(平市署).

[頭註] 壬申釐正.

[두주] 임신년(고종9, 1872)에 정리한 것이다.

[頭註] 沈香, 本院無入用者, 故近則出關.

[두주] 침향(沈香)은 본원에서 들여와 사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관문을 보낸다.

○배설(排設)할 때의 출기(排設時 筍記)

正時前刻，三提調，史官，承候官，產室醫官，別掌務官，俱以黑團領，詣差備門外，三提調以下入來事命下後，別掌務官奉付貼諸圖 紋紅紳祫，書員陪物種 入盛架子，入詣產室殿前南庭序立後，與大殿次知承傳色，當殿次知承傳色，產室次知內官，奏時官，泛鐵官，擇日官，入詣產室，泛鐵定方位後，排付二十四方位字，而北壁上先付產圖，次付催生符，次付借地法，又付安產室吉方於某方，又付藏胎衣吉方於某方，錠加莫金於安產室吉方，而仍懸馬轡，房塹先鋪黃草，次鋪空石，次鋪草席，次鋪羊毛氈，次鋪油菴，次鋪白馬皮，而頭向某方 安產室吉方，尾向某方 藏胎衣吉方，白馬皮頭左右，鋪鱷鼠皮，頭下散鋪生苧，次鋪剪邊空石 從白馬皮頭尾，護產首醫於房外，北向跪讀借地法三遍後退，仍詣懸草門，排錠三寸釘，以紅綿絲三甲所橫繫左右，以紅鄉絲三甲所繫於紅綿絲而垂下，還詣產室，錠圓環於殿前柱上，鐵絲繫於圓環，離圓環一把餘，以紅綿絲三甲所繫於鐵絲而垂下，兩條以爲引鈴之備，抵鐵絲于差備外醫官直所，而立竹柱，柱上錠小圓環，鐵絲繫於圓環，離圓環一把餘懸大鈴。

정시 이전에 세 제조, 사관, 승후관(承候官), 산실청 의관, 별장무관(別掌務官)은 모두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차비문 밖에 나아간다. ‘세 제조 이하는 들어오라’는 명이 내려지면 별장무관은 불일 여러 그림 붉은색 명주 보자기에 싸서 둔다을 받들고, 서원(書員)은 각종 물건 가자에 담아둔다을 받들고 산실전 앞 남쪽뜰에 가서 차례로 선 뒤에 대전의 담당 승전색(承傳色),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 산실의 담당 내관, 주시관(奏時官), 범철관(泛鐵官), 택일관(擇日官)과 함께 산실에 들어간다. 범철관이 방위를 정한 후에 24방위에 해당하는 글자를 붙인다. 북쪽 벽 위에 먼저 산도를 붙이고 다음에 최생부, 그 다음에 차지법을 붙이고, 또 아무개 방향으로 안산실길방(安產室吉方)을 붙이고 아무개 방향에 장태의길방(藏胎衣吉方)을 붙인다. 안산실길방에 가막쇠를 박고 거기에 말고삐를 매단다. 방구들에 황초를 먼저 깔고 다음에 빈 가마니를, 다음에 명석을 다음에 양탄자, 다음에 기름 장판지를, 다음에 백마피(白馬皮)를 까는데, 백마피의 머리는 아무개 방향 안산실길방을 향하게 하고 꼬리는 아무개 방향 장태의길방을 향하게 한다. 백마피 머리의 좌우에 날다람쥐 가죽을 깔고, 백마피 머리 아래에 생모시를 펴서 깐다. 다음으로 가장자리를 자른 빈 가마니를 깐다. 백마피의 머리

부터 꼬리까지 호산관으로서의 수의(首醫)는 방밖에서 북쪽을 향해 무릎을 끓은 뒤 차지법을 세 차례 읽은 후에 물러난다. 이어 현초문에 나아가 3촌짜리 못을 줄지어 박고는 붉은색 면사를 세겹으로 꼳 밧줄을 기둥 좌우에 횡으로 건 뒤에 흥향사(紅鄉絲)를 세겹으로 꼳 밧줄을 붉은색 면사에 묶어 아래로 늘어뜨린다. 다시 산실로 돌아와 산실전 앞 기둥 위에 등근 고리를 박고 등근 고리에 철사를 건다. 등근 고리에서 한 발 남짓 떨어진 곳에 붉은색 면사를 세 겹으로 꼳 밧줄을 철사에 묶어 아래로 늘어뜨린다. 방울을 당기기 위한 예비로 이렇게 두 끈을 준비하고, 철사를 차비문 밖의 의관 숙직소에 이르게 한 뒤에 대나무 기등을 세운다. 대나무 기등 위에 작은 등근 고리를 박고 철사를 등근 고리에 묶은 뒤에 등근 고리에서 한 발 남짓 떨어진 곳에 큰 방울을 매단다.

〔頭註〕 定方位時，先付東西南北字後，排付二十四方位字。

〔두주〕 방위를 정할 때에는 먼저 동·서·남·북의 글자를 붙인 후에 24방위에 해당하는 글자를 배열하여 붙인다.

〔頭註〕 安產室吉方，即當月月德方，藏胎衣吉方，即月空方。○月德月空，或有避忌之時。

〔두주〕 안산실길방(安產室吉方)은 해당 월의 월덕(月德) 방향이고 장태의길방(藏胎衣吉方)은 월공(月空) 방향이다.○월덕과 월공을 혹 금기하여 피하는 때도 있다.

〔頭註〕 產圖改付貼時，亦隨當月月德月空方。

〔두주〕 산도를 다시 붙일 때에도 역시 해당 월의 월덕과 월공의 방향을 따른다.

〔頭註〕 某方見上。

〔두주〕 어떤 방향인지는 위에 보인다.

〔頭註〕 紅鄉絲三甲所一把式三條，各繫釘三處而垂下。

〔두주〕 흥향사(紅鄉絲)를 세 겹으로 꼳 밧줄 1발씩 3줄을 각각 세 곳의 못에 묶어 아래로 늘어뜨린다.

○산도를 고쳐 불일 때의 홀기(產圖改付貼時 積記)

正時前刻, 三提調, 史官, 承候官, 產室醫官, 別掌務官, 與大殿次知承傳色, 當殿次知承傳色, 產室次知內官, 俱以黑團領, 率書圓等, 入詣產室, 看審移舖, 而產圖改印, 仍付北壁上, 催生符改印, 付於其次, 借地法改書, 付於其次, 改付安產室吉方於某方, 改付藏胎衣吉方於某方, 改錠加莫金於安產室吉方, 移懸馬轡, 移舖白馬皮, 而某首某尾, 白馬皮頭左右, 舗鼴鼠皮, 頭下散舖生苧, 移舖剪邊空石 從白馬皮頭尾, 護產首醫, 於房外, 北向跪讀借地法, 三遍後退 奏時官, 泛鐵官, 擇日官, 並待令于差備門外.

정시 이전에 세 제조, 사관, 승후관(承候官), 산실청 의관, 별장무관(別掌務官)과 대전의 담당 승전색(承傳色),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 산실의 담당 내관이 모두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서원 등을 거느리고 산실에 들어가 자세히 옮겨 포설할 곳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산도를 다시 인쇄하여 북쪽 벽 위에 붙이고 최생부를 다시 인쇄하여 그 다음에 붙이며 차지법을 다시 써서 그 다음에 붙인다. 안산실길방(安產室吉方)을 아무개 방향에 고쳐 붙이고 장태의길방(藏胎衣吉方)을 아무개 방향에 고쳐 붙인 뒤에 가마쇠를 안산실길방에 고쳐 박아 말고삐를 옮겨서 진다. 백마피를 옮겨서 깔되 머리는 아무개 방향이고 꼬리는 아무개 방향이다. 백마피 머리의 좌우에 날다람쥐 가죽을 깔고, 백마피 머리 아래에 생모시를 펴서 깔며, 가장자리를 자른 빈 가마니를 옮겨 간다. 백마피 머리부터 꼬리까지 호산관으로서의 수의는 방밖에서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차지법을 세 차례 읽은 후에 물러난다. 주시관(奏時官), 범칠관(泛鐵官), 택일관(擇日官)은 모두 차비문 밖에서 대령한다.

〔頭註〕 安產藏胎方, 見上排設時笏記頭註.

〔두주〕 안산실길방과 장태의길방은 위의 배설할 때의 홀기 부분 두주(頭註)에 보인다

〔頭註〕 首從月德, 尾從月空.

〔두주〕 머리는 월덕(月德) 방향을 따르고 꼬리는 월공(月空) 방향을 따른다.

○태반을 씻을 때의 훌기(洗胎時笏記)

洗胎時，自內取月德某方水，令醫女洗百度後，以酒更洗，古銅錢一箇，以字面先入內胎缸底中央，仍入洗胎，以油紙藍綿紬覆缸口，以紅纓子結封，自內封標，覆缸蓋，以紅纓子貫缸四耳及蓋丁四穴結封，自內封標出送後，產室醫官，與大殿次知承傳色，當殿次知承傳色，產室次知內官，俱以黑團領，率書員等，詣產室殿前眼同，先於外白缸底籍以白綿花，以內白缸入於外白缸中，以白綿花堅隔齊缸口，以草注紙覆綿花上，垂下堅隔勿動，又以白綿花厚覆紙上，甘糖作片如缸口圓切，比缸口四面剩一指許，燻於熱火，待其柔和，覆缸口，且以白綿花厚覆甘糖上，覆缸蓋，以紅纓子貫缸四耳及蓋丁四穴，二甲結封後，書當殿次知承傳色臣姓，產室醫官臣姓，而並着署，懸紅木牌於缸蓋丁上，前面以雙行書大年號某年某月某日，中宮殿誕生元子阿只氏胎，後面並列書次知承傳色等臣姓名，產室醫官等臣姓名，後四耳陶豆毛中舖常毛氈一立，以胎缸入於陶豆毛，內四面堅隔，而又以常毛氈一立覆之，然後覆蓋，以紅纓子貫豆毛四耳及蓋丁四穴，十字結封，書謹封，當殿次知承傳色着署，入之還安於月德方而退。

태반을 씻을 때에 대내에서 월덕(月德)이 있는 아무개 방향의 물을 가져와 의녀로 하여금 백번 씻게 한 후에 술로 다시 씻는다. 오래된 엽전 1개를 글자가 있는 면으로 먼저 안쪽 태항아리 바닥 중앙에 넣고 씻은 태반을 넣은 뒤 유지(油紙)와 남색 면주(綿紬)로 항아리 입구를 덮고는 붉은 끈으로 묶어 봉한다. 대내(大內)에서 봉표(封標)하고 태항아리 뚜껑을 덮은 후 붉은 끈으로 항아리 네 귀와 뚜껑의 꼭지 부분에 있는 4개 구멍을 빼어서 묶어 봉한다. 대내에서 봉표하여 내보낸 후에 산실청 의관, 대전의 담당 승전색(承傳色),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 산실(產室)의 담당 내관이 모두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서원(書員) 등을 거느리고 산실전 앞에 나아가 안동(眼同)한다. 먼저 바깥 백자 태항아리 바닥에 흰 목화솜을 깔고 안쪽 백자 태항아리를 바깥 백자 항아리에 넣는다. 안쪽 백자 태항아리와 바깥 백자 태항아리의 틈에 흰 목화솜을 빽빽이 넣어 항아리 입구까지 채운 뒤 초주지로 목화솜 위를 덮어 내려 움직이지 않게 견고히 막는다. 또 흰 목화솜으로 종이 위를 두텁게 덮고 옆을 태항아리 입구와 같이 둥글게 질라 편을 만들되 태항아리 입구에 비해 4면을 한 손가락쯤 남게

만든다. 여기에 녹아내릴 때까지 열을 가하여 태항아리 입구를 덮는다. 또 흰 목화솜을 옆 위에 두텁게 덮은 뒤에 태항아리 뚜껑을 덮고 붉은색 끈으로 태항아리의 네 귀와 뚜껑 꼭지의 네 구멍을 끌어 두 겹으로 묶어서 봉한다.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 신 의 아무개 성씨, 산실 의관 신 의 아무개 성씨’라고 쓰고 모두 서명한다. 태항아리 뚜껑의 꼭지 위에 홍목패(紅木牌)를 매달고 전면에는 쌍행으로 ‘중국 연호 모년 모월 모일 중궁전께서 탄생하신 원자 아기씨의 태’라고 적고, 후면에는 ‘담당 승전색 등 신 아무개, 산실 의관 등 신 아무개’라고 나란히 적는다. 그 후에 네 귀가 있는 도기 두명 안에 상모전(常毛氈) 1닢을 깔고 태항아리를 도기 두명에 넣은 뒤에 안쪽 4면의 틈을 견고히 막고 다시 상모전 1닢으로 덮는다. 그런 후에 뚜껑을 덮고 붉은색 끈으로 도기 두명의 네 귀와 뚜껑의 꼭지 네 구멍을 끌어 십(+)자 모양으로 묶어 봉한 뒤 ‘삼가 봉합니다.’라고 적고,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이 서명하고 들여 월덕의 방향에 다시 안치하고 물러난다.

〔頭註〕取月德方水，例也，而或當月月德，亦有避忌方，從他方取水，下同。

〔두주〕월덕(月德) 방향의 물을 취하는 것이 상례이나, 혹 당월의 월덕에 꺼리는 방향이 있으면 다른 방향에서 물을 취한다. 아래도 같다.

〔頭註〕自內封標，則癸酉因下教，承候官書吉字，甲戌又因下教，產室次知承傳色着署，下同。

〔두주〕대내(大內)에서 봉표(封標)하는 것은 계유년(고종10, 1873)에 하교로 인하여 승후관이 ‘길(吉)’자를 쓴다. 갑술년(고종11, 1874)에도 하교로 인해 산실의 담당 승전색이 서명하였다. 아래도 같다.

〔頭註〕癸酉因下教，女阿只氏，則以公主書之，乙亥又因下教，男阿只氏，以大君書之。○捲草
紅木牌同。

〔두주〕계유년(고종10, 1873)에 하교로 인하여 여자 아기씨는 ‘공주’로 적었다. 을해년(고종12, 1875)에는 하교로 인하여 남자 아기씨는 ‘대군’으로 적었다. ○권초할 때의 홍목패도 같다.

○권초제(捲草祭)를 거행할 때의 출기(捲草祭時笏記)

捲草祭時，產室醫官，別掌務官，與大殿次知承傳色，當殿次知承傳色，產室次知內官，俱以黑團領，率書員等，入詣產室，於廳事外，先舖地衣，次置馬木於左右，加排大板子五立於其上 南向排設，舖畫邊油紙，北端以兩行列置命白米十包，右置命絹十疋，左置命紬十疋，中置命絲十斤命正銀一百兩，香案上設香爐香盒而具沈香，左右燭臺，安四兩燭而不燃火，又排高足牀於香案之左，舖拜席於香案前，又舖拜席於階下後 捲草官，預先留待於差備門外，謁者醫官引捲草官，就階下位，引儀笏記舉行，呼唱再拜 樂工鼓吹，謁者引捲草官，盥洗後，親奉捲草，入於函中，書員奉函先導，謁者引捲草官，復就階下位，謁者奉函，安於高足床上 先舖紅紬六幅袱，捲草官盥洗後，詣香案前焚香，仍降復位，引儀呼唱再拜訖，謁者引捲草官退，出後，醫官及承傳色率書員等眼同，奉捲草入盛白苧帛結封，封上書醫官 臣 姓名而着署，以紅綿紬長三尺二幅袱裹之，以紅纓子當中結封，封上書醫官 臣 姓名而着署，仍安於函中而覆函蓋，以紅鄉絲三甲所當中結封，封上書醫官 臣 姓名而着署，又以六幅紅紬袱裹函結封，封上書當殿次知承傳色 臣 姓名而着署，懸紅木牌，前面以雙行書大年號某年某月某日中宮殿誕生元子阿只氏捲草，書員奉函出來，抄奴着紫的巾服 待令于差備門外，具紅鄉絲三甲所負函，又以紅紬五幅袱覆蓋而出，待令醫官陪從，至差備門外，捲草官及內資寺官員陪從，部將二員，前導引路軍二名，樂工鼓吹，奉炬軍六名，扶囑軍二名，序立，進往于內資寺，捲草物種及香卓等物，並留入於內。

권초제를 거행할 때 산실청 의관, 별장무관(別掌務官), 대전의 담당 승전색,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 산실의 담당 내관은 모두 흑단령 차림으로 서원 등을 거느리고 산실에 들어간다. 청사 밖에 먼저 지의(地衣)를 깔고 다음으로 좌우에 말목[馬木]을 설치한 뒤 그 위에 큰 판자 5닢을 배설(排設)한다. 남향으로 배설한다 화변유지(畫邊油紙)를 깔고 그 북쪽 끝에 두 줄로 명백미(命白米) 10포를 줄지어 두고, 오른쪽에는 명견(命絹) 10필, 왼쪽에는 명주(命紬) 10필, 가운데에는 명사(命絲) 10근과 명정은(命正銀) 100냥을 둔다. 향안(香案) 위에는 향로와 향합을 놓고 침향을 갖추어두며, 좌우 쪽대에 4냥짜리 초를 두되 불을 붙이지는 않는다. 또 향안의 왼쪽에 고족상(高足床)을 배설하고 향안 앞에 배석(拜席)을 깔며 계단 아래 뒤쪽에도 배석을 깐다. 권초관은 미리 차비문 밖에서 머무르며 기다린다

알자(謁者) 의관(醫官)이 권초관(捲草官)을 인도하여 계단 아래 자리로 나아가게 하면 인의(引儀) 훌기를 거행하는 사람 가 ‘재배(再拜)’라고 외친다. 악공이 음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권초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게 한 뒤에 권초를 받들어 함 안에 넣게 한다. 서원이 함을 받들어 먼저 인도하면 알자가 권초관을 인도하여 다시 계단 아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알자가 함을 받들어 고족상 먼저 6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를 깔아둔다 위에 놓아두면 권초관이 손을 씻고 향안 앞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인의가 ‘재배’라고 외치는 것이 끝나면 알자가 권초관을 인도하여 물러난다. 나온 뒤에 의관과 승전색이 서원 등을 인솔하여 안동(眼同)하고, 권초를 받들어 백저 포대에 넣고 묶어 봉한다. 봉한 곳 위에 ‘의관 신 아무개’라고 적고 서명한 뒤에 길이 3척짜리 붉은색 명주 보자기 2폭으로 싸고 붉은색 끈으로 가운데를 묶어 봉한다. 봉한 곳 위에 ‘의관 신 아무개’라고 적고 서명한다. 이것을 함 안에 안치하고 함 뚜껑을 덮은 뒤 홍향사(紅鄉絲)를 세겹으로 꼳 밧줄로 가운데를 묶어 봉하고, 봉한 곳 위에 ‘신 아무개’라고 적고 서명한다. 또 6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로 함을 싸서 묶어 봉하고, 봉한 곳 위에 ‘해당 전궁의 담당 승전색 신 아무개’라고 적고 서명한다. 홍목패를 매달되 전면에는 쌍행으로 ‘중국 연호 모년 모월 모일 중궁전께서 탄생하신 원자 아기씨의 권초’라고 적는다. 서원이 함을 받들고 나오면 자주색 두건과 의복 차림의 노복 차비문 밖에서 대령한다 이 붉은색 향사를 세 겹으로 꼳 밧줄로 함을 지는데, 5폭의 붉은색 명주 보자기로 덮은 뒤에 나간다. 대령의관(待令醫官)이 배종(陪從)하다가 차비문 밖에 이르면 권초관과 내자시(內資寺)의 관원도 배종한다.부장 2원, 전도인로군(前導引路軍) 2명, 연주하는 악공, 봉거군(奉炬軍) 6명, 부축군(扶囑軍) 2명은 차례로 서서 내자시로 행진한다. 권초제에 소용되는 각종 물품 및 향탁(香卓) 등의 물건은 모두 대내(大內)에 남겨둔다.

〔頭註〕 黃燭本六兩, 而自辛未減二兩.

〔두주〕 황축(黃燭)은 본래 6냥이었으나 신미년(고종8, 1871)부터 2냥을 감했다.

〔頭註〕 公主阿只氏, 則內瞻寺官員陪從, 下同.

〔두주〕 공주 아기씨의 경우는 내섬시의 관원이 배종한다. 아래도 같다.

○직숙(直宿)을 파한 후 즉시 내보내는 관문들 산실청에서 소용되는 회감(會減) 공문에 대해서도 즉시 관문을 낸다 (直宿罷後卽出關秩 產室廳所用會減公事, 亦卽出關)

元子宮供上日次薏苡公事. 每朔, 薏苡二斗五升, 草注紙六張式.

원자궁(元子宮)에 올리는 규정된 율무에 대한 공문. 매달 율무 2말 5되, 초주지 6장씩.

元子宮供上臘藥櫃及南飛介公事.

원자궁에 올리는 납약궤(臘藥櫃) 및 남비개(南飛介)에 대한 공문.

[頭註] 甲戌因下教, 櫃子板則紅漆, 而四面邊隅, 則以細行黑漆.

[두주] 갑술년(고종11, 1874)에 하교로 인하여 궤자판(櫃子板)은 붉게 옻칠하고, 4면의 가장자리와 모퉁이는 가늘고 겹게 옻칠하였다.

契屏物力錢求請公事. 發簡, 各司各邑, 而無邸居多, 則都聚上送發關.

제병(契屏)을 제작하기 위한 물력전(物力錢)을 청구하는 공문. 발간(發簡)은 각 사와 각 읍에서 하되 집이 없거나 사는 사람이 많으면 모두 모아 상송(上送)하거나 관문을 보낸다.

爲相考事, 中宮殿產室廳教是時, 別單判付內, 待令書員延鳳仁, 帖加惠局兼役事奉承傳爲有置, 延鳳仁本廳書吏差下之地, 宜當云云. 甲戌二月十五日移文宣惠廳.

상고하라. 중궁전 산실청을 운영할 때 별단(別單)을 판부(判付)하여 들인 내용에 '대령서원인 연봉인(延鳳仁)은 체가자하여 혜국(惠局)에서 겸역하게 하라는 전지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연봉인을 본청의 서리(書吏)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운운.' 하였다. 갑술년(고종11, 1874) 2월 15일 선혜청(宣惠廳)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처방(處方)⁶⁰

불수산(佛手散)

當歸 六箇, 川芎 四箇, 加益母草 二箇.

당귀 6돈, 천궁 4돈에 익모초 2돈을 더한다.

右作一貼, 水一升二合, 臨熟入酒少許, 煎至四合, 去滓, 不拘時, 溫進.

이상을 1첩으로 하여 물 1되 2홉을 끓고 익을 즈음에 술을 조금 넣은 뒤에 4홉이 될 때까지 달인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달생산(達生散)

大腹皮(酒洗) 二箇, 甘草(炙) 一箇五分, 當歸 · 白朮 · 白芍藥 各一箇, 人蔘 · 陳皮 · 紫蘇葉 · 枳殼 · 縮砂(研) 各五分.

술로 씻은 대복피 2돈, 구운 감초 1.5돈, 당귀 · 백출 · 백작약 각 1돈, 인삼 · 진피 · 자소엽 · 지각 · 축사(간 것) 각 5푼.

右作一貼, 水一升二合, 入青蔥五葉, 煎至四合, 去滓, 不拘時, 溫進.

이상을 1첩으로 하여 물 1되 2홉을 끓고 청총(青蔥) 5엽을 넣은 뒤 4홉이 될 때까지 달인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용뇌안신환 1제(龍腦安神丸一劑)

白茯神 三兩, 人蔘 · 地骨皮 · 麥門冬 · 甘草 各二兩, 桑白皮 · 犀角(鎊) 各一兩, 牛黃 五箇, 龍腦 · 麝香 各三箇, 朱砂 · 馬牙硝 各二箇, 金箔 三十五片.

백복신 3냥, 인삼 · 지골피 · 맥문동 · 감초 각 2냥, 상백피 · 서각(깎아서 가루

60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역자가 추가하였다.

낸 것) 각 1냥, 우황 5돈, 용뇌 · 사향 각 3돈, 주사 · 마아초 각 2돈, 금박 35편.

右末, 蜜丸如彈子, 金箔爲衣, 每一丸, 冬溫水夏涼水化下.

이상을 갈아서 탄환만한 크기의 밀환을 만든 뒤 금박을 입힌다. 매 1알을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녹여 먹는다.

우황고(牛黃膏)

朱砂 · 鐵金 各三錢, 牛黃 二錢五分, 牡丹皮 二錢, 甘草 一錢, 龍腦 五分.

주사 · 읊금 각 3돈, 우황 2.5돈, 모란피 2돈, 감초 1돈, 용뇌 5푼.

右末, 蜜丸如皂子, 每一丸, 井水化下. 皂子即兩作四十丸.

이상을 갈아서 조각자만한 크기의 밀환을 만든다. 매 1알을 우물물로 녹여 먹는다. 조각자 크기라는 것은 1냥으로 40환을 만든다는 뜻이다.

3부 색인

인명

강위빙(康渭聘)	515, 518, 519, 520, 521, 537, 587, 600	이유원(李裕元)	782, 857, 916, 918
강해수(康海秀)	519	이장백(李長白)	561, 562
곽지건(郭之堅)	537, 599, 600	이정보(李鼎輔)	533
김사목(金思穆)	700	이종성(李宗城)	557
김세현(金世顯)	516	이지연(李志淵)	708
김시근(金善根)	777, 782	이해조(李海朝)	531, 533, 899
김이교(金履喬)	702	장유령(張有齡)	561
김재찬(金載墳)	700	정겸(鄭謙)	527
김홍근(金弘根)	708	정창성(鄭昌聖)	521, 592
남태제(南泰齊)	532, 533	정형복(鄭亨復)	575
민진후(閔鎮厚)	537, 550, 556, 557, 566	조인영(趙寅永)	708
박종래(朴宗來)	700	조정(趙挺)	527, 528, 555, 562, 563, 593, 596, 677
변삼빈(卞三彬)	561	조태구(趙泰喬)	516
변석화(卞碩和)	521	한광희(韓光會)	538, 586
변태항(卞泰恒)	515, 521, 522	한용귀(韓用龜)	700
윤신지(尹新之)	547	현만초(玄萬初)	561
영조(英祖)	547, 586, 587, 604, 658, 809	홍계희(洪啓禧)	584, 588
이면승(李勉昇)	702	홍명호(洪明浩)	700
이복원(李福源)	588	홍봉한(洪鳳漢)	535, 548
이여(李奮)	561	홍중보(洪重普)	528, 535

처방

경옥고(瓊玉膏)	443, 650, 651	옥추단(玉樞丹)	496, 498, 626, 641, 644
계령원(桂苓元), 계령환(桂苓丸)	468, 469, 629	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	628, 978
구미청심원(九味清心元)	443, 628, 714, 715	우슬탕(牛膝湯)	924
궁귀산(芎歸散)	924	우황고(牛黃膏)	441, 935, 979
남약(臘藥)	477, 482, 541, 573, 574, 591, 628, 636, 639, 641, 642, 643, 647, 651, 658, 661, 671, 711, 712, 713, 714, 716, 898	운모고(雲母膏)	448, 631, 641, 932
달생산(達生散)	913, 919, 922, 978	유백피탕(榆白皮湯)	924
마통차(馬通茶)	456, 457, 458, 629	육향고(六香膏)	473, 627
만병무우고(萬病無憂膏)	448, 631	의원산(益元散)	466, 632, 681, 686, 689, 706, 893
모과전(木瓜煎)	485	자금단(紫金丹)	493, 628, 641, 650, 651
불수산(佛手散)	922, 923, 924, 978	자소음(紫蘇飲)	924
비한단(脾寒丹)	496, 632	전액(煎藥)	474, 627, 666, 681, 686, 687, 688, 689, 711, 712, 713, 716, 757, 892, 897
빙매환(冰梅丸)	454	제호탕(醒醐湯)	468, 469, 626, 666, 681, 686, 687, 688, 689, 706, 711, 712, 716, 891, 897
사분산(四糞散)	487, 489	주사환(朱沙丸)	492, 629
사유환(蛇油丸)	632, 633, 649	죽력고(竹瀝膏)	735, 736
산사전(山查煎)	484	타락죽(駝酪粥)	458, 628, 658
삼두음(三豆飲)	428, 429, 629	태을고(太乙膏)	488, 631
생맥산(生脈散)	619, 671	도홍환(兔紅丸)	483, 629
소독보영단(消毒保嬰丹)	463, 628, 650	팔미원(八味元)	442
신명산(神明散)	466, 629	향유산(香薷散)	460, 626, 627
신이고(神異膏)	631	형화환(螢火丸)	466, 629
실소산(失笑散)	924	황련감초탕(黃連甘草湯)	923, 967
안신환(安神丸)	441, 934, 935		

후기

‘의료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저의 관심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작은 2014년 혜민서 관청지인 《혜국지》에 대한 개설 논문이었죠. 그 연구 과정에서 나온 번역본은 마땅한 출판사를 찾지 못하여 자가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 뒤 의료제도와 관련된 여러 문헌도 같은 방식으로 논문과 국역본을 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역이 많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2019년 하반기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오준호, 이정현 두 선생님이 ‘한국의학사료총서’의 하나로 이 국역본들을 묶어 내보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왕 내는 김에 조선의 의료제도와 관련된 규정과 문헌 내용까지 함께 모아보자는 거창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책의 전반부는 《경국대전》의 육전 체계와 그 항목을 중심으로 여러 문헌에서 관련 규정들을 모으고, 후반부는 《혜국지》 등 제도사 관련 문헌들을 국역하기로 기획하였습니다.

책의 후반부(3부)는 기존의 원고가 있었기에 2020년 11월에 먼저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존의 제 원고를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선생님께 교열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원고를 살펴주신 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는 제 원고뿐 아니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번역을 진행했던 《산실청총규》와 《의정부약방식례》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훑어져 있던 의료 제도 관련 서적을 한꺼번에 모았으니 연구자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책의 전반부(2부)에서 《경국대전》의 체제에 맞추어 여러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은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정현 선생님과 같이 2020년 8월부터 2년 반의 시간 동안 역할을 나누어 내용 선정과 번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선생님과 많은 논의를 했던 시간은, 개인적으로도 제도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번역자로, 때로는 편집자로, 때로는 교열자로, 여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주신 이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에는 3년 동안의 여정이 담겼습니다. 이제 이 책은 저와 이 선생님의 손을 떠나 세상에서 자신만의 여정을 떠나겠죠. 모쪼록 이 책이 관련 연구자분께 잘 활용되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무등골 운암산 아래에서
含眞 朴薰平

한국의학사료총서 6

조선의 의료 제도

©한국한의학연구원, 2022

저자	박훈평 저	■ 1부 해제
	박훈평 · 이정현 번역	■ 2부 법령 자료
	박훈평 번역, 변구일 교열	■ 3부 심약사례 · 내의원식례 · 혜국지 · 약방등록 · 내의원정례
	구자훈 번역, 남성우 교열	■ 3부 산실청총규
	이정현 번역, 박훈평 교열	■ 3부 의정부약방식례
기획	오준호	
교정	구현희	

펴낸날 2022년 12월 22일

펴낸이 이진용

펴낸곳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전화 042-861-1994

제작 에이젯

ISBN 978-89-5970-516-0

978-89-5970-296-1 (세트)

〈비매품〉

이 책의 한국어판 출판권은 저작권자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서적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KSN2021110)”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습니다.